2019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1045-190017-13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19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ELECTORAL SYSTEM
A WORLDWIDE COMPARATIVE STUDY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 거 연 수 원

▪ 일러두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발간하는 『2019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순서에 따라 외국의 선거제도 등을 비교·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10개 국가(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호주)에 관한 자세한 설명 외에 해당 주제에 따라 각국의 현황과 특히 OECD국가의 현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 OECD국가(현재 36개국)는 정부 간 정책연구 협력기구로서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로 시장경제체제를 보유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가 회원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종 사례의 비교대상으로 제시되고 있어 2019년 발간에 새로 추가됨.

이 책에 수록한 외국 제도는 각국의 헌법 및 선거법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 형법 등 일반법과 해당 국가의 의회 및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각종 연구보고서 및 논문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반영했고, 내용에 관한 출처를 본문에 각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제도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풀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가능성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12월

차례

제1장 선거일반 | 19

제1절 각국의 통치체제와 의회·선거제도 • 21
1. 각국의 통치체제 _21
2. 각국의 의회제도 _24
3. 각국의 선거제도 _31
제2절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 50
제3절 선거법 총칙 • 88
1. 투표참여방안 _88
2. 선거의 공정성 보장 _104
가.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_104
나. 선거보도심의 _116
다. 선거방송토론 _124
라. 선거여론조사 _138
마. 공무원의 중립의무 _156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 175

제1절 선거권 • 177
제2절 피선거권 • 194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 209

제1절 선거구와 의원정수 • 211
제2절 선거구획정 • 230

제4장 선거일과 선거인명부 | 261

제1절 선거일 • 263
제2절 선거인명부 • 275

제5장 후보자 | 303

제1절 후보자 • 305
1. 정당의 후보자 추천 _305
2. 후보자 등록 _331
[참고자료 5-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향상을 위한 노력 • 371
제2절 기탁금 • 390

제6장 선거운동 | 397

제1절 선거운동의 정의 • 399
제2절 인쇄물·시설물 등 이용 선거운동 • 406
제3절 신문 이용 선거운동 • 416
제4절 방송시설 이용 선거운동 • 420
제5절 집회 이용 선거운동 • 432
제6절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 436
제7절 호별방문 선거운동 • 444
[참고자료 6-1] 주요국가의 매니페스토 • 449

제7장 선거운동 제한·금지사항 | 481

제1절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일 선거운동 제한·금지 • 483
제2절 공무원의 선거운동 제한·금지 • 492
제3절 인쇄물·시설물 관련 제한·금지 • 497
제4절 신문·방송광고 등 언론매체 관련 제한·금지 • 507
제5절 집회 관련 제한·금지 • 513
제6절 여론조사 결과공표와 출구조사 제한·금지 • 516
제7절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 530
제8절 기부행위 관련 제한·금지 • 538

제8장 선거비용 | 553

제1절 선거비용 • 555
제2절 선거비용 보전 • 599

제9장 투표 | 631

제1절 투표 일반 • 633
제2절 부재자투표 — 우편투표 및 특별투표소 투표 • 673
제3절 사전투표 • 695
제4절 대리투표 • 704
제5절 보조투표 • 709

제10장 재외선거 | 719

[참고자료 10-1] 주요 국가의 선상투표 • 753

제11장 전자투표 | 763

제12장 개표 | 803

제13장 당선인 | 835

제14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 863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 887

제16장 벌칙 | 909

참고문헌 | 961

부록 | 1025

<부록 1> 최근 선거실시상황 • 1027
<부록 2> 각국의 투표용지 • 1041

표 차례

<표 1-1> 각국의 통치체제 22
<표 1-2> 각국의 정부형태 23
<표 1-3> 각국의 의회제도 26
<표 1-4> 각국의 의원임기 28
<표 1-5> 각국의 대표제도 34
<표 1-6> 각국의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 37
<표 1-7> OECD국가의 정부형태 및 선거제도 현황 38
<표 1-8> OECD국가의 선거제도 내용 40
<표 1-9> 각국의 선거원칙에 관한 헌법규정 49
<표 1-10>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유형 84
<표 1-11> OECD국가의 선거관리기관 현황 85
<표 1-12> 의무투표제 실시 주요 국가 현황 99
<표 1-13> 인센티브제 실시 국가 현황 100
<표 1-14> OECD국가의 연도별 선거 투표율(%) 102
<표 1-15> 일본 2016년 제24회 참의원의원 통상선거 전 당수 토론회 132
<표 1-16> OECD국가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 시 공개 내용 154
<표 1-17> 미국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직위 161
<표 1-18> 주요 국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내용 173
<표 2-1> 각국의 선거권 연령 187
<표 2-2> 최근 선거연령 조정국가 현황 188
<표 2-3> OECD국가의 민법상 성년연령 및 선거권 연령 비교 188
<표 2-4> 각국의 선거권 요건(연령 제외) 189
<표 2-5> OECD국가의 선거권 도입연도 190
<표 2-6> OECD국가의 선거권 현황 191
<표 2-7> 각국의 피선거권 연령(하원의원 기준) 204
<표 2-8> 각국의 피선거권 요건 205
<표 2-9> OECD국가의 피선거권 현황 207
<표 3-1> 독일 상원의원 주별 의석수 214
<표 3-2> 독일 하원의원 주별 선거구수 및 의석수 215
<표 3-3> 일본 참의원의원 지역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석수 216
<표 3-4> 일본 중의원의원 지역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석수 217
<표 3-5> 일본 중의원의원 비례대표선거구 및 의석수 218
<표 3-6> 스페인 상원의원 선거구별 의석수 219

<표 3-7> 스페인 하원의원 선거구별 의석수 220
<표 3-8> 스웨덴 선거구별 의석수 221
<표 3-9> 스위스 하원의원 주별 의석수 222
<표 3-10> 캐나다 상원의원 주별 의석수 223
<표 3-11> 캐나다 하원의원 주별 의석수 224
<표 3-12> 호주 하원의원 주별 의석수 226
<표 3-13> OECD국가의 의원 1명당 인구수 227
<표 3-14> OECD국가의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비율 228
<표 3-15> 미국 주별 선거구획정기관 237
<표 3-16> 미국 주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수 및 관련 조항 237
<표 3-17> 각국의 선거구획정기구 252
<표 3-18> OECD국가의 선거구획정절차 253
<표 3-19> OECD국가의 선거구획정기준 257
<표 4-1> 영국 선거일정표 264
<표 4-2> 일본 선거일(선거기일) 267
<표 4-3> 호주 선거일정표(선거관리상의 일정) 271
<표 4-4> OECD국가의 의회 선거소집 272
<표 4-5> 각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관 299
<표 4-6> OECD국가의 선거인명부 작성 현황 300
<표 5-1> 미국의 후보자 추천 방식 309
<표 5-2> 미국 주별 예비선거 유형 310
<표 5-3> 독일 정당 내 후보자 선출기관 315
<표 5-4> 각국의 무소속 후보자 출마가능 선거 358
<표 5-5> OECD국가의 후보자 등록 신청방법 359
<표 5-6> OECD국가의 무소속 후보자 등록방법 364
<표 5-7> OECD국가의 공무원 입후보 및 사직기한 367
<표 5-8> OECD국가의 후보자 사퇴 시한 370
<표 5-9> 미국 연방 상·하원의 최근 의회 여성의원 비율 371
<표 5-10> 독일 2019년 연방의회의원 구성 현황 373
<표 5-11> 독일 여성할당제 관련 정당 규정 현황 374
<표 5-12> 스웨덴 여성할당제 관련 정당 규정 현황 376
<표 5-13> 각국의 여성 의회의원 비율 379
<표 5-14> 각국의 여성할당제 381

<표 5-15> 지정의석할당제 국가 현황 382
<표 5-16> OECD국가의 후보자 추천 관련 여성할당제와 제재 현황 385
<표 5-17> OECD국가의 후보자 기탁금액 및 반환기준 394
<표 5-18> 각국의 기탁금 반환요건 396
<표 6-1> OECD국가의 선거운동기간 403
<표 6-2> 일본 선거운동용 포스터 수량 413
<표 6-3> 일본 신문광고 규격 및 횟수 418
<표 6-4> 독일 16개 주의 선거광고 관련 424
<표 6-5> OECD국가의 무료 방송시간 및 무료 인쇄물 배정방법 430
<표 6-6> OECD국가의 선거운동방법 446
<표 6-7> 영국 정당별 매니페스토 450
<표 6-8> 프랑스 대선 및 총선 매니페스토 456
<표 6-9> 일본 매니페스토 대상 선거와 배포방법 466
<표 6-10> 스페인 2019년 주요 정당 총선 공약 469
<표 6-11> 스웨덴 2018년 주요 정당 매니페스토 471
<표 6-12> 스웨덴 2018년 정당별 매니페스토 분량 및 사용단어 횟수 472
<표 6-13> 스위스 2019년 주요 정당 매니페스토 및 총선 공약 474
<표 6-14> 캐나다 2015년 정당별 매니페스토 주요 내용 476
<표 7-1> OECD국가의 확성기 사용제한 489
<표 7-2> OECD국가의 선거일 선거운동 가능 여부 490
<표 7-3> 각국의 여론조사 결과공표 제한 기간 523
<표 7-4> 각국의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기간 변동 현황 524
<표 7-5> OECD국가의 여론조사 결과공표 제한 526
<표 7-6> OECD국가의 출구조사 규제 현황 528
<표 7-7> 각국의 선거 관련 허위사실에 대한 대응 현황 534
<표 7-8> OECD국가의 후보자 등 비방금지 관련 규정 537
<표 7-9> OECD국가의 선거운동 규제방법 548
<표 8-1> 미국연방선거 총비용지출액 562
<표 8-2> 미국 연방의회의원선거 회계보고서의 형태, 범위 및 보고시한 563
<표 8-3> 2019~2020년 미국 연방선거 기부 제한액 565
<표 8-4> 2017~2018년 미국 상위 20개 정치위원회 현황 566
<표 8-5> 미국 수입·지출 보고서 제출시기 569
<표 8-6> 독일 정당별 수입 대비 선거비용의 비중 및 지출금액 577

<표 8-7> 일본 선거비용제한액(일반선거구) 579
<표 8-8> 각국의 선거비용 지출에 대한 제한 590
<표 8-9> 각국의 선거비용 보고서 제출 및 공개여부 현황 590
<표 8-10> OECD국가의 선거비용 제한액 현황 592
<표 8-11> OECD국가의 선거비용 관련 위반 시 제재내용 596
<표 8-12> 독일 국고보조금 규모: 2008~2017년 607
<표 8-13> 스페인 선거보조금 지급 현황 614
<표 8-14> 스페인 정당별 국고보조금 지급 현황 615
<표 8-15> 각국의 선거비용 직접지원 현황 621
<표 8-16> 각국의 정당 활동 관련 간접비용 보조 현황 622
<표 8-17> OECD국가의 선거비용 직접지원 현황 623
<표 8-18> OECD국가의 선거비용 간접지원 현황 628
<표 9-1> 미국 각 주의 투표시간 635
<표 9-2> 미국 주별 투표방법 636
<표 9-3> 각국의 투표요일 666
<표 9-4> OECD국가의 투표요일, 선거일 수, 투표시간, 개표시간 667
<표 9-5> OECD국가의 투표용지 내용 현황 670
<표 9-6> 미국 주별 우편투표 마감시간 675
<표 9-7> 일본 기일 전 투표 및 부재자투표 680
<표 9-8> OECD국가의 부재자투표 실시 현황 691
<표 9-9> 미국 주별 사전투표 실시 현황 695
<표 9-10> OECD국가의 특별투표제도 현황 716
<표 10-1> 미국 주별 전자적 투표방식 채택 현황 725
<표 10-2> OECD국가의 재외선거인 자격요건기간 746
<표 10-3> OECD국가의 재외선거 747
<표 10-4> 해외선거구 도입 국가 752
<표 11-1> 미국 투표방식 비중 변화(대통령 선거 기준) 770
<표 11-2> 일본의 전자투표 실시 현황 783
<표 11-3> 주요 전자투표 방식 798
<표 11-4> 각국의 전자투표 실시 현황 799
<표 11-5> 전자투표 비실시 국가 현황 801
<표 12-1> OECD국가의 개표장소 및 개표참관인 833
<표 13-1> OECD국가의 의회의원 임기개시와 임기만료 858

<표 14-1> 독일 연방의회 추가선거 사례 870
<표 14-2> 일본 의회의원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조건 877
<표 14-3> OECD국가의 의회의원 결원 시 보충방법 883
<표 15-1> OECD국가의 선거에 관한 쟁송 제기방법 905
<표 16-1> OECD국가의 주요 선거범죄 비교 942

그림 차례

<그림 1-1> 호주 ABC방송 보도시간 총합 비교(2016년 선거운동기간) 115
<그림 1-2> 호주 1990~2016년 선거토론방송 시청률 비교 137
<그림 3-1> 미국 2020년 인구조사 결과 선거구 재조정(예정) 현황 234
<그림 5-1> 뉴사우스웨일즈 지구당의 후보자 선출 절차 330
<그림 6-1> 영국 선전물 예시 407
<그림 6-2> 미국 선전물 예시 407
<그림 6-3> 독일 선전물 예시 410
<그림 6-4> 일본 언론NPO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9년 참의원선거 주요 정당 공약평가 467
<그림 6-5> 2019년 참의원선거 정당공약 비교표 468
<그림 6-6> 2018년 중의원선거 매니페스토 비교 468
<그림 9-1> 스위스의 투표용지 658
<그림 9-2> 캐나다 군인 부재자투표 흐름도(제200~219조) 686
<그림 10-1> 일본 선상투표 흐름 759
<그림 11-1> 영국 전자투표 홍보물 768
<그림 11-2> 영국 다채널 투표방식 768
<그림 11-3> 미국의 다양한 투표시스템 770
<그림 11-4> 프랑스 전자투표기 775
<그림 11-5> 일본의 투표시스템 782
<그림 11-6> 스위스 전자투표 시스템 현황 789
<그림 11-7> 호주수도준주(ACT)의 전자투표 모니터와 바코드본인인식기, 특수키패드 794
<그림 11-8>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아이보트 실행 웹페이지 795
<그림 11-9> 호주 빅토리아 주 투표소의 전자보조기구 796

참조 차례

<참조 1-1> 대표제도 유형: 선출방식별 분류 32
<참조 1-2>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 최고평균방식과 최대잔여방식 33
<참조 1-3> 일본의 선거 SALE 101
<참조 1-4> 프랑스「여론조사의 공표 및 전파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144
<참조 1-5> 영국 공무원 복무 규정: 중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156
<참조 1-6> 일본 인사원규칙 14-7(정치적 행위)의 운용방침 165
<참조 2-1> 독일 선거법의 주거 개념 181
<참조 3-1> 선거구제의 유형 211
<참조 3-2> 미국 콜로라도 주의 선거구 획정기준 235
<참조 3-3> 미국 텍사스 주의 선거구획정기구 및 획정절차 238
<참조 3-4> 미국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관한 판례 239
<참조 5-1> 미국 인디애나 주의 예비선거 311
<참조 5-2> 프랑스의「남녀동수법」 388
<참조 5-3> 아르헨티나의「여성할당제법」 389
<참조 6-1> 독일의「소셜 네트워크 규제법」 441
<참조 7-1> 기타 선거운동이 제한·금지되는 사람 496
<참조 7-2> 뮌헨 주의 벽보규정(Plankatierungverordnung) 502
<참조 7-3> 미국 출구조사 거리제한 판례 동향 517
<참조 8-1> 1976년 Buckley V. Valeo 판결내용(424 V.S.I) 571
<참조 9-1> 미국 소수민족의 투표권 행사 관련 법규내용 638
<참조 9-2> 독일 선거증 제도 676
<참조 9-3> 일리노이 주의 사전투표제도(선거법 IL ST CH 10 §5/19A) 696
<참조 10-1> 독일의 재외국민의 선거권 확대 730
<참조 10-2> 재외국민선거권 관련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요지 732
<참조 13-1> 독일 초과의석 관련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및 선거법 개정 843
<참조 13-2> 일본 중복입후보 사례 847
<참조 13-3> 스페인 하원의원 당선인결정절차 예시 848
<참조 13-4> 스웨덴 정당별 의석배분 예시 852
<참조 13-5> 호주 상원의원 당선기준득표수 및 잉여표 계산방법 856
<참조 13-6> 호주 하원의원 당선자 결정방법(웨어식 선호투표제) 857
<참조 14-1> 독일의「선거심사법(Walhprüfungsgesetz)」 871
<참조 16-1> 미국 선거범죄 유형 919

제1장

선거일반

제1절
각국의 통치체제와 의회·선거제도

1. 각국의 통치체제

- 세계 각 국가의 통치체제는 군주제와 공화제로 분류할 수 있고 이 중 한 가지를 채택하고 있거나, 이 둘을 혼합한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음.
  - 전 세계 193개 국가[1] 중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2개국을 군주제 국가로 분류할 수 있고, 41개국은 입헌군주제(constitutional monarchy), 나머지 150개 국가들은 공화제(republicanism)를 채택하고 있음.
- 정부형태는 대통령제 92개국, 의원내각제 76개국으로 분류할 수 있고, 나머지 18개국은 이원정부제, 스위스는 집단지도제 국가임.
- 그 외 행정적인 면에서 정부형태를 연방국가(federal state, federation)와 단일국가(unitary state)로 구분할 수 있음.

  ※ 연방국가와 단일국가 외에도 독립된 국가들이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국가연합(confederation)도 국가형태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음(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
  - 세계 193개 국가 중 단일국가는 165개국이며, 28개 국가가 연방국가임.

    ※ 연방국가가 형성된 순서는 미국(1776년), 멕시코(1821년), 스위스(1848년), 아르헨티나(1853년), 베네수엘라(1863년), 캐나다(1867년), 브라질(1889년), 호주(1901년), 오스트리아(1920년), 독일(1949년), 인도(1950년), 수단(1956년), 파키스탄(1956년), 나이지리아(1963년), 말레이시아(1963년), 탄자니아(1964년), 벨기에(1970년), 아랍에미레이트(1971년), 코모로(1975년), 마이크로네시아(1979년), 세인트키츠네비스(1983년), 러시아(1992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1995년), 에티오피아(1995년), 이라크(2005년), 네팔(2008년), 남수단(2011년), 소말리아(2012년)[2]

---

1) 국가 수는 기준에 따라 다양함. 국제연합(UN) 회원국 수인 193개국이 통상적인 기준. 세계은행에서 집계하는 국가의 수는 229개인데, 이 숫자는 국제법상 인정되었으나 비독립국 국가 수까지 합산하면 242개국으로 증가

2) 신명순 · 진영재. 2017. 비교정치. 박영사. p.45,46.

<표 1-1> 각국의 통치체제

통치형태	대륙	국가
군주국(2)	중동(2)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입헌군주국 (41)	아시아(6)	부탄 브루나이, 캄보디아,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중동(4)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카타르
	아프리카(3)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로코
	유럽 (11)	안도라, 벨기에,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스웨덴, 스페인
	중·남·북미 (10)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캐나다, 그레나다, 자메이카,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오세아니아 (7)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투발루,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공화국 (150)	아시아 (22)	대한민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라오스, 몰디브, 몽골,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동티모르,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중동 (15)	아프가니스탄, 차드, 이집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리비아, 팔레스타인, 시리아, 터키, 아랍에미리트, 예멘, 아르메니아, 레바논, 키프로스
	아프리카 (49)	알제리, 앙골라,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카보베르데, 코모로,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가봉,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온두라스, 케냐,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소말리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감비아, 남수단
	유럽 (32)	알바니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오스트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몰타, 몰도바, 몬테네그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중·남·북미 (25)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멕시코, 아르헨티나,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푸에르토리코, 수리남, 미국, 우루과이, 트리니다드토바고, 베네수엘라, 도미니카연방
	오세아니아 (7)	피지, 키리바시, 나우루,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바누아투, 마셜제도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ES001 (검색일 2019.3.8.)
외교부. 국가 및 지역정보 2019.3.8.기준

<표 1-2> 각국의 정부형태

	대륙	국가
대통령제 (92)	아시아(9)	대한민국,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몰디브, 필리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중동(6)	이집트, 이란, 시리아, 터키, 아랍에미리트, 예멘
	아프리카 (45)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앙골라,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케냐, 말라위,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르완다, 나이지리아,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유럽(6)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키프로스,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중·남·북미 (23)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미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오세아니아 (3)	키리바시,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의원 내각제 (76)	아시아(11)	방글라데시, 부탄,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싱가포르, 태국
	중동(7)	바레인,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카타르
	아프리카(4)	에티오피아, 레소토, 모리셔스, 에스와티니
	유럽 (29)	알바니아, 안도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덴마크, 에스토니아, 조지아,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중·남·북미 (12)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캐나다, 도미니카연방, 그레나다,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연방,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오세아니아 (13)	사모아, 호주, 쿡제도, 피지, 마셜제도, 나우루, 뉴질랜드, 니우에,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이원정부제 (18)		아르메니아, 불가리아, 카보베르데, 크로아티아, 체코,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몰도바, 팔레스타인,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상투메프린시페,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동티모르
집단지도제(1)		스위스
기타(6)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북한, 중국, 라오스, 리비아

※ 이원정부제: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의회의 신임을 얻어 총리를 지명하고, 총리가 의회의 신임을 얻어 정부내각을 구성

※ 집단지도제: 임기가 4년인 정부각료 7명이 돌아가면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맡고, 상원과 하원의 합동회의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은 사실상 수석 각료로서 대외적인 외교 및 의전위주의 활동을 함.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ES003 (검색일 2019.3.11.)
외교부. 국가 및 지역정보 2019.3.8.기준

2. 각국의 의회제도

가. 의회의 구성

- 의회[3]는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로서 기능하며,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민주주의체제의 핵심적 기구임.
- 의회는 하나만 있는 단원제 의회(unicameralism)와 상원과 하원[4]이 존재하는 두 개의 의회가 있는 양원제 의회(bicameralism)로 나눌 수 있음.
- 전 세계 200개국[5] 중에서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116개국으로, 전체의 58%, 양원제 국가는 84개국으로 42%를 차지

나. 의회의원의 임기

- 대부분 국가들의 의회의원 임기는 4년 또는 5년인데 단원제인지 양원제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양원제 국가에서 상원의원의 임기는 3년부터 종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하원의원의 경우 최단 임기는 2년이며, 최장 임기는 6년으로 상원의원에 비해 짧음.
- 단원제 국가 중 미크로네시아와 양원제 국가에서는 미국 하원의원의 임기가 2년으로 가장 짧음.
-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상원의원들은 주정부가 뽑아서 보내기 때문에 주정부 의회의원들의 임기가 주마다 다르고, 캐나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한번 임명되면 75세 정년 임기이며, 영국과 룩셈부르크의 상원의원은 종신직임.

---

3) 의회를 지칭하는 단어는 영국의 의회(Parliament)에서 유래하나 국가별로 다르게 표현함. 미국은 Congress, 독일은 Bundestag와 Reichstag, 프랑스는 Parlement français[하원만을 지칭할 때는 국민의회(Assemblée nationale)], 일본은 Diet, 우리나라는 국회(assembly)를 사용함.

4) 상원과 하원은 영국 의회에서 유래하며 과거에는 귀족원(House of Lords)이 권한도 더 많고 권위도 더 높았기 때문에 상원(upper House)이라 하고,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평민원(House of Commons)을 하원(lowers House)이라 불렀음. 일반적으로 하원을 House of Representatives/The First Chamber, 상원을 Senate/The Second Chamber라고 표시함.

5)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2019년 기준

- 하원의원은 모두 같은 기간 동안 재임하지만[6] 상원의원은 임기 중에 일부를 새로 선출
  - 네덜란드, 멕시코, 호주, 일본, 필리핀의 상원의원은 3년마다 1/2씩 새로 선출
  - 미국, 아르헨티나, 인도의 상원의원은 2년마다 1/3씩 선출
  - 프랑스 상원의원은 3년마다 1/3을 새로 선출

6) 아르헨티나는 예외적으로 하원의원 257명 중에서 2년마다 의원의 절반을 새로 뽑음.

<표 1-3> 각국의 의회제도

■ 단원제 국가 116개국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중·남·북미	오세아니아
대만	리비아	가나	그리스	가이아나	괌
대한민국	사우디아라비아	감비아	노르웨이	과테말라	나우루
동티모르	시리아	기니	덴마크	니카라과	뉴질랜드
라오스	아랍에미리트	기니비사우	라트비아	도미니카연방	니우에
마카오	아르메니아	니제르	룩셈부르크	베네수엘라	마셜제도
몰디브	이라크	말라위	리투아니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미크로네시아
몽골	이란	말리	리히텐슈타인	세인트키츠네비스	바누아투
방글라데시	이스라엘	모리셔스	마케도니아	수리남	사모아
베트남	이집트	모잠비크	모나코	에콰도르	솔로몬제도
북한	카타르	베냉	몬테네그로	엘살바도르	키리바시
브루나이	쿠웨이트	보츠와나	몰도바	코스타리카	통가
스리랑카	키프로스	상투메프린시페	몰타	쿠바	투발루
싱가포르	터키	세네갈	불가리아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중국		세이셸	산마리노	페루	피지
키르기스스탄		시에라리온	세르비아		
투르크메니스탄		에리트레아	스웨덴		
팔레스타인		온두라스	스페인		
홍콩		우간다	슬로바키아		
		잠비아	아이슬란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아제르바이잔		
		지부티	안도라		
		차드	알바니아		
		카보베르데	에스토니아		
		코모로	우크라이나		
		코트디부아르	조지아		
		탄자니아	크로아티아		
		토고	포르투갈		
		튀니지	핀란드		
			헝가리		
18개국	13개국	28개국	29개국	14개국	14개국

■ 양원제 국가 84개국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중·남·북미	오세아니아
네팔	레바논	가봉	네덜란드	그레나다	뉴칼레도니아
말레이시아	바레인	나미비아	독일	도미니카공화국	사모아
미얀마	예멘	나이지리아	러시아	멕시코	쿡제도
부탄	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루마니아	미국	팔라우
우즈베키스탄	요르단	라이베리아	벨기에	바베이도스	호주
인도		레소토	벨라루스	바하마	
인도네시아		르완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벨리즈	
일본		마다가스카르	스위스	볼리비아	
카자흐스탄		모로코	슬로베니아	브라질	
캄보디아		모리타니	아일랜드	세인트루시아	
타지키스탄		부룬디	영국	아르헨티나	
태국		부르키나파소	이탈리아	아이티	
파키스탄		소말리아	체코	앤티가바부다	
필리핀		수단	폴란드	우루과이	
		아프가니스탄	프랑스	자메이카	
		알제리		칠레	
		에스와티니		캐나다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적도기니		트리니다드토바고	
		짐바브웨		파라과이	
		카메룬		푸에르토리코	
		케냐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14개국	5개국	24개국	15개국	21개국	5개국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ES004 (검색일 2019.3.11.)
외교부. 국가 및 지역정보 2019.3.11.기준

<표 1-4> 각국의 의원임기

■ 상원의원

임기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중·남·북미	오세아니아
3년(1)	말레이시아					
4년 (18)		요르단	나이지리아 마다가스카르 소말리아	네덜란드 러시아 루마니아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폴란드	도미니카공화국 볼리비아 콜롬비아 푸에르토리코	팔라우
5년 (33)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태국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부룬디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케나 레소토 짐바브웨	벨기에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레나다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세인트루시아 우루과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6년 (25)	네팔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가봉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수단 알제리 차드 콩고공화국	체코 프랑스	멕시코 미국 아르헨티나 아이티	호주
8년(2)					브라질 칠레	
9년(1)			라이베리아			
임기 다양[7] (3)	아프가니스탄[8]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75세(1)					캐나다	
종신(2)				영국 룩셈부르크		

※ 이탈리아의 경우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자, 사회·과학·예술 등 영역에서 국가에 업적과 공훈을 쌓은 자 등 일부는 종신직

7) 개별 주정부가 임기결정

8) 아프가니스탄 상원의원의 임기는 주의회에서 선출한 의원의 경우는 4년,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의원은 3년, 대통령이 지명한 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다양

■ 하원의원

임기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중·남·북미	오세아니아
2년(2)					미국	미크로네시아[9]
3년 (8)	필리핀				멕시코 엘살바도르	나우루 뉴질랜드 니우에 통가 호주
4년 (86)	대만 대한민국 몽골 아르메니아 일본 조지아 태국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가나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베냉 상투메프린시페 수단 소말리아 앙골라 차드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몰도바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조지아 체코 코소보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과테말라 그린란드 도미니카공화국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온두라스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푸에르토리코	마샬군도 바누아투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쿡제도 투발루 팔라우

9) 미크로네시아의 14개 의석 중 4개 주에서 한 명씩 선출한 4석은 임기가 4년이며, 소선거구에서 선출된 10석은 2년 임기

임기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중·남·북미	오세아니아
5년 (107)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북한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오만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르메니아 이집트 키프로스 터키 튀니지	가봉 감비아 기니 나미비아 남아공 니제르 레소토 르완다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 모잠비크 벨리즈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세이셸 소말리아 에스와티니 시에라리온 알제리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러시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몰타 벨기에 산마리노 아일랜드 영국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헝가리	가이아나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앤티가바부다 우루과이 자메이원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파푸아뉴기니
6년 (6)	스리랑카	예멘	라이베리아 모로코 수단 예멘			

출처: CIA. World Fact book. 2019.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resources/the-world-factbook/geos/xx.html (검색일 2019.3.25.)

3. 각국의 선거제도

가. 선거제도의 의의

- 선거제도는 폭넓게 선거권, 선거운동방법, 선거자금 등 선거와 관련한 모든 규칙을 말하지만 좁은 의미에서의 선거제도란 선거체제(electoral system)를 지칭함.
- 좁은 의미의 선거제도는 투표방법·입후보 방법·의석결정방식 등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제도의 핵심은 선거권자가 정치적 선호를 표출하고, 선거를 통해 득표를 의석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결정짓는 것으로 선거구의 크기와 관련한 대표제도와 의석배분 방식 이 두 요소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10)]

나. 대표제도

- 국민의 대표인 의회의원을 선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다수대표제(Majoritarian)와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 PR)로 나눌 수 있고, 이 두 가지 제도를 혼합해 사용하는 혼합제(Mixed System) 3가지가 있음.
- 각 국가의 의원 선출 방식은 미국·영국·캐나다처럼 단순다수대표제나 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처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한 가지 제도만을 택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독일·일본·뉴질랜드처럼 단순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여러 가지 선출방식을 이용해 다양하게 선출하고 있음.

다.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

- 다수대표제의 경우 해당 선거구와 당선인이 이미 특정되어 있어 별 무리가 없지만 비례대표제의 경우 정당이 얻은 득표를 의석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의석배분 방식이 다양하게 적용됨.
- 의석배분 방식은 최고평균방식과 최대잔여방식 두 가지가 있고, 각국은 적용하고 있는 대표제도에 따라 자국의 상황에 맞는 의석배분 방식을 채택해 사용하고 있음.

---

10) Dieter Nohlen. *Elections and Electoral Systems*. Macmillan India Limited. 1996.

참조 1-1 대표제도 유형: 선출방식별 분류

다수 대표제	단순다수제 /1위 대표제 (plurality /FPTP: First-past-the post)	(1인 선출) 단순다수제 (SMP: single-member plurality)	1명을 뽑는 소선거구에서 다수를 득표한 후보가 당선
		연기투표제 (bloc vote)[11]	복수의원선거구에서 선거권자에 그 선거구의 의원정수만큼 투표권을 부여, 단순다수표를 획득하면 당선
		제한투표제	복수의원선거구에서 선거권자에게 의원정수보다 적은 투표권을 주어 연기투표제의 위험성인 정당 싹쓸이를 줄이고 작은 정당의 당선기회를 높임.
		누적투표제	복수의원선거구에서 선거권자는 선거구의 의원정수와 동일한 수의 투표권을 가지나 하나의 후보에 투표 또는 그 이상 투표할 수 있음.
		단기비이양식투표제 (SNTV: single non transferable vote)	복수의원선거구에서 선거권자가 한 후보만을 선택하고 이들 중 다수표를 얻은 순서대로 의원선출 (1948-1994 일본에서 사용)
	절대다수제 (majority)	선호투표제 또는 대안투표제 (preferential or alternative vote)	전체 유효 투표수의 50% 이상을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는 제도로 후보자들에게 서열을 부여해 어느 후보가 50% 이상을 얻게 될 때까지 표를 이양
		결선투표제 (Two round system)	1차 투표에서 50% 이상을 득표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
비례 대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party-list)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선호 투표제 (non-preferential vote)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 선거권자들이 정당에만 투표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당명부를 폐쇄명부(closed list)라 함.
		개방형 정당명부식 /선호투표제 (preferential vote)	선거권자가 정당이 제시한 명부에 있는 후보를 개별적으로 선택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이러한 명부를 개방명부(open list)라 함.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 (Single Transferable Vote)	선거권자가 1표만을 행사하지만 정당 소속과 무관하게 선호순위를 표명할 수 있어 투표지에 표시한 순서에 따라 투표자들의 제1선호가 집계되고 드룹 기준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당선되고, 기준수를 초과한 득표수는 당선인 다음의 선호에 따라 다음 순서의 후보로 이양[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드룹(droop)공식[12]에 따른 기준수 이상의 득표를 해야 함]	
혼합제[13]	연동형 비례대표제 /2표 병용제 (MMP: Mixed member proportional)	각 정당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얻은 전체 의석수 중에서 1인 선출 선거구에서 당선된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제에서 얻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을 결정(독일식)	
	병립형 다수대표제 /2표 병립제 (MMM: Mixed member majoritarian /Parallel (Segmented) -PR List and Majoritarian constituencies)	각 정당의 의석수를 1인 선출 선거구에서 당선된 의원수와 비례대표 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수를 합쳐 전체 의원수로 결정(한국, 일본식1994년 이후)	

11)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뽑는 수를 기준으로 후보자 1명에게 투표하는 단기투표와 1명 이상에게 투표하는 연기투표

참조 1-2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 최고평균방식과 최대잔여방식

• 최고평균방식(=나눔수제, Highest Average System)

각 정당의 득표수를 제수로 나누어 얻은 몫(평균)이 큰 순서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동트방식(d'Hont Formula)과, 생 라게 방식(Saint-Lague Formula), 수정된 생 라게 방식(Modified Saint-Lague Formula)이 있음.
- 동트 방식은 제수가 1, 2, 3, 4…이며 제수들의 간격은 1
- 생 라게 방식은 제수가 1, 3, 5, 7, 9…로 제수들의 간격이 2
- 수정된 생 라게 방식은 제수가 1. 4, 3, 5, 7, …로서 첫 번째 제수가 1.4

• 최대잔여방식(=쿼터제, Largest Remainder System)

선거구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를 기준수로 나누어 얻은 몫의 정수 부분만큼을 의석으로 배분하고 미 배분의석은 몫의 소수 부분이 큰 정당에 추가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최대잔여방식에서 사용하는 기준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헤어기준수(Hare quota or Niemeyer quota), 하겐바흐 비쇼프 기준수(Hagenbach-Bischoff quota), 임페리얼 기준수(Imperial quota)를 이용
- 헤어 기준수 = 선거구의 유효투표총수를 의석수로 나누어 얻은 몫의 정수
- 하겐바흐 비쇼프 기준수 = 선거구의 유효투표총수를 의석수 + 1로 나누어 얻은 몫의 정수
- 임페리얼 기준수 = 선거구의 유효투표총수를 의석수 + 2로 나누어 얻은 몫의 정수

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연기투표는 대선거구제에서 선거권자가 의석수만큼의 표를 가지고 후보자의 정당소속을 불문해 서로 다른 후보자들을 선택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득표순으로 당선되는 완전연기투표와 후보자 1명 이상에게 투표하지만 선출할 의원 정수보다는 적은 수의 투표를 하는 제한연기투표방식이 있음.

12) 드룹공식=(선거구 총 유효투표수/의석수+1)+1
즉 후보는, 해당 선거구의 전체유효투표수를 선거구의 의석수에 하나를 더한 수로 나눈 후 여기에 하나를 더한 수를 득표해야 당선되는데, 예를 들면, 투표용지에서 1번을 받은 후보만을 고려하는데 한 선거구의 전체 유효투표수가 100,000표이고 그 선거구에서 뽑는 의원수가 5명이라면 최소 당선득표수는 100,000표를 6(5+1)로 나눈 후 여기에 1을 더한 16,667표. 어느 후보든 1번을 받은 득표수가 16,667표보다 많으면 당선. 이때 최대 당선가능 숫자는 5명이 됨.

13) 선거권자들이 일부 의석은 다수대표제로 직접 선출하고 나머지 의석은 비례대표제로 선출

<표 1-5> 각국의 대표제도

■ 상원의원

대표제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중·남·북미	오세아니아
다수 대표제 (12)	단순다수제 (10)			나이지리아 말라위 에티오피아 잠비아 탄자니아	스위스	도미니카 공화국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투발루
	결선투표 (2)				체코		뉴칼레도니아
비례 대표제 (8)	명부식 비례대표제 (5)				루마니아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 (3)	인도 파키스탄					호주
혼합제 (4)	2표병립제 (4)	일본		마다가스카르	프랑스 이탈리아		
임명 (14)			예멘	레소토 남수단	독일 러시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영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벨리즈 세인트루시아 자메이카 캐나다	
기타 (17)		네팔 베트남		감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모로코 보츠와나 소말리아 에스와티니 알제리 에리트레아 카메룬 콩고	네덜란드 벨기에 벨라루스		통가

■ 하원의원

대표제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중·남·북미	오세아니아
다수 대표제 (68)	단순다수제 (49)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인도	예멘 이집트 오만	가나 가봉 감비아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시에라리온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잔지바르 잠비아 짐바브웨 케냐 탄자니아	벨라루스 영국	그레나다 도미니카연방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니우에 마샬군도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세이셸 솔로몬제도 통가 팔라우
	선호투표제 (3)						나우루 파푸아뉴기니 호주
	결선투표제 (13)	베트남 부탄 북한 우즈베키스탄	바레인 이란	말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프랑스	아이티 쿠바	뉴칼레도니아 키리바시
	단기비이양식 투표제 (3)	몽골		아프가니스탄			바누아투
비례 대표제 (63)	명부식 비례대표제 (61)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이라크 이스라엘 키프로스 터키 팔레스타인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모로코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그리스 그린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피지

대표제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중·남·북미	오세아니아
				알제리 앙골라 적도기니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토고 튀니지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핀란드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 (2)				몰타 아일랜드		
혼합제 (38)	연동형/ 2표 병용제 (7)			레소토 잔지바르 지부티	독일 루마니아	볼리비아	뉴질랜드
	2표 병립제 (31)	대한민국 일본 파키스탄 필리핀 타지기스탄 태국 동티모르		기니 니제르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모리타니 수단 차트 카메룬	이탈리아 러시아 리투아니아 모나코 몰도바 안도라 우크라이나 조지아 헝가리	멕시코 베네수엘라 파나마 푸에르토리코	
연기투표제 (3)		싱가포르[14]	레바논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모리셔스			투발루
기타 (8)		중국 카자흐스탄	요르단	소말리아 콩고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파나마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ES005 (검색일 2019.3.29.)
CIA. The World Fact Book 2019.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resources/the-world-factbook/geos/xx.html (검색일 2019.3.29.)
IFES. Election Guide. http://www.electionguide.org/elections/ (검색일 2019.3.29.)

14) 싱가포르는 정당일괄투표(party bloc vote)를 실시하는데 대선거구제하에서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하여 정당명부를 선택하고, 선거결과 상대다수의 지지를 얻은 정당이 해당 선거구의 의석을 모두 석권함.

<표 1-6> 각국의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중·남·북미	오세아니아
최대평균 방식 (38)	동트식 (32)	일본 동티모르 스리랑카 캄보디아	아르메니아 이스라엘 터키	앙골라 모잠비크 지부티 베냉 카보베르데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헝 가 리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페루	
	생 라게식 (2)				라트비아		뉴질랜드
	수정된 생 라게식 (4)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폴란드		
최대잔여 방식 (21)	헤어 기준수 (8)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카메룬	리투아니아 이탈리아	멕시코 온두라스	
	하겐 바흐 비쇼프 기준수 (12)			모로코 시에라리온 튀니지	그리스 룩셈부르크 러시아 슬로바키아 스위스	수리남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에콰도르	
	드룹 기준수 (1)				아일랜드		
기타(1)				차드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question=ES005&view=country (검색일 2019.4.3.)
European Parliament.
http://www.europarl.europa.eu/workingpapers/poli/w13/theme_en.htm (검색일 2019.4.3.)
IDE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Electoral System Family
https://www.idea.int/data-tools/question-view/130357 (검색일 2019.4.3.)

<표 1-7> OECD국가의 정부형태 및 선거제도 현황

정부형태 \ 선거제도	총계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혼합제(다수대표제+비례대표제)		
				계	연동제	병립제
계	36개국	5개국	24개국	7개국	2개국	5개국
내각제	25개국	3개국	20개국	4개국	2개국	2개국
대통령제	5개국	1개국	1개국	2개국	-	2개국
이원정부제 (집단지도제 포함)	6개국	1개국	3개국	1개국	-	1개국

■ 국가별 현황(하원의원 기준)

국가명 (ABC순)	정부형태	선거제도	권역별 여부	연동형 또는 병립형
호 주	내각제	다수대표제 (선호투표제)	-	-
오스트리아	내각제	비례대표제	권역	-
벨기에	내각제	비례대표제	권역	-
캐나다	내각제	다수대표제 (단순다수제)	-	-
칠 레	대통령제	비례대표제	권역	-
체 코	내각제	비례대표제	권역	-
덴마크	내각제	비례대표제	권역/전국 동시운용	-
에스토니아	내각제	비례대표제	권역	-
핀란드	이원정부제	비례대표제	권역	-
프랑스	이원정부제	다수대표제 (결선투표제)	-	-
독일	내각제	혼합제	권역	연동형
그리스	이원정부제	비례대표제	권역	–
헝가리	내각제	혼합제	전국	병립형
아이슬란드	내각제	비례대표제	권역	-
아일랜드	내각제	비례대표제	권역	-
이스라엘	내각제	비례대표제	전국	-
이탈리아	내각제	비례대표제	권역	-
일 본	내각제	혼합제	권역	병립형
한 국	대통령제	혼합제	전국	병립형

국가명 (ABC순)	정부형태	선거제도	권역별 여부	연동형 또는 병립형
라트비아	내각제	비례대표제	권역	-
리투아니아	내각제	혼합제	전국	병립형
룩셈부르크	내각제	비례대표제	권역	-
멕시코	대통령제	혼합제	전국	병립형
네덜란드	내각제	비례대표제	권역	-
뉴질랜드	내각제	혼합제	전국	연동형
노르웨이	내각제	비례대표제	권역	-
폴란드	이원정부제	비례대표제	권역	-
포르투갈	이원정부제	비례대표제	권역	-
슬로바키아	내각제	비례대표제	전국	-
슬로베니아	이원정부제	비례대표제	권역	-
스페인	내각제	비례대표제	권역	-
스웨덴	내각제	비례대표제	권역	-
스위스	집단지도제	비례대표제	권역	-
터 키	대통령제	비례대표제	권역	-
영 국	내각제	다수대표제 (단순다수제)	-	-
미 국	대통령제	다수대표제 (단순다수제)	-	-

<표 1-8> OECD국가의 선거제도 내용

국가명	명칭	의석수	선거구	대표제도	의원선출 방식	의석배분 방식
한 국	-	300	• 253개 소선거구 • 전국단일선거구 (총 47명 선출)	혼합제	병립형 다수대표제(MMM) • 단순다수대표제(253명)+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47명)	비례대표제는 헤어 방식으로 의석 배분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해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 또는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얻어야 함.
영 국	상원	775	-	임명직	세습직	-
	하원	650	650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단순다수대표제 • 잉글랜드 533명, 스코틀랜드 59명, 웨일즈 40명, 북아일랜드 18명	-
미 국	상원	100	50개 중선거구 (각 2명 선출)	다수대표제	단순다수대표제 • 2년마다 1/3씩 개선하므로 사실상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운영 ※조지아 주만 결선투표제 실시	-
	하원	435	435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단순다수대표제	-
프랑스	상원	348	44개 중대선거구	간접선거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 • 선거인단은 프랑스의 본토, 해외 영토, 프랑스 자치령, 재외국민으로 구분해 하원의원, 지역(레종)의회의원, 도(데빠르망)의회의원, 시·읍·면(코뮌)의회의원들로 구성 ※선거인단의 선거방식은 혼합제(3년마다 1/2씩 개선) 26개 중대선거구 130명 및 해외선거구에서 6명을 비례대표제로 선출, 18개 중선거구에서 절대다수대표제로 34명 선출	-
	하원	577	577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절대다수대표제(결선투표제 실시) ※556개 본토 선거구, 10개 해외영토 선거구, 11개 재외국민선거구	• 1차 선거에서 과반수를 획득하면 당선 • 2차 투표에는 1차 투표결과 12.5% 이상을 얻은 후보자들이 출마
독 일	상원	69	16개 중대선거구 (3-6명 선출)	간접선거	각 주(Länder) 의회가 인구비례에 따라 3-6명을 선출하여 69석을 구성	-
	하원	598	• 299개 소선거구	혼합제	연동형 비례대표제(MMP) • 단순다수대표제(299명)	• 정당의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수정 생 라게 방식으로

국가명	명칭	의석수	선거구	대표제도	의원선출 방식	의석배분 방식
			• 16개 중대선거구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299명)	의석 배분 • 권역별 해당 정당의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인 수만큼 제외하고 비례대표 당선인 결정 • 지역구 당선인이 해당 정당의 권역별 의석수보다 많을 경우 초과의석 발생 • 초과의석 발생시 당초 전국단위의 득표율에 비례하도록 타 정당의 의석 추가 배분(보정의석)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해 전국적으로 5% 이상 득표를 하거나, 소선거구 선거에서 3석 이상을 얻어야 함.
일 본	참의원	242	• 32개 소선거구 • 13개 중선거구 (총 41명 선출) • 전국단일선거구 (총 48명 선출)	혼합제	병립형 다수대표제(MMM) • 73명: 32개 소선거구(32명) 및 13개 중선거구(41명)에서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 • 48명: 전국단일선거구에서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 ※총 242명의 의원을 3년 마다 1/2씩 개선하므로 매번 선거를 할 때는 선거구 의석의 1/2만(121명)을 선출하게 됨. 이런 이유로 2인 선거구의 경우 1명을 선출하는 사례가 발생	비례대표제는 동트 방식으로 의석 배분
	중의원	465	• 289개 소선거구 • 11개 중대선거구 (6-28명 선출)	혼합제	병립형 다수대표제(MMM) • 단순다수대표제(289명)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76명)	• 비례대표제는 동트 방식으로 의석 배분 • 중의원명부에서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의원으로 중복입후보한 경우 지역구에서 10% 이상 득표하고, 석패율이 큰 순위에 따라 당선인 결정 ※석패율: 해당 소선거구의 당선자 득표수에 대한 낙선자의 득표비율[(낙선후보자의 득표수/당선후보자의 득표수)×100]
스페인	상원	266	59개 중선거구 (1-4명 선출)	다수대표제	• 59개 선거구에서 단순다수대표제로 208명 선출 • 58명은 17개 지방자치커뮤니티 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	-
	하원	350	• 50개 중대선거구 (총 348명 선출)	비례대표제	폐쇄형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50개 선거구에 최소 2명씩 배정하고 나머지 의석은 인구	의석은 동트 방식으로 배분

국가명	명칭	의석수	선거구	대표제도	의원선출 방식	의석배분 방식
			• 2개 소선거구		비례로 배정 • 소선거구는 Ceuta, Melilla에 각 1명씩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	
스웨덴	-	349	• 29개 중대선거구 (2-34명, 총 310명) • 전국단일선거구 (총 39명)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 선거권자는 정당을 선택하거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 명부에 후보에 대한 선호를 표시할 수 있음. ※310명은 선거구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선출되며, 39명은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선출됨.	의석은 수정 생 라게 방식으로 배분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해 전국 4% 이상 또는 선거구내 12% 이상 득표해야 함.
스위스	상원	46	• 20개 중선거구 • 6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단순다수대표제 ※20개 선거구(칸톤)에서 2석씩. 6개 선거구(칸톤)에서 1석 씩 선출	-
	하원	200	• 20개 중선거구 (총 194명 선출) • 6개 소선거구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선거권자는 정당을 선택하거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 명부에 후보에 대한 선호를 표시할 수 있음. • 6개 소선거구에서는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	의석은 하겐바흐-비숍 방식으로 배분
캐나다	상원	105	-	임명제	연방총리가 추천한 인물을 총독이 형식적으로 임명 (형식적인 기관으로 존재)	-
	하원	338	338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단순다수대표제	-
호 주	상원	76	• 6개(주별) 대선거구 (각 12명 선출) • 2개(준주별) 중선거구 (각 2명 선출)	비례대표제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 • 한 정당에게 (일괄)투표하거나 출마한 후보자 수만큼 우선순위를 부여해 투표할 수 있음.	• 드룹 기준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 (드룹기준수 = $\frac{\text{총유효투표수}}{\text{의석수}+1}$ +1) • 당선된 후보자의 남아있는 모든 잉여표(기준수를 초과한 표)를 제2선호에 따라 남은 후보자들에게 이양 • 기준수를 넘는 후보가 없다면 제1선호표를 가장 적게 받은 후보를 제거하면서 그의 표를 제2선호 표시에 따라 남은 후보들에게 이양해 의원정수에 이를 때까지 위 과정을 반복

국가명	명칭	의석수	선거구	대표제도	의원선출 방식	의석배분 방식
	하원	150	150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선호투표제(=대안투표제) • 출마한 후보자 수만큼 우선순위를 부여해 투표할 수 있음.	• 유효투표총수 과반수 이상의 제1순위표를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 • 제1순위표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어느 한 후보자의 유효투표총수의 득표수가 과반수 이상에 달할 때까지 최하위득표자의 표를 해체하여 그 표에 기재된 차순위후보자에게 이양 •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나올 때 까지 위 과정을 반복 • 최후로 후보자가 2명만 남는 경우 그 중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오스트리아	상원	61	9개 중대선거구 (3-12명 선출)	간접선거	지방의회에서 의석을 획득한 정당의 비율에 따라 간접선출	-
	하원	183	• 주: 9개 대선거구 • 지역: 43개 중대선거구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후보자명부는 지역(local), 주(regional), 전국(national) 3단계로 작성되고, • 선거권자는 정당을 선택하거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명부에 후보에 대한 선호를 표시 할 수 있음.	• 지역, 주단위에서 헤어 방식을 이용한 의석배분 후 • 연방단위에서 동트 방식으로 각 정당의 최종 의석 배분 ※전국선거구에서 4% 이상 획득해야 연방 의석 배분 가능
벨기에	상원	60	-	간접선거	언어권별 지역커뮤니티 대표로 구성	-
	하원	150	11개 중대선거구 (4-24명 선출)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선거권자는 정당을 선택하거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명부에 후보에 대한 선호를 표시 할 수 있음. ※선호투표는 같은 정당 내에서만 가능하며 정당 간 분할투표는 금지	의석은 동트 방식으로 배분
칠 레	상원	50	15개 중선거구 (2-5명 선출)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선거권자는 정당을 선택하거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명부에 후보에 대한 선호를 표시 할 수 있음. ※4년 마다 의원정수 1/2씩 개선	의석은 동트 방식으로 배분
	하원	155	28개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의석은 동트 방식으로 배분

국가명	명칭	의석수	선거구	대표제도	의원선출 방식	의석배분 방식
			중대선거구 (3-8명 선출)		• 선거권자는 정당을 선택하거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명부에 후보에 대한 선호를 표시 할 수 있음.	
체 코	상원	81	81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절대다수대표제 (결선투표제 실시)	• 1차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을 획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 6일후 2차 선거 실시
	하원	200	14개 대선거구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선거권자는 정당을 선택하거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명부에 후보에 대한 (최대 4명까지)선호를 표시 할 수 있음.	• 의석은 동트 방식으로 배분 ※정당은 최소 5% 이상, 2개 정당 연합시 10%, 3개 연합시 15%, 4개 이상 연합시 20% 이상 득표해야 함.
덴마크	-	179	• 10개 대선거구 (총 135명 선출) • 전국단일선거구 (총 40명 선출) • 2개 소선거구 (각 2명 선출)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선거권자는 정당을 선택하거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명부에 후보에 대한 선호를 표시 할 수 있음. ※각 2석씩 배정된 Faroe와 Greenland는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	• 의석은 동트 방식으로 배분 • 10개 대선거구에서 정당득표율에 따라 135석을 배분한 후, • 전국단위에서 각 정당득표율에 따라 40석을 다시 배분 ※전국단위 의석을 할당받기 위해 1개 선거구에서 최소 1석을 얻었거나 전국기준 2% 이상 득표를 했거나 2개 선거구에서 의석당 평균득표 이상을 획득해야 함.
에스토니아	-	101	12개 대선거구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선거권자는 정당을 선택하거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명부에 후보에 대한 선호를 표시 할 수 있음. ※총의석은 13personal mandates, 66district mandates, 22compensation mandates로 구성(한 선거구내 의석도 3단계로 구분)	• 1단계(personal mandates) 한 선거구내 정당명부 중 후보자별로 기준수(쿼터) 이상 득표 시 당선 • 2단계(district mandates) 한 선거구내 각 정당의 유효투표총수가 기준수 이상이면 정당별로 의석 배분 • 3단계(compensation mandates) 전국득표수 기준으로 정당별 의석 수를 동트 방식으로 배분 ※기준수: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총수를 의석수로 나눈 수로 선거구마다 달라짐. ※정당은 선거구에서 최소 5% 이상 득표해야 함.
핀란드	-	200	• 14개 대선거구 (6-33명 선출) • 1개 소선거구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선거권자는 정당을 선택하거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명부에 후보에 대한 선호를 표시 할 수 있음.	의석은 동트 방식으로 배분

국가명	명칭	의석수	선거구	대표제도	의원선출 방식	의석배분 방식
					※1석 배정된 Aland지역에서는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	
그리스	-	300	• 48개 중대선거구 (총 280명 선출) • 전국단일선거구 (총 12명 선출) • 8개 소선거구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선거권자는 정당을 선택하거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 명부에 후보에 대한 선호를 표시 할 수 있음. ※8개 소선거구에서는 단순다수 대표제로 선출	의석은 하겐바흐-비숍 방식으로 배분
헝가리	-	199	• 106개 소선거구 • 전국단일선거구 (총 93명 선출)	혼합제	병립형 다수대표제(MMM) • 단순다수대표제(106명)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93명)	비례대표제 의석은 동트 방식으로 배분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해 개별정당은 전국적으로 5%, 2개 정당 연합시 10%, 3개 이상 정당연합시 15% 이상 득표해야 함.
아이슬란드	-	63	• 6-7개 대선거구 (10-11명 선출, 총 54명 선출) • 전국단일선거구 (총 9명 선출)	비례대표제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의석은 동트 방식으로 배분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해 전국적으로 5% 이상 득표해야 함.
아일랜드	상원	60	-	간접선거	선거인단 선출(43명)+아일랜드 국립대학(3명)+더블린대학(3명)+수상임명(11명)	-
	하원	158	40개 중대선거구 (3-5명 선출)	비례대표제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 • 한 정당에게 (일괄)투표하거나 출마한 후보자 수만큼 우선순위를 부여해 투표할 수 있음.	• 드룹기준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 (드룹기준수 = $\frac{\text{총유효투표수}}{\text{의석수}+1}$ +1) • 당선된 후보자의 남아있는 모든 잉여표(기준수를 초과한 표)를 제2선호에 따라 남은 후보자들에게 이양 • 기준수를 넘는 후보가 없다면 제1선호표를 가장 적게 받은 후보를 제거하면서 그의 표를 제2선호 표시에 따라 남은 후보들에게 이양해 의원정수에 이를 때까지 위 과정을 반복
이스라엘	-	120	전국단일선거구	비례대표제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의석은 동트 방식으로 배분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해 최소 2% 이상 득표를 해야 함.
이탈	상원	321	• 116개	혼합제	병립형 다수대표제(MMM)	비례대표제 의석은

국가명	명칭	의석수	선거구	대표제도	의원선출 방식	의석배분 방식
리아			소선거구 • 20개 중대선거구 • 4개 재외국민 중선거구		• 309명=단순다수대표제(116명)+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93명) • 6명: 해외선거구) 4개의 권역으로 나누되 1개의 선거구로 하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 • 6명: 전직대통령 등 임명	헤어 방식으로 배분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해 개별정당은 각 선거구에서 3%, 정당 연합시 10% 이상 득표해야 함.
	하원	630	• 232개 소선거구 • 27개 중대선거구 • 4개 재외국민 중선거구	혼합제	병립형 다수대표제(MMM) • 618명=단순다수대표제(232)+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386명) • 12명: 해외선거구) 4개의 권역으로 나누되 1개의 선거구로 하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	비례대표제 의석은 헤어식으로 배분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해 개별정당은 유효투표총수의 3%, 정당 연합시 10% 이상 득표해야 함.
룩셈부르크	-	60	4개 대선거구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선거권자는 정당을 선택하거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 명부에 후보에 대한 선호를 표시 할 수 있음. ※남부 23명, 중부 21명, 북부 9명, 동부 7명	의석은 하겐바흐-비숍 방식으로 배분
라트비아	-	100	5개 대선거구 (13-32명 선출)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선거권자는 정당을 선택하거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 명부에 후보에 대한 선호를 표시할 수 있음.	의석은 생 라게 방식으로 배분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해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 얻어야 함.
리투아니아	-	141	• 71개 소선거구 • 전국단일선거구 (총 70명 선출)	혼합제	병립형 다수대표제(MMM) • (결선투표제)절대다수대표제(71명)+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70명)	• 절대다수대표제)1차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한 사람이 없으면, 2주 후 1, 2위에 오른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2차 선거 실시 • 비례대표)의석은 헤어방식으로 배분
멕시코	상원	128	• 32개 중선거구 (각 3명 선출) • 전국단일선거구 (총 32명 선출)	혼합제	병립형 다수대표제(MMM) • 변형 다수대표제(96명)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32명)	• 다수대표제)32개 중선거구는 31개 주와 1개 연방지구로 구성 • 각 선거구별로 할당된 3석 가운데 2석은 다수득표자순으로 2석을 먼저 할당하고, • 나머지 1석은 선거구(주, 연방지구)에서 2위로 다수 득표를 한 정당의 후보자에게 배분
	하원	500	• 300개 소선거구		병립형 다수대표제(MMM) • 단순다수대표제(300명)	• 비례대표제)전국선거구는 정당투표 결과로 정당별 의석을

국가명	명칭	의석수	선거구	대표제도	의원선출 방식	의석배분 방식
			• 전국단일선거구 (총 200명 선출)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200명) ※어느 한 정당도 300석 이상을 차지할 수 없음.	배분하되, 각 정당은 전국단일명부가 아니라 권역명부를 제출하고 정당에 할당된 전국 의석범위 내에서 권역명부 당선자를 결정함. • 헤어 방식으로 의석배분 ※권역명부는 5개 주에서 40개 선거구별로 작성됨.
노르웨이	-	169	19개 중대선거구 (3-17명 선출)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선거권자는 정당을 선택하거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 명부에 후보에 대한 선호를 표시할 수 있음. ※총 169명은 모두 선거구에서 선출되지만, 150명은 선거구 대표로 선출되며, 19명(각 행정구역별 1명)은 전국대표로 선출됨.	의석은 수정 생 라게 방식으로 배분
네덜란드	상원	75	-	간접선거	12개 지방의회에서 할당된 의석수만큼 선출	-
	하원	150	전국단일선거구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선거권자는 정당을 선택하거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 명부에 후보에 대한 선호를 표시할 수 있음. ※20개 선거구가 존재하지만 투표구를 나누는 행정적 기능에 그침. 정당들도 모든 선거구에 동일한 명부를 제출	• 1차)의석배분은 전국쿼터(각 정당후보자들이 전국적으로 얻은 득표율/150석)를 사용하여 최고득표를 한 후보자순으로 이루어짐. • 2차)1차 의석배분에서 남은 의석은 동트 방식으로 배분 • 정당명부는 선거구별로 작성되지만, 의석의 배분은 전국단위로 이루어짐. ※의석배분은 전국수준에서 유효투표총수의 0.67% 이상을 얻은 정당에게 배분
뉴질랜드	-	120	• 70개 소선거구 • 전국단일선거구 (총 50명 선출)	혼합제	연동형 비례대표제(MMP) • 단순다수대표제(70명)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50명) ※70개 소선거구 중 7개는 마오리 지역에 할당	• 정당이 배정받은 총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인수를 뺀 나머지 수만큼 명부순위에 따라 당선인 결정 • 지역구 당선인이 해당 정당의 총의석수보다 많을 경우 초과의석 발생 ※의석배분을 위해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이나 지역구에서 1석 이상 의석을 확보해야 함.
폴란드	상원	100	100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단순다수대표제	-

국가명	명칭	의석수	선거구	대표제도	의원선출 방식	의석배분 방식
	하원	460	41개 대선거구 (7-19명 선출)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선거권자는 정당을 선택하거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 명부에 후보에 대한 선호를 표시할 수 있음.	의석은 수정 생라그 방식으로 배분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해 개별정당 5% 이상, 정당연합시 8% 이상 득표해야 함.
포르투갈	-	230	• 22개 대선거구 (총 226명 선출) • 2개 중선거구 (각 2석 선출)	비례대표제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해외선거구는 유럽 1개 선거구와 그 외 지역을 1개의 선거구로 하여 각 2명씩 총 4명을 선출함.	의석은 동트 방식으로 배분
슬로바키아	-	150	전국단일선거구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선거권자는 하나의 명부에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 4번째 선호하는 후보까지 투표를 할 수 있음.	의석은 하겐바흐-비숍식으로 배분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해 5% 이상 득표해야 함.
슬로베니아	상원	40		간접선거	이익집단별로 배분. ※지방이익집단 22석, 비상업활동 단체 6석, 고용주 4석, 고용인 4석, 농민/기능직/전문직 4석 등에 배분	-
	하원	90	• 8개 대선거구 (각 11명 선출) • 2개 소선거구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선거권자는 정당을 선택하거나 정당이 작성한 각 후보자 명부에 후보에 대한 선호를 표시할 수 있음. ※소선거구는 헝가리안, 이탈리안 커뮤니티를 말하며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	의석은 동트 방식으로 배분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해 4% 이상 득표해야 함.
터 키	-	600	79개 중대선거구	비례대표제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의석은 동트 방식으로 배분 ※의석배분을 위한 요건 정당이 A)최소 절반 이상의 지역과 1/3의 구에서 완전히 조직되었을 때, B)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후보를 지명했을 때, C)전국구 투표에서 10% 이상 득표하고, D)유효득표가 쿼터를 넘었을 때, 그 정당 후보자는 당선이 확정됨.

출처: IPU. PARLINE DATABASE
https://data.ipu.org/ (검색일 2019.3.27.)

<표 1-9> 각국의 선거원칙에 관한 헌법규정

국가	내용	법조문
미 국	간접선거(선거인단선출규정-대통령)	제2장 제1조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수정헌법 제12·15·17·19·24·26조
독 일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	제38조
프랑스	보통, 평등, 비밀선거	제3조
	하원: 직접선거, 상원: 간접선거	제24조
일 본	보통, 비밀선거	제15조
스페인	보통, 자유, 평등, 직접, 비밀선거	제68·69조
스위스	보통, 평등선거	제136조
호 주	직접선거	제7조, 제24조
아르헨티나	보통, 평등, 비밀, 의무선거	제37조
오스트리아	평등, 직접, 자유, 비밀, 보통선거	제26조
	평등, 직접, 자유, 비밀, 보통, 의무선거	제60조
벨기에	보통, 직접, 평등, 비밀, 의무선거	제61·62조
브라질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의무선거	제14조
중 국	보통, 평등선거	제34조
체 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제18조
그리스	직접, 보통, 비밀, 의무선거	제51조
아일랜드	직접, 비밀선거	제12조
이탈리아	보통, 평등, 자유, 비밀, 의무선거	제48조
	하원·상원: 보통·직접선거	제56·58조
러시아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제81조
대 만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제129조
태 국	의무선거	제68조
	직접, 비밀선거	제104조
터 키	자유, 평등, 비밀, 직접, 보통선거	제67조
	의무선거	제175조
피 지	비밀선거	제36조

제2절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기관을 선거관리기관(EMB: Electoral Management Bodies)[15]이라고 하며, 후보자 추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선거권자 등록, 투표·개표에 관한 사무 및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것을 의미함.
- 우리나라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과정을 모두 처리하는 기관도 있고(독일, 호주 등),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직접적인 선거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선거위원회는 정치자금 등만을 규제하기도 함.
- 또한 각국의 선거관리기관도 헌법이나 선거법에 규정되어 독립된 국가도 있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안에 한 부분으로 존재하기도 함.

1. 영 국

가. 개 요

- 선거위원회는 독립기구로서 2000년 11월 설립
- 주요기능 및 역할은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및 「정당·선거법(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s Act, 2009)」에 규정되어 있음.
- 선거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선거관리를 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15) 선거 관련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은 다양한 형태와 규모를 띄고 있으며, 'Election Commission(선거위원회), Department of Elections(선거국), Electoral Council(선거위원회), Election Unit(선거과) 또는 Election Board(선거위원회)' 등의 명칭을 사용함. '선거관리기관' 또는 'EMB'라는 용어는 기관 체계가 어떻든지 간에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칭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름임(IDEA. 2006. Electoral Management Design: The International IDEA Handbook. p.5).
https://www.idea.int/publications/catalogue/electoral-management-design-international-idea-handbook-2006?lang=en (검색일 2019.4.28.)

- 지방정부에서 임명한 선거관리관·투표관리관·서기와 선거인명부등록관이 선거관리를 담당

나. 선거위원회(Electoral Commission)[16]

- 선거위원회는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적인 법률기관으로 위원(장)은 국왕이 임명함(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제1,3조).
  - 선거위원회 위원은 9, 1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함.
  - 위원들의 임기는 10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되 연임 가능함.
  - 정당추천위원은 4명이며, 등록된 정당 중 추천 당시 다수 의석 순으로 3개 정당의 대표자가 추천하며, 같은 정당에서 2명 이상 추천할 수 없음(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제3A조).
- 선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자(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제3조제4항)
  - 등록된 정당의 당원
  - (최근 5년간)등록된 정당이나 정당 유사 단체 회계부서의 간부 또는 직원
  - (최근 5년간)관련 선출직 공직자(하원의원, 유럽의회의원, 스코틀랜드·웨일즈·북아일랜드 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시장, 경찰 및 범죄 예방위원 등)
- 위원회의 권한·임무(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제5~13조)

  ※ 실제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관(Returning Officer)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없음.
  -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보고서 발간, 선거 및 정치적 문제의 검토
  - 선거 관련 법규 개정(규칙의 제정 등)에 관한 자문
  - 선거제도 및 민주주의제도 교육
  - 선거, 국민투표 참관 접수 및 업무지침 작성
  - 선거법 개정 및 선거 관련 단체 자문
  - 정당등록에 관한 사무
  - 정당계좌, 선거비용지출 및 기부금 등에 관한 규제, 제3자의 정치자금에 관한 규제

16) 영국선거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__data/assets/pdf_file/0003/164109/intro-candidate.pdf (검색일 2019.5.30.)

- 정당 후보자의 회계 수입 지출 사항 발간
- 정당 정치방송에 관한 자문
- 국민투표 및 주민투표의 감독, 국민투표단체 및 주민투표운동단체의 등록

다. 선거관리관(Returning Officers)(1983년 국민대표법 제23~30조)[17]

- 후보자등록, 투표, 개표 등 선거관리사무는 선거구별로 임명되는 선거관리관이 담당
-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서는 집행관·시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스코틀랜드에서는 수석집행관 또는 행정관, 북아일랜드에서는 수석선거관이 모든 선거구의 선거관리관이 됨.
- 선거소집령의 수리, 후보자 추천서의 제출 장소 및 일시와 선거일의 고시(선거의 공고), 후보자추천서의 수리, 우편투표용지(postal ballot paper)의 송부, 투표안내문(official pollcard)의 송부, 개표사무 및 당선인의 결정, 선거소집령의 회부(선거결과의 보고), 기타 선거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
- 해당 지역의 시장 또는 의장이 의례적(ceremonial) 선거관리관으로서 선거소집령을 받으며, 실질적인 임무는 직무대행선거관리관(Acting Returning Officer)이 담당

라. 투표관리관(Presiding Officer) 및 서기(Clerk)(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26호)

- 선거관리관이 투표소별로 임명하며, 투표소에서 투표절차를 관리함.
- 해당 선거 또는 해당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에게 고용된 자나 후보자를 위하여 고용된 자는 임명될 수 없음.

---

17) 영국선거위원회 홈페이지. ‘Cabinet Office and the Electoral Commission, Part A-(Acting) Returning Officer role and Responsibilities published September 2018; Revised November 2018.’ p.11.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__data/assets/pdf_file/0009/175365/UKPE-Part-A-Returning-Officer-role-and-responsibilities.pdf (검색일 2019.5.30.)

2. 미 국

- 선거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후보자 등록을 받고, 선거운동을 관리하며 투표 및 개표를 통해 당선인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미국은 연방차원의 선거관리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각 주가 주법에 따라 실시하므로 각 주별 선거관리기관의 조직, 권한 등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
- 단, 연방선거사무 가운데 유일하게 연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있다면, 대통령선거에서의 선거인단이 12월에 각 주의 수도에서 투표하여 워싱턴 DC로 송부한 투표지를 연방정부 상·하원합동회의에서 선거 다음해인 1월에 개표하여 정·부통령 당선인을 결정·공표하는 것임.[18]
- 연방정부의 선거관리 구조가 확대되고 절차가 복잡해져 선거관리의 범위가 단순한 투·개표 범위를 벗어나 주정부가 이를 처리하기 어렵거나, 주정부가 이를 관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사무의 처리를 연방정부가 직접 담당하게 되면서 연방차원의 선거관리기관인 연방선거위원회(FEC, 1975)와 선거지원위원회(EAC, 2003)가 설립됨.
- 연방선거위원회는 주로 정치자금 정보공개, 기부제한 금지와 같은 법, 규정 등 시행과 대통령선거의 공적자금을 감독하는 역할을 함.

가. 연방 선거관리기관

1) 연방선거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 FEC)(연방선거운동법 제30106조)[19]

- 워터게이트사건을 계기로 정치자금의 규제 필요성을 통감한 연방정부는 이를 규제하기 위해 1975년 연방차원에서 최초의 선거관리기관인 연방선거위원회를 설

18)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Electoral_College (검색일 2019.7.23.)

19) 연방선거운동법 제52조 투표와 선거 제301장 연방선거운동 제30106조(연방선거위원회), 설치, 행정, 권한의 위임, 회의, 업무규칙, 사무국장 및 고문, 제30107조(선거위원회의 권한) 권한, 사법명령, 정보공개에 대한 민사상 의무 등, 제30108조(자문의견), 제30109조(시행강조), 제30110조(사법심사), 제30111조(행정적 규정) 등 참조

치하고 이 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세 가지 법률의 집행을 담당케 함.

- 연방선거운동법(Federal Election Campaign Finance Act, 1971)
- 대통령예비선거보조기금계정법(Presidential Primary Matching Payment Account Act, 1992)
- 대통령선거운동기금법(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Act, 1996)

- 「연방선거운동법」은 연방법 제52편 투표와 선거(Voting And Elections)편에 규정된 것으로 연방선거직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수를 규제하는 법임.
- 「대통령선거운동기금법」은 연방법 제26편 내국세법 편에 규정된 것으로 대통령 후보자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 및 본선거에 참여하는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보조금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임.
- 같은 내국세법 편에 규정된 「대통령예비선거보조기금계정법」은 예비선거 참여 후보자에게 모금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보조금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음.
- 연방선거위원회는 독립규제기관(independent regulatory agency)으로써 연방선거직공무원·후보자(대통령·부통령과 상·하원의원 및 그 후보자) 및 정당과 정치단체[소위 PAC(Political Action Committee)이라 불리는 정치활동위원회[20]]의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함.

(가) 위원회의 구성[21]

- 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상원의 조언과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
- 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동일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2명의 위원이 임기를 마치는 형식으로 3명 이상의 위원이 동일 정당에 속할 수 없음. 또한, 다른 직업을 겸임할 수 없으며 임명 후 90일 이후에는 모든 직에 사직해야함.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매년 위원 중에서 교대로 지명되며 동일 소속정당에서 선출이 금지되고,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그 임기동안 2회 이상 지명되지 않음. 단,

20) 기업, 노조, 이익단체들의 경우 정치활동위원회(PAC)를 구성하여 연방선거위원회에 신고하고 활동할 수 있으며, 모든 수입과 지출 금액에 대한 제한 없지만 반드시 회계보고를 해야 함.
Wikipedia. Political action committee.
https://en.wikipedia.org/wiki/Political_action_committee (검색일 2019.7.16.)

21) Wikipedia. Federal Election Commission.
https://en.wikipedia.org/wiki/Federal_Election_Commission (검색일 2019.7.24.)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6년을 초과하여 위원으로 근무한 경우 한 번 더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지정될 수 있음.

(나) 위원회의 권한(연방선거운동법 제30107조)

- 일반적 감독권: 위원회는 연방선거운동법에 규정된 각종 규제권 및 대통령선거운동기금제도 전반에 걸친 감독권한이 있음.
- 법집행권: 위원회는 연방선거운동법 및 대통령선거운동기금법을 집행하고 법령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청문을 통하여 해당 위반을 교정 또는 방지함과 동시에 소송의 제기, 사법당국에 부의, 그 공표를 할 수 있음.
- 규정제정: 위원회는 연방선거운동법 및 대통령선거운동기금법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음.
- 입법권고권: 위원회는 연방의회 또는 연방의회의원이 요구한 입법권고 또는 입법에 대한 견해를 대통령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그 등본을 해당 권고 등을 요구한 의회 또는 의원에게 송부할 수 있음.
-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 및 공개

2) 선거지원위원회(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EAC)[22]

- 선거지원위원회는 2000년 대통령선거시 플로리다주 재검표 사태로 정치자금규제 외에 연방정부가 각 주정부의 선거관리에 관여하기 위해 「투표지원법(Help America Vote Act, 2002: HAVA)」에 의해 설립한 정부독립기관으로서 선거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정보센터역할을 담당하며 주 및 지방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선거관리 지침을 제공하는 등 자문역할을 담당함.
- 2000년 대통령선거가 종료되고 몇 주일이 지나도록 부시와 고어의 득표수를 계산해 내지 못하는 주정부의 투·개표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연방정부는 2002년 선거개혁을 위한 조치를 단행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선거인명부 관리 및 투·개표시스템의 개선임.

---

22) Wikipedia.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https://en.wikipedia.org/wiki/Election_Assistance_Commission (검색일 2019.7.25.)

- 이를 위하여 연방정부는 「투표지원법」을 제정해 각 주정부로 하여금 선거인명부 관리의 전산화와 투·개표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며, 그 총괄기관으로 선거지원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함.
  - 펀치카드 투표기를 레버기반의 투표시스템으로 교체
  - 연방선거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투표지원위원회의 설립
  - 연방선거의 관리를 위해 각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따라야 할 최소한의 선거관리표준 마련
- 선거지원위원회는 노후된 투표장비의 매입 및 신규 투표장비 구입 지원을 위한 연방예산의 집행과 투표장비에 관한 표준 설정 및 성능 인증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함.

(가) 위원회의 구성

- 선거지원위원회는 4명으로 구성하고 임기 4년으로 1회에 한해 재임가능 함. 상·하원의 다수당 대표 및 원내총무, 소수당 대표 및 원내총무 추천에 따라 상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동일 정당에서 2명을 초과하여 선출할 수 없으며 선거전문가로 구성함.
- 연차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일반 청문회를 개최해 공개운영을 원칙으로 함.

(나) 위원회의 주요 임무

- 연방선거의 관리에 관한 기술적인 지침 작성, 제도연구 및 보고서 작성
- 연방선거의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사무절차, 기술과 관련한 정보 및 지침을 제공하고 선거관리 인재, 재난에 대한 준비 및 극복에 관한 직원교육 실시
- 「투표지원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각 주에 자금지원
- 선거관리 기술 발전 및 새로운 기술의 테스트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급
- 젊은 선거권자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자금 지원
- 투표제도의 시험운영 및 인증을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 개발
- 「투표자등록법(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1993)」에 따라 개발된 투표자 우편등록 양식 관리, 투표자등록법의 효과에 대해 2년에 한번 의회에 보고, 투표자등록법에 따른 주정부의 역할에 대해 정보 제공
- 선거지원위원회가 지급한 연방기금을 수령하는 자에 대한 회계감사

나. 주 및 지방 선거관리기관

1) 주 선거관리기관[23]

주 선거관리 유형 (2016년 6월 기준)		
주무장관 (24개주)	앨라바마,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아이다호, 아이오와, 캔자스,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미시시피, 미주리, 몬테나,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멕시코,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리건, 버몬트, 사우스다코타, 워싱턴, 와이오밍	선거 선출
부지사 (2개주)	알래스카, 유타	선거 선출
의회 (입법부) 선정 (3개주)	메인, 뉴햄프셔, 테네시	의회임명
이사회, 위원회 (감독)(9개주)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뉴욕,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위스콘신	주선거 위원회임명
공무원, 이사회, 위원회통합 (7개주)	아칸소, 조지아, 인디애나, 켄터키, 로드아일랜드, 웨스트버지니아, 미시건	이사회, 선거선출
주지사 선정 (5개주)	델라웨어, 플로리다,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주지사 임명

- 주 선거위원회는 준사법 감독위원회로 모든 회의는 공개되며, 3명 내지 5명으로 구성되는 주가 많으며 임기는 통상 2년 이상 4년 이하임.
- 주 선거관리기관은 모든 선거관리 책임이 있으며 앨라배마 주를 포함한 24개주가 주무장관(Secretary of State)이 주 단위의 선거관리기관을 구성하고 있지만 주 선거위원회(State Board of Elections), 부지사(Lieutenant Governor)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도 있고, 의회선정 공무원, 이사회나 위원회가 감독하거나 통합적인 관리형태 등 다양함.
- 주 수준의 최고 선거관리기관이 주무장관 등 독임제 기관인 경우에는 그 하부에 주선거위원회, 주선거조사위원회(State Board of Canvassers: 미시건주[24])) 등 합

23) NCSL(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Election Administration at State and Local Levels’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election-administration-at-state-and-local-levels.aspx (검색일 2019.7.8.)

24) 미시간 주정부 홈페이지. ‘History and Duties.’ https://www.michigan.gov/sos/0,4670,7-127-1633_41221-141451--,00.html (검색일 2019.7.8.)

의제위원회가 있고, 주무장관 등의 지휘·감독 하에 각각 법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주도 있음.

- 선거위원회, 이사회 및 선거주무장관의 업무는 다양함.
  로드 아일랜드 주의 경우[25]는
  - 주무장관은 투표지 관련업무 담당, 우편투표 용지발송, 후보자 검증·확인, 투표장비 조달·감독함.
  - 반면에 주 선거위원회는 선거전 장비·용구용품 구역 선별 및 장비포장, 선거당일 기술 문제 해결 등 선거결과를 작성함.
  - 주정부의 역할은 전체 선거인등록 데이터관리, 교육과정 자료, 장비시험, 인증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함.

2) 지방 선거관리기관[26]

- 지방 선거는 카운티 선거위원회(county board of election), 카운티 이사회(county board of supervisors)가 관리하는 주와 카운티 회계관(county auditor), 카운티 읍·면·시 서기(county clerk, town clerk) 등이 관리하는 형태의 주가 있음.
  - 미국 지방 단위 선거의 경우 1만 개 이상의 선거구역으로 작은 구역은 몇 백 명의 선거권자에서 큰 선거구역의 선거권자는 470만 명이 되기도 함.
- 카운티 선거위원회의 구성
  - 카운티 서기 또는 카운티 회계검사관이 위원장이 되고, 2개 주요정당에 의해 추천된 자를 주무장관 또는 주 선거위원회가 임명하는 주가 많음.
  - 카운티 선거위원회는 통상 3명 내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임기는 2년 또는 4년임.
  - 델라웨어 주 카운티 선거위원회[27]는 Delaware Code, Title 15에 따라 주 선거

---

25) NCSL. ‘Election Administration at the State Level’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election-administration-at-state-and-local-levels.aspx (검색일 2019.7.16.)

26) NCSL. ‘Election Administration at the Local Level.’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election-administration-at-state-and-local-levels.aspx (검색일 2019.7.16.)

27) JUSTIA US Law. ‘2017 Delaware Code. Title 15. Chapter 2. §211. County directors, deputy county directors;

위원회에서 지명된 감독관과 부감독관이 관리하고 위원은 4명으로 구성되며, 의장인 서기, 주 선거위원회에서 임명한 보안관, 카운티 단위의 정당(민주당, 공화당)에서 2명 추천으로 함.

- 펜실베이니아 주 카운티 선거위원회[28]는 카운티 협의회에 의해 2년 임기로 임명된 3명의 위원으로 구성
- 캔터키 주의 경우는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서기가 의장이 되며 보안관과 2명의 위원을 주 선거위원회가 임명함.
- 일리노이 주[29] 쿡(cook)카운티 선거위원회는 의장인 서기, 카운티변호인, 순회법원 서기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청원과 이의신청에 대한 업무를 추진함.

- 네브래스카 주를 포함한 22개 주[30]에서는 2만 미만의 선거구의 경우 선출된 개인(a single individual)이 관리하며, 2만에서 10만 미만의 경우는 카운티 위원회에서 임명된 공무원이, 10만 이상의 카운티에서는 주지사가 임명한 공무원이 관리함.
  - 큰 관할 구역의 선거구에서는 선거관리 책임자 또는 선임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 카운티에서는 카운티 서기, 기록관, 감사관, 평가사, 감사관이 선거를 관리하고 카운티의 다른 업무도 겸임함.
- 뉴욕 주를 포함한 10개 주에서는 선거관리의 원칙적 책임은 선거이사회(board of election)가 관리함.
  - 선거이사회는 통상적인 지역단위(뉴욕,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에서 주 단위(델라웨어,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테네시) 또는 두 가지를 병행한 형태(켄터키 주)로 본질적으로는 초당적으로 운영
- 앨라배마 주를 포함한 18개 주[31]에서는 둘 이상의 사무소간에 선거관리 업무를

---

powers, duties, qualifications, compensation.'
https://law.justia.com/codes/delaware/2017/title-15/chapter-2/section-211/ (검색일 2019.7.16.)

28) Delaware County Pennsulvania. 'Election Board.'
http://www.delcopa.gov/electionsbureau/delcoboardelections.html (검색일 2019.7.16.)

29) Cook County Clerk's Office. 'Electoral Board.'
https://www.cookcountyclerk.com/service/electoral-board (검색일 2019.7.3.)

30) 22개 주: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플로리다,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아이오와, 미네소타,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뉴멕시코, 노스다코타, 오리건, 사우스다코타, 유타, 버몬트,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

31) 18개 주: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코네티컷, 조지아,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메인, 매사추세츠, 미시건, 미시시피, 네바다, 뉴햄프셔, 뉴저지, 뉴멕시코,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버지니아

분담관리

- 선거관리 업무를 지역 단위에서 하나 이상의 사무소로 나누어 관리하는 경우 가장 일반적인 구분은 선거인등록과 실제 절차사무 관리임.
- 알칸사스 주의 경우 선출된 카운티 공무원(Clerk)이 부재자 투표 및 사전 투표를 포함해 등록 및 투표의 절차선거를 운영하고, 3명의 카운티 이사회(2명은 과반수 및 소수당이 선정하고 1명은 주내의 다수당을 주 선거위원회가 선정)는 선거당일 투표소 물품 공급을 포함해 선거당일 절차를 처리하는 임무를 처리함.

● 투표구위원회 및 선거인명부 등록관(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12장 제12304, 12309조)[32]

- 투표구위원회
  - ·구 성: 4~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검사관)은 자원봉사자(검사관 추가보수 가능)
  - ·직 무: 투표 및 개표관리
- 선거인명부 등록관(카운티에서 작성)
  - ·선거일 전 각 투표구별 또는 수개 투표구를 합한 구역별로 선임
  - ·선거인명부등록 사무 취급

※ 선거인명부 등록을 위해 별도의 등록기관(Board of Registrars)를 설치하는 주도 있음.
- 앨라배마 주 매디슨 카운티 등록기관[33]은 3명으로 구성되며, 주지사·감사관·농업 및 산업 위원장이 독립적으로 4년 임기로 임명되고, 등록 및 명부확인 등 업무 처리함.

32)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Precinct Boards and Elections Officers.’ https://www.sos.ca.gov/elections/publications-and-resources/elections-officers-digest-2018/precinct/ (검색일 2019. 7.16.)

33) Madison County. Alabama. ‘Board of Register.’ https://www.madisoncountyvotes.com/your-elections-team/board-of-registrars/ (검색일 2019.7.16.)

3. 프랑스

가. 개 요

- 프랑스 선거관리기관은 선거 관리 및 감독의 주체와 권한이 여러 기관에 분산됨.
- 선거관리기관으로 투표감독위원회, 선거운동 감독 국가위원회, 선거운동 회계보고 및 정치자금 국가위원회, 시청각 최고위원회 등이 있음.

나. 선거관리기관의 지위

- 투표감독위원회(Commissions de contrôle des opérations de vote)
  - 「선거법」 제L85-1조에 따라 하원의원·도의원·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설치되는 비상설 관리기구
  - 인구 2만 이상의 코뮌(commune)[34]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복수로 설치됨.
  - 투표구 구성의 합법성, 투·개표 활동 및 수 집계 활동의 합법성, 선거권자·후보자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함.
- 선거운동 감독 국가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contrôle de la campagne electorale: CNCCEP)
  - 「2001년 3월 8일 no 2001-213 법규명령」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선거에 대한 비상설 감독 기구임.[35]
  -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모든 후보자들이 국가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1965년 대선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음.[36]

---

34) 코뮌(commune) 프랑스의 기초행정단위로서 18개의 광역행정단위(Region)에 2018년 기준 총 35,357개의 코뮌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코뮌의 평균주민수(median population)는 약 500명 수준이지만 주민수가 불과 10여명인 코뮌에서부터 파리시와 같이 200만 명이 넘는 코뮌까지 매우 다양한 인구와 면적을 가지고 있음. 프랑스의 코뮌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미국 및 캐나다의 municipality, 독일 및 스위스의 Gemeinde가 있으며 영국에는 정확하게 프랑스의 코뮌에 해당하는 행정단위가 없으나 도시지역에서는 district, 농어촌지역에서는 pariash가 프랑스의 코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짐.

35)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선거인 소집을 알리는 법규명령'이 발표된 다음 날 설치됨.

36) 「2001년 3월 8일 no 2001-213 법규명령」의 기원은 「1964년 3월 14일 no 64-231 법규명령」임. 1964년 법규명령에 근거하여 1965년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운동 감독 국가위원회'가 신설됨.
프랑스 정부 법률 사이트(선거운동 감독 국가위원회 보고서)

- 선거운동 회계보고 및 정치자금 국가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s comptes de campagnes et des financements politiques: CNCCFP)[37]
  - 「1990년 1월 15일 no 90-55 선거비용지출제한과 정치자금 투명성에 관한 법률」[38]에 따라 1990년 6월에 설립됨.[39]
  - 정당들의 정치활동 및 후보자들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규제·감독하는 기관임.
  - 헌법평의회(Conseil Constitutionnel)[40]는 선거운동 회계보고 및 정치자금 국가위원회가 행정적 권위를 갖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사원(Conseil d'Etat)에서는 독립적인 성격의 행정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음.
- 시청각 최고위원회(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 CSA)
  -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no 86-1067 법률」[41]에 근거하여 1989년 1월에 설립되었음.
  -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전반을 감독하는 합의제 형식의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미디어에 대한 규제 권한, 규칙제정권 및 준사법권을 가지고 있음.

---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26194366 (검색일 2019.6.6.)

37) 선거운동 회계보고 및 정치자금 국가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nccfp.fr/index.php?art=1 (검색일 2019.6.6.)

38) 「선거비용 제한 및 정치자금 투명성에 관한 법률 (la loi n° 90-55 du 15 janvier 1990 relative à la limitation des dépenses électorales et à la clarification du financement des activités politiques)」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341734 (검색일 2019.10.2.)

39) 「선거운동자금조달법(Loi organique n° 90-383 du 10 mai 1990 relative au financement de la campagne en vue de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t de celle des députés)」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342316&dateTexte=20190606 (검색일 2019.6.6.)

40) 헌법평의회(Conseil Constitutionnel)
- 9명(정수 외에 전직 대통령은 당연직 종신의원)으로 구성되는데, 9년 임기(3년마다 1/3씩 교체), 임명은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하원의장이, 3명은 상원의장이 임명,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의장은 가부동수인 때 결정권이 있음(헌법 제56조).
- 대통령선거(헌법 제58조), 의회의원선거(헌법 제59조), 국민투표(헌법 제60조) 사무와 관련해 다음 사항을 담당함.
  · 대통령선거가 적법하게 실시되는지 감독
  · 대통령선거에 관한 이의심사 및 선거결과 공표
  ·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선거의 분쟁의 적법성 여부 결정
  · 국민투표 실시의 적법성의 감독 및 국민투표 결과의 공표

41)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no 86-1067 법률」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LEGITEXT000006068930&dateTexte=20110921 (검색일 2019.6.6.)

다. 선거관리기관의 구성

- 투표감독위원회
  - 다음과 같이 3명으로 구성
    - ·위원장: 항소원장(Cour d'appel)이 지명하는 재판관 1명
    - ·항소원장이 지명하는 전·현직 재판관 또는 도의 사법보조위원 1명
    - ·도지사가 지명하는 공무원 1명(위원회 간사 역할 수행)
  - 동일한 방식으로 대리위원이 지명될 수 있음.
  - 투표소 별 1명 이상의 대리위원을 선임하거나, 동일한 대리위원이 다수의 투표소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선거운동 감독 국가위원회
  - 다음과 같이 5명으로 구성
    - ·위원장: 국사원(Conseil d'Etat) 부원장(vice-president)
    - ·파기원장(Cour de cassation)
    - ·회계감사원장(Cour des comptes)
  - 위 3명 외 최고행정법원, 파기원 또는 회계감사원의 전·현직 재판관 또는 회계심의원 중에서 2명을 추가로 지명함.
  - 이 밖에 내무부 대표자, 해외영토부 대표자 및 외무부 대표자 등 3명의 공무원이 위원회에 배석함.
- 선거운동 회계보고 및 정치자금 국가위원회(선거법 제52-14조)
  - 다음과 같이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해 선출됨. 위원들의 임기는 5년(연장 가능)
    - ·국사원(Conseil d'Etat) 부원장이 지명하는 국사원 판사 또는 명예판사 3명
    - ·대법원장(파기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또는 명예판사 3명
    - ·회계법원장이 지명하는 회계법원 위원 또는 명예위원 3명
  - 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총괄하는 사무총장(secretaire general) 및 사무총장 이하 3개의 부서(service)로 구성됨.
- 시청각 최고위원회
  - 시청각 최고위원회의 조직은 상임위원회(College), 사무국(Directeur general) 및 7개의 집행부(Direction)로 구성됨.

-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들이 조직을 이끌고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해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의회의장, 나머지 3명은 상원의장이 임명함. 2년마다 1/3씩 새로 구성되며, 위원 임기는 6년으로,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음.[42)]

라. 선거관리기관의 업무범위(공직선거관리)

- 투표감독위원회
  - 사법권을 행사하는 재판관에 의해 통솔되기 때문에 위원장, 구성원 및 대리인들은 감시권과 검사권을 행사하고 투표소에 자유롭게 출석할 수 있고, 선거록에 모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시장 및 투표소장은 투·개표에 관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문서를 공개해야 함.
  - 1, 2차 투표가 끝났을 때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도에 송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선거록에 투표상황을 종합 기재하는 권한이 있음.
- 선거운동 감독 국가위원회
  - 헌법평의회의 보조 기관으로서 초창기 주된 역할은 TV 등 미디어에서 모든 후보자들이 공정하게 보도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것이었으나, 시청각 최고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1988년 대선 이후로 그 임무가 확대되었음.
  - 현재는 선거벽보, 정견발표문, 투표지 등 대선관련 물품이 규격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함. 이에 따라 벽보 부착 및 선거관련 용품 배포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가짐.
- 시청각 최고위원회
  - 시청각 최고위원회는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과 관련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어, 선거기간 동안 텔레비전과 라디오 채널들이 후보자들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제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선거운동 회계보고 및 정치자금 국가위원회
  - 선거회계장부가 관련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없는지 감독하

42) 시청각최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sa.fr/Le-CSA/Presentation-du-Conseil/Le-College (검색일 2019.6.6.)

는 역할을 함.

- 선거일 이후 열 번째 금요일 18시 이전에 각 후보자 또는 1차 선거에서 제1순위 명부후보자는 공인된 회계사에 의해 작성된 회계보고서와 영수증, 견적서 및 그 외 후보자나 계좌를 통해서 지불된 비용 총액을 증명할 자료 등을 선거운동 회계보고 및 정치자금 국가위원회에 신고해야 함.
- 선거회계보고서를 승인하고 반대심의 과정을 거쳐 거부하거나 수정할 권한을 가짐. 제출된 회계보고서에 대해 위원회는 '승인', '수정 후 승인', '거부' 중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며, (선거 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보전은 위원회에 의해 회계보고서가 '승인'된 경우에만 가능) 선거법 제52-15조에 따라 '거절' 의견을 낸 선거회계보고서에 대해 헌법평의회[43](전국선거의 경우)에 제소하여 선거법 위반을 수사 의뢰함.

4. 독 일

가. 개 요(연방선거법 제8조)

- 연방선거는 연방선거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연방선거법 제2장(제8~10조) 및 연방선거법시행령 제1장(제1~11조)에서 선거관리기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각 선거지역의 선거위원회에는 1명의 선거위원장(Wahlleiter)을 둠.
- 인접한 복수의 선거구(Wahlkreis)는 1개의 공동선거구위원회(gemeinsamer Kreiswahlausschuss)와 1명의 공동선구거위원장(gemeinsamer Kreiswahlleiter)으로 구성될 수 있음.
- 우편투표구 선거위원회는 각 선거구에 하나 또는 수 개의 게마인데(gemeinde) 또는 선거구내 소구역에 설치할 수 있음.

43) 전국 선거(대통령 선거, 상·하원 선거 및 국민투표)의 경우 헌법평의회(Conseil constitutionnel)가 선거법 위반 조사 및 수사를 담당하나, 지방 선거(기초/도/광역 의회 선거)의 경우 행정재판소(Tribunat administratif) 및 국사원(Conseil d'Etat)이 선거법 위반 및 수사의 주체가 됨.

<독일 선거관리기관 구성>

선거지역	선거관리기관
전체선거지역(연방-Wahlgebiet)	연방선거위원회(Bundeswahlausschuss)
각 주(州)(Land)	주(州)선거위원회(Landeswahlausschuss)
각 선거구(Wahlkreis)	선거구선거위원회(Kreiswahlausschuss)
각 투표구(Wahlbezirk)	투표구선거위원회(Wahlvorstand)
우편투표구	우편투표구선거위원회(Briefwahlvorstand)

나. 구 성(연방선거법 제9조)

- 연방선거위원회
  - 연방선거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연방내무장관이 임명(임기는 부정기적)
  - 연방선거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8명의 위원 및 2명의 연방행정법원 판사로 구성
  - 전통적으로 연방선거위원회의 위원장은 연방통계청장(Präsident des Statistischen Bundesamtes)이 담당
  - 연방선거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권자 중 8명을 연방선거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 연방선거위원회 위원은 총선거일이 결정된 후 연방선거위원장이 즉시 임명하며, 각 위원 1명마다 1명의 직무대리인도 동시에 임명
  - 해당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 및 입후보를 위한 추천인은 선거관리기관의 구성원으로 임명될 수 없음.
  - 위원의 선임은 일반적으로 지난 연방하원선거에서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수를 고려하며, 각 정당에 의해 추천된 자 중에서 선임
  - 위원의 임기는 연방의회선거 이후 또는 새 의회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재임 가능)
- 주(州) 선거위원회
  - 주 선거위원장·선거구선거위원장 및 투표구선거위원장과 그 대리인은 주(州)정부 또는 주(州)정부가 정한 기관이 임명
  - 각 주 선거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6명의 위원 및 2명의 주 고등행정법원

판사로 구성

- 선임된 각 주(州) 선거위원회의 위원장 및 그 직무대리인의 이름, 사무소의 주소 및 연락처를 연방선거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공고함.
- 주(州) 선거위원회 위원은 총선거일이 결정된 후 주(州) 선거위원장이 즉시 임명하며, 각 위원 1명마다 1명의 직무대리인도 동시에 임명
- 해당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 및 입후보를 위한 추천인은 선거관리기관의 구성원으로 임명될 수 없음.
- 위원의 선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지난 연방하원선거에서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수를 고려하며, 각 정당에 의해 추천된 자 중에서 선임
- 위원의 임기는 연방의회선거 이후 또는 새 의회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재임가능)로 함.

● 투표구 선거위원회

- 투표구 선거위원회는 1명의 선거위원장과 그 직무대리인이 포함된 3명~7명의 선거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 투표구 선거위원장 및 그 직무대리인은 선거 실시 전에 임명
- 선거인명부를 분할하여야 할 정도로 투표구의 구역이 넓어 여러 투표소에서 동시에 투표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투표가 이루어지는 투표소 별로 투표구 선거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며, 각 투표구 선거위원회마다 투표구 선거위원장과 그 직무대리인이 임명됨.
- 투표구 선거위원장의 직무대리인은 투표구 선거위원회 위원으로 동시에 활동
- 투표구 선거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기 및 자신의 직무대리인을 임명
- 투표구 선거위원회 위원은 해당 관할관청의 선거권자 중에서 또는 가능한 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권자 중에서 위촉되어야 함.
- 투표구 선거위원회 위원의 위촉을 위해 관할 관청은 선거권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권한을 가짐.
-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관청, 연방직할 단체, 영조물 및 공법상의 재단, 공법상 법인에 속한 관청 등은 투표구 선거위원회의 위원 선임을 위해 소속 직원들 중에서 대상자를 추천할 의무를 가짐.

● 우편투표구 선거위원회

- 우편투표구는 각 선거구에 최소 1개의 우편투표구 선거위원회 및 1명의 선거위원장을 임명함.
- 해당 선거구에 설치할 우편투표구 선거위원회의 수는 선거구 선거위원장이 결정함.
- 우편투표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주(州) 정부 또는 그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이 정함.
- 우편투표구 선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일반 투표구 선거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준용됨.
- 여러 개의 관할 관청에 1개의 우편투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 하나의 관할 관청이 우편투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함.
- 우편투표구 선거위원회의 구성원도 가능한 한 선거구 선거위원장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권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함.

- 선거관리기관의 위원 등 구성원을 위촉할 때에는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하며, 누구도 하나 이상의 선거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
- 선거구선거위원회와 각 투표구선거위원회의 위원 및 각급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임. 모든 선거권자는 위원직을 담당할 의무를 가지며,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그 수락을 거부할 수 있음.

다. 직 무(연방선거법 제2장 및 연방선거법시행령 제1장)

1) 연방선거위원장

- 임 명
  - 연방선거위원장은 최고의 선거관리기관으로 직무수행 상 누구의 감독도 받지 아니하며, 오직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고 그 임기는 부정기적임.
  - 연방선거위원장은 그 직무의 특성상 연방통계청장이 맡으며, 연방선거위원장의 대리도 연방통계청 차장이 맡음.
- 직 무
  - 연방선거위원회위원 위촉

- 연방의회 또는 어느 주(州)의회 최종 선거에서 계속적으로 5명 이상의 의원을 당선시키지 못하는 정당으로부터의 선거참가신청서 접수 및 승인
- 지역구후보자추천의 승인 또는 거부에 관한 지역구선거위원의 결정을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州)선거위원장에게 이의제기
- 당선된 후보자의 조사, 총선거결과에 대한 잠정확인 및 공표
- 비례대표명부에 선거의 최종결과에 대한 연방선거위원회의 최종선언서 준비
- 주(州)선거위원장에게 당선인 통보, 최종 선거결과 공표
- 주(州)선거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하며 검토
- 해외거주 독일인의 선거인등록사무 총괄
- 입후보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정당인정여부 및 소속정당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의 안내 및 확인
- 정당법상 부여된 직무의 수행(정당조직 등에 관한 통지의 접수 등) 및 선거구획정사무에 관여

2) 주(州)선거위원장

- 임 명
  - 주(州)선거위원장은 주(州)정부 또는 주(州)정부가 정하는 기관이 임기제한 없이 임명
- 직 무
  - 선거구를 관할하는 선거관리기관을 결정
  - 투표용지 및 각종 양식을 구입
  - 주(州)명부의 제출을 요청, 제출된 주(州)명부를 접수하여 예비적으로 검토
  - 이중으로 입후보한 후보자가 있는지 검사, 주(州)선거위원회의 주(州)명부 수리여부 결정을 감독, 연방선거위원회에 이의 제기
  - 수리된 주(州)명부를 공표, 선거구선거위원장에게 등록수리 된 주(州)명부들의 순서와 각 명부 중에서 앞 순위부터 5위까지의 후보자의 성명을 통지
  - 선거과정을 감독하고 타 선거관리기관의 질의에 응답
  - 해당 주(州)의 예비 선거결과를 확인하고 공표

- 기타 주(州)선거위원회가 하는 주(州)명부에 의한 해당 주(州)의 최종 선거결과 확정을 준비

5. 일 본

- 공직선거법 제5,6조에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중앙선거관리회: 중의원 및 참의원 비례대표선거 관리
  -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 중의원과 참의원 지역구선거, 도도부현(都道府県)의회의원, 도도부현지사선거 관리
  -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 시정촌(市町村)의회의원 및 시정촌의 장 선거 관리

가. 중앙선거관리회[44)]

- 중앙선거관리회는 총무성 부속 합의제 기관으로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3년이며, 위원은 의회의원 이외의 자로서 참의원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 중에서 의회의 의결에 의한 지명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함. 위원의 임명 시 동일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속하는 자를 3명 이상 임명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 참의원의원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국회 동의 필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타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이 있는 경우(의회 동의 필요) 내각총리대신이 파면함.
- 의회가 위원을 지명하는 경우 위원수와 동수의 예비위원(위원이 결원되거나 유고가 있는 경우 직무수행)을 지명하며, 위원이 결원되어 보충하는 때에는 새로이 의회의 지명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함.
- 중앙선거관리회는 중의원(비례대표선출) 및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관리, 최고재판소재판관의 국민심사에 관한 사무처리, 위 소관사무의 범위 내에서

44) 총무성홈페이지
http://www.soumu.go.jp/senkyo/senkyo_s/naruhodo/naruhodo06.html#chapter1 (검색일 2019.6.19.)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와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 지휘·감독, 중앙선거관리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권, 선거계도를 할 수 있음.

- 중앙선거관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가부동수 시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함.

나. 총무성

- 독임제 기관의 실질적인 선거총괄기관으로서 내각의 한 부처이며, 총무성 자치행정국(선거부)이 선거사무를 관장하고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 지방공공단체선거사무에 관한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 및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이 있음.

다.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

-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공공단체의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임.
- 위원의 선출은 그 관할구역의 선거권이 있는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회에서 선출(지명추천방법도 가능)하고, 위원선출 시 위원수와 동수의 예비위원도 선출하여 정위원 유고시 직무를 수행하며, 정당추천 위원의 선출 시 동일 정당 소속으로 동시에 2명 이상 선출할 수 없음.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함.
- 위원회는 도도부현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관리,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선거관리,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 선거관리,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관할구역 내 사무관리,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다른 선거에 관한 사무(土地改良區의 役員과 總代선거 등) 및 이에 의한 쟁송관계사무(선거 또는 당선에 관한 쟁송사무 등),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감독(국가 또는 도도부현의 선거에 관한 사무에 있어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정지권 포함)의 직무를 수행함.
- 3명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가부동수 시 위원장이 결정권 행사함.

라.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

- 해당 지방공공단체 하에서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체계와 동일하며, 시정촌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사무 관리,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다른 선거에 관한 사무(국가, 도도부현선거에 관한 사무) 및 이에 관계된 사무의 처리, 지정도시의 행정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구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감독(구선거관리위원회 처분에 대한 취소·정지권 포함)의 직무를 수행함.

마. 지정도시의 행정구선거관리위원회

- 위원 및 보충위원은 구에서의 선거권을 가진 자 중에서 지정도시의 의회가 선출하며 지정도시의 선거, 국가나 도도부현선거에서의 선거인명부, 투·개표 등에 관한 사무관리를 수행함.
- 시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지정도시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함.

바. 특별구선거관리위원회

- 시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체계와 같으며, 특별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관리 기타 시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선거사무관리의 직무를 수행함.

6. 스페인

- 선거법 제8조-제22조에서 선거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 그리고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관리기관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가. 구성(선거법 제8조)

- 선거관리기관은 중앙선거위원회, 도선거위원회, 지역선거위원회 그리고 경우에 따라 지방자치주선거위원회로 이루어져 있음.

나. 중앙선거위원회

- 상설기구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선거법 제9조)
  - 사법부총평의회의 추첨에 의해 위촉된 8명의 대법원 판사
  - 하원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연합, 연맹 및 선거인 단체의 연합추천에 따라 선임된 5명의 법학 또는 정치사회학 교수
- 국왕령에 따라 하원개회 90일 이내에 위촉된 의원들이 확정되면 차기 하원구성에 따른 새로운 중앙선거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임기를 지속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서기의 소집에 따른 최초회의에서 사법부 출신위원들 중 선출
- 권한(선거법 제19조)
  - 선거인명부 관리국의 활동에 대한 지휘 및 감독
  - 선거법의 집행 및 적용에 있어 선거인명부와 관련된 법령안에 대한 보고
  - 선거관련 사안에 대해 도선거위원회와 지방자치주선거위원회에 의무적 준수를 요하는 지시사항 전달
  - 도선거위원회 또는 지방자치주선거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회신
  - 도선거위원회 또는 지방자치주선거위원회 결정이 중앙선거위원회의 유권해석과 상반될 경우 직권 또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 결정 번복
  - 선거법 운용에 있어서 도선거위원회 또는 지방자치주선거위원회의 해석기준 통일
  - 중앙정부 및 자치주 정부의 제안에 따라서 투표소 설치, 개표, 총개표 및 당선자 공고에 대한 근거문서서식 승인과 이 서식을 사본형태로 작성해 교부
  - 선거법 또는 기타 중앙선거위원회에 권한이 부여된 법률에 따라 제기된 고충, 항의, 청원사항 해결
  - 선거회의소집일부터 선거일 후 100일까지 기간 동안 후보자가 관리하는 회계 및 비용에 관련된 규정 준수여부를 감독
  - 선거과정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입하는 자에 대한 징계권 행사
  -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위반사항으로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선거법에 명시된 최고금액의 벌금부과
  - 도 및 지역선거위원회의 위원 임기개시 이후 사망, 직무수행불능 또는 사직의

경우 하원의원, 상원의원, 도의원, 주의원, 시의원 및 카나리아 군도의원에게 확인서 발급

다. 도선거위원회

- 구성(선거법 제10,15조)
  - 사법부총평의회의 추첨에 의해 선임된 3명의 해당 도 고등법원 판사
    ※ 만약 해당 도 고등법원에 판사가 부족하다면 해당 도청소재지의 단독판사를 위촉
  - 해당 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법학 또는 정치사회학 교수, 저명한 법학자 중에서 중앙선거위원회가 위촉하는 2명의 위원
  - 선거소집일 후 3일 이내에 최초 구성되며, 선거일 후 100일까지 존속
- 권한(선거법 제19조제3항)
  - 모든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지역선거위원회가 준수해야할 지시사항을 전달
  - 지역선거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질의에 대한 회신
  - 지역선거위원회 결정이 도선거위원회의 유권해석과 상반될 경우 직권으로 또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결정을 번복
  - 모든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지역선거위원회의 해석기준 통일

라. 지역선거위원회(선거법 제11,15조)

- 구성
  - 해당 고등법원의 추첨에 따라 위촉된 3명의 지방법원판사
    ※ 만약 해당 사법구역에 판사가 부족하다면, 동일한 사법구역의 치안판사 중에 추첨으로 위촉
  - 해당 사법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변호사 또는 정치사회학 전공자들 중 도선거위원회가 위촉한 2명의 위원
    ※ 이 위원들은 후보자의 출마 공표가 있은 후 위촉하는데, 이를 위해 해당 선거구 후보자의 대리인이 이 직책을 수행해야 할 사람들을 공동으로 추천함. 만약 선거운동 전까지 추천이 없다면 도선거위원회가 직권으로 위촉
  - 선거소집일 후 3일 이내에 최초 구성되며, 선거일 후 100일까지 존속

7. 스웨덴

- 선거법 제1장 제3절에서 중앙선거청과 지역선거기관인 지방선거청, 각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선거위원회 설치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가. 중앙선거청(central election authority)

- 구성
  -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는 중앙선거청을 둠(선거법 제3절 제1조).
- 권한 및 임무
  - 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별 의석수 결정 및 관보 게재(선거법 제4절 제3,26조)
  - 투표구별 선거인명부 작성(선거법 제5절 제1,4조)
  - 투표카드(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송부(선거법 제5절 제8,10조)
  - 투표용지와 봉투 제공(선거법 제6절 제6조)
  - 최종개표 결과를 근거로 의회와 유럽의회 의석 배분 및 당선자 결정(선거법 제14절 제1조)

나. 지방선거청(regional election authority: county administrative board)

- 구성
  - 지방선거청은 지역선거기관으로서 광역자치구 단위에서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선거위원회의 교육담당함(선거법 제3절 제2조).
- 권한 및 임무
  - 광역의회의원선거와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별 의석수 결정(선거법 제4절 제10,15조)
  - 최종개표(선거법 제13절 제1조)

    ※ 개표절차

    투표소 예비개표(제11절 제1조) → 선거위원회 개표(제12절 제1조) → 지방선거청 최종개표(제13절 제1조)

- 광역의회의원선거 및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정당간 의석 배분 및 당선자 결정 (선거법 제14절 제26조)

다. 선거위원회(local election authority: election committee)

- 구성
  - 각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책임지는 선거위원회를 둠 (선거법 제3절 제3조).
- 권한 및 임무
  - 각 기초자치단체는 투표구별 투표소(선거법 제4절 제20조), 사전투표소(선거법 제4절 제22조), 재선거에 따른 사전투표소(선거법 제4절 제23조)를 마련해야 함(선거법 제3절 제3조).
  - 투표소나 사전투표소는 선거권자가 투표하는데 편리하도록 위치, 접근성, 투표시간을 고려해 적절한 장소를 확보해야 함(선거법 제4절 제20,22조).

라. 투표사무원

- 각 투표구는 최소 4명의 투표사무원을 지명해야 하며, 그 중 한 명을 투표관리관으로 하고, 또 한 명은 부투표관리관으로 함(선거법 제3절 제4조).
- 투표사무원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자를 선거위원회가 임명함. 다만, 재외공관의 투표사무원은 재외공관의 장이 임명함(선거법 제3절 제5조).
  - 선거위원회가 투표를 병원, 교도소, 구치소 또는 그와 유사한 기관에서 할 것으로 결정했다면 선거위원회는 그 곳에서 종사할 투표사무원의 임명을 그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각 투표소에는 투표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만큼의 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함(선거법 제3절 제6조).
  - 투표소에 최소 3명의 투표사무원이 있어야 하며, 그 중 한 명은 투표관리관 또는 부투표관리관이어야 함.

8. 스위스

가. 선거관리기관

- 스위스에는 선거를 관리하는 독립적인 선거관리기관은 없음.
- 연방선거 및 국민투표는 각 주(Kanton)마다 실시되며, 연방내각국(Bundeskanzlei)[45]의 감독을 받음.
- 주의회선거는 연방차원에서 관리되지 않고 각 주의 규정에 따름.

나. 연방 및 주의 직무

- 의회의원선거는 연방과 주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주된 선거관리업무는 주에서 담당
- 연방내각국의 직무
  - 후보자의 이름이 이미 다른 주의 후보자명부 및 최종명부에 이중 등재되어 있으면 후보자의 이름을 삭제한 후 해당 주에 통보(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27조)
  - 후보자 정보(공식적인 성과 이름, 출생연도, 고향 및 거주지)를 포함한 후보자명부를 전자적 형태로 공표(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32조제2항)
  - 연방내각국은 비례대표제 하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주의 선거권자들에게 투표용지와 함께 선거권자들에게 배포할 간략한 지침서를 매 총선거 전에 발행(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34조)
  - 총선거,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연방관보에 공표(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52조제3항)
  - 새로이 선출된 의회의 개회는 선거 후 일곱 번째 월요일로 하고, 이날 일차적으로 선거 결과를 확정함(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53조제1항).

---

45) 주(Kanton)의 영문명은 canton, 연방내각국(Bundeskanzlei)의 영문명은 Federal Chancellery, 연방의회(Bundesrat)의 영문명은 National Council로 표기하고 있음.
스위스 의회 홈페이지.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영문판.
https://www.admin.ch/opc/en/classified-compilation/19760323/index.html (검색일 2019.8.16.)

- 주의 직무
  - 후보자명부(추천명부)를 접수해 연방내각국에 통보(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21조)
  - 후보자명부의 검토(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29조)
  - 주관보에 공식 명부를 게재(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32조제1항)
  - 각 주는 모든 후보자명부에 대한 투표용지 준비, 인쇄되지 않은 투표용지도 준비(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33조제1항)
  - 각 선거권자들에게 빠르면 선거일 전 4주, 늦어도 3주 전까지는 모든 투표용지를 전달(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33조제2항, 제48조)
  - 투표 종료 후, 각 투표소의 보고에 따라 투표결과 등 작성(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39조)
    - ·총 선거권자 수 및 투표자 수, 유·무효·백지투표지의 수, 각 후보자 개인의 득표수
    - ·각 명부의 추가투표 득표수, 후보자 득표수와 각 명부에 대한 추가투표 득표수의 합(정당 득표)
    - ·통합명부 내의 명부 전체(group)에 대한 득표수의 총합
  - 결과가 산출된 후 주정부는 즉시 당선인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연방의회(Bundesrat)에 당선인들의 이름을 통지해야 함(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52조제1항)
  - 각 후보자가 얻은 결과(필요한 경우 후보자 명부별 득표수)를 선거일로부터 8일 이내에 주 관보에 공표하고,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52조제2항)
  - 선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 후에 즉시 연방내각국에 선거결과를 보고하고, 투표지는 이의제기 기간의 만료 후 10일 내에 연방내각국이 지정한 장소로 이송(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52조제4항)

9. 캐나다

가. 선거관리기구[46]

1) 연방(Federal): 캐나다 선거관리청(Elections Canada)

- 연방차원의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리하는 유일한 기관이며, 의회에 직접 보고하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
- 1920년에 설치되었으며 퀘벡 주에 위치하고 있고, 직원은 평상시 500명 정도, 선거기간에는 약 235,000명 정도임(2019. 4. 현재).
- 직무
  - 연방차원의 총(보궐)선거 및 국민투표관리
  - 선거인명부의 관리, 선거관리관(RO)의 임명 및 지침 제공
  - 투표절차·후보자등록에 대한 안내, 학생들에게 선거절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 매 10년마다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연방선거구경계조정위원회에 법적·기술적·재정적·행정적 지원
  - 선거광고를 하려고 하는 정당·제3자와 지구당·당대표 및 후보자 경선의 등록
  - 후보자·정당·제3자·지구당·당대표선거후보자(leadership contestant) 및 당내경선후보자(nomination contestant)의 기부금 공개, 후보자와 정당에 선거비용 반환
  - 대체 투표방법 연구, 의회 승인 하에 향후 선거에 적용할 대체투표 절차 실험
  - 외국의 선거관련 기관, 선거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이나 협력

2) 주(State)와 준주(Territory)

- 선거관리청으로부터 독립된 각 주의 선거관리기관이 별도로 있음.[47]

---

46) 캐나다 선거관리청 홈페이지
https://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abo&lang=e&document=index (검색일 2019.6.24.)

47) Elections Yukon.
http://www.electionsyk.ca/en/election-offices (검색일 2019.6.24.)

주(州)명	선거관리기관명	주(州)명	선거관리기관명
온타리오주	Elections Ontario	뉴브런즈윅주	Elections New Brunswick
퀘벡주	Elections Quebec	뉴펀들랜드&라브라도르주	Elections Newfoundland and Labrador
브리티시콜럼비아주	Elections British Columbia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Elections Prince Edward island
알베르타주	Elections Alberta	유콘 준주	Elections Yukon Territories
마니토바주	Elections Manitoba	노스트웨스트 준주	Elections Northwest Territories
새스캐추완주	Elections Saskatchewan	누나붓 준주	Elections Nunavut Territories
노바스코샤주	Elections Nova Scotia		

- 각 주마다 주 선거법과 선거비용 및 기부내역 공개방법 등이 있어 이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고 각 주마다 선거관리청장(Chief Electoral Officer)과 선거관리관(Returning Officer) 등 선거관련 공무원들이 선거관리를 함.

  ※ 주(state) 내의 시(Municipal)나 카운티(County),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대한 선거도 각 지역별 2~5년 주기로 별도 실시함.

나. 선거사무관계자

1) 선거관리청장(Chief Electoral Officer)과 부선거관리청장(Assistant Chief Electoral Officer)

- '선거관리청장'은 하원의 의결에 의해 임명되고 차관급 상당의 지위를 가지며, 임기는 10년 단임. 정당과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며, 상원 및 하원의 해직 공동청구(joint request)에 따라 총독이 해임하는 경우 외에는 그 신분이 보장됨(선거법 제13,15조)
- 직무(선거법 제16,17조)
  - 선거, 국민투표 사무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
  - 긴급 사태 등의 경우 선거기간의 연장, 선거관계공무원의 증원, 투표소의 증설 등 특별조치 권한이 있음.

2) 선거관리관(Returning Officer: RO)과 부선거관리관(Assistant Returning Officer)(선거법 제24,29조)

- '선거관리관'은 각 선거구에 1명씩 두는 집행·감독의 실질적 책임자로 선거관리청장이 임명. 임기는 10년이며 연임가능
- 직무
  - 선거관리관은 선거의 적정하고 효율적 집행을 위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
  - 주요 직무는 선거소집령의 수리, 입후보등록일 및 선거일의 고시, 선거인명부의 작성, 투표용지의 작성, 당선인의 결정, 선거결과 보고 등
- 선거관리관은 임명을 받은 후 부재, 궐석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직무를 대행할 '부선거관리관'을 임명하고 선거관리청장에게 보고함(선거법 제26,28조).

3) 선거사무원(Election Officers)(선거법 제22제1항, 제32조)

- 선거소집령 발행 이후에 선거관리관(RO)은 다음의 선거사무원을 임명
  - (선거법 제23조의1) 현장연락소 사무원(field liaison officers)
  - (선거법 제26조) 부선거관리관(assistant returning officer)
  - (선거법 제181조) 특별투표 규정 관리자(special voting rules administrator)
  - (선거법 제183,184조) 특별 투표 사무원(special ballot officers)
  - (선거법 제248조) 연락사무원(liaison officers)
- 선거사무원이 될 수 있는 자(선거법 제22조제4항)
  - 선거구내 거주하는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선거법 등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선거사무원이 될 수 없는 자(선거법 제22조제3항)
  - 장관과 주행정위원회 의원
  - 연방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 주의회 또는 준주의회 의원
  - 대법원 및 파산법원의 판사 또는 부판사, 유콘주 및 노스웨스트준주의 대법원 판사
  - 이전 총선거 또는 보궐선거에서 후보자였던 자

- 선거 직전 회기 또는 선거기간 중 의회에서 일하는 자
- 임명되기 전 7년 이내에 선거법·국민투표법 또는 주·시 학교이사회선거와 관련된 주의 법에 의하여 형법상의 죄를 범한 자

10. 호 주

가. 호주선거위원회(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AEC)

- 호주선거위원회는 연방수도에 중앙사무소, 각 주 및 준주의 수도에 주사무소, 주 내 각 선거구에 선거구사무소를 두고 있는 3계층 구조
- 1984년 「1918년 연방선거법(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을 대폭 개정해 내무성(Department of Home Affairs) 산하 선거국(Electoral Office)을 법률상 독립기관인 호주선거위원회로 설립함.

나. 구성

- 호주선거위원회는 위원장, 선거위원, 비사법위원 총 3명으로 구성(연방선거법 제6조)
  - 위원장(Chairperson): 최소 3년의 경력을 가진 전·현직 연방법원 판사로, 비상임이며 총독이 임명
  - 선거위원(Electoral commissioner)
    - ·선거위원의 임기는 7년 이내이나, 재임명될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8조).
    - ·위원회 최고 행정공무원으로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 책임자이며, 선거위원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선거위원(Deputy Electoral Commissioner) 1명과 2명의 수석보좌위원을 두고 있음(연방선거법 제18,19조).[48]
    - ·각 주 선거사무소에는 선거위원의 지시를 받는 선거공무원(Australian

48) 호주선거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aec.gov.au/About-AEC/structure.htm (검색일 2019.5.13)

Electoral Officers for States)을 두고 있음(연방선거법 제20조).

·각 선거구는 주 선거공무원의 지시를 받는 선거구선거관리관(divisional Returning officer)을 둠(연방선거법 제32조).

- 비사법위원(non-judicial appointee): 법관이 아닌 자로, 비상임이며 총독이 임명

다. 직무(연방선거법 제7조)

- 상·하원선거 및 국민투표 사무관리
- 선거인명부의 갱신·유지
- 의회, 정부, 국가기관의 선거관련 문제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문활동
- 법률상의 각급 국가기관·단체에 대한 선거관리
- 선거에 관한 연구 및 연구 증진 활동, 선거에 관한 각종 자료 발간
- 선거 및 의회에 관한 대국민 홍보활동

<표 1-10>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유형

구분		국가명
독립 위원회형 (Independent model)	아시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한국,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대만, 타지키스탄, 태국, 우즈베키스탄
	중 동	아르메니아, 이집트,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시리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예멘
	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베냉, 부탄,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케냐, 레소토,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수단, 에스와티니,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유 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조지아, 코소보, 라트비아, 라이베리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몰타, 몰도바, 몬테네그로,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중·남·북미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오세아니아	피지, 키리바시, 몰디브, 나우루, 뉴질랜드,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세이셸, 솔로몬제도, 통가
혼합형 (Mixed model)	아시아	일본, 동티모르
	중 동	이란, 레바논
	아프리카	알제리, 카보베르데, 차드, 코모로, 지부티, 적도기니, 가봉,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콩고, 세네갈
	유 럽	안도라, 아르헨티나, 프랑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중·남·북미	벨리즈,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오세아니아	바누아투
행정부형 (Governmental model)	아시아	북한, 싱가포르, 베트남
	중 동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아프리카	모로코
	유 럽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노르웨이, 산마리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중·남·북미	그레나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오세아니아	쿡제도, 마셜군도, 미크로네시아, 니우에, 투발루

※ 독립위원회형: 정부의 집행부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그 자체 예산을 스스로 관리하는 기관을 조직하고 관리
혼합형: 행정부형(정부 부처 또는 지방정부) 부문에 따라 조직되나 독립형(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정책 및 감시·감독기능) 부문에 따라 일정 정도의 감독을 실시
행정부형: 정부의 부처(예: 내무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조직되고 관리됨.

출처: IDE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Model of Electoral Management. https://www.idea.int/data-tools/question-view/130365 (검색일 2019.4.4.)

<표 1-11> OECD국가의 선거관리기관 현황

국가명	선거관리기관	위원 구성	임기	위원구성방법	위원장 임명방법	근거규정
영 국	선거위원회	9-10명	최대 10년	하원에서 위원 선출	의회가 9명의 위원 중에서 임명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제1,3조
	내무부(선거관리)					-
미 국	연방선거위원회	6명	6년	상원 동의 하에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며 2년 마다 2명씩 교체 ※ 결원시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함.	위원장, 부위원장은 1년(1회 연임 가능) 임기로 위원 중에서 선출(호선)	연방선거 운동법 제30106조
프랑스	헌법 평의회	9명	9년	대통령 3명, 하원의장 3명, 상원의장 3명을 위원으로 임명하며 3년마다 3명씩 교체(정수 외에 전직대통령은 직무상 당연직 종신위원) ※ 결원시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함.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헌법 제56조
	투표감독 위원회	3명	비상설	-	항소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1인	선거법 제L85-1조
	선거운동 감독 국가위원회	5명	비상설	-	최고행정법원 부원장	no 2001-213 법률명령
	선거운동 회계보고 및 정치자금 국가위원회	9명	5년	-	위원 중에서 선출(호선)	선거비용 제한 및 정치자금 투명성에 관한 법률 no90-55
	시청각 최고위원회	9명	6년	-	대통령이 임명	커뮤니케이션 no 86-1067 법률
독 일	연방선거 위원회	9명	부정기적	위원장이 정당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8명을 선임	연방내무부 장관이 연방선거관리관(관례상 연방통계청장) 임명 ※ 주 및 선거구선거관리관은 주정부가 임명	연방 선거법 제8,9조
일 본	중앙선거관리회	5명	3년	의회의 의결에 의한 지명에 따라 총리가 임명	위원 중에서 선출(호선)	공직 선거법 제5,6조
	총무성(실질적 선거총괄기관)					-

국가명	선거관리기관	위원 구성	임기	위원구성방법	위원장 임명방법	근거규정
스페인	중앙선거위원회	13명	입법부 임기 (4년)	사법부총평의회의 추천으로 대법원판사 8명 및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등의 추천에 따라 선임된 5명의 법학·정치학 교수로 위원 구성	위원 간 사법부 출신 위원 중 선출(호선)	선거법 제9조
스웨덴	중앙선거청	5명	불특정	-	정부가 임명	선거법 제1장제3절
스위스	연방내각국	불특정		-	정부가 임명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20조
캐나다	중앙선거청	1명	65세	-	선거관리장은 하원의결로 임명(1명 독임제)	선거법 제13조
호 주	선거위원회	3명	최대 7년	총독이 임명하는 전현직 연방법원 판사와 연방통계청장으로 구성	위원장은 3명의 판사 중에서 총독이 임명	연방 선거법 제6,8조
오스트리아	연방선거 위원회	18명	매 선거 기간마다 소집	-	내무장관	헌법 제26조, 연방선거법 제6조
벨기에[49]	행정부					-
체 코	선거위원회	19명	불특정	-	위원 중에서 선출(호선)	선거법 제8~12조
칠 레	선거청	5명	8년	-	대통령이 임명	선거법 제62조
덴마크	선거위원회	3명	비상설	내무부 장관이 필요시 선출	내무부 장관이 선거기간 동안 위원장 역할 수행	선거법 제17조
에스토니아	선거위원회	7명	4년		위원 중에서 선출(호선)	선거법 제10조
핀란드	선거위원회	5명	4년	-	등록 정당 명단에서 선출	선거법 제11조
그리스	내무부					헌법 제104조 공무원법 제39조
헝가리	선거위원회	10명	9년	-	의회가 임명	선거법 제33조
아이슬란드	선거위원회	5명	4년	-	위원 중에서 선출(호선)	선거법 제12조
아일랜드	행정부					선거법(1992) 제30조
이스라엘	중앙선거위원회	31명 이하	입법부 임기	-	대법원이 임명	선거법 제16조

국가명	선거관리기관	위원 구성	임기	위원구성방법	위원장 임명방법	근거규정
이탈리아	전국중앙 선거사무국	5명	불특정	-	정부가 임명	하원선거법 제12조
	내무부(선거관리)					
라트비아	중앙선거위원회	9명	4년	-	의회가 임명	중앙선거 위원회법 제1조
룩셈부르크	비상설					선거관할 기관에 관한 법 제1조
리투아니아	중앙선거위원회	16명	4년	-	의회가 임명	중앙선거 위원회법 제7조
멕시코	연방선거청	11명	9년	-	의회가 임명(하원2/3표결)	연방선거법 제3~10조
네덜란드	선거위원회	7명	4년, 연임가능	-	위원 중에서 선출	선거법 제A5조
노르웨이	행정부					헌법 제43조
뉴질랜드	선거위원회	3명	불특정	-	정부가 임명	선거법 제4D조
폴란드	선거위원회	9명	불특정	-	대법원장이 수행	선거법 제153,158, 171,174,184조
포르투갈	전국선거위원회	10명	입법부 임기	-	대법원이 임명	선거법 제3,4조
슬로바키아	중앙선거위원회	5명	비상설	-	의회가 임명	선거법 제14조
슬로베니아	선거위원회	6명	4년	-	대법원이 임명	선거법 제22조
터 키	최고선거위원회	7명	6년	-	위원 중에서 선출(호선)	선거기본법 제11,15,18조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Number of EMB members.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EM013 (검색일 2019. 4.4.)
Term of EMB members.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EM006 (검색일 2019. 4.4.)

49) OSCE보고서. 'Belgium, Federal Elections, 26 May 2019: Needs Assessment Mission Report' p.8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belgium/416432?download=true (검색일 2019.10.7.)

제3절
선거법 총칙

1. 투표참여방안

가. 의무투표제(compulsory voting, mandatory voting)[50]

1) 의무투표제 운영현황

- 현재 전 세계 국가 중 27개국에서 의무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
- 의무투표를 실시하는 국가들은 헌법이나 선거법에 명시해 투표불참시 벌금 또는 선거권 박탈 같은 제재를 가하는 국가도 있고, 단순히 시민의 의무로 언급한 국가도 있음.
- 한편, 의무투표 실시와 선거권자 등록은 별개의 개념으로 선거권자 등록이 의무가 아닌 국가들의 경우 자발적으로 등록을 한 자에게만 의무투표를 적용함.

※ 의무투표는 자유투표(voluntary voting) 즉, 투표나 기권을 선거권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반드시 투표소에 참석해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표 비밀의 원칙에 반할 수 있으므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할 필요는 없음.

※ 한편,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 같이 근무시간 내 투표시간 보장과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

---

50) Sarah Birch. 2009. Full participation: A Comparative Study of Compulsory Voting. Manchester University Press.
IDEA. 2004. *Voter Turnout in Western Europe since 1945*. p.25-32. (검색일 2019.4.17.)
guardian.co.uk. 2005.7.4 'Compulsory voting around the world'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05/jul/04/voterapathy.uk (검색일 2019.4.17.)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Compulsory Voting in Australia. 2006.1.
http://www.aec.gov.au/pdf/voting/compulsory_voting.pdf (검색일 2019.4.17.)
The Electoral Commission UK. Compulsory voting around the world. 2006.6. research report. (검색일 2019.4.17.)
Wikipedia. 'Compulsory voting'
https://en.wikipedia.org/wiki/Compulsory_voting (검색일 2019.4.17.)
IDEA. Compulsory Voting. 'Voting Turnout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data/voter-turnout/compulsory-voting (검색일 2019.4.3.)

선거법 제162조(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①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오후 3시 이전에 투표를 하기 위해 업무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주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② 오후 3시 이후에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 고용주는 근무 시간 중 투표할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2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③ 위 규정 위반 시 벌금 NZ$1,000 이하에 처한다.

2) 의무투표제에 대한 찬반의견

- 찬성의견
  -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의 책임이자 의무
  - 선거에 많은 사람이 참여 할수록 민주적 정당성 확보 가능
  - 정치적 관심을 유지시켜 선거권자에게 교육적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활동 참여가 활발해짐.
  - 투표 참여를 위한 별도의 비용 불필요
- 반대의견
  -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자유침해가 될 수 있음.
  - 투표 자체가 법의 규제를 받는 요건이 아님.
  - 투표율이 높다는 것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연계되는지에 대해 의문
  - 의무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에 비해 무효표가 더 높게 나타남(투표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음).

3) 의무투표제 도입배경

- 의무투표는 단순히 투표참여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정치·역사적 상황과 현실이 맞물려 실시
- 의무투표를 실시하는 유럽 국가들(벨기에,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은 20세기 초 보통 선거권(universal suffrage)의 확립과 더불어 도입했으며, 중남미 국가들(칠레)은 정치제도의 변화와 개혁시기에 의무투표를 도입

※ 1971년 유럽인권재판소(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는 의무투표가 기본적 자유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이는 선거권자에게 반드시 투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빈 투표용지를 내거나 투표용지에 낙서 가능) 단지 투표소에 가는 것만을 의무화한 것이기 때문에

유럽인권규약 제9조 “생각, 양심, 종교의 자유(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51]

※ International IDEA에 따르면, 서구 유럽의 의무투표제 실시는 이미 오랜 역사를 통해 전통으로 또, 일상적으로 수용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현대에 와서 의무투표제를 도입했다면 많은 논쟁과 사회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고 보고 있음.

※ 실제로 스웨덴에서 1999년 한 장관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의무투표제를 언급만 했는데도, 언론, 정치학자, 정치인들이 강력히 반발[52]

4) 의무투표제 도입 국가들

(가) 유럽국가

- 벨기에(헌법 제62,68조)
  - 1892년 보통선거원칙을 도입하면서 세계 최초로 전국적인 선거에 의무투표제 실시(1892년 남자, 1949년 여자에게 적용)
  -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가난한 시민들의 투표를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후 의회, 지방자치, 유럽의회 선거 등 모든 선거에 적용
  - 투표불참자들의 명단은 검찰로 보내짐. 다만, 투표불참자들은 지방법원에 소명(질병 또는 해외출장 등)을 하면 제재를 피할 수 있음.
  - 첫 번째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25~50유로, 두 번째 위반 시부터는 최고 50~125유로까지 증액
  - 15년 이내 4번 투표불참시 10년 동안 투표권이 박탈되고, 공직이 제한됨.
  - 2019년 의회선거 투표율 88.38%
- 그리스(헌법 제51조 및 선거법 제117조)
  - 1952년 헌법 개정 시 도입되었으나, 1975년 의무투표 문구가 명문화 됨.
  - 당시 정당들이 도입을 요구했으며, 선거권자들의 기권을 방지하고 보통선거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
  - 의회, 지방자치, 유럽의회 등 모든 선거에 적용되고, 선거권자 등록과 투표

---

51) The Electoral Reform Society. *Turning out or turning off -An analysis of political disengagement and what can be done about it* 2004. The Electoral Commission. *Compulsory voting around the world*. 2006. UK. (검색일 2019.4.17.)

52) IDEA, 2004. Svenska dagbladet. 29 July 1999, 9 August 1999 and Boras tidning 18 August 1999: ‘*Compulsory Voting in Western Europe*.’ Voter Turnout in Western Europe since 1945. (검색일 2019.4.17.)

모두 의무적으로 실시(대신 직장은 투표할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함)

-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70세 이상, 투표소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선거권자들은 의무투표가 면제되고, 불참사유를 소명하면 제재를 피할 수 있음.
- 2001년 헌법개정 전에는 투표불참 시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여권발급과 운전면허증 발급이 중지되는 제재가 가해졌음.
- 2001년 헌법개정시 투표불참에 대한 위와 같은 제재 내용이 빠져 사실상 의무투표제는 유명무실화 됨.
- 2019년 의회선거의 투표율이 57.91%로 나와 헌법에 의무투표제가 규정되어 있는 자체만으로도 투표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고 있음.

● 룩셈부르크(선거법 제89조)

- 1919년 여성의 투표권 도입과 같은 해에 의무투표제 도입
- 의회, 지방자치, 유럽의회 선거에 적용되고, 선거인명부에 등록한 선거권자에게만 의무투표가 적용(선거권자 등록은 의무적이지 않음)되므로 선거인명부에 없는 선거권자나 75세 이상 선거권자에게는 의무투표가 적용되지 않음.
- 투표불참 시 벌금은 100~1,000유로이지만 실제로 첫 번째 위반 시 서면경고를 받고, 6년 안에 두 번째 위반 시에 높은 벌금이 부과되는데 보통 벌금부과 전에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함.
- 2018년 의회선거 투표율 89.66%

● 리히텐슈타인(시민권리법 제3조, 제90조제2항)[53]

- 1862년 이전부터 실시되었으며 의무투표제 실시를 전통으로 여기고 있음.
- 의무투표제는 1973년 시민권리법에 규정되었고, 의회·지방자치단체 선거 등 모든 선거와 국민투표에 적용
- 투표 불참사유를 소명하면 제재를 피할 수 있고, 위반 시 벌금[20 스위스 프랑(CHF), 약 18유로]이 부과되나 사실상 거의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고 있음.
- 2017년 의회선거 투표율 77.82%

---

53) 시민권리법(Volksrechtegesetz, 1973)
https://www.gesetze.li/konso/1973050000 (검색일 2019.10.7.)

- 스위스
  - 26개 주 중 샤프하우젠(Schaffhausen) 1개 주가 1904년부터 모든 선거에 대해 의무투표제 실시[54)]

    ※ 1971년 국민투표로 취리히, 아르가우에서는 의무투표제를 폐지
  - 투표불참사유(질병 또는 휴가)를 밝혀 선거권자 카드를 반납하거나 투표 종료 후 3일내에는 불참사유를 밝히지 않고 반납하면 벌금이 면제됨.
  - 불참 시 6스위스 프랑, 약 5.26유로의 벌금이 부과
  - 2019년 의회선거 투표율 45.12%

(나) 중남미 국가

- 브라질(헌법 제14조 및 선거법 제6,7조)
  - 1988년 개헌 시 제14조에 의무투표제 규정
  - 투표 편의를 위해 선거일을 일요일 혹은 공휴일로 함.
  - 16~18세, 70세 이상, 문맹자는 의무투표 대상 예외
  - 투표불참 시 선거일 후 30일 내에 해명하지 않는 경우 그 지역 최저임금의 3~10%의 벌금이 부과되고, 공직제한·여권발급 등이 금지
  - 투표불참 3번 이상, 벌금 미납, 6개월 안에 불참사유 미보고시 선거권자 등록이 말소됨.
  - 2018년 의회선거 투표율 79.50%, 2018년 대통령선거 투표율 79.67%
- 페루(헌법 제31조 및 선거법 제9조)
  - 1993년 헌법에 도입하면서 모든 선거에서 의무투표제와 함께 선거권자 등록도 의무적이라 명시
  - 투표 불참 시 벌금(20쏠), 은행계좌 신설 금지, 공공행정거래 금지
  - 70세 이상 선거권자는 의무투표 대상 예외
  - 2016년 의회선거 투표율 81.88%, 2016년 대통령선거 투표율 80.09%
- 아르헨티나(헌법 제37조 및 선거법 제12조)
  - 1912년 도입

---

54) Swissinfo. 2014.4.4. https://www.swissinfo.ch/fre/democratiedirecte/schaffhouse_le-dernier-canton-o%C3%B9-le-vote-est-obligatoire/38284104 (검색일 2019.6.14.)

- 선거당일 아팠다는 의사의 증명이나 투표소에서 500km떨어져 있었다는 가까운 경찰서의 증명이 있으면 제외
- 투표 불참시 벌금(10~20페소) 부과, 3년간 공직제한
- 2017년 의회선거 투표율 76.74%, 2015년 대통령선거 투표율 80.77%

● 에콰도르(헌법 제62조 및 선거법 제11조)
- 1936년 도입
- 문맹자와 65세 이상 선거권자, 재외국민은 의무투표 대상 예외
- 투표 불참 시 벌금(200~500수크레) 부과
- 2017년 의회선거 투표율 81.74%, 2017년 대통령선거 투표율 81.69%

● 볼리비아(헌법 제26조 및 선거법 제43조)
- 1952년 도입
- 투표불참이유 해명하지 못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선거일부터 90일 동안 은행에서 월급인출 불가능, 공직 불가, 은행 거래 금지, 여권 발급 불가
- 2014년 의회선거 투표율 87.45%, 2014년 대통령선거 투표율 91.86%

● 우루과이(헌법 제77조)
- 1933년 쿠데타 이후 민주주의 체제를 다시 정비하는 과정에서 1934년 헌법 개정 시 도입
- 의무투표는 우루과이의 정치제도에 안정성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투표와 선거권자 등록 모두 의무화되었고, 1971년부터 투표 불참 시 벌금 부과
- 벌금 시행 전에는 65%~77%의 투표율이 나왔으나, 벌금 시행 후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89%, 1999년 92%, 2004년 88%의 투표율을 기록
- 2014년 의회선거 투표율 89.62%, 2014년 대통령선거 투표율 88.57%

(다) 기타 국가

● 호주(연방선거법 제245조)
- 1915년 퀸즈랜드 주 주선거에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1924년 선거법 개정으로 모든 연방선거에 의무투표제 도입
- 의무투표제와 더불어 선거인등록도 의무화하고 모든 의회, 지방선거에 적용

※ 연방선거를 위한 선거인등록은 1911년 이후부터 의무사항이며 모든 18세 이상의 호주 시민이 대상임. 단, 일부 죄수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는 예외(선거법 제93,96조)[55]

※ 단, 남오스트레일리아 주, 서오스트레일리아 주, 타스마니아 주 지방정부는 이 지역의 지방선거에서 자유투표를 실시

-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였으며, 특히 호주는 대안투표제(Alternative Vote)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선거권자들이 투표해야 가장 정확한 선거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의무투표 실시 전 1922년 연방선거 투표율 59%였으나 실시 후 1925년 선거에서 91%로 높아졌으며, 현재까지 90% 이상의 투표율을 유지하고 있음.

※ 현재 의무투표제는 호주의 정치문화에서 일상적인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호주 선거권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음(1996년 Newspoll Market Research 여론조사에서 의무투표제 지지율이 74%에 달함).[56]

※ 1993년 연방선거 후 약 50만 명이 투표불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 중 5%인 23,320명이 벌금을 납부했고, 94%는 투표불참사유를 들어 해명했으며 약 1%만이 법원으로 이송, 즉 전체 선거권자의 0.2%가 벌금을 낸 것임.[57]

- 또한 투표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선거일을 토요일로 하고, 우편투표·사전투표를 운영하며, 환자나 직장인들을 위한 이동투표소·해외공관·선상 등에서 해외부재자투표를 실시하고 있음.
- 선거권자인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요청한 경우 고용주는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투표할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함(연방선거법 제345조).

※ 위반 시 개인의 경우 5 페널티 유닛의 벌금, 법인의 경우 25 페널티 유닛의 벌금

- 투표불참자들은 불참사유(해외거주, 종교적 신념 등)를 소명하면 제재를 면할 수 있음.
- 투표불참자들에게 20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법원비용도 부담), 벌금 미납 시 가산차압이나 하루 이틀 정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음.

---

55)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http://aec.gov.au/Elections/australian_electoral_system/electoral_procedures/Electoral_Offences.htm (검색일 2019. 5.15.)

56)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www.aec.gov.au/_content/What/voting/compulsory_voting.htm. (검색일 2019.4.18.)

57) L. Hill ‘Democratic assistance: A compulsory voting template’, paper presented to the Jubilee conference of the Australasian Political Studies Association, Canberra, 2002.: The Electoral Commission. *Compulsory voting around the world*. 2006. UK. (검색일 2019.4.17.)

※ 벌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불참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법원비용과 1 페널티 유닛의(1 유닛은 현재 210호주달러)[58]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 미납 시 사회봉사명령·재산압수·기타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

- 2016년 연방선거 투표율: 하원의원선거 91.01%, 상원의원선거 91.93%[59]

- 태국(헌법 제50조에 규정)
  - 1997년 헌법에 도입
  - 투표 불참 시 정치적 권리(법안발의, 탄핵, 선출직 공직)를 박탈당할 수 있음.
  - 2019년 의회선거 투표율 74.69%
- 싱가포르(의회의원 선거법 제43조 및 대통령선거법 제26조)
  - 1959년 도입
  - 투표 불참 시 선거인명부에서 제명(5싱가포르달러를 벌금으로 내면 제명 취소), 대통령 또는 의회의원 피선거권 박탈
  - 2015년 의회선거 투표율 93.56%, 2011년 대통령선거 투표율 94.65%
- 터키(헌법 제175조, 선거법 제63조)
  - 1986년 도입
  - 투표 불참 시 소명하지 않으면 벌금(1만 리라) 부과
  - 2018년 의회선거 투표율 86.22%, 2018년 대통령선거 투표율 86.24%

(라) 의무투표제 폐지국가

- 오스트리아
  - 1949년 연방법에 규정되어 모든 지역, 모든 선거(의회, 지방, 대통령 선거)에 적용되었고, 1979년 이후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의무투표제 실시를 결정
  - 1982년 연방법에서 의무투표제를 폐지했으나, 스티리아(Styria), 카린티아(Carinthia), 포르크알베르크(Vorarlberg)와 티롤(Tyrol) 주는 지방 규정(provincial

58) 페널티 유닛(penalty unit: PU)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3년마다 다시 책정하는 벌금 기준단위이며, 연방법에 따른 벌금은 연방 PU가 적용되며, 주법에 따른 PU는 주마다 다르게 책정됨.
형법 제4AA조(section 4AA of the Crimes Act 1914)에 따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1 페널티 유닛은 210호주달러이며 2017.7.1.부터 2020.7.1.까지 적용됨.
「Crimes Act, 1914」.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9C00048 (검색일 2019.5.15.)

59) 호주선거위원회에서 발간한 'Electoral Pocketbook(2016년 연방 선거 결과 포함)' p.43. 참고 https://www.aec.gov.au/About_AEC/Publications/electoral_pocketbook/2016/2016-electoral-pocketbook.pdf (검색일 2019.5.15.)

statute books)에서 의무투표를 유지했으나,

- 1990년대 초 스티리아(Styria), 카린티아(Carinthia) 주에서 폐지, 2004년 티롤(Tyrol) 주도 의무투표제 폐지
- 투표불참 시, 불참 사유를 해명기회가 있고, 해명하지 않을 시 벌금이 부과되는데 700유로 이하로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50유로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어 사실상 유명무실화 됨.
- 오스트리아 내무부(Austrian Interior Ministry)에 따르면, 의무투표는 현대 사회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고, 제재를 가하기도 불가능하며, 잦은 지역이동으로 영구 거주지(선거인등록을 하는)란 의미가 없다고 봄.
- 2017년 의회선거 투표율 80.00%, 2016년 대통령선거 투표율 72.75%

● 네덜란드

- 1917년 보통선거권과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헌법 개정과 함께 도입
- 투표를 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무이고, 비례대표제 하에서 진정한 의미의 '비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100% 투표율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입
- 1967년 정부에 의해 임명된 위원회의 폐지 권고를 받고 의무투표제 폐지
- 2017년 의회선거 투표율 81.93%
- 폐지이유
  - ·투표할 권리는 시민의 개인적인 권리
  - ·투표불참자에게 실제로 제재를 가하기 어려움.
  - ·자유투표제 실시 시 정당들은 선거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더 활동적이 됨.
  - ·의무투표제 하에서 투표율은 실제 정치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지 못함.

● 이탈리아

- 2차 대전 후 새로운 선거제도(대의민주주의,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와 선거법이 제정되면서 의무투표제를 도입했고, 1975년 헌법에 투표가 시민의 의무라고 규정, 단 국민투표로 가결된 1993년 새로운 선거법에서는 투표를 시민의 권리로 표현
- 법적으로 도장 찍힌 투표소 카드를 제시하면 투표를 하기 위한 3시간 업무휴식을 보장해 줌.

- 투표 불참 시 육아시설이용에 불이익을 주는 사회적 제재(innocuous sanction)를 부과
- 2018년 의회선거 투표율 72.93%

- 베네수엘라
  - 1993년까지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제재규정은 없고, 실제로 시행된 바 없음.
  - 2015년 의회선거 투표율 73.76%, 2018년 대통령선거 투표율 45.74%
- 코스타리카(헌법 제93조)
  - 1959년 헌법에 의무투표 실시를 규정했으나, 투표 불참자에게 제재를 한 적은 없음.
  - 2018년 의회선거 투표율 65.56%, 2018년 대통령선거 투표율 65.70%
- 멕시코(헌법 제35,36조)
  - 헌법에 의무투표 실시가 규정됐지만 선거법에 투표불참 시 제재 규정이 없어서 다른 국가에 비해 투표율이 낮음.
  - 투표불참 시 이탈리아에서 실시했던 바와 같이 사회적, 임의적 제재는 가능
  - 2018년 의회선거 투표율 63.21%, 2018년 대통령선거 투표율 63.43%
- 칠레(헌법 제15조)
  - 1988년 정치적 대변혁기에 도입
  - 그러나 선거권자 등록이 자율적이고, 등록한 선거권자들에게만 의무투표제가 적용되므로 투표 불참 시에도 실제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경우는 드묾.
  - 2016년 의회선거 투표율 47.53%, 2017년 대통령선거 투표율 46.70%
- 피지(헌법 제56조)
  - 1997년 도입되어 의무투표와 함께 선거권자 등록도 의무적임.
  - 투표불참 시 벌금형과 징역형이 가능하나 제도 도입이후 처벌받은 사례는 없음.
  - 1999년 의회선거에서 89.41% 투표율을 기록했으나, 2001년에는 81.05%, 2006년에는 64%로 하락세 보임.
  - 2014년 의무투표제 폐지
  - 2014년 의회선거 84.60%
- 키프로스(헌법 제31조 및 선거법 제7조)
  - 1959년 도입

- 18세에서 60세 사이의 선거권자에게만 의무투표 적용
- 투표불참자들은 불참사유를 해명할 수 있고 법원에서 이유가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제재를 피할 수 있지만, 위반 시에는 벌금 200유로 또는 최고 6개월까지 징역형 부과(그러나 2001년 총선거이후 제재 사례는 거의 없음)
- 2017년 의무투표제 폐지
- 2016년 의회선거 투표율 66.74%, 2018년 대통령선거 투표율 73.97%

<표 1-12> 의무투표제 실시 주요 국가 현황

국가명 (도입연도)		기권 시 제재내용	최종투표율	근거 규정
유럽 국가	벨기에 (1892년)	• 벌금(1회 위반 €25~50의 벌금, 2회 위반 시부터 €50~125까지) • 15년 이내 4번 불참 시 10년 동안 투표권 박탈, 공직제한	2019년 88.38%(의)	헌법 제62,68조
	그리스 (1952년)	• 1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여권 발급과 운전면허증 발급중지 ※ 2001년 헌법개정시 투표불참 시 제재 내용이 빠져 사실상 의무투표제는 유명무실화되었음	2019년 57.91%(의)	헌법 제51조 선거법 제117조
	룩셈부르크 (1919년)	• 벌금(€100~1,000)	2018년 89.66%(의)	선거법 제89조
	리히텐슈타인 (1922년)	• 벌금(20 CHF, €18)	2017년 77.82%(의)	시민권리법 제3조, 제90조제2항
	스위스 (1904년)	• 26개 주 중 1개 주(샤프하우젠)가 실시하고 있으며, 벌금(약 €5.26)이 부과됨	2015년 48.51%(의)	주법에 규정
중남미 국가	브라질 (1988년)	• 그 지역 최저임금의 3~10%의 벌금이 부과되고, 공직제한, 여권발급 등이 금지	2018년 79.50%(의) 2018년 79.67%(대)	헌법 제14조 선거법 제6,7조
	페 루 (1993년)	• 벌금(20 Soles) 부과, 은행계좌 신설금지, 공공행정거래 금지	2016년 81.88%(의) 2016년 80.09%(대)	헌법 제31조 선거법 제9조
	아르헨티나 (1912년)	• 벌금(10~20 Pesos) 부과, 3년간 공직제한	2017년 76.74%(의) 2015년 80.77%(대)	헌법 제37조 선거법 제12조
	에콰도르 (1936년)	• 벌금(200~500 Sucre) 부과	2017년 81.74%(의) 2017년 81.69%(대)	헌법 제62조 선거법 제11조
	볼리비아 (1952년)	• 벌금 부과, 선거일부터 90일 동안 은행에서 월급 인출 불가, 공직 불가, 은행 거래 금지, 여권 발급 불가	2019년 88.47%(의) 2019년 88.31%(대)	헌법 제26조 선거법 제43조
	우루과이 (1933년)	• 벌금 부과	2014년 89.62%(의) 2014년 88.57%(대)	헌법 제77조
기타 국가	호 주 (1924년)	• 벌금(A$20) 부과, 벌금 미납 시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2016년 91.01%(의)	연방선거법 제245조
	태 국 (1997년)	• 정치적 권리: 법안발의, 탄핵, 선출직 공직을 박탈당함.	2019년 74.69%(의)	헌법 제50조
	싱가포르 (1959년)	• 선거인명부에서 제명 또는 벌금 부과, 대통령 또는 의회의원 피선거권 박탈	2015년 93.56%(의) 2011년 94.65%(대)	의회선거법 제43조
	터 키 (1986년)	• 벌금(1만 Liras) 부과	2018년 86.22%(의) 2018년 86.24%(대)	헌법 제175조 선거법 제63조

※ 이 밖에도 콩고민주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이집트, 가봉, 온두라스, 레바논, 나우루, 파나마, 파라과이, 불가리아(2016년 도입, 제재조치는 없음)에서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음.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LF004 (검색일 2019.4.2.)
IDEA. Compulsory Voting International.
https://www.idea.int/data-tools/data/voter-turnout/compulsory-voting (검색일 2019.4.3.)
IDEA. Voter Turnout Database International.
https://www.idea.int/data-tools/data/voter-turnout (검색일 2019.4.16.)

나. 인센티브제

- 투표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제를 적극 실시하거나 시행하는 국가는 없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이나 민간단체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음.
- 또한 의무투표제를 compulsory voting, mandatory voting이라고 지칭하는 것과 달리 투표 인센티브제라는 용어 자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음.
- 다만, 이탈리아·노르웨이·불가리아·미국·일본 등에서 투표참여자의 투표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표 1-13> 인센티브제 실시 국가 현황

국가명	편의제공내역
이탈리아 (하원의원 선거법 제116~118조)	• 하원 총선거의 경우 선거인이 투표소까지 왕복하기 위한 국영철도의 요금을 70%까지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에 관한 사항은 철도청이 정함(제116조). • 해외근로자로서 투표하기 위해 귀국하는 자는 국경 내 출발역으로부터 투표할 시·읍·면까지의 왕복철도교통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음(제117조). • 국가공무원, 군인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근무지와 다른 시·읍·면에 가야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이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현행 법규가 정하는 기한 내로 교통비 환급 및 근무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제118조).
노르웨이[60]	• 1995년 노르웨이 에베네스(Evenes)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위원회는 복권 추첨을 통하여 선거인 2명에게 여행권($1,600 상당) 제공
불가리아	• 2005년 국회의원선거에서 불가리아 정부는 복권 추첨으로 경품 제공 ※ €15,000 상당의 자동차, 컴퓨터, 전자제품, 모바일 폰 등
미 국	• 2015.5.19. 로스엔젤레스 학교위원 선거에서 추첨으로 현금($25,000) 제공[61] - 비영리단체인 Southwest Voter Registration Education Project에서 투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금 복권(Voteria) 제공 계획 수립 • 2015.11.3. 필라델피아 지방선거에서 추첨으로 현금($10,000) 제공[62] - Pamela and Ajay Raju Foundation 단체에서 투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금 복권(Voteria) 제공 계획 수립 • 이외에 기업 영업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엄밀히 연방법(제42편 제20장 제1973i조) 위반이나 실제 제재를 하고 있지는 않음.[63] - 2018년 의회선거에서 기업들이 'I Voted' 스티커를 붙인 선거인에게 샌드위치나 커피 등을 제공하거나 투표소까지 무료로 태워다 주는 이벤트를 실시함.[64]
일 본	• 선거세일 실시 - 지역의 상가협의회 등에서 투표확인증을 가지고 방문하는 고객에게 각종 혜택 제공

60) 노르웨이와 불가리아 사례는 IDEA. 2006. 'Engaging the Electorate: Initiatives to Promote Voter Turnout From Around the World.' 참조.
http://aceproject.org/ero-en/topics/electoral-participation/turnout/Idea_voter_low.pdf/view (검색일 2019.4.19.)

61) LAtimes. 2015.4.21.
https://www.latimes.com/opinion/editorials/la-ed-voteria-vote-to-win-cash-lottery-20150421-story.html (검색일 2019.4.19.)

참조 1-3 일본의 선거 SALE[65]

-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나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투표확인증을 소지한 고객에게 지역 상점가에서 상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투표자 인센티브 제도로서 선거세일이라고 부르고 있음.
- 90년대 이후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민간부분에서도 투표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어 2003년 11월 실시된 중의원선거에서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법적인 조치는 아님.
-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
  투표확인증 발행(임의 발급), 선거세일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도·조언
  ※ 공직선거를 관리하고 있는 총무성에서는 선거관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 유지 차원에서 선거세일에 대한 지원이나 공식적 제도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는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확인증 교부를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반 이상의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확인증 발급을 하지 않고 있어 투표소 간판을 찍은 인증샷 등의 사진으로 투표확인증 대체가 가능함.
- 청년회의소와 NGO 단체
  참여 상점 모집, 행사의 선거법 저촉 여부 등과 관련해 선관위와 협의, 선거세일 기간과 참가지역에 대한 홍보, 선거세일 종료 후 효과에 대한 평가
  ※ 전국선거할인실시위원회[66] 등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상점 모집 및 홍보(2016년 참의원선거: 550여 점포, 2017년 중의원선거: 500여 점포 참여)
- 참여 상점
  상품할인, 교환권·경품 제공, 포인트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원하지 않으며 사회공헌이라는 의식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의의를 가지고 참여

---

62) BBC. 2017.5.9.
https://www.bbc.com/news/magazine-39794795 (검색일 2019.4.19.)

63) 연방법. 제42편 공중보건과 복지 제20장 선거권 제1973i조 금지행위(United States Code. Title 42. Chapter 20. §1973i. Prohibited acts)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08-title42/html/USCODE-2008-title42-chap20-subchapI-A-sec1973i.htm (검색일 2019.6.21.)

64) The New York Times. 2018.11.6. 'An 'I Voted' Sticker Can Get You Free Stuff.(But Is It Legal? Well...).'
https://www.nytimes.com/2018/11/06/us/voting-free-stuff.html (검색일 2019.6.21.)

65) 고선규. 2010. 일본의 투표자 인센티브제도와 투표참여. 한국정당학회보. 9(1).

66) 전국선거할인실시위원회 홈페이지
http://senkyowari.com/ (검색일 2019.6.19.)

<표 1-14> OECD국가의 연도별 선거 투표율(%)

국가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고
영 국	-	-	65.77 (의)	-	-	-	-	-	-	68.93 (의)	-	
미 국	64.36 (의) 70.33 (대)	-	41.59 (의)	-	67.59 (의) 67.95 (대)	-	42.50 (의)	-	65.44 (의) 65.44 (대)	-	-	
프랑스	-	-	-	-	55.40 (의) 80.35 (대)	-	-	-	-	42.64 (의) 74.56 (대)	-	
일 본	-	69.27 (의)	-	-	59.3 2(의)	-	52.66 (의)	-	-	정보 없음	-	
독 일	-	70.78 (의)	-	-	-	71.53 (의)	-	-	-	76.15 (의)	-	
스페인	75.32 (의)	-	-	68.94 (의)	-	-	-	73.20 (의)	69.84 (의)	-	-	
스웨덴	-	-	84.63 (의)	-	-	-	85.81 (의)	-	-	-	87.18 (의)	
스위스	-	-	-	49.10 (의)	-	-	-	48.51 (의)	-	-	-	의무 투표 (1개 칸튼)
캐나다	59.52 (의)	-	-	61.11 (의)	-	-	-	68.28 (의)	-	-	-	
호 주	-	-	93.22 (의)	-	-	93.23 (의)	-	-	91.01 (의)	-	-	의무 투표
오스트리아	78.81 (의)	-	53.57 (대)	-	-	74.91 (의)	-	-	72.75 (대)	80.00 (의)	-	
벨기에	-	-	89.22 (의)	-	-	-	89.37 (의)	-	-	-	-	의무 투표
체 코	-	-	62.60 (의)	-	-	59.48 (의) 59.08 (대)	-	-	-	60.84 (의)	61.88 (대)	
칠 레	-	87.67 (의)	86.94 (대)	-	-	41.98 (대) 49.35 (의)	-	-	-	46.53 (의) 46.70 (대)	-	
덴마크	-	-	-	87.74 (의)	-	-	-	85.89 (의)	-	-	-	
에스토니아	-	-	-	63.53 (의)	-	-	-	64.23 (의)	-	-	-	63.67 (19'의)
핀란드	-	-	-	67.37 (의)	68.86 (대)	-	-	66.85 (의)	-	-	66.76 (대)	
그리스	-	70.92 (의)	-	-	62.47 (의)	-	-	63.94 (의)	-	-	-	의무 투표
헝가리	-	-	64.38 (의)	-	-	-	61.84 (의)	-	-	-	69.67 (의)	

국가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고
아이슬란드	-	85.12 (의)	-	-	69.32 (대)	81.44 (의)	-	-	79.18 (의) 75.67 (대)	-	-	
아일랜드	-	-	-	69.90 (의) 56.11 (대)	-	-	-	-	65.09 (의)	-	43.87 (대)	
이스라엘	-	64.72 (의)	-	-	67.77 (의)	-	-	72.34 (의)	-	-	-	
이탈리아	80.54 (의)	-	-	-	-	75.19 (의)	-	-	-	-	72.93 (의)	
라트비아	-	-	64.72 (의)	59.49 (의)	-	-	58.80 (의)	-	-	-	54.58 (의)	
리투아니아	48.59 (의)	51.76 (대)	-	-	52.93 (의)	-	47.37 (대)	-	50.64 (의)	-	-	
룩셈부르크	-	90.93 (의)	-	-	-	91.15 (의)	-	-	-	-	89.66 (의)	의무 투표
멕시코	-	44.61 (의)	-	-	62.45 (의) 63.14 (대)	-	-	47.72 (의)	-	-	63.21 (의) 63.43 (대)	
네덜란드	-	-	75.40 (의)	-	74.56 (의)	-	-	-	-	81.93 (의)	-	
노르웨이	-	76.37 (의)	-	-	-	78.23 (의)	-	-	-	78.22 (의)	-	
뉴질랜드	79.46 (의)	-	-	74.21 (의)	-	-	76.95 (의)	-	-	79.75 (의)	-	
폴란드	-	-	55.31 (대)	48.92 (의)	-	-	-	50.92 (의) 55.34 (대)	-	-	-	
포르투갈	-	59.68 (의)	-	58.03 (의) 46.52 (대)	-	-	-	55.84 (의)	48.70 (대)	-	-	
대한민국	46.01 (의)	-	-	-	54.26 (의) 75.84 (대)	-	56.81 (지방)	-	58.03 (의) 77.20 (대)	-	-	
슬로바키아	-	51.67 (의)	58.84 (의)	-	59.11 (의)	-	50.48 (대)	-	59.82 (의)	-	-	
슬로베니아	63.10 (의)	-	-	65.60 (의)	42.41 (대)	-	51.73 (의)	-	-	-	52.64 (의)	
터 키	-	-	-	87.59 (의)	-	-	74.13 (대)	85.18 (의)	-	-	86.22 (의) 86.24 (대)	의무 투표

※ 의회의원 선거(의), 대통령 선거(대)
출처: IDEA. Voter Turnout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data/voter-turnout (검색일 2019.3.27.)

2. 선거의 공정성 보장

가.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1. 영 국

- 영국의 신문과 잡지는 선거보도에 있어 방송에 비해 재량권이 많아 정치적 지지 내지 선호하는 정당에 대해 정치적 색채를 나타낼 수 있음.
- 반면, 방송매체의 정치관련 보도에 있어서는 정당성과 불편부당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모든 규제는 언론에 관한 법 등을 통해 선거기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규제의 대상이 됨.
  - 선거방송은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커뮤니케이션법」, 그리고 각 방송사의 제작지침 상의 원칙들을 기준으로 규제됨.[67]
-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 제11조: 정당정치 방송과 관련하여 방송사는 선거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할 것을 명시
  - 제127조: 정식으로 등록한 개인이나 정당에 한하여 선거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함.
  - 제144조: 선거기간의 방송은 준칙(code of practice)을 제정하여 준수할 것을 명시함.
-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s Act, 2003)」은 방송서비스의 일반적인 공정성 및 불편부당성을 규정함과 동시에 정당정치방송(party political broadcasts)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 제320조: 공정성 및 불편부당(special impartiality requirements) 조항은 정치

67) 김여라. 2012. 선거방송의 쟁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161호. 2012.8.22. p.20. https://www.nars.go.kr/brdView.do?cmsCd=CM0023&brd_Seq=2078 (검색일 2019.5.30.)

적인 논쟁사안과 관련하여 특정한 견해나 의견을 제외시키지 말고 공정성을 유지할 것을 규정

- 제319조제2항: 통신위원회(Ofcom)는 심의기준(standards code)에 따라 뉴스의 불편부당성 및 정확성의 원칙과 정치광고 금지규칙이 준수되는지 감독해야 함.
- 제321조 제2항: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의 광고 및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은 정치적인 목적을 지닌 광고를 금지할 것을 규정
- 제333조: 정당의 정치방송과 관련해 통신위원회의 관련규정에 방송을 할 수 있는 정당, 방송의 길이와 빈도, 지정된 단체 등을 포함할 것을 명시함.

● 공영방송사 BBC의 경우 자체 규제기관(BBC 이사위원회)을 두고, 자체적으로 「편집지침(editorial guidelines)」[68]을 제정해 준수하고 있음.

- 제4장 불편부당(impartiality) 조항
  - ·정치적으로 논쟁이 될 수 있는 사안을 뉴스로 다룰 때에는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아야 함.
  - ·정치 및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는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본원칙으로 해야 하며,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때는 조사방식 등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해야 함.
  - ·선거 기간 중에는 특히 이러한 원칙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관련 민원을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함.
- 「편집지침」 외에 선거와 관련하여 매 선거마다 별도의 「선거지침(Election Guidelines)」을 제정해 적용하고 있음.
  - ·뉴스뿐만 아니라 어떤 장르의 프로그램이라도 선거기간 중 정치인이 참여할 경우에는 미리 정치자문관(chief advisor politics)에게 알려야 함.
  - ·선거방송과 관련한 불만 등 민원이 제기될 때에는, 민원당사자가 정치인이든, 시민운동가이든, 개인이든지 간에 일관적이고 신속하게 이를 처리하되, 프로그램 편집자로부터 위의 담당자까지 적절한 수준에서 명확하게 처리해야 함.

---

68) BBC. Editorial Guidelines. 2019.6.
https://www.bbc.com/editorialguidelines/guidelines (검색일 2019.9.18.)

·정당에 관한 보도를 할 때에는 각 정당의 의석수와 활동에 맞게 균형을 맞추어 조정하되 공정하게 해야 함.

·특정 선거구에 관하여 보도할 때에는 그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보도와 관련해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후보자가 없도록 해야 함.

2. 미 국

-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가 거의 절대적으로 존중되며,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나 정책은 위헌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민감한 이슈에 해당함.
- 미국의 선거는 "미디어 선거"라로 불릴 만큼 언론매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특히 선거방송의 경우 「연방통신법(Communication Act, 1934)」 제315조에서 "공직선거에 출마한 적격한 후보자가 방송을 이용할 때에는 다른 후보자들도 동등하게 이용할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69]고 규정해 동시간 원칙(equlal time rule), 형평의 원칙 등을 통하여 보도의 공정을 기하고 있음.
-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는 1949년 공정보도원칙(FCC fair doctrine)을 제시하고 방송국이 이를 자발적으로 따를 것을 규정함.
  - 공정보도원칙은 1) 공공에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상반된 이슈를 보여주고, 2) 정직하고, 공평하고, 균형 잡힌 시선으로 보도할 것을 포함하고 있음.
  - 동시간 원칙이 공직선거 후보자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는 규정이라면, 선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이슈에 대한 공정한 보도를 규정한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1987년 FCC는 공정보도원칙의 내용이 「수정헌법」 제1조의 내용에 반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폐지했으나, 내용만 존속하다가 2011년에 관련규

69) Communications Act of 1934. section 315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47/315 (검색일 2019.6.21.)

정을 완전히 폐지함.[70]

3. 프랑스

- 1881년 제정된 “언론자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프랑스의 언론매체들은 선거보도에 관한 어떠한 법적 제약을 받지 않음.
- 그러나 선거법은 방송매체상 의견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방송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간의 동등성 원칙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프랑스의 선거홍보물 및 벽보는 모두 국고로 제작되며, 선거법 제5장(선전) 제52-1조에서 “선거가 실시될 예정인 달의 6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전의 목적으로 영상커뮤니케이션매체나 인쇄매체를 통해 모든 종류의 상업적인 광고의 이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방송을 통해서도 후보자 및 지지자의 찬조연설, 보도 및 토론 프로그램을 제외한 여타의 프로그램에 정치인이 출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

  ※ 선거기간 중 선거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헌법평의회가 담당하지만, 방송에서는 각 후보자들을 동등하게 다루고 있는지 등을 감시하는 시청각 최고위원회(CSA)를 두고 있음.

4. 독 일

- 독일 기본법 제5조는 의사표명의 자유, 알권리, 학문의 자유를 규정하고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자사의 보도방침을 결정하도록 함.
- 선거운동과 관련한 특별한 법적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언론매체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각 정당의 당규에도 선거운동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70) Brooks Boliek. 2011.8.22. ‘FCC Finally Kills Off Fairness Doctrine.’ Politico. https://www.politico.com/story/2011/08/fcc-finally-kills-off-fairness-doctrine-061851 (검색일 2019.9.10.)

- 대부분의 인쇄매체들은 선거보도에서 특정한 정치성향을 띤 보도나 특정 정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할 수 있는 등 자율적인 선거보도 권한이 있음.
- 최근 이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SNS,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에도 독일 기본법 제5조제1항에 기초한 표현의 자유에 보호를 받음.
- 선거보도에 대한 사항은 각 방송사들의 협의체인 독일언론평의회(Deutscher Presserat)의 언론강령(Publizistische Grundsätze, Presskodex)[71]에서 자율적인 지침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독일 언론강령>

제1호. 진실성과 인간존엄성의 준수 진실성과 인간존엄의 보호 및 대중들에 대한 진실한 보도는 언론의 최상위의 임무이다. 언론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이러한 원칙에 기초해 미디어의 명성과 신뢰를 지켜야 한다. 제1호의 지침 2. 선거운동 보도 선거운동 보도에서 언론이 관련되지 않은 견해들에 대해 보도하는 것 또한 대중들에 대한 진실한 보도에 속한다.

- 해당 자율지침은 위반 시 참여 언론사로 하여금 자체적인 징계를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언론의 편파적인 선거개입을 자율적으로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5. 일 본

-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언론의 선거보도는 규제로부터 자유로움.
- 신문·잡지의 보도 및 평론 등의 자유(공직선거법 제148조)
  - 신문·잡지의 선거에 관한 보도 및 평론을 게재하는 경우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기재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여 선거의 공정을

71) Ethical standards for journalism. 2017.
https://www.presserat.de/pressekodex.html/ (검색일 2019.8.12.)
https://www.presserat.de/fileadmin/user_upload/Downloads_Dateien/Pressekodex2017_web.pdf (검색일 2019.9.21.)

침해해서는 안 됨.

※ 위반 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공직선거법 제235조의2제1호)

- 선거방송프로그램 편집의 자유(공직선거법 제151조의3)
  - 일본방송협회 또는 기간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선거에 관한 보도 또는 평론의 경우 허위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방송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여 선거의 공정을 침해해서는 안 됨.

    ※ 위반 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공직선거법 제235조의4제1호)

- 「일본공영방송국(NHK) 2015 방송지침」[72] 제12장 정치경제 여론조사에서 선거방송 관련 자율규정을 두고 있음.
  - 선거 관련 뉴스와 프로그램의 방송, 선거결과의 속보 등은 정확한 취재와 공정한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함.
  - 선거 정세와 현지보고 등의 경우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 분석하고 표현에 주의함.
  - 개표 속보는 개표 상황과 출구조사 등의 데이터를 냉정하게 분석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시함과 동시에 시청자와 선거권자의 관심에 부응하도록 보도함.
  - 후보자 이름의 순서와 영상 처리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일관성 있게 대응함.
  - 선거 시 입후보 예정자와 출마가 예상되는 사람은 선거기간 전이라도 원칙적으로 선거와 무관한 프로그램에 출연시키지 않음. 선거운동을 하는 학자, 문화인이나 연예인 등의 방송 출연은 정치적 공정성에 의심을 가지지 않도록 함.
  - 투표 마감 전 선거법 위반 뉴스는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나 정당의 이름을 취급하는 등의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

- 「일본 TV도쿄 방송 보도윤리지침」[73]의 선거방송 관련 자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선거보도의 경우는 선거결과가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정하고 형평성에 특히 유의함.
  - 후보자나 정당 등을 소개할 때는 최대한 공정하게 대우함.

---

72) https://www.nhk.or.jp/pr/keiei/bc-guideline/pdf/guideline2015.pdf (검색일 2019.10.2.)

73) https://www.tv-tokyo.co.jp/main/yoriyoi/rinri.html (검색일 2019.10.28.)

- 보도의 목적은 선거권자에게 정확한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됨.

6. 스페인

- 정치적·사회적 다원성에 대하여 존중해야 함(선거법 제66조).
  - 선거기간 동안 공영방송매체는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서 정보의 평등성, 균형성 및 중립성을 지켜야 함.
    ※ 위반 시 관할 선거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선거기간 동안 민영방송시설도 다원성과 평등의 원칙을 존중해야 하고, 후보자 토론회 및 인터뷰 방송에 있어 정보의 비례성 및 중립성을 준수해야 하며, 중앙선거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기타 선거운동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7. 스웨덴

- 선거 관련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며, 선거 기간 취재에 대한 특별 지침 또는 스웨덴 방송위원회의 공정보도의무를 따름.[74]
- 스웨덴 방송위원회의 자율지침에 의하면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임.
  - 첫째, 특정인이 언론에서 지목되어 비난이나 비판을 받을 경우 지목된 당사자에게 그 비난이나 비판에 대해 대응할 기회를 주어야 함. 원칙적으로 같은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참여를 거부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비난에 대해 방어할 기회를 주어야 함.
  - 둘째, 논란이 있는 주제나 사건에 대해 일방적인 보도를 하는 등의 편향적 보도를 할 수 없음. 단, 특정 주제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의견을 주고받는 프로그

74) https://www.mprt.se/en/broadcasting-radio-and-tv/requirements-and-regulations/ (검색일 2019.9.3.)

램에서는 허용 가능함.

- 셋째, 방송사 대표들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평가를 하거나, 특정인(그룹)의 편에서 견해를 제시할 수 없음. 방송사의 대표로 인식될 수 있는 기자, 발표자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사람들은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어느 한 편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됨. 단, 여론 조사 결과나 인과 관계 등을 밝히는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평가적인 검토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 가능함.

- 지난 2018년 선거와 관련해 스웨덴 국영 방송국 SVT는 공정성 위반으로 스웨덴 방송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음.[75]
  - 2018년 당시 선거 최종 토론 프로그램에서 민주당 당수가 이민자들이 스웨덴에서 일자리를 얻고 통합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는데, 관련 내용은 선거가 끝난 직후 요약되어 선거 결과와 함께 방송됨. 이러한 SVT의 편집 방식에 대해 검토위원회는 정치적 입장이 반영된 프로그램 표기 방식으로 공정성 요구 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였음.

8. 스위스

- 스위스 헌법 제16조 의사표명 및 정보의 자유, 제17조 미디어의 자유, 제21조 학문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큰 가치를 부여해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음.[76]
- 2016년부터 시행중인「라디오와 텔레비전에 관한 연방법」을 통해 공정보도 의무 등을 규제하고 있음.[77]

---

75) https://www.mprt.se/sv/nyhetsrum/pressmeddelanden/2019/svt-falls-for-partiskt-agerande-i-slutdebatten-infor-valet-/ (검색일 2019.9.6.)

76) 선거 운동 및 투표 규칙(Vorschriften für Wahlkämpfe und Abstimmungen) http://www.ch.ch/de/demokratie/die-politischen-parteien/vorschriften-fur-die-werbung-von-politischen-parteien-in-der (검색일 2019.8.9.)

77)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관한 연방법[Bundegesetz über Radio und Fernsehen, Loi fédérale sur la radio et la télévision(LRTV)] https://www.admin.ch/opc/de/classified-compilation/20001794/index.html (검색일 2019.8.23.)

- 제4조: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공정보도 의무 규정
- 제5a조: 스위스 공영방송 SSR은 보도 및 취재활동 중 선거 및 투표에 있어 다양성을 반영해야 함.[78]
- 제10조제1항: 선거운동기간에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정치광고를 송출할 수 없도록 함.

-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제외한 언론은 정치보도를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음.[79]
  - 이 경우, 스위스언론평의회(Presserat, Conseil suisse de la presse)의 언론윤리강령 지침(Directive relative à la "Déclaration des devoirs et des droits du/de la journaliste") 제3.2조에서 정치적 보도의 경우에는 정치적 내용임을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여 일반 시민들이 구별할 수 있도록 함.
  - 언론평의회는 처벌 권한은 없지만 언론평의회의 결정이 여론에 큰 영향력을 행사
  - 언론평의회는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결정내용을 정당에도 통보하며 언론평의회 홈페이지(www.pressrat.ch)와 언론을 통해 공표

9. 캐나다

- 캐나다는 헌법 제2조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언론자유 지수(2019 World Press Freedom Index)에서 18위를 차지[80]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보장되는 국가임.
- 따라서 캐나다의 언론인들은 개인의 지위에서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언론사들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논설 게재도 빈번함.

  ※ 2011년 캐나다 총선 시 많은 발행부수를 차지하는 신문들 중 하나인 토론토 스타(Toronto Star)는 잭 레이톤(Jack Layton)이 이끄는 신민주당(New Democratic Party)을, 글로브 앤 메일(The

78) 연방법 개정 이유서. Message relatif à la modification de la loi fédérale sur la radio et la télévision(LRTV). FF 2013 4425. 2013.5.29.
https://www.admin.ch/opc/fr/federal-gazette/2013/4425.pdf (검색일 2019.9.26.)

79) https://presserat.ch/fr/code-de-deontologie-des-journalistes/richtlinien/ (검색일 2019.9.26.)

80) 국경없는 기자회 2019. 4. 발표
https://rsf.org/en/ranking (검색일 2019.8.6.)

Globe and Mail)·내셔널 포스트(National Post)·토론토 선(Toronto Sun)은 스테판 하퍼(Stephen Harper)가 이끄는 보수당(Conservative Party)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였음[81]

- 캐나다는 선거법상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에 관한 규정은 없음.
- 캐나다의 방송통신시설은 「방송법(Canada Broadcasting Act)」을 통해 규제됨. 또한 방송법은 캐나다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원칙을 제공함.[82]
  - 제3조제1항: 캐나다의 방송시스템은 다양하고 폭넓게, 정보, 배움 그리고 오락을 균형 있게 모든 연령, 관심사 그리고 취향의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제공해야 함.
  - 제3조제1항제I호: 캐나다의 모든 방송시스템은 대중에게 공공이익에 관련된 문제의 관한 다양한 관점 표현해야 함.
  - 제5조제1항: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CRTC)는 캐나다 방송시스템의 모든 면모를 규제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음.
  - 제10조제1항제e호: 방송사는 후보자 및 정당 간 공평하게 보도해야 함.
- 「라디오규제(Radio Regulations, 1986)」[83]와 「텔레비전방송규제(Television Broadcasting Regulations, 1987)」[84]는 선거 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허가받은 모든 방송사는 당파적인 특성이 있는 방송, 광고, 혹은 발표 시 선거 혹은 국민투표에 참여하는 모든 승인을 받은 정당과 상대 후보들에게 공평한 방식으로 시간을 제공해야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TV 및 라디오 방송사 및 TV 서비스 제공자들 위한 선거 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V and Radio Broadcasters and TV Service Providers during an Election)을 통해 언론기관이 따라야할 지침을 서술함.[85]

---

81) 박성철, 박호경, 장품, 구나영. 2013.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조항의 위헌성-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를 중심으로-「언론과 법」 제12권 제2호.

82) Canada Broadcasting Act. Justice Laws Canada.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b-9.01/ (검색일 2019.9.25.)

83) Radio Regulations. Justice Laws Canada. https://laws.justice.gc.ca/eng/regulations/SOR-86-982/ (검색일 2019.9.25.)

84) Television Broadcasting Regulations. Justice Laws Canada https://laws.justice.gc.ca/eng/regulations/SOR-87-49/ (검색일 2019.9.25.)

85) Guidelines for TV and Radio Broadcasters and TV service providers during an election,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 이 가이드라인은 각 라이선시들의 상황이 다름을 인지하며 선거 시 방송의 모든 면모를 다루는 원칙을 세우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함을 명시함.

10. 호 주

- 선거법에서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그러나 「방송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86]에 따라 선거기간 중 선거와 관련된 방송을 하는 경우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함[방송법 Schedule 2. Part 2-3(2)].
  - 선거관련 정치적 사안을 방송할 때 방송사는 반드시 관련된 등록정당과 해당 후보자, 발화자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알려야 함.
  - 방송사는 선거일 전 수요일 오전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거운동 제한기간(blackout period)을 준수해야 함.
- 호주공영방송국(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ABC)은 선거의 공정보도를 위해 「호주공영방송법(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Act, 1983)」에 따라 선거보도검토위원회(Election Coverage Review Committee: ECR)를 두고 있음.[87]
  - 위원회에서는 보도내용과 시청자의 불만사항을 매주 모니터하고, 라디오/텔레비전 무료방송 시간을 규정에 따라 정당에 배분함.
  - ABC는 아이센티아(iSentia)에 의뢰해 선거운동기간 시작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플랫폼에서 있었던 선거와 관련된 보도의 매체점유율(share-of-voice) 데이터를 후보자와 정당별로 집계해 공정한 보도에 대해 모니터함.

---

https://crtc.gc.ca/eng/industr/tvradio/guidelec.htm (검색일 2019.9.25.)

86) 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 2018개정.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8C00375 (검색일 2019.8.9.)

87) 호주공영방송. 선거보도검토위원회의 2016 연방선거 리포트(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2016 Federal Election report).
http://about.abc.net.au/wp-content/uploads/2016/11/2016FederalElectionECRCRPT.pdf (검색일 2019.9.30.)

- 하지만 방송시간만으로 무엇에 대해 토론하였는지, 발화자의 어조와 논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으며, 짧고 강렬한 논의가 있는 반면 장황하기만 코멘트도 있고, 집권당과 후보자들이 더 많은 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음.

<그림 1-1> 호주 ABC방송 보도시간 총합 비교(2016년 선거운동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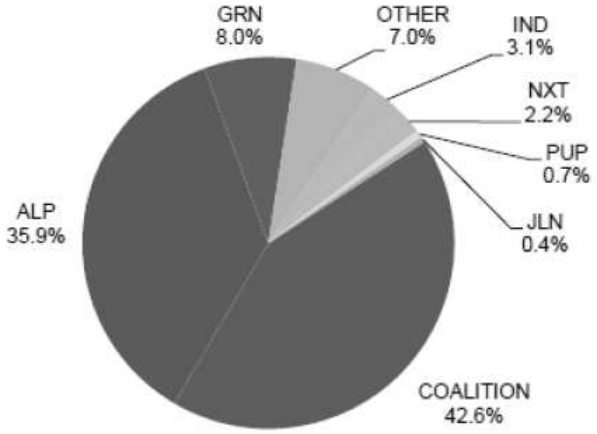

나. 선거보도심의

1. 영 국

- 통신위원회(Office of communication: Ofcom) 설치
  - 2003년 12월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 Act, 2003)」에 의해 설립
  - 독립텔레비전위원회(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ITC)와 라디오국(Radio Authority)을 합친 보다 통합적인 규제기관으로 방송과 미디어에 대한 심의를 통해 언론보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룸.[88]
  - 또한 선거를 전후하여 특정 후보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후보의 개인 신상을 편파적으로 제작·방송할 경우 피해 후보자가 해당 방송사를 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정치방송 배정은 방송사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나, 정당과 방송 길이, 횟수, 배정이나 시간에 문제가 있을 경우 통신위원회의 선거위원회[89]가 조정업무를 담당함. 이때 최소한의 규제가 적용되며 조정 시 방송사의 자율권을 존중
- 통신위원회의 「방송규약(Broadcasting Code)」은 방송프로그램, 협찬(sponsor-ship), 공정성, 프라이버시 등에 관하여 정리한 것으로, 방송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을 규정함.
  - 뉴스프로그램에서 정치인을 사회자, 인터뷰어, 리포터로 세울 수 없고, 사실과 견해를 구분하여 전달해야 함.
  - 논쟁이 되고 있는 정치적 이슈와 관련하여 특정 견해를 과도하게 부각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함.

---

88) 영국 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ofcom.org.uk/about-ofcom/what-is-ofcom (검색일 2019.5.30.)

89) 통신위원회 이사회는 커뮤니케이션법 제333조에 따른 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당선거방송 및 국민투표캠페인 방송 배정과 길이, 빈도, 편성에 관하여 통신위원회가 허가한 방송사와 정당 간의 해결되지 않은 분쟁 결정을 선거위원회에 위임하며, 통신위원회가 위원장을 임명, 위원은 최대 5명임.
https://www.ofcom.org.uk/about-ofcom/how-ofcom-is-run/committees/election-committee (검색일 2019.5.30.)

-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한 방송에 관하여 규정하며, 기본적으로 주요 정당에 대한 방송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하고, 그 외의 정당이나 후보자들에게도 중요한 견해를 밝힐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인쇄물·신문·잡지 등의 정기간행물과 지면광고, 옥외광고 등 모든 인쇄매체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으나 보도나 광고에 대해 불만이 생길 경우 언론보도 관련 불만사항은 기존의 언론고충위원회(Press Complaints Commission)를 대체해 설립된 독립언론기준협회(Independent Press Standards Organisation: IPSO)에 제소해 조정할 수 있음.[90]
  - 독립언론기준협회는 편집규약(Editors' Code of Practice)을 위반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정정보도 청구, 벌금 부과(최대 100만 파운드 벌금 부과) 등을 포함한 각종 제재를 가할 수 있음.

2. 미 국

- 미국은「수정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언론의 자유를 강력히 보호하고 있는 국가로, 언론에 대한 심의제도는 위헌의 소지가 큼. 따라서 사전심의제도 보다는 사후심의나 법률 및 행정기관에 의한 심의보다 방송기관의 자율 심의를 활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미국 방송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NAB)의 자율적인 심의규정(Code of Conduct)이 1929년부터 존속하였음.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광고와 관련된 규제거나 폭력, 마약, 음란물 등과 같은 민감한 이슈에 대한 내용을 규제할 뿐 선거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구제하는 내용이 없었음.
- NAB의 방송심의규정은 1980년대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는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폐지되었고, 1990년 NAB는 느슨한 방송규제에 대한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있음.[91]

---

90) 독립언론기준협회 홈페이지
https://www.ipso.co.uk/IPSO/makeacomplaint.htmlwhat-we-do/ (검색일 2019.5.30.)

91) Benton institute for Broadband & Society. 'Appendix C: Statement of Principles of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ing.'

- 1990년 발표된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원칙에 대한 성명(Statement of Principles of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ing)」은 기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권고(Advisory) 내용을 담고 있고, 각 방송사별로 자율적인 규제 원칙을 확인하고 있음.
- 따라서 선거보도와 관련된 언론심의 제도는 각 방송사별로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언론보도의 내용을 결정 및 심의하고 있음.
- 자체 방송사별 규정은 법의 범위 내에서 각각 다르며, 공익 보호 및 선거에서 바람직한 경쟁과 효과적인 미디어 역할을 보장하는 등 운용의 표준을 정하고 있음.

※ 다만, 공영 방송사에 대한 규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예외로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EC)는 공중파에서 외설적인 장면을 방영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함.[92]

3. 프랑스

- 각 신문사가 정한 자율적인 규정에 따라 선거보도를 함.
- 프랑스 언론법은 선거기간 중 신문보도에 대해 반론 및 정정보도 청구권을 비선거기간 보다 신속히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프랑스 시청각 최고위원회(CSA)는 선거보도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매 선거마다 권고안을 채택하여 엄격한 규정을 부여하고 있으며 각 방송사는 선거기간에 출연한 후보자간 발언 및 보도의 공평성에 관해 보고해야 함.

---

https://www.benton.org/initiatives/obligations/charting_the_digital_broadcasting_future/appc (검색일 2019.9.10.)

92) 2005년 방송품위집행법(Broadcast Decency Enforcement Act of 2005)이 통과되어 FEC가 음란한 방송에 대해 32,500달러에서 325,000달러까지 최대 수준으로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함. 이것은 외설스러운 행위로 여겨지는 표현과 아이디어로부터 젊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미국 대법원은 아직 인터넷에 개정하지는 않았지만 인터넷 중립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면 개정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함.
https://en.wikipedia.org/wiki/Media_regulation (검색일 2019.6.21.)

4. 독 일

-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보도를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 등을 설치하고 있지 않고 있음.
- 언론자율기관인 독일언론평의회가 오보나 왜곡보도, 편파보도의 정정과 언론중재를 담당

5. 일 본

- 공직선거법상 선거보도에 관한 심의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함.
- 각 언론사의 내부규범이나 지침(강령) 등으로 각 선거에 있어서 보도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음.
- 특히 방송사는 방송법상의 불편부당성·정치적 공평원칙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방송법 제4조).[93]
  - 제4조: 방송사업자는 국내방송의 프로그램의 편집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가. 공안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지 않을 것
    나. 정치적으로 공평할 것
    다. 보도는 사실을 왜곡하지 말 것
    라.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능한 다양한 각도에서 논점을 밝힐 것
- 언론 스스로 특정 정당의 지지 등 불공정 시비를 초래할 수 있는 보도태도를 지양하고, 언론사 내부의 자율규제가 제 기능을 하고 있어 선거보도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많지 않음.

---

93) e-Gov(전자정부포탈). 방송법.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5AC0000000132#46
(검색일 2019.8.12.)

6. 스페인

- 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고, 선거관리기관 등이 운영하는 심의위원회도 없음.

7. 스웨덴

- 스웨덴은 1766년 헌법으로 「언론의 자유법(Freedom of the Press Act)」을 채택했으며, 1992년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법(Fundamental Law on the Freedom of Expression)」을 규정함에 따라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음.[94][95]
- 스웨덴 방송위원회를 통해 스웨덴의 모든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은 공식적으로 관리·감독됨.[96]
  - 스웨덴 방송위원회는 1994년에 제정된 「라디오와 텔레비전 법(Radio and Television Act)」이 언론기관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며, 만약 언론 기관에서 관련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인쇄물·신문·잡지 등의 정기간행물과 지면광고, 옥외광고 등 모든 인쇄매체에 대한 규제는 없으나 보도에 대한 불만이 생길 경우 언론보도 관련 불만사항은 방송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 방송위원회는 해당 사항이 라디오 및 텔레비전 법의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공정성, 정확성, 개인정보보호 요건, 차별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94) https://riksdagen.se/globalassets/07.-dokument--lagar/the-freedom-of-the-press-act-2015.pdf (검색일 2019.10.15.)

95) https://riksdagen.se/globalassets/07.-dokument--lagar/the-fundamental-law-on-freedom-of-expression-2015.pdf (검색일 2019.10.15.)

96) https://po.se/ (검색일 2019.10.15.)

8. 스위스

- 우리나라처럼 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보도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 등을 설치하고 있지 않고 있음.
- 다만, 공영방송 SSR이 방송의 중립성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관한 연방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SSR 중재기구(Organe de médiation SSR)"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SSR 중재기구에 의해서도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관한 연방법」 제94조, 제95조제1항에 따라, "라디오 텔레비전 분야 사안에 대한 독립적인 심사당국(Autorité indépendante d'examen des plaintes en matière de radio-télévision: AIEP)"에 30일 이내 이의제기 가능
- SSR 외 언론은 스위스언론평의회(Conseil suisse de la presse)의 윤리강령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보도 가능하며, SSR 외 언론보도에 대한 문제제기는 스위스언론평의회에 가능[97]
  - 언론평의회가 오보나 왜곡보도, 편파보도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받아 검토해 내용을 공개[98]
  -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지만 선거운동기간에는 선거와 관련된 독자기고나 온라인의견개진을 언론에 싣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 인종적인 내용이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재한 언론은 처벌받을 수 있음.
  - 편집부에서 독자투고 내용을 줄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짐.
  - SNS 통한 선거운동도 일반적인 법의 적용의 받으면서 광범위하게 허용
  -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음.

---

97) 스위스연방.
https://www.bfs.admin.ch/bfs/fr/home/statistiques/culture-medias-societe-information-sport/medias/juridiques/conseil-suisse-presse.html (검색일 2019.9.26.)

98) Demokratie.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규칙(Vorschriften für Wahlkämpfe und Abstimmungen)
https://www.ch.ch/de/demokratie/die-politischen-parteien/vorschriften-fur-die-werbung-von-politischen-parteien-in-der/(검색일 2019.8.9.)
The Press Council. 'The procedure.'
https://presserat.ch/en/beschwerde/ablauf-beschwerde/ (검색일 2019.8.9.)

9. 캐나다

- 선거법상 선거보도 심의와 관련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방송법」[99]에 근거하여 설립된 라디오-텔레비전 및 방송통신위원회(CRTC)를 통해 캐나다 전역에 적용되는 라디오나 방송통신시설을 규제하고 있음(방송법 제2조제1항).
  - 캐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캐나다 방송시스템의 모든 면모를 규제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보도의 관련된 민원을 처리함(방송법 제5조제1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거보도의 관한 민원, 기록 및 판결을 사이트를 통해 제공함.[100]

10. 호 주

- 선거보도에 대해서는「방송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제5조에 따라 호주방송통신미디어심의회(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MA)[101]가 선거와 정치에 관한 방송을 심의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정치, 시사 뉴스, 연설, 코멘트, 토론 방송을 하려면 반드시 방송심의회에서 인증한 형태로 제작해야하고 해당 기록물은 6주 동안,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가 들어온 경우 6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함. 또한 선거광고의 마지막에 해당 보도는 심의 받은 내용임을 표시해야 함.
- 호주방송통신미디어심의회는 방송산업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으며 방송과 관련

99) Broadcasting act.
https://laws.justice.gc.ca/eng/acts/B-9.01/index.html (검색일 2019.7.16.)

100) Decisions, Notices and Orders.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https://crtc.gc.ca/eng/dno.htm (검색일 2019.9.25.)

101) 호주선거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aec.gov.au/Elections/electoral-advertising/index.htm (검색일 2019.7.24.)

한 이의제기를 심의함.[102]

- 타인의 의뢰에 따라 정치 사안을 방송하는 경우 의뢰자의 이름·주소 등을 공표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기록을 보관하고 호주방송통신미디어심의회의 요청에 따라 제공해야 함[방송법 Schedule 2-Part 2-4(2),(3)].

102) 방송법 제5조(ACMA의 역할) 및 Part 11(ACMA에 대한 이의제기) 참조.
https://www.aec.gov.au/About_AEC/Publications/backgrounders/authorisation.htm (검색일 2019.7.30.)

다. 선거방송토론

1. 영 국

- 선거방송토론 관련 법 규정은 따로 없으며, 선거방송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방송토론의 구체적 규정은 주요 3당 대표 및 토론회 중계방송사간의 합의로 결정됨.
  -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The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제144조에 따르면, 각 방송사가 선거방송토론의 구체적인 방송분량, 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단, 방송사가 지침 제정 시 선거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토록 의무화하고 있음.
  - 선거방송토론 관련 자율규제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무해성을 규정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s Act, 2003)」[103]과 방송 분량 및 방송 범위에 대한 일반 원칙(예를 들어, 정당별 방송 분량 결정시 의석배분 고려 등에 따른 비례성 원칙 적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정당정치 및 국민투표방송에 관한 규정(Rules on Party Political and Referendum Broadcasts)」에 따른 제한을 받도록 함.
- 영국에 선거방송토론이 도입된 것은 2010년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늦은 편임.[104]
  - 선거방송토론 참가자는 주요 3개 정당의 대표와 사회자(moderator) 1명 및 청중(audience) 약 200명으로 구성됨.
  - 2010년 선거방송토론은 노동당, 보수당, 자유민주당 등 3당의 대표 간 토론으로 3차에 걸쳐 총리후보 토론 및 재무장관후보 토론으로 나뉘어 개최되었음.

    ※ 스코틀랜드 지역정당인 스코틀랜드국민당(Scotland National Party, SNP) 및 웨일즈 지역정당인 웨일즈 민족당(Plaid Cymru) 대표가 참여하는 TV 토론은 해당지역의 BBC 방송사인 BBC

---

103) 영국 법령센터 홈페이지.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3/21/contents (검색일 2019.9.18.)

104) 2010 United Kingdom general election debates.
https://en.wikipedia.org/wiki/2010_United_Kingdom_general_election_debates (검색일 2019.9.18.)

Scotland와 BBC Wales를 통해 별도로 개최되었음.

- 청중은 단순히 참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로서 토론을 이끄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 청중들은 토론 질문을 작성하여 방송사 편집자가 구성하는 방송사 패널(broadcaster's panel)에게 제출하고, 방송사 패널은 접수된 질문을 검토해 최종 선택함.
- 선거방송토론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보수당, 노동당, 자유민주당, 3당의 합의 하에 「선거방송토론 세부규칙(Prime Ministerial Debate: Programme Format)」[105]을 발표함.
- 이 규칙은 청중선정, 청중의 역할, 프로그램의 구조, 진행자의 역할, 토론주제, 세트, 청중 장면전환, 질문 선정, 패널 등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규정함.

- 2015년 총선 생방송 TV토론 4차례 진행[106]
  - 기본적으로 방송사들 간의 합의로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등을 정하고 합의사항을 주요정당에 전달해 정당 대표가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함.
  - 주요 정당뿐만 아니라 녹색당, 웨일즈당, 스코틀랜드국민당 등이 TV토론에 함께 참여해 정당 간 이견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며, TV토론 자체가 총선 이전 최대 이슈로 부상하기도 함.

2. 미 국

1) 도입배경[107]

- 미국의 선거방송토론은 1960년 리차드 닉스(Richard Nixon)과 존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시작됐으나 이후 중단됨.
- 1977년부터 1984년까지 민간단체인 여성선거권자연맹(League of Women Voters: LWV)에서 주관함.

---

105) BBC. Prime Ministerial Debate: Programme Format. https://www.bbc.co.uk/blogs/theeditors/pm_debates_programme_format.pdf (검색일 2019.9.18.)

106) 2015. United Kingdom general election debates. https://en.wikipedia.org/wiki/2015_United_Kingdom_general_election_debates (검색일 2019.9.18.)

107) https://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presidential_debates (검색일 2019.7.18.)

- 1988년 선거부터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원을 받은 대통령토론위원회(Commission on Presidential Debates: CPD)가 비영리기관으로 설립되어 CPD에서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토론회를 주관하고 있음.
  ※ 비영리, 초당적 법인으로 1988년, 1992년, 1996년, 2000년, 2004년, 2008년, 2012년 및 2016년 대통령(부통령 포함)의 모든 토론회를 후원함.
  ※ 반면에 시민토론위원회(Citizen Debate Commission: CDC)는 자체적으로 후보자 참여 기준을 만들고 양당체제 대통령 후보자만 초청하는 CPD 체제와 배제된 주제의 토론회를 비판하는 취지로 2004년 군소정당 후보자 대상으로 토론회 개최하기도 함.[108]
- 선거방송토론은 선거운동의 방법 중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며, 주지사 선거, 상원·하원의원 선거, county, town district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방식의 중요한 수단으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는 TV, Radio를 통해 생방송되어 84백만 명(2016 대선기준으로 온라인 제외)이 시청하는 중요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보통 대통령의 경우는 2, 3회 정도와 부통령은 1회 이루어짐.

2) 연방선거위원회 규정(연방선거운동법 제110.13조)[109]

- 연방선거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 FEC)는 후보자 간 선거방송토론의 대강의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후보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방송토론은 중립적인 비영리단체에 의해서 주관되어야 하며, 텔레비전, 신문, 매거진, 그리고 기타 정기 간행물 등에 공정하게 보도되어야 함.
  - 토론회의 형식과 관련하여 최소한 2명 이상의 후보를 포함하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형식으로 구성되지 말아야 함.

3) 토론회 준비(CPD 체제를 중심으로)[110]

- 대통령 선거의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토론회의 구체

108) About Revlaim Democracy!. 'The Citizens' Presidential Debate Commission.' http://reclaimdemocracy.org/political_reform_citizens_debate_commission_proposal/ (검색일 2019.6.21.)

109) Federal Election Commission. FEC Regulation. Title 11. Federal Election. §110.13 Candidate debates. https://www.fec.gov/regulations/110-13/2019-annual-110#110-13 (검색일 2019.9.20.)

110) CPD. 2015.10.29. 'Commission on Presidential Debates Announces 20166 NOnpartisan Candidate Selection Ctiteria; Forms Working Group on Format.' https://www.debates.org/2015/10/29/commission-on-presidential-debates-announces-2016-nonpartisan-candidate-selection-criteria-forms-working-group-on-format/ (검색일 2019.7.25.)

적인 형식 및 내용을 결정하고 있으며, 토론회의 시기, 장소, 구체적인 운영방식 등에 대하여 합의한 후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작성함.[111]

- 사회자는 주요 방송사(CNN, NBC, CBS, PBS 등) 앵커 중에서 다양한 생방송 경험, 선거관련 이슈 친숙도,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토론에 유도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자 중에서 선정하며, 질문자는 생방송 중에 사회자 재량으로 선정하고 토론 방식은 CPD 소위원회회(working group)에서 결정함.
- 토론을 주관하는 CPD가 후보자 참여 요건을 정해 후보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요건에 충족하는 정당은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이며, 양당제 후보자만 참여해 이에 따른 소송도 있었지만 승소해 지금까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112]

4) 토론회 진행

- 질문순서는 동전던지기로 결정되며, 사회자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질문내용은 각종미디어, 선거관련기관 등 다양한 매체에서 논의된 이슈 중에서 사회자가 CPD에 제안
  - 토론주제 및 최종질문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서 당일 사회자 직권으로 선정해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토론 장소에서 출입증을 배부함.
- 그 밖에 매 토론회 마다 흥행을 위한 주제가 있지만 사회자의 공정하고 융통성 있는 원활한 진행이 중요한 요건임.
  - CPD는 2020 총선의 토론회 장소신청 공모를 통해 최종 6개 기관·대학교(Utah Debate Commission and the University of Utah, Salt Lake City 포함)를 지정함.[113]

---

111) Huffpost. 2012.10.15. ‘Presidential Debate Contrac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Released.’ https://www.huffpost.com/entry/presidential-debate-memo-released_n_1968323 (검색일 2019.9.20.)

112) 토론회 참여 후보자 요건으로는 헌법상 결격사유가 없을 것,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여러 주에서 선거인단을 확보했을 것, 주요여론조사 5개 기관의 지지율의 평균 15% 이상일 것, 미국 제3당 자유당의 대선후보 Gary Johnson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함. 워싱턴 타임즈에 따르면 토론은 공익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토론위원회는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자체 규칙과 규정에 공공력이 개입되어 있지 않아 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됨.

113) CPD. News. 2019.4.3. ‘CPD Announces 2020 Debate Host Applicants.’ https://www.debates.org/news/ (검색일 2019.7.18.)

3. 프랑스

1) 선거방송토론 개요[114]

- 선거방송토론의 유형
  - 대통령선거 결선후보자 TV 토론
  - 대통령선거 1차 투표 이전의 후보자 TV 토론
  - 정규토론방송에 후보자 초청 토론
  - 기타선거(하원선거의 선거구별,[115][116] 유럽의회선거 등)의 후보자 TV토론회
-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선거법 규정은 없으며, 후보자들과 방송사들의 자율적 합의 속에서 선거방송토론을 진행함. 후보자 토론회 개최와 초청후보자 선택은 방송사의 고유 편성권한임.
- 시청율과 공정성 그리고 형평성 원칙 적용에 어려움을 이유로 대선 결선후보자 TV 토론회 이외의 선거후보자 초청 TV 토론회에 방송사들은 소극적임.
- 정규토론프로그램에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2) 토론 방식[117]

- 1974년 대선후보 첫 TV 토론 후, 결선투표에 패배한 미테랑 후보는 1981년 대선후보 TV토론 시 진행방식에 대한 22개 항을 제안함.

  ※ 이후 공정성과 형평성이 강조된 22개 조항이 대선 후보자 TV 토론의 전통이 되었고, TV토론을 통한 예측 결과의 반전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평함.[118]

---

114) 프랑스총리실 공보부. 대통령선거 1981-2012: (예선·결선) TV토론(Présidentielles 1981-2012: les débats télévisés entre les deux tours).
https://www.vie-publique.fr/discours/selection-discours/presidentielles-debats-televises.html (검색일 2019.9.30.)

115) 방송사별 하원선거구별 선거방송토론 일정
https://france3-regions.francetvinfo.fr/grand-est/elections-legislatives-debat-votre-region-1262907.html
(검색일 2019.7.18.)

116) 입법선거- 중간토론 Élections Législatives 2017 – Débats d'entre-deux-tours
http://angers-tele.fr/5835-2/ (검색일 2019.7.18.)

117) Wikipedia. 프랑스 대통령선거 TV토론(Débat télévisé du second tour de l'élection présidentielle française)
https://fr.wikipedia.org/wiki/D%C3%A9bat_t%C3%A9l%C3%A9vis%C3%A9_du_second_tour_de_l%27%C3%A9lection_pr%C3%A9sidentielle_fran%C3%A7aise#Bibliographie (검색일 2019.7.17.)

118) Vie-publique.fr 2017.4.21.
https://www.vie-publique.fr/discours/selection-discours/presidentielles-debats-televises.html (검색일 2019.7.17.)

-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며, 후보자와 진행자 2명만 참석함.
- 토론 주제와 질문은 최고방송위원회의 중재 하에 사전 협의함.
- 제1차 사전 협의 시 토론주제 합의, 제2차 사전 협의 시 사전 질문지 합의 및 통보
- 진행자는 후보자가 발언시간을 준수하게 하고 사전 협의된 질문을 제시함.
- 추첨을 통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자가 제시하는 질문에 동등한 시간의 발언(각 50분 정도)과 정리발언(각 5분)의 기회를 줌.
- 후보자 간의 상호 질문을 금지함.
- 공정성과 형평성을 중점에 둠.[119]

3) 실시사례: 2017년 대통령선거 1차 TV토론

- 2017.3.20. TF1, LCI, France 24사가 방송여론조사 상위 5명의 후보자(François Fillon, Benoît Hamon, Marine Le Pen, Emmanuel Macron et Jean-Luc Mélenchon)를 선정하여 TV토론을 실시.[120]
- 2017.4.4. BFM TV, CNews et RMC 방송사가 주최한 토론회에 대통령 후보자 11명 모두 참여[121]

4) 자막 및 수어통역

- 근거규정[122]
  - 「1986년 9월 30일 n°86-1067 방송의 자유에 관한 법률」[123]에 따라 실시
  - 공영방송과 공공단체는 전국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에서 자막이나 수어통역이 삽입된 방송의 수를 시청각 최고위원회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제18조4°).

---

119) 전영. 2012. '선거관련 방송에서의 정치적 다원주의.' 법학연구. 33. 53(2), p.27-51.

120) Francebleu. 2017.2.21. 1차 투표 전 TV토론: 1차 2017.3.20. 2차 2017.4.4. 3차 2017.4.20.(취소됨) https://www.francebleu.fr/infos/politique/presidentielle-debat-televise-entre-cinq-candidats-le-20-mars-sur-tf1-1487690831 (검색일 2019.6.7.)

121) Wikipedia. 프랑스 1차 대선 TV토론(Débats télévisés du premier tour de l'élection présidentielle française) https://fr.wikipedia.org/wiki/D%C3%A9bats_t%C3%A9l%C3%A9vis%C3%A9s_du_premier_tour_de_l%27%C3%A9lection_pr%C3%A9sidentielle_fran%C3%A7aise (검색일 2019.6.7.)

122) Superior Council of Audiovisual (Le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 https://www.csa.fr/ Mes-services/FAQ/Proteger/L-accessibilite-des-programmes-aux-personnes-souffrant-de-deficience-auditive-ou-visuelle#Pourquoi-tous-les-programmes-ne-sont-ils-pas-sous-titrés-à-la-télévision-? (검색일 2019.6.7.)

123) (일명: 레오타 장관법)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Loi Léotard)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LEGITEXT000006068930 (검색일 2019.6.7.)

- 연간 시청률 2.5% 이상의 모든 방송채널은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 및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제28조5° bis-5°ter.).
-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청각 최고위원회와 국가는 매년 장애인을 위한 국가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함. 특히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각 프로그램의 계약에 자막과 수어에 대한 의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함(제81조).

- 자막 및 수어통역 방송 현황
  - 선거방송토론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통역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선거방송토론을 주최하는 방송사에서 도입하고 있지 아니함. 시간 격차가 있는 자막방송을 시행하고 있으나 방송사마다 실시여부가 다르며 자막의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124]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프랑스 청각장애인 연맹(SNSF)에서는 TF1사의 1차 투표전 대통령선거방송토론을 수어로 별도로 제작함.[125]

4. 독 일

-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기관이 주관하는 의무적인 선거방송토론 제도는 없음.[126]
- 2개의 공영방송사와 2개의 민영방송사가 공동으로 TV토론을 주관하여 방송[127]
  - 4개 방송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총리후보 양자 TV토론의 사회자는 총 4명으

124) L'express Débats politiques à la télé: "Sourde, je réclame des sous-titres de qualité" 2017.1.26. https://www.lexpress.fr/actualite/medias/debats-politiques-a-la-tele-sourde-je-reclame-des-sous-titres-de-qualite_1873087.html (검색일 2019.6.7.)

125) La Fédération Nationale des Sourds de France https://www.fnsf.org/communique-du-21-mars-2017-reaction-debat-televise-des-candidats-aux-elections-presidentielles-sur-tf1/ (검색일 2019.6.7.)

126) 최영돈 · 이종희. 2014, '2013 독일 총리후보자 TV토론 진행방식 및 내용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8권 2호. p.447-477. https://www.daserste.de/information/politik-weltgeschehen/bundestagswahl-2017/sendung/tv-duell-110.html (검색일 2019.8.12.)

127) https://de.wikipedia.org/wiki/Fernsehduell (검색일 2019.9.21.)

로 구성되며 각 방송사가 1명씩 추천하여 이들이 총리후보 TV토론을 함께 진행

- 총리토론위원회(Kommission zu den Kanzlerdebatten)는 비영리 독립조직이며 관련 분야의 학자, 전문가, 신문기자들을 중심으로 5명으로 구성
  - 연방의회선거가 있는 4년에 한 번씩 구성될 때마다 다소 변동이 있음.
  - 총리토론위원회는 TV토론 준비과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토론을 분석·평가함.
- 선거방송토론은 1961년 연방의회선거를 앞두고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사민당 후보가 재임 총리에게 양자 TV토론을 제안한 이후 연방의회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 총리 후보가 재임 총리에게 양자 TV토론을 제안하는 전통이 생김.
  - 그러나 1998년까지 총리후보 일대일 TV토론은 성사되지 않았음.
  - 그 대신 1972년부터 1987년까지 연방의회에 진출한 모든 정당의 대표자 또는 총리후보들이 참가한 정례 합동 TV토론이 개최됨.
  - 1990년부터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가 정례 합동TV토론을 거부함으로써 헬무트 콜 총리 재임 기간에는 선거방송토론이 개최되지 않음.
- 그 후 2002년 제15회 연방의회선거를 앞두고 처음으로 총리후보 양자TV토론이 개최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 그 외에도 군소 정당 대표 3자 TV토론과 합동 TV토론이 개최되기도 함.

5. 일 본

-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토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선거기간 중 실시되는 경력방송(법 제151조)과 정견방송(법 제150조)외 선거운동을 위한방송이 제한됨(공직선거법 제151조의5).
- 다만, 선거기간 전에 사전선거운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TV 토론은 각 방송사의 재량에 따라 허용됨.
- 선거기간을 전후하여 주요 정당의 당수가 TV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하나 이 역시 방송사가 주최하는 토론회로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개최됨.

<표 1-15> 일본 2016년 제24회 참의원의원 통상선거 전 당수 토론회[128)]

일자	방송사	방송명	시청률
6월 19일	NHK	일요토론[129)] (日曜討論)	4.1%
6월 19일	후지 텔레비전 (フジテレビ)	신보도 2001 (新報道2001)	5.3%
6월 19일	TBS	선데이 모닝 (サンデーモーニング)	15.5%
6월 21일	테레비 아사히 (テレビ朝日)	보도 스테이션 (報道ステーション)	9.0%
6월 22일	참의원 통상선거 공시일		
6월 24일	TBS	NEWS 23[130)]	4.2%

6. 스페인

- 선거관리기관이 주관하는 의무적인 선거방송토론제도는 없음.
- 선거방송토론 제도에 집권당의 총리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비판도 있음. 선거방송토론제도에 대한 규정은 꾸준히 요구되어 옴.[131)132)133)]
- 실시사례

128) 毎日新聞「選択の現場：2016参院選 盛り上がらぬTV 党首討論、公示後は1回 気を使う割に底視聴率」2016년 6월 28일 https://dbs.g-search.or.jp/aps/WMSK/main.jsp?ssid=20190920182738361gsh-ap04 (검색일 2019.9.20.)

129) NHK 2016. https://www.nhk.or.jp/touron/backnumber/2016.html (검색일 2019.6.20.)

130) TBS. 2016 http://www.tbs.co.jp/senkyo2016/preelection/saninsen/20160624_01.html (검색일 2019.6.20.)

131) El Español 신문. '페드로 산체스 2015년 후보자로서 요구하던 토론방송 잊었나' https://www.elespanol.com/espana/20190418/presidente-sanchez-olvida-regulacion-debates-candidato-propuso/391711411_0.html (검색일 2019.9.15.)

132) InfoLibre 홈페이지. '후보자 의무 토론회 제도가 시급하다.' https://www.infolibre.es/noticias/opinion/columnas/2019/04/17/lo_del_debate_tiene_arreglo_94108_1023.html (검색일 2019.9.15.)

133) El Confidencial Digital. '의무 토론회를 입법화 할 것인가.' https://www.elconfidencialdigital.com/articulo/te_lo_aclaro/incluir-electoral-obligacion-celebrar-debates/20151211123509079561.html (검색일 2019.9.15.)

- 2019. 4. 28. 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 선거 및 의회 선거 후보자들 간 20여회의 토론회가 있었으며, 각 정당 대표인 총리 후보자간 토론회는 4월 22일 국영방송사 RTVE, 4월 23일 까딸루냐 방송사 Atresmedia에서 2회 진행됨.[134]
- 까딸루냐 방송사 Atresmedia는 신생 극우 정당 VOX를 포함한 5개의 정당을 토론회에 초청하였고, 선거위원회에서 의석이 없는 VOX가 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알리자 방송사는 이를 받아들여 VOX를 제외한 네 개 정당(PP, PSOE, CIUDADANOS, PODEMOS)과 토론회를 진행함.[135]

7. 스웨덴

- 스웨덴에서 선거방송토론은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며, 방송사와 협의 하에 후보자들은 선거기간 동안 스웨덴 라디오(Sveriges Radio)와 스웨덴 공영 방송(SVT)에 출연해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음.[136]
  - 중앙 및 지방선거 모두 해당되며, 중앙방송국뿐 아니라 각 지역방송국에서도 모두 동일한 프로그램을 방영함. 단, 지방선거의 경우 지역 방송국은 해당 지역 후보자 연설이나 토론회를 집중 방송할 수 있으며, 타 지역선거 방송은 선택적으로 방송여부를 결정 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중앙 선거의 경우 공식적으로 크게 두 번의 토론 방송을 실시하는데, 첫 번째는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의 당 대표들이 참석하여 토론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해당 선거에서 유력한 총리 후보자들만 모여 다시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137]

---

134) https://en.wikipedia.org/wiki/2019_Spanish_general_election#cite_note-123 (검색일 2019.9.15.)

135) https://www.elmundo.es/espana/2019/04/16/5cb6158021efa01a5d8b4593.html (검색일 2019.9.15.)

136)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2018. 'Odihr Needs Assessment Mission Report 15-17 May 2018.'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383934?download=true (검색일 2019.10.15.)

137) Youtube. 'Swedish Election: Will Sweden turn to the right this weekend?'
https://www.youtube.com/watch?v=J9joGbk42Qg (검색일 2019.9.19.)

8. 스위스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국민투표가 실시되기 시작한 1848년 이후로 2019년까지 약 620회의 국민투표를 치른 스위스의 정치적 분위기상 선거 및 국민투표의 쟁점이 되는 주제와 관련된 방송토론은 활발히 시행되고 있음.
- 공영방송사 SSR의 지역별 채널(독일어권, 프랑스어권 등으로 구분)에서 TV 토론을 조직하고 주관
  - 2019년 10월 연방의회 및 연방평의회 총선을 앞두고 여러 주제(평등권, 유럽연합과의 관계, 보건 등)에 관한 각 정당이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토론회를 다수 개최하고 있음.[138]

9. 캐나다

- 리더토론위원회(Leader's Debates Commission)[139] 설치
  - 2018년 10월 30일 연방의회선거에서 정당 대표자들 사이에 토론을 진행하기 위한 독립기구를 설치해 2019년 10월 21일 총선에서 처음으로 공식 토론회를 개최함.
  - 연방의회 선거운동에서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토론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정당 및 언론기관과 협조하여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 설치 이전에는 텔레비전 네트워크 컨소시엄을 통해 언론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정당 대표들의 토론회를 실시했으나, 참석 번복 및 언어 문제 등으로 인해 논란이 있음.[140]

---

138) 스위스 프랑스어권 방송.
https://www.rts.ch/info/suisse/10689464-egalite-environnement-ou-sante-les-debats-de-forum-avant-les-federales.html (검색일 2019.9.26.)

139) Leaders' Debates Commission.
https://debates-debats.ca/en/ (검색일 2019.7.16.)

140) Wikipedia. Leaders' Debates Commission.
https://en.wikipedia.org/wiki/Leaders%27_Debates_Commission (검색일 2019.7.16.)

- 리더토론위원회 운영[141]
  - 위원장은 총 7명의 자문 위원의 조언을 받아 당수토론위원회를 운영함.
    ※ 현 위원장은 캐나다 제28대 총독 David Johnston이 임명됨.
  - 당수토론위원회는 매 총선 시 공식토론회를 구성하는 의무를 맡음.
  - 공식토론은 매 총선에서 영어 1회, 프랑스어 1회 총 2회 실행되어야 함.
  - 전국 여론조사에서 적어도 전체 선거권자 4%의 지지를 받고 90%의 선거구에 후보를 내보내는 정당의 대표가 참석할 수 있음.
  - 방송사 선택은 2019년 초에 제안 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RFP)를 발표하고 심사를 통해 6월 중순에 발표함.
  - 영어 공식토론은 10월 7일, 프랑스어 공식토론은 10월 10일에 실시할 예정임.
  - 당수토론위원회는 9월 16일에 새로 신설된 캐나다 국민의 정당(People's Party of Canada)의 대표 Maxime Bernier를 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토론에 공식적으로 초청함.[142]
- 리더토론위원회의 공식토론회 외에도 여러 언론사에서 개별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려는 시도를 함.
  - 9월 12일에 토론토에서 경제, 외교, 원주민 및 환경정책에 대한 비공식 영어 토론회가 개최됨. 자유당 당수 및 현 수상을 맡은 Justin Trudeau는 토론에 불참함.[143]
  - 10월 2일 퀘벡 TVA에서 비공식 불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144]
  - 기후변화 활동가들이 캐나다 국영방송(CBC)이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고 8월에 48,000명의 서명을 제출함.[145]

---

141) Orders in Council 2018-1322, Government of Canada. https://orders-in-council.canada.ca/attachment.php?attach=37002&lang=en (검색일 2019.9.25.)

142) CBC News. 'Bernier's in – and the federal election debates just got less predictable.' https://www.cbc.ca/news/politics/maxime-bernier-peoples-party-federal-election-debate-2019-1.5285871 (검색일 2019.9.25.)

143) The Hill Times. 'Trio of party leaders to face off in Toronto for first leaders debate on Sept. 12, Trudeau sits it out.' https://www.hilltimes.com/2019/09/11/trio-of-party-leaders-to-face-off-in-toronto-for-first-leaders-debate-on-sept-12-trudeau-sits-it-out/213784. (검색일 2019.9.14.)

144) The Hill Times. 'Federal party leaders, minus May, face off in TVA election debate Oct. 2' https://www.hiltimes.com/2019/10/02/federal-party-leaders-minus-may-face-off-in-tva-election-debate-oct-2/216706 (검색일 2019.9.14.)

10. 호 주

- 선거법에서 선거방송토론을 제도화하거나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음.
- 선거토론방송의 횟수, 형식, 매체, 토론 장소와 시간은 선거기간 동안 정당과 방송사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짐.[146)]
  - 최근 선거에서 스캇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반대당 수장인 빌 쇼튼(Bill Shorten)과 언론사가 제시한 토론 중 3번만 합의하였는데, 집권당은 이미 유리한 위치에서 반대당 수장의 노출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거토론시간과 플랫폼을 선택함.
  - 월요일에 세븐투(7Two)라는 시청자가 적은 채널에서 하는 선거토론에는 시청자가 60만 명이 조금 넘었는데, 이 시간 인기있는 나인(Nine)채널에서 하는 레고 마스터스(Lego Masters)의 시청자가 105만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적은 수임. 금요일 밤 스카이 네트워크(Sky network)에서 있었던 두 번째 텔레비전 토론에도 5만 명의 시청자가 있을 뿐이었음.
  - 호주선거학회(Australian Election Studies)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선거토론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1993년 시청률이 71%였던 것에 비해 2016년에는 21%로 집계되고 있음.
  - 하지만 시청률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선거토론방송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입장임. 정당 입장에서 선거토론방송은 다른 정치광고보다 돈이 적게 들고 소셜미디어에도 계속 언급되면서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 토론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 아직 투표 결정하지 않은 선거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또한 선거권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슈를 정리하고 정당 간의 정책을 나란히 비교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언론사는 선거토론방송을 통해 기자들이 언론 아젠다를 정하고 토론의 내용에 대해 다시

---

145) Canada's National Observer. Tens of thousands sign petition demanding CBC host climate debate. https://www.nationalobserver.com/2019/08/08/news/tens-thousands-sign-petition-demanding-cbc-host-climate-debate (검색일 2019.9.25.)

146) 라트로브 대학교(La Trobe University) 도서관. 2019. 'TV토론은 사라질 것인가?(Are TV debates dead?)' https://www.latrobe.edu.au/news/articles/2018/opinion/are-tv-debates-dead (검색일 2019.9.30.)

논의할 수 있음.

<그림 1-2> 호주 1990~2016년 선거토론방송 시청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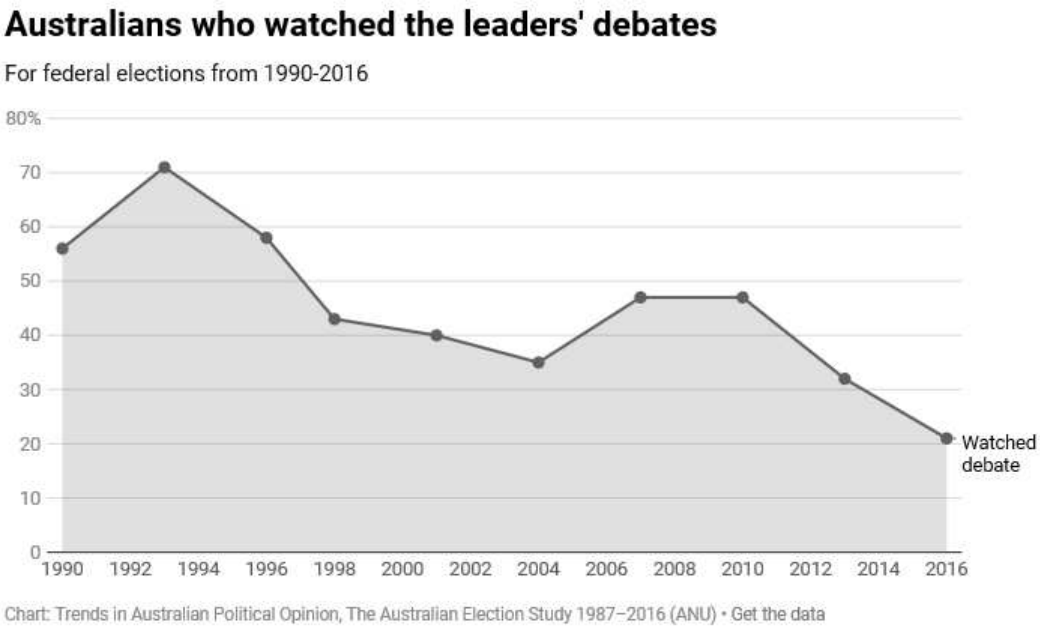

라. 선거여론조사

1. 영 국

-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음.
- 영국여론조사위원회(British Polling Council: BPC) 구성[147]
  - 영국 여론조사 기관들이 1992년 총선결과 예측 실패를 계기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공정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미국 National Council on Public Polls (NCPP) 모델을 기반으로 2004년 8개 주요 여론조사기관이 모여 조직해 자율 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 신뢰성과 적실성을 증진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의 공개원칙(Principle of Disclosure)을 제정해 모든 관련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소비자가 평가하도록 유도함.
  - 한편, 2015년 총선결과 예측 실패로 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조사방법에 대한 일대 조사를 실시해 “2015년 이후 영국 여론조사 개선” 보고서를 발표했고, 본 보고서에 기반해 2019년 여론조사 기관들이 자발적인 자체 개선안을 종합해 발표할 예정임.[148]

147) http://www.britishpollingcouncil.org/statement-of-disclosure/ (검색일 2019.10.15.)

148) 여기에서 BPC는 각 회원기관들에게 조사방법 개선을 요구하는데, 예컨대 미리 우편투표 한 선거권자는 여론조사에서 제외할 것, 투표 참여 가능성을 묻는 설문문항을 재검토할 것, 지지 후보에 대한 응답 거부자들을 처리하는 방식 재검토할 것, 가중치 부여 하위샘플표집을 보다 대표적인 샘플로 만들도록 조치할 것, 여론조사 샘플과 투표 의사에 부합하는 새로운 쿼터와 가중치 변수들을 조사·개발할 것 등을 요구함.
BPC. ‘How Have The Polls Changed Since 2015.’

<영국여론조사위원회 여론조사공표관련 주요 규정>[149]

2.1. 회원기관이 영국 내에서 실시한 공공 여론조사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공표해야 함.
- 조사위임기관
- 인터뷰 날짜
- 인터뷰 방법
- 조사 표본에 의해 대표되는 집단
- 결론의 근거가 된 비율
- 표본 규모 및 조사대상 지역

2.2.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다음 정보 또한 공표해야 함.
- 공개된 데이터의 산출 근거가 된 질문 전문
- 모든 전자자료에 나온 표들을 볼 수 있는 웹주소

2.3. 조사결과를 제공하는 여론조사기관들은 해당 조사결과를 보도하는 언론사들이 상기 공개사항을 보도 내용에 포함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상기사항 및 기관의 웹페이지 상에 게재한 모든 전자자료 상의 표들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조사결과를 공개한 날로부터 2근무일 이내에 발표해야 함.

2.4. 상기 정보에 더하여 공공 여론조사를 진행한 기관은 조사결과 공개시로부터 2 근무일내에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에 다음사항을 게재해야 함.
- 조사기관이 채택한 표본 추출 절차에 대한 설명
- 여론조사 항목을 정확하게 순서대로 보여주는 공개된 전자자료상의 표, 답변 방법, 모든 조사대상자 및 기타 공개된 데이터에 대한 가중치 및 비가중치
- 샘플에 표시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조사에 사용된 가중 절차 및 데이터를 가중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변수들의 (조사대상자 또는 기타) 가중치 및 비가중치
- 조사내용에 대한 질문을 위한 이메일 주소. 상기 필수 공개사항 이외에도 여론조사의 독자가 조사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타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 요청이 합리적인 경우에 조사기관이 해당 요청에 응할 것이 추정됨.
- 영국여론조사위원회 웹사이트 링크

2.6. 비공개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기관들은 조사 결과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권리가 있음. 그러나 사적여론조사의 결과가 의뢰기관에 의해 공개된 경우, 공개된 사항은 공공 사항이 되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본 여론조사공표에 관한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됨. 조사기관 및 의뢰기관은 공개된 사항을 다루는 여론조사 항목과 관련이 있거나, 여론조사 항목의 순서가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결과 이외의 기타 조사결과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수 있음. 조사기관은 공개된 결과를 관련된 적절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결과의 공개로부터 2 근무일 내에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재해야 함. 만약 공개된 결과를 의심하게 할 만한 다른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조사기관은 발견된 사항 또한 공개해야 함.

- 공영방송사인 BBC(The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 보도와 관련한 자체규정을 마련하고 있음.[150]

149) 영국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 'Objects And Rules.'
http://www.britishpollingcouncil.org/objects-and-rules/ (검색일 2019.9.18.)

150) BBC방송사 홈페이지. 'Guidance: Opinion polls, surveys, questionnaires, votes and Straw polls.'
https://www.bbc.com/editorialguidelines/guidance/surveys (검색일 2019.9.20.)
https://www.bbc.com/editorialguidelines/guidelines/politics/guidelines (검색일 2019.10.15.)

- 선거 당일에는 어떤 종류의 여론조사 결과도 방송할 수 없고, 선거운동도 방영할 수 없음.
-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할 때 사용하는 언어의 정확성과 적절성에 유의해야 하며, 특히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에 관한 내용은 헤드라인으로 노출시키지 않도록 함.

<BBC 여론조사 보도 가이드라인 주요 규정>

선거기간 여론조사

10.4.35
BBC 신탁이 동의하고 수석정치고문에 의해 각 선거 운동 개시 전 제시되는 가이드라인은 여론조사 처리에 관한 선거 기간 여론조사 특정 지침을 포함함.
어떤 여론조사도 선거 당일 투표 종료 시까지 방송되지 않으며, 또는 유럽의회 선거 시 모든 여론조사는 유럽연합 전반에 걸쳐 중지됨.

10.4.37
조사에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의견, 정책 또는 운영방식 등의 분석이 진행 중인 명확하고 한정된 그룹
- 최소응답률과 같은 사전에 수량화된 한도
- 적절하고 일관성 있게 배치된 질의항목을 포함한 방법론
- 결과를 보도 시 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언어 사용에 주의
- 다른 시청자들을 위한 표현 조정이 당초 조사 결과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홍보부를 포함한 여타의 BBC 기관들에 대한 명확한 지침.

10.4.38
조사에 포함된 정보의 중요도와 관련해 시청자들을 오도해서는 안 됨. 결과 보도 시 응답자의 실제 숫자를 보도해야 하며 백분위 비율은 신중하게 전후 상황을 감안해 다뤄져야 함.

2. 미 국

1) 연방차원의 여론조사 관련

- 미국에서의 선거여론 조사·공표는 상시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자세하게 실시되기는 하나 이를 규제하는 기관·단체 등 관련규정은 연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연방헌법의 언론의 자유 보장 차원).
  - 언제든지 선거조사기관, 개인, 후보자,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 PAC) 등 모든 주체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의 내용, 형식, 공표시기에 대한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2) 주차원 여론조사 세부규정

- 웨스트버지니아 주 법률
  - [§3-8-9(10). 여론조사 정의 및 목적에 대한 금지사항] 여론조사의 의미와 타인 기만, 후보자 지지·낙선, 후보자 제안 기타 이슈에 대해 지지·반대 금지사항을 정하여 언론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해야 함.
- 뉴헴프셔 주 법률
  - [RSA 664:2. XVII. 억압 여론조사, Push Polling vs. XVIII(Bona Fide, "정의" 공정한 여론조사)] 편향된 여론조사의 목적은 응답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주기 위해 후보자의 지지, 홍보, 관련 질문 등 특정 정보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정당한 여론조사를 가장한 실질적인 선거운동으로 간주함.
  - [RSA 664:16-a. 후보자를 위한 전화 홍보 시 신원확인 등 절차로서 의무 고지사항] 유료정치 홍보 전화라는 사실과 전화하는 단체 및 그 전화번호 그리고 지지하는 후보자를 알리는 것을 의무로 함[위반 시 처벌됨(RSA 664:21 V and VI)]

3) 여론조사기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체 규정

- 주요 여론조사 기관 현황[151]

<American Association for Public Opinion Research, National Council on Public Polls>

Elway Research, Field Research Corporation (Field Poll) – see, Gallup Poll, Harris Interactive, Marist Institute for Public Opinion, Monmouth University Polling Institute, NORC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formerly the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 Nielsen ratings, Pew Research Center, Public Policy Institute of California, Public Policy Polling, Quinnipiac University Polling Institute, Rasmussen Reports, Research 2000 (defunct), Siena Research Institute at Siena College, St. Norbert College Strategic Research Institute (Wisconsin Survey), Suffolk University Political Research Center (SUPRC), SurveyMonkey, SurveyUSA, Susquehanna Polling & Research, YouGov, Zogby International

※ 주요 여론조사기관 자체로 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고, CNN·NBC·CBS·PBS 등 주요 언론 등과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기도 함.
※ 반면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직접 여론조사를 하거나 여론조사기관과 함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정확도 신뢰성에 대해 문제 삼는 경우도 거의 없음.

151) Wikipedia. 'List of polling organizations'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polling_organizations#United_States (검색일 2019.6.21.)

- 미국여론조사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Public Opinion Research: AAPOR)의 표준윤리 강령 준수[152]
  - 전문 책임 원칙(조사범위 내 수행, 자발적인 참여, 사실조사, 취약계층 권리보호, 규정에 의한 정보수집 공개 등), 개인정보 준수, 전문 직무 수행원칙, 공시기준 준수 등
- 전미여론조사협의회(National Councile on Public Poll)의 공표의 원칙(Principles of Disclosure) 준수[153]
  - 1차: 후원자, 조사기간 명칭, 일시, 표본추출 방법, 모집단, 표본 크기, 조사방법, 질문순서, 백분율
  - 2차: 모집단 추정범위, 응답자 선택과정, 응답자 연락시도 횟수, 외국어 사용, 최소질문 답변 수, 조사자의 유급사항, 인센티브, 가중치 부여, 응답률 등
  - 3차: 데이터 포맷공개, 질문어구, 백분율 2주간 공개, 공개원칙 준수 사항 등
    ※ 공표된 결과의 신뢰도 및 유효성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준 공개

4) 여론조사의 방법

- 최근 여론조사에 응답률이 줄고 여론조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여론조사자(조사 기관 등)들은 자원봉사자 패널, 인터넷 가중치, 소셜미디어 활용 등 새로운 실효성 있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
- 그 중에서 전체인구를 대표하는 표본을 정확하게 추출하기 위한 두 가지 유형 즉, 확률 샘플링(probability-based samples) 방법을 기반으로 하는 것과 비확률 샘플링(nonprobability samples)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형태 등이 제안되고 있음.[154]
  - 특히, 최근에 정책 등 결정 시 충분한 시간과 검토 없이 결정하는 이유는 이러한 투자가 자신에게 주는 이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결국 사운드바이트[155]와 헤드라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특징을 극복하기

152) AAPOR. 'Code of Ethics.' https://www.aapor.org/Standards-Ethics/AAPOR-Code-of-Ethics.aspx (검색일 2019.6.21.)

153) NCPP. 'Principle of Disclosure.' http://ncpp.org/?q=node/19 (검색일 2019.6.21.)

154) AAPOR. 'Sampling Methods for Political Polling.' https://www.aapor.org/Education-Resources/Election-Polling-Resources/Sampling-Methods-for-Political-Polling.aspx (검색일 2019.7.18.)

위해서 공론화 조사(deliberation polling)[156]를 적용하기도 함.

3. 프랑스

- 근거규정
  - 1977년에 제정된 「여론조사 공표 및 전파에 관한 1977년 7월 12일 n° 77-808 법률」[157]에는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일반규정, 여론조사 시 필수 표시사항, 여론조사위원회(la commission des sondages)[158] 구성, 선거기간 특별조항, 벌칙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여론조사위원회 구성[159]
  - 9명의 위원(임기 6년, 단임)으로 구성
    - ·국사원(Conseil d'Etat) 평회에서 선출된 2명
    - ·파기원(la Cour de cassation) 평회에서 선출된 2명
    - ·회계감사원(la Cour des comptes) 총회에서 선출된 2명
    - ·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이 각각 임명한 여론조사 전문가 3명
      - ※ 임명되기 전 3년까지 여론조사업체에 직위가 있었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음.[160]

---

155) sound bite 또는 soundbite는 긴 길이의 오디오에서 추출한 짧은 클립의 음성이나 음악으로, 전체 길이의 분량을 홍보하거나 예증하기 위해 사용됨. 저널리즘의 맥락에서 화자가 말하고자하는 내용을 담은 짧은 문장이나 문장으로 정보를 요약하고 독자나 시청자를 유혹하는 데 사용되며, 이 용어는 1970년대 미국의 언론 매체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그 이후 정치인들은 자신의 변명을 요약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이 사용해옴.
https://en.wikipedia.org/wiki/Sound_bite (검색일 2019.7.26.)

156) 여론조사와 대중이 심의기법을 결합한 정치적 협의로 대상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한 심의 공론화 조사의 한 형태임.
Center for Deliberative Democracy. 'What is Deliberative Polling?'
https://cdd.stanford.edu/what-is-deliberative-polling/ (검색일 2019.7.6.)

157)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http://www.commission-des-sondages.fr/pdf/Loi77.pdf (검색일 2019.5.23.)

158) La commission des sondages
http://www.commission-des-sondages.fr/presentation/presentation.htm (검색일 2019.5.23.)

159) 여론조사 공표에 관한 법률 제6조. Modifié par LOI n° 2017-55 du 20 janvier 2017 – art.24.

160) 2017년 1월 20일 여론조사위원회관련개정법 제24조(LOI n°2017-55 du 20 janvier 2017 – art. 24)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함.

참조 1-4 프랑스「여론조사의 공표 및 전파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1) 여론조사의 내용에 관한 규정
- 여론조사를 공표할 때에 공표책임자는 조사기관명, 조사연월일 등 일정사항을 표시해야 함(§2).
-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를 공표하기 이전에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 추출방법과 표본 구성, 조사방법, 전체 설문 내용, 각 설문 항목에 대한 비응답자의 비율, 조사결과 해석시의 유의 사항 등을 기재한 조사보고서를 여론조사위원회에 제출(§3①)
- 여론조사위원회는 여론조사의 공표를 행한 기관에 대해 조사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발표하도록 명령 가능(§3②)
- 누구든지 여론조사위원회에서 여론조사보고서 열람 가능(§3③)

(2) 여론조사위원회의 임무, 구성, 권한 등에 관한 규정
- 여론조사위원회의 임무
  - 여론조사 공표의 객관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5①)
  -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가 제3자의 여론조사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감시(§5④)
- 여론조사위원회의 권한
  - 여론조사위원회에 사전 신고와 법령 준수를 약속하지 않은 자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 제한(§7)
  - 여론조사의 실시 및 판매가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권한을 가짐(§8).
  - 이 법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언론기관 및 여론조사 결과의 유효 범위를 변경하여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자는 여론조사위원회의 수정 요구 사항을 지체 없이 공개(§9①)
  - 여론조사위원회는 언제든지 전국적인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사들로 하여금 이러한 수정 사항을 방송 가능(§9②)
  - 여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공개, 특히 언론사에는 전달. 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사원에 제기 가능(§10)

(3) 선거기간에 적용되는 규정
- 투표 전날과 투표 당일(기존에는 일주일 전)에는 여론조사의 공표 또는 이에 관한 해설이 금지. 다만, 투표 전날 이전에 출간된 간행물이나 인쇄된 자료의 배포는 해당되지 않음(§11①).
- 선거일 이전 2개월 동안 여론조사의 공표나 해설이 이루어지는 경우 여론조사위원회 수정 요구 사항은 시청자·청취자들이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방송되어야 하고, 인쇄매체의 경우 다음 호 동일 지면에 같은 활자로 게재되어야 함(§11②). 다만, 투표결과를 즉각적으로 알리기 위해 투표 마감과 투표 결과의 공식 발표 사이에 이루어지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음(§11⑤).
- 여론조사기관은 조사결과가 발표된 후 2개월 동안은 조사의 질과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관련 자료는 본 추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수집된 설문지 및 주변 자료 그리고 자료처리에 관련되는 모든 정보가 포함.

– Article 6, Modifié par LOI n°2017-55 du 20 janvier 2017 – art. 24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Article.do;jsessionid=6D75202477A8355FDA44DCE602B1A560.tplgfr44s_1?cidTexte=JORFTEXT000000522846&idArticle=LEGIARTI000033911741&dateTexte=20170121&categorieLien=id#LEGIARTI000033911741 (검색일 2019.9.30.)

4. 독 일

- 독일의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선거법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론조사심의기관이 존재하지 않음.
- 독일언론평의회(Deutscher Presserat)의 언론강령(Publizistische Grundsätze, Presskodex)을 준수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함(독일 언론강령 제2항 지침 1).[161]
  - 조사자의 숫자, 조사의 시점, 여론조사의 의뢰자 및 질문내용 및 여론조사의 결과가 대표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고지해야 함.
  - 여론조사의 의뢰자가 없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데이터가 여론조사 기관의 자발성에 기초한 것임을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의뢰기관	조사기관
ARD (Deutschland Trend)	Infratest dimap
BILD (Meinungstrend)	INSA-Consulere
N24	Emnid
stern-RTL	Forsa
ZDF	Forschungsgruppe Wahle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Allensbach
RedaktionsNetzwerk Deutschland	YouGov
GMS	GMS

- 선거여론조사는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며 언론사나 잡지사 등이 주요 의뢰기관으로서 비용을 부담하고,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선거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선거여론조사(Sonntagsfrage) 결과를 발표[162]
- 정당들도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여론조사경비는 선거비용보조금이나 정당부설연구소에 대한 보조경비로 충당해 실시
- 방송국가협약(Rundfunkstaatsvertrag)[163]

161) https://de.wikipedia.org/wiki/Sonntagsfrage (검색일 2019.9.21.)

162) https://www.wahlrecht.de/umfragen/ (검색일 2019.9.29.)

163) Die medienanstalten. 'Rundfunkstaatsvertrag'
https://www.die-medienanstalten.de/Rundfunkstaatsvertrag (검색일 2019.8.12.)
https://www.die-medienanstalten.de/fileadmin/user_upload/Rechtsgrundlagen/Gesetze_Staatsvertraege/Rundfunk

- 방송 및 보도에 관한 가장 공적인 규정으로 16개 주가 모두 참여해 체결
- 기본협약을 비롯하여 공영방송사에 관한 하위협약 및 기타 행정절차를 규정한 하위협약으로 구성됨.
- 방송국가협약의 기본협약에는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방송국에 의해 실시된 여론 조사를 공표하는 경우 대표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도록 규정함(방송국가협약 제10조제2항).

- 독일 시장조사·사회조사협회(Der Rat der Deutschen Markt- und Sozialforschung e.V)[164] 조직·운영
  -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사전적 감시·감독을 위한 공적인 기관은 없으나,
  - 여론조사와 관련한 ICC·ESOMAR Kodex[165]의 서명에 참여한 4개의 여론조사 연합(ADM, ASI, BVM, DGOF)은 독일 내에서 적용될 여론조사와 관련한 지침의 제정 및 이의제기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ICC·ESOMAR Kodex의 독일 적용세부사항(Erklärung für das Gebie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에 기초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166]
  - 독일 시장조사·사회조사 협회는 「선거조사의 결과 공표에 대한 지침」을 제정하여 자율적으로 규율하고 있음.[167]
- 독일 시장조사·사회조사 협회는 여론조사와 사후 이의제기 및 고충처리(Beschwerde)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함.
  -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검토위원회(Prüfungsausschuss)와 고충처리위원회(Beschwerderat)를 두고 있음.
  - 여론조사와 관련한 이의제기는 검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접수를 받으며, 검토위원회에서 승인된 이의제기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처리절차를 거침.[168]

---

staatsvertrag_RStV.pdf (검색일 2019.9.29.)

164) Der Rat der Deutschen Markt- und Sozialforschung e.V
https://www.rat-marktforschung.de (검색일 2019.8.12.)
https://www.rat-marktforschung.de/index.php?id=startseite (검색일 2019.9.29.)

165) https://www.esomar.org/uploads/public/knowledge-and-standards/codes-and-guidelines/ICCESOMAR_Code_German_.pdf (검색일 2019.9.29.)

166) http://rat-marktforschung.de/fileadmin/user_upload/pdf/R06_RDMS.pdf (검색일 2019.9.29.)

167) Richtlinie für die Veröffentlichung von Ergebnissen der Wahlforschung
http://rat-marktforschung.de/fileadmin/user_upload/pdf/R06_RDMS.pdf (검색일 2019.9.29.)

- 독일 시장/사회 연구단체 의회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제기된 이의가 인용된 경우에는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혐의 없음, 경고, 징계의 판결을 내릴 수 있음(독일 시장/사회 연구단체 의회 고충처리규정 제8조제4항).
- 징계가 의결된 경우 (해당 여론조사)연합에서 제외권고, 관련당국에 통보와 같은 조치가 병행될 수 있음(독일 시장/사회 연구단체 의회 고충처리규정 제8조제5항).
- 확정된 징계사항은 재심신청 기한을 도과하거나 재심신청이 각하되어 확정된 경우 언론보도용 자료를 통해 공표하며, 해당 징계를 의결한 고충처리위원회가 속한 회의소의 인터넷 사이트에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간 게시됨(독일 시장/사회 연구단체 의회 고충처리규정 제8조제8항).

5. 일 본

-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다음 의회의원선거 예측을 위한 정당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 및 내각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가 신문, TV방송 등 다양한 언론기관에서 실시됨.
  - 예를 들어, 2021년 10월 21일 총선을 앞두고 2017년 10월 22일부터 선거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음.[169]
- 「일본 TV도쿄 방송 보도윤리지침」[170]의 여론조사 관련 자율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여론조사는 여론동향을 파악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나, 항상 수치의 신뢰성과 확실성을 확보해야 함.
  - 조사결과를 공표할 때 조사 방법 등을 반드시 제시해야 함.
  - 특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가 선거권자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

168) https://www.rat-marktforschung.de/index.php?id=beschwerdeordnung (검색일 2019.9.29.)
169) https://en.wikipedia.org/wiki/Opinion_polling_for_the_next_Japanese_general_election (검색일 2019.6.19.)
170) https://www.tv-tokyo.co.jp/main/yoriyoi/rinri.html (검색일 2019.10.28.)

표 시 신중을 기해야 함.

·선거일 고시 후 후보자의 지지율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음. 고시 이전에도 숫자를 보도 할 때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취급함.

·출구조사는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실시하고 데이터를 철저히 관리함. 투표 마감 전에 데이터의 보도·공표를 금지함.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인기투표에 해당하는 조사는 실시하지 않음.

6. 스페인

-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감시·감독 기능을 담당함(선거법 제69조).
- 선거소집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기간 동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하기 위해 여론조사자는 본인의 책임 하에 다음의 세부내용을 첨부하고 인쇄물에 포함해야 함.
  -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실시를 의뢰한 공·사적 기관 또는 단체, 개인의 명칭 및 주소
  - (여론조사의 기술적 세부사항) 표본추출 방법, 표본의 크기, 표본의 오차범위, 대표성, 피조사자 선정 방법, 현장조사 일정
  - 여론조사 질문지 내용 전부 및 각 질문에 대한 미응답자 수
- 중앙선거위원회의 역할
  - 공표된 조사데이터 및 정보가 의도적으로 위조·은폐 또는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여론조사 공표 시 위 세부내용이 올바르게 들어갔는지 확인
  - 선거일 전 5일부터 방송매체를 통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방송 금지에 관한 감시
  - 공개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적 보완 정보 요청
  - 위 사항을 위반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한 매체는 중앙선거위원회의 시정요청이 있은 후 3일 이내에 시정사항을 공개해야 하며, 시정의 원인 및 이유를

밝혀 동일한 매체에 방송 또는 게재해야 함.

- 처벌조항
  -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현행 법규를 위반한 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 및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직업·직무·산업·상업 관련 특별자격정지에 처함(선거법 제145조).
  - 위 조항에 의해 형사 처벌되지 않는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0유로 이상 30,000유로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선거법 제153조 제2항).

7. 스웨덴

-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관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언론매체나 대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실시됨.[171]
- 다만, 언론들이 자체적으로 투표 마감 전에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지 않음.[172][173]

8. 스위스

- 선거여론조사제도와 관련해 특별한 법 규정이 없음.[174]

---

171) Jesper Strömbäck, Lynda Lee Kaid. 2009. The Handbook of Election News Coverage Around the World. Routledge. p.163.
Wikipedia. 'Opinion polling for the 2018 Swedish general election.'
https://en.wikipedia.org/wiki/Opinion_polling_for_the_2018_Swedish_general_election (검색일 2019.10.29.)

172) ARTICLE 19 Global Campaign for free Expression. 2003. '*Comparative Study of Laws an Regulations Restricting the Publication of Electoral Opinion Polls*.'
https://www.article19.org › pdfs › opinion-polls-paper (검색일 2019.8.29.)

173) T. Bale. 2002. 'Restricting the Broadcast and Publication of Pre-Election and Exit Polls: Some Selected Examples.' in Representation. Vol. 39, No.1, P.19.
https://www.academia.edu/2686299/Restricting_the_broadcast_and_publication_of_pre_election_and_exit_polls_some_selected_examples (검색일 2019.8.29.)

174) Demokratie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규칙(Vorschriften für Wahlkämpfe und Abstimmungen)

- 스위스 내 언론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함.
  - 「스위스 인터뷰 기관 공동 상표 사용에 관한 규범」[175]의 제2별첨 강령인 「투표 이전 보도되는 선거 및 투표에 관한 여론조사에 관한 강령」제5조에 따르면 선거일 또는 선거일 10일 이전에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176]
- 2004년[177], 2007년[178], 2009년[179] 꾸준히 연방의회에 여론조사에 관한 법규를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의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연방평의회 및 연방정부는 자율규범이 준수되고 있음을 이유로 들며 법제화하지 않음.

9. 캐나다

- 선거법에서는 선거여론조사를 관할하는 기구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음.
- 선거여론조사(선거법 제326조)
  - 선거기간 동안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대중에게 알리는 첫 번째 사람과 이를 전달받고 24시간 안에 대중에게 전달한 자는 조사결과와 함께 다음의 사항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함.

  ·조사 의뢰자의 이름, 조사를 시행한 사람 또는 기관명

  ·조사기간, 모집단 수, 조사자 수, 오차율

---

https://www.ch.ch/de/demokratie/die-politischen-parteien/vorschriften-fur-die-werbung-von-politischen-parteien-in-der/ (검색일 2019.8.9.)

175) Règlement sur l'utilisation de la marque collective asms swiss interview institutue® vsms-asms.ch/files/8815/5971/9684/1_Marque_collective_asms_reglement_mai_2019.pdf (검색일 2019.9.26.)

176) Directive pour la réalisation de sondages portant sur des élections et votations et destinés à être publiés avant les scrutins https://www.vsms-asms.ch/files/7013/6758/9761/3_Annexe_II_Elections_et_votations_octobre_2009.pdf (검색일 2019.9.26.)

177) https://www.parlament.ch/fr/ratsbetrieb/suche-curia-vista/geschaeft?AffairId=20043280 (검색일 2019.9.26.)

178) https://www.parlament.ch/fr/ratsbetrieb/suche-curia-vista/geschaeft?AffairId=20073805 (검색일 2019.9.26.)

179) https://www.parlament.ch/fr/ratsbetrieb/suche-curia-vista/geschaeft?AffairId=20094057 (검색일 2019.9.26.)

- 방송 이외의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대중에게 알릴 경우 질문지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함.

※ 승인된 통계적 방법에 기초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함(선거법 제327조).

- 대체로 미디어 콘소시움과 여론조사 전문 기관이 협력해서 여론조사를 함.
  - 캐나다 내 모든 여론조사는 캐나다 국영방송(CBC) Poll Tracker에서 정리함.[180]
  - CTV-The Globe and Mail-Nanos, 2019년 9월 28일 여론조사 결과[181]
    - ·조사의뢰자: CTV/Globe and Mail/Nanos Research
    - ·조사기간: 9월 25일~27일
    - ·조사자 수: 1,200명
    - ·오차율: ±2.8 %
  - Research Co., 2019년 9월 27일 여론조사 결과[182]
    - ·조사의뢰자: CTV/Globe and Mail/Nanos Research
    - ·조사기간: 9월 24일~26일
    - ·조사자 수: 1,000명
    - ·오차율: ±3.1%
  - Abacus Data, 2019년 9월 27일 여론조사 결과[183]
    - ·조사의뢰자: Abacus Data
    - ·조사기간: 9월 23일~26일
    - ·조사자 수: 1,975명
    - ·오차율: ±2.3%

---

180) CBC News. Canada Poll Tracker. https://newsinteractives.cbc.ca/elections/poll-tracker/canada/ (검색일 2019.9.25.)

181) CTV/Globe and Mail/Nanos Research. Conservatives 34, Liberals 33, NDP 14, Greens 13, BQ 4, PPC 1. https://secureservercdn.net/198.71.233.47/823.910.myftpupload.com/wp-content/uploads/2019/09/2019-1445-CTV-Globe-ELXN-2019-09-27.pdf (검색일 2019.9.25.)

182) Research Co. Liberals and Conservatives Gain in Canadian Federal Campaign. https://researchco.ca/2019/09/27/you-know-the-way-to-stop-me-but-you-dont-have-the-discipline/ (검색일 2019.10.25.)

183) Abacus Data. Election Poll: A Better Week for Trudeau's Liberals. https://abacusdata.ca/a-better-week-for-trudeau-liberals/ (검색일 2019.9.25.)

10. 호 주

- 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며, 자유롭게 실시됨.
- 선거여론조사는 로이 모건(Roy Morgan), 뉴스폴(Newspoll), 닐슨(Neilsen), 갤럭시 리서치(Galaxy Research) 등 미디어회사에서 실시하고, 호주시장사회조사협회(Australian Market and Social Research Society)와 호주언론협회(Australian Print Media)에서 해당 여론조사기관을 감독함. 감독기관이 자율규제지침을 정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184)]
  - 여론조사기관 명칭과 후원기관을 명시하고, 질문지 내용, 선발된 샘플 사이즈와 분석방법, 표본집단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함.
  - 인터뷰를 하는 경우 인터뷰 방법과 날짜, 장소도 명시해야 함.
  - 각 여론조사기관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시행일시, 설문문항 내용, 샘플 사이즈와 조사분석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여론조사결과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음.
- 1941년 호주여론기관(Australian Public Opinion Polls)에서 처음으로 갤럽방식으로 대규모 여론조사를 했고 1943년부터는 선거에 관련된 질문도 포함함. 당시 선거 1주일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5%가 노동당(Labor)을 지지, 38%가 연합호주당(United Australia Party)을 지지했고, 실제 선거 결과 노동당이 51%로 승리해 선거결과를 대체적으로 잘 예측했다는 평가를 받았음.[185)]
- 하지만 2019년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노동당 빌 쇼튼(Bill Shorten)이 집권당의 스캇 모리슨(Scott Morrison)을 51:49로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선거가 끝난 후 나온 노동당의 빌 쇼튼의 패배결과는 여론조사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였음.[186)]

---

184) 빅토리아주 국회도서관(Victoria Parliamentary library). 2011. 여론조사(Public Opinion Polls). https://apo.org.au/sites/default/files/resource-files/2011/09/apo-nid26371-1106391.pdf (검색일 2019.9.30.)

185) 호주민주주의박물관(Museum of Australian Democracy at old parliament house). Campnell Phodes. 2018. 여론조사의 역사(A brief history of opinon polls). https://www.moadoph.gov.au/blog/a-brief-history-of-opinion-polls/ (검색일 2019.9.30.)

186) 호주공영방송사 뉴스(ABC News). 2019 선거: 여론조사결과가 노동당의 승리로 잘못 예측했던 이유(Election 2019: How the polls got it so wring in prediction a labor victory). https://www.abc.net.au/news/2019-05-19/federal-election-results-how-the-polls-got-it-so-wrong/11128176 (검색일 2019.9.30.)

- 집 전화번호를 가지고 표본집단 샘플링을 해왔으나 현재는 대부분 집 전화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대표성 있는 표본추출이라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여론조사는 로보콜을 통해 자동응답기능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전화를 그냥 끊어버려 조사 응답률도 저조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임.

<표 1-16> OECD국가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 시 공개 내용

국가명	공개 내용	근거규정
영 국	• 조사위임기관 • 날짜 및 방법 • 모집단, 표본규모 및 조사대상 지역 • 질문내용 •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는 웹 주소 등	영국여론조사위원회 지침 ※ 법규정은 없음. 자율적 규제로 실시
미 국	• 조사위임자 • 조사기간, 일시 • 표본추출방법, 모집단, 표본크기 • 조사방법, 질문순서 등	전미여론조사협의회 공표의 원칙 ※ 법규정은 없음. 자율적 규제로 실시
프랑스	• 여론조사를 의뢰한 개인이나 기관 • 표본의 크기 • 조사 발주자의 이름과 자질 • 조사가 이루어진 날짜 • 대중의 더 많은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명시한 서술	여론조사의 공표 및 전파에 관한 법률
독 일	• 조사대상 • 조사시점 • 조사 의뢰자 • 질문 내용 및 여론 조사 결과 대표성 여부	독일언론평의회 언론강령 ※ 법규정은 없음. 자율적 규제로 실시
일 본	• 조사방법 등	일본 TV 도쿄 방송 보도 윤리지침 ※ 법규정은 없음. 자율적 규제로 실시
스페인	• 여론조사를 의뢰한 개인이나 기관 • 표본특징 • 표본크기 • 오차범위 • 표본 구성방법, 오차범위, 대표수준, 조사대상자와 조사종료일 선택 방법 • 질문내용과 미응답자 수	선거법 제69조
스웨덴	-	-
스위스	• 여론조사 의뢰자 • 조사지역 • 표본특징 • 표본크기 • 오차범위 • 조사기간	스위스 언론기관의 투표 이전 보도되는 선거 및 투표 에 관한 여론조사에 관한 강령 ※ 법규정은 없음. 자율적 규제로 실시
캐나다	• 여론조사를 의뢰한 개인이나 기관 • 조사지역 • 표본의 크기 • 오차범위 • 여론조사 결과가 방송 이외의 수단으로 발표될 때 조사를 시행한 사람이나 기관명, 질문 내용	선거법 제326조

국가명	공개 내용	근거규정
호 주	• 여론조사기관 명칭, 의뢰 기관 명시 • 질문내용 • 표본크기 • 조사기간, 장소 • 조사분석기법 등	호주시장사회조사협회·호주 언론협회의 자율규제지침 ※ 법규정은 없음. 자율적 규제로 실시
아일랜드	• 조사일자 • 의뢰인 또는 단체명 • 조사 실시 업체 또는 단체명 • 표본크기 등	아일랜드 방송위원회(BAI) 내부지침[187]
이스라엘	• 의뢰인 또는 단체명 • 조사 실시 업체 또는 단체명 • 조사일자 • 표본크기 • 오차범위 등	선거운동법 제16조 제B,H항
이탈리아	•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 • 표본 추출 기준 • 정보수집 및 정보처리 방식 • 응답자 수 • 질문내용 • 각 질문별 답변율 • 조사 일자 등	선거미디어법 제8조
멕시코	• 연방선거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여론조사 지침 및 관련 양식에 따라야 함.	연방선거법 제32,213조
포르투갈	• 조사기관명 • 표본 구성방법, 표본 크기, 오차범위, 대표수준, 조사대상자와 조사종료일 선택 방법 • 응답자와 미응답자 수, 응답률 • 사용된 표본 추출 방법 및 무작위 표본의 경우 획득한 응답률 • 정보 수집 및 상술 방법 • 질문내용 등	선거법 제53,141조 여론조사법 제7조, 제10조제1항
슬로베니아	• 여론조사자 • 조사방법 • 조사 의뢰자	선거운동법 제5조제2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칠레,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는 여론조사 관련 규정 없음.

187) 아일랜드 방송위원회(BAI; Boradcasting Authority of Ireland; BAI) Rule 27 of the BAI Code of Fairness, Objectivity and Impartiality in News and Current Affairs p.8 ‘opinion polls’ https://www.bai.ie/en/media/sites/2/dlm_uploads/2018/09/Rule27_ElectionGuide_vFinal_English.pdf (검색일 2019. 8.27.)

마. 공무원의 중립의무

- 각국의 역사적·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규제의 정도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명시적 법이 없더라도 판례 등을 통해 공무원의 중립성은 당연한 요소로 보고 있음
-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넓게 해석해 업무의 사안에 따라 정치적 자유의 범위를 다양하게 인정

1. 영 국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기본지침은 「헌법개혁 및 거버넌스 법」188)을 중심으로 구성됨.
  - 공무원복무규정(Civil Service Code), 각료규정(Ministerial Code), 공무원운영규정(Civil Service Management Code: CSMC) 등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

참조 1-5 영국 공무원 복무 규정: 중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 중립성(Impartiality)
  - 공무원은 정당하고 공정하며 동등한 방식으로 공평성과 다양성을 위하여 공무를 수행한다.
  - 공무원은 정당하지 못하게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호하거나 차별할 수 없다.

- 정치적 중립성(Political Impartiality)
  - 공무원은 정부를 위해 일하며 자신의 정치적 믿음과 상관없이 이 규정에서 요구하는 바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공무원은 현 정부와 신뢰를 유지하며 동시에 향후 정부와도 동일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 공무원은 자신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어떠한 규정에도 따라야 한다.
  - 공무원은 정당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 결정하거나 정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식 자원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 공무원은 조언이나 행동을 함에 있어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188) 영국 법령센터 홈페이지.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0/25/contents (검색일 2019.9.17.)

- 정부는 위 규정을 바탕으로 선거기간 전에 공무원 행동지침을 발간함.[189]

-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은 선거기간 행정 각료, 공공기관의 출판행위 및 외부활동 등에 제한을 두고 있음.

1) 공무원의 범위와 정치활동[190]

- 정치활동 측면에 있어 공무원은 크게 세 부류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활동 범위가 다르게 적용됨.
  - 정치적으로 자유로운(politically free) 공무원: 현업 및 비사무직 직급(industrial and non-office grades)
  - 정치적으로 제한된(politically restricted) 공무원: 고위공무원단(members of the Senior Civil Service), 고위공무원단 차하위 수준의 공무원(Grades 6 and 7), 속진임용제도(Fast Stream Development Programme) 소속 공무원
  - 상기 두 부류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
- 전국단위 정치활동
  - 의회, 스코틀랜드 의회, 웨일즈 의회, 유럽 의회 등에 입후보 사실 공표
  - 의회, 스코틀랜드 의회, 웨일즈 의회, 유럽 의회 등에서 정당기관을 대표해 재직하는 행위
  - 국가적 정치 사안에 대해 공적으로 연설하는 행위
  - 언론, 서적, 기고문, 홍보물 등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
  - 의회, 스코틀랜드 의회, 웨일즈 의회, 유럽 의회 선거 등에서 입후보자 혹은 정당을 대신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지역단위 정치활동
  -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
  - 지역단위 정당 기관에 재직
  - 지역단위 정치 사안에 대한 공공 연설

189) 영국 내무부 홈페이지. 'Election guidance for civil servants (공무원 선거지침).'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lection-guidance-for-civil-servants (검색일 2019.9.18.)

190) Cabinet Office(내무부). 'General Election Guidance 2017(2017년 총선거 지침).' p.14. file:///C:/Users/user/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O389T9RE/general-election-guidance-2017.pdf (검색일 2019.9.17.)

- 언론, 서적, 기고문, 홍보물 등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 단위 정치 기관 입후보자를 대신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정치활동이 허용 또는 제한되는 범위[191]

- 모든 공무원들은 근무 중이거나 제복을 착용한 채로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공부지(official premises) 내에서의 정치활동 또한 금지됨. 아울러 공무자격으로 외부 컨퍼런스에 참여하거나 정당관련 기관의 후원 아래 진행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음.
-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공무원 범위에 해당하는 자들은 공적 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전국·지역 단위의 정치활동이 가능함.
  - ·다만 정치적 의견을 절제된 형태로 표출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의회, 스코틀랜드 의회, 웨일즈 의회, 유럽의회 등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입후보 지명 승낙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함.
- 정치적으로 제한된 공무원들은 모든 형태의 전국단위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
  - ·지역단위 정치활동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각 부처가 제시한 조건(departmental guidance)을 준수해야 함.
  -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당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자체는 가능
- 상기 두 부류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해당 기관의 허가 하에 전국 또는 지역단위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191) 내무부 홈페이지. 공무원운영규정(Civil Service Management Code). '4.4 Conduct: Political Activities(정치활동).'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ivil-servants-terms-and-conditions (검색일 2019.9.17.)

2. 미 국

- 미국 공무원제도는 정치의 행정개입이라는 엽관제 폐지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마련되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엄격하고 세밀하게 규제함.
- 최초의 공무원법인 펜들턴법 제정이후 1939, 1940년 해치법으로 공무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으나, 지나친 정치활동의 제한이라는 반발이 계속돼 1974년 연방선거운동법 개정과 1993년 해치법 개정을 통해 정치활동의 자유의 범위를 어느 정도 넓혀주게 됨.
- 1883년 미 의회는 현재 공무원법의 기초인 「펜들턴법(Pendleton Act)」을 통과시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최초로 법으로 채택함.
  - '공무원은 정치헌금을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정치활동에 참여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
  - 이외에도 공개경쟁 시험제도, 공무원의 신분보장, 초당적인 인사위원회 설치 규정
  - 그러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해석이 당시 대통령의 태도에 따라 달려있고, 뉴딜정책 실시와 더불어 정당의 행정침해를 막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더 강력하게 규제할 법 제정이 요구됨.
- 1939, 1940년에 걸쳐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직접 규제하는 「해치법(Hatch Political Activities Act)」을 제정[192]
  - 이 법에서 고위 정책결정직[193]을 제외한 모든 연방 공무원과 연방기금으로 보수를 받는 주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함.[194]

    ※ 연방 기금으로 급여를 받는 주(D. C.)나 지방 공무원만 선출직 공직에 입후보 할 수 없으나 다른

192) 2012년 해치법 개정 원문
govtrack. 'S.2170: Hatch Act Modernization Act of 2012.'
https://www.govtrack.us/congress/bills/112/s2170/text (검색일 2019.6.21.)
해치법 관련 설명은 Jack Maskell. 2014. 'Hatch Act: Candidacy for Office by Federal Employees in the Executive Branch.'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http://fas.org/sgp/crs/misc/R43630.pdf (검색일 2019.6.21.)

193) 대통령, 부통령, 행정 각 부서의 장과 그 보조기관의 장, 백악관 직원,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을 의미

194) OSC(특별조사국). 'Federal Employee Hatch Act Information.'
https://osc.gov/Pages/SearchResults.aspx?k=hatch%20act (검색일 2019.6.21.)

모든 주, D. C. 및 현지 직원은 해치법에 의해 적용되는 경우에도 선출직 공직에 입후보 가능함 [주, 지방공무원은 정치행사 관여 등에 연방공무원에 비하여 다소 느슨함(기부, 연설, 인쇄물 배부, 자원봉사 등)].

- 선거를 방해하거나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공무원의 권위나 영향력의 행사를 금지하고, 연방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인 유세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

- 1974년 「연방선거운동법(Federal Election Campaign finance Act)」을 개정해 주 및 지방공무원들에게는 정치 문제 또는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표시,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특정 정당 자금의 유치와 급여, 정당 활동 참여, 특정정당 후보를 위한 선거 활동 등을 허용
- 1993년 의회는 해치법을 개정해 연방공무원들이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 등에 보다 폭넓게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게 됨
  - 금지되는 행위(해치법에서 자세하게 열거)

    1) 정당관련 선거 입후보 금지,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직원 정치행사 초대, 권유행위 포함), 3) 특정 정당의 자금유치 금지, 4) 특정정당에서의 직위보유 금지, 5) 후보등록일이나 선거일에 선거권자를 운송하거나 유도하는 일 금지, 6) 선거운동 관련 책자 또는 자료 배포금지, 7) 정치활동을 위해 정부소유 자가용 이용 금지, 8) 공무에 있어 정당 배지 착용금지, 9) 업무관련자에게 고의로 정당행사 지지반대 강요 금지, 10) 근무 중 유니폼·휘장을 착용하거나 정치 활동 금지 등
  - 허용되는 행위

    1) 정당과 관련 없는 선거에 입후보, 2) 개인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거나 투표하는 행위, 3) 선거권자의 등록에 도움을 주는 행위, 4) 후보자나 이슈에 대해 의견표시, 5) 정치단체·후보자에 기부, 6) 정치기금 마련 행사에 참가, 7) 정치모임에 참가하고 활동하는 것, 8) 정당의 구성원이 되거나 활동하는 것(청원 등에 서명), 9) 헌법개정, 국민투표 지방조례 찬반에 대한 운동, 10) 정당관련 선거에서 찬반 운동, 11) 정당관련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연설, 12) 정치 문제 등에 의견표명 등
  - 금지행위 위반 시 범죄행위로 간주돼 공직박탈이나 월급삭감 등의 제재가 가

해질 수 있음(연방선거운동법 제18편 제210,211,594,595,600-607,610조).

<표 1-17> 미국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직위

행정법 판사	Administrative Law Judges
중앙영상국	Central Imagery Office
중앙정보국	Central Intelligence Agency
계약분쟁위원회	Contract Appeals Boards
법무부내 범죄국	Criminal Division—Department of Justice
국방정보국	Defense Intelligence Agency
연방조사국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연방선거위원회	Federal Election Commission
실적제보호위원회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국가안전보장국	National Security Agency
국가안정보장회의	National Security Council
국세청 내 범죄조사국	Office of Criminal Investigation - Internal Revenue Service
관세청 내 조사프로그램국	Office of Investigative Programs
주류·담배 및 화기 폭발물 관리국내법 집행국	Office of Law Enforcement—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
특별조사국	Office of Special Counsel
재무부 (비밀)검찰국	Secret Service
그 외 고위공무원 등	

- 이외에 연방선거운동법 제18편 제595조에서 공무원 선거운동 방해행위를 규정
  - 누구든지 연방정부, 콜롬비아특별구, 주정부 등에 의하여 행정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대통령, 부통령, 대통령선거인단, 상원의원, 하원의원 등에 입후보하는 후보자의 지명 또는 당선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그의 공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 단, 이 조항은 주정부등 기관시설 또는 조직에 속한 임직원의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님.

3. 프랑스

- 1946년 10월 19일에 제정된 「일반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1983년 7월 13일 n.83-634 공무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법」[195]에서 공무원의 권리 및 준수 의무와 제재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나[196] 이 법에서의 중립의무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아님.[197]
  - 즉,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일에 대해서는 완전한 시민으로서 시민이 가지는 모든 정치상의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정치적 의견을 표시하거나 정당활동에 대해서 국가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음.
  - 이는 1880년대 시작된 강력하고, 급진적인 공무원 노동조합 운동이 정부에 강한 압력을 가해 공무원의 지위향상과 정치활동의 완전한 자유를 획득할 수 있었음.
- 그러나 1948년 국사원(Le Conseil d'Etat')판례에서 '모든 공무원은 그 신분여하에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충성의무를 가진다.'고 하였고, '공무원의 정치적·종교적 엄정 중립의무는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에게 요구 된다'고 판시해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중립의무는 당연히 요구되는 사항임.
- 따라서 규제규정이 없는 프랑스 공무원의 경우 정치활동이 매우 자유로운 편임.
  - 공무원의 투표권, 정당가입, 정치활동 허용(다만, 법관·군인 등은 일정한 제한이 있음)
  - 일반직 공무원은 의원을 겸직할 수 없으나, 기타 공무원은 신분을 보유하고 출마하여 당선된 경우 의회 파견근무를 발령받게 됨.
  -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의원 당선 시 사직하되 낙선하거나 사직 후에도 다시

---

195) Loi n°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LEGITEXT000006068812&dateTexte=20190610 (검색일 2019.6.7.)

196) 강홍진. 2009. '프랑스 공무원의 준수의무와 제재규정.' 맞춤형 법제정보. https://www.klri.re.kr/kor/magazine/895/view.do (검색일 2019.6.6.)

197) 프랑스 공무원에게 중요시되는 것은 laïcité(정교분리원칙)임. https://www.gouvernement.fr/qu-est-ce-que-la-laicite (검색일 2019.7.20.)

복직할 수 있고, 승진과 경력환산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음.

- 다만, 지사 및 관할권을 갖는 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에서 의회의원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출마할 경우 관할 지역 내에서 공직을 그만둔 지 만 3년이 지난 후에 출마가 가능

- 이 외에도 선거법 제50조에 공무원의 활동 규제 조항이 있음.
  - 공공기관 또는 외국 기관의 소속공무원은 후보자의 투표용지, 정견발표문 및 경력소개문 등을 배포할 수 없음.

4. 독 일

- 독일 기본법 제5조의 의사표명의 자유와 알권리, 학문의 자유와 제21조의 정당설립의 자유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여 공무원이 정치활동 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연방 상원의 경우 공무원을 겸직할 수 있음.
  -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폭넓게 허용한데에는 1933년 이전과 1945년 이후에 독일의 유능한 의원 중 공무원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을 이유로 꼽을 수 있음.
- 1956년 기본법 제137조를 새로 신설해 연방 주(州) 및 시·읍·면(게마인데)에서 공무원, 고용원, 직업군인, 재판관 등의 피선거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
- 공무원제도의 근간인 1953년 7월 공포된 「연방공무원법(Bundesbeamtengesetz: BBG)」[198]에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선거참여 관한 규정이 있음.
  - 공무원은 특정정당이 아니라 국민전체의 봉사자로 공무원은 중립적이고 정당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임무를 담당함에 있어 공공복리를 증진해야 함(제60조제1항).
  - 공무원은 기본법의 의미에 따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행동할 의무와

198)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내무부) 'Bundesbeamtengesetz 2009' http://www.gesetze-im-internet.de/bbg_2009/index.html (검색일 2019.8.12.) https://www.gesetze-im-internet.de/bbg_2009/BJNR016010009.html (검색일 2019.9.29.)

유지할 책임이 있음(제60조제1항).

- 공무원은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와 국민전체에 대한 위치를 고려하여, 정치적 활동에 대한 중용(Mäßigung)과 자제(Zurückhaltung)의 의무를 짐(제60조제2항).
- 공무원이 유럽의회선거, 연방의회 선거 또는 법률에 규정된 직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최소 2개월 전에 본인의 원에 따라 업무수행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휴가를 얻어야 함(제90조제2항).
  ⇨ 따라서 하원의원에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하다가 낙선된 경우에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고, 공무원이 하원의원으로 당선되면 사직하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하원의원을 그만두었을 때는 공무원으로 복직할 수 있음(제90조제3항).
- 연방공무원법 제40조에 의해 연방의회의원 또는 유럽연합의회 의원직을 수행하려면 공무원직에서 물러나야 함.
- 「연방의회의원법(Abgeordnetengesetz: AbgG)」[199] 제5조 역시 공무원이었던 자가 연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 자신의 공무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연방총리 및 연방장관들의 경우 이른바 「연방장관법(Bundesministergesetz)」[200]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직책 외에 보수를 지급받는 다른 공직을 겸직할 수 없으며, 기타 영업활동이나 직업행위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반 행정직 공무원 당원가입금지, 후원금 납부, 선거운동 참여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활동들은 원칙적으로 허용됨.

---

199)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내무부)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http://www.gesetze-im-internet.de/abgg/ (검색일 2019.8.12.)
https://www.gesetze-im-internet.de/abgg/BJNR102970977.html (검색일 2019.9.29.)

200)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내무부)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http://www.gesetze-im-internet.de/bming (검색일 2019.8.12.)
https://www.gesetze-im-internet.de/bming/BMinG.pdf (검색일 2019.9.29.)

5. 일 본

- 1947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었는데 전후 미국식 공무원제도를 본받아 미국식 제도를 많이 따르고 있으며, 미국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201)]
- 「국가공무원법」 제102조, 「지방공무원법」 제36조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공무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부금, 기타의 이익을 얻거나 수령 또는 어떠한 방법을 막론하고 이러한 행위에 관여하고 또 선거권의 행사 외에 인사원 규칙에서 정하는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됨(제102조제1항).
  - 공무원은 공직선거에 의한 공직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음(제102조제2항).
  -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적 단체의 역원이나 정치적 고문 기타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구성원이 될 수 없음(제102조제3항).
- 1948년 독립행정기관으로 설치된 인사원의 「인사원규칙(1949년 9월 제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제102조를 보다 상세히 규정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음.

  ※ 특히 제6조제5항에 따라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여 일반 당원이 되는 것은 상관없으나 정당의 임원이 될 수는 없음.

참조 1-6 일본 인사원규칙 14-7(정치적 행위)의 운용방침(인사원사무총장통지)[202)]

제3조(규칙의 적용범위)
① 제1항은 법 및 규칙 중 정치적 행위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규정이 특히 이 규칙에서 적용 외로 규정된 자를 제외하고, 일반직에 해당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된다.
② 이 규칙에 있어서 '법 또는 규칙 중 정치적 행위'는 모든 직원이 공공연히 또는 비밀로 직원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금지 또는 제한된다.
③ 법 또는 규칙에 의해서 직원이 스스로 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정치적 행위는 모든 직원이 스스로 뿝거나 또는 자기 관리에 속하는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도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④ 법 또는 규칙에 의해서 금지 또는 제한된 직원의 정치적 행위는 제6조제10항에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 직원이 근무시간외에 있어서 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5조(정치적 목적) 법 또는 규칙 중 정치적 목적이란 다음 각 항을 말한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해도 제6항에 정한 정치적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한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① 규칙 제14-5조에 정해진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행위

201) 이종훈. 2002. '공무원의 선거 중립문제. 입법정보.'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제48호.

② 최고 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민 심사의 경우 특정 재판관을 지지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행위
③ 특정 정당 및 기타 정치적 단체를 지지 또는 이에 반대하는 행위
④ 특정 내각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⑤ 정치적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로 특정 정책을 주장 또는 반대하는 행위
⑥ 국가의 기관 또는 공적인 기관이 결정한 정책(법령, 규칙 또는 조례에 포함된 내용을 포함)의 실시를 방해하는 행위
⑦ 지방자치법에 기초한 지방공공단체 조례 제정 또는 개폐 또는 사무감사 청구에 관한 서명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⑧ 지방자치법에 기초해서 지방공공 단체 의회의 해산 및 법률에 기초한 공무원의 해직 청구에 관해서 서명하거나 또는 성립되지 않도록 또는 청구에 기초한 해산 또는 해직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제6조(정치적 행위) 직원(공무원)에게 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된 정치적 행위에 관해서 이 규칙에서는 정치적 목적과 정치적 행위를 구별해서 정의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벌어지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 규칙에서 말하는 정치적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한, 국가공무원 법 제102조제1항 규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①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서명, 직권 또는 기타 공사의 영향력을 이용하는 행위
②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기부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치적 목적을 갖는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며, 그 대상 또는 보복으로서 임용, 직무, 급여, 지위에 관하여 어떤 이익을 주거나 또는 얻을 수 없도록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③ 정치적 목적으로 부과금, 기부금, 회비, 기타 금품을 수령하거나 방법을 불문하고 이와 같은 행위에 관여하는 행위
④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전 항에서 규정한 금품을 국가공무원에게 증여, 지불하는 행위
⑤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결성을 기획하고 이에 참여하거나 원조하여 그 단체의 역원, 정치적 고문 또는 이와 동등한 역할을 하는 구성원이 되는 행위
⑥ 특정 정당,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되도록 또는 되지 말도록 조직적·계획적으로 권유운동을 하는 행위
⑦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포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⑧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제5항제1호에 규정된 선거, 동항 제2호에 규정된 국민심사의 투표, 동항 제8조에 규정된 해산, 해직 투표에서 투표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행위
⑨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서명운동을 기획하고 주재하거나 지도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
⑩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수의 행진, 기타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도하는 행위를 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⑪ 집회, 기타 다수인과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확성기, 라디오, 기타수단을 이용하여 공공연히 정치적 목적을 갖는 의견을 진술하는 행위
⑫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문서, 도화를 구가 및 행정집행법인의 청사, 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시키는 행위. 그 외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 및 행정집행법인의 청사, 시설, 자재,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시키는 행위
⑬ 정치적 목적을 가진 서명, 또는 무서명의 문서, 도서, 음반, 형상을 발행, 회람, 게시, 배포하거나 또는 다수인에게 낭독하거나 청취시키며, 또는 그와 같은 목적으로 제작, 편집하는 것
⑭ 정치적 목적을 갖는 연극을 하거나 주재하며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는 행위
⑮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상의 의무 주장을 하거나 정당, 정치단체를 표시하는 기, 완장, 기장, 배지, 복식(服食),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작하거나 배부하는 행위
⑯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근무시간 중 전 항에 명시한 것을 착용하거나 표시하는 행위
⑰ 명의 및 형식을 불문하고, 이상의 각 항에 명시된 금지·제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에 관한 내용은 제7장 제2절 공무원 선거운동 제한·금지 일본편, p.493 참조

202) e-Gov. 人事院規則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4RJNJ14007000#1 (검색일 2019. 8.12.)

6. 스페인

-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 「공무원기본법」 제52조(공무원의 의무)에 따르면, 헌법 등 기타 법률을 준수하여 중립성을 유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203]

7. 스웨덴

- 스웨덴은 공무원 복무규정과 관련한 법은 있지만, 정치 중립에 관한 법적 규제는 없음. 하지만 전통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은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음.[204]
  - 공무원의 정당가입이 가능하고 정치 후원금 기부도 가능함. 모든 활동에 제약이 없지만, 자신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업무에 있어 정치적인 편견이 개입되는 것을 사회적으로 경계함.

8. 스위스

- 스위스는 2000년 국민투표를 통해 1927년에 제정된 「공무원법(Beamtengesetz)」을 폐지하고 「연방인사법(Bundespersonalgesetz)」을 통과시킴.[205]

---

203) Ley 2/2007. de 12 de abril. del Estatuto Básico del Empleado Público(The Civil Service Basic Statute) http://europam.eu/?module=country-profile&country=Spain#info_COI (검색일 2019.6.14.) http://europam.eu/data/mechanisms/COI/COI%20Laws/Spain/Spain_Basic%20Statute%20on%20the%20Civil%20Service_2007_amended%202015.pdf (검색일 2019.6.14.)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Archive:Public_employment_-_Spain&oldid=265831 (검색일 2019.6.14.)

204) OECD. 2007. 'Study on the Political Involvement in Senior Staffing and on the Delineation of Responsibilities Between Ministers and Senior Civil Servants.'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sweden (검색일 2019.10.15.)

205) Deutschlandfunk. 2018.6.13.

- 이에 따라 연방행정부처, 우체국, 철도청의 10만 명 이상의 공무원은 근로자로 전환됨(예외적으로 판사, 검사, 경찰은 공무원 신분 유지).
- 「연방인사법」제22조(Berufs-, Geschäfts- und Amtsgeheimnis)에는 직업상, 근로관계상, 기관의 비밀유지를 규정

- 스위스 연방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도 연방헌법 제16조상 표현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향유하고, 본 기본권에 기반해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정치적인 비판 의견 또한 제시할 권리를 보호받음.
  - 그러나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지위로 인하여 일정한 제한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206]
  - 특히 일반의 신뢰와 행정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경우에 표현의 자유 또한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207]
  - 비교적 최근의 판결에서는 국가적 이익에 침해가 야기될 있는 정치적인 행동 등은 해당 직위에 있는 동안에 자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208]

---

https://www.deutschlandfunk.de/bundespersonalgesetz-die-schweiz-fast-ohne-beamtentum.1773.de.html?dram:article_id=420207 (검색일 2019.8.9.)
Der Bundesrat(스위스정부포탈). 'Bundespersonalgesetz 2018.'
https://www.admin.ch/opc/de/classified-compilation/20000738/index.html (검색일 2019.8.9.)
Demokratie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규칙'(Vorschriften für Wahlkämpfe und Abstimmungen)
https://www.ch.ch/de/demokratie/die-politischen-parteien/vorschriften-fur-die-werbung-von-politischen-parteien-in-der/ (검색일 2019.8.9.)

206) 스위스 연방법원 판결 ATF 108 Ia 172
https://www.bger.ch/ext/eurospider/live/de/php/aza/http/index.php?highlight_docid=atf%3A%2F%2F108-IA-172%3Afr%3Aregeste&lang=de&type=show_document&zoom=YES& (검색일 2019.9.26.)

207) 스위스 연방법원 판결 ATF 120 Ia 203
https://www.bger.ch/ext/eurospider/live/it/php/aza/http/index.php?lang=it&type=highlight_simple_query&page=1&from_date=&to_date=&sort=date_desc&insertion_date=&top_subcollection_aza=all&query_words=divorce&rank=0&highlight_docid=atf%3A%2F%2F120-IA-203%3Afr%3Aregeste&number_of_ranks=0&azaclir=clir&zoom=YES& (검색일 2019.9.27.)

208) 스위스 연방법원 8C_146/2014 공보불게재 판결
http://www.servat.unibe.ch/dfr/bger/140626_8C_146-2014.html (검색일 2019.9.27.)

9. 캐나다

1) 공무원법상 규정

- 원칙적으로 캐나다 공무원은 업무에 있어 정치적으로 중립이 지켜진다면 개인적 정치활동은 자유로움(공무원법 제112,113조).[209]

  ※ 정치활동이란 정당 및 후보자를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활동, 후보자가 되기 위한 활동과 후보자가 되는 것을 말함(공무원법 제111조).[210]

  - 세부적으로 정당가입, 정치자금 모금, 인쇄물 및 시설물 이용 선거운동, 정당 및 후보자관련 집회·행사 참석, 선거운동 연설문, 슬로건, 팸플릿 작성,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이 가능함.

    ※ 20세기 중반 캐나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고 1991년 대법원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이후 캐나다 공무원법에 입법화되었음.[211]

-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공무원법 제114조제1항).
-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선거의 특성, 해당 공무원 업무의 특성과 직위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공무원법 제115조제2항).

  ※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는 실적제에 기반한 정부기관으로써 정권으로부터 독립적(기관장은 Minister가 아니라 President임)이며 공무원의 채용, 승진, 복무, 조사, 감사, 공공서비스 정책 등을 관장함.[212]

- 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후보자가 되기 위해 또는 후보자로서 활동하기 위해 무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공무원법 제115조제4항), 선출직으로 당선되는 경우 무급휴가가 부여되거나 그 직이 중지됨(공무원법 제116조).
- 공무원 노조연합(Public Service Alliance of Canada)에서는 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 행사를 격려하고 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함.[213]

---

209) Justice Laws Canada. Canada Public Service Employment Act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p-33.01/ (검색일 2019.9.25.).

210) Government of Canada. 'Political activities not related to candidacy.' https://www.canada.ca/en/public-service-commission/services/political-activities/political-activities-not-related-candidacy.html (검색일 2019.8.7.)

211) CBC. 2015.8.30. https://www.cbc.ca/news/politics/harperman-case-can-public-servants-be-political-activists-1.3207194 (검색일 2019.8.7.)

212)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Public_Service_Commission_of_Canada (검색일 2019.8.7.)

- 가이드라인은 출마하는 공무원들이 그들의 지위와 정치적 활동을 연결 짓지 말 것을 추천함(예: 업무 중 선거활동을 하지 말 것, 유세 중 공무원임을 강조하지 말 것 등).

2) 선거법 규정

- 캐나다 정부의 주요 요직에 있는 공무원은 선거관련 공무원이 될 수 없음(선거법 제22조제3항)
- 선거관리청장은 재직 중에 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경선후보자에게 관여를 하거나, 등록정당, 적격정당, 선거구정당에 고용되거나 지위를 얻기 위해 소속되거나 기여를 하는 등의 정치적 행위를 하지 못함(선거법 제24조제6항).

10. 호 주

- 「공무원법(Public Service Act, 1999)」[214] 제10조에서 공무원의 가치로서 공정성(Impartial)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비정치적(apolitical)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제32조, 규칙(regulations) 3.14-3.16조: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사직한 경우, 사직한 날짜가 후보자 공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넘지 않고 선거결과 확정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재임용 신청을 한 경우 공무원은 다시 재임용될 권리가 있음.
  - 제13조에 규정된 「공무원 윤리강령(Australian Public Service Code of Conduct)」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정당 당원이 될 수도 있고 공무원이 선거일에 후보자의 선거카드(how-to-cards)를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후보자 후원금을 모집할 수도 있음.

---

213) Public Service Alliance of Canada. Political rights of public service workers. http://psac-ncr.com/political-rights-public-service-workers (검색일 2019.9.25.)

214)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2018. Public Service Act 1999.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9C00057 (검색일 2019.8.9.)

- 공무원 윤리강령(APS Code of Conduct)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예의를 다하고,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비밀을 엄수하며 이익 상충되는 상황을 피해야함. 공무원은 연방 자원을 쓸 때는 적법하게 해야 함.[215]
  - 하지만 호주공공서비스와 호주공무원의 공정성, 실적주의 가치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맡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정책에 대한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관련시켜서는 안 됨.
  - 선거운동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는 경우 공무원이 대중 앞에서 정부와 다른 의견을 지지하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 또 관련 있는 이슈에 대한 정부 정책을 집행하거나 홍보하는 업무에 그 공무원이 직접 연관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음.
  - 선거운동에 관한 회의를 할 때 공무원 유니폼을 입거나 정부 이메일, 전화, 사진, 팩스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이 공무와 관련 있어 보여서는 안 되고 공무원이 공정해야 할 의무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전근, 업무 재조종, 선거운동 주의조치 명령을 받을 수도 있음.
- 「연방차별금지법(Australian Anti-discrimination law)」[216]에는 개인의 정치적인 의견을 근거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217]
  - 호주선거위원회 직원의 경우 이 법의 예외조항에 해당함.
  - 호주선거위원회는 업무 특성상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직원 채용 과정부터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되지 않으며 직무수행 시 언제나

---

215) 호주공공서비스위원회(Australian Public Service Commission) 홈페이지. '시민으로서 공무원(APS employees as citizens)'
https://www.apsc.gov.au/sect-415-aps-employees-citizens (검색일 2019.10.15.)

216) 호주차별금지법은 연방에서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Act 2004), 호주인권위원회법(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Act 1986), 장애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인종차별금지법(Racial Discrimination Act 1975), 성차별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 1984)가 있으며 각 주와 준주의 차별금지법에서도 기관과 공무원이 법을 집행할 때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따로 있음.

217) 호주선거위원회(Aue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호주선거위원회 직무정보(Information about working in the AEC).'
https://www.aec.gov.au/Employment/AEC.htm (검색일 2019.10.15.)
호주공공서비스위원회(Australian Public Service Commission) 홈페이지. '시민으로서 공무원(APS employees as citizens)'
https://www.apsc.gov.au/sect-415-aps-employees-citizens (검색일 2019.10.15.)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선서해야 함.

- 공무원의 투표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연방선거법 제325조)
  - 공무원으로서 타인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행위를 한 자는 처벌됨.
  -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두 가지 처벌을 함께 부과할 수 있음.

<표 1-18> 주요 국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내용

구분	공무원의 정치활동 내용	정당가입	정치자금 기부	근거규정
영 국	• 모든 공무원들은 근무 중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 •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공무원인 현업 및 비사무직급은 전국·지역단위 정치활동 가능 • 정치적으로 제한된 공무원인 고위공무원단 등은 모든 형태의 전국단위 정치활동 금지	가능	가능	• 2010년 헌법개혁 및 거버넌스 법 • 공무원복무규정, 각료규정, 공무원운영규정
미 국	정치문제 및 후보자에 대한 의견표시 가능 • 특정정당자금의 유치와 제공유도금지(자발적 납부가능) • 특정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 특정 정당의 직위보유금지	가능	가능	• 1883년 펜들턴법 • 1939년, 1940년 제1차, 2차 해치법 (규제범위 확대) • 1974년 연방선거운동법 개정(완화) • 1993년 해치법 개정 (완화)
프랑스	• 공무원의 의원 출마 가능 • 당선되어도 공무원 신분 보장	가능	가능	• 1946년 일반공무원법
독 일	• 연방상원의 경우 공무원 겸직허용 • 연방수상 및 장관은 겸직금지 • 하원의원 출마 시 낙선되면 공무원 신분 유지, 당선되면 사임하되 연금 보장	가능	가능	• 1953년 연방공무원법
일 본	•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불가 • 정당, 기타 단체의 임원 등이 될 수 없음. •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	가능	불가	• 1945년 국가공무원법 • 1949년 인사원 규칙
스페인	• 공무원의 경우 중립성을 유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규정 외에 정치활동에 관한 규제가 없음.	가능	가능	• 공무원기본법
스웨덴	• 정치적 활동에 제약이 없지만, 업무에 있어 정치적 편견이 개입되는 것을 사회적으로 경계함.	가능	가능	-
스위스	• 직업상, 근로관계상 기관의 비밀유지 규정 • 공무원도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정치적 비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공무원이라는 지위로 인해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음.	가능	가능	• 2000년 연방인사법
캐나다	• 업무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면 개인의 정치활동은 자유로움. •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가능	가능	• 공무원법
호 주	• 공무원은 비정치적이어야 함. •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사직해야 함. • 선거운동 중에 공무원 유니폼을 입거나 공무와 관련 있어 보이게 해서는 안 됨.	가능	가능	• 1999년 공무원법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절
선거권

- 대부분의 국가가 선거권의 요건으로 나이, 시민권, 거주기간 등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음.
- 선거권 연령은 오스트리아·쿠바·브라질 등이 16세로 가장 낮고, 싱가포르·쿠웨이트 등 12개 국가에서 21세로 가장 높음. 또한 독일·미국·호주·태국·영국 등 147개국에서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음

1. 영 국

가. 요 건(2000년 국민대표법 제1조)[1]

- 영연방 시민이거나 아일랜드 공화국의 시민인 자
- 18세 이상인 자(1969년 4월 이전에는 21세 이상이었음)
  -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및 웨일즈와 달리 스코틀랜드의 경우 영국이나 유럽의회 선거는 18세 이상, 지방선거나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는 16세 이상이면 투표 가능

    ※ 자유민주당(The Liberal Democrat)과 노동당(The Labour)은 2010년과 2013년에 각각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음. 2014년 9월 스코틀랜드 독립 국민투표의 경우 선거권이 실제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됨.

    ※ 웨일즈의 경우 웨일즈법(The Wales Act, 2017)이 2017년 1월 31일 영국왕실의 동의를 받으면서 웨일즈 의회 및 지방정부에 대한 선거관리 권한을 2018년 4월에 이양받았음. 웨일즈 의회와 지방정부는 선거권 연령 하한을 지지하고 있음. 2019년 2월 12일 의회선거에서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으며, 웨일즈 정부 또한 지방선거의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법안을 2019년 말 상정할 예정임.[2]

---

1) Elections and voting.
https://www.politics.co.uk/reference/elections-and-voting (검색일 2019.9.18.)

- 해당 선거구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
  - 다만, 선거인명부등록은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및 웨일즈는 16세 이상부터, 스코틀랜드는 14세 이상부터 가능[3)]

나. 결격사유

- 귀족(1963년 작위법에 의해 작위를 포기한 자는 제외), 상원의원(지방선거 및 유럽의회선거는 투표 가능)
- 선거에 관한 부패행위 또는 위법행위로 선거재판소로부터 유죄를 판결을 받은 자
  - 부패행위의 경우 해당 통보일로부터 5년 동안, 위법행위의 경우 3년 동안(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 부칙 17 제8호)
- 정신병원에 감금된 범법자가 해당시기 동안 명령이나 지시로 특정 지역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감금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도피중인 경우(2000년 국민대표법 제2조)

2. 미 국

가. 요건[4)]

- 공 통: 미국 시민권자로서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해당 주에 거주하는 자(1971년 수정헌법 제26조)

  ※ 1965년「투표권법(Voting Rights)」제10101조에 따라 인종 차별 및 선거권 획득을 위한 문자해독 시험 등을 금지함.
- 주(州)별 선거일 전 거주요건
  - 캘리포니아 주: 캘리포니아 주 거주자(기간 제한 없음)(주 선거법 제2000,

---

2) 의회 홈페이지. House of Common Library. ‘Voting age(투표연령).’ April 2, 2019. https://researchbriefings.parliament.uk/ResearchBriefing/Summary/SN01747 (검색일 2019.5.1.)

3) https://www.yourvotematters.co.uk/faq (검색일 2019.4.22.)

4) 미국 법령센터(CONGRESS.GOV). ‘State Legislature Websites.’ https://www.congress.gov/state-legislature-websites (검색일 2019.6.18.)

2101조)[5]
- 미주리 주: 미주리 주 거주자(기간 제한 없음)(주 선거법 제115.133조)[6]
- 애리조나 주: 해당 선거일까지 29일 연속하여 애리조나 주에 거주한 자(주선거법 제16-101조)[7]
- 뉴햄프셔 주: 뉴햄프셔 주 거주자(기간 제한 없음)(주 선거법 제654:7조)[8]
- 위스콘신 주: 선거일 전 28일을 계속하여 위스콘신 주에 거주한 자(주 선거법 제6.10조)[9]

나. 결격사유(주별로 다름)

- 선거권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자 외에 대부분의 주에서 아래의 결격사유를 규정
  - 정신이상자 및 정신박약자
  -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고 시민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자
    선거에 관한 범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자
  - 그 외 후견 하에 있는 자 등
- 캘리포니아 주: 중범죄에 의해 유죄판결로 수감 중이거나 가석방 중인 자(선거법 제2101조)[10]
- 플로리다 주: 플로리다 주 또는 다른 주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중범죄 판결을 받은 자(선거법 제97.041조)[11]

---

5) California Law. Division 2. Voters. Chapter 1. Voter Qualifications., Chapter 2. Registration.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expandedbranch.xhtml?tocCode=ELEC&division=2.&title=&part=&chapter=&article (검색일 2019.6.18.)

6) Missouri Law. Title IX. Suffrage and Election. Chapter 115. Section 115.133. http://revisor.mo.gov/main/OneSection.aspx?section=115.133&bid=5986&hl (검색일 2019.6.18.)

7) Arizona Law. Title 16. Elections and Electors. Chapter 1. Article 1. 16-101. https://www.azleg.gov/viewdocument/?docName=https://www.azleg.gov/ars/16/00101.htm (검색일 2019.6.18.)

8) New Hampshire Law. Title LXIII. Elections. Chapter 654. Voters and Checklists. Section 654:7. http://www.gencourt.state.nh.us/rsa/html/LXIII/654/654-7.htm (검색일 2019.6.18.)

9) Wisconsin Law. Chapter 6. The Electors. section 6.10 https://docs.legis.wisconsin.gov/statutes/statutes/6/II/28/1 (검색일 2019.6.14.)

10) California Law. Division 2. Voters. Chapter 1. Chapter 2. Registration.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Text.xhtml?lawCode=ELEC&division=2.&title=&part=&chapter=2.&article=1 (검색일 2019.6.19.)

- 미주리 주: 금고형을 받은 자,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거나 가석방 중인 자, 선거권과 관련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소득세, 재산세, 지방세 및 부동산 등 세금미납 및 미납경력이 있는 자(선거법 제115.133, 115.306조)[12]

3. 프랑스

가. 요 건(선거법 제2조)

- 18세 이상의 프랑스 국민으로 공민권 및 참정권을 가지며,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

  ※ 1974.7.5 선거법 개정 이후 선거권의 연령이 21세에서 18세로 낮아짐.

- 프랑스에 귀화한 외국인으로서 귀화 후 5년이 경과한 자 또는 혼인으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자

나. 결격사유(선거법 제5,6조)

- 정신이상자 및 후견 하에 있는 자
- 재판에 의해 정해진 기간 동안 법원이 투표 및 선거권을 제한한 자

4. 독 일

가. 요 건(연방선거법 제12조)

- 만 18세 이상인 자(1970년 21세에서 18세로 낮춤)

---

11) Florida Law. Title IX. Electors and Election. Chapter 97. Part II. Section. 97041. http://www.leg.state.fl.us/Statutes/index.cfm?App_mode=Display_Statute&URL=0000-0099/0097/0097PartIIContentsIndex.html&StatuteYear=2018&Title=%2D%3E2018%2D%3EChapter%2097%2D%3EPart%20II (검색일 2019. 6.19.)

12) Missouri Law. Title IX. Suffrage and Election. Chapter 115. Section 115.133. http://revisor.mo.gov/main/OneSection.aspx?section=115.133&bid=5986&hl= (검색일 2019.6.18.)

- 독일연방공화국에서 3개월 이상 주소를 가지거나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참조 2-1 독일 선거법의 주거 개념

- "주거"의 개념 (선거법 제12조제3,4항)
  - 이 법에서 "주거"라 함은 거주를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둘러싸인 공간을 의미함. 거주차(Wohnwagen) 및 주거용 배(Wohnschiffe) 등은 그것이 이동하지 않거나 또는 아주 드물게 이동할 경우에만 주거로 봄.
  - 선원 및 그의 세대 소속인의 경우 그들이 소속된 선박이 현행 「국기권법」에 따라 연방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가진 선박인 경우, 내수면 선박의 선원 및 그 세대 소속인의 경우 그들이 소속된 선박이 독일연방공화국의 선박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유형이 집행중인 자와 기타 보호감호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수용을 위한 시설물과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경우에는 주거로 봄.

나. 결격사유(연방선거법 제13조)[13]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을 상실한 자

다. 선거권의 행사(연방선거법 제14조)

- 선거인명부(Wählerverzeichnis)에 등록되어 있거나 선거증(Wahlschein)을 소지한 자만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는 등록된 선거인명부가 소속된 투표구(Wahlbezirk)에서만 투표할 수 있음.
- 선거증을 소지한 자는 그 선거증이 발행된 선거구(Wahlkreis) 내의 임의의 투표구에서 투표하거나, 우편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음.

---

13) '금치산자 또는 정신적 결함으로 후견 하에 있는 자'와 '형법의 규정에 따라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으나, 2019.1.20.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가 이들의 선거권 배제는 「기본법(Grundgesetz)」이 규정하고 있는 '보통선거의 원칙(Grundsatz der Allgemeinheit der Wahl)'과 '장애에 따른 차별금지 원칙(Diskriminierungsverbot)'에 위배된다고 판결함. 이에 따라 2019.6.18. 「연방선거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 '금치산자 또는 정신적 결함으로 후견 하에 있는 자, 형법의 규정에 따라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자' 규정이 삭제됨.
https://www.gesetze-im-internet.de/bwahlg/BJNR003830956.html (검색일 2019.10.31)

5. 일 본

가. 요 건(공직선거법 제9조)

- 일본 국민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

  ※ 201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하향, 2016년 7월 참의원선거부터 적용

  ※ 참의원 및 중의원선거 선거권자의 경우 거주기간 제한이 없지만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 선거의 경우 해당 시정촌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2000년부터 해외거주 재외국민들도 총선거에 참여할 수 있음(공직선거법 제30조의4,제30조의5).
  - 만 18세 이상의 일본국민으로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그 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영사관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자
  -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대사관, 공사관을 경유해서 일본 내 본인의 최종 주소지의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명부의 등록신청을 할 수 있음.

나. 결격사유(공직선거법 제11조)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형의 집행유예중인 자는 제외)
- 공직 재직 중에 범한 수뢰죄 또는 공직에 있는 자 등이 「알선행위로 인한 이득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의 면제를 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의 면제를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중인 자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선거, 투표 및 국민심사에 관한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중인 자

  ※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인한 경우(선거법 제252조)

  ·벌칙에 규정된 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 재판확정시부터 5년간(집행유예자는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

  ·벌칙에 규정된 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재판확정시부터 형의 집행이 종료될 때
- 형의 집행면제를 받은 때(형의 시효에 의한 경우 제외)
- 재판확정시부터 5년간

※ 선거권 취득의 효과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면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음.
·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 선거장에 선임될 수 있음.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쟁송을 제기할 수 있음.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개표소 또는 선거회장을 참관할 수 있음.

6. 스페인

가. 요 건(선거법 제2조)

- 18세 이상 스페인 국민으로서 유효한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
- 카나리아 도이사회 및 도민회, 바예테아란(Valle de Aran)지역 총위원회 및 총회 선거를 포함한 시의원선거 시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스페인거주자명부에 등록되어야 함.

나. 결격사유(선거법 제3조)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주형 및 부가형으로 선거권박탈 선고를 받은 자로 그 형이 아직 유효 자

7. 스웨덴

가. 요 건(헌법 제3절 제4조)

- 18세 이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적이 있는 스웨덴 시민
- 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는 선거 전에 작성된 선거인명부에 따라 결정됨.

나. 결격사유

- 정신이상자의 경우 선거권을 제한했으나 1991년 폐지됨.[14)]

8. 스위스

가. 선거권(헌법 제136조제1항)

- 18세 이상의 스위스 시민은 연방사무에 대한 정치적 권리 즉, 하원의원선거 선거권이 있음.
- 상원의원선거는 연방차원에서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에서 정함.

  ※ 정치적 권리의 행사(헌법 제39조)

  - 연방은 연방에 대한 정치적 권리의 행사를 규정하며, 주(Kanton)는 주와 코뮌(자치단체)에서의 정치적 권리 행사를 규정함.
  - 정치적 권리는 원칙적으로 시민이 거주하는 코뮌에서 행사됨. 다만 연방과 주는 예외를 인정
  - 어느 누구도 동시에 2개 이상의 주에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주는 거주자로 새로 등록한 사람이 완전히 정착하도록 최대 3개월의 대기기간이 지나야만 주와 코뮌 문제에 관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4) OSCE. SWEDEN GENERAL ELECTIONS 19 September 2010 REPORT. p.7.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70947?download=true (검색일 2019.8.9.)

나. 결격사유(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2조)

- 헌법 제136조제1항(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로 인해 행위 능력이 결여된 자)에 따라 투표할 수 없는 자
-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 후견 하에 있는 자

9. 캐나다

가. 요 건(선거법 제3조)

-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캐나다 시민

나. 거주지 관련 규정(선거법 제8,9조)

- "통상 거주지(ordinary residence)"란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거나, 주소지로 삼은 곳
- 누구든지 오직 하나의 거주지를 가지며, 다른 거주지를 가질 때까지 상실되지 않고 일시적 부재로 인해 상실되거나 변경되지 않음.
- 일정한 장소에서 숙식을 하면서 다른 장소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통상 거주지는 숙식하는 장소로 함.
- 주소가 따로 없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곳을 거주지로 간주함.
- 통상 거주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모든 사실을 참조하여 선거공무원이 결정

  ※ 보궐선거 거주지(선거법 제12조)

  - (보궐선거에 있어)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수정기간 개시일 당시의 거주지와 선거일의 거주지 투표구가 같은 선거구에 있는 경우에만 투표할 수 있음.
  - 보궐선거를 위해 선거인명부수정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 동안에 같은 선거구 내에서 하나의 투표구에서 다른 투표구로 평소 거주지를 바꾼 선거인은 새로운 투표구의 선거인명부에 그의 이름을 등록함.

10. 호 주

가. 요 건(연방선거법 제93조제1항)[15]

- 만 18세 이상의 호주 시민권자 또는 자격을 갖춘 영국인

  ※ 자격을 갖춘 영국인은 시민권법상 영국인이며, 1984년 1월 25일 이전의 선거구 선거인명부 또는 「호주수도준주하원의원법(Australian Capital Territory Representation Act, 1973)」 혹은 「북부준주하원의원법(Northern Territory Representation Act, 1922)」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

- 최소 한 달 이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연방선거법 제99조제1항).

나. 결격사유(연방선거법 제93조제8항)

- 정신이상자로 선거인명부등록과 투표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는 자
- 모반죄 또는 반역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사면되지 않은 자

  ※ '모반 또는 반역죄'란 주 또는 북부지역에서 국왕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모반·반역과 주정부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모반·반역죄를 포함(연방선거법 제93조제10항).

-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자

  ※ 「이민법(Migration Act 1958)」에 따라 임시 출입국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선거인명부 등재 자격이 없음.

15) 호주선거위원회 홈페이지(AEC). 'Enrol to vote.' https://www.aec.gov.au/enrol/ (검색일 2019.9.2.)

<표 2-1> 각국의 선거권 연령

연령	국가명		비고
16세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브라질, 쿠바, 에콰도르, 니카라과		6
17세	그리스, 인도네시아, 북한, 동티모르		4
18세	아시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콜롬비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22
	중동	아르메니아, 이집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팔레스타인, 카타르, 시리아, 터키, 예멘	11
	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앙골라, 베냉, 부탄,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가봉,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리셔스,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에스와티니,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50
	유럽	알바니아, 안도라,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벨기에,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린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16],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몰타,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	46
	중·남·북미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푸에르토리코,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미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29
	오세아니아	호주, 피지, 키리바시, 마셜군도, 미크로네시아,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투발루, 바누아투	12
19세	한국		1
20세	바레인, 카메룬, 나우루, 대만		4
21세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사모아, 싱가포르, 통가		6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VR001 (검색일 2019.4.3.)

16) 이탈리아의 경우 하원의원 선거권은 18세, 상원의원 선거권은 25세임.

<표 2-2> 최근 선거연령 조정국가 현황

조정 현황	해당 국가
15세 → 18세	이란(2011)
19세 → 18세 → 16세	오스트리아(2007)
20세 → 19세	한국(2005)
21세 → 18세	세네갈, 보츠와나, 코트디부아르, 가봉, 키프로스, 시에라리온, 볼리비아, 레소토, 온두라스, 튀니지, 말레이시아(2019)
20세 → 18세	일본(2015)
18세 → 17세	그리스(2016)
18세 → 16세	아르헨티나(2012)

<표 2-3> OECD국가의 민법상 성년연령 및 선거권 연령 비교

연령	민법상 성년연령		선거권 연령	
	국가수	국가	국가수	국가
16세	-	-	1	오스트리아 ※ 독일, 스위스 일부 주는 지방선거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규정
17세	-	-	1	그리스
18세	33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 룩셈부르크, 미국(주별로 다름), 멕시코, 벨기에,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체코, 칠레, 캐나다, 터키, 프랑스, 핀란드, 포르투갈, 폴란드, 호주, 헝가리	33	뉴질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 룩셈부르크, 미국, 멕시코, 벨기에,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체코, 칠레, 캐나다, 터키, 핀란드,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호주, 헝가리, 일본
19세	1	한국	1	한국
20세	2	뉴질랜드, 일본(2022년 18세로 하향)	–	–

출처: 민법상 성년연령(age of majority in civil law)
https://en.wikipedia.org/wiki/Age_of_majority#Age_18 (검색일 2019.4.23.)

<표 2-4> 각국의 선거권 요건(연령 제외)

구분	국가명
시민권 (Citizenship)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로루시, 벨기에, 벨리즈,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미얀마,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콩고공화국, 쿡제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쿠바, 체코, 코트디부아르,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기아나, 가봉, 감비아, 조지아, 독일, 가나, 그리스, 그레나다, 과들루프,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키리바시, 북한, 한국,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몰타, 마셜제도, 모리타니, 모리셔스,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몰도바,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우루, 네팔, 네덜란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니우에,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팔라우, 팔레스타인,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레위니옹,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산마리노,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군도,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수리남, 에스와티니,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동티모르, 토고,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우간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거주 기간 (Period of Residence)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오스트레일리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바베이도스, 벨리즈, 부탄, 보츠와나, 불가리아, 미얀마, 카메룬, 칠레, 코모로, 콩고공화국, 쿡제도, 쿠바, 키프로스, 덴마크, 도미니카,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가봉, 독일, 그레나다, 가이아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자메이카, 일본, 리히텐슈타인, 말라위, 말레이시아, 말리, 몰타, 모리타니, 모리셔스, 미크로네시아, 몬테네그로,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필리핀,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솔로몬군도, 수단, 수리남, 에스와티니, 스웨덴,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투발루, 우루과이
부모의 시민권 취득 (Citizenship of Parents)	나미비아, 사모아, 산마리노
귀화 (Naturalization)	아르헨티나, 벨리즈,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미얀마, 콩고공화국, 쿡제도, 코스타리카, 이집트, 가이아나, 일본, 쿠웨이트, 레바논,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니제르, 오만, 세네갈, 태국, 예멘
기타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안도라, 앙고라, 앤티가바부다, 바레인, 베냉, 보츠와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미얀마, 카메룬, 캐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콜롬비아,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코스타리카, 체코,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가봉, 감비아,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아이티, 헝가리, 인도, 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라트비아, 레소토,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크로네시아, 몰도바, 몽골,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팔레스타인,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폴란드, 르완다, 사모아,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슬로바키아, 수단, 태국, 동티모르, 토고, 통가, 튀니지, 투발루, 아랍에미리트, 영국, 잠비아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VR002 (검색일 2019.4.23.)

<표 2-5> OECD국가의 선거권 도입연도

국가명	남성	여성	보통선거권
영 국	1918	1928	1928
미 국	1856	1920	1965
프랑스	1848	1944	1945
독 일	1871	1919	1919
일 본	1925	1947	1947
스페인	1977	1977	1977
스웨덴	1909	1919	1945
스위스	1848	1971	1971
캐나다	1920	1920	1960
호 주	1901	1902	1967
오스트리아	1896	1918	1918
벨기에	1893	1948	1948
칠 레	1970	1970	1970
체 코 / 슬로바키아	1896	1918	1918
덴마크	1849	1915	1915
에스토니아	1917	1918	1918
핀란드	1906	1906	1906
그리스	1844	1952	1952
헝가리	1918	1918	1918
아이슬란드[17]	1920	1920	1920
아일랜드	1918	1923	1923
이스라엘	1948	1948	1948
이탈리아	1912	1945	1945
라트비아	1919	1919	1919
리투아니아	1922	1922	1922
룩셈부르크	1919	1919	1948
멕시코	1917	1953	1953
네덜란드	1917	1919	1919
뉴질랜드	1879	1893	1893
노르웨이	1898	1913	1913
폴란드	1918	1918	1918
포르투갈	1974	1974	1974
슬로베니아[18]	1848	1848	1920
터 키	1876	1934	1934

※ 남성, 여성: 문자해독력, 부,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특정 연령 이상의 모든 남성, 여성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해
※ 보통선거권: 성별, 부, 사회적 지위, 종교, 인종 또는 민족 차별이 없는 선거권
1. 보통선거권의 무효화를 다시 선언한 경우(스페인 1936년~1976년)와 제한선거의 흔적 등(호주의 원주민에게는 1962년부터 비로소 선거권이 주어짐)은 표시되지 않았음.
2. 미국은 1965년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of 1965)에 따라 문자 해독 시험, 인두세의 납부요건 폐지되어 실질적인 보통선거권이 가능해짐.

출처: Wikipedia. 'Universal suffrage'
https://en.wikipedia.org/wiki/Universal_suffrage#Dates_by_country (검색일 2019.4.29.)

17) Wikipedia. 'Women in Iceland'
https://en.wikipedia.org/wiki/Women_in_Iceland (검색일 2019.10.17)

18) Wikipedia. 'Women's suffrage in Slovenia'
https://sl.wikipedia.org/wiki/%C5%BDenska_volilna_pravica (검색일 2019.10.17)

<표 2-6> OECD국가의 선거권 현황

구분 국가명	선거 연령	시민권 요건	국내 거주요건	선거구 거주요건	해외거주자 선거권	정신박약자 선거권	수감자 선거권	근거규정
영 국	18세	○	×	3개월 (북아일랜드)	○	×	×	2000년 국민대표법 제11조
미 국	18세	○	×	주마다 상이 (10일~50일)	○	×	× (중범죄, 선거범)	수정헌법 제26조
프랑스	18세	○	×	6개월 (선거인명부 등록요건, 선거권 제한은 아님)	○	×	× (특정범죄)	선거법 제2,5,6조
독 일	18세	○	3개월	×	○	×	○	연방선거법 제12조
일 본	18세	○	×	× (지방선거 3개월)	○ (3개월 이상)	○	× (특정범죄)	공직선거법 제9,11조
스페인	18세	○	×	×	○	×	× (특정범죄)	선거법 제2,3조
스웨덴	18세	○	×	×	○	×	○	헌법 제3절 제4조
스위스	18세	○	×	×	○	×	○	헌법 제36조제1항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2조
캐나다	18세	○	○	×	○ (5년 이내 국외체류시)	○	○	선거법 제3,8,9조
호 주	18세	○	○	○	○	×	× (3년 이상 형량)	연방선거법 제93조제1,8항 제99조제1항
오스트리아	16세	○	×	×	○	○	○ (1년 이상 구금은 ×)	헌법 제26조 하원선거법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8,66,74조
벨기에	18세	○	×	×	○	×	×	선거법 제1조 제1,2,3,4항 제7조제1항, 제180조
체 코	18세	○	×	×	○	×	○	헌법 제18조제3항 선거법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 제b,c호
칠 레	18세	○	○	×	○	×	×	헌법 제13,14,16조

구분 국가명	선거 연령	시민권 요건	국내 거주요건	선거구 거주요건	해외거주자 선거권	정신박약자 선거권	수감자 선거권	근거규정
덴마크	18세	○	○	○	○	×	×	헌법 제29조제1,2항 선거법 제1,2,15조, 제54조제3항
에스토니아	18세	○	×	×	○	×	×	선거법 제4,49조
핀란드	18세	○	○	×	○	○	○	헌법 제14조 선거법 제2조
그리스	17세	○	○	○	×[19]	×	× (특정범죄)	헌법 제51조 선거법 제4조제1항 제5조제a,b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69조제2항
헝가리	18세	○	×	×	○	△ (법원결정에 따라)	△ (법원결정에 따라)	헌법 제23조 선거절차법 제102조
아이슬란드	18세	○	○	×	○	-	× (중범죄)	헌법 제33,34조 의회선거법 제1,5조
아일랜드	18세	○	○	○	○ (18개월 이내 국외체류시)[20]	○	○	헌법 제16조제1항 선거법(1992) 제8조제1항 제a,b호, 제12조
이스라엘	18세	○	×	×	× (공무수행자, 외항선 등 제외)	×	○	의회기본법 제5조 선거법 제2,3,116조
이탈리아	18세 (하원)[21] 25세 (상원)	○	×	×	○	○	× (특정범죄)	헌법 제48,58조
라트비아	18세	○	×	×	○	×	×	헌법 제8조 선거법 제1,3조, 제8조제1항, 제451,452조
리투아니아	18세	○	×	×	○	×	○	의회선거법 제2,27,67조
룩셈부르크	18세	○	○	×	○	×	×	헌법 제52조 선거법 제1,6조

구분 국가명	선거 연령	시민권 요건	국내 거주요건	선거구 거주요건	해외거주자 선거권	정신박약자 선거권	수감자 선거권	근거규정
멕시코	18세	○	×	×	○	×	×	헌법 제34,35조 선거법 제7조제1항, 제9조제a,b항, 제128조, 제280조제5항
노르웨이	18세	○	○	○	○	○	× (특정범죄)	선거법 제2-1조, 제2-7조, 제3-1조, 제8-4조제8항, 제9-4조제5항
네덜란드	18세	○	×	×	○	-	× (특정범죄)	선거법 제B1조제1항, 제B5,D2,L1조
뉴질랜드	18세	○	1년	1개월 (선거인명부 등록요건, 선거권 제한은 아님)	○	×	×	선거법 제74,80,82조
폴란드	18세	○	×	×	○	△ (법원결정에 따라)	△ (법원결정에 따라)	헌법 제62조 선거법 제10,35조
포르투갈	18세	○	×	×	○	×	○	헌법 제49조, 선거법 제1,2,79,79b조
슬로바키아	18세	○	×	×	○	×	×	헌법 제30조 선거법 제3,4,45,59,60조
슬로베니아	18세	○	×	×	○	×	○	의회선거법 제7,47조
터 키	18세	○	×	×	○	×	×	헌법 제67조 선거기본법 제6,7,8조

※ EU회원국 정신박약자 선거권에 대해서는 각주자료 확인[22]

19) 헌법 제51조제4항에 '해외에서의 선거권 행사에 관한 사안은 의회 의원 2/3 이상의 동의하에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시행할 구체적인 선거법이 없음.

20) 아일랜드 외무부 홈페이지
https://www.dfa.ie/global-irish/support-overseas/voting-in-referendums/ (검색일 2019.8.9.)

21) 헌법 제48조제1항: 선거권자는 성년(Age of Majority; 18세)에 달한 모든 시민으로 규정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9-564-8565?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bhcp=1 (검색일 2019.9.6.)

22)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https://fra.europa.eu/en/publication/2014/indicators-right-political-participation-people-disabilities/legal-capacity (검색일 2019.8.8.)

제2절
피선거권

- 국민의 대표로 선거에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도 선거권와 마찬가지로 연령, 시민권, 거주기간 등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을 부여
- 다만, 연령에 있어 대부분의 국가가 선거권 연령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으며, 상원과 하원의 피선거권 연령도 다름(미국, 일본, 캐나다 등).

1. 영 국

가. 요 건[23](선거행정법 제5장 제17,18조)[24]

- 선거권이 있는 자
- 영국시민, 아일랜드공화국 또는 영연방 시민인 자
- 만 18세 이상인 자

나. 결격사유

- 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파산자(산업법 제266조)[25], 1년 이상 수감자(1981년 국민대표법 제1조)[26]
- 유럽의회 의원, 귀족[상원의원이기 때문에 하원의원이 될 수 없음(상원법)[27]].

---

23)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Candidate guide-UK Parliamentary general election(총선 후보자 가이드).’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media/1214 (검색일 2019.9.18.)

24) Electoral Administration Act, 2006. Part 5. section 17,18

25) Enterprise Act 2002, section 266

26)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1. section 1

27) The House of Lords Act, 1999

- 성공회·스코틀랜드교회·아일랜드교회·카톨릭 교회의 성직자(비국교도교회 제외)(하원법)[28]
- 하원의원 부자격법[29]에 규정된 직위에 있는 사람
  - 고위공직자, 판사, 외국대사, 정규군인, 경찰, 공기업, 사기업 중 정부가 임명한 사람, 잉글랜드 은행장
- 선거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피선거권 박탈(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부칙 17. 제8호)[30]
  - 부패행위로 인한 유죄의 경우 5년 동안
  - 위법행위로 인한 유죄의 경우 3년 동안

2. 미 국

가. 상원의원(연방헌법 제1장 제3조)

- 임기 개시일에 30세 이상으로 9년 이상 시민권을 가진 자
- 선거 당시 출마하는 주의 주민인 자, 의원으로 재임 중에는 미국 연방정부의 관할하에 있는 어떠한 공직도 겸직할 수 없음.

나. 하원의원(연방헌법 제1장 제2조)

- 임기 개시일에 25세 이상으로 7년 이상 시민권을 가진 자
- 선거 당시 출마하는 주의 주민인 자, 의원으로 재임 중에는 미국 연방정부의 관할하에 있는 어떠한 공직도 겸직할 수 없음.
- 해당 주에 대한 거주요건은 각 주법에 따라 다름.

---

28) The House of Commons, 2001

29) House of Commons Disqualification Act, 1975

30)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Schedule 17. 8.

3. 프랑스

가. 상원의원

- 요건(선거법 제296조)
  - 24세 이상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선거권자
- 결격사유(선거법 제296조): 하원의원선거와 동일

나. 하원의원

- 요건(선거법 제127조)
  -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의 프랑스 국민
- 절대적 결격사유
  -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선거법 제45조)
  - 선거법 제118-3조(선거비용 상한선을 초과한 후보자에게 1년간 피선거권 박탈, 선거운동용 계좌가 사기로 폐쇄되거나, 선거비용 관련 규정들을 심각하게 위반한 때 최대 3년 피선거권 박탈) 및 제118-4조(투표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기만 행위를 한 후보자에게 최대 3년 피선거권 박탈)에 따라 행정법원 판사가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선거법 제45-1조제1호)
  - 선거법 제136-1조(선거비용 상한선을 초과한 후보자, 선거운동용 계좌가 사기로 폐쇄되거나 선거비용 관련 규정들을 심각하게 위반한 때 피선거권 박탈 최대 3년) 및 제136-3조(투표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기만 행위를 한 후보자에게 최대 3년 피선거권 박탈)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선거법 제45-1조제2호)
  - 하원의원의 재산신고서 중 하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최대 1년간 피선거권 상실(선거법 제128조제3항).
- 상대적 결격사유(선거법 제130,132조)

  선거구민에 대하여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아래의 공무원은 그 관할 구역 또는 직무수행 지역의 선거구에 입후보 금지

- 재직 중 금지: 권리보호관(Défenseur des droits) 및 그 보좌관, 자유권제한영역 인권수호인(le Contrôleur général des lieux de privation de liberté)
- 재직 중 및 그 후 3년간: 도지사(Préfet)
- 재직 중 및 그 후 1년간
  - ·부지사(sous-préfet), 도지사비서실장, 도사무국장, 도행정국장
  - ·지역(régionlaes) 또는 코르시키 지역의 비서실장, 파견도지청지사
  - ·도지청국장, 도지청사무소장, 도지청비서실장
  - ·지역 및 도의 행정청 국장, 부국장, 사무소장
  - ·공공재정 관련 지역·도·지방 국장
  - ·대학 총장, 대학 장학관, 국립교육감독관
  - ·노동 감독관
  - ·프랑스 은행의 지점장 및 국장, 공공지역사무소 책임자
  - ·고등법원 판사
  - ·행정법원장, 행정법원 판사, 행정법원 직원
  - ·지역법원 판사, 지역사무소장
  - ·상사법원장, 노동법원장
  - ·헌병대 장교 및 하사관
  - ·경찰공무원
  - ·군인
  - ·감사원 지역·지역·사무소장
  - ·지역보건소장, 부소장, 비서실장
  - ·의료기관장
  - ·지역 소방서장
  - ·20,000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코뮌 지역, 도시권, 대도시 지역의 서비스국장, 부국장 및 공공기관장, 부기관장
  - ·지방의회 위원장, 코르시카 의회 의장, 코르시카 행정부 의회 의장, 도의회의장, 20,000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코뮌의 시장·지역의장, 대도시 지역의 의장 비서실 직원

다. 겸직금지(하원의원 기준)

- 상원의원, 정부 각료, 현역군인, 경제사회위원회 위원, 해외영토 정치고문, 사법관, 헌법평의회의 위원, 중재인(선거법 제46,137,139,140조)
- 유럽의회대표직·지방의회의원·도의회의원·파리시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인구 3,500명 이상)(선거법 제137-1,141조)
- 시장, 구청장, 부시장, 도의회 의장, 부의장, 프랑스령 해외 영토 관련 정부 의장, 의원, 부회장, 재외프랑스 국민의회 의장 등(선거법 제141-1조)
- 선거에 의하여 임명되지 아니하는 공직자(선거법 제142조)
-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직원 또는 그 기금으로 보수를 받는 사람(선거법 제143조)
- 정부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선거법 제144조)
- 국영기업체 및 국가기관의 이사회 이사장·이사(선거법 제145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자·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휘·감독을 받는 기업 또는 이들의 출자로 설립된 기업 등의 임원(선거법 제146조)

  ※ 상원의원도 하원의원선거의 경우와 동일(선거법 제297조)

4. 독 일

가. 요 건(선거법 제15조제1항)

만 18세 이상인 독일 시민

나. 결격사유(선거법 제15조제2항)

- 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선거권 또는 공무담임권을 상실한 자

다. 공무원 등의 피선거권 제한(기본법 제137조)

- 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게마인데)의 공무원, 고용원, 직업군인, 일시적 지원병 및 법관의 피선거권은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음.

5. 일 본

가. 요 건(공직선거법 제10조)

- 참의원의원: 만 30세 이상의 일본 국민
- 중의원의원: 만 25세 이상의 일본 국민

※ 도도부현의회의원은 만 25세 이상, 도도부현지사는 만 30세 이상, 시정촌의회의원 및 시정촌장은 만 25세 이상

나. 결격사유(공직선거법 제11조, 제11조의2)

- 선거권 결격사유와 동일

※ 공직 재직 중 수뢰, 알선수뢰 등의 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날로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없음.

6. 스페인

가. 요 건(선거법 제6조)

- 성년인 18세 이상의 스페인 시민인 선거권자

나. 결격사유(선거법 제6조)

- 절대적 결격사유
  - 확정판결에 의해 금고형을 선고받고 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반란죄, 테러죄 또는 국가기관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확정판결전이라도 유죄판결을 통해 형법의 규정에 따라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였거나 공직 관련 특별자격정지를 선고 받은 자
- 상대적 결격사유

  다음의 자는 임기 동안 자신의 관할권이 미치는 전체 지역 또는 일부분에 해당하는 선거구에서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전국단위 하위정부부처에서 고위직 업무를 수행하는 자
- 특정 지역의 관할권을 가진 자치단체의 장, 국장, 유사직무자 및 해당 지역에의 중앙정부 파견자
- 스페인 국영 TV 및 라디오방송국의 지방파견자, 지방자치주 소속 TV·라디오방송국의 국장
- 사회보장제도 관리기관의 산하기관장 및 국장
- 중앙정부대표 및 부대표기관의 사무총장
- 선거인명부관리국의 지방파견자

※ 상·하원의원 선거 특례(선거법 제154조)

- 외국 국가에 의해 업무나 직책이 부여되고 급여를 제공받는 업무 혹은 직책을 수행하는 자는 하원의원 또는 상원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음.
- 자치주 주지사, 자치주 정부각료 및 자치주 집행부에 의해 자유롭게 임명되는 직책에 있는 자, 도조례 또는 법률에 따라 해당 주의회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는 자치기관의 구성원은 하원의원에 선출될 수 없음.

다. 겸직금지(선거법 제6,155조)

- 1981년 11월 27일자 국왕령 제2917호에 명시된 호적부(민사등기소)에 포함된 스페인 왕족 구성원 및 그 배우자로 등록된 자
-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국사원장, 감사원장 및 헌법 제131조제2항에 명시된 위원회의 위원장

※ 헌법 제131조제2항
정부는 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예산과 노동조합, 기타 전문직 단체, 기업가단체 및 경제단체의 조언과 협조에 따라 계획안을 작성한다.

- 헌법재판소 판사, 사법부총평의회 위원, 국사원의 상근위원 및 감사원의 감사위원
- 호민관 및 그 보조인
- 검찰총장
- 정부부처 및 정부부처급 기관의 차관, 차관보 및 국장. 특히 총리부속 국장, 총리비서실 소속 국장
- 외국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상주인 자격으로 임명된 공관장
- 단독·합의부 판사 및 검사로 재직 중인 자

- 직업군인, 예비군 및 국방·치안·경찰 구성원으로 재직 중인 자
- 선거위원회위원장, 위원 및 사무총장
- 자치주정부에 파견된 중앙정부 대표, 부대표 및 지역 관련 각종 권한을 부여받은 당국의 관계자
- 스페인 국영TV, 라디오방송국 및 소속 법인·단체의 사장
- 전국을 대상으로 관할권을 가진 자치국영기관의 장, 이사 및 유사직책을 가진 공무원, 이 기관들의 지방 파견 중앙정부 대표
- 전국을 대상으로 관할권을 가진 사회보장관리 기관의 장 및 국장
- 선거인명부관리국의 장
- 스페인 중앙은행의 총재 및 부총재, 국가채권기관·기타 공공채권 기관의 장 및 국장
- 핵안전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사무총장
- 국가경쟁위원회장
- 스페인 국영TV·라디오방송공사 이사회 구성원
- 중앙정부 내각 또는 정부부처 및 비서실 구성원
- 항만당국, 수로연합(Hydrographic Confederation), 유료고속도관리대행회사 및 기타 단체의 대리인
- 공공기관, 국가독점기관, 정부가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및 공공기금으로 설립된 저축금고 이사장, 이사, 관리인, 총괄이사, 사장 또는 동등한 직책을 가진 자
- 확정판결을 통해 불법으로 결정된 정당, 연합 또는 연맹 소속으로 당선된 하원의원과 상원의원 및 확정판결을 통해 불법정당과 연관성이 있다고 결정된 선거인단체 소속 당선자

※ 누구든지 동시에 상·하원의원이 될 수 없으며, 자치주의회 의원과 하원의원 또한 동시에 될 수 없음.

7. 스웨덴

가. 요 건(헌법 제3절 제4조)

선거권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이 있음.

나. 겸직금지(헌법 제4절 제9조)

의회의장이나 내각의 장관이 된 경우 의원으로서의 권한은 대리의원이 행사함.

※ 당선인이 결정되면 정당은 당선된 소속 의원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해당 선거구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기준으로 대리의원을 함께 선출함(선거법 제14절 제14조).

8. 스위스

가. 피선거권(헌법 제143조)

-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원의원 피선거권이 있음.

나. 결격사유(헌법 제136,144조)

- 정신 질환이나 정신 장애로 인해 행위 능력이 결여된 자
-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 후견 하에 있는 자
- 하원의원, 상원의원, 연방정부의 공무원이나 연방대법원의 판사는 겸직할 수 없음.

9. 캐나다

가. 요 건: 만 18세 이상의 선거권자[31)]

---

31) 캐나다 상원의원은 총독이 임명하는데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가. 요건(헌법 제23조): 해당 주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자로, 주내에서 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4,000캐나다달러 상당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부동산과 동산을 합하여 4,000캐나다달러 상당의 순자산을 가진 30세 이상의 시민
※ 부가적 기준: 정당의 후원, 이익집단이나 지역사회단체의 대표, 국가에 대한 현저한 공헌 여부
나. 결격사유(헌법 제31조): 2번 연속 회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외국에 충성 맹세를 한 사람, 파산자, 반역죄 또는 중범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 재산 또는 거주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파산상태가 아니고, 해당 주에 거주해야 함)

나. 결격사유(선거법 제65조)

- 후보자 등록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
- 선거법 위반행위 또는 부패행위로 유죄의 판결을 받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 선거법 위반행위의 경우 5년간, 부패행위의 경우 7년간 피선거권 상실
- 주(province)의회의원
- 총독이 임명한 판사. 단, 국적법에 의하여 임명된 판사(citizenship judge)는 제외함.
-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
- 선거관리청장, 선거사무원
- 이전 선거의 후보자로서 보고서 제출연장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선거법 제477조의59제1항에 규정된 신고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자

10. 호 주

- 요 건: 만 18세 이상의 호주연방 시민으로 의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 또는 선거권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연방선거법 제163조)[32]
  ※ 주 또는 준주(territory) 의회의원의 경우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 후보자가 될 수 없으나 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직하면 가능(연방선거법 제164조).
- 결격사유(헌법 제44조)
  - 외국정부에 충성하는 자
  - 12개월 이상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
  - 파산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
  - 공무원이나 공적기금을 받는 자
  - 직업 군인

32) 호주선거위원회 홈페이지(AEC). ‘Candidate information’ https://www.aec.gov.au/Elections/candidates/overview.htm (검색일 2019.8.9.)

<표 2-7> 각국의 피선거권 연령(하원의원 기준)

연령	국가명
17세	북한, 동티모르
18세	알바니아, 안도라, 앙골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벨리즈,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카보베르데, 캐나다, 중구, 코모로, 크로아티아, 쿠바, 덴마크, 에콰도르,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레나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안, 헝가리, 아이슬란드, 케냐, 레소토,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몰디브, 몰타,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몰도바, 상투메프린시페,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터키, 우간다, 영국
20세	나우루
21세	앤티가 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브라질, 브루나이,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칠레, 코스타리카, 체코공화국, 도미니카, 에스토니아, 가봉, 감비아, 조지아, 가나,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자메이카, 키리바시,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라트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말리, 마셜제도, 멕시코, 나미비아, 니카라과, 니제르, 파나마, 폴란드, 러시아, 르완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사모아, 산마리노,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솔로몬군도, 남수단, 수리남, 통가, 투발루, 우크라이나, 탄자니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잠비아, 짐바브웨
23세	카메룬, 지부티, 루마니아, 튀니지
25세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베냉, 부탄, 부룬디, 캄보디아, 차드, 콜롬비아, 콩고공화국, 코트디부아르, 키프로스, 콩고민주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 이집트, 엘살바도르, 적도기니, 그리스, 아이티, 인도,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레바논, 라이베리아, 리투아니아, 모리타니, 모나코, 몽골,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한국, 세네갈, 소말리아, 타지키스탄, 태국,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아랍에미리트,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예멘
30세	바레인, 이란,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미크로네시아, 나이지리아,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출처: New Parline. IPU's open data platform.
https://data.ipu.org/compare?field=chamber%3A%3Afield_min_age_member_parl&structure=any__lower_chamber#map (검색일 2019.4.30.)

<표 2-8> 각국의 피선거권 요건

구분	국가명
나이 (Age)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로루시, 벨기에,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미얀마,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모로,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쿡제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쿠바, 키프로스, 체코, 코트디부아르,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핀란드, 프랑스, 기아나, 가봉, 감비아, 조지아, 독일, 가나, 그리스, 그레나다, 과들루프,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키리바시, 북한, 한국,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몰타, 마셜제도, 모리타니,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몰도바,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우루,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니우에,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팔라우, 팔레스타인,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레위니옹,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사모아, 산마리노,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군도,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수리남, 에스와티니,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동티모르, 토고,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우간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시민권 (Citizenship)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로루시, 벨기에, 벨리즈,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미얀마,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모로,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쿡제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쿠바, 키프로스, 체코, 코트디부아르,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기아나, 가봉, 감비아, 조지아, 독일, 가나, 그리스, 그레나다, 과들루프,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키리바시, 북한, 한국,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라오,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몰타, 마셜제도, 모리타니, 모리셔스,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몰도바,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우루,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니우에,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팔라우, 팔레스타인,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레위니옹,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산마리노,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군도,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수리남, 에스와티니,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동티모르, 트리니다드토고, 통가, 토바고, 튀니지,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우간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출생국 (Country of Birth)	안도라, 아르헨티나, 캄보디아,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공화국, 에티오피아,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쿠웨이트, 멕시코, 모잠비크, 니카라과, 페루, 필리핀,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태국, 토고
거주 (Residence)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기에, 벨리즈, 볼리비아, 보츠와나,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미얀마, 부룬디, 캄보디아, 캐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칠레, 코모로, 콩고공화국,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피지, 감비아, 조지아, 가나,

구분	국가명
	기니,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자메이카, 카자흐스탄, 라오스, 레소토,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말리, 모리셔스,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몰도바, 나우루,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우에, 팔라우, 팔레스타인,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루마니아,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사모아, 산마리노, 상투메프린시페, 세르비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스리랑카, 수리남, 타지키스탄, 태국, 토바고,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미국,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부모의 시민권 취득 (Citizenship of Parents)	버마, 엘살바도르, 마셜제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세인트키츠네비스
등록 (Registration)	알바니아, 안도라, 바레인,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미얀마,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 쿡제도, 키프로스,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피지, 조지아,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이라크, 케냐, 한국, 레바논, 레소토, 리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말리, 몰타, 마셜제도,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모로코, 모잠비크, 나우루, 뉴질랜드, 니우에, 파키스탄, 팔라우, 팔레스타인,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포르투갈, 르완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사모아, 산마리노, 세네갈,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에스와티니, 스위스, 태국, 동티모르, 토고, 통가, 투발루, 우간다, 우크라이나, 잠비아, 짐바브웨
민족 집단 (Nationality Group)	콩고공화국, 마셜제도
최저 교육수준 (Minimum level of Education)	부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인도네시아, 케냐, 리비아, 나이지리아, 오만, 파키스탄, 소말리아, 타지키스탄, 태국, 튀니지, 우간다
최저 수준의 문해력 (Minimum level of literacy)	바레인, 보츠와나, 브라질,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기니, 인도네시아, 이란, 쿠웨이트, 레소토, 리비아, 말라위, 필리핀, 카타르, 세인트루시아,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수단, 시리아, 탄자니아, 토고, 통가, 아랍에미리트, 베네수엘라, 잠비아, 예멘
기타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앤티가 바부다,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콜롬비아, 콩고, 쿡제도, 쿠바, 키프로스, 코트디부와르,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가봉, 감비아, 가나, 그리스, 캐나다, 과테말라, 기니, 아이티,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케냐, 키리바시, 북한,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라이베리아, 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몰디브, 말리, 몰타, 마셜제도, 모리셔스,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네팔,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오만,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러시아, 르완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사모아, 세르비아, 세이셸, 슬로바키아, 소말리아, 스페인, 수단, 수리남, 에스와티니, 스웨덴, 시리아, 탄자니아, 태국, 통가, 튀니지,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루과이, 예멘, 잠비아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PC003 (검색일 2019.4.22.)

<표 2-9> OECD국가의 피선거권 현황

구분 국가명	연령	시민권 요건	국내거주 요건	근거규정
영 국	18세	시민권자	-	선거행정법 제17,18조
미 국	30세(상원) 25세(하원)	시민권 9년(상원) 시민권 7년(하원)	대통령 14년, 상원 9년, 하원 7년	연방헌법 제1장 제2,3조
프랑스	24세(상원) 18세(하원)	시민권자	귀화국민 혹은 결혼으로 국적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취득 후 거주기간 10년 이상	선거법 제127,296조
독 일	18세	시민권자	-	선거법 제15조
일 본	30세(참의원) 25세(중의원)	시민권자	都·道·府·縣의회의원은 해당 도·도·부·현에, 市·町·村의회의원은 3월 이상 당해 시·정·촌에 주소를 가진 자	공직선거법 제10조
스페인	18세	시민권자	-	선거법 제6조
스웨덴	18세	시민권자	-	헌법 제3절 제4조
스위스	18세	시민권자	-	헌법 제143조
캐나다	30세(상원) 18세(하원)	시민권자	상원의 경우 해당 주 거주	선거법 제65조
호 주	18세	시민권자	-	연방선거법 제163조
오스트리아	18세	시민권자	-	헌법 제26조제4항, 하원선거법 제41조
벨기에	21세	시민권자	국내에 거소를 가진 자	헌법 제64조
체 코	40세(상원) 21세(하원)	시민권자	-	헌법 제19조제1,2항
칠 레	35세(상원) 21세(하원)	시민권자	상원: 없음 하원: 선거 1일 전까지 선거구 내 2년 이상 거주	헌법 제48,50조
덴마크	18세	시민권자	-	헌법 제30조제1항
에스토니아	21세	시민권자	-	선거법 제4조제4항
핀란드	18세	시민권자	-	헌법 제27조
그리스	25세	시민권자	-	헌법 제55조 선거법 제29조
헝가리	18세	시민권자	-	헌법 제23조
아이슬란드	18세	시민권자	국내에 거소를 가진 자	선거법 제4조

구분 국가명	연령	시민권 요건	국내거주 요건	근거규정
아일랜드	21세(상원) 21세(하원)	시민권자	-	헌법 제16,18조제2항
이스라엘	21세	시민권자 (이중국적자는 타 국적 포기해야 함)	-	의회기본법 제6조제a항, 제16A조
이탈리아	40세(상원) 25세(하원)	시민권자	-	헌법 제56,58조
라트비아	21세	시민권자	-	헌법 제9조
리투아니아	25세	시민권자	국내에 거소를 가진 자	선거법 제2조 제2항
룩셈부르크	18세	시민권자	국내에 거소를 가진 자	선거법 제127조
멕시코	35세(상원) 25세(하원)	(상원)시민권자 (하원)시민권자 국내출생자	선거구 내 6월 이상 거주	헌법 제55,58조 선거법 제10조제1항
노르웨이	18세	시민권자	-	헌법 제61조 선거법 제2-1,3-1조
네덜란드	18세	시민권자	-	헌법 제56조
뉴질랜드	18세	시민권자	국내에 적어도 1년 이상 거주하며 선거구내 1개월 이상 거주	선거법 제47,74조
폴란드	30세(상원) 21세(하원)	시민권자	-	헌법 제99조 선거법 제11조
포르투갈	35세	시민권자	-	헌법 제122조 선거법 제4조
슬로바키아	21세	시민권자	국내에 거소를 가진 자	헌법 제74조제2항
슬로베니아	18세	시민권자	-	선거법 제7조
터 키	18세[33]	시민권자	-	헌법 제76조

33) 2018년 헌법 개정으로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 18세로 변경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1절
선거구와 의원정수

- 선거구는 전체 선거권자를 일정 단위의 선거인단으로 구분하는 표준으로 선거절차상 편의에 의한 지역단위를 의미
- 이러한 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5명 이상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 3가지 유형이 있음.
- 각국의 선거구제는 대표제도(다수제, 비례대표제)와 함께 결정. 단순다수대표제로 의원을 선출하는 미국·영국·캐나다의 경우 소선거구제를, 비례대표제를 많이 적용하는 유럽국가인 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스웨덴의 경우는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음.
- 또한 한 국가의 의원선출에 있어 다수제와 비례대표제를 혼용하는 것처럼 선거구제도 각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
- 각국의 의원정수도 역사적·정치적·문화적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음.

참조 3-1 선거구제의 유형

유형	장점	단점
소선거구제 (1명 선출)	• 다수당이 나타나기 쉬움. • 후보자 개인의 인물 파악이 쉬워 투표율이 비교적 높음. • 선거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어감. • 같은 정당 내 후보자 난립이 적음. • 선거공영, 재·보궐선거의 실시나 관리가 쉬움.	• 다수대표제로 낙선자의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당선자의 잉여표로 소수당에 불리 • 지방 명망가에게 유리하고 신진 인사의 진출이 불리 • 선거구 획정 시 게리맨더링의 위협이 높음. • 선거간섭, 매수, 기타 부정 가능성이 비교적 높음.
중선거구제 (2명 이상 5명 미만 선출)	•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에 기반을 둔 인물의 진출이 가능 • 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의 상대적 결점을 완화	• 같은 정당 내 후보자간 경쟁이 과열되는 폐해가 우려 • 후보자가 많아 쉽게 알기 어려움. • 선거비용이 비교적 많이 들어감. • 선거공영이나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기 곤란 • 경우에 따라 소·대선거구제의 단점만 나타날 수 있음.
대선거구제 (5명 이상)	• 국민적 기반을 둔 전국적 인물이 당선되기 쉽고, 선거권자의 후보자 선택범위가 넓어짐. • 소수대표제로 사표가 감소 • 신진인사나 새로운 정당이 나타나기 쉬움. • 정당정치 발전과 선거과열 방지	• 소수대표제의 결과 군소정당의 출현으로 정국이 불안정할 수 있음. • 선거구역이 넓어 선거비용이 많이 듦. • 선거결과에 대한 무관심으로 투표율 저조 • 후보자 난립 및 같은 정당 내 후보자간 경쟁이 과열 • 선거공영이나 재·보궐선거의 실시 및 선거관리 곤란

1. 영 국

가. 상원의원(House of Lords)[1)]

- 상원의원은 종신귀족, 세습귀족 그리고 성공회 성직자로 구분됨.
  - 종신귀족: 정치·경제·사회·과학 등 각 분야에서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 총리의 제청에 따라 여왕이 임명하며 지위가 후손에게 승계되지 않음.
  - 세습귀족: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등의 작위가 후손에게 승계되는 귀족
- (2019.9.18. 기준)종신귀족 658명, 세습귀족 91명, 성직자 26명 등 총 775명으로 구성

나. 하원의원(House of Commons)

- 선 거 구: 650개(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
  - (2017.6.8. 총선 기준)England 533개, Wales 40개, Scotland 59개, Northern Ireland 18개

    ※ 2022년 총선에서는 선거구가 600개로 조정될 예정임.[2)]
- 의원정수: 650명(5년 임기)[3)]

  ※ 의회해산 시 조기 총선 가능

---

1) 의회 홈페이지. Appellate Jurisdiction Act 1876., Life Peerages Act 1958. http://www.parliament.uk/mps-lords-and-offices/lords/composition-of-the-lords/ (검색일 2019.9.18.)

2) 2010년 총선 이후 집권한 보수당-자민당 연정은 현행 650개 선거구 수를 600개로 줄이는 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11.2.16. 개정된「투표제도 및 선거구법(Parliamentary Voting System and Constituencies Act 2011, Part 2. section 11)」과「선거구획정법(Parliamentary Constituencies Act 1986, Schedules 2)」은 선거구를 600석으로 조정함. 그러나「선거권자 등록 및 관리법(Electoral Registration and Administration Act 2013, Section 6 (2013.1.31. 개정)」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보고서를 2018.10.1.까지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적용이 유예됨(따라서 2015, 2017년 선거는 기존 650개 선거구가 적용됨). 현재 '2018 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가 2018.9.10. 내무부에 제출되어 검토 중이며, 아직 의회에 상정되지는 않았음.
영국의회홈페이지. 2016.2.25. 'Constituency boundary reviews and the number of MPs(선거구획정 검토 및 의원정수).' https://researchbriefings.parliament.uk/ResearchBriefing/Summary/SN05929 (검색일 2019.9.18.)
김종갑. 2019. '영국 하원 선거구제 및 선거구획정 관련 최근 동향.' 2019.1.22. 국회입법조사처. http://www.nars.go.kr/brdView.do?cmsCd=CM0042&brd_Seq=24534 (검색일 2019.8.27.)

3) 고정 임기법 제1조(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 Section 1).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1/14 (검색일 2019.9.18.)

2. 미 국

가. 상원의원(Senate)(헌법 제1장 제3조, 수정헌법 제17조)

- 선 거 구: (각 주의 숫자와 같은) 50개
- 의원정수: 100명(6년 임기)

※ 각 주에 2명씩 총 100명의 상원의원이 있으며, 2년마다 1/3씩 개선하므로 각 주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상원의원을 선출(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선출)

나. 하원의원(House of Representatives)(헌법 제1장 제2조)

- 선 거 구: 435개(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
- 의원정수: 435명(2년 임기)

※ 모든 주에 최소한 1명의 하원의원이 있어야 하며, 의원 수는 인구 3만 명당 1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헌법 제1장 제2조제3항).

3. 프랑스

가. 상원의원(Sénat)(간접선거)

- 선 거 구: 26개 중대선거구(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와 18개 중선거구(절대다수대표제로 선출)로 구성(선거법 제275,276조)
  - 선거인단에 의해 6년 임기로 매 3년마다 1/2씩 선출

    ※ 선거인단은 본토·해외영토·재외국민 별로 하원의원(국민의회의원), 광역의회의원(레종의회의원), 도의회의원(데빠르망의원) 및 코뮌의회의원들로 구성
- 의원정수: 348명(선거법 제279조, 별표 6)
  - 2017년 최근 선거기준) 26개 중대선거구에서 130명, 해외선거구에서 6명, 18개 중선거구에서 34명으로 모두 170명 선출

나. 하원의원(Assemblée nationale)

- 선 거 구: 577개 소선거구로 구성(선거법 제125조, 별표 1)
  - 프랑스 본토: 539개
  - 해외영토(Collectivés d'outremer): 27개
  - 재외프랑스인(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11개
- 의원정수: 577명(5년 임기)

  ※ 2008년 7월 21일 제24차 헌법개정을 통해 하원의원은 577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원의원도 348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헌법 제24조)

4. 독 일

가. 상원의원(Bundesrat)

- 의원정수: 69명
- 16개 각 주의 주정부가 주정부의 각료 중 임명한 의원(주지사 포함)으로 구성되며, 각 주별 의원정수는 최소 3명 이상 최대 6명 이내임(인구 200만 이상의 주는 4석, 600만 이상의 주는 5석, 700만 이상의 주는 6석 배정).
- 일정한 임기는 정해져있지 않고, 주정부의 임명에 따름.

<표 3-1> 독일 상원의원 주별 의석수

주 명	의석수	주 명	의석수
바덴-뷔르템베르크	6	니더작센	6
바이에른	6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6
베를린	4	라인란트-팔쯔	4
브란덴부르크	4	자르란트	3
브레멘	3	작 센	4
함부르크	3	작센-안할트	4
헤 센	5	슐레스비히-홀슈타인	4
메클렌부르크-포포먼	3	튀링엔	4

나. 하원의원(Bundestag)

- 선 거 구: 299개 소선거구(단순다수대표제로선출)와 16개 중선거구(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선출)로 구성
- 의원정수: 598명(4년 임기)
  - 소선거구 지역구 의원: 전국을 299개 소선거구로 나눠 299명을 선출
  - 비례대표 의원: 주(州)단위로 각 정당이 주(州)명부를 제출하여 299명을 선출

    ※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의 의석수가 정해지는데 이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잔여의석을 정당명부 순서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에게 배정함. 이 과정에서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를 초과하는 지역구 당선자가 발생하더라도 모두 당선자로 결정. 이에 따라 규정된 총의석 598석을 초과한 의석을 초과의석이라고 칭함. 한편, 초과의석으로 인해 정당득표율과 정당별 의석 배분에 불균형이 생겨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석을 추가로 배정하는 것을 보정의석이라고 함.[4)]
- 2017년 9월 24일 제19대 연방의회 선거결과, 초과의석 및 보정의석 발생으로 현재 의원 총정수는 709명(598명+초과의석 46명+보정의석 65명)

<표 3-2> 독일 하원의원 주별 선거구수 및 의석수[5)]

(2017년 선거 기준)

주 명	선거구수	의석수		주 명	선거구수	의석수	
		지역구	비례대표			지역구	비례대표
바덴-뷔르템베르크	38	38	58	니더작센	30	30	36
바이에른	46	46	62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64	6	78
베를린	12	12	16	라인란트-팔쯔	15	15	22
브란덴부르크	10	10	15	자르란트	4	4	6
브레멘	2	2	4	작 센	16	16	22
함부르크	6	6	10	작센-안할트	9	9	14
헤 센	22	22	28	슐레스비히-홀슈타인	11	11	15
메클렌부르크-포포먼	6	6	10	튀링엔	8	8	14

4) 자세한 내용은 제13장 당선인 독일편, p.840 참조

5) Wahl zum 19. Deutschen Bundestag am 24. September 2017: Heft 3 Endgültige Ergebnisse nach Wahlkreisen. Der Bundeswahlleite. 2017.

5. 일 본

가. 참의원의원(参議院)(공직선거법 제4조)

- 선 거 구: 148개 도·도·부·현 구역 단위의 선거구(중대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와 전국을 단일 선거구(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로 구성
- 의원정수: 248명(6년 임기)[6]
  - 지역구의원: 각 도·도·부·현 단위의 148개 중선거구에서 2명에서 12명까지 총 148명 선출(3년마다 의원정수의 1/2씩 개선(改選)되므로 한 선거구에서 1명~6명까지 총 74명을 선출)
  - 비례대표의원: 전국을 단위로 하는 대선거구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100명 선출(3년마다 의원정수의 1/2씩 개선(改選)되므로 1회 선거로 선출되는 비례대표의원은 50명)
- 선거구 및 의원정수의 특색
  - 도·도·부·현 구역과 일치해야 하고,
  - 참의원의원의 1/2 개선제도와 관련해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모두 짝수
  - 의원정수가 2명인 선거구는 실제 선거에서 1명(소선거구)이 선출됨.

<표 3-3> 일본 참의원의원 지역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석수

(공직선거법 제14조 및 별표3)

선거구	의석수	선거구	의석수	선거구	의석수
홋카이도	6	이시카와현	2	히로시마현	4
아오모리현	2	후쿠이현	2	야마구치현	2
이와테현	2	야마나시현	2	토쿠시마현 및 고치현	2
미야기현	2	나가노현	2	카가와현	2
아키타현	2	기 후 현	2	에히메현	2
야마가타현	2	시즈오카현	4	후쿠오카현	6
후쿠시마현	2	아이치현	8	사 가 현	2
이바라키현	4	미 에 현	2	나가사키현	2

6) 2018.7.25. 공직선거법 제4조 개정으로 참의원 정수 변경, 제25회 참의원의원통상선거(2019.7.21.)부터 적용

선거구	의석수	선거구	의석수	선거구	의석수
토치기현	2	시 가 현	2	쿠마모토현	2
군 마 현	2	쿄 토 부	4	오이타현	2
사이타마현	8	오사카부	8	미야자키현	2
치 바 현	6	효 고 현	6	카고시마현	2
토 쿄 도	12	나 라 현	2	오키나와현	2
카나가와현	8	와카야마현	2	합 계	148
니가타현	2	톳토리현 및 시마네현	2		
토야마현	2	오카야마현	2		

나. 중의원의원(衆議院)(공직선거법 제4조)

- 선 거 구: 289개 도·도·부·현 단위(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와 전국을 11개로 나눈 선거구(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로 구성
- 의원정수: 465명(4년 임기)[7]
  - 지역구의원: 289개 소선거구에서 289명 선출
  - 비례대표의원: 11개 중대선거구에서 176명 선출

<표 3-4> 일본 중의원의원 지역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석수

(공직선거법 제13조, 별표 1)

선거구	의석수	선거구	의석수	선거구	의석수
홋카이도	12	이시카와현	3	오카야마현	5
아오모리현	3	후쿠이현	2	히로시마현	7
이와테현	3	야마나시현	2	야마구치현	4
미야기현	6	나가노현	5	토쿠시마현	2
아키타현	3	기 후 현	5	카가와현	3
야마가타현	3	시즈오카현	8	에히메현	4
후쿠시마현	5	아이치현	15	코 치 현	2

7) 2017.7.16. 공직선거법 제4조 개정으로 중의원 정수 변경, 제48회 중의원의원총선거(2017.10.22.)부터 적용

선거구	의석수	선거구	의석수	선거구	의석수
이바라키현	7	미 에 현	4	후쿠오카현	11
토치기현	5	시 가 현	4	사 가 현	2
군 마 현	5	쿄 토 부	6	나가사키현	4
사이타마현	15	오사카부	19	쿠마모토현	4
치 바 현	13	효 고 현	12	오이타현	3
토 쿄 도	25	나 라 현	3	미야자키현	3
카나가와현	18	와카야마현	3	카고시마현	4
니가타현	6	톳토리현	2	오키나와현	4
토야마현	3	시마네현	2	합 계	289

<표 3-5> 일본 중의원의원 비례대표선거구 및 의석수

(공직선거법 제13조, 별표 2)

선거구	의원수	선거구	의원수
홋카이도	8	토카이 (기후현, 시즈오카현, 아이치현, 미에현)	21
토호쿠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	13	긴키 (시가현, 교토현, 오사카현, 효고현, 나라현, 와카야마현)	28
기타칸토 (이바라키현, 토치기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19	츄고쿠 (톳토리현, 시마네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11
미나미칸토 (치바현, 카나가와현, 야마나시현)	22	시코쿠 (토쿠시마현, 카가와현, 에히메현, 코치현)	6
도쿄도	17	큐슈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쿠마모토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카고시마현, 오키나와현)	20
호쿠리쿠신에츠 (니가타현,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나가노현)	11	합계	176

6. 스페인

가. 상원의원(Senado)(선거법 제165조)

- 선 거 구: 47개 각 도(provincias, Spanish provinces)와 3개 각 섬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중선거구제
- 의원정수: 266명(4년 임기)
  - 이베리아 반도의 47개도(provincias)에서 각 4명 선출
  - 각 섬별로 그란 카나리아(Gran Canaria), 마요르카(Mallorca), 테네리페(Tenerife)에서 각 3명 선출
  - 이비사-포르멘테라(Ibiza-Formentera), 메노르카(Menorca), 푸에르테벤투라(Fuertenura), 고메라(Gomera), 이에로(Hierro), 란사로테(Lanzarote), 라 팔마(La palma)에서 각 1명 선출
  - 세우타(Ceuta)와 멜리야(Melilla)[8]는 독립된 선거구로 간주해 각 2명 선출
  - 총 208명을 직접 선출하고, 17개 지방자치의회(comunidad autóoma)에서 58명을 간접 선출

<표 3-6> 스페인 상원의원 선거구별 의석수

선거구	의석수	선거구	의석수
이베리아 반도의 도(47)	188	그란 카나리아	3
마요르카	3	테네리페	3
이비사-포르멘테라	1	메노르카	1
푸에르테벤투라	1	고메라	1
이에로	1	란사로테	1
라 팔마	1	세우타	2
멜리야	2	지방자치의회(17)	58

8) 세우타와 멜리야시는 스페인 도에 포함되지 않는 자치시(ciudad autónoma)로 모로코와 접경 지대에 위치해 있음.

나. 하원의원(Congreso de los Diputados)(선거법 제162조)

- 선 거 구: 80개 각 도를 중선거구로 하고, 세우타와 멜리야는 소선거구로 함.
- 의원정수: 350명(4년 임기)
  - 단순다수대표제로 각 1명을 선출하는 세우타와 멜리야를 제외하고, 50개 각 도마다 최소 2명 선출
  - 248석은 인구비례로 50개 선거구에 배정되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

    ※ 의석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인구규모에 비례하여 배정

    ·스페인 반도 및 도서지역 총인구를 248로 나누어 배정기준을 정하고,

    ·각 도의 인구를 배정기준으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는 절삭하고 나온 정수 만큼의 의석수를 배정하며,

    ·나머지 하원의원 의석은 백분율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진 도에 배정

    ·선거소집령에 각 선거구마다 선출해야 할 의석수를 밝힘.

<표 3-7> 스페인 하원의원 선거구별 의석수[9)]

(2019년 선거 기준)

선거구	의석수	선거구	의석수
안달루시아	61	바스크	18
아라곤	13	카나리아	15
아스투리아스	7	칸타브리아	5
발레아레스	8	카스티야이레온	31
카스티야라만차	21	마드리드	37
카탈루냐	48	멜리야	1
세우타	1	무르시아	10
에스트레마두라	10	나바라	5
갈리시아	23	발렌시아	32
라리오하	4	-	-

9) 2019년 4월 28일 하원의원선거결과에 따름.
https://www.resultados.eleccionesgenerales19.es/Congreso/Total-nacional/0/es (검색일 2019.6.7.)
https://kminha.blog.me/221525674244 (검색일 2019.6.7.)

7. 스웨덴

- 선 거 구: 29개 대선거구와 전국 단일 선거구로 구성(선거법 제4절 제2조)
- 의원정수: 349명(4년 임기)(기본법 제3장 제2,3조)
  - 29개 선거구에서 고정의석(fixed constituency seats)으로 310명과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조정의석(adjustment seats)으로 39명을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기본법 제3장 제1,6조)

<표 3-8> 스웨덴 선거구별 의석수[10)]

(2019년 현재)

선거구	의석수	선거구	의석수
Stockholm municipality	29	Goteborg municipality	17
Stockholm County	39	Vastra Gotaland County west	11
Uppsala County	11	Vastra Gotaland County north	8
Sodermanland County	9	Vastra Gotaland County south	7
Ostergotlands County	14	Vastra Gotaland County east	9
Jonkoping County	11	Varmland County	9
Kronoberg County	6	Orebro County	9
Kalmar County	8	Vastmanland County	8
Gotlands County	2	Dalarna County	9
Blekinge County	5	Gavleborg County	9
Malmo municipality	10	Vasternorrland County	8
Skane County west	9	Jamtland County	4
Skane County south	12	Vasterbotten County	9
Skane County north and east	10	Norrbotten County	8
Halland County	10	총 고정 의석수	310

10)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National_appointment_of MP_seats_in_the_Riksdag (검색일 2019.9.19.)

8. 스위스

가. 상원의원(Conseil des Etats)(헌법 제145,150조)

- 선 거 구: 20개 주는 중선거구와 6개 주는 소선거구로 구성
- 의원정수: 46명(4년 임기)
  - 20개 주에서 2명씩, 6개 주에서 1명씩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

나. 하원의원(Conseil National)(헌법 제145,149조)

- 선거구: 26개의 주별로 각각 1개의 선거구를 구성하고,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인구수에 따라 배정
- 의원정수: 200명(4년 임기)
  - 194명은 20개 선거구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고, 6명은 소선거구에서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
- 2019년 하원의원 총선거의 주별 의석배분은 다음과 같음.

<표 3-9> 스위스 하원의원 주별 의석수[11)]

주(州)명	의석수	주(州)명	의석수
취리히	35	사프하우젠	2
베른	24	아팔첸아우서로덴	1
루체른	9	이팔첸이너로덴	1
우리	1	장크트갈렌	12
슈비츠	4	그라우뷘덴	5
옵발덴	1	아르가우	16
니트발덴	1	투르가우	6
글라루스	1	티치노	8
추크	3	보	19
프리부르	7	발레	8
졸로투른	6	뇌샤텔	4
바젤슈타트	5	제네바	12
바젤란트	7	쥐라	2

11) 스위스 의회
https://www.parlament.ch/en/organe/national-council/members-national-council-by-canton (검색일 2019.8.23.)

9. 캐나다

가. 상원의원(Senate of Canada)[12)]

- 선 거 구: 총리(Prime Minister)의 제청으로 총독(Governor General)이 임명
- 의원정수: 105명(헌법 제21조)

  ※ 정년은 75세, 그 전에 사직·사망으로 결원이 생기면 총독이 임명

  - 캐나다 상원의원 정수는 인구와 비례하지 않는데 이는 인구대표성보다는 지역(주) 대표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고 상원은 하원을 보충(sober second thought)하는 기관이라는 의식이 강함.
  - 1867년 헌법(Constitution Act)에 의해 4개 주(온타리오, 퀘벡, 노바스코샤, 뉴브런스윅 주)의 대표로서 최초 상원의원 72명이 임명된 이후 각 주의 상원의원 수가 계속 증가하였고 1999년 누나붓 준주의 상원의원 1명이 추가되면서 현재 총 105명임.
  - 상원은 정부재정 지출과 관련된 사안이 아닌 법안을 입법하거나 하원의 결정을 형식상 인증하는 기관으로 실질적인 입법은 하원에서 이루어짐.

<표 3-10> 캐나다 상원의원 주별 의석수

주(州)명	의석수	주(州)명	의석수
온타리오	24	뉴브런즈윅	10
퀘벡	24	뉴펀들랜드&라브라도르	6
브리티시콜럼비아	6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4
알베르타	6	유콘	1
마니토바	6	노스트웨스트 준주	1
새스캐추완	6	누나붓 준주	1
노바스코샤	10	합계	105

12) http://en.wikipedia.org/wiki/Senate_of_Canada (검색일 2019.6.24.)

나. 하원의원(House of Commons)

- 선 거 구: 338개(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
- 의원정수: 338명[13](5년 임기, 내각 조기해산 시 다시 선거 실시)
  - 2003년 8월 25일 새로운 대표령(The Representation Order of 2003)이 공포, 이 새로운 대표령은 2004년 8월 25일 이후 발생하는 첫 번째 의회해산과 함께 효력 발생
  - 2007년 11월 캐나다 정부는 22개의 새로운 선거구를 추가로 지정해 2014년 이후 선거부터 적용됨(온타리오주 10개, 브리티시콜럼비아주 7개, 알베르타주 5개 추가).
  - 2015년 10월 19일 실시된 제42회 연방 선거부터 위의 사항이 적용되어 총 의석수가 이전 308석에서 338석으로 증가함.

<표 3-11> 캐나다 하원의원 주별 의석수[14]

주(州)명	의석수	주(州)명	의석수
온타리오	121	뉴브런즈윅	10
퀘벡	78	뉴펀들랜드&라브라도르	7
브리티시콜럼비아	42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4
알베르타	34	유콘	1
마니토바	14	노스트웨스트 준주	1
새스캐추완	14	누나붓 준주	1
노바스코샤	11	합계	338

13) 1867년 헌법 제37조에서는 308명으로 규정되어 있었음.

14) 캐나다 선거관리청 홈페이지. “House of Commons Seat Allocation by Province.” https://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res&dir=cir/red/allo&document=index&lang=e (검색일 2019.7.18.)

10. 호 주

가. 상원의원(Senate)(헌법 제7조)

- 선 거 구: 6개의 대선거구와 2개의 중선거구로 구성
  - 각 주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며, 6개 주(State)에서 12명씩, 2개 준주(Territory)에서 2명씩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15]로 선출
- 의원정수: 76명(주의원은 6년, 준주의원은 3년)
  - 3년마다 절반씩 선출

나. 하원의원(House of Representatives)(헌법 제24,27,29조)

- 선 거 구: 151개 소선거구에서 1명씩 선호투표제[16]로 선출(연방선거법 제57조)
- 의원정수: 151명(3년 임기)

  ※ 하원의원 수 결정 방법(연방선거법 제46,48,50조)

  - 하원의원 수는 총선거전에 선거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각 선거구의 인구수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므로, 선거법에 고정된 숫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1984년 선거에서 기존 125명에서 148명으로 늘렸다가, 1993년 선거에서 147명으로 줄임. 1996년 선거에서 148명으로 늘렸고, 2001년 선거부터 150명으로 함. 2019년 선거에서 151명으로 늘림.[17]

    ① 주와 준주를 대표하는 하원의원의 수는 인구기준수(population quota)에 의해 결정됨.

    ·인구기준수는 준주를 제외한 6개 각 주의 전체 인구수를 주 상원의원 수의 두 배로 나누어 결정함.

    ·하원의원의 수는 각 주의 인구수를 인구기준수로 나누어 결정함.

    ② 타즈매니아 주의 하원의원 수는 인구기준수에 따르면 3명이지만 헌법 제24조에 따라 6개 주에 최소한 5명 이상의 하원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

---

15) 당선인 결정방식은 제13장 당선인 <참조 13-5>, p.856 참조

16) 당선인 결정방식은 제13장 당선인 <참조 13-6>, p.857 참조

17) https://en.wikipedia.org/wiki/House_of_Representatives_(Australia) (검색일 2019.8.23.)

므로 5명을 배정함.

<표 3-12> 호주 하원의원 주별 의석수[18)]

(2019년 기준)

주 또는 준주명	의석수	주 또는 준주명	의석수
뉴사우스웨일스	47	퀸즐랜드	30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10	호주 수도 준주	3
빅토리아	38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16
태즈매니아	5	노던 준주	2

18) https://www.aec.gov.au/Electorates/Redistributions/calculating-entitlements.htm (검색일 2019.5.30.)

<표 3-13> OECD국가의 의원 1명당 인구수

국가명	총인구수	의원수			의원 1명당 인구수	
		상원의 수	하원의원수	총의원수	하원의원기준	총의원기준
한 국	5,116만 명	단원제		300명	-	17만 명
에스토니아	131만 명			101명	-	1만 명
아이슬란드	34만 명			63명	-	1만 명
룩셈부르크	59만 명			60명	-	1만 명
라트비아	193만 명			100명	-	2만 명
리투아니아	288만 명			141명	-	2만 명
스웨덴	998만 명			349명	-	3만 명
덴마크	575만 명			179명	-	3만 명
핀란드	554만 명			200명	-	3만 명
노르웨이	535만 명			169명	-	3만 명
그리스	1,114만 명			300명	-	4만 명
뉴질랜드	475만 명			120명	-	4만 명
포르투갈	1,029만 명			230명	-	4만 명
슬로바키아	545만 명			150명	-	4만 명
헝 가 리	969만 명			199명	-	5만 명
이스라엘	845만 명			120명	-	7만 명
터 키	8,191만 명			600명	-	14만 명
아일랜드	480만 명	60명	158명	218명	3만 명	2만 명
슬로베니아	208만 명	40명	90명	130명	2만 명	2만 명
스위스	854만 명	46명	200명	246명	4만 명	3만 명
오스트리아	875만 명	61명	183명	244명	5만 명	4만 명
체 코	1,065만 명	81명	200명	281명	5만 명	4만 명
벨기에	1,150만 명	60명	150명	210명	8만 명	5만 명
영 국	6,657만 명	775명	650명	1,425명	10만 명	5만 명
이탈리아	5,929만 명	321명	630명	951명	9만 명	6만 명
프랑스	6,523만 명	348명	577명	925명	11만 명	7만 명
폴란드	3,810만 명	100명	460명	560명	8만 명	7만 명
스페인	4,639만 명	266명	350명	616명	13만 명	8만 명
캐나다	3,695만 명	105명	338명	443명	11만 명	8만 명
네덜란드	1,708만 명	75명	150명	225명	11만 명	8만 명
칠 레	1,820만 명	50명	155명	205명	12만 명	9만 명
호 주	2,477만 명	76명	150명	226명	17만 명	11만 명
독 일	8,230만 명	69명	598명	667명	14만 명	12만 명
일 본	1억2,719만 명	242명	465명	707명	27만 명	18만 명
멕시코	1억3,076만 명	128명	500명	628명	26만 명	21만 명
미 국	3억2,676만 명	100명	435명	535명	75만 명	61만 명

출처: worldpopulation by country. 2018.
http://worldpopulationreview.com/countries/ (검색일 2019.5.1.)
New Parline. IPU's open data platform.
https://data.ipu.org/compare?field=chamber%3A%3Afield_statutory_members_number&structure=any__lower_chamber#map (검색일 2019.3.31.)

<표 3-14> OECD국가의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비율

국가명	총의원수			지역구 의원수	비례대표 의원수	총정수 대비 비례대표의원 비율	지역구의원 대비 비례대표의원
한 국	300명			253명	47명	15.67%	5.38:1
뉴질랜드	120명			70명	50명	41.67%	1.40:1
헝가리	199명			106명	93명	46.73%	1.14:1
리투아니아	141명			71명	70명	49.64%	1.01:1
그리스	300명			8명	292명	97.33%	0.03:1
덴마크	179명			4명	175명	97.77%	0.02:1
핀란드	200명			1명	199명	99.5%	0.005:1
에스토니아	101명			-	101명	100%	-
스웨덴	349명			-	349명	100%	-
아이슬란드	63명			-	63명	100%	-
이스라엘	120명			-	120명	100%	-
룩셈부르크	60명			-	60명	100%	-
라트비아	100명			-	100명	100%	-
노르웨이	169명			-	169명	100%	-
포르투갈	230명			-	230명	100%	-
슬로바키아	150명			-	150명	100%	-
터 키	600명			-	600명	100%	-
영 국	1,425명	상원	775명	임명	-	-	-
		하원	650명	605명	-	-	-
미 국	535명	상원	100명	100명	-	-	-
		하원	435명	435명	-	-	-
프랑스	925명	상원	348명	간선	-	-	-
		하원	577명	577명	-	-	-
캐나다	443명	상원	105명	임명	-	-	-
		하원	338명	338명	-	-	-
멕시코	628명	상원	128명	96명	32명	25%	3:1
		하원	500명	300명	200명	40%	1.5:1
일 본	707명	참의원	242명	146명	96명	39.37%	1.52:1
		중의원	465명	289명	176명	37.85%	1.64:1
독 일	667명	상원	69명	간선	-	-	–
		하원	598명	299명	299명	50%	1:1

국가명	총의원수			지역구 의원수	비례대표 의원수	총정수 대비 비례대표의원 비율	지역구의원 대비 비례대표의원
이탈리아	951명	상원	321명 (6명은 간선)	116명	199명	61.99%	0.58:1
		하원	630명	232명	398명	63.17%	0.58:1
스위스	246명	상원	46명	46명	-	-	-
		하원	200명	5명	19명	97.5%	0.03:1
스페인	616명	상원	266명	208명	58명 (간선)	-	-
		하원	350명	2명	348명	99.43%	0.006:1
슬로베니아	130명	상원	40명	간선	-	-	-
		하원	90명	2명	88명	97.78%	0.02:1
호 주	226명	상원	76명	-	76명	100%	-
		하원	150명	150명	-	-	-
오스트리아	244명	상원	61명	간선	-	-	-
		하원	183명	-	183명	100%	-
벨기에	210명	상원	60명	간선	-	-	-
		하원	150명	-	150명	100%	-
칠 레	205명	상원	50명	-	50명	100%	-
		하원	155명	-	155명	100%	-
체 코	281명	상원	81명	81명	-	-	-
		하원	200명	-	200명	100%	-
아일랜드	218명	상원	60명	간선	-	-	-
		하원	158명	-	158명	100%	-
네덜란드	225명	상원	75명	간선	-	-	-
		하원	150명	-	150명	100%	-
폴란드	560	상원	100명	100명	-	-	-
		하원	460명	-	460명	100%	-

출처: New Parline. IPU's open data platform.
https://data.ipu.org/compare?field=chamber%3A%3Afield_statutory_members_number&structure=any__lower_chamber#map (검색일 2019.3.25.)

제2절
선거구획정

- 선거를 치르기 위한 기본 단위로서 선거구(voting district, constituency)가 필요한데, 이 선거구를 확정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이 필요함.
- 행정구역, 인구수, 생활구역, 교통, 지세 등과 정치, 경제, 사회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 선거구획정의 원칙으로 각 지역별 선거권자 수와 당선자 수가 균등하도록(투표가치의 평등, 1vote-1value)하고, 특정 정파에 부당하게 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공평성(Gerrymandering의 금지[19]))이 요구
- 선거구획정 방법은
  - 선거구역의 경계를 조정하는 경우(미국, 캐나다, 스위스)
  - 행정구역의 경계를 기준으로 선거구의 배정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경우(스페인, 스웨덴)으로 나눠볼 수 있음.
- 선거구획정기관은
  - 개별 법률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 독립적인 선거위원회 안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호주)
  - 별도의 획정기구 없이 선거법에 규정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1. 영 국

가. 선거구획정

- 「선거구획정법(Parliamentary Constituencies Act, 1986)」에 의해 잉글랜드·웨일즈·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함.[20])

---

19) 특정 정당이나 이익집단에 유리하도록 선거구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주지사 E.게리가 상원선거법을 개정해 본인이 속한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하였음. 그 모양이 샐러맨더(salamander: 도룡뇽)와 비슷해 샐러 대신에 게리의 이름을 붙여 게리맨더라고 한데서 유래함.

20) 1949년 「하원의석재배정법[House of Commons(Retribution of Seats) Acts]」에 의해 잉글랜드 · 웨일즈 · 스코틀랜드 · 북아일랜드에 상설기관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설치함.
「하원의석재배정법」은 1958년, 1979년에 두 번 개정이 있었고, 1986년 「선거구획정법(Parliamentary Constituencies Act, 1986)」 제정으로 폐지됨.

- 선거구획정기준에 따라 5년마다 선거구획정안을 내무부에 보고하고, 내무부가 의회에 제출하며, 상·하원의 의결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함.

나. 선거구획정위원회(Boundary Commission)

-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특정 행정부처에 소속되지 않으며, 정부나 의회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비당파적으로 공정하게 운영됨.
- 구 성(선거구획정법 부칙 1.)[21]
  - 하원의장이 각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해당 지역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법관 1명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함.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관계 장관[22]이 임명하는 2명의 위원 등 총 4명으로 구성
  - 하원의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며, 회의는 부위원장이 주재함.
  - 위원은 각 정당간의 협의에 의하여 의원이 아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

다. 선거구획정 기준(선거구획정법 부칙 2.)[23]

- 군(county)과 구(borough)에(스코틀랜드의 경우 county와 burgh) 선거구를 설치하며, 해당 선거구의 평균선거권자수를 기준으로 함.
- 평균선거권자수(electorate quota)는 전체 선거권자 수를 선거구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선거구당 선거권자 수가 95% 미만이거나 105%를 초과해서는 안 됨.
  - 다만, 인구수가 적은 도서지역 선거구인 Isle of Wight, Orkney, Shetland, Na h-Eileanan an Iar는 평균선거권자수 편차기준의 예외로 함.
  - 북아일랜드의 경우 전체 선거권자 수가 아닌 북아일랜드 선거권자수를 기준으로 함.

---

21) Parliamentary constituencies Act, 1986. Schedule 1. The Boundary Commissions.

22)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장관을 의미하는데 잉글랜드는 내무장관, 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 및 웨일즈의 경우 담당장관

23) Parliamentary Constituencies Act, 1986. Schedule 2. Rules for Distribution of Seats.

- 선거구의 면적은 13,000 평방 킬로미터(km²) 이내여야 함.
  - 다만, 선거구의 크기가 1,200km²를 초과할 경우 95% 미만 평균선거권자수 적용의 예외로 함.
- 선거구의 크기, 모양, 접근성 등 지정학적 고려를 해야 하며, 지방정부의 경계 및 현행 선거구의 경계, 선거구 변경 시 불편함 등을 고려해야 함.

라. 선거구획정 절차(선거구획정법 제3,4조)[24]

- 선거구획정위원회는 5년마다 선거구획정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선거구획정위원회법(Boundary Commissions Act, 1992)」에서 선거구획정을 8~12년 사이에 실시하도록 했으나, 「투표제도와 선거구법」[25]에서 5년 주기로 축소함.
-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마련하면 2차에 걸쳐 공청회를 실시함(선거구획정법 제5조).
- 공청회의 의견을 반영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최종 획정안을 내무부에 제출함.
- 내무부는 필요시 수정해서 의회동의안(Order of Council)을 의회에 제출
- 의회(상·하원)는 수정 없이 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데, 의회에서 부결되면 내무부는 새로운 동의안을 작성해서 제출함.
  ※ 실제 내무부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수정하거나 의회에서 부결된 선례는 없음.

마. 최근 선거구획정 과정

- 1982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정기보고서에 따라 총 의원정수가 635명에서 650명으로 늘어 1983년 6월 총선거부터 적용됐으며, 1992년 선거에서는 651명으로 증원, 2005년 선거에서 646명으로 감원. 2005년 이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잉글랜드 의석수가 4석 증가해 2010년 선거 총 의석수는 650석에 달함.[26]
- 현행 선거구 수는 2015년, 2017년 총선까지 유지됐으나 2022년 총선 이전 600개

---

24) https://en.wikipedia.org/wiki/Boundary_commissions_(United_Kingdom) (검색일 2018.8.27.)

25) Parliamentary Voting System and Constituencies Act, 2011. Part 2. section 10(3)

26) Isobel White. Parliamentary Constituency Boundaries: the Fifth Periodical Review. House of Commons Library: SN/PC/03222 (28 July 2010). p.11
https://researchbriefings.parliament.uk/ResearchBriefing/Summary/SN03222 (검색일 2018.9.19.)

로 조정될 예정임.

- 「선거권자 등록 및 관리법」[27]개정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600석으로 조정된 선거구획정안을 2018.10.1.까지 제출하도록 함.
- 2018.9.10.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하원의석 감축을 비롯해 선거구획정 관련 개혁안을 담은 선거구획정보고서(Boundary Review 2018)를 내무부에 제출했으며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 중으로 의회에 보고되지는 않았음.[28]
- 2018년 하원 선거구획정보고서에 따르면,[29]
  - 600개: England 499개, Wales 29개, Scotland 51개, Northern Ireland 17개
  - 선거구획정에 적용하고 있는 평균선거권자수 편차기준은 71,031명~78,507명임(평균 74,769명 ± 5%).

2. 미 국

가. 개 요

- 미국 의회는 1911년 435석으로 의석수를 확정한 이후 현재까지 총의석수 변동이 없음.
- 10년마다 인구변동에 따라 주별 1석씩 할당되는 의석을 제외한 385석을 대상으로 인구변동결과를 반영하여 각 주의 연방 하원의석을 재할당함.

  ※ 가장 최근의 인구조사는 2010년에 실시됐으며, 2000년 기준 선거구당 평균인구수 646,952명[30], 2010년 선거구당 평균인구수는 710,767명, 2018년 747,184명이며,[31] 2020.4.1. 제24차 인구

---

27) Electral Registration and Administration Act, 2013. section 6
Parliamentary Constituencies Act, 1986. section 3(2)

28) 2019.12.12. 조기총선에서는 기존 650개 선거구를 유지할 예정임.
영국 의회 홈페이지. 'General Election 2019 timetable.'
https://www.parliament.uk/about/how/elections-and-voting/general/general-election-2019-timetable/ (검색일 2019. 10.31.)

29) 하원 선거구획정보고서. 'The Boundary Commissions: Boundary Review 2018.'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boundary-commissions-boundary-review-2018 (검색일 2019.8.27.)

30)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United_States_congressional_districts (검색일 2019.7.18)

조사의 결과가 관심대상임.

나. 선거구획정 현황(2010~2019)

- 2010년 인구 조사 이후 각 주의 인구 증감을 반영한 주별 하원의원의 숫자가 현재 정원임.

  ※ 동일한 인구기준 배정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같은 카운티에 속한 지역이 다른 선거구로 편입되기도 하였음.

- 2010년 인구 조사 후 각 주의 의석수 변화(예정)[32]
  - 선거데이터서비스(Election Data Services)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인구 추세에 따라 16개 주에서는 2020년에 의회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됨. 플로리다 주는 최대 2명의 의석을 추가 확보해 2022년부터 29명으로 증가되며, 켄터키 주의 경우는 39명으로 3명 증가가 예상됨.

<그림 3-1> 미국 2020년 인구조사 결과 선거구 재조정(예정) 현황

31) Midium. 'This Week in Political Wonkery-June 5, 2018, Edition.' https://medium.com/@michaelbaharaeen/this-week-in-political-wonkery-june-5-2018-edition-fed559bacb0a (검색일 2019.7.18)

32) Brennan Center For Justice. 'Political Shifts in Political Power After The 2020 Census.' https://www.brennancenter.org/potential-shifts-political-power-after-2020-census (검색일 2019.7.18.)

다. 선거구획정 원칙[33]

- 1표 등가의 원칙(one person one vote)에 의한 선거구획정(헌법 제1장제2조제3항)
  - 연방하원의원은 각 주의 인구수에 따라 할당되며, 인구 3만 명 당 1명을 배정하되 각 주는 적어도 1명의 하원이 있어야 함.

    ※ 이 조항은 선거구획정 시 '어느 주에서나 각 선거구간의 인구수는 비등하여야한다'의 형태로 나타남.
- 많은 주가 채택하고 있는 전통적인 기준은 조밀성(Compactness), 인접성(Contiguity), 행정구역, 이익공동체, 이전 구역 존중 등을 들고 있으며,
- 최근에는 현직자·후보자·특정 정당에 유·불리한 획정 금지, 정파적 결과(선거결과, 현직자 거주지, 정당 등록 등) 사용 금지, 경쟁성, 당파성 보장을 들고 있음.
- 각 주는 위 요소들 중 각 주의 실정에 맞게 선택해 운영하고 있음.

참조 3-2 미국 콜로라도 주의 선거구 획정기준(콜로라도 주 헌법 제46~48조)[34]

-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인구차가 5%를 초과해서는 안 됨.[35]
- 선거구의 인구는 가급적 밀집되어 있어야 하고, 선거구는 인접한 지역으로 전체의 경계선은 가급적 짧아야 함.
- 선거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행정구역이 서로 다른 선거구에 속하도록 해서는 안 됨.
- 하나 이상의 선거구로 관할지역이 쪼개지는 시 또는 읍의 숫자는 가급적 최소로 줄여야 함.
- 주 헌법에 따라 선거구간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인구평등이 정당화되는 노력이 필요하며, 각 선거구는 연속되어야 하고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연방의 1965년「투표권법」준수
- 어떤 선거구 안에서 정치적 세부 단위인 카운티, 도시 및 마을의 변경, 조정이 있다면 어떤 특별한 요소에 치중 없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되어야 함.
- 인종, 문화, 경제, 무역 지역, 지리적, 인구통계 학적 요소를 포함하고 지역 사회의 관심을 고려함.
- 각 선거구의 조밀성, 완결성, 인접성을 고려하고 기존의 선거구 (중단)경계의 변경을 최소화 함.

---

33) NCSL. 2019.4.23. 'Redistricting Criteria.'
http://www.ncsl.org/research/redistricting/redistricting-criteria.aspx (검색일 2019.5.1.)

34) Ballotpedia. 'Article V. Colorado Constitution.' Section 46~48.
https://ballotpedia.org/Article_V,_Colorado_Constitution (검색일 2019.10.2.)

35) 모든 주와 마찬가지로, 콜로라도는 헌법 평등 인구요구 사항을 준수, 입법상 기준을 위해, 콜로라도는 더 큰 지구와 가장 작은 지구 사이에서 최대 5% 편차를 두며, 연방의회 선거구의 경우 엄격함, 인구수의 차를 1%의 범위에서 인정, 반면에 주 및 지방입법 선거구 경우 다소 융통성이 있는 인구수 차이가 10%로 보고 있으나 그 이상인 경우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함. 단, 각 주별 운영기준은 다소 다른 점은 있으나, 콜로라도, 아이오와가 5% 범위이며, 몬테나의 경우는 6%의 범위에서 운영하고 있음.
Loyola Law School. 'All About Redistricting.'
http://redistricting.lls.edu/states-CO.php (검색일 2019.6.23.)

라. 선거구획정 절차[36)]

- 매 10년 단위로 3월에 인구조사를 시작한 후 9개월 이내에 실시한 조사결과 를 대통령에게 보고함.
- 연방회의에서 연방법과 공식(선거구당 전국 평균 인구수를 산출하고, 인구변동에 따라 주별 재할당)에 따라 주별 의석수를 배정해 회의 1주일 후에 하원사무처장에게 송부함.
- 또한 인구조사국은 1년 이내에 각 주에 조사결과를 송부해 각 주의 위원회, 독립위원회는 청문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인구 이동 등을 고려하여 주별로 선거구를 획정함.
- 반면에, 일반적으로는 10년마다 인구조사에 따라 재획정되지만, 일부 주의 경우는 언제든지 재획정할 수 있음(5년 후, 반복해서) 다만, 10년 단위 이전에는 재획정 금지 규정과 특정 상황의 경우에 한해 다시 정하는 규정을 가진 주도 있음.
- 선거구획정 기한은 주별로 각각 다름.
- 각 주 선거관리담당기구(주별로 다양)는 다시 주별 선거구당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기존의 선거구를 재획정
- 각 주에 배정된 하원정수에 관한 선거구획정은 주의 권한에 속하며 주법에 따라 주내에서 전통적으로 주 의회가 선거구를 획정해왔으나, 별도의 독립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는 주도 있음.

---

36) Brennan Center For justice. ‘A Citizen’s Guide To Redistricting - III. When Are The Lines Redrawn?’ https://www.brennancenter.org/sites/default/files/legacy/CGR%20Reprint%20Single%20Page.pdf (검색일 2019.6.23.)

<표 3-15> 미국 주별 선거구획정기관[37]

주의회(25)	앨라배마, 델라웨어, 플로리다, 조지아,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미시건, 미네소타,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햄프셔, 뉴멕시코, 노스다코타,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유타,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 인디애나 ※ 대부분의 주에서 주 의회가 주 선거구(state legislative districts)와 의회 선거구(congressional districts) 재획정 과정을 관리함.
자문위원회(5)	아이오와, 메인, 뉴욕,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 초안작성 단계에서부터 입법부에 자문을 하고 최종 결정에 영향을 줌.
지원위원회 (대체)(7)	코네티컷,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시시피, 오클라호마, 오리건, 텍사스 - 자문위원회는 입법부 전에 영향주고 그 이후는 지원위원회에서 추진 - 획정안이 지체될 때, 주지사, 국무장관, 위원 등이 지원위원회 역할 수행함.
정치위원회(7)	아칸소, 펜실베이니아, 콜로라도, 미주리, 하와이, 뉴저지, 오하이오 - 선출직공무원, 정당·의회·주지사·연방법원장이 추천·지명하는 위원
독립위원회(6)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이다호, 캘리포니아, 몬태나, 워싱턴 - 연방·주 선거구 획정, 공무원·입법자도 아님, 위원은 특정기간 동안 해당 선거구 출마금지

※ 주 의회가 선거구획정을 통해 중앙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 의회 장악은 미국 정치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음. 이는 주 의회의원 선거에 각 정당이 막대한 정치자금을 투입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함.

※ 대부분 주에서는 주 의회 및 의회 선거구에 대한 조정권을 가지고 있음. 특히, 37개 주 의회는 자체선거구에 대한 기본 통제권을 갖고 있으며 42개 의회는 주 내에서 각 의회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기본 통제권을 가지고 있음(단 하나의 의회를 가지고 있는 5개 주 포함). 또한 주지사의 거부권에 따라 각 입법부에서 과반수 득표로 정규 법안과 마찬가지로 결정함. 코네티컷 주와 메인 주는 재 구획 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각 주 3분의 2이상의 절대 대다수가 필요함. 그리고 코네티컷, 플로리다, 메릴랜드,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 없이 공동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결정함.

<표 3-16> 미국 주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수 및 관련 조항[38]

주 명	위원수	근거규정
알래스카	5명	주 헌법 Article 6
텍사스	5명	주 헌법 Article 3
애리조나	5명	주 헌법 Article 4, pt. 2. I, § 1
몬태나	5명	주 헌법 Article 5 § 14
뉴저지	13명	주 헌법 Article II. section II. § 1, (a)
워싱턴	5명	주 헌법 Article II, § 43

37) Loyola Law School. ‘All About Redistricting - Who draws the lines.’ http://redistricting.lls.edu/who-fed10.php (검색일 2019.6.23.)

38)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Redistricting Law 2010 - Appendix C. Redistricting Commissions: Legislative Plans.’ http://www.ncsl.org/Portals/1/Documents/Redistricting/Redistricting_2010.pdf (검색일 2019.6.23.)

참조 3-3 미국 텍사스 주의 선거구획정기구 및 획정절차(주 헌법 제3장)

1. 텍사스 주 선거구획정기구(대체위원회 경우)
- 인구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주 의회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며, 다만 주 의회에서 첫째 정기회기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LRB(the Legislative Redistricting Board)에서 획정함.
  ※ 텍사스 헌법에 따라 LRB는 부지사, 주검찰총장, 주하원의장, 주감사관, 주토지관리관 5명으로 구성
- 15명의 주 하원의원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Redistricting Committee)와 11명의 주 상원의원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있음.
- 위원회의 직무는
  a) 주 상원의원과 주 하원의원의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
  b) 연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에 관한 모든 사항
  c)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선출직 사법관리 등의 선출과 관련된 사항
  d) 선거구획정절차 마련

2. 텍사스 주 선거구 획정절차
- 선거구획정은 공청회로부터 시작하며 이는 투표권법에서 일반인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을 따른 것임.
- 인구조사국이 조사결과를 대통령에게 그 해 12월 31일에 보고하고, 인구통계자료는 다음해 4월 1일까지 주에 보내지면, 이로부터 약 60일의 첫 번째 회기동안 주 의회에서 선거구획정작업을 함.
- 결정된 선거구획정안은 일반의안과 마찬가지로 의회를 통과하게 되며, 통과된 안에 대하여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LRB에서 다시 선거구를 획정
- 이후 선거구획정안은 투표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연방 법무부에 송부되어 동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를 심사받게 됨, 연방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다시 주 의회의 개정절차를 거쳐야 함.
- 주 헌법 제3장 제28절에서 선거구획정은 인구조사 후 최초의 정기회기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가 있기 전까지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마.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관한 판례

- 주 헌법 및 주에서는 인구 동등성, 인종 차별뿐만 아니라 밀접성, 인접성, 정치적 동질성 그리고 지역적 공동 이익을 중요한 기준으로 함.[39)]
- 선거구획정은 의회에서 정치 세력 간의 협상결과에 맡기고 있으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법원이 개입하고 있음.
-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판례로서는 Baker v. Carr(369 U.S. 186, 1962), Wesberry v. Sanders(376 U.S. 1, 1964), Reynolds v. Sims(377 U.S. 533, 1964), White v. Weiser(412 U.S. 783, 1973), Karcher v. Daggett(462 U.S. 725, 1983), Abrams v. Johnson(65 U.S.L.W. 4478, 1997)가 대표적임.

39) https://en.wikipedia.org/wiki/Redistricting (검색일 2019.7.26.)

참조 3-4 미국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관한 판례

- 1962년 Baker v. Carr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선거구획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전통을 깨고 "불평등한 인구비례에 따른 선거구획정은 연방헌법 제14조 수정조항에 위배된다."고 판시
- 1964년 Wesberry v. Sanders 판결에서는 조지아 주내 연방하원의 최대와 최소 인구편차가 3 : 1을 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으며, 선거권자 1인의 투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다른 선거권자의 표만큼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1표 등가의 원칙을 확인
- 1973년 White v. Weiser 판결에서는 인구비례 1.1 : 1의 텍사스 주의 선거구획정에 대해 위헌판결이 났고, 각 주는 1.1 : 1 미만의 기준에 입각해 선거구를 획정
- 1983년 Karcher v. Daggett 판결에서는 1980년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뉴저지 주에 14석의 연방하원의석이 재배정되자 뉴저지 주는 선거구당 평균인구수 526,059명, 최대 인구수 527,472명, 최소 인구수 523,798명으로 평균 0.6984%의 인구편차로 선거구를 획정하였으나, 시민단체가 선거구획정의 타당성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자 연방대법원은 인구의 동등성을 위배한 이유로 위헌으로 판시
- 1997년 Abrams v. Johnson 판결에서는 인구편차를 0.35% 초과한 연방하원 선거구획정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결

3. 프랑스

가. 개 요

- 헌법 제25,61조 및 선거법에 따라 비상설 독립적인 자문기구인 선거구획정조정위원회(la Commission de contrôle des opérations de découpage)에서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40)]
  - 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이 1명을 임명함.
  - 국사원, 대법원, 회계감사원에서 각 1명을 선출함.
- 현재 적용되고 있는 프랑스 선거구 획정은 2010년에 재획정된 것임.[41)][42)]

---

40) 2007년 7월 21일 제24차 헌법개정으로 헌법 제25조에서 관련 법률에 의해 설립된 독립위원회가 하원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 조정 또는 상·하 양원 의원의 의석분포 조정에 관한 정부의 법률초안 및 발의안에 대한 공식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함(시행일 2009년 1월 1일).
프랑스 내무부
http://www.vie-publique.fr/actualite/alaune/redecoupage-electoral-projet-gouvernemental.html (검색일 2019.6.7.)

41) https://www.cairn.info/revue-pouvoirs-2013-3-page-117.htm# (검색일 2019.6.7.)

42)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Article.do;jsessionid=709E05F8813FBF8705B27CF5ABEC2E7D.tplgfr33s_1?idArticle=LEGIARTI000020105569&cidTexte=LEGITEXT000006070239&dateTexte=20190607(검색일 2019.6.7.)

- 현행 선거구는 헌법평의회의 코뮌의 일체성 확보에 대한 우선 판결에 따라 획정된 것이므로 대다수의 코뮌이 분할되지 아니하여 도의 선거구당 평균인구수의 편차는 상하 20%이내 원칙에 대한 예외를 초래했음.

나. 선거구획정 원칙(조직법에 선거구획정 위임)

- 1986년 7월에 공포된 「소선거구법」 제2편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절차에 따라 정부가 소선거구법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정부가 「조직법규(ordonnance)」으로 선거구획정을 하도록 함.
- 각 도나 뉴칼레도니아 및 프랑스령 칼레도니아에 설치할 선거구 수는 종전의 도별 정수와 같게 함.
- 본토에서 원거리에 있는 섬이나 행정구역의 중심지역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구역에 있는 도를 제외하고 선거구는 연속된 지역으로 구성
- 파리, 리용, 마르세유의 선거구와 지리적으로 연결되지 아니한 코뮌 또는 인구 4만 이상의 코뮌이 소속된 도의 선거구를 제외하고는 선거구획정에서 코뮌의 구역을 존중
- 인구편차는 선거구획정의 지표이며, 선거구의 인구수와 해당 도의 선거구별 평균 인구수간의 편차는 20% 이내여야 함.
- 뉴칼레도니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선거구획정시에는 각 지역의 최고회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
- 선거구획정조직법규안은 국사원(최고행정재판소: Conseil d'Etat)에 회부되기 전에 다음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을 구해야 함.
  - 국사원의 위원 2명
  - 파기원(대법원: cour de cassation)의 법관 2명
  - 회계검사원의 수석위원 2명

다. 선거구획정 절차

- 헌법평의회가 선거구획정 지침을 마련하고, 내무부가 획정실무를 담당해 획정안을 마련함.

-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국사원의 자문을 거침.
- 내각회의에 획정안을 제출하고, 의회에서 행정명령을 인준하면, 헌법평의회에서 법령을 공표함.
- 선거구획정 주기는 비정기적인데 선거구획정 후 2번의 국세조사를 거치고 인구 변동에 따라 선거구를 재획정

라. 소선거구법안에 대한 헌법평의회의 합헌성 심사

- 소선거구법안에 대한 합헌성 심사신청에 대하여 헌법평의회는 1986년 7월 2일 전체를 합헌으로 인정하고, 제5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보한다는 판결을 내림.[43)]
  - 선거구획정 시 코뮌을 분할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대하여 지역이 연속되지 아니한 코뮌 또는 인구 4만인 이상의 코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
  - 도의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의 편차가 20%에 달하는 경우의 선거구획정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구체적인 공익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허용
  - 어떠한 선거구도 자의적으로 선거구획정을 할 수 없음.

4. 독 일

가. 개 요

- 연방선거법 제3조에 상설 선거구획정위원회와 그 임무 및 분할원칙을 규정
- 하원의원의 소선거구는 연방선거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별지에 규정

나. 선거구획정위원회(연방선거법 제3조제2항)

- 선거구별 인구수 변동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는 상설 합의제 기관

43) 이 판결은 선거구 인구의 단순 균일화의 원칙보다는 도의회의원의 선거구단위인 시·읍·면 코뮌의 일체성을 확보하는 원칙의 방향을 중시하는 것이었음.

- 구 성
  - 연방대통령이 임명하는 7명(연방통계청장, 연방행정법원 판사 각 1명과 기타 5명)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
  -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선출하나, 통상적으로 연방통계청장이 역임
- 직 무
  - 선거구역내 인구수 변동을 조사하고, 선거구 분할이 필요한지 여부 및 필요하다면 그 변경내용을 연방내무부장관에게 보고
  - 인구변동 외에 행정구역변경 등의 사유에 의하여 선거구분할 변경을 제안할 수 있음.

다. 선거구획정 기준(연방선거법 제3조제1항)

- 각 주의 경계선은 유지되어야 함.
- 각 주의 선거구 수는 가능한 한 인구비율과 일치하여야 함. 선거구의 수는 연방선거법 제6조제2항제2문부터 제7문에 따라 의석배분을 위하여 주(州)후보자명부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산정절차를 통해 조사됨.
- 한 선거구의 인구수는 전체선거구의 평균인구수와 비교하여 상하편차가 100분의 15를 넘거나 미달하지 않아야 하며, 특정선거구 인구수와 평균선거구 인구수의 격차가 100분의 2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함.
- 선거구는 상호 연관된 지역으로 구성되어야 함.
- 선거구 획정 시 가능한 한 게마인데(Gemeinde, 읍·면·동), 크라이스(Kreis, 구·시·군), 크라이스 프라이어 슈타트(Kreisfreier Stadt, 특별소도시)의 경계는 가능한 한 유지되어야 함.
- 인구수 산정에 외국인 수는 고려되지 않음(「체류에 관한 법률(Aufenthaltsgesetz)」 제2조제1항).

라. 선거구획정 절차(연방선거법 제3조제4항)

-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하원의 임기가 시작된 후 15개월 이내에 인구의 변동사항과 선거구재획정 필요여부에 대해 연방내무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
- 연방내무장관은 이 보고서를 즉시 하원에 제출하고 연방관보에 공표
- 연방내무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보충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이 보고서는 선거구 경계변경에 관한 입법심의에 있어 기반이 됨.

  ※ 연방내무장관은 보고서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방정부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에 대해 법률안 작성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5. 일 본

가. 선거구획정심의회

- 1994년 중의원의원선거 선거제도를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면서 「중의원의원선거구획정심의회설치법」[44](이하 '획정법'이라고 함)을 제정, 내각부 산하에 상설기관으로 설치되어 이 심의회에서 선거구획정을 담당함(획정법 제1조).

  ※ 참의원의원의 경우 선거구가 도·도·부·현 단위로 획정되기 때문에 선거구획정 심의회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원이 아닌 자로 양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으로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함(획정법 제6,7조).
- (정기권고)심의회는 10년마다 실시되는 국세조사 결과에 의한 인구가 처음 관보에 공시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선거구 재획정 권고를 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함(획정법 제4조).

  ※ 각 선거구의 인구가 현저히 불균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도 권고가능(수시권고)
- 총리는 심의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는 획정안을 토대로 법률형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함.

---

44) 국회법률도서관. 중의원의원선거구획정심의회설치법.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06AC0000000003 (검색일2019.8.12.)

나. 선거구획정 원칙(획정법 제3조)

- 각 선거구의 인구균형을 고려하되 최소 및 최대 선거구의 인구격차를 2배 이하로 함.
- 시·구·정·촌, 군의 구역을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않음.
- 하나의 선거구가 다른 선거구에 의해 분리될 수 없음.
- 행정 구획, 지세, 교통, 역사적 연혁 및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다. 선거구획정 절차

- 선거구획정 법정주의로 소선거구 및 비례대표선거구를 별표로 정함(공직선거법 제13조).
- 선거구획정 기준 및 변경
  - 중의원 소선거구 의석 289석을 먼저 47개 도·도·부·현에 1석씩을 할당하고, 나머지 242석을 인구비례로 할당
  - 인구수 2배 이하 기준은
    - ·하한선 기준: 해당연도 1석당 평균인구수(총인구수/의석수)의 2/3
    - ·상한선 기준: 해당연도 1석당 평균인구수 4/3
  - 선거구는 구·시(특별구 및 오사카시·쿄토시 등 지정도시의 구를 포함) 및 홋카이도의 지청의 소관구역을 중심으로 정함.
  - 행정구역등의 변경이 있더라도 소선거구는 종전의 구역에 의함.
  - 2 이상에 걸쳐 시·정·촌이 폐치되더라도 공직선거법 별표 1이 개정되기까지는 중의원의원 비례대표선거구는 종전에 의함.

라. 선거구의 선거기간 중의 특례(공직선거법 제15조의2)

-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및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일의 공시 또는 고시일부터 선거일까지 2 이상의 선거구에 걸쳐 시·정·촌의 경계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선거구는 해당 선거에 있어서는 변경하지 않음.
-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일의 공시 또는 고시일부터 선거일까지 도·도·부·현의 경계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선거구는 해당 선거에 있어서는 변경하지 않음.

마. 선거구의 변경과 현직자의 지위(공직선거법 제16조)

- 현재 중의원의원,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은 행정구역 기타 구역변경에 의하여 선거구의 변경이 있더라도 그 직을 상실하지 않음.

6. 스페인

- 행정구역상 50개의 도(provincias, Spanish provinces)가 각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하고 있어 선거구획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선거 때 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당 선거구의 의원정수를 조정함.

  ※ 50개의 도는 인구수에 관계없이 지역대표성의 측면에서 동등하게 최소한의 의석을 배정받고 있음.

-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 선거를 위해 각 도는 한 개의 선거구를 구성함(선거법 제161조제1항).
  - 세우타(Ceuta)와 멜리야(Melilla)는 각각 독립 선거구로 간주됨.
  - 예외적으로 마요르카(Mallorca), 메노르카(Menorca), 이비사-포르멘테라(Ibiza-Formentera), 그란 카나리아(Gran Canaria), 푸에르테벤투라(Fuerteventura), 란사로테, 테네리페(Tenerife), 이에로(Hierro), 고메라(Gomera) 및 라 팔마(La palma) 섬은 상원선거에 있어 독립 선거구로 봄(선거법 제161조제2항).

  ※ 선거구별 최소 의석 수 및 의석 배정방법에 관해서는 제3장 제1절 선거구와 의원정수 스페인편, p.219 참조

7. 스웨덴

- 의회의원 선거구는 선거법 제4절 제2조에 규정되어 있고, 임기 4년마다 선거구의 인구비례에 따라 선거구별 의석수를 조정함(기본법 제3절 제6조).

가. 선거구획정 기준

- 중앙선거청은 총선이 열리는 해 늦어도 4월 30일까지 각 선거구의 의석수를 결정

하며, 그 결정은 다음과 같음(선거법 제4절 제3조).

- 각 선거구의 선거권자 수를 전국 선거권자 수의 310분의 1로 나눈 몫의 정수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함.
- 전체 선거구 의석이 위 방법에 의해 배분되지 못하고 잔여의석이 발생하는 경우 위 방법으로 계산 후 나머지수의 크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분함. 만일 나머지수가 2개 또는 그 이상의 선거구에서 같을 경우 추첨으로 어느 선거구에 의석을 배분할지 결정함.

- 선거권자 수는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3월 1일 「국세청 인구등록 업무에 관한 법 [Act(2001:182)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the Swedish Tax Agency's population registration operation」에 따른 인구등록을 기준으로 함(선거법 제4절 제1조).

나. 선거구획정에 대한 이의제기

중앙선거청의 선거구별 의원수 결정에 대하여 선거감독위원회에 이의제기할 수 있음(선거법 제15절 제3조).

※ 이의제기 관련 절차는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스웨덴편, p.898 참조.

8. 스위스

- 상·하원의원의 경우 각 주가 하나의 선거구가 되며, 한 선거구에서 최소 1명을 선출해야 함(헌법 제149조제3항, 제150조제2항).
- 하원의원의 선거구당 의석은 각 주의 인구비례에 따라 정해짐(헌법 제149조제4항).
  - 연방의회가 「인구조사법(Census Act)」에 따라 지난 선거 이후 첫 해의 인구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의석수를 정함(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16조).
  - 스위스 거주 인구를 200으로 나누어 나온 몫, 즉 정수에 따라 주 별 인구수에 비례해 1차, 2차, 3차 할당과정을 거쳐 각 주의 선거구당 의석수를 최종 확정함(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17조).

-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나온 하원 의석수에 관해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45]을 제정함.

9. 캐나다

가. 선거구획정위원회(Electoral Boundaries Commission)[46]

- 선거구획정조정법(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1964)에 따라 10개의 주에 각각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선거구획정조정법 제3조)

  ※ Northwest Territories, Yukon, Nunavut 준주는 1개의 선거구로 되어 있으므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없음.

  - 통계청장(Chief Statistician)이 제출하는 10년 주기의 인구조사보고서를 추밀원장관(Minister of the Queen's Privy Council)이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총독(Governor in Council)은 각 주마다 1개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성명서를 내고 관보에 공고
  - 10개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매 10년마다 시행·완료된 인구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주의 선거구 분리, 선거구의 경계 조정, 각 선거구당 인구와 명칭에 관한 고려사항이 담긴 하원 제출용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선거구획정조정법 제20조).
- 위원회의 구성(선거구획정조정법 제4~6조)
  - 위원장 1명과 위원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
  - 위원장: 주의 최고법원 수석판사에 의해 임명되는 주의 법관
  - 위　원: 하원의장에 의해 임명되는 해당 주 거주자 2명

---

45)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https://www.admin.ch/opc/de/classified-compilation/20172203/index.html (검색일 2019.8.23.)

46) 캐나다 선거관리청 홈페이지.
https://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res&dir=cir/red/bck&document=index&lang=e (검색일 2019.6.24.)

나. 선거구획정 기준

- 10년마다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주별 하원의원 의석수를 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선거구간 인구가 비슷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해야 함(헌법 제51조).
  - 각 주의 인구수를 각 주의 의원정수로 나누어 선거구의 선거인기준수[electoral Quotient, 111,166명(2011년 7월 1일 기준 각 주의 평균인구수)]를 산출하고 가급적 그 수의 상하 2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구를 획정함.
- 선거구 결정시 고려사항(선거구획정조정법 제15조)
  - 주내 동일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 선거구의 역사적 형태
  - 인구희박지역, 농촌 또는 북쪽 지역에서 지리적으로 선거구로서 관리가 가능한 규모

다. 선거구획정 절차(선거구획정조정법 제20~26조)

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보고서 작성(위원회 구성 후 10개월 이내)
↓
선거관리청장에 제출(즉시)
↓
하원의장에게 송부
↓
하원 지정 상임위원회에 회부(30일간)
↓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주 선거구획정위원회로 회부 및 재심의(30일간)
↓ (모든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선거관리청장의 선거구획정시행령 초안(draft representation order) 추밀원 장관에게 송부
↓
총독이 공고문 공표
(장관이 선거구획정시행령 초안 수령 후 5일 이내)
↓
관보 공고
(공고문 발행 이후 5일 이내, 효력은 공고문 발행일 이후 7개월 후 첫 번째 의회해산 시 적용)

10. 호 주

가. 선거구 재획정(연방선거법 제59조)[47]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선거구 재획정이 필요함.

- 인구수 변동으로 주와 준주에 배정된 하원의원의 수가 조정된 경우
- 주 내 선거구의 1/3 이상 그리고 2개월 동안 선거권자 수가 불균형한 경우

  ※ 선거위원은 매월 말 각 주 또는 준주의 선거구에 등록된 선거권자 수를 확인해 각 선거구에 등록된 선거권자 수와 선거구별 평균 등록인수의 편차를 관보에 게재함(연방선거법 제58조).
- 이전 선거구 재획정 후 7년이 지난 경우

나. 선거구획정위원회(Redistribution Committee)

- 선거구를 재획정하기 위해 선거위원회는 재획정 개시 후 신속하게 서면에 의한 문서로 주 또는 준주 선거구획위원회 위원을 임명함(연방선거법 제60조).
  - 주 또는 준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위원, 주 선거공무원, 주 측량청장(the Surveyor-General) 또는 동등한 직을 갖는 자, 주 감사원장으로 구성
- 주 또는 준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해당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3명의 선거구획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63조).
- 누구든지 주 또는 준주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됨(연방선거법 제78조).

다. 선거구획정 기준(연방선거법 제66조)

- 6개 주에서 인구수에 비례하여 최소 5명 이상의 하원의원을 선출(헌법 제24조)

  ※ 수도 준주(Australian Capital Territory)는 3명, 북부 준주(Northern Territory)는 2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함.
- 주 또는 준주 내의 선거구 분할은 선출될 의원정수만큼 인구비례에 따라 소선거

---

47) 호주선거위원회(AEC). 'Electoral Pocketbook(2016년 연방 선거 결과 포함).' p.11. https://www.aec.gov.au/About_AEC/Publications/electoral_pocketbook/2016/2016-electoral-pocketbook.pdf (검색일 2019.5.30.)

구로 균등 분할

- 선거구획정안 작성 시에는 그 주 또는 준주의 선거권자 기준수가 선거구획정안의 기초가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허용편차를 둘 수 있으나 그 비율이 1/10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됨(연방선거법 제66,73조).

  ※ 선거권자 기준수(quota of electors): 선거구획정이 시작되는 날 등록되어있는 선거권자 수를 의원 정수로 나눈 수로 선거위원이 결정(연방선거법 제65조)

- 선거권자 수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작성하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경제적·사회적·지역적 이해관계, 통신 및 교통사정, 선거구의 범위와 지세, 기존 행정구역의 경계 등을 고려해야 함.

라. 선거구획정 절차[48]

-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 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작성한 후 관보 및 해당 주 또는 준주에서 발간되는 2개의 일간지에 공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연방선거법 제68조).
  - 선거구획정안의 명칭과 경계선이 표시된 지도
  - 선거구획정안과 관련된 제안과 의견
  -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설명과 이유
- 관보에 공고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사본을 일반인에게 열람가능하게 해야 함(연방선거법 제69조).
- 선거구획정안 결정을 위해 확대선거위원회(Augmented Electoral Commission) 설치(연방선거법 제70조)
  - 선거위원회 위원장, 선거위원회 위원, 해당 주 또는 특별 자치구의 선거구획정위원으로 구성
  -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을 심의하여 선거구획정을 최종 결정함.

---

48) 호주선거위원회(AEC). ‘Electoral Pocketbook(2016년 연방 선거 결과 포함).’ p.11.
https://www.aec.gov.au/About_AEC/Publications/electoral_pocketbook/2016/2016-electoral-pocketbook.pdf (검색일 2019.5.30.)
호주선거위원회 홈페이지(AEC)
https://www.aec.gov.au/Electorates/Redistributions/steps.htm (검색일 2019.5.30.)

- 확대선거위원회 회의 정족수는 4명 이상이며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투표로 결정하며, 선거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이 찬성하여야 선거구획정 결정이 가능함(연방선거법 제70,71조).

- 선거위원회는 확대선거위원회의 선거구획정 결정안을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의회 회기일 5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연방선거법 제75조)
- 의회는 확대선거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부하거나 수정할 권한이 없음(연방선거법 제77조).
  -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이의제기 또는 법원에 제소 등을 할 수 없음.

<표 3-17> 각국의 선거구획정기구

담당기구	국가명
의회-하원 (65)	알제리, 앙골라, 벨기에, 베냉, 브라질, 캄보디아, 카메룬,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콜롬비아, 코모로, 쿡제도, 크로아티아, 체코, 도미니카, 이집트, 적도기니, 가봉, 그리스, 과들루프, 기니, 기니비사우,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이라크, 아일랜드,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키리바시, 쿠웨이트, 라오스, 라트비아, 레바논, 리비아, 룩셈부르크, 말리, 마셜제도, 아이슬란드, 모리타니, 미크로네시아, 몽골, 모잠비크, 나우루, 니카라과, 니제르, 니우에,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폴란드, 레위니옹, 사모아, 상투메 프린시페, 슬로베니아, 스웨덴, 토고, 투발루, 아랍에미리트, 영국, 베트남
의회-상원 (12)	알제리, 벨기에, 캄보디아, 칠레, 콩고공화국, 체코,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모리타니, 필리핀, 폴란드, 영국
행정부 (16)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레인, 바베이도스, 불가리아, 카메룬, 캐나다,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그레나다, 마다가스카르, 몰도바, 나미비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에스와티니, 투발루
선거구획정위원회 (36)	앤티가바부다, 호주, 바하마,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리즈, 부탄, 보츠와나, 캐나다, 도미니카, 에리트레아, 프랑스, 독일, 그레나다, 인도, 아일랜드, 대한민국, 레소토, 말라위, 모리셔스, 몰도바, 네팔, 뉴질랜드, 파키스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솔로몬 군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영국, 미국
선거관리기관 (55)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호주,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볼리비아, 부르키나파소, 미얀마,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체코,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에티오피아, 가봉, 감비아, 조지아, 가나,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케냐, 라이베리아,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몰타, 멕시코, 나이지리아, 팔레스타인, 러시아, 르완다,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소말리아, 수단,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간다,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정부부서 또는 기관 (9)	아프가니스탄,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에콰도르, 이집트, 이탈리아, 팔레스타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기타 (19)	안도라, 아르헨티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모로코, 나우루, 네덜란드, 노르웨이, 파라과이, 푸에르토리코, 카타르, 슬로바키아, 스페인, 수리남, 스위스, 튀니지, 미국, 바누아투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BD005 (검색일 2019.4.30.)

<표 3-18> OECD국가의 선거구획정절차

구분 국가명	선거구획정기관 (소속)	획정주기	획정절차 및 안 작성	근거규정
영 국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선거구획정위원회 (상설 독립기관)	5년	①위원회가 획정안을 내무장관에게 제출 ②내무장관은 획정안을 의회에 제출 ③의회는 가·부만을 결정, 수정불가 (의회에서 획정안을 부결한 선례 없음.)	선거구획정법 제3,4조
미 국	주 의회, 주 선거구획정위원회 등 주별로 다름.	10년 (인구조사)	①10년마다 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별 의석수 배정 ②주 의회, 주 선거구획정위원회 등에서 주 별로 주 법으로 선거구 획정	헌법 제1장제2조제3항 주 선거법
프랑스	선거구획정조정위원회 (비상설 독립적 자문기구)	비정기	①헌법평의회가 선거구획정 지침 마련 ②내무부에서 선거구획정안 마련 ③선거구획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견 제시 ④국사원(최고행정재판소)에 자문 ⑤내각회의에 획정안 제출 ⑥의회에서 행정명령 인준, 헌평평의회에서 법령 발효	선거구획정 조직법령 (행정명령)
독 일	선거구획정위원회 (상설 독립기관)	4년	①위원회가 연방내무장관에게 선거구획정안 제출 ②연방내무장관이 획정안을 하원에 제출 ③하원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방관보에 공표	연방선거법 제3조제2항
일 본	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심의회 (내각부 산하)	10년 (국세조사)	①획정심의회가 총리에게 획정안 제출 ②총리가 획정안을 의회에 보고 ③의회에서 선거구 획정	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 심의회설치법
스페인	의회	4년	①행정구역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함. ②선거 때 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당 선거구의 의석수를 결정함.	선거법 제161조
스웨덴	중앙선거청	4년	①원칙적으로 행정구역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함. ②중앙선거청이 선거연도 4월 30일까지 인구수를 기준으로 각 선거구의 의석수를 결정함.	기본법 제3절 제6조 선거법 제4절 제3조
스위스	의회	4년	①각 주가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함. ②선거이후 첫 해 인구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선거구의 의석수를 결정함.	헌법 제149조제4항
캐나다	주 선거구획정위원회	10년 (인구조사)	①위원회가 획정안을 작성 선거관리청에 보고 ②선거관리청장이 하원에 획정안 제출 ③하원의 승인을 거쳐 총독이 행정명령으로 공표 (하원에서 획정안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주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재심의 요청)	선거구획정 조정법
호 주	주 선거구획정위원회 (연방선거위원회 하부기관)	비정기	①위원회가 획정안을 작성하고 일반인에게 공개 ②공개된 획정안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가 이의제기 가능 ③선거구획정안 결정을 외한 확대선거위원회가 이의를 심사하고 최종결정 ④확대선거위원회의 선거구획정 결정안을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이 의회에 제출	연방선거법 제60,68~70조

구분 국가명	선거구획정기관 (소속)	획정주기	획정절차 및 안 작성	근거규정
			⑤의회는 확대선거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하거나 수정할 권한은 없음.	
오스트리아	내무부	10년 (인구조사)	①인구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선거구별 인구비례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 ②배분된 의석수를 내무부 장관이 연방관보에 공표	하원선거법 제2~5조
벨기에	의회	10년 (인구조사)	①행정구역 경계가 해당 선거구를 구성함. ②벨기에 전체 인구수 나누기 하원의원 수(150)을 기준으로 각 선거구의 인구비례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함. ※ 왕은 인구조사 결과를 6개월 이내에 공표하고, 공표 후 3개월 이내에 의석수를 결정함.	헌법 제63조 제1,2,3항 선거법 제87,88조
체 코[49)50)]	의회	4년	①선거연도 인구수 증감률 조사를 기초로 하원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심의해 상원으로 송부 ※ 인구수, 행정구역 변경, 상하원 선거구와 지방의회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의 상황이 있을 때 재획정함. ②상원에서 해당 획정안을 의결해 확정 ③국가선거위원회는 재외선거 등 특별선거구 획정에 관한 획정안 제출 (상원이 선거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하원은 해당 결정에 대해 재투표를 할 수 없음)	선거법 제3조제1항 제8조제2항 제i호 제26,59조 지방선거법 제26,27조
칠 레	선거위원회	10년	①선거위원회가 최신 통계청 공식 인구조사를 기반으로 의석수 배정 ②인구조사 실시연도 다음해 4월 세 번째 근무일에 선거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소집되며 인구조사가 의원선거와 같은 해 이루어지는 경우 상임위원회는 그 앞선 해 4월의 세 번째 근무일에 소집 ③선거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소집 후 10일 내로 획정안을 작성해 48시간 내로 하원에 통보 ④공표 5일 이내 시민은 누구든지 법원에 획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⑤필요한 경우 법원은 10일 이내로 획정안을 승인 또는 수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항소는 불가 ⑥최종 획정 내용은 해당 연도 2월 1일부터 10일간 관보에 게재	헌법 제47조 선거법 제121, 187~190조
덴마크	경제내무부	5년	①매 5년마다 1월 1일 인구통계를 발표 ②경제내무부장관이 지역 및 선거구별 의석수를 결정하고 발표	선거법 제8,10조
에스토니아	선거위원회	4년	①선거일이 공표된 달의 1일에 인구등록부상 총 인구수에 비례해 해당 선거구의 의석수를 배분 ②선거위원회가 공표	선거법 제2,6,7조
핀란드	정부	4년	①선거일 6개월 전 마지막 날 인구정보시스템상의 선거구별 인구수에 비례해 의석수를 배분 ※ 선거연도 행정구역 변경을 반영 ②정부가 법령으로 공포	헌법 제24조 선거법 제5,6조

구분 국가명	선거구획정기관 (소속)	획정주기	획정절차 및 안 작성	근거규정
그리스	의회	10년 (인구조사)	①행정구역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함. ②인구조사결과에 비례해 선거구별 의석수를 조정 (단, 아테네 등 일부 도시 제외)	선거법 제1,2조
헝가리	의회	4년	①선거구별 선거권자 수가 평균 선거권자수에 근접하게 획정 ②선거법 별지에 규정	기본법 제2조제3항 의회선거법 제4조
아이슬란드	선거위원회	4년	①기본적으로 선거구가 고정됨. ②선거일 5주 전 선거구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의석수 배정함.	선거법 제7조
아일랜드[51]	선거구획정위원회	5년 (인구조사)	①중앙통계청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선거구별 의석수를 배정 ②위원회는 소집 6개월 이내로 획정안을 작성하여 하원에 제출 ③위원회는 획정안 제출 이후 해산 ④하원의 의결을 거쳐 선거구 획정	헌법 제16조제2항 선거법(1997) 제6조제2항, 제9조
이스라엘[52]	-	-	기본법에 따라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로 고정	의회기본법 제4조 선거법 제9,57조
이탈리아	내무부	10년 (인구조사)	내무부 장관이 최근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선거구별 의석수를 조정	하원선거법 제3조
라트비아	중앙선거위원회	10년 (인구조사)	①선거법에 따라 5개의 선거구로 고정 ②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선거구별 의석수 배정 ③중앙선거위원회가 선거법에 명시된 계산식에 등록된 선거권자 수를 대입하여 의원정수를 변경해 선거구 당 의석 수 결정	선거법 제7조제1,2항 제8조제1,2항
리투아니아[53]	선거위원회	10년 (인구조사)	①기본적으로 선거구가 고정됨. ②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의석수 배정	선거법 제9조제1항
룩셈부르크	의회	비정기	선거구 및 의원정수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선거구 조정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	헌법 제51,114조 선거법 제117,132, 197조
멕시코[54]	연방선거위원회	5년 (인구조사)	연방선거위원회가 최신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안 작성	헌법 제52,53조 연방선거법 제32조제1항 제a호제II목, 제214조
노르웨이[55]	지방정부현대화부	8년	①19개 선거구가 고정되어 있음. ②지방정부현대화부 장관은 8년마다 선거구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의석수를 배분하고 의회에 통보	선거법 제11-1,11-3 조

구분 국가명	선거구획정기관 (소속)	획정주기	획정절차 및 안 작성	근거규정
네덜란드	-	-	행정구역을 경계로 하는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함. ※ 선거구를 선거법 별지로 규정	선거법 제E1조
뉴질랜드	선거구획정위원회	5년 (인구조사)	①위원회가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획정안을 작성 ②총독에게 보고하고 관보에 게시 ③일반인 등의 이의제기 가능 ④위원회가 이를 심사하고 최종 결정	선거법 제28,35, 38,40조 제77조제4항
폴란드	의회	비정기	①행정구역의 변경, 인구변화의 이유로 선거구 변경을 선거위원회가 의회에 제안 ②의회는 선거 공표일 3개월 이전까지 획정 ③선거법 별지에 규정하고 선거위원회가 공지 및 게시	선거법 제201~203조
포르투갈	-	10년	①최신 인구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인구수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 ②선거위원회는 선거일 60~55일 이전까지 관보에 공표	선거법 제12,13,16조
슬로바키아	-	-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로 고정	선거법 제44조
슬로베니아	의회	비정기	의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의회에서 의결	의회선거법 제20,21조
터 키	최고선거위원회	비정기	①헌법에 따라 최고선거위원회가 모든 선거 관련 업무를 담당 ②선거법에 따라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구역과 선거구 일치 ③최신 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수 변동을 고려하여 의석수 변경 ④변경 결과는 인구조사 결과 발표 후 6개월 이내 최고선거위원회가 관보, 라디오, TV를 통해 발표	헌법 제79조 선거기본법 제3조 의회선거법 제4,5조

49) 베니스위원회 보고서 – 선거구 획정
https://www.venice.coe.int/webforms/documents/default.aspx?pdffile=CDL-AD(2017)034-e (검색일 2019.8.9.)

50) 체코 입법 절차
http://www.psp.cz/files/okv/en_Legislative_process_bill.pdf (검색일 2019.5.17.)

51) 아일랜드 의회.
https://www.citizensinformation.ie/en/government_in_ireland/national_government/houses_of_the_oireachtas/dail_e ireann.html (검색일 2019.7.30.)

52) 이스라엘 사법부 'National: The entire country constitutes a single electoral constituency.'
https://knesset.gov.il/constitution/ConstMGovt.htm (검색일 2019.5.17.)

53) OSCE보고서. 'Republic of Lithuania Parliamentary Elections. Election Assessment Mission Final Report.' p.6.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lithuania/251681(검색일 2019.7.29.)

54) 멕시코 통계청 인구조사
https://en.www.inegi.org.mx/temas/estructura/ (검색일 2019.9.17.)

55) 노르웨이 지방정부현대화부(The Ministry of Local Government and Modernization)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norway/360336?download=true (검색일 2019.9.16.)

<표 3-19> OECD국가의 선거구획정기준

구분 국가명	획정기준 및 인구편차	근거규정
영 국	• 해당선거구 평균선거권자수(electorate quota)에 가능한 한 근접하게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평균선거권자수는 전체 선거권자수를 선거구 수로 나눈 값으로 선거구당 선거권자 수가 95%미만이거나 105%를 초과해서는 안 됨. • 선거구의 크기, 모양, 접근성 등 지정학적 고려 및 지방정부의 경계, 현행 선거구의 경계 등을 고려함.	선거구획정법 부칙 2
미 국	• 인구 3만 명 당 1명을 배정하되, 각 주에 최소 1명의 하원의원이 있어야 하며, 조밀성, 인접성, 행정구역, 이익공동체, 이전 구역 존중등을 기준으로 함. • 1962년 연방대법원은 선거구획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전통을 깨고 인구비례를 위배한 선거구획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Baker v. Carr). • 1964년 선거구간 3:1의 인구편차를 위헌으로 판결(Wesberry v. Sanders). • 1969년 선거구간 1.06:1의 인구편차를 위헌으로 판결(Kirpatrick v. Preisler). • 1973년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1.1:1(±5%)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결(White v. Weiser). • 1983년 선거구간 0.6984%의 인구편차를 위헌으로 판결 (Karcher v. Daggett). • 1997년 선거구간 0.35%의 인구편차를 합헌으로 판결 (Abrams v. Johnson). • 연방의회 선거는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라 0에 최대한 가깝게 인구편차를 줄여야 함. 다만, 주 의회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대체로 10%정도까지 허용되며, 이를 크게 초과할 경우에는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필요함. 참고로, 1992년 버몬트 주 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는 17.6%였으며, 이는 주법원에서 승인됨. ※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연방의회 선거구와 주의회 선거구가 모두 구속을 받음.	헌법 제1장제2조 제3항
콜로라도 주	•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와 적은 선거구의 인구차는 5% 미만 • 인구 밀접성, 선거구 인접성을 고려하고, 동일한 행정구역에 서로 다른 선거구에 속하도록 해서는 안 됨.	주 헌법 제46~48조
프랑스	• 동일한 도 내부에서의 선거구획정시에는 평균인구의 상하 20%(1.5:1)이내의 편차에서 이루어져야 함. • 20%의 인구편차는 충분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설정할 수 있음. • 프랑스 본토내의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1:3.6에서 1:2 감소함.	선거구획정 조직법규
독 일	• 한 선거구의 인구수는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15/100(1.35:1) 초과하는 편차를 보여서는 안 됨. • 편차가 25/100을 초과한다면 새로운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져야 함.	연방선거법 제3조제1항제3호
일 본	• 각 선거구의 인구 중 그 최다의 것을 최소의 것으로 나누어 얻은 수가 2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함[2:1(±33%)].	중의원선거구획정 심의회설치법 제3조제1항
스페인	•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 구성	선거법 제161조
스웨덴	• 각 선거구의 선거권자 수를 전국 선거권자 수의 310분의 1로 나눈 몫의 정수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함. • 전체 선거구 의석이 위 방법에 의해 배분되지 못하고 잔여의석이 발생하는 경우 위 방법으로 계산 후 나머지 수의 크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분함. • 선거권자 수는 선거연도 3월 1일 국세청 인구등록을 기준으로 함.	선거법 제4절 제1,3조

구분 국가명	획정기준 및 인구편차	근거규정
스위스	• 인구조사법에 따라 지난 선거 이후 첫 해의 인구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함. • 스위스 거주 인구를 200으로 나눈 몫에 따라 주별 인구수에 비례 1,2,3차 할당과정을 거쳐 각 주의 선거구당 의석수를 확정함.	헌법 제149조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16조
캐나다	• 각 주의 인구수를 각 주의 의원정수로 나누어 선거구의 선거권자 기준수를 산출 • 평균인구수 편차 ±25%(1.67:1)을 초과하지 못함. • 주 내 동일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 선거구의 역사적 형태, 인구 희박지역 등을 고려함.	선거구획정조정법 제15,51조
호 주	• 선거구획정이 시작되는 날 등록되어 있는 선거권자 수를 의원정수로 나눈 수인 선거권자 기준수를 산출 • 평균인구수 편차 ±10%(1.22:1)을 초과하지 못함.	연방선거법 제65,66조
오스트리아	• 기존 행정구역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고, 행정구역의 크기에 따라 수개의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음 • 선거구 인구 비례에 따라 의석수를 조정	헌법 제26조제2항 하원선거법 제3,4조
벨기에	• 각 주(Province)는 기본적으로 한 개의 선거구를 이루며, 브뤼셀도 한 개의 선거구를 이룸. 선거구는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될 수 있음. 또는 한 개의 행정구역이 여러 선거구로 나누어질 수 있음. • 행정구역은 이 법에 규정된 분할표에 따라 선거구로 나뉘며, 국왕은 선거구 안의 지자체의 경계를 변경하거나 지방법원의 위치를 다른 선거구로 옮기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행정구역·선거구 구성을 변경할 수 있음. • 선거구별 의석 배분은 선거구 인구/연방제수 결과값에 따라 국왕이 결정하며, 잔여 의석은 인구가 많은 순위에 따라 배분 ※ 연방제수(the Federal Divisor): 벨기에 총인구/150(총의원수) • Brabant주의 경우 프랑스어 및 네덜란드어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칙을 법에 따라 정할 수 있음.	헌법 제63조제1,2,3항 선거법 제87,88조
체 코	• 인구와 자연발생적인 경계를 바탕으로 선거구 구성 • 프라하 수도권 지역은 별도 선거구로 편성 • 기존 선거구 의원 1명 당 인구수 평균치 대비 ±15% 이상 차이 발생 시 변경	선거법 제26,59조제2항 지방선거법 제26,27조
칠 레[56]	• 최신 통계청 공식 인구조사를 기반으로 선거법 제121조 계산식에 따라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각의 28개 선거구 당 3석 이상 8석 이하의 의석수 배정	선거법 제187,188,189, 190,121조
덴마크	• 전국을 인구, 직전선거의 선거권자 수, 선거구면적(㎢)×20을 합한 값을 기준으로 선거구에 133석을 배분(보른홀름 지역은 최소 2석 보장). • 전국을 3개 지방으로 나눔(Metropolitan Copenhagen, Sealand-Southern Denmark, Northern and Central Jutland). • Metropolitan Copenhagen 지역은 4개 중선거구로, Sealand-Southern Denmark와 Northern and Central Jutland 지역은 각 3개 중선거구로 나눔. ※ 의석은 175석이고, 그 중 135석이 선거구석이고, 40석이 보정의석 (총의석 179석/페로제도 2석, 그린란드 2석)	선거법 제7,10조
에스토니아	• 기존 행정구역을 선거구로 고정하고 선거구 인구 비례에 따라 의석수를 조정	선거법 제7조
핀란드	• 핀란드 행정지역 구분과 인구규모에 따라 최소 12~ 18개의 선거구를 획정 (올란드 제도 지역은 별도 선거구로 편성해야 함, 2019년 현재 13개선거구)	헌법 제25조

구분 국가명	획정기준 및 인구편차	근거규정
	• 선거구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배분	선거법 제5,6조
그리스	• 선거구별로 최신 인구통계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 ※ 그리스 자체 인구수를 선거구별로 나눈 몫에 비례하여 선거구별 의석수를 배분	선거법 제2조제2항
헝가리	• 카운티 경계와 부다페스트 경계를 넘지 않고 인접한 지역이어야 함. • 평균선거권자수는 편차 ±15%(1.35:1)을 초과하지 못함. • 지리적, 민족적, 역사적, 종교적 및 기타 지역 특성과 인구이동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가 가능함.	의회선거법 제4조
아이슬란드	• 선거일 5주 전 선거위원회가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 • 선거구는 의석 당 배정된 선거권자 수, 보정의석을 고려	선거법 제7조
아일랜드	• 의원정수 164명 이상 168명 이하 조항을 고려해 각 선거구별 3~5석의 의석수를 배정 • 지역,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획정안 작성	헌법 제16조제4항 선거법1997 제6조제4항
이스라엘	•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함.	의회기본법 제4조
이탈리아	• 선거구별 인구 및 공화국 총인구/의석수(618) 나눗셈의 몫과 나머지 값에 비례해 배분 ※ 상원) 총의석 315석 중 해외선거구 6석을 제외한 309석에 대해 의석 배분 하원) 총의석 630석 중 해외선거구 12석을 제외한 618석에 대해 의석 배분	헌법 제56,57조 상원선거법 제1조 하원선거법 제1조제2항
라트비아	• 선거일로부터 4개월 전 제공된 인구등록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거구별 인구통계에 비례해 계산식에 따라 의석을 배분함.	선거법 제8조
리투아니아	• 전국을 71개 선거구로 나누고 선거구 당 인구와 이전 선거 선거구 의석수, 행정구역을 고려하여 획정 • 평균인구수 편차 ±10%(0.9~1.1)를 초과하지 못함. • 한 선거구당 5,000명 이상 초과하지 못함.	선거법 제9조
룩셈부르크	• 선거구별 인구통계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	헌법 제51조 선거법 제117조
멕시코	• 인구통계에 따라 인구 100,000명~200,000명 당 1석을 배분 ※ 하원) 소선거구 300개, 비례대표 선거구 5개 상원) 권역별 비례대표 선거구 128개	헌법 제52조 연방선거법 제14조
노르웨이	• 19개 선거구가 선거법에 고정되어 있고 선거일 2년 전을 기준으로 선거구별 인구수에 선거구 면적(km²)×1.8의 값을 더하고, 생-라게(Saint-Large Method) 방식으로 나눈 그 몫을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 ※ 의석 배정 기준: [선거구 면적(km²)×1.8]+[선거 2년 전 인구] 분배값 산출	선거법 제11-2,11-3조
네덜란드	• 행정 관리 목적의 선거구가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 선거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단일 선거구	선거법 제E1조
뉴질랜드	• 인구에 비례해 선거구를 구분하며 기존 행정구역과, 문화,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함. (2019년 현재 64개의 일반 선거구, 7개의 마오리 선거구로 구성) • 마오리족은 일반 선거구와 마오리 선거구 중 선택이 가능함. 인구통계조사 이후 2개월의 선택 기간 이후에 마오리 선거구의 인구를 확정 • 평균인구수 편차 ±5%(1.1:1)을 초과하지 못함.	선거법 제35,36,76, 77,269조

구분 국가명	획정기준 및 인구편차	근거규정
폴란드	• 선거구당 7명 이상의 의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구수에 비례해 획정 •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함.	선거법 제201조
포르투갈	• 행정구역을 선거구로 고정하고 선거구 인구 비례에 따라 의석수를 조정	선거법 제12조
슬로바키아	• 선거법에 따라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함 • 인구 1,000명 당 1개 투표권역 설정	선거법 제8조제2항 선거법 제44조
슬로베니아	•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누고 선거구 당 11석을 배정 • 각 권역을 11개의 선거구로 나누어지며 1개 선거구에서 의원 1명을 선출 • 인구와 지리적, 문화적, 기타 특징 등을 고려 • 선거구는 의석당 선거권자 비율은 거의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름. • 이탈리아, 헝가리 소수자 집중거주지역을 위한 특별선거구 배정	선거법 제20조
터 키	• 선거법에 따라 하나의 행정구역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함 • 각 행정구역 당 1명의 의원정수를 배치하고 인구수에 비례하여 추가 의원정수 할당 • 의원정수 18명까지 1개 선거구로 설정하며 의원정수 19명 이상 35명 이하까지는 2개, 36명 이상부터 3개 선거구로 분할 • 추가 의원정수 할당을 위한 인구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선거구는 다른 선거구의 잔여 인구수를 합산하여 계산	선거기본법 제4조 의회선거법 제4조

56) 칠레 선거위원회
https://www.servel.cl/votaciones-y-escrutinios/ (검색일 2019.8.12.)

제4장

선거일과 선거인명부

제1절
선거일

❍ 각국의 정치문화와 선거제도에 따라 다양한데, 선거법 등으로 선거일을 정해놓는 국가(미국, 스웨덴, 스위스, 멕시코, 필리핀, 브라질)도 있고, 의회해산 등에 따라 그 시점부터 선거일을 결정하는 국가(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호주)로 나눌 수 있음.

1. 영 국

가. 선거소집령(1983년 국민대표법 제23조, 부칙 1.)

- 선거절차는 각 선거구 선거관리관(Returning Officer)[1]에게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선거소집령이 도달되었을 때 개시
- 선거소집령은 의회가 해산된 후 발부되며, 임기만료로 인한 의회해산 시에도 실시
  - 의회 해산이 결정되면 국왕은 대법관(Lord Chancellor)에게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의회를 소집하는 국왕포고에 국새(國璽)를 날인하고 선거소집령 발부를 명함.

나. 선거일 공고

- 공고기간: 선거관리관은 선거소집령을 수리한 날로부터 2일째 되는 날 오후 4시까지 선거공고를 해야 함.
- 공고내용: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제출 장소 및 일시, 선거일 등

1)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집행관 · 시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 스코틀랜드에서는 수석집행관 또는 행정관, 북아일랜드에서는 수석선거관이 선거구의 선거관리인이 되는데 각 선거구의 후보자등록, 투 · 개표 등 선거관리사무를 담당함.

다. 선거일

- 「고정임기법」에 따라 2015년 총선일자가 5월 7일로 확정되었으며, 이후 총선이 열리는 해 5월 첫째 목요일에 실시
  - 다만 의회 재적인원의 2/3 이상이 합의하거나, 총리 불신임안이 가결되고 14일 이내 신임안을 토대로 한 대안 정부가 들어서지 못할 경우 조기 총선 실시 가능[2)]
- 총선거는 의회해산 25일(공휴일 제외) 이후에 실시되며, 후보자 등록신청서 제출 마감일 후 19일째 되는 날에 모든 선거구에서 동시 실시(선거권자 등록 및 관리법 제14조)[3)]

<표 4-1> 영국 선거일정표

(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4)]

일정	시 기
• 새 의회 소집 공포 및 선거소집령 발부	D-25일
• 선거소집령 수령	D-24일
• 선거일 공표	D-22일 (오후 4시까지)
• 후보자 등록신청서 제출, 등록신청 철회, 선거사무장(election agents) 선임 마감	D-19일 (오후 4시까지)
• 선거권자 등록 마감	D-12일
• 우편투표 변경 및 조정신청 마감	D-11일 (오후 5시까지)
• 대리투표 신청 마감	D-6일
• 투표·개표사무원(polling and counting agents) 지명 마감	D-5일
• 선거일(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D-day

2) 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 Section 1,2

3) Electoral Registration and Administration Act 2013. Section 14

4)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Timetable for a UK Parliamentary general election.'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media/2184 (검색일 2019.9.18.)

2. 미 국

가. 개 요[5]

- 선거 시기, 장소 및 방법은 각 주의 주 의회에서 결정(헌법 제1장 제4조)

  ※ 하원의원은 매 짝수 해에 임기 2년의 하원의원 전원을 새로 선출하고, 상원의원은 매 짝수 해에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을 정원의 1/3 씩 선출하는데 그 주기는 다음과 같음.[6]

  - Class III: 2016년 34개주, Class II: 2018년 33개주, Class I: 2020년 33개주

  ※ 연방의회는 대통령 선거인단의 선임시기와 선거일을 결정할 수 있으며, 선거일은 미국 전역에서 같은 날이어야 함(헌법 제2장 제1조).

나. 선거일

- 연방법 제2편 제1장 제7조에 따라 각 주는 연방선거(대통령·부통령 및 상·하원의원) 선거일을 11월 첫 번째 월요일 다음 첫 번째 화요일로 함.[7]

  ※ 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1100조[8], 플로리다 주 선거법 제100.31조[9]

---

5) 미국 연방법령센터(OLRC). U.S Code. Title 2. Chapter 1.(연방법 제2편 의회 제1장 상·하원의원 선거) http://uscode.house.gov/browse/prelim@title2/chapter1&edition=prelim (검색일 2019.5.20.)

6) 3가지 선출형태는 1789년에 제비뽑기로 결정했으며, 2명의 상원선정 순서는 각 주별 연방정부에 가입당시 동전던지기로 결정했음.
https://en.wikipedia.org/wiki/Classes_of_United_States_Senators (검색일 2019.6.21.)

7) Legal Information Institute. U.S. Code. Title 2. The Congress. Chapter 1. Election of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Section 7. Time of election.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7 (검색일 2019.10.8.)

8) California Election Code. Division 1. Chapter 2. Election day.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Text.xhtml?lawCode=ELEC&division=1.&title=&part=&chapter=2.&article=(검색일 2019.6.18.)

9) Florida Statutes. Title IX. Chapter 100.
http://www.leg.state.fl.us/Statutes/index.cfm?App_mode=Display_Statute&Search_String=&URL=0100-0199/0100/Sections/0100.031.html (검색일 2019.6.18.)

3. 프랑스

-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60일 이내(선거법 제122조), 해산에 의한 총선거는 의회해산 후 20일 이후부터 40일 이내에 실시(헌법 제12조)
- 투표는 일요일에 1일간 실시(선거법 제54,55조)
- 제1차 투표는 선거를 공고하는 명령(decree)이 발표되는 날로부터 일곱 번째 일요일에 실시(선거법 제173조)
- 제2차 투표가 실시되는 경우는 제1차 투표가 실시된 다음 일요일에 실시(선거법 제56조)

  ※ 코르시카 하원의원선거는 지방의원의 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선거법 제364조)

4. 독 일

-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는 연방의회의 임기가 개시된 때로부터 최소 46개월 이후 48개월 이내에 실시되며, 연방하원의 해산에 의한 총선거는 해산 후 60일 이내에 실시(기본법 제39조)
- 선거일은 대통령이 결정하며 일요일로 정하거나 법정공휴일로 지정(기본법 제39조 및 선거법 제16조)

5. 일 본

가. 참의원 선거(공직선거법 제32조)

- 참의원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통상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실시

  ※ 선거일(선거기일)은 늦어도 17일 전에 공시(재보궐선거일 고시일도 동일)

나. 중의원 선거(공직선거법 제31조)

- 중의원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총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실시
- 중의원의 해산으로 인한 총선거는 해산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실시

※ 선거일(선거기일)은 늦어도 12일 전에 공시(재보궐선거일 고시일도 동일)

<표 4-2> 일본 선거일(선거기일)

선거의 종류	선거기일로 되어야 할 기간	기간의 기산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임기만료 전 30일 이내 ※ 중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 및 참의원의원의 통상선거를 해야 할 기간이 국회폐회중이거나 국회폐회일로부터 23일 이내에 걸친 경우에는 그 총선거 및 통상선거는 국회폐회일로부터 24일 이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함	임기만료 전일 (국회폐회일의 익일)
해산에 의한 선거	해산일로부터 40일 이내	해산일의 익일
기타 사유에 의한 선거	사유발생 후 40일 이내	선거사유발생일의 익일. 단, 소정기관의 통지를 요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위원회(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회)가 그 통지를 접수한 날

6. 스페인

가. 선거소집(선거법 제167조)

- 하원선거, 상원선거 또는 양원 동시선거의 소집은 국왕령에 의해 행하는데, 헌법 제99조제5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한 수상의 부서(副署)를 받은 선거소집령은 내각 심의를 거친 후, 수상이 제안하고 그 고유 권한으로 시행됨.

  ※ 헌법 제99조제5항: 첫 신임투표 후 2개월이 지났지만 의회의 신임을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국왕은 양원을 해산하고 하원의장의 부서를 얻어 새로 선거를 소집한다.
- 하원, 상원 또는 양원 모두 임기만료 전 해산한 경우 해산령 자체가 새로운 선거소집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헌법 제99조제5항에 의한 국회 해산 및 신규 선거소집령에 하원의장이 부서(副署)해야 함.

나. 선거소집의 일반요건(선거법 제42조)

- 임기 만료로 인한 경우
  - 해당 의회 임기만료 25일전에 발부되며 그 다음 날 “국가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주관보”에 게재되고 발행 당일 효력이 발생
  - 선거소집령에 명시되는 선거일은 선거소집일 후 54일째가 됨.
- 임기 만료 전 의회가 해산된 경우
  - 선거소집령은 발표일 다음날 “국가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주관보”에 게재되고 발행 당일 효력이 발생
  - 선거소집령에 명시되는 선거일은 선거소집일 후 54일째가 됨.

7. 스웨덴

- 9월의 둘째 주 일요일에 의회·광역의회·기초의회 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선거법 제1절 제3조).

  ※ 의회해산에 따른 선거는 정부가 선거일을 결정함.

8. 스위스

가. 개 요(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10조)

- 연방의회는 선거일에 관한 규정을 결정함.
  - 선거권자, 의회, 주 및 정당의 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선거 관련 업무 실행에 책임 있는 기관들의 여건도 고려해야 함.
  - 또한 달력(역년)과 교회역(曆)의 상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날짜의 충돌도 피해야 함.
- 각 주는 각 지역범위 내에서 투표를 관리하며, 필요한 규정을 정함.

나. 선거일(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19조)

- 총선거는 10월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일요일에 실시

9. 캐나다

가. 선거소집령(Writs of Election)(선거법 제57조)

- 선거관리청장[10]은 총독의 지시에 따라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의 선거관리관에게 선거소집령을 발부함. 이 선거소집령에는 발급 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36일 이후부터 최대 50일 이내에 선거일이 확정되어야 함.
- 총선거의 경우 선거소집령 발부 날짜 및 선거일은 모든 선거구에서 같음.
- 선거일은 마지막 총선거일로부터 4년 후 10월 세 번째 월요일에 실시되며, 선거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주의 화요일로 함.

  ※ 선거소집령의 철회

  - 총독은 선거관리청장이 홍수, 화재 또는 다른 재난의 이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한 선거구에 대해 선거소집령 철회를 명할 수 있음.
  - 총독이 선거소집령 철회를 명하면, 선거관리청장은 관보에 철회통지서를 공고하고 통지서 공고 후 3개월 이내에 선거가 개시되도록 새로운 선거소집령을 발부함.
  - 신규 선거소집령의 선거일은 그 선거소집령 발행 후 3개월을 넘길 수 없음.

나. 선거일 공고(선거법 제62조)

- 선거소집령 발부 후 4일 이내에 각 선거관리관이 서명하고 정해진 서식에 따라 선거공고문(Notice of Election)을 공지함.

---

10) 선거관리청장(Chief Electoral Officer): 하원에 의해 임명되고 차관급 상당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 선거사무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가짐.
선거관리관(Returning Office): 각 선거구에 1명씩 있는 선거관리의 집행·감독의 실질적 책임자
자세한 내용은 제1장 제2절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캐나다편, p.79 참조

- 선거공고문에는 후보자등록 마감기한, 선거일과 시간, 선거일 후 7일 이내 선거결과 공표 일시, 선거관리관의 사무소 주소를 기재함.

10. 호 주

가. 선거소집령(연방선거법 제151~154조)

- 선거소집령은 선거 실시를 위해 연방총독, 주총독 또는 상·하원 의장이 발부하는 문서로, 하원의원 임기만료 또는 의회 해산 선포 후 10일 이내에 발부
- 선거소집령에는 선거인명부 마감일, 후보자 등록일, 선거일, 선거결과 보고 기한 등을 지정
- 선거소집령의 발부시간은 발부된 날의 오후 6시로 간주하며, 이를 기점으로 후보자 등록일 등 주요 선거일정 기준일을 산정
- 상원의원선거 소집령은 선거가 실시될 주 또는 선거구의 선거공무원에게 발부되며, 하원의원선거 소집령은 선거위원에게 발부
- 선거소집령을 수신한 선거공무원과 선거위원은 적절성을 판단 후 문제가 없으면 선거구에서 발행하는 일간지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알려야 함.

나. 선거일

- 선거일은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23일 이후 31일 이내이어야 함(연방선거법 제157조).
  ※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소집령 발부일로부터 10일 이후 27일 이내이어야 함.
- 선거일은 토요일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날짜는 선거소집령에 명시(연방선거법 제152,158조)
- 하원의원 총선거의 경우에는 각 선거구가 모두 같은 날을 선거일로 지정(연방선거법 제160조)
  ※ 상원 또는 하원 총선거의 선거일로 지정된 날에는 총독의 승인 없이 주 또는 주 일부의 선거나 국민투표가 시행되어서는 안 되며, 노퍽섬 또는 노퍽섬 일부의 선거, 국민투표는 주지사의 승인 없이는 시행되어서는 안 됨(연방선거법 제394조).

<표 4-3> 호주 선거일정표(선거관리상의 일정)[11]

항목	최소(일)	최장(일)
의회 임기만료 및 해산: 첫 회기 후 3년이 지나면 임기가 만료 되지만, 총독이 더 빨리 해산을 명할 수 있음(헌법 제28조).		
선거 공고: 정해진 기간 없음.		
선거소집령 발부: 의회 임기만료 후 10일 이내 혹은 상원·하원의회 해산 선포 후 10일 이내 (헌법 제12,32조, 연방선거법 제151조)	0	10
선거인명부 마감: 선거소집령 발부 이후 7일 후 저녁 8시(연방선거법 제155조)	7	17
후보자 등록 마감: 선거소집령 발부 이후 10일에서 27일 사이 마감일 지정. 지정된 날 오전 12시에 마감(연방선거법 제156조)	10	37
후보자 선언: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후로부터 24시간 안에 공식적으로 후보자 발표 (연방선거법 제176조)	11	38
선거일: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23일에서 31일 사이(연방선거법 제157조)	33	68
선거소집령 반환: 발부일로부터 100일 이내(연방선거법 제159조)	-	110
의회 개원: 새롭게 구성된 의회는 선거소집령 제출일로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기를 시작해야 함(헌법 제5조)		140

11) 호주선거위원회(AEC). '연방선거일정표' http://www.aec.gov.au/Elections/australian-electoral-system/Electoral-Procedures/Federal-Election-Timetable.htm (검색일 2019.5.14.)

<표 4-4> OECD국가의 의회 선거소집

구분 국가명	선거일	선거간격	선거공고	근거규정
영 국	5월 첫째 목요일	최대 5년	• 의회가 해산되면 국왕이 선거소집령 발부(실질적으로 수상이 결정) • 의회해산 후 25일 이후 실시	고정임기법 제1,2조 1983년 국민대표법 제23조, 부칙 1
미 국	11월 첫 번째 화요일	2년	각 주의회에서 결정	연방법 제2편 제1장 제7조
프랑스	선거소집령이 발부되는 날로부터 일곱 번째 일요일	최대 5년	• 임기만료일 전 60일 이내 • 의회해산 후 20일 이후 40일 이내 실시	헌법 제12조 선거법 제122,173조
독 일	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	최대 4년	• 임기만료의 경우 임기가 개시된 때부터 46개월 이후 48개월 이내 • 의회해산 후 60일 이내 실시	기본법 제39조 선거법 제16조
일 본	선거일은 늦어도 12일 전에 공시	최대 4년	•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내 • 의회해산 후 40일 이내 실시	공직선거법 제31조
스페인	선거소집령 발부 후 54일이 되는 날	최대 4년	• 임기만료 25일 전에 국왕령으로 선거소집령 발부 • 의회해산 시 선거소집령 발부 후 54일째가 선거일이 됨.	선거법 제167조
스웨덴	9월 둘째 주 일요일	최대 4년	• 의회해산 시 정부가 선거일 결정	선거법 제1절 제3조
스위스	10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일요일	최대 4년	• 연방의회가 선거일 결정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10조
캐나다	10월 세 번째 월요일	최대 4년	• 선거소집령 발부 후 4일 이내에 선거일 공지	선거법 제57조
호 주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23일 이후 31일 이내 토요일	최대 3년	• 임기만료 또는 의회 해산 후 10일 이내에 선거소집령 발부	연방선거법 제151,157조
오스트리아	일요일 또는 공휴일	최대 5년	• 의회해산시 100일 이내 정부가 관보에 선거일 공표	헌법 제27조 선거법 제1조제2항
벨기에	임기만료 40일 이내 첫 번째 일요일	최대 5년	• 의회해산시 2달 이내 • 내무부는 선거일 2주전까지 관보에 선거일 공표	헌법 제46,65조 선거법 제105조
체 코	목요일, 금요일	최대 4년	• 선거일로부터 90일 이전에 대통령이 선거 소집	선거법 제1조
칠 레	11월 세 번째 일요일	최대 4년	-	헌법 제26조 선거법 제180조
덴마크	-	최대 4년	• 국왕(총리)이 선거소집령 발부 • 선거일 10일 전까지 경제내무부 장관이 별도 공고	헌법 제32조제2항 선거법 제21조
에스토니아	3월 첫 번째 일요일	최대 4년	• 의회해산시 대통령의 선거 소집 최소 20일 이후 최대 4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함	헌법 제60,78조

구분 국가명	선거일	선거간격	선거공고	근거규정
핀란드	3월 세 번째 일요일	최대 4년	• 의회해산시 대통령이 소집령을 발부하며 선거는 소집령 50일 이후 75일 이내 일요일에 실시 되어야 함	헌법 제24,26조 선거법 제106,107조
그리스	일요일	최대 4년	• 의회 해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선거법 제31,50조
헝가리	4월 또는 5월의 일요일 선거소집일로부터 70~90일 이내	최대 4년	• 대통령은 해산 명령과 동시에 선거일을 확정	헌법(STATE) 제2조제3항 선거절차법 제6,8조
아이슬란드	선거주기(electoral term-4년) 이내에 실시할 것을 규정 (일반적으로 목요일)	최대 4년	• 내무부가 선거일 공표	헌법 제45,79조 의회선거법 제20조
아일랜드	-	최대 5년	• 의회 해산 이후 의회 사무처장이 선거 소집령을 발부하며 환경부 장관이 선거 소집령 발부 18일 이후 25일 이내로 선거일을 결정하여 공표	선거법(1992) 제96조
이스라엘	2월 셋째 주 화요일	최대 4년	• 의회 해산일로부터 150일 이내	의회 기본법 제9,35조
이탈리아	내각 결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공고	최대 5년	• 임기만료일 70일 이내 실시 선거일 45일 전 관보에 공표	헌법 제60,61조 하원선거법 제12조
라트비아	10월 첫 번째 토요일	최대 4년	• 중앙선거위원회가 관보에 선거일 공고	헌법 제10,11조 선거법 제8조
리투아니아	10월 두 번째 일요일	최대 4년	• 대통령이 임기만료 6개월 전에 • 해산시 3개월 이내에 선거 공표	헌법 제55,57,58조 선거법 제6조
룩셈부르크	6월 첫 번째 일요일	최대 5년	• 의회 해산일로부터 90일 이내	헌법 제74조 선거법 제134조
멕시코	6월 첫 번째 일요일	최대 3년	-	헌법 제52,56조 연방선거법 제208조
노르웨이	9월 중 월요일	최대 4년	• 국왕이 선거일을 월요일로 고정 • 선거위원회가 선거일투표 장소시간을 공표	헌법 제54조 선거법 제9-1,9-2조, 제9-3조제3항
네덜란드	후보자등록일 43일 후 후보자 등록일은 1월 18일에서 24일 사이의 화요일	최대 4년	• 해산시 칙령(Royal decree)으로 선거일 결정	헌법 제54조 선거법 제C1,F1,F2조
뉴질랜드	일요일	최대 3년	• 총독은 해산 또는 임기만료 7일 이내에 선거소집령발부	헌법(1986) 제17조 선거법 제125,139조
폴란드	임기만료 30일 이내 공휴일	최대 4년	• 의회 임기만료 90일 이전에 대통령이 소집하고 5일 이내에 관보에 게시	선거법 제194조
포르투갈	9월 14일에서 10월 14일 사이	최대 4년	• 공화국 대통령이 선거일 60일 이전, 해산의 경우 55일 이전까지 선거일 공표	선거법 제19조
슬로바키아	토요일	최대 4년	-	선거법 제20조

구분 국가명	선거일	선거간격	선거공고	근거규정
슬로베니아	선거 소집일로부터 60일 이후 90일 이내	최대 4년	• 대통령이 임기만료 135일 이전부터 및 75일 이전까지 선거를 소집 • 해산시 선거는 소집일로부터 40일 이후	헌법 제14조 선거법 제12-15조
터 키	10월 두 번째 일요일	최대 5년	-	헌법 제77조 의회선거법 제5,6조

※ 의원내각제는 집권당의 총수가 의원해산을 결정하거나 의회 내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되었을 경우 또는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의회 총선거를 실시하게 됨. 반면, 대통령제는 의원 임기가 끝날 때 의회총선거를 실시함.

제2절
선거인명부

- 선거인명부는 각국의 선거법에서 그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고, 등록은 선거권자가 신청하는 경우(미국, 프랑스, 호주)와 선거관리기관(프랑스, 일본, 스페인, 스웨덴, 캐나다, 호주)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미국, 독일)에서 작성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음.
- 또한 선거 때마다 새로 명부를 작성하는 수시명부제(독일, 캐나다)와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정기등록명부제(영국), 한 번 작성으로 그 효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영구명부제(미국, 프랑스, 일본, 스페인, 스웨덴, 호주)로 구분

1. 영 국

가. 작성권자: 선거인명부등록관(Registration Officer)(1983년 국민대표법 제9조)

- 잉글랜드·웨일즈: 각 선거구에 1명씩 있으며, 수석행정관이 담당
- 스코틀랜드: 군 또는 시의 토지사정관
-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의 수석선거관

나. 작 성(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2)

- 개별선거등록제(Individual Electoral Registration: IER)[12)]
  - 선거인등록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등록시 생년월일과 국가보험번호(National Insurance Number)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함.

    ※ 영국 선거 역사상 최근 100년간 가장 큰 변화로 평가됨. 기존의 1가정 1인 대표등록제를 개별등록으로 전환. 잉글랜드 및 웨일즈는 2014년 6월 10일, 스코틀랜드는 2014년 9월 19일 이후 본격 시행됨.

---

12) Electoral Registration and Administration Act, 2013. Part 1, Section 1-13
내무부 홈페이지. 2015.8.12. 'Individual Electoral Registration(개별선거인등록제).'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individual-electoral-registration (검색일 2019.9.19.)

- 16세 이상의 모든 영국 시민은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혹은 등록양식을 다운받아 제출하는 형식으로 선거인등록을 완료할 수 있음.[13)]
  - 개별선거등록제 시행 전 이미 선거인등록을 마친 선거권자 가운데 이름, 거주지 등이 본인과 일치하는 경우는 추가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 선거인명부등록관은 미등록 선거권자에 한해 선거등록 양식이 첨부된 등록요청서를 반드시 송부해야 함.[14)]
  - 지방 선거등록기관(Local Electoral Registration Office)은 선거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준 경우 3단위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할 수 있음(등록을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면제 가능).[15)]
  - 한편 선거인명부등록관은 지방정부의 승인 하에 필요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된 명부 출력 14일 전에 관련 사실을 반드시 공지해야 함.[16)]
  - 그러나 전국적으로 명부양식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음.
- 작성방법 및 열람[17)]
  - 선거인명부 등록관은 개별선거등록제를 통해 집계된 선거인등록을 바탕으로 매년 12월 1일 전체선거인명부(full register)를 작성하고 이후 매달 수정본을 작성
  - 선거인명부 열람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며, 선거권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통해 연중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선거인명부 등록관이 받아 결정하며,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청회를 거쳐 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음.

---

13) 의회 홈페이지. 'How do I Register to vote?(어떻게 선거인등록을 하나요?)'
http://www.parliament.uk/get-involved/elections/register/ (검색일 2019.9.19.)

14)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Guidance for Electoral Registration Officers, Part 2-The registration framework(선거인등록 지침).' July 2018.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media/584 (검색일 2019.9.19.)

15) The Representation of the People(England and Wales) Regulation 2001. section 23(3)
내무부 홈페이지. 'The electoral register and the 'open register'.'
https://www.gov.uk/electoral-register/overview (검색일 2019.9.19.)
https://www.coventry.gov.uk/info/8/elections_and_voting/765/registering_to_vote (검색일 2019.9.19.)

16) https://www.ctp.org.uk/assets/x/51839 (검색일 2019.5.30.)

17) Cabinet Office and the Electoral Commission. Individual Electoral Registration Guidance: Part 4—Maintaining the register throughout the year (published September 2018; Revised June 2018), p.161.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i-am-a/electoral-administrator/running-electoral-registration (검색일 2019.9.19.)

다. 선거인등록자격(2000년 국민대표법 제1조제2항)

- 16세 이상(투표는 18세 이상만 가능)
- 영국 시민, 아일랜드, 영연방 시민 혹은 영국에 거주하는 유럽연합 시민
  - 선거인등록 신청일자에 해당 선거구 거주자
  - 북아일랜드의 경우, 등록신청일 3개월 이전부터 북아일랜드 거주자
- 북아일랜드는 17세 이상[18]
- 스코틀랜드는 지방선거·스코틀랜드 의회 선거의 경우 14세 이상(투표는 16세 이상만 가능)[19]

라. 부재자신고인명부[20](2000년 국민대표법 부칙 4, 선거권자 등록 및 관리법 16~19조)[21]

- 신청기한
  - 선거일 전 11일 오후 5시까지 선거인명부등록관에게 신청
  - 건강상 이유로 인한 경우는 선거일 전 6일 오후 5시까지
- 자격요건
  - 군복무자, 해외공관 근무자 등 복무투표자, 여행 등으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시각장애인, 입원·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업(선원, 트럭운전자 등)상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자, 해외투표자로 등록된 자
- 작성방법
  - 대리투표명부, 우편투표명부로 구분해 작성

---

18) 북아일랜드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eoni.org.uk/Register-To-Vote/Registration-FAQs#q18. (검색일 2019.4.23.)

19) 스코틀랜드 정부 홈페이지
https://www.mygov.scot/register-to-vote-scotland/ (검색일 2019.4.23.)

20)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Voting by proxy(대리투표).'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i-am-a/voter/how-cast-your-vote/voting-proxy (검색일 2019.5.3.)

21) Representation of people act 2000. Schedule 4
Electoral Registration and Administration Act 2013. Part 4. section 16~19

- 신체장애, 직업상 이유인 경우에는 확인자, 보증인의 서명 필요

2. 미 국

가. 명부의 성격

- 대부분의 주에서 선거인명부에 한번 등록되면 선거에서 장기간(2년 또는 4년으로 하는 주가 많음.) 기권하지 않는 한, 등록효력이 지속되는 영구명부제(40개 이상의 주에서 채택)와 신청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 일부의 주에서는 정기적으로 선거인등록을 실시하는 정기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음.

나. 연방선거를 위한 선거인등록 절차(선거인등록법 제20503조)[22]

- 주법에 의하여 마련된 선거인등록방법 외에 각 주는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연방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하기 위한 등록절차를 규정해야 함.
  - 자동차운전면허 신청과 동시에 하는 신청
  - 연방선거위원회에서 규정한 양식으로 우편신청
  - 주법에 따라서 신청자의 주소지에 따른 지정된 등록 장소 또는 법에 의하여 지정된 연방, 주, 같은 법 제20506조에 따라 지정된 민간의 사무소에 신청
- 선거인등록과 자동차운전면허의 동시 신청(선거인등록법 제20504조)
  - 주법에 따라 해당 주의 자동차운전면허 신청은 신청인이 선거인등록 신청에 서명을 거부하지 않는 한 연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인등록을 위해 신청한 것으로 봄.
  - 각 주는 자동차운전면허 신청서의 일부분에 연방선거를 위한 선거인등록 신청서식을 포함해야 함.
  - 주의 자동차국에 접수된 자동차운전면허 신청서에 작성된 선거인등록 부분은

22) 미국 연방법령센터(OLRC). U.S Code. Title 52. Subtitle II. Chapter 205.(연방법 제52편 투표와 선거 제205장 선거인등록
https://uscode.house.gov/view.xhtml?path=/prelim@title52/subtitle2/chapter205&edition=prelim (검색일 2019.7.31.)

그 접수일 후 10일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관에게 발송되어야 함.

- 우편등록(선거인등록법 제20505조)
  - 각 주는 연방선거에서 선거인등록을 위해 연방선거위원회가 규정한 우편 선거인등록 신청서식을 사용해야 함.
  - 주는 우편신청으로 주 관할에서 투표하도록 등록된 자, 이전에 주 관할에서 투표한 적이 없던 자는 법률로 직접 투표하도록 하는 요건을 두어야 함.

다. 선거인등록 기관(선거인등록법 제20506조)

- 각 주는 공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주내의 모든 사무소,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주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모든 사무소를 선거인등록 기관으로 지정해야 하고 주 또는 지방정부 사무소, 사무소의 동의하에 연방과 민간의 사무소도 선거인등록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선거인등록 기관의 임무
  - 우편 선거인등록 신청서식의 배부
  - 신청인이 거절하지 않는 한 선거인등록 신청 서식의 작성에 대한 지원
  - 해당 주의 선거관리관에게 발송하는 선거인등록 신청 서식의 접수
- 연방정부의 모든 부처와 다른 집행기관은 선거인명부 등록을 시행함에 있어 주정부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기타 비정부기관에게도 권장해야 함.
- 선거인등록 기관에 접수가 완료된 등록신청서는 그 접수일 후 10일 이내에 해당 주의 선거관리관에게 발송되어야 하고 만약 등록신청서가 등록마감일 5일 전까지 접수되었다면 그 신청은 접수일 후 5일 이내에 해당 주의 선거관리관에게 발송되어야 함.

라. 선거인등록 관리와 관련된 요건(선거인등록법 제20507조)

- 연방선거의 선거인등록 관리에 있어 각 주는
  - 모든 선거권이 있는 신청인이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등록을 보장해야 함.
  - 관련 선거관리관에게 그 신청 처리에 관련해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함.
  - 등록인의 요청, 주법에 따른 유죄의 선고 또는 정신적 장애의 경우를 제외하

고 공식적인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함.

- 공식적인 선거인명부에서 사망한 자 또는 주소를 옮긴 자 등 선거권이 없는 자의 이름을 합리적으로 삭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함.
- 선거권 요건, 허위 등록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법에 규정된 벌칙을 신청인에게 안내해야 하며, 특정 선거인이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등록 기관의 명칭을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연방선거를 위한 정확한 선거인명부의 관리를 위하여 주의 선거인명부 갱신 프로그램 또는 기타 활동은 통일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선거인명부 등록인의 투표 불참을 이유로 연방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지 말아야 함.
- 선거인명부 이름 삭제

  주는 다음의 경우 외에 등록인이 주소를 변경했음을 이유로 연방선거 선거인명부에서 등록인의 이름을 삭제해서는 안 됨.
  - 등록인이 등록된 등록관의 관할 외의 장소로 주소를 변경했음을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
  - 등록인이 현재의 주소에 관한 진술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는 경우 또는 통지일로부터 통지일 후에 실시된 두 번째의 연방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선거에서 투표한 적이 없거나 투표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경우
- 법원에서의 유죄판결

  지방법원에서 중죄로 판결된 경우 연방검사는 그 범죄자의 주소지 주 선거관리 책임자에게 범죄자의 이름, 판결일, 유죄판결 및 선고형량 등이 포함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주 별로 차이가 있으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

3. 프랑스

- 선거법 제1권제1편제2장 선거인명부 제9조 제43조에 규정

가. 개 요

- 선거인명부는 코뮌(Communes)[23]단위로 작성되며, 영구통합선거인명부제(선거법 제16조)

  ※ 영구통합명부제[24]가 도입됨에 따라 통합선거인명부는 국립통계경제연구소(l'Institute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INSEE)에서 관리하며 시장에게 선거인명부 작성·수정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국립통계경제연구소에 통지할 의무 부과

- 선거인명부등록은 의무적이고, 본인의 신청에 의하며 등록되며,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이중등록 될 수 없음(선거법 제9-11조).

  ※ 한편 점차 낮아지는 젊은 선거권자의 투표율을 향상 시키고자 1997년 프랑스는 18세 이상의 젊은이들이 자동으로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도록 법을 개정함.[25][26]

  - 「18세 개인의 선거인명부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법(제11,17조)을 개정
    - ·선거인명부 등록은 신청등록제이지만 위 법을 통해 직권명부제 성격을 일부 도입
    - ·예를 들면, 18세 개인의 선거인명부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18세가 되었을 때 선거인명부에 자동으로 등록되더라도, 이후에 이사 등을 통해 관할 행정구역이 바뀌게 되면 본인 스스로 새로운 관할 행정구역의 선거인명부에 등록해야 투표권을 가질 수 있음.

나. 등록요건

- 아래의 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에 등록됨(선거법 제11조).
  - 해당 코뮌에 실제의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코뮌에 6월 이상 거주하고

---

23) 프랑스의 가장 작은 단위의 지방행정단위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함.

24) 선거인명부 등록방식 개혁에 관한 2016년 8월 1일 법률 제2016-1048호 제2조제I항 및 제7조의 적용에 따른 통합선거인명부 관리를 허용하는 개인정보 자동처리의 신설에 관한 명령(Décret n° 2018-343 du 9 mai 2018 portant création du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permettant la gestion du répertoire électoral unique pris en application des dispositions du I de l'article 2 et de l'article 7 de la loi n° 2016-1048 du 1er août 2016 rénovant les modalités d'inscription sur les listes électorales)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CTS_SEQ=47973&AST_SEQ=105&ETC=6 (검색일 2019.6.5.)

25) Loi no 97-1027 du 10 novembre 1997 relative à l'inscription d'office des personnes âgées de dix-huit ans sur les listes électorales.
http://www.marlyleroi.fr/Download/Etat-civil/Inscription_electorale.pdf (검색일 2019.6.5.)

26) http://www.assemblee-nationale.fr/rap-info/i3314.asp (검색일 2019.6.5.)

있는 자 및 그들의 26세 이하 자녀 중 선거권을 해당 코뮌에서 행사하기를 원하는 자

- 해당 코뮌에 거주하지 않지만 등록을 신청하는 연도에 해당 코뮌의 직접세 납세자명부(lerole dune des contributions directs)에 계속하여 2회 이상 기재된 자 중에서 선거권을 해당 코뮌에서 행사하기를 원하는 자와 그의 배우자
- 공무원의 자격으로 해당 코뮌 의무적 거소(une residence abligatoire)를 갖는 자
- 명부확정 전까지 선거인명부 등록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 등

- 프랑스 국민으로서 국외에 거주하는 자 중 프랑스 영사관에 등록되어 있는 자와 군인은 신청에 의하여 아래의 코뮌 중 어느 하나에 등록할 수 있음(선거법 제12,13조).
  - 출생지인 코뮌, 최종 주소지가 있던 코뮌(6개월 이상 거주)
  -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출생하였거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되었던 코뮌
  - 직계비속 중 어느 한 사람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코뮌
- 프랑스 국민(재외국민 포함), 직업·계약군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경우에 그 배우자가 등록되어 있는 코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선거법 제14조).
- 해상생활을 하는 선원 등과 그 가족은 거주와 관계없이 시행중인 제(諸)법률에 규정된 기타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드-프랑스지방(Région Ilea-de-France) 등 일정한 지역에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선거법 제15조).

다.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수정

- 선거인명부 기재사항(선거법 제16조제2항)
  선거권자의 이름, 주소 또는 거소, 생년월일 및 출생지
- 선거인명부 작성(수정)기관(선거법 제16조)
  - 선거인명부는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가 작성한 영구통합선거인명부에서 코뮌별로 분류하여 코뮌 또는 그 대리인과 도지사 또는 부지사가 대표자로 구성되는 행정위원회에서 작성

- 시장은 영구통합선거인명부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국립통계경제연구소에 송부하며 거주지 변경사항 및 배정된 투표소 변경사항을 국립통계경제연구소에 통지
- 국립통계경제연구소는 통지받은 변경사항 등을 영구통합선거인명부에 반영한 후 이를 다시 시장에게 송부

- 등록(수정)방법(선거법 제17,18조)
  - 등록은 신고주의(선거권자의 청구에 의함)와 직권주의 병용
  -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늦어도 선거일 전 여섯 번째 금요일까지 등록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 시장은 선거인명부 등록요청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반대심의과정을 거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거인을 명부에서 삭제
  - 등록이나 삭제에 대한 결정은 2일 이내에 국립통계경제연구소에 송부되어 영구통합선거인명부에 반영
  - 투표구행정위원회가 실시한 가장 마지막 회의로부터 결정된 선거인의 등록 및 삭제일람표는 투표구행정위원회가 소집된 다음날 공개되며 선거인명부가 공개된 때로부터 7일까지 열람 가능(선거법 제19조, 제19-1조, 시행령 제13조)

    ※ 투표구행정위원회는 1년에 적어도 한 번 소집되며, 각 선거일 24일부터 21일 전에 소집됨(선거법 제19조).

- 이의신청(선거법 제20조)
  - 선거인, 도지사, 부지사는 행정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적법하게 작성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심법원(le tribunal d'instance)에 제소할 수 있음.
  - 예심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지만, 파기원(Cour de Cassation)에 상고 가능
  - 행정위원회에 의하여 삭제 또는 등재된 선거인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이 통지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 신청 가능(선거법 제18,32조)
  - 코뮌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모든 선거인은 특정 선거인의 등록이나 제명 또는 불법등록을 고발할 수 있음.

라. 수정기간 경과 후의 등록(선거법 제30,31조)

- 사유 및 대상
  - 등록기간이 만료된 후 전임되거나 퇴직한 공무원 및 그 공무원의 동거가족
  - 등록기간이 만료된 후 법정의무를 마치고 귀향한 군인, 징집면제되거나 동원해제된 군인, 전역 시 주소를 변경한 군인
  - 등록기간이 만료된 후 선거인의 연령요건을 충족하게 된 국민
  - 등록기간이 종료된 후 귀화한 국민
  -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박탈된 투표권을 회복한 국민
- 등록방법: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코뮌 사무소에 제출(선거법 제31조)
- 기　간: 선거일 10일 전까지
- 심사 및 결정: 시청이 심사하고 3일 내에 결정
- 처리(조치)
  - 결정 즉시 당사자 및 국립통계경제연구소에 통지
  - 국립통계경제연구소는 이를 해당 선거인이 과거에 등록된 선거인명부 소관 시청에 통지
  - 시장은 선거일 5일전에 해당 선거인명부 등록 결정을 공고

    ※ 착오로 선거인명부에서 누락, 삭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청구에 대하여는 선거일까지 예심법원의 판사가 판결

마. 선거인명부의 보존·열람 등

- 영구통합선거인명부는 국립통계경제연구소에서 관리(선거법 제16조)
- 선거인명부작성을 위한 용지의 인쇄비용은 국가가 부담(선거법 제29조)
- 선거인명부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금지(선거법 제37조)
- 선거인의 연령을 증명하기 위한 출생증명서는 모든 청구자에게 무료로 발행되며, 다만 그 용도는 선거인등록에 한정(선거법 제42조)

4. 독 일

- 연방선거법 제17조 및 연방선거법시행령 제14조~제24조에서 규정

가. 작 성

- 게마인데(Gemeinde) 행정청이 선거 시마다 투표구별로 직권으로 작성: 직권작성, 수시명부제(연방선거법 제17조, 연방선거법시행령 제14,16조)
- 명부작성기준일은 선거일 42일 전으로 정해져 있으며, 주소가 없거나 해당 선거구지역내에 계속적으로 거소를 가진 자와 직권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는 교도소와 이와 동등한 시설에 있는 자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선거권자는 선거일 전 21일까지 신청하면 등록될 수 있음(연방선거법시행령 제16,18조).
- 명부작성기준일 이후에 주민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선거일 전 15일까지 신고하면 추가 등록 가능

나. 등록요건(연방선거법시행령 제16조)

선거일 42일 전에 다음 각 호에 사항을 주민청에 신고한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됨.

- 거주지
- 선장이나 승무원으로서 고용, 급료 또는 교육을 이유로 연방국기를 게양할 권한이 있는 해양선박에 있는 사람(연방선거법 제12조제4항제1호)
- 독일연방공화국 내 선박대장에 등재된 내륙 선박(연방선거법 제12조제4항제2호)
- 교도소나 이에 준하는 시설(연방선거법 제12조제4항제3호)

다. 열람(연방선거법시행령 제21조)

- 행정청은 선거일 전 20일부터 16일 사이에 선거인명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명부열람기간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선거인명부를 비치
- 선거인명부를 전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경우 모니터(Data terminal)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라. 이의신청 등 불복제도와 명부의 수정(연방선거법시행령 제22,23조)

- 선거인명부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열람기간 중 행정청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선거일 10일 전까지 해당 신청인 또는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때 구제방법을 함께 안내해야 하고, 등록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 선거인명부의 수정이 후 선거인에게 투표통지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인정해야 함.
- 행정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선거구선거위원장에게 불복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불복신청을 받은 선거구선거위원장은 선거일 4일 전까지 결정하여야 하고 선거구선거위원장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선거심사절차(Wahlprüfungsverfahren)에 의하지 않는 한 다툴 수 없음.
-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개시 후에는 이의신청·불복신청의 경우에만 수정할 수 있으나,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수정 가능

마. 명부의 확정(연방선거법시행령 제24조)

- 선거인명부는 늦어도 선거일 전일까지 확정되어야 하나, 일반적으로 선거일 3일 전까지 행정청이 확정
- 또한 행정청은 명부의 폐쇄와 동시에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확정

5. 일 본

가. 선거인명부(공직선거법 제19조)

- 직권등록제(1969년 이전에는 직권등록제와 신고등록제 병용)에 따른 영구명부제를 채택함.
- 하나의 명부를 참의원 및 중의원,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 등 공직선거법이 정한 모든 선거에 활용함.

나. 명부의 작성(공직선거법 제19~28조)

- 선거인명부는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며, 선거인의 이름·주소·성별·생년월일 등을 기재함.
- 선거인명부는 해당 시·정·촌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만 18세 이상의 일본 국민(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으로서 주민표 작성일부터 계속하여 3개월 이상 해당 시·정·촌 등의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작성함.
-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등록자격이 있는 자를 상시 조사하여야 하며, 선거인명부에 등록하기 위한 정리를 해야 함(공직선거법시행령 제12조).
- 종전 매년 1회 정기 등록을 실시했으나 법 개정으로 매년 4회 정기등록을 실시하며,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일을 통상의 등록일 후로 변경할 수 있음.
  - 정기등록
    - ·등록기준일: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1일
    - ·선거인명부는 자기디스크로 작성할 수 있음.
  - 선거 시 등록
    -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선거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회)가 정하는 날 현재로 해당 시정촌선거인명부에 등록함.
  -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하고, 선거인명부 등록은 선거일공고일의 전일에 행하는 것이 관례임.
  - 선거인명부 등록 시 누락된 자를 구제하는 예외적인 조치로 보정등록제도가 있음.
- 선거인명부의 표시 및 말소
  -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가 선거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선거권을 상실하게 되거나 해당 시·정·촌의 구역 내에 주소를 두지 않게 된 경우에도 선거인명부의 등록을 즉시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명부상에 그 내용을 표시하고, 등록자격 회복 시 삭제함.
  - 사망 또는 일본 국적 상실시, 전출로 표시된 자가 해당 시·정·촌의 구역 내

에 주소를 두지 않은지 4개월이 경과된 경우,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을 이전한 경우, 오기된 경우에는 즉시 명부에서 등록을 말소함.

다. 이의신청 등(공직선거법 제24,25조)

- 선거인명부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해당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에 정기등록의 경우 등록이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5일간, 선거시등록의 경우 등록이 있은 날의 다음날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정당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 또는 관계인은 해당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해당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의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으나, 최고재판소에 상고 가능함.

  ※ 선거인명부의 등록내용의 오기·누락 등으로 인한 하자는 선거인명부에 관한 쟁송으로 이므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쟁송으로는 다툴 수 없지만, 등록이 전부무효인 경우에는 선거의 효력에 관한 쟁송으로 다툴 수 있음.

라. 통보 및 열람에 제공 등(공직선거법 제28조의2, 제29조)

- 시정촌장 및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주소 유무 및 기타 선거자격의 확인에 관한 자료를 상호 통보해야 함.
-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일의 공시 또는 공시일부터 선거일 후 5일까지를 제외하고는 선거인명부의 초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명부에 누락·오기 등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의 수정에 관하여 조사를 청구할 수 있음.

6. 스페인

- 선거법 제4장 선거인명부 제31조~제41조에서 규정

가. 선거인명부의 등록(선거법 제31~33조)

-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이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투표권을 상실하지 않은 사람을 등록
- 선거인명부는 스페인 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주자선거인명부와 해외거주자 및 부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외선거인명부로 구성되며,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동시 등록 불가능함.
-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모든 종류의 선거에 적용
- 해당 시청은 직권으로 시 주민의 등록절차를 관장하고, 해외공관 영사관은 직권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스페인 국민의 등록절차를 관장
- 선거인명부는 투표구별로 정리되는데 각 선거인이 한 투표구에 등록되며, 누구도 여러 투표구에 함께 등록되거나 한 투표구에 여러 번 등록될 수 없음.
- 선거인명부 등록은 의무사항으로 투표 시에는 선거인의 신분확인을 위해 이름과 성만 필요하지만, 이름과 성 및 신분증번호를 선거인명부 기타 정보란에 기입해야 함.
- 선거인이 선거인명부에 2회 이상 등록되어 있다면 가장 마지막 등록이 유효하고 같은 날짜에 등록이 되었다면 선거인에게 통지한 후 10일 이내에 택하도록 하는데, 불이행 시 주관기관이 직권으로 결정
- 선거인명부에 변동이 있을 시 선거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함.

나. 선거인명부의 작성(선거법 제34~37조)

- 선거인명부는 영구적이며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갱신
- 선거인명부를 매달 갱신하기위해 각 시청은 선거인명부관리국의 해당 도 출장소에 그 달에 주민대장 등록사항 관련 변동내역을 선거인명부 관리국 지침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통해 매월 마지막 근무일 전날까지 보내야 함.
- 해외에 살고 있는 비거주 선거인들의 명부갱신을 위해 영사관은 시청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해당지역 내에 사는 스페인 국민의 등록 및 삭제, 주소지 변경 또는 새로운 선거구 내 임명에 관한 신청 등 선거인명부 관리국에 보고해야 할 변동사항을 처리해야 함.

- 선거인명부관리국은 매월 말일까지 통보된 정보로 매월 정보갱신 작업을 해야 함.

다. 선거인명부의 열람(선거법 제38,41조)

- 선거인명부관리국의 도(道) 출장소는 갱신된 선거인명부 등록 사항을 일반인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 경우 열람은 시청, 영사관 또는 해당 도 출장소에서 가능
-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거인명부관리국의 도 출장소에 해야 하며, 도 출장소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함.
- 선거인명부 등록에 필요한 선거인들의 인적사항, 선거인명부에 대한 사항 등은 국왕령으로 정함.
- 사법적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인명부에 명시된 선거인의 신상정보 공개는 금지됨.
- 각 후보자의 대리인은 후보자 확정 후 2일부터 투표소 별로 정리된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명부 사본을 정보처리에 필요한 지원용으로 교부받을 수 있으며 선거법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지역선거위원회는 관할 지역의 선거인명부 사본을 항상 사용가능하도록 보관해야 함.

라. 선거인명부의 수정(선거법 제39,40조)

- 각 선거에서 선거소집일 기준 두 달 전 1일 현재 마감된 명부를 확정된 선거인명부로 함.
- 시청과 영사관은 선거소집일 후 6일부터 8일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구역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함.
- 위 기간 내에 누구든지 자신의 개인정보 오류 수정, 같은 선거구안의 주소 변경 또는 선거구 내 선거인의 누락에 관하여 선거인명부관리국 도 출장소, 시청 또는 영사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선거인명부관리국의 도 출장소는 접수된 이의제기에 대하여 3일 이내 결정하고 해당 기관에 수정을 지시함. 이 경우 선거소집일로부터 17일째 되는 날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하고 그 결정사항을 이의제기자 및 해당 시청과 영사관에 통보해야 함.

- 선거인명부관리국의 결정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1심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판결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고되어야 하고, 이 판결은 최종적인 사법절차임.
- 선거인명부관리국은 모든 선거인들에게 갱신된 선거인명부 등록사항과 해당 투표구 및 투표소에 대한 정보가 수록된 카드를 송달함.

7. 스웨덴

가. 선거인명부의 작성(선거법 제5절 제1조)

- 중앙선거청은 선거가 실시되는 때 각 투표구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함.
- 「국세청 주민등록업무 관련 개인정보 사용에 관한 법(2001:182)」에 따른 주민등록정보와 「부동산등록법(2000:224)」에 의한 부동산등록부상 선거일 30일 전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

나. 선거인명부의 등록(선거법 제5절 제2,4조)

- 선거일 30일전 현재 주민등록정보와 부동산등록정보에 따른 선거인(제5절 제1조에 따른 선거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구의 선거인명부에 등록함.
- 국내에 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스웨덴 시민권자는 주민등록이 중단된 후 10년간 선거인명부에 등재하되, 그 이후에는 본인이 국세청에 문서상으로 자신의 주소를 신고한 경우에만 매 10년 단위로 선거인명부에 등록함.
- 스웨덴 내 일정 거주단위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선거인 또는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선거인은 가장 최근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선거구의 선거인명부에 등재함.

다. 선거인명부의 수정

- 선거인명부에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었거나 오류로 명부에서 제외되었다고 여겨지는 경우 늦어도 선거일 12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정을 요구해야 함(선거법 제5

절 제6조).

- 선거일 30일 전 이후에 발생된 사실에 대해서는 명부 수정요구 불가
- 지방선거청이 서면상의 요구 등을 검토함.

- 수정된 명부는 기초자치구의 선거위원회로 최대한 빨리 송부함(선거법 제5절 제7조).
  - 수정 사실이 선거위원회에 송부되기 전에 선거인명부에 반영될 수 없는 경우 중앙선거청 또는 지방선거청은 선거위원회가 직접 수정 사실을 등재하도록 함.

라. 투표카드(voting card, 투표안내문)의 작성·송부

- 투표카드를 작성해서 보냄(선거법 제5절 제8조).
  -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내에 거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선거인의 경우는 요청한 경우에만 투표카드를 작성함.
- 투표카드의 내용(선거법 제5절 제9조)
  - 선거인명부에 있는 선거인의 이름과 일련번호
  - 어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 선거인이 갈 투표소 및 해당 투표소 운영시간
- 투표카드 추가 요청(선거법 제5절 제10조)
  - 필요할 경우 선거인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추가로 투표카드를 받을 수 있음.
  - 추가 투표카드는 중앙선거청, 지방선거청, 재외공관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음.

8. 스위스

가. 선거인명부 등록(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4조제1,2항)

- 정치적 주소지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야 하는데, 그 등록과 말소는 공식적으로 행해져야 함.

※ 정치적 주소지(Politischer Wohnsitz, Political domicile)(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3조)

-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 거주하고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코뮌을 의미함.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출신 코뮌에서 투표
- 출신증명서 이외의 신분증명서(주거증명서, 임시증명서 등)를 제시하는 자는 출신증명서가 제시된 코뮌의 명부에 자신이 등록되어 있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정치적 주소지를 취득

- 선거일 5일 전까지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투표 가능

나. 선거인명부 열람(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4조제3항)

- 투표할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음.

9. 캐나다

가.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관리(선거법 제44조)

- 선거인명부는 선거관리청장이 관리함.
-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됨.
- 선거인명부 등재여부는 각 선거인의 선택사항임.
- 선거인명부는 선거소집령 발행 이후 예비선거인명부 → 수정선거인명부 → 공식선거인명부 3단계로 작성되고, 선거일에는 공식선거인명부(Official list of electors)를 사용(선거법 제93조~제107조)
- 선거관리청장은 선거일 후 최종선거인명부(Final list of electors)를 작성해야 함(선거법 제109조).

나. 예비선거인명부(Preliminary Lists of Electors)(선거법 제93~95조)

- 선거관리청장은 선거소집령 발행 이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선거구의 각 투표구의 예비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다른 모든 정보와 함께 선거구의 선거관리

관에게 송부해야 함.

※ 예비선거인명부는 선거인의 이름과 주소 및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포함해야 하며, 선거인의 주소별이나, 선거인의 이름 알파벳순으로 배열해야 함.

- 명부작성
  - 명부작성은 전적으로 선거관리청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각 선거 사이에 주기적으로 예비선거인명부를 갱신함.
  - 갱신은 주와 지구 선거인명부, 운전면허청, 통계청, 국세청, 이민국 등의 자료를 통해 이루어짐.[27]
  - 각 선거관리관은 선거구의 예비선거인명부를 송부 받은 때에 명부를 요청한 해당 선거구의 각 후보자에게 예비선거인명부 사본 1부와 전자적 파일 사본 1부를 교부해야 함(후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 4부까지 교부할 수 있음).
- 각 선거관리관은 선거일 전 24일까지 예비선거인명부에 있는 각 선거인에게 등록확인통지서(notice of confirmation of registration)를 발송
- 등록확인통지서의 내용
  - 선거인의 투표소 주소와 접근편의시설 보유 여부
  - 선거일 투표시간
  - 선거정보 문의 전화번호
  - 사전투표날짜, 투표시간 및 장소
  - 투표를 하기 위해 신분 및 거주지 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

다. 수정선거인명부(Revised Lists of Electors)(선거법 제96~105조)

- 선거구의 선거관리관과 부선거관리관, 선거사무원은 해당 선거구의 예비선거인명부의 추가, 수정 또는 삭제를 위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관과 부선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수정할 수 있음.
  - 명부에 누락된 선거인 추가
  - 명부에 있는 선거인에 관한 정보 수정

27) 캐나다 선거관리청 홈페이지 http://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res&dir=pub/ecdocs/rom/vII/ch-7&document=ch-7&lang=e#7.1 (검색일 2019.5.21.)

- 명부에 잘못 기재된 자의 명단 삭제(사망, 해당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

※ 선거관리청장은 예비선거인명부 수정개시일을 확정해야 하며, 수정기간은 선거일 6일전 오후 6시까지임. 각 선거관리관은 명부수정기간 중에 적어도 선거일 전 5일 전까지 수정선거인명부에 추가된 선거인에게 등록확인통지서를 송부해야 함.

- 각 선거관리관은 선거일 전 11일에 해당 선거구의 수정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함.
- 선거관리청장은 선거일 5일 전에 수정선거인명부를 관보에 게재해야 함.

라. 공식선거인명부(Official Lists of Electors)(선거법 제106,107조)

- 각 선거관리관은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선거일에 사용할 각 투표소의 공식선거인명부를 준비함.
- 각 선거관리관은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관리를 위해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인의 출생연도가 표기된 공식선거인명부 또는 수정선거인명부를 교부해야 함.
- 각 선거관리관은 각 후보자와 등록 정당에게 선거인의 출생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수정선거인명부 및 공식선거인명부 사본 1부와 전자적 파일 사본 1부를 각각 교부해야 함.

마. 최종선거인명부(Final Lists of Electors)(선거법 제109조)

- 선거관리청장은 선거일 후 지체 없이 각 선거구의 최종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함.
- 선거관리청장은 각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나 당선자에게 최종선거인명부의 사본 1부과 전산 파일 사본 1부를 각각 교부해야 함.

※ 선거인명부의 사본을 교부 받은 정당, 후보자, 당선자는 후원금 모금과 당원모집, 선거인과의 연락을 위해 이를 사용할 수 있음. 단, 예비선거인명부의 사본, 수정선거인명부의 사본을 교부받은 후보자는 선거기간 중 후원금 모금 및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선거법 제110조).

10. 호 주

가. 선거인명부 작성[28)]

- 선거위원회가 각 주 또는 준주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다른

정부기관의 데이터나 전화, 메일, 방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선거인명부를 점검·갱신(연방선거법 제90조)

- 주 또는 준주는 각 선거구별로 선거인명부를 분할함.
- 선거인명부는 선거인의 성, 세례명 또는 이름과 거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

나. 선거인명부 등록

- 만 18세 이상인 호주 시민(또는 1984년 1월 26일 현재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영국 시민)은 선거인명부에 등록될 자격이 있음(연방선거법 제93조).
  - 정신이상자, 모반죄 또는 반역죄를 선고받고 사면되지 아니한 자, 3년 이상의 형을 받고 복역 중인 자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될 수 없음.
- 선거위원은 허위 또는 모욕적 이름, 알파벳으로 표기되지 않는 이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선거인명부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93조의1).
- 16세가 되면 연방정부 선거를 위해 등록할 수 있으며, 17세에는 주정부 선거를 위해 등록할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98,100조).
  - 그러나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투표할 수 없음.
- 「호주 시민권법(Australian Citizenship Act, 2007)」에 따라 호주 시민권자가 되기 위하여 신청한 자는 임시선거인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호주 시민권자가 될 것임을 통지받은 사람은 선거인명부에 등록할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99조의1,2).
- 선거인명부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등록신청, 주소지 이전 등 선거인명부 등록의무를 위반할 경우 1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연방선거법 제101조), 등록신청 처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공무원은 10 페널티 유닛(1,600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됨(연방선거법 제103조).
  - 이사하거나 이름을 변경할 때마다 새로운 등록서식을 작성하여 매번 등록을 갱신해야 함(연방선거법 99조).
- 선거위원회에서는 다른 정부기관 자료로 얻게 된 정보를 통해 적법한 선거권자

---

28) 호주선거위원회(AEC).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한 내용 참고(연방, 주, 준주의 모든 공무원과 거주하는 사람들은 선거인등록부 작성, 관리, 수정을 위해 선거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http://www.aec.gov.au/footer/Privacy.htm (검색일 2019.7.31.)

를 선거인명부에 직접 등록하고 갱신할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103조의1,2).

- 이는 선거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으로 이후 선거권자는 선거위원회로부터 자세한 변경사항이 적힌 서신을 받게 되며, 선거권자는 28일 이내에 직접 등록 및 수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음.
- 선거인명부와 관련된 선거구에서 실시하는 선거의 선거인명부 마감일 오후 8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까지는 선거인명부의 갱신 또는 이전, 등록조치를 해서는 안 됨.
-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전자통신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 1999)」에 정의된 전자적 통신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음.

다. 선거인명부 열람 및 정보공유

- 선거구의 선거인명부 사본은 통상적 근무시간 중 언제든지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선거인명부(이름과 주소 포함)는 선거위원회 사무소에서 볼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90조의1).
- 선거위원회가 선거인명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특정인 및 특정단체는 다음과 같음(연방선거법 제90조의2).
  - 선거위원회가 적절하다고 결정한 개인 또는 단체
  - 주 및 준주정부 선거관리기관
  - 상·하원의원, 등록된 정당, 하원선거 후보자
  - 승인된 의료연구 및 공중보건 심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

    ※ 제공하는 정보 및 정보제공 조건은 대상별로 차이가 있음.
- 제공받은 정보는 허가된 목적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사안별로 벌금이 부과됨(연방선거법 제91조의1).

라. 이의제기 신청

- 선거구에 등록된 자는 다른 사람의 등록에 대해 선거위원에게 수수료 2달러를 납부하고 이의를 제기(private objection)할 수 있고, 선거위원도 선거인명부 등록에 이의를 제기(official objection)할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114조)

- 이의제기 신청 및 통지는 규정된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선거위원은 이의제기에 대해 규정된 서식에 따라 이의제기자, 이의근거 등이 명시된 통지서를 이의신청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함(연방선거법 제115,116조).
  - 선거위원은 해당 이의가 사소하거나 남용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의신청 대상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해당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선거위원은 이의신청대상자의 답변을 수령하거나 이의제기 통지를 한 날로부터 20일 후 지체 없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함(연방선거법 제118조).
  -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선거위원은 조사를 할 수 있음.
  - 이의제기가 타당하면 선거인명부에서 선거인의 이름을 삭제하고, 이의제기자에게 수수료 2호주달러를 돌려줌.
  - 선거위원은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이의신청자와 이의신청대상자에게 규정된 형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함.
- 이의제기 신청자가 결정에 불복할 경우 선거위원회에 내부심사(Internal review)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Administrative Appeal Tribunal)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120,121조).

<표 4-5> 각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관

구분	국가명
중앙정부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 (24)	안도라, 아르메니아, 불가리아, 콩고공화국, 키프로스, 적도기니,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란, 쿠웨이트,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미크로네시아연합, 몽골, 모로코, 나우루, 노르웨이, 포르투갈, 세네갈, 세르비아,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시리아, 투발루
지역정부 (Regional Government) (1)	인도네시아
지방정부 (Local Government Authority) (28)	알제리, 오스트리아, 벨기에, 중국, 코모로, 체코, 덴마크, 프랑스, 가이아나, 가봉,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한국, 라오스,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니우에, 폴란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스위스, 영국, 베트남
선거관리기관 (Election Management Body) (124)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호주,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리즈,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미얀마,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칠레,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피지, 감비아, 조지아, 가나, 그리스, 그레나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인도, 이라크,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케냐, 키리바시, 키르기스스탄,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몰타, 마셜군도, 모리타니, 모리셔스, 멕시코, 몰도바,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오만, 파키스탄, 팔라우, 팔레스타인,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루마니아, 르완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사모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솔로몬군도,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수단, 수리남, 에스토니아, 스웨덴,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동티모르, 토고,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간다,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기타 (11)	바레인, 벨라루스, 쿡제도, 쿠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모나코, 산마리노, 스페인, 우즈베키스탄, 미국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VR004 (검색일 2019.5.1.)

<표 4-6> OECD국가의 선거인명부 작성 현황

국가명	등록 방법	작성 형식	담당기관	근거규정
영 국	신청등록제 (개별선거등록제)	정기등록명부제 (1년마다 작성)	선거등록관	1983년 국민대표법 제9조, 부칙 2
미 국	정기 신청등록제 (대부분의 주)	영구명부제 (대부분의 주)	주공공사무소	선거인등록법 제20503조
프랑스	신청등록제	영구명부제	투표구행정위원회	선거법 제11,16조
독 일	직권등록제	수시명부제	게마인데 행정청	연방선거법 제17조
일 본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3·6·9·12월 작성)	시·정·촌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제19조
스페인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매월 갱신)	선거인명부관리국	선거법 제31~33조
스웨덴	직권등록제	수시명부제 (선거일 30일 전 기준으로 작성)	중앙선거청	선거법 제5절 제1조
스위스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주 행정당국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4조
캐나다	신청등록제	수시명부제	선거관리청장	선거법 제44조
호 주	신청등록제	영구명부제	선거위원회	연방선거법 제90조
오스트리아	직권등록제	수시명부제	지방자치단체	선거법 제23,34조
벨기에	직권등록제	수시명부제	지방자치단체	선거법 제10,15조
체 코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지방자치단체(시 당국)	선거법 제5,6조
칠 레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선거위원회	선거인등록법 제3,5조
덴마크	직권등록제	수시명부제	지방자치단체	선거법 제18조제1,2항, 제19조
에스토니아	직권등록제	수시명부제	인구등록관리국 (내무부산하)	선거법 제22조
핀란드	직권 등록제	수시명부제	인구등록관리국 (재정부산하)	선거법 제18조
그리스	직권등록제	정기등록명부제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선거법 제9,10조
헝가리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선거위원회	선거절차법 제76조제2항, 제82조
아이슬란드	직권등록제	수시명부제	지방자치단체	의회선거법 제22조
아일랜드	신청등록제[29]	정기등록명부제 (1년마다 작성)	지방자치단체	선거법(1992) 제8,13조

국가명	등록 방법	작성 형식	담당기관	근거규정
이스라엘	신청등록제	수시명부제	내무부	선거법 제26조제A,D항
이탈리아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지방자치단체	선거인등록법 제3조
라트비아	직권등록제	수시명부제	중앙선거위원회	선거인등록법 제3,7,8,9조
리투아니아	직권등록제	수시명부제	선거위원회	선거법 제26조
룩셈부르크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지방자치단체	선거법 제7,11,14조
멕시코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1년마다 작성)	연방선거위원회	연방선거법 제132,133,138조
노르웨이	직권등록제	수시명부제	내무부	선거법 제2-3조
네덜란드	직권등록제	수시명부제	지방자치단체	선거법 제D1,D2조
뉴질랜드	신청등록제	정기등록명부제 (1년마다 갱신)	선거등록관	선거법 제22,82,89D조
폴란드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선거위원회	선거법 제18,19조
포르투갈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내무부 관리국	선거인등록법 제1,11조
슬로바키아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지방자치단체	선거법 제9,11조
슬로베니아	직권등록제	영구명부제	지방자치단체와 내무부	선거인등록법 제4,22조
터 키	직권등록제	정기등록명부제 (1년마다 작성)	최고선거위원회 선거권자등록사무국	선거기본법 제28,33조

29) 아일랜드 시민정보포털 '선거권자 등록'
https://www.citizensinformation.ie/en/government_in_ireland/elections_and_referenda/voting/registering_to_vote.html#l82302 (검색일 2019.10.24.)

제5장

후보자

제1절
후보자

- 선거법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시기 및 과정에 대해 규정한 국가로 독일이 유일하며, 다른 국가의 경우 정당 당헌 및 당규에 따라 당내경선을 실시하거나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함.
- 후보자 등록은 각국의 선거관리 방식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청하되,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후보자 본인의 승낙서 등의 서류를 제출

1. 정당의 후보자 추천

1. 영 국

-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각 정당의 내부 사항으로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음.[1)]
- 중앙당에서 정한 규칙을 준수하되, 후보자 선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지구당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후보자 선정의 구체적 결정 권한은 해당 선거구 후보자선정위원회가 보유하고 중앙당은 일종의 후견인 역할 수행

1)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Candidate guide-UK Parliamentary general election part2b/6(총선용 후보자 가이드).’ p.11.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media/4262 (검색일 2019.5.11.)

가. 보수당[2)]

- 선거본부(Conservative Campaign Headquarters: CCHQ)
  - 총선 주기에 맞추어 새로운 적격후보자 목록(Approved List: A-List)을 운영·관리함으로써 지역구에 적합한 인물을 충원하는 방식을 채택
  - 지구당(Local Constituency Association)에 후보자 선정과 관련한 구체적 사안을 일임. 그러나 중앙당이 선정 과정을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때로 적격후보자 목록 제출을 요구
  - 2000년대 이후 의회평가위원회(Parliamentary Assessment Board: PAB)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구당의 공천 권한을 약화하는 대신 적격 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본부의 역할을 강화.[3)] 이에 따라 중앙당과 지구당 간 공천권을 놓고 갈등이 발생하기도 함.[4)]
- 중앙당 적격후보자 목록 등재
  - 만 18세 이상 영국 시민 혹은 영연방(Commonwealth) 시민으로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운데 후보자명부에 기재되길 원하는 자들은 중앙당 후보자팀(Candidates' Team)을 통해 의사전달
  - 후보자 팀에 의해 선출된 자들은 해당 지역에서 열리는 포럼에 참석해 당 관계자들과 비공식 면담
  - 포럼 참석 후 정치 경력 등을 내용으로 한 지원서를 작성하고 추천서(5년 이상 지인) 3부를 함께 제출
  - 이 가운데 선거본부에 의해 선택된 후보자들은 심사비 £250를 제출하고 의회평가위원회에 출석
  - 5시간가량 소요되는 의회평가위원회에서 예비 후보자들은 적격심사 인터뷰

---

2) Conservatives(보수당). 'Guide to becoming a Conservative party candidate(보수당 후보자용 가이드).' file:///C:/Users/user/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MYPGYMQR/CCHQ_Guide%20to%20becoming%20a%20Candidate.pdf (검색일 2019.5.11.)

3) Rhys Williams and Akash Paun. 2011.11. 'Party People: How do – and how should - British political parties select their parliamentary candidates?' p.15~17. https://www.instituteforgovernment.org.uk/events/party-people-how-should-political-parties-select-their-parliamentary-candidates (검색일 2019.5.11.)

4) The Guardian. Jessica Elgot. 2018.2.11. 'Tory HQ accused of plot to stop local parties picking candidates.'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18/feb/11/tory-hq-accused-of-plot-to-stop-local-parties-picking-candidates (검색일 2019.5.11)

에 참가. 해당 위원회에 출석한 현직 의원 및 당 중진급 인사들이 의사소통 능력 및 지적·사회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의회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사람은 적격후보자명단(Approved List of Parliamentary Candidates)에 오름.

- 지구당 선출과정
  - 적격후보자로 선정된 자들은 후보자를 모집 중인 지역구를 선택할 수 있고, 중앙당은 각 지역구에 일정한 수의 적격후보자 명단을 송부
  - 지구당(Local Constituency Associations) 산하 후보자선정위원회(selection committee)는 적격후보자들을 인터뷰 하고 지역을 대표할 최종 후보자 선출

나. 노동당[5)]

- 중앙당 승인
  - 공천 후보자로서의 최소 자격은 △해당 지역구 내 거주 △12개월 이상 당원 직분을 유지한 자 등이며, 전국집행위원회(National Executive Committee: NEC)가 승인할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현역의원이 자동으로 재신임을 받는 것은 아님. 재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트리거 투표(trigger ballot) 과정을 거쳐야 하며 지역구에서 과반수의 신임을 얻는 경우 재출마 가능. 그렇지 못한 현역의원은 최종후보군에 오른 기타 후보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지역구 내 경선(full selection contest)을 거쳐야 함.
  - 전국집행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자명부 확정
  - 2017년 총선의 경우와 같이, 의회해산에 따른 조기선거가 진행될 경우 지구당 선출과정을 생략하고 전국집행위원회가 직권으로 후보자들을 선출할 수 있음.[6)]
- 지구당 선출과정
  - 후보로 선출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역의 노조지회, 사회단체, 지구당

---

5) Labour Party Rule Book(노동당 규정집). ‘Chapter 5. Selection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candidates for elected public office(공직후보자 선정절차).’ 2018. p.25. file:///C:/Users/user/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7JBK1AGK/LabourRuleBook2018.pdf (검색일 2019.5.11)

6) Dan Bloom. ‘This is how Labour is selecting its candidates for the 2017 general election.’ 2017.4.21. Mirror. https://www.mirror.co.uk/news/politics/how-labour-selecting-candidates-2017-10265227 (검색일 2019.5.11.)

(Constituency Labour Party: CLP) 등 관련 기관의 지명을 받아야 함.

- 지구당 최종후보자 선정 위원회(Shortlisting Committee)는 지역구 전 당원을 대상으로 최종후보자 명단을 공표. 1인 1표 원칙(one member one vote)에 따라 투표권을 보유한 당원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후보자 선출
- 지구당 공천 과정에서 제기되는 불만 사항들은 전국집행위원회가 지명한 자에 의해 처리될 수 있으며, 최종결정은 전국집행위원회가 담당
- 선출된 후보자는 중앙당 전국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후보 자격을 최종적으로 획득

2. 미 국

가. 헌법적 규정 및 연방 법령과의 관계[7)]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헌법적 근거와 연방 제도적 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며 주차원에서 코커스, 예비선거를 거쳐 최종 (전국)전당대회에서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출함.

※ 국가, 주 또는 지방 선거의 후보자가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격 있는 선거권자로부터 적정한 서명을 받는다면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 가능함(특정 요건은 관할구역에 따라 다양함)

7) Wikipedia. ‘Primaries in the United States’ https://en.wikipedia.org/wiki/Primary_election#Primaries_in_the_Unit ed_States (검색일 2019.6.23.)

<표 5-1> 미국의 후보자 추천 방식[8)]

코커스 (caucus)	정당 간부회의에서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건국 초기부터 1830년까지 이 방식이 적용 지역 당원모임, 전당대회에 참여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한 대의원 선출
전당대회 (convention)	코커스 방식 대신 사용되는 방법으로 당원들이 모여서 후보자를 지명하고 순차적으로 군(county) 대의원 대회, 주(state)대의원대회에서 전국대의원 대회 대의원 지명
예비선거 (primary election)	당원 또는 일반 선거권자의 비밀투표로 당의 후보를 지명하는데 선거절차는 당규약이 아니라 주법에 의하여 결정되며 예비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에 동일하게 적용됨. 주의 비밀투표를 통하여 전국전당대회에 참여할 지역 대의원 선출
전국전당대회 (national convention)	4년마다 코커스와 예비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의원과 정당의 주요당원, 고위공직자로 구성된 비서약 대의원들이 모여 최종 (부)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하고 정당 쟁점 발표와 당규 및 목표 수정 및 공개 등 정당업무를 수행

※ 현재 전당대회라는 의미가 코커스로 표현되기도 함.
※ 예비선거는 정당규약이 아니라 주법에 의해 규율되므로 주정부가 선거일을 정하고 투표장소와 관리 인력을 제공하며 등록 및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등 모든 선거과정을 관리

나. 추천(nomination)방식의 변천

- 합중국 성립 시부터 1830년경까지는 코커스(caucus) 방식이었으나 극히 소수의 간부가 후보자를 결정하는데 따른 비민주성, 정실이나 부정이 개입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 1830년경부터 20세기 초까지는 대의원대회(convention) 방식이었으나 대의원 할당이나 임명 방법이 당 위원회에 위임되어 간부회 방식과 같이 종종 부정한 수단이 개입되었음.
- 1903년 위스콘신 주에서 처음으로 예비선거 방식을 주 전역에서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한 이후 각 주에서 널리 채택되어 현재는 많은 주가 예비선거를 통하여 후보자를 지명하고 있음.

다. 예비선거의 종류[9)]

- 폐쇄형: 등록된 소속 정당의 당원만이 해당 정당의 예비선거에 참가 자격이

8) US Elections.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primary, a caucus and a convention?’ https://uselections.com/QandA/primary-caucus-convention.shtml (검색일 2019.6.23.)

9) NCSL. ‘State Primary Election types.’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primary-types.aspx (검색일 2019.10.2.) http://www.ncsl.org/documents/Elections/Primary_Types_Table_2017.pdf (검색일 2019.10.2.)

부여됨.

- 부분 폐쇄형: 주가 법으로 예비선거의 규정을 정하면서 정당에게 당원이 아닌 선거권자 또는 예비선거에 등록하지 않는 당원에게 예비선거의 선거권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게 함.
- 부분 개방형: 지역의 선거권자는 당원 여부에 상관없이 어느 정당의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예비선거에 참여하면 그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간주되어 당원으로 바로 등록됨.
- 무당파 개방형: 당적이 없는 선거권자에게만 정당에 상관없이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특정 정당에 가입된 선거권자는 다른 정당의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 공개형: 소속 정당에 대한 구분 없이 지역의 모든 선거권자는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음.
- 톱 2형(블랑켓 예비선거): 정당 구분 없이 모든 후보가 함께 예비비선거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한 1, 2위 후보자가 본선 진출하는 방식. 따라서 선거권자는 당적에 상관없이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음.

<표 5-2> 미국 주별 예비선거 유형

유형	주 명
폐쇄형 (Closed)	델라웨어, 메릴랜드, 뉴욕, 플로리다, 네바다, 오레곤, 켄터기, 뉴멕시코, 펜실베이니아
부분 폐쇄형 (Partially closed)	알라스카, 오클라호마, 코넷티컷, 사우스 다코다, 아이다호, 유타, 노스 캐롤라이나
부분 개방형 (Partially Open)	일리노이, 오하이오, 인디아나, 테네시, 아이오와, 와이오밍
무당파 개방형 (Open to Unaffiliated Voters)	애리조나, 메인, 뉴저지, 콜로라도, 매사추세츠, 로드 아일랜드, 캔자스, 뉴 헴프셔, 웨스트 버지니아
공개형 (Open)	알라바마, 미시간, 몬테나, 버몬트, 알칸소, 미네소타, 노스 다코타, 버지니아, 조지아, 미시시피, 사우스 캐롤라이나, 위스콘신, 하와이, 미주리, 텍사스
톱 2형(Top-Two)	캘리포니아, 네브라스카, 루이지에나, 워싱턴

라. 당내경선 낙선후보자 총선거 출마금지

- 주요정당의 공직출마를 위한 후보자로서 소속정당에서 추천을 받지 못한 자는 다른 정당의 후보자 또는 무소속 후보자로서 해당 총선거에서 같은 직으로 출마할 수 없음(오리건 주 선거법 제249.048조).[10]
- 정당은 공직선거의 정당 측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예비 선거를 실시해야 하고, 이 예비선거에서 추천된 자만이 그 정당의 후보자가 될 수 있음(메릴랜드 주 선거법 제8-202조).[11]

참조 5-1 미국 인디애나 주의 예비선거[12]

- 예비선거 대상: 자격 있는 정당(현재는 공화당, 민주당)
  - 지난 선거에서 최소 10% 이상의 득표를 한 정당(선거법 3-10-1-2)
- 후보자 등록
  - 대통령 후보와 상원의원 후보의 경우 인디애나 주의 최소 4,500명의 추천서명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중 각 선거구에서 최소 500명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고, 청원자의 이름과 서명, 주소 등이 기재되어야 함(선거법 3-8-3-2, 3-8-2-8)
  - 후보자는 추천서를 예비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후보자 등록일 첫날부터 예비선거일 91일전까지 기간에 카운티 선거인등록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함(선거법 3-8-2-10).
- 선거일
  - 예비선거는 일반선거가 있는 5월 첫 번째 월요일이 지난 화요일에 실시(선거법 3-10-1-3)
- 선거인명부(선거법 3-10-1-6)
  - 작성주체: 주 정부
  - 본선거(General Election)와 동일한 선거인명부를 사용하며, 다만 예비선거시 선거권자가 지지표명한 정당을 선거인명부에 추후 기재
- 투표절차(선거법 3-10-1-11)
  - 선거인명부(공직선거의 선거인명부와 동일) → (신분확인) → 선거권자가 지지 정당 표명(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의 정당 선택을 기록) → 해당 정당의 투표용지 교부(해당 정당의 후보자만 기입됨) → 투표
- 선거운동 방법 제한
  - 본 선거(General Election)와 동일한 제한규정 적용
  - 제한사례: 투표소 안이나 근처에서 선거운동 제한
- 선거관리비용(선거법 3-5-3-1)[13]
  - 주정부는 자격 있는 정당들(현재 공화당, 민주당)의 예비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공자금 사용함.
  - 투표용지 인쇄, 투표종사원의 임금 지불 등

---

10) Oregon Election laws. Chapter 249. Candidates. https://sos.oregon.gov/elections/Pages/laws-rules.aspx (검색일 2019.10.2.)

11) Martland Election laws. Title 8. Subtitle 2. Primary Elections. https://codes.findlaw.com/md/election-law/#!tid=NC00277209B6911DB9BCF9DAC28345A2A (검색일 2019.10.2.)

12) Indiana. ‘Election Division’

3. 프랑스

가. 사회당(Partie Socialiste)[14]

- 성별평등원칙적용(당헌 5.1.1)
- 공직선거후보자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선거구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전체당원의 투표에 의해 당원이 선출함(당헌 5.1.3).
- 후보자공천의 정족수는 소속당원의 1/5임(당헌 5.1.4).
-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조건은 등록일자 기준으로 당비와 의원부담금을 납부 완료해야 하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상·하원 의원 후보자는 3년 연속 당적보유자이어야 하며, 후보자 비준 전에 정관과 당규준수 서약을 함(당헌 2.6.5, 5.1.5).
- 도당총회에서 당원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 후보자는 도당위원회가, 상·하원 의원후보자는 중앙위원회 혹은 위임받은 집행부가 각각 비준함(당헌 5.1.8).
- 상·하원 의장 후보자와 파리시장후보자는 집행부가 사전검증을 실시함(당헌 5.2.1).
- 지방의회 의장후보는 도당 당원의 직접투표로 공천하고, 도지사 후보는 해당지방 당원전체의 직접투표로 공천함(당헌 5.2.5, 5.2.6).

나. 공화주의자당(Les Republicains)[15]

- 지역·전국구선거 전에 중앙위원회는 정치국의 제안에 따라 공천위원회를 지명함.

---

http://www.in.gov/sos/elections/ (검색일 2019.7.11.)
Indiana Election Code. Title3. Article 8. Candidates.
https://codes.findlaw.com/in/title-3-elections/#!tid=N45FDED407FE111DB8132CD13D2280436 (검색일 2019.10.2.)

13) 주정부는 주 전역의 예비 선거 및 예비 선거비용을 지불함.
NCSL. 'Election Costs: What States Pay.'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election-costs.aspx (검색일 2019.7.11.)

14) 사회당(PS) 당헌 및 당규
http://www.parti-socialiste.fr/wp-content/uploads/2016/01/Statuts-et-re%CC%80glement-2015-PS.pdf (검색일 2019.5.28.)

15) 공화주의자당(LR) 당헌
https://www.republicains.fr/sites/default/files/2019-01/2018-07-05-lR-reglement-interieur.pdf (검색일 2019.5.30.)

- 위원은 총재와 부총재, 사무총장과 선거담당 부사무총장, 의회(상·하원과 유럽의회) 의장들과 원내대표들, 청년대표 등임(당헌 40-1).

- 중앙공천위원회는 공천과 선거후보자에 대한 당의 지지 준비를 허락하며 정치국에 보고서를 제출함(당헌 40-2).
- 중앙공천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 지명후보자명단의 동의를 구함(당헌 40-3).
  - 공천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의결함. 정족수 미달 시 3일 이내에 공천위원회를 재소집하며 정족수와 상관없이 의결함.
- 중앙공천위원회는 후보공천 또는 당의 후보자 지지를 당원들에게 물을 수 있음(당헌 40-3, 당규 27-2).
- 중앙공천위원회는 지방자차단체공천후보자명단, 하원의원공천후보자명단, 상원의원공천후보자명단, 유럽의회공천후보자 명단을 중앙위원회에 비준을 받음(당헌 44).

다. 전진하는 공화국당(La République En Marche)[16]

- 공직후보자공천위원회 구성(당헌 23-1)
  - 지역·전국구선거의 후보자는 공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함.
  - 공천위원회 구성: 중앙당 집행부는 각 선거 전에 당대표가 추천하는 당원 중에 공천위원회 규모를 정하고 위원을 임명함. 단, 당대표는 공천위원이 될 수 없음.
  - 집행부는 위원회 구성에 남녀동등원칙, 비선출직공직당원의 참여, 공천대상 당원배제 등 보장함. 당원의 동등한 수, 선출직 공직에 당선되지 않은 당원의 참여 보장
- 공직후보자공천위원회의 권한(당헌 23-2)
  - 위원회는 도·지방선거와 상·하원의원선거와 유럽의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정함. 특히, 비례대표제 후보자명부 작성 시 남녀동등원칙을 준수해야 함.

16) 전진하는 공화국당(LREM) 당헌
https://storage.googleapis.com/en-marche-fr/Site%20Media/STATUTS_LA_REPUBLIQUE_EN_MARCHE.pdf (검색일 2019.5.30.)

라. 유럽환경 녹색당(Europe Ecologie Les Verts)[17]

- 선출직 공직후보자추천(당헌 제36조)
  - 모든 선거의 후보자지명은 예외 없이 적법한 당원들의 투표로 정함.
  - 대통령선거후보자는 열린 경선으로 선출함. 2002년 대통령선거에 경선을 도입한 이후 2007년, 2012년, 2017년 모두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함.
  - 어떤 경우에도 이전 투표결과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음.
  - 녹색당에 합류 희망자들을 이끄는 후보자에게 특별한 배려를 함.
  - 비례대표명부의 남녀동등원칙을 준수함.
- 비례대표후보명부(당규 III-2-1)[18]
  - 남녀동등이 보장된 비례대표후보자명부를 작성함.
  - 명부의 후보자를 교체하거나 순서를 바꾸어 투표할 수 있으나 남녀동등원칙을 준수해야 함.
- 과반수 단기투표 후보자 추천(당규 III-2-3)
  - 지역·전국구 선거의 후보자 추천을 위해 당원은 2개의 투표용지를 기표함. 후보자명부와 자신의 지역구 후보자에 대해 투표함.
  - 득표율에 따라 남녀동등원칙이 적용된 후보자를 추천함.
- 기초단체선거 후보자 추천(당규 III-2-1)
  - 당원 5명 이상인 지구당은 해당 선거후보자를 투표로 추천함.
  - 파리·마르세유·리옹, 대도시 시장 후보는 해당 도시 기초단체지역구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실시할 수 있음.
  - 비례대표로 당선 되는 후보자명부와 명부대표는 별도의 투표로 결정함.
  - 주민 40,000명 이상의 선거구의 후보자는 남녀동등원칙을 준수해야 함.
  - 후보자를 결정하는 지역당위원회 구성도 남녀동등원칙을 준수해야 함.

---

17) 유럽환경 녹색당(Les Verts) 당헌
https://eelv.fr/wp-content/uploads/2011/11/Statuts-Nationaux-V4-juin-2016-1.pdf (검색일 2019.5.30.)

18) 유럽환경 녹색당(Les Verts) 당규
https://eelv.fr/wp-content/uploads/2011/11/RI-national-v18-juillet-2016.pdf (검색일 2019.5.30.)

4. 독 일

가. 개 요

- 연방선거법 제21조, 연방선거법 시행령 제39조에 각 당의 선출과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
- 선출기관
  - 당원총회 또는 이를 위한 특별 또는 일반당대의원회의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 자만이 후보자로 지명될 수 있음.
  - 정당법, 연방의회선거법 및 각각의 주의회 선거법 규정에 따라 각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는 자는 당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비당원이 관여할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 각 정당의 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는 각 정당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있으며, 선거위원회 등에 위탁하는 경우는 없음.

    ※ 후보자는 자신과 자신의 정견에 관해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함.

    ※ 당대의원회의의 대의원선출, 당원총회 또는 당대의원회의의 소집과 정족수 및 후보자선출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정당이 당규로 정함.

    ※ 수개의 선거구를 포함하는 크라이스(Kreis, 구·시·군) 또는 크라이스 프라이에 슈타트(Kreisfreier Stadt, 특별소도시)의 경계를 넘지 아니하는 한 다수의 선거구에 대하여 후보자를 공동의 당원총회 또는 당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음.

<표 5-3> 독일 정당 내 후보자 선출기관

당원총회	특별대의원회	일반대의원회
집회시에 그 선거구에서 연방하원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정당원의 총회	특별대의원회는 당원총회에 의하여 당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회의	당규(정당법 제6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차기선거를 위하여 당원총회에서 결정된 회의

- 선출시기
  - 후보자 선출은 연방하원의 임기개시 후 32개월 이후에, 당대의원 선출은 연방하원의 임기개시 29개월 이후에 실시할 수 있음.
- 이의제기
  - 주(州)당의 의장단 또는 주(州)당 없는 경우 그 선거구가 속한 주(州)당의 지역

당 의장단 또는 이를 위하여 당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기관은 당원총회 또는 의원회의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이의가 제기되면 재투표를 실시하고, 재투표 결과가 최종적 효력을 가짐).

- 정당 내부에서의 후보자 선출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정당 내부에 설치된 중재위원회에서 해결됨.
- 각 정당은 정당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당 내의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당규에 정하고 있음.

● 명부제출

- 회의장소와 시간, 소집의 형식, 출석한 당원의 수와 투표의 결과 등이 기록된 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사항과 주명부의 순위를 확정한 당원총회나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기록한 회의록 정본(주명부 후보자순위의 확정이 비밀표결에 의하여 결정된 것임을 입증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을 해당 선거위원회에 제출

나. 기민당(당규 제20조)[19]

● 후보자 선출과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의원 총회에 참석할 대의원을 선출할 권한이 있는 자는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당원으로 제한됨.

●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절차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 규정되어야 함.

- 각 선거구 범위가 기민당 지역조직의 범위와 일치하는 경우, 다수의 선거구가 하나의 기민당 지역조직의 범위와 일치하는 경우, 하나의 선거구가 다수의 기민당 지역조직 범위와 일치하거나 또는 다수의 기민당 지역조직의 일부를 포괄하는 경우 등에 있어 각각의 후보자선출의 유형과 방법
- 의결권, 투표의 유형과 방법, 필요한 득표수, 후보자선출을 목적으로 하는 당원집회 내지는 대의원총회의 의사록 및 입후보자 명단에 대한 심사, 승인 및 제출 등에 관한 의사록의 작성과 승인 등에 대한 규정
- 공직선거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집회의 유형에 대한 규정

---

19) Statutenbroschüre der CDU Deutschlands. 2019. CDU-Bundesgeschäftsstelle. https://www.bundeswahlleiter.de/dam/jcr/e6a33704-5398-47c3-9d08-f44df304f4f1/cdu.pdf (검색일 2019.10.18.)

- 선거구 대의원총회의 대의원 선출방식
- 선거구 및 주(州) 단위의 후보자 선출을 목적으로 하는 당원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의 소집과 진행에 관한 사항
-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각각 기준이 되는 당원의 숫자를 계산하는 기준일자의 확정에 관한 사항

- 연방 대의원총회의 소집, 의결, 진행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들과 후보자 선출 절차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민당의 당규와 기민당의 전당대회 업무규정상의 규정들이 준용됨.
- 기민당의 공직선거후보자에 여성 비율은 최소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함(기민당 당규 제15조).

다. 사민당

- 후보자들 및 지역단체 대표와 의회 선거를 위한 후보들의 정당 내 지명절차는 3개월 이전에 정당에 공개적으로 알려져야 함(사민당 선거규정 제2조).[20]
- 공직선거후보의 선출을 위한 대표 선거는 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함(사민당 선거규정 제3조제1항).
- 남성과 여성이 각각 주 의회와 지방의회에 적어도 40% 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기관의 측면에서 당규에 맞는 조치를 마련해야 함(사민당 선거규정 제4조).
  - 정당명부의 지명은 성별을 교차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대표후보자부터 시작하여 여성, 남성의 순으로 번갈아가며 명부가 작성되고, 매 5번째 순서는 여성이나 남성 어느 쪽이라도 가능함.
- 연방의회 및 주의회 후보자는 행정구역조직 내지는 정당 지도부와의 협의 하에 관할 지역 조직이 선출함(사민당 조직규정 제12조제5항).[21]

---

20) 사민당(SPD) 선거규정(Wahlordnung). ORGANISATIONSSTATUT WAHLORDNUNG SCHIEDSORDNUNG FINANZORDNUNG
DER SOZIALDEMOKRATISCHEN PARTEI DEUTSCHLANDS. SPD-Parteivorstand. 2017.
https://www.spd.de/fileadmin/Dokumente/Parteiorganisation/SPD_OrgaStatut_2018.pdf (검색일 2019.10.18.)

21) 사민당(SPD) 조직규정(Organisationsstatut)
DER SOZIALDEMOKRATISCHEN PARTEI DEUTSCHLANDS. SPD-Parteivorstand. 2017.
https://www.spd.de/fileadmin/Dokumente/Parteiorganisation/SPD_OrgaStatut_2018.pdf (검색일 2019.10.18.)

- 선거법과 당규에 반하지 않는 한, 각각이 관할 지도부들은 후보자 선출 절차, 예를 들어 그 기한, 대표자 선출 또는 전체 회의의 원칙 적용 등에 대한 지침을 발령할 수 있음(사민당 조직규정 제12조제7항).
  - 후보자 선출 절차에 대해 해당되는 다수의 조직들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 지도부가 선거법 및 당규의 범위 내에서 이를 정함.

5. 일 본

- 정당 및 선거구에 따라서 다양한 후보자 추천방법이 있음.
- 1992년의 일본신당이 최초로 후보자 공모제를 실시한 이래로 1995년 참의원선거 및 1996년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 및 신진당이 공모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였으며, 1998년에 결성된 (신)민주당이 1999년에 차기 중의원선거에 맞추어 전국공모를 실시함으로써 본격화됨.
- 2000년대 들어서 일본의 주요 정당은 공모 및 당원투표를 통한 후보자 추천 제도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음.[22)]

가. 자유민주당[23)24)]

- 오랜 기간, 의원 후원회를 유지하는 것을 중시하여 그 결과 2·3세 세습의원이 다수 탄생함.
- 새로운 인재의 획득 필요성 증가 및 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기존의 후보자 추천과정의 고정화가 자민당에 문제가 됨.
-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모제를 실시. 2005년 중의원 선거 때에는 긴급전국공모를 실시함.
- 특히 2010년 참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추천방법에 극적인 변화가 관찰됨.

---

22) 堤英教. 2012. ‘候補者選定過程の開放と政党組織’ 選挙研究. 28(1) p.5~20.

23) 자유민주당 홈페이지 https://www.jimin.jp/aboutus/organization/ (검색일 2019.5.30.)

24) 金東煥. 2014. ‘候補者指名方法における開放と自民党地方組織’ 政策科学. 21(2) p.81~98.

- 22개 선거구에서 공모 및 당원투표에 의한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짐.

- 당 본부가 주도적으로 후보자를 공모하여, 전혀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던 민간인을 후보자로 하는 경우도 있음.
  - 연설회 등에서 후보자의 생각을 듣고 최종적으로는 당내선거로 후보자 일원화를 하는 경우가 있음(이는 후보자 추천과정을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음).
- 선거대책본부의 아래에 있는 선거대책위원회가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준비절차 및 국정선거 방침 등을 정함.
  - 전통적으로 지방조직이 강하기 때문에 현지부연합회의 추천에 의한 상향식 공모가 대부분임.

나. 입헌민주당[25]

- 공모를 기본으로 함.
  - 이력서와 소논문을 제출하면 면접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
  - (참의원의 경우) 전국 단위와 도·도·부·현 단위에서 결정
- 당 본부 주도의 하향식 공모가 일반적임.

다. 일본 이신노카이(日本維新の会)[26]

- 후보자의 공인, 추천 등은 상임임원회의 승인을 바탕으로 대표가 결정함.
- 중의원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명부의 등재순위, 참의원의원선거에서의 비례대표선거의 명부기재순위는 상임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표가 결정함.
- 대표는 상임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인, 추천의 결정권한의 일부를 도·도·부·현 총지부에 위임할 수 있음.
- 대표는 공인, 추천 등의 결정 및 전항에 규정한 위임의 결정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임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소 등 결정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위 절차에서 상임임원회를 개최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상임임원회에서 사전승인을 얻은 결재순서에 따라 대표가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내용에 대해서는 최근

25) 입헌민주당 홈페이지 https://cdp-japan.jp/information/koubo_20190301 (검색일 2019.5.30.)
26) 일본 이신노카이 홈페이지. https://o-ishin.jp/about/agreement/ (검색일 2019.5.30.)

에 행해진 상임임원회에서 간사장이 보고해야 함.

6. 스페인

- 정당의 후보자 선출 절차에 대한 법 규정은 없으며 후보자 추천은 정당의 내부적인 사항임.

가. 사회주의노동자당(PSOE: Partido Socialista Obrero Español)[27]

-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당내경선을 시행해오다 2015년부터 주요 선거(스페인 정부 총리, 자치주지사, 인구 5만 이상의 도지사 및 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 실시
  ※ 이외의 선거는 당원을 대상으로 당내경선을 실시
- 당 대표 선출 경선과 별개로 총리 후보자 선출 당내경선을 실시함.
- 투표는 자유투표, 직접투표, 비밀투표, 2차 투표(결선투표)를 원칙으로 함.
- 완전국민경선제 절차
  - 당연합위원회에서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함.
  - 완전국민경선 선거권자: 당원 및 연합당원, 당지지자 외에 선거당일 만 16세 이상이 되는 스페인 합법적 거주자가 사전 등록 시 투표권을 가짐.
  - 후보자 자격 요건: 당원 및 연합당원, 비당원의 경우 당의 원칙에 부합하는 업적을 가진 자는 당지역위원회나 중앙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희망 여부를 알림.
  - 최소한의 지정된 당내 추천을 얻어야 후보자 자격을 갖춤.
    ※ 총리 후보자의 경우 전체 당원의 1% 이상의 추천, 자치주지사 후보자의 경우 전체 당원의 2% 이상의 추천, 인구 5만 이상 지역 도지사 후보자 및 시장 후보자의 경우 전체 당원의 5% 이상의 추천이 필요
  - 연합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후, 후보자의 자격 조건을 검토하여 당내경선에 오를 최종 후보를 공고함.

---

27) 사회주의노동자당 홈페이지. 2018.2. 사회주의노동자당 정관 및 정책. http://www.psoe.es/media-content/2018/02/ReglamentoCF17022018.pdf (검색일 2019.4.20.)

- 총리 후보 선거의 경우 당내경선 선거운동은 최소 15일, 자치주지사 후보 선거의 경우 7~15일로 정함.
- 우편을 통한 부재자 투표, 전자투표가 가능하며 선거일 10일 전까지 홈페이지나 지정투표 장소에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함.
- 투표 종료 24시간 이내에 연합위원회는 개표 결과를 발표함.
- 한 명의 후보자가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하는 경우 1차 투표로 후보자를 결정. 2명 이상의 후보자 모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 최다 득표를 한 2명의 후보자 중 2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를 최종 후보자로 선출
- 1, 2차 투표에서 2명 이상의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7일 이내에 새로 투표를 시행함. 동수의 득표가 반복될 경우 추첨을 통해 2차 투표 대상 후보자나 최종 후보자를 결정함.

나. 인민당(PP: Partido Popular)[28]

- 2017년 이전에는 당대표 및 당의회의 지명에 의한 후보자 추천을 했으나, 2017년부터 2차 투표제(결선투표제)를 통한 당내경선으로 후보자 선출함.
- 2차 투표제 절차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내경선 공고일 이후 7~15일 사이에 당조직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함.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최소 100인의 당원 추천을 받아야 함(중복 추천 불가).
  - 2명 이상의 후보자가 등록하면 조직위원회는 1주일 이내에 후보자를 공고해야 하며, 21일 이내로 당내경선 선거운동 기간의 시작을 알려야 함.
  - 조직위원회의 공고 이후 15일 이내에 모든 당원은 투표인단으로 등록할 수 있음.
  - 투표인단으로 등록한 당원은 선거일 48시간 전까지 '대표투표인단'에 지원할 수 있음.
  - 사전 등록한 일반 투표인단은 선거일 1차 투표에서 대표선거인단 선출과 후

28) 인민당 홈페이지. 2017.2 인민당 정관 및 정책.
https://www.pp.es/sites/default/files/documentos/ponencia_1_politica_y_estatutos.pdf (검색일 2019.4.20.)
2017년 도입된 '2차 투표제' 프리젠테이션 자료
http://www.pp.es/sites/default/files/documentos/presentacion_ponencia.pdf (검색일 2019.4.20.)

보자 선출에 대한 2회의 비밀 투표를 진행함.

- 1차 투표의 득표수로 지역 대표투표인단을 선출함.
- 1차 투표에서 10%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가 2차 투표의 후보자가 됨.
-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거나, 과반수 이상의 선거구(총 60선거구)에서 득표하거나, 2위 후보와의 격차가 15점 이상인 경우 단일 후보로 결정됨.
- 1차 투표에서 선출된 후보자들은 당의회 및 대표 투표인단이 투표권을 가지는 2차 투표의 후보자가 되며, 2차 투표에서 선출된 당 대표는 자동적으로 스페인 정부 총리 후보자가 됨.

다. 시민당(C´s: Ciudadanos)[29]

- 2018년부터 일부 선거에만 당내경선을 실시
- 당내경선으로 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
  - 유럽연합 의회 선거
  - 중앙 선거
  - 마드리드, 사라고사, 발렌시아, 무르시아(4개의 자치주 선거)

    ※ 이외의 지역 선거에서는 당내경선 없이 당위원회에서 후보를 지명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최소 9개월 이상의 당적을 유지해야 하고, 공직을 수행하지 않아야 함.
- 당내경선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당비가 밀리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음.

라. 포데모스(PODEMOS)[30]

- 당대표 선출 선거와 총리 후보자 선출 선거를 별도로 실시하며, 두 선거 모두 완전국민경선제로 실시하여 모든 국민이 참여 가능

---

29) 시민당 홈페이지. 시민당 정관 및 정책.
https://www.ciudadanos-cs.org/var/public/sections/page-estatutos/estatutos.pdf?__v=370_0 (검색일 2019.4.20.)

30) 포데모스당 홈페이지. 2019 예비선거제 참여 방법에 대한 일반 안내문.
https://primarias2019.podemos.info/wp-content/uploads/ProtocoloCandidaturasPrimarias2019-1.pdf (검색일 2019.4.20.)
예비선거 정책에 관한 내규. 절차 및 점수제도 소개
https://podemos.info/wp-content/uploads/2018/10/Reglamento_primarias_instituciones.pdf (검색일 2019.4.20.)

- 완전국민경선제 절차
  - 경선 참가 희망자는 당원, 비당원 모두 선거일 10일 전까지 포데모스 정당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함.
  - 인구 5만 미만의 지역은 현장 투표를 실시, 5만~20만 사이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야 하나 필요에 의해 조건적으로 현장 투표 가능, 20만 이상의 도시는 의무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3개월 전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함. 이때 최소 3개월 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만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음.
  - 다른 정당들과 마찬가지 최소 추천수를 만족해야 후보로 등록할 수 있으며, 당대표 후보, 총리 후보 등록 희망자는 150명 이상의 추천을 얻어야 후보로 인정되며, 기타 내각 및 지방 선거 후보 희망자는 90명 이상의 추천을 얻어야 함.
  - 사전 등록한 선거권자는 총리 후보 선거에서 1인 1투표를 하며, 최다 득표를 얻은 자가 후보자로 선출됨.
  - 총리 후보를 제외한 후보자는 선호도 순으로 나열하여 투표함. 각 투표자는 최소 20명, 최대 62명의 후보에게 투표 할 수 있으며, 선호도 순으로 1위부터 후보를 지정함. 이때 지정 순서에 따라 1위 후보에게 80점, 2위 79점, 3위 78점…의 점수를 배정함.

    ※ 보르다 투표제[31]를 변형한 데스보르다(DesBorda) 선출식으로 점수를 계산하여 각 지역별 비중, 선거권자 수 및 선거권자의 선호도를 고려한 시스템을 통하여 총점순으로 선출함.[32]

---

31) 보르다 투표제는 18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인 보르다(Borda)가 창안한 방식으로 선거권자가 매긴 선호 순위에 점수를 매김. 예를 들어 1순위는 4점, 2순위는 3점, 3순위는 2점, 4순위는 1점 등으로 점수를 부여해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임. 후보자 모두에게 선호 순위를 매긴다는 점에서는 선호투표제와 유사하지만 선호투표제와 달리 여러 번의 개표가 필요 없음. 보르다 계산법(Borda count)이라고도 불리며,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에서는 MVP를 선정할 때 이와 같은 방법을 씀.
https://ko.wikipedia.org/wiki/선호투표제#보르다_투표제와의_차이 (검색일 2019.4.20.)

32) 보르다 시스템을 변형한 데스보르다 시스템을 통한 점수 산출 방식에 대한 설명
https://vistalegre2.podemos.info/wp-content/uploads/2017/01/DesBorda_sistema-Echenique_def.pdf (검색일 2019.4.20.)

7. 스웨덴

- 정당들은 정당의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음.[33]
- 연합 정당으로 형성된 주요 정당들은 정당의 대표들이 포함된 연합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정당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연합총회와 당내경선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가. 사회민주노동당(Sveriges socialdemokratiska arbetareparti: SAP)[34]

- 후보자 추천위원회(valberedning)의 후보자 추천명부는 연합 정당과의 합의하에 지역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함.
- 제안된 후보자명부는 선거회의에서 후보자와 후보자 순서를 확정
- 선거회의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 당내 경선을 실시하여 후보자명부를 확정

  ※ 당내 경선 시 후보자에게 선호투표를 할 수 있으며, 기준이상의 표를 획득하지 못한 후보자는 명부에서 탈락함.

나. 온건당(Moderata samlingspartiet, M: Moderates)[35]

- 총선 1년 전 연합 정당은 각 정당의 대표를 임명해 후보자 추천위원회(nominer-ingskommitte)를 구성함.

  ※ 추천위원회 구성원은 다가오는 총선에 출마해서는 안 됨.
-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각 정당의 당내경선을 바탕으로 후보자 추천명부 결정을 위한 연합 총회를 실시

---

33) Maritta Soininen & Nils Etzler. 2006 'Partierna nominerar' http://temaasyl2.episerverhotell.net/Documents/Offentliga%20utredningar%20och%20rapporter%20(sv)/SOU%202006_53.pdf (검색일 2019.10.25.)

34) 사회민주 노동당. '당헌 2017'(Stadgar Sveriges Socialdemokratiska Arbetareparti Antagna av partikongresse) https://www.socialdemokraterna.se/globalassets/vart-parti/stadgar/stadgar-antagna-2017.pdf (검색일 2019.10.25.)

35) 온건당. '당헌2015' https://www.politicalpartydb.org/wp-content/uploads/2018/11/SWEDEN_ModerateParty_2015-1.pdf (검색일 2019.10.25.)

- 추천위원회는 연합총회 10일 이전까지 당내경선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
  ※ 보고서 내용: 의제, 절차규칙, 후보자이력서, 시험투표의 결과 등
- 연합차원의 최종 당내경선을 통해 후보자와 후보자 순서를 확정

8. 스위스

- 정당의 후보자 추천절차에 관해 연방법률에 별도 규정 없음.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에서는 정당의 후보자명부 제출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해당 정당이 후보자의 명부를 작성하는 데는 정당 내부의 자율에 맡김.[36]
- 스위스의 경우 후보자 추천에 관한 정당의 권한과 규율이 상대적으로 약함.[37]
  - 정당들도 일반적으로 후보자 명부를 알파벳순으로 작성함.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나 선거인이 정당별로 작성된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추가로 기입하거나 다른 정당 후보자의 이름을 써넣을 수도 있음.
- 사회주의당(Socialist Party: Swiss PS)[38]
  - 후보자 평가 기준(유럽 인권조약 등을 충분히 이해하는지 등)을 바탕으로 추천할 후보자를 선발함.

---

36) Élection du Conseil national du 20 octobre 2019, Guide à l'usage des groupes voulant lancer des candidatures(2019년 연방하원의원선거 안내문). Chancellerie fédérale, Section des droits politiques. https://www.bk.admin.ch/dam/bk/fr/dokumente/pore/Guide%20%C3%A0%20l_usage%20des%20groupes%20voulant%20lancer%20des%20candidatures.pdf.download.pdf/Guide%20%C3%A0%20l_usage%20des%20groupes%20voulant%20lancer%20des%20candidatures.pdf (검색일 2019.6.5.)

37) Ace. Electoral systems Switzerland. http://aceproject.org/ace-en/topics/es/annex/esy/esy_ch (검색일 2019.10.7.)

38) 사회주의당. 2015.1. https://www.sp-ps.ch/fr/publications/communiques-de-presse/le-ps-auditionnera-les-trois-candidats-au-conseil-federal (검색일 2019.10.7.)

9. 캐나다

-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에 대한 선거법상 규정은 없음.
- 그러나 등록 정당이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일 후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청장에게 당내경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선거법 제476,476-1조).
- 보고서 기재 내용[39]
  - 해당 선거구명, 등록정당명
  - 경선일과 경선시작일
  - 경선후보자 이름, 회계책임자의 이름 및 주소
  - 경선 당선인 이름
- 당내경선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총 1,000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받거나 당내경선 운동비용으로 총 1,000달러 이상을 지출한 때에 선거관리청장에게 당내경선운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선거법 제476조의75).
-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당내경선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대체로 각 정당은 각 지역구의 당내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함.

가. 자유당(Liberal Party of Canada: LPC)[40]

- 자유당 후보자 선출과정 규약[41] 제29조에 따라 전국선거운동위원회(National Campaign Committee: NCC)가 후보자 추천과정을 진행함.
- NCC는 후보자 승인 위원회(Green Light Committee: GLC)를 설립해야 함. GLC는 각 선거구의 경선(Nomination Meeting)에 참가할 후보자를 평가 후 승인하거나 거부함.

---

39) 캐나다 선거관리청. 'Political Financing Handbook for Nomination Contestants and Financial Agents(2016.06).' https://www.elections.ca/pol/nom/man/EC20182_Orig/ec20182_e.pdf (검색일 2019.5.20.)

40) 캐나다 자유당 홈페이지. "National Rules for the Selection of Candidates." https://www.liberal.ca/wp-content/uploads/2018/01/LPC_National-Rules-for-Candidate-Selection.pdf (검색일 2019.5.20.)

41) National Rules for the Selection of Candidates

- 해당 선거구 지구당(Electoral District Association)은 여성 후보들과 선거구의 인구 및 언어 다양성[42]을 반영하는 후보들을 최선을 다해 모집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NCC에 제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경선을 개최할 수 있음.
- 각 선거구에서 열리는 경선에서 선거구에 거주하는 당원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함. 경선에 참가하는 후보가 두 명 이상일 때 당원들은 선호투표제(preferential voting)로 선출함.

  ※ 2019년 총선에 한해 재선에 도전하는 현 자유당 의원은 당에서 정한 지역사회 활동 및 모금 목표를 달성한다면 경선을 거치지 않고 바로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음.[43]

나. 보수당(Conservative Party of Canada: CPC)[44]

- 보수당 당헌 제14조에 따라 전국후보자선정위원회(National Candidate Selection Committee: NCSC)가 후보자 추천과정을 진행함.
- NCSC와 선거구후보지명위원회(Electoral District Candidate Nomination Committee: CNC)의 승인을 받아야 경선후보자가 될 수 있음. 만약 승인을 받는다면 현직 의원과 새로운 후보는 경선에서 경합함.
- 현직 의원이 없는 선거구에서는 NCSC와 CNC에 신청서를 내고, 인터뷰 및 서류 심사과정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경선에 참가할 수 있음.
- 해당 선거구 지구당에서 열리는 경선에서 선거구에 거주하는 당원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함.

  ※ 보궐선거(by-election)를 통해 당선된 의원이나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의원은 다른 후보자가 없다면 경선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총선 후보자가 됨.

---

42) 캐나다는 영어와 불어가 공용어이지만 퀘벡 주 밖에선 영어가 강세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언어적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함.

43) 캐나다 자유당 홈페이지. 'Team Trudeau 2019 Nominations Process.' https://www.liberal.ca/nominations/ (검색일 2019.5.20.)

44) 캐나다 보수당 홈페이지. 'Constitution §14. CANDIDATES FOR PARLIAMENT.' https://www.conservative.ca/about-us/governing-documents/ (검색일 2019.7.18.)

10. 호 주

- 정당의 후보자 추천방식은 다양하고 복잡하며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당내경선, 집행부에 의한 추천, 선거인단 추천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45]
- 당내경선(Plebiscite Method)
  다수의 당원이 후보자 선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예비선거(primary election)와 비슷하며, 퀸즐랜드(Queensland)의 국민당,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주 노동당, 민주당의 주 상원의원 후보자 선출에 이 방법이 사용됨.
- 집행부 선출(Executive Method)
  정당 집행부 조직이 배타적으로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
- 선거인단 추천(Collegiate Method)
  후보자 선출을 위해 모인 당원들로 미국에서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과 비슷함.

가. 노동당

- 노동당의 추천방식은 주마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중앙당과 지역당원이 모여 정당에 공헌을 많이 한 자 즉, 도전 후보자와 현직의원의 정당 충성도를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출함.[46]
- 당헌에 따르면 지구당에서는 후보자 경선일에 대중공천포럼(Public Office Selection Forums)을 열어야 하며, 여기서 모든 하원의원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 정견발표와 질의응답 후에 선거를 함.
- 당비를 내고 있는 당원과 후보자가 나오는 선거구에 살고 있는 모든 선거권자는 이 포럼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함.

---

45) Allan Lyle. 1989. Candidate Pre-Selection in Australian Politics. Journal for Students of Year 12 Politics. Melbourne. Social Education Victoria. 16/4. p.18-24.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71211157_CANDIDATE_PRESELECTION_IN_AUSTRALIAN_POLITICS (검색일 2019.8.26.)

46) 의회홈페이지. ‘The electoral and party system(선거시스템과 정당시스템).’
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Senate/Powers_practice_n_procedures/platparl/c03 (검색일 2019.6.5.)

- 하지만 모든 그룹의 50%는 여성이어야 한다는 당헌의 차별금지조항(affirmative action) 때문에 당대의원회(National Executive)에서는 추천된 후보자의 여성비율이 적을 경우, 주 지구당의 결정과 다른 후보자를 추천할 수도 있음.[47]

나. 자유당

- 자유당의 지구당 후보자 추천과정은 후보자추천위원회(Selection Committ- ees)를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일반당원과 주/지역 지구당에서 선발된 상원의원 추천인과 하원의원 추천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출함.[48]
- 당비를 내고 있으며 해당 선거구에 선거인등록이 되어 있는 당원은 누구든지 후보자가 될 수 있으며 컴퓨터를 통해 임의적으로 선발된 대리인단이 후보자 선출과정에 참여함.
- 몇 백여 명의 후보자와 만남을 통해 질의응답을 하고 정견발표와 언론의 반응 등을 살펴보는 등 공천과정은 몇 주가 걸림.[49]
- 지구당 혹은 후보선발위원회가 한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후보자 검증이 충분치 않거나 당의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후보자를 추천하여 다수의 선거권자의 반발이 있을 경우 당대의원회(Federal Executive)는 이를 다시 검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50]

---

47) Labor's National Platform(노동당 정당강령).
https://cdn.australianlabor.com.au/documents/ALP_National_Platform.pdf (검색일 2019.6.5.)

48) 자유당 뉴사우스웨일즈 주 홍보물.
https://nsw.liberal.org.au/LPNSW/media/General/Document/pdf/New-Members-Brochure-2019.pdf (검색일 2019.6.5.)

49) Denis Dragovic. 2016. We'd get better candidates if we changed the rules(정당후보자 추천과정에 대한 조언). Election Watch Australia 2016. The University of Melbourne.
https://electionwatch.unimelb.edu.au/australia-2016/articles/wed-get-better-candidates-if-we-changed-the-rules (검색일 2019.6.5.)

50) Liberal Party of Australia Federal Constitution(자유당 당헌).
https://cdn.liberal.org.au/pdf/2010%20Liberal%20Party%20of%20Australia%20Federal%20Constitution.pdf (검색일 2019.6.5.)

<그림 5-1> 뉴사우스웨일즈 지구당의 후보자 선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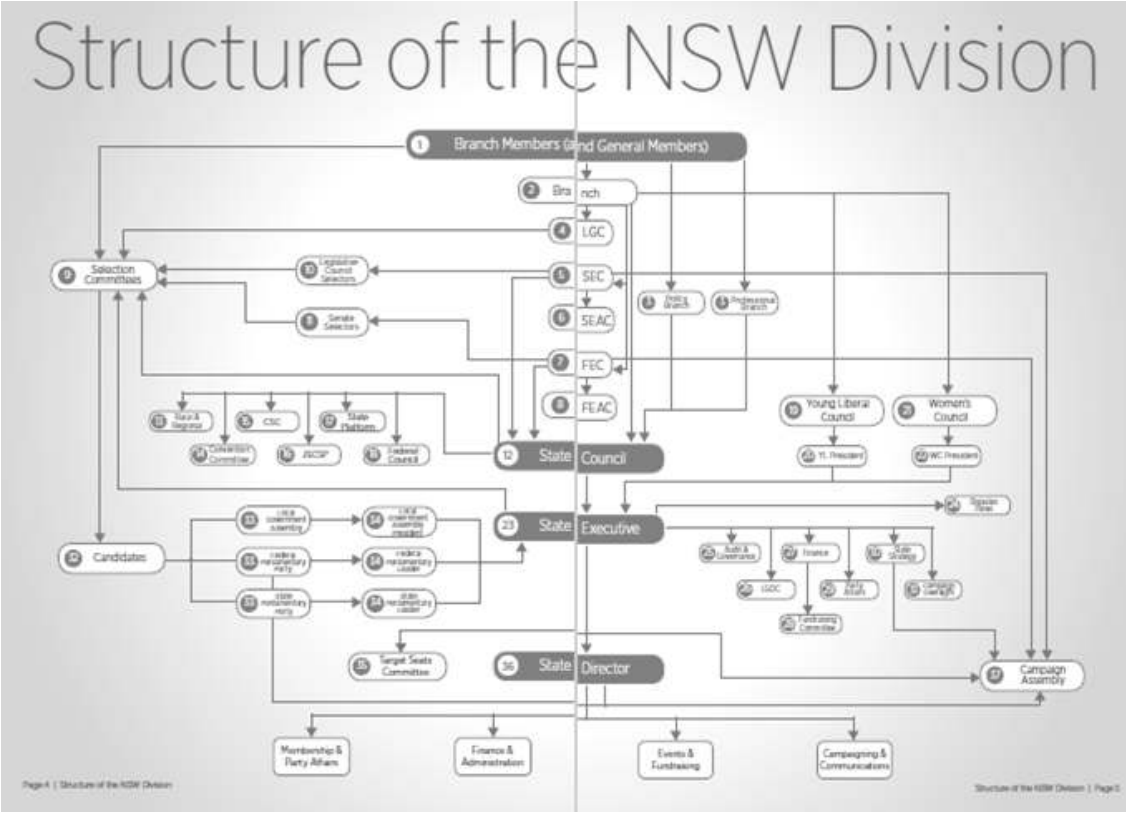

2. 후보자 등록

1. 영 국

가. 후보자 등록절차(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6~8호)[51]

- 각 후보자는 후보자 본인 또는 제안자(Proposer)나 찬성자(Seconder)의 추천을 받아 등록신청서 제출 장소로 정해진 곳에서 선거관리관에게 제출

  ※ 후보자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추천받을 수 있지만 정당 추천을 받지 않은 후보자는 사실상 당선되기 어렵고 후보자의 거주요건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음.

- 등록신청서 제출기간
  - 선거공고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19일 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 등록신청서 내용
  - 후보자의 이름·주소와 직업을 기재하고 제안자 및 찬성자 각 1명과 그 추천에 동의하는 8명 등 총 10명의 서명이 있어야 함.
  - 서명을 하는 자는 모두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동일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자는 하나의 추천서에 한하여 서명할 수 있음.
- 추천에 대한 동의

  후보자 추천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후보자는 등록신청서 제출기간 내에 동의를 나타내는 서면동의서(제출기한 전 1월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1명의 증인에 의해 증명된 것)를 제출해야 함.
- 정당은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 옆에 당명 또는 정당 상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음.

---

51) Representation of people act 1983. Schedule 1. Part 2. Nomination. section 6~8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Candidate guide-UK Parliamentary general election part2b/6(총선용 후보자 가이드).’ p.6.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media/4262 (검색일 2019.5.11.)

나. 후보자 등록의 효력결정(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11,12호)[52]

- 등록신청서, 동의서를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한 경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 등록 인정
  - 선거관리관이 등록신청서를 무효로 결정한 때
  - 후보자가 사망한 때
  - 입후보를 사퇴한 때
- 후보자, 선거사무장, 제안자 또는 찬성자는 다른 후보자의 등록신청서 제출에 입회하여 그 효력에 대하여 선거관리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다. 후보자 사퇴(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13호)[53]

- 후보자는 등록신청서 제출기간 중에 후보자가 서명하고 1인의 증인이 입증한 사퇴통지서를 선거관리관에게 제출하면 사퇴할 수 있음.

라. 후보자 공고(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14호)[54]

- 선거관리관은 후보자 등록이 확정된 자와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공고하고, 등록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그 이유를 공시해야 함.
- 공고에는 등록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후보자의 이름·주소와 직업 및 추천서에 서명한 자의 이름을 같이 공고

52) Representation of people act 1983. Schedule 1. Part 2. Nomination. section 11,12
53) Representation of people act 1983. Schedule 1. Part 2. Nomination. section 13
54) Representation of people act 1983. Schedule 1. Part 2. Nomination. section 14

2. 미 국

가. 후보자(연방선거운동법 제30101조)[55]

- 누구나 연방선거운동을 위한 자금이 $5,000이 넘을 경우 후보자로 간주되며,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
  - 개인이 $5,000 이상을 선거자금으로 받거나 사용한 경우
  -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5,000 이상을 선거자금으로 받거나 사용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경우
  - 연방선거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다른 사람이 기부금을 받거나 개인을 대신해 $5,000 이상의 지출을 했다는 사실을 위원회에 알리지 못한 경우
  - 개인 이외 다른 사람과 합쳐서 선거자금으로 $5,000 이상을 받거나 사용한 경우

나. 후보자 등록

- 연방선거위원회에 후보자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해당 주의 선거구내에서 이루어지는 예비선거 등은 선거과정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 선거관리기관의 관리·감독 하에 실시되는 것이 통례이며, 입후보하려는 자는 입후보선언서(declaration of candidacy)를 주무장관(secretary of state) 등의 주의 담당기관에 예비선거 전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 예비선거의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이 인쇄되기 때문에 입후보선언서와 함께 추천서[통상적으로 추천지명서(nominate petition, nominating petition) 또는 예비선거추천서(primary petition)라 함]를 제출하여야 하는 주도 있지만 입후보선언서만 제출하게 하는 주에서는 예비선거의 당선자가 일반선거 전 일정 기간 내에 추천 지정서(nomination paper)를 주무장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후보자 등록 절차 등[56]

---

55) FEC. ‘Registering as a candidate.’
https://www.fec.gov/help-candidates-and-committees/registering-candidate/ (검색일 2019.6.25.)

56) FEC. ‘Instruction for Statement of Candidacy.’
https://www.fec.gov/resources/cms-content/documents/fecfrm2i.pdf (검색일 2019.7.26.)

- 개인에서 후보자로 신분이 바뀐 후 15일 이내에 후보자는 후보자 대신에 선거자금을 받고 지출을 집행할 주 선거운동위원회(principal campaign committee)를 지정해야 함.
- 상원과 하원에 출마할 후보자는 만약 최소 법정 선거자금 이외에 개인자금으로 지출할 경우 예상되는 지출 금액을 기재해야 함.

- 주 선거운동위원회 등록[57]
  - 후보자에 의해 지정된 후 10일 이내에 주 선거운동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주 선거운동위원회의 회계책임자·보조자(회계책임자 및 보조자 없으면 기부 및 지출 할 수 없음), 거래 은행, 후보자에 의해 지정된 다른 위원회에 관한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함.

다. 선거권자의 추천 서명[58]

- 추천지명서 등에는 해당 선거구의 일정 수 이상 등록 선거권자로부터 서명이 필요
- 무소속후보자 또는 예비선거에 참가할 수 없는 정당의 후보자는 통상적으로 일반선거 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선거구 내 일정 수의 등록 선거권자의 서명이 포함된 추천서 또는 신청서를 주무장관 등에 제출해야 입후보할 수 있음.

라. 공직자의 입후보 제한

- 연방법상 제한 규정은 없으나 주 법에서 공직자가 다른 선출직 공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애리조나, 플로리다, 조지아, 텍사스, 하와이 주에서만 규정).[59]
  - 애리조나 주: 재임기간 마지막 해를 제외하고는 현직 공직자는 선거출마를 공식화 할 수 없음. 단, 2013년도 개정으로 임기 중 다른 공직 입후보 공표는 가능함(공무원법 제38.296조).[60]

---

57) FEC. ‘Instrictions for Statement of Organization.’ https://www.fec.gov/resources/cms-content/documents/fecfrm1i.pdf (검색일 2019.7.26.)

58) New York State Board of Election. ‘2019 Political Calendar.’ https://www.elections.ny.gov/NYSBOE/law/2019PoliticalCalendar.pdf (검색일 2019.7.26.)

59) https://en.wikipedia.org/wiki/Resign-to-run_laws (검색일 2019.6.25.)

- 플로리다 주: 어떠한 공무원도 임기 중 사직 없이 다른 공직의 후보자가 될 수 없으며 입후보 10일전에 사직해야 함(선거법 제99.012조).[61]
- 조지아 주: 주, 카운티,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직자는 다른 선출직 공직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 임기만료 30일 전에 사직해야 함(헌법 제2장 제2조).
- 텍사스 주: 남은 임기만료기간이 1년 30일 초과시 공무원이 입후보를 공표하거나 후보자가 되는 경우 자동으로 사직되고 다른 보궐선거에 따라 공석이 채워짐(헌법 제16장 제65(b)조).
- 하와이 주: 선출된 공무원 등은 다른 공직의 후보자 자격을 얻기 전에 그 직을 사임해야 하고 임기는 임기 종료 전에 시작됨(헌법 제2장 제7조).

3. 프랑스

가. 입후보등록신청

1) 입후보등록신청일

- 하원의원선거: 입후보등록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늦어도 선거일 전 넷째 금요일 18시까지 도청에 제출(선거법 제157조)
- 상원의원선거
  - 1차 투표 때에는 입후보등록신청서 2부를 늦어도 선거일 전 세 번째 금요일 18시까지 도청에 제출(선거법 제301조)
  - 2차 투표 때에는 입후보등록신청서를 투표시기가 결정되기 30분 전까지 도청에 제출(선거법 제305조)

---

60) Arizona Revised Statutes. Title 38. Article 6. Vacancy in Office. https://www.azleg.gov/arsDetail/?title=38 (검색일 2019.10.2.)

61) Florida Statutes. Title IX. Chapter 99. Candidates. http://www.leg.state.fl.us/Statutes/index.cfm?App_mode=Display_Statute&URL=0000-0099/0099/0099ContentsIndex.html&StatuteYear=2019&Title=%2D%3E2019%2D%3EChapter%2099 (검색일 2019.10.2.)

2) 등록신청서 기재사항(선거법 제154,298조)

- 후보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서명한 등록신청서를 제출
- 입후보등록신청서는 후보자가 선거권이 있으며, 이를 행사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있는 자임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첨부
- 결원에 대비하여 후보자를 대신할 대리후보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거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대리후보가 서명한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고, 대리후보도 피선거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3) 이중등록 금지(선거법 제155,156,302조)

- 누구든지 2 이상의 선거구에 입후보할 수 없으며, 복수선거구에 입후보할 경우 입후보자격이 취소
- 어느 누구도 대리후보의 자격으로 수개의 입후보등록신청서상에 기재될 수 없으며, 후보자인 동시에 다른 후보자의 대리후보가 될 수 없음.

나. 입후보등록신청 수리

1) 수리절차(선거법 제157,161조)

- 입후보등록신청이 된 때에는 우선 신청자에게 가접수증 교부
- 등록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입후보등록신청의 최종 입후보등록증(récé-pissé)을 교부
- 최종 입후보등록증은 현행 선거법상의 후보자 요건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에 교부

2) 불복제도(선거법 제160조)

- 후보자 또는 개인은 입후보등록의 거부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행정재판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재판소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판결을 내림.
- 이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는 헌법평의회에 제소할 수 있음.

다. 2차 투표 입후보등록신청(하원의원선거)

-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 또는 등록선거인총수의 1/4을 득표한 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2차 투표가 실시되는데, 2차 투표의 입후보등록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음.
- 등록신청기한(선거법 제162조)
  - 입후보등록신청은 1차 투표 후 첫 번째 화요일 오후 18시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1차 투표의 개표의 총집계가 월요일 중에 될 수 없는 경우 입후보등록신청기한은 1차 투표 후 첫 번째 수요일 오후 18시까지 연장
- 입후보할 수 없는 자(선거법 제162조)
  -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의 대리인을 제외하고 1차 투표에 입후보하지 아니한 자 및 1차 투표에서 등록선거인총수의 12.5%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자는 2차 투표에 입후보할 수 없음.
  - 위 요건을 충족한 자가 1명뿐인 경우 1차 투표에서 차점득표한 자도 2차 투표에 입후보 가능, 위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1명도 없는 경우에는 1차 투표의 상위득표자 2명이 2차 투표에 입후보
  - 후보자는 1차 투표 시 그 입후보등록신청서에 대리인으로 지정한 자 이외에는 2차 투표의 후보자로 내세우지 못함.

라. 후보자 사망

- 입후보등록신청기간 종료 후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대리후보자가 후보자로 되며 새로운 후보자는 새로이 대리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음.
- 입후보자등록신청기간의 종료 후 대리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후보자는 새로운 대리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음.

마. 후보자 사퇴(선거법시행령 제100조)

- 후보자 사퇴는 입후보등록기간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후보자 사퇴는 그 신고로써 처리됨.

4. 독 일

가. 지역구 후보자 등록

1) 신청권자(연방선거법 제18,20조)

- 정당 추천 후보자
  - (적격정당)연방하원 또는 주의회에서 5명 이상의 현직 의원이 있는 정당
  - (비적격정당) 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정당은 늦어도 선거일 97일 전 18시까지 연방선거위원장에게 선거에 참여할 뜻을 통보하고 연방선거위원회가 정당자격을 확인한 정당(해당 선거구 내 선거권자 200명 이상 서명 필요)
- 선거권자 추천 후보자(무소속 후보자)
  - 해당 선거구 내 선거권자 200명 이상의 서명 필요

2) 신청내용 및 동의(연방선거법 제20조)

- 후보자등록신청서에는 오직 1명의 후보자 이름만 기재되어야 함. 정당에 의한 선거구 후보자의 추천은 주지부당의 의장단, 주지부당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지구당의장단이 자필서명으로 추천
- 각 후보자는 오직 한 개의 선거구에서만, 그리고 오직 하나의 후보자등록신청서에서만 추천될 수 있음.
- 후보자 추천 시 후보자 본인의 서명동의가 필요하며, 후보자의 동의는 취소하지 못함.

3)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제출(선거법 제19조)

- 후보자등록신청서는 늦어도 선거일 69일 전 18시까지 선거구선거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 후보자등록신청서에는 1명의 신임인과 1명의 부신임인이 명시되어야 하고,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의 서명자를 신임인으로 보며, 제2의 서명자를 부신임인으로 봄.
-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신임인과 부신임인은 스스로 후보자추천에 관련된 의사표시를 하고 수락할 권한이 있음.

4) 후보자등록신청의 철회 및 변경(연방선거법 제23,24조)

- 후보자는 그 수리가 결정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신임인과 그 부신임인의 서면에 의한 공동의사표시로서 철회될 수 있고, 200명 이상의 선거권자가 서명한 후보자 등록신청서는 그 서명자의 과반수의 자필서명으로 철회될 수 있음.
- 후보자 등록신청은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후보자가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신임인과 그 부신임인의 공동 서면의사표시로써 변경될 수 있으며, 후보자 등록신청의 승인에 관한 결정이 있은 후에는 어떠한 변경도 허용되지 않음.

5) 흠결의 보완(연방선거법 제25조)

- 선거구선거위원장은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하며, 흠결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신임인에게 통지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
- 아래의 경우에는 유효한 후보자 등록신청으로 간주되지 않음.
  -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제출과 관련된 형식 및 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한 경우
  - 유효한 서명 및 서명자의 선거권의 입증이 없는 경우. 다만, 후보자 등록신청권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적시에 입증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 정당후보자등록신청서에 정당 명칭이 누락되었거나 정당자격의 확인이 기각되거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후보자가 불완전하게 표시되어 그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 후보자의 동의표시가 없는 경우
- 후보자등록신청의 수리가 결정된 후에는 어떠한 흠결도 보완할 수 없으며, 흠결 보완절차에 있어서 선거구선거위원장의 결정에 대하여 신임인은 선거구선거위원회를 제소할 수 있음.

6) 후보자등록신청의 승인(연방선거법 제26조)

- 선거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서 심사 후 선거일 58일 전까지 승인여부 결정을 해야 함.
- 선거구선거위원장은 승인된 후보자등록신청서를 늦어도 선거일 48일 전까지 공고
- 등록신청서가 기한을 넘겨서 제출된 때와 법정요건 흠결 시 후보자등록은 거부

- 선거구선거위원회가 후보자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주선거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불복신청권자인 신고책임자는 연방선거위원장 및 선거구선거위원장에게 불복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불복신청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청취 후 늦어도 선거일 52일 전까지 결정해야 함.

나. 비례대표 후보자명부의 제출

1) 후보자명부(연방선거법 제27조)

- 후보자명부는 정당만이 제출할 수 있으며, 비적격정당은 주의 선거권자 총수의 1,000분의 1 이상의 서명이 필요(단, 서명인 수는 2,000명 이하여야 함)
- 명부의 기재내용은 정당의 명칭(해당 정당이 약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약칭), 후보자의 이름(순위 부여)을 기입해야 함.
- 후보자는 1개의 주 및 1개의 명부에만 등재되어야 하며, 명부에 후보자를 등재하는 경우 해당 후보자의 동의가 필요함.
- 명부에 등재하는 후보자 및 그 순위에 대한 정당내부 결정절차는 지역선거구에서의 후보자결정절차에 준하여 당원총회, 특별당대의원회의, 일반당대의원회의에서 비밀투표에 의하며, 각 정당은 각 주별로 1개의 명부만 제출할 수 있음.

2) 후보자명부의 승인(연방선거법 제28조)

- 주선거위원회는 심사 후 선거일 전 58일까지 명부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해당 위원회의에서 공고하며, 승인한 명부에 대해서는 주선거위원장이 늦어도 선거일 48일 전까지 공고
- 주선거위원회는 명부가 기한을 넘겨서 제출된 때, 법정요건 흠결 시(개개의 후보자에 대해서만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이름을 명부에서 삭제) 명부의 승인을 거부하고 이를 공고
- 명부의 승인 거부 시 그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연방선거위원회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불복신청권자는 신고책임자와 주선거위원장이 됨.

5. 일 본

가.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공직선거법 제86조)

1) 후보자등록

(가) 후보자 추천권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
  - 해당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소속하는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이 5명 이상일 것
  - 최근 실시된 중의원의원 총선거의 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나 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또는 참의원의원 통상선거의 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나 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서 해당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득표총수가 해당 선거에서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일 것
- 중의원의원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선거인명부등재자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본인의 승낙을 얻어 후보자로 추천

(나) 입후보기간: 해당 선거일의 공시 또는 고시일(선거일 12일전에 공시)

(다) 방 법

- 우편에 의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선거장에게 신고

(라) 문서 기재사항

-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 추천
  - 정당(또는 정치단체)의 명칭, 본부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과 후보자로 될 자의 이름·본적·주소·생년월일 및 직업 기타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사항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및 선거인명부등재자 추천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이름·본적·주소·생년월일 및 직업, 기타 정령

으로 정하는 사항

(마) 제출서류(첨부서류)

-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 추천
  - 정당(또는 정치단체)의 강령·당규·규약 등
  -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해당 소속의원의 승낙서, 최근 선거에서의 해당 정당 등의 득표수를 기재한 문서)
  - 중복입후보 등의 금지규정에 위반하지 않았다는 뜻의 대표자의 선서서
  - 후보자의 동의서, 피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해당 후보자의 선서서
  - 후보자선정절차를 기재한 문서와 후보자를 적정하게 선정하였다는 뜻을 선서한 해당 기관대표자의 선서서
  -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문서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및 선거인명부등재자 추천
  - 피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해당 후보자의 선서서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소속한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을 기재한 문서 및 해당 기재에 관한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의 대표자의 증명서
  -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문서

(바) 추가입후보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신고일 후 해당 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신고가 취하되거나,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해당 선거일 전 3일까지 후보자 신고를 할 수 있음.

2) 정당의 후보자 신고취하의 제한

후보자 신고의 취하는 공시 또는 고시일(추가등록을 한 후보자는 해당 선거일 전 3일)까지 할 수 있음.

3) 후보자 사퇴의 제한

후보자 사퇴는 공시 또는 고시일(추가등록을 한 후보자는 해당 선거일 전 3일)까지 할 수 있음.

나.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공직선거법 제86조의2)

1) 후보자등록

(가) 후보자명부신고권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

- 해당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소속하는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이 5명 이상일 것
- 최근에 실시된 중의원의원총선의 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나 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또는 중의원의원통상선거의 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나 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서 해당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득표총수가 해당 선거에서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일 것
- 후보자가 될 중의원명부등재자수가 해당 선거구의 의원정수의 10분의 2 이상일 것

(나) 입후보기간: 해당 선거일의 공시 또는 고시일(선거일 12일전에 공시)

(다) 방　법: 우편에 의하지 않고 중의원명부와 아래의 문서를 첨부하여 선거장에게 직접 신고

(라) 첨부서류

- 정당의 명칭, 본부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과 중의원명부등재자의 이름·본적·주소·생년월일 및 직업 등을 기재하고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문서
- 정당 등의 강령·당규·규약 등을 기재한 문서
-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 소속 중의원 및 참의원 5명 이상의 이름을 기재한 문서, 이름이 기재되는 것을 승낙하는 승낙서 등
  - 최근 선거에서의 해당 정당 등의 득표총수를 기재한 문서
- 중복입후보의 금지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함을 대표자가 맹세한다는 선서서
- 후보자의 동의서, 피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해당 후보자가 맹세한다는 선서서
- 중의원명부등재자의 선정을 한 정당 등의 기관명칭, 그 구성원의 선출방법 및 중의원명부등재자의 선정절차를 기재한 문서와 해당 중의원명부등재자의 선정

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다는 뜻을 선서한 대표자의 선서서

- 기타 정령으로 정한 문서

(마) 이중등록금지의 예외

- (중복입후보 가능) 해당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서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의 후보자를 해당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등록과 관계된 중의원명부의 등재자로 할 수 있음.
- 중의원명부등재자의 수는 선거구마다 해당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선출해야 할 의원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후보자가 비례대표의원선거의 명부에 등재된 자는 제외

- 해당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의 후보자를 2명 이상 중의원명부의 등재자로 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당선인으로 될 순위를 동일하게 할 수 있음(즉, 같은 순위에 등재할 수 있음).

2) 보충등록

- 후보자등록 후 사망 등의 사유로 중의원명부등재자가 될 수 없게 된 자가 해당 명부신고 시 중의원명부등재자수의 4분의 1을 초과한 때에는 해당 선거일 전 10일까지 중의원명부등재자가 될 수 없게 된 자의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충등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부의 순위를 변경할 수 있음.

다.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공직선거법 제86조의3)

1) 후보자등록

(가) 후보자명부신고권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

- 해당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소속하는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이 5명 이상일 것
- 최근에 실시된 중의원의원총선거의 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나 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또는 중의원의원통상선거의 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나 선거구선출의원선거

에서 해당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득표총수가 해당 선거에서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일 것

- 해당 참의원의원선거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될 참의원명부등록자 포함)가 10명 이상일 것

(나) 입후보기간: 해당 선거일의 공시 또는 고시일(선거일 17일전에 공시)

(다) 방　법: 참의원명부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장에게 직접 신고

2) 첨부서류: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경우와 같음.

라.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 및 지방공공단체장선거(공직선거법 제86조의4)

1) 후보자등록

- 해당 선거기일 공시 또는 고시일(선거일 17일전에 공시)에 후보자로 될 자의 이름·본적·주소·생년월일·직업 및 소속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2명 이상의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에 소속하는 때에는 하나의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 등이 기재된 문서로 해당 선거장에게 신고
- 다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의 승낙을 얻어 해당 선거장에게 추천신고

2) 첨부서류

- 해당 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아니라는 선서서
- 소속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는 경우 해당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의 증명서(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의 경우 그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의 대표자의 증명서)

3) 보충등록

- 해당 선거의 공시·고시일에 후보자등록을 한 후보자가 그 선거의 의원정수를

넘는 경우에 신고일 후에 해당 후보자가 사망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 때에는 도·도·부·현지사 또는 시장의 선거는 선거일 3일전까지, 정·촌장의 선거는 선거일 2일 전까지 보충등록할 수 있음.

마. 후보자선정 및 정당 등 명칭의 신고 절차

1) 후보자선정 절차의 신고(공직선거법 제86조의5)

- 대　　상: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후보자 및 중의원명부등재자를 후보자로 등록하기 원하는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
- 시　　기: 후보자선정절차를 규정한 날부터 7일 이내
- 방　　법: 우편에 의하지 않고 문서로 총무대신에게 신고
- 신고내용: 정당이나 기타 정당단체의 명칭, 본부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후보자를 선정한 기관 명칭과 그 구성원의 선출방법, 후보자선정절차

※ 총무대신은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내용을 고시해야 함.

2)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 명칭의 신고

(가)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공직선거법 제86조의6)

- 시　　기: 중의원의원총선거일부터 30일 이내
- 대　　상: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 후보자를 등록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
- 방　　법: 우편에 의하지 않고 문서로 중앙선거관리회에 신고
- 신고내용: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 및 하나의 약칭, 본부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 명칭 및 약칭은 그 대표자 또는 어느 선거구의 중의원명부등재자로 되고자 하는 자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유추되어서는 안 됨.

(나)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공직선거법 제86조의7)

- 시　　기: 임기만료일 전 90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까지
- 대　　상: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 후보자를 등록하고자 하는 정당 등

- 방　　법: 우편에 의하지 않고 문서로 중앙선거관리회에 신고
- 신고내용: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 및 하나의 약칭, 본부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다) 고 시

중앙선거관리회는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내용을 고시해야 함.

바. 입후보의 금지 및 제한

1) (다른 선거의) 중복입후보 등의 금지(공직선거법 제87조)

-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 있어 하나의 정당 등에 관계된 후보자는 해당 선거에서 동시에 다른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의 후보자가 될 수 없음.
-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신고정당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중복해 후보자를 신고할 수 없음.
- 하나의 중의원명부의 등재자는 해당 선거에서 동시에 다른 중의원명부의 등재자가 될 수 없음.
- 중의원명부신고정당 등은 하나의 선거구에 중복하여 중의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음.
  ※ 참의원의원선거에서도 같음.

2)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또는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을 사퇴한 자 등의 입후보제한(공직선거법 제87조의2)

-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또는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을 사퇴한 자 또는 후보자등록신고로 신고일에 사퇴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는 사퇴 등으로 인해 결원되어 실시하는 보궐선거(통상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외)의 후보자가 될 수 없음.

3) 선거사무관계자의 입후보제한(공직선거법 제88조)

- 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 선거장 및 선거분회장은 재직 중 그 관계구역 안에서 해당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음.

4) 공무원의 입후보제한(공직선거법 제89조)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 또는 행정집행법인 또는 특정지방독립행정법인의 임·직원은 재직 중 입후보가 제한되나, 내각총리대신 기타의 국무대신·내각관방부장관, 내각총리대신 보좌관, 부대신, 대신정무관 및 대신보좌관, 기술자·감독자 및 행정사무담당자 이외의 자로서 정령(政令)으로 지정하는 자, 전무로서 위원·고문·참여·촉탁원 등, 소방단장·소방단원(비상근) 및 수방단장·수방단원(비상근), 지방공영기업등의 노동관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직원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

  ※ 현직의원의 경우는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입후보제한규정에 불구하고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

- 입후보제한직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후보자가 된 때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간주(공직선거법 제90조)

  ※ 공무원으로 된 후보자의 취급(공직선거법 제91조)

-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의 후보자 신고를 한 자(정당추천자에 한 함)가 해당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선거사무관계자나 공무원이 된 때에는 그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봄.
-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이외의 선거의 후보자 신고를 한 자(정당추천자 제외)가 해당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선거사무관계자나 공무원이 된 때에는 그 후보자인 것을 사퇴한 것으로 봄.
- 중의원명부등재자 또는 참의원명부등재자가 해당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선거사무관계자나 공무원이 된 때에는 각 명부의 등재자가 아닌 것으로 봄.

6. 스페인

- 후보자 등록 및 공표에 관한 업무는 도선거위원회가 담당함(선거법 제169조제1항).

가. 후보자 등록기관(선거법 제44조)

- 아래의 기관들은 후보자들이나 후보자명부를 제출할 수 있음.

- 해당 등록부에 등록된 정당 및 연합
- 해당 규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설립된 연정

※ 선거에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한 연정 협정을 체결한 정당이나 연합은 선거소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선거위원회에 이를 통보해야 함.

- 선거법의 특별조항에 명시된 요건을 갖춘 선거인 단체

- 정당, 연합, 연정 또는 선거인 단체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한 선거구에 1 이상의 후보자명부를 제출할 수 없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불법 정당으로 선언되어 해산되거나 업무가 중단된 정당의 활동을 사실상 지속하거나 승계하려는 정당, 연합, 연정 및 선거인 단체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음.

나. 후보자 등록(선거법 제45,46조)

- 후보자 자격: 스페인 국적을 가진 성인으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 단, 법원 결정으로 인해 공직 수행이 불능한 상태여서는 아니 됨[정부법(Ley del Gobierno)제11조].
- 정당, 연합, 연정의 대표 및 선거인 단체의 발기인에 의해 인준된 후보자명부는 선거소집 후 15일에서 20일 사이에 관할 선거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각 후보자 등록신청서에는 이를 주관하는 정당의 연합, 연정 또는 선거인 단체의 명칭, 약칭, 상징 및 후보자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들의 성명을 명확히 표시해야 함.
- 또 등록신청서에 후보자승낙 선서서와 피선거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 후보자명부 전체를 제출할 경우 각 명부는 모든 후보자의 해당 의석을 명시해야 하고, 대리후보자를 포함시킬 경우 그 숫자는 1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주(主) 후보자와 대리후보자의 우선순위를 나열해야 함.

※ 세우타와 멜리야 선거구에서는 하원의원 추천 시 1명의 대리후보를 포함시켜야 함(선거법 제170조).

※ 각 상원의원 후보자명부에 2명의 대리후보자를 포함시켜야 하고, 해당 후보자가 대리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함. 대리후보자들의 이름은 후보자명부에 명시되어 관보에 게재되며, 기타 모든 선거 관련 문서에도 게재되나, 투표용지에는 명시하지 않음(선거법 제171조제2항).

- 후보자명부 제출 시 명칭, 약칭 또는 상징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다른 정당이 소유하고 있거나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들과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스페인 국기나 문장을 본 뜬 상징물이나 국왕을 지칭하는 명칭이나 상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어떤 후보자도 둘 이상의 선거구에 출마할 수 없으며, 둘 이상의 후보자명부에 포함될 수도 없음.
- 후보자의 명칭과 함께 무소속이라는 사실이나, 연합·연정의 경우 각 후보자가 소속되어 있는 해당 정당을 명시할 수 있음.
- 선거인 단체의 의해 추천된 후보자의 경우 선거권자의 추천서명을 확보했다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어떠한 선거권자도 둘 이상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추천서명을 할 수 없음.

  ※ 선거인 단체는 해당 선거구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사람들의 최소한 1%의 서명이 필요함. 지난 선거에서 의원의석을 획득하지 못한 정당, 연합, 연정의 경우에도 해당 선거구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사람의 최소한 0.1%의 서명이 필요함(선거법 제169조제3항).

- 관할 선거위원회는 각 후보자 등록신청일자와 시간을 명시하고 확인서를 교부하며, 등록신청 순서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해 이 순서는 모든 고시에서 지켜져야 함.

다. 후보자명부 공표(선거법 제47,48조)

- 등록 신청된 후보자명부는 선거소집일 후 22일째 되는 날에 고시되어야 하고, 관할 선거위원회는 등록신청일 후 2일 이내에 등록신청서 상에 있어 직권 또는 다른 대리인의 신고에 의해 파악된 흠결사항을 후보자에게 통보해야 함(시정기한은 48시간).
- 관할 선거위원회는 선거소집일 후 27일째 되는 날에 후보자를 관보에 공표해야 하며, 후보자로 공표된 자들은 선거소집일 후 28일째 되는 날에 공고해야 함.

  ※ 후보자명부 제출의 경우 후보자 공표이후 발생하는 결원(후보자의 사망 또는 사퇴)은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 후보자 또는 대리후보자로 대체됨.

라. 이의제기(선거법 제49조)

- 후보자 공표 이후 등록이 배제된 후보자 및 공표된 후보자의 대리인 또는 공표가 거부된 후보자의 대리인은 2일 이내에 선거위원회의 공표결정에 대해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법원은 소 제기일로부터 2일 이내에 판결해야 하며, 이는 확정적이어서 항소 불가능

- 다만, 법원 판결일로부터 2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함.

7. 스웨덴

가. 후보자 등록방법(선거법 제2절 제9조)

- 정당은 중앙선거청 또는 지방선거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각 후보자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함.

  ※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당은 선거가 실시되는 해 2월까지 중앙선거청에 정당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어떤 선거에 참여할 것인지를 밝혀야 함(선거법 제2절 제1,14조).

- 중앙선거청은 선거 때마다 후보자 최종 등록일을 관보에 게재하고 모든 등록 정당에게 알려야 함(선거법 제2절 제13조).

나. 후보자 등록의 불인정(선거법 제2절 제12조)

- 정당이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에 동의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 후보자 등록신청서는 인정되지 아니함.
  - 후보자는 입후보 사실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늦어도 선거일 전 금요일까지 중앙선거청 또는 정부가 지정한 지방선거청에 제출해야 함(제2절 제20조제1항).
  - 정당의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첨부한 후보자 본인의 동의서는 위 입후보 사실에 대한 서면동의로 간주함(선거법제2절 제20조제2항).

8. 스위스

가. 후보자명부 제출일(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21조)

- 각 주 법으로 선거가 있는 해 8월 중 어느 월요일을 최종 제출기한으로 정해야

하며, 후보자명부가 제출되는 주 당국도 정해야 함.

- 후보자명부는 제출 마감일 안에 주 당국에 도착되어야 하며, 주는 연방내각국에 지체 없이 후보자명부를 통지해야 함.

나. 후보자의 수(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22조)

- 후보자명부에는 각 선거구에 배정된 의석수 만큼 후보자의 이름을 기재할 수 있는데, 어떤 이름도 후보자명부에 2번 이상 기재되어서는 안 되며 배정된 의석수보다 많은 이름이 기재된 경우 마지막 순위의 이름은 삭제되어야 함.
- 후보자명부에는 후보자의 (공식 및 정치적으로 또는 일상에서 잘 알려진) 이름, 성별, 출생일, 집 주소(우편번호 포함) 및 출생지(출생지가 속한 주 포함)와 직업을 적어야 하며, 각 후보자는 서면으로 추천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함.

다. 서명정족수(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24조)

- 각각의 후보자명부는 투표할 자격이 있고 선거구에 정치적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들의 서명[수기(手記)로 함]이 있어야 함.
  - 2~10개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주에서는 100명
  - 11~20개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주에서는 200명
  - 20개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주에서는 400명
- 선거권자는 2 이상의 후보자명부에 서명할 수 없으며, 후보자명부 제출 후에는 서명을 철회할 수 없음.
- 아래의 정당은 서명정족수가 필요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유효한 정당의 당대표와 사무총장 및 후보자들의 서명만을 받아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면 됨.
  - 선거 실시 전년도 말까지 연방내각국에 등록된 정당
  - 해당 선거구에 현역의원이 있거나, 최근 총선거 같은 주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라. 후보자명부의 수정 등(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29,30조)

- 주는 후보자명부를 심사하여 서명인들을 대리하는 대리인에게 그 후보자명부의

결함을 수정하게 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명칭을 변경하며, 이름이 공식적으로 삭제된 후보들에 대한 대체후보자를 임명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함.

- 부여된 기간 내에 결함의 수정이 없는 경우 그 후보자명부는 무효로 간주되나, 그 결함이 특정한 후보자에게만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그 후보자의 이름만 삭제
- 후보자명부 제출일 이후 두 번째 월요일부터는 후보자명부에 대한 더 이상의 수정이 불가능하고 주법에 의해 수정 허용기간은 일주일로 단축될 수 있음.

마. 통합명부 및 명부의 공표(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31,32조)

- 2 또는 그 이상의 명부는 늦어도 수정이 가능한 기간까지 통합될 수 있으며, 통합명부 내에서는 부속된 하위의 통합명부만이 허용
- 하위통합명부는 원래의 통합명부와 동일한 표시 하에 추가적으로 성별, 정치적 집단의 당파, 지역 또는 연령에 기초한 차이를 통한 구별을 표시하는 경우에만 유효
- 통합명부 및 하위통합명부와 관련된 선언은 무효로 할 수 없음.
- 주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주의 관보에 명부의 명칭과 명부번호, 통합명부 또는 하위통합명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해야 함.
- 연방내각국은 후보자의 이름, 출생연도, 고향 및 거주지를 명시한 전자적 형태의 명부를 공표함.

바. 입후보 무효(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32조의a)

- 주 차원에서 명부에 동일한 입후보자의 이름이 한 번 이상 기재되어있거나, 연방내각국 차원에서는 동일한 입후보자의 이름이 하나 이상의 주의 후보자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면 관련한 모든 명부에서 그 입후보를 무효화하고 서로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
- 가능하다면 최종명부의 공표 전에 그 무효화된 입후보자의 이름을 삭제하고, 최종명부 공표 후에 삭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주 및 연방의 관보와 동시에 전자적 방법으로도 삭제의 이유를 명시하여 발표

9. 캐나다

가. 후보자등록기간(선거법 제69,70조)

- 후보자등록기간은 선거공고문 발행 시부터 등록마감기한까지임.
- 후보자등록마감일은 선거일 전 21일(월요일) 오후 2시까지
- 선거관리관과 부선거관리관은 후보자등록마감일 정오까지 신청서 접수장소에 출석해 오후 2시까지 있어야 함.

나. 후보자등록의 요건

- 후보자등록일 현재 선거권이 있는 자(해당 선거구 선거권자인지 여부는 관계없음)[62]
-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선거법 제65조)
  - 선거권이 없는 자
  -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후 불법행위(부패행위)의 유죄판결을 받고 5년(7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주 의회 의원
  - 보안관, 검사(a clerk of the peace, county crown attorney)
  - 총독이 임명한 판사
  -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
  - 선거관리청장, 선거공무원
  - 이전 선거의 후보자로서 선거 후 제출하여야 하는 각종 서류, 보고서, 문서, 공고문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자
- 후보자등록신청서류(Nomination Paper)(선거법 제66조)
  - 후보자가 선서한 진술서: 후보자의 이름·주소·직업 및 소속 정당명, 선거사무관계자(official agent)의 이름·주소, 회계감사(auditor)의 성명·주소·직업을 기재

62) 캐나다 선거관리청 홈페이지
https://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pol&document=index&dir=can/bck&lang=e (검색일 2019.6.25.)

- 증인 앞에서 선서하고 서명한 후보자의 추천 승낙서(증인의 서명 필요)
- 선거사무관계자의 취임동의서
- 해당 선거구에서 최소 100명의 선거권자 추천 서명(서명자의 이름·주소 필요)

※ 다만, 선거법 부대조항 Ⅲ에 규정된 작은 선거구는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됨.

- 후보자 추천은 대부분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나 무소속 출마도 가능
- 정당은 각 선거구마다 1명의 후보자만 추천해야 함(선거법 제68조).

다. 후보자등록 접수·수리·통지(선거법 제71,73조)

- 각 선거구 선거관리관은 후보자추천서의 서명자 수와 이들의 선거권 결격 여부를 심사한 후 추천서가 제출된 후 48시간 이내에 수리확인 또는 수리거부 사실을 후보자에게 통지해야 함.
- 후보자는 추천서, 진술서 및 증명서를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음. 추천이 유효하도록 하기 위해 선거관리관은 추천서, 진술서 및 증명서의 전자문서를 추천마감기한까지 접수하여야 하고, 원본은 추천마감기한 후 48시간 이내에 선거관리관에게 도착되어야 함.

※ 후보자는 등록마감일 오후 5시 이전에는 추천서에 기재된 이름, 주소, 직업에 대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음(선거법 제75조).

라. 후보자의 사퇴(선거법 제74조)

- 후보자는 등록일 오후 5시까지 자신이 서명하고 해당 선거구의 선거권자 2명이 증명한 사퇴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사퇴할 수 있음.
- 사퇴의 경우 그 후보자에게 투표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됨.

※ 후보자 사퇴·사망 시 추천마감기한 전에는 다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선거법 제68조).

마. 후보자의 사망(선거법 제77조)

- 등록정당이 지원하는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전 5일 오후 2시부터 투표완료 전에 사망한 경우
- 선거관리관은 선거관리청장과 협의하여 후보자 사망이후 두 번째 월요일을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등록신청 마감일로 다시 정함.

바. 무투표 당선(선거법 제63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선거일 전 19일) 오후 2시까지 등록한 후보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 선거관리관은 선거소집령 뒷면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선거관리청장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지체 없이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선언
- 소집령 반환 후 48시간 이내에 당선자에게 소집령의 인증된 사본 송부

사. 후보자의 권리(선거법 제80,제81조의1)

- 고용주는 고용인이 후보자로 추천받기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후보자로서 일정기간 무급 또는 유급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이를 허가해야 함.

10. 호 주

가. 등록요건

-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후보자 이름, 주소 및 직업 등을 기재하고 해당 선거구 100명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 서명(일정 서식으로 작성)을 받거나(무소속추천후보자), 등록된 정당의 추천(정당추천후보자)을 받아야 함(연방선거법 제166조 제1항).

  ※ 후보자 등록마감 후에는 후보자 추천을 철회할 수 없음(연방선거법 제177조제1~3항).[63]
- 후보자등록은 선거소집령 발행일 후 10일에서 27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등록마감 시간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정오까지임(연방선거법 제156조).
- 후보자 등록은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선거위원에게 접수함으로써 이루어짐(연방선거법 제167조).
- 후보자 등록을 위한 구체적 요건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연방선거법 제170조).
  - 선출될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동의

63) 호주선거위원회. ‘Electoral Pocketbook(2016년 연방 선거 결과 포함).’ p.40. https://www.aec.gov.au/About_AEC/Publications/electoral_pocketbook/2016/2016-electoral-pocketbook.pdf (검색일 2019.6.14.)

-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으로 출마 자격이 있다는 선언
- 추천되는 선거와 동일한 날에 실시되는 다른 선거에 후보자가 될 의사가 없다는 선언
- 호주 시민인지의 여부에 관한 진술
- 후보자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상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

나. 중복등록의 금지(연방선거법 제165조)

- 선거일이 같은 2개 이상의 선거에서 1명이 2개 이상의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경우 그 등록은 모두 무효
- 후보자로 등록될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할 것에 동의한 후 후보자 등록 마감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한 때 등록 효력 상실

<표 5-4> 각국의 무소속 후보자 출마가능 선거

구분	국가명
출마 불가	앙골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기니, 가이아나, 이스라엘, 요르단, 모나코,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리남, 스웨덴, 탄자니아,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선거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카보베르데, 차드, 크로아티아, 지부티, 기니비사우, 아이슬란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뉴칼레도니아, 팔레스타인, 파나마,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동티모르, 트리니다드토바고
하원의원선거	앤티가바부다, 호주, 바하마, 바레인, 바베이도스, 벨기에, 벨리즈, 보츠와나, 미얀마, 캐나다, 쿡제도, 쿠바, 덴마크,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피지, 독일, 그린란드, 그레나다, 이라크,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쿠웨이트, 라오스, 레소토,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타, 마셜제도, 모리셔스, 모로코, 네덜란드,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 니우에, 오만,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사모아, 산마리노, 세네갈, 시에라리온, 솔로몬군도, 스페인, 에스와티니, 타지키스탄,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랍에미리트, 영국, 베트남, 잠비아
상원의원선거	호주, 부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네덜란드, 뉴칼레도니아, 스페인, 태국
대통령선거, 의원선거 모두 가능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콜롬비아, 코모로,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키프로스, 체코,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핀란드, 프랑스, 기아나, 가봉, 감비아, 조지아, 가나, 그리스, 과들루프,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인도, 이란, 아일랜드, 케냐, 한국, 레바논, 라이베리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몰디브, 말리, 모리타니,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나우루, 네팔, 니제르, 파키스탄, 팔라우,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푸에르토리코,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레위니옹,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소말리아, 스리랑카, 수단, 스위스, 토고, 튀니지,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간다, 우크라이나, 미국,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예멘, 짐바브웨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PC008 (검색일 2019.5.3.)

<표 5-5> OECD국가의 후보자 등록 신청방법

국가명	후보자 등록 신청방법	근거규정
영 국	• 각 후보자는 본인 또는 제안자(Proposer)나 찬성자(Seconder)의 지명을 받아 지명서를 선거관리관에게 제출	1983 국민대표법 부칙1
미 국	• 입후보하려는 자는 입후보선언서(declaration of candidacy)를 주무장관(secretary of state)등의 주 담당기관에 제출	주 선거법
프랑스	• 후보자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서명한 등록신청서를 제출	선거법 제154,298조
독 일	• 지역구의원) 후보자의 이름이 기재된 선거구후보자추천서에는 최소한 선거구내의 200명 이상의 선거권자 자필서명을 받아 선거구선거위원회에 제출 • 비례대표의원) 정당의 명칭 및 순위대로 후보자의 이름을 기재한 주명부를 주의 선거권자 총수 1,000분의 1 이상(2,000인 이하의 범위 내) 서명을 받아 주선거위원회에 제출	연방선거법 제19,20,27조
일 본	• 지역구의원) 정당(또는 정치단체)의 강령·당규·규약, 후보자 동의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다는 해당 후보자의 선서서 등의 문서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 비례대표의원) 정당의 명칭, 본부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과 중의원명부등재자의 이름·본적·주소·생년월일 및 직업을 기재하고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문서와 정당 등의 강령·당규·규약 등을 기재한 문서, 후보자 동의서, 피선거권에 결격이 없다는 후보자의 선서서 등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공직선거법 제86조,86조의2
스페인	• 정당 및 정당연합의 명칭, 약칭, 심벌 및 후보자명부에 포함된 후보자 이름을 명확히 표시한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후보자승낙 선서서, 피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거위원회에 제출	선거법 제45,46조
스웨덴	• 정당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별로 각 후보자가 입후보를 승인한 선언이 포함된 후보자 신고서를 중앙선거청 또는 광역자치구행정청에 제출	선거법 제2장제9조
스위스	• 후보자의 이름, 성별, 출생일, 직업, 집 주소 및 출생지를 기재하고, 각 후보자가 서면으로 추천을 수락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후보자명부를 주 당국에 제출	선거법 제21,22조
캐나다	•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 1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의 이름·주소·직업 및 소속정당명, 추천자의 서명, 후보자의 지명승낙 서명 등이 포함된 후보자등록신청서를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관에게 제출	선거법 제66조
호 주	• 후보자는 이름, 주소 및 직업 등을 기재하고 등록된 정당의 추천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는 동의, 호주 시민인지 여부에 관한 진술 등이 포함된 후보자추천서를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관에게 제출	연방선거법 제166,170조
오스트리아	• 정당은 정당명, 약칭, 후보자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의원 3명 이상 혹은 지역별로 규정된 수 이상의 선거권자 지지서명이 있는 후보자명부를 후보자 동의서와 함께 선거일 58일 전까지 지역선거관리기관에 제출	하원선거법 제42,43조
벨기에	•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 최소 200명 이상의 추천(선거구의 인구수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 500명, 인구수가 50만에서 100만 명 사이인 경우 400명, 그 외 200명, 또는 최소 3명의 사임하는 의원의 서명)을 받고, 투표용지에 표기 할 정당의 약칭, 상징 및 후보자명부에 포함된 후보자 이름, 생년월일, 성별, 직업, 거주지 주소를 명확히 표시한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후보자의 동의서를 중앙선거위원회에 제출	선거법 제116조
체 코	• 하원) 각 정당 또는 연합은 선거일로부터 최소 66일 이전에 위임대표자를 통해 후보자명부를 선거구 관할 선거당국에 제출	선거법 제31,32조

국가명	후보자 등록 신청방법	근거규정
	• 후보자명부는 후보자별 선거구, 소속 정당 또는 연합의 명칭과 구성원, 이름 성별, 나이, 직위, 거주지 정보를 기재 • 후보자등록 동의서에는 후보자의 성별, 생년월일, 거주지 정보 등을 기재	
	• 상원) 각 정당 또는 연합은 선거일로부터 최소 66일 이전에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선거구 관할 선거당국에 제출. • 후보자등록신청서에는 후보자의 이름, 성별, 연령, 주소, 직업, 선거구, 소속 정당 또는 연합 명칭을 기재 • 후보자등록신청서에는 출마 선거구 의원 정수를 표기하며, 소속 정당 또는 연합 위임 대표의 서명을 기재. 체코 시민권 증빙서류, 해당 후보자가 서명한 후보자 성명서를 함께 제출	선거법 제60,61조
칠 레	• 각 정당은 정당 간 electoral pact를 구성할 수 있으며 무소속 후보자를 포함시킬 수 있음. • electoral pact에는 해당 선거구에 적법하게 출마할 자격이 있는 후보자만 등록 가능 • 후보자성명서는 상하원 관계없이 정당 대표 또는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거나 선거권자 5명의 동의를 받고, 후보자 이름, 국적, ID번호를 명기하여 당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선거위원회에 선거일로부터 90일 24시간 전까지 자산신고서와 함께 제출	선거법 제3,4,7,10조
덴마크	• 지난 총선에서 의석을 얻은 정당은 총선에 참가할 자격이 있음. • 선거에 처음 참가하는 정당은 선거일 15일 전 정오까지 경제내무부에 등록 신청 • 등록신청서 제출 시 지난 선거 총 유효투표수 1/175에 해당하는 수의 선거권자 서명을 동봉 • 정당후보자는 정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후보자등록은 해당 선거구 선거위원장에게 경제내무부 양식으로 후보자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CRS), 직업, 주소를 제출 • 후보자는 1개 당 소속으로 1개 선거구에만 출마할 수 있음.	선거법 제12,33,33a조
에스토니아	• 정당은 이름, 주민번호, 소속정당, 직업과 지위, 연락처 등이 포함된 후보자 지원서, 담보지불증명 사본, 후보자명부(전국구, 선거구별)를 선거일 45일 전까지 선거위원회에 제출	선거법 제26,28,30조
핀란드	• 이름, 직업, 직위, 주민번호가 기재된 후보자명부와 후보자 추천 및 의원으로서 책임에 대한 동의서를 대표자가 확인하고 서명하여 선거일 40일 전까지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제출	선거법 제120~122조
그리스	• 후보자는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 선거권자 12명 이상의 추천과 소속 정당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함 • 후보자등록신청서에는 본인과 아버지의 이름, 직업, 소속 정당 주소를 기재 • 후보자추천 또는 후보자추천 수용 시 추천인 또는 수용인의 선언문을 첨부 • 추천서 제출 시 세무서에 €146.74를 납부한 영수증 첨부(금액은 내무부 및 유관 당국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64]	선거법 제32조
헝가리	• 지역구의원 선거는 후보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와 후보지명과 겸직금지에 대한 동의 내용을 기재하여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500명 이상의 선거권자 추천 서명(추천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와 자필서명)을 받아 선거위원회에 제출 • 비례대표의원 선거는 후보자들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후보지명과 겸직금지에 대한 후보자의 동의가 포함된 후보자명부를 선거위원회에 제출	의회선거법 제6조 선거절차법 제120,129조
아이슬란드	• 후보자는 이름, 개인식별번호, 직업, 거주지 주소를 명확히 표시하고 각 후보자가 서면으로 추천을 수락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후보자명부를 선거위원회에 제출 •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의 이름, 개인식별번호, 거주지 주소가 명확히 표시된 후보자 지지선언문을 선거위원회에 제출	선거법 제7장 제30,32조

국가명	후보자 등록 신청방법	근거규정
아일랜드	• 각 후보자는 본인 또는 제안자의 지명을 받아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음 ※ 제안자(Prosper): 지명하고자 하는 후보자 선거구의 선거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 후보자지명서에는 후보자의 이름, 주소, 직업, 성별, 소속 정당명을 기재하여 해당 선거구 선거위원에게 제출	선거법 제46조
이스라엘	• 후보자명부 등록자 수는 12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후보자명부에는 후보자의 성, 명, 주민등록ID번호, 주소를 기재 • 2개 이상 정당 연립 시 후보자 별 소속 정당명 기재 • 후보자명부는 정당 대표자 또는 정당법 제19B조에 따른 대리인의 이름을 날인하며 2개 이상 정당 연립 시 각 정당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을 날인 • 각 정당은 후보자명단을 선거일 47일 22:00시까지 중앙선거위원회에 대표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	의회기본법 제5A,6조 선거법 제57조
이탈리아	• 선거에 참여하려는 정당 또는 정치단체는 후보자 식별표지를 내무부에 제출 ※ 필요한 선거권자 추천 수는 하원선거법 제18조의2와 동일(해당 선거구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선거권자 1,500명 이상 2,000명 이하의 서명) • 후보자명부 제출 시 대표 2명, 대리후보 2명의 이름을 병기하여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서기국에 제출	상원선거법 제8,9조 하원선거법 제18조의2
	• 선거에 참여하려는 정당 또는 정치단체는 후보자 식별표지를 내무부에 제출 • 후보자명부 제출 시 해당 선거구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선거권자 1,500명 이상 2,000명 이하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임기만료일 120일 전 하원이 해산하는 경우에 추천 선거권자 수는 위 숫자의 1/2로 함. • 입후보 등록은 시장, 공증인 또는 1990년 3월 21일 법 제53호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중 하나로부터 서명 및 증명된 선언문에 의해 승인되어야 함. - 해외거주자의 서명 확인은 해당 국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요청 • 후보자명부 제출 시 대표 2명, 대리후보 2명의 이름을 기재하여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서기국에 제출	하원선거법 제14조 제18조의2 제20조
라트비아	• 후보자명부는 선거 전 창당 1년 이상이며 당원 500명 이상인 적법한 정당에 의해서만 제출될 수 있음. • 각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은 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부서에서 임명한 자를 통해 중앙선거위원회 절차에 따라 제출 • 후보자명부는 선거일 8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중앙선거위원회에 제출 • 후보자명부 등록자 수는 선거구 할당 의원정수 +3을 초과할 수 없음. • 각 정당 또는 연합은 후보자명부와 함께 본인이 서명한 후보자등록 동의서, 후보자 성명서, 공용어 언어구사 증빙서, 국가의무 이행완료 확인서,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ID번호, 해외 시민권, 거주지, 직위/직업 등 정보, 학력증명서, 구소련 또는 구 라트비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나 해외 정보 또는 방첩기관과 직간접적으로 접촉 또는 협력했거나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신원조회 결과 서류 등을 제출	선거법 제9,10,11조
리투아니아	• 후보자등록신청서, 선거대리인 허가서, 해당 선거구에서 지명된 후보자 명단, 당선된 경우 의회의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기타활동에 대한 해임 동의서, 세무조사관의 승인을 득한 소득세 신고서와 주 세무조사관에게 제출된 재산 신고서의 기본 자료, 중앙선거위원회의 양식에 따른 뇌물공여 금지 서약서, 기탁금을 지불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기탁금 환급 계좌, 선거운동의 자금 조달에 관한 보고서 사본(후보자가 지난 선거에 출마했을 경우), 정당에서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당월 1일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계좌를 중앙선거위원회에 제출	선거법 제38조
룩셈부르크	• 후보자추천은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 100명, 해당 선거구의 현 의원이나 다른 선거구	선거법

국가명	후보자 등록 신청방법	근거규정
	의원 3명에 의해 이루어짐. • 선거구별 후보자명부는 각 정당 또는 후보자단체가 작성하며 후보자는 성명서 서명을 통해 선거구 후보자 자격을 획득함. • 본인 또는 대리 제출자의 이름, 직업, 거주지 정보가 포함된 본인이 서명한 출마성명서를 선거일로부터 최소 60일 전에 각 선거구의 지정기관에 제출 • 후보자와 제출자의 이름은 1개 선거구에만 등록될 수 있음. • 후보자명부 등록자 수는 선거구 의원정수를 초과할 수 없음. • 각 선거구 선거위원장은 선거일로부터 최소 65일 전 증인입회하 후보자명부 제출을 위한 일자, 시간, 장소 등을 공표하고, 접수	제135,136조
멕시코	• 선거연도 2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 간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접수 - 지역구 하원의원 후보자: 선거구위원회 - 비례대표 하원의원 후보자: 연방선거위원회 - 상원의원 후보자: 해당 지역위원회 - 비례대표 상원의원 후보자: 연방선거위원회 • 후보자는 정당 또는 정치단체명, 부모의 이름, 출생지, 출생년월, 거주지 주소, 직업, 선거증 번호, 입후보 대상 직위명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 • 재출마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서 제출 시 입후보 대상 직위 재임 기간과 헌법에서 명시한 재임횟수를 표기 • 후보자등록신청서 제출 시 입후보수락 선언문, 출생증명서 등본 및 선거증 등본을 첨부 • 출마 후보자 소속 정당은 서면을 통해 해당 후보자가 정당 정관에 따라 선출되었음을 밝혀야 함.	연방선거법 제237,238조
노르웨이	• 선거가 있는 해 3월 31일 오후 12시까지 후보자명부를 해당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제출 • 같은 당 또는 그룹은 각 선거구마다 하나의 후보자명부만 올릴 수 있음. • 후보자명부에는 일정 수의 사람들이 서명을 해야 함. - 이전선거에서 한 선거구에서 500표 이상을 득표하거나 전국에서 5,000표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명부: 해당 선거구 지구당 집행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의 서명 - 그 외: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 500명 • 후보자명부와 함께 후보자의 생년월일, 서명인의 생년월일과 거주지 주소, 후보자의 국내거주 또는 출마 선거구 선거인명부 등록여부에 대한 정보	선거법 제6-1,6-3,6-4조
네덜란드	• 정당은 후보자명부, 선거권자의 추천서명(이전 선거에서 의석이 없는 정당의 경우, 의석 39석 이상인 선거구의 경우 최소 30명, 19~38석인 경우 최소 20명, 19석 미만인 경우 최소 10명), 후보자 동의서, 기탁금 지급증명, 후보자 신분증명서를 선거위원회에 제출	선거법 제H1,H3,H4,I2조
뉴질랜드	• 정당이 일괄로 후보자를 등록(bulk nomination)하는 경우 정당대표는 후보자의 이름, 추천에 대한 후보자 동의, 선거권자임을 증명하는 법적진술, 대표의 확인을 포함한 후보자 등록신청서류를 선거위원회에 제출 • 개별 등록(individual nomination)은 지역구에 등록된 선거권자 2명 이상의 추천서명, 후보자의 이름과 동의, 정당의 등록로고를 첨부한 후보자등록신청서류를 선거위원회에 제출	선거법 제143,146D조
폴란드	• 정당이나 연합은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 5,000명 이상의 추천 서명과 이름, 직업, 거주지, 국적, 주민번호, 후보자의 동의, 적격한 후보자임을 확인하는 문구를 기재한 후보자명부를 선거일 40일 전까지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제출	선거법 제208~212조
포르투갈	• 후보자와 후보자명부 대표의 신원정보(이름, 나이, 부모, 직업, 생일, 주거지 등)가	선거법

국가명	후보자 등록 신청방법	근거규정
	포함된 후보자명부와 등록정당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증명서 사본, 후보자·대표의 선거인등록 증명서, 후보자 신고서(후보자가 부적격사항이 없고 한 선거구에만 지원하였으며, 후보자 추천을 받아들이고, 대표가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를 선거일 41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	제21,24조
슬로바키아	• 정당 또는 연합은 선거일로부터 최소 90일 이전에 정당명 또는 정당연합체 명칭, 후보자 성명, 후보자명부 제출 시점의 직위, 생년월일, 거주지, 모든 후보자의 명부상 기호 순번, 제출자의 이름, 직위, 서명, 정당 또는 연합 직인이 날인된 후보자명부를 후보자 본인이 서명한 후보자성명서 및 기탁금 납입확인서 등을 동봉하여 서면 및 전자우편으로 국가선거위원회에 제출 • 후보자명부 등록자 수는 150명을 초과할 수 없음.	선거법 제50조
슬로베니아	• 후보자의 동의서, 선거구명, 후보자 정보(이름, 생년월일, 직업, 주소, 대리인의 주소)가 기재된 후보자등록신청서와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최소 100명의 추천이 필요하며, 해당 선거구에서 지명된 후보자의 명단 그리고 그 후보자 명단이 결정된 회의록, 후보자 결정과 관련된 정당의 규칙을 해당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제출	선거법 제44,51조
터 키	• 정당 간 합의를 통한 합동후보자명부 제출은 허용되지 않음. • 당원이 아닌 자도 정당의 서면인가가 있을 경우 정당 소속으로 출마 가능 • 1개 이상의 정당 소속으로 1개 이상의 선거구에 출마할 수 없음. • 정당은 각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명부를 최고선거위원회에 제출	의회선거법 제16,20조

64) 그리스 내무부 홈페이지. 후보자등록 https://www.ypes.gr/en/elections/national-elections/parliamentary-elections/information-for-the-candidates (검색일 2019.9.18.)

<표 5-6> OECD국가의 무소속 후보자 등록방법

국가명	등록방법	근거규정
영 국	• 정당의 후보자 등록이나 무소속 후보자 등록을 구분하고 있지 않음. • 투표용지에도 정당명칭이 표시되지 않음.	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및 부록 서식
미 국	• 모든 주에서 무소속입후보가 가능하나 주에 따라 추천인의 수가 다름. •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연방하원 및 주 상·하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 하는 자는 이전 총선거 유효투표총수의 1% 또는 500명 중 적은 수(최고 1,000명)의 선거권자의 서명을 받아야 함.	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8400조
프랑스	• 후보자등록에는 입후보등록신청서의 제출외에 정당의 추천이나 무소속 후보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음. • 상원과 하원은 서명, 이름, 성별, 날짜, 출생지, 거주지, 직업을 표기한 선거 출마 신청서만 있으면 됨.	선거법 제154조
독 일	• 연방하원이나 주의회에 5명 이상의 의원을 보유하지 못한 정당이나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는 자는 200명 이상의 선거권자의 자필서명을 얻어야 함.	연방선거법 제20조
일 본	• 후보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선거권자의 추천으로 무소속으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음.	공직선거법 제86조
스페인	•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의 최소 1% 서명 필요	선거법 제169조제1항
스위스	-	-
스웨덴	-	-
캐나다	• 정당소속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의 등록 요건이 동일함. • 모든 후보자는 선거권자 100명(일부 주는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함.	선거법 제66조
호 주	•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의 1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선거법 제166조제1항
오스트리아	-	-
벨기에	• 선거구의 인구수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 500명, 인구수가 50만에서 100만 명 사이인 경우 400명, 그 외의 경우 최소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또는 최소 3명의 사임하는 의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선거법 제116조
체 코	• 상하원 모두 정당추천 후보자와 등록 요건이 동일하나 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출마 선거구 선거권자 1,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첨부(선거권자의 이름, 생일, 거주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유효하지 않음)	선거법 제31,32,60,61조
칠 레	• 상하원 모두 정당추천 후보자와 등록 요건이 동일하나 일반 선거권자 공증인이 서명한 무소속 후보자의 후원인 명부를 첨부해야 함. ※ 일반선거권자 공증인은 법률상 선거권자로서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정당과의 법적 관계가 없음을 선언하고 상원 또는 하원 선거구 선거인명부에 주소지가 등록된 자여야 함. • 최소추천인 수를 선거위원회 위원장이 별도 지정하는 마감일자로부터 7개월 전에	선거법 제3,11,13,14조

국가명	등록방법	근거규정
	관보에 게재 ※ 상하원의 지난 총선 선거구 선거권자 수의 0.5% 이상의 서명	
덴마크	• 무소속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서 150명 이상 200명 이하 선거권자로부터 서명천을 받아야 함.	선거법 제32조
에스토니아	• 후보자등록신청서, 담보지불증명서 사본, 후보자지원서를 선거위원회에 제출	선거법 제27조, 제30조제4항
핀란드	• 선거권자 100명 이상이 선거구 연합을 설립하여 정당에 등록되지 않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 • 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이름, 직업과 직위, 거주지역과 회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선거권자임을 확인하는 서명, 대표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명시된 문서를 작성해야 함. • 후보자 등록절차는 정당추천 후보자와 동일하나 문서를 함께 제출	선거법 제119,124조
그리스	• 정당소속 후보자와 동일	선거법 제34조
헝가리	• 지역구의원 선거에만 참여 가능하며 정당추천 후보자와 동일하게 최소 500명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서명을 선거위원회에 제출	의회선거법 제5,6조
아이슬란드	• 의회선거에서는 무소속후보자 출마 불가 ※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권자 1,500명 이상 3,0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함.	선거법 제32조, 헌법 제5조
아일랜드	• 각 후보자는 본인 또는 제안자의 지명을 받아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음. ※ 제안자(Prosper): 지명하고자 하는 후보자 선거구의 선거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 후보자지명서에는 후보자의 성명, 주소, 직업, 성별을 기재 • 소속 정당이 없을 경우 해당 선거구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선거인 30명의 동의를 받아 지명서를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 위원에게 제출	선거법 제46조
이스라엘	• 무소속후보자 출마 불가	기본법(의회) 제5A조
이탈리아	• 무소속후보자 출마 불가	-
라트비아	• 무소속후보자 출마 불가	-
리투아니아	• 무소속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권자 1,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선거법 제35조
룩셈부르크	•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단독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65]	선거법 제135조
멕시코	• 정당소속 후보자와 동일	연방선거법 제232조
노르웨이	• 무소속후보자 출마 불가	-
네덜란드	• 정당후보자와 동일하게 후보자명부, 선거권자 추천서명(의석 39석 이상인 선거구의 경우 최소 30명, 19~38석인 경우 최소 20명, 19석 미만인 경우 최소 10명), 후보자 본인동의서를 선거위원회에 제출	선거법 제H1,H3,H4조
뉴질랜드	• 지역구의원 선거에만 참여 가능하며 해당 선거구의 선거권자 2명 이상의 추천서명과 후보자의 동의, 후보자 이름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류를 제출	선거법 제144조
폴란드	• 무소속 후보자는 정당, 연합이 작성한 후보자명부에 포함될 수 있음. • 선거권자들이 모인 단체를 통해 등록 가능	헌법 제100조제1항

국가명	등록방법	근거규정
	※ 선거권자 단체는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 1,000명 이상의 추천서명으로 후보자추천위원회를 설립 가능	선거법 제204조제6항 제212조제3항
포르투갈	• (단독 혹은 연합) 정당의 후보자명부에 무소속 후보자를 포함시켜 작성 가능하므로 무소속 후보자도 선거참여 가능	선거법 제21조제1항
슬로바키아	• 무소속 후보자 출마 불가	선거법 제50조
슬로베니아	•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는 선거권자 최소 10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함.	헌법 제80,96조 선거법 제44조
터 키	• 무소속 후보자는 1개 이상의 선거구에 출마할 수 없음. •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신청서와 출마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 • 터키 재무부 산하부서 최고위급 공무원 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탁금으로 납부 • 무소속 후보자가 정당과 서면으로 동의했을 시 해당 정당 선거구 후보자명부에 등록할 수 있음.	의회선거법 제16,21조

65) Independent candidates are considered as forming their own list. https://guichet.public.lu/en/citoyens/citoyennete/elections/elections-legislatives/candidat-election-legislatives.html (검색일 2019.9.18)

<표 5-7> OECD국가의 공무원 입후보 및 사직기한

국가명	공무원 입후보 및 사직기한	근거규정
영 국	• 고위공직자, 판사, 외국대사, 정규군인, 경찰, 공기업, 잉글랜드 은행장 등	하원의원 부자격법
미 국	• 공직자의 경우 입후보 10일 전 사직해야 함.	플로라다 주 선거법 제99.012조
프랑스	• 지방지사 및 도지사(Préfet)는 재직 중 및 재직 후 3년간 직무를 수행한 지역과 전부 또는 일부가 겹치는 모든 선거구에서는 하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음. • 부지사(sous-préfet), 도사무국장(secrétaires généraux de prefecture), 각급 판사 및 지역사무소장, 군인·경찰 공무원, 대학총장, 의료기관장 등의 지역 행정기관장 등은 재직 중이거나 재직 후 1년간 근무한 도내의 모든 선거구내에서는 하원의 피선거권이 없음.	선거법 제132조
독 일	• 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원, 직업군인, 일시적 지원병, 법관의 피선거권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음. • 연방 주의 각료직, 연방회계청의 직원, 법관, 상원의원은 하원의원 겸직이 금지	기본법 제137조제1항
일 본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 또는 특정독립행정법인, 특정지방독립행정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재직 중 공직후보자가 될 수 없음. • 내각총리대신 및 기타 국무대신, 내각관방부장관, 내각총리대신 보좌관, 부대신(국무대신직을 가지고 그 장을 맡을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는 각 청의 부장관을 포함) 및 대신정부관은 공무원 입후보제한의 예외로 규정하여 재직 중 공직선거 입후보 가능 ※ 입후보제한직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입후보하는 경우 등록신청은 수리되지만 입후보신청일과 동시에 해당 공무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직을 상실하게 됨(공직선거법 제90조).	공직선거법 제89조
스페인	• 연방 상원의원, 연방 하원의원, 연방평의회 구성원은 연방법원의 법관직을 겸직할 수 없음	연방헌법 제144조
	•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국사원장, 감사원장 및 헌법 제131조제2항에 명시된 위원회 위원장 등은 피선거권이 없음.	선거법 제6조
	• 연방정부의 공무원, 연방의회사무국 공무원은 연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연방의회에 관한 법 제14조
스웨덴	• 의회의장이나 내각의 장관이 된 경우 겸직금지	헌법 제4절 제9조
스위스	• 연방정부 공무원, 연방대법원 판사는 연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헌법 제144조
캐나다	• 주지사, 주의회의원, 보안관, 군의 검사, 총독이 임명한 모든 판사, 선거공무원은 연방의회의원선거 피선거권이 없음.	선거법 제65조
호 주	• 공무원, 공적기감을 받은 자, 직업 군인 등	연방선거법 제164조
오스트리아	• 유럽 의회나 상원, 하원 의원직은 겸직할 수 없음 • 판·검사, 군인, 경찰이나 공공보안, 재정, 토지평가 관련 등 객관적이고 중립적일 수 없는 행정 업무는 겸직할 수 없음.[66]	헌법 제60조 공직자 청렴법 제2,6a조
벨기에	• 상·하원의원 겸직 금지 • 왕이 장관으로 임명시 상·하원 의원직 정지(장관직 소멸시 의원 복귀) • 연방정부가 유급직으로 임명한 경우 상·하원 의원직 상실 • 지방의회 의원은 상·하원의원 겸직 금지	헌법 제49~51조 제119조
체 코	• 상·하원 의원직은 겸직할 수 없음. • 대통령, 판사는 법령에 따라 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음.	헌법 제21,22조

국가명	공무원 입후보 및 사직기한	근거규정
	• 의원은 대통령직이나 판사직 또는 상·하원 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음.	
칠 레	• 총리, 주지사, 시장, 지방의회 의원, 시의원, 정무장관, 중앙은행 위원회 위원, 대법원 판사, 경력법관, 헌법재판소 판사, 선거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 감사원장, 노동조합 또는 유사단체 관리자급 직위에 있는 자, 국가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장, 검사, 지방검사, 내무공안부 수사관, 육해공군 총사령관, 경찰총장, 수사경찰 사무총장 등은 하원 및 상원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음.	헌법 제57조
덴마크	• 공직자 선거 입후보에 정부 허가 필요 없음.	헌법 제30조제2항
에스토니아	• 공직과 겸직할 수 없음. • 군복무 중인 자는 입후보할 수 없음.	헌법 제63조 선거법 제4조제6항
핀란드	• 군 관련 공무원, 행정감찰관, 법무부장관, 대법원 판사, 최고행정법원장, 검찰총장은 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으며 대통령에 선출되거나 겸직 불가한 업무에 임명 될 경우에는 사직해야 함.	헌법 제27조
그리스	• 공무원, 군인, 보안업체 직원, 지방 공무원, 공공법무인, 지방정부기관, 주지사, 부지사 등은 선거에 출마하기 전까지 사직해야 함.	헌법 제56조
헝가리	• 대통령, 헌법 재판소 재판관, 특정 공직과 법무직, 판사, 경찰, 군인은 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음.	헌법(STATE) 제24조제8항, 제46조
아이슬란드	• 대법원 판사는 피선거권 없음.	헌법 제34조
아일랜드	• 유럽위원회 위원, 유럽사법재판소 판사, 법무감, 유럽감사원재판소 판사, 경찰, 군인, 공무원법상 출마 허가가 명시되지 않은 공무원 등은 피선거권이 없음.	선거법(1992) 제41조
이스라엘	• 대통령, 유대교 최고지도자 랍비 2인, 판사, 종교재판관, 이스라엘국방군 참모총장, 임기 내 행정부 각 부처 장관 및 랍비,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고위공무원 및 고위 장교,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고위 경찰간부 및 고위 교도관,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공기업 고위 근로자 등은 의회 총선 후보자명부 제출일 이전 또는 법령에 의해 정해진 일자 이전에 사직해야함. • 각 직렬 최고위급 공무원, 3급 이하 공무원, 이스라엘국방군 장교, 경찰, 교도관 등은 선거법 제56조에서 정하는 기간 이전에 사직해야 입후보할 수 있음.	의회기본법 제7조 선거법 제56조
이탈리아	• 도의회의장, 인구 20,000명이 넘는 자치시의 시장, 경찰서장 및 부서장과 공안담당 검사장, 내각 각 부처의 장관, 사르데냐 자치주 정부 대표, 중앙정부 조정관 등,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공무원 및 부지사, 일정한 영역에서 명령권을 갖고 있는 장군 이상의 장교는 임기 만료일 전 180일 이전에 사직해야 입후보할 수 있음. • 법관(고등기관에서 근무하는 법관을 제외)은 후보자등록일 현재 6개월 이상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그 관할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 이전에 휴직이나 면직이 되어 있어야 함. • 명예직 외교관을 제외한 일반 외교관 등 • 국가와 업무상의 계약이나 하청 등의 관계에 있는 사기업이나 회사의 대표자 등	하원의원선거법 제7,8,9,10조
라트비아	• 대통령, 감사원장 또는 감사위원, 특명전권대사 또는 전권대사, 헌법재판소 판사, 검사, 군인, 경찰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후보자명부 등록 후 사임해야 하며 등록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 관련 서류를 제출 • 유럽의회 의원이 의회 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의회의원 선서와 동시에 유럽의회 의원 자격을 상실 • 시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의회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당선 확정과 동시에 지방의원 자격을 상실 • 헌법재판소가 아닌 일반 법원 판사가 의회 의원에 당선될 경우 당선 확정과 동시에 판사 자격을 상실함.	선거법 제6조

국가명	공무원 입후보 및 사직기한	근거규정
리투아니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지방의회의원 후보자가 될 수 없음. • 공직에서 사임한 지 4년 이후에 출마 가능	공무원법 제44조제2항 선거법 제2조 제5항
룩셈부르크	• 공무원, 국가직 근로자, 정부 또는 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근로자, 철도공사 근로자, 국가위원회 행정기구 근로자(사임 제외), 판사, 회계위원회 위원, 군 복무자 등은 피선거권이 없음.	선거법 제129조제1항
멕시코	• 군인, 헌병대, 경찰, 장·차관, 대법원 치안 판사, 선거법원 판사 주지사, 연방선거위원회 위원, 상하원지방의회 의원 및 의장, 지방정부 및 정치-행정기구의 장(長), 종교지도자 등 • 상하원 의원은 연속해서 출마할 수 없고, 다음 선거에 출마 가능(즉, 연임 불가) ※ 주지사의 경우 선거일 90일 전 사임하더라도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선거구에 출마할 수 없음. ※ 선거법원 판사, 주지사, 연방선거위원회 위원, 지방정부 및 정치-행정기구의 장(長)의 경우 선거절차 개시일로부터 3년 전 사임해야 함.	헌법 제55,58,59조 연방선거법 제10조
노르웨이	• 각 행정부처의 공무원(장관, 정치고문 제외), 대법원 판사, 외교단 또는 영사직원은 선거일 당일까지 위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입후보 제한	선거법 제3-1조
네덜란드	• 상원, 하원 의원직은 겸직할 수 없음. • 장관, 국무장관, 국무위원, 회계법원 판사, 국가 행정 감찰관 또는 부감찰관, 대법원 판사 또는 대법원의 검찰 총장, 법무장관 겸직 금지	헌법 제57조
뉴질랜드	• 선거위원회의 위원과 부위원, 선거관리관은 입후보 할 수 없음. • 공무원과 경찰 혹은 국가법에 따라 고용된 사람은 휴직 상태에서만 입후보 할 수 있음.	선거법 제47A조 제53조
폴란드	• 대통령, 상원, 하원 의원직은 겸직할 수 없음. • 국립은행장, 시민권위원장, 아동권리위원장, 금융통화위원회, 전국 라디오TV연합회위원, 외교대사, 판사, 검사, 공무원(행정부 장관은 제외), 현역군인, 경찰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원은 겸직이 불가	헌법 제102,103조
포르투갈	• 대통령, 판·검사, 군인, 외교관, 선거위원회 위원, 세무서의 장·책임자, 사법권을 갖는 종교 성직자는 그들이 활동하는 지역의 선거구에 후보자가 될 수 없음.	선거법 제5,6조
슬로바키아	• 판사, 검사, 국선 변호인, 군인, 경찰, 유럽의회의원과 겸직할 수 없음. • 의원이 정부 관료 직위에 임명될 경우 당사자의 의원직위는 소멸되지 않으나 행사되지는 않음.	헌법 제77조
슬로베니아	• 선거공무원은 피선거권이 없으며, 후보자 출마 시 법률에 따라 퇴직됨.	의회선거법 제25조
터 키	• 판사, 검사, 대법원 판사, 고등교육위원회 위원, 기타 공무원, 시장, 군 장교, 부사관, 라디오TV고등위원회 위원, 지방의회의원 및 주의회의원, 지방 각 주 및 이하 행정단위의 정당 행정위원회 이사 및 위원에 해당하는 직위를 가진 자는 사임해야 함.	헌법 제76조
	• 최고선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주선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입후보를 위해 총선 또는 중간선거 1개월 전 또는 재선거 공표 후 7일 이내로 사임해야 함.	의회선거법 제17,18조

출처: New Parline. IPU's open data platform
http://archive.ipu.org/wmn-e/classif.htm (검색일 2019.5.7.)

66) 오스트리아의회.
https://www.parlament.gv.at/ENGL/PERK/NRBRBV/NR/ABGNR/index.shtml (검색일 2019.8.5)

<표 5-8> OECD국가의 후보자 사퇴 시한

국가명	사퇴 시한	비고
영 국	후보자등록일 마감 전까지	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미 국	예비선거에서 추천된 후보자는 총선거에서 사퇴 불가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8801조
프랑스	후보자등록일 마감 전까지	선거법 시행규칙 제100조
독 일	후보자추천서 제출 후 추천서 승인기간 전까지	선거법 제23,24조
일 본	후보자등록일 마감 전까지	공직선거법 제86조
캐나다	후보자등록일 마감 전까지	선거법 제74조
호 주	후보자등록일 마감 전까지	연방선거법 제177조
헝가리	선거일 전까지	선거법 제137조
멕시코	선거일 전 30일까지 ※ 선거일 7월 첫 번째 일요일 입후보등록기간: 3.15~3.22 또는 4.22~4.29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기간 다음날부터 선거일 3일전까지로 90일, 70일)	선거법 제227조
뉴질랜드	후보자등록일 마감 전까지	선거법 제146조

※ OECD국가(36개국) 중 비례대표제 실시국가 23개국을 제외한 다수대표제로 지역구 후보자를 뽑는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

[참고자료 5-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향상을 위한 노력

1. 영 국

- 1990년대 의회 내 여성의원이 10%도 되지 않자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정당들은 여성의 대표성 향상을 위해 여성후보자 육성 등 많은 정책들을 도입하기 시작함.[67]
  - 이 중 특정 선거구에 여성후보만을 출마하는 방식인 여성명부제(all-woman shortlists: AWS)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함.
  - 하지만 비민주적이고,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과 함께 1992년 선거에서 노동당만 당론으로 채택하고 당 명부 작성에 활용함.
  - 노동당은 1997년 선거부터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정책을 통해 여성의원의 실질적인 증가와 함께 여성 지원을 위한 정책들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의 경우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음.

2. 미 국

- 미국의 헌법과 법령 및 정당 내부 규정에서도 여성할당제를 규정하고 있거나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상원·하원의원의 여성대표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음.[68]

<표 5-9> 미국 연방 상·하원의 최근 의회 여성의원 비율

의회회기 (연도)	제113차 (2013-2015)	제114차 (2015-2017)	제115차 (2017-2019)	제116차 (2019-2021)
여성의원 비율	19.1%	19.4%	19.4%	23.7%

67) https://en.wikipedia.org/wiki/All-women_shortlist (검색일 2019.5.11.)
Childs. Sarah, Lovenduski. Joni, Campbell. Rosie (November 2005). 'Women at the top 2005: changing numbers, changing politics.' London: Hansard Society.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2 September 2009. https://www.iknowpolitics.org/en/2007/05/women-top-2005-changing-numbers-changing-politics (검색일 2019.5.11.)

68) https://en.m.wikipedia.org/wiki/Women_in_government#United_States (검색일 2019.6.24.)

- 미국은 민주정치에 대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여성 정치참여율이 낮고 아직 여성대통령이 없으며, 성별 편향에 있어서 여성은 정치적으로 야심차게 독립적으로 보이지 않아 취임이후 남성 지도자에 의해 도태될 수 있으며, 종종 여성은 가족화합의 역할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의 시기에 국가를 단결시키는 임무에 부적합하다는 등의 편견이 지적되기도 함.[69]
- 최근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선거에 있어서 여성 차별은 없으며, 2017년도 연구에서 여성대통령의 선출에 대한 반대의견은 기존 26%에서 13%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70]
- CAMP(Center for America Women and Politics), Elect Women Magazine League of Women Voters(LWV)등의 적극적인 활동 및 역할 기반조성 기대[71]

3. 프랑스

- 프랑스 주요정당은 성별평등 후보자공천 원칙 준수를 당헌으로 정하며, 국가는 국고 보조금 지원에 차등을 둠.
  - 「정치생활의 재정투명화 법률 88-227」[72] 제9-1조에 따라 하원의원 후보자의 성별차이는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차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원을 제한함.
    ※ 자세한 내용은 <참조 5-2> 프랑스의 「남녀동수법」, p.388 참조
  - 사회당: 성별평등후보비율적용(당헌 1.4.1)[73]

---

69) The Atlantic. 2016.11.12. 'Why It's So Hard for a Woman to Becom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ttps://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16/11/clinton-woman-leader-world/506945/ (검색일 2019.7.26.)

70) Burden, Barry C. Ono, Yoshikuni. Yamada, Masahiro. 2017.5.4. 'Reassessing Public Support for a Female President.' The Journal of Politics. 79(3) p.1073~1078. https://www.journals.uchicago.edu/doi/10.1086/691799 (검색일 2019.7.26.)

71) ElectWomen. 'Your Home for Women's Political News.' https://electwomen.com/ (검색일 2019.7.20.)

72) loi n°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la transparence financièe de la vie politique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LEGITEXT000006069061 (검색일 2019.5.30.)

73) 사회당(PS) 당헌 및 당규 http://www.parti-socialiste.fr/wp-content/uploads/2016/01/Statuts-et-re%CC%80glement-2015-PS.pdf (검색일 2019.5.28.)

- 공화주의자당: 남녀후보동등비율을 적극 권장(당헌 4-2조)[74]
- 전진하는 공화국당(LREM): 비례대표제 후보자명부 작성 시 남녀동등원칙 적용(당헌 23-2)[75]
- 유럽환경 녹색당: 후보자의 추천과 추천후보자 비준을 담당하는 공천위원회 구성에도 남녀동등원칙을 적용(당헌 제36조·당규 III-2)[76]

4. 독 일

- 연방선거법상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향상을 위한 별도 규정은 없고, 정당이 자발적으로 후보자 추천 시 여성할당제 등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음.

<표 5-10> 독일 2019년 연방의회의원 구성 현황[77]

	총 의석수		남성의원	여성의원	비율
	709		489	220	69%:31%
기민당(CDU)	200	246	197	49	80%:20%
기독당(CSU)	46				
사민당(SPD)	152		86	66	57%:43%
독일대안당(AfD)	91		81	10	89%:11%
자민당(FDP)	80		62	18	78%:22%
좌파당(Die Linke)	69		32	37	46%:54%
녹색당(Grüne)	67		28	39	42%:58%
무소속	4		3	1	75%:25%

74) 공화주의자당(LR) 당헌
https://www.republicains.fr/sites/default/files/2019-01/2018-07-05-lR-reglement-interieur.pdf (검색일 2019.5.30.)

75) 전진하는 공화국당(LREM) 당헌
https://storage.googleapis.com/en-marche-fr/Site%20Media/STATUTS_LA_REPUBLIQUE_EN_MARCHE.pdf (검색일 2019.5.30.)

76) 유럽환경 녹색당 당헌(Les Verts)
https://eelv.fr/wp-content/uploads/2011/11/Statuts-Nationaux-V4-juin-2016-1.pdf (검색일 2019.5.30.)

77) 의회홈페이지. 독일 연방의회 의원 구성현황
https://www.bundestag.de/en/members (검색일 2019.2.20.)

<표 5-11> 독일 여성할당제 관련 정당 규정 현황[78]

	여성할당비율	내용	여성당원비율 (2017년 기준)
녹색당 (Grüne)	50%	1979년 정당창당 시 모든 직의 최소한 절반은 여성이 담당하도록 결정	39%
사민당 (SPD)	40%	1988년 모든 직과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한 33% 할당규정, 1998년 40%로 상향 조정	32%
기민당 (CDU)	30%	1994년 1/3할당 논의, 1996년 도입	26%
기독당 (CSU)	40%	2010년 40% 할당제 채택	21%
좌파당 (Die Linke)	50%	1992년 모든 직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원선거를 위한 후보자명부에 최소 50% 여성할당 도입	37%
자민당 (FDP)	-	2013년 40% 여성후보자 할당을 주장했으나 사라졌고, 2017년 총선을 통해 연방의회에 재진입한 후 2018년 할당제 논의 시작하려고 함.	23%
독일대안당 (AfD)	-	여성할당제 없음.	16%

5. 일 본

- 공직선거법상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향상을 위한 할당제 등 관련 내용은 없음.
- 2018년 5월 23일「정치 분야 남녀 공동 참여 추진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으로 정치 분야에서 남녀 공동 참여 추진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함.[79]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선거의 공정을 확보하면서 정치분야에 있어서의 남녀 공동참여 추진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책정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며,

78) 신옥주. 2018. 실질적 성평등실현 관점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연구. 서울法學. 26(2).
독일 정당 여성당원 비율 2017년 기준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192247/umfrage/frauenanteil-in-den-politischen-parteien/ (검색일 2019.2.20.)
독일 여성할당제 관련
https://www.diw.de/documents/.../diw_econ_bull_2017-37.pdf (검색일 2019.2.20.)

79) 아사히신문 디지털. 2018.5.16. 候補者男女均等法が成立 女性議員増加 政党に努力促す
https://www.asahi.com/articles/ASL5H7K1QL5HUOOB019.html (검색일 2019.5.30.)

-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남녀 후보자의 수를 가능하면 균등하게 할 것을 지향하도록 하는 권고 규정을 두고 있음(위반 시 제재규정은 없음).

※ 2019년 4월 시행되는 통일지방선거 및 7월 참의원 통상선거에 적용되며, 여성의원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일본 최초의 법률임.

6. 스페인

- 대상선거(선거법 제44조의2)
  - 상원의원, 하원의원, 시의원, 카나리아 도이사회 및 도민회(島民會) 의원, 유럽의회의원, 각 지방자치주의회의원
- 내용
  - 각 후보자명부는 남녀 구성성비를 균등하게 해야 함.
  - 남녀 후보자 수는 전체 후보자명부에서 각각 최소 40% 도달해야 함.
  - 결원 시 충원이 필요한 공석의 수가 5석 미만일 때 남녀 성비는 숫자적 균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함.
  - 각 5석마다 최소 40%의 성비를 유지해야 하며, 모든 후보자명부(대리후보자명부 포함)에 요구되는 성비를 지켜야 함.
- 위반 시 제재조항(선거법 제47조제2,4항)
  - 남녀후보자 성비 위반 시 후보자명부 등록이 거부됨.

7. 스웨덴

- 선거법상 관련 규정은 없으나 시민단체 등에서 정당의 정강·정책에 의원 정수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을 선출되도록 노력함.
  - 그 결과 자유당은 1972년 정당 내부 이사회와 위원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최소 40% 이상이어야 하는 정강·정책을 도입하였고.[80] 이러한 권고는

1984년 총선의 대리의원명부 할당으로 확장되었음(대리의원은 선출의원과 다른 성별로 대체되도록 명부를 구성).[81]

- 1970년대 이후 사회민주당, 좌파당, 녹색당은 지방의원 정수의 50%가 선출되도록 후보자명부에 남녀가 교대로 등재되어야 하며, 기독민주당은 남성과 여성이 대리의원 명부에 교대로 등재되어야 한다는 비공식적인 정책을 채택하였음. 기독민주당은 나아가 1987년 정당의 후보자명부에 남녀 모두 40% 이상을 추천할 것을 권고하는 정강을 도입하였음.
- 보수당과 중앙당은 각각 1993년과 1996년에 남녀후보동등비율을 결정하였지만 후보자명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후보자추천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함.

<표 5-12> 스웨덴 여성할당제 관련 정당 규정 현황

정당명	후보자명부 할당 도입 및 규정
사회민주당 Socialdemokraterna [S]	1993년 - 후보자 남녀교호순번제
좌파당 Vänsterpartiet [V]	1987년 - 후보자명부의 할당을 최초 도입 1993년 - 최소 50%의 여성할당을 규정
녹색당 Miljöpartiet de Gröna [MP]	1987년 - 후보자명부의 할당을 최초 도입 1997년 - 남녀 후보 각각의 성비를 50%로 규정 (남녀 후보자의 수의 격차는 ±1까지 허용)
온건당 Moderaterna [M]	2009년 유럽의회선거 후보자명부에 여성과 남성후보를 동수로 추천

8. 스위스

- 별도의 법적 규정은 없음.
  - 1993년 여성정치인단체에 의해 제기된 전국적인 할당제를 헌법으로 규정하고

80) 유럽의회. 1997.3. 'DIFFERENTIAL IMPACT OF ELECTORAL SYSTEMS ON FEMALE POLITICAL REPRESENTATION.'
https://www.europarl.europa.eu/workingpapers/femm/w10/4_en.htm (검색일 2019.9.19.)

81) IDEA. 'GENDER QUOTAS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data/gender-quotas/country-view/261/35 (검색일 2019.10.15.)

자 하는 국민발안이 제안됨.[82]

- 의회에서의 50% 할당, 정부와 연방대법원 40% 할당을 내용으로 하였으나 국민투표에서 부결됨.
- 1998년 의회의원들은 대체발안(Counter Project)으로 전국 선거에서 30%의 할당을 제안하였고 1993년의 발안과 함께 2000년까지 이어지는 의회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함.
- 스위스는 연방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연방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 노인 및 청년, 소수 민족 등에 대한 고려가 역사적으로 우선시 될 수 없었으며 여성할당제를 실시할 경우 사회적인 다른 집단에 대하여 역차별이 될 수 있고, 모든 집단에 추가적인 할당을 하게 될 경우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여성 여성할당제를 반대하는 주요 논점이었음.

- 스위스 사회 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r Schweiz[SPS/PSS])은 정당 후보자명부에 여성을 위한 40%의 할당을 자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83]
- 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성평등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자는 의원발의안이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음.[84]

9. 캐나다

- 캐나다는 법으로 여성할당제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 제28조 남녀평등 조항에 따라 정당이 자발적으로 여성후보자를 적극 추천하고자 노력함.

  ※ 2016년 10월 여성후보자와 남성후보자의 추천 비율 차이가 10%를 넘으면 선거비용반환액을 감축하여 지급하는 선거법 개정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않았음.[85]

---

82) Lea Sgier. 2004.4 'Gender quota debates as discourses on the public sphere.' file:///C:/Users/user/Desktop/63b14e81-b7c4-49fc-baae-8cb2212ad736.pdf (검색일 2019.10.15.)

83) IDEA. 'GENDER QUOTAS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data/gender-quotas/country-view/76/35 (검색일 2019.10.15.)

84) 스위스의회(Ständerat). '위원회 보고서 2018(17.484 é Iv. pa. Comte. Pour une représentation équitable des genres dans les autorités fédérales).' https://www.parlament.ch/centers/kb/Documents/2017/Rapport_de_la_commission_CIP-E_17.484_2018-01-18.pdf (검색일 2019.10.15.)

※ 신민주당은 2015년 총선에서 43.2%를 여성후보자로 추천하는 등 역대 가장 많은 여성 후보자를 추천했고, 자유당도 2008년에 가장 많은 여성후보자를 추천했음. 또한 맑스-레닌주의 정당은 의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9년과 1980년에 신민주당보다 더 많은 여성 후보자를 추천했음.[86]

- 그러나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캐나다의 여러 정당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여성후보자의 당선율이 높지 않아 대부분의 정당들은 의석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음. 캐나다 정치권에서는 그 원인을 소선거구제로 보고 있어 선거제도를 비례대표제로 전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음.[87]

※ 1921년 총선에서 최초의 여성 의원이 당선된 이후로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2015년 총선에서는 88명(26%)의 여성후보자가 당선되었음.

10. 호 주

- 호주는 선거법을 통한 여성할당제를 제도화하고 있지 않음.
- 각 정당별로 당헌·당규에 따라 차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노동당의 경우 당헌에 차별금지 조항(제19조 affirmative action)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 지구당의 후보자 선출 결과 여성비율이 적을 경우 당대의원회(National Executive)에서는 주 지구당의 결정과 다른 후보자를 추천할 수도 있음.[88]
- 2016년 호주연방선거의 경우 1,625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였고, 이 가운데 남성 후보자는 1,084명, 여성 후보자는 540명, 기타 후보자 1명이었음.[89]

---

85) https://openparliament.ca/bills/42-1/C-237/ (검색일 2019.8.9.)

86) https://en.wikipedia.org/wiki/Women_in_Canadian_politics (검색일 2019.8.8.)

87) https://www.cbc.ca/news2/interactives/women-politics/ (검색일 2019.8.9.)

88) Labor's National Platform(노동당 정당강령). https://cdn.australianlabor.com.au/documents/ALP_National_Platform.pdf (검색일 2019.6.14.)

89) 호주선거위원회. 'Electoral Pocketbook(2016년 연방 선거 결과 포함).' p.40. https://www.aec.gov.au/About_AEC/Publications/electoral_pocketbook/2016/2016-electoral-pocketbook.pdf (검색일 2019.6.14.)

<표 5-13> 각국의 여성 의회의원 비율

순위	국가명	하원 및 단원				상원			
		선거일	의석	여성의원	%	선거일	의석	여성 의원	%
1	르완다	2018.9.3	80	49	61.3%	2011.9.26	26	10	38.5%
2	쿠 바	2018.3.11	605	322	53.2%	-	-	-	-
3	볼리비아	2014.10.12	130	69	53.1%	2014.10.12	36	17	47.2%
4	멕시코	2018.7.1	500	241	48.2%	2018.7.1	128	63	49.2%
5	스웨덴	2018.9.9	349	165	47.3%	-	-	-	-
6	그레나다	2018.3.13	15	7	46.7%	2018.4.27	13	4	30.8%
7	나미비아	2014.11.29	104	48	46.2%	2015.12.8	42	10	23.8%
8	코스타리카	2018.2.4	57	26	45.6%	-	-	-	-
9	니카라과	2016.11.6	92	41	44.6%	-	-	-	-
10	남아프리카공화국	2014.5.7	393	168	42.7%	2014.5.21	54	19	35.2%
11	세네갈	2017.7.30	165	69	41.8%	-	-	-	-
12	핀란드	2015.4.19	200	83	41.5%	-	-	-	-
13	스페인	2016.6.26	350	144	41.1%	2016.6.26	266	98	36.8%
14	노르웨이	2017.9.11	169	69	40.8%	-	-	-	-
15	뉴질랜드	2017.9.23	120	48	40.0%	-	-	-	-
16	프랑스	2017.6.11	577	229	39.7%	2017.9.24	348	112	32.2%
17	모잠비크	2014.10.15	250	99	39.6%	-	-	-	-
18	아르헨티나	2017.10.22	255	99	38,8%	2017.10.22	72	30	41.7%
〃	에티오피아	2015.5.24	547	212	38.8%	2015.10.5	153	49	32.0%
20	북마케도니아	2016.12.11	120	46	38.3%	-	-	-	-
21	아이슬란드	2017.10.28	63	24	38.1%	-	-	-	-
22	벨기에	2014.5.25	150	57	38.0%	2014.7.3	60	26	43.3%
〃	에콰도르	2017.2.19	137	52	38.0%	-	-	-	-
24	세르비아	2016.4.24	247	93	37.7%	-	-	-	-
25	덴마크	2015.6.18	179	67	37.4%	-	-	-	-
26	오스트리아	2017.10.15	183	68	37.2%	-	61	22	36.1%
27	탄자니아	2015.10.25	393	145	36.9%	-	-	-	-
28	부룬디	2015.6.29	121	44	36.4%	2015.7.24	39	18	46,2%
29	튀니지	2014.10.26	217	78	35.9%	-	-	-	-

순위	국가명	하원 및 단원				상원			
		선거일	의석	여성의원	%	선거일	의석	여성 의원	%
30	이탈리아	2018.3.4	630	225	35.7%	2018.3.4	320	110	34.4%
〃	포르투갈	2015.10.4	230	82	35.7%	-	-	-	-
32	우간다	2016.2.18	459	160	34.9%	-	-	-	-
33	벨라루스	2016.9.11	110	38	34.5%	2016.9.13	56	17	30.4%
34	동티모르	2018.5.12	65	22	33.8%	-	-	-	-
35	모나코	2018.2.14	24	8	33.3%	-	-	-	-
36	네 팔	2017.11.26	275	90	32.7%	2018.2.7	59	22	37.3%
37	스위스	2015.10.18	200	65	32.5%	2015.10.18	46	7	15.2%
38	안도라	2015.3.1	28	9	32.1%	-	-	-	-
39	영 국	2017.6.8	650	208	32.0%	-	789	208	26.4%
40	가이아나	2015.5.11	69	22	31.9%	-	-	-	-
〃	짐바브웨	2018.7.30	270	86	31.9%	2018.7.30	80	35	43.8%
42	네덜란드	2017.3.15	150	47	31.3%	2015.5.26	75	27	36.0%
43	카메룬	2013.9.30	180	56	31.1%	2018.3.25	100	26	26.0%
44	엘살바도르	2018.3.4	84	26	31.0%	-	-	-	-
45	라트비아	2018.10.6	100	31	31.0%	-	-	-	-
46	트리니다드토바고	2015.9.7	42	13	31.0%	2015.9.23	31	11	35.5%
47	독 일	2017.9.24	709	219	30.9%	-	69	27	39.1%
48	앙골라	2017.8.23	220	66	30.0%	-	-	-	-
49	호 주	2016.7.2	150	45	30.0%	2016.7.2	76	30	39.5%
50	페 루	2016.4.10	130	39	30.0%	-	-	-	-
	⋮						⋮		
121	한 국	2016.4.13	298	51	17.9%	-	-	-	-

출처: New Parline. IPU's open data platform.
http://archive.ipu.org/wmn-e/classif.htm (검색일 2019.5.7.)

<표 5-14> 각국의 여성할당제

구분	상원의원 선거	하원의원 선거	지방의원 선거
지정의석 할당제 (Reserved Seats)	아프가니스탄, 부룬디, 아이티, 케냐, 파키스탄, 르완다, 남수단, 에스와티니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방글라데시, 부룬디, 중국, 지부티,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라크, 요르단, 케냐, 모리타니, 모로코, 네팔, 니제르, 파키스탄, 르완다,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에스와티니, 대만, 탄자니아, 우간다, 짐바브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방글라데시, 부룬디, 지부티, 에리트레아, 기니, 인도, 이라크, 요르단, 케냐, 레소토, 리비아, 모리타니, 모리셔스, 모로코, 니제르,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필리핀, 르완다,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대만, 탄자니아, 동티모르, 우간다, 바누아투
후보자추천 관련 법정할당제 (Legislated Candidate Quotas)	아르헨티나,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프랑스, 이탈리아, 모리타니, 멕시코, 파라과이, 콩고공화국, 스페인, 우루과이, 짐바브웨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벨기에,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카보베르데, 칠레, 콜롬비아,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프랑스, 그리스, 기니, 가이아나,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이라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케냐, 한국, 키르기스스탄,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마케도니아, 말리, 모리타니, 멕시코,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니카라과, 팔레스타인,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콩고공화국, 르완다, 산마리노, 세네갈,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솔로몬군도, 스페인, 태국, 동티모르, 토고, 튀니지,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알바니아, 알제리,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벨기에,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카보베르데,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프랑스, 그리스,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한국, 키르기스스탄, 라이베리아, 마케도니아, 말리, 멕시코,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나미비아, 네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콩고공화국, 르완다,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정당자율 할당제 (Voluntary Party Quotas)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볼리비아, 보츠와나, 브라질, 카메룬, 캐나다, 칠레, 코트디부아르,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엘살바도르, 적도기니,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프랑스, 독일, 과테말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케냐, 한국,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라위, 말리, 몰타, 멕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노르웨이, 파라과이, 필리핀,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탄자니아, 태국, 터키, 영국, 우루과이, 짐바브웨		
기타	조지아	정당후보자명부의 30%를 여성으로 할당할 경우 보조금 지급 (정치 연합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제7항)	
	일본	정당의 후보자 선정 시 남녀 성비가 가능한 균등해지는 것을 지향해야 함. 단 의무사항은 아님(정치분야의 남녀 공동참여 추진에 관한 법 제2조)	

※ 지정의석 할당제: 헌법이나 선거법에 여성만이 차지할 수 있는 의석 수를 규정
후보자추천 관련 법정할당제: 선거법에 각 정당의 후보자 추천시 성비 비율이나 추천 순번을 규정
정당자율할당제: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성비 비율이나 순번에 대해 결정

출처: IDEA. Gender Quotas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data/gender-quotas/country-overview (검색일 2019.5.7.)
Atlas of Electoral Gender Quotas. 2014.
https://www.idea.int/sites/default/files/publications/atlas-of-electoral-gender-quotas.pdf (검색일 2019.5.7.)

<표 5-15> 지정의석할당제 국가 현황

국가명	해당선거	규정 내용	근거규정
아프가니스탄	상원	의원 중 2/3는 간선제로 선출 대통령이 임명하는 1/3의 의원 중 50%를 여성으로 임명	헌법 제84조
	하원	249석 중 68석을 여성에게 할당 선거 결과가 할당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다 득표한 여성 후보를 추가로 선출(best loser system)	헌법2004 제83조 선거법2010 제20,23조
	지방	지방의회 의석 중 20%를 여성에게 할당 선거 결과가 할당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다 득표한 여성 후보를 추가로 선출(best loser system)	선거법 제30조제2항
방글라데시	의회	350석 중 50석을 여성에게 할당 비례대표선거결과에 따라 정당에게 여성지정의석을 할당	헌법 제65조(3A)
	지방	광역지방의석은 기초지방의회에서 간선으로 25%를 할당 기초지방의회에서는 3개의 기초 단위 선거구를 하나의 여성전용선거구로 하여 여성 의원을 선출	헌법 제9조
부룬디	상원	의석 중 30%를 여성에게 할당 후보자명부에서 최소 5% 이상 득표한 여성 후보를 추가로 선출(best loser system)	헌법2005 제180조 선거법2014 제142조
	하원	의석 중 30%를 여성에게 할당 후보자명부의 4명 중 한 명은 여성이어야 함. 후보자명부에서 최소 5% 이상 득표한 여성 후보를 추가로 선출(best loser system)	헌법 2005 제164조제1항, 제168조 선거법 제108조제1항, 제127조제4항
	지방	간선제 공동 평의회 15명 중 30%를 여성에게 할당 선거 결과가 할당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독립기관인 선거위원회가 최다 득표한 여성 후보를 추가로 선출(best loser system)	선거법 제182조제2항, 제177조제2항, 제181조제2항, 제191조
지부티	의회	의석 중 25%를 여성에게 할당 비례대표선거결과에 따라 정당에게 여성지정의석을 할당	선거법 219/AN/18/7ème L 제1조
에리트레아	의회·지방	의석 중 30%를 여성에게 할당 별도 시행 규정 없음.	선거법 제12조제4항 선거법 제17조제2항
아이티	상원·하원	의석 중 30%를 여성에게 할당 별도 시행 규정 없음.	헌법 제17조제1항, 제30조제1항1
기 니	지방	지방의회 의석 중 33%, 공동평의회 의석의 30%를 여성에게 할당 별도 시행 규정 없음(할당 충족 시 정당에 보조금 지원)	선거법 제103조 선거법 제115조
인 도	지방	소도시, 마을의회 의석 중 33%가 여성에게 할당되도록 별도의 선거구를 순환방식으로 지정해 선출	헌법 제243조D제2,3항 제243t조
이라크	의회	의석 중 25%를 여성에게 할당 선거 결과가 할당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여성 후보자를 추가로 선출(best loser system)	헌법 제49조4 선거법 26(2009) 제3조제3항
	지방	3명의 당선자 중 마지막 한명은 최다 득표한 여성 후보자로 선출(best loser system).	선거법 제13조제2항

국가명	해당선거	규정 내용	근거규정
요르단	하원	108석 중 15석을 여성에게 할당 선거 결과가 할당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국적으로 탈락한 여성 후보자들의 해당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의 비율을 계산해서 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선출(best loser system)	선거법 제51조
	지방	지방의회 970석 중 297석을 여성에게 할당	
케 냐	상원	47석 중 18석을 여성에게 할당 비례대표선거결과에 따라 정당에게 여성지정의석을 할당	헌법 제98조
	하원	47개의 카운티마다 여성 전용 단일선거구를 구성하여 47석의 여성의석을 할당	헌법 제27조제8항, 제81조
	지방	각 카운티 마다 배정된 의석의 1/3을 여성에게 할당 비례대표선거결과에 따라 정당에게 여성지정의석을 할당	헌법 제175조(C), 제177조(1:b), 197조제1항
레소토	지방	시, 도, 지방의회의 의석의 30%를 여성에게 할당 비례대표선거결과에 따라 정당에게 여성지정의석을 할당	지방선거법(2011)
리비아	지역	지방의회 의석 중 일부를 여성에게 할당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별도 시행 규정은 없음.	선거법 제1조제20항, 제46조제2항
모리타니	하원	여성후보 별도 명부를 통해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여 20석의 여성의석을 할당	선거법 제3조
	지역	지방의회 의석 중 20%를 여성에게 할당 비례대표선거결과에 따라 정당에게 여성지정의석을 할당	선거법제2,3조
모로코	하원	395석 중 60석을 여성에게 할당 여성후보 별도 명부를 통해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여 비례대표 방식으로 선출	선거법20-16 제23조제2항
	지방	광역지방의회 의석 중 1/3을 여성에게 할당 기초지방의회에서는 여성전용선거구를 지정해야 함.	지방의회의원선거에 관한 법59-11 제76,77,143조
네 팔	하원	의석 중 1/3은 여성에게 할당 의장과 부의장 중 한 명은 여성이 선출되어야 함.	헌법 제84조제8항, 제91조제2항
니제르	의회·지방	의석의 남녀 성비가 각각 적어도 10% 이상이어야 함. 별도 시행 규정 없음.	선거법 2008/08 제3조
파키스탄	상원	간선제 104석 중 17석을 여성에게 할당	헌법 제59조
	하원	342석 중 60석을 여성에게 할당 비례대표선거결과에 따라 정당에게 여성지정의석을 할당	헌법 제51조
	지방	지정의석의 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비례대표선거결과에 따라 정당에게 여성지정의석을 할당	헌법 제32조, 제106조제1,3항
르완다	상원	간선제와 임명을 통해 의석 중 30%를 여성에게 할당	헌법 제9조제4항, 제82조
	하원	80석 중 24석을 여성에게 할당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도(provice)와 키갈리시티(City of Kigali)에서 각 2명씩 선출(간선) 정당은 여성후보자를 30% 이상 추천해야 함.	헌법 제9조제4항, 제76조 선거법 제5,109조

국가명	해당선거	규정 내용	근거규정
	지방	모든 지역에서 1명의 여성의원과 1명의 남성의원을 직접 선거로 선출	선거법27/2010 제155,156조
사모아	의회	의석 중 10%를 여성에게 할당 선거 결과가 할당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다 득표한 여성 후보를 추가로 선출(best loser system)	헌법 제44조
사우디 아라비아	의회	의석 중 20%를 국왕이 여성으로 임명	의회법 국왕령 A/91
시에라리온	지방	구 개발 위원회 10석 중 5석을 여성에게 할당 별도 시행 규정 없음.	지방자치법 제95조
남수단	상원	간선제와 임명을 통해 의석 중 25%를 여성에게 할당	헌법 제16조4:a 선거법 제60조제3항
	하원	의석 중 25%를 여성에게 할당 여성후보 별도 명부를 통해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여 비례대표 방식으로 선출	헌법 제16조4:a 선거법 제60조제2항
	지방	각 주의 의석 중 25%를 여성에게 할당 여성후보 별도 명부를 통해 비례대표 방식으로 선출	헌법 제162,163조 선거법 제61조
수 단	하원	의석 중 25%를 여성에게 할당 여성후보 별도 명부를 통해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여 비례대표 방식으로 선출	선거법 제29조, 제33조제7항
에스와티니	상원	30석 중 13석을 여성에게 할당 5명은 의회에서 간선을 통해 선출되며 8명은 국왕에 의해 임명됨.	헌법 제94조
	하원	의석 중 50%는 국왕이 여성으로 임명 총선 이후에 여성의원의 수가 전체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4명 이하의 여성의원을 추가로 선출	헌법 제86,95조
탄자니아	하원	의석 중 30%를 여성에게 할당 비례대표선거결과에 따라 정당에게 여성지정의석을 할당	헌법 제66조1:b, 제78조제1항 선거법 제86A조제2항
	지방	의석 중 33%를 여성에게 할당 비례대표선거결과에 따라 정당에게 여성지정의석을 할당	
동티모르	지방	지방의회의 3석을 여성에게 할당 별도 시행 규정은 없음.	지방선거법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우간다	의회	238선거구 중 112개 여성전용선거구를 통해 투표자들이 여성 의원을 직접 선출	헌법 제78조제1항 선거법 제8조
	지방	지방의회 의석의 1/3을 여성에게 할당 여성후보 별도 명부를 통해 선출	헌법 제180조2:b 선거법 제108조제3항
바누아투	지방	각 지방의회 의석 중 1석을 여성에게 할당	도시법 개정(2013)
짐바브웨	하원	210석의 기존 의석에 여성 지정의 60석을 별도로 추가 비례대표선거결과에 따라 정당에게 여성지정의석을 할당	헌법 제124조

출처: IDEA. Gender Quotas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data/gender-quotas/country-overview (검색일 2019.6.14.)

<표 5-16> OECD국가의 후보자 추천 관련 여성할당제와 제재 현황

■ 선거법에 규정이 있는 국가

국가명	해당선거	규정 내용	불이행시 법적제재
프랑스	상원선거	후보자 각각의 성비 50%, 남녀교호순번제 (선거법 제299조제1항, 제300조제1항), ※ 헌법 제1조제2항, 제4조제2항	행정법원에 제소 (선거법 제303조) 후보자명부 등록 거부 (선거법 제301조)
	하원선거	소속 정당 추천 후보자 전체에서 후보자의 성비의 차이가 2%를 미만이어야 함. (정치생활의 재정투명화 법률 88-227 제9-1조) ※ 헌법 제1조제2항, 제4조제2항	할당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에 따라 정당보조금 삭감 (정치생활의 재정투명화 법률 88-227 제9-1조)
	지방선거	도의원선거) 선거인은 투표지 남녀 후보 각 1명에게 투표 (선거법 제191조)	-
		인구 1,000명 이상 코뮌 비례선거, 광역의원 및 코르시카 하원의원 선거) 남녀교호순번제 (선거법 제264조, 제346조제1항)	후보자명부 등록 거부 (선거법 제265조, 제350조)
일 본	의회선거 지방선거	남녀 후보자의 수가 가능한 균등해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정치 분야의 남녀 공동참여 추진에 관한 법 제2조)	제재 규정 없음
스페인	상원선거	후보자 각각의 성비 50%. 명부 순서의 5명마다 할당이 유지되어야 함. (선거법 제44조2의제2항, 제4항)	후보자명부 등록 거부 (선거법 제47조제2,4항)
	하원선거지방선거	후보자 각각의 성비가 최소 40% 이상이어야 함. 명부 순서의 5명마다 할당이 유지되어야 함. (선거법 제44조2의제1항, 제2항)	
벨기에	상원선거 하원선거	후보자 각각의 성비 50%, 남녀 교호순번제 (선거법 제117조)	후보자명부 등록 거부 (선거법 제119조)
	지방선거	후보자 각각의 성비 50% (지방선거법 제23조제9항)	후보자명부 등록 거부 (지방선거법 제26조제2항)
칠 레	상원선거 하원선거	각각의 성비는 후보자의 60% 이상을 차지할 수 없음. 남녀 교호순번제 (선거법 18,700 제23조, 선거법 20,840 제1조)	후보자명부 등록 거부 (선거법 18,700 제3조)
그리스	의회선거	후보자 각각의 성비가 33% 이상이어야 함. (선거법시행령 26/2012 제34조) ※(헌법 제116조제2항)	후보자명부 등록 거부 (선거법시행령 26/2012 제35조)
	지방선거	후보자 각각의 성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33% 이상이어야 함. (선거법 3852/2010 제18조제3항) ※ 헌법 제116조	후보자명부 등록 거부 (선거법 3852/2010 제19조제6항)
아일랜드	하원선거	후보자 각각의 성비가 최소 30% 이상이어야 함. (선거법 1997 정당과 성 평등의 국고보조에 관한 장) ※ 2012에 개정되어 최초 선거 시 30% 이상이지만 첫 선거 실시 후 7년 이내에 40%까지 할당을 해야 함.	정당 국고보조금 50% 삭감 (선거법 1997 정당과 성 평등의 국고보조에 관한 장 제42조제c항)

국가명	해당선거	규정 내용	불이행시 법적제재
이탈리아	상원선거	남녀 교호순번제 (선거법 165/2017 제3조제3항) ※ 헌법 제51조	-
	하원선거	각각의 성비는 후보자의 60% 이상을 차지할 수 없음. (선거법 165/2017 제3조3.1) ※ 헌법 제51조	
	지방선거	연방헌법에 따라 20개주 각 지방법으로 할당제 규정 (연방헌법 제117조)	지역별 규정
멕시코	상원선거 하원선거	후보자 각각의 성비가 최소 45% 이상이어야 함. 후보자명부 순서의 5명마다 할당이 유지되어야 함. (선거법 제219,220,232조) ※ 헌법 제41조	후보자명부 등록 거부 (선거법 제221조)
	지방선거	각 주별로 규정	각 주별로 규정
폴란드	하원선거	후보자 각각의 성비가 최소 35% 이상이어야 함. (선거법 제211조제3항)	후보자명부 등록 거부 (선거법 제215조제5항)
	지방선거	후보자 각각의 성비가 최소 30% 이상이어야 함. 후보자명부의 순서 3명마다 1명은 다른 성별로 구성되어야 함. (선거법 제425조제3항, 제457조제2항)	후보자명부 등록 거부 (선거법 제431조)
포르투갈	의회선거 지방선거	후보자 각각의 성비가 최소 33% 이상이어야 함. 후보자명부의 3명마다 1명은 다른 성별로 구성되어야 함. (평등에 관한 법 3/2006 제1조, 제2조제1,2항)	선거운동 국고보조금 삭감 (선거법 제7조)
슬로베니아	하원선거	후보자 각각의 성비가 최소 35% 이상이어야 함. (의회선거법 2006 제43조제6,7항)	후보자명부 등록 거부 (의회선거법 제56조)
	지방선거	후보자 각각의 성비가 최소 40% 이상이어야 함. 후보자명부의 순서 3명마다 1명은 다른 성별로 구성되어야 함. (지방선거법 2005 제70조)	후보자명부 등록 거부 (지방선거법 2005 제70조)

■ 선거법에 규정이 없는 국가

정당자율 할당제 실시 국가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독일, 헝가리,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여성할당제 관련 조치가 없는 국가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라트비아, 미국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관련 각국의 헌법 규정 내용

프랑스	헌법 제1조제2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선거직과 선출직 및 직업적. 사회적 직책에 동등한 진출을 보장한다.
	헌법 제4조제2항	정당 및 정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조제2항에서 정한 원칙의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그리스	헌법 제116조제2항	남성과 여성간의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채택은 성별에 근거한 차별이 아니다. 국가는 특히 여성에게 불리한 실제로 존재하는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탈리아	헌법 제51조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은 법률의 규정된 조건에 따라 동등하게 공직과 선출직에 진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남녀 기회균등을 촉진하는 구체적 조치를 채택한다.
	헌법 제117조	주법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생활에서의 완전한 남녀평등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남성과 여성의 선출직에 대한 기회 균등을 촉진한다.
멕시코	헌법 제41조	정당의 목적은 국민의 민주주의 참여를 촉진하고, 대의제 통합에 기여하고, 시민이 프로그램과 원칙 및 사상에 딸라 보통·자유·비밀 및 직접 선거를 통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며, 성별과 연방 및 지방의원 사이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출처: IDEA. Gender Quotas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data/gender-quotas/country-overview (검색일 2019.5.13.)
Atlas of Electoral Gender Quotas. 2014.
https://www.idea.int/sites/default/files/publications/atlas-of-electoral-gender-quotas.pdf (검색일 2019.5.13.)
Wikipedia. Women in government.
https://en.wikipedia.org/wiki/Women_in_government (검색일 2019.5.17.)
New Parline: IPU's open data platform. 'Electoral quota for women'
https://data.ipu.org/compare?field=chamber%3A%3Afield_is_electoral_quota_women&structure=any__lower_chamber#map (검색일 2019.5.17.)

참조 5-2 프랑스의 「남녀동수법」

- 연혁
  1999년 헌법개정[90]을 통해 2000년 「의원선거와 선출직에 남녀의 평등한 진출을 위한 법」일명 남녀동수법 제정[91]
- 대상선거: 명부식 비례대표제선거
  - 인구 1,000명 이상 코뮌의 시의회의원선거(선거법 제264조)
  - 광역(레종)의회의원선거(선거법 제346조)
  - 코르시카의회의원선거(선거법 제370조)
  -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상원의원선거(선거법 제300조)
  - 유럽의회선거(유럽의회 의원선거법 제9조)
- 규제내용
  - 남녀를 각각 50% 공천하는 동수할당제와 강제이행의무를 규정
  - 처음부터 끝까지 남녀후보를 번갈아 명기
    ※ 남녀할당을 지키지 않은 정당의 후보자명부는 선거위원회 접수 거부
- 남녀동수법 시행 이후 여성의원 현황

구분	동수법 시행 직전 선거				동수법 시행 직후 선거				비율 변화 (B-A)
	연도	총 의석수	여성 의원수	비율 (A)	연도	총 의석수	여성 의원수	비율 (B)	
상원의원	2001	321	35	10.9	2004	331	56	16.9	+6.0
하원의원	1997	577	63	10.9	2002	577	71	12.3	+1.4
광역의원	1998	1,880	517	27.5	2004	1,880	895	47.6	+20.1
기초의원	1995	497,208	107,976	21.7	2001	474,020	156,393	33.0	+11.3

- 남녀동수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거
  - 1,000명 미만의 코뮌의 시의회의원선거
  -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상원의원선거
  - 도(데빠르망)의회선거
  - 시장·부시장·의장의 선거
    ※ 이유: 남녀할당 적용이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제외됨
  -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선출)하원의원선거
    ➠ 하원의원선거는 남녀동수법이 아니라 「정치생활의 재정투명화 법률 88-227」[92] 제9-1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남녀후보의 비율이 소속 정당 추천 후보자 전체를 고려하여 2%를 초과할 경우 득표율에 따라 지급되는 정당지원총액에서 전체 후보자 수 대비 남녀후보차이의 1/2에 해당하는 비율로 보조금을 삭감
    ※ 명단 작성 시 남녀동수의 규정을 지키는 경우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을 경우에 보조금 삭제와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 여성에 대한 특혜가 아닌 평등을 향한 당연한 절차임을 강조

90) 1999년 헌법 개정에서 제3조에 제5항을 추가했는데, "법률은 선거에서 후보자와 선출직 공무원에서 남녀평등을 위하도록 한다."하고, 제4조에서도 제2항을 추가하여 "정당과 정치단체들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5항에 규정된 원칙의 이행에 기여한다."라고 하였음. 그 후 2008년 헌법 개정에서 제3조제5항은 폐지되고, 제1조제2항을 "법률은 선거 후보와 선거직 공직에서와 직업적·사회적 책임에 있어서 남녀를 동등하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전학선. 2008. 프랑스 정치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위한 남녀동수법과 헌법개정. 헌법학연구. 14(4).

<2002년 후보자 추천관련 국고보조금 삭감 정책 첫해 시행 후 결과>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선거는 유명인사나 재선출마의원이 당선되는 확률이 높은 선거이기 때문에 큰 정당들은 승리를 위하여, 많은 여성을 공천하기보다 국고보조금 삭감을 선택
- 제1당인 UMP(대통령다수연합) 20.6%, UDF(프랑스민주연합) 18.9%, 좌파의 사회당 36.3%, 군소 정당인 공산당 44%, 녹색당은 50%를 공천
- 국고보조금 삭감액은 UMP는 정당재정의 15.8%, 사회당 9.1%, UDF 22%, 공산당 4.2%

참조 5-3 아르헨티나의 「여성할당제법」

• 연 혁
- 1992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선거법 제60조를 수정한 「법령 24,012」[93]를 공포해 여성할당제법을 제정
- 1993년 여성할당제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단순히 명단에 30%가 아니라 당선 가능한 순위에 여성후보자를 배치시킬 것을 엄격하게 규정한 「법령 379」[94]를 공포

• 대상선거
상원의원선거와 하원의원선거(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
※ 2001년 「법령 1,246」으로 상원의원선거를 추가
※ 지방선거는 1992년 이후 다수의 지방정부들이 각 지방에서 여성할당제법을 제정해 실시(아르헨티나는 연방국가임)

• 규제내용
- 명단순위에서 남성후보자 2명 다음에 반드시 여성후보자 1명을 배치시킬 것을 명시해 여성후보자가 정당 명부 순위에서 최소 3번째에 배치될 수 있게 됨.
- 할당제를 위반한 어떠한 정당명부도 인정되지 않아 할당제를 지키지 않은 정당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함.

• 여성할당제법 시행 이후 여성의원 현황

구분	할당제법 시행 직전 선거				할당제법 시행 직후 선거				비율 변화 (B-A)
	연도	총의석수	여성 의원수	비율 (A)	연도	총의석수	여성 의원수	비율 (B)	
상원의원	1998	72	1	1.4	2001	72	25	34.7	+33.3
하원의원	1991	257	16	6.2	1993	257	32	12.5	+6.3

91) 일명 빠리테법(loi n°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favoriser l'éal accè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ectoraux et fonctions éectives)이라고 함. 2000년 남녀동수법은 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있고, 2007년 새로운 남녀동수법이 제정되어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확고히 하고 있다고 알려짐.

92) loi n°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la transparence financièe de la vie politique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LEGITEXT000006069061 (검색일 2019.5.30.)

93) Argentina.gob.ar. 'National Electoral code' 1991. https://www.argentina.gob.ar/normativa/nacional/ley-24012-411 (검색일 2019.10.9.)

94) Argentina.gob.ar. 'Regulatory Decree' 1993 https://www.argentina.gob.ar/normativa/nacional/decreto-379-1993-12218/normas-modifican (검색일 2019.10.9.)

제2절
기탁금

- 많은 국가에서 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을 함께 내도록 하고 있으며, 기탁금 납부와 함께 반환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 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2018년 폐지)는 기탁금 제도가 없음.

1. 영 국

가. 기탁금의 납부(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9호)[95]

-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대리하는 자는 500파운드의 금액을 현금·수표 또는 선거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방법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서 제출기간 내에 선거관리관에게 납부해야 함.

나. 기탁금의 반환(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4. 제53호)[96]

- 후보자가 해당 선거구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 득표하는 경우 그 기탁금은 반환되며, 그 이하의 경우 국고에 귀속

95) Representation of people act 1983. Schedule 1. Part 2. Nomination. section 9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Candidate guide-UK Parliamentary general election part2b/6(총선용 후보자 가이드).’ p.7.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media/4262 (검색일 2019.5.11.)

96) Representation of people act 1983. Schedule 1. Part 4. Nomination. section 53

2. 미 국

- 기탁금 납부제도 없음.
- 예비선거 또는 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등록비용(filing fee)의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 금액은 주법에 따라 다양함.
  - 켄터키 주: 상·하원의원 500달러[97]
  - 델라웨어 주: 하원의원 3,480달러[98]
  - 플로리다 주: 공직에 입후보하기 위해 후보자는 등록비(filing fee)와 선거비(election assessment)를 내야 함(선거법 제99.092조).[99]
  - 등록비는 출마한 공직 연봉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선거비는 해당 직의 연봉에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선거위원회기탁기금(Election Commission Trust Fund)에 예납해야 하는데, 무소속 후보자 및 소수정당 후보자는 제외

3. 일 본

가. 공탁(공직선거법 제92조)

- 정당 기타 정치단체·후보자(본인 신고 시) 또는 선거인명부등재자(후보자추천 신고 시)는 후보자 1명에 대하여 선거별로 현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액면의 국채증서를 공탁소(법무국, 법무지방 법무국의 본국·지국과 출장소)에 공탁해야 하며, 공탁소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후보자 또는 선거인명부등재자에게 공탁증명서를 교부해야 함.

---

97) Kentucky State Board of Elections. ‘Qualifications & Filing Fees.’ https://elect.ky.gov/Candidates/Pages/Qualifications-and-Filing-Fees.aspx, (검색일 2019.6.24.)

98) State of Delaware. ‘Candidate filing Fees.’ https://electionsncc.delaware.gov/candidates/2016/2016_file_fees.shtml, (검색일 2019.6.24.)

99) Florida Statutes. Title IX. Chapter 99. Candidate http://www.leg.state.fl.us/Statutes/index.cfm?App_mode=Display_Statute&URL=0000-0099/0099/0099ContentsIndex.html (검색일 2019.10.2.)

-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 300만 엔
-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 300만 엔

-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및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 후보자명부를 신고하고자 하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선거구마다 해당 중의원·참의원명부의 명부등재자 1명당 600만 엔 또는 이에 상당하는 액면의 국채증서를 공탁해야 함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에 중복 입후보한 중의원 후보자의 경우, 300만 엔).

  ※ 공탁을 하지 아니하고 행한 후보자등록신청은 착오로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무효

나. 공탁금의 몰수

1) 후보자와 관련된 공탁물의 몰수: 국고로 귀속(공직선거법 제93조)

- 후보자의 신고가 취하·사퇴·각하된 경우
- 후보자의 득표수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 유효투표총수의 10분의 1
  -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 해당 선거구내의 의원정수로 유효투표총수를 나누어 얻은 수의 8분의 1

2) 후보자명부 신고정당 등과 관련된 공탁물의 몰수(공직선거법 제94조)

-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 선거구마다 300만 엔에 해당 중의원명부신고정당 등의 신고에 관련된 중의원명부의 중의원명부등재자 중 해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의 당선자수를 곱한 금액과, 600만 엔에 해당 중의원명부 신고정당 등에 관련된 당선인수에 2를 곱하여 얻은 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하여 나온 금액이 공탁물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해당 공탁물 금액에서 해당 합산금액을 빼서 얻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탁물은 국고에 귀속됨.
-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 해당 참의원명부신고정당 등에 관련된 당선인수에 2를 곱하여 얻은 수가 후보자 신고 시 참의원명부등재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해당 공탁물 중 일정금액을 국고에 귀속됨.

4. 호 주

가. 기탁금의 납부(연방선거법 제170조)

- 후보자로 추천된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선거위원이 승인한 방법(전자적 이체 방식 포함)으로 2,000호주달러를 선거위원에게 기탁해야 함.
- 기탁금 납부기간은 추천서 등록기간과 동일함.

나. 기탁금의 반환(연방선거법 제173조)

- 납부된 기탁금은 선거일 후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기탁금 반환 조건을 충족한 경우 기탁금을 납부한 자 또는 납부한 자가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한 자에게 반환함.
  ※ 기탁금 반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연방에 귀속됨.
- 기탁금 반환 요건
  - 상원의원선거: 후보자의 제1순위 지지(first preference) 득표수가 전체 후보자의 제1순위 지지 득표 총수의 4% 이상인 경우
  - 하원의원선거: 후보자의 제1순위 지지 득표수가 전체 후보자의 제1순위 지지 득표 총수의 4% 이상인 경우
    ※ 후보자가 선거일 전에 사망한 경우(연방선거법 제178조)
  - 후보자 이외의 자가 기탁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자 또는 납부자가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한 자에게 기탁금을 반환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후보자의 개인 대리인에게 반환함.

<표 5-17> OECD국가의 후보자 기탁금액 및 반환기준

국가명	기탁금액	반환기준	근거규정	비고
영 국	£500(하원) (한화 913,000원)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 득표 시	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9호 부칙 4. 제53호	-
일 본	￥300만 (중의원·참의원 선거구) (한화 30,000,000원)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득표 시	공직선거법 제92조	중의원·참의원 비례대표선거: 1명당 ￥600만
호 주	A$2,000 (한화 ,000원)	제1순위 지지 총투표수의 4% 이상 득표 시	연방선거법 제170,173조	-
체 코	20,000CZK(상원) (한화 1,020,000원) 19,000CZK(하원) (한화 1,000,000원)	유효투표총수의 6% 이상 득표 시	선거법 제61조 선거법 제31조	유효투표총수의 6% 이하 득표 시 국고에 귀속됨. 기탁금 거치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는 반환되지 않으며 국고에 귀속됨.
에스토니아	선거가 있는 해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금액	당선자가 있거나 기준수의 1/2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 득표 시	선거법 제30조제5항, 제77조	기준수(simple quota)는 유효투표총수/의석수를 의미
그리스	€146.74 (한화 195,000원)	기탁금 반환 안됨	선거법 제32조	-
아일랜드	€500 (한화 666,000원)	선거구 할당 1/4 (25% 이상) 득표 시	선거법 제47,48조	그 외 기탁금 반환기준 • 선거법 제54조에 따른 사퇴 • 투표 종료 이전 사망 • 후보지명기 간 내 결격사유 발생 시 • 당선
라트비아	€1,400 (한화 1,861,000원)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 득표 시	선거법 제12조	유효투표총수 2% 이하 득표 시 국고에 귀속됨.
리투아니아	(소선거구)가장 최근에 발표된 국가경제 월평균 임금 (중대선거구)가장 최근에 발표된 국가경제 월평균 임금의 10배	유효투표총수 3% 이상 득표 시	의회선거법 제41조제1,2,5항	-
네덜란드	€11,250(하원) (한화 약1,491,000원)	정당이 기준수의 75% 이상 득표 시	선거법 제H4조, 제H12조	다만, 기탁금 납부는 모든 정당이 아닌 처음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혹은 지난 선거에서 의석을 획득하지 못한 정당만 해당 기준수(electoral quota)는 유효투표총수/의석수를 의미

국가명	기탁금액	반환기준	근거규정	비고
뉴질랜드	NZ$300 (한화 243,000원)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 득표 시	선거법 제144조	비례대표는 기탁금 없음.
슬로바키아	€17,000 (한화 22,620,000원)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 득표 시	선거법 제50조	유효투표총수 2% 미만 득표 시 국고에 귀속
터 키[100]	(무소속)재무부 산하 고위직 공무원 월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2015 총선 기준 €3,500 상당(10,167TRY, 한화 4,700,000원)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득표 시	의회선거법 제21,33,41조	정당소속후보자는 기탁금 없음. 10% 미만 득표 시 국고에 귀속

※ 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는 기탁금 납부제도가 없음.
※ 다만, 오스트리아의 경우 투표용지 제작비용 명목으로 모든 정당은 해당 선거구위원회에 435유로를 납부해야 함(의회선거법 제43조제4항).

100) 의회선거법상 정당 소속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규정은 없음.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turkey/177926?download=true (검색일 2019.7.9.)

<표 5-18> 각국의 기탁금 반환요건

기탁금 반환요건		국가명	
유효투표총수 1% 이상		피지	
유효투표총수 2% 이상		아프가니스탄 상원, 부룬디(전국유효투표총수대비), 아이티(반액),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유효투표총수 3% 이상		아프가니스탄 하원	
유효투표총수 4% 이상		아르메니아, 호주(1순위 지지투표)	
유효투표총수 5% 이상		보츠와나, 카메룬 하원(전국유효투표총수대비), 중앙아프리카공화국(반액), 지부티, 키르기스스탄, 모리타니, 모로코 하원, 뉴질랜드, 타지키스탄 상원, 토고, 영국 하원	
유효투표총수 6% 이상		체코 하원	
유효투표총수 7% 이상		카자흐스탄 하원	
유효투표총수 10% 이상		부르키나파소, 중앙아프리카공화국(전액), 차드,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일본 중의원, 쿠웨이트, 레소토 하원, 모리셔스, 몰타, 시에라리온, 수단	
유효투표총수 12% 이상		가나	
유효투표총수 20% 이상		레바논	
유효투표총수 1/8(12.5%) 이상		트리니다드토바고, 방글라데시, 도미니카, 그레나다, 자메이카, 일본 참의원, 말레이시아 하원, 파키스탄 하원,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하원,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싱가포르, 스리랑카	
유효투표총수 1/6(16.7%) 이상		바하마, 바베이도스, 인도	
기준수 (Hare quota; 유효투표수/의원수)	1/4 이상	아일랜드 하원	
	1/3 이상	키프로스	
	75% 이상	네덜란드	
당선자		리투아니아, 세이셸, 우크라이나	
기타		감비아	당선 되었거나, 당선자 득표수의 20% 이상
		캐나다	선거비용회계보고서 제출 시
		쿠웨이트	10표 이상 획득
		파푸아뉴기니	해당 선거구 당선자 득표수의 1/3 이상

출처: PARLINE. database on national parliaments.
http://archive.ipu.org/parline-e/mod-electoral.asp (검색일 2019.5.14.)

제6장

선거운동

제1절
선거운동의 정의

❍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목적으로 득표를 하거나 득표를 하게 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필요하고 유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정의가 미국, 스페인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음.
※ 독일,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대다수 국가는 선거법에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음.[1)]

1. 영 국

- 선거운동이란 선거의 목적을 위해 정당에 의해 관리되는 운동을 말함(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제72조제3~5항).[2)]
  - 선거의 목적이란 정당의 이름으로 입후보한 후보자의 당선 또는 후보자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들의 당선을 의미
  -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또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권자에게 불리하게 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함.

2. 미 국

- 미국 연방선거운동법은 선거운동과 유사한 개념으로 연방선거활동(federal election

1) 헌법에 선거운동에 대해 규정을 둔 국가
- 대만: 이 헌법에 규정된 각종 선거의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131).
- 태국: 의회의원선거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위하여 국가는 후보자에게 선거운동 할 장소를 지원한다(§113③).
-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스위스, 브라질,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필리핀, 호주, 네팔, 러시아, 아일랜드, 그리스, 벨기에, 인도, 체코, 뉴질랜드에는 헌법에 규정 없음.

2)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part 5. section 72(3)~(5)

activity)과 일반선거운동활동(General Campaign Activ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연방선거운동법 제30101(20)~(24)조].

- 연방선거활동(Federal Election Activity)
  - 정기적으로 실시가 예정된 연방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권자 등록 활동
  - 선거권자 파악, 투표독려활동 등 후보자의 일반 선거운동활동
  - 공직후보자에 관한 대중홍보와 그 직의 후보자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공격하는 대중홍보
    - ·대중홍보(public communication): 방송, 케이블, 위성방송, 신문, 잡지, 옥외광고시설, 대량우편, 일반에 대한 전화뱅크, 기타 형태의 대중정치광고에 의한 홍보
    - ·대량우편(mass mailing): 30일 이내에 비슷한 내용의 500여 통 이상의 미국우편이나 팩스를 사용하는 것
    - ·전화뱅크(telephone bank): 30일 이내에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500회 이상 하는 것
  - 정당의 주 또는 지역위원회에 의하여 고용된 자가 월간 보수를 받는 시간의 25% 이상을 연방선거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활동
- 일반선거운동활동(General Campaign Activity)
  - 정당을 지지하는 선거활동을 의미하며,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활동을 의미하지 않음.

3. 일 본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정의에 관한 규정은 없음.

  ※ 동경도선거관리위원회: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당선시키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투표행위를 유도하는 것[3)]

3) 동경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senkyo.metro.tokyo.jp/qa/qa-katudou/ (검색일 2019.6.24.)

※ 일본의 판례, 통설에 따르면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필요하고 유리한 행위"를 말하며, 입후보준비행위, 선거운동준비행위, 정당의 정치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음.[4)]

4. 스페인

-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기 위하여 후보자·정당·연합·연정 또는 선거인 단체가 수행하는 합법적인 모든 활동(선거법 제50조제4,5항)
  - 후보자·정당·연합·연정 또는 선거인 단체 외에는 선거소집일 이후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으나, 헌법 제20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됨.

※ 헌법 제20조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한다.

1. 구두 또는 서면이나 기타 재생장치를 통해 생각·사상·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유포할 권리
2. 문학·예술·과학·기술적 생산과 창작
3. 대학 강의의 자유
4. 어떠한 유포 매체에 의하든 자유롭게 진실한 정보를 전달하고 수신할 권리를 갖는다. 법률은 이러한 자유 행사에 있어서 양심보호조항과 직업상 비밀유지에 대한 권리를 정한다.

② 이러한 권리 행사는 어떠한 사전 검열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법률은 국가나 공공 기관에 소속된 사회적 통신매체의 조직과 의회의 통제를 규정하며 스페인 사회 및 다양한 언어의 다원성을 존중하고 사회·정치 단체의 이러한 매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④ 이러한 자유는 현 장과 관련된 법조항이 인정하는 권리, 특히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청년 및 아동 보호 권리와 관련하여 제한될 수 있다.

⑤ 출판물, 녹음, 기타 정보 수단의 몰수는 오직 사법 판결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5. 캐나다

가. 선거운동의 정의

- 선거법에는 선거운동에 대한 명시적 정의를 두고 있지 않음.

4) 일본선거관계실례판례집(日本選擧關係實例判例集). 2000. p.4,5.

- 다만, ‘선거광고(election advertising)’에 대한 정의를 통해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음.
- 선거광고(선거법 제2조)
  - 선거광고는 선거기간 동안 등록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광고 문안을 어떠한 수단을 이용하여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등록정당이나 후보자가 관련된 특정이슈에 대하여 입장을 취하는 것을 포함함.

나. 제3자의 선거광고(선거법 제349~362조)

- 선거법에서는 개인이나 기업 및 단체 등이 후보자나 등록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선거광고를 하는 “제3자 선거광고(Third Party Advertising)”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단, 외국인이나 외국정부·정당·기업 등 외국자본에 의한 선거광고는 금지됨.
- ‘제3자(third party)’란 후보자, 등록정당 또는 등록정당의 지구당(electoral district association)을 제외한 개인 또는 기업 및 단체를 의미함.
- 제3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해당 선거광고를 했다는 것을 명시해야 하며, 선거광고비용으로 총 500달러 이상을 지출한 경우 즉시 선거관리청에 등록신청을 해야 함.
  - 개인의 경우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서명 및 선언서
  - 기업 및 단체의 경우 이름,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의 직인 및 서명

  ※ 이외에 제3자는 캐나다 시민이어야 하며, 국내 영구 거주자이어야 함.
- 제3자는 선거기간동안 총 15만 달러를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음.
- 해당 선거구 안에서 1명 이상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후보자의 지명, 후보자의 정치적 소속에 대한 평가, 후보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을 위하여 3천 달러 이상을 지출할 수 없음.
- 선거광고 등록신청을 한 제3자는 선거일 후 4개월 이내에 선거광고비용 목록, 그 비용과 관련된 광고의 보도 또는 출판 시기 및 장소 등이 포함된 선거광고보고서를 서면으로 선거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표 6-1> OECD국가의 선거운동기간

국가명	선거운동기간	근거규정
영 국	• 의회해산일부터 17일 이내에 실시되는 선거일까지 이므로 대개 선거 기간은 3~4주.* 사전선거운동제한은 없음.	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미 국	• 선거운동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전선거운동개념이 없음.	-
프랑스	• 선거일 전까지 대선은 12일 간, 총선은 20일간 진행됨. - 이 기간동안 선거용 포스터 게시장이 설치되며, 선거운동위원회가 설치 (선거법 제166조) - 선거일 2주전 월요일부터 시작하고 선거일 전일 자정에 종료함. 2차 투표의 선거운동기간은 1차 선거일 익일부터 시작하고 선거일 전일 자정에 종료함 (선거법시행령 제26조) ※ 다만, 전자통신 이용 선거운동 메시지 배포는 선거일 전일 오전 0시부터 제한됨(선거법 제49조).	선거법 제164조
독 일	• 선거운동 기간 등 법적 규정이 없으며, 선거운동이 자유로움. • 일반적으로 각 정당은 대개 선거일 약 3개월 전에 선거사무소를 개설하고 선거체제에 들어감 - 실제로 선거운동 개시시기, 선거운동총비용액 등 정당간의 협정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선거운동이 전개되고 있음	-
일 본	• 선거운동은 후보자 신고가 있는 날부터 선거기일 전일까지 할 수 있음. - 참의원의원선거: 17일간 - 중의원의원선거: 12일간 ※ 보궐선거 선거운동기간도 위 기간과 같음.	공직선거법 제129조
스페인	선거소집일 후 38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15일 동안	선거법 제53조
스웨덴	규정 없음.	-
스위스	규정 없음.	-
캐나다[5]	• 선거기간(election period)을 선거소집령의 발행일로부터 선거일 또는 선거소집령이 철회되거나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까지로 함. • 선기기간을 고려하면 최소선거운동기간은 36일이며, 최대 50일까지임. • 선거운동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으므로 사전선거운동의 개념도, 기간도 명시적 규정이 없음.	선거법 제2,57조
호 주	규정 없음.	-
오스트리아	•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58일 이전까지 (선거운동기간에 관한 특별 규정은 없음)	하원선거법 제42조
벨기에	• 선거일전 3개월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비용제한법 제4조
체 코	• 상하원 선거일을 공표한 날부터 상하원 선거 최종결과 발표 시까지	선거법 제16조제3항
칠 레	• TV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30일 전부터 선거일 3일 전까지 • 언론 및 라디오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3일 전까지	선거법 제31,32조
덴마크[6]	• 선거법에서 선거운동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총리가 선거실시를 공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이 시작되며 선거일 당일까지 선거운동가능(투표소 내부 제외)	덴마크 의회

국가명	선거운동기간	근거규정
에스토니아	•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일 당일 적극적인 선거운동active election campaigning 금지)	선거법 제5조
핀란드[7]	• 선거운동기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없음	-
그리스	• 선거 소집은 의회 임기 종료 또는 해산 30일 전 내각의 승인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선거운동은 선거소집 대통령령 공표 또는 의원 임기 종료 12일 전부터 시작 가능	선거법 제31조제1,3항
헝가리	• 선거일 전 5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 가능	선거절차법 제139조
아이슬란드[8]	• 관련규정 없음. ※ 공식적 선거운동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으며 선거일까지 가능	-
아일랜드	• 선거벽보는 선거일 30일 전 또는 선거일 확정 공표일로부터 선거일까지 두 가지 중 짧은 것으로 함. • 모든 선거벽보는 선거일 종료 후 7일 이내로 제거	쓰레기처리에 관한 법[9] 제19조제7항제c호
이스라엘	•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법 제2조
이탈리아[10]	• 선거 공표는 의회 임기 종료일로부터 70일 이내로 내각 결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표 • 선거 공표일로부터 선거일 24시간 전까지	헌법 제61조 하원선거법 제11조 선거선전규율규정 제212호 제9조
라트비아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가능. • 의회, 지방의회 해산 또는 주민소환, 재선거 공표 시 해당 공표일자로부터 선거일까지를 선거운동기간으로 함.	사전선거운동법 제1조제4항
리투아니아	• 선거 실시 공고일부터 선거기간이 끝날 때까지 ※ 단, 선거일에는 직간접적으로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선거권자에 대한 지지호소 및 투표의 대가로 선물이나 기타 보상을 제공하는 행위)금지	의회선거법 제5조
룩셈부르크[11]	• 선거운동 기간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음. • '일반적으로' 선거일 5주 전부터 시작	-
멕시코	• 대통령과 상원의원, 하원의원의 선거운동은 선거실시연도에 90일간 • 하원 임기만료로 인한 하원의원 선거는 60일간 이루어짐 • 각 정당의 선거운동은 당해 선거 후보자등록일의 익일부터 선거일 3일전까지 • 선거일과 선거일전 3일 사이의 기간에는 선거운동이 금지	연방선거법 제251조
노르웨이[12]	규정 없음.	-
네덜란드	• 후보자 등록 44일 이후에 선거가 실시됨. (선거운동기간에 관한 특별 규정은 없음.)	선거법 제J1조 제1항
뉴질랜드[13]	• 일반적인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가능 • 다만 TV나 라디오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소집일(writ day)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가능	방송법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폴란드	• 선거일을 공표한 때부터 선거일 24시간 전까지	선거법 제104조
포르투갈	• 선거일 14일 이전부터 선거일 전날 자정까지	선거법 제53조
슬로바키아	• 선거일 공표일로부터 선거일 48시간 전까지	선거운동법 제2조제2항

국가명	선거운동기간	근거규정
슬로베니아	•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 24시간 전까지 ※ 선거일과 선거일 전 24시간 이후부터는 선거운동이 금지됨.	의회선거법 제5조 선거운동법 제2조
터 키	• 선거일 10일 전 오전부터 선거일 전날 18:00시까지	선거기본법 제49조

※ 토요일, 일요일, 성탄일 전일 및 성탄일, 세족목요일 및 성금요일(Maundy Thursday, Good Friday: 예수의 수난일로 부활절 직전의 목요일과 금요일을 의미), 일반공휴일(bank holiday: 연 7회의 법정휴일) 및 공공의 축제일 또는 국장일 제외

5) 캐나다 선거관리청 홈페이지
https://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vot&dir=faq&document=faqelec&lang=e (검색일 2019.5.17.)

6) OSCE. '덴마크 2019 총선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denmark/419231?download=true (검색일 2019.9.20.)
덴마크 의회. 총리, 6월 5일 선거 소집
https://www.ft.dk/da/aktuelt/nyheder/2019/05/udskrivelse-af-valg (검색일 2019.9.24.)
미국 하원 도서관. Constitution Day and Election Day in Denmark
https://blogs.loc.gov/law/2019/06/constitution-day-and-election-day-in-denmark/ (검색일 2019.9.24.)

7) OSCE. '핀란드 총선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finland/411758 (검색일 2019.5.17.)

8) OSCE. '아이슬란드 총선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iceland/348621?download=true (검색일 2019.7.29.)

9) Litter Pollution Act 1997, as substituted by section 9 of the Electoral(Amendment)(No.2) Act 2009
https://www.ucd.ie/t4cms/The%20Law%20on%20Election%20Posters.pdf
http://www.irishstatutebook.ie/eli/2009/act/9/section/9/enacted/en/html#sec9 (검색일 2019.8.13.)
https://www.dccae.gov.ie/en-ie/environment/topics/waste/litter/Pages/Election-Posters0331-3567.aspx (검색일 2019.8.14.)

10) OSCE. '이탈리아 2018 총선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italy/369086?download=true (검색일 2019.9.20.)

11) 룩셈부르크 행정부 홈페이지
https://elections.public.lu/en/support/faq/faq-legislatives.html (검색일자 2019.6.7.)

12) OSCE. '노르웨이 총선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103545?download=true (검색일 2019.9.23.)

13) 뉴질랜드선거위원회.
https://elections.nz/guidance-and-rules/for-candidates/campaign-rules-for-candidates/ (검색일 2019.7.29.)

제2절
인쇄물·시설물 등 이용 선거운동

-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규격, 위치, 매수 등을 선거법에 자세하게 규정해 놓고 있는 국가로는 프랑스, 일본이 있음.
- 스페인, 캐나다, 호주 등은 별다른 규제 없이 인쇄물 등 게시 또는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을 선거법에 규정하고 있음.
- 스웨덴과 스위스는 선거법에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이 없음.

1. 영 국

가. 선거홍보물 무료발송(1983년 국민대표법 제91조)

- 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우편국규칙에 따라 중량 60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선거에 관한 사항만이 게재된 선거홍보물을 선거인 1명에게 1통씩 무료로 보낼 수 있음.
- 대리투표를 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무료로 보낼 수 있음.
- 후보자는 익명으로 선거인명부에 등록한 선거인에게도 선거관리관과 우편국이 협의해 선거홍보물을 보내도록 요구할 수 있음(선거행정법 제10조).[14]

나. 선거운동용 인쇄물

- 규격 및 매수에 대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으나 기재내용과 게재장소에 대한 제한이 있음.

  ※ 제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7장 선거운동 제한·금지사항 제3절 인쇄물·시설물 관련 제한·금지 영국편, p.497 참조

14) Electoral Administration Act 2006. section 10

<그림 6-1> 영국 선전물 예시

포스터

보수당의 옥외광고

2015년 지방선거시 노동당 당수 에드 밀리반드(Ed Miliband)의 거리유세 지원 장면

2. 미 국

- 미국 선거운동에서는 거리에서 벽보나 현수막을 찾아보기 힘듦. 일반 시민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표시하는 스티커나 간판 등을 자신의 자동차나 자택에 부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짐.
- 선거홍보물의 규격 등에 대한 법적 규정 없음.
- 사실상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제품이 선전물이 될 수 있음. 연필에서부터 자동차에 부착하는 스티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선전물이 될 수 있음.

<그림 6-2> 미국 선전물 예시

마당에 꽂는 간판
(Polybag Yard Signs)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
(Magnetic)

버튼식 배지

<그림 계속>

자동차 스티커(Bumper stick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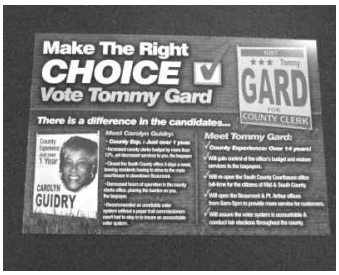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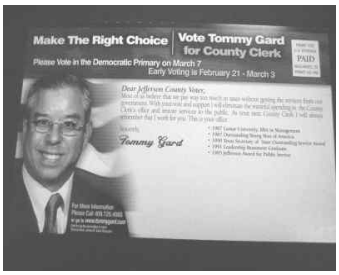

엽서

주걱 모양의 광고판(Paddle)

카드보드

문 손잡이

3. 프랑스

가. 선거선전을 위한 출판의 자유(선거법 제48조)

-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1881. 7. 29)」이 선거선전에 적용되는데, 인쇄·출판은 자유지만 인쇄물에는 인쇄자의 주소·이름을 기재해야 함.

나. 선거벽보

- 게시장소(선거법 제51조)
  - 선거용 포스터는 선거기간 중 코뮌이 설치하는 공영포스터게시장으로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 또는 다른 후보자를 위하여 마련된 장소에는 게시할 수 없고, 각 포스터게시장은 각 후보자에게 균일한 면적으로 할당됨.
- 규격 및 매수(선거법시행령 제27, 39조)
  - 594mm×841mm 이내의 선거벽보 : 2매 이내
  - 297mm×420mm 이내의 선거집회고지용 벽보: 2매 이내
- 3색 사용금지(선거법시행령 제27조)
  - 선거의 목적 또는 성격을 갖는 벽보에 청·백·적의 3색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음(청·백·적의 3색은 프랑스 국기색). 다만, 정당 등의 상징을 나타내기 위한 경우는 허용됨.
- 설치장소의 수(선거법시행령 제28조)
  - 선거인 500명 이하의 코뮌: 5개소
  - 기타의 코뮌: 10개소, 선거인 3,000명마다 각 1개소 추가 또는 선거인 5,000명 이상의 코뮌에서는 선거인 2,000명 초과 시마다 1개소씩 추가

다. 홍보물(circulaire)(선거법시행령 제29조)

- 후보자는 선거 전에 210mm×297mm 이내의 홍보물 1종을 인쇄하여 선거인에게 송부할 수 있음.
- 홍보물은 선거운동위원회에 의뢰하여 선거구내 전체 선거인에게 송부하도록 할 수 있음.

  ※ 선거일 전 20일까지 선거구에 모든 선거운동 홍보자료를 발송하고 배포하는 일을 담당하는 선거운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가 비용을 보전함(선거법 제166,167조).

4. 독 일

- 선거법에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실제 선거운동방법으로는 선거벽보·선전물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됨.

- 정당법상 동일취급원칙에 따라 각 정당은 동일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공권력의 주체가 정당에게 시설이나 기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모든 정당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함. 지급 범위는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차등할 수 있는데 최근 실시된 연방하원선거 결과에 의해 정함. 정당 지원 규모는 최소한 다른 정당에 지원한 규모의 2분의 1은 되어야 함(정당법 제5조제1항).

- 티셔츠나 피켓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
- 정당의 로고가 새겨진 볼펜이나 사탕, 풍선 등과 함께 선전물을 나누어주는 선거운동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

<그림 6-3> 독일 선전물 예시

선거벽보의 위치 – 주로 가로등이나 교통표지판 아래

선거벽보의 위치와 크기(공중화장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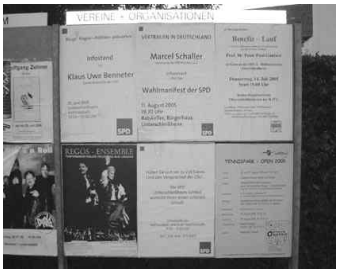

정당의 기회균등 보장 | 동일 정당의 동일내용의 선거벽보 | 유세장에 대한 광고

<그림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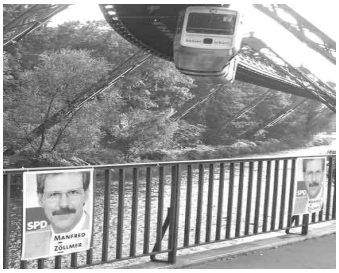

길거리 유세부스에서 풍선을 나눠주면서 지지호소

5. 일 본

가. 문서·도화에 의한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142조)

1) 통상엽서의 배포

-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 후보자 1명당 3만5천매
  ※ 후보자신고정당은 2만매×도·도·부·현 내 후보자추천수
-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 후보자 1명당 3만5천매, 단, 해당 도·도·부·현구역 내에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선거구수가 1을 초과할 때마다 선거구마다 2,500매를 더함.
-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후보자(명부등재자) 1명당 15만매
- 통상엽서는 무료이나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 후보자신고정당이 작성·배부하는 엽서는 유료
- 일본우편주식회사에서 “선거용”이란 뜻을 표시

2) 선거운동용 전단

-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 후보자 1명당 2종 이내의 7만매
  ※ 후보자신고정당은 4만매×도·도·부·현내 후보자추천수
  ※ 전단은 선거구마다 4만매 이내로 배부(살포 제외)할 수 있고 그 이상은 배부할 수 없음.
-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 2종 이내의 10만 매, 단 중의원소선거구수가 1을 초과할 때마다 1만 5천 매를 추가한 매수(30만 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만 매)

-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중의원명부신고정당 등이 2종 이내
-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후보자인 참의원명부등재자 1명당 2종 이내의 전단 25만 매
- 전단은 신문 삽입 등 정령(政令)으로 정한 방법으로, 해당 선거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하는 증지(證紙)를 부착하여 배부해야 함.
- 전단 규격
  -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 및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 등: 길이 29.7cm×너비 21cm 이내
  -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 후보자신고정당: 길이 42cm×너비 29.7cm이내
- 전단에는 배포책임자·인쇄자의 이름·주소 기재, 신고 정당의 명칭, 법적 근거 등을 함께 기재해야 함.

3) 통상엽서 및 전단의 작성

-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또는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의 공직후보자는 정령이 정하는 방법과 금액의 범위 안에서 통상엽서와 전단을 무료로 작성할 수 있음(선거공영제).

4) 팸플릿 또는 서적의 배포(공직선거법 제142조의2)

- 중의원의원 총선거 또는 참의원의원 통상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신고한 정당이 직접 발행하는 팸플릿, 서적, 또는 국정의 관한 중요정책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을 표시한 1종의 팸플릿, 서적을 배포할 수 있음(살포 금지).
- 배포할 수 있는 팸플릿·서적의 경우에도 후보자 신고 정당 사무소내, 정당연설회 혹은 정당등연설회 회장내, 가두 연설 장소, 후보자 선거사무소내, 개인 연설회장내, 가두연설 장소에서만 배포 가능함.
- 팸플릿 혹은 서적에는 중의원의원 총선거 혹은 참의원의원 통상선거의 공직에 있는 후보자의 이름 혹은 그 이름이 유추 가능한 사항을 기재할 수 없음.
- 팸플릿 혹은 서적의 표지에는 해당 후보자의 신고 정당 또는 중의원 명부 신고 정당 또는 참의원 명부신고 정당 등의 명칭, 배포책임자 및 인쇄자의 이름(법인의 경우는 명칭) 및 주소, 팸플릿 또는 서적임을 표시하는 기호를 기재해야 함.

나. 문서·도화의 게시

1) 종류(공직선거법 제143조)

-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중의원명부신고정당이 사용)
  - 선거사무소 표시용 포스터·입간판·제등 및 간판류
  - 선거운동용 자동차 또는 선박에 부착하는 포스터·입간판·제등 및 간판류
  - 연설회장에서 사용하는 포스터·입간판·제등 및 간판류
  - 옥내 연설회장에서 연설회 개최 중 게시하는 영사 등의 종류
  - 기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포스터
- 기타 선거
  -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 허용된 포스터·입간판·제등 및 간판류, 영사 등
  - 후보자가 사용하는 어깨띠·흉장 및 완장류
  - 개인연설회 고지용 포스터(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

2) 수 량(공직선거법 제144조)

- 포스터 게시장소마다 1매 게시 가능(선거운동용은 별도)
- 제등류는 1개 게시 가능
- 선거사무소에는 포스터·입간판 및 간판류를 총 3개 이내 게시 가능
- 연설회장 외부에는 포스터·입간판 및 간판류를 회장마다 2개 이내 게시 가능

<표 6-2> 일본 선거운동용 포스터 수량

선거명	기본 수량	비고
중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	도·도·부·현마다 1,000매×해당 정당의 후보자수	해당 선관위가 검인 또는 교부하는 증지를 첨부해 게시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선거구마다 500매×해당 정당의 후보자수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명부등재자 1명당 7만 매	

3) 작성 공영

-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선거의 후보자 중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지 않은 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령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 선거사무소 표시용·선거운동용 자동차 또는 선박 부착용 포스터·입간판·제등 및 간판류, 개인연설회 고지용 포스터 그 밖의 선거운동을 위한 포스터 등을 무료로 작성할 수 있음.

4) 포스터 게시장소(공직선거법 제144조의2)

- 설치주체: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
- 대상선거: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
- 수　　량: 1투표구에 5개 소 이상 10개 소 이내
- 규　　격: 후보자 1명 게시할 수 있는 구획(가로·세로 각 42cm) 유지
- 기　　타: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설치 즉시 설치장소를 고시

다. 선거공보의 발행(공직선거법 제167조)

- 발행주체: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
- 횟　　수: 1회
- 게재내용: 후보자의 이름·경력·정견 등(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경우 신고정당 등의 명칭 및 약칭, 정견, 명부등재자의 이름·경력 및 당선순위 등)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기일의 공시 또는 고시일부터 2일(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는 해당 선거기일의 공시 또는 고시일에) 서면으로 게재 신청(글자수 제한 폐지: 1998.6.1.)(공직선거법 제168조)
- 배　　포: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각 세대에 선거일 전 2일까지 배포(공직선거법 제170조)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 하에 신문 삽입 등의 방법으로 배부

6. 스페인

- 현수막 및 선거벽보 설치장소(선거법 제55조)
  - 무료 게시지역) 시청은 선거벽보 또는 거리현수막 설치를 위해 특정 지역을 무료로 예약해 두어야 함.
  - 무료 게시지역 이외에 후보자·정당·연합 및 연정은 허가된 상업광고 장소에만 선거벽보를 부착하거나 다른 형태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음.
  - 현수막 및 선거벽보에 사용된 경비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0%를 넘을 수 없음.
- 현수막 및 선거벽보 설치장소 공지 및 게시(선거법 제56조)
  - 시청은 선거소집일후 7일 이내에 무료 게시지역을 지역선거위원회에 통보
  - 지역선거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되었던 과거 같은 선거에서 각 정당·연합 및 연정이 확보한 총 투표수를 감안해 장소를 배정. 과거 최다 득표한 정당·연맹 및 연정에게 우선권을 줌.
  - 후보자 공표 후 2일 이내에 선거위원회는 각 후보자의 대리인에게 선거벽보 등 설치장소를 통보
- 선거운동용 우편물 발송에 대해서는 부령(Ministerial Order)으로 특별 요금을 정함(선거법 제59조).

7. 캐나다

- 인쇄물을 이용한 대표적인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벽보(election advertising posters)에 대한 사항이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음(선거법 제322조).
  - 주택이나 건물 임차인은 임대장소에 선거벽보를 부착할 수 있으며, 임대인 등은 이를 금지할 수 없음.
  - 그러나 임대인 또는 대리인은 부착하는 선거벽보의 크기와 유형에 관한 합당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건물의 공공구역의 경우에는 금지할 수도 있음.

제3절
신문 이용 선거운동

- 신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신문광고는 각 국가의 언론의 자유에 맡겨두는 경우(영국, 미국, 독일, 캐나다)가 있고, 선거법에 간략하게 정의 등만을 언급한 국가(프랑스, 호주), 자세하게 규정하는 국가(일본)로 구분할 수 있음.
- 스웨덴, 스위스는 선거법에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1. 영 국

- 영국에서 인쇄물(신문·잡지 등의 정기간행물과 지면 광고, 옥외 광고 등 모든 인쇄매체)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이를 “Soft touch”라 함).
- 신문광고는 정당광고의 주요매체로 총선거시 정당별로 정강·정책과 선거공약 광고를 게재하고 당수 또는 당직자의 기자회견, 정당의 선거전략, 선거권자들의 호응도를 분석·홍보하고 있음(단, 특정 후보자를 언급하여 광고하는 것은 금지).
- 영국의 신문은 미국과 같이 사설 등을 통해 소유자 또는 편집자의 주관에 따라 정치적 견해를 표명할 수 있음.

2. 미 국

- 연방선거운동법에 규제사항이 없고 사설 등을 통해 소유자 또는 편집자의 주관에 따라 자유롭게 정치적 견해를 표명할 수 있음.

3. 독 일

- 독일의 언론매체들은「독일 기본법」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근거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자율적으로 보도하며, 특별한 제한규정은 없음.
- 선거광고는 일반 상업광고 규정에 준하여 적용
- 선거광고의 게재여부, 선거 등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은 모두 신문사의 재량사항으로 실제로 중립지들은 모든 정당의 광고를 게재하고 있음.
- 정부는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선거에 관한 홍보는 자료제공에 한정됨.

4. 일 본

- 중의원의원, 참의원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등은 총무성령에 따라 동일 규격으로 하나의 신문을 선택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무료로 신문광고를 할 수 있음(공직선거법 제149조).
- 다만,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는 명부신고정당의 해당 선거구에서의 득표총수가 해당 선거구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는 명부신고정당의 득표총수가 해당 선거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함.

가. 규격·횟수 등

<표 6-3> 일본 신문광고 규격 및 횟수[15)]

선거별	주체	등재후보자수	규격	횟수
중의원소선거구의원	후 보 자	-	9.6cm× 2단조	5
	후 보 자 신고정당	1~5명	38.5cm× 4단조	8
		6~10명	38.5cm× 8단조	16
		11~15명	38.5cm×12단조	24
		16명 이상	38.5cm×16단조	32
중의원비례대표의원	〃	1~9명	38.5cm× 8단조	16
		10~18명	38.5cm×16단조	32
		19~27명	38.5cm×24단조	48
		28명 이상	38.5cm×32단조	64
참의원비례대표의원	〃	1~8명	38.5cm×20단조	40
		9~16명	38.5cm×28단조	56
		17~24명	38.5cm×36단조	72
		25명 이상	38.5cm×44단조	88
기타 선거	•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 5회			

나. 배포방법

- 광고를 게재한 신문은 다른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문판매업자가 통상의 방법(정기 구독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배포하는 때에는 유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에 의하여 배포하거나,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음.

5. 스페인

- 정기간행인쇄물 및 라디오 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선거법 제58조)

15) 공직선거법 시행규칙 제19조(신문광고)

- 민간소유의 정기간행인쇄물 및 라디오방송을 통해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선거비용제한액의 20%를 넘을 수 없음.
- 선거광고에 대한 요금은 일반 상업광고 요금보다 높아서는 안 되고, 광고시간 및 공간, 요금 및 위치 등에 있어 후보자들 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그 조건을 명확히 밝혀야 함.

6. 캐나다

- 정기간행물 등 인쇄매체를 통한 선거광고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 선거법에서 신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제4절
방송시설 이용 선거운동

- 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각 국가들은 모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동일한 시간과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무료로 방송시간을 할당해 주는 경우도 있음(영국, 독일, 일본, 스페인).
- 그러나 미국의 경우 선거운동비용 총액만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방송을 이용한 홍보가 가능
- 스웨덴과 스위스는 선거법에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1. 영 국

- 영국에서는 정당의 독자적인 방송광고가 금지되어 있음.
  - 신문·잡지·옥외광고 등 인쇄매체는 어떠한 형태라도 허용되지만, 방송은 TV와 라디오 모두 허용되지 않음.
- 다만, 선거기간 중에는 영국방송협회(BBC)와 통신위원회(office of communication: Ofcom)가 주요 정당과 논의하여 정당의 선거에 관한 특별한 협약을 맺고 TV방송, 라디오방송별로 방송횟수 및 각 정당의 할당시간을 결정(1983년 국민대표법 제93조)

  ※ 자세한 내용은 제1장 제3절 2. 나. 선거보도심의 영국편, p.116 참조
  - 선거보도와 프로그램 편성 시 특정 선거구에 관한 선거보도 등 프로그램 편성 시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해야 함.
  - 영국의 국외에 있는 방송시설을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유료 정치광고방송은 금지(1983년 국민대표법 제92조)

2. 미 국

- 방송광고 횟수·시간 등은 정해진 선거비용 지출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가. 선거운동방송의 개념[연방선거운동법 제30104조(3)(A)]

- 선거운동방송이란 연방선거에서 신원이 확실한 후보자를 위해 해당 후보자가 출마하는 공직선거, 보궐선거, 결선투표 전 60일 이내, 그 공직 후보자를 추천할 권한이 있는 예비선거나 선호투표 또는 정당의 전당대회 및 코커스 전 30일 이내에 행해지는 방송, 케이블 또는 위성방송을 말함.

나. 선거운동방송의 예외[연방선거운동법 제30104조(3)(B)]

- 정당, 정치위원회 또는 후보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방송시설이 아닌 방송시설에 의해 제공되는 뉴스, 논평, 사설을 보도하는 방송
- 연방선거운동법상 독립지출이나 지출을 구성하는 방송
- 연방선거위원회의 규정에 의해 후보자 토론이나 포럼을 내용으로 하거나, 그러한 토론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 또는 토론이나 포럼을 후원하는 자에 의해 만들어진 방송
- 연방선거위원회가 제정·공포하는 규칙에 따라 면제되는 기타 방송

3. 프랑스

-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선거법 제167-1조)
  - 선거기간 동안 정당 및 정치단체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선거운동방송 관련 비용은 국가가 부담).
  - 1차 투표에서 75명의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 또는 정치단체는 7분, 2차 투표에서는 5분간 방송할 수 있음.

- 하원의원 교섭단체는 1차 투표에서는 2시간, 2차 투표에서는 1시간 방송할 수 있음.

※ 교섭단체: 「국민의회규칙」 제1조제1항에 따라 같은 정당 소속의원 30명 이상으로 구성

- 이외에 민주주의 참여 정도에 비례한 아래의 요건에 따라 추가로 1시간 배정할 수 있음.
  - ·가장 마지막으로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하원의원선거 및 가장 마지막으로 실시된 선거에서 후보자나 정당 및 정치단체가 얻은 득표결과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대표성
  - ·각 정당과 정치집단의 선거토론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 방송의 기획, 제작, 방송 등의 결정은 국영방송사장의 자문을 거쳐 시청각최고위원회(Le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가 정함.

4. 독 일

가. 법적근거

- 「정당법」 제5조와 「방송국가협정」 제42조제2항은 직접적인 정당의 선거광고를 허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항은 개별공영방송법과 민영방송법에 구체화되어 있음.

  ※ 법의 구체적 내용: 공공기관이 정당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다른 공적 서비스를 보장할 때는 모든 정당을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하며, 최소한 1개 주에서 정당의 비례대표후보자명부를 등록한다면 연방의회 선거기간 동안 자비를 들여서 선거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대를 배정받을 수 있음.

  ※ 현행법상 정당의 일반적인 광고방송은 금지되어 있고, 선거광고 방송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나. 선거광고시간 배정[16)]

- 독일매체관리청장회의는 선거광고(방영)지침을 마련하여 정당별 방송시간 배정

16) 신두철. 독일의 선거와 정책공약. 김영래 · 정혁욱 편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 2008.

과 횟수, 민영방송의 방송송출요금 징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선거광고의 길이는 통상 1분 30초로 정하며, 지역 TV의 30분짜리 프로그램 뒤에 선거광고가 나가면 30초만 선거광고를 하도록 함.
- 선거광고는 선거일 31일 전부터 2일 전까지로 하고, 선거일 전날에는 선거광고를 금하고 있음.
- 라디오의 경우 6시부터 19시까지, 텔레비전은 17시에서 23시에 방송하도록 하고 있음.
- 방송시간배정은 이전 선거결과에 따라 원내진출정당과 원외정당으로 나누어 배정하고 있으며, 원내진출정당은 원외정당에 비해 2배의 방송시간을 배정 받음.
- 원내진출정당 중 양대 정당은 다른 원내정당보다 2배의 선거방송시간을 배정 받음.

● 선거광고지침은 모든 정당에 기회평등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선거광고를 신청하는 정당과 후보자가 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했는지를 심사. 또한 선거광고 전후에 선거광고임을 명확히 밝히도록 함.

※ 방송사는 방송시간대와 방송횟수를 정당에 통보해주지만, 정당이 이 기회를 활용하느냐는 정당의 선택에 달려있음.

<표 6-4> 독일 16개 주의 선거광고 관련

주명	공영방송	내용	민영방송	내용
베를린	RBB 국가협정 제8조제2항	의무	베를린-브란데부르크방송국가협정 제57조제2항제1호	의무
브란덴부르크				
바이에른	BR법 제4조제2항	의무	없음	
바덴-뷔르템베르크	SWR 국가협정 제9조제11항	의무	미디어법 제5조제3항	허용
라인란트-팔츠			민영방송법 제30조제2,3항	의무
자알란트	주방송법 제14조제2항, 공·민영방송 선거광고방송 의무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WDR법 제8조제2항	의무	방송법 제19조제2항	의무
헷센	HR법 제3조제4항	의무	미디어법 제30조제2항	의무
니더작센	NDR 국가협정 제15조제1항	의무	방송법 제29조제1항	의무
함부르크			미디어법 제31조제1항	의무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방송법 제33조제1항	의무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없음	
브레멘	없음			
작센-안할트	MDR 국가협정 제14조제2항	의무	민영방송법 제23조제1항	의무
작센			민영방송법 제22조제1항	의무
튀링엔			방송법 제26조제2항	의무
전국	ZDF 국가협정 제11조제1항	의무		
전국	도이칠란트라디오 국가협정 제11조	의무		

5. 일 본

가. 정견방송(공직선거법 제150조)

- 기　　간: 선거운동기간 중
- 주　　관: 일본방송협회 및 기간(基幹)방송사업자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 요　　금: (공익 목적) 무료로 방송
- 횟수·일시: 총무대신이 일본방송협회 및 기간방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함.
- 방송방법: 일본방송협회 및 기간방송사업자는 녹음하거나 녹화한 정견 또는 후보

자신고정당이 녹음하거나 녹화한 정견을 그대로 방송해야 함.

※ 제150조의2(정견방송의 품위유지) 후보자·후보자신고정당·중의원명부신고정당 등 및 참의원명부신고정당 등은 타인이나 다른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또는 특정한 상품광고 기타 영업에 관한 선전을 하는 등 정견방송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됨.

나. 경력방송(공직선거법 제151조)

- 주　관: 일본방송협회
- 횟　수
  -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 라디오방송 10회, 텔레비전방송 1회
  -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 라디오방송 5회, 텔레비전방송 1회

  ※ 방송협회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 횟수를 늘리도록 노력해야 함.
- 내　용: 후보자의 이름, 연령, 정당명(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의 경우는 후보자신고정당의 명칭), 주요 경력

  ※ 일본방송협회 및 기간방송사업자는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서 텔레비전에 의한 정견방송 시 경력방송을 실시

6. 스페인

가. 선거운동을 위한 공영방송매체 이용(선거법 제60~63,67조)

-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연합, 연정 및 선거인 단체는 공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에서 무료로 선거광고 시간을 배정 받을 권리가 있음.
- 선거광고를 위한 무료시간 배정은 각 정당·연합 및 연정이 최근 실시된 같은 선거에서 획득했던 총 득표수에 따름.

나. 무료 선거광고 시간배정(선거법 제64조)

- 해당 매체의 방송 또는 프로그램 권역에 포함된 선거구의 75% 이상 지역에서 후보자를 내세운 정당·연합 및 연정의 경우

- 정당·연합 및 연정: 10분
- 직전 같은 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했으나 전국적으로 또는 해당 선거구에서의 득표가 유효투표총수 중 5%에 미치지 못한 정당, 연합 및 연정: 15분
- 직전 같은 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고, 전국적으로 또는 해당 선거구에서의 득표가 유효투표총수 중 5% 이상 20% 미만인 정당·연합 및 연정: 30분
- 직전 같은 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고, 전국적으로 또는 해당 선거구에서의 득표가 유효투표총수 중 20% 이상인 정당·연합 및 연정: 45분

-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당·연합 및 연정이라도 직전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20% 이상 득표했을 경우 전국 단위의 일반 프로그램 중 15분간 무료 광고 가능
- 선거인 단체의 경우 해당 매체의 방송 또는 프로그램 권역에 포함된 선거구의 75% 이상 지역에서 후보자를 내세웠다면 10분간 무료 광고 가능

다. 무료 선거광고 관련 주무기관(선거법 제65조)

- 중앙선거위원회는 방송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공영 방송매체의 무료 선거광고 시간을 배정하는 주무기관임.
- 중앙선거위원회의 지휘 하에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위원회는 선거광고에 필요사항을 제안할 수 있음.
-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임명하는 방송위원회 위원은 하원의회에서 의석을 가진 각 정당·연합 또는 연정의 대표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자들은 하원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함.
-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선거위원회가 위의 대표자 중에서 지명함.
- 중앙선거위원회는 공영 방송매체의 지역 및 시 단위의 프로그램에 관해 도선거위원회에 무료 시간 배정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 단위의 방송위원회가 설치됨.

7. 캐나다

-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Political Broadcasts)은 등록정당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거관리청장이 임명하는 방송중재인을 통해 국가가 무료로 배정해 주는 방송시간이 있고 방송시설의 재량에 따라 방송시간을 구입할 수도 있음.

가. 방송중재인

- 방송중재인(Broadcasting Arbitrator) 선임(선거법 제332,333조)
  - 선거관리청장은 의회선거일 후 90일 이내 하원 내 각 정당이 지명한 대표자 회의를 소집해 방송중재인을 임명함.
  - 방송중재인은 등록정당 대표들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만장일치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청장이 지명함.
  - 방송중재인의 임기는 의회선거 선거일 6개월 후에 만료됨.
- 방송중재인의 직무
  - 방송중재인은 선거법 제335조에 따른 방송시간 배정을 협의하기 위해 등록정당의 대표자 회의를 소집함(선거법 제336조).

    ※ 의회선거의 선거소집령이 발행 시부터 선거일 전일 자정까지 기간 동안 모든 방송사들은 등록정당에게 방송법에 따른 조건에 따라 방송시설의 주요시간대 총 6시간 30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선거법 제335조).

    ※ 등록정당이 회의 통지를 받은 후 방송시간의 할당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방송중재인에게 서면으로 표시하거나, 방송시간의 배정에 관한 해당 정당의 의도를 방송중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회의에 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송시간을 배정받을 수 없음(선거법 제337조).
  - 방송중재인은 선거소집령 발행 후 2일 이내에 지침서를 작성하여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통신위원회(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에 송부해야 함(선거법 제346조).

    ※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통신위원회는 선거소집령 발행 후 4일 이내에 방송법규와 관련된 지침서를 작성하여 방송중개인이 작성한 지침서와 함께 방송사 및 네트워크관리자에게 송부해야 함(선거법 제347조).

    ·이 법에 의한 방송시간 배정과 그 자격요건

    ·등록정당 및 그 외 모든 정당의 방송시간 예약 절차

·이 법에 따른 방송사 및 네트워크 관리자들의 행위와 관련된 그 밖의 사안들

나. 방송시간 배정의 요건 및 제한(선거법 제338조)

- 방송중재인은 각 등록정당이 직전 총선거에서 획득한 하원의석 비율과 득표율을 균등하게 반영하여 방송시간을 배정해야 함.
  - 정당이 합당한 경우에는 직전 총선거에서 합당한 정당들이 확보한 전체의석수와 득표율을 포함하여 배정해야함.
- 하나의 정당에 총 방송시간의 50%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없음.
- 방송국 재량으로 할당시간 이상의 추가 방송시간을 정당에 판매할 수 있으나, 한 정당에 대해서만 방송시간을 추가로 판매하고 다른 정당에 대해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음.
- 방송규칙에 따라 방송국은 “정당들에 대해 동등한 여건 하에 시간을 배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으며, 특정 정당을 선호하여 차별해서는 안 됨.

8. 호 주

- 호주공영방송국(ABC)은 「호주공영방송법(Australian Broadcasting Corpo- ration Act, 1983)」에 따라 1932년부터 무료선거방송 실시해 호주 전역의 ABC TV와 ABC 지역 라디오를 통해 자격이 있는 정당들에게 무료방송시간을 부여함(공영방송법 제79A조).[17]
  - 후보자 범위와 참여방법은 선거규모, 여론조사 결과 등 언론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공영방송사가 공정하게 결정해야함(공영방송사가 선거운동기간에 정당이 선거권자에게 정책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주어 선거 민주주의 절차를 원활하게 하는데 의의가 있음).[18]

---

17) https://about.abc.net.au/wp-content/uploads/2016/11/2016FederalElectionECRCRPT.pdf (검색일 2019.7.31.)

18) 호주공영방송. 선거보도검토위원회 2016 연방선거 리포트(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2016 Federal Election report).
http://about.abc.net.au/wp-content/uploads/2016/11/2016FederalElectionECRCRPT.pdf (검색일 2019.9.30.)

- 다만, 당사자들이 공영방송법 제79A조 및 제79B조와 ABC방송국의 지침을 준수하여 자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야 함.
- 선거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지, 비언어적 행동, 슬로건을 노출해서는 안 되고 공영방송 뉴스나 시사 인터뷰 프로그램 형식으로 진행해서 선거권자에게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됨.
- 방송내용은 정책발표(policy announcements)와 최종 정견발표(final pitch)로 하며 집권당과 제2당은 동일한 방송시간분량(ABC1 TV에서 31분 30초, ABC 지역라디오에서 31분 30초)을 배분받음.
-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의 10% 이상에 후보자를 내고 5% 이상의 선거권자 지지를 받은 소수정당의 경우에는 정당 간 미리 합의를 통해 집권당이나 제2당 중에 어느 방송시간에 함께 할지 결정함.

<표 6-5> OECD국가의 무료 방송시간 및 무료 인쇄물 배정방법

국가명	배정방법	근거규정
영 국	Broadcaster's Liaison Group이 각 정당에 배정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제11조
미 국	해당 없음.	-
프랑스	의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을 대상으로 Supreme Council for Audiovisual Services가 각 정당에 배정	선거법 제L167-1조
독 일	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방송관련 비용을 보전 받음.	주간(州間) 방송 협정 제42조
일 본	선거에 참여한 정당·무소속 후보자는 TV,라디오, 신문광고를 무료로 할 수 있음.	공직선거법 제149,150조
스페인	선거에 참여한 정당·연정·연합 및 선거인 단체의 총 득표수에 따라 배정	선거법 제61,64,65,67조
스웨덴[19]	해당 없음.	-
스위스	해당 없음. ※ 방송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	라디오·텔레비전법 제10조[20]
캐나다	• 각 정당의 하원의석수와 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 • 각 정당의 출마 후보자 수에 따라 추가 방송시간 배정	선거법 제338,339조
호 주[21]	• 두 개의 주요정당에게는 동일 시간 배정 • 소수당이나 무소속 후보자는 득표수나 의석수를 기준으로 할당	-
오스트리아	해당 없음.	정당 · 선거운동법 제7조
칠 레	선거 결과를 기준으로 배정	투표와 여론조사에 관한 법 제30,31조[22]
체 코	모든 정당에 동일한 시간 배정	의회선거법 제16조제1,3항
덴마크[23]	모든 정당에 동일한 시간 배정	-
에스토니아[24]	해당 없음.	정당법 제10조
핀란드[25]	선거 결과를 기준으로 배정	-
그리스	Inter-party Committee of Elections와 National Council for Radio and Television가 선거 결과를 기준으로 배정	정당자금지원법 제10조제1항
헝가리	모든 정당에 동일한 시간 배정	헌법(Foundation) 제9조
아이슬란드[26]	모든 정당에 동일한 시간 배정	-
아일랜드	해당 없음.	방송법 제39조제2항
이스라엘[27]	• 선거에 참여한 모든 정당에 동일한 시간 할당 • 다만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추가 할당	-
이탈리아	모든 정당에 동일한 시간 할당	통합방송법 제7조제2항
리투아니아	모든 정당에 동일한 시간 할당	선거법 제51조제1항
룩셈부르크	모든 정당에 동일한 시간 할당	-

국가명	배정방법	근거규정
멕시코	• 공적자금의 30%는 모든 정당에 동일한 시간 배정 • 70%는 이전 선거 결과를 기준으로 배정	선거법 제167조
노르웨이[28]	법적인 할당은 없으나 방송사들 자체 규정을 통해 배정	-
네덜란드	• 모든 정당에 동일한 시간 배정 • Commissariaat voor de Media가 추가 배정	미디어법 제6조제1항
뉴질랜드	선거위원회가 배정	방송법 제73조
폴란드	모든 정당에 동일한 시간 배정	선거법 제252조
포르투갈	각 정당의 출마한 후보자 수에 비례해 정당에 배정	선거법 제63조제1항
슬로바키아	해당 없음. ※ 유료방송 할당 기준만 선거법에 있음.	선거법 제15,24조
슬로베니아	• 의석이 있는 정당에 동일하게 배정 • 총 방송 시간의 1/3은 의석이 없는 정당에게 동등하게 배정	라디오·텔레비전 방송법 제12조
터 키	• 선거에 참여한 정당에게 배정 • 의석수 등에 따라 추가 배정	선거인 등록기본법 제52조

※ 벨기에, 라트비아는 해당 정보 없음.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ME037 (검색일 2019.10.8.)

19) OSCE. 스웨덴 총선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70947 (검색일 2019.10.8.)

20) Federal Law of 24 March 2006. regulating radio and television(Loi fédérale sur la radio et la télévision) https://www.admin.ch/opc/fr/classified-compilation/20001794/index.html (검색일 2019.10.8.)

21) 호주선거위원회. https://www.aec.gov.au/About_AEC/Publications/backgrounders/authorisation.htm (검색일 2019.10.8.)

22) 투표와 여론조사에 관한 법(LEY ORGÁNICA CONSTITUCIONAL SOBRE VOTACIONES POPULARES YESCRUTINIOS) http://aceproject.org/ero-en/regions/americas/CL/chile-ley-sobre-votaciones-populares-y-escrutinios/ (검색일 2019.10.8.)

23) 덴마크 의회선거제도. p.21 https://www.thedanishparliament.dk/~/media/pdf/publikationer/english/the-parliamentary-system-of-denmark_2011. ashx (검색일 2019.10.8.)

24) OSCE. 에스토니아 총선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estonia/409202?download=true (검색일 2019.10.8.)

25)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ME037

26) 아이슬란드 법무부. 2010 '아이슬란드 Greco 권장사항 진행보고서' p.8 https://www.stjornarradid.is/media/innanrikisraduneyti-media/media/Skyrslur/GRECO---Progress-report-on-RC-III-Iceland-%28Theme-I%29.pdf (검색일 2019.10.8.)

27) LA 이스라엘 총영사관. '2015 이스라엘 선거정보' https://embassies.gov.il/la/Pages/FAQ-Elections-in-Israel.aspx (검색일 2019.10.8.)

28) OSCE. 노르웨이 총선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norway/333011 (검색일 2019.10.8.)

제5절
집회 이용 선거운동

-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관리기관의 허가나 횟수 등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능한 경우(영국, 프랑스)도 있지만, 선거법 등에 자세히 절차를 규정해 놓고 사전신고제로 운영하는 국가(일본, 스페인)도 있음.
- 미국과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호주는 선거법에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1. 영 국

- 의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공개집회(선거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선거기간 중(선거소집령 수령 이후 선거일까지의 기간) 학교시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1983년 국민대표법 제95조).
  - 다만, 냉난방, 청소, 전기 등의 사용료는 지불해야 하며, 사용 후에는 원상태로 복구해야 함.
  - 후보자는 불법집회가 아닌 한 횟수에 제한 없이 옥내·옥외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공개집회를 개최할 수 있음.

2. 프랑스

- 선거운동 관련 집회는 「1881년 6월 30일 집회의 자유에 관한 법률(Loi du 30 juin 1881 sur la liberté de réunion)」과 「1907년 3월 28일 공공집회에 관한 법률(Loi du 28 mars 1907 relative aux réunions publiques)」에 따라 일반집회와 마찬가지로 집회의 자유가 있으며, 사전신고 없이 할 수 있음(선거법 제47조).[29]

3. 독 일

가. 공개집회

-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이나 집회는「집회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집회 전 48시간 전에 신고해야 함.[30]
- 신고 내용은 주최자, 책임대표자, 일시, 장소, 주제, 집회 시 사용도구 등임.

나. 거리유세

- 거리유세 등은 일반적인「집회법」에 따라 규율
  - 거리의 유세부스(정보제공대)는 최대 8m²(구시가지의 보행자 전용구역에서는 최대 6m²)
  - 시간은 최대 4시간, 참여인원은 최대 10명
  - 허가신고는 늦어도 선거운동 2주 전까지는 이루어져야 함.

다. 확성기 이용[31]

-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4주 전부터 허용되며 선거일에는 허용되지 않음.
  - 공공교통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특별히 교통량이 많거나 주요 교차로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됨.
  - 주거지역에서는 22시부터 7시까지, 13시부터 15시까지 확성기 이용 금지
  - 소음을 줄이기 위해 악기나 음악장비는 가능한 짧은 시간 동안 사용해야 함.

---

29) 1881년 6월 30일 집회의 자유에 관한 법률(la loi du 30 juin 1881 sur la liberté de réunion)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25148185 (검색일 2019.6.5.)
1907년 3월 28일 공공집회에 관한 법률(la loi du 28 mars 1907 relative aux réunions publiques)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314861 (검색일 2019.6.5.)

30) www.gesetze-im-internet.de/Versammlg/index.html (검색일 2019.8.16.)

31) 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경우 https://recht.nrw.de/lmi/owa/br_text_anzeigen?v_id=5720040121111740677 (검색일 2019.8.8.)

4. 일 본

가. 개인연설회 등

- 주　　체(공직선거법 제161조의2)
  - 개인연설회: 해당 후보자가 개최
  - 정당연설회: 후보자신고정당이 개최
  - 정당 등 연설회: 중의원명부신고정당이 개최
- 신　　청: 개최일 전 2일까지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공직선거법 제163조)
- 공영시설의 무료사용: 후보자 1명에 대하여 동일 시설마다 1회에 한함(공직선거법 제164조).
- 입간판 또는 간판류(공직선거법 제164조의2)
  - 후보자: 해당 선거마다 총 5개
  - 후보자신고정당: 도·도·부·현마다 2개에 후보자신고정당의 후보자수를 곱하여 얻은 수
  - 중의원명부신고정당: 선거구마다 8개 이내로 게시해야 함.
    이 경우 정당연설회장 앞에 게시하는 입간판·간판류는 선거구마다 총 2개 이내로 함.
    ※ 공탁금 반환요건을 충족한 자는 간판류 등을 무료로 제작할 수 있음.

나. 가두연설

- 자동차 또는 선박 등이 정지된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표지를 붙여 선거운동을 위한 가두연설을 할 수 있음(공직선거법 제164조의5).
  - 표지는 후보자 1명당 1매, 참의원비례대표선거 6매, 중의원비례대표선거 명부신고정당의 명부와 관계된 선거구내 의원 정수만큼
- 후보자 1명당(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는 참의원명부등재자 1명에 대하여 연설을 하는 장소마다) 15명 이내(운전자 미포함)에서 함께 할 수 있으며, 완장을 착용해야 함(공직선거법 제164조의7).
  ※ 개인연설회 등 가두연설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녹음기를 사용해 연설할 수 있음(공직선거법 제164조의4).

5. 스페인

- 선거운동 관련 집회(선거법 제54조)
  - 선거운동 관련 집회는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법의 적용을 받음.
  - 중앙선거위원회 해석기준의 통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 도선거위원회가 관리함.
  -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정부당국이 관리·감독하며, 관할 선거위원회는 소집 사실이 통보된 집회에 대해 당국에 통지해야 함.
  - 시청은 선거운동 관련 집회를 위해 무료 공공시설 및 장소를 예약해야 함.

제6절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 인터넷이 선거운동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로 아직 인터넷 선거운동에 관한 개별 법률 규정을 제정한 국가를 찾기는 힘듦. 다만, 인터넷을 방송이나 인쇄매체에 편입시켜 이로 인한 위반사항에 대해 다른 법률 규정을 폭넓게 적용해 해석하고 있음.
❍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의 경우 선거법에 관련 규정 없음.

1. 영 국

- 디지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고, 여기에 쏟아 붓는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도 증가하고 있지만 누가 돈을 내는지 분명한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달리 온라인 선거운동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32)]
- 이에 선거위원회는 디지털 선거운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제에 대한 권고를 정부에 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기업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음.
  - 모든 디지털 선거광고(digital election ads)에 누가 돈을 지불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히고 보고해야 함.
  - 소셜 미디어 기업(social media companies)은 정치광고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함.
- 이 밖에 선거운동 및 보도 등과 관련하여 상대후보자의 비방 또는 언어폭력에 대해 일반적 사회법인 「명예훼손법(Defamation law)」 또는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을 적용하고 있음.

32) 영국선거위원회. ‘Transparent digital campaigning(투명한 디지털 선거운동).’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who-we-are-and-what-we-do/changing-electoral-law/transparent-digital-campaigning (검색일 2019.9.20.)

2. 미 국

- 1970년대에는 후보자와 정당들은 주로 TV를 통하여 정책을 선전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보다 소극적인 소통을 시도하였으나,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시대에서는 TV광고를 넘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인터넷 및 디지털 기반의 대중 커뮤니케이션 형식의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보다 저렴하고 쉬운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이미 새롭고 많은 형태의 뉴미디어가 선거권자 등에게 투표영향, 자원봉사 참여 및 정치자금 기부금 모금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뉴미디어의 편의성과 접근성은 오늘날의 정치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33]
- 연방선거운동법상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는 없으나, 연방선거위원회는 2001년 10월 "인터넷상의 정치활동에 대한 규정"을 공표하면서 인터넷상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규제와 심의를 담당하고 있음.[34]
  - 개인의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법상 기부나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등록, 보고 등 법상 제약이 없음(CFR 100.94, 100.155).
  - 다만,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사람의 웹사이트에 광고를 실으면 연방선거운동관계법상 "일반적인 대중정치광고(general public political advertising)"의 일종으로 여겨져 대중홍보(public communications)에 해당되어 기부 또는 지출, 보고규정의 제한을 받게 됨(CFR 100.26).[35]

---

33) study.com. 'Media's Influence on the Public's Political Attitudes.' https://study.com/academy/lesson/medias-influence-on-the-publics-political-attitudes.html, (검색일 2019.7.25.)

34)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와 AO(Advisory Opinion)를 통해 규제
- CFR: 미국연방규정으로 연방행정부가 발한 행정명령을 집대성한 것으로 규정집의 각 권은 매년 갱신되고 있음. 제11편제1장에 연방선거위원회 규정들이 있음.
- AO: 연방선거위원회의 선거자금법에 대한 상황별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응답 운영
연방규정집 제11편 제1장(연방선거위원회) 제100.94조(CFR Title 11. Chapter I. FEDERAL ELECTION COMMISSION
https://www.govinfo.gov/content/pkg/CFR-2019-title11-vol1/pdf/CFR-2019-title11-vol1.pdf (검색일 2019.7.25.)

35) 이전까지 연방선거위원회는 대중홍보에 인터넷 유료광고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2004년 9월 연방항소법원이 Shays v. FEC 사건에 대해 연방선거위원회의 규정을 무효화함으로써, 관련규정을 개정해 2006년 5월12일부터 인터넷 유료광고도 규제대상에 포함.

3. 프랑스

- 프랑스에서 정당과 정치인들이 인터넷(홈페이지, 블로그, 토론사이트 등)을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상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관련 기존 법률 내에서 후원금 모집, 인터넷 배너광고, 뉴스레터 발송 등 다양한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선거와 관련한 인터넷의 활용에 대한 법규의 체계화는 미흡한 실정이나 프랑스는 방송법상 인터넷을 영상커뮤니케이션매체와 인쇄매체의 중간범주로 분류하고, 선거기간을 전후하여 민감한 시기에는 라디오 및 TV와 같은 방송물을 취급하는 법률을 적용함.
- 구체적인 인터넷 선거운동 관련 규제가 선거관리 현실상 불가피한 경우 기존 선거관련 법규 내에서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 법률을 활용 및 재해석함.
  - 정당 및 정치인의 인터넷 활용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다른 홍보수단들과 동일한 법적용을 받게 되는데, 선거운동 종료 이후인 선거일 전일 0시 이후부터 선거운동관련 내용은 인터넷에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말아야 하며(선거법 제49조 적용), 이 시간이 후 인터넷상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서는 안 됨(선거법 제52-2조 적용).
  - 또한 인터넷 선거운동과 관련된 모든 비용(홈페이지, 블로그 등 운영을 위한 서버, 도메인, 운영인력 비용 등)은 후보자 측의 단일화된 선거운동 회계계정을 통해 지출되어야 하며 이는 차후 선거위원회에 신고되는 선거운동 총 비용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
- 2018.11.20. 공포된 '정보조작 대처법(Les propositions de loi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에 따라 선거법[36]에도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37]

① 온라인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투명한 정보 제공 의무(선거법 제163-1조)
- 적용기간: 총선거일이 속한 달의 첫 번째 날 3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

36) 프랑스 선거법은 2018.12.24.자로 개정

37) http://slownews.kr/71699 (검색일 2019.6.4.)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6973&AST_SEQ=108&ETC= (검색일 2019.6.4.)

- 적용주체: 프랑스 영토 내 접속자 수가 특정치를 초과하는 온라인포털사이트 운영자
- 의무부과 내용
  ·공적 토론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얻은 (광고)수익 산정에 대한 올바르고 투명한 정보 제공
  ·공적 토론과 관련된 정보 중 개인정보에 대한 투명성
  ·특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정보 제공 대가로 얻은 수익의 공개
- 위반 시 1년의 징역,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112조).

② 온라인상 허위정보의 배포에 대한 판사의 중지 권한(선거법 제163-2조)
- 적용기간: 총선거일이 속한 달의 첫 번째 날 3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
- 적용대상: 투표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부정확하거나 거짓된 주장, 비난이 고의적이며, 대규모로 온라인상에서 배포되는 경우
- 규제내용
  ·판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모든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신뢰회복을 명하거나 배포 중지를 위한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명함.
  ·정보의 진실성과 관련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제기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진실성 여부를 파악한 뒤 삭제 명령을 내려야 함.

4. 독 일

- 독일은 인터넷 선거운동뿐 아니라 일반적인 선거운동의 방법 및 종류, 선거운동 비용 제한 등을 규율하는 법규정이 없음.
- 독일의 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에서 공정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반론보도청구권을 보호함으로써 인터넷을 비롯한 유사방송매체도 방송매체와 인쇄매체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음.

- 이에 따라 방송매체와 인쇄매체에 적용되는 규제조항은 유사방송매체의 특수성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유효하게 적용됨.
- 뉴미디어(인터넷·SNS·페이스북·트위터 등과 관련해 전달방식 또는 수단의 특성에 기초해 보호 또는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전달되는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에 기초하여 보호됨.
- 인터넷을 사용한 정당의 홍보활동 및 선거운동은 이미 10년이 넘어 이제는 일반적이 되었으며, 상시적인 정당의 정책홍보, 활동보고 및 업무관련 자료배포 등에 이용되고 있음.[38]
- 각 정당은 정당 홈페이지[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당은 물론 각 주, 도시, 지역구 등 각 정당 조직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
- 선거운동 역시 이러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정당 소식지나 일상적인 활동보고 이외에도 정당의 공약집, 당선 정당의 경우에는 집권 후 계획 등도 정당의 각 조직단계 별 홈페이지를 통해 접할 수 있음.
- 정당 및 각 정부조직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한 법적인 규제는 없으며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다만, 최근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규제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음.

38) Jungherr, Andereas/Schoen, Harald, Das Internet in Wahlkämpfen. 2013.6.

39) 기독교민주당 http://www.cdu.de 사회민주당 http://www.spd.de, 자유민주당 http://www.fdp.de, 녹색당 http://www.gruene.de/, 좌파연합 http://www.die-linke.de/dielinke/aktuell/

참조 6-1 독일의 「소셜 네트워크 규제법」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Netzwerkdurchsetzungsgesetz: NetzDG, Act to Improve Enforcement of the Law in Social Networks: Network Enforcement Act)[40]

- 배 경: 2015년 말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 주도로 SNS 기업들에 자발적으로 가짜뉴스를 삭제하도록 유도했으나 준수되지 않았고, 2017년 총선 과정 중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난민 수용 정책에 대한 비난과 혐오 여론이 SNS를 중심으로 형성돼 극우정당의 탄생으로 이어지자 정부 차원의 강력한 법적 규제를 신설함.
  ※ 독일은 유대인 대학살 등에 대한 반성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에 대해 가장 강력히 대처하는 나라 중의 하나임.
- 내 용: 가짜뉴스나 테러를 조장하는 게시물을 방치하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명백하게 위법한 콘텐츠'는 24시간 이내에,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닐 경우'는 7일의 시간을 주어 삭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해당 기업에 최대 5,000만 유로 (약 640억 원)의 벌금을 부과
- 시행일: 2017.10.1. 공포 및 시행(2018.1.1.부터 벌금 부과)

5. 일 본

가. 웹사이트 등을 이용한 문서·도화의 배포(공직선거법 제142조의3)

-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문서·도화는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배포할 수 있음.
- 위의 문서·도화는 선거 당일에도 수신자가 사용하는 통신단말기에 표시된 상태로 둘 수 있음.
-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문서·도화를 배포하는 자는 배포자의 전자메일주소 등과 같이 배포자와 연락이 가능한 정보를 해당 문서·도화와 관련된 전기통신을 수신하는 자가 사용하는 통신단말기기의 화면에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해야 함.

나. 전자메일을 이용한 문서·도화의 배포(공직선거법 제142조의4)

-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문서·도화를 배포하는 경우 선거운동용 전자메일을 이용하여야 함.
-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명부등재자가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문서·도화

40) www.gesetze-im-internet.de/netzdg/intex.html (검색일 2019.8.16.)

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부신고 정당 혹은 정치단체가 배포하는 것으로 간주함.

- 선거운동용 전자메일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① 선거운동용 전자메일을 알리는 요지
  ② 송신자의 이름 혹은 명칭
  ③ 선거운동용 전자메일 수신자로 하여금 메일 수신을 거부할 의사를 송신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는 취지
  ④ 수신자가 거부의사를 통지할 전자메일주소 그 외의 통지처

다.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낙선 목적의 문서·도화를 배포하는 자의 표시의무 (공직선거법 제142조의5)

- 선거기일의 공시 혹은 고시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문서·도화를 배포하는 자는 그의 전자메일주소 등이 해당 문서·도화와 관련된 전기통신을 수신하는 자가 사용하는 통신단말기기의 화면에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해야 함.
- 선거기일의 공시 혹은 고시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문서·도화를 배포하는 자는 그의 메일주소 및 이름 또는 명칭을 올바르게 표시해야 함.

라. 인터넷을 이용한 문서·도화 게재(공직선거법 제142조의6)

- 참의원의원선거 후보자신고정당 및 참의원명부신고정당, 중의원선거 중의원명부신고정당 및 정당 기타 정치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문서·도화를 유료로 게재할 수 있음.

마. 선거에 관한 인터넷 등의 적정한 이용(공직선거법 제142조의7)

- 후보자에 대해 악질적인 비방 등,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힘써야 함.

6. 스페인

- 선거운동 관련 기술매체와 개인정보 활용(선거법 제58조의2)
  - 정당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정치적 의견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적절한 보장을 제공할 때만 공익활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음.
    ※ 이 정보는 선거운동기간동안 선거운동과 관련된 목적으로 제한되며 제3자와의 공유를 금지함. 이를 어길 시 2천만 유로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41]
  - 정당, 연정 및 선거인 단체는 선거기간 동안 웹사이트와 공개된 정보를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를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음.
  - 전자매체·메신저를 이용한 선거광고 전송이나, SNS 또는 비슷한 매체를 통한 선거광고 계약은 상업적 목적으로 간주되지 않음.
  - 수신인에게 간단하게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7. 캐나다

- 온라인 플랫폼(Online Platforms)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선거법에 규정하고 있음.
- 온라인 플랫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직간접적으로 사이버 광고공간을 아래 대상자들을 위해 유상으로 제공함(선거법 제325조의1).
  - 등록정당이나 적격정당, 정당연합
  - 후보자 당내경선
  -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 또는 후보자
  - 제3자가 등록하는 경우

41) 정당의 개인정보활용) 2019년 3월 스페인 데이터 보호국(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 AEPD은 일정 기간의 공개 협의를 거친 후 정치적 견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 및 선거의 분배와 관련하여 정당이 실시한 선거운동의 합법성을 평가할 기준을 마련하는 회람을 출판함.
https://privacyinternational.org/long-read/2821/spanish-elections-under-new-data-protection-law-use-personal-data-political-parties (검색일 2019.6.20.)

제7절
호별방문 선거운동

1. 호별방문 가능 국가

- 영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선거운동에 있어서 호별방문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음.
- 캐나다 선거법(선거법 제81조)
  - 후보자는 아파트 호별방문 또는 다세대 주거건물 공용구역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아파트(apartment, condominium), 외부인출입제한 주택지(gated community), 다세대 주거건물(multiple-residence)을 관리하는 자는
    -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후보자와 그의 대리인이 호별로 방문하는 선거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됨.
    -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공동구역에서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됨.
    - ·다만, 호별방문 및 선거운동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인 안정을 침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건물, 대지,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됨. 다만, 그 장소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공안전에 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호별방문 금지 국가

- 일본(공직선거법 제138조)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거나 또는 얻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호별방문을 할 수 없음.
- 방법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연설회의 개최나 연설을 하는 것을 고지하는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을 말하고 다니는 행위는 호별방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다만, 면대면 선거운동은 허용됨.

  ※ 백화점, 전철, 버스 안, 혹은 도로 등에서 우연히 지인 등을 만났을 때에 그 기회를 이용해 그 사람에 대해 실시하는 선거운동을 말하며, 법률상 금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표독려도 할 수 있음.

- 룩셈부르크(선거법 제95조)
  - 누구든지, 언제나 선거를 목적으로 호별방문을 할 수 없음.
  - 위반 시 벌금 500~5,000유로 부과

<표 6-6> OECD국가의 선거운동방법

국가명	주요 선거운동방법	관련규정
영 국	• 포스터, 전단, 호별방문, 선거인사문 송부, 스티커, 신문광고 등 선거운동방법에 제한이 없음. • 정당에 의한 정책위주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 의한 선거운동 • 신문·잡지 등은 자유롭게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정치적인 견해를 표명할 수 있음.	1983년 국민대표법 제91조
미 국	• 포스터, 가정배달 우편물, 광고전단, 안내 팸플릿, 스티커, 정당기관지, 신문광고, 방송광고, 전화 및 PC이용선전, 호별방문, 좌담·연설회, 광고게시판 등 선거운동방법에 제한이 없음.	-
독 일	• 선거운동에 대해 특별한 법적 규제가 없어 자유롭게 선거운동 • 선거일에 투표소 건물구내와 입구에서의 구호, 음향, 문서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와 서명, 수집활동 등의 금지 이외에는 선거운동방법의 제한이 없으며, 신문광고, 벽보첩부, 선전물, 공개집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
프랑스	• 선전벽보, 집회고지벽보, 회람장, 투표용지송부, 방송연설(TV, 라디오), 선거집회 전단 등 • 정당 및 정치단체는 라디오·TV 등 공공방송을 통하여 정해진 시간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 • 법에 규정된 벽보판에는 개인용 포스터 게시가 가능하며, 벽보·전단 홍보물은 인쇄자의 주소·이름을 기재하여 배부할 수 있음.	선거법 제51조
일 본	• 통상엽서, 선거운동용 전단(2종 이내), 포스터, 문서·도화의 게시, 신문광고(5회 이내), 정견방송, 경력방송, 개인연설회, 가두연설, 선거공보, 공개장소방문, 전화 등의 선거운동방법이 가능함.	공직선거법 제13장
스페인	• 대중집회, 현수막, 벽보설치, 선거비용의 20% 내에서 민간소유의 정기간행인쇄물 및 라디오방송을 통한 홍보 등 • 선거운동을 위해 공영방송매체 무료 이용이 가능함.	선거법 제54,58,64조
스웨덴[42]	• 선거운동에 대해 특별한 법적 규제가 없어 자유롭게 선거운동 • 선거벽보, 선전물, 호별방문, 대중집회, 라디오·TV토론, 인터넷, 소셜 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등을 이용한 다양한 선거운동이 가능	-
스위스	•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음.	
캐나다	• 포스터, 전단, 가두배포물, 라디오·TV방송, 선거집회, 간판, 현수막 등 선거운동방법 제한 없음(제81조는 아파트 호별방문 또는 다세대주거단지 공동구역에서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함).	선거법 제81조, 제325조의1
호 주	• 선거광고, 전단, 팸플릿 및 선거표지(신문광고에 의한 고지와는 성격이 다름), 비디오 영상물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 매체의 변화에 따라 전화, 문자메시지, 보이스콜(bulk voice call), robocall[43] 등 새로운 선거운동 방법이 활용되고 있음.	-
오스트리아[44]	• TV토론, 인쇄매체광고, 간판 및 선거벽보, 가두 배포물, 호별 방문, 온라인과 소셜미디어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이 넓게 허용	정당자금법 제4조제2항
벨기에	• 신문, TV 및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정치적 논고, 공공방송에서의 토론, 인쇄매체를 이용한 정치적 선전, 선거권자들과의 만남, 호별방문을 통한 유세활동 등	선거비용제한법 제4조
체 코	• 미디어를 사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의뢰인 및 제작자의 신원을 공개해야 함	선거법

국가명	주요 선거운동방법	관련규정
	• 정당, 연합,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운동 시 이름, 정당약칭을 기재해야 하며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성, 이름을 기재	제16조제6항
칠 레	• 신문광고, 라디오, TV, 사진, 시청각 미디어, 유인물, 선거벽보, 깃발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 • 공원, 공공장소에서 선거운동 가능 • 공공장소에 2m²를 초과하는 대형 부착물을 게시하는 것은 금지 • 영화관 등에서의 선거운동, 항공기를 사용한 선거운동은 금지	선거법 제31,32,35조
덴마크	• 투표소 선거운동 금지 이외에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정 없음.	선거법 제50조, 제61조제8항, 제107조
에스토니아	• TV, 라디오, 온라인, 옥외광고, 신문광고, 선전물 등 • 소셜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규정은 없음	정당법 제12¹조제9항
핀란드	• 신문, 무료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 텔레비전, 네트워크 등의 미디어를 통한 홍보, 옥외광고, 자체 발행한 선거홍보물, 기타 인쇄물을 통한 선거운동 및 호별방문, 공공장소에서 연설, 토론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	선거자금법 제6조제3항
그리스	• 옥외 광고, TV/라디오 광고, TV/라디오 토론 프로그램 출연, 배너, 포스터 및 기타 판촉물 및 홍보자료 게시, 선거공보 배포, 선거사무실 설치, 선거연설 • 사전 선거운동기간에는 대부분 제한됨	선거법 제44~48조
헝가리	• 선거 벽보, 스티커 등 인쇄물 첩부, 거리유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직접 홍보, TV나 극장에서의 선거광고, 인터넷 미디어의 활용, 선거집회 등의 다양한 방법이 허용	선거절차법 제140~149조
아이슬란드[45]	•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법적규제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거리를 다니며 선거권자를 만나는 등의 유세활동과 호별방문, 방송, 인쇄 매체 및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
아일랜드	• 선거벽보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 특별한 규정 없음.[46]	쓰레기처리에 관한 법 제19조
이스라엘	• 선거벽보, 전단, 신문광고, 집회, 라디오·TV 등의 수단을 사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운동법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야 함.	선거운동법 제2a~c,5,7,10, 12,15,15a, 16a~d조
이탈리아	• 문서·포스터의 게시 장소, 선거일 전일 및 선거일 집회금지, 라디오·방송이용 제한 외에 선거운동방법 규정 없음.	선거선전 규제규범 제212호 제1,3조 상·하원의원 선거운동규제 제515호 제2조
라트비아	• TV, 라디오, 온라인 매스미디어, 인터넷, 공공장소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방법이 가능	사전선거운동법 제2~6장
리투아니아	• 헌법과 선거법, 도덕성, 공정성 등에 위반되지 않는 한 다양한 형태와 방식(비디오, 오디오, 인쇄물 공공장소, 건물, 차량 등 이용)으로 선거운동 가능 • 중앙선거위원회에서 후보자명단 발표 후, 후보자는 공영방송매체(TV, 라디오) 무료사용 가능	의회선거법 제51조

국가명	주요 선거운동방법	관련규정
룩셈부르크	•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으며 정당 간 합의에 의해 규칙을 정함. • 선거일에도 선거운동이 가능	-
멕시코	• 공공장소 집회, 가두행진, 서면문구, 사진자료, 녹화물, 프로젝터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	연방선거법 제242,243조
노르웨이[47]	•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정 없음.	-
네덜란드	• 선거운동에 대해 특별한 법적 규제가 없어 자유롭게 선거운동 • TV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 호별방문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선거운동 등	-
뉴질랜드[48]	• 선거법상 선거운동은(election advertisement) 선거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는 모든 수단으로 정의되어 있음. • 신문, 벽보, 게시판, 기타 인쇄물, 옥외광고, TV, 라디오 등을 통한 선거운동으로 광범위하게 허용 • 선거위원회에 선거운동의 정의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음.	선거법 제3A조, 제204I조
폴란드[49]	• 선거벽보, 전단지, TV나 라디오를 통한 후보자토론회, SNS 등 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운동 가능	선거법 제110,117조
포르투갈	• 선거법은 자유로운 선거활동에 대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중립성과 형평성, 표현과 정보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규정 • 방송, 선거벽보, 옥외·옥내 집회, 가두연설 등	선거법 제53~66조
슬로바키아	• 광고, TV, 라디오, 선거벽보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	선거운동법 제10,12,13,16조
슬로베니아	• TV, 라디오, 전자간행물, 전자통신, 대중집회, 포스터, 전단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법 제1조제5항
터 키	• 집회 금지장소, 확성기 이용, 선전물 또는 인쇄물 배포 및 부착장소, 공직자 선거유세 참여 관련 규정 등을 제외한 선거운동 방법 제한 없음	선거기본법 제49~66조

42) OSCE. 스웨덴 2018 총선보고서. p.6.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383934?download=true (검색일 2019.8.9.)

43) https://www.sbs.com.au/news/what-political-parties-can-and-can-t-get-away-with-during-the-election-campaign (검색일 2019.7.31.)

44) OSCE. 오스트리아 총선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austria/370866?download=true (검색일 2019.7.29.)

45) OSCE. 아이슬란드 2017 총선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iceland/348621?download=true (검색일 2019.7.29.)

46) https://merrionstreet.ie/MerrionStreet/en/News-Room/Releases/Discussion_Paper_%E2%80%93_Regulation_of_Online_Political_Advertising_in_Ireland.pdf (검색일 2019.8.14.)

47) OSCE 노르웨이 2017 총선 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norway (검색일 2019.9.23.)

48) 뉴질랜드 선거위원회. https://elections.nz/guidance-and-rules/for-candidates/campaign-rules-for-candidates/ (검색일 2019.9.23.)

49) OSCE. 폴란드 총선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poland/426566?download=true (검색일 2019.9.23.)

[참고자료 6-1] 주요국가의 매니페스토(Manifesto)

- 매니페스토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 후 정권을 담당하거나 당선되었을 경우, 반드시 입법화 또는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정책개요를 문서화하여 선거기간 중에 공표하는 국민에 대한 서약서라고 되어 있음.[50]
- 매니페스토를 정당 혹은 단체장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떠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정권공약이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선거 시 내세웠던 공약을 선거공약이라고 구분할 수 있음.
- 따라서 매니페스토는 선거공약의 목표치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내세워 실현을 위한 재정적 근거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선거공약에 기간, 목표, 공정, 재원, 나아가 우선순위라는 구체적 계약을 담는 것"을 말함.[51]
- 약 170년 전 최초로 매니페스토를 채택한 영국 외에 미국에서는 정책(platform), 독일은 선거강령(wahlprogramm), 또는 약속(pledges), 계약(contract)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정권공약이라 지칭
- 또한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내건 매니페스토를 지방 매니페스토라 하며, 총선에서 정당이 제시한 매니페스토는 정당 매니페스토로 구별함.

1. 영 국

가. 도입시기

- 매니페스토는 1834년 보수당 로버트 필(Robert Peel)당수가 탐워스(Tamworth)선거에서 처음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당시 그는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선거 후보자가 선거권자에게 솔직하고 분명한 원칙을 선언할 때 가능하다고 함.
- 특히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은 정당의 영향력이 강한 국가로 각 당의 매니페스토가 당 소속의원을 구속
- 매니페스토는 대중 정당의 변모와 함께 하게 되는데, 초기 매니페스토는 어떤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담고 있기보다 선거권자에게 보여주는 짧고도 형식적인 것이었으나 점차 내용이 증가함.

---

50) The Oxford English Reference Dictionar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http://www.tu-chemnitz.de/phil/english/chairs/linguist/independent/kursmaterialien/LangPolitics/partymanifesto.html (검색일 2019.9.1.)

51) 김영래. 매니페스토와 정치선진화의 과제. 김영래, 정형욱 편.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 2008.

나. 주요내용

<표 6-7> 영국 정당별 매니페스토

	보수당[52]	노동당[53]
2001년 총선	상식의 시대 (Time for Common Sense)	영국의 야심 (Ambition for Britain)
2005년 총선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는 영국 (Britain Forward not Backward)"	더 많은 경찰병력, 더 깨끗한 병원, 더 낮은 세금, 엄정한 학교 규율 강화, 이민규제 강화, 정치신뢰 증대
2010년 총선	영국정부 합류 초청장 (Invitation to join the government of Britain) - 경제변혁, 사회변혁, 정치변혁, 환경보호, 국익증진	모두에게 공평한 미래 (A future fair for all) - 경제재건, 공공서비스 확충 및 강화, 새로운 정치
2015년 총선	강력한 리더십. 명확한 경제 정책. 밝고 안정적인 미래 (Strong leadership. A clear economic plan. A brighter, more secure future) - 경제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함.	함께 영국 바꾸기 (Changing Britain Together) - 경제 및 사회복지 정책 등
2017년 총선	다함께 전진, 더 강한 영국과 찬란한 미래 (Forward, Together: Our Plan for a Stronger Britain and a Prosperous Future) - 경제부흥, 사회통합, 국력증진, 세대통합, 디지털시대의 번영과 보안 등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해 (For the Many, Not the Few) - 경제정책 및 브렉시트 협상 등 16개지 분야

다. 작성주체

1) 보수당[54]

- 당수 주도하에 하향식으로 결정되는데, 공식적으로 '보수정책포럼(Conser- vative Policy Forum: CPF)' 기구에서 만들어짐.
- 일반적으로 영국의 매니페스토가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구체적인 수치와 정책 집행 일정을 포함 하는 정책공약 문서의 형태로 나아가고 있지만, 최근 보수

52) https://www.conservatives.com/manifesto (검색일 2019.5.15.)

53) https://labour.org.uk/manifesto/ (검색일 2019.5.16.)

54) 보수당 당헌 8장 64조에서 67조에서 CPF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https://www.politicalpartydb.org/wp-content/uploads/2017/02/UK_CONSERVATIVE_PARTY_CONSTITUTION_2009.pdf (검색일 2019.9.30.)

당의 매니페스토는 간결해지고 있는 추세임.

- 보수당의 매니페스토는 “보수당정책기구(Conservative Policy Forum: CPF)”를 통해 만들어지는데 CPF는 복잡하고 어려운 정책공약보다는 선거권자들이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한 매니페스토를 택하고 있는 추세임.
- 보수당의 매니페스토 작성 및 채택과정은 노동당과 비교하여 정치리더의 영향력이 큰 편임. 반면 풀뿌리차원의 Bottom-up 방식의 정책제시 과정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아울러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책형성 및 평가과정에 있어서 온라인 매체의 영향력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는 점도 최근 매니페스토 과정의 특징 중 하나로 지적됨.

2) 노동당[55]

- 1997년 당대회에서 처음 만들어진 ‘권력파트너십(Partnership in Power: PiP)’프로그램이라 불리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노동당의 매니페스토 작성과정은 당헌 제5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음.
- 이 조항에 따라 내각, 전국집행위원회(National Executive Committee: NEC), 노동조합, 지역대의원, 의회의원회(Parliamentary Committee) 등 노동당 내의 다양한 정치기구들과 기능적 집단들에 의한 다단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짐.
- PiP에 참여하는 주요 4기구는 당수와 간부로 구성되는 합동정책위원회(Joint Policy Committee: JPC), 전국정책포럼(National Policy Forum: NPF), 정책위원회(Policy Commissions), 연례 당대회(Annual Conference)가 매니페스토 작성에 핵심역할을 수행
- 내각의 수상이 의장으로 있는 20여 명으로 구성된 JPC는 정부각료(8명), 노동조합대표, 지역당 대표자, 유력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8명의 NEC와 그 외 당 관계자인 NPF의 3명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정치의제를 설정
- NPF 위원들은 1년에 2~3주간 한 곳에 모여서 JPC에서 제안한 안건을 토의하고 최종안을 정리해 연례 당대회에 보고하고, 이 당대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함.

※ NPF는 1980년대 중반 이래 지방자치단체 의원들부터 유럽의회 의원들까지 다양한 노동당 이해관계자집단(stakeholder group)의 대표들이 포함되어 탄생하게 된 것으로 각 지방과 직능영역에서

55) 노동당 당헌집 2019. http://labour.org.uk/wp-content/uploads/2019/04/Rule-Book-2019.pdf (검색일 2019.6.17.)

선출된 196명의 당대표로 구성

- ‘영국 노동당 시민참여형 플랫폼(The Labour Party Manifesto 2017 For The Many, Not The Few)’은 2012년 이후 노동당 개혁을 거쳐 이룩한 대표적인 성과
  - 2012년 Your Britain으로 시작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토론하는 노동당 정책 플랫폼은 제레미 코빈 당수 체제에서 Labour Policy Forum으로 발전되어 성숙한 정책 토론 제도를 구축
  - 당원, 비당원 구분 없이 국민 누구든 참여 가능한 플랫폼으로, 국민 제안에 직접 답하고 책임 있게 현실화 시킨다는 점에서 유의미
- 2019년 현재 LPF(Labour Policy Forum)은 8개 정책위원회로 나누어 각 주제에 관한 매니페스토를 작성하며, 6월 30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56]

라. 매니페스토 발표 방법[57]

- 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1년 전부터 작성된 매니페스토는 선거일 4,5주일 전에 발표
- 각 당에서 매니페스토 발표 전당대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표되는데 텔레비전으로 전국에 중계되며, 신문과 TV 같은 전통적인 언론매체들이 특집으로 다룸.
- 또한, 뉴스와 싱크탱크의 연구원 등이 국민을 대상으로 상세한 해설을 덧붙이고 언론을 통해 정책 논쟁을 활발히 벌임. 여기에서 매니페스토의 모호함 등을 논쟁의 대상으로 삼음.
- 서점이나 신문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고, 각 당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56) 8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음.
국가교육과 연계한 지역의무, 민주적인 공공소유권, 지속가능한 식량 정책, 국가건강서비스의 재건, 지역 경제 발전, 브렉시트, 효과적인 범죄처벌체계 수립, 공정한 사회안정망 정립 등
https://www.policyforum.labour.org.uk/consultation2019 (검색일 2019.6.17.)

57) 스즈키 나오토. 2008. 일본과 영국의 매니페스토 비교 - 내용과 위치 부여. 김영래 · 정형욱 편. 매니페스토와 정책 선거. 논형.

마. 실행담보방법과 평가방법[58]

- 매니페스토 실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음. 또한 매니페스토에 제시한 정책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재판에 회부된 적도 있었지만 위법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짐.
- 노동당의 경우) 매년 연차 보고서를 통해 매니페스토의 공약 달성도를 자체 평가하고 있고, 집권 4년간의 정치실행 성과나 미달성 이유를 분석해 국민들에게 발표
- 언론이나 경제전문지, 기타 국내 민간 연구소 등이 매니페스토 달성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함.

2. 미 국

가. 도입시기

- 정당이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선거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의 정치적 입장이 무엇인지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제공하며, 이를 정치강령, 정당강령(Political platform, Party platform) 또는 매니페스토라고 부름.[59]
- 의회의원 총선에서 19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하원을 지휘하고 있던 뉴트 깅그리치(Newt Gingrich)가 1985년 레이건 전 대통령의 연두교서 내용을 담은 10개 정책을 '미국과의 계약(Contract with America)'이라는 계약서에 공화당 하원의원 2명과 하원의원 후보 전원의 서명을 받아 국민들에게 제시한 것을 매니페스토의 도입으로 볼 수 있음.[60]

---

58) 카나이 타츠키 저. 이홍천 · 김재용 역. 2006. 매니페스토의 탄생. 다산초당. p.21.

59) http://en.wikipedia.org/wiki/Party_platform (검색일 2019.6.27.)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Republican Party Platform of 1984.'
https://www.presidency.ucsb.edu/documents/republican-party-platform-1984 (검색일 2019.6.27.)

60) https://en.m.wikipedia.org/wiki/Contract_with_America (검색일 2019.6.27.)

나. 도입배경[61]

- 정당은 향후 입안할 정책의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강령을 활용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정당의 이념과 정책 이슈별로 정당의 입장을 정리한 정당강령이 각 정당별로 선거 때 마다 제시되는데, 이러한 정당강령은 구체적인 정책 내용·일정·예산 등을 제시하기 보다는 정당의 정책적 지향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음.
- 개별 후보자들이 선거과정에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정당 플랫폼의 정책적 지향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다. 작성주체

- 정당 지도자들의 합의에 의해 작성하며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공식적인 정치강령으로 확정됨.

라. 실행담보방법과 평가방법

- 정치강령을 담보할 정치적, 법률적 장치는 사실상 없음. 다만,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책임정치를 표방하는 미국에서는 정치적 책임이 법률적 책임이나 정치적 구속 장치 보다 훨씬 구속력이 강할 수 있음.
- 각 정당의 연차보고서 발행으로 중간 점검을 받을 수 있고, 향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당초 제기된 안건의 통과 여부나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그 이유를 정리하고 있음.
- 시민사회나 언론기관 등에서 자발적으로 대통령 및 정당의 정책을 평가하기도 함.
  - Politifact은 트럼프 및 공화당의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정당 및 후보자가 언론을 통해 표방된 공약들의 실천여부를 'GOP Pledge-O-Meter', 'Trump-O-meter' 등과 같은 지수로 평가함.[62]

---

61) Constitutional Rights Foundation. 'Political Parties Platforms' https://www.crf-usa.org/election-central/political-parties-platforms.html (검색일 2019.6.27.)
wiseGEEK. 'What is a Political Platform?' https://www.wisegeek.com/what-is-a-political-platform.htm (검색일 2019.6.27.)

62) Politifact.

3. 프랑스

가. 도입 시기 및 의미

- 대통령 선거에서 프랑수아 미테랑이 처음으로 매니페스토를 도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그는 1981년 대선을 앞두고 '프랑스를 위한 110가지 제안(110 propositions pour la France)'이라는 제목으로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고, 대통령 집권 이후 몇 년간 프랑스의 기본 국정 방향의 원칙이 됨.
- '프랑스를 위한 110가지 제안'은 사회당과 공산당의 '공동강령(Programm e commun)'에 많은 내용을 근거하고 있음. 두 정당은 1972년 좌파 연합 전선을 맺고, 1973년 3월 총선, 1974년 대통령 선거, 1978년 총선에서 선거연합을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좌파의 결집된 힘으로 1981년 미테랑은 사회당 후보로서 처음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음.
- 1981년 이후, 공화국연합(RPR) / 프랑스민주연합(UDF)[63] 및 사회당(PS)에서는 대통령선거와 총선에 맞춰 매니페스토[64]를 발표했으며, 최근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2007년 대선 당시 사르코지 UMP(대중운동연합) 후보는 '나의 계획: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Mon project: Ensemble tout devient possible)'라는 제목 하에 총 15가지 정책을 15쪽 분량에 걸쳐 제시했으며, 세골렌 루아얄 PS(사회당) 후보는 '대선 협약(pacte presidentielle)'이란 명칭 아래 100가지 제안을 제시했는데, 이 공약집은 9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5쪽 분량임.
- 특히, 2012년 대선에서 올랑드 PS후보는 일찌감치 '프랑스를 위한 60개 약속(60 engagements pour la France)'이라는 42쪽 분량의 공약집을 발표했고, 이후 75% 소득세 구간 신설 등의 공약을 발표하여 대선 레이스를 줄곧 주도했음. 사르코지 후보는 이에 뒤질세라 금융거래세, 사회부가가치세 도입 등의 경제 공약, 실업

---

https://www.politifact.com/truth-o-meter/ (검색일 2019.9.20.)

63) 대중운동연합(UMP)은 2002년 RPR, UDF 및 자유민주(DL) 등 중도우파 3개 정당이 통합하여 만들어진 정당임.

64) 프랑스에서 '매니페스토'는 일반적으로 'programme electoral / programme presidentielle(선거계획 / 대통령 선거계획)'로 표현하나, 언론과 학계를 중심으로 영어 'platform'을 활용하여 'plat-forme electorale / plate-forme presidentielle'를 사용하기도 함.

및 이민 문제에 대한 국민 투표 제안, 하원 비례대표제 도입, 고용 보조금 개혁 등의 공약을 잇달아 제시하였고, 4월에는 '강한 프랑스를 위한 제안(Propositions pour la France forte)'이라는 제목으로 8장 분량의 공약집을 발표함.

- 2017년 대선에서 엠마누엘 마크롱 앙마르슈(En Marche) 후보는 1차 투표에서는 '모두에게 기회가 될 프랑스(La France doit être une chance pour tous)'와 2차 투표에서는 '우리 함께, 프랑스!(Ensemble, la France!)'를 선거공약 슬로건으로 내세웠으며, 2차 결선 투표에서 마크롱의 경쟁 후보였던 마린 르펜(Marine Le Pen) 국민전선(Front Nationale) 후보는 1차 투표에서는 '프랑스의 부흥을 위하여(Remettre la France en ordre)'와 2차 투표에서는 '프랑스를 선택하라(Choisir la France)'를 선거공약 슬로건으로 내세웠음.

<표 6-8> 프랑스 대선 및 총선 매니페스토[65]

정당명	연도	선거공약(메니페스토)
사회당 (PS)	1981	미테랑의 '110가지 제안' (Les "110 propositions" de Francois Mitterand)
	1986	1988년 대선을 위한 사회당 선거공약(Plate-forme du parti socialiste pour les elections legislatives du 16 mars 1988)
	1988	프랑스를 위한 제안(Proposition pour la France)
	1993	프랑스를 위한 계약(Le contrat pour la France)
	1997	미래를 바꾸자. 프랑스를 위한 우리들의 약속 (Changeons d'avenir. Nos engagements pour la France)
	2002	2002년 총선을 위한 계획 (Programme pour les elections legislatives de 2002)
	2007	같이 변화를 이룩하자. 프랑스를 위한 사회당의 계획 (Reussir ensemble le changement. Le projet socialiste pour la France) 대선 협약(Pacte presidentielle)
	2012	2012년 사회당 계획(Le Projet socialiste pour 2012) 프랑수아 올랑드의 프랑스를 위한 나의 '60개의 약속' ("Mes 60 engagements pour la France" de Francois Hollande)
공화국 연합 및 프랑스 민주연합 (RPR-UDF)	1981	하나의 협약과 10개의 원칙(Un Pacte et dix principles)
	1986	모두를 다스리기 위한 정책(Plate-forme pour gouverner ensemble)
	1988	1988년 3월 20일 뱅센느에서의 자크 시라크의 연설 (Discours de Jacques Chirac. Vincennes, 20 mars 1988)
	1993	프랑스를 위한 (우파)연합의 계획(Le projet de l'Union pour la France)

정당명	연도	선거공약(메니페스토)
	1997	RPR-UDF연합 공약 '프랑스를 위한 새로운 도약' ("Un nouvel elan pour la France" Plate-forme d'union RPR-UDF)
	2002	2002년 총선을 위한 UMP의 계획 (Programme de l'UMP pour les elections legislatives de 2002)
	2007	2007-2012년 하원 임기를 위한 계약 (Contrat de legislature 2007-2012 나의 계획,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 니콜라 사르코지 ("Mon projet: Ensemble tout devient possible" de Nicoals Sarkozy)
	2012	2012년 총선 계획(Le projet 2012 - UMP) 강한 프랑스를 위한 니콜라 사르코지의 제안들 (Les propositions de Nicolas Sarkozy pour une France forte)
앙마르슈[66] (EM)	2017	1차투표: 모두에게 기회가 될 프랑스(La France doit être une chance pour tous) 2차투표: 우리 함께, 프랑스!(Ensemble, la France!) 2017년 대선과 총선을 위한 공약 '새로운 프랑스건설을 위해 탐험가 정신을 되찾자'의 96대 공약 2017년 총선: 과반수를 위한 프로젝트(Construire une majorité de projet)
국민전선 (FN)[67]	2017	1차투표: 프랑스의 부흥을 위하여(Remettre la France en ordre) 2차투표: 프랑스를 선택하라(Choisir la France)

나. 평가방법

- 공약을 평가하는 공공기관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약평가에 대한 제도적·법적 절차·관련판례도 없음.
- 공약 평가는 언론사 및 연구소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대선 공약을 계량화하여 발표하는 연구소로는 몽테뉴 연구소(Institut Montaigne),

65) Sylvain Brouard et al. "La competition partisane francais au prisme des priorites electorales," Revue francais de science politique, Paris, Presse de Sciences Po, 2012/4(Vol. 62), p.275. 2007년 대선 및 2012년, 2017년 대선/총선 매니페스토는 추가 기입함.

66) 케피탈. 2016.11.23. '엠마뉴엘 마크롱의 공약집 혁명의 7가지 요점'(LES 7 POINTS-CLÉS DE "RÉVOLUTION." LE LIVRE-PROGRAMME D'EMMANUEL MACRON)
https://www.capital.fr/economie-politique/les-7-points-cles-de-revolution-le-livre-programme-d-emmanuel-macron-1187760 (검색일 2019.9.30.)
https://storage.googleapis.com/en-marche-fr/COMMUNICATION/Programme-Emmanuel-Macron.pdf (검색일 2019.9.30.)
Construire une majorité de projet.
https://en-marche.fr/articles/actualites/construire-majorite-de-projet (검색일 2019.9.30.)

67) https://rassemblementnational.fr/pdf/144-engagements.pdf (검색일 2019.9.30.)

기업연구소(Institut de l'entreprise), 행정 및 공공 정책 연구를 위한 프랑스 연구소(Institut Francais pour la Recherche sur les Administrations et les Politiques Publiques: IFRAP) 및 공공정책 연구소(Institut des Politiques publiques: IPP) 등이 있음.[68]

4. 독 일

가. 도입시기[69]

- 독일에서는 선거마다 각 정당별로 선거강령(Wahlmanifest) 혹은 선거프로그램(Wahlprogramm)을 발표
- 2005년 연방의회 선거부터 사민당(SPD)과 일자리 및 사회정의실현을 위한 선거권자연대(WASG)에서 기존의 선거프로그램이라는 명칭 대신 선거강령, 매니페스토(Wahlmanifest)란 명칭을 사용하여 선거프로그램의 특별한 의미를 강조하기 시작

나. 도입배경

- 2005년 5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의회선거에서 사민당이 참패한 후 전 원내대표였던 오스카 라폰테인(Oskar Lafontaine)이 사민당의 정책프로그램인 아젠다2010(Hartz IV)에 반발하여 탈당하고, 기존의 민사당(PDS)와 일자리 및 사회정의구현을 위한 선거권자연대(WASG)를 통합하여 좌파연합을 구성함.
- 기존의 사민당정부는 계속되는 실업률의 증가와 야당의 반대가 격화되는 시점에서 자신들의 사회주의적 정책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의회를 해산하고 새

68) Le nouvel observateur. 2012.1.4.: des programmes sous surveillance. https://www.nouvelobs.com/election-presidentielle-2012/l-addition-s-il-vous-plait/20111130.OBS5707/2012-des-programmes-sous-surveillance.html (검색일 2019.9.30.)

69) https://de.wikipedia.org/wiki/Wahlprogramm (검색일 2019.9.29.)

로운 총선을 통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

- 이 가운데 사민당은 2005년 7월, 선거강령(Wahlmanifest)이라는 특별한 개념을 사용하여 기존의 선거프로그램과의 차별을 꾀하는 새로운 선거프로그램을 발표

다. 주요내용

- 선거프로그램에는 해당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을 한다는 전제하에, 집권기에 달성하려는 정책적 목표와 수행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음.
- 선거프로그램은 선거 전에 확정되어야 하며 선거전의 주된 전략으로 이용
- 각 정당의 정관에 선거프로그램의 내용, 작성 방법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
  - 기민당(CDU): 연방전문위원회(Bundesfachausschüsse: BFA)에서 정당정책의 작성 및 개발에 관한 임무를 담당함[연방전문위원회 규정(BFAO) 제1조제1항][70]
  - 녹색당(Die Grünen)
    - ·연방단위 정당정책(공약)은 연방전당대회(Bundesversammlung)에서 결정이 이루어짐[녹색당 정관(Satzung) 제12조제3항제3호][71]
    - ·정당의 정관에서 광역단위 정당조직(Kreisverbände)과 주 단위 정당조직(Landesverbände)은 자치적으로 공약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녹색당 정관 제10조제2항).
  - 자민당(FDP): 정당 산하 위원회로서 연방전문위원회(Bundesausschüsse)와 정책위원회(Grundsatzkommission)을 두고 정당 정책(공약)의 개발을 담당하도록 함.[72]

라. 작성주체

- 연방의회선거, 주 의회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마다 선거강령이 채택되기 위하여 당원대표(대의원)들이 모여(예, 전국 대의원회의) 상대 과반수가 동의하여 선거

---

70) https://www.cdu.de/system/tdf/media/dokumente/160530_bfao.pdf?file=1&type=field_collection_item&id=5603 (검색일 2019.9.29.)

71) https://www.bundeswahlleiter.de/dam/jcr/d2c68367-3bec-452a-98f4-114d5e51e79b/gruene.pdf (검색일 2019.9.29.)

72) https://www.bundeswahlleiter.de/dam/jcr/80de99a3-1186-494b-8b2f-277f25f146d5/fdp.pdf (검색일 2019.9.29.)

프로그램을 확정지음.

- 당원의 동의 절차 및 선거프로그램의 결정절차는 각 정당의 정관에 따르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각 단위 당원들의 동의요건은 주마다 혹은 정당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해당 선거구의 후보대표나 지역 당의 이름으로 선거프로그램 작성

마. 실행담보방법

- 선거를 통하여 단일 정당이 집권하는 경우에는 선거프로그램을 구체화하여 집권계획을 발표하며, 연정이 구성될 경우 집권하는 정당 간에는 정책협상을 통하여 향후 집권기의 정책에 관한 계약(Koalitionsvertrag)을 체결하게 됨.

  ※ 즉, 다수당의 선거프로그램은 최종 선거에서 국민(혹은 지역 주민) 다수의 지지를 얻은 것이므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어, 다수당은 이에 따라 정부를 구성하고, 향후의 집권프로그램을 발표하게 됨. 집권당은 이 프로그램에 따라 정책을 실행하며, 그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야당과 이익집단에 대하여 방어할 수 있음(연방헌법재판소 결정 1977.3.2 2 BvE 1/76).

- 선거프로그램에 관한 사후 법적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음. 다만 연방헌법재판소가 2005년의 연방의회해산과 관련된 헌법소원사건에서 당시 현 정부의 집권능력을 판단하면서, 2005년 7월 4일에 체결된 사민당의 선거매니페스토를 언급

바. 평가방법

- 발-오-마트(Wahl-O-Mat) 프로그램(정책공약 비교프로그램)[73]
  - 독일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에서 개발한 인터넷 기반 프로그램으로 2002년 하원의원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어 선거기간 동안 선거권자가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음.
  - 2002년 하원선거에서 사용된 발-오-마트Ⅰ은 정치·사회·환경 등 국민들의 주요관심사항에 대해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각 정당의 선거공약과 정책에 대해 명확하고 중립적인 자료를 제시해 선거권자의 정당선택과 선거관심을 높이고 각 정당의 주요 정책사항을 잘 이해하도록 만들어졌음.[74]

---

73) http://www.bpb.de/politik/wahlen/wahl-o-mat/45378/wahlen-waehler-wahl-o-mat (검색일 2019.9.29.)

- 발-오-마트가 독일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독일 정치교육의 대표적 중립기관인 독일연방정치교육원이 주도해 설문 문항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없앴으며, 각 설문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은 정당 대표의 명의로 답변해 공신력을 높임.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 선거권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고 설문조사과정이 공개되어 결과의 투명성 및 정확성이 보장
  ·선거기간 중 독일의 대표적 시사주간지(Spiegel, Stern), 버스투어, 주요방송(SAT1, RTL, aktuell, ZDF Reporter, arte)에서 홍보했고, 학교와 성인민주시민교육현장에서 학습내용 및 교수법을 활용해 파급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었음.
- 2005년 선거에서도 주요 이슈 30문항으로 구성된 발-오-마트Ⅱ를 선보였고, 기존 프로그램과 달리 선거권자가 2배의 가중치를 줄 수 있게 됨.[75]

- 2005년에 9월에 실시된 연방선거에 앞서 8월 22일 공영 제2방송(ZDF)의 의뢰하에 베를린 독일경제연구소(Deutsche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DIW Berlin)와 쾰른 독일 경제연구재단(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IW Koeln)이 공동으로 “2005년 연방의회선거를 위한 선거프로그램 판단(Beurteilung der Wahlprogramme zur Bundestagswahl 2005)”이라는 제목의 평가자료를 발표[76]
  -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5개 주요정당의 선거프로그램을 대상으로, 4개의 분야(노동시장, 조세, 연금보험, 의료보험)에 대하여 각 정당의 강점과 약점에 대하여 평가한 뒤 결론을 맺고 각각 1(수)부터 6(낙제)까지 6등급으로 성적을 매겼음. 또한 선거프로그램이 다루고 있는 현안 문제점의 분석, 미래의 개선방안 및 보완점, 현실적으로 시급한 대책마련에 관한 항목별 분석자료를 제공
  - 좌파 연합의 경우 2개 항목에서 낙제(6), 2개 항목에서 가(5)의 평가를 받아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의 구체적 실현가능성이나 재정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고 평가

74) 발-오-마트의 시행 연혁
http://www.bpb.de/politik/wahlen/wahl-o-mat/294712/die-geschichte-des-wahl-o-mat 참조. (검색일 2019.9.29.)
75) https://www.lehrerfreund.de/schule/1s/wahl-o-mat-2005/2397 (검색일 2019.8.8.)
76) https://www.diw.de/sixcms/detail.php?id=43526 (검색일 2019.9.29.)

- 평가결과는 공개되어 인터넷에서도 열람이 가능

- 2009년 선거 이후 역시 공영방송인 ZDF는 칼-루돌프 코르테(Karl-Rudolf Korte)를 중심으로 뒤스부르크-에센 대학(uni-duisburg-essen) 산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연구소(nrwschool)가 각 정당의 정책, 선거 공약 등을 대상으로 분석한 "2009년 연방의회 선거 이전 정당 정책 및 정당 공약"에 기초한 기본적 정책 분석(Inhaltsanalyse, Parteiprogrammatik und Parteirhetorik vor der Bundestagswahl 2009 Grundsatzprogramme)이라는 자료를 발표[77]
- 2013년 연방하원 선거에 앞서 뒤스부르크-에센 대학 산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연구소(nrwschool)는 "2013년 연방하원선거를 위한 뒤스부르크 선거지표(Der Duisburger-Wahl-Index (DWI) zur Bundestagswahl 2013)"를 통해 각 정당의 선거공약과 정책을 비교한 자료를 발간함.[78]
- 2017년 연방하원 선거를 앞두고는 호헨하임 대학교(Hohenheim Universität) 산하 커뮤니케이션 연구소(Communication Lab)에서 주요 정당(CDU/ CSU, SPD, FDP, Die Grünen, Die Linke, AFD)의 선거 공약과 정책을 비교한 자료를 발간함.[79]

5. 일 본

가. 도입시기

- 2003년도 통일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
- 2003년 10월 3일 중의원에서 매니페스토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11월 총선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됨(공직선거법 제142조의2 팸플릿 또는 서적의 배포 신설).

※ 2003년 6월 11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칸 대표가 당수토론에서 매니페스토를 주요 선거 쟁점

77) http://regierungsforschung.de/wp-content/uploads/2014/06/130910-regierungsforschung.de__bundestagswahl_2009_korte.pdf (검색일 2019.9.29.)

78) https://regierungsforschung.de/wp-content/uploads/2014/05/110913regierungsforschung.de_dwi_btw2013.pdf (검색일 2019.9.29.)

79) https://idw-online.de/de/attachmentdata58344.pdf (검색일 2019.9.29.)

으로 제기했고, 당시 자민당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으나 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고이즈미 수상이 이를 수용하면서 도입하게 됨.

나. 도입배경

- 1994년 소선거구 비례대표병립제 도입 이후로 계속된 정치개혁의 흐름 속에서 정책경쟁을 통한 정당정치의 활성화 도모
- 1990년대 이후 일본경제의 침체에 따른 국가 예산규모의 축소로 한정된 재원에서 정당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거권자에게 제시하고 실행하는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요구됨.
- 지방으로부터 일본정치를 변화시키려는 변혁의 움직임이 크게 작용함.

다. 도입과정[80)]

- 1996년 10월 21세기임조(일본의 시민사회단체)가 총선을 앞두고 '총선거를 향한 긴급 제언'을 발표해 매니페스토 선거의 도입을 주장했고,
- 1997년에는 일본 중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매니페스토 도입에 관한 논의가 제기됨.
- 2003년 지방선거에서 혁신파 지사 14명이 매니페스토 선언에 동참해 이중 7명이 당선되고, 7명이 낙선함.
- 이후 '지방 매니페스토 추진 단체장 연맹', '지방 매니페스토 추진 지방의원 연맹'을 결성해 지방 정치인 스스로 지방 매니페스토를 확산하는 운동에 동참했으며, 시민단체들도 '지방 매니페스토 추진 네트워크'를 결성해 해당 지역에서 매니페스토 활성화를 통한 정책선거를 유도함.

라. 주요내용

- 총선의 경우 후보자 개인홍보물 배포에 주력했으나, 2003년 선거에서는 매니페스토 중심의 선거를 통해 정당이 제작한 매니페스토를 배포하는데 역점을 둠.

---

80) 고선규. 2008. 일본 매니페스토 선거의 쟁점과 도입효과 김영래 · 정형욱 편.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 p.168-177.

자민당은 매니페스토 상세판 25만 부와 요약판 410만 부를, 민주당은 상세판 320만 부, 요약판 1,500만 부를 제작 배포함.

- 2004년 7월 참의원 선거, 2005년 9월 중의원선거에서도 주요 정치 문제를 매니페스토를 통해 제기함.
- 2007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는 신문 전단지형 매니페스토를 각 가정에 배달하여 자민당과 민주당의 상호반박과 대안제시가 반복됨.

1) 자민당 매니페스토 운영현황[81]

- 자민당의 공약은 각 정책분야의 부회 등이 원안을 작성하고, 공약 작성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정리함.
  - 당이 정책으로서 채택하는 의안은 자민당 소속의 의회의원 및 총재가 특별히 위촉한 학식경험자 등으로 구성되는 정무조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가능한 한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 소속의원 또는 선거구지부장, 현재는 의석을 상실한 상태인 사람 혹은 앞으로 의석을 얻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람, 47 도도부현연합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함.
  -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해 대중의견을 청취함. 정무조사회전체회의, 정권정책위원회, 총무회 등에서 나온 의견도 대중의견의 일환으로 간주함.
- 2019년 6월 17일 발표된 '종합정책집2019 J-파일'은 112페이지에 걸쳐 주요 공약 내용을 소개함.
  - 주요 항목으로 경제재생, 사회보장·노동, 여성활약, 교육·과학기술, 올림픽·패럴림픽, 지방활성화, 국토강인화·사회자본정비, 부흥, 환경, 농림수산, 지방자치, 정보통신, 외교·안전보장, 생활·안심·안전, 사법, 행정개혁, 선거제도, 헌법 등 총 15항목 552개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정책을 소개하고 있음.
- 실행시기 및, 담보절차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정책사안별로 매우 다양함. 2020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는 단기계획부터 시작해 2025년을 정책목표로 하는 등의 중장기 정책목표도 있으나 대부분의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시기 및 재원에 대한 언급은 없음.

---

81) 2010년 5월 14일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기자회견 내용
https://www.jimin.jp/news/press/chairman_prc/128566.html (검색일 2019.10.15.)

- 2019년 참의원 선거에서의 주요공약: 소비세 증세의 시행(10월에 10%로 인상), 헌법개정, 3,5세까지의 유아교육 및 보육무료화, 저소득 세대의 고등교육 무료화였으며, 특히 강력한 외교, 방위를 통해 국익을 지킨다는 점을 강조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 확보를 중시함.
- 자민당의 정책 및 매니페스토를 알기 쉽게 정리한 팸플릿 등의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함.

2) 입헌민주당 매니페스토 운영현황[82]

- 매니페스토 기획위원회가 작성한 원안을 기초로 의회의원으로 부터 의견을 듣고, 반영해 기획위원회에서는 내용을 정리함.
  - 각 도도부현연합회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의원 및 공인, 추천예정후보자 등으로부터도 의견을 듣고 그 위에 의원 간 토의를 거쳐 매니페스토를 완성함.
  - 이 과정에서 전(全) 의원정책간담회를 통해 매니페스토 내용을 논의함.
- 2017년 12월 28일에 발표된 입헌민주당의 기본정책
  - 주요항목은 국가의 형태, 외교·안전보장, 공생사회, 교육·어린이·양육, 생활의 안심, 경제·산업·농림수산업, 에너지·환경, 재해·재해부흥 등으로 구성됨.
  - 구체적인 실행시기 및 재원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음.
- 2019년 참의원 선거 주요공약
  - 소비세 증세를 하지 않고 조세구조상의 누진성 강화, 헌법개정의 신중한 자세, 초·중학교의 급식 무료화, 국공립대학교의 반액수업료 실시, 선택적 부부별성 도입, 동성혼을 가능하게 하는 법개정 실현 등이었으며 특히 경제성장 중시의 정책을 강조했음.

---

82) 민진당 홈페이지 뉴스 검색결과. 일본의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자민당으로의 정권 재교체 이후 '유신의 당(維新の党)'과의 연계를 통해 민진당을 재결성. 이후 '희망의 당(希望の党)'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의 두 갈래로 갈라짐.
https://www.minshin.or.jp/article/109163/全国会議員を対象に参院選マニフェストの内容を議論 (검색일 2019.10.15.)
https://www.minshin.or.jp/article/108987/全議員政策懇談会を開き、参院選マニフェストについて討議 (검색일 2019.10.15.)

<표 6-9> 일본 매니페스토 대상 선거와 배포방법

관련조문	공직선거법 제142조의2(팸플릿 또는 서적의 배포)
대상선거	중의원 총선거, 참의원 통상선거
배포주체	중의원 총선거: 후보자 입후보 정당 또는 중의원 후보자명부 신고정당
	참의원 통상선거: 참의원 후보자명부 신고 정당
배포기간	선거운동기간(선거일 공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12일)
배포 가능한 내용	정당본부에서 직접 발행하는 팸플릿 또는 서적의 형태로 국정에 관한 중요정책 및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책 등을 기재한 것으로 총무대신에게 신고한 각각 한 종류(팸플릿, 서적 각각 1종류)*, 규격은 제한 없으므로 크기나 페이지 수 제한이 없음(살포제외).
기재상 유의점	• 후보자의 이름 또는 사진 등 이름이 유출 가능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금지 • 해당 팸플릿 또는 서적의 표지에는 정당의 명칭, 배포책임자, 인쇄자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함. 그리고 정당의 매니페스토를 표시하는 기호를 기재해야 함.
배포방법	• 입후보 정당 또는 중의원 후보자명부 신고 정당, 참의원 후보자명부 신고 정당 등의 선거 사무소 내, 정당의 연설회 또는 정당 등 연설회의 회의장 내 또는 가두연설 장소에서 배포 • 해당 후보자 신고 정당 또는 중의원 후보자명부 신고 정당 및 참의원 후보자명부 신고 정당 등에 소속한 자(참의원 명부 등재자를 포함)의 해당 중의원 의원의 총선거, 참의원 의원의 통상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내, 개인 연설회의 회의장 내, 가두연설의 장소에서 배포

마. 실행담보방법과 평가

- 2005년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8월 25일에 21세기임조(새로운 일본을 만드는 국민회의)가 주최한 '정권공약검증긴급대회'에서 기존 2003년 선거 때 제시된 매니페스토에 대한 평가와 함께 2005년 선거를 앞두고 제시된 매니페스토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짐.

  ※ 이 검증대회에 경제동우회, 전국지사연맹, 노동단체연합, 일본청년회의소, 언론 NPO, 구상 일본 등 일본의 주요 민간 사회단체와 싱크탱크 등이 참여

- 또한 각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에서도 주체적으로 매니페스토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해 다음 선거에 자료로 제시함.
  - (매니페스토 평가기구) 전국지사회 정권공약 평가연구회,[83] 언론NPO,[84] 와세다대학매니페스토연구소,[85] 일본청년회의소(JC), 매니페스토스위치,[86] NHK

83) http://www.nga.gr.jp/ (검색일 2019.8.23.)
84) http://www.genron-npo.net/politics/archives/7307.html (검색일 2019.9.20.)
85) http://www.waseda-manifesto.jp (검색일 2019.9.20.)
86) http://www.manifestojapan.com/sangiinsenkyo2019 (검색일 2019.9.20.)

선거WEB[87] 등

- 특히, 일본청년회의소(JC)는 매니페스토형 토론회를 개최해 매니페스토 검증 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음.[88]

※ 매니페스토의 평가를 행하는 단체는 다수 존재하지만 각 단체의 지속성이 높다고는 할 수 없음. 2005년에 적극적인 활동을 했던 단체 중 현재 홈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림 6-4> 일본 언론NPO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9년 참의원선거 주요 정당 공약평가[89]

	自民党	公明党	立憲民主党	国民民主党	日本維新の会	共産党	社民党
経済	65	55	8	78	13	14	13
財政	8	10	1	13	4	2	2
社会保障	36	34	5	55	15	17	13
外交・安保	38	24	10	40	7	19	10
環境・エネルギー	17	21	7	24	4	8	7
農業	21	8	1	23	0	4	3
憲法改正	3	3	1	14	7	1	1
その他（復興、地方、教育）	94	60	7	86	9	16	14
総計	282	215	40	333	59	81	63

87) https://www.nhk.or.jp/senkyo/database/kouyaku/2019/seitou/ (검색일 2019.9.20.)

88) http://www.jaycee.or.jp/2019/kinki/osaka/wp-content/uploads/2019/03/manual_koukaitouronnkai_lom.pdf (검색일 2019.9.20.)

89) http://www.genron-npo.net/politics/archives/7307.html (검색일 2019.10.15.)

<그림 6-5> 2019년 참의원선거 정당공약 비교표[90]

政党名	年金対策	消費税増税	憲法改正	教育無償化・負担軽減	選択的夫婦別姓	同性婚	
自民党 キャッチコピー 日本の明日を切り拓く。 56.1歳 / 14.6% 候補者の平均年齢と女性の割合	10月から収入の少ない年金生活者に年間最大6万円の福祉給付金を支給。介護保険料の負担を3分の2に減額。	○ 10月に10%に増税	○ 自衛隊の明記、緊急事態対応、合区解消・地方公共団体、教育充実の4項目を提示	○ 10月から3～5歳までの幼児教育・保育など無償化。来年4月から低所得世帯の高等教育無償化	－ 旧姓の幅広い使用を認める取り組みを進める。まずは、住民基本台帳とそれに連動するマイナンバーカードにおいて旧姓併記ができるよう準備を進める	－ 性的指向・性自認（LGBT）に関する広く正しい理解の増進を目的とした議員立法の速やかな制定を実現する	与党
一番に掲げた政策	力強い外交・防衛で、国益を守る：国際社会の結束やルールづくりを主導する						
公明党 キャッチコピー 小さな声を、聴く力。 46.6歳 / 8.3% 候補者の平均年齢と女性の割合	低年金者への福祉的な措置として、最大月5000円（年6万円）を支給する「年金生活支給付金」の円滑な実施に取り組む。同給付金の実施状況等を踏まえ、さらなる拡充を検討する。	○ 10月に10%に増税軽減税率、プレミアム商品券など実施	△ 改正を否定するものではない 現行憲法の基本を維持した上で、必要な規定を付け加える（加憲）	○ 10月から3～5歳までの幼児教育・保育など無償化。高校生等、大学等の教育負担の軽減。	○ 選択的夫婦別姓の導入実現に向けて議論を進める	－ 多様性を認める社会実現のために、性的指向と性自認に関する理解増進法（仮称）の制定をめざす	
一番に掲げた政策	身を切る改革の先頭に：国会議員歳費を10%削減						
立憲民主党 キャッチコピー #令和デモクラシー まっとうな政治。 49.1歳 / 45.2% 候補者の平均年齢と女性の割合	年金の最低保障機能を強化	× 消費税増税凍結 税の累進性の強化	△ 立憲主義に基づき国民の権利拡大に寄与する観点から憲法議論を進める	○ 公立小中学校の給食無償化。国公立大授業料を半額程度に引き下げ。	○ 選択的夫婦別姓を導入する	○ 同性婚を可能とする法改正を実現する	野党
一番に掲げた政策	ボトムアップ経済ビジョン　くらしからはじまる経済成長へ						
国民民主党 こくみん キャッチコピー 家計第一、 つくろう新しい答え。 52.3歳 / 35.7% 候補者の平均年齢と女性の割合	低所得年金生活者に最低でも月5000円を給付 厚生年金の適用拡大	× 消費税増税反対 軽減税率も疑問視	△ 現行憲法の基本理念と立憲主義を維持しつつ、未来志向の憲法を議論する	○ 児童手当ての対象を18歳に引き上げ、支給額を一律で月1万5000円に。給食費を無償化	○ 選択的夫婦別姓を実現する	－ 「LGBT差別解消法」を制定。性的指向・性自認による差別や偏見、ハラスメントをなくすよう支援団体とも協力して取り組む。	
一番に掲げた政策	家計：児童手当増額/地域：乗合タクシーの普及支援						

<그림 6-6> 2018년 중의원선거 매니페스토 비교[91]

90)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711-00010000-senkyocom-pol (검색일 2019.10.15.)

91) https://poteto.media/political/manifest-comparison/ (검색일 2019.10.15.)

6. 스페인

- 선거법상 선거공약의 작성 및 평가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각 정당이 자발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 홈페이지, 텔레비전 토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선거공약을 발표하고 있음.[92]
- 국영방송사 홈페이지에 각 정당별 공약 내용을 제공함.[93]

<표 6-10> 스페인 2019년 주요 정당 총선 공약

	사회주의노동자당 (Partido Socialista Obrero Español)[94]	인민당 (Partito Popular)[95]	포데모스 (Podemos)[96]	시우다다노스 (Ciudadanos)[97]
실업	최저임금 인상, 일반계약서 이외 형태의 계약서 금지	장기실업 창업자에 대한 지원, 자영업자 일괄세금제 3년까지, 52세까지 확대	최저임금 인상, 실업급여 확대, 45세 이상 고령 실업자에 대한 고용, 임시계약서 제한	임시계약서 금지, 자영업자의 실업수당을 일반근로자 실업수당과 동일하게 제공, 자영업자 일괄세금제 2년으로 확대
까딸루냐 독립	지자체 자율성 보장을 위한 법률 검토, 자율적 금융 시스템 개발 위한 주정책 검토	불법국민투표 조직죄 재도입, 반란 사면 금지, 경찰 및 민방위 권한 위임, 공무원 임용시 까딸루냐어 의무 금지	선거 인정, 입법 추진, 지자체 대표성 인정	쿠데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구, 쿠데타 정치인 사면 금지, 스페인어 전국 사용
건강보험	국가 보건 시스템 전면 개혁, 구강 관리 통합, 자살예방, 저소득층 약값 면제	전국 적용 가능한 의료 카드, 의사와 보건소 선택의 자유, 구강 보험 프로그램	1차 진료에 대한 투자 증가, 발달 장애 아동 보조, 이민자 보장, 구강관리, 정크푸드 광고 제한	단일한 건강보험 카드, 전국 동일 백신 프로그램, 안락사 허용, 16세 미만 구강관리 무료
주택	공공용지 임대, 에너지 빈곤 퇴치, 저소득층 청년 임대주택	주택세 할인, 가족임대주택 건설	헌법에 의한 기본적 주거건 보호, 임대료 상승 문제에 적극 개입, 청년 우선 임대주택 제공	임대주택 증가, 주택임대료 관련 규제 검토하여 임대시장 활성화, 보호 주택 및 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

92) 2019년 총선 정당별 정책공약 관련 기사
https://www.forbes.com/sites/anagarciavaldivia/2019/04/28/elections-in-spain-the-main-economic-proposals-reflect-the-political-fragmentation/#1dd4dcce1b66 (검색일 2019.6.20.)
https://www.euronews.com/2019/04/12/spanish-general-election-2019-who-are-the-candidates-and-what-are-their-manifestos (검색일 2019.6.20.)

93) RTVE 홈페이지. 2019년 총선 정당별 공약 비교.
http://www.rtve.es/noticias/elecciones/generales/comparador-programas-electorales (검색일 2019.9.15.)

94) 사회주의노동자당 홈페이지. 2019년 총선 공약집.
https://www.psoe.es/media-content/2019/04/PSOE-programa-electoral-elecciones-generales-28-de-abril-de-2019.pdf (검색일 2019.9.15.)

	사회주의노동자당 (Partido Socialista Obrero Español)	인민당 (Partito Popular)	포데모스 (Podemos)	시우다다노스 (Ciudadanos)
성평등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 제정, 남녀 출산 휴가 기간 동일 적용, 매출 폐지, 인신매매 근절	유럽평균에 달할 수 있는 여성 노동시장 편입 계획, 남녀 임금 격차에 대한 대비	남녀 동일임금제 법률화, 공공장소 인종차별 등 차별금지법 제정	성폭력 예방 지원, 여성보호 법률, 남녀 출산휴가 균등화, 성소수자에 대한 진정한 평등, 아동폭력자 근절 위한 법률
이민	비동반아동보호법 유지, 유럽연합 이민정책 준수	고학력, 전문직 이민자 취업허가 확대, 불법체류자 추방 확대, 비동반아동보호법 폐지	비동반아동보호법 준수, 본국송환 금지, 지중해 이민자 사망 근절 위해 해상구조대 강화, 망명법, 인신매매 방지법	비자 점수제 도입, 이민 마피아 근절, 국경감시 주 방위군 보호
교육	교육 및 장학금 투자 확대, 3세 미만 무상 교육 지원, 연구개발비 유럽평균에 달하도록 지원	스쿨존 제거하여 학교 선택 자유 보장, 3세 이하 자녀 교육 €1,000 보조, 과학분야 지원	교육비 투자 증가, 3세 이하 무상 교육, 장학제, 공교육에 페미니즘 과목 신설, 중퇴자 및 왕따 방지 프로그램	여름기간 아동 무상 영어 교육 제공, 공립학교 무상 교재 제공
사회 문제	아동빈곤퇴치 국가 주도, 주거비 포함 사회보장 확대, 동물 복지법	경기부양, 도박 예방, 소아성애 공소시효 연장	2만 명당 사회봉사센터 설립	전국 적용 사회복지 수혜자 카드, 장애인 보조 확대, 동물 복지법
연금	지표를 통한 연금 재평가, 사회보장 적자 5년안 해소	각종 지표 활용하여 연금 재평가, 퇴직연금 수령 연장에 대한 세제 혜택과 계약연금 제도, 기대수명 및 기대작업 수명	지표를 통한 연금 재평가하여 법률로 보호, 공공연금 검토, 최소연금 및 비보금 연금 증가, 사회보장 쿼터제, 상겨금 삭감제 검토, 민간연금제도의 상한과 세제혜택	100% 연금 지급을 위한 노력

95) 인민당 홈페이지. 2019년 총선 공약집.
http://www.pp.es/sites/default/files/documentos/programa-electoral-elecciones-generales-2019.pdf (검색일 2019.9.15.)

96) 포데모스 홈페이지. 2019년 총선 공약집.
https://podemos.info/wp-content/uploads/2019/04/Podemos_programa_generales_28A.pdf (검색일 2019.9.15.)

97) 시우다다노스 홈페이지. 2019년 총선 공약집.
https://www.ciudadanos-cs.org/var/public/sections/page-programa-electoral-elecciones-2019-generales-28a/program-electoral-lectura-facil.pdf?_v=3 (검색일 2019.9.15.)

7. 스웨덴

가. 도입시기[98)]

- 스웨덴에서 매니페스토는 1887년부터 등장하였음.
- 스웨덴 공공기관 SND(Swedish National Data Service)에서 2000년부터 'Vi Vill... 프로젝트'를 통해 정당의 선거프로그램 및 매니페스토를 데이터베이스화했으며, 1897~2018년까지 자료를 인터넷으로 쉽게 열람할 수 있음.

나. 주요내용

<표 6-11> 스웨덴 2018년 주요 정당 매니페스토

정당명	매니페스토	우선순위
사회민주당[99)] (Socialdemokraterna)	더 강한 사회, 더 안전한 스웨덴 (Ett starkare samhälle, Ett tryggare sverige)	포용, 빈부격차의 해소
온건당[100)] (Moderaterna)	우리는 지금 스웨덴에 있습니다 (Nutar vi tagi sverige)	이주와 법과 질서의 새로운 확립
녹색당[101)] (Miljopartiet)	지금. 기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Nu. Klimatet kan inte vänta)	기후변화와 통합
자유당[102)] (Liberalerna)	자유를 지켜라(Försvara Friheten.)	학교 및 교육

다. 작성주체

- 스웨덴의 각 정당별 매니페스토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후 운영위원회 또는 TF팀을 통해 작성됨.

---

98) SND는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 기관과 협력하여 연구 데이터를 수집, 설명 및 배포하는 시스템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Vi Vill...' 프로젝트는 공공재정으로 지원된 연구의 자료나 결과물이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자료 개방을 통해 연구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https://snd.gu.se (검색일 2019.9.15.)

99) https://www.socialdemokraterna.se/aktuellt/2018/socialdemokraternas-valmanifest-2018/ (검색일 2019.9.7.)

100) https://www.mp.se/politik/valmanifest2018 (검색일 2019.9.18.)

101) https://www.mp.se/politik/valmanifest2018 (검색일 2019.9.18.)

102) https://www.liberalerna.se/wp-content/uploads/valmanifest.pdf (검색일 2019.9.7.)

- 민주당이나 온건당의 경우 매니페스토 자료문에 작성자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공개되지만, 그 외 정당의 매니페스토 작성자는 공개되지 않음.

라. 매니페스토 발표 방법[103)]

- 매니페스토는 각 당에서 매니페스토 발표 전당대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표하며, 텔레비전으로 전국에 중계하고 신문과 TV에서도 특집으로 다룸.
- 매니페스토는 일반적으로 A4용지로 평균 25쪽 내외로 작성되는데, 2018년 선거 기준 온건당이 44쪽으로 가장 분량이 많고, 기독교민주당이 8쪽으로 가장 분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6-12> 스웨덴 2018년 정당별 매니페스토 분량 및 사용단어 횟수[104)]

	좌익당	사민당	녹색당	중앙당	자유당	기민당	온건당	스웨덴 민주당	전체
전체 페이지	26	36	32	16	28	8	44	22	212
전체 사용단어	9014	4766	7385	6284	7313	1843	13487	5490	55582

마. 실행담보방법과 평가방법[105)]

- 매니페스토 실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음. 하지만 스웨덴 각 정당은 매니페스토 실행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으며, 서로 견제하기도 함.
  - 실제 2004년 녹색당은 이와 관련해 '시민 계약'을 제안함.
  - 시민 계약이란 각 정당의 선거 매니페스토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회적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각 정당이 발표한 매니페스토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을 경우 해당 계약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106)] 하지만 이러

103) 사회민주당(http://socialdemokraterna.se), 온건당(https//moderaterna.se), 녹색당(https://www.mp.se), 기독교민주당(https://kristdemokraterna.se), 자유당(https://liberalerna.se), 중앙당(https://www.centerpartier.se), 좌익당(https://www.vansterpartiet.se)

104) Vetenskap & Allmänhet. 2018. 'undersökning av riksdagspartiernas valmanifest 2018.' https://v-a.se/downloads/va-valmanifest-2018.pdf (검색일 2019.9.20.)

105) https://www.dn.se/ (검색일 2019.9.20.)

한 녹색당의 주장은 실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스웨덴은 매년 7월초 고틀란드에서 알메달렌(Almedalen)이라는 정치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음. 알메달렌에서 각 정당은 자신들의 선거 매니페스토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연설을 통해 밝히기도 하며, 또한 소셜미디어(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들의 이행 사항에 대해 발표하기도 함.
- 매니페스토에 대한 평가 사항은 각 정당별로 다르며, 공식적으로 평가방법에 대해 발표하지 않음. 다만, 각 정당별로 여론 조사를 통한 매니페스토에 대한 시민 인식을 조사하며, 조사 결과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평가함.

8. 스위스

- 2019년 10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별 매니페스토와 공약을 발표[107)108)]
- 2019년 현재까지 연방의회(상원 및 하원)에 10석 이상의 의석수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정당의 매니페스토 및 2019년 10월 총선 공약은 다음과 같음.

106) https://www.thelocal.se/20060420/3602 (검색일 2019.9.20.)

107) 다당제인 스위스는 스위스 연방에 등록된 정당의 수는 15개
https://www.bk.admin.ch/ch/f/pore/pa/par_2_2_2_3.html (검색일 2019.9.27.)

108) 스위스 연방이 발행하는 연방보고서에 연방의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12개
https://www.bk.admin.ch/dam/bk/fr/dokumente/komm-ue/Buku2019/der_bund_kurz_erklaert_2019.pdf.download.pdf/BUKU_2019_FR_Internet.pdf (검색일 2019.9.27.)

<표 6-13> 스위스 2019년 주요 정당 매니페스토 및 총선 공약

	매니페스토	총선 공약(2019~2023 프로그램)
UDC/SVP (스위스 인민당)	스위스의 유럽경제연합 합류에 반대하고, 스위스의 국가적 중립성을 수호. 제한적인 이민정책의 시행을 주장. 공공비용 지출 절감을 통한 감세 정책의 반영을 목표로 함.[109]	• 직접민주주의 수호 • 집단 이민 방지 • 스위스의 자주적 결정권 강화 및 보장 요구 • 자유경제주의를 위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및 소비세 증세 반대[110]
PS/SP (스위스 사회민주당)	스위스 내 사회민주주의적 가치의 실현을 목표. 노동조합, 여성단체, 환경단체와 소비자단체와 연합해 사회 내 연대의식을 높이고자 함. 모든 종류의 차별을 지양하고, 특히 성차별을 해소하고자 노력[111]	• 질병보험 납부액(les primes d'assurance-maladie)을 임금의 10%를 넘지 않도록 경감하는 국민투표안 제안 • 기후를 파괴하는 화학석유 산업 투자 중단 정책 시행 • 남녀임금의 평등을 실현하고, 아이 돌봄 시설 확충과 비용 절감 정책 시행[112]
PLR/FDP (스위스 자유민주당)	자유, 단결, 혁신을 주요 가치로 삼고 있음. 무제한적 자유가 아닌 자신의 소속된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자유를 실현하고, 스위스 사회의 민병대 정신에 기초한 단결력을 중요시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기술 및 생각의 혁신을 주요 가치로 꼽고 있음.[113]	• 더 원활한 유럽연합과의 협약과 일자리 협약 필요 • 해외 체류 스위스인을 위한 전자투표 활성화 • 효율적인 전자문서 및 전자행정부 확충[114]
PDC/CVP/PPD (스위스 기독교민주인민당)	-	• 질병보험 부담금의 인하 •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임금 차별 개선[115]
GPS/PES (스위스 녹색당)	-	• 파리기후협약의 구체적인 시행, 자연친화적인 정책의 시행 • 산악지대의 환경파괴와 쓰레기 문제에 관한 정책 수립건전한 먹거리와 자연친화적인 농업기술의 시행. 임금 평등 정책 • 디지털 세대를 위한 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미디어와 다각화, 거주지 환경의 개선 • 사회의 안전보장과 현대 가정 형태의 삶의 질 개선, 사회보장 및 건강보장 제도의 재정 정책, 성평등, 교육과 문화 차별 없는 접근성 보장[116]

109) https://www.udc.ch/actualites/mediencenter/a-notre-sujet/ (검색일 2019.9.28.)

110) https://www.svp.ch/wp-content/uploads/Parteiprogramm_FR_19_23_190409.pdf (검색일 2019.9.28.)

111) https://www.sp-ps.ch/sites/default/files/documents/sp-statuten_a5_franz.pdf (검색일 2019.9.28.)

112) https://www.sp-ps.ch/sites/default/files/documents/ps-objectifs-legislature_2019-2023_f_web_0.pdf (검색일 2019.9.28.)

113) https://www.plr.ch/fileadmin/documents/fdp.ch/pdf/DE/Partei/Zukunftsstrategie/20180929_FDP_Vision_DV_f.pdf (검색일 2019.9.28.)

114) http://www.plr-international.com/elections-federales-2019/manifeste-du-plr-international/ (검색일 2019.9.28.)

- 공약에 관한 평가를 담당하는 연방 차원의 기관은 존재하지 않음.[117]
  - 연방이 시행한 정책에 관한 평가는 자발적으로 구성된 기구인 SEVAL(스위스 사회평가)[118]에서 필요한 경우에 진행하고, 그 중 스위스 프랑스어권은 GREVAL[119]에서 담당. 구성원은 시민들로 이루어짐.
  - 제네바 칸톤의 경우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는 외부위원회(CEPP)가 존재[120]

9. 캐나다

가. 도입시기 및 배경[121]

- 매니페스토는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항상 사용이 되었으며 캐나다에선 처음 연방 총선을 개최한 1867년부터 자유당 그리고 보수당이 매니페스토를 발표함.
- 캐나다에선 공약이행을 검증하는 독립적인 기관은 없지만 자유민주주의 특성상 여당 내, 야당,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 여당의 공약이행을 개별로 검증하고 책임을 물음.
- 2017년 연구에 따르면 캐나다 여당은 거의 70%의 공약을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나타남.[122]

---

115) https://www.cvp.ch/fr/elections (검색일 2019.9.28.)

116) https://verts.ch/plateforme-electorale-2019 (검색일 2019.9.28.)

117) https://www.domainepublic.ch/articles/30264 (검색일 2019.9.28.)

118) Société suisse d'évaluation, Schzweiwerishce Evaluationsgesesellschatf
www.seval.ch (검색일 2019.9.28.)

119) Groupe romand d'évaluation
www.greval.ch (검색일 2019.9.28.)

120) Commission externe d'évaluation des politiaues publique de Genève
http://www.cdc-ge.ch/fr/Publications/Archives-CEPP.html (검색일 2019.9.28.)

121) From a privilege to a right, 1867-1919. Elections Canada.
https://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res&dir=his&document=chap2&lang=e (검색일 2019.10.14.)

122) The Fulfillment of Parties' Election Pledges: A Comparative Study on the Impact of Power Sharing.
https://strathprints.strath.ac.uk/59403/1/Thomson_etal_AJPS_2016_The_fulfillment_of_parties_election_pledges.pdf (검색일 2019.10.14.).

1) 캐나다 자유당(Liberal Party of Canada)[123]

- 자유당 당헌 제43조제c항은 당수는 당의 매니페스토를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함.[124]
- 자유당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당수는 각 연방선거 전에 전국 매니페스토 위원회(National Platform Committee)를 설립해야 함.
- 전국매니페스토위원회는 자유당 전국정책위원회와 협력해서 '자유당 정책 개발 가이드라인'을 따라 선거 중 발표할 매니페스토를 만들어야 함.

2) 캐나다 보수당(Conservative Party of Canada)[125]

- 보수당 헌법 제6조제1하엥서 당은 정책개발을 관리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전당대회(National Convention)을 통해 당의 정책방향을 정하고 선거 매니페스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함.

<표 6-14> 캐나다 2015년 정당별 매니페스토 주요 내용[126]

자유당[127]	보수당[128]
• 중산층 성장 • 공정하고 열린 정부 • 비례대표제 및 선거개혁을 고려 • 깨끗한 환경과 강한 경제 •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적 대처	• 연방예산재정수지 맞추기 • 소규모 사업체 및 노동자 세금인하 • 2020년까지 1,300,000개 일자리 창출 • CP-TPP를 통해 새로운 시장개척 • 2020년까지 주택보유 700,000개 늘리기 • 가족들과 노인들에게 새로운 세금 경감 제공

123) The Process of Policy Consultation and Developmet. Liberal Party of Canada. https://www.liberal.ca/wp- content/uploads/2018/01/By-law_3-Policy.pdf (검색일 2019.10.14.)

124) Constitution. Liberal Party of Canada. https://www.liberal.ca/wp-content/uploads/2016/07/constitution-en.pdf (검색일 2019.10.14.).

125) Conservative Party of Canada Constitution. https://cpcassets.conservative.ca/wp-content/uploads/2019/04/03155337/KXBCNkWf-X3IDtR.pdf (검색일 2019.10.14.)

126) 캐나다 연방총선 날짜는 2019년 10월 21일로 9월 말 현재 선거기간임. 신민당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당이 아직 매니페스토를 발표하지 않아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5년 총선 당시 주요 정당의 매니페스토에 대해 서술함(총선 결과 자유당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며 압승함).

127) A New Plan for a Strong Middle Class. Liberal Party of Canada. https://www.poltext.org/sites/poltext.org/files/plateformesV2/Canada/CAN_PL_2015_LIB_en.pdf (검색일 2019.9.25.)

128) Our Conservative Plan to Protect the Economy. Conservative Party of Canada. https://www.poltext.org/sites/poltext.org/files/plateformesV2/Canada/CAN_PL_2015_LIB_en.pdf (검색일 2019.9.25.)

10. 호 주

가. 도입시기 및 배경[129)]

- 호주 매니페스토의 기원은 1891년 현 노동당의 창당에서 비롯됨.
- 1891년 퀸즐랜드 주에서 주로 양털을 깎던 노동자들의 파업이 성공하면서 노동조합 운동이 활발해졌고, 이 운동은 1891년 5월, 어부와 오지에 있던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확산되었으나 운동의 주동자들이 반역죄로 체포되었고 식민정부는 브리즈번 강의 세인트 헬렌 섬에 있는 교도소에서 형벌로써 중노동을 선고함.
- 파업위원회에서는 같은 해 6월 20일 매니페스토를 제시하여 노동조합원들의 선거인명부 등록을 적극 도왔고, 1892년 세계 최초로 노동당을 대표하는 위원을 선출. 그 이후로 노동선거권자연맹이 세워졌으며 이것이 후에 호주 노동당이 됨.
- 영국의 의회정치(Westminster Model)를 따른 호주 통치 형태로 인하여 영국과 유사한 이유로 매니페스토를 본격적으로 도입, 추진하게 됨.

나. 주요내용

- 후보 개인의 매니페스토는 존재하지 않으며 각 정당의 매니페스토만 있음.
- 자유당과 노동당의 약 40페이지에 이르며, 정당 매니페스토는 구체적이고 그 검증 가능성이 높은 공약들로 구성되고 정확한 수치와 소요되는 기간이 명확하게 제시됨.
- 2019년 총선 노동당(Labor)의 매니페스토[130)131)]
  - 정당강령(National platform)에서 정당의 가치와 정책의 개요 제시

---

129) 퀸즐랜드주 도서관. 2008. '퀸즐랜드 노동당 매니페스토 유네스코에 등재(Manifesto of the Queensland Labour party recognised nationally).' http://blogs.slq.qld.gov.au/jol/2008/06/24/manifesto-of-the-queensland-labour-party-recognised-nationally/ (검색일 2019.9.25.)

130) 노동당 https://www.alp.org.au/media/1539/2018_alp_national_platform_constitution.pdf (검색일 2019.9.30.)
자유당(Liberal): 정책계획(Our Plan) https://www.liberal.org.au/our-plan (검색일 2019.9.30.)
녹색당(Greens): 2019 선거정책(2019 Election Policies)https://greens.org.au/policies (검색일 2019.9.30.)

131) 로이터(Reuters). 2019. 호주 정당의 정책정리(Factbox: Policies of Australia's political parties at a glace). https://www.reuters.com/article/us-australia-election-policies-factbox/factbox-policies-of-australias-political-parties-at-a-glance-idUSKCN1RN024 (검색일 2019.9.30.)

- 2018년 빌 쇼튼(Bill Shorten) 노동당 수장은 향후 10년간 5가지 중요 정책 계획인 “fair go action plan”을 발표
- 교육과 의료개혁, 노동자 권리신장, 생활비 안정, 경제회복, 청정에너지 투자를 내용으로 함.[132]
- 노동당「정당 규약(ALP National Constitution)」제24조[133]에 따라 정당강령의 정책을 정당의 사무국(National Secretariats)에서 구체화시키고 정책포럼(National Policy Forum)에서 확정함.

다. 실행담보방법과 평가방법

- 「국회서비스법(Parliamentary Services Act, 1999)」제64B조에 따라 2012년에 설립된 의회예산처(Parliament Budget Office: PBO)는 독립기관으로서 양대 정당에서 제안한 정책에 대해 집행할 때 예상되는 비용을 추계함.[134]
  - 정당은 이를 기준으로 매니페스토 정책을 현실성 있게 수정할 수 있고, 선거권자들은 정책 비용평가를 통해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책임성을 가늠해볼 수 있음.
  - 선거 전 의회예산처에서 정책 비용평가를 받은 정책에 대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운동에서 좋은 매니페스토라고 평가될 수 있음.
  - 각 정당은 선거일 전까지 당선 후 실행할 것이라고 공표한 정책에 대한 목록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회예산처에 제출해야 하고, 의회예산처는 선거가 끝난 후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요 정당의 선거 정책에 대한 재정영향 보

---

132) 가디언(The Guardian). 2018. 빌쇼튼이 노동당의 선거정책을 내놓은 빌 쇼튼과 이에 반박하는 모리슨(Bill Shorten reveals Labor’s election policies as Morrison hits back). 2018.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18/oct/07/bill-shorten-reveals-labors-election-policies-as-morrison-hits-back (검색일 2019.9.30.)

133) 노동당의 정당 규약(ALP National Constitution). 2018. https://www.alp.org.au/media/1574/alp_national_constitution.pdf (검색일 2019.9.30.)

134) Institute for Government. Robyn Munro & Akash Paun. 2013. 호주의 선거전 정책비용평가 매카니즘 연구(Pre-election policy costing mechanisms in Australia). https://www.instituteforgovernment.org.uk/sites/default/files/publications/final%20-%20Australia_0.pdf (검색일 2019.9.30.)

고서를 발간하는데 이는 정당의 책임감을 높이는 장치가 됨.

- 현재 호주에서는 정당이 매니페스토를 통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선거정책을 제시하고 선거권자와 언론은 이를 바탕으로 활발한 정책 토론 후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음.[135]
  - 영국처럼 각 정당이 매니페스토를 책자로 발간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권자들이 정보를 얻지 못하고, 정당 웹페이지에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선거권자들이 선거 전에 충분한 정책정보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없음.
  - 개선방안으로 선거권자가 선거일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선거전에 호주선거위원회(AEC)에서 발행한 각 정당·각 후보자의 정책 매니페스토 자료, 후보자의 정견 소견, 주요 관심사, 그리고 후원자 정보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 책자를 온라인과 우편으로 받도록 해야 함.
  - 매 선거 후에 선거이슈 의회상임위원회(Joint Standing Committee on Electoral Matters)에서 다음 선거를 위해 해당 선거 전반에 대해 검토하는데 이때 시민패널도 함께 참여해 정당 정책에 관한 자유로운 토론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서 나온 요청 및 질문에 정부로부터 90일 이내에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136]

---

135) 호주공영방송 뉴스(ABC News). 2013. 매니페스토를 하기 위한 분명한 이유(Manifest reasons for manifesto). https://www.abc.net.au/news/2013-09-11/lelliot-reasons-for-manifestos/4951246 (검색일 2019.9.30.)

136) New Democracy Foundation & Melbourne School of Government. 2019. 민주주의 개혁: 호주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방안(Reforming our Democracy; Options for Renewing Democracy in Australia). https://about.unimelb.edu.au/__data/assets/pdf_file/0036/88488/Reforming-our-Democracy-2019.pdf (검색일 2019.9.30.)

제7장

선거운동 제한·금지사항

제1절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일 선거운동 제한·금지

- 미국·서구 유럽 등 대부분의 민주주의 선진국가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이나 선거운동방법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총선거비용 통제를 통해 선거공정성을 확보
- 반면, 프랑스는 선거운동기간을 두고 선거운동방법에 있어서도 비교적 상세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본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방법으로 기간과 방법에 대해 엄격히 제한
- 선거운동기간을 정하고 있는 국가(프랑스, 일본, 스페인)는 모두 그 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
- 스위스는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이 선거법에 없음.

1. 영 국

- 총리의 선거일 공표 전에는 주로 정당 활동 차원에서 선거운동이 행해지고, 선거일 공표 후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
- 선거일 공표 전이라도 선거공약의 발표, 신문, 옥외광고판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이 가능하나 선거비용의 엄격한 제한 때문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 주로 투표참여 위주 선거일 선거운동도 가능함.[1)]

2. 미 국

- 미국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이나 선거운동방법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비용의 제한(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비용 제한이 아

1) 주간조선. 2010.5.24. '현수막 · 선거벽보 · 거리유세 NO! 영국은 가가호호 방문해 선거운동 선거권자 성향 파악 후 맞춤 홍보물.'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106100014 (검색일 2019.6.19.)

닌 정치위원회 또는 단체·개인에 대한 기부행위 및 비용지출에 대한 규제)을 통하여 선거운동 전체를 규제하고 있음.

- 다만, 주법에 따라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서 선거운동 금지[2)]
  - 앨라배마 주: 투표소로부터 30feet(약 9m)이내에서 선거운동 금지
  - 애리조나 주: 투표장소, 투표소의 출입구 또는 사전 투표소에서 75feet(약 23m) 이내에서 선거운동 하는 사람을 2등급 경범죄로 처벌 가능
  - 캘리포니아 주: 투표소 100feet 이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3. 프랑스

- 하원의원선거 선거운동은 선거일 20일 전부터 개시되는데, 선거운동으로 금지되는 사항은 선거운동방법에 따라 기간상 차이가 있음(선거법 제164조).
  - 선거운동기간 위반 시 3,750유로의 벌금과 3월 이하의 구금 또는 이 둘 중 한 형벌에 처함(선거법 제168조).
- 선거일 전일 오전 0시 이후부터(선거법 제49조)
  - 선거일정·투표용지·회보 및 기타 서류를 배부하거나 배부하게 할 수 없음.
  - 전자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성격을 가진 메시지를 배포하거나 배포하게 할 수 없음.
  - 위반 시 3,750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89조).

4. 독 일

- 일반적으로 정당간의 협정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규제되며, 보통 선거일 3개월 전에 선거사무소를 개설하여 선거운동을 시작
- 투표가 실시되는 시간 중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 내부 및 입구에서 직접적으로

2) NASS. ‘State Laws on Electioneering Boundaries.’ https://www.nass.org/resources/2018-election-information/electioneering-boundaries (검색일 2019.6.24.)

언어, 음향, 문서, 도화 등을 이용하여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와 모든 형태의 서명운동은 금지(연방선거법 제32조제1항)

5. 일 본

가. 선거운동기간과 사전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제129조)

- 선거운동은 각 선거에 대하여 후보자신고 또는 명부신고가 있는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가능하여 원칙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은 금지됨.
- 사전선거운동의 예외
  - 정당공인을 얻기 위한 행위, 후보자심사회·추천회 개최, 출마의사를 결정하는 자료로 선거인의 의향을 탐구하는 행위, 공탁금 공탁 등 입후보준비행위
  - 선거운동비용 조달, 선거사무소 임차, 선거운동원·노무자고용을 위한 내부협상, 포스터·간판 작성 등 선거운동 준비행위
  - 입후보 목적으로 지지기반을 쌓는 행위, 정당세력 확장을 위한 행위, 정책 보급·선전 등의 정치활동
- 공직선거법 제129조(선거운동기간)를 위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공직선거법 제239조제1항제1호).

나. 선거일 후의 행위 제한(공직선거법 제178조)

- 누구든지 선거일(무투표당선에 해당되어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고시일) 후에 당선 또는 낙선을 이유로 선거인에게 인사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음.
  - 선거인을 호별방문 하는 행위
  - 자필 서신 및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축사·병문안 등의 답례를 위한 서신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되는 문서·도화를 제외하고 문서·도화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신문 또는 잡지를 이용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송시설(광고방송시설·공동청취용방송시설 기타 유선전기통신시설을 포함)을 이용해 방송하는 행위
- 당선축하회 기타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자동차를 연이어 또는 대오를 조직하여 왕래하는 등 기세를 고조시키는 행위
- 당선에 대한 답례를 위하여 당선인의 성명 또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을 말하며 다니는 행위

6. 스페인

- 법정선거운동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선거관련 선전물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선거법 제53조).
- 선거일 투표소 또는 투표소 인근에서 어떠한 종류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음(선거법 제93조).
  - 투표소에 접근을 방해하는 단체를 만들 수 없으며, 선거권 행사를 어렵게 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자들이 투표소 주위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됨.
  - 투표관리관이 이와 관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거소집일부터 법정선거운동개시일까지(선거법 제53조)
  - 정당·연합·연정 등을 포함한 누구든지 선거벽보나 현수막·상업용 매체·신문·라디오 또는 기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선거홍보나 선전이 금지됨.

    ※ 법정선거운동기간은 선거소집일 후 38일부터 개시되어 선거일 전일까지 15일 동안임(선거법 제51조).
- 선거소집일부터 선거일까지(선거법 제50조제2,3항)
  -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추진·후원하는 활동 중 선거에 참여하는 특정 정당의 활동이나 업적을 언급하거나, 정당이 선거운동에서 사용한 것과 비슷하거나 유사한 이미지, 표어 또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됨.
  -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공사 또는 이와 관련한 개막식, 개관식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관련 활동이나 행사는 금지됨. 다만, 금지기간에 앞서 추진되는 사업은 제외함.

7. 스웨덴

- 투표소 또는 투표소 인접장소에서는 선거인에게 영향을 주거나 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선전이나 다른 활동을 할 수 없음(선거법 제8절 제3조).

8. 캐나다

- 선거운동기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어 사전선거운동 또한 명시적 금지 규정이 없으나, 선거일에는 아래의 선거운동이 제한·금지됨.
- 선거일 확성장치 사용금지(선거법 제165조)
  - 누구든지 선거일에 특정 등록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할 목적으로 투표소에서 청취가능 거리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음.
- 선거일 선전물 등 게시 및 착용금지(선거법 제166조)
  - 누구든지 투표소 내·외부에 등록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할 목적으로 선전물 등을 게시하거나 전시해서는 안 됨.
  - 누구든지 투표소에서 등록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할 목적으로 문양이나 깃발, 현수막 등을 착용·게시해서는 안 됨.
- 선거광고 전송 금지(선거법 제323조제1항)
  - 누구든지 선거일에는 선거구의 모든 투표소가 문을 닫기 전까지 선거구 내 대중들에게 선거광고를 전송할 수 없음.
  - 다만, 금지기간 이전에 이미 전송된 선거광고나 이미 배부된 전단지, 선전물, 벽보, 현수막은 예외로 함(선거법 제324조).

9. 호 주

가.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근처 금지행위(연방선거법 제340조)

- 선거일에 투표소, 사전투표소, 사전투표 신청 또는 사전일반투표가 행해지는 선거구 선거관리관의 사무소의 안, 출입구, 또는 출입구로부터
  - 6미터 이내에서 투표를 위한 유세, 투표를 하지 않도록 유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운동을 하는 행위 금지
  - 6미터 밖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큰 스피커, 대중연설 무대시설, 확성기, 음향시설, 그 외 일체의 방송매체를 사용하여 할 수 없음.

    ※ 위반 시 5 페널티 유닛의 벌금 부과
- 선거일에 공무원 또는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후보자 또는 정당의 배지 또는 상징물을 착용할 수 없음(연방선거법 제341조).

  ※ 위반 시 10 페널티 유닛의 벌금 부과

나. 선거일 전 일정기간 선거광고 금지

- 방송서비스법에서는 선거일 전 목요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방송서비스법 Schedule 2-Part 2-3 (2)].[3)]

3) 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 Schedule 2-Part 2-3A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8C00375 (검색일 2019.6.14.)

<표 7-1> OECD국가의 확성기 사용제한

국가명	제한 내용	관련규정
영 국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소음법[4]
독 일	주거지역에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13시-15시	노스트라인-베스트 팔렌 주 지침
일 본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 야간 가두연설회 금지	공직선거법 제164조의6
캐나다	선거일에 금지	선거법 제165조
호 주	선거일에 금지	연방선거법 제340조
덴마크	선거법 상 제한 없음. ※ 다만, 법무부 장관은 도로나 광장에서 질서를 방해하는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따라 벌금 등의 처벌내용을 명시하는 규칙을 정할 수 있음.	선거법 제107조
에스토니아	선거법 규정은 없으나 지방법에 따라 공무수행의 일반적인 소음규제법이 있음. 수도인 탈린시티의 경우 오후 11시에서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탈린시티 공공기관 설립 및 질서 규정 제3조
그리스	내무부, 행정부 장관은 협의를 통해 투표소, 정당 사무소 및 차량 및 기타 장소에서의 확성기 운용시간 및 최대 음량을 규정하며, 시에스타(공중 휴식시간) 및 학교나 병원과 인접한 장소에 사용 금지	선거법 제46,47조
아이슬란드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기 사용 금지	의회선거법 제117조제c항
이스라엘	합법적 집회, 회의 등에서 후보자 목소리 증폭용도 외 확성기 사용 금지 선거일 전일 19시부터 확성기 사용 금지	선거운동법 제4조 선거법 제129조
이탈리아	자동차의 확성기 사용은 선거선전 집회와 연설이 열리는 시간과 장소를 공고하는 경우에 한하며, 집회일과 그 전날 9시부터 21시30분까지로 제한	선거선전 규제규범 제130호 제7조
네덜란드	확성기가 부착된 차량은 일요일이나 공휴일 운행이 금지 평일에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제한	일반지방규칙 제4:6조
뉴질랜드	선거일에 금지	선거법 제197조제1항c
포르투갈	음성을 통한 선거운동은 허가가 필요 없이 자유롭게 가능함 제한 규정은 없음	선거법 제66조
터 키	정당의 요청에 따른 확성기 사용을 위한 장소, 시간, 기타 사항들은 각 지역구 선거위원회가 결정 정당은 각 지역구 선거위원회 운영방침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지방자치단체 확성기 시설을 사용할 수 있음. ※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자의 실내외 선거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됨.	선거기본법 제56조

※ 미국,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칠레,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의 경우 관련 규정 없음.

4) 소음법(Noise Act. 1996)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6/37/contents (검색일 2019.10.31.)
http://www.environmentlaw.org.uk/rte.asp?id=70 (검색일 2019.10.31.)

<표 7-2> OECD국가의 선거일 선거운동 가능 여부

국가명	가능 여부	관련규정
영 국	선거운동 가능(주로 투표참여 위주)	-
미 국	선거운동이 가능하나 투표소로부터 일정거리 내에서는 금지 ※ 앨라배마 주는 9m이내에서 금지	주 법
프랑스	불 가(선거일 시청각 통신수단에 의한 선거운동 규제)	선거법 제49조
독 일	불 가(투표소 내부 및 입구에서 선거인에게 영향 미치는 행위 금지)	연방선거법 제32조제1항
일 본	불 가(투표소에서 300m 밖에 선거사무소는 설치가능)	공직선거법 제129조
스페인	불 가(선거운동은 선거일 전일 24시까지만 가능)	선거법 제93조
스웨덴	투표소 인근에서 선거인의 투표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 기타활동을 금지	선거법 제8절 제3조
캐나다	선거일 확성장치 사용 금지, 투표소 내·외부 선전물 등 금지	선거법 제165,166조
호 주	선거일 투표소의 출입구 6m 이내의 공·사유지에서 투표를 위한 유세, 특정 후보자 지지행위 등 금지	연방선거법 제340조
오스트리아	선거일 투표소와 일정 반경 내에서는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홍보물의 부착이나 배부, 집회 등 모든 종류의 선거운동이 금지	의회선거법 제58조
벨기에	투표소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금지	선거법 제111조
체 코	상하원 선거 최종결과 발표시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나 투표소가 위치한 건물 내부 또는 인근에서의 정당, 연합, 후보자 연관 선거운동 금지	선거법 제1조제9항
칠 레	불 가(각 정당의 선거운동은 선거일 3일 전에 종료되어야 함)	선거법 제35조
덴마크	투표소 선거운동 금지	선거법 제50조, 제61조제8항, 제107조
에스토니아	적극적인 선거 운동(Active election campaigning)은 금지 투표소 내부와 투표소 출입을 위한 구역에서는 모든 종류의 선거운동이 금지	의회선거법 제5조제2,3항
핀란드	인쇄물의 배포나 게시, 연설 등 선거권자의 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투표소 주변, 투표소 내에서 금지	선거법 제72조
그리스	선거일 전일과 당일 모든 선거운동 금지	선거법 제48조
헝가리	선거일 당일 미디어를 통한 정치 광고를 방송하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금지 투표소 주변의 150m이내이거나, 선거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는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	선거절차법 제143조, 제145조제1항, 제147조제4a항
아이슬란드	• 투표소 등 투표시설에서 연설하거나, 정치적 주장이 드러나는 연설문, 광고판 등을 노출하는 행위 금지 • 투표시간 중 정당의 휘장, 기호 등 정당을 식별하는 표기를 가진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확성기를 사용한 선전이 금지됨	선거법 제117조

국가명	가능 여부	관련규정
아일랜드	불 가(선거일 전날 14:00부터 선거 당일까지)[5]	BAI Rule 27[6]
이스라엘	불 가 선거일 전날 19:00부터 선거 당일까지 집회, 행진, 확성기, 방송, TV를 사용한 선거운동 금지	선거법 제129조
이탈리아	선거일 전일과 당일에는 집회, 벽보, 선전물, 현수막을 비롯한 직간접적 선거선전 금지 ※ 투표소 입구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선거운동 금지	선거선전규율규정 제212호 제9조
라트비아	투표소 건물 내부 및 출입구 반경 50m 이내 선거운동 금지 선거일 당일 라디오, 방송, 공공장소 이용, 인터넷 등 선거운동 금지	선거법 제19조제1항 사전선거운동법 제32조제1,2항
리투아니아	불 가(선거 개시 시각 30시간 전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 투표소가 위치한 건물 주변 50m 이내에 시각 및 음성 선거운동 자료 게시 금지	선거법 제56조
룩셈부르크	선거운동 기간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으며 정당 간 합의에 의해 규칙을 정함.	OSCE[7]
멕시코	불 가(각 정당의 선거운동은 선거일 3일전에 종결되어야 함.)	연방선거법 제251조제3항
노르웨이	규정 없음.[8]	-
네덜란드	투표소 내에서 선거인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금지	선거법 제J36조
뉴질랜드	선거 당일 투표소 안이나 주변에서 선거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의 접근 금지 시위 또는 행렬, 확성기·방송·영화 장비 등을 이용한 홍보 또는 성명서나 정당명, 슬로건, 로고 등의 첩부, 전시, 배포 금지	선거법 제197조
폴란드	선거일의 24시간 전부터 투표가 마감 될 때까지 집회, 행렬, 연설, 전단지 배포, 후보자 지지를 선동하는 행위나 투표소와 투표소 주변에서의 모든 형태의 선거운동은 금지	선거법 제107조
포르투갈	투표소 500미터 이내에서 후보자명부의 상징, 약자, 기호 등의 선전을 포함한 모든 선거운동 금지	선거법 제92조
슬로바키아	불 가(각 정당의 선거운동은 선거일 48시간 전에 종료되어야 함)	선거운동법 제2조제2항
슬로베니아	불 가(선거일 투표소 구내에서는 모든 형태의 선거운동 금지) ※ 선거일 최소 24시간 전에 선거운동 종료	선거법 제5,65조
터 키	불 가(각 정당의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날 18:00에 종료되어야 함)	선거기본법 제49조

※ 스위스는 선거운동 관련 규정이 선거법에 없음.

5) Broadcasting Authority of Ireland(BAI; 아일랜드 방송위원회). ‘Rule 27 Guidelines.’

6) BAI(Boradcasting Authority of Ireland; BAI). Rule 27 of the BAI Code of Fairness, Objectivity and Impartiality in News and Current Affairs Guideline section 10 ‘Moratorium’ (p.10) (검색일 2019.8.27.)

7) https://www.osce.org/odihr/389582?download=true (검색일 2019.8.26.)

8) OSCE. 노르웨이 2013 총선 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103545?download=true (검색일 2019.9.24.)

제2절
공무원의 선거운동 제한·금지[9)]

- 공무원의 정치활동 규제 수준은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호주) 공무원과 선거관리직원들이 투표에 관여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독일과 스위스, 스웨덴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이 선거법에 없음.

1. 영 국

- 후보자를 위하여 행동할 수 없는 공무원(1983년 국민대표법 제99조)
  - 선거위원회 직원은 후보자의 대리인(agent of a candidate)으로서 활동할 수 없으며, 선거관리관, 의회의원선거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직원 및 이들의 보조자는 선거의 관리·집행에 관해 후보자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할 수 없음.
  - 위반 시 4단위 이하 벌금형[10)]에 처함.
- 경찰관의 불법행위 금지(1983년 국민대표법 제100조)
  - 경찰관은 언어·통신·문서, 기타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관할구역 내에 있는 선거구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단념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위반 시 3단위 이하 벌금형에 처함.

---

9) 제1장 제3절 2. 선거의 공정성 보장 중 마. 공무원의 중립의무, p.156 참조

10) 벌금 단위(fines level) – 1단위: 200파운드, 2단위: 500파운드, 3단위: 1,000파운드, 4단위: 2,500파운드, 5단위: 5,000파운드
http://www.defence-barrister.co.UK/fines (검색일 2019.10.31.)

2. 미 국

- 누구든지 연방정부, 그 부처나 기구, 콜롬비아특별구, 그 기관이나 기구, 주정부, 준주정부, 미국령, 또는 이러한 정치적 지부나 시의 기관(주정부, 준주정부, 또는 미국령이나 그 정치적 지부, 시 또는 기관에 의해 소유되고 통제받는 회사를 포함)에서 행정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미국정부나 그 부처 또는 기관에 의한 예치금 또는 보조금으로 그 재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운영되는 행위와 관련하여, 대통령, 부통령, 대통령선거인단, 상원의원, 하원의원 컬럼비아특별구대의원 또는 보호령대표직에 입후보하는 후보자의 추천 또는 당선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그의 공적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연방선거운동법 제18편 제595조).
  - 위반 시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함께 처벌 가능
  - 주정부, 그 정치적 지부, 컬럼비아특별구, 준주정부 또는 미국령으로부터 승인된 종교단체, 자선단체 또는 문화단체로부터 재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교육, 연구기관, 시설이나 기관 또는 조직에 속한 임직원의 행위를 금지·제한하는 것은 아님.

3. 프랑스

- 공무원의 활동 규제(선거법 제50조)
  - 공공기관 또는 기초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은 후보자의 투표용지, 정견발표문 및 경력소개문 등을 배포할 수 없음.

4. 일 본

가. 선거사무관계자의 선거운동금지(공직선거법 제135조)

- 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 선거장 및 선거분회장은 재직 중 그 관할구역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음.

- 부재자투표관리자는 부재자투표에 관하여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나. 특정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공직선거법 제136조)

- 중앙선거관리회 위원 및 중앙선거관리회의 사무에 종사하는 총무성의 직원, 참의원합동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재판관, 검찰관, 회계검사관, 공안위원회 위원, 경찰관, 세무공무원 등은 재직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공직선거법 제136조의2)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 행정집행법인 또는 특정지방독립행정법인의 임·직원,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공직후보자 또는 공직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추천·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으로 또는 공직후보자나 공직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위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가 공직후보자로 추천되거나 지지받을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후보자 추천에 관여·원조하거나 타인에게 하도록 하는 행위
  - 투표의 주선·권유, 연설회의 개최 기타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를 지시·지도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이를 하도록 하는 행위
  - 후원단체를 결성하거나 그 결성준비에 관여하거나 그 후원단체의 구성원으로 되는 것을 권유·원조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이를 하도록 하는 행위
  - 신문 기타 간행물을 발행하거나 문서·도화를 게시·배부하거나 이를 원조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이를 하도록 하는 행위
  - 공직후보자 또는 공직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추천·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권유·약속한 자에게 대가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을 하는 행위

라. 교육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공직선거법 제137조)

- 교육자(학교의 장 및 교원)는 학교의 아동·학생에 대하여 교육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5. 스페인

- 선거기간 동안 해당 공공기관 직원 및 공무원은 선거일, 투표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정당과 유사한 문구나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선거법 제50조).
- 스페인군대, 국가치안담당기관, 지방자치주 및 자치시 경찰에 소속된 현역 군인 및 경찰, 현역 판사, 상급법원 판사, 검사, 선거위원회 위원은 선거를 위한 선전 및 홍보 등 기타 형태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선거법 제52조).
-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타 선거행위를 하는 현역 국인 및 경찰, 자치주 및 자치단체 경찰, 판사, 법관 및 검사, 선거위원회 위원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및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선거법 제144조).

6. 캐나다

-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금지하는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은 없음.
- 다만, 현장 연락소 사무원(field liaison officer)과 선거관리관은 정치적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당내경선, 후보자 추천 과정 등에 기여하여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선거법 제23조의2제8항, 제24조제6항).

7. 호 주

- 공무원과 참관인의 비밀준수(연방선거법 제323조)
  - 공무원 또는 참관인이었거나 공무원 또는 참관인인 사람은 선거법 또는 규칙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면서 취득한 선거인의 투표와 관련된 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누설 또는 전달하여서는 안 됨.
  - 위반 시 6개월의 징역형이나 10 페널티 유닛의 벌금 또는 함께 부과 가능
- 공무원의 투표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연방선거법 제325조)
  - 공무원으로서 타인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행위를 한 자는 처벌됨.
  -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1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 또는 함께 부과 가능
- 공무원의 투표함, 투표용지 등에 대한 방해 금지(연방선거법 제339A조)
  -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투표함이나 투표용지를 파손, 취득, 개봉하면 안 됨.
  - 위반 시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함.

참조 7-1 기타 선거운동이 제한·금지되는 사람

- 외국인의 선거관여 금지
  - 캐나다: 캐나다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누구든지 캐나다 시민이 아닌 경우 선거기간동안 어떠한 방법으로든 선거인이게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않도록 또는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않도록 권유할 수 없음(선거법 제331조).

-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금지
  - 일 본: 만 20세 미만의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만 20세 미만의 자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137조의2).

제3절
인쇄물·시설물 관련 제한·금지

- 인쇄물이나 시설물에 대해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들은 대개 투표소 주변과 정부기관 건물이 선거 선전과 관련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미국, 독일의 인쇄물·시설물 관련 제한·금지 관련 사항은 제6장 제2절의 인쇄물·시설물 등 이용 선거운동을 참고
- 스위스와 스웨덴은 선거운동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선거법에 없음.

1. 영 국

가. 선거인쇄물(election material) 내용상 제한(1983년 국민투표법 제110조,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제143조)

- 등록된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옥외 광고나 선전 벽보, 현수막, 및 기타 선전물에 인쇄자, 대행인, 대리인(소속 정당)의 성명과 주소를 기입해야 함.
  - 위반 시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에게 5,000파운드의 벌금 부과
- 선거운동 인쇄물 내용은 일반 법규(the criminal law & the law on civil liability)의 규제 대상이 되며 상호 비방 또는 명예훼손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함.
- 또한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1986)」에 따라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비방, 악용, 모욕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됨.
- 허위 게재 내용에 대한 규제는 더욱 엄격해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당선 취소나 일정기간 투표 자격 박탈 및 공직사퇴도 가능(1983년 국민대표법 제106조)

나. 선거인쇄물(Election Publications) 등 게시장소 제한

- 옥외광고나 게시판을 이용한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관련 인쇄물 등의 게시는 「도시 및 지방개발(광고물 규제) 규정」[11]으로 규제

  ※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각각 독자적인 법령을 운영하고 있음.

- 정부부처 중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에서 옥외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역개발당국(Local Planning Authority: LPA)에서 옥외광고물 설치 여부를 결정하며, 규정 위반시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규제내용
  -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허락 없는 광고 게시 금지
  - 선거후 14일 이내 게시물 철거 의무
  - 공유지 및 공영재산(예, 가로등, 광장 등)에 선거광고물을 게시 및 부착할 경우 지방개발당국의 담당자와 개별적인 상담을 거쳐야 함(지역별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 규격 기준으로 면적이 0.3m² 이상인 광고물이 건물의 전면 또는 외부에 부착될 경우 현지 계획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0.3m² 미만의 작은 광고물이 해당 건물의 명칭 또는 도로명 주소 번호판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승인받을 필요가 없음).
  - 선거인의 집, 땅, 건물, 부지 등에 선거 광고물 게시를 조건으로 일체의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는 금지됨. 단, 광고물 게시를 주 영업행위로 하는 자에게 금전적 대가 지불은 가능함(1983년 국민대표법 제109조).

---

11) Town and Country Planning(Control of Advertisements) Regulations 2007(잉글랜드). Schedule 1
Town and Country Planning(Control of Advertisements) Regulations 1992(웨일즈) Schedule 2
Town and Country Planning(Control of Advertisements) Regulations 1984(스코틀랜드). Regulation 12(2)(a)

2. 미 국

가. 인쇄선전물 등 배포 시 자금 출처 공개(연방선거운동법 제30120조)

- 방송, 신문, 잡지, 옥외광고시설, 우편, 기타 정치광고를 통해 선거운동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불한 주체를 밝혀야 함.

나. 시설물 등 설치장소 제한

- 미국 연방선거법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별다른 규제가 없으므로 선거관련 홍보물(election sign)도 옥외광고에 관한 일반법이 적용됨.[12)]
  - 연방법 중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법령은 주(州) 간 고속도로(Interstate Highway) 주변의 옥외광고물을 담당하는 '고속도로 미화법(Highway Beutification Act: HBA)'이 있고, 그 외 지역의 옥외광고물은 각 주의 '주 법(Highway Law, Sign laws and Regulations)'이 적용됨.
- 고속도로 미화법은 미국 교통부 산하 고속도로관리국(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FHWA)에 의해 관리·집행되며 주 간 고속도로 상의 공적구조물(public investment)을 보호하고 공공 교통의 안정성 및 후생성을 증진하며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을 설치·유지 관리하고 있음.
  - 각 주 정부는 주 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통해 불법 옥외광고물을 통제하고 법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감시하기 위해 간판허가시스템(sign permit system)과 도로 DB 관리 및 주기적인 순찰 등을 시행하고 있음.
    ※ 46개 주와 대다수의 미국령에서 고속도로 미화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알래스카, 하와이, 메인, 버몬트 주는 고속도로 상의 옥외광고물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있음.
- 규제내용(뉴욕 주의 경우)[13)]

---

12)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Out Advertising Control.'
http://www.fhwa.dot.gov/real_estate (검색일 2019.10.7.)
https://www.fhwa.dot.gov/real_estate/oac/index.cfm (검색일 2019.10.7.)

13) 이하의 내용은 뉴욕 주의 사인 프로그램(New York State Sign Program)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공공장소에서 상업정보 혹은 취지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광고물 및 간판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 주 도로교통국은 간판 및 옥외광고물이 세워질 수 있는 장소와 종류를 지정할 수 있는데, 공식도로 교통표지판, 신호기기 시야를 가리는 곳, 통행로 상에는 설치가 금지됨.
- 일반 선거권자 집 안마당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간판(Campaign Yard Signs, Lawn Signs) 설치와 관련해 대부분의 주에서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허용하고 있으나 도시 미관, 운전자의 시야확보 등을 위해 주마다 다르지만 제한 규정(Election Sign Rules)을 두고 있음.
  ·간판 크기 및 형태 제한
  ·간판 설치 기간 및 시간 제한(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만 게시)
  ·통행로에 설치 금지
  ·선거일 후 3일 이내 철거
  ·선거일 투표소 근방 설치 금지
-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시 소유주의 비용으로 즉각 철거하도록 해야 하며, 벌금이 부과됨.

3. 프랑스

- 선거가 실시되는 달의 첫째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위한 출판물 또는 시청각 통신수단에 의한 상업적 광고방식의 이용 행위와, 다른 후보자에게 할당되어 있는 공간에 벽보를 부착하거나 선거용 게시판 이외의 공간에 벽보를 게시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선거법 제51조제3항)
  - 위반 시 9,000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90조).
- 선거법에 규정된 회보, 선거벽보 또는 광고 등을 제외한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선거법 제165조제3항).

위한 것으로 연방법과 주 법(Highway Law. section 52,86,88)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담은 시행령 '17 NYCCRR Part 150'을 제작 및 배포하고 있음(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Title 17).
New Your State. 'NYS Sign Program – Introduction.'
https://www.dot.ny.gov/programs/nys-signs (검색일 2019.10.7.)

4. 독 일

가. 규제근거

- 선거법에 별도의 규정은 없고, 옥외광고에 관한 일반법이 적용됨.
  - 「연방장거리도로법(Das Bundesfernstraßengesetz, FStrG)」, 「도로교통법 시행령(Die Straßenverkehrsordnung, StVO)」이 있으며 이 두 규정 외에 각 주의 「주 도로법(Das Straßen-und Wegegesetz, StrWg NRW)」 등의 적용을 받음.
  - 연방법에서는 고속도로 또는 연방관할 시설물과 영역에 대한 옥외광고 설치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주내 별도의 권역인 시마다 설치 가능한 옥외광고 규정이 각각 만들어져 있음.

    ※ 작센 주에서는 '작센 주 건축법(Sächsische Bauordnung, SächsBO)'으로 주 전체에 대한 옥외광고물 설치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라이프치히 시(Stadt Leipzig)나 마이클레아베르크 시(Stadt Markkleeberg) 등에서는 별도의 규칙(Ordnung)을 제정해 규정하고 있음.

나. 규제내용[14)]

- 선거벽보를 이용한 옥외광고는 선거 3달 전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허용됨.
- 선거벽보의 크기 제한은 주나 시마다 차이가 있음.
- 선거에 관한 벽보는 공공건물, 교량, 도강용(渡江用) 선박뿐만 아니라 사유건물 및 사유지에도 붙일 수 없음.
- 옥외광고는 교차로와 진입로, 기차길 연결로와 커브길의 경우 허용되지 않음.
- 옥외광고물은 지역경계도로의 외부 20미터 이내에는 설치될 수 없지만(「주정부도로법」 §28, 「연방장거리도로법」 §9) 선거나 국민투표 등을 이유로 한 벽보 광고는 선거 3달 전부터 부분적으로 허용됨.

  ※ 이 예외 조항은 교차로, 진입로, 기차길 인근,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에는 허용되지 않음(고속도로 옥외광고는 전면금지).

---

14) 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선거 옥외광고 설치 실무지침서(Lautsprecher- und Plakatwerbung aus Anlass von Wahlen, Volksbegehren und Volksentscheiden in Nordrhein-Westfalen Gem. RdErl. d. Ministeriums für Verkehr, Energie und Landesplanung – III B 2 - 22-33 - u. d. Innenministeriums -11/20-10.10 – v. 8.8.2003)'에 근거함. https://recht.nrw.de/lmi/owa/br_text_anzeigen?v_id=5720040121111740677 (검색일 2019.8.8.)

- 도로에 광고설치물 및 포스터는 기본적으로 신청 후 허가를 받아야 함(도로표지판, 안전분리대, 신호등, 교량, 가로수 등에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광고포스터는 형태, 장소 및 색에 있어서 도로 표지판 등과 혼동되지 않아야 함).
- 주거밀집지역 이외의 공공도로에서 벽보광고는 운전자가 운전 중 위험하거나 불편하게 되는 등 방해되는 경우 금지(도로교통시행령 §33①)되나 선거와 국민투표 등의 경우 예외로 가능함.
-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의 경우, 허가범위 초과 면적당 위반내용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며, 판결에 따른 철거를 명령하게 됨.

※ 뒤셀도르프 시의 경우 옥외광고 설치위반을 건축과 관련한 위반으로 간주할 경우 최대 5만 유로까지 징수 가능하며, 함부르크 시의 경우 7,500유로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 판례도 있음.

참조 7-2 뮌헨 주의 벽보규정(Plankatierungverordnung)

- 도시미관과 자연경관의 보호를 위하여 벽보, 입간판 등은 허가한 공간에만 부착 내지 게재되어야 함(제1조제1항).
- 정치적인 정당, 선거인단체 그리고 후보자들은 선거, 주민투표, 주민소환일 전 3개월 전부터 그리고 선거일 14일 후까지 위에서 언급된 장소 이외에도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으며 크기는 1m²로 제한됨(제2조제1항).
- 선거와 주민투표, 주민소환 이외의 정치적 행사에 대한 벽보나 부착물은 행사 3주전부터 1주 후까지 부착이 가능(제2조제2항)
- 벽보광고는 교차로, 교량, 철도교량, 곡선도로의 안쪽에는 게시가 금지됨.
- 벽보, 현수막 광고는 도로교통규칙 제33조제2항(§33 Abs.2 StVO)에 따라 게시 장소와 방법, 색상이 도로표지판이나 교통시설물과 혼동되게 해서는 안 됨.
- 벽보 및 현수막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에 방해될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로교통 규칙 제45조에 규정된 관할 도로교통관청에 통지해야 함.

5. 일 본

가. 문서·도화의 배포 또는 게시금지(공직선거법 제146조)

- 선거운동을 위하여 애드벌룬·네온사인 또는 전광에 의한 표시, 슬라이드 기타의 방법에 의한 영사(옥내 연설회장에서 연설회 개최 중 게시하는 영사 등의 종류 제외) 등의 종류를 게시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저술·연예 등의 광고 기타 명의를 불문하고 후보자의

성명·상징(symbol)·마크,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 또는 후보자를 추천·지지·반대하는 자의 이름을 표시한 문서·도화를 배포 또는 게시할 수 없음.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이름·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 또는 후보자추천자 기타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자나 후보자와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자의 성명을 표시한 연하장, 계절문안편지, 기타 이와 유사한 인사장을 해당 후보자의 선거구(선거구가 없는 때에는 그 구역) 안에 배포·게시할 수 없음.

나. 인사장의 발송 금지(공직선거법 제147조의2)

-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공직에 있는 자 포함)는 해당 선거구(선거구가 없는 때에는 선거가 실시되는 구역) 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연하장, 계절문안편지, 기타 이와 유사한 인사장(전보 등을 포함)을 발송할 수 없음(다만, 답례의 목적으로 자필로 하는 경우는 제외).

다. 통상엽서의 반환 및 양도금지(공직선거법 제177조)

- 선거운동용 통상엽서를 교부받은 자, 선거운동용 포스터 첨부용 증지를 교부 받은 자, 선거운동기간 중 교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기관에서 교부되는 특수승차권 또는 특수항공권을 교부받은 자는 후보자등록이 각하된 때, 후보자를 사퇴한 때, 후보자신고정당의 추천이 각하·취하된 때, 중의원명부신고정당의 경우 명부제출이 취하·각하된 때,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후보자는 명부등재가 말소된 때에는 즉시 그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통상엽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안 됨.

  ※ 통상엽서는 공직선거법 제142조에 의해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수가 정해진 엽서를 의미

6. 스페인

- 정당, 연합, 연정 및 후보자들은 시청이 선거벽보 또는 거리현수막의 설치를 위해

무료로 지정한 장소 외에 허가된 장소에만 선거벽보를 부착하거나 다른 형태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음(선거법 제55조제2항).

7. 스위스

- 거리 홍보를 위한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그 도로의 관할 주나 도로표지시행령[15] 등 연방규정에 따라야 함(1979.9.5 제정, 2017.1.15. 개정).[16]
  - 거리의 정치광고는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됨.
  -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정치광고는 허용되지 않음.

8. 캐나다

- 선거벽보의 공공장소 첩부 금지(선거법 제322조제2항)
  - 집주인 또는 분양아파트 대표는 주택 및 건물의 공용장소에 선거벽보의 첩부를 금지할 수 있음.
- 선거광고 시설물의 제거(선거법 제325조제2항제b호)
  - 간판, 벽보, 현수막에 의한 광고 게시가 대중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경우, 관계 당국의 직원은 이를 제거할 수 있음.

---

15) 도로표지시행령(Signalisationsverordnug, SSV 제95조)
https://www.admin.ch/opc/de/classified-compilation/19790235/index.html#id-13 (검색일 2019.8.9.)

16) Demokratie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규칙(Vorschriften für Wahlkämpfe und Abstimmungen)
https://www.ch.ch/de/demokratie/die-politischen-parteien/vorschriften-fur-die-werbung-von-politischen-parteien-in-der/(검색일 2019.8.9.)
https://www.admin.ch/opc/de/classified-compilation/19790235/index.html#id-13 (검색일 2019.8.9.)

9. 호 주

가. 인쇄물 등에 관한 제한·금지

- 선거와 관련한 인쇄물·선전물 등 홍보물(벽보, 전단지, 스티커, 공지, 팸플릿 등)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투표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정보공개 등의 제한을 둠(연방선거법 제321C조).
- 선거홍보물 등에 대하여 해당 내용을 승인한 사람 또는 단체(후보자, 정당 등)의 정보(성명 또는 단체명, 주소, 인쇄업자 명칭 등) 및 자금 출처, 배포범위 등을 기재하도록 함(연방선거법 제321D조).[17]

나. 시설물 등에 관한 제한·금지

- 연방선거법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별다른 규제가 없으므로 선거관련 시설물에 대해 옥외광고에 관한 일반법이 적용됨.
- 각 주별로 다른 옥외광고물 관련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Advertisements Local Law, Advertisements Subordinate Local Law)로 지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옥외광고 설치허가 및 불법 옥외광고물 규제 여부를 판단함.

※ 주별 사례

·뉴사우스웨일즈 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환경관리계획 64 광고 및 광고사인(The State Environmental Planning Policy No.64 for Advertising and Signage 64: SEPP)
⇒ 주 정부 산하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에서 담당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1999), 고속도로법(Highway Act, 1926), 주정부 실행지침(Operational Instruction)
⇒ 주 정부 산하 교통 및 사회기반시설 기획부(The Department of Planning Transport and Infrastructure: DPTI)에서 담당

·퀸즈랜드 주: 지속가능한 계획법(Sustainable Planning Ac, 2009), 도로광고 가이드(Roadside Advertising Guide)
⇒ 교통 및 도로부(The Department of Transport and Main Roads: DTMR)에서 담당

17) https://www.aec.gov.au/About_AEC/Publications/backgrounders/authorisation.htm (검색일 2019.7.30.)

- 규제내용[18)]
  - 선거용 옥외광고물의 경우 연방선거에서는 후보자 당 150개,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 당 50개까지 민간소유 주택 혹은 토지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
  - 사전에 브리즈번 시청에 선거용 옥외광고물 설치 장소 및 개수를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위반사항 발생 시, 1·2차 경고를 통해 위법을 최소화하고 벌금을 부과하기보다는 사전에 설치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2013년 지방 보궐선거에서 불법 옥외광고물을 규제하여 벌금 550호주달러를 부과(1차적으로 경고 이후 시정조치가 되지 않아 광고물이 설치된 토지의 소유주에게 벌금을 부과)
    - ·선거용 불법 옥외광고물이 설치 및 제작기준을 위반한 경우 사안에 따라 벌점 50점(점당 113.85호주달러)이 부과되기도 함.

18) 퀸즈랜드 주 브리즈번 시의 옥외광고 설치 허가 규정 및 절차에 근거함.
http://www.brisbane.qld.gov.au/laws-permits/laws-permits-businesses/advertising-signs (검색일 2019.8.27.)
http://www.brisbanetimes.com.au/queensland/election-crackdown-a-sign-of-the-times-20130806-2rbiy.html (검색일 2019.8.27.)

제4절
신문·방송광고 등 언론매체 관련 제한·금지[19]

1. 영 국

- 영국은 선거운동 자유주의 원칙하에 언론매체 이용은 주로 정당 중심으로 활용되며, 신문을 이용하여 정강 정책광고와 선거공약광고를 하고, 정당정치방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 지출로 보지 아니함.
- 선거·정치방송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대신 당시의 상황에 따른 관습법과 관례 및 기관들의 상식적인 합의에 의해 도출되는 의사결정을 주요 규제 수단으로 함.
- 국외로부터의 방송 제한(1983년 국민대표법 제92조)
  누구든지 의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정부선거에 투표를 하도록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해당 선거에 관련되는 사항 전파를 위하여 영국 외의 텔레비전 또는 기타의 무선방송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이용을 방조·교사·권고 또는 주선해서는 안 됨.
- 선거구 방송에 대한 규제(1983년 국민대표법 제93조)
  선거기간 중 방송에 있어서는 방송사 자체규정 또는 다른 방송사와 연합한 방송당국이 만들어 놓은 규정에 따라야 하고, 이 규정을 만들기 전에는 선거위원회가 발표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선거홍보물 기재사항(1983년 국민대표법 제110조)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을 이용한 선거광고를 하는 경우 발행인의 이름과 주소를 표지에 명시해야 함.
- 유료 정치방송광고 금지(커뮤니케이션법 제321조제2항)[20]

---

19) 스웨덴과 스위스는 선거운동 관련하여 신문 · 방송광고 등 언론매체에 관한 제한 · 금지사항을 선거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음.

광고비를 지불하는 TV, 라디오 등 방송을 이용한 정치광고는 금지됨.

2. 미 국

- 광고 및 문서·도화의 규제(연방선거운동법 제30120조)
  - 공표 또는 배포 책임자의 명의가 없는 정치적 성명서의 공표 또는 배포는 금지
  - 신문·잡지를 경영하는 자는 선거에 관한 광고요금을 통상적인 가격 이상으로 요구할 수 없음.
  - 또한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활자크기로 해야 하고, 다른 선거운동전달 내용과 구분되는 박스에 인쇄해야 하며, 인쇄내용과 배경 사이의 색대비가 적정하도록 하고 4초 동안 방송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방송 기회 동등 부여 등(연방선거운동법 제47편 제315조)
  - 공직에 입후보한 모든 후보자에게 방송국 사용에 대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함.
  - 방송시설 이용 비용은 예비선거일 이전 45일 동안, 본선거 이전 60일 동안의 기간 중 최저요금을 초과하지 못함.

3. 프랑스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광고금지(선거법 제52-1조)
  - 선거가 있는 달 첫째 날의 6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시청각 통신수단이나 출판을 통한 모든 상업적 광고 활용 금지
  - 총선거가 실시되어야 하는 달 첫째 날의 6개월 전부터 집단을 조직하거나 운영하기 위한 모든 광고 캠페인은 투표가 실시되는 지역에서 금지
  - 위반 시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90-1조).

---

20) Communications Act 2003. Section 321(2)

4. 독 일

- 선거광고, TV토론이나 후보자연설, 대담·토론회에 대한 선거법상 제한규정은 없음.
- 제한 또는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양태는 정당법, 선거법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여 규율하고 있지도 않음. 헌법, 행정법 및 형법 등의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의 선거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내용에 기초하여 제재가 가능함.
- 즉, 「정당법」에서 정당 및 후보자간의 공정한 기회제공이라는 원칙(정당법 제5조)만 준수하면 되며,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민법과 형법에 따라 처리됨.
- 지난 2009년 연방의회선거에서 독일 정당 NPD가 폴란드 등 동유럽 출신의 이민자들을 "Polen-Invasion"이라며 독일의 침입자로 묘사한 플랭카드가 「형법」 제130조제1항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철거를 명하였으며, 이러한 주의회 선거관리기관의 명령은 독일 「기본법」 제21조 및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었음.[21]

5. 일 본

가. 인터넷 등을 이용한 후보자의 성명 등을 표시한 유료광고 금지(공직선거법 제142조의6)

-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한 후보자 및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이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되는 광고를 인터넷 등을 통해 유료로

21)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2009.9.24. 사건번호 2 BvR 2179/09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SharedDocs/Entscheidungen/DE/2009/09/rk20090924_2bvr217909.html
(검색일 2019.9.25.)

배포되는 문서·도화에 게재하게 할 수 없음.

나. 신문·잡지 불법이용 등의 제한(공직선거법 제148조의2)

- 신문 또는 잡지의 편집 기타 경영을 담당하는 자는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 선거에 관한 보도나 논평을 게재할 수 없음.
-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 또는 잡지에 대한 편집 기타 경영상의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보도나 논평을 게재하거나 게재하게 할 수 없음.

다. 선거운동방송의 제한(공직선거법 제151조의5)

-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송시설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

라. 인사목적의 유료광고 금지(공직선거법 제152조)

- 누구든지 후보자 등 및 후원단체에 대하여 해당 선거구 내에 있는 자에게 인사목적의 광고를 유료로 신문·잡지·전단·인터넷 등에 게재하게 하거나 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해 방송하게 하는 것을 요구할 수 없음.

6. 스페인

- 공영방송매체 및 민영텔레비전방송국과 선거광고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선거법 제60조제1항).

  ※ 다만, 공영텔레비전·라디오방송에서 무료로 선거광고 시간을 배정받을 권리를 가짐(자세한 내용은 제6장 제4절 방송시설 이용 선거운동 스페인편, p.425 참조).

7. 스웨덴

- 선거법에 신문 및 방송시설, 온라인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내용이나 규제는 없음.
- 「언론자유법(Freedom of the Press Act, 1949)」, 「표현의 자유법(Freedom of Expression Act)」, 「라디오 및 텔레비전법(Radio and Television Act)」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어, 선거운동과 관련한 특별한 내용은 없음.[22)]
  -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으나 독립적인 미디어 조직인 언론노조(Swedish Union of Journalists, Svenska Journalistförbundet: SJF)에서 시작한 자율적인 규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 보도의 공정성, 사생활 존중, 취재원의 권리, 반론의 권리, 보도·논평 등의 편집 등에 관한 것을 규제내용으로 하고 있음.
  - 방송위원회(Swedish Broadcasting Commission, Granskningsnämnden för radio och TV: GRN)에서 모든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이「라디오 및 텔레비전법」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함.
  - 공영방송은 공평성, 정확성, 사생활 보호, 차별 금지에 관한 규제가 더 폭넓게 적용됨.

8. 스위스

-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한 정치광고는 허용되지 않음.
-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제외한 다른 미디어를 통한 정치광고는 허용됨.[23)]

---

22) OSCE. SWEDEN GENERAL ELECTIONS 9 September 2018 REPORT. p.7,8.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383934?download=true (검색일 2019.8.9.)

23) www.ch.ch/de/demokratie/die-politischen-parteien/vorschriften-fur-die-werbung-von-politischen-parteien-in-der/ (검색일 2019.8.9.)

9. 캐나다

- 선거광고의 방해 및 침해 금지(선거법 제325조제1항)
  - 누구든지 권한 있는 사람의 동의 없이 선거광고문을 대중에게 전송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침해할 수 없음.
- 캐나다 국외에서 방송금지(선거법 제330조)
  -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투표하거나 또는 투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않도록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로 선거기간 동안 선거에 관련된 사항을 방송하기 위하여 국외에 있는 방송국의 시설을 사용, 보조, 교사, 권고, 또는 알선하여서는 안 됨.
  - 누구든지 선거기간동안 캐나다 밖에서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광고를 방송해서는 안 됨.

10. 호 주

- 선거기간 중 선거와 관련된 방송을 하는 경우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에게 합리적인 방송 기회를 제공해야 함[방송법 Schedule 2-Part 2-3(2)].[24]

24) 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 Schedule 2-Part 2-3A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8C00375 (검색일 2019.6.14.)

제5절
집회 관련 제한·금지[25)]

1. 일 본

- 자동차 행렬 등의 금지(공직선거법 제140조)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자동차를 연이어 또는 대오를 조직하여 왕래하는 등 기세를 고조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연호행위 금지(공직선거법 제140조의2)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한 연호행위를 할 수 없음.
  - 다만, 연설회장 및 가두연설(연설 포함)에서 하는 경우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선박) 위에서 하는 것은 가능함.
    ※ 학교, 병원, 진료소, 기타 요양시설 근처에서는 평온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함.
- 타연설회 금지(공직선거법 제164조의3)
  -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개인연설회, 정당연설회 또는 정당등연설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명칭의 연설회도 개최할 수 없음.
    ※ 후보자 이외의 자가 2명 이상 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거나 후보자추천정당 이외의 자 또는 중의원명부제출정당 이외의 자가 2 이상의 후보자추천정당이나 2 이상의 중의원명부제출정당 등의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음.
- 야간 가두연설 금지 등(공직선거법 제164조의6)
  -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선거운동을 위한 가두연설을 할 수 없음.
    ※ 가두연설 시 동일 장소에 장시간 머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근접하는 선거의 연설회 등 제한(공직선거법 제165조의2)
  - 누구든지 2 이상의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 하나의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25)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집회 관련 내용은 제6장 제5절 집회 이용 선거운동, p.432 참조

다른 선거의 선거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 선거의 투표소를 폐쇄하는 시간까지 그 투표소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회(연설 포함)를 개최할 수 없음.

- 선거운동을 위한 가두연설 및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나 선박 위에서 하는 연호행위도 동일하게 제한됨.

- 특정 건물 및 시설에서의 연설 등 금지(공직선거 제166조)
  - 누구든지 국가·지방공공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공영주택 제외), 기차·전차·승합자동차·선박(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박 제외)이나 정차장, 철도지내, 병원·진료소 기타 요양시설에서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 및 연호행위를 할 수 없음.
    ※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나 선박 위에서는 가능
  - 다만, 국가·지방공공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에서 공직선거법 제161조(공영시설사용 개인연설회 등)에 따른 개인연설회, 정당연설회 또는 정당 등 연설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함.

2. 스페인

- 선거운동 관련 대중집회는 집회권 관련 법의 적용을 받으며, 선거위원회는 소집 사실이 통보된 집회에 대해 정부에 알려야 함(선거법 제54조).

3. 스위스

- 공개적인 장소에서 집회, 데모 등의 형태로 선거운동을 하려고 할 경우 관할 코뮌에 언제, 어디서 허용되는 지에 대해 문의해야 함.[26]

26) https:www.ch.ch/de/demokratie/die-politischen-parteien/vorschriften-fur-die-werbung-von-politischen-parteien-in-der/ (검색일 2019.8.9.)

- 공개된 장소의 선거운동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 많음.

4. 캐나다

- 선거집회 방해 금지(선거법 제480조)
  - 누구든지 선거소집령이 발급된 때부터 선거일 다음날까지 선거를 위한 공적인 집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저지하지 못함. 또한 이와 같은 목적으로 다른 사람과 공모할 수 없음.

5. 호 주

- 집회에서의 무질서한 행위 금지(연방선거법 제347조)
  - 선거소집령 발부일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중 선거와 관련된 모든 합법적이고 공적인 정치집회에서 그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무질서하게 행동한 자는 처벌됨.
  - 공적 집회의 주관 책임자는 경찰을 통해 집회 방해자를 퇴거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경찰은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집회의 질서를 방해한 사람에게는 5 페널티 유닛의 벌금이 부과됨.
  - 퇴거 조치 이후 다시 집회를 방해할 경우 6개월의 징역 또는 10 페널티 유닛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처벌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음.

제6절
여론조사 결과공표와 출구조사 제한·금지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객관성, 여론조사결과 공표 등에 대해 국가마다 다양하게 대처하고 있음.
- 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조사기구들이 연합하여 별도의 여론조사 관리기구를 두는 경우(미국)
- 언론사 또는 여론조사기관이 자체여론조사규정을 두고 그 규정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영국, 일본)
- 여론조사가 선거권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준다는 전제하에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을 별도 제정한 경우(프랑스)
- 여론조사와 관련한 법률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약과 특별규정을 통해 여론조사와 결과공표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경우(독일) 등이 있음.

❍ 이 중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Blackout period)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그 나라의 입법당시 시대적 상황, 선거문화 및 국민의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는데,

❍ 우리나라와 같이 선거일 전 일정기간 여론조사결과 공표를 제한하는 경우(프랑스)와 제한하지 않는 경우(미국, 영국, 독일, 일본)로 나눌 수 있음.

❍ 스웨덴과 호주는 선거법에 여론조사 및 출구조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1. 영 국

-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선거 당일 기준 하루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사 및 여론조사기관은 실제적으로 찾기 어렵고, 출구조사 결과 역시 모든 투표구에서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발표되지 않음.
- 출구조사 공표 금지(1983년 국민대표법 제66A조)
  - 누구든지 투표가 종료되기 전 선거인의 투표내용에 대해 공표할 수 없음.
  - 위반 시 5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함.

2. 미 국

- 여론조사 결과 공표
  - 지지율 추이 변화조사(Tracking Polls)보도는 선거 당일까지 매일 밤 등록된 선거권자들과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여론조사결과를 보도[27)]

    ※ 지지율 추이 변화조사 결과는 매일매일 측정된 지지율을 의미
- 출구조사 제한·금지[28)]
  - 몬태나 주: 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feet 이내
  - 알래스카: 200feet 이내의 구역에서 투표전후를 불문하고 후보자에 대한 의향 또는 투표결과에 관한 정보요구 및 음식 등 가치 있는 물품 배포 금지

참조 7-3 미국 출구조사 거리제한 판례 동향[29)]

연방차원에서 출구조사에 관한 법적 규제가 없으므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없으나, 연방항소법원에서 300feet(약 91m) 이내에서 출구조사를 금지한 워싱턴 주법에 대해 1988년 위헌판결을 내린 이후 출구조사 관련 거리제한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고 있음.

<위헌판결 이유>

출구조사는 수정 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되는 것이며, 출구조사 자체가 선거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기에 언론의 뉴스 취재활동에 부담을 주는 거리 제한은 위헌적임. 단, 최소한의 제한은 선거의 평온을 위해 가능함(25feet 거리제한에 대해서는 합헌 판결을 내림).

- (1988년) 워싱턴 주법: 300feet 이내 출구조사 금지 위헌
- (1988년) 와이오밍 주법: 300feet 이내 출구조사 금지 위헌
- (1988년) 조지아 주법: 250feet 이내 출구조사 금지 위헌 단, 25feet 이내 금지는 합헌
- (1988년) 몬타나 주법: 200feet 이내 출구조사 금지 위헌
- (1988년) 플로리다 주법: 150feet 이내 출구조사 금지 위헌
- (1988년) 미네소타 주법: 100feet 이내 출구조사 금지 위헌
- (2006년) 플로리다 주법: 100feet 이내 출구조사 금지 위헌
- (2006년) 오하이오 주법: 100feet 이내 출구조사 금지 위헌
- (2006년) 네바다 주법: 100feet 이내 출구조사 금지 위헌

---

27) Rasmussen Reports. ‘Daily Presidential Tracking Poll.’ http://www.rasmussenreports.com/public_content/politics/trump_administration/prez_track_may10 (검색일 2019.7.22.)

28) NASS. ‘State Laws on Electioneering Boundaries.’ https://www.nass.org/resources/2018-election-information/electioneering-boundaries (검색일 2019.7.22.)

29) Reporters Committee. ‘2018 Election Legal Guide - Exit Polling.’ https://www.rcfp.org/election_legal_guide (검색일 2019.10.7.)

3. 프랑스

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규제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표가 선거권자의 투표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선거운동기간중의 여론조사의 공표금지와 여론조사의 실시를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1977년 7월 19일 법률 77-808호)」을 제정해 여론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음.

  ※ 여론조사위원회 관련 내용은 제1장 제3절 2. 라. 선거여론조사 프랑스편, p.143 참조

- 2002. 2. 19. 개정으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기존 일주일에서 2일로 단축

나. 선거결과 공표 금지(선거법 제52-2조)

- 총선거의 경우 프랑스 본토에서는 본토의 최후의 투표소의 투표가 종료되기 전까지, 해외 도에서는 관계 각 도의 최후의 투표소의 투표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결과를 일반인에게 공표 금지
-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선거구의 최후의 투표소의 투표가 종료되기 전까지 선거결과의 공표가 금지
- 위반 시 75,000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90-1조)

4. 독 일

- 1966년부터 ARD와 ZDF의 2대 공영 TV사들은 투표마감시각인 6시에 선거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사회과학적 기법을 사용
  - 투표소 출구에서의 여론조사, 실제 투표구의 투표결과, 선거일 전 1주일동안 행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한 측면조사를 토대로 예측함.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특히 선거일 전 토요일까지 전화로 설문조사 가능)로 투표 마감 후 오후 7시쯤 상세한 선거결과 보도

- 방송사 간 자율협약에 의해 출구조사가 실시되고, 투표 개시 이후에는 투표 종료 전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함.
  - 선거 여론조사 중 선거 당일 실시되는 출구조사의 결과 발표에 대한 규제만이 규정되어 있으며, 투표 종료 전까지는 출구조사의 결과를 발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연방선거법 제32조제2항」).
  - 출구조사 결과발표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로서 과태료가 부과됨(연방선거법 제49a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1장 제3절 2. 선거의 공정성 보장 라. 선거여론조사 독일편, p. 145 참조

5. 일 본

- 인기투표의 공표 금지(공직선거법 제138조의3)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공직에 취임할 자를 예상하는 인기투표의 경과 또는 결과를 공표할 수 없음.

    ※ "공직에 취임할 자"란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와 관련된 공직에 취임할 자 또는 그 수를,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와 관련된 공직에 취임할 자 또는 그 수 및 공직에 취임할 순위를 의미
- 출구조사 제한
  - 출구조사를 제한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나, 인기투표의 공표금지 조항에 따라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출구조사의 중간 집계상황을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됨.
  - 각 방송사는 투표종료 직후 출구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각 후보자의 예측 득표율, 당락여부, 의석수 등을 방송함.

    ※ 1989년 TBS에서 출구조사를 도입[30]한 것을 시작으로 1992년 참의원선거에서 NTV와 후지TV가 전국적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했음.[31]

---

30) https://ja.wikipedia.org/wiki/%E5%87%BA%E5%8F%A3%E8%AA%BF%E6%9F%BB (검색일 2019.6.25.)

31) 1996. 행동계량학 제23권 제1호, p.21.
https://www.jstage.jst.go.jp/article/jbhmk1974/23/1/23_1_20/_pdf (검색일 2019.6.25.)

6. 스페인

- 모든 선거에서 선거소집일로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선거 여론조사 공표규정을 지켜야 함(선거법 제69조).
- 여론조사 시 세부내역 첨부 및 의무 기재 사항
  -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실시를 의뢰한 공·사적 기관 또는 단체나 개인의 명칭 및 주소
- 여론조사의 기술적 세부사항, 표본추출방법, 표본의 크기, 표본의 오차범위, 대표성, 피조사자 선택 절차 및 가두조사 실시일자 등과 같은 상세내역
  - 설문의 전문 및 미응답자의 수
- 중앙선거위원회는 공개된 여론조사 자료 및 정보가 의도적으로 위조·은폐 또는 왜곡되지 않도록 하며, 선거 여론조사 공표와 관련된 세부사항이 올바르게 이행되고 여론조사 발표 금지기간이 준수되는지 감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 및 시정요청을 할 수 있음.
- 선거일 5일 전부터는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및 배포를 금지함.
-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선거법을 위반한 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 및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직업·직무·산업 또는 상업 관련 특별자격정지형에 처함(선거법 제145조).

7. 스웨덴

- 선거법에 여론조사 및 출구조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언론들이 자체적으로 투표마감 전에 출구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음.[32][33]

---

32) ARTICLE 19 Global Campaign for free Expression. 2003. *Comparative Study of Laws an Regulations Restricting the Publication of Electoral Opinion Polls*.
https://www.article19.org › pdfs › opinion-polls-paper (검색일 2019.8.29.)

33) T. Bale. 2002. ‘Restricting the Broadcast and Publication of Pre-Election and Exit Polls: Some Selected

8. 스위스

-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출구조사에 관해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의 규제는 없음.
- 언론인들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관한 기준을 설정함.
  - 「스위스 인터뷰 기관 공동 상표 사용에 관한 규범」[34]의 제2별첨 강령인 「투표 이전 보도되는 선거 및 투표에 관한 여론조사에 관한 강령」제5조에 따르면 선거일 또는 선거일 10일 이전에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35]

9. 캐나다

- 누구든지 선거일에는 투표마감시각 전에 대중에게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거나, 전달하도록 해서는 안 됨(선거법 제328조).

  ※ 당초 선거일 전날 정오부터 투표마감 시까지 여론조사결과공표를 금지하였으나 1998년 위헌판결 받아, 2014년 캐나다 정부는 기술적 이유로 인해 연방선거법 제329조 폐지

10. 호 주

- 선거법에서는 여론조사 및 출구조사와 관련한 제한·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Examples.' in Representation. Vol. 39, No.1, P.19.
https://www.academia.edu/2686299/Restricting_the_broadcast_and_publication_of_pre_election_and_exit_polls_some_selected_examples (검색일 2019.8.29.)

34) Règlement sur l'utilisation de la marque collective asms swiss interview institutue® vsms-asms.ch/files/8815/5971/9684/1_Marque_collective_asms_reglement_mai_2019.pdf (검색일 2019.9.26.)

35) Directive pour la réalisation de sondages portant sur des élections et votations et destinés à être publiés avant les scrutins
https://www.vsms-asms.ch/files/7013/6758/9761/3_Annexe_II_Elections_et_votations_octobre_2009.pdf (검색일 2019.9.26.)

- 과거 선거일 출구조사가 실제 선거 결과와 크게 달랐고, 공식적인 선거 결과도 금방 발표되기 때문에 선거일 출구조사는 거의 하지 않음.[36]
- 다만, 빅토리아 주 「선거법(Electoral Act, 2002)」 제155조에서 투표시간 동안 출구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함.

- 방송사는 선거일 전 수요일 정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거운동 제한기간(black out period)을 준수해야 함[방송법 Schedule 2. Part 2-3(2)].

36) 선거여론조사 공포에 관한 법과 규제에 관한 비교연구(Laws and regulations restriction the publication of electoral opinion polls). 2003. https://www.article19.org/data/files/pdfs/publications/opinion-polls-paper.pdf (검색일 2019.9.30.)

<표 7-3> 각국의 여론조사 결과공표 제한 기간

구분	국가명
선거일 전일부터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캐나다, 차드, 콜롬비아, 프랑스, 기니비사우, 이라크, 라트비아, 리비아, 몰타, 미크로네시아, 노르웨이, 팔라우, 폴란드, 포르투갈, 사모아, 산마리노, 슬로바키아
선거일 전 2일~3일부터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호주, 부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코스타리카, 체코공화국, 조지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루마니아, 레위니옹, 남아프리카공화국, 동티모르,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선거일 전 4일~5일부터	알바니아, 벨라루스, 캄보디아, 이집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마케도니아, 몰도바, 러시아, 스페인, 타지키스탄
선거일 전 6일~7일부터	볼리비아, 키프로스, 피지, 한국, 몽골, 페루, 터키, 베네수엘라
선거일 전 8일~9일부터	아르헨티나, 가봉
선거일 전 10일 이상	카보베르데, 칠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리스,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탈리아, 레바논, 룩셈부르크,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파나마, 파라과이, 싱가포르, 대만, 튀니지

출처: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ME062 (검색일 2019.5.28.)

<표 7-4> 각국의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기간 변동 현황

국가명	1996	2002	2012	2017
아르헨티나	0	1	15	2
아제르바이잔	-	-	0	1
볼리비아	2	2	-	30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0	1	2
브라질	0	0	2	7
불가리아	1	7	0	1
캐나다	3	2	3	1
콜럼비아	7	1	7	7
코스타리카	-	2	7	3
키프로스	0	7	7	7
체코공화국	-	7	3	3
에콰도르	-	-	15	8
엘살바도르	-	-	1	15
프랑스	7	1	0	2
그리스	0	15	15	1
조지아	-	0	-	2
온두라스	-	0	45	30
인 도	0	0	0	2
인도네시아	21	0	0	7
이스라엘	0	1	0	5
이탈리아	28	15	15	14
카자흐스탄	1	0	0	5
쿠웨이트	-	-	3	0
라트비아	0	0	0	1
룩셈부르크	30	30	-	7
마케도니아	0	5	5	1
멕시코	7	7	3	4
네 팔	0	1	0	0
노르웨이	0	0	1	1
니카라과	0	0	-	3
파나마	-	1	-	20

국가명	1996	2002	2012	2017
파키스탄	-	0	0	1
팔레스타인	-	-	0	1
페 루	15	7	7	7
폴란드	12	1	1	1
포르투갈	7	1	1	1
루마니아	-	2	7	2
러시아	2	0	5	6
세르비아	-	-	2	1
싱가포르	-	-	1	14
스리랑카	-	-	7	0
슬로바키아	-	14	0	14
슬로베니아	1	7	0	1
대 만	0	0	10	10
트리니다드토바고	-	-	0	1
우크라이나	0	0	15	1
우루과이	15	7	2	4
베네수엘라	15	2	7	7

※ -: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해

출처: Esomar. Wapor. 2017. 'Freedom to Conduct Opinion Polls' https://www.esomar.org/uploads/public/library/news/ESOMAR-WAPOR_Freedom-to-Conduct-Opinion-Polls.pdf (검색일 2019.10.1.)

<표 7-5> OECD국가의 여론조사 결과공표 제한

국가명	제한 여부	근거규정
프랑스	2002년 법개정을 통해 선거일 바로 전날과 선거당일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 및 보도 금지 ※ 2002년 법 개정 전에는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가 선거 1주일 전부터 금지되어 있었는데 2001년 이러한 규정이 『유럽인권협약』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음.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제11조
스페인	선거일 전 5일부터는 어떤 방송매체를 통해서도 선거여론조사의 고시 또는 방송 금지	선거법 제69조
스위스	선거일 전 10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법적 규제는 아니나 언론인들 자체적인 규정)	투표 이전 보도되는 선거 및 투표에 관한 여론조사에 관한 강령 제5조
캐나다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규제는 없음.	-
호 주	선거법상 규제는 없음. 방송사는 선거일 전 수요일 정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간까지 선거운동 제한 기간을 준수해야 함.	방송법 schedule 2. part 2-3(2)
체 코	의회 선거일 3일 전부터 투표 종료 시까지 모든 형태의 사전선거 또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선거법 제16조제7항
칠 레	선거일 15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선거법 제37조
그리스	선거 15일 전부터 투표 마감시까지 투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해당 기간 동안 미디어, 정당, 후보자는 여론, 정당, 직위, 인물 또는 경제·사회 주제에 대해 진행된 모든 형태의 여론조사 결과 및 선호도 공표 금지 선거 2주전 정당 의뢰로 진행된 여론조사는 내부용도로만 사용 가능	선거법 제49조제1,3항
헝가리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규제는 없으나, 출구조사는 선거 당일 공표 금지	선거절차법 제150조
이스라엘	선거 전날부터 선거 종료 시까지 신규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선거 전날부터 선거 종료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기간 이전에 발표된 여론조사결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어야 함.	선거운동법 제16조 제B,H항
이탈리아	선거일 15일 전부터 선거결과에 대한 여론조사 공표 금지 ※ 해당기간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라 할지라도 공표 금지	선거미디어법 제8조
라트비아	선거일 22:00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사전선거운동법 (의회및유럽의회) 제14조
룩셈부르크	선거일 1개월 전부터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 관련자료 배포나 논평 금지	선거법 제97조
멕시코	선거일 3일 전부터 투표 마감시까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연방선거법 제32,213조
뉴질랜드	• 선거일 이전에 선거권자의 투표선택에 대한 여론조사 금지 • 선거일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금지	선거법 제197조제1항d호
폴란드	선거일 24시간 전부터 투표 마감시까지 여론조사 금지	선거법 제115조

국가명	제한 여부	근거규정
포르투갈	선거일 전날과 선거일 투표 마감시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선거법 제53,141조 여론조사법 제7조, 제10조제1항
슬로바키아	선거일 투표 마감시까지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의회선거법 제24조제14항
슬로베니아	선거일 전 7일부터는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2011.3.24.)	선거운동법 제5조제2항
터 키	선거일 18:00까지 라디오 및 방송사는 선거 관련 뉴스나 결과예측, 논평 금지 (라디오)18:00부터 21:00까지 최고선거위원회에서 제공한 뉴스 및 발표 방송 가능 21:00부터 모든 방송 가능	선거기본법 제80조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네덜란드는 여론조사결과 관련 공표 금지 규정이 없음.

출처: WAPOR. 'The freedom to publish opinion poll results(A worldwide update of 2012).' p.7 Table.2 https://wapor.org/wp-content/uploads/WAPOR_FTP_2012.pdf (검색일 2019.7.29.)

<표 7-6> OECD국가의 출구조사 규제 현황

국가명	제한 여부	관련규정
영 국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1983년 국민대표법 제66A조
미 국	• 연방차원에서 출구조사에 관한 법적 규제 없으나, 주별로 출구조사 거리제한 규정이 있음. • 위스콘신 주: 투표소 입장부터 투표를 마칠 때까지의 투표과정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출구조사를 투표가 실시되는 건물 현관 밖에서 하도록 하고 투표소 출입 등을 방해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1988년 연방항소법원에서 300피트 이내에서 출구조사를 금지한 워싱턴 주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	위스콘신 주법 제5조제35항제5호[37]
프랑스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선거법 제52-2조
독 일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선거법 제32조
일 본	출구조사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인기투표의 공표 금지조항에 따라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출구조사 결과 공개는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됨.	공직선거법 제138조의3
스페인	선거일 5일 전부터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선거법 제69조
스웨덴[38]	언론들이 자체적으로 투표마감 전에 출구조사 결과 공표하지 않음	-
스위스	언론들이 자체적으로 투표마감 전에 출구조사 결과 공표하지 않음	-
캐나다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선거법 제328조
호 주	법적 제재 규정은 없으나 출구조사가 거의 실시되지 않음 (문제가 많았던 출구조사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경험과 공식선거결과 발표가 빨라졌기 때문)	-
체 코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선거법 제16조제7항
칠 레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선거법 제37조
그리스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선거법 제49조제2항
헝가리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선거절차법 제150조
이탈리아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 출구조사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여론조사의 공표 금지조항에 따라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출구조사 결과 공개는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됨.	선거미디어법 제8조
라트비아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사전선거운동법 (의회및유럽의회) 제14조
리투아니아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선거법 제85조제2항
룩셈부르크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선거법 제97조
멕시코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연방선거법 제213조
노르웨이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선거법 제9-9조

국가명	제한 여부	관련규정
폴란드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선거법 제115조
포르투갈	출구조사 결과는 여론에 공표되지 않음 자료 수집만을 위해 가능 투표소 내에서 조사 금지	여론조사법 제11조
슬로바키아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의회선거법 제24조제14항
슬로베니아	투표마감 전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 선거일 전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법 제5조제2항
터 키	투표마감 전에 출구조사 결과 공포 금지	선거기본법 제80조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네덜란드는 출구조사 결과 공표에 관한 규정이 없음(덴마크[39], 아일랜드[40], 이스라엘[41]은 개표 집계 전에도 계속 발표 가능함).

※ 이외 투표마감 전에 출구조사 결과 공표 금지 국가: 키프로스, 크로아티아, 케냐, 모로코, 마케도니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인도, 필리핀

출처: ARTICLE 19 Global Campaign for free Expression. 2003. '*Comparative Study of Laws and Regulations Restricting the Publication of Electoral Opinion Polls*'
http://www.article19.org/pdfs/publications/opinion-polls-paper.pdf (검색일 2019.5.16.)

37) 위스콘신 선거법
http://elections.state.wi.us/docview.asp?docid=2474&locid=47 (검색일 2019.5.16.)

38) T. Bale. 2002. 'Restricting the Broadcast and Publication of Pre-Election and Exit Polls: Some Selected Examples.' in Representation., Vol.39. No.1. p.19 (검색일 2019.5.16.)

39) THE LOCAL(dk) 'Danish election: New government for Denmark as left tops poll.'
https://www.thelocal.dk/20190606/live-denmark-awaits-results-of-general-election (검색일 2019.9.25.)

40) RTE News 'Full details of RTÉ Exit Poll published.'
https://www.rte.ie/news/election-2016/2016/0304/772641-rte-exit-poll-election-2016/ (검색일 2019.8.16.)

41) Haarets 'Israel Election 2019: Netanyahu Ties With Gantz, but Has Clear Path to Form Next Government.'
https://edition.cnn.com/middleeast/live-news/israel-election-results-2019-dle-intl/index.html
https://www.haaretz.com/israel-news/elections/netanyahu-elections-gantz-vote-updates-results-1.7105719 (검색일 2019.8.16.)

제7절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1. 영 국

- 후보자에 관한 허위진술 금지(1983년 국민대표법 제106조)
  - 선거 전 또는 선거 중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그 후보자의 개인적 성격 또는 품행에 관해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것은 위법행위(illegal practice)에 속함.
  - 그 진술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고, 그가 그렇게 믿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없는 한 위반됨.
  - 누구든지 선거 전 또는 선거 중 후보자의 당선을 추진 또는 주선할 목적으로 해당 선거에 입후보한 다른 후보자의 사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공표해서는 안 됨.

2. 미 국

- 사실관계의 위조 및 거짓 진술 금지(연방선거운동법 제18편 제1001조)
  - 누구든지 의도적으로 속임수를 이용하여 사실관계를 위조, 은폐 금지
  - 누구든지 의도적으로 거짓된 진술 금지
  - 거짓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면서 허위의 문서 작성 금지
  - 위반 시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함께 처벌 가능

3. 프랑스

- 새로운 위조물, 비방 또는 그 외의 기만적인 술책으로 1명 또는 다수의 선거인들로 하여금 기권하도록 만든 자는 1년의 징역과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97조).

4. 일 본

가. 선거에 관한 인터넷 등의 적정한 이용(공직선거법 제142조의7)

- 선거에 관하여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자는 후보자에 대하여 악질적인 비방·중상을 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인터넷 등의 적정한 이용에 힘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나.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35조)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신분·직업이나 경력, 소속 정당이나 단체, 관련 정당의 후보자추천이나 명부신고, 후보자나 후보자가 속한 정당 기타 단체의 추천 또는 지지에 관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공표할 수 없음.
- 또한,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 관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공표할 수 없으며, 당선되게 할 목적보다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 등을 공표할 경우 더욱 중하게 처벌하고 있음.

  ※ 당선 목적 허위사실 등 공표 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낙선 목적 허위사실 등 공표 시에는 4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5. 스페인

- 선거운동기간 및 선거일 전후로 후보자비방죄를 범할 경우 형법에 명시된 해당 구금형 중 가장 장기형에 처함(선거법 제148조).

6. 스위스

- 선거나 투표권 행사 방해에 관한 내용을 「형법(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에 규정[42)]
- 폭력이나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협으로 선거권이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함(형법 제280조).
  -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금지됨.
  - 타인을 인종적으로 차별하는 것도 금지됨.

7. 캐나다

- 허위사실 공표 금지(선거법 제91조)
  - 누구든지 선거기간 동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다음의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음.
    -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정당의 대표자와 정당과 관련된 자의 의회법 등 법규 위반, 위반에 대한 조사
    -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정당의 대표자와 정당과 관련된 자의 국적, 출생지, 학력, 경력 등
- 후보자의 사퇴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금지(선거법 제92조)

42) https://www.admin.ch/opc/de/classified-compilation/19370083/index.html#id-2-149 (검색일 2019.8.9.)

- 누구든지 의도적으로 후보자의 사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음.

8. 호 주

- 현혹 또는 기만적 공표 금지 등(연방선거법 제329조)
  - 선거소집령 발부 시부터 투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누구든지 투표와 관련해 선거인을 현혹 또는 기만할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물건을 인쇄·공표 또는 배포하거나 하도록 해서는 안 됨.
  - 이를 어긴 일반인은 1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 법인은 5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공표'에는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전화를 통한 공표가 포함됨.

<표 7-7> 각국의 선거 관련 허위사실에 대한 대응 현황

구분 국가명	대응 형태	중점사항	대응 내용
호 주	정부 테스크포스	외국으로부터의 허위정보 유포	• 2018년 7월, 외부로부터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정보 당국의 지속적인 경고 끝에 국내 선거에 사이버공격 탐지를 위해 내무부가 지휘하는 4개 부처 합동 테스크포스를 신설
브라질	정부 테스크포스 20개 법안 초안 플랫폼사업자 협약	선거 허위정보	• 2018년 1월, 연방 경찰은 10월에 있을 대선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작성하는 자들을 색출 및 처벌하겠다고 발표(트위터) • 2018년 5월, 의회는 선거를 앞두고 허위정보를 배포하는 사안을 불법화하는 법안 20여개의 초안을 제출. 그러나 의원들 사이에 허위뉴스 제작자, 유포자, 정보 제공자 가운데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음. • 정부는 페이스북, 구글과 '제3자에 의한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협약을 체결
캐나다	정부 테스크포스 미디어정보 해독능력 캠페인	미디어정보 해독능력 외국으로부터의 허위정보 유포	• 2019년 1월, 연방정부는 하반기 연방총선을 앞두고 허위정보 유포 감시 및 대응을 위해 외무부 신속대응프로토콜과 더불어 5명의 비정치인이 지휘하는 '선거사안 대응 프로토콜' 그룹을 신설하여 운영하기로 결정 • 연방정부는 IT기업의 투명한 허위정보 방지 및 광고정책을 다루는 법률 C-76을 근거로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들에게 선거철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 • 연방정부는 온라인상 허위정보에 대한 자국민들의 의식 재고를 위한 프로젝트에 7백만 불의 예산을 책정
덴마크	테스크포스, 미디어정보 해독능력 캠페인, 정부 조치계획	허위정보 및 미디어정보 해독능력	• 스웨덴과 허위정보 대응에 있어 공조 • 2017년, 정부는 오보 및 외국으로부터의 허위정보 유포 대응을 위해 외무부 산하에 테스크포스를 신설 • 정부는 허위정보 대응을 위해 스웨덴에서 제작한 미디어정보 해독능력 함양을 위한 유인물을 재제작하여 배포 중 • 2019 총선에 대한 외부개입 방지를 위한 정책에 경찰, 군 정보당국 역량 강화를 비롯해 각 언론사 및 정당과의 협력 강화 등을 포함.
프랑스	법률	선거 허위정보	• 2018년 11월 22일, 하원에서 '가짜 뉴스(fake news)'를 정의[43]하고 선거 운동기간 동안 언론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정보조작 대응에 관한 법(la lutte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이 통과됨. ※ 가짜뉴스란? 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부정확한 협의나 비방 또는 사실을 허위로 전달하는 보도(Inexact allegations or imputations, or news that falsely report facts, with the aim of changing the sincerity of a vote)." •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2차례 부결[44]됐던 바 있음.[45] • 2018년 12월 20일, 정보조작 대응에 관한 법이 프랑스 헌법평의회를 통과하여 23일부터 시행 • 법원의 상대적 판단에 따라 선거 전 허위정보 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음. • 해당 법안을 기반으로 정부는 선거 3개월 전부터 소셜미디어상의 허위정보를 제거하거나 웹사이트 자체를 차단할 수 있으며, 스폰서 콘텐츠의 재무정보 투명성을 강제할 수 있음. •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는 누가 스폰서 콘텐츠 또는 캠페인 광고를 어떤 가격에 구매했는지 공개해야 하며, 이는 기존 TV 및 라디오에 대해 존재하는 기준을 소셜미디어에 적용하는 미국의 정직한광고법(Honest Ads Legislation)과 유사함.

구분 국가명	대응 형태	중점사항	대응 내용
			• 해당 법안은 미디어 감시기구인 프랑스 고등방송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CSA)에 '해외 국가의 영향력을 받는 프랑스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을 법을 토대로 일방적으로 규제할 권한을 부여함.
독 일	법률	헤이트 스피치	• 2018년 1월, 온라인 플랫폼에서 '명백한 불법' 콘텐츠를 제거하기 위한 소셜 네트워크 법집행법[46](Netzwerkdurchsetzungsgesets; NetzDG)을 제정 • NetzDG는 2백만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콘텐츠를 24시간 내로 삭제하도록 강제하며 위반 시 최대 5천만€의 벌금을 부과 • '타이타닉'이란 월간지가 일부 모욕을 포함했다는 이유로 트위터 이용이 정지되었으며 NetzDG 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연방법무장관도 트위터 이용이 정지되는 등 NetzDG는 지나치게 엄격하여 과도할 정도로 많은 콘텐츠들을 차단한다는 비판이 있음. • 2018년 3월, 이러한 비판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잘못 삭제된 콘텐츠를 복구하거나 소셜미디어플랫폼 사업자가 NetzDG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심의하는 기구를 두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을 고려되고 있음.
인도네시아	정부 테스크포스, AI기반 웹사이트 탐지	선거 허위정보	• 2018년 1월, 중반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련 허위정보 단속을 위해 정보기관과 법 집행기관을 보조할 신설 국가사이버암호청(BSSN) 청장에 전 국가암호기구(LSN) 의장을 임명 • 소셜미디어 기업들 또한 가짜뉴스를 비롯한 가짜 콘텐츠와 더불어 포르노와 같은 불법콘텐츠 차단과 제거를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있음. • 2018년 1월 말, 정부는 '자동으로' 가짜 뉴스를 배포하는 웹사이트를 추적 및 보고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함. • 2018년 10월, 정부는 4월 총선을 대비하여 통신부 산하에 온라인 허위정보 탐지 및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70여명의 엔지니어로 구성된 소셜미디어 트래픽 감시팀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 2008호를 근거로 가짜 뉴스를 확산시키는 게시물들을 삭제하고 있음. • 정부는 국민들이 가짜 뉴스를 신고하거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함. • 9월, 통신부는 가짜 뉴스로 인한 오류 정정을 위한 주간 보고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함. • 4월,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허위정보 차단에 실패할 경우 페이스북을 폐쇄시키겠다고 경고 • 11월, 경찰 당국이 소셜미디어 상에 허위정보를 퍼뜨린 유포자 12명 이상을 체포함. 관련법에 의한 해당 행위의 최소 형량은 4년임.
네덜란드	대중인식 캠페인	미디어정보 해독능력	• 2019년 2월, 정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는 허위정보가 많이 퍼져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대중인식 캠페인을 시작함.
스웨덴	정부 당국, 유인물	외국으로부터의 허위정보 유포	• 다른 국가처럼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기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정부의 가짜 뉴스 대응 기조임. • 2018년 1월, 가을 총선을 앞두고 스테판 뢰프벤 스웨덴 총리는 외국으로부터의 허위정보 확산과 외부로부터의 영향력 확대 시도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발표. 정확한 출범 일자는 미정 • 시민안전청과 의회 국방위원회와 함께 해당 기구는 방해환경 하에서도 사실기반 정보전달 보장을 위해 허위정보 판별, 분석, 대응 업무에 주력할 것임.

구분 국가명	대응 형태	중점사항	대응 내용
			• 2018년 시민안전청은 긴급준비태세 유인물 내용에 허위정보 관련 부분을 수정하여 배포
영 국	의회 보고서, 정부 테스크포스	허위정보, 외국으로부터의 허위정보 유포	• 의회 산하 디지털, 문화, 미디어, 스포츠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가짜 뉴스'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거부와 현존하는 미디어 규제들을 온라인 뉴스에 적용하는 방안, 허위정보 확산경로 연구를 위한 워크그룹 구성 등을 제안 • 정부는 '국가 및 기타 행위자에 의한 허위정보 유포 대응'을 위한 국가통신안전청을 설립 • 그러나 세부적으로 매우 미흡하며 냉전시대 전략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미 국	연방법률, 플랫폼사업자 증언 주 미디어정보 해독 관련법, 위협 평가, 소송	정치광고, 외국으로부터의 허위정보 유포, 일반적인 오보, 미디어정보 해독능력 및 딥페이크 비디오	• 2017년 10월, 하원은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로 하여금 광고주가 누구인지, 얼마를 지불했는지,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으며 이는 TV 및 라디오에 적용되는 광고규제를 소셜미디어 사업자들에게도 적용하는 차원이었음. • 2017년 11월,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기업 대리인들은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에 출두하여 선거기간 중 허위정보 확산에 대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증언함. • 2018년 9월,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교육부 주관으로 학교에서의 미디어정보 해독능력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안은 최소 24개주에서 시행됐었던 또는 시행중인 미디어정보 해독능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폰서 콘텐츠와 뉴스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스탠포드대학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함. • 2018년 중반,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정보 당국에 2018년 말까지 딥페이크 기술로 벌어질 수 있는 잠재적인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보고서를 하원에 제출하라 요청. 의원들은 외부 세력이 딥페이크 비디오를 이용하여 잠재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음. • 2019년 1월, 가짜 소셜미디어 프로필 생성으로 수익을 올린 기업이 뉴욕주 법 위반 판결을 받음.
기 타	캄보디아	• 2018년 5월, 7월 선거를 앞두고 정부 주도고 담당기관이 허위정보 게시물을 차단하고 유포자에게 징역 2년 또는 1천불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법안 통과	
	이스라엘	• 2019년 3월, 4월 총선을 앞두고 무기명 인터넷광고 차단	
	이탈리아	• 2018년 1월, 3월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이 허위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 개설	
	말레이시아	• 2018년 4월,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허위정보 유포를 범죄로 규정	
	러시아	• 2018년, 연방 하원에서 주요 언론 및 방송사를 제외한 온라인 등 모든 미디어에서 인명, 보건,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 교통 및 사회기반, 에너지, 통신시설에 대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불분명한 정보를 차단하고 위반 시 5천불의 벌금과 재범시 징역 15일에 처하는 법안이 통과됨.	
	우간다	•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능력이 있는 국민에게 200우간다 실링(0.05$)의 세금을 부과 ※ 우간다는 2016년 선거에서 소셜미디어를 차단한 사례가 있음.	

출처: Poynter. 세계 허위정보 대응현황
https://www.poynter.org/ifcn/anti-misinformation-actions (검색일 2019.6.13.)

43) 프랑스 법령정보센터. 정보조작 대응에 관한 법(Diffusion de fausse nouvelle)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jsessionid=F0A0BCF9FDE3936D7C27902BF3059387.tplgfr21s_1

<표 7-8> OECD국가의 후보자 등 비방금지 관련 규정

구분 / 국가명	금지 내용	근거규정
영 국	후보자에 관한 허위진술 금지	1983년 국민대표법 제106조
미 국	사실관계의 위조 및 거짓 진술 금지	연방선거운동법 제1001조
프랑스	새로운 위조물, 비방 또는 그 외의 기만적인 술책으로 선거인	선거법 제97조
독 일	정치인에 대한 비방 및 중상 금지	형법 제188조
일 본	허위사실 공표 금지	공직선거법 제235조
스페인	후보자 비방금지	선거법 제148조
스위스	후보자 비방 금지, 허위사실 공표 금지	형법 제280조
캐나다	허위사실 공표 금지	선거법 제91,92조
호 주	현혹 또는 기만적 공표 금지	연방선거법 제329조
오스트리아	허위사실 공표 금지	형법 제264조
체 코	정당, 연합 또는 개인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금지	선거법 제16조제5항
덴마크	선거법상 관련 규정 없음. ※ 형법에서 누구든지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성별 등을 공개적으로 비하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형법 제266b조
그리스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선거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 유포 금지	선거법 제112조제2항
헝가리	허위사실 공표 금지	형법 제350조제1항d호
리투아니아	허위사실 공표 금지	선거법 제47조
멕시코	정당, 연합, 후보자는 타인을 중상하는 표현을 삼가야 함.	연방선거법 제247조제2항
뉴질랜드	허위사실 공표 금지	선거법 제118조
폴란드	허위사실 공표 금지	의회선거법 제91조

※ 스웨덴, 벨기에, 칠레,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는 후보자 등 비방 금지 관련 규정 없음.

?cidTexte=JORFTEXT000037847559&categorieLien=id (검색일 2019.6.13.)

44) 세계법령정보센터 연구보고서. 프랑스 입법절차 3.3~3.7 http://world.moleg.go.kr/web/wli/rsrchReprt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CTS_SEQ=39404&AST_SEQ=107&ETC=3 (검색일 2019.6.13.)

45) https://www.euronews.com/2018/11/22/france-passes-controversial-fake-news-law (검색일 2019.6.13.)

46) 한국법제연구원. '가짜뉴스에 대처하기 위한 소셜네트워크 법집행법' 최신외국법제정보. 2018. 제4호. 외국법제동향.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약식표기: 소셜네트워크 법집행법, 약자표기: NetzDG

제8절
기부행위 관련 제한·금지

1. 영 국

- 위법한 목적을 위한 금전제공(1983년 국민대표법 제112조)
  - 고의로 동법의 규정에 위반한 금전 제공, 동법에 허용된 최고한도액을 초과해서 비용을 지출하거나,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금전을 제공해서는 안 됨.
- 뇌물제공(1983년 국민대표법 제113조)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본인 스스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한 자는 뇌물제공죄로 처벌
    - ·어떤 투표자의 투표 또는 투표의 거부를 권유할 목적으로 투표자, 투표대리인, 기타의 자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직을 주선하는 행위
    - ·투표를 하였거나 투표하지 아니한 이유로 위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 ·특정인의 당선 또는 투표자의 투표를 획득하거나 이의 획득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권유할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직을 알선하는 행위
  - 선거 시 또는 선거 전에 자기 자신이 또는 그 대리인이 투표 또는 투표합의를 하거나, 투표하지 아니하거나, 투표하지 아니할 것을 합의한 것을 이유로 금전·선물·대금(貸金)·대가(代價)·직장 또는 직업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령·승낙 또는 계약을 해서는 안 됨.
  - 선거 후에 투표하였거나 투표하도록 또는 투표하지 아니하도록 타인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금전 또는 대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령하게 해서는 안 됨.
- 향 응(1983년 국민대표법 제114조)
  - 선거 전·중·후를 막론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목적 또는 사유로 육류·음료·향응·식량 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기 자신이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나 제공하게 한 자는 향응죄로 처벌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못하도록 부정하게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
·투표하였거나 투표하지 못하였거나 투표할 예정이었거나 또는 투표하지 아니할 예정이었다는 사유
- 부정하게 육류·음료·향응 또는 식량을 받았거나 받기로 한 선거인 또는 대리투표인도 향응죄로 처벌

2. 미 국

- 국립은행, 회사 또는 노동조합의 기부 금지(연방선거운동법 제30118조)
  -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립은행 또는 회사가 공직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되는 예비선거, 전당대회 또는 코커스와 관련한 기부 또는 지출 금지
- 정부계약자에 의한 기부 금지(연방선거운동법 제30119조)
  - 미국정부 또는 국가기관에 용역의 제공이나 물자 또는 장비 공급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정당, 위원회, 공직후보자 또는 정치적 목적이나 용도로 기부하거나 기부를 약속하는 행위 금지
- 외국인에 의한 기부 금지(연방선거운동법 제30121조)
  - 외국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방, 주,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금전 등을 기부 또는 후원하거나 약속하는 것은 금지
- 타인명의의 기부 금지(연방선거운동법 제30122조)
  -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기부하거나 알면서 자기명의가 사용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며, 타인 명의의 기부를 알면서 받아도 안 됨.
- 현금기부에 관한 제한(연방선거운동법 제30123조)
  - 연방공직선거 또는 후보자 추천 선거운동과 관련해 총 100달러를 초과한 현금 기부 금지(미화 또는 외화)
- 미성년자 기부 금지(연방선거운동법 제30126조)
  - 17세 이하의 자는 후보자 또는 정당위원회에 기부 또는 후원할 수 없음.
- 정치적 기부 금지(연방선거운동법 제18편 제603조)
  - 미국 정부 또는 그 부처나 기관의 공무원, 직원 또는 미국 재무성 자금으로부

터 그 역무에 대한 보수나 보상을 받는 자가 기부금을 다른 공무원, 직원이나 타인, 또는 의회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대의원 또는 보호령대표에게 제공하는 것은 해당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 제공자의 고용자이거나 고용권을 가진 자인 경우에는 위법임.

- 위반 시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함께 처벌 가능

3. 프랑스

- 기부금이나 선물, 특혜, 공무의 직무 또는 기타 특수한 이익을 받거나 약속하고 특정 선거인 또는 다수 선거인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도를 약속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또는 제3자에 의해 그들의 표를 얻거나 얻으려고 시도한 자, 동일한 방법으로 특정인 또는 다수인을 투표에서 기권하도록 하거나 하도록 시도한 자는 2년의 징역과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106조제1항).
- 선거인단이나 선거인단의 일원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어떠한 종류든 조직·단체에 기부금 혹은 선물을 제공하거나 선물을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또는 행정적 특혜를 부여한 자는 2년의 징역과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108조).

4. 독 일

- 연방선거법상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기부행위 관련 내용은 없으나, 정당은 「정당법」을 통해 기부금을 받을 수 있음.

  ※ 한편 「연방의회의원법」 제44b조에 따른 연방의회 의원에 관한 「연방의회 직무규정」 부칙1의 「연방의회 의원의 행위규율」 제4조에서 연방의회의원은 개인적인 기부를 받을 수 있음.[47]

47) https://www.bundestag.de/parlament/aufgaben/rechtsgrundlagen/go_btg/anlage1-245178 (검색일 2019.8.8.)

가. 기부금 및 회계보고 의무

- 정당은 기부금을 받을 권한이 있음. 1,000유로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음(정당법 제25조).
- 전체 정당의 회계보고서에는 연방, 주(州), 산하 지역이 각각 별도의 회계보고서를 작성해야 함(정당법 제24조제3항).
  - 주(州)와 그 산하 단체는 모든 기부금과 각 기부자, 기부자의 성명과 주소가 포함된 회계보고서를 빠짐없이 작성하고 회계보고서류를 보관해야 함.
  - 연방 단체는 연간 총 기부금과 각 기부자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이 회계보고서를 종합해야 함.
- 연간 전체금액이 10,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기부자의 이름과 주소 및 총 기부액을 회계보고서에 기재해야 함(정당법 제25조제3항).
  - 1회 50,000유로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연방하원의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연방하원의장은 기부자와 기부금액을 공시함.

나. 특정 기부의 금지

- 정당은 다음의 기부금을 수령할 수 없음(정당법 제25조제2항).
  - 공법적 사단, 의회 교섭단체 및 단체, 지역 대의원의 교섭단체 및 단체의 기부금
  - 정관, 설립행위, 기타 규약에 따라 실질적인 업무집행에 의하여 배타적, 직접적으로 공익, 자선, 종교 목적을 수행하는 정치 재단, 사단, 개인단체, 자산으로부터의 기부금(조세기본법[48] 제51~68조까지)
  - 한 정당에 전달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기부금을 받은 직업단체의 기부금
  - 공공기관의 직접 공적 지분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유권의 전부 혹은 일부분이 이 공공기관에 속하거나 공공기관에 의해 관리 혹은 경영되고 있는 기업의 기부금
  - 개별사례에서 500유로 이상이며 기부자를 파악할 수 없을 때 혹은 익명의 제3자로부터의 기부금을 단순 전달하는 것임을 인지할 수 있을 때의 기부금

48) Abgabenordnung(조세기본법).
http://www.gesetze-im-internet.de/ao_1977/ (검색일 2019.9.25.)

- 특정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기대하며 혹은 반대급부로 지급된 것이 분명한 기부금
- 정당이 지불하는 보수를 받는 제3자에 의하여 모금된 기부금으로써 그의 기부금이 모금된 기부금 가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다만, 다음의 경우는 금지되는 기부에서 제외됨.
  ·기본법에서 의미하는 독일인, 유럽연합의 시민권자 또는 기본법에서 의미하는 독일인 또는 유럽연합의 시민권자가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주(主)소재지가 유럽연합의 회원국인 기업의 직접 정당에 기부할 때
  ·독일연방공화국에 인접해 있고 친지가 국민으로 있는 출신국가로부터 소수민족의 정당에 기부할 때
  ·외국인이 1,000유로 이하를 기부할 때

다. 위법 기부금에 대한 처벌 규정

- 정당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부금을 받은 경우와 정당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연방하원의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위법하게 받은 금액의 3배의 청구권이 발생함. 이때, 이미 지출한 기부금도 산입됨(정당법 제31c조제1항).
- 정당법에 따라 회계보고서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정당법 제25조제3항) 공개하지 않은 금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함(정당법 제31c조제1항).
  - 연방하원의장은 행정행위를 통해 그 금액을 정당이 지급하도록 확정함.
- 정당의 자금이나 재산에 대하여 그 출처와 사용을 은폐하거나 공개적인 회계보고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정당법 제31d조제1항)
  - 연방하원의장에게 제출한 회계보고에 정당의 수입 또는 자산에 대해 부정확하게 보고하거나 부정확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한 자
  - 기부금 수령인으로서 기부금을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서에 기록하거나 장부에 기재하거나 또는 기재하도록 한 자
  - 제25조제1항에 반하여 기부금을 전달하지 않은 자
    =>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 다만, 정당을 위해 자수하거나 신고에 협조한 사람은 처벌되지 않음.

- 감사관 또는 감사관의 보조인으로서 회계보고서 감사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고 감사보고에서 중대한 사실을 숨기거나 내용이 부정확한 확인서를 발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으로 처벌됨(정당법 제31d조 2항).
  - 그 행위자가 보수의 대가로 또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함.

5. 일 본

가. 음식물의 제공금지(공직선거법 제139조)

-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음식물(차 및 통상적인 과자 제외)을 제공할 수 없음.
- 다만,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자 및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노무자에게 일정 범위 안에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

나. 특정 기부의 금지(공직선거법 제199조)

- 중의원의원 및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 해당 지방공공단체와 정부 도급 기타 특별한 이익을 수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해당 선거에 관해 기부할 수 없음.
- 회사 기타 법인이 융자를 받고 있는 경우에 융자를 받는 자는 그 융자에 대하여 중의원의원 및 참의원의원 선거에 관해서는 국가로부터,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관해서는 해당 지방공공단체로부터 이자보급금의 교부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해당 이자보급금의 교부일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기부할 수 없음.

  ※ 보급금: 특정 사업을 보조 또는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지급되는 금전

다. 후보자 등의 기부금지(공직선거법 제199조의2)

-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공직에 있는 자를 포함함. 이하 '후보자

등'이라 함)는 해당 선거구(선거구가 없는 때에는 선거가 실시되는 구역) 안에 있는 자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기부할 수 없음. 다만, 정당 기타 정치단체나 그 지부 또는 해당 후보자 등의 친족에게 경우와 해당 후보자 등이 오로지 정치상의 주의·시책을 보급하기 위해 행하는 강습회 기타 정치교육을 위한 집회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실비(식사 제외)를 보상하는 것은 가능함.

- 후보자 등 이외의 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 등의 명의로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할 수 없음.
- 누구든지 후보자 등에게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됨.
- 누구든지 해당 후보자 등 이외의 자에게 후보자 등의 명의로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기부를 권유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됨.

라. 후보자 등과 관계된 회사 등의 기부 금지(공직선거법 제199조의3)

- 후보자 등이 그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는 회사·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 등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그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할 수 없음. 다만, 정당 기타 정치단체나 그 지부에 대하여 기부하는 것은 가능함.

마. 후보자 등의 성명 등을 사용한 단체의 기부금지(공직선거법 제199조의4)

- 후보자 등의 성명이 표시되거나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명칭이 표시되어 있는 회사·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선거에 관하여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기부할 수 없음. 다만, 정당 기타 정치단체나 그 지부 또는 당해 후보자 등에 대하여 기부하는 것은 가능함.

바. 후원단체 등의 기부금지(공직선거법 제199조의5)

- 정당 기타 단체 또는 그 지부로서 특정 후보자 등의 정치상의 주의·시책을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자 등을 추천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그 정치활동 중 주된 것인 자(이하 "후원단체"라 함)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명목 여하를 불

문하고 기부할 수 없음.

- 다만, 해당 후원단체가 정당 기타 정치단체나 그 지부 또는 후보자 등에 대하여 기부를 하는 경우와 그 설립목적에 의한 행사 또는 사업에 관하여 기부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화환·헌화·부의·축의 기타 이와 유사한 종류는 제공할 수 없으며, 해당 선거마다 일정기간 내에 행해지는 것은 기부가 제한됨.

  ※ "일정 기간"이라 함은 중의원의원총선거에 있어서는 중의원의원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총선거기일까지 또는 중의원 해산일의 다음 날부터 총선거기일까지, 참의원의원통상선거에 있어서는 참의원의원의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통상선거기일까지를 의미

사. 기부의 권유 또는 요구 등의 금지(공직선거법 제200조)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199조(특정 기부의 금지) 규정에 따라 기부할 수 없는 자에게 기부를 권유·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음.

6. 스페인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선거법 제146조제1항제1호).
  -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기권을 유도하기 위해 보상, 선물 등에 대한 제공을 약속한 자
  - 선거인에게 폭력 또는 위협을 가하여 선거를 못하게 하거나 선거인의 의사에 반하여 투표하게 하고 누구에게 기표하였는지 밝히도록 강요하는 행위
  - 선거가 진행되거나 준비되는 곳에서 선거인, 후보자, 대리인, 공증인, 선거관리자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7. 스위스

- 기부행위 금지는 「형법(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에 규정하고 있음.[49]
- 특정인에게 투표하거나 국민투표, 국민발안을 하는 대가로 금품이나 선물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함(형법 제281조).

8. 캐나다

- 뇌물제공(Offering Bribe) 금지(선거법 제282조의7)
  - 누구든지 선거기간 동안 선거인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직·간접인 뇌물 제공 금지

    ※ 선거인이 위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뇌물을 받거나 받을 것에 동의할 경우에도 위법

9. 호 주

- 뇌물수수(연방선거법 제326조)
  - 누구든지 다음의 행위에 대해 물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되며, 그 행위에 영향을 주거나 미쳐서도 안 됨.
    - ·투표 및 입후보
    - ·후보자, 후보자 그룹 또는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 ·투표에 나타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거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위반 시 2년의 징역형이나 50 페널티 유닛의 벌금, 또는 함께 처벌 가능

49) https://www.admin.ch/opc/de/classified-compilation/19370083/index.html#id-2-149 (검색일 2019.8.9.)

- 정치적 자유 등 방해 금지(연방선거법 제327조제2항)
  - 누구든지 정당이나 정당의 주지부, 선거의 후보자 등에게 기부한 자에게 다음과 같은 차별을 해서는 안 됨.
    - ·조합이나 모임 등에 가입거부
    - ·업무를 못하게 하거나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협박이나 압력을 가하는 행위
    - ·손실이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
  - 위반 시 일반인의 경우 2년의 징역형이나 50 페널티 유닛의 벌금, 또는 함께 처벌 가능, 법인의 경우 200 페널티 유닛의 벌금 부과

<표 7-9> OECD국가의 선거운동 규제방법

국가명	주요 선거운동 규제방법	근거규정
영 국	• 자유주의 원칙 하에 비용규제, 정당중심의 선거운동 • 선거비용은 선거기간 중의 비용뿐만 아니라 선거기간 전이라도 후보(예정)자의 당선이나 지지를 위한 지출은 엄격히 제한함. • 유료 정치방송은 금지되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함.	1983년 국민대표법 제92,93,110조
미 국	• 선거운동방법과 기간에 제한이 없는 대신 선거비용과 수입의 제한으로 선거운동 전체를 규제함. • 광고·문서·도화 배포 등에 책임자의 명의 및 자금출처 공개가 있어야 함. • 선거운동에 대해 연방법에서는 선거운동의 기부에 대한 제한, 선거에 관한 자금의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외에는 각 주가 정하는 주 법에 의해 규제됨(자유주의).	연방선거운동법 제30120조
독 일	• 선거비용은 법률상 규제는 없으나 정당 간 협정에 의하여 선거비용 지출을 자율적으로 규제(자유주의) • 투표시간 중 투표소 내부와 입구에서 음향, 문서, 화보 등을 통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거운동행위 금지	연방선거법 제32조
프랑스	• 약한 규제주의, 비용규제 • 선거실시 예정인 달의 3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신문, TV 등을 통한 상업광고 금지 • 선거실시 예정인 달의 3개월 전부터는 공식게시판이외의 장소에는 개인용포스터 게시를 금하며, 법에 규정된 벽보·전단 홍보물외의 선거선전 출판물은 금지	선거법 제52-1조
일 본	• 특정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개별적 규제주의 • 호별방문금지, 서명운동 금지, 인기투표 공표금지, 연호행위금지, 자동차위에서 선거운동 금지, 이사장 금지, 타연설회 금지, 야간가두연설 금지(오후 8시까지) 등 • 선거운동용 자동차·선박 등의 사용제한, 신문·잡자의 불법이용제한, 선거운동방송의 제한 등	공직선거법 제3장
스페인	• 정치·사회적 다원성의 보장 • 선거운동기간의 제한 • 인쇄물, 시설물 및 선거홍보광고 시간에 대한 규제가 존재함.	선거법 제60조
스웨덴	• 선거운동에 관한 제한·금지규정 없음.	-
스위스	• 선거운동에 관한 제한·금지규정 없음.	-
캐나다	• 캐나다정부의 송신망을 사용한 선거광고 금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제한, 선거광고의 방해 및 침해 금지, 선거결과 조기 전송금지, 캐나다 국외에서 방송금지, 외국인의 선거관여 금지, 외국인 기부금 사용 금지, 선거집회 방해 금지 등	선거법 제330,480조
호 주	• 집회에서 무질서한 행위 금지	연방선거법 제347조
오스트리아[50]	• 집회 및 결사, 표현의 자유가 있으나 공공집회 개최 48시간 전에 당국에 통보 • 금지법(Verbotsgesetz: Prohibition act)을 위반하는 공개 성명서를 작성하거나 행위를 할 수 없음.	집회법 제2조제1항
벨기에	• 상업용 광고판 및 포스터 사용 금지 • 4m²를 초과하는 비상업용 포스터 사용금지 • 유료방송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라디오, TV 및 극장의 상업광고 이용 등) • 선물(인쇄물을 제외한 모든 물건 포함) 제공 금지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선거비용제한법 제5조

국가명	주요 선거운동 규제방법	근거규정
체 코	• 선거광고 광고주체 표시의무, 타 정당 또는 후보자 비방 금지 • 여론조사결과 사용에 대한 제한 • 라디오·TV 등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16일 전부터 48시간 전까지로 제한 • 선거구 및 정당별 선거운동 포스터 부착을 위한 장소 제한	선거법 제16조제4-8항
칠 레	• TV 선거광고 시간제한, 신문광고 및 라디오는 자유로운 계약이 가능하나 선거별 광고비용 책정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함. • 극장 등 시청각 선전물 방영금지장소 제한 • 선전물 크기 제한 •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여론조사결과 발표 가능기간 제한	선거법 제31,32,36,37조
덴마크	• 투표소 선거운동 금지 이외에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제한 없음.	선거법 제50조, 제61조제8항, 제107조
에스토니아	• 후보자, 정당 또는 로고나 고유마크 등을 빌딩, 공공시설, 대중교통 내외부 등에 홍보하는 등의 옥외 광고는 선거운동 기간 중 금지	의회선거법 제51조
핀란드[51]	•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이루어지나, 표현의 자유법, 집회법, 기금모금법, 도로교통법 등과 같은 일반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사적영역에서의 선거운동은 토지 소유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집회시에는 5일 이전에 경찰에 알려야 하고, 도로광고는 도로안전법상 안전규정을 준수해야 함. • 공공기관, 방송기관은 모든 정당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함.	집회법 제13,14조 도로교통법 제52조 정당법 제10조
그리스	• 옥외광고, 선전물 크기, 부착 장소에 대한 제한규정 • TV 및 라디오 방송국의 중립의무 •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위치와 관계없이 3개소 이상 개설 불가 • 후보자의 TV 및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출연 및 토론 횟수 제한 • 확성기를 사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선거법 제44~48조
헝가리	• 개인 소유지 및 건물, 관공서, 문화유산, 자연보호 지정 구역에 선거벽보를 첩부할 수 없으며, 다른 후보자 벽보를 제거하거나 가리지 않아야 함. • 관공서에서 공공집회 금지	선거절차법 제144,145조
아이슬란드	• 투표소 선거운동 금지 이외에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제한 없음. • 투표소 등 투표시설에서 연설하거나, 정치적 주장이 드러나는 연설문, 광고판 등을 노출하는 행위 금지 • 투표시간 중 정당의 휘장, 기호 등 정당을 식별하는 표기를 가진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확성기를 사용한 선전이 금지됨.	선거법 제117조
아일랜드	• 선거 또는 후보자 홍보를 목적으로 한 공고, 벽보, 포스터, 각종 문서 등은 출력·유통 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해야 함. • 포스터와 서면광고의 경우 각각 쓰레기처리에 관한 법과 선거법에 따른 지출비용 제한 세부규정에 따라야 함. • 투표 개시 전후 30분간 투표소 50m 이내 벽보 게시 금지 ※ 이외 선거운동 관련 특별한 제한사항 없음.[52]	선거법(1992) 제140조 제147조제2항 쓰레기처리에 관한법 제19조

50) OSCE/ODIHR Election Assessment Mission Final Report. REPUBLIC OF AUSTRIA EARLY PARLIAMENTARY ELECTIONS 2017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austria/370866?download=true (검색일 2019.8.12.)

국가명	주요 선거운동 규제방법	근거규정
이스라엘	• 공무원 및 군인의 선거운동 참여 금지, 정부 또는 공기업 소유 시설물, 정부나 공기업이 경영에 관여하거나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동산 또는 부동산 사용 금지 • 연극, 영화, 예술 관련 사업을 통한 선거운동 금지 • 언론을 통한 선거운동 시 홍보물 규격 제한 • 타 정당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형태의 선거운동 금지 • 선박 및 항공기 동원 금지 • 병원, 선박, 감옥·수용소 등 특수시설 내 선거운동 금지 • 선거운동 벽보 및 기타 자료 훼손 금지	선거운동법 제2a~c,3,5, 6,8,10,15A조 선거법 제116,126,130조
이탈리아	• 지정장소 외 벽보 및 선전물 게시 금지 • 의회감시위원회가 라디오, TV를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 • 인구별 옥외광고물 게시장소 제한 • 선거일 전일 및 선거일 벽보, 선전물 게시, 집회 금지, 라디오·방송이용 제한 • 확성기를 사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선거선전 규제규범 제212호 제1,2,3,9조 제130호 제7조 상·하원의원 선거운동규제 제515호 제1조
라트비아	• 라디오·TV 등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 시간제한 • 정부와 지방정부는 정당, 정치단체의 공공장소 배정과 관련하여 유불리하게 해서는 아니함.	사전선거운동법 (의회및유럽의회) 제1,3장
리투아니아	• 공공행정 및 국가기관 관련 장소에서의 옥외 선거운동 금지 • 고속도로 및 도로주변에서 도로표지판을 가리는 등 교통이용에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 금지 • 조각품이나 기념비적 건축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투표소가 있는 건물 주변 50m 이내에서 선거운동 금지 •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지에서 선거운동 금지 • 공사장이나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선거운동 금지 • 누구든지 주 또는 시 기관 및 대중매체에서 자신의 공식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하는 행위 금지(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경우 제외)	선거법 제51조제9항 제54조제1항
룩셈부르크	• 선거운동에 관한 제한·금지규정 없음.	-
멕시코	• 선거결과 발표시까지 선거, 교육, 보건, 기타 시민안전 및 비상관리 당국의 정보제공활동을 제외한 연방 및 지방정부, 기타 공공기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중지 • 모든 선거운동관련 인쇄물은 재활용이 가능해야 함. • 선거홍보물 자택배송 금지, 부착 및 설치 가능 장소 제한, 철거기간 준수	연방선거법 제209,250조
노르웨이	• 선거운동에 관한 제한·금지규정 없음.	-
네덜란드	• 일반지방법(APV)에 따라 연단을 사용하는 행사 진행시 혹은 스피커가 부착된 차량 사용 시에는 허가가 필요하며 도로 안전 규정 등에 위반이 없어야 함.	일반지방법 제4:6조
뉴질랜드	• 모든 선거광고는 발행인의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야 함. • 제3자가 정당이나 후보자의 유료 광고를 지원하거나 광고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며 비용규정을 준수해야 함. •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정당, 후보자, 제3자의 선거비용을 상세히 규제하고 있음(비용규제주의).	선거법 제204D조 ~제204F조 제205F조

51) VAALITVAL Election advertising. https://vaalit.fi/vaalimainonta (검색일 2019.8.14.)

52) https://merrionstreet.ie/MerrionStreet/en/News-Room/Releases/Discussion_Paper_%E2%80%93_Regulation_of_Online

국가명	주요 선거운동 규제방법	근거규정
폴란드	•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군부대 및 경찰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선거운동이 금지 • 선거벽보는 정부건물,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첩부할 수 없으며 문화유산, 환경보호, 도로 안전 등을 고려해야 함. •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으로 기부행위(복권, 경품 및 주류제공)금지	선거법 제108조
포르투갈	• 공연장이나 공공장소에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날짜와 시간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시장은 3일전까지 모든 후보자와 정당에 공정한 날짜와 시간을 고지해야 함.	선거법 제65조
슬로바키아	• 라디오·TV 등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 시간제한 • 집회도구(포스터, 깃발 등) 사용방법 및 가능 품목, 사용 장소, 배포에 대한 제한 • 여론조사결과 사용에 대한 제한 등	선거운동법 제10,12,16,17조
슬로베니아	• 선거일 일주일 전 후보자, 정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 선거일 투표소 내에서는 모든 형태의 선거운동 금지 • 다른 후보자의 포스터 위에 포스터를 덧붙이거나 훼손하는 행위 금지 •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구내, 종교단체 구내에서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 해당 장소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홀이 있는 다른 건물이 없을 경우 예외	의회선거법 제65조 선거운동법 제5,10조
터 키	• 공공장소, 실내 집회장소 제한 • 라디오·TV 등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 시간제한 • 확성기를 사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 벽보 등 인쇄물 사용방법 및 가능 품목 제한, 사용 장소·배포에 대한 제한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규정(총리, 장관 등 고위공무원 및 군인 등)	선거기본법 제50~55A, 56,60~66조

_Political_Advertising_in_Ireland.pdf (검색일 2019.8.14.)

제8장

선거비용

제1절
선거비용

- 미국과 독일의 경우 선거비용에 대한 규제 없이 최대한 허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무제한적으로 투입되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음.
- 선거비용에 대한 지출 상한선을 정해놓기도 하고,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자금을 담당하는 선거사무장이나 재정대리인을 지정해 수입과 지출을 일원화하고 있음.
-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어 선거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1. 영 국

가. 선거비용

- 정의(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제72조)
  - 선거운동비용이란 정당 및 후보자가 선거에서 해당 정당의 승리를 위해 정당의 이름으로 입후보한 후보자의 당선 또는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에 의하여 제출된 후보자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들의 당선 또는 기타 앞으로 실시될 선거(선거시기 임박여부 불문)와 관련해 선거인들에게 정당 및 후보자의 입지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 일체를 말함.
  - 또한 그 밖의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입지가 선거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
- 범위(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 부칙 8. 제1호)
  - 정당의 정치방송(Party Political Broadcasts): 대행사 수수료, 기획료, 기타 방송준비 또는 제작관련 비용
  - 광고(Advertising): 광고 배포준비, 제작, 관련된 대리인 수수료, 도안비용, 기

타비용
- 인쇄물(Unsolicited material), 매니페스토와 정책자료(Manifesto and Policy document): 도안비용과 자료의 준비, 제작, 배포에 관한 비용
- 시장조사 또는 여론조사비용
- 기자회견 또는 기타 매체의 서비스나 시설제공, 선거운동관련 목적으로 교통편 임차비용
- 선거운동과 관련된 집회나 공공회의 등의 행사 참석비용, 행사건물의 임차, 물건, 서비스, 시설 비용 등

나. 선거비용의 지출

1) 선거사무장에 의한 경비 지출(1983년 국민대표법 제73조, 1985년 국민대표법 제14조)

- 후보자에 의해 또는 후보자를 위해 발생된 비용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20파운드 이상의 지출은 명세를 기재한 청구서 또는 영수증으로 증명되어야 함.

※ 선거사무장 등(election agent)(1983년 국민대표법 제67,68조)

- 각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대리하는 자는 선거사무장 1명을 후보자 등록신청서 제출기한 내에 선거관리관에게 신고해야 함.
- 선거사무장은 그 후보자를 위해서 고용된 모든 투표입회인등의 임명, 그 후보자를 위한 청구·명령 등 문서의 송달을 접수하기 위한 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그 소재지를 선거관리관에게 신고, 선거비용에 대한 계약·지출·수령 등의 직무를 수행
- 선거구에서 선거사무장은 각 투표구에서 활동하는 부사무장(Sub-agent or deputy election agent) 1명을 임명할 수 있음.

2) 후보자의 개인비용 및 소액비용의 지출(1983년 국민대표법 제74조, 1985년 국민대표법 제14조)

- 후보자는 해당 선거에서 600파운드 이내로 개인비용을 지출할 수 있음.
  - 후보자는 청구서 송달기간 내에 그가 지출한 개인비용의 명세서를 선거사무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선거사무장으로부터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문구비, 우편요금, 전신요금 등을 지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지불할 수 있음.
  - 지불명세서는 법정기간 내(선거결과가 공포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선거사무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영수증을 포함한 청구서로 증명되어야 함.

3) 선거사무장으로부터 위임받지 아니한 비용의 지출 금지(1983년 국민대표법 제75조, 1985년 국민대표법 부칙 4. 제24호, 2006년 선거행정법 제25조)

- 후보자,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장으로부터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자 외에는 누구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비용을 지출할 수 없음.
  - 공개집회 및 공개연설회의 개최
  - 광고, 회람장 또는 간행물의 발간
  - 선거인에 대한 후보자, 후보자의 정견 등 소개 또는 다른 후보자의 비방에 소요되는 비용
- 선거사무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선거관리관에게 지출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보고서에는 이를 증명하고 그 비용의 명세를 기술한 신고서를 첨부해야 함.
- 보고서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자는 선거결과 공표일부터 21일 이내에 모든 보고서 및 신고서의 사본을 대법관부(大法官府)사무총장(Clerk of the Crown)에게 제출해야 함.
-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 중에서 후보자 등록일 이후 사용하거나 일어난 일과 연관이 있는 경우(공개집회 및 공개연설회 등) 그 비용은 후보자 등록일 이후의 비용으로 간주함.

다. 선거비용의 제한(1983년 국민대표법 제76조)[1)]

- 선거에 있어서 정당과 후보자 각각 선거비용의 제한을 받음.
- 정당은 선거 전·중·후를 불문하고 선거 실시나 운동에 관한 비용을, 후보자는

1) 영국선거위원회 홈페이지. ‘Splitting Spending 2013 Expert paper(선거비용 지출에 보고서).’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media/2916 (검색일 2019.8.5.)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선거가 끝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을 의미

- 정당
  - 한 선거구당 30,000파운드로 해당 정당이 후보자를 내세운 선거구수를 곱한 금액
  - 단, 각 지방별로 최고한도액이 정해져 있음(잉글랜드 810,000, 스코틀랜드 120,000, 웨일즈 60,000파운드).
- 후보자
  - 각 구(borough)와 군(county)선거구당 7,150파운드로 하고, 선거인명부 등재자 수에 각 7펜스와 5펜스를 곱한 금액을 더함.
  -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100,000파운드를 총한도로 함.

라. 선거비용의 보고·제출 및 열람

1) 청구서의 송부 및 지불의 시기제한(1983년 국민대표법 제78조)

- 선거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21일까지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에게 제출되지 아니한 청구는 모두 금지되며, 지불할 수 없음.
- 모든 선거비용은 위의 일자로부터 28일까지 지불되어야 함.
- 정당은 선거비용을 250,000파운드 이하 쓴 경우 선거일 후 3개월 내에, 250,000파운드 이상 썼으면, 선거일 후 6개월 내 비용을 보고해야하되 이 경우 독립적인 회계감사자(Independent Auditor)를 통해 보고해야 함.

2) 선거비용에 관한 보고의무(1983년 국민대표법 제81조)

- 선거사무장은 총 지불액 명세서와 영수증을 첨부한 보고서를 선거결과의 공표일로부터 35일 이내에 선거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함.
- 보고서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작성한 가격신고서, 후보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발생된 선거비용으로 보게 되는 총비용의 신고서, 후보자 또는 그의 선거사무장에게 한 기부진술서, 후보자 개인의 재원에서 선거비용을 맞추기 위해 출연된 총금액의 진술서를 포함해야 함.

3) 선거비용의 수지보고서에 관한 선서서 제출의무(1983년 국민대표법 제82조)

- 선거비용수지보고서에는 선거사무장이 치안판사 또는 군의회의장, 시장 등의 앞에서 작성한 선서서를 첨부해야 함.
- 후보자는 보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7일 이내에(보고서 제출 당시 후보자가 외국에 체류 중이라면 귀국 후 14일 이내에) 자신이 치안판사 또는 군의회의장, 시장 등의 면전에서 작성한 선서서를 제출해야 함.

4) 보고서 및 선서서의 열람시간 및 장소의 고시(1983년 국민대표법 제88조)

- 선거관리관은 보고서(부속서류 포함)가 제출된 후 10일 이내에 선거구 내 2개 이상의 신문에 그 보고서 및 선서서(부속서류 포함)의 열람 일시 및 장소를 고시해야 함.

5) 보고서 및 선서서의 열람(1983년 국민대표법 제89조)

- 담당공무원은 보고서 및 선서서(첨부서류 포함)를 수령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사본을 만들고, 그의 사무실 또는 편리한 장소에서, 보고서 수령 후 2년간 규정된 사용료를 납부하는 일반인에게 사본을 제공

마.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후보자의 보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1983년 국민대표법 제85조)

- 당선자는 선거비용수지보고서 및 선서서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의원 자격으로 하원에 출석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없음.
  - 위반 시에는 출석 또는 표결한 날마다 100파운드의 벌금 부과
- 매수·향응제공 및 선거비용에 관한 허위보고는 부패행위로, 위법고용·교통시설 등 위법대차·선거비용에 관한 규정 위반은 각각 위법행위로 처벌되며 부패행위 또는 위법행위로 처벌받게 되면 당선무효 및 공민권 제한 등이 가해짐(1983년 국민대표법 제164,165조).

2. 미 국

- 미국에서 선거비용은 공적기금을 지원받는 대통령 후보자만 제한액이 있을 뿐 다른 선거의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과 상관없이 지출할 수 있음.[2)]
- 선거비용의 수입은 정부지원금, 비정부지원금으로 개인자금, 기부금($200 이하/이상), 정치위원회(PAC)의 후원금으로 구분함.
  - 정부보조금: 내국세법 제95장 제9006조에 의한 대통령선거운동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연방선거법 제30116조(b)(1)(A)(B)에서 명시한 지출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최근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정부보조금을 포기하고 무제한 모금을 통해 선거자금을 지출하고 있어 본 규정의 취지가 퇴색되는 추세임.
  - 비정부 지원금
    - ·개인자금(차용금): 연방선거법 제30101조(26)에서 개인자금의 정의에 따른 자금을 개인적으로 확보하여 선거에 활용함.
    - ·기부금: 연방선거법 제30101조(8)에서 기부금의 정의에 따른 자금을 개인적으로 확보하여 선거에 활용함.

가. 선거비용[연방선거운동법 제30101조(9)(A),(B)]

- 지출(expenditure)이란 연방공직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한 구매, 지급, 배분, 대부금, 선금, 기탁 또는 금전이나 유가물의 증여, 지출을 하기 위한 서면계약, 약속 또는 합의를 의미함.
  - 연방선거운동법 제30101조(20)에서 언급한 활동에 지출된 자금
  - 제30104조(f)3 선거운동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활동에 지출된 자금
  - 내국세법 제95장 제9002조(11) 적격선거운동경비에 관련한 지출 자금
- 다만, 제3자(정당이나 정치위원회, 후보자가 아닌 자)에 의한 방송, 신문, 잡지,

---

2) 대부분의 선거비용은 사적으로 조달되지만 예비선거와 총선에서 미국 대통령을 위한 자격 있는 후보자에게는 공적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자격 요건은 정부 보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는 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지출 한도가 적용됨.
https://en.wikipedia.org/wiki/Campaign_finance_in_the_United_States (검색일 2019.7.22.)

기타 정기간행물의 뉴스·논평·사설, 투표 또는 선거권자 등록을 권유하기 위한 비당파적인 활동, 어떤 조직이나 법인이 선거운동용품을 이용한 활동이나 자발적인 것으로 일반대중매체를 이용한 대중홍보나 정치광고와 관련된 선거운동이 아닌 경우 후보자 추천, 당선·낙선에 대한 명시적인 주장이 아닌 경우는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나. 지출의 제한액[연방선거운동법 제30116조(d)(3)]

- 후보자
  - 대통령선거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후보자 외, 상·하원의원후보자에 대한 지출제한은 없음.
  - 개인 자금으로 선거비용을 충당하는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에 무제한 자금을 기부할 수 있고, 또한 모금된 기부금의 지출에 제한을 받지 않음.
- 정당의 전국위원회 또는 주위원회: 주위원회의 하위위원회를 포함해 해당 정당의 연방공직후보자 선거에서 선거운동에 다음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음.
  - 상원의원선거 후보자 또는 주에서 1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경우 다음 금액 중 큰 금액 범위 이내
    - ·해당 주의 투표연령인구×2센트
    - ·20,000달러

    ※ 투표연령인구(voting age population): 18세 이상의 거주인구를 말하며, 매년 1월 첫 번째 주중에 상무부장관(Secretary of Commerce)이 연방선거위원회에 증명하여 연방정부 관보에 공시한 매년 7월 1일 현재 투표연령인구의 추계치를 의미
  - 기타 다른 주의 하원의원, 대의원, 주민의원의 후보자: 10,000달러

<표 8-1> 미국연방선거 총비용지출액[3)]

(단위: 백만 달러)

연도	대통령선거	연방의회의원선거
1998	-	1,618.9
2000	1,413.1	1,669.2
2002	-	2,181.7
2004	1,910.2	2,237.1
2006	-	2,852.7
2008	2,800.0	2,486.0
2010	-	3,631.7
2012	2,621.4	3,664.1
2014	-	3,845.4
2016	2,480.9	4,124.3
2018	-	5,725.1

다. 선거비용지출 회계보고[연방선거운동법 제30104조(a),(b)][4)]

- 연방선거운동법은 선거자금의 출납에 관한 업무로 하는 회계책임자(Treasurer)를 후보자의 주(主) 선거운동위원회(Principal Campaign Committee)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보고는 이 회계책임자가 하도록 하고 있음.
  - 주(主) 선거운동위원회가 아닌 다른 선거운동위원회는 회계보고를 독립적으로 하지 않고, 주(主) 선거운동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취합해 연방선거위원회에 보고함.
  - 후보자 또한 독립적으로 회계보고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음.
    ※ 회계책임자는 모든 기록·보고서 사본을 보고 후 3년 보전(전산파일 포함)
  - 다만, 후보자는 공직윤리법(The ethics in government act)에 따라 연방하원의원 후보자는 하원사무처에, 상원의원 후보자는 상원사무처에 각각 개인별 회

3) OpenSecrets.org. 'Cost of Election.' http://www.opensecrets.org/overview/cost.php (검색일 2019.7.12.)

4) 미국은 선거자금의 모금과 회계보고에 대한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선거비용지출에 대한 제한과 법적 제재는 약함.

계보고서(Personal financial report)를 제출해야 하며, 대통령후보자는 연방선거위원회에 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연방의회의원선거 회계보고서의 형태와 범위 보고시한은 아래 표와 같으며, 보고내역은 보고기간의 개시일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액수, 기부금 액수, 기부자의 이름 등을 포함한 모든 중요한 사항임.

<표 8-2> 미국 연방의회의원선거 회계보고서의 형태, 범위 및 보고시한

보고서 형태	범위	시한
분기	1월 1일~3월 31일, 4월 1일~6월 30일 7월 1일~9월 30일, 10월 1일~12월 31일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 1월 31일
선거 전	기부를 받거나 지출의 12일 이후부터 선거일 전 20일 현재까지	선거일 전 12일
선거 후	현재 보고기간의 첫째 날부터 선거일 후 20일 현재까지	선거일 후 30일
48시간 통보	선거일 전 20일 이내부터 선거일 전 48시간 이전까지 받은 1,000불 이상의 기부금	기부받은 후 48시간 내에

-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고의로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벌금형, 징역형 또는 양자의 병과 형을 처할 수 있음[연방선거운동법 제30109조(d)].

라. 기부의 개념[연방선거운동법 제30101조(8)]

- 기부(contribution)란, 연방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일체의 증여, 예약금, 대부금, 선금 또는 금전이나 유가물의 기탁이나, 목적의 제한 없이 정치위원회에 무상으로 제공된 타인의 용역에 대해 다른 사람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말함.

마. 기부금의 사용

1) 허가된 사용

- 후보자가 수령한 기부금과 연방공직에 있는 개인의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수령한 후원금은 그 후보자나 개인이 다음의 경우 사용할 수 있음.

- 후보자나 개인의 연방공직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지출
- 연방공직자의 의무와 관련한 통상적이고 필요한 지출
- 1986년 내국세법의 제170조(c)에 규정된 조직(공적목적기관에 대한 자선기여금)에 기부
- 상한 없이 정당의 전국, 주, 지방위원회에 양도

2) 사용의 금지

- 기부금이나 후원금은 사적 목적의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기부금이나 후원금은 연방공직자의 직무와 무관하거나 후보자의 선거와 무관한 개인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아래의 경우에 사용된 때에는 전용된 것으로 봄.
  - 주택대부금·임대료 및 사용료, 의복 구입, 선거와 무관한 차량비용, 컨트리 클럽 회원권, 여행비용, 일상식료품, 강습료, 유흥비용 기타 여가활동비용

바. 기부제한액(연방선거운동법 제30116,30118,30119,30121,30122,30123조)

- 전국은행, 회사 또는 노동단체에 의한 기부 금지, 정부와 계약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기부금지, 외국인 기부 금지, 타인명의 기부 금지, 100달러 이상의 현금 기부 금지
- 2010년의 Citizens United v. FEC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은행, 기업, 노동조합 등의 독립지출을 제한한 조항[연방선거운동 제30118조(a)]을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이들 기관은 Super PAC[5]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무제한적인 기부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음.

5)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치위원회가 아니며, 정당 또는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거나 조직적으로 연계된 선거운동을 진행하지 않는 가운데 독립지출을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정치위원회

<표 8-3> 2019~2020년 미국 연방선거 기부 제한액6)

기부자	수령인				추가정당위원회
	후보자 또는 후보자 위원회	PAC*	주,선거구, 지역 정당위원회**	전국정당위원회	
개인	선거당 $2,800	1년당 $5,000	통합한도액 1년당 $10,000	1년당 $35,500	$106,500 회책당, 1년당
후보자	선거당 $2,000	1년당 $5,000	무제한 이전		-
주, 선거구 지역 정당위원회	통합한도액 선거당 $5,000	통합한도액 1년당 $5,000	다른 정당위원회로 무제한 이전 가능		-
전국정당 위원회***	선거당 $5,000	1년당 $5,000	다른 정당위원회로 무제한 이전 가능		-
PAC 복수후보****	선거당 $5,000	1년당 $5,000	통합한도액 1년당 $5,000	1년당 $15,000	$45,000 회책당, 1년당
PAC 단일후보	선거당 $2,800	1년당 $5,000	통합한도액 1년당 $10,000	1년당 $35,500	$106,500 회책당, 1년당

* 정치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 PAC)
** 주, 선거구, 지역정당위원회: 정당 내규에 따라 연방선거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주, 지역 수준에서 운영할 책임이 있는 기구
*** 전국정당위원회: 정당 내규에 따라 연방선거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전국적인 수준에서 운영할 책임이 있는 기구
**** PAC복수후보: 적어도 6개월 동안 연방선거위원회에 등록하고 최소 50명 이상으로부터 모금하여 최소 5명 이상의 후보자를 지원

사. 정치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

1) 정의(연방선거운동법 제30101조)

- 연간 총액 1,000달러를 초과해 기부금을 받거나 지출하는 위원회, 클럽, 협회 또는 기타 개인 집단
- 연방선거운동법 제30118조(b) 규정의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의해 설립되는 독립된 분리기금(separate segregated funds)

6) FEC. ‘Contribution limits.’
https://www.fec.gov/help-candidates-and-committees/candidate-taking-receipts/contribution-limits/ (검색일 2019.6.25.)
총계에는 자회사 및 계열사(PAC 있는 경우)가 포함되며,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여기서 사용된 명칭은 공식 PAC 명칭이 아닌 PAC과 연결된 조직의 명칭임.
예를 들어, 코카콜라 비정당 위원회(Coca-Cola Company Nonpartisan Committee for Good Government)는 단순히 코카콜라(Coca-Cola)로 표기함.

- 연간 총액 5,000달러의 기부금을 받거나 기부 또는 지출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지출을 연간 총액 5,000달러를 초과해 행하거나 연간 총액 1,000달러를 초과하는 기부 또는 지출을 행하는 정당의 지방위원회

※ 정치위원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방선거위원회에 등록, 회계장부의 기재, 수지보고서의 제출 의무 등이 부과됨.

<표 8-4> 2017~2018년 미국 상위 20개 정치위원회 현황[7)]

(2019.2.1. 기준)

PAC 이름	총계 (Total Amount)	민주당 % (Dem Pct)	공화당 % (Repub Pct)
National Beer Wholesalers Assn	$3,444,000	48%	52%
National Assn of Realtors	$3,407,777	51%	49%
AT&T Inc	$3,108,200	40%	60%
Northrop Grumman	$2,848,740	43%	57%
Sheet Metal, Air, Rail &Transportation Union	$2,790,450	88%	12%
National Air Traffic Controllers Assn	$2,782,000	56%	44%
American Bankers Assn	$2,779,580	23%	77%
Operating Engineers Union	$2,743,909	80%	19%
National Auto Dealers Assn	$2,683,400	23%	77%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Electrical Workers	$2,600,274	96%	4%
Honeywell International	$2,586,810	49%	51%
Credit Union National Assn	$2,580,000	47%	53%
Lockheed Martin	$2,504,500	40%	60%
American Crystal Sugar	$2,465,000	54%	46%
United Parcel Service	$2,444,597	33%	66%
American Assn for Justice	$2,395,000	94%	5%
Boeing Co	$2,391,999	43%	57%
Blue Cross/Blue Shield	$2,391,300	41%	59%
Deloitte LLP	$2,377,500	44%	56%
House Freedom Fund	$2,356,417	0%	100%

7) OpenSecrets.org. ‘Top 20 PAC Contributors to Candidates, 2019-2020.’ https://www.opensecrets.org/pacs/toppacs.php (검색일 2019.6.27.)

2) 정치위원회의 종류(연방선거운동법 제30101,30102조)

- 주(主) 선거운동위원회(principal campaign committee): 후보자가 지정하고 승인을 받은 정치위원회로서 1명의 후보자당 1개에 한함[연방선거운동법 제30102조(e)(1)].
- 수권위원회(authorized committee): 후보자에 의해 후보자를 대신해서 기부및 지출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승인된 정치위원회로 복수지정 가능[연방선거운동법 제30102조(e)(1)]
- 다수후보자정치위원회(multi-candidate political committee):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는 정치위원회로서 50명 이상으로부터 기부를 받고 주의 정당조직인 경우를 제외하고 5명 이상의 연방공직후보자에게 기부를 행하는 정치위원회

3) 정치위원회의 등록(연방선거운동법 제30103조)

- 정치위원회가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연방선거위원회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후보자는 후보자가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주(主) 선거운동위원회를 지정해야 하며, 수권위원회가 그 지정을 받은 때에는 지정 후 10일 이내에 주(主) 선거운동위원회를 통해 신고해야 함.
- 설립신고 내용: 정치위원회의 명칭·소재지 및 종류, 관련단체(connected organization) 또는 지부위원회(affiliated committee)의 명칭·소재지·관계 및 종류, 회계장부관리책임자의 이름·주소·지위, 회계책임자의 이름·주소, 수권위원회의 경우 후보자의 이름·주소·원하는 공직의 종류 및 소속정당, 이용하는 모든 은행·대금고 또는 기타 예치기관의 명부 등

4) 정치위원회의 회계정리(연방선거운동법 제30102조)

- 모든 정치위원회에는 1명의 회계책임자가 있어야 하며, 모든 지출 및 기부의 접수는 회계책임자나 그 대리인만이 할 수 있음.
- 회계책임자의 직무는 서류를 정비하고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재된 모든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모든 보고서의 사본을 보고서 제출 후 3년간 보존해야 함.
- 회계책임자의 기재사항은 기부총액, 50달러 이상을 기부한 자의 이름·주소·기

부일자 및 금액, 연중 200달러를 초과하여 기부한 자의 인적사항(identification), 기부일자 및 금액지출을 행한 상대방의 이름·주소·지출일자 및 금액·지출목적, 그리고 지출의 대상이 후보자인 경우 그 이름·주소·선출될 공직, 200달러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한 영수증·명세기입청구서(invoice) 또는 지급이 완료된 수표(canceled check)를 기재해야 함.

5) 정치자금의 예탁기관(연방선거운동법 제30102조)

- 각 정치위원회는 1개 이상의 주립은행 등 소정의 예탁기관을 지정하고 정치자금의 취급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정치위원회는 수령한 모든 수입을 이들 계좌에 예탁함과 동시에 지출은 이들 계좌에서 지출하는 수표로 해야 함.
- 다만, 100달러 미만의 지출에 대해서는 소액 현금회계를 설치하고 현금을 지출할 수 있음. 이 소액 현금 지출에 대해서는 보고의무가 부과됨.

6)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보고(연방선거운동법 제30104조)

- 수입지출 보고 절차
  - 연방선거위원회에 보고
- 정치위원회는 정치자금에 대한 수입지출보고의 의무가 있음.
- 선거운동에 관한 모든 활동비용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지정한 수권위원회에 의해 관리되도록 하고 수입지출 보고를 해야 함(후보자가 기부를 받거나 지출을 행한 경우에는 후보자수권위원회의 대리인으로서 기부를 받고 지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후보자 자신이 직접 보고하는 것도 없음).
- 수권위원회는 그 수지보고서를 후보자의 주(主) 선거운동위원회에 제출하고 주(主) 선거운동위원회는 이를 취합·정리하여 해당 부서에 제출
  - 주에 보고(연방선거운동법 제30113조)

    연방선거운동법에 따라 수입지출보고서 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는 그 등본 1부를 해당되는 주의 주무장관 또는 주법에 따라 주의 선거운동보고서의 보관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함.

    ※ 해당되는 주의 의미

    ·대통령 혹은 부통령선거의 후보자 지명운동에 관한 명세서와 보고서에 있어서는 해당 후보자를 위한 지출이 행해진 주

·상원의원, 하원의원, 준주대표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운동에 관한 보고서는 해당 후보자가 출마한 주

- 수입지출보고서의 제출시기[연방선거운동법 제30104조(a)(1)~(5)]
  - 수입지출보고서의 제출시기 및 제출횟수는 각 정치위원회의 성격이나 선거실시연도 여부에 따라 다르며, 상·하의원의 경우 선거실시연도에는 분기보고, 선거 전·후 보고가 있으며 선거 미실시 연도에는 반년에 한번 보고
    ※ 전자파일로 제출하고 연방선거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전자파일 형식으로 열람가능)

<표 8-5> 미국 수입·지출 보고서 제출시기

정치위원회	선거실시연도	선거미실시연도
대통령후보자 정치위원회	월례, 선거 전·후, 분기별 추가보고	월례 또는 분기
상·하, 양원 후보자 정치위원회	선거 전·후, 분기별추가보고	4분기
기타 정치위원회	A(선거 전·후, 분기) or B(월례, 예비선거 전·후, 연말) ※ A, B를 선택적으로 채택함.	반기

- 수입·지출 보고서의 기재사항[연방선거운동법 제30104조(b)]
  - 보고기간 개시시점의 보유하고 있는 현금액수 전액
  - 보고기간 중의 1년도의 총수입액 및 다음 구분의 수입총액
    ·정치위원회 이외의 자로부터의 기부총액, 1년 중 총액 2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한 자에 대한 기부자의 이름·주소·기부일자 및 금액
    ·수권위원회에 있어서는 후보자로부터의 기부총액
    ·정당의 정치위원회로부터의 기부총액 등
  - 보고기간 중 및 해당 연도 중 해당 정치위원회에 대한 기부금의 지출총액
    ·후보자 혹은 위원회의 활동비를 지불하기 위해 행해진 지출 중 총액 200달러를 넘는 지출을 한 상대방의 이름·주소·지출일자·지출액 및 지출목적
    ·수권위원회의 경우 동일후보자에 의해 수권 받고 있는 다른 정치위원회에 대한 이양액 및 그 명세 등
- 수입·지출 보고서의 공표[연방선거운동법 제30104조(c)(3),(d)]
  정치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수입지출보고서를 연방선거위원회 및 주의 담당기관

은 공중에 열람시키거나 청구자의 부담으로 복사본을 교부하거나 간행해 널리 국민에게 공표

- 연방차원의 공표
  - ·수지보고서 수리 후 48시간 이내에 열람이 가능토록 하고 청구자의 비용 부담으로 사본 교부(전자적인 경우는 24시간 이내)
  - ·연방선거운동법에 의해 제출된 보고서를 발간함과 동시에 구매용으로 제공
  - ·연방선거운동법에 의해 제출의무가 부과된 보고서의 제출을 게을리 한 수권위원회의 일람표를 정기적으로 공표
- 주 차원의 공표(인디애나 주의 경우)

  수입지출보고서의 제출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주법에 의해 주의 선거운동보고서의 보관책임이 부과된 공무원은 가능한 신속히(수리 후 48시간 이내) 통상적인 근무시간 중에 열람 및 복사용을 제공함과 동시에 청구자의 부담으로 사본 교부(인디애나 주 선거법 제3편 제9조)[8)]

7) 선거위원회 권한 및 강제 등

- 특별명령, 일반명령, 소환장에 의한 출석요구, 이에 대한 사법명령, 정보공개민사상 의무, 입법권고 등(연방선거운동법 제30107조)
- 행정적, 사법적 처리, 선거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한 위반 시 법정모독죄 판결 청구, 강제조치 전 보고서 미제출자의 통지 및 그 내역 공고, 명백한 사항 법무장관 통지 등(연방선거운동법 제30109조)

8) 2018 Indiana Code, TITLE 3. Elections, ARTICLE 9. CAMPAIGNS, CHAPTER 5. https://law.justia.com/codes/indiana/2017/title-3/article-9/chapter-5/section-3-9-5-16/ (검색일 2019.6.27.)

참조 8-1 1976년 Buckley V. Valeo 판결내용(424 V.S.I)[9]

이 판결에서 문제된 것은 1971년의 연방선거운동법(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및 이와 관련된 1954년 내국세법(內國稅法: Internal Revenue Code)의 규정으로 기부제한액과 지출제한액의 상한을 정한 것이 합당한가이다. 쟁점으로 제기된 것은 ①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후보자에 관련된", 개인의 정치적 기부와 지출의 제한, 일정한 연방선출직에 후보자가 쓰는 선거운동비용에 대한 제한, ② 일정한 금액이상의 기부 및 지출에 관한 보고와 공개의 의무, ③ 대통령선거운동에 대한 공적보조제도의 설치, ④ 연방선거위원회의 구성 등 4가지 점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개인의 기부제한, 보고 및 공개의 의무화, 그리고 공적보조에 대해서는 그 합헌성을 인정하였고, 반면 지출의 제한 및 연방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

- 먼저 기부 및 지출제한의 일반적 원리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개인이나 집단이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정치적 의사소통에 쓸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면 토론될 논점의 수, 토의의 깊이, 그리고 청중의 규모가 제한되며, 따라서 필연적으로 표현의 양이 축소된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대중사회에 있어서 실제로 모든 의사표현 수단에는 돈이 들기 때문이다.…」「정치적 표현을 위한 지출제한과는 대조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후보자나 정치위원회(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기부자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능력에 대해 단지 한계적인(marginal) 제한만을 가져올 뿐이다. 왜냐하면 기부금액제한을 가하더라도 기부를 통해 상징적인 지지 표시는 허용되는 것이며, 기부자가 후보자나 쟁점에 대해 말하는 것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후보자나 단체가 선거인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데에 기부금을 쓴다면 그 기부금은 정치적 표현으로 끝날 수 있지만, 기부금이 정치적 토론으로 바뀌는 데에는 기부자 이외의 다른 누구에 의한 표현을 필요로 한다.…」「기부금제한의 전반적 효과는 정치적 표현의 증진에 쓰여질 수 있는 돈의 총액을 축소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후보자와 정치위원회로 하여금 보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모금하게 하고, 법률상 제한보다 더 많은 기부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그 자금을 직접적인 정치적 표현에 쓰게끔 하는 것이다.…」「요약하면, 기부 및 지출제한규정이 모두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관계되지만, 기부제한보다 지출제한규정이 정치적 표현과 결사에 대해 보다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 지출한도액의 선정에 대하여 「지출상한의 설정은 개인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대적 능력을 균등화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상대적으로 높이기 위해 어떤 사람들의 언론을 제한한다는 논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전혀 생소한 것이며, 표현의 자유는 다양하고 대립적인 원천으로부터 가능한 한 넓게 정보를 전파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선거운동비용 상한설정은 막연히 증가하는 선거운동비용을 줄이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비추어 보건대, 정치적 견해를 전파하기 위한 지출이 낭비적이고 과다하고 현명치 못하다고 결정할 권한이 정부에게 인정될 수 없다. 헌법이 정하는 자유사회에 있어서 선거운동에서의 공적 쟁점에 대한 토론의 양과 범위를 통제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 즉 개별적으로는 시민과 후보자, 집단적으로는 단체와 정치위원회이다.」「요약하면, 기부금에 대한 1,000달러의 상한액을 정한 규정은 합헌적이다. 이 제한규정은 개별 시민과 후보자의 정치적 토론의 권리를 직접 해치지 않으면서 선거과정의 공정성(integrity)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이익에 기여한다. 이와는 반대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규정에 따르면 지출상한액 설정 규정은 무효이다. 이 규정은 후보자, 시민 및 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능력에 대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며, 이러한 제한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규정이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위헌성이라 판시했다.
- 위의 대법원판결에는 4명의 대법관이 각기 부분적 같은의견(同旨), 부분적 반대의견(反對意見)을 제시하였다.

9) 선거운동자금(공적인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에 대한 지출한도 규제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시
https://en.wikipedia.org/wiki/Buckley_v._Valeo (검색일 2019.6.27.)

3. 프랑스

가. 선거자금의 모금(선거법 제52-4조)

- 모든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일까지 선거와 관련한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대리인(mandataire)을 선임해야 함.
- 선거가 실시되는 달의 6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 대리인은 선거자금의 명목으로 기금을 모금할 수 있음(조기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후보자는 선거자금후원회 또는 재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자금모금이 가능함.

나. 선거자금후원회(선거법 제52-5조)

- 선거자금후원회는「단체계약에관한법률(1901.7.1.)」제5조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신고서에는 후보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함.
- 모금방법
  - 선거자금후원회는 모든 금융거래 상황을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은행계좌 또는 우체국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선거운동회계보고서에 후원회회계보고서를 첨부해야 함.
  - 선거자금후원회는 후원금 모금을 위해 제3자에게 발송하는 문서에 모금된 금품을 수취할 후보자, 후원회의 명칭과 신고일을 표시해야 하며, 후보자는 후원회 또는 수임자의 중개에 의해서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는 뜻을 표시함.
- 활동기간
  - 후원회는 동 후원회의 지원을 받은 후보자가 선거운동비용회계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 해산 또는 직무를 종료함.
  - 후원회의 지원을 받는 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후원회는 입후보등록기간이 경과된 후 해산됨.
  -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후보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결산서를 제출함.

다. 재정대리인(선거법 제52-6조)

- 후보자는 선임한 재정대리인의 이름을 그 주소지의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서에는 재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함.
- 모금방법 및 활동기간은 선거자금후원회와 동일

  ※ 후보자는 동일한 선거에서 선거자금후원회와 재정대리인을 동시에 둘 수 없음. 다만, 2명 또는 수명의 중개인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선거법 제52-7조).

라. 기부금액(선거법 제52-8조)

- 기부한도액
  - 프랑스 국민이거나 프랑스에 거주하는 사람은 하나의 선거에서 1명 또는 수명의 후보자에게 4,600유로를 초과해 기부할 수 없음.
  - 정당이나 정치집단을 제외하고 법인은 어떤 형태로든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직·간접적인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본부의 재정에 참여할 수 없음.
- 기부방법
  - 150유로 이상의 기부금은 수표, 계좌이체, 자동이체, 은행카드로 해야 함.
  - 후보자가 15,000유로 이상을 기부받을 경우, 총액은 선거비용한도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부금의 수령금지
  - 후보자는 외국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이나 물질적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후보자는 후원을 요청하기 위하여 언론을 통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광고에는 후원금에 대한 내용 이외의 어떠한 내용도 포함할 수 없음.
- 선거비용모금을 위한 직위 남용 금지(선거법 제52-8-1조)
  - 프랑스 의회의원인 후보자는 선거비용 충당을 위해 직위 등을 이용하여 대가와 기회 남용 금지

마. 선거비용제한액(선거법 제52-11조)

- 국가가 직접 부담하는 선거비용 이외의 회계보고를 위하여 각 후보자 또는 후보

자명부에 의해 지출되는 선거비용의 상한선을 설정

- 하원의원선거의 선거비용 상한선은 각 후보자 당 38,000유로. 이 상한선은 선거구 주민 1명 당 0.15유로씩 증액

※ 선거비용 상한선은 매년마다 명령(décret)에 의해 국립통계경제연구소의 소비자물가 측정기준에 기초해 정해짐.

바. 회계보고서의 작성·제출(선거법 제52-12조)

- 회계보고서의 작성
  - 후보자는 선거자금 모금기간 중에 받은 수입금 총액은 출처별로, 지출비용은 항목별로 기재한 선거운동회계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회계보고서는 해당 선거가 실시되는 달의 초일의 6개월 전부터 작성해야 함.
- 회계보고서의 제출
  - 각 후보자는 1차 투표가 종료되는 선거일 이후의 열 번째 금요일 18시 이전까지 공인회계사 및 인가된 회계원이 작성한 선거운동비용회계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수입 및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운동 회계보고 및 정치자금 국가위원회에 제출

사.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선거법 제52-12조)

- 수 입

  수입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출처를 불문하고 얻는 다음의 모든 수입금
  - 후보자 자신이 그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
  - 후보자를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단체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자금으로 직접 제공하는 금액
  - 후보자가 임명하는 재정대리인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충당한 금액
  - 후보자에게 제공되는 직접 또는 간접의 편익과 서비스, 후보자에게 이익이 될 만한 기부금품 등의 평가액
- 지 출

  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회계보고서에 선거가 실시될 달의 6개월 전부터 선거일

까지의 기간 중에 후보자에 의하여,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그 선거에서 지출되거나 지출이 약속된 비용의 전부를 기입해야 함. 후보자의 선거운동지출비용은 그 지급일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 기간 내에 행하여진 모든 비용을 말하며 아래의 비용이 추가됨.

- 정당 또는 정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 정당이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비용도 그 결과가 선거운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실시된 것이면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례가 있음.

- 후보자에게 제공되는 직접 또는 간접의 편익과 서비스, 후보자에게 이익을 주는 기부금품등의 평가액
- 투표용지대, 홍보물 및 벽보 등의 인쇄비, 홍보용 게시판제작비등 국가의 비용상환에 해당하는 비용은 선거비용한도액에서 제외

아. 선거운동 회계보고 및 정치자금 국가위원회(선거법 제52-14조)[10]

- 구 성: 5년의 임기로 임명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국사원(Conseil d'Etat) 부원장이 추천하는 국사원 판사 또는 명예판사 3명
  -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판사 또는 명예판사 3명
  - 회계법원장이 추천하는 회계법원 위원 또는 명예위원 3명
- 임 무
  - 선거운동비용회계보고서의 승인, 기각 또는 수정을 함.
  - 회계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
  - 회계보고서가 소정기간 내에 미제출 되거나, 회계보고가 기각 또는 수정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것으로 평가하고 행정법원 선거소송 담당판사에게 소송을 제기, 부정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소송서류를 검찰에 송부
  - 회계보고서 또는 그 부속서류에 신고 된 지출금액이 통상적인 실제 가격에 미달되는 때에는 후보자에게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권유한 뒤, 그 차액을

10) Commission nationale des comptes de campagne et des financements politiques http://www.cnccfp.fr/index.phpart=1 (검색일 2019.6.6.)

평가하고 직권으로 이를 선거운동비용에 산입

- 위원회는 직·간접적으로 후보자에게 제공된 편익·서비스 및 후보자에게 이익을 준 여러 가지 현물기부 등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선거비용에 산입
- 위원회는 총선거가 실시된 해의 다음 연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을 포함한 업무보고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

자. 선거비용위반에 대한 제재(선거법 제52조-15조)

- 금전적 제재
  -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
  -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 후보자는 초과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해야 함.
- 형사상의 제재
  - 선거운동 회계보고 및 정치자금 국가위원회는 선거비용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선거비용자금모금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을 모금 또는 수수한 때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지출한 때
    ·선거운동비용회계보고서의 작성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선거운동비용회계보고서에 지출비용을 고의로 실제가격 이하로 기재한 때
    ※ 45,000유로의 벌금 및 3년의 징역에 처함(선거법 제113-1조).
  - 선거운동비용회계보고서를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 제출된 회계보고서가 기각된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지출한 후보자는 선거운동 회계보고 및 정치자금 국가위원회의 제소에 의하여 1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함(선거법 제118-3조).

4. 독 일

- 선거운동비용제한액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
- 선거운동비용의 사용액은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

  ※ 법률상 규제는 없으나 정당 간 협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지출을 자율적으로 규제
- 선거운동기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는 관계로 선거운동비용의 지출기간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음.
- 선거운동비용을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가의 재정보조금, 후원금(기부금) 등을 통한 정당 수입 중 선거운동에 사용된 재정의 비율 및 지출금액은 다음과 같음.

<표 8-6> 독일 정당별 수입 대비 선거비용의 비중 및 지출금액[11)]

연도	기민당 (CDU)	기사당 (CSU)	사민당 (SPD)	녹색당 (Grüne)	좌파당 (Die Linke)
2009	43.95% (€87,998,909.39)	32.14% (€14,386,281.19)	40.77% (€84,855,122.72)	42.10% (€15,597,349.95)	41.79% (€14,106,248.27)
2010	11.04% (€13,259,878.48)	2.20% (€671,195.50)	10.78% (€13,714,169.49)	9.76% (€2,493,817.17)	6.53% (€1,498,389.20)
2011	20.41% (€27,014,730.83)	2.79% (€889,232,.53)	17.05% (€24,134,464.23)	22.01% (€7,162,002.00)	16.76% (€4,497,872.52)
2012	12.51% (€15,287,441.08)	3.99% (€1,336,081.86)	11.37% (15,159,388.30)	13.30% (€4,086,919.16)	11.41% (€2,939,059.98)
2013	31.18% (€47,215,140.52)	37.48% (€20,249,004.62)	25.48% (€47,429,522.35)	32.73% (€14,194,405.28)	28.41% (€8,888,522.26)
2017	37.13% (€60,866,451.04)	22.38% (€10,111,195.34)	31.02% (€56,218,153.10)	33.51% (€15,849,865.49)	31.52% (€10,488,792.41)

11) 2009/2010 독일 주요정당 재정보고서
http://dip21.bundestag.de/dip21/btd/17/006/1700630.pdf (검색일 2019.7.31.)
2011/2012 독일 주요정당 재정보고서
http://dip21.bundestag.de/dip21/btd/17/123/1712340.pdf (검색일 2019.7.31.)
2013 독일 주요정당 재정보고서
http://dipbt.bundestag.de/doc/btd/18/043/1804300.pdf (검색일 2019.7.31.)
2017 독일 주요정당 재정보고서
https://dip21.bundestag.de/dip21/btd/19/070/1907000.pdf (검색일 2019.7.31.)

5. 일 본

가. (회계책임자)출납책임자(공직선거법 제180~188조)

- 후보자는 선거운동에 관한 수입 및 지출책임자(이하 “출납책임자”라 함) 1명을 선임해야 함.
- 후보자는 문서로 출납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을 정하고 출납책임자와 공동으로 서명·날인해야 함.
- 출납책임자는 후보자의 서면통지에 의해 해임되고, 출납책임자도 후보자에게 서면통지로 사임할 수 있으며 출납책임자의 사고·결원의 경우 출납책임자를 선임한 자는 우선적인 직무대행자가 됨. 출납책임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함.
- 출납책임자는 선거운동에 관한 수입·지출에 있어 그 책임을 담당하며, 입후보준비를 위한 지출, 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지출을 제외하고 선거비용은 원칙적으로 출납책임자만 지출할 수 있음.

  ※ 입후보준비를 위하여 필요했던 지출로 후보자 또는 출납책임자가 된 자가 지출하거나 기타의 자가 후보자 또는 출납책임자와 통모하여 지출한 것에 대하여는 출납책임자는 그 취임 후 즉시 후보자 또는 지출자에 대하여 정산해야 함.
- 출납책임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모든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장부 보고서를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출납책임자는 회계장부, 명세서, 영수증, 기타 지출증명서류를 보고서 제출일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함(공직선거법 제191조).

나. 선거운동에 관한 수입·지출보고서의 공표·보존 및 열람(공직선거법 제192조)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에 관한 수입·지출보고서를 수리한 경우 그 보고서의 요지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표해야 함.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에 관한 수입·지출보고서는 수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그 기간 중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

다. 선거비용제한액

1) 법정선거비용(공직선거법 제194,196조, 공직선거법시행령 제127조)

-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비용의 최고액(법정제한액)은 각 선거마다 선거일 공고일 후 즉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시함.
- 법정제한액은 해당 선거구 내 선거권자 수에 따라 산출하는 인수할액과 선거권자수와 관계없는 고정액을 합산하여 계산함.
-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출: 법정제한액=B+고정액
  [B=(선거구내의 선거인명부 등재자수/선거구내의 의원정수)×인수할액]

<표 8-7> 일본 선거비용제한액(일반선거구)

(공직선거법시행령 제127조)

선거의 종류	인수할액	고정액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선거	선거권자수×￥15	￥1,910만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 선거	의원수가 2명인 선거구 ￥13 의원수가 4명 이상인 선거구 ￥20	￥2,370만

※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후보자 1명에 대한 지출금액은 ￥5,200만으로 함.

2) 선거운동에 관한 지출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범위(공직선거법 제197조)

- 입후보 준비에 소요된 지출로 후보자 또는 출납책임자가 한 지출 이외의 것
- 입후보등록 후의 지출로 후보자 또는 출납책임자의 의사에 의한 지출 이외의 것
- 후보자가 타는 선박·자동차·말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
- 선거일 후 선거운동의 잔무 정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납부하는 조세 또는 수수료
- 후보자신고정당 및 참의원명부신고정당 등이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
- 정당 기타 정치단체가 행하는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
- 선거운동용 자동차 및 선박을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라. 선거비용위반에 대한 제재

1) 선거비용 법정액 위반(공직선거법 제247조)

- 출납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을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출납책임자의 선거비용 제한액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등(공직선거법 제251조의2)

- 출납책임자가 선거비용의 법정액 위반의 죄를 범하여 형에 처해진 때에는 관련된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함.
- 아울러 5년간 해당 선거와 관련된 선거구에서 실시하는 해당 공직에 관한 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음.

6. 스페인

가. 선거비용(선거법 제130조)

-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연합, 연정 또는 선거인 단체가 선거소집일로부터 당선자 공포일까지 아래의 명목으로 사용하는 비용을 말함.
  - 선거봉투 및 투표용지 작성
  -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직·간접적으로 권장하기 위한 선전 및 홍보
  - 선거운동 집회 개최를 위한 장소 임차료
  - 후보자들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비상근 직원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 후보자, 정당, 협회, 연합 또는 연정의 지도자 및 후보자 관계직원들의 교통수단 비용 및 이동비용
  - 우편 및 소인비용
  - 해당 보조금 수령일자까지 미지급된 선거운동용 대출금 이자
  - 사무실 개설 및 운영과 선거에 수반되는 용역에 대한 필요한 만큼의 경비

나. 선거비용 제한

- 의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 연합, 연정 또는 선거인 단체가 후보자군을 추천하는 선거구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총수에 0.37유로를 곱한 금액을 선거비용제한액으로 함(선거법 제175조제2항).
- 어떠한 정당, 연합, 연정 또는 선거인 단체도 이 법률에 명시된 제한액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으며, 이 선거비용제한액은 불변 유로 통화를 단위로 함(선거법 제131조제1항).
- 두 개 이상의 보통·직접선거가 실시될 경우 공동 참여하는 정당, 연합, 연정 및 선거인 단체는 의회의원 선거에 허용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5%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선거경비로 지출할 수 없음(선거법 제131조제2항).

다. 선거자금 조달

- 정치자금 기부(선거법 제128,129조)
  - 모든 중앙정부기관, 공공기관, 독립기관 또는 공단, 국가, 자치주, 도·시 소유의 공사, 반관반민(半官半民)기업, 중앙정부 기관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납품, 공사 등을 하는 모든 기업들로부터 나온 기금을 정치자금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는 금지
  -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온 기부금도 금지
  - 누구든지 동일한 정당, 연합, 연정 또는 선거인 단체가 개설한 계좌에 10,000유로 이상 기부할 수 없음.

라. 선거사무장(선거법 제121~123조)

- 모든 후보자는 수입지출 및 회계를 담당하는 선거사무장(administrador electoral, election manager)을 두어야 함. 동일한 도(province)내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모든 정당, 연합 또는 연정은 단일 선거사무장을 둠.
- 두 개의 도 이상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연합 및 연정은 추가로 총 선거사무장(administrador general, general manager) 1명을 두어야 함.

※ 해당 정당·연합·연정의 대표자에 의해 임명된 총괄 선거사무장은 선거소집일 이후 11일 전에

중앙선거위원회에 알림(선거법 제174조).

- 총괄 선거사무장은 정당, 연합, 연정 및 선거인 단체의 선거관련 수입지출 및 회계에 관해 책임을 지며 현행 기업회계 기준에 준하여 작성함.
- 성년자로 민법상 권리 및 참정권을 완전히 누리는 스페인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사무장으로 임명될 수 있음. 후보자 대리인이나 정당, 연합 또는 연정의 총괄 대리인은 총괄 선거사무장의 자격을 겸임할 수 있으나, 후보자 본인은 선거사무장이 될 수 없음.

마. 선거비용 회계 및 감독

- 선거비용 회계(선거법 제124~126조)
  - 총괄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장은 중앙선거위원회 및 도선거위원회에 각각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은행계좌를 알려야 함.
  - 은행계좌 개설은 선거사무장으로 선임된 날부터 할 수 있으며 어느 은행이나 할 수 있으며, 계좌 개설 24시간 이내에 알려야 함.
  - 선거비용과 관련된 어떤 정치자금의 기부도 위 개설된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며, 지출도 같은 계좌에서 출금되어야 함.
  - 선거운동이 끝난 뒤 이 은행계좌의 잔금은 선거일 후 90일 이내에 사전에 지출이 결정된 경비 결제에만 사용될 수 있음.
  - 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해당 선거사무장에게 통보가 되지 않은 선거비용에 대한 청구는 무효이며 결제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선거위원회 또는 중앙선거위원회는 이 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수 있음.
  - 이 계좌에 정치자금을 입금하는 기부자들은 본인의 이름, 주소, 신분증 또는 여권번호를 은행 직원에게 제시해야 하고 기부행위를 타인 혹은 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리인의 자격으로 할 경우 그 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함.
  - 정당이 계좌에 입금할 경우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함.
- 선거비용 회계 감독(선거법 제132조)
  - 선거소집일부터 선거일 후 100일까지 중앙선거위원회 및 도선거위원회가 선거비용 및 선거보조금에 대한 회계를 감독함. 이 경우 감사원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음.

- 중앙선거위원회와 도선거위원회는 언제든지 은행 등에 선거 경비 관련 거래 실적,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회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음.
- 중앙선거위원회와 도선거위원회는 선거사무장에게 선거비용 회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장의 질의에 답해야 함.
- 회계조사 도중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 통보하고, 선거비용제한액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됨.

- 감사원에 회계 보고(선거법 제133,134조)
  - 선거보조금을 수령할 요건을 충족하거나 보조금에 대한 선급금을 신청했던 정당·연합, 연정 또는 선거인 단체는 선거일 후 100일부터 125일 사이에 선거비용 수입·지출에 대한 상세한 회계자료를 증빙과 함께 감사원에 제출
  - 회계자료 제출은 다수의 도에서 실시한 선거에 참여한 정당·연합 및 연정의 경우 총괄 선거사무장이, 나머지 경우에는 선거사무장이 함.
  - 감사원은 선거일 후 200일 이내에 선거비용 회계의 결과를 공포하는데, 선거비용의 수입·지출과 관련하여 부정이 발생했을 때 해당 정당·연합·연정 또는 선거인 단체에 선거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거나 축소할 것을 건의할 수 있으며, 범죄행위의 혐의를 발견하는 경우 이를 검찰에 알려야 함.
  - 감사원은 위 기한 내에 각 정당·연합·연정 및 선거인 단체에게 타당하게 지출된 선거경비의 규모를 밝히면서 그 근거를 갖춘 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함.
  - 감사원이 보고서 송부한 후 한 달 이내에 중앙정부는 교부 예정 금액에 대한 특별 지원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이 보조금은 의회 승인 후 100일 이내에 지급함.

7. 스웨덴

- 선거법에 선거비용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 선거비용제한액도 없음.

8. 스위스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에 선거비용에 관련 규정 없음.

9. 캐나다

가. 선거비용의 범위(선거법 제376조)

- 선거비용은 선거기간동안 등록 정당이나 후보자를 직접 홍보하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용된 모든 비용으로, 비화폐성 기부금(non-monetary contribution)을 포함.
  - 제외: 기금모금 활동비용, 특정인을 후보자나 정당대표로 선출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
- 선거비용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
  - 광고 또는 홍보자료 제작비용, 매체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한 자료 발행·배포·방송 비용, 선거사무관계자(agent) 등에 대한 인건비, 회의장 사용료, 다과비용, 연구 및 여론조사 비용 등

나.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선거법 제477조의49~52)

- 선거법 규정(제477조의5)에 따라 결정된 선거구별 후보자 선거비용 기준금액과 선거소집령 발행된 날의 인플레이션 조정계수로 정함.
- 인플레이션 조정계수는 선거관리청장이 매년 4월 1일 전 해당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한 조정계수를 캐나다 관보에 발표(선거법 제384조)
  - 조정계수는 1992년을 100으로 하여 기준점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해당일 전년도의 캐나다 통계청이 산정하여 발표한 연도별 평균 소비자가격지수를 분자로, 1998년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이 산정하여 발표한 연도별 평균 소비자가격지수인 108.6을 분모로 하여 산정

-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시 제재: 즉결심판을 통해 2,000캐나다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3개월 이하의 징역(선거법 제497조의4제1항, 제500조제1항)

1) 예비(수정) 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산정

최초 15,000명의 선거권자에 대하여: 1명당 2.1735캐나다달러 이후 10,000명의 선거권자에 대하여: 1명당 1.092캐나다달러 나머지 선거권자에 대하여: 1명당 0.546캐나다달러

※ 제한액에 후보자의 여행, 생활, 기타 개인지출은 포함되지 않음.

2) 저인구밀도의 지역(km²당 평균 10명 미만 선거구)

- 평균선거구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과 각 km²당 0.31캐나다달러 또는 위 표의 25% 중 적은 금액으로 함. 단, 평균 선거구선거비용제한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음.

3) 선거인수 평균 이하 선거구

- 총선거
  -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가 총선거에서 전체선거구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평균선거인수보다 적은 경우, 선거인수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 수와 평균선거인수의 중간을 선거인수로 선거비용 산출
- 보궐선거
  -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가 직전 총선거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평균선거인수보다 적은 경우, 선거인수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수와 평균선거인수의 중간을 선거인수로 선거비용 산출

4) 회계보고(선거법 제477.59조)

-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목적만으로 사용할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은 모두 이 계좌를 통해야 함(선거법 제477조의46).
-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는 규정된 서식에 따라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의견서, 회계감사 의견보고서를 포함한 정치자금회계보고서를 선거일 후 4개월 이내에 선거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정치자금회계보고서에는 선거비용지출내역, 정치자금 미지급금 내역서 및 후보자 대출내역, 세부내용, 기부금 총액과 200캐나다달러 이상 후원자 명단 및 후원금액, 지출증빙서류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고의를 수반하는 위법행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판을 경우 50,000캐나다달러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양자의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음(선거법 제497조의4, 제500조).

다. 정당의 선거비용제한액(선거법 제430조)

- 후보자를 추천한 등록정당의 선거구 예비선거인명부의 선거인수 또는 그 선거구의 수정선거인명부의 선거인수 중에 더 큰 값에 0.735캐나다달러를 곱한 기준금액과 선거소집령 발행된 날의 인플레이션 조정계수로 정함.

  ※ 인플레이션 조정계수: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참조

1) 선거일 연기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 총독이 선거법 제59조에 따라 1개 이상의 선거구의 선거일 연기를 명하면 선거기간이 연장되고 그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도 늘어남.
- 해당선거구 예비선거인명부의 선거인수 또는 그 선거구의 수정선거인명부의 선거인수 중에 더 큰 값에 0.735캐나다달러를 곱한 기준금액을 기존 선거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과 인플레이션 조정계수, 연장된 선거기간의 일수로 정함.

2)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정당을 대신하여 후보자에게 이전한 비용
- 회계책임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를 통해 지출되었으나 선거사무소의 권한 범위 내에서 지출된 것이 아닌 비용

3) 선거비용 초과금지(선거법 제431조)

- 등록정당의 사무국장은 정당을 대신하여 선거법 제430조에 따라 산정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하여서는 안 됨.
- 등록된 정당 또는 제3자는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를 피하기 위해 서로 공모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10. 호 주

가. 선거비용의 정의

- 선거비용이란 선거와 관련한 사안(electoral matter)을 전달하거나 만들기 위한 뚜렷한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말함(연방선거법 제287AB조).
- 선거비용에 관한 수입·지출 및 보고를 위해(연방선거법 제287V조)
  - 등록된 정당, 후보자, 그리고 단체는 대리인(agent)을 지정
  - 선거운동원들(political campaigners)과 관계 단체들(associated entities)은 회계책임자(financial controllers)를 지명

나. 기부금(political donations/gift)

- 후보자, 정당 및 주의 정당 또는 준주지부에 대한 현금, 물품기부 가능(연방선거법 제302B조)
- 외국인은 정당, 후보자, 상원후보자 그룹에 등록된 관계단체 및 선거운동원들에게 1,000호주달러 이상을 기부할 수 없고, 또한 단체, 선거운동원, 제3자에게 외국인 기부는 허용하지 않음(연방선거법 제302A조).
- 후보자의 대리인은 선거일 후 15주 이내에 선거 또는 재선거에서 후보자였던 기간 동안 후보자가 수령한 모든 기부의 총액, 기부자 수, 기부에 관한 상세한 사항(후보자 그룹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후보자 그룹이었던 기간 동안 그 그룹에서 받은 기부금 내역)을 회계보고서로 선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연방선거법 제304조).
- 10,0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기부는 기명으로 해야 하고, 10,0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익명 기부금은 연방정부에 귀속됨(연방선거법 제306조).

다. 선거비용 보고 및 공개

- 후보자나 상원선거 후보자 그룹의 자격으로 선거기간 동안 사용된 선거비용 지출내역은 선거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대리인은 회계보고의 책임이 있음(연방선거법 제307A조).

※ 선거비용 외에 등록된 정당, 선거운동원, 제3자(the third party) 그리고 관계 단체들(associated entities)은 매 회계연도마다 그 해에 발생한 수입과 지출금액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함(연방선거법 제314AAA조).

- 후보자와 각 단체의 대리인은 선거일 후 15주 이내에 후보자와 각 단체 구성원의 권한으로 지출한 선거비용의 세부사항을 기재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연방선거법 제309조).
- 등록된 정당, 선거운동원, 관계 단체는 각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마지막 날 이후 16주 이내에 선거위원회에 그 해 동안의 선거비용 수입·지출 세부내역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연방선거법 제314AAA조).
- 회계공개기준 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해 그 세부내역을 명시해야 함(연방선거법 제314AC조).

  ※ 2017-2018년 연중 회계공개 기준: 13,500호주달러[12)]

- 선거위원회는 제출된 선거비용 보고서를 공표함(연방선거법 제320조).

라. 선거비용 관련 벌칙

- 후보자 또는 상원의원선거 후보자 단체 대리인이 기간 내에 회계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연방선거법 제309조)
  - 60 페널티 유닛
  - 공개하지 않는 선거비용 지출액을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는 그 금액의 3배
- 등록된 정당 또는 등록된 정당의 주 지부 대리인이나 회계책임자가 회계연도에 제출하는 연중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연방선거법 제314AB조)
  - 120 페널티 유닛
  - 공개하지 않는 선거비용 지출액을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는 그 금액의 3배
- 관계 단체와 제3자가 회계연도 연간 회계보고 위반행위가 있을 시 다음 중 더

12) 호주선거위원회 홈페이지. p.13. https://www.aec.gov.au/Parties_and_Representatives/financial_disclosure/guides/political-parties/files/political-parties-2017-18.pdf (검색일 2019.8.7.)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연방선거법 제314AEA조, 제314AEB조)

- 60 페널티 유닛
- 공개하지 않는 선거비용 지출액을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는 그 금액의 3배

  ※ 미공개 비용의 경우 그 금액의 3배

<표 8-8> 각국의 선거비용 지출에 대한 제한

구분	국가명
정당의 선거비용에 제한을 두는 국가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벨기에, 베냉, 부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캐나다, 카보베르데,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조지아, 그리스, 과테말라, 기니,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케냐, 한국,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멕시코, 몽골, 몬테네그로, 미얀마, 네팔, 뉴질랜드, 파나마, 파라과이, 필리핀, 포르투갈, 러시아, 산마리노, 상투메프린시페,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수단, 탄자니아, 태국, 토고, 영국, 미국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제한을 두는 국가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베냉, 부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불가리아, 캐나다, 카보베르데, 칠레,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에콰도르, 이집트, 프랑스, 조지아, 기니,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카자흐스탄, 케냐, 한국,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레바논,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몰타, 모리타니, 모리셔스, 멕시코, 몰도바,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미얀마, 네팔,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파나마,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연방, 산마리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제도, 대만, 탄자니아, 태국, 토고,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영국

출처: IDEA. Political Finance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data/political-finance-database (검색일 2019.5.20.)

<표 8-9> 각국의 선거비용 보고서 제출 및 공개여부 현황

구분	국가명
정당이 정기적 회계 보고 국가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방글라데시, 벨기에,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카보베르데, 칠레,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코스타리카, 코트디브아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슬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한국,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몰타, 모리타니, 멕시코,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미얀마, 나미비아,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콩고공화국,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산마리노,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군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수리남, 스웨덴, 대만,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동티모르, 토고, 튀니지, 터키, 우간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예멘
정당이 선거비용 보고 국가	알바니아, 안도라,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벨기에,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캐나다, 카보베르데,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핀란드, 가봉, 조지아,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카자흐스탄, 케냐, 한국, 키르기스스탄,

구분	국가명
	라트비아,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멕시코, 몰도바, 몽고,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군도, 스페인, 수단, 수리남, 시리아, 대만,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토고, 튀니지, 우간다(의회선거),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후보자가 선거비용 보고 국가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베냉, 부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캐나다,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콰도르, 이집트, 에스토니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그리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슬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카자흐스탄, 케냐, 한국,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몰타, 모리타니, 모리셔스, 멕시코, 몰도바, 모나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미얀마, 네팔,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파키스탄, 팔라우,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군도, 수단, 수리남, 스웨덴, 시리아, 대만,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동티모르, 토고,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우간다(대통령선거),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보고서 공개 국가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앙골라,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카자흐스탄, 케냐, 한국,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몰디브, 말리, 몰타, 멕시코,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미얀마,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제르,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팔라우,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연방, 상투메프린시페, 세르비아,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수단, 수리남, 스웨덴, 대만, 타지키스탄, 태국, 동티모르, 토고,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우간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출처: IDEA. Political Finance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data/political-finance-database (검색일 2019.5.27.)

<표 8-10> OECD국가의 선거비용 제한액 현황

국가명	비용 제한액	근거규정
영 국	• 후보자(개인) - 군(county)선거구: £7,150+선거권자 1인당 5펜스 - 구(borough)선거구: £8,700+선거권자 1인당 7펜스 ※ 보궐선거시는 선거구당 £100,000 • 정 당 선거구당 £30,000 • 정당은 선거의 전·중·후를 불문하고 선거의 실시나 관리에 관하여 제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1983년 국민대표법 제76조
미 국	• 후보자: 제한액 없음. • 정 당 - 주에서 1명 선출하는 경우 투표연령인구×2센트+물가상승률 감안금액 또는 20,000달러+물가상승률 감안금액 중 많은 금액 - 2명 이상 선출하는 경우 후보자당 10,000달러(한화 1,200만 원정도)	연방선거운동법 제30116조(d)(3)
프랑스	• €38,000+선거구민 1명당 €0.15를 가산한 금액 • 회계보고시에는 선거가 실시될 달의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 후보자에 의해, 후보자를 위해 지출되거나 지출이 약속된 비용 전부를 기입해야 함.	선거법 제52-11조
독 일	• 법률상 규제는 없으나 정당 간 협정에 의해 선거비용지출을 자율적으로 규제 • 선거별 선거운동비용의 상한액은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 • 선거운동비용의 사용액은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규정	-
일 본	• 보통선거구 ￥1,910만+(선거구내 선거인명부 등재자수/선거구내의 의원정수)×￥15(2억 2,100만 원 정도) •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공고 전까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일 경과 후에 기부 및 수입·지출에 대하여는 이를 정산하여 선거일부터 1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	공직선거법 제194,196조
스페인	• 투표권을 가진 주민총수에 €0.37를 곱한 금액 • 두개 이상의 보통·직접선거가 실시될 경우 공동 참여하는 정당, 연합, 연맹 및 단체는 국회의원 선거에 허용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5%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선거경비로 지출할 수 없음.	선거법 제131,175조
스웨덴	• 선거법에는 선거비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선거비용은 주로 후보자 개인이 아닌 정당들이 부담하고 있음.	-
스위스	• 규정 없음.	-
캐나다	• 선거권자 최초 15,000명까지: 1명당 C$2.1735 • 이후 10,000명에 대하여: 1명당 C$1.092 • 나머지 선거권자에 대하여: 1명당 C$0.546 (선거구당 평균 6,200만 원 정도)	선거법 제477조의49~52
호 주	• 연방선거법에서 선거비용 지출에 대한 한도액 폐지	-
오스트리아	• 후보자: €15,000 • 정당: 각 정당 €700만	정당자금법 제4조제1항

국가명	비용 제한액	근거규정
	- 두개 이상의 정당이 동일한 후보자명부를 지지한다면 각 정당 제한액의 합산 총액	
벨기에	• 정 당: €1,000,000 • 후보자: €8,700+선거권자 1명당 €0.035 ※ €0.035×후보자가 출마한 선거구의 지난 선거 선거권자 수	정치자금법 제2조제1,2항
체 코	• 정 당 - 상원선거 ·후보자 1명당 2,000,000CZK(VAT 포함, 한화 약 1억 원), 1차선거만 참여시 ·후보자 1명당 2,500,000CZK(VAT 포함, 한화 약 1억 3천만 원), 1,2차선거 모두 참여시 - 하원선거: 90,000,000CZK(VAT 포함, 한화 약 46억 원)	선거법 제16c조제2항
칠 레	• 정 당 - 상원선거: {(후보자 1명당 1,500UF[13])+(해당 선거구 선거권자 최초 200,000명까지 ×15,000UF×1/200)}+(정당 투입가능비용: 후보자 1명 총 선거비용의 1/3) - 하원선거: {(후보자 1명당 700UF)+(해당 선거구 선거권자 수×15,000UF)}+(정당 투입가능비용: 후보자 1명 총 선거비용의 1/3) ※ 1UF: 2016 기준 25,855.14CLP(한화 약 5만 원)[14], UF값은 선거비용제한액 결정일을 기점으로 유효함. ※ 법률에서 규정한 선거구획정기준과 선거비용 산출 공식에 따라 선거위원회가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선거구별로 산출하여 공시 ※ 2017 상하원 선거 최대 제한액[15] - 상원: 최대: 1,504,380,077CLP(한화 약 25억 원) 최소: 52,881,656CLP(한화 약 9,000만 원) - 하원: 최대: 9,633,161,000CLP(한화 약 163억 원) 최소: 414,950,312CLP(한화 약 7억 원)	선거비용제한 및 투명성법 제4,5조
덴마크[16]	• 규정 없음.	-
에스토니아	• 규정 없음.	-
핀란드	• 규정 없음.	-
그리스	• 후보자: 기본금 €150,000×출마하는 선거구별 계수[1:1, 2~7:0.5, 8~:0.1] ※ 계수(coefficient)는 조정될 수 있음. ※ Cyclades, Dodecanese 선거구 계수값은 0.5로 고정 • 정 당: 모든 정당에 제공되는 국고보조금(regular funding) 최대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정치자금법[17] 제13,14조
헝가리	• 후보자: 5,000,000HUF을 기준으로(법 시행 이후 첫 총선 실시연도부터) 해당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을 반영하여 산정 • 정 당: 정당이 등록한 후보자 수에 비례하여 산정	선거자금법 제7조
아이슬란드	• 후보자: 1,000,000ISK+선거권자 1명당 75~175ISK ※ 18세 이상 주민 5만 명 이상 거주하는 선거구: 1명당 75ISK 증액 18세 이상 주민 4만 명 이상 5만 명 미만 거주하는 선거구: 1명당 100ISK 증액 18세 이상 주민 2만 명 이상 4만 명 미만 거주하는 선거구: 1명당 125ISK 증액 18세 이상 주민 1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 거주하는 선거구: 1명당 150ISK 증액 18세 이상 주민 1만 명 미만 거주하는 선거구: 1명당 175ISK 증액	정치자금법 제7조
아일랜드	• 후보자 - 의원수 3석 선거구: £14,000(한화 약 1,900만 원)	선거법(1997) 제32조제1항제a호,

국가명	비용 제한액	근거규정
	- 의원수 4석 선거구: £17,000(한화 약 2,300만 원) - 의원수 5석 선거구: £20,000(한화 약 2,700만 원) - 정당 또는 후보자 회계담당자는 선거일부터 56일 이내에 지출내역 보고서를 선거비용 지출 회계검토를 담당하는 공직기준위원회[18]에 제출	제36조제1항제a호
이스라엘	• 정 당: 정당연합 또는 신진 정당연합의 경우 70FU를 초과하는 비용을 사용할 수 없음. - 5명 미만 의석 정당: 10FU - 5명 이상 11명 미만 의석 정당: 2FU×의석 • 11명 이상 의석 정당: 10명까지 2FU, 그 이상은 1.5FU ※ 상한액 1FU당 1,368,100NIS(한화 약 4억 5천만 원)[19]	정치자금법 제7조제A~D항
이탈리아	• 후보자: (선거구 당 고정비 €52,000)+(선거권자 수×€0.01) • 정 당: 전국 상·하원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선거권자 수×€1.00	상·하원의원 선거운동규제 제515호 제7,10조
라트비아	• 정 당: 지난 선거의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 1명 당 월평균 총 근로소득(유로화 기준)×0.0004(계수)에 해당하는 금액한도 이내 ※ 월평균 총 근로소득은 중앙통계국에서 발표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함.	사전선거운동법 제5조제1항 정치자금법 제84조제1항
리투아니아	• 후보자 - 선거인명부 등록자 수×€0.29 ※ 결과값 가장 앞 유효숫자 2자리에서 반올림(맨 앞 세 번째 숫자 반올림) ※ 결과값이 €5,792보다 작은 경우, 선거비용은 €5,792로 고정 ※ 2016년 총선 기준 선거비용 제한액 €740,000[20]	정치자금법 제14조제2,3항
룩셈부르크	• 선거비용 지출에 대한 한도액 규정 없음.[21]	-
멕시코	• 하 원: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300 • 상 원: 하원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의 합×상원의원선거 선거구 수 (단, 상원의원선거 선거구 수는 20개를 넘지 못함) ※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각 정당별 국고보조금의 20%	연방선거법 제243조 제4항제a,b호
노르웨이	•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선거비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정당법 제22조제2항 정당규제법 제3-5,3-6조
네덜란드	• 규정 없음.	
뉴질랜드	•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선거비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정당법 제22조제2항 정당규제법 제3-5,3-6조
폴란드	• 상 원: 비용제한=전국 선거권자 수×0.18PLN(약 55원)×정당이 후보자를 등록한 선거구의 수/100(상원의원총수) • 하 원: 비용제한=전국 선거권자 수×0.82PLN(약 250원)×정당이 후보자를 등록한 선거구에서 뽑힌 의원의 수/460(하원의원총수) • 재정담당장관은 물가 상승률이 5% 이상인 경우 비용제한액을 조정해야 함. • 방송광고비용은 선거운동비용제한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선거법 제136,199, 200,259조

국가명	비용 제한액	근거규정
포르투갈	• 후보자(개인): IAS×60에 해당하는 금액(IAS- Indexante dos apoios sociais 사회 보장 금액 기준, 2019 IAS=€435.76)	정당자금법 제20조
슬로바키아	• 정 당: 최대 €3,000,000(VAT 포함, 한화 약 40억 원)	선거운동법 제3조제1항
슬로베니아	• 정당 및 후보자: 선거권자 1명당 €0.4	선거운동법 제23조
터 키[22]	• 선거비용을 제한하는 법률상의 규정이 없음.	-

13) unidades de fomento: an amount fixed in UF –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받지 않는 칠레 회계단위 https://data.moneypoliticstransparency.org/countries/CL/?expand=true#indicator_17 (검색일 2019.6.21.)

14) 칠레 선거위원회 https://www.servel.cl/limites-del-gasto-electoral/ (검색일 2019.6.21.)

15) https://www.servel.cl/servel-determina-limites-de-gasto-de-partidos-en-campanas-2017/ (검색일 2019.6.24.)

16) OSCE 2019 덴마크 총선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denmark/419231?download=true (검색일 2019.9.26.)

17) OSCE 2019 그리스 총선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greece/420839?download=true (검색일 2019.9.26.)

18) 공직기준위원회(SIPO; Standards in Public Office Commission) https://www.sipo.ie/en/ (검색일 2019.6.21.)

19) 2015년 기준 1회계단위(FU) 금액 https://www.loc.gov/law/help/campaign-finance-regulation/israel.php#_ftnref18 (검색일 2019.6.19.)

20)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lithuania/296446?download=true (검색일 2019.8.2.)

21) OSCE 2018 룩셈부르크 총선 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389582?download=true (검색일 2019.6.19.),

22) OSCE 2018 터키 총선 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turkey/381448 (검색일 2019.8.23.)

<표 8-11> OECD국가의 선거비용 관련 위반 시 제재내용

국가명	위반 시 제재내용	근거규정
영 국	• 부패행위(매수·향응제공, 비용허위보고), 위법행위(위법고용, 교통시설 등 위법대차, 선거비용 규정 위반): 당선무효 • 선거비용 관련 보고서 미제출 등: 벌금 부과	1983년 국민대표법 제85조
미 국	• 고의로 연중 총액 2,000달러 이상을 기부 및 지출 위반 시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 선거비용 회계보고서 보고의무 위반 시 벌금형이나 징역형 또는 양자의 병과	연방선거운동법 제30109조(d)
프랑스	• 선거비용자금모금규정을 위한해 금품을 모금 또는 수수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지출 한 경우, 선거운동비용회계보고서의 작성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 €45,000의 벌금 및 3년의 징역에 처함 •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의 경우 초과액 상당액 국고납입(형사상 제재 부가)	선거법 제52-15, 113-1조
일 본	• 선기비용제한액 초과시: 3년 이하 금고 또는 ￥50만 이하 벌금 • 출납책임자가 선기비용제한액 위반으로 형에 처해진 때는 당선무효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일정기간 정지(벌금형: 5년, 금고이상: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누범자는 10년)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251조의2
스페인	• 선거비용 관련 회계 위조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함	선거법 제149조
캐나다	•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시 초과분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 • 회계책임자 선임 불이행, 영수증 등 미제출 시 벌금형이나 징역형 또는 양자의 병과	선거법 제496,500조
호 주	• 기간 내 회계보고 미제출시 벌금 부과	연방선거법 제309조
오스트리아	• 수입과 지출 회계 장부의 기록·보고의무 위반: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00,000 이하의 벌금 • 기부금의 모집 및 기록·보고 의무 위반: 최대 €20,000 이하의 벌금, 당선 의원이나 후보자가 위법한 기부금을 받은 경우는 벌금과 함께 해당 기부금 몰수	정당자금법 제10조제6항, 제12조
벨기에	•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후보자의 경우 제한액 초과분의 벌금형을 부과 또는 €25,000에서 최대 월 급여 4배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하고 정당의 경우 €1,000 이상 €250,000 이하의 벌금(재범의 경우 2배)부과 • 보고서관련 위반: €1,000 이상 €30,000 이하의 벌금 부과	정치자금법 제14조 선거법 제181조
체 코	• 정당, 정당연합이나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할 경우 • 최소 10,000CZK(한화 약 51만 원)~최대 [선거비용 제한액×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	선거법 제16C조제2항, 제16G조제2항제J호, 제4항제D호
칠 레	•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 UF를 기준으로 선거위원회에서 금액을 산출하여 벌금을 부과 • 30% 미만 범위 내 초과액: 초과금액×2 • 30% 이상 50% 미만 범위 내 초과액: 초과금액×3 • 50% 이상 범위 내 초과액: 초과금액×5	선거비용제한 및 투명성법 제29조
에스토니아	• 기부금의 모집 및 기록·보고 의무 위반: 최대 €15,000 이하의 벌금 • 위반된 기부금의 주정부 예산으로의 이전이 규정일 보다 연체된 경우, 정부 보조금의 0.85%를 매 일일 마다 가산 • 정당 회계의 기록 보고·의무 위반: 정당, 후보자가 위반한 경우 최대 300 벌금단위	정당법 제1212조, 제1214조~제1216조

국가명	위반 시 제재내용	근거규정
	(trahviühikut: 에스토니아의 벌금 기준 단위, 현재 €4), 법인이 위반한 경우 최대 €15,000 이하의 벌금	
핀란드	• 보조금의 사용, 선거운동자금과 기부의 조달보고 및 운영계획에 관한 보고의무가 올바르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의 처벌위원회가 벌금을 부과하거나 정당보조금의 지급중지 또는 회수를 명령할 수 있음.	정당법 제9e,11조 선거자금법 제10조 감사원법 제15조
그리스	• 후보자: 초과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 • 정 당: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초과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50% 이상인 경우 벌금과 더불어 다음 해 국고보조금(regular funding)지급을 하지 않음.	정치자금법 제24조제6항 제25조제5항
헝가리	• 보조금에 대한 회계보고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보조금의 2배를 재무부에 반환 •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시 초과지출 금액의 2배를 정부에 반환 • 감사원이 정당 자금의 위법을 감사하여 재무부에 보고하고 위법에 따른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금을 부과	선거자금법 제8조제3항 제8A조제3항 제9조제4항
아이슬란드	• 후보자의 경우 선거비용 지출액이 400,000ISK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보고의무 면제 • 정당에 대한 선거비용제한액 규정 없음.[23]	정치자금법 제10조
아일랜드	•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금액을 선거비용 보전금액에서 삭감 • 선거비용 지출내역 보고서 제출기한 위반 시 £1,000(한화 약 131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제출기한 초과 1일마다 최대 £100의 벌금을 부과 • 선거비용 지출내역, 지출용도 보고서 문서작성 담당자가 해당문서를 위조할 시 최대 £20,000의 벌금과 법원 재량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음.	선거법(1997) 제40조제a,b항 제43조제2항제d호 제3항제c호 제5항제a~c호
이스라엘	•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경우, 지출을 명령한 자 또는 정당연합이나 후보자로부터 지출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징역 1년 또는 형법 제61조제a항 제3호[24]에 따라 67,300NIS(한화 약 2,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정치자금법 제9A조제c항
이탈리아	•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① 초과액 이상: 3배 이하의 행정벌금 ② 초과액이 선거비용제한액 2배 이상인 경우 ①의 벌금과 함께 후보자 자격 상실 • 정 당: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50% 이상 3배 이하의 행정벌금	상·하원의원 선거운동규제 제515호 제15조제9,16항
라트비아	• 부패방지국(KNAB)은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를 적발할 경우 해당 정당 또는 정치연합의 선거비용지출 제한액 초과분을 30일 이내로 국고로 귀속시킴. • 해당 정당 또는 정치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부패방지국은 초과분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을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정치자금법 제10조 제21항
리투아니아	• 선거비용제한액을 10% 이상 초과할 경우 선거법 위반 •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경우 정치자금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함. • 선거운동비용 회계보고서 위조에 대한 벌금 외에 선거법상 처벌규정이 없음.[25] ※ 위반사항에 대하여 중앙선거위원회가 2년간 선거비용 직접지원 자격 박탈, 과태료 부과 등을 부과할 수 있음.[26]	정치자금법 제23,24조
멕시코	•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시 연방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 정 당: 행위의 경중에 따라 현행 최저임금×10,000일에 해당하는 벌금(재범 시	연방선거법 제443조제f항

국가명	위반 시 제재내용	근거규정
	2배 징수), 국고보조금 지급액 50% 삭감 • 후보자: 행위의 경중에 따라 현행 최저임금×5,000일에 해당하는 벌금, 후보자등록 취소 • 후보자(무소속): 행위의 경중에 따라 현행 최저임금×5,000일에 해당하는 벌금, 후보자등록 취소, 선거비용 미신고 또는 미반납시 연속 2회 선거출마 금지	제456조제1항 제a,c,d호
노르웨이	•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의무 위반 시 국고보조금 삭감	정당법 제28조
네덜란드	• 정당의 수입과 지출, 채무 기록·보고 의무 위반: 최대 €25,000 • 정당이 벌금을 선고 받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일정 기간 중단. (€1,125 미만의 벌금-1년, €2,250 미만의 벌금-2년, €3,375 미만의 벌금-3년, 그 이상의 경우 4년간 보조금 지급 중단)	정당자금법 제37,39조
뉴질랜드	• 선거운동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문서, 계정을 선거일 이후 3년까지 보관해야함. 선거비용보고서를 규정기간까지 보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NZ$40,000 이하의 벌금 • 선거비용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NZ$40,000 이하의 벌금 • 선거비용보고서가 허위 또는 잘못 기재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시, - 위법 의도가 없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최선의 과정을 거쳤을 경우 재정담당관이나 당대표는 NZ$40,000 이하의 벌금, 그 외 당사자의 경우 NZ$10,000 이하의 벌금 - 위법 사실을 인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선거법 제204E,205F,205N, 205O,206D조 선거자금법 제106,143,144조
폴란드	• 정당의 회계 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1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고, 작성의무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벌금 및 2년 이하의 징역 • 선거자금이 아닌 정당자금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 선거자금의 목적 외 사용 1,000PLN 이상 100,000PLN 이하의 벌금 • 규정에 초과된 기부를 수락하거나 위법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한 경우 벌금 또는 징역	정당법 제34c조, 제49c조~ 제49h조
포르투갈	• 불법자금조달, 선거비용제한액 위반: 1년 이상 3년 미만의 징역 • 정치자금 관련 위반: 기부금, 경상보조금 등 - 정당: 최소 IAS의 10배 최대 IAS 400배 미만에 해당 하는 벌금 - 개인: 최소 IAS의 2배 최대 IAS 5배 미만에 해당 하는 벌금 • 수입과 지출 비용에 대한 차별, 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정당과, 법인의 이사, 개인별로 벌금을 규정 (IAS-Indexante dos apoios sociais사회 보장 금액 기준, 2019 IAS=€435.76)	정당과 선거운동자금법 제28,29조
슬로바키아	•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거나 재무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을 시 내무부가 해당 정당에 €10,000~100,000(한화 약 1,400~1억3,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선거운동법 제19조제2항 제a호
슬로베니아	•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경우 €7,000 이상 €12,500 이하의 벌금 부과	선거운동법 제39조제1항

※ 독일,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룩셈부르크, 터키는 정당이나 후보자 모두 선거비용지출에 대한 제한 규정 없음.

23)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iceland/374101?download=true (검색일 2019.8.1.)

24) 이스라엘 형법 제4장 벌금 제61조제a항제3호: 죄목에 대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형의 경우 최대 67,300NIS를 부과(Penal Law 5753-1977 6th Edition)

25) https://ifes.org/sites/default/files/brijuni18countryreport_finaledited1_0.pdf (검색일 2019.8.1.)

26)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lithuania/296446?download=true (검색일 2019.8.2.)

제2절
선거비용 보전

- 정당이나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해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으나,
- 프랑스·독일·일본·스페인·스웨덴·캐나다에서는 일정한 제한요건을 달성한 자에 한하여 선거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줌.
- 그 외 무료우편, 라디오·텔레비전 등 방송시설, 세금혜택 등을 통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스위스 선거법에는 선거비용 보전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음.

1. 영 국

가. 무료우편물(1983년 국민대표법 제91조)

- 후보자는 선거인 1명당 1통씩 선거에 관한 내용의 선거인사문 등을 넣은 중량 60g이내의 우편물을 무료로 송부할 수 있음.

나. 정당의 선거방송 등(1983년 국민대표법 제93조)

- 정치 광고를 위해 방송시간을 구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BBC나 주요 TV·라디오 방송사는 일정자격을 갖춘 정당들에게 선거 때나 특정 행사 때 무료로 방송시간을 제공

다. 선거집회를 위한 시설의 이용(1983년 국민대표법 제95조)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공개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선거관리관이 선거소집령을 수령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사이 학교 등 부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 집회를 소집한 자 또는 자기를 위하여 그 집회가 개최된 자는 그 장소의 준비,

난방, 조명 및 청소와 집회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및 개최 후 원상회복에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함.

라. 야당 의정활동 지원금

- 선거비용이나 정당운영에 대한 국고보조금제도는 없으며, 다만 하원 야당의 의회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보조제도(일명 “Short Money”)를 1975년에, 상원 야당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제도(일명 “Cranborne Money”)를 1996년에 도입
- 하원 야당의 의정활동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2018년 4월 1일 기준 지난 총선에서 획득한 의석수(획득 의석수×£17,673.65)와 득표수(득표한 매 200표당×£35.30)를 기준으로 산정[27)]

  ※ 2018/19년 Short Money는 제1야당인 노동당은 7,879,789파운드가 지급됨.
- 상원 주요 야당에게 지급되는 크랜본 머니(Cranborne Money)는 상원 내 야당 리더와 야당 원내총무의 급여 등으로 사용

  ※ 2017/18년 Cranborne Money는 두 주요 야당인 노동당과 자유민주당에 각각 605,318파운드와 302,229파운드가 지급됨.[28)]

2. 미 국

가. 연방 차원[29)]

- 「내국세법」 제95장 제9004조의 조건을 충족한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은 대통령선

---

27) 의회홈페이지. House of Commons Library report. Richard Kelly. “Short Money.” October 4. 2018. https://researchbriefings.parliament.uk/ResearchBriefing/Summary/SN01663 (검색일 2019.6.28.)

28) 의회홈페이지. ‘Financial assistance for Opposition parties.’ https://www.parliament.uk/mps-lords-and-offices/members-allowances/house-of-lords/financial-assistance-for-opposition-parties/ (검색일 2019.6.28.)

29) NCSL. ‘Public Financing of Campaigns: Overview.’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public-financing-of-campaigns-overview.aspx (검색일 2019.6.25.)

거운동기금으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음(내국세법 제95장 제9006조).

※ 연방의회 상·하원의원에 관한 연방 차원의 선거비용 보전은 없음.

- 대통령 선거보조금은 경선과 본선 모두 보전[내국세법 제96장 제9033조(a)(3), 제9038조(a)]
  - 경선은 정당소속 후보자만 매칭펀드(matching fund)로 보전
  - 본선은 주요 정당후보자와 소수당 후보자를 구분하여 보전
  -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후보자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초과지출시, 선거운동 외 지급, 여분의 경우 반납해야 함.

    ※ 미국대통령 선거공영제의 재원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기부(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를 통해 자금을 조성함[내국세법 제6096조(a)].

- 대통령 선거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선거비용이 다음의 지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됨[연방선거운동법 제30116조(b)(1)(A)(B),(c)].
  - (경선) 대통령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운동의 경우 10,000,000달러
  - 단, 1개 주에 있어서는 그 주의 투표연령 인구수(상무부장관이 위원회에 통보된 것에 의함)에 16센트를 곱한 금액 또는 200,000달러 중 다액
  - (본선) 대통령선거운동의 경우 20,000,000달러
  - 부통령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지출된 비용은 대통령 선거운동에 대한 지출로 간주됨. 이와 더불어 후보자의 수권위원회(authorized committee) 혹은 기타의 대리인이나 이들에 의해 승인받거나 요청받은 자에 의한 지출 역시 대통령 선거운동 비용으로 간주됨.
  - 이 지출 한도는 1974년의 연방선거운동법의 제정 시점을 기준으로 물가지수의 상승에 따라 증액됨.
  - 2016년 대통령선거의 예비선거의 실질적인 지출한도는 23,821,100달러였음.[30][31]

---

30) FEC. ‘Coordinated party expenditure limits adjusted(2016).’ https://www.fec.gov/updates/coordinated-party-expenditure-limits-adjusted-3/ (검색일 2019.7.22.)

31) OpenSecrets.org. ‘Election Overview.’ https://www.opensecrets.org/overview/index.php?cycle=2016&type=A&display=A, (검색일 2019.6.25.)

나. 주 차원[32]

- 현재 14개 주에서 연방선거 외 지역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보조금을 제공함.
  - 보조금을 받는 후보자는 선거에서 지출한 금액과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받는 기부금을 제한해야 함.

주(부)지사(12)	주의회(5)	주연방법원 등(2)
애리조나, 코네티컷, 플로리다, 하와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건, 미네소타,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애리조나, 코네티컷, 하와이, 메인, 미네소타	뉴멕시코, 뉴버지니아

- 「선거청렴법(Clean Election Program)」을 도입해 일정한 조건을 갖춘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전체를 보전해주는 주도 있음.
  - 메인 주, 코네티컷 주, 애리조나 주[33]에서만 제공되는 선거 청렴프로그램에서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서 5달러 이하의 기부금을 모으고 자신의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 프로그램 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선거에서 지출한 금액을 보전함.
    ※ 뉴멕시코 주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선출직 법관만을 대상으로 함.
- 매칭펀드 제도(Matching Funds Programs)를 활용해 후보자에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금과 지출액의 한도 내에서 보전함(플로리다 주).[34]
- 정당보조금 지급
  - 정당의 전당대회나 선거권자 등록 독려 등을 위한 정당활동에 대해 정당보조금을 지급
  -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이오와, 미네소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로드아일랜드 및 유타 주에서는 납세할 때 주 정당에 기부한다고 표시할 수 있는데 금액은 1달러에서 25달러 사이임.

---

32) NCSL. ‘Public Financing of Campaigns: Overview.’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public-financing-of-campaigns-overview.aspx, (검색일 2019. 6.25.)

33) 애리조나 주: Article 2. Title 16. 949,950,951
코네티컷 주: Title 9 Elections. Chapter 157. Citizens’ Election Program
메인 주: Title 21-A. Election Chapter 14. Clean Election Law

34) 플로리다 주: Title IX. Chapter 106. 106.32 Election Campaign Financing Trust Fund. http://flsenate.gov/Laws/Statutes/2019/0106.32 (검색일 2019.6.25.)

- 플로리다 주(Fla. Stat. 99.103)는 해당 후보자로부터 받은 후보신청 수수료의 15%를 정당에 돌려줌.
- 아이오와 주(I.C.A. §68A.601)는 정당에 해당 연도의 세금이 $1.50 이상인 사람은 세금 환급을 제출할 때 선거운동기금에 $1.50를 기부할 수 있음.

- 선거 공보의 발행(오리건 주[35], 몬태나 주[36], 노스다코타 주[37])
  - 발　　행: 예비선거 1회와 예비선거와 본선거 사이에 1회 발행
  - 게재사항: 당의 정책강령, 후보자의 경력 및 사진 등
  - 여비의 지급: 대통령후보를 결정하는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주의 대표자에게 필요한 경비 지급(오리건 주)[38]

3. 프랑스

가. 선거벽보 게시판 설치(선거법 제51조)

- 각 지방관서는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용 선전물을 붙이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를 선정·준비해야 함.
- 선거운동용 게시판 설치장소는 각 후보자 및 각 후보자명부에 평등하게 주어져야 함.

---

35) 오리건 선거권자 팸플릿(Oregon Voters' Pamphlet)은 주에서 작성하여 배포함. 후보자, 조치 및 정당에 관한 정보와 선거 과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주 및 총선과 특별 주 전체 선거를 위해 제작됨. 모든 절차 법령에 대해서는 ORS 제251장을 참조
Oregon Election Division. 'Election Law Summary.'
https://sos.oregon.gov/elections/Documents/elec_law_summary.pdf (검색일 2019.6.25.)

36) Montana State. 'Montana Voter Information Pamphlet.'
https://sosmt.gov/Portals/142/Elections/archives/2010s/2016/2016-General-VIP.pdf?dt=1523477333219 (검색일 2019.6.25.)

37) BAALOTPEDIA. 'Election administration costs-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report, 2018.'
https://ballotpedia.org/Voting_in_North_Dakota (검색일 2019.7.23.)

38) The Democratic Party of Oregon. 2019.4.1. 'DRAFT Delegate Selection Plan for the 2020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248.380. Electors' mileage expenses. p.37.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인은 주 의회 의원에게 허용된 요율로 오리건 주의 마일리지 경비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음.
https://dpo.org/sites/dpo.org/files/images/2020_draft_delegate_selection_plan_4-1-2019.pdf (검색일 2019.6.25.)

나. 홍보물 등 송부 및 작성비용 보전

- 선거일 20일까지 설치된 선거운동위원회에서 선거구 내 각 선거인에게 우송되는 홍보물, 투표용지 등을 발송하고 배포함(선거법 제166조).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는 선거벽보, 투표용지, 홍보물의 용지대, 인쇄비 및 붙이는 비용을 국고에서 보전(선거법 제167조)

다. 라디오·TV를 이용한 무료 방송(선거법 제167-1조)

- 정당 및 정치단체는 라디오·TV 등 방송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

※ 자세한 내용은 제6장 제4절 방송시설 이용 선거운동 프랑스편, p.421 참조

라. 선거운동비용 보전(선거법 제52-11-1조)

- 국가가 선거비용제한액의 47.5%를 보전. 단, 이 보전금액은 후보자의 개인 자산에서 지불된 비용 총액과 선거운동으로 지출된 비용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
-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5%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후보자, 제출 기한 내에 선거운동계좌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 선거운동용 계좌가 폐쇄되거나 상속재산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후보자에게는 보전하지 않음.

마. 정당 및 정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투명정치관련시행령 제9조)[39]

- 국고보조금은 최근 총선에서 최소 50개 선거구에서 1% 이상 득표한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과 정치단체와 해당 연도 11월에 상·하원 소속의원 수에 따라 배정함.

---

39) 2013년 5월 27일 투명정치자금관련 n°2013-430법 시행령
http://www.legifrance.gouv.fr/eli/decret/2013/5/27/INTA1313482D/jo/texte (검색일 2019.7.29.)

4. 독 일

가. 개 요

- 독일의 선거비용 직접 지원과 관련해서는 각 정당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제도를 들 수 있으며, 간접 지원으로는 정치자금 기부와 당원의 당비에 대한 세액공제 외에 공영 방송시설을 이용한 무료방송제도[40]가 있음.

나. 국고보조금의 도입과정

- 정치자금의 빈곤으로 인한 정당의 정치활동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한 직접적 자금보조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1959년 정당의 정치활동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정당에 국고보조금이 지급됨.
- 이 제도는 1966.7.19 연방헌법재판소가 국가예산에 의한 직접적 정당보조를 위헌결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선거운동경비를 정당에 보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1967.7 정당법을 제정하여 보조하여 왔으나, 1993년 정당법의 개정으로 선거운동비용의 보조 및 기회균등화 조정금, 기본보조금의 지급이 폐지되고 정당보조금의 지급으로 일원화 됨.
- 개정된 정당법 제18조제1항은 "국가는 기본법에서 정당에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의 부분적 보조로서 자금을 정당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다. 국고보조금의 내용

1) 국고보조의 원칙(정당법 제18조제1항)

- 정당은 기본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 부분적 보조로써 자금을 받음. 국고보조의 배분기준은 유럽의회의원선거, 연방하원의원선거 및 주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이 획득한 득표수, 당비수입금 및 기부금(총리)수입금임.
- 국가로부터 정당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형식은 선거결과를 기준으로 한 것과 정

40) 제6장 선거운동 제4절 방송시설 이용 선거운동 독일편, p.422 참조

당 수입을 기준으로 한 것이 있음.

2) 국고보조의 기준

- 선거 득표수에 따른 재정지원(정당법 제18조제3항제1,2호)
  - 정당의 후보자명부의 유효득표수 1표당 0.83유로
  - 정당이 특정 주(州)에서 정당명부로 비례대표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지역구선거 유효득표수 1표당 0.83유로
  - 위 정당법 제18조제3항제1호와 제2호 규정과 상관없이 정당이 400만 표까지 득표 시 각 유효득표수 1표당 1유로 지급
- 정당의 수입에 기초한 재정보조(정당법 제18조제3항제3호)
  - 당비 및 후원금 1유로당 0.45유로의 보조를 받고 있음.
  - 개인 총 후원금이 3,300유로가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은 재정보조의 대상에서 제외됨.

3) 보조금의 수급요건(정당법 제18조제4항)

- 최근 선거에서 일정한 득표 이상을 얻어야 함.
  - 유럽의회의원선거·연방하원의원선거 정당명부투표에서 유효투표총수의 0.5% 이상
  - 주의회의원선거 정당명부투표에서 1% 이상 득표 또는 지역구선거(선거구 또는 투표구)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을 획득해야 함.

    ※ 소수민족정당은 이 요건에서 제외

4) 보조금의 총액 및 정당이외의 단체에 지급(정당법 제18조제2항)

- 모든 정당에게 최대로 지급될 수 있는 국가보조금의 연간 최대 한도액은 2019년 1억 9천 유로임(절대적 상한액).[41]
- 절대적 상한액은 매년 인상되며, 전년 대비 해당 연도에 통상적으로 정당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해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10%까지 인상됨.
  - 물가지수의 기준은 일반소비자 물가의 70%와 지역공법인의 단체협약상 노동

41) juris Gmbh Juristisches Informationssystem fuer die BRD[DE]/gesetze-im-internet.de/partg (검색일 2019.9.5.)

자 및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월급여 지수의 30%로 구성됨.

- 독일 통계청장은 늦어도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자료에 기초한 물가지수 변동보고서를 하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방하원의장은 늦어도 매년 5월 31일까지는 절대적 상한액을 유로단위 이하는 버림한 금액으로 정하고 연방의회 공보를 통해 발표해야 함.

- 보조금은 매년 지급될 수 있는 절대적 상한액 이외에도 정당보조금의 액수가 「정당법 제24조제4항제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의 수입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상대적인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음(정당법 제18조제5항).
- 상대적 상한액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금은 정당재정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연방대통령은 보조금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독립된 전문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음(정당법 제18조제6항).
- 정당에 소속된 후보자가 아닌 무소속 내지 선거연합 후보의 경우
  - 연방의회선거의 경우 「연방의회선거법」 제49b조(선거구추천후보자에 대한 국고지원)에 근거하여 선거비용을 지원함.
- 주 의회선거 결과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은 각 주의 「주의회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 정당은 각 주 정당조직을 대상으로 함.

<표 8-12> 독일 국고보조금 규모: 2008~2017년[42)]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3년	2017년
CDU (기민당)	43,593,639.91 (29.46%)	41,905,936.83 (25.75%)	42,892,692.46 (31.08%)	44,641,547.45 (41.67%)	48,051,765.29 (31.80%)	48,361,704.25 (30.86%)
CSU (기사당)	11,280,535.48 (22.33%)	11,708,611.00 (27.90%)	9,610,057.63 (27.46%)	10,411,577.43 (28.11%)	12,008,720.44 (25.22%)	11,779,090.46 (27.16%)
SPD (사민당)	43,488,488.95 (25.96%)	39,637,451.42 (22.87%)	38,975,194.80 (26.48%)	42,407,424.88 (27.24%)	47,898,405.53 (29.11%)	49,210,195.78 (29.62%)
FDP (자민당)	10,138,015.16 (31.76%)	12,644,177.22 (29.23%)	13,403,479.99 (39.02%)	13,588,556.74 (39.62%)	-	11,746,087.14 (30.32%)
Grüne (녹색당)	10,209,852.21 (37.3%)	11,095,447.40 (36.32%)	11,415,217.32 (36.54%)	13,814,822.37 (37.51%)	15,056,822.65 (37.50%)	15,819,010.95 (36.39%)
Die Linke (좌파연합)	9,465,698.47 (37.59%)	10,705,921.97 (39.27%)	10,835,567.16 (38.90%)	12,130,761.23 (42.23%)	11,142,415.75 (40.45%)	12,200,789.91 (38.92%)

※ (단위: 유로), 괄호안의 %는 정당의 총 수입내역 중 정부지원액수가 차지하는 비율

5) 국고보조금 상한액 확정절차 및 분할지급(정당법 제19조a, 제20조)

- 연방하원의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청구권을 가진 각 정당의 해당 연도 국고보조금의 상한을 확정
- 먼저 절대적 상한과 각 정당에 대한 상대적 상한이 포함되어야 하고, 확정시 먼저 상대적 상한(제18조제5항)을, 그 다음 절대적 상한(제18조제2항) 순으로 정함. 산출된 국고보조금의 총합이 절대적 상한을 초과할 때에는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청구권은 단지 총액에 대한 그의 지분에 상응하는 정도만 존재(정당법 제19조a제5항)
- 국고보조금 확정시 중앙당에 지급함. 주 단위 정당인 경우 주당에 지급함(정당법 제19조a제6항).
- 연방의회의장이 확정한 국고보조금을 받을 정당에게 분할하여 지급하고, 지급액은 전년도 각 정당에 할당된 국고보조금에 기초해 환산(정당법 제20조제1항)
  - 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에 지급하며, 분할지급액은 전년도 개별 정당 국고보조금 확정액의 25%를 넘을 수 없음.

라. 세제혜택

- 정치자금 기부(당원의 당비 포함)에 대해 소득세법[43] 제10b조와 제34g조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세액감면과 과세기준이 되는 소득액의 공제 두 가지임.
- 세액감면(소득세법 제34g조제2항)
  - 기부금의 50%까지를 세액감면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최대 825유로까지 세금감면을 하며, 부부가 합산하여 세액산정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1,650유로까지 세금감면을 해줌.

---

42) 2009/2010 독일 주요정당 재정보고서
http://dip21.bundestag.de/dip21/btd/17/006/1700630.pdf (검색일 2019.7.31.)
2011/2012 독일 주요정당 재정보고서
http://dip21.bundestag.de/dip21/btd/17/123/1712340.pdf (검색일 2019.7.31.)
2013 독일 주요정당 재정보고서
http://dipbt.bundestag.de/doc/btd/18/043/1804300.pdf (검색일 2019.7.31.)
2017 독일 주요정당 재정보고서
https://dip21.bundestag.de/dip21/btd/19/070/1907000.pdf (검색일 2019.7.31.)

43) juris Gmbh Juristisches Informationssystem fuer die BRD[DE]/ gesetze-im-internet.de/estg/_10b.html (검색일 2019.9.5.)

- 소득공제(소득세법 제10b조)
  - 개인의 경우 연간 총소득의 20%까지 전액 공제
  - 기업의 경우 연간 총판매액과 연간 총임금지불액의 합계의 0.4%까지 전액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제1항),
  - 정당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공제는 연간 1,650유로까지 인정하며, 부부가 함께 세액산정을 하는 경우에는 연간 총 3,300유로까지 공제가 가능함(제2항).
  - 정치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에 있어서는 제34g조에 따른 정치자금의 세금감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정치자금 기부액에 대해서는 기부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감면해 주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최대 연간 825유로까지, 부부합산의 경우에는 1,650유로까지 해 주고 있음.
- 세금·감면의 한도액을 벗어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연간소득의 20%의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최대 연간 1,650유로까지 (부부합산의 경우에는 최대 3,300유로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음.

5. 일 본

가. 직접지원-정당교부금(국가보조금)

1) 교부 및 집행원칙(정당조성법 제4조)

- 국가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존중해서 정당교부금의 교부에 있어서 조건을 붙이거나, 그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 됨.
- 정당은 정당교부금이 국민으로부터 징수된 세금 기타의 귀중한 재원으로부터 조달받은 것임에 특히 유의하여 그 책임을 자각하고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것을 적절히 사용해야 함.

2) 지급액 산출방법(정당조성법 제8조)

- 각 정당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정당교부금의 금액은 의원수비례할당금의 금액

과 득표수비례할당금의 금액을 합산해 산출함.

- 의원수비례할당금의 금액은 의원수비례할당금액의 총액에 해당 정당에 소속하는 중의원의원 및 참의원의원의 수를 각 정당에 소속하는 중의원의원수 및 참의원의원수를 합산한 수로 나누어 얻은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
- 득표수비례할당금의 금액은 득표수비례할당금 총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다음에 열거하는 수를 각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함.
  - 직전 총선거 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서 해당 정당의 득표총수를 해당 선거 각 정당의 득표총수를 합산한 수로 나누어 얻은 수
  - 직전 총선거 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해당 정당의 득표총수를 해당 선거 각 정당의 득표총수를 합산한 수로 나누어 얻은 수
  - 다음의 수를 합산한 수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
    - ·직전 통상선거 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해당 정당의 득표총수를 해당 선거 각 정당의 득표수를 합산한 수로 나누어 얻은 수
    - ·전전 통상선거 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에서 해당 정당의 득표총수를 해당 선거 각 정당의 득표총수를 합산한 수로 나누어 얻은 수
  - 다음의 수를 합산한 수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
    - ·직전 통상선거 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서 해당 정당의 득표총수를 해당 선거 각 정당의 득표총수를 합산한 수로 나누어 얻은 수
    - ·전전 통상선거 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서 해당정당의 득표총수를 해당 선거 각 정당의 득표총수를 합산한 수로 나누어 얻은 수

3) 교부시기(정당조성법 제11조)

- 총무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월, 7월, 10월, 12월에 해당 정당에 교부해야 할 정당교부금을 4분의 1씩 나누어 교부함.

4) 집행 회계 감사방법(정당조성법 제17조)

- 정당본부의 회계책임자는 12월 31일 현재 해당연도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그 다음날부터 기산해 3개월 이내에 총무대신에게 제출해야 함.
  - 정당교부금 총액, 교부를 받은 금액 및 연월일

- 정당교부금에 의한 지출 총액 및 항목별 금액, 인건비, 전기수도세 이외의 경비에 소요된 것으로, 건당 금액(수회에 걸쳐서 지출된 경우는 그 합계 금액)이 5만 엔 이상의 지출처, 지부교부금의 금액 등
- 정당기금의 잔고 등

- 보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감사의견서 및 감사보고서
  - 영수증 등의 사본
  - 지부에서 제출받은 지부보고서 및 감사의견서
  - 지부보고서 기재 사항을 집계한 총괄문서
  - 본부보고서 및 지부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집계한 총괄문서

5) 불법지출 시 감액, 반환여부(정당조성법 제33조)

- 총무대신은 정당이 정당조성법 규정을 위반해 정당교부금의 교부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각 정당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교부를 정지하고, 이미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는 기한을 정해 반환을 명할 수 있음.

나. 간접지원

1) 선거운동용 자동차의 무료 사용(공직선거법 제141조제7항)

-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또는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의 후보자 중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지 않은 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령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용 자동차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음.

2) 선거운동용 통상엽서의 무료 배부(공직선거법 제142조제5항)

-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이외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통상엽서는 무료로 함.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용 포스터 게시장 설치(공직선거법 제144조의2)

-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서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는 포스터의 게시장을 설치함.

4) 후보자의 신문광고 무료게재(공직선거법 제149조제6항)

- 중의원의원, 참의원의원선거에서 신문광고를 무료로 할 수 있음.

※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는 명부신고정당의 해당 선거구에서의 득표총수가 해당 선거구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는 명부신고정당의 득표총수가 해당 선거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함.

5) 정견방송(공직선거법 제150조)

-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신고정당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중 일본방송협회 및 기간방송사업자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의 방송시설을 이용해 공익을 위해 그 정견을 무료로 방송할 수 있음.
- 후보자신고정당은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견방송을 위한 녹음 또는 녹화를 무료로 할 수 있음.
-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참의원의원 후보자(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는 중의원명부신고정당 등,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는 참의원명부신고정당 등)는 선거운동기간 중 일본방송협회 및 일반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그 정견을 무료로 방송할 수 있음.

6) 경력방송(공직선거법 제151조)

-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서 일본방송협회는 후보자의 이름·연령·당파 및 주요경력 등을 선거인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방송을 함.

7) 개인연설회에 있어서 공영시설 무료사용(공직선거법 제161조)

- 후보자(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후보자로서 해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의 후보자인 자 이외의 자 및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제외)·후보자신고정당 및 중의원명부신고정당 등은 학교 및 공민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회당 등을 사용하여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음.

※ 후보자신고정당의 경우 그 신고후보자와 관련된 선거구를 관할하는 도·도·부현의 구역 안에 있는 시설, 중의원명부신고정당 등은 그 신고중의원명부에 관련된 선거구의 구역 안에 있는 시설에 한함.

8) 선거공보의 발행(공직선거법 제167조)

-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서 도·도·부·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를 선거마다 1회 발행해야 함.

9) 특수승차권의 무료배부(공직선거법 제176조)

- 후보자는 국토교통대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료로 총 15매(참의원합동선거구선거는 30매)의 특수승차권을 받을 수 있음.

  ※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는 총 6매의 특수승차권 또는 특수항공권을 받을 수 있음.

6. 스페인

가. 선거보조금(선거법 제127조, 제127조의2)

- 국가는 1985년 기본법률 제5호의 특례조항에 따라 상·하원의원, 유럽의회의원 및 시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연합, 연정 또는 선거인 단체에 선거경비를 보조함.
  - 다만, 그 금액은 감사원이 감사업무 수행 중 선언하고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국가는 가장 최근에 실시된 의회, 유럽의회, 시의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획득하고, 이후에 그 의석을 상실하지 않은 정당, 연합 및 연정에게 보조금의 선급금을 지급
  - 선급금은 동일한 정당, 연합, 선거인 단체 또는 연정이 가장 최근 같은 선거에서 수령한 총 보조금의 30%를 초과하지 못함.
- 선급금은 선거소집일로부터 21일에서 23일 사이에 신청
- 2개의 도 이상의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연합 또는 연정의 경우 해당 총선거사무장이 중앙선거위원회에 신청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선거사무장이 도선거위원회에 신청함.
- 중앙정부는 선거소집일 29일째가 되는 날로부터 해당 선급금을 선거사무장이 수입·지출하게 해야 함.

- 국가는 회계감사원에 회계자료를 제출(선거일 후 100일부터 125일 사이에 제출) 한 후 30일 이내에 또한 아직 회계감사원의 업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도 이 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국가관보에 게재된 총 선거결과에 해당하는 보조금 중 90%를 선급금으로 차감한 후 선거사무장에게 교부함(선거법 제133조제4항).

나. 선거보조금액 기준(선거법 제175조제1항)

- 상·하원 각 의석 마다 21,167.64유로
- 의원후보자명부 중 최소 1명 이상 하원의석을 차지했을 경우 각 의원후보자명부에서 득표한 각 1표당 0.81유로
- 상원의석을 차지했을 경우 각 의원후보자명부에서 득표한 각 1표당 0.32유로

<표 8-13> 스페인 선거보조금 지급 현황[44)]

(2016년 선거기준)

정당명	선거보조금(€)	정당명	선거보조금(€)
PP	6.388.460	ERC	468.363
PSOE	7.212.472	DiL-CDC	261.308
UNIDOS_PODEMOS	2.803.095	EH-Bildu	124.493
C's	2.133.838	CC	56.690
EAJ-PNV	605.436		

※ 선거홍보물 발송비용 제외

다. 선거보조금 외 선거운동 관련 비용보조(선거법 제175조제3항)

- 국가는 정당·연합·연정 및 선거인 단체가 봉투, 투표용지 또는 선전물 및 홍보자료를 선거인에게 직접적·개인적으로 발송할 경우 경비를 보조함.
  - 상원 및 하원의원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각 선거구 선거인 1인당 0.22유로를 배정하되, 이 경우 하원 또는 상원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을 대상으로

44) https://www.eldiario.es/politica/PSOE-PP-subvenciones-Ciudadanos-aportaciones_0_892061514.html (검색일 2019. 6.12.)

하며, 수령은 1회로 제한됨.

- 이와 같은 보조금은 선거비용제한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관한 사실을 입증해야 함.

라. 선거보조금 외 국고보조금

- 선거법 상 선거보조금 외에 정당자금조달기본법을 통해 정당에게 매년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정당자금조달기본법 제3조).
  - 상·하원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획득한 의석수와 득표수에 따라 분배됨.
  - 3/1은 최근 실시한 하원의원선거에서 각 정당이 획득한 의석수에 따라 분배
  - 3/2는 해당 선거에서 얻은 득표수에 비례하여 분배됨.
  - 정당은 연간 1회 보조금에 관한 수입·지출 상세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회계보고서 제출 및 공개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이 중지됨.

<표 8-14> 스페인 정당별 국고보조금 지급 현황[45)]

(2019년 기준)

정당명	국고보조금(€)	정당명	국고보조금(€)
PP	17.451.237,57	EN_MAREA	775.513,54
PSOE	10.803.159,91	PNV	684.159,28
UNIDOS_PODEMOS	7.129.411,27	PP-PARTIDO_ARAGENÉS	682.195,67
CIUDADANOS	6.347.759,59	PSOE-NUEVA_CANARIAS	483.337,79
En_COMÚ	1.889.910,80	PP-FORO	466.978,61
COMPROMIS-PODEM-IU	1,447,535.12	EH_BILDU	379.174,21
ERC	1.405.973,82	UPN-PP	261.846,58
PSC	1.196.366,76	COALICIÓN_CANARIA	168.300,84
CONVERGENCIA (CDC)	1.131.278,64	Total	52.704.14,00

45) https://www.europapress.es/nacional/noticia-financian-partidos-politicos-otras-respuestas-cuentas-20190206162340.html (검색일 2019.6.12.)

7. 스웨덴

가. 국고보조금[46]

- 국가와 의회로부터 각 정당이 자유로운 의견형성 및 장기적인 정치활동을 독립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제도를 도입함.

  ※ (2018.9.11.기준) 연간 총 지급규모 약 4억 6천6백만 크로나(466millionSEK, 약 4,363만 2,760유로, 한화 약 574억 6천만 원).

- 1972년에 제정된 「정당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Act on State Financial Support to Political Parties)」과 「정당자금 투명성에 관한 법률(Act on Transparency of Party Financing)」을 통해 정당에 매년 국고보조금을 제공함.[47]

1) 정당보조금(party assistance)

- 의회 내 의석이 있는 정당에게 한 의석당 연간 333,300크로나(333,300SEK, 약 3만 1,207유로, 한화 약 4억 1천만 원)을 지급하며, 의석을 할당받지 못한 정당이라도 최근 2회의 선거 중 한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2.5% 이상 득표시 국고보조금을 배분받을 수 있음.

2) 정당사무국 지원(Office assistance)

- 경상지원(basic contributions)은 현재 의석을 가진 정당 별로 연간 약 580만 크로나(5.8millionSEK, 약 54만 유로, 한화 약 7억 1천만 원) 지급
- 보조지원(supplementary contributions)은 여당에 의석당 16,350크로나(16,350SEK,

---

46) 스웨덴 의회 홈페이지
https://www.riksdagen.se/en/how-the-riksdag-works/the-work-of-the-riksdag/the-parties/ (검색일 2019.9.10.)

47) 「정당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과 「정당자금 투명성에 관한 법률」은 각각 2014년과 2016년에 개정됨.
- 국가 재정지원에 대한 자격요건, 익명기부금액의 최대한도액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가 공개요구사항 등을 도입
- 최대 2,275크로나(약 215유로)의 익명기부가 허용되며, 정당은 기부금 총액을 명시해야 함. 또한 회계보고 시 기부자의 신원(개인, 법인, 기타 조직 또는 협회) 및 수령액, 현금 수령 일시 및 장소, 복권 기타 소득에 의한 기부액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
- 정당은 매년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하나 선거운동기간 중의 회계보고는 불필요하며 연간 모금액이 22,275크로나(2,200유로) 미만인 정당은 회계보고 의무에서 면제됨.

OSCE. SWEDEN GENERAL ELECTIONS 9 September 2018 REPORT. p.8, 9.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383934?download=true (검색일 2019.8.9.)

약 1,520유로, 한화 약 200만 원), 나머지 정당(야당)은 24,300크로나(24,300SEK, 약 2,300유로, 한화 약 300만 원)를 지급하고 있음.

나. 투표용지 비용보전(선거법 제6절 제8조)

- 해당 선거 또는 최근에 실시한 2회의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이미 의회에 의석이 있거나 선거를 통해 의석을 확보한 정당
-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 총수의 3배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작성비용을 정부가 보전함.

  ※ 선거권자 총수는 해당 선거가 실시되는 해 전년도 3월 1일에 「국세청 주민등록업무 관련 개인정보 사용에 관한 법」에 따라 주민등록부의 정보에 근거해 산정

8. 스위스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에 관련 규정 없음.

9. 캐나다

가.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 최초 보전분(선거법 제477조의73)
  - 선거관리청장은 선거구의 선거결과 보고서를 수령한 즉시 당선자가 있는 경우 당선자 이름,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모든 후보자의 이름, 선거비용제한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명시된 증명서를 세입징수관에게 통보
  - 세입징수관은 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을 후보자의 선거비용과 개인비용에 대한 부분보전금으로 통합세입기금에서 지급. 부분보전금은 선거사무관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음.
  - 선거관계자는 수령한 부분보전 금액이 과지급 반환기준(선거법 제477조의73 제3항)에 해당할 경우 그 초과분을 세입징수관에게 반환해야 함.

- 최종 보전분(선거법 제477조의74)
  - 선거관리청장은 후보자의 선거비용지출내역 및 회계보고서를 수령한 때, 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법의 비용보전 규정을 준수했다는 확인서 및 후보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30% 이상을 지출했다는 증명서, 후보자의 선거비용과 개인비용 변제의 최종 분할금이 기재된 증명서를 세입징수관에게 제출함.
  - 세입징수관은 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을 통합세입기금에서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
  - 최종 보전액은 이미 수령한 부분보전금액이 최종 보전액 계산 기준에 따라 합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지급됨.
  - 선거비용 보전 공제: 후보자의 선거비용지출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정도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액을 다음과 같이 공제함.
    - ·5% 미만 초과: 초과 1달러당 1달러
    - ·5% 이상 10% 미만 초과: 초과 1달러당 2달러
    - ·10% 이상 12.5% 미만 초과: 초과 1달러당 3달러
    - ·12.5% 이상 초과: 초과 1달러당 4달러

    ※ 여기서 달러는 캐나다달러임.
  - 선거비용 보전 공제액이 최종 보전액 보다 많은 경우 선거사무관계자는 이전 수령한 부분보전금(최초 보전분)에서 그 차액만큼을 세입징수관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함.

나. 정당의 선거비용보전(선거법 제444조)

- 선거관리청장은 선거법 제437조에 따라 등록된 정당의 선거비용보고서를 접수한 후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등록 정당이 총선거에 지출한 선거비용 50%의 보존비용 금액이 명시된 증명서를 세입징수관에게 제출
  - 선거관리장이 등록 정당 및 사무소의 선거비용보고서를 제출요건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한 때
  - 회계보고서에 감사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을 때
  - 등록된 정당의 추천 후보가 선거의 총 유효투표수 2% 이상을 득표하거나, 정

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선거구의 유효투표수의 5% 이상을 확보한 경우

- 선거비용 보전 공제: 후보자의 선거비용지출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정도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액을 다음과 같이 공제함.
  - ·5% 미만 초과: 초과 1달러당 1달러씩
  - ·5% 이상 10% 미만 초과: 초과 1달러당 2달러
  - ·10% 이상 12.5% 미만 초과: 초과 1달러당 3달러
  - ·12.5% 이상 초과: 초과 1달러당 4달러

  ※ 여기서 달러는 캐나다달러임.
- 세입징수관은 증명서를 수령하면 통합세입기금에서 해당 금액을 등록정당에 보전함

다. 무료 정견방송(선거법 제345조)

-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방송사는 모든 등록 정당에게 총선거의 선거소집령 발행일부터 선거일 전일 자정까지의 기간 중에 방송법의 규정에 따라 무료로 정견방송시간을 배정해야 함.
- 서면으로 방송시간 할당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힌 정당에는 2분, 그 외의 정당에는 요청한 시간에 대해 가능한 시간 비율에 따라 방송시간을 배정함.
  - 무료방송시간 제공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 산정 시 제외함.

10. 호 주

- 등록된 정당, 후보자 그리고 상원선거 후보자 그룹은 선거에서 제1순위 투표의 4%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자금을 국고에서 보전 받음(연방선거법 제293조).
  - 총 보전금액은 후보자가 득표한 1순위 득표수에 의해 결정되며, 상원의원 후보자 그룹의 경우 그룹투표 1순위 득표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 금액산정 계산 기준은 1순위 투표당 2.73454호주달러
- 선거자금 중 10,000호주달러는 선거일로부터 20일 후 가능한 신속하게 자동지급하며, 그 이상의 선거자금에 대해서는 청구해야 함(연방선거법 제296조).

- 10,000달러를 초과하는 선거자금 보전액은 실제 후보자나 등록된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 범위 내로 제한되며, 초과분은 정당이나 후보자의 요청서를 선거위원회에서 최종확정 한 이후 지급됨(연방선거법 제297조).
- 선거자금 보전 청구는 선거일 후 20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선거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선거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의 수용 또는 거절을 최종 확정해야 함(연방선거법 제298B조, 제298C조).
  - 청구비용은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정당 또는 후보자 운영경비는 포함되지 않음.
  - 선거위원회가 보전 청구를 거절한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표 8-15> 각국의 선거비용 직접지원 현황

구분	국가명
정기적 경상 보조금 지원 국가	알제리, 앙골라,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룬디,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키프로스, 덴마크, 지부티,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이라크,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라트비아, 레소토,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몰디브, 말리, 몰도바, 모로코, 나미비아, 네덜란드, 니제르, 노르웨이, 파푸아뉴기니, 페루, 폴란드, 콩고공화국, 루마니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이셸, 솔로몬제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웨덴, 대만, 탄자니아, 태국, 동티모르, 터키, 영국, 우루과이, 예맨, 짐바브웨
선거 보조금 지원 국가	호주, 부탄, 캄보디아, 캐나다, 카보베르데, 엘살바도르, 네팔, 뉴질랜드, 니카라과,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튀니지, 미국, 베네수엘라
경상 보조금과 선거 보조금 모두 지원하는 국가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헨티나, 베냉, 부르키나파소, 칠레,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체코,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조지아, 독일,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자메이카, 한국, 리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몽골, 몬테네그로, 모잠비크, 파나마, 파라과이, 포르투갈, 러시아, 르완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토고, 우간다,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출처: IDEA. Political Finance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question-view/548 (검색일 2019.5.30.)

<표 8-16> 각국의 정당 활동 관련 간접비용 보조 현황

구분	국가명
교통 (Free or subsidised transport)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카자흐스탄, 멕시코, 스위스,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출판(인쇄, 우편) (Free or subsidised postage cost/ printing campaign materials)	지부티, 핀란드, 프랑스, 과테말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산마리노, 스페인, 스리랑카, 스위스
미디어 (Free or subsidised access to media)	알바니아, 앙골라, 알제리, 안도라, 앤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핀란드, 프랑스, 가봉, 감비아, 조지아, 독일,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아이티, 온두라스, 아이슬란드,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레소토,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몰타, 모리셔스, 멕시코, 몽골, 모잠비크, 미얀마, 나미비아, 네덜란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포르투갈, 콩고공화국,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세인트루시아, 산마리노,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리랑카, 스위스, 타지키스탄, 태국, 타지키스탄, 태국, 토고, 터키, 튀니지, 투르크메니스탄,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세금혜택 (Tax relief)	앙골라, 아르헨티나, 호주, 바베이도스, 베냉, 부탄, 볼리비아,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덴마크,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적도기니,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핀란드, 프랑스, 감비아, 조지아, 독일, 기니비사우,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말리, 몰타, 멕시코, 몬테네그로, 미얀마, 네덜란드, 니카라과, 노르웨이,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포르투갈, 루마니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산마리노, 세이셸, 시에라리온, 슬로바키아, 수단, 스위스, 태국, 동티모르, 터키,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선거운동장소 (Premises for campaign meeting)	알바니아, 앤티가바부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보츠와나, 브라질, 카보베르데, 에티오피아, 프랑스, 조지아, 과테말라,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레소토, 리투아니아, 몰디브, 몽골, 모로코, 모잠비크, 나우루, 뉴질랜드, 러시아, 세인트루시아, 산마리노,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타지키스탄, 태국
선거물품보관장소 (Space for campaign materials)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부룬디, 카보베르데, 코모로, 체코, 지부티, 프랑스, 가봉, 조지아, 과테말라, 기니비사우,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미크로네시아, 니제르, 필리핀, 산마리노,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태국, 토고,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기타 (Others)	바베이도스, 보츠와나, 아일랜드, 세르비아, 우간다

출처: IDEA. Political Finance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question-view/552 (검색일 2019.6.5.)
https://www.idea.int/data-tools/question-view/555 (검색일 2019.6.5.)

<표 8-17> OECD국가의 선거비용 직접지원 현황

국가명	종류	지급요건	금액	근거규정
영 국	지원금	• 선거비용 혹은 정당운영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는 없으나 하원 야당에 대한 보조금(short money)과 상원 야당에 대한 보조금(cranborne money)이 있음.	• 하원야당지원금=(획득 의석수×£13,890)와 득표수(득표한 매 200표 당×£27.74) • 상원야당지원금(상원 야당 리더와 야당 원내총무 급여로 사용)은 2007년에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에 각각 £457,540와 £228,445 지급	-
미 국	선거보조금	• 의회 선거, 정당에 대한 지원 미비 • 대통령 선거(지출한도 존재)에 대한 지원은 존재	• 2017년 대통령선거 예비선거 실질 지출한도 $23,821,100	내국세법 제95장 제9004조
프랑스	선거보조금	•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	• 선거비용제한액의 50%	선거법 제52-11-1조
독 일	경상보조금	• 유럽의회의원선거·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0.5% • 주의회의원선거에서 1% 이상 득표 또는 해당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 연방의회, 유럽의회, 주의회의 경우 우효득표수 1표 당 €0.85 • 2019년 국가보조금 최대한도액 €1억 9천	정당법 제18조
일 본	경상보조금	• 모든 정당	• 의원수비례할당금과 득표수비례할당금을 합산	정당조성법 제4,8조
스페인	선거보조금	• 상·하원, 유럽의회의원 및 시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연합, 연정 또는 단체 • 회계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	• 상·하원의원 각 의석마다 €21,167.24 • 하원의석을 한 석 이상 확보한 후보자군이 득표한 각 1표당 €0.81 • 상원의석을 한 석 이상 확보한 후보자군이 득표한 각 1표당 €0.32	선거법 제175조
	경상보조금	• 상·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획득한 의석수와 득표수에 따라 배분	• 1/3은 최근 실시한 하원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획득한 의석수에 따라 배분 • 2/3은 해당 선거에서 얻은 득표수에 따라 배분	정당자금조달기본법 제3조
스웨덴	경상보조금	• 최근 2회의 선거에서 전지역구 투표의 2.5% 이상을 얻거나 의석을 할당받는데 필요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4% 이상을 얻은 정당	• 한 의석 당 연간 333,000SEK 지급 • 의석을 획득하지 못한 정당의 경우 득표율 0.1%마다 173,000SEK 지급	정당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스위스	규정 없음.			
캐나다	선거보조금	• 정당: 유효투표총수의 2%를 득표하거나,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5%를 확보	• 선거비용제한액의 50%를 보전	선거법 제477조의 73,74
		• 후보자: 당선, 및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득표시	• 선거비용제한액의 30%를 보전	선거법 제444조
호 주	선거보조금	• 제1순위투표에서 4% 이상 득표한 경우	• 표당 A$2,73454 제공	연방선거법 제293조
오스트리아	경상보조금	• 의회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 획득한 득표 수당 €2.5 지급	정당지원법

국가명	종류	지급요건	금액	근거규정
		1% 이상을 득표한 정당		제1조
벨기에	경상보조금	• 선거운동과 관련한 추가 보조금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정당에 대한 연간 보조금이 있음	• €125,000 • 지난 총선에서 득표한 유효표 1표당 €1.25씩 추가 지급	정치자금법 제16조
체 코	경상보조금[48]	• 하원선거에서 3% 이상 득표 • 상원의원선거 참여	※ 하원 • 연간보조금 6,000,000CZK (한화 약 4억 원) • 3% 이상 득표 시 0.1%마다 200,000CZK (한화 약 1,000만 원) • 5% 이상 득표 시 보조금 추가 ※ 상원 • 연간보조금 855,000CZK (한화 약 4,400만 원)	정당법 제20조 제4,6,7항
칠 레	선거보조금	• 상·하원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자	• 지난 선거 득표수×20,000UF • 지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는 경우 지난 선거 최저 득표 정당이 받은 금액을 지급	선거비용 제한및 투명성법 제15조
덴마크	경상보조금	• 최근 선거에 참가하고 총 유효투표수 1,000표 이상 득표한 정당	• 1표당 22.30DKK	정당지원법 제2조
에스토니아	경상보조금	• 당선자가 있는 정당	• 의석수에 비례하여 매월 5일 배분	정당법 제12[7]조 제1,2항
		• 유효투표총수 중 득표수가 2%~3%인 정당	• €30,000 연간 지급	
		• 유효투표총수 중 득표수가 3%~4%인 정당	• €60,000 연간 지급	
		• 유효투표총수 중 득표수가 4%~5%인 정당	• €100,000 연간 지급	
핀란드	정당보조금	• 의석을 획득한 정당	• 획득한 의석수에 따라 배분	정당법 제2조, 9조
		• 유효투표총수 2% 이상을 받은 정당	• 의석을 획득한 정당이 받은 의석 당 보조금의 1/3	
그리스	경상보조금	• 지난 총선에서 의석을 얻은 정당 또는 연합 • 유효투표총수 1.5% 이상을 받은 정당	• 해당 연도 국가예산수입의 1.24~1.37%p	정치자금법 제1조제5항 제2조제1항
	선거보조금	• 지난 총선에서 의석을 얻은 정당 또는 연합(선거보조금의 경우 임기 중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유효투표총수 1.5% 이상을 받은 정당	• 선거 실시연도 국가예산수입의 0.22~0.35%p	정치자금법 제1조제4항 제2조제2항
헝가리	경상보조금	• 비례대표의석을 획득한 정당	• 보조금의 25%를 동등하게 배분	정당법 제5조
		• 유효투표총수 1% 이상을 획득한 정당	• 보조금의 75%를 득표수에 비례하여 배분	
	선거보조금	• 선거구 후보자(개인) (2% 이상 득표하지 못할 경우 반환)	• 1,000,000HUF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	선거자금법 제1조~제3A조, 제8,8A조
		• 비례대표후보를 등록한 정당 • 후보자를 등록한 선거구 수	• 5,000,000HUF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 기준금액의	

국가명	종류	지급요건		금액	근거규정
		(2% 이상 득표 하지 못한 경우 반환)	27개 이상의 경우	15%	
			54개 이상의 경우	30%	
			80개 이상의 경우	45%	
			모든 선거구	60%	
아이슬란드	경상보조금	• 지난 총선에서 의회 의석을 얻거나 2.5% 이상 득표한 정당		• 득표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 • 모든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보낸 정당은 최대 3,000,000ISK의 선거비용 보전 가능	정당자금 및 후보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아일랜드	경상보조금	• 선거 참여를 위해 등록된 정당 및 선거에서 2% 이상 득표한 정당		• 공직기준위원회의 중앙기금(Central Fund)을 정당별로 배분 • 배분기준은 정당의 1차 선호투표 수/전체 1차 선호투표 수 에 대한 비율(%) ※ 공직기준위원회 2018 국고보조금 총 €5,963,992(한화 약 78억 6,000만 원)[49]	선거법 제16,17조
이스라엘	선거보조금	• 유효투표총수 1% 이상 득표하고 의회 내 의석이 있는 정당		※ 선거보조금 • 처음 의석을 확보한 정당 : (의석 수×1FU[50])+1FU • 의회 내 기존 의석이 있는 정당 : (기존 의석 수+의석 수)/2}+1FU	정치자금법 제2,3조
	경상보조금			※ 경상보조금(매월 지급) • {(0.05FU×확보 의석 수)+0.05FU}	
이탈리아	-	-		-	-[51]
라트비아	경상보조금	•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 득표		• 1표당 €0.71 지급 • 총선 이듬해부터 4년간 매년 1월15일, 4월15일, 7월15일, 10월15일 4회에 걸쳐 지급	정치자금법 제71조 제1,2항
리투아니아	경상보조금	•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		• 득표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	정당법 제20,21조
룩셈부르크	선거보조금	• 1석 이상 의석을 확보한 정당 또는 정당연합		• 1명 이상 4명 이하 의원 선출 정당: €50,000(한화 약 6,600만 원) • 5명 이상 7명 이하 의원 선출 정당: €100,000(한화 약 1억 3,200만 원) • 8명 이상 11명 이하 의원 선출 정당: €150,000(한화 약 2억 원) • 12명 이상 의원 선출 정당: 12명까지 €200,000(한화 약 2억6,400만 원) • 의원 1명당 €10,000(한화 약 1,300만 원) 추가금액 지급	선거법 제91,93조
멕시코	경상보조금	• 유효투표총수 3% 이상을 획득한 정당		• 등록된 선거인 수×해당 연방직할구 최저임금의 65%에 해당하는 금액	헌법 제41조

국가명	종류	지급요건	금액	근거규정
			•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당별로 동일하게 지급 •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전선거 득표율에 따라 차등 지급	제2항 제a,b호
	선거보조금		• 선거 실시연도 각 정당별 경상보조금의 50% • 비례대표만 선출하는 선거 실시연도의 경우 각 정당별 경상보조금의 30%	
노르웨이	경상보조금	• 유효투표총수 2.5% 이상을 획득한 정당 또는 1석 이상 의석을 얻은 정당	• [(득표수×1NOK)+(조건을 충족한 정당별 기본금)]=총경상보조금 • 지출항목: 선거관련비용 90%, 고정비 10%	정당법 제10조제2항 제11조
네덜란드	경상보조금	• 연간 €12 이상의 당비를 내고 투표권을 가진 당원이 1,000명 이상인 정당	• 정당 기본금 €181,429와 의석당 기본금 €52,623 • €1,986,553을 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수로 나눈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	정당자금법 제7,8조
뉴질랜드	선거보조금	• 방송 광고를 위한 보조금을 등록된 정당과 후보자에 지급 • 방송 광고를 위한 보조금은 선거비용 제한액에 포함되지 않음	• 정당별 득표수와 의서 수 등을 고려하여 배분	방송법 제74,79,80D조
폴란드	경상보조금	• 유효투표총수 3% 이상을 획득한 독립 정당 혹은 6% 이상을 득표한 정당연합	•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5%에 해당하는 득표수×10PLN +5~10%에 해당하는 득표수×8PLN +10~20%에 해당하는 득표수×7PLN +20~30%에 해당하는 득표수×4PLN +30% 이상에 해당하는 득표수×1.5PLN	정당법 제28,29조
포르투갈	경상보조금	• 당선자가 있는 정당	• 최근 선거에서 획득한 득표수＊IAS의 1/135 (IAS-Indexante dos apoios sociais사회보장 금액 기준, 2019 IAS=€435.76)	정당과선거운동자금법 제4,5조
	선거보조금	• 의회선거에서 51%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정당	• 총액의 20%를 균등 분배 • 보조금 총액 =IAS＊20,000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	• 총액의 80%를 획득한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	
슬로바키아	선거보조금	• 유효투표총수 3% 이상 득표한 정당	• 선거보조금 - 1표당 평균임금의 1% ('16 평균임금 기준 €800, 1표당 €8)	정당법[52] 제25~28조
	경상보조금		• 활동비 - 선거보조금 산출식과 동일 • 의석 할당 - 의석 1석당 1년간 €24,000 (한화 약 3,200만 원)	
슬로베니아	경상보조금	• 유효투표총수의 1% 이상 특표한 정당	• 할당총액의 25%를 동일하게 배분	정당법

국가명	종류	지급요건	금액	근거규정
		• 두 정당이 하나의 후보자명부 제출하는 경우 1.2% 이상 득표 • 3개 이상의 정당이 하나의 후보자명부 제출하는 경우 1.5% 이상 득표	• 나머지 총액은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정당들 간의 득표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 ※ 정당지원금은 전년도 국민총생산의 0.01%를 초과해서는 안 됨.	제24조
터 키	경상보조금	• 유효투표총수 3% 이상 득표한 정당 • 최고선거위원회가 선거 참여 자격을 부여했으며 지난 총선에서 유효투표총수 10% 이상 득표한 정당	• 최소금액, 유효투표총수를 고려하여 산정하며 그 총액은 1,000,000TRY (한화 약 2억 원) 이상임. • 재무부가 산정하여 지급	의회선거법 제33조 정당법 제61조 부칙1
정당에 선거비용 직접지원 국가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바베이도스, 벨기에, 베냉, 부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캐나다, 카보베르데, 차드, 칠레, 콜롬비아, 콩고,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코트디브아르,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동티모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적도기니,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핀란드, 프랑스, 가봉, 조지아, 그리스,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한국, 라트비아, 레소토,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유고슬라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몰디브, 말리, 멕시코, 모나코, 몽골, 몬테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노르웨이,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콩고공화국,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산마리노, 상투메 프린시페, 세르비아, 세이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리랑카, 시리아, 대만,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토고, 튀니지, 터키, 우간다, 영국, 미국,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예멘, 짐바브웨		

48) 체코 재무부 홈페이지
https://www.mfcr.cz/cs/verejny-sektor/podpora-z-narodnich-zdroju/politicke-strany-a-hnuti/prispevek-na-cinnost-vyplaceny-politicky-27233 (검색일 2019.6.10.)

49) 아일랜드 공직기준위원회(Standards in Public Office Commission; SIPO) 2018 정당 국고보조금 보고서 (Exchequer Funding)
https://www.sipo.ie/en/Reports/State-Financing/Expenditure-of-State-Funding/2017-Exchequer-Funding-by-Political-Parties/Exchequer-Funding-Report-2017.pdf (검색일 2019.6.25.)

50) 이스라엘 회계단위(Financing Unit)

51) 2014년 2월 21일 법 제13호에 따라 직접지원 폐지
https://www.normattiva.it/atto/caricaDettaglioAtto?atto.dataPubblicazioneGazzetta=2014-02-26&atto.codiceRedazionale=14G00024 (검색일 2019.10.2.)

52) OSCE. 2016 슬로바키아 총선 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slovakia/235591?download=true (검색일 2019.6.25.)

<표 8-18> OECD국가의 선거비용 간접지원 현황

국가명	교통	출판 (인쇄, 우편, 게시)	라디오 & TV	세금 혜택	근거규정
영 국	×	○	○	×	1983년 국민대표법 제91,93조
프랑스	×	○	○	×	선거법 제166,167-1조
독 일	×	×	○	○	소득세법 제10b,34g조 정당법 제5조
일 본	○	○	○	○	공직선거법 제141조제7항, 제142조제5항, 제144조, 제149조제6항, 제150,151,176조
스페인	×	○	○	×	선거법 제55,64조
캐나다	×	×	○	○	선거법 제338조
호 주	○	×	○	×	공영방송법 제79A조
오스트리아	×	×	×	×	-
벨기에[53]	×	×	○	○	-
체 코	×	×	○	×	선거법 제16조제8항
칠 레	×	×	○	○	선거법 제32,179조
덴마크	×	×	×	○	정당지원법 제13조
에스토니아	×	×	×	○	지방세법 제10조제3항
핀란드	×	○[54]	○	○	정당법 제10조
그리스	×	×	○	×	선거법 제45,46,130조
헝가리	×	×	○	○[55]	선거절차법 제147조
아이슬란드	×	×	×	○	소득세법 31조 제2항
아일랜드	×	○	×	×	선거법(1997) 제57조제1항
이스라엘	○	×	○[56]	×	정치자금법 제18조 선거운동법 제15조
이탈리아	×	×	○	×	미디어접근법[57] 제2,3조 정치자금투명성법[58] 제11조
라트비아	×	×	○	×	사전선거운동법 제6~9조
리투아니아	×	×	○	×	의회선거법 제51조 선거운동비용제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9항

국가명	교통	출판 (인쇄, 우편, 게시)	라디오 & TV	세금 혜택	근거규정
룩셈부르크	×	○	×	×	선거법 제92조
멕시코	×	○	○	○	연방선거법 제159조 정당법 제66,69조
노르웨이	×	×	×	○	소득세법 제2-32조
네덜란드	×	×	○	○	미디어법 제39g조 소득세법 제6.32조, 제6.33조
뉴질랜드	×	×	○	×	방송법 제74조
폴란드	×	×	○	×	선거법 제252조
포르투갈	×	×	○	○	정당과 선거운동자금법 제10조, 선거법 제63조
슬로바키아	×	×	×	×	-
슬로베니아	×	○	○	×	선거운동법 제6,8조
터 키	×	×	×	○	선거기본법 제60조

※ 미국, 스웨덴, 스위스는 선거법상 간접지원 관련 규정 없음.

53) OECD보고서
http://www.oecd.org/gov/ethics/financing-democracy-framework-document.pdf (검색일 2019.10.1.)

54) The Cost of Democracy p.16.
https://www.idea.int/sites/default/files/publications/the-cost-of-democracy-EN.pdf (검색일 2019.9.9.)

55) Greco. Evaluation Report on Hungary Transparency of Party Funding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6c6b30 (검색일 2019.9.10.)

56) Israel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AQ: Elections in Israel 17
https://mfa.gov.il/MFA/AboutIsrael/State/Democracy/Pages/FAQ_Elections_Israel.aspx (검색일 2019.8.27.)

57) 2000년 2월 22일 법 제28호 미디어접근법
'선거, 국민투표 및 정치 캠페인 기간 중 공정한 미디어 접근에 관한 규정'

58) 2014년 2월 21일 법 제13호 정치자금투명성법
'직접지원 폐지, 정당 투명성 및 민주성 규정, 기부 및 간접지원 규정'

제9장

투표

제1절
투표 일반

- 각국의 투표는 영국(목요일)·미국(화요일)·캐나다(월요일)을 제외하고는 일요일 등 휴일에 실시되며, 오전 7-8시 전후 시작해 18-20시에 마감됨.
- 일본의 경우는 선택한 후보자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직접 선거인이 적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기표식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후보자의 이름이나 기호, 정당명이 모두 적혀있는 1장의 투표용지가 선거인에게 주어짐. 하지만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등에서는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1장의 투표용지가 작성되어 선거인에게 배부됨(이 경우 투표용지를 넣은 투표봉투를 투표함에 넣음).

1. 영 국

가. 투표시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15시간)(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1호)

나. 투표구(polling district)와 투표소(polling station)(1983년 국민대표법 제18조)

- 모든 선거구는 수개의 투표구로 분할되며, 각 투표구에는 1개의 투표소가 지정됨.
  - 투표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구내에 위치해야 함.
- 투표소는 선거관리관이 설치하며, 선거관리관은 각 투표소에 투표자가 기표하는 것을 타인이 볼 수 없도록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1983년 국민투표법 부칙 2. 제25호).
-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기호, 이름, 주소, 정당명 또는 무소속 표시를 인쇄하며 기호는 성(姓)의 알파벳순으로 정렬함(1983년 국민투표법, Appendix of forms Directions as to printing the ballot paper).

다. 투표안내문, 투표절차 등[1)]

- 투표소 설치 등의 고시(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23호)
  - 선거관리관은 후보자등록 공고와 동시에 선거일시, 투표장소, 그곳에서 투표할 자와 투표방법을 공고해야 함.
- 투표안내문(poll card)(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28호)
  - 선거관리관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선거인과 그 대리인에게 투표안내문을 보내야 하는데, 투표소 입장권은 선거구의 명칭, 선거인의 이름·주소 및 등재번호, 선거일 및 투표시간, 투표소의 위치 등이 적혀 있음.
  - 투표안내문은 우편 또는 인편에 의하여 교부되며, 지참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음.
- 투표참관인(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30호)
  - 각 후보자는 투표개시 전에 이름 사칭 등의 발견을 목적으로 투표참관인을 임명할 수 있음.
- 투표소에 입장이 허가 되는 자(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32호)
  - 투표소에는 투표관리자의 입장허가를 받은 투표자 및 후보자, 투표참관인, 선거사무장, 서기, 집무중인 경찰관과 투표자와 동반한 18세 이하의 자, 시각장애인인 투표자의 동반자 이외에는 입장이 금지됨.

라. 투표의 원칙 및 절차

- 선거인으로서 투표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배정된 투표소에서 직접투표 해야 함.
- 투표는 비밀투표로 실시되며, 투표를 한 자는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의 사실에 대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음(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21호).
- 투표소 서기는 선거인명부 대조를 하고, 투표용지를 줌.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음(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29호).
  - 투표용지는 선거관리관이 작성하여 투표소에 송부하며, 투표용지 교부시 공인(official mark)을 압인(perforate)하여 교부해야 하는데, 이 공인은 선거관리관이 작성하여 투표소마다 교부함.

---

1)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November 2018. ‘Part C -Administering the poll UK Parliamentary elections in Great Britain: guidance for (Acting) Returning Officers(선거관리관 가이드).’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media/2327 (검색일 2019.6.28.)

- 투표는 기표식으로 선거인은 기표대에서 투표하려는 후보자 이름 우측공란에 “×” 기호를 기재한 후 그 투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어 공인이 보이도록 뒷면을 투표관리관에게 보인 후 투표함에 넣음(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37호).

2. 미 국

가. 투표시간

- 투표소 개폐시간은 주마다 다르며 대부분 오전 6시(~8시)에 열고 오후 6시~(9시)에 닫음.

<표 9-1> 미국 각 주의 투표시간[2)]

(2018년 기준)

시간	주명		시간	주명
5시(~10시)~7시	버몬트		7시~18시	하와이
6시~18시	인디애나, 켄터키		7시~19시	앨라배마, 콜로라도, 플로리다, 조지아, 캔자스, 미시시피, 뉴멕시코, 노스다코타(7-9시~19-21시),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와이오밍
6시~19시	일리노이, 애리조나, 미주리, 버지니아		7시~20시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컬럼비아 특별구,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몬태나,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유타, 위스콘신
6시~20시	코네티컷, 루이지애나, 메인, 뉴저지		7시~21시	아이오와, 네바다
6시~21시	뉴욕(예비선거는 카운티별로 다름)		7시30분~19시30분	아칸소
6시 30분~19시 30분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		8시~20시	아이다호, 네브래스카
기타	오리건, 워싱턴	우편투표		
	뉴햄프셔	기초자치단체별로 시작 시간이 다름. 일반적으로 6시~11시에 시작해 19시에 종료		
	테네시	카운티별로 시작 시간이 다름. 종료시간은 중부는 19시 동부는 20시		

2) Ballotpedia. ‘State Poll Opening and Closing Times(2018).’ https://www.ballotpedia.org/State_Poll_Opening_and_Closing_Times_(2018) (검색일 2019.6.3.)

- 투표시간 보장
  - 와이오밍 주: 선거일 피고용자가 임금의 손실 없이,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본인이 편리한 1시간을 투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음(선거법 22-2-111).[3]

나. 투표방법

- 선거인이 선거일 보통 거주하는 투표구(precinct)에 있는 투표소(polling place)에 가서 투표함.
- 투표방식은 주마다 다른데, 종이투표(paper ballots), 레버머신(mechanical lever machines), 펀치카드(punch-cards), 광학스캔(mark-sense/optical scan), 직접 입력식 전자투표(direct recording electronic) 등이 활용됨.[4]

<표 9-2> 미국 주별 투표방법[5]

투표방법	해당 주
종이투표만 사용 (Paper ballot)	앨라배마, 코네티컷, 아이오와,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몬태나,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뉴멕시코, 뉴욕, 노스다코타, 로드아일랜드, 사우스다코타, 버몬트, 버지니아
종이투표와 투표 확인지 발급이 있는 터치스크린 시스템 병용 (Paper and DRE with paper trail)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캘리포니아,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미주리,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유타, 컬럼비아 특별구,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
종이투표와 투표 확인지 발급이 없는 터치스크린 시스템 병용 (Paper and DRE without paper trail)	플로리다, 인디애나, 켄터키, 뉴저지,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테네시, 텍사스
종이투표, 투표 확인지 발급이 있는 터치스크린, 투표 확인지 발급이 없는 터치스크린 시스템 혼합사용 (Paper and DRE with and without paper trail)	캔자스, 미시시피
투표 확인지 발급 터치스크린과 투표 확인지 발급이 없는 터치스크린 시스템 병용 (DRE with and without paper trail)	뉴저지
투표 확인지 발급 터치스크린 시스템만 사용 (DRE without paper trail)	델라웨어, 조지아, 루이지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우편투표 (Mail)	콜로라도, 오리건, 워싱턴

3) Wyoming Election Code. Title 22. Election. Chapte 2. General Provision. 22-2-111. Employees time off to vote. https://soswy.state.wy.us › Forms › Publications › ElectionCode (검색일 2019.6.3.)

4) 자세한 내용은 제11장 전자투표 미국편, p.769 참조

다. 투표용지[6]

- 모든 주에서 상·하의원선거에 있어서 양대 정당의 추천후보자는 자동적으로 투표용지에 기재되나 소수당 및 무소속후보자는 일정 수준의 지지를 받는 경우에만 투표용지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선거권자들이 투표용지에 기재되지 아니한 후보자들에게도 투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이때에는 자필로 기록).

라. 잠정투표(provisional voting)

1) 근 거

- 선거지원위원회 창설, 주정부의 투표시스템 대체 및 선거행정을 향상을 위한 자금 제공, 주정부의 선거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투표지원법(The Help America Vote act of 200 2: HAVA)이 제정으로 모든 주에서 잠정투표를 실시하게 됨.[7]

2) 잠정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투표지원법 제302조제a항)

- (본인은 해당 선거구에 등록된 선거권자이고 연방선거에 투표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나)투표하려는 선거인의 이름이 해당 투표소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 선거공무원이 해당 선거인은 선거권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 해당 투표소의 선거공무원은 잠정투표를 할 수 있다고 선거인에게 통지
  - 선거인은 선거공무원에게 본인이 해당 투표소에 등록된 선거권자이고,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음을 서면으로 확인한 후 잠정투표를 할 수 있음.

---

5) Verified Voting. ‘The Verifier - Polling Place Equipment – Current.’ https://www.verifiedvoting.org/verifier/ (검색일 2019.6.13.)

6) BALLOTPEDIA. ‘Ballot access for major and minor party candidates.’ https://ballotpedia.org/Ballot_access_for_major_and_minor_party_candidates (검색일 2019.7.15.)

7) Department of Justice. ‘The Help America Vote Act of 2002.’ https://www.justice.gov/crt/help-america-vote-act-2002 (검색일 2019.7.15.)

3) 잠정투표 방법

- 투표지원법은 잠정투표 실시에 대한 규정만 하고 있을 뿐 본인확인을 위한 절차 및 개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주법에 위임하고 있음.
- 잠정투표지를 처리하는 방식은 투표지원법 제302조제d항에 의해 위임된 주법에 따르므로 실제 잠정투표 방식은 주별로 차이가 있음.[8)]
  - 부정확한 선거구에서는 잠정투표지를 개표하지 않는 주(미시건 외 24개 주)
  - 일부에 대하여 개표하는 주(캘리포니아 외 19개 주, 콜롬비아 특별구)
  - 2018년 현재 아이다호, 미네소타, 뉴 햄프셔 주는 잠정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며, 노스 다코타 주는 법원이 투표시간 연장명령을 내린 때에만 잠정투표를 제공함.

참조 9-1 미국 소수민족의 투표권 행사 관련 법규내용

미국역사에서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을 포함한 유색인종들이 완전하고 평등한 투표권을 얻게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사회운동이 요구되었음. 민권운동가들은 한 세기가 넘도록 대중을 조직하고 교육 캠페인을 통하여 불공평한 차별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 다음은 미국 헌법과 연방법에 명시된 소수민족의 투표권과 관련된 주요내용임.

- 수정헌법 제14조(1868년)
  - ○ 미합중국에서 출생 또는 귀화하고 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는 특히 남북전쟁직후 흑인들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
- 수정헌법 제15조(1870년)
  - ○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상태로 해서 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않음.<이로써 흑인 남성에 대한 투표권이 보호를 받게 됨>
- 수정헌법 제19조(1920년)
  - ○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성별로 해서 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 또는 제한되지 않음.<이로써 여성이 투표할 권리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얻게 됨>
-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1965)
  - ○ 이 법은 각종의 차별행위로 인한 소수민족의 투표권리 차별을 막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소수민족의 투표권을 약화시키는 선거구나 행정구를 조정 또는 조작하는 행위 금지
    - 신체장애자와 문맹자에게 투표보조 허용
    - 필요할 경우 선거구역의 5% 또는 1만 명이 그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어의 구사능력이 부족한 경우 선거권자등록형식과 투표용지를 포함한 투표관련 자료를 해당 언어로 제공

8) BALLOTPEDIA. ‘State by State Provisional Ballot Laws.’ https://ballotpedia.org/State_by_State_Provisional_Ballot_Laws (검색일 2019.7.15.)

- 선거권자 등록 시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금지
- 누구든지 이유를 불문하고 부재자 투표를 행사할 수 있게 함.
- 21세 이상(투표연령은 1971년 수정헌법 제26조에 의하여 18세로 하향조정 됨)의 시민권자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선거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보장

• 신체장애자 및 노년층에 대한 투표관리법(Voting Accessibility for the Elderly and Handicapped Act, 1984)
  ○ 투표장에 신체장애자 및 노년층의 투표참여가 가능하도록 돕는 각종의 시설설비를 의무화함.

• 투표지원법(Help America Vote Act, 2002)
  ○ 2002년 12월 연방의회는 전국적으로 연방투표절차에 큰 변화를 가져올 투표지원법(HAVA)을 통과시켰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펀치카드 투표기계의 사용금지
    - 신규 선거권자인 경우 신분증명을 요구해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함.
    - 투표 시 언어보조, 홍보, 교육의 지원 강화
    - 잠정투표를 행사할 기회 보장. 즉, 선거권자 등록을 했는데도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경우 잠정투표를 통해 투표에 할 수 있도록 함.

3. 프랑스

가. 투표시간: 선거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선거법시행령 제41조)

나. 투표할 수 있는 자(선거인의 확인)

- 2차 투표는 1차 투표에 사용된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선거인만 참여할 수 있음(선거법 제57조).
-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로서 투표소에 출석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자만이 투표할 수 있음. 다만, 선거인명부에 등록을 명하는 예심재판소(letribunal d'instance) 판사의 결정문 또는 등록말소를 취소하는 파기원(대법원)의 판결문을 소지한 자는 투표할 수 있음(선거법 제62조, 선거법시행령 제58,59조).
- 투표기간 중 코뮌의 장이 증명하고 각 선거권자에게 부여된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선거인명부의 사본을 투표소 사무직원의 책상에 비치하며, 선거인이 선거인명부상에 기재된 자기의 이름 앞에 서명을 함으로써 신분을 확인함(선거법 제62-1조).

다. 투표용지

- 투표용지의 작성·비치(선거법 제58조)
  - 투표용지는 후보자가 작성하거나 선거운동위원회에서 미리 선거인에게 배포
  - 후보자는 선거일에 코뮌의 장이 준비한 투표용지 교부용 테이블 위에 투표용지를 둘 수 있음.
- 투표용지 인쇄매수(선거법 제308조, 선거법시행령 제30조)

  후보자는 선거구 내 선거인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배포할 수 있음.
- 투표용지 기재사항(선거법 제315조)
  - 후보자의 이름
  - 후보자 이름 밑에 "임시대리후보(remplasant eventeul)", "대리후보(remplasant)", "임시보궐후보(suppleant eventuel)", "보궐후보(suppleant)" 중의 어느 하나를 기재

    ※ 대리후보의 이름은 후보자의 이름보다 작은 글자로 인쇄되어야 함(선거법시행령 제103조).

라. 투표방법

- 상원의원선거의 투표는 의무(하원의원선거는 의무가 아님.)

  ※ 상원의원은 선거인단에 의해 각 도에서 선출되는 간접선거로, 선거인단은 하원의원, 지방의원, 코르시카하원의원, 도의원, 코뮌의회대표 또는 대리대표로 구성(선거법 제280조)

  ※ 선거인단의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도청 소재지 행정재판소는 검사의 구형에 따라 100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318조).
- 투표는 비밀투표이며,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그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행해짐(선거법 제59, 60조).
- 투표용 봉투는 도에서 제작하여 송부하고 등록된 선거인수와 일치되는 수의 봉투를 투표소에 비치함(선거법 제60조).
- 투표함은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2개의 자물쇠로 잠그고 열쇠 중 1개는 투표관리관이, 다른 1개는 보조인 중에서 선정된 보조인이 보관함(선거법 제57-1조).
- 투표절차(선거법 제62조)
  - 선거인은 투표소에 들어갈 때에 투표할 수 있는 자라는 확인을 받은 후 봉투

1매를 수령

- 그 후 선거인은 투표소 안팎에서 볼 수 없도록 설비된 기표소에서 원하는 투표지를 선택하여 봉투에 넣은 다음 투표관리관으로부터 봉투 1매만을 수령했음을 확인(투표관리관은 봉투를 만지지 않고 확인) 받고 나서 투표함에 투입

마. 투표감독위원회(선거법 제85-1조)

- 인구 20,000 이상의 코뮌을 가진 도의 경우 해당 코뮌의 투표구 구성의 합법성, 투·개표활동 및 투표수 집계활동의 합법성, 선거인과 출석한 후보자 등의 권리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는 활동의 합법성을 감시할 책임을 가지는 하나 또는 수개의 위원회를 설치
- 위원회는 반드시 사법적 명령권을 가지는 사법관에 의해 통솔되며, 도내의 선거인 중에서 선출된 대표자를 참여시킬 수 있음.
- 시장 및 투표관리관은 투·개표에 관한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문서를 공개해야 함.

4. 독 일

가. 투표시간(연방선거법시행령 제47조)

- 투표시간은 선거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주선거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투표를 앞당겨 개시하게 할 수 있음.

나. 투표구(Wahlbezirke)·투표소(Wahlräume)

1) 일반투표구(Allgemeine Wahlbezirke)(연방선거법시행령 제12조)

- 투표구는 게마인데(Gemeinde, 자치단체) 단위로 설치
  - 주민수 2,500명 이하의 게마인데는 원칙적으로 1개의 투표구를 구성
  - 주민수 2,500명 이상인 게마인데는 수 개의 투표구로 분할

- 연방군, 연방 국경경비대 또는 경찰의 숙소·야영지 등과 같은 집단시설에 있는 선거인을 위한 투표구는 일정한 구획표시에 의한 수 개의 투표구로 구분되어야 함.
- 선거구위원장(wahlkreisleiter)은 소규모의 게마인데, 동일 행정지구에 있는 게마인데의 일부, 선거구획정 시 분할된 게마인데의 일부를 인접한 게마인데 또는 게마인데의 일부, 다른 행정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투표구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느 게마인데의 선거를 관리해야 할지 여부를 아울러 결정해야 함.

2) 투표소(연방선거법시행령 제46조)

- 게마인데 행정청은 각 투표구마다 1개의 투표소를 지정. 투표소는 가능한 한 게마인데 행정청 사무소에 설치
  - 모든 선거권자 특히 장애인과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가능한 한 선거에 참여하기 쉬운 장소로 선택하고, 투표에 참여하기 쉽도록 설비해야 함.
- 선거인명부가 여러 개로 분철된 큰 투표구에 있어서는 수 개의 건물, 동일 건물 내의 수 개의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거나 동일 투표소 내에 여러 개의 책상을 설치하여 동시에 투표할 수 있음.
  - 이 경우 각 투표소 또는 책상마다 투표구선거위원회가 설치되며, 1개의 투표소 내에 수 개의 투표구선거위원회가 있는 경우 게마인데 행정청은 그 투표소 내의 질서유지를 주관하는 투표구선거위원회를 정함.

3) 투표소 등의 공고(연방선거법시행령 제48조)

- 게마인데 행정청은 늦어도 선거일 6일 전까지 투표시간, 투표구 및 투표소를 공고해야 함.
  - 선거인은 제1투표와 제2투표의 2표의 투표권(정당과 후보자에게 각각 투표)을 가짐.
  - 투표용지는 관제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는 투표소에 비치되어 있음.
  - 투표용지의 내용과 기표방법
  - 선거증에 의한 투표절차 특히 우편투표절차
  - 투표는 오직 1회만 할 수 있으며, 스스로 부정한 선거결과를 초래하거나 선거결과를 위조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시도한 자는 형법 제107조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함.

- 또한, 게마인데 행정청은 공고 내용 중 일부 발췌문을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의 입구에 투표 개시 전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 발췌문에는 투표용지의 견본을 첨부해야 함.

다. 투표용지

1) 투표용지의 작성(연방선거법 제30조제1항)

투표용지와 투표봉투 및 우편투표봉투는 정부가 제작하며, 투표용지는 선거구선거장이 투표용 봉투와 함께 게마인데 행정청에 교부

2) 투표용지의 내용(연방선거법 제30조제2항, 연방선거법시행령 제45조)

- 투표용지에 기재되는 내용은 1차 투표(지역구 의원)의 경우 후보자 이름, 허가된 후보자 설명, 정당명(축약명으로 기재 가능)이, 2차 투표(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정당명(축약기재 가능) 및 비례순위 5번까지의 정당 비례대표 후보자가 기재됨.
- 1차 투표 후보자 기재순위는 정당소속인 경우 정당명부의 순위에 따르며, 정당소속이 아닌 경우 알파벳순으로 기재함.
- 2차 투표 정당 기재순위는 직전 선거의 정당명부선거에서 얻은 득표 순위에 따르며, 직전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은 알파벳순으로 기재함.
- 투표용지 규격은 최소 가로 21cm, 세로 29.7cm(A4)의 흰색종이에 인쇄되며, 글씨색은 1차 투표는 검은색으로 2차 투표는 파란색으로 인쇄함.
- 모든 투표구의 투표용지는 동일한 색상 및 지질로 작성되어야 해야 함.
- 연방하원선거에서 투표구별 순환배열 방식은 사용되지 않음.

라. 투표통지표(연방선거법시행령 제19조)

- 게마인데 행정청은 늦어도 선거인명부의 열람개시일(선거일 20일 전)전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모든 선거인에게 우편엽서 등의 송달방법으로 투표통지를 해야 함.

- 투표통지표에는 선거인의 이름·주소, 투표소에 관한 사항, 투표시간에 관한 사항,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 시 투표통지표와 신분증명서(personalausweis) 또는 여권의 지참안내, 투표통지표는 선거증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지정된 투표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투표할 수 없다는 안내문, 선거증의 신청절차와 우편투표 관계서류의 발송에 관한 안내

  ※ 선거인이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하거나 우편투표를 원하는 경우 선거증의 제시만으로 충분하다는 점, 선거증의 교부절차, 선거증의 신청에 있어 신청에 관한 서면위임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거인의 대리인에게 선거증이 교부된다는 점 등이 명시되어야 함.
- 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의 통지는 투표통지표로 대신할 수 있음.

마. 투표방법(연방선거법 제34,35조)

- 선거인이 지역구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제1표와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제2표를 행사하는 1인 2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 투표는 투표용지에 ×표 표시를 하며, 제1투표는 A당 또는 무소속후보자에게 투표하고 제2투표는 B당의 주명부에 투표할 수 있음.
- 투표와 득표수의 계산편의를 위하여 투표용지, 투표용봉투, 투표함 대신에 독자적인 계산기능을 가진 투표기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
- 법규상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 또는 투표기에 의한 투표 중 어느 것을 채택·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선택할 수 있지만 동일 투표소에서 병용 불가

바. 투표절차

1) 투표순서(연방선거법시행령 제56조)

- 선거인은 투표소에 입장하여 투표용지와 투표용 봉투 각 1매씩을 수령함. 이 때 투표구선거위원회 위원은 선거인에게 투표통지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이를 투표용 봉투에 넣음.
  - 기표소(Wahlzelle 또는 Wahlkabine)에 관한 사항은 「연방선거법시행령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기표대의 형태 및 규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투표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형태여야 함(연방선거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 각 기표소마다 필기구를 비치해야 함(연방선거법시행령 제50조제2항).
- 기표시의 비밀보장을 위해 커튼을 부착하기도 하지만 법률로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은 없음.

- 선거인은 투표용봉투를 가지고 투표위원회위원 앞으로 가서 자신의 투표통지표를 제시. 요구가 있거나 투표통지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 또는 여권을 제시해야 함.
- 투표소 서기는 선거인명부와 선거인의 이름을 대조하며, 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의 투표를 거부할 사유가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투표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음. 서기는 선거인명부에 투표사실을 기입
- 투표관리관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의 투표는 거부해야 함.
  -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지 아니하고 선거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 선거인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선거인명부상에 선거증의 발급사실이 기재된 자로서 선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
  - 이미 선거인명부상에 투표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자, 기표소 밖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하거나 기표된 투표지를 투표용 봉투에 넣는 자
  - 투표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지 않으려는 자
  - 명백히 투표의 비밀을 저해하기 위해 투표용 봉투 이외의 다른 봉투를 사용하거나 명백하게 감식될 수 있는 물건을 넣어 제출하려는 자
- 선거인의 투표편의 제공방안
  - 투표구는 2,500명 미만에 하나의 투표구를 두는 것으로 하며, 선거권자 수가 그 이상인 경우에는 투표구를 나누어 설치
  - 각 자치단체 내에 투표구를 몇 개로 분할할지는 각 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름.
  - 투표구는 모든 선거권자가 선거참여에 가급적 용이하도록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함.
  - 투표구를 분할함에 있어 선거권자 수의 분배가 중요한 기준이 되며, 하나의 투표구에는 2,500명 이상의 선거권자가 분포하여서도 안 되고, 반대로 너무 적은 수의 선거권자만이 분포하여 개별 투표자들이 투표 내용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여서도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선거인명부를 분철할 정도로 큰 투표구의 경우 서로 다른 건물이나 같은 건물 내의 다른 공간 또는 한 투표소 내의 서로 다른 책상에서 동시에 투표하도록 할 수 있음.
- 투표소가 분리되는 경우 투표구 선거위원회는 각 투표소 별 또는 각 책상별로 설치되어야 함.

2) 투표과정의 공개 등(연방선거법시행령 제54,55조)

- 투표과정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투표결과가 나온 후 확정되는 동안에는 누구나 투표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투표소를 출입할 수 있음.
- 투표구선거위원회는 투표소 내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혼잡이 야기되는 경우 투표소는 입장순서를 부여해야 함.

3) 투표의 완료(연방선거법시행령 제60조)

- 투표시간이 종료되었을 때 투표관리관은 이 사실을 알림.
- 투표시간종료 후에는 투표소 안에 입장한 선거인만이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소 내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투표소 내의 입장이 금지되며 그 후 투표의 종료를 선언함.

5. 일 본

가. 투표시간(공직선거법 제40조)

-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7시에 열고 오후 8시에 닫음.
- 다만,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편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선거인의 투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투표소 여는 시각을 2시간 이내에서 앞당기거나 늦추거나 또는 닫는 시각을 4시간 범위 내에서 앞당길 수 있음.
- 투표시간을 변경할 경우 즉시 그 뜻을 고시하고 동시에 투표소 투표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시정촌의회의원 또는 장의 선거 이외의 선거는 즉시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함.

나. 투표구(공직선거법 제17조)

- 투표구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정·촌의 구역에 의함.
- 다만,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촌의 구역을 수개의 투표구로 나눌 수 있음.

다. 투표소

- 투표소는 시청, 정·촌사무소 또는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며, 늦어도 선거일 5일전까지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함(공직선거법 제39,41조).
-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마다 각 투표구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2명 이상 5명 이하의 투표입회인을 선임하고 선거일전 3일까지 본인에게 통지함(공직선거법 제38조).

라. 투표용지(공직선거법 제45,68조)

- 관급주의
  - 투표용지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교부하며, 관급투표용지가 아닌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는 무효로 함.
- 투표용지의 양식은 중의원의원선거 및 참의원의원선거는 총무성령으로,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선거는 해당 선거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함.

마. 투표방법

- 기명식(자서식) 투표(공직선거법 제46조)
  -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명칭 또는 약칭을 기재
  -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의원명부등재자 1명의 이름을 기재. 다만, 정

당·정치단체의 명칭 또는 약칭을 기재할 수 있음.

- 그 외 선거: 해당 선거의 후보자 1명의 이름을 기재

※ 기호식 투표(공직선거법 제46조의2)
지방공공단체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용지에 이름이 인쇄된 후보자 중에서 1명에 대하여 기표란에 "○"를 할 수 있음.

- 기호 "○" 기재방법은 해당 선거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를 자서하거나 기호가 표시된 도장을 날인하거나 두 방법을 병행하는 것으로 함(공직선거법시행령 제49조의3).

- 선거인은 선거일 당일 스스로 자신이 속한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며, 예외로 부재자투표(중의원·참의원선거 시 재외국민투표제도 포함)를 할 수 있음.

바. 선거인의 확인 및 투표의 거부: 가투표(假投票)(공직선거법 제50조)

- 투표관리자는 선거인의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라는 뜻을 선언하게 해야 하며, 그 선언을 하지 않은 자는 투표할 수 없음.
- 투표의 거부는 투표입회인의 의견을 들어 투표관리자가 결정함.
- 투표의 거부결정에 대해 선거인이 불복한 때와 투표입회인의 이의제기가 있은 선거인에 대해서 투표관리자는 가투표를 하도록 해야 하며,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가투표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그 봉투 표면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투표함에 투입하게 해야 함.

※ 투표관리자는 선거인이 본인임을 선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투표입회인 앞에서 선언하게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선거인에게 읽어준 뒤 서명하게 함. 선거인이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스스로 선언하거나 서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투표관리자가 선언서를 작성하여 본인에게 읽어준 뒤 그 사실을 선언서에 기록해야 함(공직선거법시행령 제40조).

사. 조상투표(繰上投票, 조기투표)(공직선거법 제56조)

- 도서 기타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서 선거일에 투표함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되는 때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가 적당한 날을 선거일로 정하여 개표일까지 투표함, 투표록, 선거인명부 등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함.

아. 조연투표(繰延投票, 연기투표)(공직선거법 제57조)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재투표가 필요한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여 투표할 수 있음.
- 중의원의원선거 및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가 발생한 때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의 선거장(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및 참의원합동선거구선거는 선거분회장)을 거쳐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선거일은 선거일 2일 전까지 고시함.

자. 점자투표(공직선거법 제47조 및 공직선거법시행령 제39조)

- 시각장애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정령으로 정한 점자는 문자로 봄.
- 시각장애 선거인이 점자투표를 하려는 경우 투표관리자에게 그 취지를 알리고 투표관리자는 점자투표용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투표하도록 함.

6. 스페인

가. 투표시간: 선거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선거법 제84조)

나. 투표소의 설치(선거법 제23,24조)

- 한 선거구는 여러 개의 투표구로 나누고, 각 투표구는 500명 이상 2,000명 이하의 선거인으로 구성됨.
- 투표구는 선거일 소집 이후 6일째 되는 날 관보에 게재되고, 일반인을 위해 시청에 게시됨.
- 투표소는 지역선거위원회의 감독 아래 해당 시청에서 설치함(선거법 제26조제 1항).

다. 투표소의 운영(선거법 제80,81조)

- 각 투표소의 관리관, 관리위원들[9] 및 해당 대리위원들은 투표관리를 위해 지정된 장소에 오전 8시에 모임.

  ※ 투표관리관 불참시 제1대리관리관이 대리하며, 제1대리관리관 불참시 제2대리관리관이 그 직을 맡음. 투표관리위원이 불참하면 그 대리위원에 의해 대체됨.

- 각 투표소의 설치를 위해서는 적어도 1명의 관리관과 2명의 관리위원을 있어야 함.

  ※ 필수인원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출석한 투표관리위원, 대리위원 또는 정부관청은 이에 대한 진술서를 교부하고 서명하며, 지역선거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고, 전신 또는 전화로 통보해야 함.

-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에 출석한 선거인들 중 투표관리위원을 현장에서 지명하여 임명할 수 있음. 선거위원회는 이 사실을 검찰에 신고하여 불참한 투표관리위원들이나 그 대리위원의 형사적 책임을 묻도록 함.
- 투표개시시각 1시간 이후까지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면, 투표관리관, 투표관리위원 또는 대리위원은 이 사실을 지역선거위원회에 통보하여 2일 이내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선거소집통지서가 즉시 투표소에 부착되며 선거위원회는 직권으로 투표관리위원을 새로 임명함.
- 투표소에는 각 선거별로 하나의 투표함과 하나의 기표소가 비치되어야 하고, 기표소 내 또는 가까운 곳에 충분한 분량의 각 후보자별 투표봉투 및 투표용지가 비치되어야 하며 투표함, 기표소, 투표봉투 및 투표용지 등 선거물품은 공식 모형에 부합해야 함.

라. 투표용지 작성방법(선거법 제172조)

- 투표용지 작성 및 효력은 도 선거위원회가 담당함.
-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 연합, 연정 및 선거인 단체의 약칭 및 상징을 포함.
- 하원의원 투표용지

---

9) 각 투표소의 관리관 및 관리위원은 해당 투표구에 등재된 자들 중 만 70세 미만의 읽기 및 쓰기 능력을 가진 자 중에서 공개 추첨(선거소집일 후 25일에서 29일 사이)에 의해 선임되며, 만 65세 이상인 자는 선임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포기의사를 표명할 수 있음. 투표관리관은 학사 학위나 2년제 전문직업학교 학력 또는 이와 유사한 학력을 보유해야 함(선거법 제26조제2항).

- 각 정당마다 하나의 투표용지를 사용(선거인은 여러 정당의 투표용지 중 골라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게 됨)

- 상원의원 투표용지
  - 하나의 투표용지에 각 정당 등의 후보자명부를 포함.
  - 투표용지는 한 면만 인쇄하나 후보자 수가 많을 경우 양면으로 인쇄할 수 있음.
  - 후보자명부의 나열 순서는 정당, 연합 및 연정이 같은 선거구 지난 선거에서 얻은 총 득표수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함.
    ※ 지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마. 투표용지 모형 및 배포(선거법 제70,71조)

- 관할 선거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에서 사용될 투표용지의 공식 모형을 승인함.
- 관할 선거위원회는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단체에 의해 제작된 투표용지 및 봉투가 공식모형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함.
- 후보자 공표 이후 2일 이내에 전자적 양식을 우선 송부함.
- 투표용지의 제작은 후보자등록공표 이후 즉시 시작하며, 후보자등록에 대하여 소(訴)가 제기되었을 경우 소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작이 연기됨.
- 가장 먼저 제작된 투표용지는 즉시 선거인명부관리국의 도 파견 사무소에 인도되어 해외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송부되며, 시정부(Gobiernos Civiles)는 적어도 투표개시 1시간 전까지 각 투표소마다 충분한 투표용지와 봉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

바. 투표절차(선거법 제86~94조)

- 투표는 비밀투표가 원칙이며, 선거인은 해당 투표구 내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음.
- 선거인은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선택한 뒤 해당 봉투에 이를 투입함.
- 각 선거인은 자신의 이름을 투표관리관에게 밝히면, 투표관리위원 및 참관인들은 선거인명부 또는 제출된 증명서(확인서)를 통해 선거인의 투표권 및 신원을 확인함.
- 선거인은 투표지가 동봉된 투표봉투를 직접 투표관리관에게 전달하면, 투표관리관은 공개된 상황에서 선거인의 이름을 호명하며, “투표합니다.”라고 말한 뒤, 해당 봉투를 선거인에게 전달하고 선거인은 이를 투표함에 직접 투입함.

- 투표관리위원 또는 참관인은 투표 진행 순서에 따라 선거인의 성명을 일련번호가 기재된 선거인명부에 기록하고, 선거인명부 또는 특정 선거인등록확인서에 명시된 일련번호를 알려주어야 함(모든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본인의 이름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음).

  ※ 각 상·하원, 해당 자치주의회의원, 시의회의원 또는 유럽의회의원 선거마다 하나의 명부가 존재함.
- 투표 관리관은 오후 8시에 투표 종료를 선포함. 다만. 투표소 또는 투표소 입구에 선거인이 대기 중일 경우에는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 투표소로 우송 된 우편투표지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함.
- 현행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 시간 중에 투표관리관, 관리위원, 참관인을 체포할 수 없음.
- 투표관리관은 투표소 내외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파견된 경찰들에게 투표소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

7. 스웨덴

가. 투표시간(선거법 제4절 제21조)

-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 유럽의회의원선거: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 기초자치단체는 투표소 마다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다만, 다음 시간에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함.
  - 최소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 유럽의회의원선거: 최소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후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나. 투표구

- 각 기초자치구는 선거구역을 지리적으로 나누어야 함(선거법 제4절 제16조)
- 투표구는 1,000명~2,000명의 선거인으로 구성(선거법 제4절 제17조)

  ※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300명 이하로 구성 가능

다. 투표소(선거법 제4절 제20조)

- 각 기초자치구는 위치, 접근성, 투표시간 등을 고려하여 투표소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확보해야 하며, 투표구마다 한 곳의 투표소가 있어야 함.
- 투표소는 명확하게 분리된 장소이어야 하고, 그 외의 목적에 적합한 공간이어서 투표자가 투표하는데 장애가 없는 곳이어야 함.
- 투표소는 어떠한 정치단체나 종교단체·선거권자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기업과도 연관이 없는 장소여야 함.

라. 투표용지와 투표봉투[10)]

1) 투표용지의 종류(선거법 제6절 제1조)

- 정당의 명칭과 선거의 명칭이 적혀 있는 투표용지
- 정당의 명칭과 선거의 명칭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는 투표용지
- 선거의 명칭만 적혀 있는 투표용지

※ 위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음(선거법 제6절 제2조).

·투표용지가 어느 선거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정보

·투표용지에 적힌 정당이 정당 명칭을 등록했는지 여부, 그 정당이 후보자를 등록했는지에 관한 정보

2) 투표봉투의 종류(선거법 제6절 제5조)

- 투표봉투
- 대리투표용 겉봉투(outer envelopes)
- 우편투표용 겉봉투
- 우편투표 포장용 봉투(cover envelopes)
- 투표용 창봉투

10) 스웨덴의 투표용지는 정당별로 각각 다른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의 투표용지에 하나의 정당과 해당 정당의 후보자 이름이 적혀있음. 선거인은 여러 정당의 투표용지 중 선호하는 정당의 투표용지를 골라 기표하고 투표지를 투표봉투에 넣은 다음 투표사무원에게 제출하면, 투표사무원이 투표함에 넣음.

3) 투표용지의 작성

- 후보자의 이름은 번호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선거법 제6절 제3조).
- 투표용지의 규격은 A6 (105×148mm) 크기로 동일한 재질의 종이로 작성되며, 특정 선거에 대한 모든 투표용지는 같은 색상이어야 함(선거법 제6절 제4조).

4) 투표용지의 인쇄

- 모든 투표용지와 투표봉투는 중앙선거청이 제공하며, 각 정당은 투표용지 인쇄비용을 미리 지급해야 함(선거법 제6절 제6,9조).
- 다음의 정당은 국가의 비용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음(선거법 제6절 제8조).
  - 해당 선거 또는 최근에 실시한 2회의 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의 총 유효투표수의 1%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이미 의회 의석을 확보하고 있거나 선거를 통해 의석을 확보한 정당

    ※ 투표봉투, 대리투표용 겉봉투, 우편투표용 겉봉투와 포장용 봉투도 가능(선거법 제6절 제10조)
- 무료 투표용지 인쇄는 의회의원선거는 선거구 선거인 총수의 3배에 해당하는 만큼 가능(선거법 제6절 제8조)
  - 선거인 수는 선거가 있는 해 3월 1일 '국세청 주민등록 업무 관련 개인정보 사용에 관한 법'에 따라 주민등록의 정보에 근거하여 산출

마. 투표절차

- 선거인은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함(선거법 제7절 제1조).
- 투표개시(선거법 제9절 제3조)
  - 투표관리관은 각 투표함이 비어 있다는 것을 참관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그 이후 투표를 시작함.
- 본인확인(선거법 제8절 제6조)
  - 선거인은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함.
- 기표방법(선거법 제7절 제2조)
  - 하나의 투표용지를 선택해 접지 않고 투표봉투에 넣어, 투표봉투를 봉함함.
  -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기를 원하는 선거인은 선호하는 후보자 이름 옆에 있

는 란에 기표해야 함.

- 선거의 명칭만 적힌 투표용지에는 정당 명칭 등록이나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정당 소속 후보자의 이름을 쓸 수 있으며 그 후보자에게 개인투표를 한 것으로 간주함.

  ※ 투표용지에 여러 후보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가장 첫 번째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으로 간주함.

- 투표용지와 투표봉투에 불필요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됨.

- 선거인은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투표를 정리한 후 투표봉투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출(선거법 제7절 제3조제1항)
- 투표사무원은 투표봉투 준비방법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거나 선거인이 신분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투표봉투를 접수하지 않아야 함(선거법 제8절 제7조).
  - 만일 선거인이 같은 선거에서 하나 이상의 투표봉투를 제출할 경우 그 중 한 개의 봉투만을 접수할 수 있음.

    ※ 투표봉투 접수 전에 투표사무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함(선거법 제9절 제6조).

    ·투표봉투 준비방법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실

    ·선거인명부에 따른 선거인에 해당한다는 사실, 이중투표하지 않았다는 사실

- 투표봉투 접수에 문제가 없는 경우 투표사무원은 선거인 또는 대리인 앞에서 투표봉투를 해당 투표함에 넣고 이 사실을 선거인명부에 표시함(선거법 제9절 제7조).
- 장애가 있는 선거인이 투표소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투표사무원은 투표소 외부에서 투표봉투를 접수할 수 있음(선거법 제8절 제7a조).
- 투표소나 투표소에 인접한 장소에서는 선거인에게 영향을 주거나 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선전이나 다른 활동을 할 수 없음(선거법 제8절 제3조).
- 투표사무원은 투표소 내 질서유지에 책임을 짐. 투표소 또는 이에 인접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투표사무원의 지시 사항에 따라야 하며, 불가피한 혼란이 발생해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를 잠시 중단할 수 있음(선거법 제8절 제4조).
  - 투표가 중단된 경우 각 투표함과 선거인명부를 봉함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해야 하며, 투표가 재개될 때 투표사무원은 우선 먼저 참관인들에게 봉함이 열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함(선거법 제9절 제15조).

- 투표 마감 후라도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들은 투표할 수 있음(선거법 제8절 제5조).
- 선거인은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하였거나 우편 투표를 했더라도 자신의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수 있음(선거법 제9절 제14조).

8. 스위스

가. 투표의 원칙(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5,8조,제8조의a)

- 공식적인 투표용지가 투표에 사용되어야 하며, 전자적 데이터처리를 위한 주의 투표기록증표(Erfassungsbelege)는 공식적인 투표용지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됨.
- 투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직접 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음.
- 연방의회는 관련 주나 코뮌과 협의로 지역적 범위, 투표실시일 및 대상을 한정해 전자투표를 허가할 수 있음.

나. 투표시간(주마다 다름)

- 취리히 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시작(끝나는 시각이 정해져있지 않음)[11]
- 제네바 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12]

다. 투표절차(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34~36조)

- 연방내각국은 투표용지와 함께 선거권자들에게 배포할 간략한 지침서를 매 총선거 전에 발행해 보내야 함.
  - 주 선거당국은 정당 또는 연합단체의 모든 후보자명부가 포함된 투표용지[기

11) 취리히 주정부. https://wahlen-abstimmungen.zh.ch/internet/justiz_inneres/wahlen-abstimmungen/de/abstimmungen.html (검색일 2019.10.29.)

12) 제네바 주정부. https://www.ge.ch/elections/20191020/information/ (검색일 2019.10.29.)

호와 후보자 정보(성, 이름, 거주지)가 포함된)와 백지 투표용지]를 준비해야 함(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33조제1항).

- 주는 선거일 전 3주부터 4주 사이에 선거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보내야 함(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33조제2항, 제48조).

- 백지 투표용지(not pre-printed)를 사용하는 선거권자는 후보자들의 이름, 명부명칭 또는 명부번호를 기재할 수 있으며, 미리 인쇄된 투표용지(pre-printed)를 사용하는 선거권자는 미리 인쇄된 후보자의 이름을 삭제할 수 있음.
- 선거권자는 다른 명부에 있는 후보자의 이름을 기입할 수 있고(분할투표), 투표용지에 같은 후보자의 이름을 두 번 기입할 수 있음(누적투표).
- 후보자명부를 최종적으로 수정한 이후 사망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그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인 득표수로만 계산됨.

<그림 9-1> 스위스의 투표용지[13)]

- 2015년 총선 당시 제출된 명부의 종류는 422개[14)]로, 정당 또한 하나의 명부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부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음.
- 선거권자는 정당이 제출한 명부대로 작성된 투표용지를 선택해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선거권자가 직접 투표용지에 후보자명부를 작성 또는 일부 편집하거나, 동일한 후보자의 이름을 2회 기입하여 해당 후보자에게 2표를 행사할 수도 있는 등 다양하게 투표할 수 있음.
- 투표용지 상 후보자명부의 선택에 관한 경우의 수는 다음 그림 참조[15)]

	정당에서 제출한 명부 중 하나를 택하여 그대로 투표 (정당을 선택하고, 해당 정당에서 작성한 명부에 있는 후보자 모두 선택)
	정당에서 제출한 명부 중 하나를 택하여 해당 정당에 대하여 투표하나, 명부에 있는 후보자 중 일부를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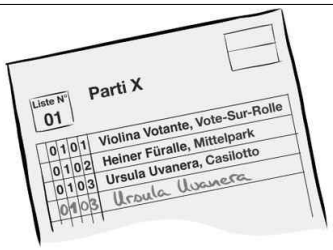	동일한 후보자의 이름을 한 번 더 작성하여 2표를 해당 후보자에게 투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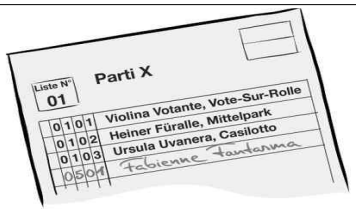	또는 다른 명부에 있는 후보자를 추가할 수 있음. 추가의 경우에는 해당 주에게 할당된 의석 수 만큼만 추가할 수 있고, 그 이상 초과되는 이름은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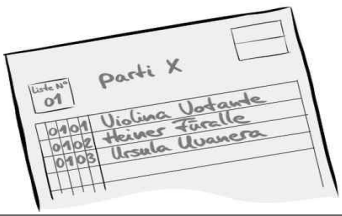	투표권자가 직접 정당을 선택하고 후보자명부를 작성해 투표하는 것도 가능

13) ch.ch Elections 2019. 'How to vote in the National Council Elections in cantons with more than one seat.' https://www.ch.ch/en/elections2019/how-to-vote-in-the-national-council-elections/how-do-i-fill-in-my-ballot-paper-in-the-cantons-of-zh-be-lu (검색일 2019.10.29.)

라. 추가투표(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37조)

- 투표용지에 선거구 하원의원에게 투표해야 하는 의석수보다 더 적은 유효 후보자수가 기재된 경우 투표용지상의 완성되지 않은 선에 명부명칭 또는 명부번호를 기입 시 명부에 대한 추가투표로 계산됨(명부의 명칭 또는 번호를 기입하지 않았거나 하나 이상의 명부의 명칭 또는 번호를 기입한 경우 계산되지 않음).
- 한 주에 명부명칭이 같은 둘 이상의 지역명부가 있는 경우 투표지에 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채 행사한 추가투표는 그 투표지가 제출된 지역명부에 대한 것으로 간주

9. 캐나다

가. 투표시간

- 지역별 투표시간(선거법 제128조)
  - 뉴펀들랜드, 대서양, 중앙시간 지역: 오전 8:30부터 오후 8:30까지
  - 동부시간 지역: 오전 9:30부터 오후 9:30까지
  - 산악시간 지역: 오전 7:30부터 오후 7:30까지
  - 태평양시간 지역: 오전 7:00부터 오후 7:00까지
- 한 선거구 내에 2 이상의 지역시간이 적용될 경우 선거관리관은 선거관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지역시간을 하나로 결정할 수 있음(선거법 제130조).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궐선거가 같은 날, 같은 지역시간에 실시되는 경우의 투표시간은 오전 8:30부터 오후 8:30까지로 함(선거법 제131조).

---

swissinfo.ch. 'Parliamentary Elections A voter guide for electing the Swiss parliament.' https://www.swissinfo.ch/eng/parliamentary-elections-_a-voters--instruction-manual-for-electing-swiss-parliamentarians-/45160226 (검색일 2019.10.29.)

14) Élection au Conseil national: Listes déposées par parti, Office fédéral de la statistique. 2015.10.16. https://www.bfs.admin.ch/bfs/fr/home/statistiques/politique/elections/conseil-national.html#21_1461223447965__content_bfs_fr_home_statistiken_politik_wahlen_nationalratswahlen_jcr_content_par_tabs_1077743566 (검색일 2019.6.5.)

15) https://www.media.bk.admin.ch/wahlen/fr/ (검색일 2019.6.5.)

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 선거권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선거일에 연속한 3시간 동안의 투표시간이 보장되어야 함(선거법 제132조).
- 고용주는 허가한 투표시간동안 근로자가 직장에 부재하였다는 사유로 근로자의 급여를 삭감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없음(선거법 제133조).

다. 투표의 결정(선거법 제64조)

- 2명 이상의 후보자가 등록한 경우 선거관리관은 후보자등록기간 종료 후 5일 이내 투표실시 공고문을 게시

  ※ 투표실시 공고문에는 후보자의 이름, 정치적 소속단체,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투표구의 명칭과 번호, 투표소의 주소가 포함되어야 함.
- 선거사무원은 선거관리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실시 공고문 사본을 투표소에 게시
- 선거관리관은 선거일 전 31일 이후나 후보자등록 수리일에 투표구경계구역표 사본을 각 후보자에게 10부 범위 내에서 송부해야 함.

라. 투표구(선거법 제538조)

- 각 투표구는 일반적으로 최소 250명의 선거인이 있어야 함.
- 일반적으로 투표구는 직전 실시한 연방선거(총선거)의 투표구를 유지함.
- 선거관리청장은 선거관리관에게 관할 선거구의 투표구 조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관은 시나 주(municipal and provincial authorities)가 제출한 투표구획정안의 투표소 접근성을 고려하여 투표구를 조정
- 선거관리관은 선거관리청장의 승인 하에 장애인과 노인들이 거주하는 기관·시설로 구성된 투표구를 설치할 수 있음.

마. 투표소

- 각 투표구에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투표소를 설치함(선거법 제120조).
- 투표소는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는 평지층에 설치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학

교, 연방정부청사, 공공건물에 설치함(선거법 제121조, 122조).

- 장애인·노인들이 거주하는 기관·시설 투표구에는 이동투표소(mobile polling station)를 설치할 수 있음. 이 때 선거관리관은 선거관리청장의 지시에 따라 투표소별 운영시간을 정하고, 이동투표소의 일정을 후보자에게 통지해야 함(선거법 제125조).
- 기관·시설 안에 설치된 투표소(선거법 제157조)
  - 선거사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동 시설 책임자의 승인 하에 투표함, 투표용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들고 다니며 방마다 환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하며, 후보자의 대리인은 1명을 초과하여 참관할 수 없음.

바. 투표용지(선거법 제117조)

- 후보자의 이름은 후보자 등록신청 서류에 기재된 바에 의하며, 이름이 동일한 후보자의 경우 직업·주소를 함께 기재

  ※ 투표용지에 이름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니셜(initial)만으로 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게재순위는 이름의 알파벳순이며, 정치적 소속단체가 명시된 후보자는 후보자 이름 하단에 기재

  ※ 등록정당의 명칭 및 약칭은 정당의 당수가 제시한 내용으로 기술
- 선거관리관은 선거일전 19일 오후 2시 이후에 가급적 신속하게 투표용지를 인쇄하여야 함.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매겨야 하며 인쇄하여 납품한 자의 이름을 적어야 함(선거법 제116조).

사. 투표절차

- 투표소에 출입가능한 자는 다음과 같음(선거법 제135조).
  - 현장연락소 사무원, 투표사무원, 선거관리청장과 소속직원, 선거관리관과 대리인, 후보자와 후보자의 대리인 2명, 거동불편자의 투표보조인 1명, 참관인
- 후보자의 대리인(candidate's representative)은 투표시간동안 자유롭게 투표소를 입·출입을 할 수 있으며 한 투표소에서 다른 투표소로 이동도 가능하지만 한번

투표소를 떠난 경우에는 다시 들어갈 수는 없음. 또한 이들은 선거인의 투표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해 얻은 정보를 다른 대리인에게 전달할 수 있음(선거법 제136조).

- 투표소 내에서 사진을 찍거나 오디오 또는 비디오로 녹화할 수 없으며,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나 투표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됨.

- 투표개시 전 사전준비(선거법 제138~140조)
  - 투표사무원은 투표 개시 전에 후보자, 후보자의 대리인 및 선거권자 대표가 입회한 가운데 모든 투표용지의 뒷장 서명란에 약식서명(initials)을 하고 투표함을 열어 투표함이 비어 있음을 확인한 후 봉인하여 책상위에 비치
  - 후보자나 대리인이 투표개시 15분 전에 출석한 경우 투표소 내 투표용지를 계수하고 관련서류를 점검할 수 있음.

- 투표 진행 절차[16)]
  - 선거인이 자신의 주소와 이름을 말하면 투표사무원은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확인 후 선거인에게 신분증을 확인함(선거법 제143조).

    ※ 신분증의 종류: 선거인의 사진·이름·주소가 기재된 정부(연방, 주, 지방, 공공기관)가 발행한 신분증 또는 선거관리관이 승인한 기타 신분증(이 경우 2가지를 제출해야 함)

    ※ 공식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선거인이라도 다음의 경우 투표할 수 있음(선거법 제149조).

    ·투표소이전확인서, 등록확인서를 취득 제출하는 경우

    ·충분한 신분증명을 제시하고 선거사무원이 선거관리관과 함께 선거인이 예비선거인명부 또는 명부수정기간 중에 등재되어 있었음을 확인한 경우
  -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후보자의 이름 반대편 작은 원안에 '×'표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한 후 접어서 투표사무원에게 줌(선거법 제151조).
  - 투표사무원은 선거인으로부터 받은 투표지 뒷면의 약식서명과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선거인과 다른 참석자들 앞에서 부본의 일련번호(counterfoil)를 절취한 후 투표지를 선거인에게 주면 선거인이 투표함에 투입함.

16) 캐나다 선거관리청 홈페이지
https://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res&dir=ces&document=part5&lang=e (검색일 2019.5.31.)

10. 호 주

가. 투표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연방선거법 제220조)

나. 투표용지

- 선거구마다 다른 투표용지를 사용하며, 투표용지에는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을 인쇄하고 정당이 요구하는 경우 등록부에 등재된 로고를 인쇄함(연방선거법 제209조).
  - 투표용지는 하원의원선거의 경우 녹색용지를, 상원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흰색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방정부 공문서에 통상 사용되는 검은색으로 인쇄
  - 우편투표에 사용될 투표용지 상단에는 "우편투표용지"라고 기재하고, '투표용지를 접어 우편투표인준서가 인쇄된 봉투에 넣고 봉인할 것'이라는 지시사항을 기재해야 함.
- 투표용지에는 인증을 위한 공식적인 표시(official mark)가 있어야 함(연방선거법 제209A조).
- 투표용지의 후보자 기재순서는 구슬을 이용하여 추첨으로 결정하며, 2명 이상의 후보자의 성명이 유사하여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들의 이름을 구별할 수 있는 설명 또는 추가적 사항과 함께 기재함(연방선거법 제213조).

다. 투표방법

- 일반적인 투표는 선거인이 선거일에 자신이 등록되어 있는 선거구 내의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연방선거법 제222조)
- 절 차(연방선거법 제229조)
  - 선거인은 투표관리관(presiding officer)에게 이름, 주소, 해당 선거에서의 투표여부를 구술
  -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로 위의 사항을 확인한 후 투표용지 앞면 상단에 이름의 첫 글자로 서명한 투표용지를 교부

- 만약 선거인명부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이미 투표한 것으로 표시된 경우, 선거인명부에 이름은 있지만 주소가 없는 경우(silent elector), 추가적인 질문으로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언투표(Declaration vote)용지를 교부받아 임시투표(provisional vote)를 하게 됨(연방선거법 제235조).[17]

- 상원의원선거의 기표(연방선거법 제239조)[18]
  - 상원의원 투표용지는 검은 구분선을 기준으로 윗부분(above the line)에는 정당 또는 그룹, 아랫부분(below the line)에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곳이 구분되어 있음.
  - 선거인은 정당이나 그룹 영역 또는 후보자 영역 둘 중 하나의 영역을 선택하여 기표해야 함.
  - 숫자가 아닌 단 하나의 체크표시(✔)나 십자표시(×)가 기표된 경우에는 1을 기재한 것으로 간주하며, 같은 숫자가 반복된 경우 그 반복된 숫자와 그 숫자보다 높은 수, 숫자가 빠진 경우에는 그 빠진 숫자보다 높은 수는 집계에서 제외됨(연방선거법 제268A조, 제269조).

    <구분선 윗부분(above the line) 정당이나 그룹 영역 기표>
  - 정당 또는 그룹 투표 영역에 기표하는 경우에는 선호하는 정당 또는 그룹의 순위에 따라 네모 칸의 기표 란에 1에서 6까지 숫자로 선호 순위를 표시해야 함.
  - 6개 이하의 기표란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1에서부터 연속된 번호로 그 순위를 순차적으로 표기함.
  - 구분선 윗부분(above the line)의 정당 또는 그룹 영역에 숫자 1만을 기재하거나 숫자 1과 하나 이상의 1보다 높은 수를 기재한 경우 해당 투표용지는 유효임(연방선거법 제269조).

    <구분선 아랫부분(below the line) 후보자 영역 기표>
  - 아랫부분 후보자 영역에 기표하는 경우 역시 네모 칸의 기표란에 후보자에 대한 선호순서에 따라 숫자로 기표하며, 이 경우 최소 12명의 후보자에게는 선호순위를 표기해야 함. 12개 이하의 기표란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

17) 호주선거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와 관련된 정보' 부분 참조. http://www.aec.gov.au/voting/polling.htm (검색일 2019.6.21.)

18) https://www.aec.gov.au/faqs/Voting_Australia.htm#vote-saving (검색일 2019.7.30.)

서 1에서부터 연속된 번호로 그 순위를 순차적으로 표기함.

- 기표란이 6개를 넘는 경우에 선거인이 적어도 1에서 6까지의 숫자를 연속적으로 기재했다면 6보다 큰 하나 이상의 숫자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투표지는 유효함(연방선거법 제268A조).

- 하원의원선거의 기표(연방선거법 제240조)
  - 후보자의 이름 옆의 사각형 기표란에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의 선호 순서를 숫자로 표시해야 함.
  - 기재하는 숫자는 특정 숫자의 반복 없이 연속적인 숫자여야 하며, 모든 후보자에게 선호를 표시해야 함.
  - 선호순위 표기 없이 특정 후보자 기표란을 빈칸으로 두거나 숫자가 아닌 체크표시(✔)나 십자표시(×)로 기표를 한 경우 이 투표지는 무효가 됨. 다만 단 한 명의 후보자 기표 란만 빈칸으로 둔 경우 그 후보자는 가장 마지막으로 선호하는 후보자로 표시한 것으로 간주(연방선거법 제268조제1항제c호)[19]

19) 호주선거위원회 홈페이지. '하원의원선거의 투표용지 관련 정보' 부분 참고 http://www.aec.gov.au/Voting/How_to_vote/Voting_HOR.htm (검색일 2019.6.21.)

<표 9-3> 각국의 투표요일

요일		국가명
월요일		노르웨이(공휴일), 필리핀, 캐나다(공휴일인 경우, 화요일에 실시)
화요일		이스라엘, 미국, 덴마크
수요일		인도네시아(공휴일), 네덜란드
목요일		영국
금요일		아일랜드
토요일		호주, 뉴질랜드, 대만, 키프로스, 라트비아, 몰타,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일요일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레바논,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멕시코, 몬테네그로,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기타	체코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 토요일 오후에 마침.
	인도	여러 날에 걸쳐 선거가 진행됨.

※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이틀(일요일, 월요일)에 걸쳐 선거를 실시하지만, 2018년 총선의 경우 3월 4일 당일에 상·하원의 원선거를 동시에 진행하였음.
※ 미국은 주별로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함.
2018년 11월 6일 본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주 –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인디애나, 메릴랜드, 미시간, 몬태나, 뉴저지, 뉴욕, 로드아일랜드, 웨스트버지니아
※ 이스라엘은 법규상 화요일이지만 다른 요일에 열리는 경우도 많고,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왔으나 2019.4.9 조기총선에서는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음.
출처: Wikipedia. 'Election day.' https://en.wikipedia.org/wiki/Election_day (검색일 2019.5.28.)
timeanddate.com https://www.timeanddate.com/holidays/us/election-day (검색일 2019.5.30.)

<표 9-4> OECD국가의 투표요일, 선거일 수, 투표시간, 개표시간

국가명	투표요일	일수	투표시간	개표시간	관련규정
영 국	목요일(평일)	1일	7시~22시(15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행정법 2006년 Schedule1 Part3 제45조 선거관리관이 참관인과 합의한 경우 오후 7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개표를 중단할 수 있음.
미 국	화요일(평일)	1일	5시~21시 사이 (보통 12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주별로 다름
프랑스	일요일	1일	8시~18시(10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시행규칙 제41조
독 일	일요일	1일	8시~18시(10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47조 • 단, 주선거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투표시간을 앞당길 수 있음.
일 본	일요일	1일	7시~20시(13시간)	주간 또는 야간개표	공직선거법 제40조 • 단, 시·정·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편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도·도·부·현 선거관리위원회의 승낙을 얻어 투표소 여는 시각을 2시간 이내에서 앞당기거나 늦추거나 또는 닫는 시각을 4시간 범위 내에서 앞당길 수 있음.
스페인	일요일	1일	9시~20시(11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84조
스웨덴	일요일	1일	8시~20, 21시(12~13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10장 제1조 • 단, 투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시간 단축 가능
스위스	일요일	2일	제네바) 오후 12시부터~ 취리히) 10시~12시 (주별로 다름)		규정 없음.
캐나다	월요일(평일)	1일	9시30분~21시30분 (동부 지역) 7시30분~19시30분 (산악 지역) 7시00분~19시00분 (태평양 지역)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128,129,130,131조
호 주	토요일	1일	8시~18시(10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220조

국가명	투표요일	일수	투표시간	개표시간	관련규정
오스트리아	일요일	1일	지역별로 시작시간 상이 17시 이전에 종료는 규정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하원선거법 제1,52,59,84조
벨기에	일요일	1일	8시~13시(5시간) (다른 종류의 선거가 동시에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연장가능)	투표완료즉시 (오후 2시 이전까지 개표소구성)	헌법 제65조 선거법 제142,152조
체 코	금요일 토요일	2일	금)14시~22시(8시간) 토)8시~14시(6시간)	주간 또는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1,40조
칠 레	일요일	1일	8시~18시(10시간)[20]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63,65,74,75,180조
덴마크	경제내무부 장관이 별도 공표[21]	1일	평일(8시~14시;6시간) 주말(9시~17시;8시간) ※ 공휴일은 주말과 동일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21,46,68조
에스토니아	일요일	1일	9시~20시(11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2,38,57조
핀란드	일요일	1일	9시~20시(11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68,78,107조
그리스	일요일	1일	7시~19시(12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50,90조
헝가리	일요일	1일	6시~19시(13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절차법 제6,169,188조
아이슬란드	토요일	1일	9시~17시(8시간) (마지막 투표 후 30분 동안 추가 투표가 없을 경우 종료, 늦어도 22시에는 종료)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모든 선거권자가 투표한 경우 14시 종료 가능)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의회선거법 제70,89,97조
아일랜드	금요일[22] (법령에 따름[23])	1일	7시~22시30분 사이에서 담당 장관이 12시간 이내로 정하여 선거 시 공표	주간개표 (오전9시부터)	선거법(1992) 제2조, 제96조제1항, 제114조제1항
이스라엘	화요일[24]	1일	7시~22시(15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의회기본법 제9조 선거법 제72,79조
이탈리아	일요일	1일	8시~22시(14시간)[25]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하원선거법 제48,64,64의2,67조
라트비아	토요일	1일	7시~20시(13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17,29조
리투아니아	일요일	1일	7시~20시(13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의회선거법 제6,62,76조

국가명	투표요일	일수	투표시간	개표시간	관련규정
룩셈부르크	일요일	1일	8시~14시(6시간)	주간개표[26]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73,134조
멕시코	일요일	1일	8시~18시(10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연방선거법 제208,209,287조
노르웨이	월요일[27]	1일	8시(~13시)~ (18시~)21시 ※ 선거위원회가 투표 시간과 장소를 발표 (최종 마감시각 21시[28])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9-1,9-2,9-3,10-4,10-5조
네덜란드	수요일	1일	7:30~21시(13시간30분)	21시	선거법 제J1조, 제N1조
뉴질랜드	토요일	1일	9시~19시(10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139,161,174조
폴란드	일요일	1일	7시~21시(14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헌법 제98조 선거법 제4,39,71조
포르투갈	일요일	1일	8시~19시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20,101조
슬로바키아	토요일	1일	7시~22시(15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선거법 제20조제3항 제29조제3항
슬로베니아	토요일	1일	7시~19시(12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의회선거법 제68,84조
터 키	일요일	1일	8시~17시(9시간)	야간개표 (투표완료 즉시)	의회선거법 제6조 선거기본법 제89,95,96조

20) 칠레 선거법 제63,65조: 선거일 오전 8시부터 투표소 관리위원들이 투표 준비를 시작하며 담당자 동의하에 투표 개시를 선언. 각 투표소는 관리위원 및 대표자, 참관인의 서명을 받아 투표 시작시간을 분 단위까지 표기하여 기록. 투표는 오전 8시 이전에 시작할 수 없음.

21) 선거일 10일 전에 경제내무부 장관이 전국 신문에 선거일과 시간을 공표함(선거법 제21조(1)).

22) 2016 아일랜드 총선(금요일)
https://www.google.com/search?q=2016+irish+general+election&sa=X&ved=2ahUKEwibyIrV7pfkAhVDyosBHaaiALUQ6RMwIXoECA4QBA&biw=1328&bih=769 (검색일 2019.5.7.)

23) 아일랜드 선거법(1992) 제96조: 의회 해산 이후 의회 사무처장이 선거 소집 영장을 발부하며 담당 장관(환경부, 선거법 제2조 the minister)이 선거일을 공표함(선거소집영장 발부일로부터 18일 이후, 25일 이내에 선거일 결정)

24) 이스라엘 의회 기본법 제9조: 총선은 의원 임기가 끝나는 해 2월 셋째 주 화요일에 실시. 윤년일 경우 첫째 주 화요일에 실시

25) 2018.3.4. 이탈리아 총선 7시~23시
https://www.marketwatch.com/story/when-will-italian-election-results-be-known-2018-02-28 (검색일 2019.10.4.)

26) 룩셈부르크 선거법에는 개표 시작 시점을 명시하지 않음.
https://delano.lu/d/detail/news/luxembourg-legislative-elections-first-time-voters-guide/190056 (검색일 2019.5.7.)

<표 9-5> OECD국가의 투표용지 내용 현황

구분 국가명	투표용지 개수	기호	후보자 이름	후보자 사진	정당명 또는 상징	기타	근거규정
영 국	선거인별 1장	○	○	×	○	-	1983년 국민투표법 부록
미 국	선거인별 1장	×	○	×	○	-	주법
프랑스	후보자 별 1장	×	○	×	○	-	선거법 제315조
독 일	선거인별 1장	○	○	×	○	-	연방선거법 제30조제2항
일 본	선거인별 1장	×	×	×	×	자서식 투표	공직선거법 제45,46조
스페인	정당별 1장	×	○	×	○	-	선거법 제172조
스웨덴	정당별 1장	×	○	×	×	-	선거법 제6절 제1조
스위스	정당별 1장	×	○	×	○	-	-
캐나다	선거인별 1장	×	○	×	○	이름이 동일한 경우 직업·주소 함께 기재	선거법 제117조
호 주	선거인별 1장	○	○	×	○	-	연방선거법 제209조
오스트리아	선거인별 1장	○	○	×	○	후보자의 생년	하원선거법 제75조
벨기에	선거인별 1장	○	○	×	○	-	선거법 제128,143조
체 코	정당별 1장	○	○	×	○	직업, 나이	선거법 제38조
칠 레	선거인별 1장	○	○	×	○	-	선거법 제24,25,26조
덴마크	선거인별 1장	×	○	×	○	-	선거법 제43조
에스토니아[29]	선거인별 1장	×	×	×	×	후보자 등록번호를 직접 기입	선거법 제39조
핀란드	선거인별 1장	×	×	×	×	자서식 (후보자 기호를 적음)	선거법 제51조

구분 국가명	투표용지 개수	기호	후보자 이름	후보자 사진	정당명 또는 상징	기타	근거규정
그리스	후보자·정당별 1장	×	○	×	○	-	선거법 제72조
헝가리	선거인별 2장	○	○	×	○	후보자 이름이 동일한 경우 생년 기입	선거절차법 제157,158, 160조
아이슬란드	선거인별 1장	○	○	×	○	-	-
아일랜드	선거인별 1장	×	○	○	○	-	선거법(1992) 제66조
이스라엘	정당별 1장	×	×	×	○	-	선거법 제76조
이탈리아	선거인별 1장	×	○	×	○	-	1996.7.8. n368 별첨
라트비아	선거인별 1장	○	○	×	×	-	선거법 제14조
리투아니아	선거인별 2장	×	○	×	×	-	-
룩셈부르크	선거인별 1장	○	○	×	○	-	선거법 제143조
멕시코	선거인별 1장	×	○	×	○	부, 모의 이름	연방선거법 제266조
노르웨이	선거인별 1장	○	○	×	○ (상징, 로고는 불가)	직업, 출생연도, 거주지	선거법 제7-3조 선거규칙 총리령30) 제19조 선거메뉴얼 8.5
네덜란드	선거인별 1장	○	○	×	○	-	선거법 제J20조
뉴질랜드	선거인별 1장	×	○	×	○	-	선거법 제150조
폴란드	선거인별 1장	○	○	×	○	-	선거법 제224조
포르투갈	선거인별 1장	×	×	×	○	-	선거법 제95조
슬로바키아	선거인별 1장	○	○	×	○	직업, 나이, 거주지	선거법 제55조제3항
슬로베니아	선거인별 1장	○	○	×	○	-	-

구분 국가명	투표용지 개수	기호	후보자 이름	후보자 사진	정당명 또는 상징	기타	근거규정
터 키	선거인별 1장	×	○	×	○	정당대표 이름	의회선거법 제26조

※ 투표용지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 선거인별 1장)우리나라처럼 한 장의 투표용지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명이나 정당명이 모두 적혀있는 형태는 선거인별로 1장의 투표용지를 받음.
- 후보자·정당별 1장)후보자나 정당별로 각각 투표용지가 작성되는 형태의 경우 투표소나 기표소 안에 투표용지가 게시되어 있어 선거인은 선호하는 후보자나 정당의 투표용지를 투표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함.
- 일본의 경우 백지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을 적음.

27) 공식 선거일 전인 일요일에도 투표소를 운영할 수 있음(선거법 제9-2조).

28) 노르웨이 선거사무국 홈페이지(The Norwegian Directorate of Elections)
https://www.valg.no/en/polling-stations/polling-stations/polling-places/?cpid=42 (검색일 2019.10.10.)

29) 대통령 선거는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이 기입되어 있음(대통령선거법 제8조).

30) 노르웨이 지방정부현대화부 '의회, 지방의회, 시의회 선거 규칙' 총리령
Regulations on elections to the Storting, county councils and municipal councils (election regulations)
https://lovdata.no/LTI/forskrift/2003-01-02-5 (검색일 2019.10.10.)

제2절
부재자투표(Absentee voting) — 우편투표 및 특별투표소 투표

- 부재자투표는 선거일에 없거나, 해당 선거구에 없는 경우 실시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 선거일에 해당 선거구에 없는 선거권자의 경우 선거일 전에 실시되는 우편투표나 사전투표(제3절에서 자세히 설명)를 통해 투표할 수 있으며,
  - 선거구에 없는 선거권자(병원, 요양원, 교도소 등 거동이나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를 위해서는 선거일에 특별투표소를 별도로 설치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각국은 질병, 부재, 출장업무 등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놓고 있으며, 본인의 신청에 의해야 함.
- 프랑스는 1975년 12월 이후 우편투표를 폐지함.

1. 영 국

가. 우편투표를 할 수 있는 자(2000년 국민대표법 부칙4. 제3호)

선거인명부에 등록되거나 등록 예정인 선거인은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음.

나. 우편투표 절차(2000년 국민대표법 부칙4. 제3호)

- 선거인명부등록관에게 신청자의 사인과 생년월일, 신청자의 등록된 주소와 우편투표용지를 받을 주소를 작성해 우편으로 신청
- 선거일 전 11일까지 신청해야 함. 이와 별도로 개별등록제(IER) 시행으로 인해 우편투표를 신규로 신청하려는 선거권자는 반드시 개별등록을 선거일 전 12일까지 마쳐야 함.[31]

※ 신청자의 주소가 영국일 경우 무료반송봉투가 우편투표 묶음에 포함돼 있음. 다만 해외 우편투표

31)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Voting by post(우편투표).’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i-am-a/voter/how-cast-your-vote/voting-post (검색일 2019.6.28.)

의 경우 신청자가 우편요금 부담

- 선거일까지 우편투표지가 도착되어야 하는데, 불가능할 경우 우편투표의 당사자는 선거일에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관이나 투표소에 투표지를 직접 전달할 수 있음.

2. 미 국

- 모든 주(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부재자투표로 우편투표를 실시[32)]

  ※ 콜로라도, 오리건, 워싱턴 주는 모든 선거를 우편투표로 실시하므로 부재자투표가 필요없음.[33)]

가. 부재자투표 사유[34)]

- 선거일에 단순히 자신의 선거구에 없기 때문에 허용하는 주: 알래스카 등 28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
-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는 주: 앨러배마, 미주리 등 19개 주
  - 질병, 신체장애, 종교상의 이유 또는 군복무나 해외근무, 학업 등으로 장기간 부재, 경범죄로 인한 수감 등의 경우

나. 부재자투표 신청 및 절차[35)]

- 부재자투표 사유에 해당하는 선거인(일정한 범위의 친족에 의한 대리신청도 가능)은 선거일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군서기(county clerk), 선

---

32) BALLOTPEDIA. ‘Absentee voting.’
https://ballotpedia.org/Absentee_voting (검색일 2019.6.22.)

33) 오리건 주는 1998년 이후 모든 선거를 우편투표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주민의 주민투표의 결과로 결정된 사항임(Oregon statutes Chapter 253). 워싱턴 주(WRC §29A.40)는 2011년, 콜로라도 주(CRS §1-5-401, 2013.5.10)는 2013년 이후 모든 선거를 우편투표로 실시하고 있음.

34) BALLOTPEDIA. ‘Absentee voting by state-Excuse required.’
https://ballotpedia.org/Absentee_voting#Excuse_required (검색일 2019.6.22.)
NCSL. ‘Absentee and Early Voting.’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absentee-and-early-voting.aspx#overview (검색일 2019.7.20.)

35) usagov. ‘Absentee and Early Voting.’
https://www.usa.gov/absentee-voting (검색일 2019.7.20.)

거위원회, 등록위원회 등 해당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

- 해당 기관은 신청기한 내에 제출된 부재자투표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및 주소가 등록선서서 원본과 동일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인이 부재자투표 자격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투표용지 등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송부
- 부재자투표를 하려는 자는 선거 전 일정기간 내에 각 선거위원회 또는 서기사무소 등 해당기관에 투표지를 보내거나 본인이 직접 투표
- 통상적으로 부재자투표는 선거당일 투표소 폐쇄시각까지 투표구위원회 등 해당 기관에서 수리되어야 함.

<표 9-6> 미국 주별 우편투표 마감시간[36]

(2018년 기준)

마감 시간	주명
선거일 전 금요일 오후 5시	펜실베이니아
선거일 전일 자정	루이지애나
선거일 전일 정오	델라웨어
선거일 전일 오후 5시	뉴햄스피어, 노스캐롤라이나
선거일 전일 소인까지	뉴욕
선거일 투표 종료시	앨라배마, 조지아, 하와이, 일리노이,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메인, 미네소타,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바다,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버몬트,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선거일 오후 7시	애리조나, 콜로라도, 플로리다,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와이오밍
선거일 오후 8시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아이다호, 미시간, 뉴저지, 오리건
선거일 오후 9시	로드아일랜드
선거일 투표 종료시 /선거일까지 소인이 있으면 선거일 후 월요일	아이오와
선거일 오후 7시30분 /선거일까지 소인이 있으면 10일 후 오후 5시	아칸소
선거일 후 월요일 정오	유타
선거일 후 금요일	메릴랜드
선거일 2일 후 오전 10시	네브레스카
선거일 후 2일 이내	노스다코타
선거일 10일 후	알라스카(재외선거는 15일), 매사추세츠, 워싱턴

36) NCSL. ‘ALL-Mail Elections.’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all-mail-elections.aspx (검색일 2019.6.13.)

3. 독 일

가. 우편투표

- 우편투표구선거위원회 설치(연방선거법 제8조제1,3항 및 연방선거법시행령 제7조)
  - 우편투표의 실시 및 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각 선거구 내에 별도의 우편투표구 선거위원장 및 우편투표구선거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수는 선거구 선거위원장이 결정
  - 여러 행정구역 권역별로 설치가 가능하며, 주 정부 또는 선거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이 결정
- 선거증 교부(연방선거법시행령 제25,28조)
  - 우편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 신청으로 선거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는 물론이고 등재되었어야 할 자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선거증을 교부받을 수 있음.
  -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모든 선거인이 통지 받는 선거통지표에 선거증을 신청하여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문과 선거증 신청서가 포함됨.
  - 선거증을 발급받은 선거권자에게는 우편투표를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구의 공식 투표용지, 투표지봉투, 선거우편물이 송달되어야 하는 전체 주소 및 선거증을 발행한 관할 행정청의 기호 및 선거증 번호나 선거구역이 기재된 공식 우편물 봉투, 우편투표 안내서 등을 첨부해 교부되어야 함.

참조 9-2 독일 선거증 제도

독일에서는 선거증을 가진 자만이 해당 선거구 내의 다른 투표구에서 투표하거나 우편에 의한 투표를 할 수 있음.

(1) 선거증 교부요건(연방선거법시행령 제25조)

-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선거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선거증을 교부받음(從屬選擧證).
  - 선거일 투표시간 중 중대한 사유로 해당 투표구 밖에 체재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자신의 주소를 다른 투표구로 주소를 이전한 후 새로운 투표구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직업상의 이유, 질병, 고령, 신체적 불구 및 장애로 인해 투표소에 출석하기 곤란한 경우
- 선거권을 가진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선거증을 교부받음(獨立選擧證).
  -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이의신청기간을 해태한 것이 입증된 경우

- 신청에 의한 선거인명부 등록 절차 이후나 선거인명부가 부당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여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발생한 경우
-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이의신청기간 중에 확정되어 명부확정 후에 비로소 각 게마인데 행정청의 명부재확정 통지를 받은 경우

(2) 선거증 신청(연방선거법시행령 제27조)
• 선거증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게마인데 행정청에 신청하여 발급받으며,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보, 텔렉스, 팩시밀리, E-mail 또는 전자적 형식으로 문서화될 수 있는 방식만이 유효하며, 전화에 의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음. 장애가 있는 선거인은 신청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선거일 2일전 18시까지 신청해야 교부받을 수 있음. 다만,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권자가 연방선거법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선거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선거일 15시까지 신청할 수 있음.

(3) 선거증 교부(연방선거법시행령 제28조)
• 선거증은 그 교부사무를 위임받은 담당공무원이 자필로 서명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함.
• 선거증에는 해당 투표가 선거인 자신 또는 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표되었음이 보증되어야 함.
• 선거권자가 투표구선거위원회에서 투표하겠다는 의사가 신청서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증에 선거구의 관제투표용지, 관제투표용 봉투, 관제우편투표용 봉투, 우편투표 안내서를 첨부해야 함.
• 분실된 선거증은 재교부되지 않음. 다만, 송부된 선거증이 선거인에게 도달되지 않은 사실을 해당 선거인이 입증하는 경우 선거일 전 12시까지 새로운 선거증이 교부됨.

(4) 선거증 교부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등(연방선거법시행령 제31조)
• 선거증의 교부가 거부되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신청 및 불복신청에 대한 결정의 송달기한은 그 이의신청이 선거일전 12일까지 제출된 경우에만 유효함.

- 우편투표절차(연방선거법 제36조, 연방선거법시행령 제66조)
  - 우편투표에 의하여 투표하고자 하는 자는 투표용지에 직접 기표한 다음 이를 투표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선거증에 인쇄되어 있는 선서에 서명한 다음 선거증과 함께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이를 발송
  - 우편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까지 선거증이 발행된 선거구선거위원장에게 도달하여야 하며, 우편투표의 발송은 공인된 회송용 봉투에 의하고 특별우송절차를 취하지 않는 한 우편요금은 무료
  - 선거인이 선거증과 우편투표 관련 문서를 해당 게마인데 행정청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선거인이 교부장소에서 우편투표를 할 수 있음.
  - 보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하도록 한 경우에 보조인은 우편투표에 대한 선서에 갈음한 보증에 서명함으로써 이 선거인의 표시된 의사에 따라 투표용지에 기표하였음을 확인해야 함.
  - 우편투표 과정에서 기표를 보조하는 보조인은 만 16세 이상이어야 함.
  - 우편투표로 하는 경우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투표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

고 이를 봉합함.

- 우편투표를 위한 선거증에는 선서를 대신하는 보증란에 장소와 날짜를 표시하고 서명하여 우편투표를 위한 봉투에 봉합한 투표용 봉투와 동봉하여 투표용 봉투에 기재된 관할 행정청에 송부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우편투표 개표방법(연방선거법시행령 제74,75조)
  - 우편투표로 접수된 투표용지는 각 선거구(통합 선거구) 우편투표선거위원회에서 투표된 득표수를 확정함.
  - 반송사유를 가진 우편투표가 반송되지 아니하고 접수된 경우에는 1차, 2차 투표 모두 무효가 됨.
  - 우편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이 선거일 이전에 또는 선거 당일에 사망하거나 선거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해당 우편투표는 무효가 되지 아니함.

나. 특별투표소 투표

1) 특별투표구(Sonder Wahlbezirke)에서의 투표(연방선거법시행령 제61조)

- 게마인데 행정청은 병원·양로원·수용소·요양원·보호소 등의 시설에 수용되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다수의 선거인을 위하여 그 시설의 필요의 정도에 따라 선거증을 소지한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특별투표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개의 시설을 하나의 특별투표구로 통합할 수 있음(연방선거법시행령 제13조).

  ※ 특별투표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동투표선거위원회에 의해 투표할 수 있음.

- 게마인데 행정청은 늦어도 선거일 8일 전까지 이들 시설의 관리자에게 선거일에 시설 내에서 투표하기를 바라는 피수용자 및 직원의 명부를 요구하여 이들 선거인에게 선거증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음.

- 이러한 특별투표구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게마인데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피수용자 및 직원,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게마인데와 동일한 선거구의 다른 게마인데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피수용자 및 직원으로서 각각 명부등록지의 게마인데로부터 선거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함.

  ※ 다른 선거구의 게마인데의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피수용자 및 직원은 명부등록지의 게마인데로부터 선거증과 우편투표관련 서류를 송부 받아 우편투표에 의해야 함.

2) 이동투표소 투표

- 소규모 병원 및 양로원·요양원, 수도원, 사회병리치료시설 및 교도소 등에서의 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동투표구 선거위원회를 설치함(연방선거법시행령 제8조).
- 소규모 병원 및 양로원·요양원에서 투표(연방선거법시행령 제62조)
  - 게마인데 행정청은 필요한 경우 소규모 병원 및 양로원·요양원 등의 책임자와 협의하여 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선거권자로서 그 선거구에 유효한 선거증을 가진 자는 이동투표구 선거위원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 수도원에서 투표(연방선거법시행령 제63조)
  - 게마인데 행정청은 필요한 경우에 수도원의 책임자와 협의하여 수도원 내에서 투표를 허용해야 함.
- 사회병리치료시설과 교도소에서 투표(연방선거법시행령 제64조)
  - 게마인데 행정청은 필요한 경우에 사회병리치료시설 및 교도소 내에 수용되어 있는 선거권자로서 그 선거구에 유효한 선거증을 소지한 자는 이동투표구 선거위원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함.

4. 일 본

- 일본 부재자 투표는 선거일 투표소 투표의 예외로써 부재자투표관리자의 관리하에 투표함.
  - 일반부재자투표: 해당 시·정·촌 외 다른 주소지에서 투표
  - 우편부재자투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자택 등의 장소에서 투표
- 부재자투표기간은 선거공시일 또는 고시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하루 전일까지
- 부재자투표는 기일 전 투표(사전투표)와 구분되는 것으로서 선거일 전에 투표하지만 부재자투표가 등록된 시정촌 외 다른 지역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지만, 기일 전 투표는 등록된 시정촌 시·정·촌내 지정된 기간 동안 기일 전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것을 의미함.

<표 9-7> 일본 기일 전 투표 및 부재자투표

	기일 전 투표	부재자투표	
대상자	직무·업무 또는 총무성령으로 정한 용무종사자, 보행곤란자, 수감자, 교통불편지역거주자, 투표구 밖의 거주자, 천재지변등으로 투표소 도달이 불가능한 자	지정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 특정국외파견자, 남극지역조사자	신체에 중증장애가 있는 자 (신체장애자복지법, 전상병자특별원호법 또는 개호보험법에서 정한 자)
투표장소	선거인명부가 등록되어 있는 각 거주지 구청, 동사무소 등	체재하고 있는 시정촌 선거관리위원회	지정되어 있는 '부재자 투표시설'
투표방법	선거일의 투표절차와 같음 (단, 서약서 기입은 필수)	등록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용지를 청구해 체제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참투표 실시	
투표기간	선거고시(공시)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매일		
투표시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단, 투표 장소에 따라 시간변동 가능)		

※ 투표기간은 각 선거마다 고시(공시)일의 차이가 있어,
- 참의원선거는 선거일 17일 전에 공시하므로 총 15일
- 중의원선거는 선거일 12일 전에 공시하므로 총 10일

가. 일반부재자투표(공직선거법시행령 제50,55,56조)

- 부재자투표관리자[37]는 투표용지 및 투표용 봉투를 교부 받은 선거인이 실제로 소재하거나 거주하는 곳의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함.
- 부재자투표를 하려는 자는 선거일 전일까지 부재자투표서약서 및 청구서를 첨부하여 선거인명부가 등록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투표하고자 하는 장소를 신청하면서 투표용지 및 투표용지 봉투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
- 청구를 받은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 사유가 인정되면 투표용지, 투표용지 우송 속봉투 및 겉봉투, 부재자투표증명서를 선거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

37) (공직선거법시행령 제55조)부재자투표관리자의 예외로서,
-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으로 해당 선박 내에서 부재자투표: 해당 선박의 선장
- 감옥 또는 대용감옥에 구금 중인 형사피고인 · 피의자 · 구류의 형에 처해진 자 및 국제수형자이송법에 규정한 수입수형자 및 노역장에 유치되어 있는 벌금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진 자: 해당 감옥의 장 또는 대용감옥의 관리자
- 소년원에 수용 중인 보호처분에 처해진 자: 해당 소년원의 장
- 부인보도원에 수용 중인 보도처분에 처해진 자: 해당 부인보도원의 장

또한, 부재자투표관리자가 후보자로 된 경우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재자투표관리자가 될 수 없음.

나. 지정시설에서 부재자투표(공직선거법시행령 제58조)

- 부재자투표관리자는 병원의 원장·노인시설의 장·원자폭탄피폭자 양호시설의 장·국립보양소의 소장 등으로 함.
-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가 병원(노인요양시설), 신체장애자 지원시설 및 보호시설을 부재자투표 시설로 지정함.
- 선거인은 해당 지정병원의 장 등을 통하여 투표용지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절차는 일반부재자투표절차와 같음.

다. 우편에 의한 부재자투표(공직선거법시행령 제59조의3,제59조의4)

- 중대한 신체상 장애로 일반 부재자투표가 불가능한 선거인은 거주하는 장소에서 투표해 우편으로 해당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송부

  ※ 신체장애자복지법에 규정된 신체장애자, 전상병자특별원호법 및 개호보험법에 규정된 전상지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는 우편에 의한 부재자투표가 가능

- 우편에 의한 부재자투표에서 선거인 스스로 투표 기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한 대리투표 가능(대리투표자는 선거권을 가진 자에 한하며 미리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함)(공직선거법 제49조제3항)
- 절차
  - 우편부재자투표를 하려는 자는 선거일전 4일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신체장애자수첩, 전상병자수첩 또는 도·도·부·현지사나 지정도시의 장이 증명한 서류를 첨부한 문서로 우편투표증명서 교부를 신청함.
  - 우편투표증명서(7년간 유효)를 교부받은 선거인은 증명서와 함께 자신이 서명한 문서로 소속지의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용지 등의 교부를 신청함.
  - 청구를 받은 선거관리위원장은 신청인이 우편에 의한 부재자투표 해당자로 인정되는 경우 투표용지와 부재자투표용 봉투를 본인에게 송부함.

5. 스페인

- 선거일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장소에 부재하거나 투표소에 출석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선거인은 선거인명부관리국의 도파견사무소에 사전 신청을 통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음.

가. 우편투표 신청 절차(선거법 제72조)

- 선거인은 선거소집일로부터 선거일 10일 이전까지 선거인명부관리국의 도파견사무소에 선거인명부등재 확인증을 신청해야 함.
  ※ 신청은 모든 우체국에서 가능함.
-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함. 이 신청을 접수하는 담당자는 신청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함.
  ※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의 복사본 사용은 허용되지 않음.
- 질병 또는 거동불능으로 인해 직접 신청을 하기 힘들 경우 이 사실을 무료로 발급되는 공식 의사진단서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데, 각 선거인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교부되는 공증서류 또는 영사확인서류를 통해 허락된 자가 선거인을 대리하여 행할 수 있음.

나. 우편투표 신청 처리 절차(선거법 제73조제1,2항)

- 우편투표 신청이 접수되면 선거인명부관리국 도파견사무소는 등재사실을 확인한 뒤, 선거인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도록 표시해야 하며, 신청받은 확인서를 교부함.
- 선거인명부관리국은 선거소집일로부터 34일째 되는 날부터 선거일전 6일까지 투표용지, 투표봉투, 확인서 및 투표를 해야 할 투표소 주소가 명시된 봉투를 등기우편으로 선거인이 지정한 주소(만약 지정된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주소)로 발송함. 이때 투표안내문도 함께 첨부함.
  - 수령증은 사전에 본인임을 밝힌 선거인이 직접 서명해야 함.
    ※ 선거인이 해당 주소지에 없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우체국에 방문하여 우편투표를 위한 서류를 수령하도록 통지하되, 이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통지문에 명시하여야 함.

다. 우편투표 절차(선거법 제73조제3,4항)

-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투표봉투에 넣어서 밀봉해야 함. 동시선거의 경우 각 선거마다 같은 방법으로 하고, 투표소로 보낼 회송용봉투 안에 투표용 봉투를 넣은 뒤 선거일전 3일까지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함.

  ※ 봉투에 소인은 필요 없음.

- 우체국은 투표소로 발송되는 모든 우편물을 선거일까지 보관한 뒤 선거일 오전 9시 해당 투표소로 송부함.
  - 선거일에 접수되는 우편물에 대해서도 당일 20시까지 투표소로 송부해야 함. 우체국은 수령한 모든 서류의 내용을 대장에 기재해야 하며 이를 선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선거일 20시 이후에 접수된 봉투는 지역선거위원회로 송부함.

6. 스웨덴

가. 우편투표

- 우편투표를 할 수 있는 자(선거법 제7절 제11조)
  - 해외에 거주하는 선거인
  - 외국 영해에 있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거인
- 우편투표 시기: 선거일 전 45일 이후(선거법 제7절 제12조)
- 우편투표 방법(선거법 제7절 제13,14조)
  - 2명의 증인 앞에서 준비한 투표봉투를 우편투표용 겉봉투에 넣고 봉함한 다음 우편투표 포장용 봉투에 넣어 중앙선거청에 송부함.
  - 투표봉투에는 우편투표가 해외 또는 외국 영해에 있는 선박에 승선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과 선거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함.
  - 겉봉투에는 증인(18세 이상이어야 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그와 비슷한 신분증명에 관한 정보와 주소, 선거인 스스로 투표를 했다는 것, 선거인이 제출한 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우편투표 접수(선거법 제7절 제15조)

- 중앙선거청은 우편투표 포장용 봉투를 접수하면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선거인의 기초자치단체의 선거위원회에 송부
- 선거인이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선거인명부에 기재하지 않아야 할 경우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었거나 완전하지 않아 선거인이 어느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장용 봉투를 보관

※ 이 경우 중앙선거청이 보관한 봉투들은 선거결과가 법적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이후 내용물이 들어 있는 봉투를 선거기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파기해야 함.

나. 이동 투표사무원(mobile voting clerk)을 통한 투표(선거법 제7절 제3a조)

- 선거인이 병, 신체장애 또는 고령으로 인해 스스로 투표소에 갈 수 없을 경우 이동투표사무원에게 투표지를 제출할 수 있음.

7. 스위스

- 우편투표(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8조)
  - 우편투표에 대하여 필요한 절차를 주 법으로 규정해야 함.
  - 특히 행사된 모든 투표지를 누락 없이 개표하고, 선거권자의 적격여부 확인과 투표의 비밀 유지 및 투표권 남용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해야 함.

    ※ 구체적인 우편투표 절차는 주 법으로 개별적으로 규정
  - 제네바 주의 경우 「정치적 권리 행사에 관한 제네바 법」[38]을 통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선거권자를 위하여 ①전자투표(제60조), ②우편투표(제61조)를 실시하고 있고, 위임에 의한 투표는 금하고(제63조), 사전투표는 실시하지 않음.
  - 각 단위(연방, 칸톤, 코뮌)별로 기간이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우편투표의 기간은 평균 1~2개월임.

38) 「정치적 권리 행사에 관한 제네바 법(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LEDP)」 https://www.ge.ch/legislation/rsg/f/rsg_a5_05.html (검색일 2019.8.23.)

8. 캐나다

가. 특별투표(special voting)

- 특별투표는 사전투표 기간이나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특별투표신청서를 제출하여 우편으로 투표하는 군인부재자투표, 국외부재자투표,[39] 교도소 내 투표, 선거관리관 사무실에서 투표, 거소투표 등을 말함.
- 선거관리청장은 특별투표관리장(Special voting rules administrator)을 임명하고 특별투표관리장은 특별투표관리를 총괄함(선거법 제181,182조).
- 선거관리청장은 총리 추천 3명, 제1야당 대표가 추천한 2명, 하원에서 세 번째로 의석이 많은 정당 대표가 추천한 1명 등 최소 6명의 특별투표사무원(Special ballot officers)을 임명함(선거법 제183조).

나. 군인 선거인(Canadian Forces Electors)의 투표

- 군인 선거인이란 캐나다 군대에 소속된 정규군, 예비군, 특수군을 의미함(선거법 제191조).
- 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6일간)이며, 투표기간 동안 3일 이상, 하루에 3시간 이상 투표소를 운영해야 함(선거법 제190조, 제205조제3항)
- 특별투표용지의 기표방법은 자서식이며(후보자 이름, 약자, 성을 기재), 동일한 이름의 후보자가 있을 경우 후보자의 정당명 등을 기재함(선거법 제213조제3항).
- 기표가 완료되면 투표지를 접어 속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다시 겉봉투에 넣고 봉인한 후 캐나다 군대에서 제공하는 우편서비스를 이용해 수도지역(National Capital Region)에 있는 특별투표관리장에게 선거일 오후 6시 이전에 도착하도록 송부(선거법 제214조)
- 부대 투표사무원이 배치된 경우에는 병상에 있는 군인 선거인의 투표를 위하여 입원실마다 방문하고, 부대 선거사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 등이 소속된 부대에 임명된 부대 선거사무원이 입원중인 군인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선

39) 국외부재자투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10장 재외선거 캐나다편, p.742 참조

거법 제217조)

- 근무 또는 휴무로 인하여 투표기간 동안 소속 부대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다른 부대에서 투표할 수 있음(선거법 제218조).

<그림 9-2> 캐나다 군인 부재자투표 흐름도(제200~21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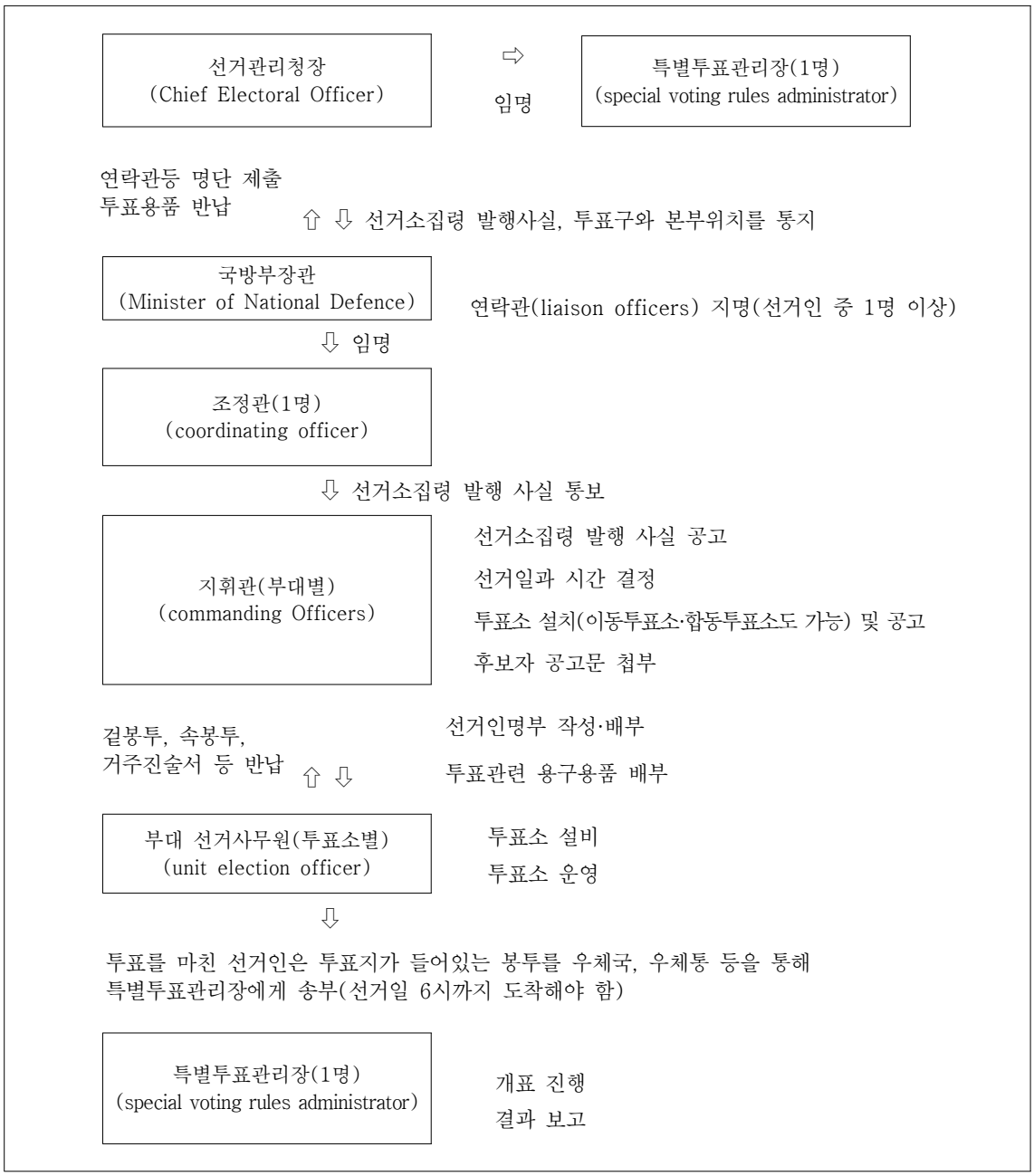

다. 국내선거인의 특별투표(Electors Residing in Canada)

- 선거소집령이 발행된 후 등록 및 특별투표신청서를 선거일전 6일 오후 6시전까지 선거관리관이나 특별투표관리장에게 제출한 선거인은 우편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음(선거법 제232조).
-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받기위해 선거관리관 사무실을 방문하는 경우 신분확인을 거친 후 우편투표의 방법에 의해 투표함(선거법 제237조의1조).
- 투표지는 선거일 오후 6시까지 수도지역에 있는 특별투표관리장에게 도착해야 함(선거법 제239조).

라. 거소투표(voting at home)

- 문맹 또는 신체적 장애로 선거관리관의 사무소에서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인은 거소투표신청을 통하여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
- 이 경우 투표사무원은 선거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선거인이 선정한 증인의 참관 하에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해야 함(선거법 제243조의1).

마. 수감선거인(Incarcerated Electors)의 투표

- 교도소에 수감된 자 중 선거법에 의하여 투표할 자격을 갖춘 자는 선거일 전 12일에 투표할 수 있음(선거법 제245조).
- 투표소는 오전 9시에 열고, 오후 8시 이후에 닫음(선거법 제250조제2항).
- 투표는 우편투표 방법으로 실시되며, 투표지는 수도지역에 있는 특별투표관리장에게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송부함(선거법 제261조).

  ※ 필요한 경우 이동 투표소를 설치해 독방이나 병상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선거법 제255조).

9. 호 주

가. 부재자투표[40]

- 선거일에 등록한 선거구내에는 없지만 해당 주나 준주에 있는 경우 선거인은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222조제1,1A,1B항).
  - 선거일에 누구든지 주 또는 준주 내에 투표소에서 승인된 서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면 부재자 선거인으로 투표할 수 있음.
- 투표관리관은 투표에 앞서 부재자 선거인(absent voter)의 선거구를 확인함(연방선거법 제229조제2항).
- 부재자 선거인은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지 않고 투표관리관에게 전달함(연방선거법 제233조제1항제b호제ii목).

나. 우편투표

1) 신청대상자(연방선거법 제184A조)

- 투표당일 업무나 여행 등으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자, 외출이 곤란한 중환자 또는 해외거주자
  - 선거인의 실제 거주지가 투표소로부터 최단 거리로 20킬로미터를 넘는 경우
  - 신청인이 심각한 질병 또는 쇠약으로 병원, 거주지에서 투표소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인이 심각한 질병이 있거나 쇠약한 자를 간호하는 장소(병원 제외)에 있기 때문에 투표소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인이 구금되어 있는 경우
  - 신청인이 신체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이름을 서명할 수 없다고 의사가 문서로

40) 호주의 경우 사전투표(pre-poll Vote), 우편투표(Postal Vote), 부재자투표(Absent Vote)를 모두 실시하고 있음. 사전투표와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거의 동일하고, 선거 당일 등록된 주(State) 또는 준주(Territory)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 우편으로 투표하거나, 사전투표소에 직접 가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음. 반면 선거일에 자신이 등록한 선거구 내에는 없지만 해당 주나 준주에 있는 경우 다른 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음.

증명한 경우

- 신청인의 주소가 선거인명부에 주소 미공개의 요구에 따라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되어 있는 경우
- 신청인의 종교상 신념 또는 종교조직의 구성원 자격으로 인하여 투표소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선거일 투표시간 동안 투표소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2) 신청절차(연방선거법 제184조)

- 우편투표 신청은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선거위원에게 해야 하며, 선거인은 우편투표를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명시해야 함.
- 신청은 해당 선거의 '선거소집령이 발부된 후' 또는 '선거예정일이 공표된 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부터 할 수 있으며, 선거일 3일전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선거위원 또는 부선거관리관에게 도달해야 함.
- 투표용지가 준비되는 대로 선거위원은 그 선거구에 등록된 우편투표자에게 우편투표용지를 송부함(연방선거법 제186조).

3) 우편투표절차(연방선거법 제194조)

- 선거인은 서명이 되지 아니한 우편투표인준서와 기표가 되지 않은 우편투표 용지를 입회인에게 제시하고, 입회인의 참석 하에 우편투표인준서에 서명해야 함.
- 입회인은 서명일자, 입회인 자격을 표시하고 입회인으로서 인준서에 서명해야 함.
- 선거인은 입회인의 참석 하에 입회인이 기표내용을 볼 수 없게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투표지를 접어서 우편투표인준서가 인쇄된 봉투에 넣은 후 봉투를 봉인하여 선거일 투표마감 전까지 자신이 등록된 선거구의 선거구선거관리관(DRO)에게 우송 또는 전달
- 선거인이 글을 읽을 수 없거나 장애가 있어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선거인이 지정한 사람이 선거인의 지시에 따라 우편투표인준서 작성, 투표용지 기표, 봉투 송부를 대신할 수 있음.

다. 특별투표소 투표(연방선거법 제224,227조)

1) 병원에서 투표(Hospitals that are polling places)(연방선거법 제224조)

- 병원에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투표하기를 원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병원을 방문해 투표하도록 함.
- 투표관리관은 투표함, 투표용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물품을 챙겨 선거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투표사무원과 참석을 원하는 참관인과 함께 방문

2) 이동투표소(mobile booths)(연방선거법 제227조)

- 선거위원은 이동투표팀(mobile polling teams)을 임명하고, 선거위원회 홈페이지나 다른 수단을 통해 선거일 12일 전에 방문 장소와 날짜, 시간을 공지함.
  - 교도소 방문 시에는 방문할 교도소를 결정하기 전에 선거위원은 해당 교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도소 총감독관과 협의해야 함.
- 선거일 오후 6시까지 투표를 마감하고 나면 이동투표팀장은 투표함을 닫고, 봉함한 다음 마지막 방문했던 지역의 해당 선거구선거관리관에게 전달함.

<표 9-8> OECD국가의 부재자투표 실시 현황

국가명	실시 여부	신청일	근거규정
영 국	우편투표(여행, 신체장애자등), 대리투표	선거일 11일 전까지	2000년 국민대표법 부칙 4. 제3호
미 국	우편투표(사업, 여행 등 선거구에 부재중인 학생, 질병, 신체장애)	선거일 전 일정한 기간 이내 (주별로 다름)	주 선거법
프랑스	대리투표(외항선원, 군인, 임산부 등 환자, 선거구 밖의 학생, 휴가로 거주지 떠난 자)	-	선거법 제70~78조
독 일	우편투표(직업, 질병, 고령, 장애 등으로 해당 선거구에 없는 자)	선거일 2일 전 18시까지	연방선거법 시행령 제25,28조
일 본	부재자투표소 투표 우편투표(질병, 신체장애 등) 선상투표(외항선)	• 부재자투표소 투표-선거일 전일까지 • 우편투표, 선거일 4일 전까지	공직선거법 시행령 제50,55,56조
스페인	부재자투표(우편투표), 선상투표(해군함, 상선 또는 어선 등)	선거소집일로부터 선거일 10일 이전까지	선거법 제72조
스웨덴	우편투표(우체국, 외항선, 양로원, 형사보호시설), 대리인에 의한 투표	선거일 45일 전까지	선거법 제7절 제11~15조
스위스	우편투표	주법으로 정함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캐나다	우편투표(재외거주자, 군인, 교도소에 거주하는 자 등)	선거일 6일 전	선거법 제183,11,232조
호 주	우편투표, 특별투표소 투표(병원, 이동투표소)	선거일 3일 전 수요일 18시까지	연방선거법 제184A,184,224, 227조
오스트리아	우편투표 특별투표소 투표 방문 투표(투표가 불가능한 병상의 환자, 수감자, 교통시설의 부재 등으로 투표가 불가능한 자)	• 서면 신청: 선거일 4일 전까지 • 구두 신청: 선거일 2일 전까지	하원선거법 제38,39,60, 72,73조
벨기에	대리인에 의한 투표(재외거주자, 여행, 공부 등으로 거주지 떠난 자, 질병 등)	최소 선거일 1일 전까지	선거법 제147조의1
	우편투표(재외거주자)	선거인명부 작성 6개월 전 발송된 서신에 30일(보궐선거의 경우 20일)이내	선거법 제180조의7
체 코	부재자투표소 투표(선거구 부재자)	선거소집일로부터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거법 제6(a)조
칠 레	부재자투표소 투표(재외선거인) ※ 대통령선거, 대통령 예비선거, 국민투표만 실시	-	헌법 제13조

국가명	실시 여부	신청일	근거규정
덴마크	(선거구 부재자[41]), 재외거주자, 페로제도/그린란드 거주자) 특별투표소 투표(병원,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구금시설) 선상투표(외항선 선원과 승객, 해상플랜트 근로자) 방문투표(투표소에 갈 수 없는 자와 간병인)	• 부재자투표소 투표: 상시 가능 • 특별투표소 투표: 선거일 3주 전부터 • 선상투표(선거일 3주 전부터 • 방문투표선거일 12일 전까지	선거법 제54,57,58, 59,60조
에스토니아	부재자투표소 투표, 특별투표소 투표(구금시설, 병원, 24시간 사회복지시설) 방문투표(건강상태, 고령, 교통수단의 부족) 인터넷투표, 우편투표(재외거주자), 선상투표	• 우편투표: 선거일 30일 전까지 • 방문투표: 선거일 오후 2시까지	선거법 제38조, 제40~45조, 제50조제5항, 제56조
핀란드	부재자 투표소 투표(사전투표, 재외투표) 우편투표(재외거주자) 특별투표소 투표(병원, 사회복지시설, 구금시설) 방문투표(투표소에 갈 수 없는 자와 간병인) 선상투표	• 방문투표: 선거일 12일전까지 • 우편투표: 선거일 3개월 전부터 신청	선거법 제46,55조 제66a,66c조
그리스	부재자투표소 투표(군인, 경찰, 소방관, 외항선 선원, 항공기 승무원) ※ 40인 이상의 신청 시 설치	내무부 장관이 관보에 신청기간 게재(선거운동기간 시작 전까지)	선거법 제27조제1,5항 제96조제1항
헝가리	방문투표: 건강상태, 장애, 구류로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가 불가능한 자 우편투표(재외거주자)	• 방문투표: 우편신청은 선거일 4일전까지, 직접신청은 2일전까지 투표구사무소 또는 선거위원회에 신청 • 우편투표: 선거일 25일 전까지	선거절차법 제103,266조
아이슬란드	사전투표(병원, 요양기관 거주자, 교도소 수용자, 재외거주자 등) 거소투표(질병, 장애, 출산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갈 수 없는 자, 재외거주자) 선상투표(외항선 선원, 승객 등)	선거일 4일 전까지 신청	선거법 제56,57, 58,59,60조
아일랜드	우편투표(경찰, 군인, 선거구 부재자, 질병, 신체장애)	선거소집일 2일 후부터 선거일 22일 전까지[42]	선거법(1992) 제14조
이스라엘	원칙적으로 부재자투표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해외에서 공무를 수행중인 공무원에 한해 실시[43] 부재자투표소(대사관에 설치) 선상투표(외항선) 허용	• 선상투표 - 내무부는 선거소집일로부터 선거일 53일 전까지 선거위원회에 선박 목록 송부 - 선거위원회는 선거소집일로부터 선거일 42일 전까지 선박 목록 확정 - 선상투표는 선거 12일 전 실시	선거법 제96,97,99조
이탈리아	부재자투표소 투표(군인, 외항선 선원, 환자 등) 우편투표(재외거주자)[44]	선거일 3일 전까지(요양시설) 선거일 32일 전까지	하원선거법 제49~54조 재외국민투표법 제4조의2

국가명	실시 여부	신청일	근거규정
라트비아	부재자투표소 투표(재외선거인) 우편투표(재외선거인) 선상투표(외항선)	우편투표: 선거일 5개월 전부터 3주 전까지	선거법 제43조 제3,4,5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리투아니아	우편투표(의료기관, 보호기관, 군부대, 교도소 등) 선상투표(선원, 승객)	선거일 전 수요일까지	선거법 제67-73조
룩셈부르크	우편투표(75세 이상 고령자, 선거구 부재자, 재외거주자)	선거일 10주 전부터 30일 전까지	선거법 제168조 제170조 제171조
멕시코	우편투표(재외거주자)	선거 전년도 9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연방선거법 제329,330,331조
노르웨이	부재자투표소 투표(선거구 부재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우편투표(재외거주자)	7월1일~8월9일 7월1일~선거일 17시(우편투표)[45]	선거법 제8-6조 의회및지방선거 관련 총리령 제24a,26,28조
네덜란드	우편투표 대리투표	• 우편투표: 선거일 8일 전까지 • 대리투표: 선거일 5일 전까지	선거법 제D2,L7,L9,K7, M1,M3조
뉴질랜드	부재자투표소 투표 우편투표, 온라인투표 방문투표(병원, 요양원, 수감 중인 자)	• 사전투표는 2011년부터 신청없이 가능 • 우편투표와 방문투표 신청은 후보자명부등록 및 선거인명부 등록 마감 이후부터	선거법 제61조 선거규칙 제19,20,23, 24,27조
폴란드	특별투표소 투표(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구금시설) 우편투표(장애인) 재외투표소 투표 선상투표	• 우편투표: 선거일 15일 전까지 • 선상투표: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거법 제12조제4항 제14,15조 제53a,53b조
포르투갈	부재자투표소 투표 우편투표(재외거주자) 특별투표소 투표(병원, 교도소)	• 사전투표: 선거일 14~10일 전까지 • 특별투표: 선거일 20일 전까지	선거법 제84조, 제79a~79e조
슬로바키아	우편투표(선거구 부재자, 재외거주자)	선거일 50일 전까지	선거법 제59,60조
슬로베니아	사전투표 우편투표(재외거주자, 요양시설, 병원) 재외투표소 투표 거소투표(질병)	• 사전투표: 선거일 5일전까지 • 우편투표: 선거일 10일전까지 • 재외선거: 선거일 30일전까지 • 거소투표선거일 3일 전까지	의회선거법 제69,81,82, 83조

국가명	실시 여부	신청일	근거규정
터 키	우편투표(재외선거인)	선거일 75일 전까지	선거기본법 제33조 제94B조 제94C조

41) 덴마크 사회내무부 홈페이지.
https://elections.sim.dk/advance-voting/advance-voting-for-voters-living-in-denmark/ (검색일 2019.10.15.)

42) 아일랜드 시민정보포털.
https://www.citizensinformation.ie/en/government_in_ireland/elections_and_referenda/voting/registering_to_vote.html#leb892(검색일 2019.7.8.)

43) 이스라엘 외무부 홈페이지.
https://mfa.gov.il/MFA/AboutIsrael/State/Democracy/Pages/FAQ_Elections_Israel.aspx (검색일 2019.7.8.)

44) 이탈리아 외무부 홈페이지.
'재외거주 이탈리아 국민의 우편투표(POSTAL VOTING FOR ITALIAN CITIZENS RESIDENT ABROAD)'
https://www.esteri.it/mae/en/sala_stampa/archivionotizie/retediplomatica/elettori-temporaneamente-all-estero.html (검색일 2019.10.11.)

45) 노르웨이 선거위원회(The Norwegian Directorate of Elections) 홈페이지 '재외투표(Voting Abroad)'
https://www.valg.no/en/municipal-and-county-council-elections-2019/voting-in-advance/voting-abroad/ (검색일 2019.10.11.)

제3절
사전투표

❍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일정기간을 정해 미리 실시되는 것이지만 해당 선거구 내 정해진 투표장소에 나와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부재자투표(보통 우편투표)와 구분
❍ 아래에서 설명하는 국가 외에 스웨덴,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가이아나, 아일랜드,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말타, 나미비아, 뉴질랜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트리니다드토바고, 바하마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등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음.

1. 미 국

- 미국의 경우 2019년 4월 현재 39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사전투표를 시행하고 있음.[46]
  - 사전투표는 선거일 이전 특정한 사유를 조건으로 하는 부재자투표와 구분됨.
  - 사전투표를 시행하지 않는 주에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선거인에게 사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방문부재자투표(in-person absentee voting)를 시행하고 있음.

<표 9-9> 미국 주별 사전투표 실시 현황[47]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주 (39개주 및 컬럼비아 특별구)	알라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우편투표), 컬럼비아 특별구, 플로리다, 조지아,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루이지애나,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몬태나,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오리건(우편투표),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워싱턴(우편투표), 위스콘신, 와이오밍
사전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주(11개주)	앨라배마, 코네티컷, 델라웨어, 켄터키, 미시시피, 미주리, 뉴햄프셔,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46) NCSL. ‘State Laws Governing Early Voting.’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early-voting-in-state-elections.aspx (검색일 2019.7.27.)
47) NCSL. ‘Absentee and Early Voting.’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absentee-and-early-voting.aspx#Footnote (검색일 2019.7.27.)

- 각 주마다 자율적으로 운용기준을 정해 실시하므로 그 기간이나 방법에 차이가 있음.
- 대부분 우편투표로 실시하는 부재자투표와는 달리 사전투표는 선거인들이 카운티 사무실 또는 다른 중앙 사전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해야 함.
  -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주에서 선거인은 선거일 전 다양한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

    ※ 플로리다 주의 사전투표(선거법 제101.657조)

    ·해당 카운티의 모든 선거인이 동등하게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는 시회관이나 공공도서관을 사전투표장소로 지정

    ·선거일 15일 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실시하며,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 8일 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실시

    ·실시기간 동안 평일의 경우 매일 최소 8시간, 주말은 총 8시간 동안 실시

    ·사전투표를 하고자 하는 선거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전투표자 증명서(Early Voting Voter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함.

참조 9-3 일리노이 주의 사전투표제도(선거법 IL ST CH 10 §5/19A)[48]

- 신청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특별사유 필요 없음)
- 신청기관: 해당 지역 선거위원회(county board of election)
- 신청방법: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전자우편 및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
- 사전투표소 설치장소
  - 공공기관 사무소(municipal clerk's office, a township clerk's office, a road district clerk's office, a county or local public agency office)
  - 식료품점(grocery stores), 쇼핑몰(shopping malls), 학교(schools), 도서관(libraries) 등
- 사전투표소 설치단위
  - 250,000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country) 의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투표소를 설치하되,
  - 해당 지역 안에 가장 큰 3개의 municipalities 중 하나에 설치
  - 단 그 municipalities 중 거주인구가, 80,000이 넘을 경우 2개의 투표소를 설치
  - 또한 어떤 city, village, incorporated town이라도 거주인구가 100,000명을 넘을 경우 최소 2개 이상의 투표소를 설치

    ※ 미국 지방 행정단위: 주 state> 군 county> 시 municipality≒city> 군·구 township> 읍·면 town
- 사전투표소 운영시간
  - 선거일 22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운영
  - 주중 오전 8:30-오후 4:30 또는 오전 9:00-오후 5:00,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 오전 9:00-오후 12:00까지 운영

    ※ 일반적으로 선거일 10-14일 전 또는 선거일 전주 금요일이나 토요일까지 사전투표소를 운영
- 투표방법(일리노이 주법 19A 25.5)
  - (투표기기, 자동개표장치, 옵티컬 스캔 투표기)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각 선거구에서 선택하도록 함.

• 투표절차(일리노이 주법 19A 35)
(1) 선거일 23일 이전부터 군서기(county clerk)들이 각 선거구의 사전선거사무원(election officials)과 함께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충분한 투표용지와 봉투, 그리고 선거관련 안내서를 준비. 선거관리인들은 이를 수령하여 확보한 후, 여분은 사전선거가 끝난 후 반납
(2) 선거사무원들은 등록명부의 서명과 선거권자의 서명을 비교 확인하고, 선거권자의 신분증(일리노이 주 운전면허증, 주정부가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명서)및 투표등록여부, 거주지 등을 확인한 후 투표할 수 있도록 함.
(3) 부재자투표를 신청한 투표인이 사전투표를 하기 원할 경우, 부재자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인에게 반납하여 취소하고, 사전투표를 실시할 수 있음.
※ 그러나 선거당일 사전투표신청자가 투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4) 사전선거 1일 후 투표인의 이름, 주소를 주선거위원회(State Board of Elections)에 제출하고, 주선거위원회는 그 정보를 웹사이트에 올려 주 또는 지역 정치위원회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5) 봉인된 사전투표지는 선거당국(election authority)에 의해서 중앙 개표소(central ballot counting location)로 옮기는 데, 선거일 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이동 완료되어야 함.

2. 일 본

- 선거인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기일전(선거일 전)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제도(공직선거법 제48조의2).
- 기일 전 투표는 일반 부재자투표보다 절차가 간소하여 선거사무부담을 경감시키는 장점이 있으며 전자기록식투표에 의한 투표도 가능
- 2003년 12월 1일 공직선거법 제48조의2를 신설해 2004년 참의원 통상선거에서 실시

가. 기일전투표(사전투표) 대상자

- 직무·업무 또는 총무성령으로 정한 용무가 있는 자(현행 부재자투표사유와 동일)
- 용무 혹은 사고로 선거권자가 속한 투표구 밖에 여행·체재중인 자
- 질병, 부상, 임신, 노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곤란한 경우, 형사시설, 노역

48) FindLaw. Illinois Statutes Chapter 10. Elections. Act 5. Election Code. Article 19A. Early Voting by Personal Appearance.
https://codes.findlaw.com/il/chapter-10-elections/#!tid=NFF954A9BA2D8449DB8BB22624491595B(검색일 2019. 10.8.)

장, 감치장, 소년원, 부인보도원 등에 수용되어 있는 자

- 교통편이 불편한 섬 혹은 총무성령으로 정한 지역에 거주, 체류하는 자
- 선거인이 속한 투표구 밖의 주소에 거주 중인 자

나. 기일전투표(사전투표) 절차

- 투표는 선거의 공시일 또는 고시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각 시청촌의 구청, 동사무소 등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함.[49]
- 선거권의 유무는 기일 전 투표를 하는 날에 인정되므로 기일전투표 후 다른 시·구·정·촌 등으로 이전하거나 사망 등의 사유로 선거권을 상실하더라도 유효한 투표로 인정됨(공직선거법시행령 제49조의8).

3. 스웨덴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선거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선거법 제7절 제1조).

- 투표기간: 선거일 전 18일 이후(선거법 제10절 제2조)
- 투 표 소[50]
  - 기초자치단체는 지역도서관, 지역 건물 등 장애를 가진 선거인이 접근이 가능한 곳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함.
  - 선거일에도 기초자치단체 지역 내에 한 곳을 사전투표소로 운영해야 함.
- 투표방법
  - 선거인 또는 대리인은 선거인의 투표카드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출함(선거법 제10절 제3조).

---

49) 총무성 홈페이지. 1.期日前投票制度(기일전투표제도).
http://www.soumu.go.jp/senkyo/senkyo_s/naruhodo/naruhodo05.html (검색일 2019.6.18.)

50) 스웨덴 선거청 홈페이지
https://www.val.se/servicelankar/other-languages/english-engelska/voting-in-advance.html (검색일 2019.9.3.)

- 투표사무원이 투표봉투와 대리투표를 위한 겉봉투를 받은 경우 선거인 또는 대리인 앞에서 선거인의 투표카드(재외공관의 경우에는 주소카드)와 함께 창봉투에 넣고 봉함함(선거법 제10절 제4조).
- 창봉투는 선거인이 선거인명부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선거위원회에 송부하거나 선거일 투표 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도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투표구의 투표사무원에게 직접 송부할 수 있음(선거법 제10절 제5조).

4. 스위스

- 선거일 4일 전부터 최소 2일 동안 사전투표를 허용해야 함(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7조).
  - 사전투표를 실시하려면 주 법에 사전투표를 위하여 모든 또는 특정한 투표소가 정해진 시간대에 개방되고, 투표권자가 투표지를 봉인한 봉투를 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야 함.
  - 주가 사전투표에 대한 보다 확대된 방식을 규정하는 경우, 그 규정은 연방의 국민투표와 선거에도 적용
  - 주는 행사된 모든 투표지를 누락 없이 개표하고, 비밀투표의 보장과 투표권 남용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야 함.

5. 캐나다

가. 사전투표소 설치(선거법 제168조)

- 각 선거관리관은 선거관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선거구 안에 1개 또는 복수의 투표구를 통합하여 사전투표구를 설치해야 함.
- 선거소집령이 발행된 후 4일 이내에 신청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관은 선거관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2개의 사전투표소를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으며 사전투표

소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나.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등록

- 사전투표소에서는 수정선거인명부(Revised Lists of Electors)를 사용하며, 이 명부에 성명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선거인이 사전투표소에 가서 신분과 거주지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면 선거사무원은 선거권을 부여하는 등록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선거인을 투표하게 함(선거법 제169조).
- 위와 같은 경우 선거인명부는 수정된 것으로 간주함(선거법 제170조).

다. 사전투표절차

- 사전투표는 선거일 10일 전인 금요일부터 7일 전인 월요일까지(4일간) 실시되며, 투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임(선거법 제171조).
- 각 선거관리관은 선거일 16일 전인 토요일 이전에 사전투표 관련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문 사본을 각 후보자와 선거관리청장에게 송부해야 함(선거법 제172조).

  ※ 공고내용

  - 사전투표구를 구성하는 투표구수
  - 각 사전투표소의 위치
  - 사전투표를 집계하는 장소
  - 개표시작 시간(투표소 마감 후 또는 선거관리관의 사전 승인 시 투표소 마감 1시간 전)
-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원은 사전투표자의 명단(record of votes cast)을 작성해야 하며(선거법 제174조), 사전투표마감 후 지체 없이 선거관리관에게 사전투표자 명단 원본을 제출해야 함(선거법 제176조).
- 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참관 하에 투표사무원은 4일간 매일 사전투표 시작시간인 오전 9시에 투표함 검사와 투표함 봉인을 실시하고, 모두가 볼 수 있는 테이블 위에 투표함을 비치함(선거법 제175조제1항).
- 매일 사전투표 마감시각 오후 9시에 투표사무원은 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참관

하에 선거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투표의 무결성(integrity)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마감해야 함(선거법 제175조제2항).

- 다른 투표함이 필요한 경우 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 검사와 봉인의 조치를 취하여 투표함을 추가 투입(선거법 제175조제3항)
-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사용된 모든 투표함에 대해 매일 사전투표 마감 시 일련번호를 표시해 둘 수 있음(선거법 제175조제4항).
- 선거사무원은 봉인된 투표함을 선거관리관의 지시 하에 선거일 개표 시까지 보관해야 함(선거법 제175조제5항). 선거관리관은 투표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표함을 회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즉시 선거관리청장에게 통지해야 함(선거법 제175조제6항).

라. 선거인명부에서 사전투표자 삭제

- 선거관리관은 사전투표자 명단을 송부 받은 즉시 공식선거인명부(official list of electors)에서 삭제해야 하고, 공식선거인명부가 이미 투표소로 배부된 경우 해당 투표소의 투표사무원에게 지체 없이 사전투표자를 삭제하도록 해야 함(선거법 제176조).

6. 호 주

- 사전투표는 사전일반투표(pre-poll ordinary vote)와 사전선언투표(pre-poll declaration vote)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됨(연방선거법 제200AA조).
  - 사전일반투표는 사전투표를 신청하여 선거일 전 사전선거일에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투표를 말하며, 사전선언투표는 사전투표를 신청하였으나 사전일반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투표를 말함.

가. 사전투표 신청사유(연방선거법 별표 2)

- 선거일 투표시간 동안 선거인이 등록된 주 또는 준주에서 부재중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선거일 투표시간 동안 선거인이 등록된 주 또는 준주 투표소에서 가장 가까운 경로 기준으로 8킬로미터 이내에 있지 않을 경우
- 선거일 투표시간 동안 선거인이 여행 중이어서 선거인이 등록된 주 또는 준주의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
- 선거인이 다음의 사유로 선거일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
  - 중대한 질병, 쇠약, 자녀출생의 임박(선거일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인 선거인의 경우에는 제224조(병원에서 투표) 및 제227조(이동투표소)의 적용에 관계없이 이 조가 적용)
- 선거인이 선거일에 중대한 질병이 있거나 쇠약한 자 또는 출산을 하려는 자를 간호하기 위하여 병원 이외의 장소에 있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
- 선거일 투표시간 동안 선거인이 병원에 환자로 입원해 있고 그 병원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 선거인의 종교적 신념 또는 종교조직의 구성원으로 투표소에 출석할 수 없거나, 선거일 투표시간 동안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
- 선거일 선거인이 징역형으로 복역 중이거나 구금되어 있는 경우
- 선거인명부에 주소미공개의 요구에 따라 선거인의 주소가 선거인명부에서 제외된 경우
- 선거일 투표시간 동안 그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나. 사전투표 신청(연방선거법 제200C,D조)

- 사전투표 신청은 선거구 선거관리관, 사전투표공무원, 외국에서는 부선거관리관에게 선거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 신청은 후보자 등록이 공표된 날부터 5일째 되는 날부터 신청할 수 있음.

다. 사전일반투표(pre-poll ordinary vote)

- 해당 지역구 내에 위치한 모든 사전투표소(pre-poll voting office), 또는 선거구 선거관리관 사무소(the office of the DRO for the Division)에서 직접 사전투표 할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200DD조).
-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선거인명부에 이미 투표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사전일반투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전일반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사전선언투표를 할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200DG조).
- 선거인은 이름, 주소, 해당 선거에서의 투표 여부에 대한 투표관리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고 신원 확인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연방선거법 제200DI~DK9조)

라. 사전선언투표(pre-poll declaration vote)

- 사전투표 신청을 하였으나 사전일반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사전선언투표를 통해 투표를 할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200DS조).
- 사전투표 신청을 받은 공무원(발급 공무원, issuing officer)은 선거인에게 사전투표인준서와 투표용지를 발급해야 함(연방선거법 제200E조).
  - 선거인은 발급 공무원의 참석 하에 사전투표인준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발급 공무원은 증인으로서 사전투표인준서에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함.
  - 선거인은 발급 공무원의 참석 하에 투표지 기표내용을 볼 수 없게 기표를 한 후 투표지를 접어서 발급 공무원에게 제출함.
  - 발급 공무원은 즉시 사전투표인준서가 들어있는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인하고 투표함에 보관해야 함.

제4절
대리투표(Proxy voting)

❍ 대리투표는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을 대신하는 다른 선거인에게 투표권을 위임하는 것을 의미. 따라서 선거일 전에 선거관리공무원 등에게 적절한 대리인을 지정해 신청해야 함.
❍ 아래에서 설명하는 국가 외에 벨기에, 네덜란드, 베냉, 벨리즈, 에스토니아, 말리, 태국, 싱가포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1. 영 국

가. 대리투표를 할 수 있는 자(2000년 국민대표법 부칙 4. 제3호)

- 복무투표자(service voter)로 등록되었거나 등록예정인 자
- 익명선거인(anonymous elector)[51]으로 등록된 자
- 시각장애 또는 다른 신체장애로 인해 지정된 투표소에 직접 가지 못하거나 남의 도움 없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업, 복무 상 혹은 학업으로 인해 투표소에 직접 갈 수 없는 경우
- 투표소까지 항공이나 해운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경우
-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된 경우

51) 특정 선거인의 이름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경우 신변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경우 선거등록관의 허가를 얻어 익명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1983년 국민대표법 제9A조).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Register to vote and update your details(선거인명부 등록 및 갱신).’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i-am-a/voter/register-vote-and-update-your-details (검색일 2019.9.23.)

나. 대리투표절차(2000년 국민대표법 부칙 4. 제3호)[52]

- 개별선거등록(IER)을 마친 선거권자만 대리투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으로 지명된 선거인 또한 개별선거등록을 마친 자여야 함.
- 대리인은 선거인 중에서 1명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리인으로 지명된 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함.
- 대리인은 선거인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이 아닌 한 2명 이상의 선거인을 위한 대리인이 될 수 없음.
- 선거일 전 6일까지 신청해야 함(기존 대리투표 변경 또는 취소를 위해서는 선거일전 11일까지 신청).
- 신청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서명·등록주소, 대리인 이름 및 주소, 대리투표 신청 이유, 대리인과의 가족관계, 신청일 등을 작성해 우편으로 신청

다. 대리인의 지정 및 취소(2000년 국민대표법 부칙 4. 제6호)

- 대리인은 선거인의 신청에 따라 선거인명부등록관이 발급하는 대리인증서(proxy paper)에 의해 지정
-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등록관에게 대리인 지정 취소를 통지하면 취소되며, 또한 선거인이 다른 자를 지명하는 대리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취소

라. 대리투표방법(2000년 국민대표법 부칙 4. 제7호)

- 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해당 선거인의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 대리인으로서의 투표를 우편으로 할 수 있음.

52)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Voting by proxy(대리투표).’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i-am-a/voter/how-cast-your-vote/voting-proxy (검색일 2019.6.28.)

2. 프랑스

- 1975년부터 개인비밀투표의 예외규정으로 선거일 등록된 선거구에서 투표를 할 수 없을 경우 위임을 통한 대리투표를 실시하고 있음.

가. 대리투표 대상자(선거법 제71조)

- 직무상이나 신체장애, 건강 또는 환자 보호와 치료 등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선거인으로 선거일에 등록된 코뮌에 있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록 등록된 코뮌에 있더라도 투표에 참가할 수 없는 자
-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코뮌과 다른 코뮌에 거주하거나 휴가를 떠난 경우 그리고 수업 의무 등의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선거인으로 선거일에 해당 코뮌에 없는 자
- 투표 불가능 상태에 있지 않은 잠정적인 구금자와 감옥의 수감자

나. 대리투표방법(선거법 제73~78조)

- 선거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위임자와 동일한 코뮌에 등록된 자)이 투표소에서 위임장을 제시하고 위임장에 의한 투표(vote par procuration)를 할 수 있음.
  - ※ 다만, 선거인과 대리인이 동일한 투표소의 선거인일 필요는 없음.
  - ※ 모든 선거(대통령 선거, 의회의원 선거, 유럽의회 선거, 지방선거) 및 국민투표를 대상으로 실시
  - ※ 대리인은 2개 이상의 위임장을 처리할 수 없으며, 2개 이상의 위임장이 동일한 대리인의 이름으로 작성된 경우는 최초에 작성된 것만이 유효
- 대리인은 위임장에 의해 투표대리 행위를 확인받은 후에 봉투 1매를 교부받음.
- 대리인의 투표는 위임자의 이름 맞은 편 서명날인명부의 비고란에 서명하여 투표하였음을 확인
- 위임자는 언제든지 그 대리권을 취소할 수 있으며, 새로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할 수도 있음.
- 위임자는 그 대리인이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투표소에 직접 출석하여 본인이 투표할 수 있음. 위임자가 사망 또는 선거권이 박탈된 경우에 대리권은 당연히 무효가 됨.

※ 대리투표를 위임받은 자가 선거인이 지명한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한 경우 5년의 징역과 22,500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95조).

3. 스웨덴

가. 대리투표를 할 수 있는 자(선거법 제7절 제4조)

- 질병, 장애 또는 고령으로 인해 스스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
- 우체국의 산간벽지 우편서비스를 받는 선거인
- 구치소에 감금된 선거인
- 교도소에 재소하고 있는 선거인과 보안의 이유로 교도소의 다른 재소자들과 같은 기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

나. 대리인(messenger)이 될 수 있는 자(선거법 제7절 제5조)

- 선거인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 선거인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의 자녀, 손자녀, 부모 또는 형제자매
- 직업상 선거인에게 요양을 제공하거나 선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 우체국에 고용된 집배원
- 구치소나 교도소의 직원

※ 대리인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다. 투표방법

- 선거일 투표소 투표나, 사전투표를 대리할 수 있음(선거법 제7절 제6조).
- 각 선거별로 한 개의 투표지를 투표봉투에 직접 넣고, 대리인과 증인 앞에서 대리투표용 겉봉투에 투표봉투를 넣고 봉함함(선거법 제7절 제7조).
  - 봉투에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본인 스스로 투표봉투 및 겉봉투를 위 방식에 따라 했다는 사실, 대리투표를 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재함.
  - 겉봉투에는 증인(18세 이상이어야 함)과 대리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하고, 선거인 스스로 투표하고 겉봉투를 봉함한 사실, 선거인이 제출한 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기재함.

- 집배원이 대리인이 될 경우 선거인이 대리투표를 할 때 참석할 필요가 없음. 이 경우 대리인은 겉봉투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직원번호를 기재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봉투를 선거인 본인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선거법 제7절 제8조).
- 구치소나 교도소 직원이 대리인이 될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직원번호를 기재할 수 있음(선거법 제7절 제8조).
- 선거인은 본인의 투표카드를 겉봉투와 함께 대리인에게 주어야 하며, 대리인이 투표소에 제출함(선거법 제7절 제10조).

라. 대리인의 투표봉투 제출

- 대리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 함(선거법 제8절 제8조).

  ※ 투표사무원은 대리투표용 겉봉투의 준비 등에 관한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거나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대리투표용 겉봉투를 접수받지 않음(선거법 제8절 제9조).
- 대리투표용 겉봉투 준비방식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투표사무원은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겉봉투를 열어 안에 있는 투표봉투를 확인함(선거법 제9절 제5조).
- 위 겉봉투는 투표사무원이 선거위원회에 전달하고 선거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보관함(선거법 제8절 제10조).

제5절
보조투표(Assisted voting)

- 각국은 문맹이나 신체적 장애로 투표를 하기 힘든 선거인들을 위해 보조자에게 투표를 위임할 수 있는 보조투표를 인정하고 있음.
- 아래에서 설명한 국가 외에도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보조투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1. 영 국

가. 장애인에 대한 투표지원[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29호(3A)]

- 선거관리관은 시력이 나쁜 선거인들을 위해 투표소 내에 최소한 한 장 이상의 커다란 투표용지를 게시하고, 맹인이나 시력이 나쁜 선거인들이 투표관리관이나 동행인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도 투표할 수 있는 필요한 장치를 투표소에 제공

나. 보조투표(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39호)

- 투표인이 시각장애, 물리적 능력 부족 또는 문맹을 이유로 보조하는 자의 도움을 받아 투표하는 것을 요구할 경우 투표관리관에게 신청할 수 있음.
- 투표관리관이 보조자가 작성한 신고서를 받아, 선거인이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할 경우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음.
- 보조자는 같은 선거의 선거인으로 투표권이 있는 자이거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선거인의 부모, 형제자매, 남편이나 배우자, 직계비속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함.

2. 미 국

- 도움이 필요한 선거권자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고용주나 그 대리인, 또는 선거권자가 속한 노조 임원이나 대리인 제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음(투표권법 제2조).[53]
- 노인과 장애인도 연방 선거를 위한 선거권자 등록소 및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적인 투표권을 증진(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투표편의법, 연방선거운동법 제20101조)[54]
- 각 주로 하여금 장애인들이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투표소 접근성 및 투표장비 개선 등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투표지원법).[55]
- 각 투표소에서는 위의 법률에 따라 장애 선거권자들의 편의를 위해 휠체어가 출입할 수 있는 기표소, 투표소에 대형 활자로 인쇄한 투표 지침서 및 돋보기 비치, 쥐기 쉽도록 볼을 크게 만든 기표 도구, 청각 장애인을 위한 청각장애인용 전화(TDD) 서비스, 주 법안 및 카운티 투표 법안이 녹음된 카세트테이프, 부재자 투표·우편 투표 방법, 투표소 요원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3. 프랑스

- 투표보조인 지원(선거법 제64조)
  - 신체에 장애가 있어 투표지를 봉투에 넣거나 그 봉투를 투표함에 넣거나 투표기를 작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가 선임한 다른 선거인의 보조를 받을 수 있음.

---

53) Department of Justice. ‘Section 2 of The Voting Right Act.’ https://www.justice.gov/crt/section-2-voting-rights-act (검색일 2019.7.30.)

54) U.S. Department of Justice. ‘A Guide to Disability Rights Laws.’ https://www.ada.gov/cguide.htm#anchor64292 (검색일 2019.7.30.)
OSRC. Title 52. Voting and Elections. §20101. Congressional declaration of purpose.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52-section20101&num=0&edition=prelim (검색일 2019.7.30.)

55) EAC. ‘The Help America Vote Act of 2002. Title III. UNIFORM AND NONDISCRIMINATORY ELECTION TECHNOLOGY AND ADMINISTRATION REQUIREMENTS. Subtitle A-Requirements.’ https://www.eac.gov/about/help-america-vote-act/ (검색일 2019.7.30.)

- 선거인이 서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선거인이 지정하는 선거인이 서명날인명부에 서명하고, 그 서명 아래에 “선거인은 자신이 서명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

- 장애인에 대한 투표지원(선거법시행령 제56-1,56-2,56-3조)
  - 투표소는 장애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해야 함.
  -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투표소에 진입하고 이동할 수 있어야 함.
  - 투표소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기표소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함.

4. 독 일

- 문맹이거나 신체적 장애로 투표용지에 기표할 수 없거나 이를 투표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거나 투표구선거위원장에게 제출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 선거인은 투표를 도와줄 사람을 정하고 투표구 선거위원회에 신고해야 함(연방선거법시행령 제57조).
  - 도와주는 것은 선거인의 의사를 충족시키는데 한정되어야 하고, 보조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함께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음.
  - 보조자는 다른 사람의 투표 내용을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
  - 맹인 또는 시각장애 선거인은 점자투표용지를 사용할 수 있음.

5. 일 본

- 심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스스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투표관리자에게 신청해 보조자를 통해 투표할 수 있음(공직선거법 제48조).
  - 투표관리자는 보조투표 시 투표입회인의 의견을 들어 해당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할 자 2명을 그 자의 승낙을 얻어 정하고 그중 1명에게 해당 선거인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이름이나 의원명부신고정당의 명칭 및 약칭을 기재하게 하고 다른 1명을 여기에 입회시켜야 함.

6. 스페인

- 문맹자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투표용지를 선택하거나 이를 봉투에 넣고 투표관리관에게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선거인은 본인이 신임하는 자를 동반하여 투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선거법 제87조).
  - 정부는 중앙선거위원회의 사전 보고를 참고하여 시각장애인이 비밀 보장의 원칙아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 절차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규정은 최소한 상원 및 하원 선거, 유럽의회선거와 국민투표(주민투표)의 경우에 적용됨.

7. 스웨덴

- 장애 또는 비슷한 이유로 스스로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본인의 요청으로 투표사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본인의 투표를 돕도록 선임할 수도 있음(선거법 제7절 제3조).

8. 스위스

- 주의 국민투표와 선거에 대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 법으로 보조투표 허용(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5조제6항)
  ※ 투표용지에 기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 기표를 해줄 다른 선거권자를 선택할 수 있음.
- 장애나 다른 이유로 인해 투표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주 법으로 보장해야 함(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6조).

9. 캐나다

가. 투표사무원의 투표 보조(선거법 제154조)

- 선거인이 글자를 읽을 수 없거나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해 이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인의 요청에 따라 투표소에 배정된 선거사무원은 다른 선거사무원의 입회하에 해당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함.
- 시각장애 선거인이 요청할 경우 투표사무원은 기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각장애인 투표보조용구(Template)를 제공해야 함.

나. 친구 등의 투표 보조(선거법 제155조)

- 선거인이 투표에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선거인의 친구, 배우자, 동거인, 친척 또는 배우자나 동거인의 친척이 선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선거인의 기표를 보조할 수 있음.

다. 언어통역사 및 수화통역사 등 활용(선거법 제156조)

- 투표사무원은 선거인의 투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언어 또는 수어가 가능한 자를 1명 배치할 수 있음.

라. 특별투표에서 보조

- 군병원이나 요양소에서 병상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를 위하여 부대 투표사무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병원이나 기관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승인하는 경우 입원실마다 방문해 투표를 보조할 수 있음(선거법 제217조).
- 군인 선거인 중 신체장애로 인해 부대 내 투표소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문맹이나 신체장애로 수감된 선거인은 투표사무원이 신고서 작성과 기표를 대신할 수 있음(선거법 제216,259조).
- 문맹 또는 신체장애가 있는 선거인이 특별투표를 위하여 선거관리관 사무실 투표소를 방문한 경우 지정된 공무원은 신고서 작성과 투표를 대신 할 수 있음(선

거법 제243조).

10. 호 주

가. 투표소에서 보조(연방선거법 제234조)

- 선거인이 시각장애, 신체장애 또는 문맹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해당 선거인이 지명한 자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하고 투표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 선거인이 투표를 보조하게 할 특정인을 지명하지 못한 경우 투표관리관(presiding officer)은 출석한 참관인의 입회하에 해당 선거인의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이를 접어서 투표함에 투입해야 함.
  - 참관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표사무원(또는 선거인이 원하는 경우 투표사무원 대신에 지명한 사람)이 입회

나. 투표소 밖에서 투표(연방선거법 제234A조)

- 신체적 장애나 질병 등의 이유로 투표소에 들어올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투표관리관은 투표소 밖에서 투표할 것을 허락할 수 있음.
  - 선거권자는 투표사무원과 정당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접어서 투표사무원에게 건네주면, 투표사무원은 지체 없이 투표소로 돌아가 투표함에 투입함.

다.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전자보조투표

- 시각장애 선거인은 하원 총선거, 상원의원선거, 하원 보궐선거에서 전자적 보조투표 장치(electronically assisted voting method)를 지원받을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202AB조).
  - 전자적 보조투표 장치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일반 선거인과 동일한 선거정보를 동일한 순서로 제공하고 동일한 투표권 행사 수단(voting

options)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전자적 보조투표 장치를 사용하여 투표한 경우에는 투표기록을 남겨야 하고 투표 기록은 투표용지와 같이 취급됨. 투표기록에는 투표한 자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이 포함되어서는 안 됨(연방선거법 제202AD조, 제202AE조).
- 선거위원은 서면으로 전체 또는 하나 이상의 특정 투표소에서 전자적 보조투표 장치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202AF조).

<표 9-10> OECD국가의 특별투표제도 현황

구분 \ 국가명	우편투표 (Postal voting)	사전투표 (Advance voting)	대리투표 (Proxy voting)	보조투표 (Assisted voting)	근거규정
영 국	○	×	○	○	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39호 2000년 국민대표법 부칙 4. 제3호
미 국	○	○	×	○	투표권법 제2조, 주 선거법
프랑스	×	×	○	○	선거법 제64,71조
독 일	○	×	×	○	연방선거법 제8조 연방선거법시행령 제57조
일 본	○	○	×	○	공직선거법 제48조,제48조의2
스페인	○	×	×	○	선거법 제87조
스웨덴	○	○	○	○	선거법 제7절 제3조 제10절 제2조
스위스	○	○	×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5조제6항
캐나다	○	○	×	○	선거법 제154,168,232조
호 주	○	○	×	○	연방선거법 제184A,200AA,234조
오스트리아	○	○	×	○	하원선거법 제38,60,66조
벨기에	○	×	○	○	선거법 제143조 147조의1,180조의5, 180조의7
체 코	×56)	×	×	○	선거법 제19조제1,6항
칠 레	×	×	○	○	선거법 제67,171조
덴마크	○	○	×	○	선거법 제49,53,54,61조

구분 \ 국가명	우편투표 (Postal voting)	사전투표 (Advance voting)	대리투표 (Proxy voting)	보조투표 (Assisted voting)	근거규정
에스토니아	○ (재외투표에 한함)	○	×	○	선거법 제38조, 제39조제5항 제40,52조
핀란드	○ (재외투표에 한함)	○	×	○	선거법 제46,66a,73조
그리스	×	×	×	○	선거법 제83조
헝가리	○ (재외투표에 한함)	×	×	○	선거절차법 제181,266조
아이슬란드	○	○	×	○	의회선거법 제12장, 제63,86조
아일랜드	○	○ ※도서지역만 실시	×	○	선거법(1992) 제38,64,85,100,103조
이스라엘	×	×	×	×	-
이탈리아	○ (재외투표에 한함[57])	×	×	○	하원선거법 제55조 재외국민선거법 제12조제5항
라트비아	○ (재외투표에 한함)	×	×	○	선거법 제25,45조
리투아니아	○	○	○	○	의회선거법 제4,5,67,67조의1
룩셈부르크[58]	○ (75세 이상에 한함)	×	×	○	선거법 제168조
멕시코	○	×	×	○	연방선거법 제279,329조
노르웨이	○	○	×	○	선거법 제8-1~8-6조, 제9-5조 의회및지방선거관련 총리령 제24a,26,28조
네덜란드	○	×	○	○	선거법 제M1조, 제L1조, 제J28조
뉴질랜드	○	○	×	○	선거법 제61,70조 선거규칙 제24,27조

구분 \ 국가명	우편투표 (Postal voting)	사전투표 (Advance voting)	대리투표 (Proxy voting)	보조투표 (Assisted voting)	근거규정
폴란드	○ (장애인)	×	○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선거인만 가능)	○	선거법 제53,53a,54조
포르투갈	○ (재외투표에 한함)	○	×	○	선거법 제79b,79g,97조
슬로바키아	○	×	×	○	선거법 제24조제1,6,7항 제60조
슬로베니아	○	○	×	○	의회선거법 제9,69,81,79조
터 키	×	×	×	○	선거기본법 제93조

56) The Czech Republic's voting rules do not, for the time being, allow postal voting. https://europa.eu/youreurope/citizens/residence/elections-abroad/home-country-elections/czechia/index_en.htm (검색일 2019.7.1.)

57) 이탈리아 외무부 홈페이지 '이탈리아 재외국민의 우편투표(Voting for Italian citizens resident abroad)' https://www.esteri.it/mae/en/sala_stampa/archivionotizie/retediplomatica/elettori-temporaneamente-all-estero.html (검색일 2019.10.14.)

58) 룩셈부르크 행정부 https://jepeuxvoter.public.lu/en/faq.html (검색일 2019.7.9.)

제10장

재외선거

제10장
재외선거(Overseas voting)

- 재외선거제도는 해외에 나가있는 자국의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각국의 사정에 맞게 실시하는 대상선거도 다르며, 다양한 선거인명부 등재방식과 투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많은 국가가 공관투표와 우편투표를 주로 실시함.
- 이외에도 팩스나 대리투표를 이용하며, 여러 제도를 함께 운영하기도 함.
- 개표는 공관현지개표나 본국으로 이송해 합산 개표함.

1. 영 국

- 영국의 경우 하원의원 총선거와 유럽의회선거만 재외선거를 인정하며, 지방의회 선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1)]

가. 재외선거인 신청대상자(1985년 국민대표법 제1,2조)

- 등록신청일 현재 영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재외선거인의 자격이 있음.
  - 본인의 주소지를 포함하는 해당 선거구 의회의원 선거인명부에 속해 있는 경우
  - 해당 명부가 작성된 때 동 주소에 거주했거나, 명부등록의 목적상 같은 주소에 거주한 자로 취급되었으며, 그 명부작성일이 등록신청일 직전 15년 안에 들어가고, 해당 명부의 실효 후 작성된 의회의원 선거인명부에 타주소의 거주인으

1) 영국 의회 홈페이지. ‘Overseas voters(재외선거).’
https://researchbriefings.parliament.uk/ResearchBriefing/Summary/SN05923 (검색일 2019.9.23.)
영국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Overseas voters(재외선거).’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i-am-a/voter/overseas-voters (검색일 2019.9.23.)
영국 내무부 홈페이지. ‘Voting when you’re abroad(해외에서 투표하기).’
https://www.gov.uk/voting-when-abroad (검색일 2019.9.23.)

로 등록 혹은 명부등록의 목적상 타 주소에 거주하는 자로 취급되지 않은 경우

- 등록신청일 15년 전 영국 내에 거주했으나 연령상의 이유로 본인의 영국 내 거주했던 기간 중 의회의원 선거인명부에 포함되지 못했으며, 영국 내 거주기간 마지막 일에 그가 거주했던 주소지가 해당 선거구내에 위치했고, 부모 중 1명이나 그의 보호자가 동 주소지의 당시 발효 중인 의회의원 선거인명부 혹은 지방정부 선거인명부에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

※ 재외선거인 자격요건기간(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제141조)
1985년 국민대표법에서는 영국을 떠난 지 5년 이내인 해외거주 영국 시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했고 1989년 20년 이내의 자로 그 기간을 연장했으나,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으로 다시 15년으로 단축함.

나. 재외선거인 신청방법(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2)

- 개별선거등록제(IER) 시행 이후 인터넷을 통한 재외선거등록 신청이 가능해짐. 재외선거인은 이름, 생년월일, 출국일자, 가장 최근에 선거인으로 등록한 지역구 내 기존 주소, 연락처 및 이메일, 여권번호, 해외주소, 국가보험번호(National Insurance Number) 등을 기재한 후 등록 신청함.
- 신청인은 재외선거인 신청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일 이후 3월 이내에 해당 선거인명부 등록관이 접수하지 아니하면 재외선거인 신청은 효력이 없음.
- 재외선거인 신청에 따라 어느 선거구 혹은 선거구 일부의 의회의원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경우, 등록신청일 현재 영국 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적으로 간주
- 선거인명부 갱신은 매월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작성 후 3개월이 지난 등록신청서는 받지 않음.
- 등록신청은 매년 해야 하며, 선거인명부 등록사무소는 등록 유효기간 만료 2~3개월 전에 이를 알려주어야 함.

다. 투표(2000년 국민대표법 부칙 4. 제3호)

- 재외선거인은 대리투표 또는 우편투표 중 하나의 방법을 재외선거인등록시 선택해야 함.
- 우편투표의 경우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하면 거주하고 있는 해외주소로 투표용지

가 선거일 1주일 전에 발송되며,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투표하고 선거일 투표마감 시간까지 보내야 함(늦으면 무효가 됨).

※ 대리투표는 제9장 제4절 대리투표 영국편, p.704 참조

- 재외선거인이 선거일에 영국 국내에 있다면, 해당 선거구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할 수 있음.
  - 단, 대리투표의 경우 지정한 대리인에 의한 대리투표가 이루어지기 전에만 할 수 있음.
  - 우편투표의 경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을 수는 없으며, 투표소에 우편투표지를 직접 제출할 수 있음.

2. 미 국

- 연방차원에서 「연방투표지원법(The Federal Voting Assistance Act, 1955)」에 의해 군인, 상선 선원 및 자격이 되는 부양가족, 공공보건 서비스의료단, 해양환경관리단, 미국대륙 및 미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공무원 포함)에게 연방선거 재외투표를 인정함.[2)]
- 1988.1.1. 발효된 「군인 및 재외부재자투표법」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일반인에게도 연방정부와 관련한 모든 선거에 대해 부재자투표를 허용함.[3)]

  ※ 「군인 및 재외부재자투표법」이 가장 중요한 최근의 법률이며, 「군인투표법」, 「연방투표지원법」, 「재외투표법」이 수정되지 않은 범위에서 효력이 있음.[4)]
- 재외선거 실시 대상선거는 주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연방선거 및 주정부 공직 선거임.

---

2) Federal Voting Assistance Act Passed
https://www.annenbergclassroom.org/timeline_event/federal-voting-assistance-act-passed/ (검색일 2019.7.22.)

3) FVAP.GOV. 「The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 Absentee Voting Act of 1986: UOCAVA」
https://www.fvap.gov/info/laws/uocava (검색일 2019.6.27.)

4) 군인투표법 「The Solider Voting Act of 1942」(1944년 개정)」
연방투표지원법 「The Federal Voting Assistance Act of 1955」
재외투표법 「The Overseas Citizens Voting Right Act of 1975」

가. 재외선거인 신청대상자(군인 및 재외부재자투표법 제20310조)

- 부재중인 군복무 선거인
  -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군복무로 거주지에서 부재중인 자
  -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상선 근무로 거주지에서 부재중인 자
  -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위에서 규정된 선거인의 배우자나 동거인으로 거주지에서 부재중인 자

    ※ 군복무자는 육·해·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국가의료단, 해양환경관리단을 말함.
- 상선 근무자
  - 미합중국 법률에 규정된 선박이나 미국 소유의 선박 및 미국으로부터 임대하에 있거나 미국이 관리하는 외국선박에 근무하는 선장이나 선원
  - 고용 또는 직업훈련을 위해 미국에 등록되거나 긴급구조 업무를 위해 미국이 관리하는 선박의 선장이나 선원
- 재외선거인
  - 선거일에 의무 또는 업무로 미국을 떠나 부재중인 군복무선거인
  - 미국 밖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미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거주지에서 선거권이 있는 자
  - 미국 밖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국내 최종주소지가 없는 경우 떠나기 전 마지막 거주지에서 선거권이 있는 자

나. 재외선거인 신청방법[5)]

- 우편이 원칙이나 방문, 팩스, 이메일, 온라인을 병행하는 주도 있음.
- 투표를 하려는 재외선거인이 재외공관에 가거나 연방선거지원프로그램[6)]에서 제공하는 부재자투표가이드(Absentee Voting Guide)의 연방우편투표신청서[7)]를 사용해 최종 주소지를 포함한 확인사항을 기재해 작성한 후 선거가 실시되는 해,

---

5) FVAP.GOV. ‘The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Overview.’ https://www.fvap.gov/info/laws/uocava (검색일 2019.10.8.)

6) FVAP.GOV. ‘Federal Voting Assistance Program.’ http://www.fvap.gov/ (검색일 2019.6.27.)

7) FVAP.GOV. ‘The Federal Post Card Application: FPCA form.’ https://www.fvap.gov>FVAP>Forms>fpca2013 (검색일 2019.6.27.)

매년 1월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외공관은 이를 최종 주소지 선거위원회에 우송(이메일, 팩스는 원본제출 의무가 있음.)

-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선거위원회의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신고·접수할 수 있음.[8)]
- 지역 선거위원회는 사실관계 심사 후 투표용지를 우편 또는 재외공관을 경유하여 송부하며, 등록신청서는 선거일 30일(6~30일, 주별로 다름)전까지 도착해야 함.
- 정해진 날짜까지 용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자서식 부재자투표용지(write-in absent ballot)를 사용해 투표 가능함.

다. 투표

- 원칙적으로는 우편투표이나 팩스, 이메일도 가능
- 재외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입하여 투표한 후 각 주의 마감일까지 지방선거사무소로 자기 부담으로 우송(local mail인 경우) 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 인터넷으로 보냄(재외 공관투표소는 없음).

<표 10-1> 미국 주별 전자적 투표방식 채택 현황[9)]

웹페이지를 사용해 투표가 가능한 주(4개)	애리조나, 콜로라도, 미주리, 노스다코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 (1개)	웨스트버지니아(2018년도 사용)
이메일 또는 팩스 (19개)	델라웨어, 콜롬비아 특별구, 하와이, 아이다호, 인디애나, 아이오와, 켄사스, 메인, 매사추세츠, 미시시피, 몬태나,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레곤,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워싱턴
팩스(7개)	알라스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오클라호마, 로드아일랜드, 텍사스
우편투표 (19개)	앨라배마, 아칸소, 코네티컷, 조지아, 일리노이, 켄터키, 메릴랜드, 미시건, 미네소타, 뉴햄스피어, 뉴욕,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버몬트, 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

8) 2002년 10월에 제정된 「투표지원법(Help America Vote Act of 2002)」에 의해 「군인 및 재외국민부재자투표법」을 추가 개정함으로써 부재자투표를 보다 쉽게 하고 있는데, 늦게 도착한 투표용지 또는 소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가 무효처리 되면서 재외부재자투표는 2000년 대선에 논란거리가 됨. 이에 의회는 선거담당공무원과 선거지원위원회(EAC)로 하여금 재외선거인의 투표를 좀 더 쉽게 하도록 촉구하였음. 선거지원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주들에게 부재자투표용지를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보내는 것을 권고. 미주리 주, 노스다코타 주, 유타 주, 인디애나 주의 경우, 군인투표자에게 스캔한 투표용지를 이메일로 보내는 것을 허용하였음.
FVOP.GOV. 'Absentee Voting Overview.'
https://www.fvap.gov/citizen-voter/overview (검색일 2019.6.27.)

라. 재외선거 관리

1) 연방의 임무(군인 및 재외국민부재자투표법 제20301조)

- 대통령은 재외선거인들의 부재자투표에서 연방의 역할을 책임지는 행정부의 장관을 임명해야 하며, 임명자의 의무는 아래와 같음.
  -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자는 주와 지방의 선거관리관들과 협의해, 이 법의 필요사항을 숙지시켜야 함.
  - 부재자 선거인등록신청과 부재자투표용지 신청을 포함하는 공식 우편엽서 서식을 규정하고 주에서 활용
  - 연방선거에 있어 군인 외 재외선거인들을 위한 자서식 부재자투표용지(Federal write-in absent ballot)를 시행함.
  - 부재자 우편투표봉투를 제작함.
  - 주 부재자 등록 및 투표 절차에 대한 설명 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며,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날짜, 관련 사무소 및 투표용지 문안을 포함해 특정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수집하고 배포함.
  -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의 말까지 투표참여에 관한 통계분석과 주와 연방간의 협력사항을 포함해 지원의 효과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함.

2) 주의 임무(군인 및 재외국민부재자투표법 제20302조)

- 각주들은 연방 총선거, 보궐선거, 예비선거, 결선투표에 있어서 부재중인 군복무 선거인과 재외선거인이 부재자등록절차를 이용하고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연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인 등록신청과 부재자투표신청이 선거일 30일 전까지 해당 주의 선거관리관에게 접수되었다면 그 신청을 유효하게 접수하여 처리
- 기 타
  - 주의 모든 선거인을 위해 등록과 부재자투표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하나의 주사무소 지정

9) NCSL. ‘Electronic Transmission of Ballots.’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internet-voting.aspx (검색일 2019.10.9.)

- 발송되고 접수된 부재자투표용지의 수에 관한 보고서를 선거행정위원회에 제출, 일반 공개
- 등록 통지 및 부재자투표 신청을 거부했을 경우 거부 사유 통지

3) 재외선거인들을 위한 자서식 투표용지(군인 및 재외국민부재자투표법 제20303,20306조)

- 대통령에 의한 임명자는 연방 총선 시 부재자투표용지를 신청하였으나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재외선거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서식 부재자투표용지(비밀봉투 및 우편투표 봉투를 포함)에 관하여 규정해야 함.
- 자서식 부재자투표용지는 관련 주에서 부재자투표를 위한 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접수·처리되어야 하며, 다음의 투표지는 개표에 포함되지 않음.
  - 재외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투표한 투표지를 미국 국내의 지역에서 발송한 경우
  - 재외선거인의 부재자투표신청서가 선거일 30일 전후에 해당 주의 선거관리관에게 접수된 경우
  - 주법에 따른 부재자투표용지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주의 선거관리관에게 접수된 경우(마감일보다 일찍 도착 한 것)
- 자서식 투표용지의 경우 재외선거인은 후보자의 이름이나 정당명을 기입함으로써 후보자를 선택함.
- 주가 다음과 같이 주의 부재자투표용지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자서식 부재자투표용지는 무효로 함.
  - 주의 요청으로 주의 부재자투표용지를 사용하는 것을 대통령에 의한 임명자가 승인한 경우
  - 주법에 따라 주의 투표용지 수령 마감일 60일 전까지 재외선거인들에게 주의 부재자투표용지가 도착한 경우

3. 프랑스

- 1976년에 제정된 「재외국민투표와 영사선거인명부에 관한 n.76-97 법」[10)]에 따라

대통령 선거와 영사의원선거(élection des conseillers consulaires), 하원의원선거, 유럽의회선거, 국민투표에서 실시됨.

※ 해외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프랑스인은 재외선거인명부(Liste electorale consulaire)에 등록하여(1976년 재외국민투표와 영사선거인명부에 관한 n.76-97법),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음(선거법 제172조).

가. 재외선거인 신청대상자

- 18세 이상 성년으로 국내 또는 재외공관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
- 프랑스 국민으로서 프랑스 영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자나 군인은 신청에 의하여 재외선거인등록을 할 수 있음. 해상생활을 하는 선원 및 그 가족도 포함.

※ 2019년 1월 1일부터, 해외에 거주지를 둔 선거인은 재외선거인명부와 구·시·군 선거인명부에 동시에 등재될 수 없음.[11]

나. 재외선거인 신청방법

- 선거일 기준 전년도 마지막 날까지 신분증을 소지하고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가서 재외선거인명부 등록 신청을 함.
  - 우편 또는 대리인, 인터넷[12]을 통해 등록 가능
  - 재외선거인명부는 본국에 통보되기 때문에 이중등록 불가
  -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된 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직권등록

※ 계속해서 6개월간 해외에 거주한 자가 재외국민등록부에 등재되며 재외국민등록부는 5년간 유효하므로 기간 내에 현행화하거나 재등록해야 함.[13]

-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에게는 재외선거인등록증을 줌.

---

10) Loi organique n°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http://legifrance.gouv.fr/affichTexte.do;jsessionid=39D1459414F99DBBDF2718D62DA86506.tpdjo02v_1?cidTexte=JORFTEXT000000510005&dateTexte=20080806 (검색일 2019.6.5.)

11)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6904 (검색일 2019.6.5.)

12) 프랑스 전자행정창구: Guichet d'administration électronique https://pastel.diplomatie.gouv.fr/index.html?espace=francaisEtranger (검색일 2019.6.5.)

13)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3307 (검색일 2019.6.5.)

다. 투 표

- 재외선거인은 공관투표 외에 대리투표[14]의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음.
- 공관투표의 경우 본국과 같은 선거일에 재외선거인등록증을 제시하고, 후보자별로 비치된 투표용지 중 후보자의 용지를 선택한 후 밀봉해 투표함에 넣음(일반투표와 같음).

라. 개 표

- 재외공관에서 투표 종료 후 즉시 이루어지고 개표결과는 개표종료 후 각국별로 공표된 후 본국 선거결과와 합산[15]

4. 독 일

- 연혁
  - 1956년 제정된 연방선거법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중 공무원, 군인, 공무에 종사하는 사무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편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음.
    ※ 실제 우편투표의 실시는 1957년 연방의회선거부터 이루어짐.
  - 1985년의 연방선거법 개정[16]을 통해 일반 재외국민을 포함시키면서 선거권이 인정됨.
- 연방선거법 제12조제2항과 유럽의회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는 독일인의 경우 연방의회선거와 유럽의회선거에 한해 참여할 수 있음.

---

14) 대리투표는 제9장 제4절 대리투표 프랑스편, p.706 참조

15) http://www.conseil-constitutionnel.fr/dossier/presidentielles/2002/documents/c10202.pdf (검색일 2019.6.5.)
Loi organique n°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510005&dateTexte=20081111&fastPos=1&fastReqId=1648762822&oldAction=rechTexte (검색일 2019.6.5.)

16) 1985.3.8, BGBl. IS. 521

가. 재외선거인 신청대상자(연방선거법 제12조)

-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독일인은 선거인명부 등재신청 가능
- 재외선거 실시 공고(연방선거법시행령 제20조제2항)
  - 해외 거주자의 투표참여를 위해 선거일이 결정된 후 국외주재 독일연방공화국의 외교 및 영사대표부는 연방하원의원 선거 참여요건 및 선거인명부 등록신청 기한, 장소, 방법에 대해 공고해야 함.
  - 언론기관에 해당 공고(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 및 주간지에 독일어로 된 광고를 게재)하고 있으며, 해당 방식으로 원활하게 공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외교대표부 건물에 게시하거나 개개인에게 별도의 통지를 해야 함.
  - 또는 대사관 및 영사관은 홈페이지에 별지 제6호 '연방하원의원선거에 참여하는 독일인을 위한 광고' 서식에 따라 공고할 수 있음.

참조 10-1 독일의 재외국민의 선거권 확대

- 2012년 7월 4일 「연방선거법 제12조제2항」에 대한 위헌 결정[17]
- 해외에 거주하던 독일국민이 선거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일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체류했어야 한다는 조건을 규정한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함.
- 연방헌법재판소는 해당 조문이 「기본법 제38조제1항」의 내용인 선거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음.
  ※ 기본법 제38조제1항) 독일연방하원의원은 보통·직접·자유·평등·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 해당 조항의 위헌결정 이후 2013년 5월 3일 해당 조문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 범위를 확대함.
- 만 14세 이후 적어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독일 내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었거나, 통상적으로 독일에 체류하였고 그러한 체류시점 후 25년 이상 지나지 않은 자 또는 독일에서 정치적인 관계와 함께 개인적 그리고 직접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자 및 그와 관계있는 자로 선거권이 확대됨.

나. 재외선거인 신청방법(연방선거법시행령 제16~18조)

- 선거일 21일 전까지 해외로 이주하기 직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청에 선거인명부에 등재를 신청

  ※ 해외 거주 독일인의 선거인명부 등재는 직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각각의 연방의회선거와 유럽의회선거 때마다 별도로 신청이 이루어져야 함.

17)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2012.7.4. 사건번호 2 BvC 1/11, 2 BvC 2/11

- 편지,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서는 「연방선거법시행령 부칙 2」에 그 서식이 정해져 있음.

- 신청서는 해외거주 독일인을 위한 홈페이지[18] 또는 외교부 및 영사대표부, 연방선거위원장 및 선거구 선거위원장에게 신청양식 및 안내서를 받을 수 있음.

  ※ 연방선거위원회 홈페이지에 재외국민 투표를 위한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서, 선거증 신청서, 외교부 행낭 이용 신청서 등 제반 서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투표 참여 방식도 설명하고 있음.[19]

  - 자신이 선거권이 있음을 표시해야 하며 다른 행정청에 선거인명부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알려야 함.
  - 선거인명부에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연방선거위원장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부하여 등록사실을 통지하여 중복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
  - 독일 국적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별도의 증빙서류는 없음.
  - 신청서에 기재된 사람이 독일 국적자인지, 만 18세를 경과하였는지, 범죄행위 등으로 인해 선거권 박탈사유가 없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행정청이 직권으로 조사함.

다. 투표 및 개표

- 재외선거의 투표는 선거증 신청을 통한 우편투표의 방법으로 실시됨(연방선거법시행령 제66조).
  - 선거증을 발급받은 선거권자에게 우편투표를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구의 공식 투표용지, 투표지봉투, 선거우편물이 송달되어야 하는 전체 주소 및 선거증을 발행한 관할 행정청의 기호 및 선거증 번호나 선거구역이 기재된 공식 우편물 봉투, 우편투표 안내서 등이 첨부하여 교부되어야 함(연방선거법시행령 제28조제3항).

    ※ 자세한 내용은 제9장 부재자투표 — 우편투표 및 특별투표소 투표 독일편, p.676 참조

18) https://www.auswaertiges-amt.de/de/ReiseUndSicherheit/reise-und-sicherheitshinweise/konsularinfo

19) 연방선거위원회. http://www.bundeswahlleiter.de/de/bundestagswahlen/BTW_BUND_13/auslandsdeutsche/

5. 일 본

- 일본은 1999.5.1.부터 재외선거인명부 등록신청을 받아 2000년 중의원비례대표 선거에서 처음으로 재외선거 실시[20]
- 2006년 공직선거법 개정[21]에 따라 참의원, 중의원 비례대표의원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에 대한 투표도 시행하였음.

  ※ 지방선거는 거주자를 중심으로 하는 취지상 실시하지 않음.

  ※ 2005.9.14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정(大法廷, 전원합의체)은 "재외국민선거권소송"에서 "해외 거주 일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고 판시

  - 2005년까지 비례대표의원선거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재외국민선거권소송에서 "비례대표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위헌판결이 확정되어 2007년 6월부터 지역구 투표도 가능해짐. 2007년 7월에 실시된 제21회 참의원의원통상선거(및 같은 시기에 실시된 중의원보궐선거)부터 지역구 재외선거가 실시됨.[22]

참조 10-2 재외국민선거권 관련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요지

- 개정 전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된 1996년 중의원 총선거에서 재외국민의 투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5조(공무원의 선정·파면권, 공무원의 본질, 보통선거 및 비밀투표의 보장)제1항 및 제3항, 제43조(양의원의 조직)제1항, 제44조(의원 및 선거인의 자격)에 위반됨.
- 1998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정선거에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행사가 인정되는 선거를 양(兩)의원의 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로 한정하는 부칙 부분도 헌법에 위반됨.

---

20) 총무성 홈페이지) 재외선거제도에 대하여
- 국정선거에서 국외거주 일본인의 선거권 행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재외선거법)이 1998년 5월 6일에 공포되고 "재외선거인명부 등록에 관한 부분"이 1999년 5월 1일부터, "재외투표에 관한 부분"이 2000년 5월 1일부터 각각 실시됨.
- 그 후 "투표방법에 관하여" 재외선거인이 "재외공관투표와 우편투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2003년 6월 11일에 공포되고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 "1)재외선거 대상이 되는 선거의 확대 및 2)재류신고 제출시 등에 있어서 재외투표인명부 등록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2006년 6월 14일에 공포되고, 1)과 관련하여 2007년 6월 1일, 2)와 관련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http://www.soumu.go.jp/senkyo/hoho.html (검색일 2019.6.18.)

21) http://www.mofa.go.jp/mofaj/toko/senkyo/kaisei_0611.html (검색일 2019.6.18.)

22) https://ja.wikipedia.org/wiki/%E5%9C%A8%E5%A4%96%E9%81%B8%E6%8C%99 (검색일 2019.6.18.)

• 재외국민인 상고인들은 다음 중의원의원 총선거에서 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 및 참의원의원 통상선거에서 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 있어서,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어 투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적법한 소이며, 투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 1996년 실시된 중의원의원 총선거에서 재외국민에게 국정선거에서의 선거권 행사를 인정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됨.

가. 재외선거인 신청대상자

- 만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그 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영사관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귀화 등에 의해 국적을 상실한 자, 공민권이 정지되어 있는 자는 제외

※ 2006.10.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해외에서 3개월 이상 머물러야 하는(주소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국외 출국 시 재외선거인명부 등록 이전 신청이 가능(체재 예정국가에 도착한 직후 해당 공관에 체재등록 요구)

나. 재외선거인명부(공직선거법 제4장의2)

-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외에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해 보관하고 영구히 비치하며 중의원의원 및 참의원의원선거에서 하나의 명부로 함.

※ 재외선거인명부 등록지[23)]

1994년 5월 1일 이후에 일본을 출국한 자	최종주소지
1994년 4월 30일 이전에 출국하여 그 후 일본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 (그 후 일본 국내에 전입신고를 한 적이 없는 자)	본적지
외국에서 태어나 일본 국내에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는 자 (한 번도 일본 국내에 전입신고를 한 적이 없는 자)	본적지

- 재외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이름, 최종 주소(선거인이 국외로 주소를 이전하기 직전의 주민표에 기재되어 있던 주소), 신청 시 본적·성별 및 생년월일을 기재해야 함.
- 재외선거인명부등록은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만 18세 이상의 일본국민으로서 그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영사관(영사관의 직무를 행하는 대사

23) https://www.mofa.go.jp/mofaj/toko/senkyo/flow.html (검색일 2019.6.18.)

관·공사관의 장 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의 관할구역 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주소를 가진 자에 대하여 실시

- 위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될 자격이 있는 자는 문서로 최종 주소 소재지의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명부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한 자가 해당 시정촌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될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청한 자를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해야 함.
-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4회 및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청, 정촌 사무소 또는 해당 시 정 촌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의 성명, 경유 영사관의 명칭, 최종주소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공람에 제공해야 함.
-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시정촌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가 사망 또는 일본 국적을 상실한 것을 알았을 때, 국내의 시·정·촌에서 주민표가 새로이 작성된 날 이후 4개월을 경과한 때, 등록 시에 등록될 수 없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재외선거인명부에서 말소해야 함.

다. 재외투표 방법(공직선거법 제49조의2, 공직선거법시행령 제5장의2)

1) 재외공관투표

-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는 재외공관에 직접 가서 선거일 공시일부터 선거일 6일 전까지(해당 재외공관에서 정한 마감일까지) 투표할 수 있음(보통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나 시기 및 시간은 투표소에 따라 다름).

  ※ 재외공관의 사정이 있는 경우(투표송부일자 소요 등)에는 관계 대신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2006.10.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중요한 투표용지를 해외에서 일본으로 안전하게 우송하기 위해 재외공관 투표기간을 하루 단축함. 단, 운송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로 지금까지 2, 3일 전에 투표를 마감한 국가의 경우는 현재 상황을 유지

  ⇨ 일반적으로 재외공관투표기간은 중의원선거는 선거일 12일 전에 공시하므로 7일간, 참의원선거는 선거일 17일 전에 공시하므로 12일간임.

- 선거인은 공관장에게 문서로 재외선거인증, 여권 등을 제시하여 투표용지 및 봉투를 청구하며, 공관장은 본인확인을 하여 즉시 줌.
- 투표용지 등을 받은 선거인은 투표한 후 내봉투에 넣어 봉하고 외봉투표면에 필

요한 사항을 기재·서명하여 공관장에게 제출

※ 점자투표나 대리투표, 가투표도 인정됨.

2) 우편투표

- 재외공관 등 투표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데, 선거인은 선거일 4일 전까지 등록지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재외선거인증을 제시하여 투표용지 및 봉투를 청구
- 청구를 받은 등록지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즉시 투표용지 및 봉투를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투표용지 및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현재 있는 장소에서 투표용지에 투표하고 봉투 겉면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등록지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선거일 오후 8시까지 우편으로 보냄.

  ※ 소요되는 우편비용은 모두 재외선거인이 직접 부담

3) 귀국투표

- 선거인이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재하는 때에 국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스스로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관리하는 투표소에 나가서 투표하는 것으로, 등록지에서의 귀국투표와 등록지 이외의 시정촌에서의 귀국투표가 있음.
- 등록지에서의 귀국투표: 선거인은 귀국투표를 할 수 있는 기간에 문서로 재외선거인증을 제시하여 투표용지 및 봉투를 청구하고 이를 받아 투표용지에 투표하고 외봉투 표면에 필요사항을 기재·서명하여 등록지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동 위원장은 해당 선거인이 속하는 지정 재외선거 투표구의 투표관리자에게 보냄.
- 등록지 이외의 시정촌에서의 귀국투표: 선거인이 선거기일전일까지 등록지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문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재외선거인증을 제시하여 투표용지와 봉투를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등록지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즉시 투표용지와 봉투를 교부하며, 이를 받은 재외선거인은 귀국투표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등록지 이외의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선거인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에 투표하여 봉투에 넣어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함.

라. 재외투표의 개표 방법(공직선거법시행령 제65조의7, 제65조의12)

- 재외공관에서 투표한 뒤 투표용 봉투에 선거인명부가 등록되어 있는 시정촌의 이름을 적어 재외공관장에게 제출, 재외공관장은 이를 봉인해 해당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보냄.
  -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 투표와 함께 개표함.
- 우편투표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우송되어 함께 개표함.

6. 스페인

가. 재외선거인 신청대상자

- 스페인 국적 소지자로 국내외 인구조사(CER 및 CERA)에 가입한 시민
- 선거인명부관리국의 지침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선거인명부 등재 및 삭제, 주소지 변경 또는 새로운 선거구 내 임명을 위한 신청 등 변동사항을 보고해 허가받아 갱신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와 있는 자(선거법 제36조)
- 선거일에 투표권을 행사할 장소에 없는 해외거주자들은 국내 부재자투표와 동일하게 우편투표를 실시하거나 재외공관에서 투표할 수 있음(선거법 제72조).

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선거법 제75조제1~3항)

- 하원의원, 상원의원, 자치주의회의원, 세우타와 멜리야 의회의원 및 스페인에서 선출하는 유럽의회선거 시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스페인 시민은 선거소집 후 2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관리국의 도파견사무소에 투표권 행사를 신청해야 함.
  - 이 신청서는 해당 명부에 등재된 스페인 시민에게 발송되며, 선거소집일 다음날부터는 영사관에 비치하거나 전자우편, 홈페이지(www.exteriores.gob.es)를 통해 전달받을 수 있음.[24)]

24) Postal voting for Spanish voters who are temporarily residing abroad (E.R.T.A) https://www.correos.es/ss/Satellite/site/pagina-1363186877391/sidioma=en_GB (검색일 2019.6.5.)

-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스페인 정부가 발급하는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거주하는 국가 내 스페인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국적증명서 또는 영사관 등록부 등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를 수령한 선거인명부관리국의 도파견사무소는 등록된 선거인의 주소지로 아래를 발송해야 함.
  - 투표용지
  - 투표봉투 또는 봉투들
  -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증명서(확인서) 2부
  - 관할 도선거위원회와 영사관 주소가 명시된 봉투와 선거인이 등록된 재외공관 내 영사과 주소가 명시된 회송용봉투
- 이 서류들은 후보자 공표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없었던 시·도의 경우 선거소집일로부터 34일 이내에, 나머지 지역의 경우 42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함.

다. 재외선거 투표 절차(선거법 제75조제4~8항)

- 우편투표의 경우
  - 선거인은 관할 선거위원회로 회송되는 봉투에 투표봉투 또는 봉투들,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증명서, 스페인 정부가 발급하는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거주하는 국가 내 스페인영사관에서 발급하는 국적증명서 또는 영사관등록부 등록증명서를 첨부
  - 선거인 본인이 등록되어 있는 독립적 영사관 또는 재외공관 내 영사과로 선거일 전 5일까지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함.
- 공관투표의 경우
  - 선거인 본인이 직접 선거일 4일 전부터 선거일 2일 전까지, 본인이 등록되어 있는 영사관 또는 재외공관 내 영사과 또는 투표를 위해 따로 마련된 장소에 회송용봉투를 제출해야 함.
  - 이를 위해 영사과에는 영사과 직원의 감독 하에 투표함을 비치하고 있어야 함.
  - 선거인은 전달 받은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증명서 중 한 부를 사전에 제시·제출한 후 영사과 직원에게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거주하는 국가 내 스페인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국적증명서나 영사관등록부 등

록증명서를 제시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개표를 위해 제출날짜와 함께 영사관 소인이 찍힌 회송용 봉투가 관할 선거위원회로 회송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함.

- 투표 관련 영사과 책임자는 투표함을 통한 투표를 위해 명시된 기간 동안 매일의 투표마감 후 투표함의 봉인 및 보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 대표들은 투표함에 투표를 하는 투표기간 동안 영사관에 출석하여 참관할 수 있음.
- 공관투표가 종료되면 영사관 직원은 제출된 등재 관련 증명서의 수와 누락된 경위, 해당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우편 수신한 회송용봉투의 수가 명시된 보고서를 작성함.
- 종료일 다음 날, 선거인이 투표함에 넣은 회송용봉투의 수와 등기우편으로 수신한 회송용봉투 및 영사관 직원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는 선거우편물로 외교부 내 마련된 사무국으로 송부함.
- 해당 사무소에서는 긴급우편으로 회송용봉투들을 관할 선거위원회에 회송함.

라. 재외선거 개표(선거법 제75조제10,11항)

- 관할 선거위원회는 개표일 개표 전 오전 8시까지 후보자가 지명한 참관인들과 함께 투표소에 출석함.
- 투표관리관은 개표 전까지 재외선거인으로부터 수령한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하고, 서기는 해당 명단에 선거인들의 이름을 기록함. 선거위원회는 재외선거의 투표지를 개표하여 그 결과를 일반 투표지의 개표결과에 합산함.

7. 스웨덴

가. 재외선거인 신청대상자

- 스웨덴 국내에 주소가 없는 선거인의 경우 10년 동안 가장 최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투표구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됨(선거법 제5절 제2,4조).
  - 그 이후에는 매 10년 단위로 국세청에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거인명부 등재신

청을 해야 재외선거인 자격이 유지됨.

- 중앙선거청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면 선거인에게 이름과 어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긴 재외 투표카드(expatriate voting card)를 발급해서 선거일 50일 전까지 보냄(선거법 제5절 제8,9조).

나. 투표

1) 재외공관투표(선거법 제10절 제2,5,6조)

- 중앙선거청은 외무부와 협의하여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재외공관을 결정해야 함(선거법 제4절 제25조).
- 지정된 재외공관 투표소에서 선거일 24일 전부터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선거일까지 중앙선거청에 투표봉투를 송부해야 함.
- 중앙선거청은 재외공관으로부터 봉투가 도착하는 대로 접수된 봉투의 수를 기록한 후 봉투를 선거인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기초자치구 선거위원회로 송부하며 우편으로 송부할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

  ※ 투표봉투가 선거일까지 중앙선거청에 도착할 수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2) 우편투표(선거법 제7절 제11,12조)

- 해외에 거주하거나 외국 영해에 있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거인의 경우 우편투표를 할 수 있음.
- 선거일 45일 전부터 해외에서 발송할 수 있음.

  ※ 자세한 우편투표 절차는 제9장 제2절 부재자투표 – 우편투표 및 특별투표소 투표 스웨덴편, p.683 참조

8. 스위스

「재외스위스인과 기관에 관한 연방법(Bundesgesetzüber Schweizer Personen und Institutionen im Ausland」, 「재외스위스인법(Auslandschweizergesetz, ASG)」과 「재외스위스인과 기관에 관한 시행령(Verordnung über Schweizer Personen und

Institutionen im Ausland, V-ASG)」에서 규정[25)]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과 시행령은 2015.11.1.에 폐지

가. 재외선거인 신청대상자(재외스위스인법 제3,16조·재외스위스인 시행령 제14조)

- 18세 이상의 재외 스위스인은 연방 선거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
- '재외스위스인'이란 스위스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재외스위스인 명부에 등록된 사람을 말함.
- 다음의 경우에는 재외스위스인이 헌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할 행위 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됨(재외스위스인법 제17조).
  - 영구적으로 판단능력이 없어서 후견을 받고 있는 경우
  - 영구 판단 불능으로 인해 행동 능력을 제거하는 외국법에 따라 성인 보호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경우

나. 재외선거인 신청방법(재외스위스인법 제19조·재외스위스인 시행령 제7,9,11조)

-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재외스위스인은 권한 있는 대표부(거주국가의 영사관 또는 대사관)를 통해 자신의 선거구 코뮌에 통지하면 선거 코뮌에서 선거인명부에 등록함.
  -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재외스위스인은 서면 또는 직접 권한 있는 대표부에 등록해야 함.
- 재외스위스인 등록 시 아래 사항을 명시해야 함.
  - 성과 이름
  - 생년월일과 출생지
  - 성별
  - 집주소

25) https://www.admin.ch/opc/en/classified-compilation/20133127/index.html (검색일 2019.6.15.)
https://www.admin.ch/opc/en/classified-compilation/20152081/index.html (검색일 2019.6.15.)

- 스위스의 마지막 거주지, 다를 경우 스위스의 마지막 정치적 거주지
- 출신지의 모든 코뮌과 주

-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포기하고 싶은 재외스위스인은 권한 있는 대표부를 통해 자신의 선거 코뮌에 통지해야 함.
-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거나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포기하거나 투표용지 등 자료가 연달아 3번 배달 불능으로 반환되는 경우 선거 코뮌은 해당자를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해야 함.
- 선거 코뮌과 연방외무부는 선거인명부나 재외스위스인명부에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삭제되는 등의 선거권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서로에게 통지해야 함.

※ 해외로 이주하는 스위스인은 출국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거주국의 영사관·대사관의 재외스위스인명부에 등록해야 함.

다. 투표(재외스위스인법 제18조·재외스위스인 시행령 제8,12,13조)

- 재외스위스인은 자신의 마지막 스위스에서의 거주지(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권을 행사함.
- 거주지가 없는 경우 출신지에서 선거권을 행사함. 출신지가 2 이상인 경우 재외스위스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할 때 기록한 출신지에서 선거권을 행사함.
-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 또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전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연방의회는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8조의a에 따라 관심 있는 주·코뮌과 협의하여 재외스위스인의 전자투표 실시를 추진해야 함.

1) 우편투표(재외스위스인법 제18조·재외스위스인 시행령 제12조)

- 선거 코뮌이나 주는 공식 투표용지 등 자료 및 연방의회가 보낸 설명 자료를 해외 주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에게 직접 발송함.

2) 투표소 투표(재외스위스인법 제18조제3항·재외스위스인 시행령 제13조)

- 선거 코뮌에서 직접 투표용지 등 자료를 받아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하고자 하는 재외스위스인은 이를 서면 또는 직접 선거 코뮌에 통보해야 함.
- 선거 코뮌이 최소 투표 6주 전에 그 통보를 받는다면 투표용지 등 자료 발송을 보류

9. 캐나다

- 연방정부에서 실시하는 하원의원선거와 국민투표에 적용

가. 재외선거인 신청대상자(선거법 제220조)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 시민

나. 재외선거인 신청방법

- 캐나다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은 선거일 6일전 오후 6시까지 특별투표신청서를 제출하여 우편투표를 할 수 있음(선거법 제221조).
- 재외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신원증명, 생년월일, 평소거주지 주소, 국외 우편주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선거법 제223조).
- 등록서 및 특별투표신청서에 기재된 캐나다 내의 주소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재 후에는 변경될 수 없음(선거법 제224조).
- 재외선거인명부 삭제(선거법 제226조)
  - 선거관리청장이 정한 기한 내에 구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 자신의 이름을 등록부에서 삭제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람, 사망한 사람 및 사망확인서 또는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첨부되어 삭제할 것을 요구받은 경우와 캐나다에 귀국한 사람, 연락이 두절된 사람은 명부에서 삭제해야 함.

다. 투표방법: 우편투표(선거법 제227~229조)

- 선거관리청장은 선거소집령 발행이후 등록신청서 및 특별투표신청을 승인하는 대로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모든 선거인에게 신고서에 기재된 주소로 특별투표용지와 속봉투 및 겉봉투 각 1부를 우편으로 송부
- 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은 선택한 후보자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적고 투표용지를 속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속봉투를 겉봉투에 넣어 겉봉투의 신청란에 서명하고 봉함.

- 선거인은 봉함된 겉봉투를 우편 또는 다른 방법으로 대사관·영사관·고등위원회, 군부대 또는 선거관리청장이 지정한 장소로 제출
- 투표지는 선거일 오후 6시까지 수도지역 특별투표관리장에게 도착해야 함.

10. 호 주

가. 재외선거인의 신청대상자(연방선거법 제94조)

- 국내 선거구에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나 6년 이내에 다시 국내에 거주하고자하는 경우 재외선거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선거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호주를 떠나기 전 3개월 이내에, 호주를 떠난 후에 재외선거인 신청을 하는 경우 호주를 떠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선거위원은 재외선거인 자격이 있는 선거인임을 선거인명부에 기재해야 하며, 기재된 때로부터 재외선거인 자격이 상실될 때까지 자격 있는 재외선거인으로 간주
- 재외선거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선거위원회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신청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호주에서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 호주를 떠난 후 6년 이내에 다시 호주에 거주하게 된 경우
  - 호주를 떠난 후 6년 이내에 다시 호주에 거주할 의도를 포기한 경우
  - 선거인명부 등재 자격이 중지된 경우
- 재외선거인 신청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호주를 떠나지 않은 자의 경우 재외선거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 호주를 떠난 후 6년 이내에 다시 호주에 거주하게 된 경우 다시 거주하게 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재외선거인의 자격을 상실함.
- 호주를 떠난 날부터 6년 이내의 기간(관련 기간) 안에 또는 관련 기간 만료 후 추후 호주에 다시 거주할 의사가 있는 재외선거인의 경우 선거위원은 관련기간

의 만료일로부터 향후 1년간 재외선거인으로 대우하고 하위 선거구 선거인명부에 명시해야 함.

-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호주에 다시 거주하게 되거나 다시 거주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위원에게 서면으로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함.
- 자격 있는 재외선거인으로 취급되는 동안 투표 또는 우편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총선거가 치러진 경우, 등록자격이 만료된 경우, 호주를 떠난 날로부터 6년이 지난 경우에 별도의 통지·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재외선거인의 자격이 종료됨.
- 재외선거인의 자격이 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자격 있는 재외선거인과 함께 또는 가까이 거주하기 위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자, 호주를 떠난 때에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그 이름이 선거인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재된 적이 없는 자, 18세에 달한 후 6년 이내에 호주에 다시 거주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자 등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때로부터 취소될 때까지 자격 있는 재외선거인으로 취급(연방선거법 제95조).

나. 재외선거인 신청(연방선거법 제94A조)[26]

- 선거인명부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해외 체류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투표등록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등록
-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외선거인 등록서류를 작성해야 함.
- 일시적으로 해외에 있어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투표인은 해외체류고지서류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호주 선거위원회에 제출

  ※ 투표의무 불이행에 의한 벌금을 부과 받지 않음.
- 선거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 등록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재외선거 온라인 신청은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록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스캔하여 인터넷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함.
- 호주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해외공관을 통해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

26) 호주선거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aec.gov.au/Enrolling_to_vote/overseas/index.htm (검색일 2019.7.31.)

다. 재외선거 투표

투표방법은 공관에서 직접 투표하거나 우편투표로 할 수 있음.

1) 투표소 투표[27)]

- 재외선거 투표소는 재외공관에 설치
- 선거위원회에서는 연방선거의 경우 선거관련 준비물 등을 공관에 제공(주정부 선거는 주정부 선거위원회에서 별도로 준비)

2) 우편투표

- 외국에서 근무 중인 군인, 호주연방경찰, 공무원 및 자격 있는 재외선거인인 경우의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184A조제2항제i~k호)
- 우편투표 신청은 부선거관리관(Assistant Returning Officer) 또는 선거위원에게 해야 함(연방선거법 제184조제3항).
- 우편투표를 하고자 하는 선거인은 신청 시 기재한 거주지 주소로 제공되는 우편투표용지에 투표 후 봉함하여 공관으로 송부하면 공관을 통해 선거일 투표마감 전까지 호주 선거위원회로 전달(연방선거법 제194조제2항제c호)

27) https://www.aec.gov.au/Voting/Ways_to_vote/overseas.htm (검색일 2019.8.28.)

<표 10-2> OECD국가의 재외선거인 자격요건기간

국가명	기간	근거규정
영 국	15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제141조
독 일	25년	연방선거법 제12조제2항
캐나다	5년	선거법 제222조제1항제a호
호 주	6년	연방선거법 제94조
덴마크	4년	선거법 제16조제2항
아이슬란드	8년	선거법 제1조제a항
이탈리아	최소 3개월	재외국민선거법 제4조의2
노르웨이	10년	선거법 제2-7조제3항
뉴질랜드	3년	선거법 제80조제1항

※ 미국, 프랑스, 일본,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칠레,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노르웨이,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는 기간 제한 없음.

<표 10-3> OECD국가의 재외선거

국가명	선거권 부여요건	투표 방법	근거규정	비고
영 국	• 자신의 국내 종전 거주지인 선거구에 등록된 자 • 선거일 11일 전 17시까지 부재자신고인명부 등록신청 또는 해외투표자로 등록된 자 • 공무로 국외에 거주하는 군인, 대사관, 영사관 직원 및 이들의 배우자 ※ 1985년 국민대표법에 의하여 영국을 떠난 지 5년 이내인 해외거주 영국 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고, 1989년에는 20년 이내의 자로 그 기간이 연장되었다가 2000년 15년으로 축소됨. 영국을 떠날 때 연소자로서 등록되지 못한 자에게까지 선거권이 확대됨.	• 우편투표, 대리투표를 할 수 있음 ※ 공무근무 투표자로 등록된 자가 대리투표인을 지정한 경우 우편투표 불가 ※ 우편투표용지는 선거일 10일 전에 발송	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2 1985년 국민대표법 1,2조	• 해외 근무 중인 군인, 외교관과 같은 공무원, 영국문화협회 직원 등과 그의 배우자는 기간의 제한 없이 투표권을 가짐.
미 국	• 외국에 거주하는 미합중국 시민으로서 18세 이상의 자, 선거 전 최소 30일 동안 해당선거구에 거주한 자 - 합중국출국직전까지는 그 주의 주소를 두고 있는 자(해당 선거일 30일 전 이전까지 신청서 제출) ※ 연방선거에 한해 재외투표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 주에서도 인정하고 있음.	• 우편투표의 방법으로 투표	군인 및 재외부재자 투표법 제20310조	• 1988.1.1「군인 및 재외부재자투표법」에 의해 해외거주일반인에게도 부재자 투표를 허용함.
프랑스	• 프랑스 국민으로서 프랑스 영사관내 등록되어 있는 자, 군인은 신청에 의하여 시·읍·면에 등록할 수 있음(해상생활하는 선원 및 그 가족 포함).	• 해상생활하는 선원, 해외거주자는 대리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음. ※ 대통령선거의 경우 공관투표 허용,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국가에 인접된 도내에 설치된 투표소	선거법 제172조	• 대리투표권 행사는 선거인 1명이 선거인 5명까지 대리투표가 가능 • 위임장 작성
독 일	• 18세 이상 독일시민으로서 일정 공무원만 허용하였으나 1985년 법개정으로 해외거주 독일국민도 선거권을 갖게 됨. • 출국전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국내주소, 거소를 갖고 출국한 후 2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우편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우편투표를 위한 선서에 갈음하는 보증'에 서명한 다음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발송(우편요금은 무료),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어야 함.	연방선거법 제1266조 연방선거법 시행령 제16~18조	
일 본	• 만 18세 이상 일본국민으로서 그 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영사관 관할구역 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주소를 가진 자	• 재외공관투표, 우편투표, 귀국투표 등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음(투표시 여권, 재외선거인증 필요) • 재외공관투표는 선거공시일부터 선거일 5일까지 투표함.	공직선거법 제4장의2	

국가명	선거권 부여요건	투표 방법	근거규정	비고
스페인	• 만 18세 이상의 스페인시민으로서 국내외 인구조사(CER 및 CERA)에 가입한 자	• 우편투표 또는 재외공관 투표	선거법 제36,72조	
스웨덴	• 18세 이상 스웨덴 국민(과거 스웨덴에 주민으로 등록된 자 포함.) • 특별선거인명부에 등재(국회의원 선거만)되어야 하며, 신청시기는 매년 6월 1일까지 - 신청서에는 스웨덴 국민임을 선서하는 취지의 서류 첨부	• 해외공관 또는 외항선에서 투표 - 선거일 24일 전부터 투표가 가능하며 선거일 전일 오전 12시까지 중앙선거청에 도달되어야 함. - 스웨덴 외항선으로서 선거일 55일 전부터 승무원, 승객은 투표할 수 있음.	선거법 제5절 제2,4조, 제10절 2,5,6조	• 투표시는 여권, 투표증, 선원수첩 등 신분확인 가능서류가 필요
스위스	• 스위스에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외국에 있는 스위스 대표부에 등록된 스위스인(18세 이상)	• 우편투표로 항공우편 통해 발송 (유럽에서는 육상으로도 발송)	재외스위스인법 제3조	
캐나다	• 5년 이내의 해외체류자(외교관, 군인, 정부의 다른 해외요원은 체류기간 제한 없음)	• 일시적으로 캐나다 외 지역에 거주자 중 신청자는 우편에 의한 투표 • 신청은 선거일 6일 전 오후 6시까지 접수(등록 및 특별투표신청서) • 선거일직전 금요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어야 함.	선거법 제202조	
호 주	• 일정요건을 충족시키는 해외거주자	• 우편투표 • 신청은 선거시행영장이 발부된 후 또는 예정선거일이 공포된 후	연방선거법 제194조	
오스트리아	• 영구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거나 일시 체류하는 선거권자	• 우편투표 • 선거일 오후 5시까지 도달되어야 함.	헌법 제26조제6항 하원선거법 제60조	
벨기에	• 외교관직이나 해외영사관이 보관하고 있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있는 18세 이상의 벨기에 국민 • 해외 공관이나 영사관의 재외국민 등록부에 등록되고 국내법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 출국 전 국내 등록부에 등록된 자 - 또는 벨기에에서 태어난 자 - 또는 부, 모 중 1인이 국내 등록부에 등록된 자 - 또는 (3등급??) 친척이 국내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거나 선조가 벨기에에서 태어나고 국내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	• 벨기에 영토에 있는 투표소에서 대리투표(본인이 직접투표가능) • 대사관, 영사관에서 투표(대리투표 가능) • 우편투표 • 벨기에 영토 또는 본인이 등록된 해외 공관이나 영사관에서 직접 또는 대리 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음.	선거법 제180조	
체 코	• 특별선거인명부에 등록된 국외에 체류 중인 체코 시민	• 재외공관 투표	선거법 제6조제5항, 제3조제2항, 제27조	• 2002년부터 재외투표 허용[28]

국가명	선거권 부여요건	투표 방법	근거규정	비고
칠 레	•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국외에 체류 중인 칠레 시민	• 재외공관 투표	헌법 제13조 선거법 제205,206조	• 2015년부터 재외투표 허용, 2017년 대선에서 처음 실시 • 대통령선거, 대통령 예비선거, 국민투표만 실시
덴마크	• 해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근로자, 선원 등 • 국제기구, 구호단체, 교육, 보건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자 - 위 사람들의 법적 배우자 또는 출국 전에 공동주소지 등록을 마친 동거인	• 재외공관 투표 • 외항선 선원, 해상 플랜트 근로자 등은 해당 선박에서 투표	헌법 제29조제1,2항 선거법 제1,2,16조, 제57조제1,2항, 제58조	
에스토니아	•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자	• 전자투표(인터넷투표, 사전투표) • 우편투표-신청은 30일 이전까지 • 재외공관 투표, 선상투표 • 귀국투표 가능	선거법 제49,50,52, 54,56조	
핀란드	• 국외에 거주하는 모든 핀란드 국민(1972년 모든 국민에게 부여)	• 재외공관투표(사전투표기간) • 우편투표-선거일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 선상투표-선거일 18일 전부터 8일 이전까지 투표	선거법 제46,66a조	• 우편투표는 2019년 의회선거에서 최초 실시
그리스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스 시민	-	헌법 제51조	• 선거권 행사를 위한 선거법상의 구체적인 법령 없음.
헝가리	• 선거일 25일 전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록을 신청한 자	• 재외공관투표-선거일 당일 현지 시각 기준 6시~19시 • 우편투표-선거일 24시간 이전까지 선거위원회로 도달해야 함	선거법 제84,259,266, 269,279조	
아이슬란드	• 만 18세 이상의 아이슬란드 국민이며, 8년 이내의 해외 거주자(선거일 전 12월 1일부터 계산했을 때)	• 대사관, 영사관, 공관 등에서 투표 • 외항선박의 승무원, 승객은 선상투표	선거법 제1조제a항, 59,60조	
아일랜드	• 해외에서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과 그 배우자	• 우편투표	선거법(1992) 제12조제1항	-
이스라엘	• 해외에서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 군인, 유대기구[29] 종사자, 이스라엘 국적의 선박에 승선중인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자 - 위 사람들의 배우자, 2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녀	• 재외공관, 대표부 투표 - 외교부는 선거일 53일 전까지 선거위원회에 재외선거인명부 제출 - 재외공관, 대표부 투표는 선거일 12일 전에 실시 • 선상투표 - 내무부는 선거소집일로부터 선거일 53일 전까지 선거위원회에 선박 목록 송부 - 선거위원회는 선거소집일로부터	선거법 제96,97,116조	-

국가명	선거권 부여요건	투표 방법	근거규정	비고
		선거일 42일 전까지 선박 목록 확정		
이탈리아	• 업무, 학업, 치료 등의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이탈리아 시민	• 우편투표	재외국민선거법 제4조의2 제12조 제2,3,5항	
라트비아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라트비아 시민	• 재외공관 투표 • 우편투표 - 신청은 선거일 5개월 전부터 시작하여 3주 전 마감 - 의회 해산으로 인한 우편투표 시 선거공표일 1주일 이후로부터 선거일 2주 전까지 • 선상투표	헌법 제48조 선거법 제43조 제3,4,5항 제44,45조	• 재외선거인명부는 수도 선거구 선거인명부에 통합됨.
리투아니아	• 만 18세 이상의 리투아니아 국민으로서 선거일 최소 15일 전 외교관이 선거위원회에 제출한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	• 우편투표 또는 재외공관에서 투표	선거법 제31,33,70조	
룩셈부르크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룩셈부르크 시민	• 우편투표 - 신청은 선거일 10주 전부터 시작하여 30일 전 마감 - 신청자는 선거일 오후 2시까지 투표용지를 본인이 등록된 선거구 투표소로 송부[30]	선거법 제1,168, 170,177조	-
멕시코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멕시코 시민	• 우편투표 또는 대사관, 대표부 등에 설치된 투표소에 인편으로 전달	연방선거법 제329조 제1,2,3항	• 대통령, 상원의원, 주지사, 연방기관 및 연방직할구의 장(長) 선거에만 적용됨.
노르웨이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노르웨이 시민	• 재외공관 투표	선거법 제2-4,2-7, 8-1,8-3조 의회및지방선거 관련 총리령 제28조	• 재외공관 투표가 불가능할 경우 본인이 등록된 선거구로 우편투표 발송 가능[31]
네덜란드	•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자 • 선거인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우편투표 신청은 선거일 28일 전까지 • 대리투표 신청은 선거일 6주 전까지 신청 • 귀국투표 가능 신청은 선거일 6주 전까지	선거법 제D2조 제L9조, 제K7조, 제M1조, 제M3조	• 재외선거인 등록은 선거일 6주 전까지
뉴질랜드[32]	• 최근 3년 이내에 해외에 체류한 시민권자 • 해외거주 중인 공무원, 외교관, 무역대표, 군인과 해당 가족	• 재외공관투표 • 선거일 17일 이전부터 투표용지를 인터넷으로 다운 받아 작성 후 온라인으로 업로드하거나 직접전달,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	선거법 제80조 선거규칙 제43~52조	

국가명	선거권 부여요건	투표 방법	근거규정	비고
폴란드	• 선거일 3일 전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록을 신청한 선거권자	• 재외투표소 투표– 선거일 현지시각 7시~21시 사이에 실시	선거법 제14,35,39조	
포르투갈	• 공사 해외 주재원 • 국가대표로 선발된 운동선수 • 고등교육기관 혹은 주관부서가 인정하는 연구 기관의 학생, 연구원, 교수 등 • 해외에서 치료 중인 환자 • 위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자	• 재외공관 투표(사전투표) - 투표는 선거일 12일에서 10일전까지 실시 • 우편 투표	선거법 제79b조~ 제79g조	
슬로바키아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슬로바키아 시민 - 국내 영구거주지가 없는 국민은 내무부 특별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야 함.	• 우편투표 - 신청서는 투표 50일 전까지 내무부에 송부되어야 함. - 신청자는 선거일 1일 전까지 투표용지를 내무부로 송부	선거법 제45조, 제59조 제1,8항	-
슬로베니아	• 만 18세 이상의 슬로베니아 시민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위원회에 신고한 재외거주자	• 영사관에서 투표 • 우편투표	선거법 제82조	
터 키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터키 시민	• 재외공관 투표(선거일 45일 전부터 3일 전까지) • 우편투표 - 재외선거위원회는 선거일 75일 전까지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송부함. -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선거일 17시까지 재외선거위원회에 송부해야 함.	헌법 제67조 선거법 제94B,94C조	-

28) The first direct Presidential Elections in Czech Republic took place in 2013, and external voting was allowed. Data has been updated in 2017. https://www.idea.int/data-tools/country-view/91/52 (검색일 2019.7.17.)

29) 세계시온주의자기구(World Zionist Organization), 유대국가펀드(the Jewish National Fund), 케렌 하예소드(keren Hayesod)

30) Ballot envelopes must arrive at the polling station at the latest before 2 PM on election day. https://elections.public.lu/en/systeme-electoral/legislatives-mode-emploi/vote-correspondance.html (검색일 2019.9.2.)

31) 노르웨이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Voting abroad(재외투표)' https://www.valg.no/en/municipal-and-county-council-elections-2019/voting-in-advance/voting-abroad/ (검색일 2019.10.16.)

32) New Zealand Electoral Commission https://vote.nz/how-to-vote/voting-from-overseas/ (검색일 2019.9.2.)

<표 10-4> 해외선거구 도입 국가

국가명	해외의석수	내용
알제리	8	총의석 382석 중 8석을 배정(대부분 프랑스에 거주)
앙골라	3	총의석 220석 중 3석을 배정하기로 입법했으나 아직 재외선거 미실시
카페 베르데	6	총의석 72석 중 아메리카, 아프리카에 2석, 유럽에 2석, 그 외 지역에 2석 배정
콜롬비아	1	총의석 166석 중 1석을 배정
크로아티아	6	총의석 152석 중 최대 6석을 배정
도미니카공화국	7	총의석 183석 중 2석은 캐리비안과 라틴아메리카, 2석은 유럽, 3석은 캐나다와 미국에 배정
에콰도르	6	총의석 130석 중 6석 배정
프랑스	11	총의석 중 11개 선거구에 11석을 배정 ※ 1구역(캐나다, 미국) 2구역(남미) 3·4·5·6·7·8구역(유럽), 9·10(아프리카), 11구역(아시아, 오세아니아)
이탈리아	12	상원 총의석 315석 중 6석을 배정 하원 총의석 630석 중 12석을 배정 ※ 유럽(상원 2, 하원 6), 남미(상원 2, 하원 3), 북·중미(상원 1, 하원 2), 아프리카/아시아/오세아니아/남극(상원 1, 하원 1)
마케도니아	3	총의석 123석 중 유럽/아프리카 1석, 아메리카 1석, 아시아/오세아니아에 1석씩 배정
모잠비크	2	총의석 250석 중 아프리카에 1석, 그 외 지역에 1석 배정
파나마	6	총의석 130석 중 6석을 배정하기로 입법했으나 아직 재외선거 미실시
포르투갈	4	총의석 230석 중 유럽에 2석, 그 외 지역에 2석 배정
튀니지	18	총의석 217석 중 18석을 배정

※ 해외선거구는 재외선거권자의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대표를 뽑을 수 있도록 해외에 선거구를 정해 재외국민대표를 선출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출처: IDEA. 'Voting from abroad.'
http://en.wikipedia.org/wiki/Overseas_constituency (검색일 2019.10.16.)
http://www.ipu.org/parline-e/parlinesearch.asp (검색일 2019.10.16.)

[참고자료 10-1] 주요 국가의 선상투표

1. 영 국

가. 법적근거

- 「1983년 국민대표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제6조
  - 선원이라는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영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투표권 행사 가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Consolidation) Act 1992)」 제230조
  - 선거기간 바다에 체류하는 선원들에게 투표용지가 배송될 수 있으며, 선원들은 선상 혹은 배가 정박한 항구에서 투표할 수 있음.
- 「노동조합개혁 및 고용권법(Trade Union Reform and Employment Rights Act 1993)」 제17~20조
  - 선거 당시 체류 장소로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상 혹은 배가 정박한 장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고용관계법(Employment Relations Act 1999)」 부칙 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과 동일

나. 선거인 등록 및 투표(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2)

- 2014년 이후 개별선거등록제(Individual Electoral Registration: IER) 시행으로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인등록을 해야 함.
- 거주불명등록자(고정된 주소가 없더라도 투표권 행사를 위한 선거등록이 가능한 선거권자)로 선원을 명시하고 있음.[33]

33)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노숙자, 집시 및 유목민, 배 또는 이동식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자, 구류처분을 받은 자 등이 해당 범주에 포함됨.
https://www.yourvotematters.co.uk/can-i-vote/with-no-fixed-address#merchantseaman (검색일 2019.5.15.)

- 선거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선원은 본래 주소를 기입하거나, 혹은 바다에 체류하지 않는 기간 머무는 호스텔 또는 기타 숙소의 주소를 기입할 수 있음.

- 선거인등록은 온·오프라인 형태로 가능
  - 우편·대리투표를 원하는 경우 선거인 등록신청서에 관련 사항을 기입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신청서를 별도로 발급(또는 다운로드)받아 신청 가능
- 선거인은 우편투표 또는 대리투표를 할 수 있음.
  - 우편투표의 경우 특정 선거 혹은 기간 선택 가능
  - 대리투표의 경우 만 18세 이상(스코틀랜드는 만 16세 이상)으로 선거인 등록 절차를 마친 배우자, 부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인 경우에 한해 2명까지 가능

※ 우편투표와 대리투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9장 제2,4절 영국편, p.673,704 참조

2. 프랑스

가. 법적근거

- 해상에서 생활하는 선원·선장 또는 봉급생활자와 그 가족은 거소와 관계없이 시행중인 이 법률에 규정된 기타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선거인명부에 등록될 수 있음(선거법 제15조).
- 프랑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선거제도 이외에도 국내의 일반 선거권자들과 마찬가지로 '대리투표'를 통해 투표할 수도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 법의 제정동기가 선원 및 군인에 대한 투표권 보장차원에 있었음.

나. 투 표

- 선원의 대리투표 허용(선거법 제71~78조, 선거법시행령 제72-2조)

※ 제9장 제4절 대리투표 프랑스편 p.706 참조

3. 독 일

가. 법적근거

- 연방선거법 제12조 제4항 제1,2호: 선원의 선거권
- 연방선거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3호: 선원의 선거인명부 등록에 관한 사항
- 연방선거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2,3호, 제2항제5호: 선원의 선거인명부 관할에 관한 사항

나. 선거권 및 선거인명부 관리

- 선원의 경우 선거권의 인정여부의 주요한 기준이 되는 주거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 독일 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
  - 해당 선거구의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며,
  - 선거일에 거주지에서 투표가 불가한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선거구에 우편투표를 신청
  - 선원의 신청서류를 받는 주소는 출항예정인 항구 또는 선박회사로 하고,
  - 신청서류 수신일은 사전에 공지함.
- 독일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의 경우
  - 해당 선박이 거주지로 인정되며(연방선거법 제12조제4항제1호),
  - 이러한 선박의 선장 및 고용, 급료 또는 교육관계를 근거로 한 선원은 직권으로 선거인명부에 등록(연방선거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 선거인명부 등록의 관할권은 선주의 소재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있음(연방선거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 독일 내륙을 운항하는 선박대장에 등록된 선박의 경우
  - 해당 선박이 선원의 거주지로 인정되고(연방선거법 제12조제4항제2호),
  - 해당 선박이 주거지로 인정되는 모든 선거인은 직권으로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며(연방선거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 선거인명부 등록의 관할권은 내륙선박의 선적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있음

(연방선거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 독일 내 거주지 등록이 되지는 않았으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독일국적의 선박에 체류하고 있는 독일국적의 선원의 경우 선박회사의 주소지 관할 기관에 우편투표서류를 신청함.
- 독일국적의 선박체류요건으로 투표권을 부여받는 선원의 경우
  - 해당 독일선박의 명칭, 선박회사의 명칭 및 주소를 우편투표 신청서에 기입하여야 하며, 독일 선박회사의 주소지 관할 선거인명부에 등록됨.
- 선거구로부터 이주한 이후 외국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및 독일의 선박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내륙 선박의 선원은 이주 전 최종적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인명부의 등록 관할권을 가짐(연방선거법시행령 제17조제2항제5호).
  - 연방국기를 게양할 권한이 있었던 해양선박으로부터 해고된 이후 외국국기를 게양한 선박으로 항해하는 선원은 해고 이전 독일 국적 선박의 선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선거인명부의 등록관할권이 있음.
  - 최종적으로 연방공화국 내의 선박대장에 등재되었던 내륙선박으로 항해하였으며 이후에 연방공화국 내의 선박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내륙선박이나 외국국기를 게양한 해양선박으로 항해하는 내륙선박의 선원에 대해서는 선박대장에 등록된 내륙선박의 선적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선거인명부의 등록관할권이 있음.

다. 투 표

- 선원을 위한 별도의 투표방식은 독일에서 존재하지 않음.
- 다만, 독일 내에 주소지가 있는 독일인 선원의 경우 선거일 당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거나, 선거일에 투표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일반적인 독일인들과 마찬가지로 우편투표를 해야 함연방선거법 제12조제2항제3호.).
- 독일 내 거주지가 없고 외국국적의 선박에 체류하고 있는 독일인 선원의 경우(연방선거법시행령 제17조제2항제5호).
  - 출국 전 3개월간 계속하여 거주하였거나 독일국적의 선박에 체류한 적이 있

으면 투표권이 부여됨.

- 우편투표신청은 선거인명부의 등록 관할권이 있는 독일 내 최종거주지 자치단체로 함.

4. 일 본

가. 법적근거

- 공직선거법 제49조제7항, 공직선거법시행령 제5장
- 팩시밀리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송신하는 방법에 의한 부재자투표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1999년 3월 13일에, 관계정령이 11월 12일에 각각 공포되어 2000년 6월 25일에 실시된 제42회 중의원의원총선거부터 선상투표가 실시됨.[34)]

  ※ 선상투표는 원양구역을 항해중인 선원에 대하여 기존의 부재자투표제도는 투표용지 송부가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의 부재자투표의 특례로서 팩시밀리를 사용해 투표하는 것임.

  - 선상투표 대상 선거: 중의원의원 총선거 및 참의원의원 통상선거
  - 선상투표 대상 선박: 선박안전법상 선박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선박(이하 “지정선박”이라 함)

나. 투표대상

- 대상자

  선박안전법의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박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선박(지정선박)에 승선하여 본국 이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선원 중 선거당일 직무 또는 업무에 종사할 것이 예상되는 자

  ※ 선상투표를 하려는 선원은 미리 명부등록지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인명부등록증명서

34) 총무성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senkyo/senkyo_s/news/touhyou/youjou/index.html (검색일 2019.6.14.)

를 교부받아야 함.

- 투표기간: 선거일 공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선원의 부재자투표 특례가 인정되는 선박(공직선거법시행규칙 제17조의2)
  - 선박안전법에서 말하는 근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것
  - 어업법상 지정어업을 정하는 정령에서 규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
  - 승인어업 등의 단속에 관한 정령에서 규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총톤수 30톤 이상에 한함.)
  - 어업법시행규칙의 허가를 받아 고래류의 자원조사에 종사하는 선박
  - 어선특수규칙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 중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것
  - 자위대법 규정에 의해 자위대가 실시하는 남극지역에서의 조사 협력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
- 투표절차(공직선거법시행령 제59조의6)
  - 지정선박에 승선하여 항해하는 선장 또는 대리인은 출항 전에 해당 선원의 선거인명부등록증명서를 제시하여 투표송신용지 및 송신통지용 봉투를 청구
  - 청구를 받은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송신용지와 송신용지용봉투를 보관봉투에 넣어 봉하여 교부
  - 선장은 선원들이 선거인명부등록증명서를 제시하게 하고 투표송신용지 및 투표송신용지용 봉투를 선원에게 교부한 사실을 기입
  - 선원은 선장이 관리하는 장소에서 투표송신용지의 필요사항기재부분에 성명·주소, 선거인명부 등록증명서 교부연월일 및 선원수첩번호를, 투표기재부분에 해당 선거의 후보자 1명의 이름을 기재하여 이를 팩시밀리로 지정 시정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송신

    ※ 지정 선거관리위원회: 지정선박으로부터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용지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선거관리위원회. 선박선적, 지역균형, 선원수 등을 고려하여 전국 54개소의 지정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해짐.[35]

35) http://www.jsu.or.jp/member/support/youjou.html (검색일 2019.6.14.)

<그림 10-1> 일본 선상투표 흐름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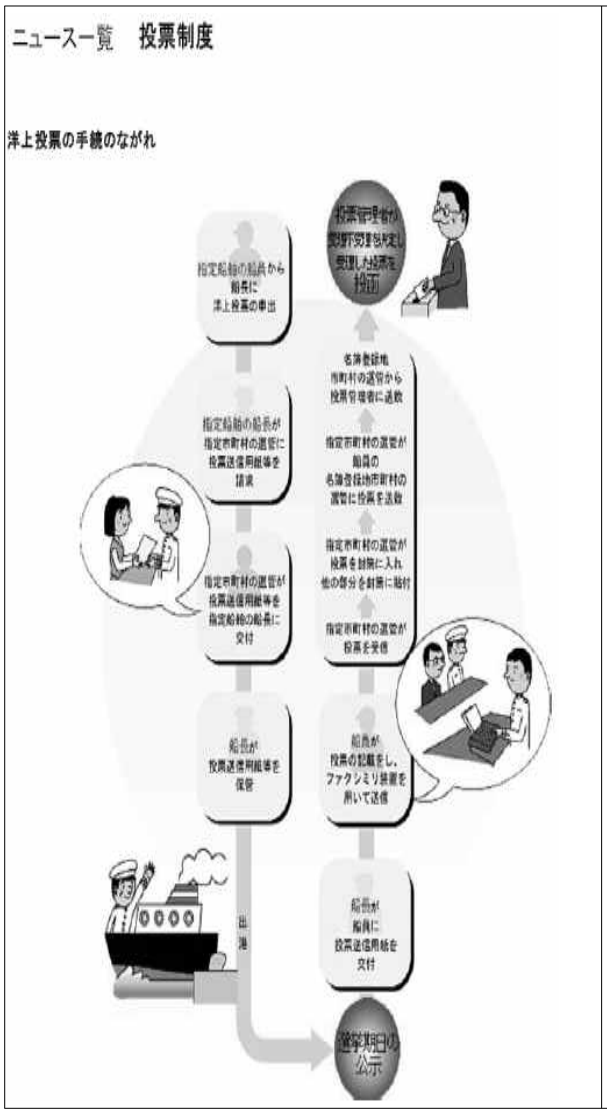

- 선원이 선장에게 선상투표를 신청
  ※ 선거인명부등록증명서 첨부
- 선장이 지정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송신용지등을 청구
  ※ 선거기일 공시 후에도 가능
- 지정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가 선장에게 투표송신용지등을 교부
- 선장이 투표송신용지 등을 보관
- 출항 이후 선거기일 공시 후 선원이 선장에게 투표송신용지등을 청구
- 선장이 선원에게 투표송신용지등을 교부
- 선원이 투표를 하고 팩시밀리장치를 이용하여 송신
- 선원이 팩시밀리송신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을 확인 후 투표송신용지를 떼어냄.
- 선원이 투표기재부분을 봉투에 넣고 필요사항기재부분을 봉투에 붙인 후 선장에게 제출
- 귀항 후 선장이 지정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에 봉투를 송부
- 지정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등록지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에 봉투를 송부

36) 총무성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491964.pdf (검색일 2019.6.14.)

5. 스페인

가. 법적 근거[선거법 제74조, 선거 절차 보완 규정 칙령(Real Decretol) 제9조]

- 중앙선거위원회의 사전 보고를 통해, 정부는 스페인 해군함, 상선 또는 어선, 국군함에서 근무하는 이들과 그 외 해외 주둔 정부군을 위한 우편투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며, 선거소집일과 선거일 사이에 해외에 일시 체류하는 국민들의 우편선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 선거소집 날짜로부터 선거일까지 승선 상태에 있으면서 국내 영토 내에 알려진 항구를 거쳐 갈 예정인 스페인 국적 군함, 상선 또는 어선의 승선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음.

나. 투표 절차

- 선거인은 무선전신, 우편, 팩시밀리를 통해 자신이 등록되어 있는 지역의 선거인명부관리국 도 파견지부에 선거인명부 등록신청을 함.
-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거주지, 주소지, 탑승선명, 도착예정 항구명 및 구체적 날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 다른 선박을 통해 선거관련 서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서류를 보낼 지역의 조선소, 선박 대리점 또는 배를 무선전신을 통해 알려주어야 함.
- 해당 선거인명부관리국 지방대표는 당사자의 신청이 확인되는 즉시 신청서를 받은 경우와 동일한 모든 효력을 고려하여 관련서류를 항구 또는 선거인이 지정한 조선소, 선박대리점 또는 배로 송부절차를 게시
- 투표용지 등 관련 서류를 선거인이 받아 투표한 후 선박이 정박해 있는 모든 항구에서 해당 지역 투표소에 긴급등기우편으로 회송함.

6. 호 주

- 선상투표에 대해 법으로 따로 규정이 없어 선원이 선거기간에 투표소에 갈 수 없다면 다른 선거인들처럼 연방선거법 제183조와 제200A조에 따라 우편투표(postal voting)나 사전투표(pre-poll voting)를 신청해 투표할 수 있음.
  - 선원이나 철도공사인부와 같이 해당 거주지 선거구와 떨어진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1890년대에 처음으로 남호주에서 우편투표를 도입하였음.[37]
- 선원이 선거기간 동안 바다에 있는 경우[38]
  - 선거인등록 되어 있는 선거구에 있지 않고, 투표소로부터 8km 이상 떨어져있으며 투표하기 위해서 일하는 장소를 벗어날 수 없는 경우 연방선거법 제200BA조제1A항에 따라 정해진 가능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선언투표(pre-poll declaration votes)를 할 수 있음.
  - 선원이 약 3주간의 사전선거 기간에 선거인등록을 한 선거구에 있다면 사전투표소에서 사전일반투표(pre-poll ordinary votes)를 신청해 투표할 수 있음.

---

37) 호주 의회홈페이지. 2001. 'Inventing the Nation Through the Ballot box(투표권에 대한 연구).' 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Senate/Powers_practice_n_procedures/pops/~/link.aspx?_id=8414562538CC4736839D51E69A159EB0&_z=z (검색일 2019.6.4.)

38) 호주 의회홈페이지. 2019. 'Trends in early voting in federal election(연방선거에서 사전투표 경향).' 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FlagPost/2019/May/Trends_in_early_voting_in_federal_elections (검색일 2019.6.4.)

제11장

전자투표

제11장
전자투표

- 현대 정보통신기술(ICTs)의 발달은 정치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선거에서도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IT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투표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사례가 나오게 되었음.
- electronic voting 또는 e-voting이라 불리는 전자투표는 기존의 투표용지에 표시를 해 투표하고 수작업으로 개표하는 방식에 전자적 요소를 가한 것으로 펀치카드, 광학 스캔, 터치스크린으로 투표·개표하는 것 외에 투표결과의 전송방식을 전화, 컴퓨터, 인터넷 등으로 하는 방식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전 세계국가 중 약 34개[1] 국가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브라질과 인도는 2002년과 2004년 전국적으로 모든 선거를 전자투표로 실시하고 있고, 에스토니아는 2005년 총선에서 전국 규모 최초로 인터넷 투표를 실시했다고 알려짐.

1. 영 국

가. 도입배경[2]

- 2000년대 초반 투표율 하락 방지와 선거행정 현대화 등을 이유로 전자투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2002~2007년 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전화·인터넷·키오스크(단말기) 등을 활용한 시범 전자투표를 실시함.
  - 그러나 전자투표 실시가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이라는 예상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3]

---

1)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방글라데시, 벨기에, 부탄, 볼리비아,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콩고민주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피지, 프랑스, 온두라스, 인도, 이란, 이라크, 일본, 키르기스스탄, 몽골, 나미비아, 뉴질랜드,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필리핀, 러시아,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미국, 베네수엘라

2)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Response to Scottish Government’s Consultation on Electoral Reform(선거개선에 관한 스코틀랜드 정부 검토에 대한 응답.’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media/944 (검색일 2019.5.11.)

3) Mark Pack. 2011.1.25. ‘E-voting: Why it was abandoned in the UK. Liberal Democrat Voice.’

- 오히려 시범 전자투표를 중단한 2008년 이후 진행된 총선을 포함한 전국 단위 선거에서 투표율이 상승세를 보임.[4)]

- 선거위원회는 2007년 시범 전자투표 실시 결과(2000~2007년)를 토대로 현 단계에서 전자투표의 전면적 실시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음.[5)]
  - 2014년 정부에 관련기술 활용이 선거 투명성과 선거권자 신뢰, 비용 효율성 등을 어떤 방식으로 증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권고함.[6)]
- 하원 "헌법 개선 위원회(The Political and Constitutional Reform Committee)"는 2014년 11월 보고서에서 전자투표 시행상의 우려가 있지만 해당 제도가 정치참여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위원회는 2020년 총선까지 모든 선거인이 전자투표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함.[7)]
- 전자투표가 지닌 강점에 대한 목소리는 중앙 정치권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투표 도입 가능성은 열려있으나[8)] 결국 현 시점에서 관건은 선거인 정보보호, 선거결과 조작 가능성 등을

---

https://www.libdemvoice.org/evoting-why-it-was-abandoned-in-the-uk-22488.html (검색일 2019.5.17.)
BBC. 2007.7.5. E-voters 'not boosting turnout'
http://news.bbc.co.uk/1/hi/uk_politics/6268734.stm (검색일 2019.5.17.)

4) 총선 투표율은 2005년 61.4%, 2010년 65.1%, 2015년 66.1%, 2017년 68.7%로 꾸준히 오름. 2010년대 투표율 상승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전자투표 실행 유무와는 별개로 2014년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2016년 브렉시트(Brexit) 투표 등 중대 사안 발생에 따른 정치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됨.
John Curtis and Ian Simpson. 2018.3. 'Why turnout increased in the 2017 general election and the increase did not help Labour.' NatCen Social Research.
https://www.bl.uk/collection-items/why-turnout-increased-in-the-2017-general-election (검색일 2019.5.17.)

5) BBC. 2007.8.2. 'Halt e-voting, says election body.'
http://news.bbc.co.uk/2/hi/uk_news/politics/6926625.stm (검색일 2019.5.17.)

6) 선거위원회. 2014.10.1. 'Speaker's Commission on digital democracy - Inquiry into electoral voting: Electoral Commission response.'
https://www.parliament.uk/documents/speaker/digital-democracy/electoralcommission.pdf (검색일 2019.5.17)

7) 의회 홈페이지. 'Proposals to improve voter turnout(투표율 향상하기 위한 제안).'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1415/cmselect/cmpolcon/232/23209.htm#a46 (검색일 2019.5.17)

8) Digital Democracy Commission. 2015.1.26. 'Open up! digital democracy.' Report of the Speaker's Commission
https://www.parliament.uk/business/commons/the-speaker/speakers-commission-on-digital-democracy/ddc-news/digital-democracy-commission-report-publication/ (검색일 2019.5.17.)
Alex Hern. 2015.2.26.'Should Britain introduce electronic voting?'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5/feb/26/should-britain-introduce-electronic-voting (검색일 2019.5.17.)
Alexander J Martin. 2018.1.30. 'Welsh Assembly announces plans to introduce e-voting.' Sky News.

둘러싼 보안문제 해결에 있음.

나. 법적근거

- 2000년 국민대표법 제10조, 제11조
  -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행정관리 담당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무장관(Secretary of State for Justice)에게 일반투표방식 외에 전자투표 등을 포함한 시범투표제도(pilot schemes)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9)]

다. 실시사례[10)]

- 2000년 5월 지방선거에서 3개 지방정부(Bury, Salford, Stratford-on-Avon)에서 터치스크린 방식 전자투표를 시행했으며, 5개 지방정부(앞의 지역 외 Broxbourne, Three Rivers)에서 전자개표를 실시
- 2001년 2월 Milton Keynes, Bristolm Croydon 지방에서 지방주민세 인상안에 관한 주민투표에 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투표를 시행하였음.
- 2002년 5월 전체 174개 지방정부 중 41개 지방정부에서 12개 지방정부는 전자투표, 8개 지방정부는 전자개표 17개, 지방정부는 완전우편투표를 실시했고, 전자투표 실시 지방정부 중 6개 선거구에서 터치스크린 방식을, 5개 선거구에서 인터넷을, 3개 선거구에서는 전화, 2개 선거구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
- 2003년에는 17개 지방정부에서 전자투표를 시행하였는데 2002년과 비교해 인터넷과 전화투표가 보다 확대되었고, 디지털 TV투표가 새롭게 도입되었음.
- 2007년 12개 지방정부에서 전자투표, 전자개표를 실시하였음.
- 2019년 5월 지방선거에서 Gateshead 지역이 워릭대학(Warwick University) 연구팀과 협력해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전자투표 시범사례에 참여[11)]

---

https://news.sky.com/story/welsh-assembly-announces-plans-to-introduce-e-voting-11229714 (검색일 2019.5.17.)

9)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2007.8. ‘Electoral pilot scheme evaluation: Shrewsbury & Atcham Borough Council.’ p.5. file:///C:/Users/user/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NN9M9D7S/Shrewsburystatutoryevaluationreport_27212-20106__E__N__S__W__.pdf (검색일 2019.5.17.)

10) Miranda Olivier-Wright, Isobel White. Parliament and Constitution Centre. 2008.3.4. ‘Electoral Pilot Schemes.’ House of Commons Library. https://researchbriefings.parliament.uk/ResearchBriefing/Summary/SN04397 (검색일 2019.5.17.)

- 이번 전자투표는 각 개인 선거권자의 투표정보를 암호화(pixelated votes)한 기술을 활용. 이에 따라 선거인의 정보 탈취 및 선거결과 조작 시도 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관련 사안이 공개됨.

<그림 11-1> 영국 전자투표 홍보물

전자투표의 장점, 심볼, 투표방식 설명을 담은 시디롬 등

<그림 11-2> 영국 다채널 투표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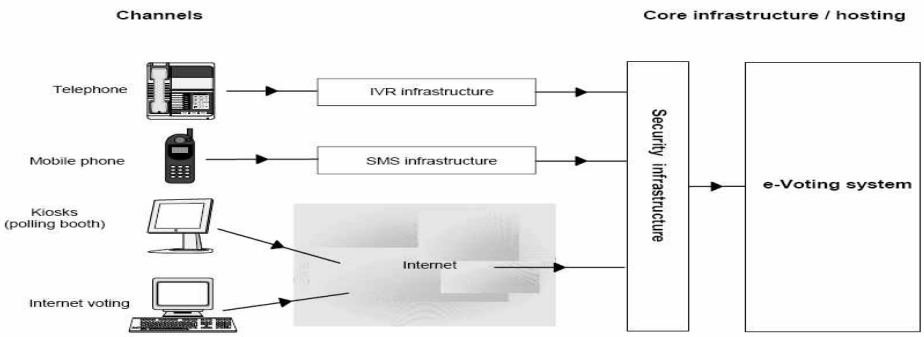

※ 다채널 투표방식은 전자투표방식기반을 다음의 세 가지로 들고 있음.

·IVR infrastructure(interactive voice response): 버튼방식 또는 터치방식의 전화기 음성자동응답

·SMS infrastructure: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Internet: 터치스크린 방식을 활용하는 키오스크, 상호작용이 가능한 디지털 텔레비전(IDTV), 인터넷 투표

---

11) 그러나 선거에 활용된 전자투표는 기존 종이투표 방식에 추가해 시범적으로만 활용된 것으로 실제 선거결과는 종이투표 개표에 기초해 발표됨.
Jane Wakefield. 2019.5.2. 'E-voting by touch-screen trialled in local elections.' BBC. https://www.bbc.co.uk/news/technology-48132591 (검색일 2019.5.11.)

2. 미 국

가. 도입배경[12)]

- 2000년 대선 당시 민주당의 앨 고어(Al Gore) 후보와 공화당의 조지 부시(George Bush) 후보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로리다 주의 펀치카드[13)] 투표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음.
- 플로리다 주 사태 이후 미국 여론은 펀치카드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연방정부에서도 기존 투표방법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논의를 시작해 선거개혁(Election Reform)을 시작하게 되었음.[14)]
- 단순히 투표방식뿐만 아니라 연방 차원의 전반적인 선거관리에 대한 체계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어, 기존의 낡은 투표시스템을 교체하도록 하고 전자투표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2002년 연방선거지원법과 투표시스템의 연방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선거지원위원회를 설치하게 됨.

나. 법적근거

- 투표지원법(Help America Vote Act 2002: HAVA)
  - 투표시스템 교체를 위해 주정부에 교부금을 지원하고, 연방선거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각종 연구지원, 통일된 투표시스템과 선거권자 등록명부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함.
- 선거지원위원회(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EAC)
  - 투표지원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 전자투표에 관한 연방차원의 통일적인

---

12) NCSL. 'The Canvass: States and Election Reform-What Should States Do About Voting Equipment.'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what-should-states-do-about-voting-equipment.aspx (검색일 2019.7.30.)

13) 펀치카드 시스템은 1964년에 최초로 도입되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투표방식으로 투표용지를 펀치로 구멍을 내어 자동집계하는 방식으로 개표가 빠르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투표용지가 복잡해 잘못 펀칭되는 일이 많고, 펀칭한 종이 부스러기로 인해 집계에 어려움을 겪어 2000년 대선 재검표 과정에서 약 18만 표가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된 바 있음.

14) NCSL. 'Voting System Standards, Testing and Certification.'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voting-system-standards-testing-and-certification.aspx (검색일 2019.7.30.)

기준을 마련하고 각 주의 전자투표관리 업무를 지원

다. 실시사례[15)]

- 미국은 전자투표 실시여부가 주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주별로 실시하는 선거의 종류도 다르고, 다양한 투표기를 선택하고 있는데 터치스크린 방식이 주로 사용되는 직접입력식전자투표(Direct Recording Electronic: DRE)과 광학스캔(Optical Scan)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음.

<표 11-1> 미국 투표방식 비중 변화(대통령 선거 기준)[16)]

투표방식	1980년	1992년	1996년	2000년	2004년	2008년**	2012년
DRE(터치스크린)	1	4.5	7	12.5	29.5	-	39
종이투표	10.5	4	2	1.5	1	-	4
광학스캔	2	15	24	29.5	35	-	56
펀치카드	31	38.5	37	31	13	-	0.02
레버머신	43	28.5	22	17	14	-	-
혼합*	12.5	9.5	8	8.5	7.5		

* 혼합: 여러 방식을 같이 사용
** 2008년에는 비교 가능한 숫자가 없음.

<그림 11-3> 미국의 다양한 투표시스템[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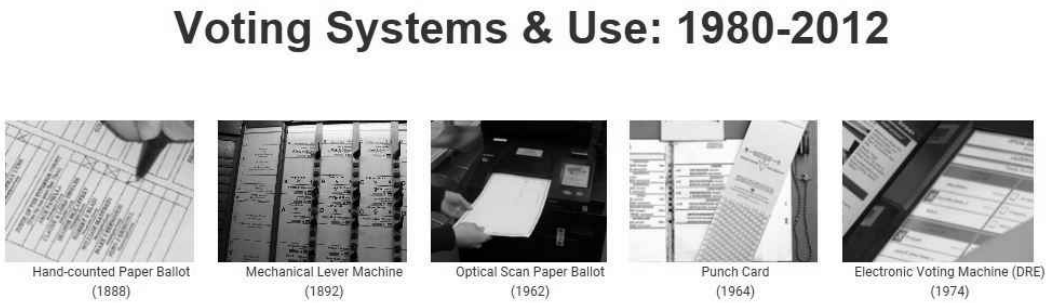

15) http://votingmachines.procon.org/view.resource.php?resourceID=000274 (검색일 2019.7.30.)
16) PROCON.ORG. 'Voting Systems & Use.' https://votingmachines.procon.org/view.resource.php?resourceID=000274 (검색일 2019.7.31.)
17) PROCON.ORG. 'Voting Systems & Use.' https://votingmachines.procon.org/view.resource.php?resourceID=000274 (검색일 2019.7.31.)

- 캘리포니아 주
  - 2000년 11월 7일 총 58개 카운티 중 4개 카운티에서 실험적으로 인터넷 시범 투표를 실시
  - 2002년 11월에는 새크라멘토(Sacramento)카운티의 6개 지역 사전투표에서 투표기록지가 부착된 DRE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투표를 실시[18]
  - 2003년 10월 주지사 보궐선거에서 전체 선거권자(1,530만 명)의 9.3%인 142만 명이 전자투표를 이용하였음.
- 플로리다 주[19]
  - 1998년 6월 주법으로 '플로리다 투표시스템 표준(Florida Voting System)'을 발표하고, 주정부 차원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테스트를 거치도록 했음.
  - 2002년 9월 10일 예비선거에서 선거권자의 약 60%가 터치스크린과 광학스캔 방식의 전자투표기를 이용해 투표하였음.
  - 기존 투표방식과 일부 병행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현재 전자투표시스템을 전면사용하고 있으며 전체 41개 카운티 중 15개 지역은 3만 3천 대 이상의 터치스크린 방식을, 26개 지역은 광학스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조지아 주[20]
  - 2002년 연방선거지원법 제정 이후, 여러 주 가운데 최초로 낡은 투표시스템을 새로운 DRE로 교체 한 이후 주 전체 차원에서 단일한 형태의 전자투표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2002년 11월 2일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기권율이 높은 주에 속했던 조지아 주 투표 기권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줬음.
- 메릴랜드 주

---

18) 투표기록지는 선거권자확인종이기록장치(Voter Verified Paper Audit Trail: VVPAT)로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한 투표가 제대로 반영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투표결과가 종이로 출력되는 것을 말함. 오하이오 주 개정법령(Title XXXV Elections Section 3506.18)에서는 이 투표기록지를 재검표의 공식적인 투표로 규정하고 있음.

19) Florida Statutes. Title IX. Electors and Elections. Chapter 101. Voting Methods and Procedure. 101.015. Standards for voting ststems. http://www.leg.state.fl.us/Statutes/index.cfm?App_mode=Display_Statute&Search_String=&URL=0100-0199/0101/Sections/0101.015.html (검색일 2019.7.31.)

20) PROCOM.ORG. 'Historical Timeline-Electronic Voting Machines and Related Voting Technology.' https://votingmachines.procon.org/view.timeline.php?timelineID=000021#2000-2004 (검색일 2019.7.31.)

- 2000년 DRE 투표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2004년 10월 연방선거지원법을 기반으로 5천5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모든 투표소에 터치스크린 방식과 유사한 투표기를 설치해 사용했으나, 2016년 DRE를 폐지하였음.[21)]

3. 프랑스

가. 도입배경

- 투표소 설치와 자원봉사자인 개표참관인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투표기계의 도입이 논의되면서 1969년에 선거법 제57-1조 신설로 전자투표가 가능하게 됨.[22)]
- 낮은 투표율로 전자투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3년 11월 17일 시행령으로 투표기 기술적 승인 조건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음.
- 현재 "전자투표"라는 말은 현재 66개의 코뮌(Commune)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투표기를 통한 투표와 재외국민이 총선과 영사선거 시 사용했던 인터넷투표를 의미함. 2008년 이후 전자투표에 대한 모라토리엄으로 투표기 기능개선을 하지 않아 전자투표기가 구식이 되었으며, 2017년 총선에서는 인터넷선거가 취소되어 재외국민의 선거참여가 제한되었다는 분석이 있었음.[23)]
- 현재 프랑스상원은 상원의원위원회(la commission des lois du Sénat)를 통해 전

---

21) Maryland General Assembly Department of Legislative Services. 'Proposed Regulations Board of Elections.' http://mgaleg.maryland.gov/pubs/committee/aelr/18-387P-Analysis.pdf (검색일 2019.7.31.)

22) 2004년 5월 26일, NOR/INT/A/04/00065/C호 전자투표기에 관한 내무부 장관의 지침(NOR/INT/A/04/00065/C, INSTRUCTION PERMANENTE RELATIVE AUX MACHINES A VOTER DU MINISTRE DE L'INTERIEUR)
https://www.conseil-constitutionnel.fr/sites/default/files/as/root/bank_mm/dossiers_thematiques/presidentielle_2007/ INTA0400065C.pdf (검색일 2019.5.27.)

23) 쟈끄 데르몽과 이브 데트렌느의 제73호(2018년 10월24일) 상원보고서(Rapport d'information de Mme Jacky DEROMEDI et M. Yves DÉTRAIGNE, fait au nom de la commission des lois n73 (2018-2019) - 24 octobre 2018
이 보고서는 인터넷투표와 전자투표기에 대한 모라토리엄의 해제 필요성을 주장하며, 외부 공격으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보호와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8가지 제안을 함. 즉, 범정부기구를 만들어 전자투표기에 대한 인증규정 강화, 보안강화 그리고 전자투표기 구입과 사용을 위한 지원 등을 코뮌의 기기사용을 권장제안. 실질적인 선거를 위한 제안으로 2020년 영사선거에 재외국민의 인터넷 선거와 2020년 하원의원선거에 전자투표(최신기종의 전자투표기와 인터넷을 통한 투표) 실시를 위한 준비를 정부에 제안하고 있음.
http://www.senat.fr/notice-rapport/2018/r18-073-notice.html (검색일 2019.5.27.)

자투표(전자투표기와 인터넷투표)를 적극 지원·지지하고 있음.[24]

나. 법적근거

- 1969년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기계의 사용이 가능해짐(선거법 제57-1조).
  - 인구가 3,500명을 초과하는 코뮌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 대신해 투표기에 의한 투표를 할 수 있음.

    ※ 1988년 투표기계의 사용이 가능한 코뮌의 주민 수를 30,000명 이상에서 3,500명 이상으로 개정함.[25]
  - 전자 투표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안기준을 충족하고, 특히 투표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도록 내무부장관이 결정한 모델이어야 함.

    ※ 투표기의 요건

    ·투표 중 선거인의 투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설비된 장치

    ·어떠한 장애라도 장애인 선거인들이 스스로 투표할 수 있을 것

    ·동일한 날에 서로 다른 다수의 선거를 실시할 수 있을 것

    ·백지투표를 기록할 수 있는 것

    ·선거인 1명이 1회 이상 투표할 수 없을 것

    ·투표가 마감된 후에 컴퓨터 모니터 상에 투표자의 수가 합계될 것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투표소장과 투표보조인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된 보조인이 각각 1개씩 보관하는 열쇠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2003년 전자투표기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 전자투표기의 인증제를 실시함.[26]
- 2004년 전자투표기 사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도지사(Préfet)에게 사용허가 권한을 이양하고 상원의원선거에도 확대 사용함.[27]
- 전자투표기의 대여 혹은 구입비용으로 대당 최대 800유로를 보존하며 800유로 미만일 경우 실비를 보존함(N°2204-454 법령).[28]

---

24) 상원의원위원회는 전자투표기사용과 인터넷투표를 지지함(Vote électronique: la commission des lois du Sénat plaide pour le maintien des machines à voter et du vote par Internet). https://www.senat.fr/presse/cp20181024.html (검색일 2019.5.7.)

25)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321643&dateTexte=20190531 (검색일 2019.5.27.)

26)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612617&categorieLien=id (검색일 2019.5.27.)

27)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LEGITEXT000005767679&dateTexte=20190301 (검색일 2019.5.27.)

28) 2004년 5월 26일, NOR/INT/A/04/00065/C호 전자투표기기에 관한 내무부 장관의 지침(NOR/INT/A/04/00065/C, INSTRUCTION PERMANENTE RELATIVE AUX MACHINES A VOTER DU MINISTRE DE L'INTERIEUR)

다. 실시사례[29]

- 1973년 하원의원선거에서 전자투표기계가 처음 사용됨. 그러나 다수의 고장과 오작동으로 1980년대에는 대부분의 코뮌이 사용을 포기함.
- 2000년대 전자투표기의 성능이 향상되어 투표기기의 사용이 확산되었고 전자투표의 인증제도가 실시됨(2003년 11월 17일 전자투표기기에 관한 시행령).[30]
- 2004년 도지사에게 전자투표기 사용허가 권한이 이양되는 등 전자투표기 사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 개정으로 2004년 9월 상원의원선거에 실시됨.[31]
- 2004년 3월 지방선거에서 브레스트(Brest) 코뮌이 전자투표기를 처음 사용함.
- 2004년 6월 유럽의회의원선거에서 19개 코뮌이 전자투표기를 사용함.
- 2005년 국민투표 당시 55개 코뮌 중 837개 투표소에서 전자투표기 사용[32][33]
- 2004년 지방선거에서 법적으로 처음 유효하게 실시되었고, 이후 2004년 유럽의회선거, 2005년 국민투표 등에서 사용되면서 전자투표기를 사용하는 코뮌이 조금씩 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보편화되지는 않고 있음.
-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83개 코뮌에서 150만 명의 선거권자가 전자투표기를 사용[34](전체 선거권자 중 약 3%)

---

https://www.conseil-constitutionnel.fr/sites/default/files/as/root/bank_mm/dossiers_thematiques/presidentielle_2007/INTA0400065C.pdf (검색일 2019.5.27.)

29) 쟈끄 데르몽과 이브 데트렌느의 제73호(2018년 10월24일) 상원보고서(Rapport d'information de Mme Jacky DEROMEDI et M. Yves DÉTRAIGNE, fait au nom de la commission des lois n° 73 (2018-2019) - 24 octobre 2018)
http://www.senat.fr/notice-rapport/2018/r18-073-notice.html (검색일 2019.5.27.)

30)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612617&categorieLien=id (검색일 2019.5.27.)

31) 2004년 12월 9일 N°2004-1343 법(Loi n° 2004-1343 du 9 décembre 2004 de simplification du droit), 2004년 5월10일 N°2004-404 상원의회 의원선거 관련 법(Loi n° 2004-404 du 10 mai 2004 le tableau de répartition des sièges de sénateurs et certaines modalités de l'organisation de l'élection des sénateurs)

32) Dossiers thématiques: 2007 Élection présidentielle» dans le site du Conseil Constitutionel
http://www.conseil-constitutionnel.fr/conseil-constitutionnel/francais/documentation-publications/dossiers-thematiques/2007-election-presidentielle/les-machines-a-voter-objectifs-et-garanties.17550.html (검색일 2019.6.5.)

33) http://www.senat.fr/questions/base/2012/qSEQ120700003.html (검색일 2019.6.5.)

34) Rapport OSCE Election présidentielle, 22 avril et 6 mai 2007- Rapport de la Mission d'évaluation électorale de L'OSCE/BIDDH», OSCE, le 4 octobre 2007, p.10.
Rapport Intermédiaire - Le vote électronique par machines à voter aux élections politiques de l'année 2007», le Forum des droits sur l'internet, le 18 décembre 2007, p.5~6.

- 2008년 이후 중앙정부 및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모라토리엄을 적용하는 동안 16개 코뮌이 전자투표기 사용을 포기함.
- 2014년 기초의원선거에서 70개의 코뮌, 1,700개의 투표소에서 전자기를 사용함.[35)]
- 2019년 5월 유럽의회의원선거에게 66개 코뮌이 전자투표기를 사용함.

<그림 11-4> 프랑스 전자투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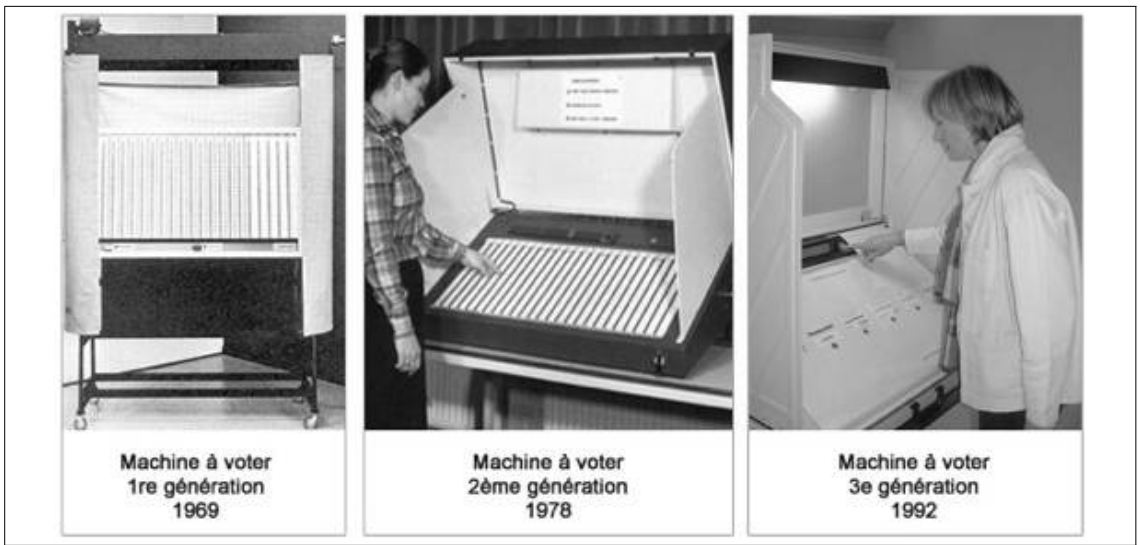

1969년 1세대 투표기	1978년 2세대 투표기	1992년 3세대 투표기

35) https://www.ouest-france.fr/pays-de-la-loire/la-machine-voter-comment-ca-marche-2037604 (검색일 2019.6.5.)

(1) 2019년 5월 26일 유럽의회선거 전자투표기[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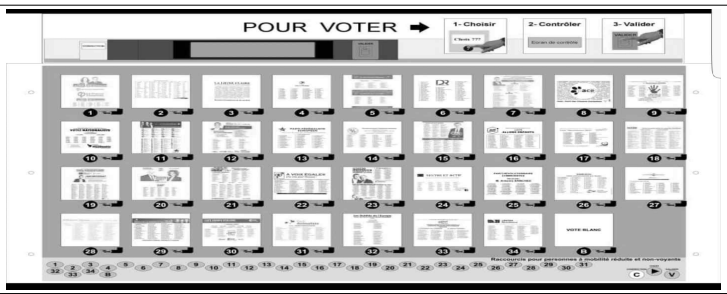

① (후보자명부를) 선택하세요.
② (선택을) 확인하세요.
③ 투표하세요.

(2) 2019년 5월 26일 유럽의회선거 전자투표 절차[37]

① 2019년 유럽의회의원선거에서 전자투표하는 에두와르 필립 프랑스 총리[38]

② 투표소 위원장과 행정관계자가 전자투표결과를 출력하고 있음.[39]

36) 우웨스트-프랑스 일간지. 2019.5.24. '10개의 전자투표기.' https://www.ouest-france.fr/bretagne/ploermel-56800/ploermel-vote-electronique-aussi-pour-monterrein-6366733 (검색일 2019.5.27.)

37) http://www.lecolombesquejaime.fr/2019/05/1-seul-tour-pour-les-elections-europeennes-du-26-mai-2019.html (검색일 2019.5.27.)

38) https://www.bfmtv.com/mediaplayer/video/europeennes-edouard-philippe-a-vote-au-havre-1163890.html (검색일 2019.5.27)

39) 우웨스트-프랑스 일간지. 2019.5.26. '2019년 유럽의회선거.' https://www.ouest-france.fr/elections/europeennes/elections-europeennes-forte-poussee-des-ecologistes-ploermel-6369143 (검색일 2019.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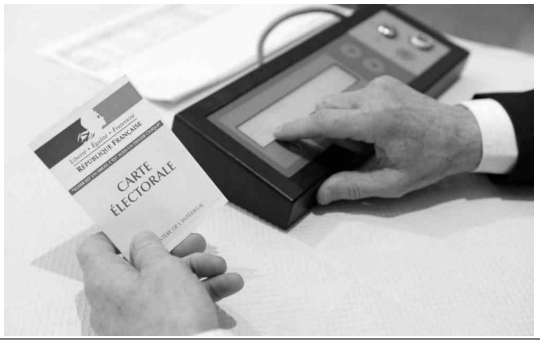
③ 투표소 위원장이 밀봉하기 위해 전자투표함을 정리하고 있음.	④ 전자투표 시 선거등록증 확인

(3) 내무부 인증 전자투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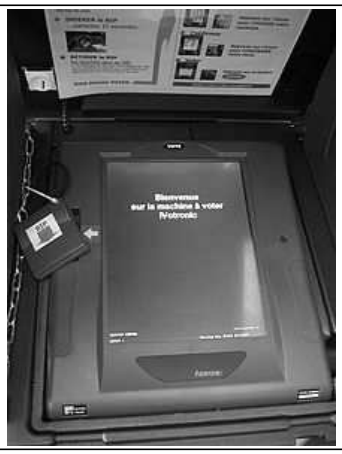	
① 이보트릭(iVotric)[40]	
② 인드라(Indra)시스템: 포인드 앤드 보트[41]	③ 네다프-프랑스 엘렉시옹(NEDAP-France élection)[42]

40) 2005년 10월 19일 전자투표기(iVotronic" de la société ES&S Datamatique) 인증관련 시행령(Arrêté du 19 octobre 2005 portant agrément d'un modèle de machine à voter)

4. 독 일

가. 도입배경

- 기존방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현대적인 방식을 도입하며, 종이선거와 달리 비용절감효과가 있고, 투표율 증가와 함께 무효표도 감소할 것으로 보았음.[43]
- 독일의 전자투표기는 개표의 편의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기존의 종이 투표용지를 대신하는 기계로서 소위 '투표 컴퓨터(Wahlcomputer)'로 지칭하였음.[44]
- 모니터 화면을 통해 투표가 이루어지고, 해당 장치에 저장된 기표내용이 전산으로 집계되어 투표 결과까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었음.

나. 법적근거: 연방선거법 제35조 및 연방투표기규칙

- 연방선거법 제35조: 투표와 개표의 편의를 위하여 투표용지와 투표함 대신 투표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투표기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투표기에 대해 내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연방투표기규칙(Bundeswahlgeräteverordnung): 투표기의 제작, 허가 및 사용절차 등에 대해 연방내무부 장관의 시행규칙으로 투표장치에 관한 규정을 1975년 9월 제정하였으나 2009년 3월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시행이 중지됨.

---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636692&dateTexte=&categorieLien=id (검색일 2019.5.27.)

41) 2004년 5월 7일 전자투표기(Point & Vote" de la société Indra Sistemas SA) 인증관련 시행령(Arrêté du 7 mai 2004 portant agrément d'un modèle de machine à voter)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438302&dateTexte=&categorieLien=id (검색일 2019.5.27.)

42) 2005년 3월 8일 전자투표기(NEDAP-France élection) 인증관련 시행령(Arrêté du 8 mars 2005 portant agrément d'un modèle de machine à voter)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341274&dateTexte=&categorieLien=id (검색일 2019.5.27.)

43) heise online. 2004.6.13. 'Stimmabgabe per Computer kam gut an(컴퓨터를 통한 투표 호평)' https://www.heise.de/newsticker/meldung/Stimmabgabe-per-Computer-kam-gut-an-100377.html (검색일 2019.6.28.)

44) http://www.wahlrecht.de/lexikon/wahlcomputer.html (검색일 2019.6.28.)

다. 실시사례[45)]

- 1999년 6월 퀼른 시 유럽의회 선거에서 최초로 전자투표 실시
- 2002년 9월 연방의회 선거에서 29개 기초단체, 1,400개 투표구에서 전자투표 실시
- 2005년 제16대 연방의회 선거의 경우, 전체 16개 주 가운데 브란덴부르크, 헤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드-팔쯔, 작센-안할트 등 5개 주와 총 299개 선거구 중 39개의 선거구 그리고 전국 80,000개 중 2.25%인 1,800개 투표소에서 전자투표기를 사용하였고, 이 기계를 통해 투표한 선거권자 수는 약 2백만 명에 달함.
- 2006년 헤센 주의 기초자치단체선거 13개 코뮌(Kommune)에서 306개의 전자투표기에 의해 전자투표가 실시되어 신속하게 개표결과가 나옴.
- 2007년 4월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지역 지방선거에서 8개 시에서 전자투표기 108대를 사용

라. 전자투표 시행 중지

- 2005년 연방의회 선거 후 전자투표기 사용의 위헌성 여부를 주장하는 헌법소송이 제기되었고, 연방헌법재판소 2009년 3월 3일 판결, 사건번호 2 BvC 3/07, 2 BvC 4/07을 통해 연방전자투표기규칙(Bundeswahlgeräteverordnung)을 위헌으로 판단하여 전자투표기 사용의 근거가 되는 규칙의 시행이 중지되었음.[46)]

  ※ 전자투표기 사용에 대한 주요한 비판은 종이 투표용지와 달리 투표상의 오류를 전문 기술자만이 인지할 수 있다는 측면과 투표과정의 기계적인 오류를 외부에서 제어할 수 없다는 측면이 있으며, 조작방지를 위한 기술도 불충분한 것으로 지적하였음.

- 해당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은
  - 기본법 제38조 및 제20조제1,2항에 위반하여 본 시행령은 위헌판결을 받아 효력을 상실함.
  - 헌법재판소는 선거과정의 사후검증 가능성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
  - 선거 과정에 대한 검증이 특별한 지식이 없는 일반 선거권자들도 파악할 수

---

45) 연방선거위원회.
https://www.bundeswahlleiter.de/service/glossar/w/wahlgeraete.html (검색일 2019.8.12.)

46) 판결 원문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SharedDocs/Entscheidungen/DE/2009/03/cs20090303_2bvc000307.html (검색일 2019.6.28.)

있을 정도로 용이하여야 하지만, 전자투표기의 소프트웨어적 오류 또는 의도적 조작은 관련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인지하기 용이하지 않은 점을 들어 선거의 공공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림.

- 다만, 본 시행규칙의 위헌성으로 인해 이미 전자투표기를 사용하여 선거가 이루어진 2005년의 제16대 연방의회 선거가 재실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
- 다만, 본 결정 이후에 실시된 2009년 6월의 유럽의회 선거 및 같은 해 9월의 연방의회 선거에서는 전자투표기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됨.
- 또한 전자투표기 사용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헌법상 하자가 없다는 전제하에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아님.
- 따라서 기표 영수증의 사용 등 일반 선거권자들이 검증 가능한 방식이 보장되어야 투표기기의 사용에 있어 공공성 원칙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았음.
- 이후 시행령의 개정에 관해 논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시행 가능한 법률로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5. 일 본

가. 도입배경[47)]

- 개표시간 단축 및 무효표 방지 등 선거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함.
- 선거결과의 신속정확한 판명이 가능함.
- 선거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함(의문표, 무효표의 해소).
- 자서(自書)가 곤란한 선거권자도 투표가 용이함.

47) 총무성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547414.pdf (검색일 2019.6.18)

나. 법적근거

- 2001년 공직선거법 특례법으로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의 전자적 기록식 투표기를 이용한 투표방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기록투표법')[48]이 2002년 2월부터 시행됨(2001년 12월 7일 공포).[49]
- 이 법에서 도·도·부·현이나 시·정·촌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조례제정을 인정하고, 국가는 전자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조언하거나 원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다. 국정선거 도입논의[50]

- 2006년 10월 25일 자민당·선거제도조사회에서 「전자투표의 국정도입에 관한 최종보고」 완료
- 2007년 6월 12일 의원입법으로 「전자투표법개정법안」이 제출되어 심의 계속(제166회 통상국회)
- 2007년 12월 11일 중의원에서 가결되었으나, 2007년 12월 19일 참의원에서 법안 심의과정에서 민주당이 수정안 제시하여 심의 계속(168회 임시국회)
- 2008년 6월 21일 참의원에서 계속 심의 포기(제169회 통상국회)

라. 전자적기록식 투표기의 구비요건(전자기록투표법 제4조)

- 하나의 선거에 있어서 두 번 이상 투표가 불가능할 것
- 선거인이 투표기 조작에 의해 어느 후보자를 선택하였는지를 전자적기록매체에 기록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성명이 전자적기록식투표기에 표시될 것
- 선거인이 투표기 조작으로 선택한 후보자를 전자적기록매체에 확실하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일 것

---

48) 총무성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senkyo/senkyo_s/news/touhyou/denjiteki/pdf/houritsu.pdf (검색일 2019.6.18.)

49) 총무성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senkyo/senkyo_s/news/touhyou/denjiteki/index.html (검색일 2019.6.18.)

50) 총무성 홈페이지
www.soumu.go.jp/main_content/000547414.pdf (검색일 2019.6.18.)

- 선거인이 선택한 후보자의 이름을 기록한 전자적기록매체의 기록 보호를 위한 조치가 구비되어 있을 것
- 전자적기록매체를 전자적기록식투표기로부터 분리할 수 있을 것
-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전자적기록식투표기 조작을 방지할 수 있을 것
- 선거의 공정성 및 적정한 집행을 해하지 않을 것

※ 전자적기록식투표기에 의한 투표에 사용하는 투표기는 전신통신회선에 접속해서는 안 됨.

<그림 11-5> 일본의 투표시스템

투표카드발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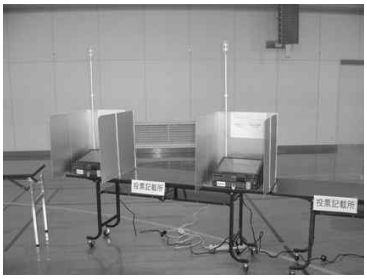

터치스크린투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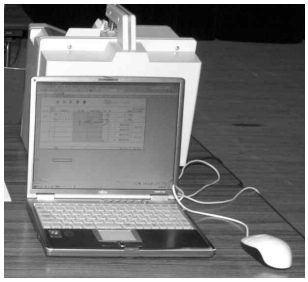

개표시스템

<표 11-2> 일본의 전자투표 실시 현황[51)]

선거종류	선거일
니이미(新見)시 시장/의회선거	2002. 6.23
히로시마(廣島)시장	2003. 2. 2
시로이시(白石)시의회선거	2003. 4.27
사바에(鯖江)시 의회	2003. 7. 6
가니(可兒)시의회선거	2003. 7.20
에비나(海老名)시 시장/의회	2003.11. 9
로쿠노베(六戸)군 군수선거	2004. 1.18
교토(京都)시 시장(東山區)선거	2004. 2. 8
니이미(新見)시: 지사선거	2004.10.24
시로이시(白石)시의회선거	2004.10.31
요카이치(四日市)市 시장·시의원선거	2004.11.28
로쿠노헤(六戸)군 군수선거	2005. 6.12
로쿠노헤(六戸)군 의회선거	2007. 4.22
시로이시(白石)시 의회선거	2007. 4.22
오오타마(大玉)촌 의회선거	2007. 8. 5
교토(京都)시 시장선거	2008. 2.17
시로이(白石)시 시장선거	2008.10.26
요카이치(四日)시 시장선거	2008.11.30
니이미(新見)시 시장/의회선거	2009. 4.12
료쿠노헤(六戸)정 의회선거	2011. 4.24
교토(京都)시 시장선거	2012. 2. 5
니이미(新見)시 시장/의회선거	2013. 4.14
로쿠노헤(六戸)정 정선거	2015. 4.26
로쿠노헤(六戸)정 의회선거(보궐)	2016. 4.27

51) 총무성 홈페이지(2018.1. 기준)
http://www.soumu.go.jp/senkyo/senkyo_s/news/touhyou/denjiteki/denjiteki03.html (검색일 2019.8.26.)

6. 스페인

- 도입배경
  - 낮은 투표율 제고, 투표 및 개표 시간 단축 등 선거관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2003년부터 최초 시험 실시
  - 2008년 사파테로 총리가 1,200만 이상의 재외선거인 투표를 위해 적극적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잦은 정권 교체와 인터넷 및 전자인증서의 낮은 보급률에 따른 시험 투표 참여 저조 등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전자투표제 도입은 미뤄지고 있음.
  - 최근 들어 까딸루냐 및 바스크를 시작으로 지방선거에 도입하려는 동향을 보임.
- 법적근거
  - 바스크 선거법에 전자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함.[52)]
    ※ 바스크선거법(Ley del Gobierno) 제15조
  - 바스크 이외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고. 아직 중앙정부 및 지방선거에 전자투표제가 도입되지 않음.[53)]
- 실시사례
  - 1997년 까딸루냐 의회 선거에 2개의 투표소에서 마그네틱 밴드의 카드를 이용한 전자투표 시험 실시
  - 1997년 갈리시아 의회 선거에 2개의 투표소에 프랑스식 시스템과 일본식 시스템을 각각 달리하여 시험 실시
    ※ 두 시스템 모두 터치스크린 이용
  - 1999년 발렌시아 자치 선거에서 마그네틱 밴드를 이용한 프랑스식 CIVIS 방식을 이용한 전자투표를 39개의 투표소에서 실시
  - 2003년 아르헨티나, 벨기에, 미국, 멕시코, 칠레 거주 까딸루냐인의 까딸루냐 의회 선거 재외선거인을 위한 원격투표 시험 실시

---

52) 바스크 공보. 바스크 선거법
https://www.euskadi.eus/y22-bopv/es/bopv2/datos/1998/07/9803142a.shtml?BOPV_HIDE_CALENDAR (검색일 2019.4.20.)

53) 바스크 정부 뉴스 홈페이지. 국가별 전자투표제 도입 상황
http://www.euskadi.eus/web01-a2haukon/es/contenidos/informacion/w_be_ve_mundo/es_def/index.shtml (검색일 2019.4.20.)

※ 바스크 정부에서 만든 demotek 시스템과 사기업에서 만든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시스템을 5개의 선거구에서 시험 실시

- 2004년 내무부가 주관하여 사모라(Zomora), 토로(Toro), 폴(Pol) 지역에서 본인의 전자서명이 포함된 디지털카드를 제공하여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를 300명을 대상으로 시험 실시
- 2004년 내무부와 안달루시아 정부가 주관하여 그라나다의 훈(Jun)에서 800명을 대상으로 597명이 참여하여 인터넷과 핸드폰을 통한 전자투표 시험 실시[54)]

※ 휴대폰은 숫자와 알파벳을 이용한 비밀번호 방식, 인터넷은 암호화된 USB를 이용한 방식을 사용

- 2005년 갈리시아 의회 선거에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 시험 실시
- 2005년 유럽의회 선거일 이전 각 도의 한 개의 구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원거리 전자 투표를 시험 투표 실시하였지만 참여율이 저조하였음.
- 2008년 도의회 상·하원 선거에 전자투표 시험 실시
- 2010년 까딸루냐 시장 선거에 인터넷과 핸드폰을 이용한 전자 투표 시험을 실시하였지만 많은 문제가 발생함.
- 2011년 총선거에 자치주별로 전자투표 시험 실시
- 2018년 까딸루냐 정부에서 최초로 2020년 지방선거에 재외선거인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할 것을 승인함.[55)]

7. 스웨덴

가. 도입논의

- 투표 과정의 편리성 증진 및 투표 환경을 개선해 투표율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촉진해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가 시작 되었으나, 통상적으로 80%가 넘는 높은 투표율을 유지하고 있어[56)]전자투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았음.

54) 엘문도 신문사 홈페이지. 1000명이 전자투표에 참여
https://www.elmundo.es/navegante/2004/03/16/esociedad/1079436995.html (검색일 2019.4.20.)

55) 라방과르디아 신문사 홈페이지. 까딸루냐 전자투표제 도입
https://www.lavanguardia.com/politica/20181118/452993714295/govern-voto-electronico-exterior-2020-todos-electores-aplicar-forma-gradual-ismael-pena-lopez-participacion-ciudadana.html (검색일 2019.4.20.)

※ 수작업 개표 과정에서 광학 판독기를 사용하거나, 결과 입력과정에서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 전자 투표 실시에 관한 높은 선호도가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남.[57]

  ※ 의회 선거 인터넷투표에 대한 찬성의견 67%

- 수동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높은 비용의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있었으며, 에스토니아와 노르웨이의 등 주변국 및 전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전자투표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있었음.[58]

  ※ 의석이 없는 소수정당에서 지출해야 하는 과도한 투표용지 제작 비용의 문제도 제기됨.[59]

- 정부는 2011년 10월 전자투표와 선거제도를 검토하기 위해 각 정당의 대표자들을 포함한 선거기구를 구성해 연구를 시행하고, "2013년 E-röstning och andra valfrågor보고서"를 발표함.[60]
  - 노르웨이의 전자투표 시범실시를 모델로 2018년 총선에서 몇몇 지역 선거구에서 인터넷 투표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음.
  - 2016년 정부는 보안성과 익명성, 공정성을 보안하지 못하고 편의에 비해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선거기구가 제시한 2018년 총선의 전자투표 시범시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61]
  - 정부는 전자투표기 도입에 대해서도 비용이 많이 들고 회의적이며 현재 선거제도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하지만 스웨덴 정부는 전자투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22년 총선에서 시범실시를 시행 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음.[62]

---

56) Joachim Åström. 2004 'Electonic Voting in Sweden: Hare or Tortoise?'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99469120_Electonic_Voting_in_Sweden_Hare_or_Tortoise (검색일 2019. 10.14.)

57) Internet Stiftelsen. 2014.9.2. 'Svenskarna positiva till internetröstning i riksdagsval.' https://internetstiftelsen.se/press/pressmeddelanden/svenskarna-positiva-till-internetrostning-i-riksdagsval/

58) Erik Falk. 2017 '스웨덴 총선 인터넷 투표의 현황(En nulägesanalys av internetröstning I svenska allmänna val)' https://www.diva-portal.org/smash/get/diva2:1113125/FULLTEXT01.pdf (검색일 2019.10.14.)

59) Radio Sweden. 2014.9.8. 'Pirate Party: voting system unfair for smaller parties' https://sverigesradio.se/sida/artikel.aspx?programid=2054&artikel=5956690 (검색일 2019.10.14.)

60) 2011 선거위원회 최종보고서(Slutbetänkande av 2011 års vallagskommitté). '전자투표 및 기타선거문제(E-röstning och andra valfrågor)' 2013 https://www.regeringen.se/49bb86/contentassets/50146d1ac81d45318fb1a2c1e8679e90/e-rostning-och-andra-valfragor-sou-201324

61) Radio Sweden. 2016.3.10. 'Minister says no to voting online in next election' https://sverigesradio.se/sida/artikel.aspx?programid=2054&artikel=6387118 (검색일 2019.10.14.)

8. 스위스

가. 법적근거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및 「전자투표에 관한 연방내각국령」[63]이 제정되었음.

나. 일반규정

- 전자투표일반(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8조의a,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제27조의a~q)
  - 연방의회는 관심 있는 주 및 코뮌과 협의하여 지리적 범위, 시행일자 및 관련 주제를 한정하여 전자투표 실시를 허용할 수 있음.
  - 선거권의 검증, 투표의 비밀 및 행사된 모든 표의 개표가 보장되어야하며 남용은 방지되어야 함.
  - 연방의회는 전자투표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 전자투표의 허가를 위한 일반적 필요사항(연방내각국령 제2조)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전자투표를 허용
  - 전자투표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은 투표의 신뢰성과 보안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안·개발됨.
  - 시스템은 선거권자들이 이용하기 쉬워야 하며, 모든 선거권자들의 요구사항은 가능한 한 최대한 반영함.
  - 시스템과 그 운영절차에 관하여는 보안적인 측면에서 기술적·구조적인 세부내용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문서화 함.
- 위험성 평가

  보안적인 측면의 위험성에 관하여 적절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음을 구체적이고

---

62) Forskning & Framsteg. 2018.2.8. 'Vågar vi rösta på internet?' https://fof.se/tidning/2018/2/artikel/vagar-vi-rosta-pa-internet (검색일 2019.10.15.)

63) 「전자투표에 관한 연방내각국령(Verordnung der BK über die elektronische Stimmabgabe)」 https://www.admin.ch/opc/de/classified-compilation/20132343/index.html (검색일 2019.8.23.)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규정해야 함(연방내각국령 제3조).

- 주 선거구민의 30% 이상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사항(연방내각국령 제4조)
  - 선거권자들은 전자투표시스템의 운영체제 또는 전송하는 과정 중에 자신들의 투표가 조작되거나 방해되었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음.
  - 개별적인 검증을 위하여 선거권자들은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절차대로 그들의 투표가 시스템의 서버에 등록이 되는지에 대한 증거를 받아볼 수 있고,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선거권자들은 어떠한 조작도 없는 투표만이 시스템에 등록된다는 증거를 전자투표가 마감된 후와 법적 이의제기 기한 내에 요청할 수 있음.
- 주 선거구민의 50% 이상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사항(연방내각국령 제5조)
  - 선거권자 또는 감사관이 투표의 비밀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결과의 왜곡을 초래하는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모든 표에 대한 통합검증)
-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추가 조치(연방내각국령 제6조)
  - 이미 조치되었음에도 위험성이 여전이 존재하는 경우,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함.

다. 실시사례

- 2003년 국민투표에서 최초로 제네바(Geneva) 주의 작은 코뮌인 아니에흐(Anières)에서 실시하였고, 2005년까지 취리히(Zurich)와 뇌샤텔(Neuchâtel) 주에서도 실시됨.
- 스위스는 2000년대 초 전자투표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 이후 지난 10여 년 간 전자투표를 시행해오고 있음.
  - 2015년 연방의회는 4개 주(Geneva, Lucerne, Basel-Stadt, Neuchâtel)에 한하여 등록된 재외선거인 대상 전자투표를 실시했고, 국내에서는 2개 주(Geneva와 Neuchâtel)에서 허용하였음.
  - 2019년 10월 20일에 예정된 연방선거에서도 전자투표가 여러 지역에서 시행될 예정임.[64]

64) https://www.admin.ch/opc/de/classified-compilation/20132343/index.html (검색일 2019.8.23.)

- 2019년 현재 스위스는 두 가지 시스템을 운영 중임.[65]
  - 제네바 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CHVote'는 Vaud, Bern, Lucerne, Basel City, Aargau와 St. Gallen 주에서 사용되고 있음.
  - 하지만 이미 200만 스위스프랑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었고, 더 이상의 비용 투자는 부담이 되어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함(보안적 취약성도 발견되었으나 폐지의 주 원인은 아님)
  - Swiss Post(스위스의 국립 우체국)가 개발한 'sVote'는 Fribourg, Neuchâtel과 Thurgau 주에서 사용되고 있음.
  - 제네바 주에서 개발한 CHVote가 폐지될 경우, 스위스의 유일한 전자투표시스템이 될 sVote는 2019년 엄격한 보안(해킹) 테스트를 거칠 예정임.

<그림 11-6> 스위스 전자투표 시스템 현황[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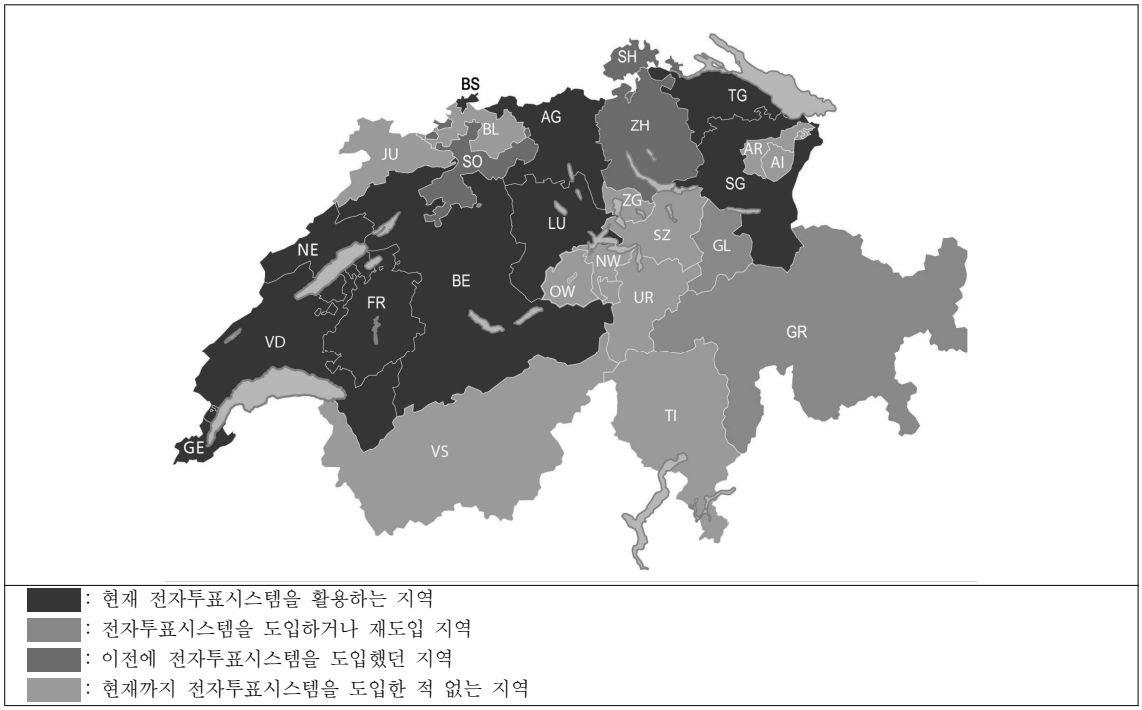

65) Geneva shelves e-voting platform on cost grounds(2018.11.28.기사) https://www.swissinfo.ch/eng/politics/digital-voting_geneva-shelves-e-voting-platform-on-cost-grounds/44577490 (검색일 2019.6.8.)

66) 스위스 연방 홈페이지 https://www.bk.admin.ch/bk/fr/home/droits-politiques/groupe-experts-vote-electronique.html (검색일 2019.6.8.)

9. 캐나다

가. 도입배경

- 투표율 제고와 선거현대화를 목표로 도입 추진
-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으며 특히, 지리적 특성상 외진 곳이 많아 해당 지역 선거권자들의 투표율이 낮음. 따라서 전자투표는 인터넷에 익숙한 청년층,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과 장애인들의 투표율 제고를 목표로 함.
- 2018년 12월 선거현대화법(Elections Modernization Act, Bill C-76)이 통과되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자선거방식에 대해 연구·준비하고 있음.[67]

나. 법적근거(선거법 제18조의1)

- 2000년 5월 31일 Bill C-2를 통과시키면서 캐나다 선거법 제18조의1에서 전자선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선거관리청장은 대안적 투표수단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 향후 선거에서 대안적인 투표절차에 대한 개발 및 시험을 할 수 있음.
- 선거관리청장은 장애가 있는 선거인들을 위한 투표기술을 도입·발전시켜야 하며, 기술에 대한 시험을 할 수 있음.
- 위 사항을 선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하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앨버타(Alberta),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 노바스코샤(Nova Scotia), 뉴브런즈윅(New Brunswick), 온타리오(Ontario), 서스캐처원(Saskatchewan) 주에서는 각 주정부가 「지방선거법」(Municipal Elections Act)을 개정하여 지방에서 전자투표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68]

---

67) 캐나다 행정부 홈페이지.
https://www.canada.ca/en/democratic-institutions/news/2018/12/government-of-canada-passes-elections-modernization-act.html (검색일 2019.7.1.)

68) 캐나다 선거관리청 홈페이지. 2010.2. ‘A Comparative Assessment of Electronic Voting.’
https://www.elections.ca/res/rec/tech/ivote/comp/ivote_e.pdf (검색일 2019.5.24.)

다. 실시사례[69]

- 연방선거(하원의원 선거)
  - 2013년 보궐선거 시 투표율 제고를 위해 처음 시범 실시한다고 했으나 실제 시행되지 않았으며, 현재 전면적인 도입은 하고 있지 않음.
- 주 선거(Provincial Election)
  - (온타리오 주) 2018년 주 선거에서 최초로 전자투표(광학스캔방식) 실시[70]
  -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 2016년 주 선거법 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시 투표소투표, 온라인투표, 전화투표 중 선택하여 투표하도록 함.
- 지방선거(Municipal Election)
  - (알버타 주) 2004년 에드먼톤(Edmonton)시에서 사전투표시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실시
  - (뉴브런스윅 주) 2004년 세인트존(Saint John)시에서 광학스캔투표기 사용
  - (노바스코샤 주) 2008년, 2012년, 2016년 일부 시(municipalities)에서는 온라인 투표 실시
  - (온타리오 주) 2002년 윈저(Windsor)시 보궐선거와 2006년 킹스톤(Kingston)에서 터치스크린 전자투표를 실시하였고, 2003년 오타와(Ottawa)에서 광학스캔, 2003년, 2006년, 2014년, 2018년(150개 시) 많은 시에서 온라인 투표를 실시.[71] 그리고 2010년에는 33개 시에서 전화상 투표 및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였음.

---

69) http://en.wikipedia.org/wiki/Electronic_voting_in_Canada (검색일 2019.5.24.)

70) CBC. 2018.5.9. ‘Ontario to use electronic voting machines for first time in spring election.’ https://www.cbc.ca/news/canada/toronto/ontario-election-electronic-voting-machines-1.4655427 (검색일 2019.7.1.)

71) TVO. 2018.10.4. ‘How E-voting is taking over Ontario municipal elections.’ https://www.tvo.org/article/how-e-voting-is-taking-over-ontario-municipal-elections (검색일 2019.5.24.)

10. 호 주

가. 도입배경[72]

- 호주선거위원회는 2000년 남극에 있는 선거인과 해외에서 미리 우편투표를 신청한 선거인은 인터넷투표(internet voting)를,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선거인과 시각장애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터치스크린투표(touch screen voting)를, 재외선거인은 호주대사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터치스크린투표를 할 것을 제안하였음.[73]
- 그러나 이에 대해 의회위원회는 선거권자가 투표소에 나오는 것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으로 투표소에 나오지 않고 원격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자투표만을 채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함.
- 의회 선거사안합동상임위원회(Joint Standing Committee on Electoral Matters)의 권고에 따라 2007년 연방선거 전에 시각장애 선거인은 투표소 전자투표(LEV)를 하고, 외국에 있는 호주국방부(Australian Defence Force) 소속의 선거인은 누구나 접근가능 한 인터넷이 아닌 국방부전용네트워크(Defence Restricted Network)를 통해 원격 전자투표(REV)를 시행했음.
- 시행결과 2007년 선거의 선거인 당 평균 선거비용이 8.36호주달러이었던 것에 비해 시각장애 선거인들의 투표소 전자투표의 선거인 당 평균선거비용은 2,597호주달러, 외국에 있는 국방부 소속 선거인을 위한 원격 전자투표의 비용은 1,159호주달러로 그 비용이 너무 과다하여 다음 연방선거부터는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함.
- 하지만 호주선거위원회에서는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전화투표방법을 도입하였

---

72) 의회홈페이지. 2012. ‘e-voting; the promise and the practice(전자투표의 전망과 운영현황).’ 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pubs/BN/2012-2013/EVoting (검색일 2019.6.4.)

73) 전자투표(electronic voting)은 연필로 투표용지에 기입하는 게 아니라 전자기술기기를 사용하여 투표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는 투표소 전자투표(localized electronic voting: LEV)와 원격 전자투표(remote electronic voting: REV)로 개념을 구분해야 함. 투표소 전자투표는 선거인이 기표소가 있는 투표소에 나와 컴퓨터, 터치스크린과 같은 전자기기를 가지고 투표하는 것이고 원격 전자투표는 실제로 기표하고 개표하는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선거인이 인터넷에 로그인하여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임.

고 그 외에 주 선거위원회에서 전자투표 도입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선거인등록 시스템 등 현재의 법으로도 가능한 전자투표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음.

- 2000년 이후에 각 주와 준주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투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호주수도준주(ACT)에서는 투표소 전자투표를, 뉴사우스웨일즈주(NSW)에서는 원격 전자투표를 시행하고 있음.

나. 법적근거

- 「국민투표법(Referendum Act)」과 각 주의 선거법(Electoral Act)에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이 있음.
- 「호주수도준주선거법(Australian Capital Territory Electoral Act, 1992)」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투표 및 개표, 집계에 대한 조항들과 전자선거기구의 보안에 관한 조항이 있음.
- 연방선거법 제15B장에는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전자보조투표장치(Electronically assisted voting)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연방선거법에서 투표방법을 규범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연방선거에 전자투표를 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74]

다. 실시사례

- 연방선거 차원에서 실시되지 않았으나, 각 주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음.

1) 호주수도준주(ACT)[75]

- 호주수도준주의 경우 1998년 하원의원 선거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인해 재개표

74) 선거법에 선거인은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해야하며 그 외에 우편투표, 사전투표,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호주선거위원회는 이러한 '지나치게 복잡하고 규범적인(extremely complex and prescriptive)' 연방선거법 때문에 규정을 지키기 어려워 소모적인 선거분쟁이 생기고, 투표방법에 기술발전을 도입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음.

75) ACT electoral commission office(호주수도준주 선거위원회). 'Electronic voting and counting(전자투표와 개표)' https://www.elections.act.gov.au/elections_and_voting/electronic_voting_and_counting (검색일 2019.6.4.)

를 실시한 결과 선거공무원들의 개표 및 집계 실수가 드러나면서 빠르고 정확한 전자개표시스템의 도입논의가 시작되었음.

- 2000년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전자투표가 가능해졌고, 2001년 호주수도준주 하원의원 선거 4개의 투표소, 8개의 기표소에서 투표소 전자투표를 시작하였음.
- 선거인들은 선거일로부터 3주 전부터 사전투표센터에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투표방식을 고를 수 있고 전자투표시스템이 없는 기표소에서는 전통적인 종이투표방식으로 투표함.
- 2008년에는 전자선거인명부 도입, 전자투표소의 확대뿐만 아니라 투표용지 문자인식 스캐닝시스템(Intelligent character recognition scanning system)을 도입하여 개표시간을 줄임.
- 전자선거인명부시스템은 각 개표소의 투표한 사람의 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선거결과를 개표상황실(Tally room)로 바로 전송하여 선거일 밤에 개표 결과를 알 수 있음.

<그림 11-7> 호주수도준주(ACT)의 전자투표 모니터와 바코드본인인식기, 특수키패드[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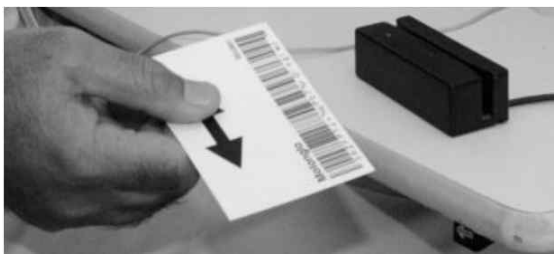

76) 기표소는 똑같이 종이상자로 되어있고 위쪽을 향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보자 못하도록 하는 컴퓨터 모니터와 위 · 아래 · 좌 · 우, 선택, 취소, 종료, 다시시작 키만 있는 특수키패드, 바코드인식기가 있음.

2)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주

- 2010년 뉴사우스웨일즈 주 의회에서는 2011년 선거에서 원격 전자투표인 아이보트(iVote)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고 12월에 관련법을 통과시켰음.
- 아이보트(iVote)는 시각장애 선거인, 도움이 없이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문맹자, 투표소에서 2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선거일에 뉴사우스웨일즈 주에 있지 않는 선거인만 참여할 수 있음.

<그림 11-8>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아이보트 실행 웹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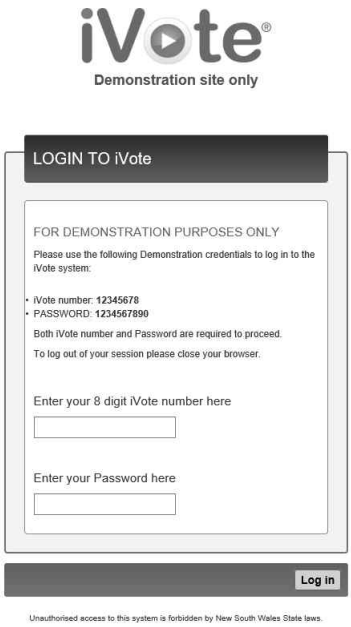

- 아이보트 전자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선거인은 우편투표 방법과 동일하게 신청을 하여 6자리의 핀 넘버를 받은 후 선거인의 SNS 혹은 전화로 8자리의 아이보트 숫자를 받음. 이 숫자와 핀 넘버가 있어야 아이보트 시스템에 로그인해 투표할 수 있음.
- 인터넷을 통해 투표하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선거인은 IVR(전화수신기를 통해 들리는 DMTF로 전화응답방식 시스템)을 통해 투표할 수 있으며 기표를 완료하고 받는 영수증에 나온 숫자를 가지고 선거 후에 자신의 표가 제대로 집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음.

3) 빅토리아(Victoria) 주[77]

- 2006년 빅토리아 주 선거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선거인을 위한 전자보조기구투표(Electronically Assisted Voting: EAV)와 터치스크린, 특수한 키패드, 헤드폰 기기를 갖춘 기표소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선거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투표소 전자투표(LEV)를 실시했음.
- 이는 전자개표결과판, 선거인명부스캐너, 선거관리관을 위한 디지털보조기기[78] 등 컴퓨터 선거관리시스템으로 발전하여 빅토리아 주의 모든 사전투표소에는 전자보조기구(EAV)가 마련되어 있음.
- 선거위원회는 선거보조가 필요하지 않은 선거인에게까지 전자보조기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임.
- 2010년 선거에서는 전화기를 연결하여 투표할 수 있는 높은 버전의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했음.

<그림 11-9> 호주 빅토리아 주 투표소의 전자보조기구

4) 그 외 지역

- 서호주(Western Australia)에서는 전자투표는 아니지만 사전선거기록시스템(Early Vote Recording System: EVRS)을 2006년 보궐선거에 활용해 보았으나 사

77) 빅토리아 주 총무처 홈페이지. 빅토리아주선거위원회(Victorian Electoral Commission) 설명부분. https://www.audit.vic.gov.au/report/victorian-electoral-commission?section=31780--1-background

78) 전자인증명부(Electronic Certified Lists: ECL)은 선거인명부의 컴퓨터버전으로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받기 전에 본인확인을 할 때 쓰는 것으로 2016년에는 1,544개를 활용하였음.

용하기 불편하고 비용이 6배나 많이 들어서 이후로는 도입하지는 않았음.

- 타즈메니아(Tasmania), 남호주(South Australia), 퀸즐랜드(Queensland), 북부준주(Northern Territory)의 선거위원회에서는 아직 전자투표를 시행할 계획이 없음.

<표 11-3> 주요 전자투표 방식

방식	유형	설명	사용 국가
PSV	터치스크린 방식 (touch screen system)	• 스크린에 정해진 부분을 눌러 투표하는 방식 • 네덜란드 및 2000년 영국 지방선거에서 실험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벨기에, 부탄, 브라질, 불가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온두라스, 인도, 이란, 이라크, 일본, 키르기스스탄, 몽골, 나미비아, 파나마, 페루, 필리핀, 러시아,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미국, 베네수엘라
	PC 기반 방식 (pc based technologies)	• 투표자가 투표권 등록 및 투표를 위해 스크린과 키패드의 조합을 활용하는 기술 • 브라질에서 사용 중	
	이동키오스크 (static or mobile kiosk)	• 투표의 편의 증진을 위해 투표소가 아닌 선거구 내의 편리한 장소에 설치되거나, 직장, 병원, 양로원 등 다양한 장소로 이동이 가능하며 키패드나 터치스크린 기술 활용 • DREs(Direct Recording Electronic)로 지칭	
RVEM	전화투표 (telephone voting)	• 유선전화나 이동전화를 사용하여 투표하는 시스템 • 영국의 Milton Keynes, Bristol and Croydon 등의 주민투표에서 활용	아르메니아, 호주, 캐나다, 에스토니아, 프랑스, 뉴질랜드, 몽골, 파키스탄, 파나마, 스위스, 미국
	SMS (short message service text voting)	• 문자메시지서비스 기능을 활용하여 이동전화로 투표하는 시스템 • 2002년 영국 지방선거에서 실험	
	인터넷 투표 (internet voting)	• 인터넷을 이용하여 어느 장소에서나 투표 가능 • 미국 Arizona주 민주당 예비선거와 2002년 영국 지방선거에서 실험	
	디지털 TV방식 (interactive digital TV)	•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문 선거에서 활용된 사례가 현재까지는 없음.	

※ PSV: Poll site e-voting, 터치스크린 방식 등을 사용한 투표소 전자투표
RVEM: Remote Voting by Electronic Means, 인터넷 투표와 같은 원격 전자투표
출처: IDEA. ICTs IN ELECTIONS DATABASE
https://www.idea.int/advanced-search?th=ICTs%20in%20Elections%20Database&region=&question=
(검색일 2019.6.26.)

<표 11-4> 각국의 전자투표 실시 현황

국가명	적용선거범위	전자투표방식	투표자 범위	비 고
아르헨티나	지방선거	EBPs	특정 선거구 투표자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코르도바, 살타 등의 지역에서 지방입법과 집행부 선거 등을 위해 실시
아르메니아	전국선거	인터넷 투표	재외투표자 군인투표자	선거법 제62조
호 주	지방선거	인터넷 투표	특정 선거구 투표자 군인투표자	해외 복무 중인 군인과 서부 지역에서 시각 장애인에 한해 실시
방글라데시	전국선거	DREs /EBPs	특정 선거구 투표자	2018 총선 6개 선거구에서 실시 국민 대표 명령 제26B조
벨기에	전국선거 지방선거	EBPs	특정 선거구 투표자	일부 코뮌에서 실시 자동투표에 관한 법률2014
부 탄	전국선거 지방선거	DREs	모든 투표자	선거법 제330조
볼리비아	기타선거	DREs	특정 선거구 투표자	공공서비스협동조합 선거에서 시스템 적합성을 테스트함.
브라질	전국선거	DREs	모든 투표자	선거법 제59조
불가리아	전국선거 지방선거	DREs	모든 투표자	선거법 제268조
캐나다	지방선거	인터넷 투표	특정 선거구 투표자	일부 자치단체와 읍 단위에서만 실시
콩고민주공화국	전국선거	EBPs	모든 투표자	2018년 총선에서 처음 실시
도미니카공화국	전국선거	OMR or OCR	모든 투표자	개표수준에서의 전자투표
에콰도르	지방선거	기타	특정 선거구 투표자	기본선거법 민주주의 규정
에스토니아	전국선거	인터넷투표	모든 투표자	선거법 제7장
피 지	기타선거	DREs EBPs	특정 선거 해당 투표자	산업단체나, 학생협회의 선거에서 실시, 피지간호협회 선거가 최초
프랑스	전국선거	인터넷투표	특정 선거구 투표자	3,500 이상의 코뮌에서 전자투표 실시가 가능, 6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온두라스	전국선거	OMR or OCR	특정 선거구 투표자	2017년 경선과 총선에서 실시
인 도	전국선거 지방선거	DREs	모든 투표자	국민대표법
이 란	지방선거	DREs	특정 선거구 투표자	2017년 시와 마을의회선거, 145개의 시에서 실시
이라크	전국선거	OMR or OCR	모든 투표자	2018년 첫 실시, 기계를 통해 투표용지 판독과 지문 채취를 함께 함.
일 본	지방선거	DREs	특정 선거구 투표자	2002년에 처음 시범 실시 각 지방자치단체가 투표 방법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함.

국가명	적용선거범위	전자투표방식	투표자 범위	비 고
키르기스스탄	전국선거	OMR or OCR	모든 투표자	2017 대통령 선거에서 실시
몽 골	전국선거 지방선거	OMR or OCR SMS문자투표	모든 투표자	자동화된 선거제도에 관한 법 제1조제1항, 제28조 2015년 국민투표에서 문자 투표를 처음 실시
나미비아	전국선거	DREs	모든 투표자	투표 대기시간이 길어져 이탈하는 선거인이 많아 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함.
뉴질랜드	전국선거	인터넷투표	재외투표자	투표용지를 다운 받아 다시 업로딩 함.
파키스탄	전국선거	인터넷투표	재외투표자	재외투표에 있어 모든 국가에서 가능
파나마	전국선거 기타선거	DREs	재외투표자 특정 선거구 투표자	파나마 시티 1개의 선거구에서 시범 실시
페 루	전국선거 지방선거	DREs	특정 선거구 투표자	2016 선거에서 전자투표 실시 선거구를 30개에서 16개로 줄였고, 전자투표기가 고장 사례도 있어 투표소마다 선거권자 과다 현상이 나타남.
필리핀	전국선거 지방선거	OMR or OCR	모든 투표자	공화국 법 No.8436
러시아	전국선거 지방선거	DREs OMR or OCR	특정 선거구 투표자	선거권 보장 및 국민 투표의 연방 시민 참여에 관한 연방법 제2, 61조 전국에서 약 10% 정도의 선거구에서 실시
스위스	전국선거 지방선거 기타선거	OMR or OCR 인터넷투표	재외투표자 특정 선거구 투표자	정치적 권리에 관한 조례 제27조 연방수상직의 전자투표에 관한 조례
아랍에미리트	전국선거	DREs	모든 투표자	2015 연방국민협의회에서 실시
미 국	전국선거 지방선거	DREs OMR or OCR 기타	각 주 별로 상이	몇몇 주들은 해외와 군사 선거권자에게 전자적 투표용지 전송을 허용
베네수엘라	전국선거	DREs	모든 투표자	선거과정 기본법의 일반규칙 제301조

※ 기타선거-선거관리기관이 지원하거나, 관할하는 비공직선거
※ 직접기록전자시스템(DREs, Direct recording electronic systems)방식은 투표확인지발급기(VVPAT, voter-verified paper audit trail)를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표기하였음.
※ OMR, OCR(Optical Mark Recognition,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수기로 작성한 투표지를 광학 스캔 방식으로 데이터를 인식
※ EBPs(Electronic ballot printers) 개별 투표지를 프린터에 넣고 전자입력방식을 통해 후보자를 선택하면 선택지가 출력되고 이를 투표함에 넣는 방식
출처: IDEA. ICTS IN ELECTIONS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data/icts-elections (검색일 2019.6.25.)

<표 11-5> 전자투표 비실시 국가 현황

구분	국가명	현황
전자투표 시행 이후 폐지한 국가	핀란드[79]	2008년 지방선거 3개 선거구에서 실시되었으나 대법원은 결과를 무효로 선언하고 기존의 종이 투표 방식으로 선거를 재실시 하였음. 시범실시 실패 이후 전자투표 추진계획을 유보함.
	프랑스	사이버공격의 위험성을 우려해 2017년 재외국민의 전자투표 계획을 폐지
	독 일	2005년까지 전자투표 사용 연방선거법 제35조는 전자투표를 규정하지만 2009년 헌재의 시행령 위헌 판결 이후 사실상 폐지
	카자흐스탄	2004년, 2005년, 2007년 선거에서 사용되었으나 계속된 공공의 신뢰문제와 시스템 갱신의 이유로 2011년 대통령 선거와 2012년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전자투표제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
	네 팔	2008년 제1대 의회의원 선거와 2014년, 2015년의 제2대 의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사용되었으나, 2017년, 2018년의 선거에서는 사용되지 않음.
	네덜란드	"We do not trust voting computers" 캠페인의 결과로, 20년 넘게 시행되었던 전자투표를 2007년에 폐지
	노르웨이	2011년 지방선거에서 10개의 시도에서, 2013년 지방선거에는 12개의 시도에서 시범실시 됨.
	파라과이	2001년 지방선거 7개의 시도에서 첫 실험적 시행이 있었음. 2번째 실험은 2003년 대통령 선거에서 33개의 선거구에서 시행되었음.
	루마니아	2003년 국민투표에서 해외주둔 군인에 한하여 시행되었음.
타당성 조사 및 실험을 수행 중인 국가	스페인	사이버보안의 우려 때문에 전자투표 실시를 보류하고 있음.
	터 키	전자투표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영 국	현재 총선에서는 전자투표가 금지되어있으나 지방선거와 유럽의회선거에서 17개 시범사업을 통해 실험되었음.
	멕시코	2021년 멕시코 주 선거의 재외투표를 인터넷으로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
	알제리	2022년 의회선거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준비 중
	바레인	자동투표기 사용계획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으나 최근 뉴스는 없음.
	콜롬비아	2011년 법률 1475호에서 2014년 의회선거까지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되지 못하였음.
	코스타리카	2018년에 전자 선거를 고려하였으나 높은 도입 비용의 문제로 시행되지 않음. 2002년부터 다양한 방법이 실험 되어 왔으나 널리 시행되지는 않고 있음.
	과테말라	2017년 정부는 사이버 보안상의 문제로 전자투표의 계속적인 추진은 위험하다고 판단
	아이티	사용된 적은 없으나 꾸준히 제안이 있음.
	아이슬란드	전자투표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 중
	인도네시아	선거위원회에서 투표, 개표, 재개표 과정에서의 전자통신기술의 활용방안 연구 중

구분	국가명	현황
	아일랜드	2002년 총선 3개의 선거구에서 전자투표기가 시범운행 되었고, 이후 도입비용과 보안에 대한 논쟁이 많았고 기존 전자투표기의 처분도 논의 중
	이탈리아	전자투표 시스템의 도입은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3000명의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실험을 시행하기도 함.
	쿠웨이트	2016년 국회선거에서 도입을 논의한 적이 있음.
	리투아니아	온라인 투표의 실험이 2012년 실시 되었고, 2019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 예정이지만, 정부는 보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음.
	몰도바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인터넷 투표의 타당성 조사가 보고되고 예비 로드맵이 작성 되어있음.
	나이지리아	전자투표의 사용에 대한 토론은 있지만, 시행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진행은 없음.
	포르투갈	기존 선거방식과 병용이 가능한 모바일 투표에 대해 검토
	사모아	2021년 총선에서 선거인의 확인과 개표 등의 절차에서 전자적 방법을 도입할 예정
	시에라리온	2018년 선거기간 동안 향후 전자투표에서 잠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일부 지역에서 실험
	남아프리카공화국	선거위원회는 전자투표 시행을 준비 중이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우크라이나	선거위원회가 전자투표에서 사용하기 위한 블록체인의 실험을 2018년 시행
	우루과이	이전의 전자투표 계획은 폐기되었으나, 향후 실시 가능성을 가지고 필요 예산을 추정 중임.
	잠비아	선거인과 후보자의 등록, 선거결과 전송 등의 과정에서 전자통신기술을 실험하고 있음.
기타	오스트리아	2009년 총학생회 선거에서 사용되었으며 내무부 등 공공기관의 특별 조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음.
	리히텐슈타인	장래에 전자투표가 승인될 수 있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만. 타당성 조사와 실험은 아직 실시되지 않음(국가적 정치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제8b조)
	스리랑카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토론이 있었고 이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음.

출처: IDEA. ICTs IN ELECTIONS DATABASE
https://www.idea.int/advanced-search?th=ICTs%20in%20Elections%20Database&region=&question= (검색일 2019.6.26.)

79) Wikipedia. ‘Electronicvoting’
https://en.wikipedia.org/wiki/Electronic_voting#Finland (검색일 2019.7.1.)

제12장

개표

제12장
개표

❍ 많은 국가들이 투표종료 후 바로 개표를 실시함. 다만 투표소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투표소 개표)와 지정 개표소(개표소 개표)로 이동해 개표를 하는 국가로 구분
❍ 앞장 전자투표에서도 설명된 바와 같이 전자투표와 마찬가지로 개표에 있어서도 전자개표가 늘고 있는 점이 특징임.

1. 영 국

가. 개표소(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44호)

- 개표소는 개표하기에 쉽고 혼잡하지 않으며 충분한 인원의 참석이 가능한 장소 중에서 선거관리관이 지정하며, 보통 선거구 단위로 1개의 개표소를 두는 개표소 집합개표의 형태를 채택하고 있음.
- 선거관리관 및 그 서기, 후보자 및 후보자가 선택한 1인, 선거사무장,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선거관리관의 허가 없이 개표를 참관할 수 없음.

나. 개표절차(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45호, 1985년 국민대표법 부칙 4. 제82호)

- 개표는 선거관리관이 투표종료시각 22시 이후 가능한 빨리 아래의 절차를 행함.
  - 선거관리관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각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의 수를 계산·기록
  - 개표 전에 우편투표지를 1개 이상의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혼합
  - 각 투표함의 투표지는 다른 1개 이상 투표함의 투표지와 혼합
  - 각 후보자의 득표를 개표하는 혼합개표방식을 취함.

- 투표함이 전부 도착하지 않더라도 도착하는 순서대로 개함할 수 있음.
- 개표는 쉬는 시간 외에는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선거관리관이 참관인과 합의한 경우 오후 7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개표를 중단할 수 있음.

다. 재개표(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46조)

-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투표 집계 또는 재집계가 완료된 때 선거관리관에게 재개표를 요구할 수 있음. 선거관리관은 그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음.

라. 무효투표(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47조)

- 공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투표
- 2인 이상의 후보자에게 투표된 투표
- 뒷면에 인쇄된 번호를 제외하고,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시가 되어 있는 투표
- 기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불확실한 투표
- 소정의 기표란 외에 기표된 투표
- “×”기호 이외의 방법으로 기표된 투표

  ※ 해당 투표가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이 명확하며, 기호를 적었다고 해서 자체로서 특정 투표자가 투표한 것을 확인할 수 없으면 무효처리 되지 않음.

2. 미 국

가. 개요

- 개표는 투표종료 후 투표소가 폐쇄되는 즉시 각 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들 개표사무도 담당함.
- 투표종료 후 투표참관인(inspector)이 투표기를 잠그고, 투표기에 명시된 투표자 수를 적은 종이에 서명, 만약 종이 투표지가 사용되었다면, 개표하고 모든 투표수를 계산함(뉴욕 주 선거법 제9-102조).[1)]

- 펀치카드 또는 광학 스캔 투표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주에서는 2명 이상의 위원이 판독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집계센터(지정된 수신국, 중앙집계소 2개 이상 있을 수 있음)에서 개표함(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15202조).[2)]
- 개표사무는 카운티별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투표구위원회) 그 사무를 맡는 것이 통례이지만 일정 수 이상의 투표자가 있는 투표소에서 개표사무를 담당하거나, 전자투표를 채택하고 있는 카운티의 집계센터에서 개표사무를 맡기 위하여 집계위원회를 두고 있는 주도 있음(네바다, 텍사스,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인디애나, 와이오밍 주 등).

나. 개표참관

개표참관을 위해 각 정당으로부터 대표자 1명이 파견되어 입회하는 것이 보통임.

다. 개표절차의 공개

- 중앙집계소의 집계절차는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 원칙이지만 개표의 공개여부는 주마다 다름(캘리포니아 주는 공개 - 선거법 제15204조).[3)]
- 비공개일 경우 선거관리인, 선거사무종사자, 참관인 및 법령에 의해 인정된 자 이외에는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음.

라. 개표결과의 보고(콜로라도 주 선거법 제1-7-601조)[4)]

- 개표결과가 확정되면 득표수집계용지(tally sheet)에 확정수를 정식으로 기입하고

---

1) New York State Election Law and Rules. Chapter 17. Article 9. Section 9~102. https://www.elections.ny.gov/ElectionLaw.html (검색일 2019.10.8.)

2) California Elections Code. Division 15. Chapter 3. Semifinal Official Canvass. Article 2. 15202.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Text.xhtml?lawCode=ELEC&division=15.&title=&part=&chapter=3.&article=2. (검색일 2019.10.8.)

3) California Elections Code. Division 15. Chapter 3. Semifinal Official Canvass. Article 2. 15204.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Text.xhtml?lawCode=ELEC&division=15.&title=&part=&chapter=3.&article=2. (검색일 2019.10.8.)

4) Colorado Revised Statutes. Title 1. Election. Article 7. 1-7-601 Judge's Certification and Statement. https://www.sos.state.co.us/pubs/info_center/laws/Title1/Title1Article7.html (검색일 2019.10.8.)

개표사무에 종사하는 자 및 참관인이 서명함.

- 개표가 종료되면 유효표와 무효표를 금속상자에 넣어 봉함하고 선거개표보고서(election returns), 기타 선거관계서류 및 투표함, 교부되지 않은 투표용지, 기타 비품 등을 카운티의 최고선거기관인 카운티 서기 등에게 보냄.
- 카운티 서기는 이송된 선거개표보고서, 득표수집계용지를 이용하여 카운티의 선거속보를 작성, 카운티 선거조사위원회의 조사·증명을 거쳐 공표함과 동시에 그 부본을 주무장관 또는 주 선거위원회에 보냄.
- 각 카운티로부터 온 선거속보는 주 선거위원회나 주 선거조사위원회에서 조사·검증해 집계·확정됨.

3. 프랑스

가. 투표소 개표(선거법 제65,67조)

- 투표에 참가한 선거인 중에서 읽고 쓸 줄 아는 일정한 수를 개표참관인(scrutateur)으로 지명, 이들을 4개 이상의 개표조로 나누어 개표. 후보자로 하여금 개표참관인을 지명하게 할 수 있음.

  ※ 후보자의 참관인은 투·개표 과정을 감시할 권리를 가지며 투표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발생하는 모든 다툼에 대하여 선거록에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나. 개표의 진행(선거법 제65조)

- 투표종료 후 투표함을 열고 봉투의 수를 확인한 후, 그 수가 선거인명부 사본상의 확인(투표소요원의 서명 등)된 수와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개표록에 기재

  ※ 개표는 서명날인부의 서명자 수를 집계한 후 즉시 개시하며, 중단 없이 계속해 실시해야 함(선거법 시행령 제63조).

- 투표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100매씩 묶어 봉투에 넣어 봉함.
- 2명 이상의 후보자 측 개표참관인이 그 봉투에 서명
- 1명의 개표참관인이 각 봉투에서 투표용지를 꺼내어, 접혀진 것을 펴서 다른 개표참관인에게 넘김.

- 투표용지를 인계받은 개표참관인은 큰 소리로 그 내용을 읽음.
- 2명 이상의 개표참관인은 개표결과를 기록
- 투표기가 설치되어 있는 투표소의 경우 투표관리관은 서기가 즉시 기록할 수 있도록 투표결과를 큰소리로 읽음.

다. 무효투표(선거법 제66,174조, 선거법시행령 제66-2조)

- 동일한 봉투에 복수의 투표지가 들어 있는 것(다만, 동일한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는 1표로 계산)
- 백지투표용지
-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백히 판명할 수 없는 투표지
- 봉투에 들어 있지 않은 투표지
- 정규의 봉투가 아닌 봉투에 들어 있는 투표지
- 착색된 종이에 기표된 투표지
- 투표지 또는 봉투의 안쪽 또는 바깥쪽에 확인할 수 있는 투표가 있는 것
- 투표지 또는 봉투에 후보자 또는 제3자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이 적힌 투표
- 수 개의 선거구에 입후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

라. 개표의 총집계(선거법 제175조, 선거법시행령 107조)

- 개표의 총집계는 모든 선거구에서 투표실시 다음날인 월요일에 도청소재지에서 실시
- 개표의 총집계는 후보자 대리인의 입회하에 투표조사(검사)위원회에 의하여 행해짐.
- 동일한 위원회는 복수의 선거구에 대한 개표 총집계를 할 수 있음.
- 개표진행
  - 투표가 종료된 후 월요일 자정까지 완료
  - 개표록은 2부 작성하고 위원이 서명
  - 개표록 1부는 헌법평의회에 송부

4. 독 일

가. 개표절차

- 개표는 오후 6시 투표종료 직후 각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의 유·무효, 후보자 또는 후보자명부별 득표수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연방선거법시행령 제67조)
- 각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은 해당 투표구의 각 후보자 및 주 후보자명부에 대한 투표수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는 경우 그 결과를 즉시 게마인데 행정청에 보고하고, 게마인데 행정청은 관내 모든 투표구의 투표결과를 취합하여 선거구선거위원장에게 전화, 또는 다른 전자적인 형태로 가장 빠른 방식으로 보고한 뒤 정식 보고서를 보냄(연방선거법시행령 제71조).
- 우편투표구 선거위원회는 우편투표에 대해 각 선거구후보자 및 주명부에 대한 득표수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즉시 선거구 선거위원장에게 보고(연방선거법시행령 제75조)
- 선거구 선거위원장은 그 선거구의 잠정적인 선거결과를 집계해 우편투표결과를 포함시켜 주선거위원장에게 보고하며, 주선거위원장은 연방선거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집계를 마치면 연방선거위원장이 선거결과를 직접 공표함(연방선거법시행령 제76~78조).
- 모든 선거위원회의 선거결과가 확정된 후(연방선거법시행령 제79조)
  - 선거구 선거위원장은 그 선거구의 최종선거결과와 당선된 지역구 후보자의 이름을 함께 공고함.
  - 주선거위원장은 그 주의 최종선거결과와 주후보자명부의 이름을 함께 공고함.
  - 연방선거위원장은 전체 선거구역의 최종 선거결과와 정당 및 그 외 후보자를 추천한 단체에 대한 의석배분 사항 및 전체 선거구에서 당선된 후보자의 이름 등을 공고함.

나. 무효투표(연방선거법 제39조)

- 일반투표의 경우 관제 투표용 봉투에 넣어서 투표되지 않은 표, 투표용 봉투가 투

표의 비밀을 위태롭게 하거나 이물질이 동봉된 경우, 투표용지가 관제가 아니거나 다른 투표구에서만 유효한 표, 아무런 표시가 없는 표, 투표인의 의사를 확실히 식별할 수 없는 표, 관계없는 내용이나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표는 무효로 함.

- 우편투표의 경우에는 시간 내 도착되지 아니한 표, 선거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무효로 하며, 우편투표 후 선거당일 또는 그 전에 사망하여 선거권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지 않음.
- 투표구위원회는 투표의 효력 및 투표과정이나 투표결과의 확인시의 모든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며,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재심사권이 있음(연방선거법 제40조).

다. 선거구(지역구의원)선거결과 확정(연방선거법 제41조)

- 각 게마인데 행정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즉시 이를 집계하여 해당 선거구에서 각각 선거구후보자 및 주명부에 대한 투표수를 확정하고, 해당 소선거구의 당선인을 확정하여 그 결과를 공표
- 해당 선거구에서의 주명부에 대한 확정투표수의 결과는 즉시 선거구선거위원장에게 보고
- 선거구선거위원장은 해당 선거구에서 당선된 선거구후보자에게 당선을 통지하고 당선의 수락여부에 대하여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도록 요구함.

라. 주후보자명부(비례대표의원)선거결과 확정(연방선거법 제42조)

- 각 선거구선거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주선거위원회는 즉시 이를 집계하고 해당 주의 각 주명부에 대한 투표수를 확정하고 집계결과를 즉시 연방선거위원회에 보고
- 연방선거위원회는 각각의 주명부에 대한 배당의석수 및 당선자를 확정
- 주선거위원장은 당선인에게 통지하고 당선의 수락여부에 대해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도록 요구함.

5. 일 본

가. 개표관리자(공직선거법 제61조)

- 각 선거마다 개표관리자를 두며, 해당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 중에서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가 선임함.
- 중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 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와 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선거구선출의원의 개표관리자를 비례대표선출의원의 개표관리자로 할 수 있음(참의원의원선거도 동일).

나. 개표입회인(공직선거법 제62조)

- 후보자·정당은 해당 선거의 각 개표소마다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개표입회인 1명을 정하여 선거기일 전 3일까지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 동일인을 해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다른 선거의 개표입회인으로 신고할 수 없음.
- 각 개표소마다 개표입회인은 총 10인을 초과할 수 없음(10명 초과시 추첨).
  ※ 동일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속하는 공직후보자의 추천에 관련되는 자는 하나의 개표구에 있어서 3명 이상을 개표입회인으로 신고할 수 없음(3명 이상일 경우 2명만 추첨으로 지정).

다. 개표구(공직선거법 제18조)

- 설치권자: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
- 설　　치
  - 개표구는 원칙적으로 시·정·촌의 구역으로 함.
  - 하나의 시·정·촌이 2개 이상의 중의원의원선거구로 나눠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선거구에 개표구를 설치함.
  -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나의 시·정·촌에 수 개의 개표구를 설치하거나 수 개의 정·촌을 하나의 개표구로 설치할 수 있음(이 경우 개표구 설치 즉시 고시해야 함).

라. 개표장소 및 개표일시

- 개표장소(공직선거법 제63조)
  - 각 개표구에 각각 개표소를 설치함.
  - 개표장소는 시청, 정촌사무소 또는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함.
  -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가 수개의 시·정·촌의 구역을 합하여 하나의 개표구로 설치한 경우 개표소를 설치하는 장소의 지정·고시는 관계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가 함(공직선거법시행령 제70조의3).
- 개표일시(공직선거법 제65조)
  - 개표는 모든 투표함을 받은 날(즉일 개표) 또는 그다음 날(익일 개표) 함.
  - 개표일시는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고 미리 고시해야 함.
  - 연기개표로 인하여 개표일을 정한 경우에는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관리자 및 선거장에게,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는 수개의 시·정·촌을 구역으로 하는 개표구의 개표관리자와 선거장 및 시정촌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그 뜻을 통지해야 함(공직선거법시행령 제78조).

마. 개표절차(공직선거법시행령 제71~77조)

- 개표관리자는 각 투표구의 투표관리자가 송부한 투표함, 투표함의 열쇠, 투표록, 부재자투표의 조서, 선거인명부 등을 접수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점검한 후 개표를 개시할 때까지 보관함.
- 개표절차
  - 개표관리자는 사전에 고시된 개표개시시각에 개표입회인 3명 이상 입회하에 각 투표관리자로부터 송부받은 투표함을 확인한 후 개표개시를 선언하고 투표함을 개함함.
  - 개표관리자는 투표 집계 전에 가투표 및 대리투표의 가투표와 불수리 또는 거부결정을 받은 부재자투표를 조사하고 개표입회인의 의견을 들어 그 투표의 수리여부를 결정함.

- 수리하기로 결정된 가투표 등은 개표소 폐쇄 후 개표관리자가 별도의 봉투에 넣어 개표입회인과 함께 봉인함.
- 투표 집계는 각 투표의 효력을 결정하고 각 후보자별로 계산하는 것으로, 각 투표소의 투표를 개표구 전체로 혼합하여 행해야 하며, 투표 집계를 행하는 경우 개표사무에 종사하는 자 2명이 동일후보자의 득표수를 계산해야 함.
- 개표관리자는 투표 집계 종료 후 다음 사무를 함.
  ·각 후보자의 득표수 낭독, 개표록 작성
  ·투표 집계결과를 선거장에게 즉시 보고하며 이와 함께 개표록사본을 봉투에 넣어 개표입회인과 함께 봉인한 후 그것을 투표록, 개표록 등 서류와 함께 시정촌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

바. 투표의 효력(공직선거법 제68조)

1) 무효투표

(가)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또는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

-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후보자가 아닌 자 또는 후보자로 될 수 없는 자의 이름을 적은 것
- 하나의 투표용지에 2명 이상 후보자의 성명을 적은 것
-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자 이름을 적은 것
- 후보자 이름 이외의 다른 사항을 적은 것. 다만, 직업·신분·주소 또는 존칭을 적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함.
- 후보자의 이름을 쓰지 않은 것
- 어느 후보자를 적은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

(나)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중의원명부제출정당 등 이외의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 또는 약칭을 적은 것
- 명부제출정당 등의 명부등재자 모두가 사망하거나 후보자로 될 수 없는 직 등에 있는 경우에 해당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약칭을 적은 것

- 하나의 투표용지에 2 이상의 명부제출정당 등에 대하여 명칭·약칭을 적은 것
- 명부제출정당 등의 명칭·약칭 외에 다른 사항을 적은 것. 다만, 본부의 소재지·대표자의 이름 또는 존칭을 적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함.
- 명부제출정당 등의 명칭·약칭을 스스로 적지 아니한 것
- 어느 중의원명부제출정당 등을 적은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

(다)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참의원명부등재자가 아닌 후보자의 성명, 참의원명칭신고정당 등 이외의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 또는 약칭을 적은 것
- 참의원명부를 중복하여 신고한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 또는 약칭을 적은 것
- 하나의 투표지에 참의원명칭신고정당 등의 명칭 또는 약칭을 2 이상 적은 것
- 후보자인 참의원명부등재자의 이름 또는 참의원명칭신고정당 등의 명칭 또는 약칭 이외에 다른 사항을 적은 것. 다만, 후보자인 참의원명부등재자의 이름을 적은 투표에 대하여는 해당 참의원명부등재자에 관련된 참의원명부신고정당 등의 명칭·약칭 또는 직업·신분·주소 또는 존칭을, 참의원명부등재자의 이름 기재가 없는 참의원명부신고정당 등의 명칭 또는 약칭을 적은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참의원명부등재자의 성명 또는 참의원명칭신고정당 등의 명칭 또는 약칭을 스스로 적지 아니한 것
- 참의원명부등재자 중 누구에게 또는 어느 참의원명칭신고정당 등을 적은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
- 피선거권이 없는 참의원명부등재자의 이름을 적은 것

2) 무효가 아닌 투표(공직선거법 제68조의2)

- 동일 이름의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이름만을 적은 투표(제68조제1항제8호 예외)
- 명칭 또는 약칭이 동일한 중의원명부신고정당 등이 2 이상 있는 경우에 그 명칭 또는 약칭만을 적은 투표(제68조제2항제8호 예외)

- 참의원명부등재자의 이름 또는 참의원명부제출정당 등의 명칭 또는 약칭만을 기재한 투표(제68조제3항제10호 예외)

6. 스페인

가. 개표개시(선거법 제95조제1~3항)

- 투표가 끝난 뒤 곧이어 투표소에서 개표 시작
  - 개표는 공개적으로 하며, 동시선거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단되지 않음.
  - 투표관리관은 어떠한 형태로든 개표절차를 방해하거나 어렵게 하는 자의 즉시 퇴거를 명하여야 함.
- 동시선거의 경우 유럽의회, 하원, 상원, 자치시의회, 자치주의회, 카나리아 군도 자치의회의원 순으로 개표를 진행

나. 무효투표(선거법 제96조)

- 공식모형과 다른 봉투와 투표용지에 투표한 것
- 봉투 없는 투표지 및 2 이상의 후보자에 대한 투표지가 포함되어 있는 투표
- 모든 선거 절차에서 후보자의 성명을 수정, 추가하거나 줄을 그어 삭제한 투표용지에 투표를 한 것 또는 후보자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어떤 문구 또는 표현을 삽입하였거나, 기타 자발적 또는 고의적으로 변경을 가한 것
- 상원 선거의 경우 군 선거구에서 4명 이상의 이름을 명시한 투표지
- 그란 카나리아, 마요르카, 테네리페의 도서 선거구, 세우타와 멜리야 선거구에서 3명 이상의 이름을 명시한 투표지
- 나머지 도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이름을 명시한 투표지는 모두 무효로 함.

  ※ 투표지가 들어있지 않은 봉투나, 상원 선거의 경우 기표란에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투표지는 유효한 백지투표로 간주

  ※ 동일한 후보자에 대하여 2명상의 투표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1표로 계산함.

다. 개표절차(선거법 제95,97조)

- 개표의 진행(선거법 제95조제4,5항)
  - 투표관리관은 해당 투표함에서 하나씩 봉투를 꺼내면서 기표된 후보자의 공식명칭 또는 이름을 외치고 투표관리위원, 참관인 및 수임인들에게 해당 투표지를 제시함.
  - 만약 업무수행중인 공증인, 명부상의 대리인, 또는 특정 후보자 소속관계자가 투표관리관이 읽은 투표지 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을 시 현장에서 바로 이에 대한 검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검토 요구를 들어주어야 함.
- 투표의 효력에 관한 결정(선거법 제97조)
  - 개표가 끝나면 봉투의 총수와 선거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명시된 투표자의 총수를 비교해야 함.
  - 투표관리관은 개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 질문한 뒤 이의제기가 없거나,
  - 투표관리위원회가 다수결에 따라 해당 이의제기에 대하여 결정을 내린 후 결과를 발표하되 선거인명부 상 또는 선거인확인서상 등록선거인의 총수, 투표자수, 무효투표지수, 백지투표수 및 각 후보자별 득표수를 밝혀야 함.
  - 투표함에서 꺼낸 투표지는 참석자들이 모인 가운데 폐기되어야 하되 무효표, 이의제기 대상이 된 투표지는 투표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서명한 후 회의록과 함께 보관함.
- 개표록의 작성 및 교부(선거법 제98,99조)
  - 투표관리위원회는 개표록을 통해 결과를 즉시 공표해야 하는데, 지체 없이 이 개표록을 투표소의 외부 또는 입구에 게시해야 함.
  - 개표록 사본 1부를 해당 후보자의 대리인, 때에 따라 참관인, 수임인 또는 후보자에게 교부해야 함. 각 후보자별로 1부 이상은 교부하지 않음.
  - 중앙정부가 국민들에게 선거결과에 대한 임시정보를 제공할 목적에 한해 개표록의 사본 1부를 중앙정부에 파견한 자에게 교부함.
  - 모든 절차가 종료된 후 투표관리관, 관리위원 및 참관인들이 회의록에 서명을 함.
  - 이 회의록에는 선거인명부 혹은 선거인등록서 상의 선거인 수, 투표한 사람의 수, 투표관리위원회의 명단에 나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투표에 참가한 참관인의 수, 무효투표지 수, 백지투표지 수, 각 후보자의 득표수 등을 상세히 기

록해야 함.

- 명부상의 대리인, 후보자 관계인, 수임인, 참관인 및 선거인이 투표 및 개표에 대하여 제기한 이의사항을 요약해 기록함.
- 이러한 이의에 대하여 투표관리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명시하되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시켜야 함.
- 모든 명부상 대리인, 후보자 관계인, 수임인, 참관인은 이 회의록의 사본 1부를 무료로 즉시 교부받을 권리를 가지며 투표관리위원회는 거부할 수 없음.

● 선거서류의 보관 및 전달(선거법 제101,102조)

- 곧이어 투표관리위원회는 선거서류 일체를 3개의 봉투에 나누어 준비
- 첫 번째 봉투에는 다음의 서류들로 이루어진 선거기록철을 투입

① 투표소관리위원회 설치회의록 원본

② 회의록 원본

③ 이 회의록에서 언급하는 서류 중 일련번호가 명시된 투표자명부 및 그 효력이 거부되거나 이의제기의 대상이 되었던 투표지

④ 사용된 선거인명부

⑤ 제출된 선거인등재확인서

- 두 번째 및 세 번째 봉투에는 투표소관리위원회의 설치회의록과 기타 회의록의 해당 사본이 포함됨.

※ 모든 봉투가 봉합된 후 투표소관리관, 관리위원 및 참관인은 봉투에 서명을 하되 해당일자에 개봉을 할 부분 위에 대각선 방향으로 해야 함.

- 모든 서류일체가 준비완료 되었을 때 투표소관리관과 관리위원 혹은 참관인(원하는 자에 한함)까지 함께 투표관리위원회가 속해 있는 재판관할지역의 제1심법원 또는 치안법원으로 즉시 이동하여 첫 번째 및 두 번째 봉투를 전달하는데, 경찰이 이들을 호송하며 필요시 교통편의를 제공함.
- 투표관리관 및 해당 관리위원 및 참관인의 신원을 사전 확인한 뒤 판사는 서류를 접수하고 접수 일시가 기록된 접수증을 교부함.
- 가장 마지막 서류를 접수한 때로부터 10시간 이내에 판사는 개표를 행할 선거위원회로 직접 이동하여 첫 번째 봉투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수령증을 받아야 함.

- 두 번째 봉투는 해당 1심법원 또는 치안법원에 보관되어야 하되 통합개표의 경우에는 선거위원회에 의해 요청될 수 있고, 선거쟁송의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의해 요청될 수 있음.
- 도선거위원회는 판사의 이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 세 번째 봉투는 우체국 직원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이 직원은 투표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이를 수령함. 적어도 투표관리위원 1명이 이 서류 전달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여야 함.
- 선거 다음 날 우체국은 이 모든 봉투를 모아 개표를 행해야 하는 선거위원회로 송달함.

라. 통합개표

- 시기 및 대상(선거법 제103,104조)
  - 통합개표는 선거일 후 3일에 해당 선거위원회에서 행함.
    ※ 상·하원선거에 있어서 통합개표 관련 모든 업무는 도선거위원회가 담당(선거법 제173조)
  - 각 선거위원회는 출마한 후보자의 대리인 및 수임인과 선거위원회의 서기관이 임무를 수행하는 곳에서 모임.
  - 회의는 개표일로 지정된 날 10시에 시작하되, 만약 과반수의 참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거위원회의 회의는 정오까지 연기됨).
    ※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때에도 회의를 개최할 수 없으면 선거위원회위원장은 다음날 새로운 회의를 소집하되, 참석한 자와 일반인은 물론 중앙선거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함. 이 소집령에 지정된 시간에는 참석자의 숫자에 관계없이 회의는 개최됨.
  - 다음 항목에 따른 투표를 개표함.
    1) 재외선거인 투표(선거법 제75조)
    2) 이의제기 대상 투표(선거법 제83조)
    3) 선거법 제100조제2항에 명시된 봉투들(투표관리위원회가 준비한 선거서류가 첨부된 3개의 봉투)
- 통합개표의 절차(선거법 제105~107조)
  - 서기관이 해당 회의 관련 법조문을 낭독함으로써 회의가 개시됨. 이어서 선거위원회 직원들은 선거위원회의 감독 하에 선거법 제100조제2항에 명시된 봉

투들을 연속적으로 개봉함.

- 만약 특정 투표관리위원회의 해당 봉투가 없거나 그 내용물이 불충분할 경우 선거법 제102조에서 언급하는 세 번째 봉투로 이를 보완함. 그것이 없을 경우, 선거법 제101조제4항에 명시된 사항을 침해하지 않고, 특정 후보자의 대리인 또는 수임인이 적법하게 제출한 회의록 사본을 이용함. 만약 서로 상이한 사본이 제출되었을 경우, 어느 것도 택하지 않음.
- 특정 투표관리위원회에서 이중회의록을 작성하였거나 특정 회의록에 명시된 투표자의 수가 투표관리위원회의 선거인등록명부나 선거인등록확인서 상의 선거인수를 초과할 시, 선거위원회는 참관인들의 투표는 개표하고 그 외의 투표는 개표하지 않음. 단 형식적, 사실적 또는 수학적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시정함.
-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선거위원회는 어떠한 회의록이나 투표도 무효화할 수 없음. 선거위원회의 권한은 선거법 제105조제4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투표관리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회의록 사본에 의해 용인된 투표의 개표결과와 합계를 논의 없이 확인하는 것으로 제한되며, 단지 단순한 형식적, 사실적 및 수학적 오류만 시정할 수 있음.
- 선거위원회 서기관은 각 투표관리위원회별 투표에 대한 요약보고를 해야 함.
- 만약 개표할 수가 너무 많을 경우 선거위원회는 상기 조항들에 명시된 업무수행을 위해 두 개의 분과로 나눌 수 있음. 이 경우 선거위원회 위원 중 1명이 한 분과의 서기관 역할을 담당함.
- 통합개표 행위는 중단될 수 없음. 그러나 업무가 시작한 지 12시간 뒤 선거위원회는 다음 날까지 개표를 중단할 수 있음. 그러나 한 선거구에 해당하는 투표의 개표는 완료하여야 함. 개표는 늦어도 선거일후 6일까지 완료되어야 함.

- 이의제기(선거법 제108조제1~3항)
  - 후보자 대리인 및 수임자는 개표종료 후 1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표관리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선거위원회의 개표회의록에 명시된 사건에 대하여서만 언급할 수 있음.
  - 선거위원회는 이러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1일내에 서면으로 결정하며 이 결과를 즉시 후보자의 대리인 및 수임인에게 통보함.

- 이 결정에 대하여 후보자의 총대리인 및 총수임인은 동일한 선거위원회에 1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음.
- 중앙선거위원회는 2일 이내에 당사자들의 진술을 사전 청취한 뒤 그 다음날까지 결정함. 이 결정에 대한 사본을 관할 선거위원회에 송부해 이에 해당하는 공표를 하도록 함.

- 선거서류의 보관 등(선거법 제108조제5~7항)
  - 공표회의록은 3부 작성되어 선거위원회위원장 및 서기관이 서명하며 선거구별 선거인수·투표자수·각 후보자별 득표수·백지투표수·유효투표수·무효투표수·의석배분수 및 당선인명부 등을 명시해야 하며 선거위원회에 제기된 이의사항도 명시하고, 그 결정문 및 중앙선거위원회에 신청한 불복 및 해당 결정문도 명시해야 함.
  - 선거위원회는 회의록 3부 중 1부를 보관하는데, 1부는 당선인이 속할 의회로 보내고 1부는 중앙선거위원회에 보내서 40일 이내에 국가 관보에 선거구별 총 결과를 게재함.
  - 선거위원회는 총 개표회의록의 확인 사본을 요청하는 후보자 대리인에게 교부하고, 당선인에게 당선확인증을 교부함.

7. 스웨덴

가. 투표소 예비개표

- 투표 마감 후 즉시 투표사무원은 투표함에서 투표봉투를 꺼내 개표를 시작함(선거법 제11절 제1조).
  - 개표과정은 공개되어야 하며, 결과는 잠정적임.
- 다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경우 의회의원선거의 개표가 먼저 이루어짐.
- 예비개표가 완료되면 투표사무원은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다음의 서류 등을 송부함(선거법 제11절 제2조).
  - 선거인명부

- 예비개표 집계기록
- 투표소에서 접수한 대리투표용 겉봉투(선거법 제8절 제10조, 제9절 제17조)
- 유·무효판단이 필요한 투표지와 투표소에서 접수한 우편투표 봉투(선거법 제9절 제12,13조)

- 선거위원회는 예비개표 집계기록과 유·무효판단이 필요한 투표지를 지방선거청에 송부하고, 선거인명부와 대리투표용 겉봉투·투표소에서 접수한 우편투표 봉투를 보관함.

나. 선거위원회의 개표

- 선거위원회는 선거일 이후 수요일에 투표소에서 계산되지 않은 투표를 집계하기 위해 개표를 실시함(선거법 제12절 제1조).
  - 개표과정은 공개되어야 하며, 결과는 잠정적임.
- 개표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선거위원회 집계기록 관련 서류 등을 지방선거청에 송부함(선거법 제12절 제7조).

다. 지방선거청의 최종개표

- 최종 개표는 지방선거청에서 실시되며 개표과정은 공개되며,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함(선거법 제13절 제1조).
  - 다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경우 의회의원선거부터 개표
- 투표지의 유·무효(선거법 제13절 제6,7조), 후보자 투표가 무효로 되는 경우(선거법 제13절 제8조) 등을 검토하고 결정해야 함(선거법 제13절 제2조).
- 선거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서류 등이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지방선거청은 그 서류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서류에 결함이 있는 그 이유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해야 함(선거법 제13절 제3조).
- 지방선거청은 개표시간과 장소, 개표순서에 관한 공고문을 기초자치단체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늦어도 개표 개시 전일까지 광역자치구의 지역신문에 게재해야 함(선거법 제13절 제4조).
- 지방선거청은 개표록을 작성해야 함(선거법 제13절 제5조).

- 개표가 종료되면 지방선거청은 선거 결과를 중앙선거청에 통보함(선거법 제13절 제9조).
- 투표지는 별도의 포장에 넣어 선거기간 중에 보관하며, 투표지가 들어 있는 포장은 다음의 경우에만 개봉할 수 있음(선거법 제13절 제10조).
  - 개표의 재개 또는 재개표
  - 선거청에서 선거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무효투표

- 선거인이 보낸 투표지가 안전하게 봉함되지 않았다면 무효로 선언됨(선거법 제13절 제6조).
- 다음의 경우 무효투표로 함(선거법 제13절 제7조).
  - 정당의 명칭이 없거나 한 개 이상의 명칭이 있는 경우
  - 선거참여를 신청하지 않은 정당의 명칭이 있는 경우
  - 명백히 고의로 표시한 자국이 있는 투표지
  - 투표봉투에 하나 이상의 투표지가 들어있는 경우 다만, 모든 투표지에 같은 정당 명칭이 기재되어 있다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나 후보자의 이름이 다른 경우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함.

마. 후보자 투표가 무효로 되는 경우(선거법 제13절 제8조)

-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거나 누구에게 투표한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 정당 명칭을 등록한 정당투표용지에 추가로 후보자 이름을 적은 경우
- 정당 명칭을 등록하고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의 투표용지에 등록하지 않은 후보자의 이름을 적은 경우
- 입후보 승낙을 하지 않은 후보자에게 투표한 경우
- 투표지에 후보자의 이름을 적었으나 후보자 투표란에 아무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 특정인에게 한 표 이상 투표했거나 어느 후보자에게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후보자 투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간주될 경우
- 후보자들의 순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8. 스위스

가. 투표결과의 보고

- 코뮌의 투표소는 투표결과 기록을 작성해 투표지와 함께 주 선거사무소에 전달함(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제9조).
- 주 선거사무소는 즉시 선거구의 투표결과와 의석배분을 조사 함(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제10조).
- 코뮌의 투표결과가 정확하지 않으면 주의 선거사무소가 재검표를 하거나 코뮌에 재검표를 지시(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제11조)

나. 투표결과 정리(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39조)

- 투표가 종료되면 각 주는 투표소에서 온 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함.
  - 선거인 수와 투표자 수
  - 유효와 무효투표지 수, 백지투표지 수
  - 각 명부의 개인 후보자들이 받은 투표의 수(후보자 투표)
  - 각 명부에 대한 추가 투표의 수(법 제37조)
  - 개인 명부에 대한 후보자 투표와 추가투표의 합계(정당 투표)
  - 통합명부의 경우 그 명부상의 집단을 지지한 투표의 총수
  - 백지투표의 수

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무효투표 등(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38조)

- 해당 선거구에서 출마한 후보자의 이름이 없는 경우
- 투표지가 공식적인 것이 아닌 경우

- 투표지가 수기(手記)로 작성 또는 변경되지 않은 경우
- 투표지에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거나 명백하게 선거와 관련 없는 표시가 있는 경우
- 사망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36조)
  - 후보자명부를 최종적으로 수정(법 제29조제4항)한 이후 사망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그 후보자 개인 투표로만 계산함(정당 투표로는 계산되지 않음).

라. 지역구선거의 경우 무효투표(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49조)

- 투표지에 두 사람 이상의 이름이 포함된 경우
- 투표지가 공식적인 것이 아닌 경우
- 투표지가 수기(手記)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 투표지에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거나 명백하게 선거와 관련 없는 표시가 있는 경우

마. 선거결과의 공표(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52조)

- 선거결과가 확정되면 주 정부는 즉시 서면으로 연방의회에 당선자의 이름을 알림.
- 주는 각 후보자와 후보자명부의 득표결과를 늦어도 선거일로부터 8일 이내에 주 관보에 공표하고 선거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함.
- 주는 이의제기 기간 만료 후 즉시 연방내각국에 선거결과를 보고함. 투표지는 이의제기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연방내각국이 지정한 장소로 보내야 함.

9. 캐나다

가. 개표진행

- 투표 마감 직후 투표소에 배정된 투표사무원이 또 다른 투표사무원, 후보자나 그 대리인(모두 불참한 때에는 2명 이상의 선거인)의 입회하에 개표 시작(선거법 제283조)

- 사전투표는 선거일 투표소 투표가 마감된 후 사전투표에 관한 공고문에 명시된 장소에서 적어도 2명 이상의 투표사무원과 선거관리청장이 지시에 따라 특정된 선거공무원이 함께 참석하여 개표함. 사전투표의 개표 역시 후보자나 그 대리인(모두 불참한 때에는 2명 이상의 선거인)의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누구든지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 전에 사전투표를 개표할 수 없음(선거법 제289조).

나. 개표진행절차(선거법 제283조제3항)

-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의 수와 선거법 제161조제4항에 따라 선거일 당일 선거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투표한 선거인 수를 기재하고 그 목록과 봉투에 서명
- 훼손된 투표용지나 미사용 투표용지를 계산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그 겉면에 각 매수를 기재하고, 투표를 한 선거인의 수와 훼손 또는 미사용 투표용지의 수를 선거관리관이 배부한 투표용지수와 대조
-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를 개표상 위에 꺼냄.
- 각 투표지 수를 확인하여 출석한 개표참관인들에게 투표지를 확인시키고 투표사무원은 개표록의 후보자별 득표수를 후보자 이름 옆에 기록
- 선거관리청장은 투표 마감 후 지체 없이 각 선거구의 선거관리관에게 개표한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별 유효득표수와 전체 무효표를 기재한 개표결과를 통보해야 함(선거법 제280조).
- 선거관리관은 투표함이 모두 접수된 후 선거사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록 원본과 선거법 제280조에 따라 통보된 개표결과를 확인해야 함. 다만 선거결과 확인을 위해 정해진 날짜에 접수되어야 할 투표함과 관계 서류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선거결과 확인을 연기해야 함(선거법 293조).
- 선거결과가 확실하게 나온 직후 선거관리관은 각 후보자의 득표수가 적힌 증명서의 원본을 선거관리청장에게 보내고, 사본은 각 후보자와 그의 대리인에게 보내야 함(선거법 제297조).

다. 특별투표의 개표

- 특별투표의 개표는 특별투표관리장의 감독 하에 특별투표사무원들이 실시하며, 특별투표사무원은 서로 다른 등록정당을 대표하는 2명을 1조로 함(선거법 제263, 264조).
- 개표는 선거관리청장이 지정한 날에 하되, 지정된 날짜가 없으면 선거일 전 5일 수요일에 실시 함(선거법 제266조).
- 개표가 끝나면 특별투표관리장은 지체 없이 투표결과를 선거관리청장에게 보냄(선거법 제271조).
  - 모든 선거구에서 각 후보자가 얻은 득표수
  - 각 선거구의 총 투표수
  - 각 선거구에서 무효처리된 투표지 수
- 선거관리청장은 투표마감 후 지체 없이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관에게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를 포함한 개표결과를 알려야 함(선거법 제280조).
  - 선거관리관은 선거관리청장에게 받은 결과와 특별투표의 개표결과를 합산해 그 개표 결과를 특별투표규정에 의한 투표결과로 공표함.

라. 투표의 효력(선거법 제284조)

1) 무효투표

- 투표사무원이 제공하지 않은 투표용지인 경우
- 후보자 이름 우측 원형 기표란에 기표하지 아니한 경우
- 후보자가 아닌 자에게 투표한 경우
- 2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경우
- 선거인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문자나 기호를 기재한 경우

2) 무효로 하지 아니하는 표

- 투표사무원이 투표지에 글씨, 숫자 또는 표시를 기입한 것
- 투표사무원이 부본(counterfoil)을 제거하지 아니한 투표지

- 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 뒷면에 선거권자의 투표지역 번호를 기재한 투표지

마. 판사에 의한 재개표

1) 선거관리관의 재개표 신청(선거법 제300조)

- 투표결과 당선자와 그 이외 다른 후보자의 득표차이가 총투표수의 1,000분의 1 미만인 경우 선거관리관은 선거결과가 확인된 후 4일 이내에 판사에게 재개표를 요청해야 함.
- 선거관리관은 각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공식 대리인에게 재개표에 대한 요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판사는 재개표 요청을 접수한 후 4일 이내로 재개표 일시를 정해야 함.

2) 선거인의 재개표 신청(선거법 제301조)

- 선거인은 선거관리관이 선거결과 증명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판사에게 재개표를 신청할 수 있음.
- 선거관리관은 각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공식 대리인에게 재개표 요청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판사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신뢰할 만한 증인 진술이 있는 경우 재개표날짜를 정해야 함.
  - 투표사무원이 투표지를 부정확하게 개표하였거나 무효처리하였거나 또는 특정 후보자의 득표수를 부정확하게 기재하였다는 내용
  - 선거관리관이 부정확하게 투표수를 합산하였다는 내용
- 신청자는 최다 득표한 후보자의 비용을 위한 보증금 250달러를 법원 직원 또는 수석서기에게 예치해야 함.

3) 재개표 절차(선거법 제304조)

- 판사는 투표록에 보고된 투표수를 합치거나, 유효한 투표지 또는 투표사무원이나 선거관리청장에 의해 반송된 모든 투표지를 다시 집계함으로써 재개표를 실시
- 판사는 모든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가 필요한 경우 투표지, 미사용 투표용지, 반송

된 투표용지, 무효 투표지가 들어 있는 봉인된 봉투를 개봉할 수 있으며, 다른 서류들은 개봉할 수 없음.

- 재개표를 마칠 때 판사는 모든 투표지를 각각의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지체 없이 규정된 서식에 의하여 각 후보자의 득표수를 기재한 증명서를 작성해야 하며, 증명서의 원본은 선거관리관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은 각 후보자에게 교부해야 함(선거법 제308조).
- 재개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투표결과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판사는 재개표를 신청한 자가 최다득표자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판사가 재직하는 법원의 재판 비용표에 가장 가까운 비용을 부과해야 함(선거법 제309조).

  ※ 판사의 재개표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사람은 8일 이내 해당 주의 최고법원 또는 항소법원 판사에게 불복을 신청할 수 있음(선거법 제311, 312조).

10. 호 주

- 오후 6시에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소를 폐쇄하고 각 후보자가 선임한 개표참관인이 입회하는 가운데 가능한 빠르게 개표를 실시(연방선거법 제265조).
- 후보자는 개표소 개표 또는 집계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보다 많은 수의 참관인을 지명할 수 없으며(연방선거법 제264조), 개표참관인은 개표 지연의 목적이 아니라면 개표되고 있는 투표지를 검사할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265조).
- 거리가 먼 투표소에서 이송되는 투표지와 선언투표에 사용된 투표지를 선거구 선거관리관이 완전히 수령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투표지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상원의원선거는 호주선거공무원이, 하원의원선거는 선거구 선거관리관이 선거위원과 협의하여 완전하게 투표지를 수령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를 진행할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275조).

가. 개표방법

1) 투표소 개표(연방선거법 제273,274조)

-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사무원이 다음의 순서에 따라 개표진행
  - 하원의원선거 각 후보자의 1순위 선호로 기입된 투표지를 집계
  - 하원의원선거 2순위 선호로 기입된 투표지를 집계
  - 상원의원선거 각 후보자의 1순위 선호가 기입된 투표지를 집계
  - 선거일에 받은 선언투표봉투를 구분하여 집계
- 부선거관리관은 투표사무원, 개표참관인의 입회하에 봉인된 투표함을 개표참관인에게 보여주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함 상황을 기록함.
-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지를 꺼내어 1순위 선호 수를 집계한 후 투표지 수와 1순위 집계결과를 정리한 집계표를 선거구 선거관리관에게 즉각 전달함.
- 개표 후 투표지는 상자에 넣어 봉함·봉인하고 상황표를 기재하여 선거관리관에게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참관인의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음.
- 선거구 선거관리관은 수령한 투표지 상자를 개봉한 뒤 투표지, 1선호 투표지 수 등을 재확인 뒤 이를 기록하여 호주선거공무원에게 전달
- 호주선거공무원은 수령한 모든 투표지를 검수하고, 무효투표지는 제외시키며 수령한 투표지의 지지도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서명하여 보관
- 개표가 종료되면 호주선거공무원은 수령한 모든 투표지를 묶어서 봉인하고 그 내용을 봉인 겉면에 기록해야 함.
- 무효투표지는 개표 과정에서 호주선거공무원이 별도로 분류함.

2) 부재자투표 및 우편투표 등의 개표(연방선거법 제266조)

- 각 투표소에 도착한 부재자투표와 사전투표, 우편투표, 임시투표의 투표지는 선언투표[5] 봉투에 동봉된 채로 투표자가 등록되어 있는 선거구 선거관리관에게 송부되어 개표·집계됨.
- 선거일 전에는 선언투표 봉투를 개봉할 수 없으며 개봉하여 투표용지를 집계하기 전에 반드시 투표자의 정보와 선언투표봉투의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절

5) 연방선거법 제3조(정의)에 따라 선언투표(declaration vote)는 우편투표, 사전선언투표, 부재자투표, 임시투표를 의미

차를 거쳐야 함.

- 선거관리관은 투표 종료 후 13일 전까지 수령한 모든 우편투표와 투표가 마감되기 전 접수한 모든 선언투표에 대해 임시개표를 수행해야 하며, 잠정개표를 시작하는 날짜, 시간, 장소를 개시 전날 오후 4시 이전에 고지해야 함.

3) 상원의원선거의 전자개표(연방선거법 제273A조)

- 특정 주와 준주에서 상원의원선거의 개표는 규정된 요건에 따라 전자 개표를 실시할 수 있음.
- 호주선거공무원은 상원의원선거 개표 규정 절차(제273조제3항제d호)에 따라 수령한 모든 투표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무효투표지를 분류해야 함.
- 이후 선거공무원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방선거법 제273조(상원의원선거 개표)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당선 후보자와 당선 순위를 확인해야 함.
- 상원의원선거 개표는 개표에 관한 규정(제273조)과 상원선거 전자개표(제273A조)에서 규정된 요건 중 최소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수개표와 전자개표를 부분적으로 병행할 수 있음.

나. 무효투표(연방선거법 제267,268조)

- 개표 과정에서 참관인이 투표지가 무효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개표사무원은 투표지의 유·무효 여부를 판단하여 그 투표지에 “유효” 또는 “무효”를 표시해야 함.
-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개표과정 중 개표사무원이 무효투표지를 발견한 경우 투표지를 별도로 분류하여 무효처리 할 수 있음.
- 무효투표지 판단 기준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음.
  - 투표지가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약식서명 또는 공식적 표시에 의해 인증되지 않은 경우
  - 전혀 기표가 되어있지 않거나 지지하는 후보자의 순위가 규정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여 선호 후보자의 순위를 알 수 없는 경우

    ※ 상원의원선거 1순위 지지자와 남은 11명의 후보의 지지 순위, 하원의원 선거 출마 후보 수만큼의 지지 순위를 표기해야 함. 다만 하원의원선거의 경우 모든 후보자 선호 순위를 표시하고 한명에 대해서만 선호표기가 없는 경우 그 후보를 최하위 선호로 간주하여 유효표로 인정

- 투표지에 투표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한 경우
- 부재자투표지가 연방선거법상 유효한 봉투에 들어있지 않은 경우

다. 재검표(연방선거법 제278,279,279A,279B조)

- 선거결과 공표 전 후보자의 서면요구 또는 호주선거공무원 자체 판단에 따라 재검표를 실시할 수 있음.
- 재검표를 하기 전 선거구 선거관리관은 각 후보자에게 재검표 일자, 시간, 장소를 통지해야 함.
- 재검표 시에는 투표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개봉하여야 하며, 재검표 후 선거구 선거관리관은 투표지를 원상태로 포장, 봉인하여 새로운 상자에 넣고 포장하고 봉인해야 함.
- 선거구 선거관리관은 봉인된 새로운 투표지 보관상자 겉면에 재검표 사실과 그 일자를 기록하고 날인하고자 하는 출석인과 함께 날인해야 함.
- 재검표 사무원은 참관인의 요구가 있거나 호주선거공무원의 무효투표지 효력 결정을 위하여 투표지를 보관할 수 있으며, 호주선거공무원은 이 투표지의 인정 여부 및 유·무효 여부를 결정해야 함(연방선거법 제281조).
- 선거의 유효성 논란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보전된 투표지를 검토할 수 있지만, 모든 투표지 또는 일부 투표지를 다시 집계하도록 명령할 수 없음.

라. 개표결과의 공표(연방선거법 제283,284조)

- 선거결과가 최종 확인되면 호주선거공무원은 신속하게 지명된 장소 또는 선거공무원이 결정한 다른 장소에서 선거의 결과 및 당선자의 이름을 공표
- 투표소투표, 부재자투표 및 우편투표 등을 계산하여 선거구 선거관리사무소에서 호주선거위원회 선거관리시스템과 호주선거위원회 개표상황실(AEC Tally Room)[6] 을 통해 당선자 등을 공표

6) 호주선거관리시스템.
https://results.aec.gov.au/ (검색일 2019.8.6.)

<표 12-1> OECD국가의 개표장소 및 개표참관인

구분 국가명	개표장소	개표참관인	정당감시인 입회여부	근거규정
영 국	개표소	○	○	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1 제44조
미 국	투표소	○	○	주 선거법
프랑스	투표소	○	○	선거법 제65,67조
독 일	투표소	○	×	연방선거법 시행령 제67조
일 본	개표소	○ (10명 초과시 추첨)	○	공직선거법 제63,65조
스페인	투표소	○	-	선거법 제95조
스웨덴	투표소	○	-	선거법 제11절 제13조
스위스	투표소	-	-	정치적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19조
캐나다	투표소	○	○	선거법 제283조
호 주	투표소	○	○	연방선거법 제264,265조
오스트리아	투표소	○ (1명 이상)	○	하원선거법 제15,84조
벨기에	개표소	○	-	선거법 제150,151조
체 코[7]	투표소	-	×	선거법 제14g,40조
칠 레	투표소	○	○	선거법 제75조
덴마크	투표소	○ (5명 이상 9명 이하)	○	선거법 제29,68조
에스토니아	투표소	○	○	선거법 제18,57조
핀란드	투표소	○	○	선거법 제78,184조
그리스[8]	투표소	-	○	선거법 제24,90조
헝가리	투표소	○	○	선거법 제28,187조
아이슬란드	개표소	-	○	의회선거법 제97,98조
아일랜드	개표소	○	○	선거법 제112,113조
이스라엘	투표소	○	○	선거법 제79조
이탈리아	투표소	○ (2명 이상)	-	하원선거법 제67,68조

구분 국가명	개표장소	개표참관인	정당감시인 입회여부	근거규정
라트비아	투표소	○	○	선거법 제29조제1,2항
리투아니아	투표소	○ (2명 이내)	-	의회선거법 제61,75조
룩셈부르크	투표소[9]	○	O[10]	선거법 제63,66,148조
멕시코	투표소	○ (1명 이상)	○	연방선거법 제217,287조 정당법 제23조제1항제a호
노르웨이	투표소 ※ 선거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름.	○	-	선거법 제10-4,15-10조
네덜란드	투표소	○	-	선거법 제E4조, 제N2조,제N5조
뉴질랜드	투표소	○	○	선거법 제160,174조
폴란드	투표소	○	○	선거법 제70,71조 제103a,103b조
포르투갈	투표소	○	○	선거법 제101조, 제102조,제106a조
슬로바키아	투표소	○	○	선거법 제27조
슬로베니아	투표소	-	-	의회선거법 제84조
터 키	투표소	○	○	선거기본법 제72,95,98조

7) 일반 시민, 국제기구, 정당 소속 감시인 입회에 대한 조항 없음.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czech-republic/375073?download=true

8) OSCE. '그리스 2019 총선 보고서.'
The election law does not provide for citizen or international observers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greece/420842 (검색일 2019.10.17.)

9) 룩셈부르크 행정부
https://guichet.public.lu/en/entreprises/ressources-humaines/representation-personnel/delegation-personnel/organiser-elections-sociales.html (검색일 2019.7.16.)

10) 룩셈부르크 행정부
https://guichet.public.lu/en/citoyens/citoyennete/elections/elections-legislatives/candidat-election-legislatives.html (검색일 2019.7.16.)

제13장

당선인

제13장
당선인

- 1인 선출 소선거구를 실시하는 국가들은 상대(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영국, 미국, 캐나다) 또는 절대다수대표제로 선출(프랑스)하고 있지만,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국가들은 의석배분에 있어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1]을 채택하고 있음.
- 또한, 단순다수대표와 비례대표제를 연계시켜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비례대표 병용제(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독일과 우리나라와 같이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를 채택하는 일본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1. 영 국

가. 당선인 결정(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50호)

- 각 후보자별 투표수를 계산하여 최다득표를 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최고득표수가 동수일 때에는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
- 무소속 후보자가 최다득표를 했으나, 사망한 경우 새 후보자 등록 없이 남은 후보자들만 재선거를 함(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60,61호).[2]
  - 2명의 후보자만 있는 경우 무소속 후보자 사망 시 남은 후보자가 무투표 당선됨.
-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선인 공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선거가 중단 됨(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60,63호)
  - 사망한 후보자의 새 정당추천후보자를 제외하고는 후보자 등록을 새로 하지 않고, 기존 후보자들로 재선거를 함.

---

1)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1장 기본현황 제1절 각국의 통치구조와 선거제도 3. 각국의 선거제도에서 마.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 참조

2)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Part C: Administering the poll UK Parliamentary elections in Great Britain: guidance for (Acting) Returning Officers(선거관리관을 위한 총선 가이드).’ November 2018. p.31.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media/2327 (검색일 2019.8.16.)

나. 당선인 공표(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56,57호)

- 선거관리관은 선거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당선인을 공표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당선인의 이름 등을 선거소집령에 기재하여 대법관부 사무총장(the Clerk of the Crown)에게 보고해야 함.
- 또한 선거관리관은 선거종료 후 투표지, 집계조서 기타 선거관계서류를 대법관부 사무총장에게 보내야 함.
  - 대법관부 사무총장은 이송된 선거관계 서류를 1년간 보존하며 소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일반인의 열람을 허용하거나 일반인에게 그 사본을 제공할 수 있음.

2. 미 국

가. 당선인 결정[3)]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상대다수득표제)

나. 당선인결정기관

- 주무장관 또는 주 선거위원회와 같은 일반적 선거집행기관이 담당
- 주무장관이 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 주지사, 주회계검사관, 각 정당의 주중앙위원회위원장의 입회를 필요로 함.
- 선거위원회가 당선인을 결정할 때에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 하에 위원장이 결정
- 미시간 주에서는 주 개표위원회가 최다득표를 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국무장관이 미연방문장이 찍힌 당선증을 당선인에게 보냄(미시간 선거법 제168조141,제168조142).[4)5)]

---

3) US ELECTION IN BRIEF p.14,39. https://kr.usembassy.gov/wp-content/uploads/sites/75/2016/12/%E1%84%86%E1%85%B5%E1%84%80%E1%85%AE%E1%86%A8-%E1%84%89%E1%85%A5%E1%86%AB%E1%84%80%E1%85%A5-%E1%84%80%E1%85%A2%E1%84%8B%E1%85%AD.pdf (검색일 2019.7.16.)

다. 당선증서의 교부

- 당선증서는 교부 주체는 주별로 다름.
- 와이오밍 주에서는 주지사가,[6] 알라스카주에서는 선거위원장이[7] 당선인에게 보냄.

3. 프랑스

가. 상원의원

- 의원정수 2명 또는 그 이하의 도(선거법 제294조)
  - 2차 투표에 의한 절대다수대표제로 선출
  -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고, 동시에 등록된 선거권자의 4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 2차 투표 실시
  - 2차 투표에서는 상대다수를 획득한 후보자가 당선되며,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가 당선
- 의원정수 3명 또는 그 이상 도(선거법 제295조)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 각 명부 내에서 의석배분은 해당 명부상의 등재순위에 의함.

    ※ 상원의원은 하원의원, 레종(광역)의회의원, 도의회의원, 코뮌의회의원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 의하여 간접 선출되며, 해외프랑스인 대표는 프랑스 재외교민평의회에 의하여 비례대표제로 간접 선출

나. 하원의원

- 1차 투표(선거법 제123,126조)
  - 1차 투표에서 당선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유효투표의 절대다수표(과반수)를

---

4) 미시건 선거법[MICHIGAN ELECTION LAW Act sec.168.141(Representative in congress; certificate of determination by board of state canvassers)]

5) 미시건 선거법[MICHIGAN ELECTION LAW Act sec.168.142(Representative in congress; certificate of election)

6) 와오밍주 선거법 22-16-121

7) 알라스카주 선거법 15.15.450.

획득하고, 등록선거인수의 4분의 1 이상을 득표해야 함.

- 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없는 선거구에서는 2차 투표 실시

※ 2차 투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1차 투표에서 등록된 총투표인수의 12.5% 이상의 표를 획득하여야 함. 다만,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제2순위자도 결선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데 이때는 단순다수득표로 당선

- 2차 투표(선거법 제126조)
  - 2차 투표에서는 다수표를 얻은 자가 당선이 됨.
  -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는 그 가운데 최고연장자가 당선인이 됨.

4. 독 일

가. 혼합제(소선거구 상대다수대표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의원정수 598명 중 1/2인 299명은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되며, 나머지 299명은 주후보자명부에 의하여 비례대표제로 선출(연방선거법 제1조)
- 비례대표제에 의한 선거는 제2표(정당에 대한 투표를 집계하여 생-라게/쉐퍼스(Sainte-Lague/Schepers) 식으로 총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하고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서 그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제1표) 수를 뺀 의석을 그 정당의 주(州) 후보자명부에 배분해 정당득표율과 최종 의석수가 일치하도록 함.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정당명부상의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됨.

① 인구수 비율에 따라 주별 전체 의석 배정 ② 주별 의석수를 해당 정당의 주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 배분 ③ 주별 해당 정당의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인 수만큼 제외하고 비례대표 당선인 결정 ④ 지역구 당선인이 해당 정당의 주별 의석수보다 많을 경우 초과의석 발생 ⑤ 초과의석 발생 시 당초 전국단위의 득표율에 비례하도록 다른 정당의 의석 증가 (보정의석)

- 제2표에 따라 정당이 얻은 정당득표율이 해당 정당의 당선인 총수가 되며, 지역구당선인(제1표)도 이 총수에 포함되는 방식이므로 지역구 당선인도 총 배분의석수에 포함되는 것임(이러한 방식을 '2표 병용제', '연동형비례대표제', '인물화된 비례대표제'라고 함).

※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이 소선거구에서 단순다수대표제에 의한 당선인 결정과 비례대표제에 의한 당선인 결정이 전혀 별개로 행해지는 방식을 혼합제-2표 병립제라 함(선거제도의 유형 및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p.33 참조).

나. 지역구의원 당선인결정(연방선거법 제5조)

각 299개 소선거구에서 단순다수대표제로 제1표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자 1명이 당선되며, 동수 득표인 경우에는 선거구선거위원장이 추첨에 의해 결정

다. 비례대표의원 당선인결정(연방선거법 제6조)

1) 배분대상

- 의석배분은 정당의 각 주후보자명부에 대해 행해짐.
- 배분대상은 유효한 제2표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제1표에서 적어도 3명 이상의 지역구 당선인이 나온 정당에 한정(이를 5% '봉쇄조항' 또는 '진입장벽'이라 함). 다만, 소수민족정당에 대하여는 제한 없음.

2) 비례배분 전 작업

- 비례배분을 하기 전에 각 주명부가 획득한 제2표에서 다음을 공제하여 의석배분 기준이 되는 득표수를 산정
  - 무소속후보자로 당선된 자에게 제1표를 행사한 선거인의 제2표
  - 해당 주에서 주명부가 승인되지 않은 정당의 후보자가 당선된 경우 제1표를 그 후보자에게 행사한 선거인의 제2표
- 전체의석에서 다음의 의석수를 공제하여 배분기준의석을 산정
  - 무소속후보자로 제1표에 의해 당선된 자의 수
  - 해당 주에서 주명부가 승인되지 않은 정당의 후보자로 제1표에 의해 당선된 자의 수
  - 유효한 제2표의 100분의 5 미만을 획득하거나 또는 소선거구에서 3인 미만의 당선인을 획득한 정당의 후보자로 제1투표에 의해 당선된 자의 수

3) 각 정당에 대한 의석배분

- 2009년 주명부에 의한 의석배분 방식을 헤어-니마이어(Hare-Niemeyer)방식에서 생-라게/쉐퍼스(Sainte-Lague/Schepers)방식으로 변경[8)]
- 각 주별로 해당 주후보자명부에 배분된 의석수에서 그 정당이 해당 주의 소선거구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공제한 수가 각 정당에 배분되는 비례대표의 당선인 수
- 당선인 수에 이를 때까지 주명부에 기재된 후보자가 그 순위에 따라 당선인이 됨. 이 경우 지역구 당선인은 주후보자명부 순위에서 제외(지역구후보와 비례대표후보자명부에 동시 입후보 가능)
- 주명부에 배분된 의석이 주명부의 후보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의석은 공석이 됨.

4) 초과의석(Überhangmandate) 및 보정의석

- 초과의석은 2표제와 관련하여 독일의 선거제도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현상으로 정당이 소선거구에서 획득한 의석수가 주후보자명부에 의해 배분된 의석수를 초과할 경우에 발생. 이 경우에 그 초과하는 수만큼 의석총수가 의원정수인 598명보다 많게 되는데 이를 초과의석이라 함.
- 초과의석은 어떤 주의 투표율이 매우 저조하든지, 제1투표로 당선된 지역구 후보들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을 때와, 선거권자들이 교차투표를 많이 한 경우에 발생
- 연방선거법 제6조제5항에서는 초과의석이 발생한 경우, 각 정당의 최종의석수가 정당득표율과 최대한 일치하도록 모든 정당에 보정의석을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함. 보정의석은 2013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고, 높은 비례성을 보장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의원정수가 증가할 수 있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음.

  ※ 1994년 16석, 1998년 13석, 2002년 5석, 2005년 16석, 2009년 24석, 2013년 33석의 초과의석 발생. 2017년 선거에서는 초과의석 46석, 보정의석 65석 발생

8) 1985년 연방선거법 개정으로 주명부에 대한 의석배분방법을 동트(d'hondt)식에서 헤어-니마이어(Hare-Niemeyer)식으로 변경

참조 13-1 독일 초과의석 관련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및 선거법 개정

<table>
<tr><th>경과</th><th>내용</th></tr>
<tr><td>2008년 7월 3일
헌법불합치
결정[9]</td><td>초과의석이 전국적으로 후보를 낼 수 있는 기민당과 사민당에서 많이 발생하며 선거결과를 왜곡할 가능성과 평등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
※ 개정 전 연방선거법 제6조: 전국단위로 결합된 주후보자명부가 의석배분시 하나의 명부로 간주되어 전국에서 획득한 제2표의 득표수로 각 정당의 총의석수 배분</td></tr>
<tr><td colspan="2">2009년 9월 27일 총선은 종전의 선거법 하에서 치러짐.
※ 초과의석: 2002년 5석, 2005년 15석, 2009년 24석 발생</td></tr>
<tr><td>2011년 12월 2일
연방선거법 개정
(제6조)</td><td>• 각 주 제2표(주후보자명부투표) 득표수에 따라 해당 주 각 정당에 배분될 의석수를 정함.
• 새로운 방식에 따르더라도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규정 역시 초과의석 발생이 가능함을 명문화 함.</td></tr>
<tr><td>2012년 7월 25일
위헌결정[10]</td><td>• 개정된 선거법이 평등의 원칙과 정당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기본법을 위배하여 위헌결정을 내림.
• 다만, 비례대표제의 근본적인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초과의석 자체는 인정
- 제6조제1항제1호: 득표와 의석의 모순인 부정적 득표영향[11]을 차단하지 못하므로 위헌
- 제6조제2a항1호: 주별 의석산정 후 발생하는 잔여표의 의석전환은 모든 주의 잔여표를 합산한 수 연방쿼터로 나눈 값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도 「기본법」 제21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제1호의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 제6조제5항: 초과의석에 대한 보정을 규정하지 않은 점, 초과의석의 규모가 불비례성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하게 나타나는 점이 「기본법」 제21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제1호의 평등선거원칙에 반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td></tr>
<tr><td>2013년 5월 9일
연방선거법 개정
(제6조)</td><td>• 초과의석에 대한 보정의석 인정
※ 보정의석: 초과의석이 발생했을 때 이를 상쇄하는 의석수를 산정하여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은 정당에 배분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A정당</th><th>B정당</th><th>C정당</th><th>계</th></tr>
<tr><td rowspan="5">득표율에 따른
초과의석 발생</td><td>득표율(%)</td><td>50</td><td>30</td><td>20</td><td>100</td></tr>
<tr><td>배분의석</td><td>50</td><td>30</td><td>20</td><td>100</td></tr>
<tr><td>지역구/
비례의석</td><td>20/30</td><td>5/25</td><td>25/0</td><td>50/55</td></tr>
<tr><td>초과의석</td><td>0</td><td>0</td><td>5</td><td>5</td></tr>
<tr><td>계</td><td>50</td><td>30</td><td>25</td><td>105</td></tr>
<tr><td colspan="2">보정 전 의석 비율(%)</td><td>47.6</td><td>28.6</td><td>23.8</td><td>100</td></tr>
<tr><td rowspan="2">보정의석 배분</td><td>보정의석</td><td>13</td><td>8</td><td>0</td><td>21</td></tr>
<tr><td>최종의석</td><td>63</td><td>38</td><td>25</td><td>126</td></tr>
<tr><td colspan="2">보정 후 의석 비율(%)</td><td>50</td><td>30.2</td><td>19.8</td><td>100</td></tr>
</table>
※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C정당의 25석이 20%가 되도록 조정하는 보정의석을 A·B 정당에 추가로 배분하여 전체의석 결정</td></tr>
</table>

9) http://www.bverfg.de/entscheidungen/cs20080703_2bvc000107.html (검색일 2019.8.1.)

10) 연방헌법재판소. 2012.7.25. 결정. 사건번호 - 2 BvF 3/11, - 2 BvR 2670/11, - 2 BvE 9/11 병합심리 http://www.bverfg.de/entscheidungen/fs20120725_2bvf000311.html (검색일 2019.8.1.)

11) 부정적 득표영향(negative voting weight)은 정당이 얻은 득표수가 줄어들 때 오히려 의석이 증가하고, 득표수가 늘어날 때 반대로 의석이 줄어드는 '득표와 의석 점유의 역전현상'을 의미

라. 의원자격 취득(연방선거법 제45조제1항)

- 당선된 후보자는 선거구선거위원장(지역구선거) 또는 주선거위원장(후보자명부선거)이 당선통지를 한 후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선수락을 한 경우 의원자격을 취득
- 당선인이 법정기한 내에 당선의 수락 또는 거부의 선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며, 수락 및 거부선언은 철회될 수 없음.

5. 일 본

가.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및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공직선거법 제95조)

- 유효투표총수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함(단순다수대표제). 다만, 당선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최소 득표를 얻어야 함(봉쇄조항).
  -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 유효투표총수의 6분의 1 이상의 득표
  -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 통상선거인 경우 해당 선거구 안의 의원정수로 유효투표총수를 나누어 얻은 수의 6분의 1 이상의 득표. 다만, 선거할 의원수가 통상선거에 있어서 해당 선거구 안의 의원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선거할 의원수로 유효투표총수를 나누어 얻은 수의 6분의 1 이상 득표
- 당선인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선거회에서 선거장이 추첨으로 정함.

나.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공직선거법 제95조의2)

- 동트식에 의하여 각 명부신고정당의 당선인수가 결정됨.
- 각 명부신고정당의 당선인수가 결정되면 각 명부등재자 중에서 당선인수까지의 순위의 자가 당선인이 됨.
- 2 이상이 동수의 득표를 한 경우에는 선거회에서 선거장이 추첨으로 정함.
- 중의원명부에서 소선거구와 비례의원에 중복입후보한 경우는 석패율이 큰순위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함(순위가 같은 경우 선거회에서 선거장이 추첨으로 결정).

※ 석패율(惜敗率): 소선거구의 후보자 2명 이상이 비례대표명부에 동일순위로 등재된 경우 당선인이 되는 순서를 정하는 기준으로 해당 소선거구의 당선자 득표수에 대한 낙선자의 득표비율을 의미 [(낙선후보자의 득표수/당선후보자의 득표수)×100]

다.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공직선거법 제95조의3)

- 각 명부신고정당(명부상의 후보자득표도 포함)의 득표수를 동트식으로 당선인수를 결정
- 당선인수가 결정되면 각 명부등재자 중에서 가장 득표를 많이 한 순위부터 당선인수까지 순위의 자가 당선인이 됨.
- 2 이상의 득표수가 같은 경우 그 순위는 선거회에서 선거장이 추첨으로 정함.

라. 선거회(공직선거법 제75~85조)

- 선거회는 당선인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선거회는 해당 선거구의 모든 개표소에서 행한 투표의 점검 및 확인결과에 따라 각 후보자등의 득표총수를 계산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며, 도도부현청, 시청,정촌사무소 등 해당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개최함.
- 선거회의 개최는 선거장이 행하며 선거장은 선거입회인의 입회하에 개표관리자로부터의 투표결과보고서를 조사하여 각 후보자의 득표총수를 계산하며, 선거장은 선거회사무의 종료 시 선거록 및 기타 관계서류를 해당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함.

마. 무투표당선(공직선거법 제100조)

- 아래의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장은 그 선거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회를 개최하여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 후보자가 1명이거나 1명으로 되었을 때
  -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중의원명부등재자의 총수가 그 선거에 있어서 선출해야 할 의원수를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초과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중의원명부 신고정당이 하나일 때

-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참의원명부등재자의 총수가 그 선거에 있어서 선출해야 할 의원수를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초과할 수 없게 된 때
-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 후보자의 총수가 그 선거에서 선출해야 할 의원수를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초과할 수 없게 된 때

바. 당선의 효력 등

1) 효력 발생 시기(공직선거법 제102조)

-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의 이름·주소와 당선인과 관련된 후보자신고정당의 명칭을 고시한 때
- 중의원비례대표 및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중앙선거관리회가 득표수·당선인수 및 당선인의 이름·주소를 고시한 때
- 참의원선거구선거: 해당 선거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의 이름·주소를 고시한 때

2) 겸직금지 직에 대한 사퇴 간주(공직선거법 제103조)

- 당선인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거와 관련된 의원과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있는 자는 당선의 고지를 받은 날 그 직을 사퇴한 것으로 봄.

3) 당선인의 자격 상실

- 선거일 후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하게 된 경우(공직선거법 제99조)
-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선거에서 당선인이 선거일 후 소속정당의 합병이나 분할 이외의 사유로 다른 정당 등에 소속하게 되거나, 제명·탈당 기타사유로 해당 정당 등에 소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공직선거법 제99조의2)
- 겸직금지의 직에 있는 경우(공직선거법 제103조제2항)

  ※ 공직선거법 제96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경정결정된 자와 제97조·제97조의2·제112조의 조상보충 규정에 따라 당선인으로 정해진 자는 위 2)에 따른 사퇴 간주규정에 불구하고 고지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을 사퇴하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당선을 상실함.
- 다른 선거의 후보자인 경우(공직선거법 제103조제4항)

- 당선인이 선거범죄를 범하여 형에 처해진 경우(공직선거법 제251조)
- 선거운동의 총괄주재자나 출납책임자가 선거범죄(매수 및 이해유도죄, 신문·잡지의 불법이용죄)를 범하여 형에 처해진 경우(공직선거법 제251조의2)

참조 13-2 일본 중복입후보 사례

- 한 정당이 소선거구에 등록한 후보자 중 A, B, C 3명을 비례대표선거명부에도 등재하였음(중복입후보).
- 비례대표선거명부의 순위는 제1위를 "갑"으로 하고 중복입후보자인 A, B, C를 동일순위의 제2위로 하며, 제5위를 "을"로 하였음.
- 선거결과 소선거구선거에서는 A가 당선되고 B, C는 낙선하였음. 낙선한 B, C의 소선거구에서의 석패율(惜敗率)은 B가 80%, C가 90%
- 비례대표선거에서 이 정당은 2석을 획득하였음.

후보자(소선거구)

선거구명	이름	당 낙
	·	
…선거구	A	당선
…선거구	B	낙, 석패율 80%
…선거구	C	낙, 석패율 90%
	·	

명부 등록후보자(비례대표선거)

등록순위		이 름	당선순위
	1	갑	①
중복 ┌	2	A	-
입후보 │	2	B석패율 80%	③
└	2	C석패율 90%	②
	5	을	④

위의 경우 정당의 비례대표선거 당선인은 다음과 같음.
① 먼저 명부등재자 중 제1순위인 갑이 당선인이 됨.
② 명부에는 제2순위에 동순위로 A, B, C 3인이 등재되어 있는데 소선거구에서 당선된 후보자는 비례대표선거의 명부에는 등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제2순위는 B, C만이 됨.
③ B, C중에서 당선인으로 될 순위를 결정하는데, 석패율은 B가 80%, C가 90%이므로 당선인은 C가 됨.

6. 스페인

가. 하원의원(선거법 제163조)

- 총 의석 350석 중 348석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 2석(세우타, 멜리야)은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
- 최소한 각 선거구 유효투표총수의 3/100을 얻지 못한 후보자명부는 탈락

- 각 후보자명부의 득표수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렬
- 각 선거구 해당 의석이 채워질 때까지 각 후보자명부 득표수를 제수 1, 2, 3, … 으로 나누며, 그 몫이 큰 순서로 의석을 배정

참조 13-3 스페인 하원의원 당선인결정절차 예시

• 8명의 하원의원을 뽑는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총수가 480,000표일 경우, 6개 후보자명부에 대한 의석은 아래와 같이 배정됨.

정 당 명		A당	B당	C당	D당	E당
득 표 수		168,000	104,000	72,000	64,000	40,000
제 수	1	168,000	104,000	72,000	64,000	40,000
	2	84,000	52,000	36,000	32,000	20,000
	3	56,000	34,666	24,000	21,333	13,333
	4	42,000	26,000	18,000	16,000	10,000
	5	33,600	20,800	14,400	12,800	8,000
	6	28,000	17,333	12,000	10,666	6,666
	7	24,000	14,857	10,285	9,142	5,714
	8	21,000	13,000	9,000	8,000	5,000
의 석 수		4	2	1	1	0

• 동트식에 의함.
※ 동트식: 각 정당별 득표수를 특정 수로 나눠가면서 그 몫이 큰 순서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

- 제수로 나눈 몫이 같은 후보자명부가 두 개일 경우 더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명부에 의석을 배정하고, 각 후보자명부의 득표수가 같다면 처음에는 추첨으로 결정하고, 이후부터는 번갈아가며 배정함.
- 각 정당별 후보자명부의 의석은 명부순위에 따라 후보자에게 배정됨.
  ※ 세우타와 멜리야 선거구에서는 최다득표자가 당선자로 결정

나. 상원의원(선거법 제166조)

- 총 266석 중 간선으로 선출하는 58석을 제외한 208석은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
- 선거인은 지방자치단체 별로 최대 3명, 그란카나리아, 마요르카, 테네리페, 세우타 및 멜리야에서는 최대 2명, 나머지 도서 선거구에서는 1명의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음.
- 최다득표를 한 후보자들이 각 선거구에 배정된 상원의원의 수를 모두 채울 때까

지 당선인으로 결정됨.

7. 스웨덴

- 중앙선거청이 최종 개표결과를 근거로 정당별 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확정함(선거법 제14절 제1조).
  ※ 의석수 배분 시 같은 수가 나오면 추첨으로 어느 정당, 어느 후보자 또는 어느 선거구가 의석을 가질지, 어느 의석을 재배분할지 결정함(선거법 제14절 제2조)
- 중앙선거청은 정당별 의석수, 당선된 의원과 대리의원에 관한 선거결과를 관보와 국내신문에 공고함(선거법 제14절 제25조).

가. 정당별 의석 배분

※ 의회의석은 총 349석으로 그 중 310석은 선거구 고정의석이며, 39석은 전국구 조정의석임(헌법 제3절 제6조).

1) 선거구 고정의석 배분(선거법 제14절 제3조)

- 각 선거구의 고정의석은 해당 선거구의 선거결과에 따라 각 정당의 비교수치(jamforelsetal, comparative number)를 산출해 의석을 배분함.
  - 가장 높은 비교수치를 얻은 정당에 하나의 의석이 배분됨.
  - 비교수치는 조정홀수방법(den jamkade uddatalsmetoden, adjusted odd-number method)[12]을 적용하여 산출함.
    ·정당이 하나의 의석도 배분받지 못한 경우 정당의 득표수를 1.2로 나누고,
    ·정당이 하나의 의석을 배분받은 경우 정당의 득표수를 3으로 나누어 새로운 비교수치를 산출하고, 가장 가깝고 높은 홀수(즉, 5, 7, 9 …)로 나눠서 진행함.

12) 조정홀수방법은 수정 생 라게(modified St. Lague: adjusted odd-number method)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정당의 득표수(유효투표수)를 1.4, 3, 5, 7, 9 … 등의 기수로 나눠 비교수(몫)가 큰 순서대로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임. 다만, 스웨덴 선거법에서는 첫 기수를 1.2로 시작함.

- 선거구 고정의석 초과분 반납(선거법 제14절 제4a조)
  - 한 정당이 전국구 조정의석보다 많은 수의 의석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된 의석은 반납됨.
  - 의석 반납은 정당이 가장 비교수치로 의석을 배분받은 선거구를 대상으로 하되, 선거구 고정의석이 3석 미만인 선거구는 의석을 반납하지 않음.
  - 반납된 의석은 조정홀수방법(수정 생 라게식)을 적용하여 해당 선거구에 고정의석 배분으로 전국구 조정의석을 충족하지 못한 다른 정당에 배분함.
  - 둘 또는 그 이상의 선거구에서 반납된 의석은 가장 큰 비교수치를 얻은 정당에게 첫 번째 의석을 배분하는 순서로 배분하며, 같은 식으로 정당 중 비교수치의 크기에 따라 의석을 배분함(선거법 제14절 제4b조).

2) 전국구 조정의석 배분(선거법 제14절 제4c조)

- 각 정당은 전국 득표율에 비례해 조정의석(utjamni-ngsmandat, adjustment seats)을 배분받음.
-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조정홀수법(수정 생 라게식)으로 배분함.
- 조정의석 배분은 전국 총 유효투표수 4% 이상 득표하거나 선거구에서 12% 이상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함(선거법 제14절 제5조).

  ※ 한 정당이 획득한 선거구 고정의석수가 배분된 조정의석보다 많다면 총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이 획득한 고정의석수를 제외하고, 전국 득표율 4% 미만인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수도 조정의석의 배분에서 제외함(헌법 제3절 제8조).
- 한 정당이 얻은 조정의석 중 최초의 의석은 해당 정당의 고정의석수 배분 후 다른 선거구보다 높은 비교수치를 얻은 선거구에 추가되고, 나머지 의석들은 선거구들에서 정당의 득표수에 대해 조정홀수법을 계속 적용해 가장 큰 비교수치를 얻을 때마다 각각 하나의 의석이 추가됨.

  ※ 다만, 해당 정당이 고정의석을 하나도 배분받지 못한 선거구에서는 가장 첫 번째 의석 배분 시 비교수치는 그 정당의 득표수와 동일해야 함(선거법 제14절 제5조).

나. 당선인 결정

- 후보자간 순위는 개인투표의 득표수에 따라 결정함(선거법 제14절 제9조).[13)]
  -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 해당 선거구에서 총 유효투표총수의 최소 5% 이상 득

표했을 경우 같은 정당내 후보자별 개인투표의 득표수를 계산함.

- 가장 많은 개인투표를 받은 후보자가 첫 번째 순위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많은 개인투표를 받은 후보자가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함.

- 추가의석을 받았을 경우(선거법 제14절 제12조)
  - 한 정당이 특정 선거구에서 해당 정당의 투표용지에 등재된 후보자의 수보다 더 많은 의석을 획득한 경우 초과된 의석은 선거법 제14절 제5조에 따라 그 정당이 선거구 고정의석 배분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선거구로 이양됨.

다. 대리의원 선출(선거법 제14절 제14조)

- 정당은 당선된 소속 의원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해당 선거구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기준으로 대리의원을 선출함.
- 의원 1명당 최소 3명의 대리의원을 지명함.
- 대리의원은 정당 투표용지에 등재된 후보자들 간 특별한 규칙에 따라 지명되며, 이 순위는 선거법 제14절 제11조에 따라 결정됨.
- 대리의원으로 선출된 만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적용해야 함.
  - 정당은 선거구에서 당선인 다음 차례로 획득할 의석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리의원으로 선출함.
  - 정당 투표용지에 그런 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법 제14절 제5조를 적용해 정당이 선거구 고정의석 배분에 참여하는 다른 선거구를 결정하고 그 선거구에서 대리의원을 선출하며, 이에 따른 대리의원은 각 의원에 대해 1명만 선출함.
  - 이 방식으로 대리의원을 선출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의원을 선출하지 않음.

13) 스웨덴의 정당에서 작성하는 후보자명부는 선거인이 후보자에게 직접 투표할 수 있는 개방형 명부제를 채택하고 있음.

참조 13-4 스웨덴 정당별 의석배분 예시

선거구 고정의석의 배분(의원정수: 6명)

정 당		A당	B당	C당	D당	E당
득 표 수		35,000	28,620	11,800	10	1,000
제 수	1.2	①25,000	②20,443	⑤8,429	7	714
	3	③11,667	④ 9,540	3,933	-	-
	5	⑥ 7,000	5,724	-	-	-
	7	5,000	-	-	-	-
	⋮					
당 선 인 수		3	2	1	0	0

- 수정 생 라게(modified St. Lague)식에 의함.
- 아래의 표 선거구 고정의석과 전국구 조정의석의 배분에서 S선거구를 예로 가정함.

선거구 고정의석과 전국구 조정의석의 배분예시

정 당		A당		B당		C당		D당		E당	
선거구	의석수	득표수	선의거석구수	득표수	선의거석구수	득표수	선의거석구수	득표수	선의거석구수	득표수	선의거석구수
S	6	35,000	3	28,620	2	11,800	1	10	-	1,000	-
T	7	45,000	3	32,000	2	10,000	1	13,000	1	100	-
V	12	59,000	7	25,000	3	16,000	2	100	-	11,000	1
W	6	21,000	2	20,000	2	12,700	2	30	-	900	-
선거구 고정의석 획득수=31(가)		15		9		6		1		1	
34석에 대한 수정 생 라게식 배분(나)		17		12		5		-		-	
(나)-(가)		2		3		-1		-		-	
28석에 대한 수정 생 라게식 배분(다)		17		11		-		-		-	
전국구 조정의석 배분수(다)-(가)		2		2		-		-		-	

- 총의석수: 35, 조정의석: 4, 선거구수: 4로 함.
- 정당별 선거구 고정의석수는 수정 생 라게식에 의해 배분됨.
  E당은 V선거구에서 1석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득표하였지만, 전국득표율이 4%에 달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의석 배분대상에서 제외됨.
  D당도 마찬가지이지만 T선거구에서 12% 이상을 득표해 의석을 배분받음.

(가) 각 정당의 선거구 고정의석수는 A당-15석, B당-9석, C당-6석, D당-6석, E당-1석

(나) 조정의석 배분대상에서 제외되는 E당의 1석을 제외한 총의석 34석을 전국득표수에 기초하여 수정 생 라게식으로 1차 배분함.

(나)-(가) 그 결과 산정된 각 정당의 조정의석수가 C당의 경우 고정의석수에 미달되므로 C당을 조정의석 배분대상에서 제외함.

(다) 총의석 34석에서 조정의석을 배분받지 못하는 C당의 고정의석수 6석을 빼고, 28석에 대해 2차 배분함.

(다)-(가) 이 결과에서 각 정당별로 선거구 고정의석수를 빼면 각 정당의 전국구 조정의석수가 됨.

8. 스위스

가. 지역선거구의원

-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되며,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47조제1항)

  ※ 하원의원 200명 중 194명은 20개 주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고, 6명은 6개 주에서 1명씩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함.

- 선거일 48일전(7번째 월요일) 정오까지 주 당국에 한명의 유효한 후보자만이 제출된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을 주 법으로 규정할 수 있음(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47조제2항)

  ※ 주는 선거일 48일전까지 제출된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주 관보에 공표하며, 공표된 후보자의 정보는 성, 이름, 성별, 집주소를 포함함.

나. 비례대표의원의 의석배분

1) 명부에 의한 최초 의석배분(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40조)

- 모든 명부의 유효한 정당득표수의 합을 할당된 의석수에 1을 더한 수로 나누어 '분배수(allocation number)'를 구함(나눈 몫이 정수가 아니라면 바로 다음의 큰 정수를 분배수라 함).
- 분배수로 각 정당득표수를 나누어서 얻은 수만큼의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

2) 추가 의석배분(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41조)

배분되지 않은 잔여의석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차례대로 배분

- 각 정당득표수를 이미 배분된 의석수에 1을 더한 수로 나누고, 나눈 몫이 가장 큰 정당에 잔여의석을 배분
  - 둘 이상의 정당의 몫이 같은 경우, 제40조제2항(분배수로 정당득표수를 나누어 얻어진 수)에 따라 나누어 가장 큰 몫이 나온 정당에 배분
  - 둘 이상의 정당이 제40조제2항에 따라 얻어진 몫도 같은 경우, 가장 많은 정당득표를 한 정당에 배분

-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정당이 둘 이상인 경우,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가 있는 정당에 배분
- 2명 이상의 후보자가 같은 수의 득표를 한 경우, 그 의석은 추첨으로 배분

- 위의 절차는 모든 의석이 배분될 때까지 반복

3) 통합명부상의 의석배분(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42조)

의석 배분을 위하여 통합명부 내의 각 정당들은 우선 단일정당으로 취급

- 이후 의석은 명부에 의한 최초 의석배분(제40조)과 추가 의석배분(제41조)을 통해 통합명부 내의 각 정당별로 배분

4) 당선자와 의석승계후보자(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43조)

- 정당별로 획득한 의석을 바탕으로, 각 정당별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들이 당선
- 당선되지 못한 후보자들은 득표 순서에 따라 의석승계후보자(replacement candidates)가 됨.
- 같은 수의 득표를 한 경우, 우선순위는 추첨에 의함.

5) 무투표 당선(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44,45조)

- 정당 후보자명부의 후보자수가 할당된 의석수보다 적을 경우, 주정부는 명부에 있는 모든 후보자가 당선된 것으로 선언
- 후보자 수가 정당에 할당된 의석수보다 적어 후보자에게 할당할 수 없는 의석에 대해 추가선거(supplementary election) 실시

6) 명부에 없는 당선(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46조)

- 정당의 후보자명부에 이름이 없어도 선거권자는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투표할 수 있고,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당선됨.
- 해당 선거구에 배분된 의석보다 투표용지에 더 많은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 초과된 이름들은 삭제
- 지역선거구의원 당선에도 위 규정들이 유추 적용됨.

9. 캐나다

- 선거관리관은 선거결과의 확인을 완료한 6일 후(재개표가 있었다면 그 완료 즉시) 지체 없이 선거소집령 반환 보고서를 작성하여 최다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선언(선거법 제313조)
- 최다득표자가 2명인 경우 선거관리청장은 즉시 해당 선거구에서 당선된 후보자가 없다고 명시한 보고서를 하원의장(하원의장이 부재한 경우에는 2명의 하원의원)에게 보내야 함(선거법 제318조).
  - 또한 관보에 최다득표를 한 후보자들의 이름과 함께 득표수가 동일하여 해당 선거구 당선자가 없어 캐나다 의회법(the Parliament of Canada Act)에 따라 보궐선거가 실시된다는 사실을 공지해야 함.

10. 호 주

가. 상원의원(연방선거법 제273조)

-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선거인이 기표한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당선자를 결정
- 우선 제1순위표(first preference votes)를 개표하여 당선기준득표수를 산출
  - 당선기준득표수: 제1순위표의 총수를 선출할 상원의원 수에 1을 더한 수로 나눈 후 그 수에 1을 더하여 나온 수
- 1순위 득표에서 당선기준득표수(quota) 이상을 획득한 후보자는 당선 확정
- 당선자의 잉여표[surplus votes(당선된 후보자의 득표수 가운데 당선기준득표수 이상의 표)]는 이양비율(잉여표수를 후보자 1순위 득표수로 나눈 수)에 따라 후순위 후보자에게 이양하여 다시 계산해서 당선기준득표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의원정수에 이를 때까지 반복
- 가장 적은 수를 득표한 후보자는 다음 이양과정에서 차례대로 제외되는데 이들의 표는 선거인이 기표한 선호대로 다른 후보자에게 분배하게 됨. 이들의 표를 받고 당선기준득표수 이상 득표를 하게 되는 후보자는 바로 당선이 결정되며 상

원의원 의석이 모두 채워질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함.

참조 13-5 호주 상원의원 당선기준득표수 및 잉여표 계산방법[14)]

• 상원의원 당선기준득표수 구하는 법

$$\frac{1\text{순위 유효투표총수}}{\text{상원의원의석수}+1}+1=\text{상원의원 당선기준수}$$

예) 뉴사우스웨일즈주의 2013년 상원의원선거에서 산출된 당선기준 득표수

$$\frac{4,376,143}{6+1}+1=625,164$$

따라서 후보자가 해당선거에 1순위표가 625,164를 넘으면 바로 당선됨.

• 이양비율 구하는 방법

$$\frac{\text{잉여표수}}{\text{후보자의 1순위 득표수}}=\text{이양비율}$$

예) 후보자 A가 1순위표 1,000,000표를 획득하였는데, 해당선거 당선기준 득표수는 600,000표로 나머지 400,000표가 잉여표수가 됨. 이때 후보자 A의 이양비율은 $\frac{400,000}{1,000,000}=0.4$가 되고 후보자 A의 득표용지(1,000,000표)의 2순위표 득표수를 결정하기 위해 재집계함. 이 중 후보자 B가 획득한 2순위표가 900,000표라면 후보자 A로부터 900,000×0.4=360,000표를 이양 받아 이를 후보자 B의 1순위표 득표수에 더하게 됨. 이렇게 후보자 B가 획득한 1순위 표와 이양 받은 2순위표의 합이 당선기준 득표수를 넘는다면 바로 당선이 되며 후보자 B의 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후보자에게 이양됨.

나. 하원의원(연방선거법 제274조)

- 소선거구 절대다수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과반수 이상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
- 투표용지에 기표는 후보자 수만큼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선호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순위표 가운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웨어(Ware)식 계산법에 따라 최하위 후보자의 차(次)순위표를 이양하는 과정을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 까지 반복해 당선자 결정
- 웨어식 선호투표제 개표 방법
  - 제1순위 표에서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

14) 호주선거위원회(AEC). 'Electoral Pocketbook(2016년 연방 선거 결과 포함).' p.57,58. https://www.aec.gov.au/About_AEC/Publications/electoral_pocketbook/2016/2016-electoral-pocketbook.pdf (검색일 2019.6.27.)

-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가장 적은 득표를 한 후보자의 투표지에 2순위로 표시된 결과를 해당 후보자에게 이양 후 다시 계산해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
- 또다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후보자를 한 명씩 탈락시켜 가며 그 후보자의 2순위 표를 이양하여 다시 계산 하는 방식을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

- 웨어식 이양을 반복한 결과 마지막에 후보자가 2명만 남는 경우에는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

참조 13-6 호주 하원의원 당선자 결정방법(웨어식 선호투표제)

조 건: 후보자 5명
유효투표총수: 60,000표
과반수: 30,001표

후보자	A	B	C	D	E	계
제1순위표	15,000	20,000	7,000	10,000	8,000	60,000
C표를 해체 제2순위로 배분	1,000	0	해체	4,000	2,000	
누 계 E표를 해체 제3순위로 배분	16,000 1,500	20,000 3,000	- -	14,000 5,500	10,000 해체	60,000
누 계 A표를 해체 제4순위로 배분	17,500 해체	23,000 6,000	- -	19,500 11,500	- -	60,000
누 계		29,000		31,000 (당선)		

다. 무투표 당선(연방선거법 제179조)

등록된 후보자 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될 의석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선거공무원은 등록된 후보자가 정당하게 당선되었음을 선언함.

<표 13-1> OECD국가의 의회의원 임기개시와 임기만료

국가명 \ 구분		임기개시	근거규정	임기만료	근거규정
영 국	상원	국왕에 의해 임명장 수여시 공직 선서시	의회선서법 제1조	사망, 은퇴(70세, 시력감퇴 등)	상원의회개혁법 2014 제1조
	하원	공직 선서시	의회의사규칙 제5,6조	법정 임기 만료시	고정임기법 제3조제1항
				의회 조기 해산시	
미 국	상원	공직 선서시 선거일 이후 1월 3일	상원운영규정Ⅲ 의회법 제1조	법정 임기 만료시 (의회 조기해산 제도 없음)	수정헌법 제20조
	하원	공직 선서시	의회법 제25조	법정 임기 만료시 (의회 조기해산 제도 없음)	수정헌법 제20조
프랑스	상원	간선)전임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날 선거를 실시한 후 일반회기가 개회되는 날 (상원의원선거는 임기만료 전 60일 안에 실시)	헌법 제28조제1항 선거법 제277,278조	법정 임기 만료시	선거법 제275조
	하원	선거결과 공포시	-	법정 임기 만료시 (5년째 세 번째 화요일)	선거법 제121조
				의회조기 해산시	헌법 제12조
독 일	상원	해당 각 주의회에서 지명됐을 때	기본법 제51조	해당 각 주의회 결정시	기본법 제51조
	하원	선거구 선거위원회가 당선자를 확정한 후 해당 당선인이 1주일 이내 서면으로 당선수락선언을 해당 선거위원장에게 보냈을 때	선거법 제45조	법정 임기 만료시	기본법 제39조제1항
				의회 조기 해산시	기본법 제68조제1항
일 본	참의원	당선인 결정시 단, 의원임기 만료 전이라면 임기만료일 다음날	공직선거법 제102,257조	법정 임기 만료시	헌법 제46조
				의회 조기 해산 규정 없음	-
	중의원	당선인 결정시 단, 의원임기 만료 전이라면 임기만료일 이후	공직선거법 제102,256조	법정 임기 만료시	헌법 제45조
				의회 조기 해산시	헌법 제54조
스페인	상원	당선 선서시	상원의회규정 11,12	법정 임기 만료시	상원의회규정 18(e) 헌법 제69조제6항,
				의회 조기 해산시	헌법 제99조제5항, 제115조

국가명 \ 구분		임기개시	근거규정	임기만료	근거규정
	하원	당선 선언시	하원의회규정 20	법정 임기 만료시	헌법 제68조제4항 하원의회규정 22(3)
				의회 조기 해산시	헌법 제99조제5항, 제15조
스웨덴	-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소집시	헌법 제153조제1항 정부기관법 제3장제5조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소집일	헌법 제153조제1항 정부기관법 제3장제5조
				의회 조기 해산시	헌법 제133조제e항, 제171조제2항, 제172조 선거법 제1장제4조 제2항
스위스	상원	공직 선서시	의회의사규칙 제4조제1항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시	-
	하원	공직 선서시	의회 의사규칙 제4조제2항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시	-
캐나다	상원	선거일 당선인 결정시	헌법 제19조제3항	법정 임기 만료시	헌법 제25조제b항
	하원	선거일 당선인 결정시		법정 임기 만료시	
				의회 조기 해산시	헌법 제25조제e항
호 주	상원	선거일 당선인 결정시	선거법 제42조	다음 총선거의 선거일 전날 만료	헌법 제13조
	하원	당선 후 첫 회의 개시일	헌법 제57조	법정 임기 만료시	헌법 제5,28조
오스트리아	상원	당선인 결정시 ※ 주의회 인구비례로 간선	연방헌법 제35조제1항 상원의원 운영규정에 관한 법 제1조제1항	법정 임기 만료시	연방헌법 35조제3항
				의회 조기 해산시	상원의원운영 규정에 관한 법 제3조제1,2항
	하원	신임장이 의회 행정국에 도착했을 때	하원의원 운영규정에 관한 연방법 제9조	새로운 의회의원들의 첫 회의 개시일	연방헌법 제27조제1항, 제29조제3항
				의회 조기 해산시 ※ 이 경우 연방대통령이 조기 해산에 따른 임기만료일자를 정함	연방헌법 제29조제2,3항

국가명 \ 구분		임기개시	근거규정	임기만료	근거규정
벨기에	상원	직선) 선거일 당선인 결정시 간선) 지명시	-	직선) 새로운 선거일 간선) 새로운 의원 회의 개시일 전일	선거법 제239조
	하원	선거일 당선인 결정시	-	법정 임기 만료시 의회 조기 해산시	헌법 제46조 선거법 제239조
체 코	상원	선거일 당선인 결정시	헌법 제19조제3항	법정 임기 만료시	헌법 제25조제b항
	하원	선거일 당선인 결정시		법정 임기 만료시	
				의회 조기 해산시	헌법 제25조제e항
칠 레	상원	공직 선서시	상원의사규칙 제4조제4항	법정 임기 만료시 (종신상원의원제외)	-
	하원	공직 선서시	하원의사규칙 제32조제2항	법정 임기 만료시	-
덴마크	-	선거일 당선인 결정시	헌법 제32조제7항	새로운 선거일	헌법 제32조제4항
				의회 조기 해산시	헌법 제32조제2,3항
에스토니아	단원제	선거일 당선인 결정시	헌법 제61조제1항 선거법 제40조제1항	새로운 의회의 선거일 당선인 결정시	헌법 제61조제1항
				의회 조기 해산시	헌법 제89조제6항, 제97조제4항, 제105조제4항, 제119조
핀란드	단원제	선거 결과 공표시	선거법 제9,0,95조	새로운 의회의 선거 결과 공표시	-
그리스	단원제	선거 결과 공표시	헌법 제53조제1항	법정 임기 만료시 의회 조기 해산시	헌법 제53조제1항
헝가리	단원제	공직 선서시	헌법 제28조 제1항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시	헌법 제20A조제1항a, 제28조제6항
				의회 조기 해산시	헌법 제28조제2,5항, 제28A조제1,3항
아이슬란드	단원제	선거 결과 공표시	헌법 제46,47조 의회 의사규칙 제1,2조	새로운 의회의 선거일 의회 조기 해산시	헌법 제24조
아일랜드	상원	-	-	법정 임기 만료시	헌법 제18조제9항

국가명 \ 구분		임기개시	근거규정	임기만료	근거규정
	하원	새로운 의원들의 첫 집회일로부터 5년	선거법 제33조	법정 임기 만료시	-
이스라엘	단원제	공직 선서시	헌법 제14,16조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시	헌법 제37조
				의회 조기 해산시	헌법 제34-37조
이탈리아	상원	당선인 결정시	상원 의회규정 제1조제1항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시 종신 상원의원 제외	헌법 제61조 헌법 제59조
				의회 조기 해산시	헌법 제88조
	하원	공직 선서시	-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시	헌법 제61조
				의회 조기 해산시	헌법 제88조
라트비아	단원제	이전 의원들의 임기 만료시 /임기의 유효성의 인증시	헌법 제12조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시	헌법 제12,13,49조
				의회 조기 해산시	헌법 제48,50조
리투아니아	단원제	공직 선서시	-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시	-
룩셈부르크	단원제	공직 선서시	헌법 제57조제2,3항 의회규정 제3조제6항	법정 임기 만료시 의회 조기 해산시	-
멕시코	상원	공직 선서시	헌법 제128조 의회기본법 제62조제1,2항 의회내부규칙 제8,9,193조	법정 임기 만료시 의회 조기 해산시	-
네덜란드	상원	공직 선서시	-	기타	-
	하원	공직 선서시	헌법 제60조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전날	헌법 제64조
				의회 해산시	
노르웨이	단원제	새로운 의원들의 첫 집회시	의회의사규칙 제1조제1항	법정 임기 만료시	-
뉴질랜드	단원제	소집령 반환 지정일의 다음날	선거법 제54조	새로운 선거일	선거법 제54조
				의회 조기 해산시	헌법 제18조
폴란드	상원	선거결과 공포시	-	법정 임기 만료시	헌법 제98조 제1,3,4항
				의회 조기 해산시	헌법 제155조제2항, 제225조
	하원	선거결과 공포시	-	법정 임기 만료시	헌법 제98조제1,3항

국가명 \ 구분		임기개시	근거규정	임기만료	근거규정
				의회 조기 해산시	헌법 제155조제2항, 제225조
포르투갈	-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개시일	헌법 제153조제1항 의회의사규칙 제1조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 개시일	헌법 제153조제1항
				의회 조기 해산시	헌법 제133조제e항, 제171조제2항, 제172조
슬로바키아	단원제	공직 선서시	헌법 제75조	법정 임기 만료시 의회 조기 해산시	헌법 제81a조
슬로베니아	상원 하원	새로운 의원들의 첫 집회시	-	새로운 의원들의 첫 회의시	-
터 키	단원제	선거결과 공표시	헌법 제81조	새로운 의원들의 임기 개시시	헌법 제77조제2,3항
				의회 조기 해산시	

출처: IPU. PARLINE DATABASE. http://archive.ipu.org/parline-e/mod-mandate.asp (검색일 2019.6.25.)

제14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4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 각국은 당선인이나 의원의 사망·사직·그 밖의 사유로 공석이 된 공직을 채우기 위해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방식을 선출하는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선출되는 의원에 대해서는 후순위 후보자 또는 대리후보를 지명함.
- 재·보궐 선거일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해당 사유 발생 시 선거관리기관 등이 날짜를 지정해 실시하는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특정 시기를 지정해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사유를 대상으로 선거를 실시하고 있음.

1. 영 국

가. 실시사유

- 후보자의 사망, 선거무효 판결이 있으면 재선거가 실시됨(1983년 국민대표법 제144조, 부칙 1. 제64호)
- 의회의원의 사망, 사퇴,[1] 파산, 정신장애, 중범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보궐선거 실시
- 선거는 결원이 생긴 선거구에서만 실시하고, 여러 의석의 결원이 생긴 경우 보궐선거를 같은 날 실시할 수 있음.

1) 사퇴의 경우 영국 의회 전통이념인 1623년 3월 2일 채택된 '의회결의안(Resolution of House)'에 따라 의원의 직무는 '명예(Honor)'보다 '의무(Obligation)'로 간주되어 의원의 사퇴는 명목상 인정되지 않아, 이러한 의회전통을 훼손하지 않고 사퇴와 동일한 결과를 주는 간접사퇴 방법을 사용함. 즉 사퇴를 희망하는 의원이 영국 왕실에 의원직 무수행에 대한 임금을 요청하는데 왕실로부터 임금을 받는 자는 '정부조사 및 감독' 임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는 의원의 주요의무와 배치되므로 영국 전통에 따라 의원직 유지의 부적격 사유로 간주되어 자발적 사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함.
https://en.wikipedia.org/wiki/UK_Parliamentary_by-elections (검색일 2019.9.25.)

나. 보궐선거일시[2)]

- 결원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절차는 없음.
- 대신 관습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정당의 원내대표가 보궐선거에 대한 발의를 함.
- 발의 후 의회의장이 보궐선거에 대한 선거소집령 발부 절차를 수행함.
- 왕실서기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선거소집령 발부(보통 의장이 소집령 발부를 신청한 당일에 발부)
- 결원발생 후 선거소집령 발부까지 시간제한은 없으나, 통상 3개월 이내에 발부(특히 집권당이 유리한 시간을 선택하기를 원함)
- 선거관리관은 선거소집령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관례에 따라 보통 목요일을 선거일로 채택

  ※ 의회휴회 중(In Recess)인 경우 보궐선거는 사망 시에만 실시되고, 1975년 제정된 '휴회기간 중 선거법(The Recess Election Act 1975)'에 따라 의회의장은 선거소집령을 발부할 수 있으며, 발부 6일 전 런던관보(London Gazette)에 고시해야 함.

다. 세부절차[3)]

- 선거소집령에 관한 증서(warrant for the writ) 발부 후 가능한 한 신속한 시일 안에 선거소집령 발부(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1호)
  - 선거소집령 수령 후 2번째 날의 오후 4시까지 선거 공고(총선거와 동일)
  - 후보자 등록은 총선거와 동일. 다만, 등록신청서 최종 제출일은 선거관리관이 지정하되 영장 발부 이후 7일 이내 혹은 선거일 공고 후 3일 이후 마감하며, 선거인등록 및 우편투표신청은 선거일 11일 전에 마감함.
- 보궐선거는 후보자 등록신청서 제출기한 후 17일째부터 19일째 사이에 선거관리관이 지정한 날짜에 실시(1983년 국민대표법 부칙 1. 제61(9),63(9), 64(6)호, 선거인등록 및 행정법 제14조)
  - 선거소집령 발부 기준으로 21일에서 27일 사이에 실시

---

2) 의회 홈페이지. 'By-elections(보궐선거).' https://www.parliament.uk/about/how/elections-and-voting/by-elections/ (검색일 2019.7.4.)

3)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Election timetable for UK Parliamentary by elections-generic(보궐선거 일정).'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media/5012 (검색일 2019.9.21.)

- 총선거와 동일하게 선거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투표함.

2. 미 국

가. 관련규정[4)]

- 연방국가인 미국은 상원의원, 하원의원 재·보궐 선거(Special Election)도 각 주 단위로 실시됨.
-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결원에 관한 내용은 연방법 제2편 제1장 제8조에 규정되어 있음.[5)]
  - 상원의원은 그가 속한 각 주를 대표하므로 상원의원이 결원되었을 경우 선거 실시 전까지 주지사는 주 의회가 권한을 부여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상원의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특이한 제도가 있음(제17차 수정연방헌법).
  - 아칸소,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델라웨어, 플로리다, 조지아,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등(36개주)은 주지사에 의한 임시 상원의원 지명을 허용하지만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보궐선거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앨라배마, 알래스카, 코네티컷,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미시피시,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텍사스, 버몬트, 워싱턴, 위스콘신 주(14개)는 주지사에 의한 한시적으로 상원의원을 허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재보궐선거를 통하여 상원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
  - 하원의원은 상원의원과 달리 연방헌법에서 지명을 통한 선출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연방헌법 제1장 제2조제4항), 재·보궐선거의 선거일정에 관한 책무는 주 집행기관에 부여되어 있음.

---

4) NCSL. ‘Filling Vacancies in the Office of United States Senator.’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vacancies-in-the-united-states-senate.aspx#Foot1 (검색일 2019. 6.26.)

5) Legal Information Institute. U.S. Code. TITLE 2, The Congress. CHAPTER 1. Election of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Section 8. Vacancies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8 (검색일 2019.10.8.)

나. 실시사유

- 상원의원의 사망·사직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주지사가 다음 선거 시까지 임시 후임자를 임명하거나, 선거를 실시해 결원을 충원(주마다 다름)
- 하원의원의 사망·사직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주지사가 공고하는 보궐선거에 의해 충원

다. 세부절차(주마다 그 절차가 다름)

- 재·보궐 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하면 주지사가 주 의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를 통하여 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임.
- 다만, 연방법은 하원의원의 경우 연방하원의장의 결원 공표가 있은 날부터 원칙적으로(예외는 11월 총선거의 예정 등) 49일 이내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연방법 제2편 제1장 제8조).[6)]

3. 프랑스

- 프랑스에서는 일반선거 즉 총선거(élection générale)에 대비되는 의미에서 부분선거(élection partielle)라는 용어로 재·보궐 선거를 통칭함.

가. 상원의원

- 실시사유
  - 다수대표제에 의하여 선출된 상원의원이 선거의 무효,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직 상실, 겸직금지로 인한 사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 외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시에 선출된 대리후보로 충원(선거법 제319조)

---

6) Legal Information Institute. U.S. Code. TITLE 2, The Congress. CHAPTER 1. Election of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Section 8. Vacancies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8 (검색일 2019.10.8.)

- 비례대표제로 선출된 의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명부상의 다음 순위자가 승계(선거법 제320조)
- 제319조에서 정한 바와 다른 경우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선거구의 선거가 무효화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부분선거를 실시(선거법 제322조)

- 세부절차
  - 보궐선거는 일반적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규정에 따라 실시(선거법 제324조)
  - 선거는 상원의원 선거인을 소집하는 포고령(décret)공포일로부터 일곱 번째 일요일에 실시(선거법 제311조). 즉 선거일 7주 전에 선거공고 실시

나. 하원의원

- 실시사유
  - 하원의원이 선거의 무효,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직 상실, 겸직금지로 인한 사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 외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하원의원의 총선거 때까지 그 대리후보로 교체(선거법 제176조)
  - 선거구 선거가 무효로 된 경우, 선거법 제176조에 정한 바와 다른 이유로 결원이 생긴 경우 3개월 이내에 부분선거를 실시. 단, 하원의 임기만료일 12개월 이내에는 부분선거를 실시하지 않음(선거법 제178조).
- 세부절차
  - 보궐선거는 일반적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규정에 따라 실시(선거법 제178-1조)
  - 선거는 하원의원 선거인을 소집하는 포고령 공포일로부터 일곱 번째 일요일에 실시. 단, 과데루프(Guadeloupe), 귀얀(Guyane), 마르티니끄(Martinique)는 예외로 토요일에 실시(선거법 제173조)

4. 독 일

가. 추가선거(Nachwahl)(연방선거법 제43조)

- 실시사유

- 하나의 선거구 또는 하나의 투표소에서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7)]
- 선거구 후보자 중 한 명이 후보등록 후 선거 실시 전에 사망한 경우

- 실시시기
  - (실시되지 않은 경우) 추가선거는 최소한 본 선거일로부터 3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함.
  - (사망의 경우) 추가선거는 선거 당일에도 실시할 수 있으며, 최소한 본 선거일로부터 6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함.
- 실시절차
  - 추가선거일은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주 선거위원회 위원장이 결정
  - 기타 추가선거 관련절차는 모두 본 선거와 동일한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짐.

<표 14-1> 독일 연방의회 추가선거 사례

본선거일	추가선거일	해당 선거구	사유
1961.09.17.	1961.10.01.	151번 Cochem	SPD의 Fritz Klein 후보의 사망
1965.09.19.	1965.10.03.	135번 Obertaunuskreis	선거연합 AUD의 Erich Henz 후보의 사망
1965.09.19.	1965.10.03.	236번 Schweinfurt	독일자유연합의 Ernst Meier 후보의 사망
1987.01.25.	1987.02.01.	141번 Groß-Gerau	선거일 당일 17시45분에 검은 옷을 입은 8명의 신원미상의 사람들에 의해 투표함이 파손됨
2002.09.22.	2002.09.22.	295번 Sigmaringen	CDU의 Dietmar Schlee 후보의 사망
2002.09.22.	2002.09.22.	230번 Passau	PDS의 Maic-Roland 후보의 사망
2005.09.18.	2005.10.02.	160번 Dresden 1	NPD의 Kerstin Lorenz 후보의 사망

나. 재선거(Wiederholungswahl)(연방선거법 제44조)

- 실시사유
  - 선거 종료 후, 선거심사절차에서 선거가 완전히 무효로 선언되는 경우
  - 선거 종료 후, 선거심사절차에서 선거가 부분적으로 무효로 선언되는 경우

7) 법규정에 구체적인 사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물리력을 동원한 투표방해행위 등과 같이 실제로 투표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어 해당 선거구위원회 위원장이 투표를 중단하는 경우 등 포괄하는 것으로 투표함 훼손으로 인해 추가선거가 실시된 사례가 있는 것처럼 투표장 내에서의 폭력행위 등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직접, 평등, 보통, 비밀선거의 원칙이 훼손되어 정상적인 선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제적인 사실 전부가 요건이 됨.

※ 선거심사는 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연방의회 내에서 구성되는 선거심사위원회가 선거의 효력 유무를 심사해 결정함.
⇨ 이에 관한 내용이 「선거심사법」에 규정

참조 14-1 독일의 「선거심사법(Walhprüfungsgesetz)」[8)]

제1조 ①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연방의회는 헌법소원의 유보 하에 연방의회 선거의 효력 여부에 대하여 결정한다.
② 선거가 무효로 선언되는 한, 이러한 무효선언으로 인한 결과가 확정된다.
선거를 준비하거나 이행할 때, 후보자나 단체에게 부여된 권리가 침해된 경우, 연방법원은 선거를 무효라고 선언하지 않는 한, 그 권리를 침해했다고 선언한다.
제2조 ① 선거심사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된다.
②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자는 모든 선거권자 및 선거권자들로 구성된 단체와 각 주의 선거위원장, 연방선거위원장과 연방의회의 의장이다.
③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연방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공동체 분쟁의 경우 대리인을 임명해야 한다.
④ 이 기간이 만료된 후 연방대통령이 선거흠결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을 알게 되면, 그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후 한 달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제3조 ① 연방의회의 결정은 선거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하 생략)

- 실시시기
  - 재선거는 선거가 무효임을 선언하는 결정의 효력이 종국적으로 확정된 후, 최소한 6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함.
  - 선거가 단지 부분적으로만 무효인 경우에 한해, 새로운 연방의회 선거가 6개월 안에 실시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선거가 실시되지 않음.
- 실시절차
  - 재선거일은 주 선거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며, 재선거가 독일 전역에서 실시되는 경우에는 연방대통령이 재선거일을 정함.
  - 재선거는 본 선거와 동일한 규정, 동일한 입후보자 추천에 기초해 이루어짐.
  - 또한, 본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본선거와 동일한 선거인명부에 기초하여 재선거가 실시되는데, 다만 선거심사절차에서 선거무효결정이 입후보자 추천 및 선거인명부에서의 흠결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됨.

8) Wahlprüfungsgesetz
https://www.bundestag.de/parlament/aufgaben/rechtsgrundlagen/wpg/wpg-196334 (검색일 2019.10.15.)

- 역대 실시된 연방의회 재선거 사례
  - 연방의회 선거와 관련한 재선거 사례는 없었으며, 2004년에 실시된 작센 주의 지방의회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 31번 Leipzig에서 재선거가 실시된 적이 한 번 있었음.

다. 보궐선거(Ersatzwahl)

- 의원직 상실 사유(연방선거법 제46조제1항)
  - 또한, 본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본선거와 동일한 선거인명부에 기초하여 재선거가 실시되는데, 다만 선거심사절차에서 선거무효결정이 입후보자 추천 및 선거인명부에서의 흠결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됨.
- 의원직 획득이 무효인 경우
  - 선거결과가 새롭게 확정된 경우
  - 상시적인 피선거권의 요건에 결함이 생긴 경우
  - 의원직 포기
  - 그가 속한 정당 또는 정당의 일부조직이 기본법 제21조제2항제2호(위헌정당)의 규정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경우

    ※ 다만, 선거구에서의 당선이 무효가 되었지만, 정당명부에서도 동시에 당선이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됨(제46조제2항).
- 의원직 상실 절차(연방선거법 제47조제1항)
  - 선거심사절차를 통해 의원직 획득이 무효가 결정됨.
  - 선거결과가 새롭게 확정된 경우, 소속 정당 또는 그 정당의 일부조직이 기본법에 반하는 위헌적 단체임이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연방의회의 원로회의에서 의원직 자격 상실을 의결함.
  - 피선거권의 요건에 결함이 있어 법원의 판결로 피선거권 상실이 확정된 경우 연방의회 의원직 자격 상실을 연방의회 원로회의에서 의결함. 법원의 판결이 없는 경우에는 선거심사절차에서 결정됨.
  - 의원직의 포기의 경우 연방의회 의장의 공표로 결정됨.
- 의원직의 승계절차(연방선거법 제48조제1항)

- 당선된 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선 승낙을 거부한 경우 또는 연방의회 의원이 사망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의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의석은 해당 정당의 정당명부의 후순위자에게 승계됨.
- 정당명부의 등록 시점 이후부터 해당 정당을 탈당하거나 다른 정당의 일원이 된 정당명부 후순위자는 의원직 승계 시에 배제됨. 또한, 정당명부 후순위자가 지역구에서 당선된 자로서 의원직 승낙을 거절한 자이거나 연방의회 의원직 자격을 상실한 의원인 경우에도 의원직 승계에서 배제됨.
- 정당명부에 따른 후순위자가 없는 경우 해당 의석은 공석으로 둠.
- 정당명부에 따른 의원직 승계 한 결정은 주 선거위원회위원장이 하며, 주 선거위원회위원장은 의원직 승계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1주일 내로 의원직 승계에 동의한다는 서면의 의사표시 제출을 요구함.

- 실시사유 및 절차(제48조제2항)
  - 해당 선거구 당선자 또는 의원이 무소속이거나 해당 당선자 또는 의원의 정당이 해당 주에서 정당명부를 등록하지 못해 정당명부에 따른 후순위자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궐선거를 실시
  - 결원 발생 후 늦어도 6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하고, 6개월 안에 새로운 연방의회 선거가 실시될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고 해당 의석을 공석으로 둠.
  - 보궐선거는 일반적인 선거 규정에 따라 실시되며, 보궐선거일은 주 선거위원회위원장이 결정

5. 일 본

가. 재·보궐 선거일(공직선거법 제33조의2)

- 중의원의원 및 참의원의원선거
  -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의원정수에 미달한 경우 재선거: 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0일 이내

- 선거무효로 인한 재선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

- 중의원의원 및 참의원의원 재선거(공직선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재선거 제외) 또는 보궐선거
  - 9월 16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월 네 번째 일요일
  -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월 네 번째 일요일
- 임기만료 6개월 전부터는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지 않음.

나. 재선거 실시사유

1)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 및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공직선거법 제109조)

- 당선인이 없는 때 또는 당선인이 그 선거의 의원정수에 미달한 때
- 당선인이 사망한 때
- 당선인이 제99조(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인의 실격)·제103조(당선인이 겸직금지의 직에 있는 경우 등의 특례)제2항이나 제4항 규정에 따라 당선인 신분을 상실했을 때
- 제204조(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제208조(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의 당선효력에 관한 소송)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소송의 결과로 당선인이 없게 되거나 또는 당선인이 그 선거의 의원정수에 미달한 때
- 제210조(총괄주재자·출납책임자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의 효력 및 입후보자격에 관한 소송 등) 또는 제211조(총괄주재자·출납책임자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 등이었던 자의 당선무효 및 입후보금지 소송)에 의한 소송의 결과로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또는 제2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 해당 소송에 대한 소가 각하되거나 소장을 각하하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해당 소송의 취하로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되었을 때
- 제251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되었을 때

2)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및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공직선거법 제110조)

-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경우 결원의원 총수(당선인 부족수)가 해당 선거구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한 때
-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경우 결원의원 총수(당선인 부족수)가 통상선거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한 때
- 중의원비례대표의원 및 참의원비례대표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소송 또는 당선소송 결과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된 때
- 참의원비례대표의원(재임기간이 동일한 자)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의 부족수가 통상선거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재임기간을 달리하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는 이 선거와 동시에 재선거 실시. 다만, 해당 사유가 재임기간을 달리하는 비례대표선출의원 선거일 고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조상보충(繰上補充)(공직선거법 제112조)

-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선거에서 득표수가 같아 선거회에서 선거장이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한 경우(공직선거법 제95조제2항)에는 해당 직위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동점자 중 당선인으로 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 이들 중에서 선거회에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함.
-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명부등재자 중에서 당선인이 되지 않은 자가 있는 때는 선거회를 열어 그 자 중에서 명부순위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해야 함.
-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의 결원이 해당 선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때에는 법정득표수(공직선거법 제95조제1항 단서)를 득표한 자 중에 당선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 또는 선거일 후 3개월 경과 후에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동점자 중 당선인으로 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 이들 중에서 선거회에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함.

  ※ 선거장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결원의 사유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선거회를 개최하여 당선인을 결정해야 함.

라. 보궐선거(공직선거법 제113조)

- 그 의원의 결원수가 아래에 해당하는 때 해당 선거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고시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함.

  ※ 공직선거법 제112조(의원 또는 장이 궐위된 경우 등의 조상보충)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

  -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경우에는 1명에 달한 때
  -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경우에는 제110조제1항의 당선인의 부족수가 해당 선거구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
  -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재임기간이 동일한 자를 말함)의 경우 부족수가 통상선거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
  -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재임기간이 동일한 자를 말함)의 경우 통상선거에 있어서의 해당 선거구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

  ※ 다만, 참의원의원의 결원수가 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경우 재임기간이 다른 의원의 선거가 실시되거나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의 경우 해당 선거구에 있어서 재임기간이 동일한 선거구선출의원의 재선거 또는 재임기간을 달리하는 선거구선출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위 요건에 불구하고 보궐선거 등을 실시할 수 있음.

<표 14-2> 일본 의회의원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조건

■ 중의원 소선거구 선출의원 및 참의원 선거구 선출의원	
재선거 (공직선거법 제109조)	1. 당선인이 없을 때 또는 당선인이 그 선거에 있어서 의원의 정수에 달하지 않을 때 2. 당선인이 사망자인 때 3. 당선인이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겸직금지의 직에 있어 당선의 효력을 상실한 때 4. 선거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소송이나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소송의 결과로 당선인이 없게 되거나 당선인이 그 선거의 의원정수에 달하지 않을 때 5. 총괄주재자, 출납책임자 등의 선거범죄에 대한 당선무효소송 등에 의하여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된 때 6. 당선인의 선거범죄에 의하여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된 때
보궐선거 (공직선거법 제113조)	1. 중의원 소선거구 선출의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2. 참의원 선거구 선출의원(재임기간이 동일한 것을 말함)의 경우에는 통상선거에 있어서의 해당 선거구 의원정수의 4분의 1이 넘는 결원이 생겼을 때 3. 참의원 선거구 선출의원의 경우 선거구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의 결원이 없더라도 재임기간을 같이하는 선거구선출의원의 재선거 또는 재임기간을 달리하는 선거구선출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때
■ 중의원 비례대표 선출의원 및 참의원 비례대표 선출의원	
재선거 (공직선거법 제110조)	1. 중의원 소선거구 선출의원 및 참의원 선거구 선출의원(재임기간이 동일한 것을 말함)의 재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선거의 당선인의 부족수가 아래의 각 규정에 달해야 함. • 중의원 비례대표 선출의원의 경우에는 보궐선거에 해당하는 결원의 수를 합하여 결원인원이 해당 선거구 의원정수의 4분의 1을 넘었을 때 • 참의원 비례대표 선출의원(재임기간이 동일한 것을 말함)의 경우에는 보궐선거에 해당하는 결원의 수를 합하여 결원인원이 참의원 통상선거 의원정수의 4분의 1을 넘었을 때 3.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이나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 결과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된 때 4. 참의원 비례대표 선출의원(재임기간이 동일한)의 경우, 당선인의 부족수가 4분의 1에 달하지 않더라도 재임기간이 다른 참의원비례대표 선출의원의 선거가 실시될 경우 당선인의 부족수가 4분의 1에 달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그 선거와 동시에 재선거를 실시
보궐선거 (공직선거법 재113조)	1. 중의원 비례대표 선출의원의 경우에는 재선거에 해당하는 당선인 부족수를 합하여 결원인원이 해당 선거구 의원정수의 4분의 1을 넘었을 때 2. 참의원 비례대표 선출의원(재임기간이 동일한 것을 말함)의 경우에는 재선거에 해당하는 당선인의 부족수를 합하여 결원인원이 참의원 통상선거 의원정수의 4분의 1을 넘었을 때 3. 참의원 비례대표 선출의원의 경우, 해당 선거구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의 결원이 없더라도 재임기간이 다른 비례대표 선출의원의 선거가 실시될 경우 당선인의 부족수가 4분의 1에 달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그 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를 실시

6. 스페인

- 상원·하원의원 모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특성상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여지가 없어서 관련 규정이 없고, 결원시 의석을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가. 결원사유

- 상원의원 지위 박탈 사유(상원의원 내무 규칙 제18조)[9]
  - 법원의 최종 판결 또는 결정을 통한 선거의 무효화
  - 특수한 문제행동으로 인한 절대적인 사회적 비난
  - 사망
  - 관련 법령에 의한 자격 상실
- 하원의원 지위 박탈 사유(하원의원 내무 규칙 제21조)[10]
  - 법원의 최종 판결 또는 결정을 통한 선거 무효
  - 사망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한 직무수행 불능

나. 결원 시 의석승계

- 하원의원이 사망, 직무수행 불능 또는 사직할 경우 의석은 같은 선거구 후보자명부에 있던 다음 순위 후보자에게 의석이 승계됨(선거법 제164조).
  - 세우타와 멜리야에서 선출된 하원의원의 경우 후보자 추천시 포함된 1명의 대리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함.
    ※ 세우타와 멜리야 선거구(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에서는 하원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시 1명의 대리후보자를 포함시켜야 함(선거법 제170조).
  - 상원의원이 사망, 직무수행 불능 또는 사직의 경우 의석은 상원의원 후보자군에 포함된 1명의 대리후보자로 의석이 승계됨(선거법 제166조).

---

9) Senate Standing Orders/
www.senado.es (검색일 2019.6.10.)

10) Standing Orders Of The Congress Of Deputies/
www.congeso.es (검색일 2019.6.10.)

※ 각 상원의원 후보자 추천시 2명의 대리후보자를 포함시켜야 하고, 해당 후보자가 대리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대리후보자들의 이름은 후보자명부에 명시되어 관보에 게재되며, 기타 모든 선거 관련 문서에도 게재되어야 함. 단, 투표용지에는 명시하지 아니함(선거법 제171조).

7. 스웨덴

가. 의석승계

- 의회의원이 재임 중 사퇴할 경우 중앙선거청은 의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사퇴하는 의원의 대리의원을 새로운 의회의원으로 지명함(선거법 제14절 제18조).

  ※ 대리의원 선출방식은 제13장 당선인 스웨덴편, p.849 참조

나. 선거무효 선언 및 재선거 명령(선거법 제15절 제13조)

- 선거감독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해당 선거구에 재선거를 명해야 함.
  - 관련 행정기관이 선거의 준비 및 실시와 관련해 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경우
  - 투표를 방해 또는 위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 최종 집계를 새로 하거나 경미한 조치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거감독위원회는 선거청에 정정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위임할 수 있음.
  - 발견된 사실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될 때에만 이루어져야 함.
- 의원과 대리의원이 재임 중 사퇴하여 의원과 대리의원을 지명하는 과정(선거법 제14절 제18~24조)에서 법에 규정된 절차 위반이 최종집계에 영향을 준 경우 선거감독위원회는 최종집계를 무효화하고 결정기관에 필요한 정정조치를 취할 임무를 부여할 수 있음(선거법 제15절 제14조).

8. 스위스

가. 의석승계(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55조)

- 하원의원이 임기만료 전에 사임하는 경우 주 정부는 같은 후보자명부에 있는 첫 번째 후순위자가 선출된 것으로 선언해야 함.
- 만약 그 후순위자가 그 직을 맡을 수 없거나 맡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후보자 명부에 다음 순위자가 그 직을 맡는 것으로 함.

나. 보궐선거(Ergänzungswahl)(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56조)

- 의석이 후순위자로 채워지지 못하는 경우 사임한 하원의원이 기재되어 있는 정당의 명부 서명인의 3/5(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명부를 제출한 주 정당(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24조제3항)의 대표는 후보자 추가 추천 권한이 있음.
- 위의 방식으로 추천된 후보자는 후보자명부 수정(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22,29조) 후 투표 없이 법 제45조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주정부가 선언
- 후보자 추천권이 행사되지 않는 경우 일반 선거가 실시됨. 이 선거는 단순다수대표를 적용하지만 2개 이상의 의석을 채워야 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제 규정을 적용함.

※ 주 정부는 보궐선거일을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로 결정해야 함(정치와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19조)

9. 캐나다

가. 실시사유

- 하원의원 임기 중 의원의 사망, 사직, 그밖에 사유로 인해 공석이 된 경우(의회법 제28조)
- 최다득표수가 동일해 해당 선거구에서 당선된 후보자가 없는 경우(선거법 제318조)

-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자이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사기 또는 부정부패 행위로 인해 선거가 무효 또는 선거를 취소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공석이 발생할 경우(선거법 제524, 531조)

나. 세부절차(선거법 제57조)[11)]

- 하원에 공석이 발생하면 하원의장은 지체 없이 보궐선거 선거소집령 발부를 위한 증서(Warrant)를 선거관리청장에게 발송해야 함.
- 총독(Governor General)은 선거관리청장이 하원의장의 증서를 수령한 후 11일에서 180일 사이에 총리(Prime Minister)와 협의하여 보궐선거 날짜를 결정해야 함.
- 선거일은 선거소집령이 발급된 날을 기준으로 최소 36일 이후여야 함.
- 보궐선거일이 결정되면 선거관리청장은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관에게 선거소집령을 발부하며, 만일 선거소집령 발부 후 의회 해산으로 총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보궐선거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
- 보궐선거는 총선거와 특별투표, 거주요건, 선거비용 보전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지만 거의 같은 방식으로 실시됨.

10. 호 주

가. 상원의원(헌법 제15조 및 연방선거법 제44조)

- 주의 상원의원이 임기만료 전에 공석이 된 경우 총독이 소집한 상·하원합동회의에서 선출해 충원해야 함.
- 의회가 폐회 중인 경우 총독은 의회의 다음 회기가 개시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되기 전 또는 임기만료 전까지 충원될 의원을 임명할 수 있음.
- 새로 선출 또는 임명되는 의원은 전임자와 같은 당 소속이어야 함.

---

11) 캐나다 선거관리청 홈페이지.
https://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res&dir=ces&document=part5&lang=e#p56 (검색일 2019.7.2.)
https://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vot&dir=bkg&document=ec90700&lang=e (검색일 2019.7.2)

- 준주의 상원의원이 임기만료 전에 공석이 된 경우에는 준주 의회가 상원의원을 선출[의회가 폐회중인 경우 호주수도 준주의 경우 수석행정관(Chief Minister), 북부 준주의 경우 지역행정관(Administrator)이 임명]

나. 하원의원

- 하원의원의 사망, 사직(헌법 제37조), 무단결근(헌법 제38조), 의원으로서 효력 상실, 자격박탈, 부적격의 사유로 공석이 생긴 경우(헌법 제44,45조), 혹은 선거소송 관할법원에서 선거무효확정판결을 내린 경우(연방선거법 제374조), 하원의장은 결원을 채우기 위해 보궐선거를 실시함(헌법 제33조).
  - 하원의장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방총독(Governor-General)이 이를 대신 함.
- 하원의원선거 후보자가 후보자등록 후 선거일 전에 사망한 경우, 사실상 해당 선거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선거(Supplementary Election)를 실시한다는 선거소집령이 즉시 발부되어야 함(연방선거법 제181조).
  - 추가선거를 위한 새로운 선거소집령이 발부되지만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명부는 그대로 유지됨.

<표 14-3> OECD국가의 의회의원 결원 시 보충방법

국가명	결원 시 보충방법	근거규정
영 국	• 사퇴, 제명, 귀족신분 격상, 정신장애, 사망의 경우 보궐선거 실시(공식적인 의원사퇴는 인정하지 않고 간접사퇴 방식 활용) • 결원이 발생한 정당의 원내대표가 보궐선거 발의, 의회의장이 보궐선거에 관한 선거소집령 발주절차 수행(통상적으로 공석발생 3개월 이내), 관례에 따라 목요일을 선거일로 채택, 총선거보다 일정단축실시	1983년 국민대표법 제144조, 부칙1, 제64조
미 국	• 상원의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주지사가 다음 선거시까지 임시후임자를 임명하거나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결원을 충원(주마다 다름) • 하원의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주지사가 공고하는 보궐선거에 의해 충원(주마다 다름) • 하원의원의 경우 연방하원의장의 결원공포가 있는 날부터 원칙적으로 49일 이내에 실시	연방선거법 제1장 제2조 연방법 제2편 제1장 제8조
프랑스	• 다수대표제에 의해 선출된 상원의원이 사망하거나 행정부 또는 헌법평의회 구성원직 승낙, 정부의 잠정임무 6개월 이상 연장 수행 시 동시에 선출된 대리후보로 충원 • 하원의원의 경우 다음 총선거까지 그 대리후보로 교체 •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된 의원은 해당 명부상의 다음 순위자로 충원 • 선거무효와 대리승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	선거법 제176조
독 일	• 보궐선거: 결원은 선거시 입후보한 정당의 주명부에서 승계되나 결원자가 소선거구의 무소속이거나 해당 주에서 정당명부를 등록하지 못한 경우 실시(결원 시 60일 이내) • 재선거: 선거무효 결정 확정 후 60일 이내 실시 • 추가선거: 하나의 선거구 또는 투표소에서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본선거일로 3주 이내 실시), 선거구 후보자 중 한 명이 후보자 등록 후 선거 전에 사망한 경우(본선거일로부터 6주 이내 실시)	연방선거법 제43,44,46조
일 본	• 재선거: 당선인수 미달, 선거일 후 당선인 사망, 당선무효의 경우 • 보궐선거: 당선인이 의원이 된 후 사망·사직·퇴직의 경우 중의원 선거에서 결원발생, 참의원의원정수 1/4 초과 결원 발생, 비례대표선거구에서 해당선거구 정수의 1/4 초과 결원 발생 • 실시시기: 중의원·참의원 재선거는 사유발생일로부터 40일 이내, 보궐선거는 9.16-3.15 사이는 4월의 네 번째 일요일, 3.15-9.15 사이는 10월의 네 번째 일요일,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재선거는 사유 발생일부터 50일 이내, 임기만료일 6개월 전부터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음.	공직선거법 제133조의2, 제109,110,113조
스페인	• 결원 발생 시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선거법 제164조
스웨덴	• 결원 발생 시 후보자명부에 있는 차순위자(후보자 추천)로 충원, 추천자 없을 시 보궐선거 실시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55,56조
스위스	• 선거무효시 재선거 실시, 대리의원으로 충원	선거법 14절 18조, 15절 13,14조
캐나다	• 상원의원의 경우 총독이 임명하여 충원 • 하원의원의 경우 보궐선거 실시	선거법 제57조
호 주	• 상원의원의 경우 총독이 소집한 상·하원의원합동회의에서 선출하여 충원 • 하원의원의 경우 보궐선거 실시	헌법 15,33조 연방선거법 제44조

국가명	결원 시 보충방법	근거규정
오스트리아	• 상원: 의원 선출시 대리후보자를 동시에 선출하기 때문에 대리후보자로 충원 • 하원: 후보자명부 중 차순위자로 14일 이내에 충원	상원절차규정 제2조제2항 헌법 제34조제2항 하원선거법 제98조제5항
벨기에	• 결원 발생 시 40일 이내에 선거위원회 회의 소집, 보궐선거일은 법령으로 결정하며 본선거 실시 3개월 전에 공석 발생할 경우, 의회에서 결정	선거법 제106조
체 코	• 결원 발생 시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상의 차순위자로 충원 • 차순위자가 없을 경우 해당 의석은 공석으로 둠. • 정당해산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해당 의석은 공석으로 두며 임기 동안 충원하지 않음.	선거법 제54조제1~3항
칠 레	• 의회 결원 발생 시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에서 지명	헌법 제51조
덴마크	• 결원 발생 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 차순위자가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선거구의 정당명부 차순위자로 충원 • 해당 지역에 정당명부의 차순위자가 없을 경우 전국단일선거구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 위 방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궐선거 실시	선거법 제92조
에스토니아	• 사망, 사직, 제명 등의 이유로 결원 발생 시 등록된 대리 후보로 교체 • 전국적으로 5% 이상 득표한 정당에 소속된 후보 중, 득표수가 많은 후보, 동일 득표의 경우 후보자명부의 순서에 따라 대리후보를 등록	헌법 제64조 선거법 제75조
핀란드	• 의원 선출시 같은 명부상의 차순위자를 대리인(부대표)으로 임명하고 결원 발생 시 의원직을 승계	헌법 제28조 선거법 제92,98조
그리스	• 결원 발생 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 보궐선거 실시	선거법 제104조
헝가리	• 지역구의원 결원 시 보궐선거 실시 • 비례대표의원의 결원 시 소속 정당이나 연합의 후보자명부의 후보 중에서 임명하고 명부에 후보자가 더 이상 없을 경우는 공석으로 둠.	헌법 제4조, 의회선거법 제19,20조
아이슬란드	• 결원 발생 시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선거법 제122조
아일랜드	• 보궐선거 실시[12]	선거법(1992) 제39조제2항
이스라엘	•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의회 기본법 제43조
이탈리아	• 결원 발생 시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 다른 선거구 정당명부에 의석을 배분	하원선거법 제84,86조
라트비아	• 사퇴, 사망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선거법 제41조,

국가명	결원 시 보충방법	근거규정
리투아니아	• 비례대표의석의 경우 해당 정당명부의 차순위 후보자에 의하여 충원 • 소선거구 의석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다음 선거일까지 1년 미만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함.	선거법 제97조
룩셈부르크	• 사퇴, 사망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 정당명부에 차순위자가 없을 경우 공석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자는 내무부 장관이 결정	선거법 제167조 제259조
멕시코	•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일 경우 선거절차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로 보궐선거 실시 • 하원 지역의원 결원 발생 시 보궐선거 실시 • 하원 비례대표의원 결원 발생 시 정당명부의 차순위 후보자로 충원 • 상원 비례대표의원 결원 발생 시 정당명부의 차순위 후보자로 충원	연방선거법 제23조
노르웨이	• 결원 발생 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선거법 제14-1조
네덜란드	• 사망, 사직, 제명, 공직 임명 등의 이유로 결원 발생 시 14일 이내에 후보자명부에 있는 차순위자로 충원	헌법 제57조 선거법 제X1~X3조, 제W1조
뉴질랜드	• 지역구의원 결원 시 보궐선거 실시. 단, 의회 임기가 6개월 내에 만료되거나, 의원 75%의 찬성으로 충원하지 않을 것이 의결된 경우 공석으로 유지 • 비례대표의원의 결원 시 같은 정당 후보자명부의 차순위자가 승계	선거법 제129,131,137조
폴란드	• 상원: 3개월 이내에 보궐선거가 실시 • 하원: 같은 정당 후보자명부에 있는 차순위자가 의석 승계	선거법 제251,283조
포르투갈	• 결원 발생 시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선거법 제18조
슬로바키아	• 해당 의원이 속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로 충원 • 차순위자가 없을 경우 해당 의석은 공석으로 둠. • 정당 해산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해당 의석은 차순위자로 충원할 수 없으며 임기 종료 시까지 충원하지 않음.	선거법 제71조 제1~3항
슬로베니아	• 의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정당명부의 차순위 후보자에 의하여 충원 • 명부에 후보자가 없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의회임기만료 6개월 이내에 결원생길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함.	선거법 제17,18조
터 키	• 결원 발생 시 중간선거(Midterm Election) 실시 • 중간선거는 임기 중 1회만 실시할 수 있음. • 총선 30개월 이전에는 중간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나 결원이 의원 총원의 5% 이상이 될 경우 의회는 3개월 이내로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총선 1년 전에는 중간선거를 실시할 수 없음.	의회선거법 제7조

12) If a TD (member of Parliament) dies or resigns, his or her seat in Parliament will be filled by a bye-election unless it is only a short time until the next general election. https://www.citizensinformation.ie/en/government_in_ireland/elections_and_referenda/national_elections/by_elections_in_ireland.html (검색일 2019.9.2.)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 각국은 선거결과에 관한 이의제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이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을 확실히 구분해두지 않고, 선거의 효력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들이 해당 선거구 내 법원에 소송의 형태로 제기하는 반면, 프랑스는 헌법평의회, 독일은 연방하원, 스웨덴은 선거감독위원회, 스페인은 선거위원회, 스위스는 주정부에 선거의 효력에 관한 이의를 제기함.

1. 영 국

가. 개 요(1983년 국민대표법 제121,122조)

- 선거에 관한 쟁송제도는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이 있으나, 선거소송에서 선거사범에 대한 선거 및 당선무효의 효력을 다루게 됨으로써 절차상 구분은 명확하지 않음.
  - 선거무효(1983년 국민대표법 제144조): 선거 또는 당선에 이의가 제기된 때 선거법원이 해당 선거가 무효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당선을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진 부패행위 및 위법행위로 인해 선거결과가 좌우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선거가 무효로 됨.
  - 당선무효(1983년 국민대표법 제159,164조): 당선된 후보자가 직접 또는 그 대리인이 부패행위 또는 위법행위를 범했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해당 선거에서 부패행위, 위법행위가 선거결과를 좌우할 만큼 광범위하게 행해졌다고 입증되는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
- 선거소송은 선거인·후보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 피고는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해 이의 제기된 당선인이 되며, 선거관리관의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선거관리관이 피고가 됨.

- 해당 선거구의 의원당선 고시, 즉 대법관부 사무총장에게 당선보고가 있은 후 21일 이내, 부패행위 또는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28일 이내에 잉글랜드·웨일즈는 고등법원,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 대심원민사부, 북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나. 소송의 진행

- 선거소송은 원칙적으로 선거법원(election court)의 관할임(1983년 국민대표법 제123조).
  - 선거법원은 선거소송에 관해 해당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을 지정하며, 잉글랜드 및 웨일즈 지역에서는 런던에 소재하는 고등법원의 여왕좌부(Queen's Bench Division)에서 선거소송을 위해 구성된 근무명부에 등재된 법관 중 매년 윤번으로 선임
  - 북아일랜드의 경우 재판법(북아일랜드)[Judicature(Northern Ireland) Act 1978] 제108조에 따라 선정된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Court of Appeal) 2명의 법관이 담당하며 선거법원의 법관은 고등법원 법관과 같은 권한·관할권·권위를 가지며 하나의 기록보존법원(court of record)이 됨.
- 재판관할은 원칙적으로 해당 선거구 안의 지역법원이지만 고등법원은 소송의 심리편의상 다른 장소를 선정할 수 있으며, 잉글랜드 지역의 경우 통상 런던에서 심리하는 것이 일반적임(1983년 국민대표법 제123조).
- 선거소송의 심리는 공개법정에서 배심원 없이 진행되며, 해당 재판의 공정을 위해 결심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한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계속되며 보통 6개월 내지 9개월이 소요됨(1983년 국민대표법 제139조).
- 선거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과 입증내용에 따라 득표수의 삭감, 선거 또는 당선무효를 선고할 수 있음(1983년 국민대표법 제164~166조).
  - 즉, 전반적인 부패행위 등으로 인한 선거무효, 부패대리인의 고용으로 인한 당선무효, 부패행위 또는 위법행위로 인한 득표수의 삭감 등이나 사소한 법규위반의 경우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당 선거가 실질적으로 법규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실시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선거가 무효로 되지는 않음.

다. 판 결(1983년 국민대표법 제121,122,144조)

- 판결결과는 하원의회 의장에게 보고되며, 하원의원의 당선 확인 또는 변경, 새로운 선거실시를 위한 선거소집령의 발부 또는 그 결정의 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됨.

2. 미 국

각 주마다 그 규정이 다르나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다음과 같음.[1)]

가. 이의제기 사유(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16100조)

- 선거권자는 누구나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 투표구 위원회나 그 위원이 위법행위의 죄가 있을 때
  - 당선인이 선거일 현재 당선 자격이 없을 때
  -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투표구 위원회에 뇌물을 주었거나 주려고 한 혐의가 있을 때
  - 불법적인 투표지로 투표되었을 때
  - 법적으로 투표권이 있는 자가 법에 따라 투표를 하려는 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 개표에서 당선결과에 당선결과가 바뀔 수 있는 오류가 있을 때
  - 투표지 개표 프로그램이나 산출 과정에 오류가 있을 때

나. 이의제기의 절차(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16400조)

- 선거권자가 당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특별히 제시하는 서면의 진술서를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의 서기관에게 제출해야 함.
  - 이의 신청자의 이름 및 그가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이라는 사실, 경우에 따라

---

1) California Elections Code. Division 16. Elections Contests.(16000~16940)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Text.xhtml?lawCode=ELEC&division=16.&title=&part=&chapter=2.&article (검색일 2019.7.10.)

서는 선거가 치러진 선거구의 선거인이라는 사실
- 피고의 이름
- 공직
- 이의를 제기한 이유 및 근거 법조항
- 개표결과를 공표한 날짜

다. 이의제기 된 당선의 결정(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16600조)

- 법원은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이의제기된 선거에 대해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에 필요한 모든 권한이 있음. 또, 2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 계속할 수 있고, 지속에 필요한 비용은 요청한 당사자가 지불

  ※ 법원에 의해 당선이 확정되면 비용은 신청자에게 부과하나, 선거시행이나 개표결과를 검표한 투표구위원회의 잘못으로 당선이 무효화 되거나 보류되면 선거를 시행한 카운티나 시에 부과되고, 다른 이유로 당선이 무효화되거나 보류되면 피고가 비용을 부담(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16800조)
- 법원은 당선무효소송에서 제기된 논거에 대해 당사자들의 증거와 제시하는 주장을 듣고, 당선을 확정지을지 무효로 할 것인지, 보류할 것인지에 대한 판결을 해야 함(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16603조).
-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누구든지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16900조).

3. 프랑스

가.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사유

- 선거무효
  - 행정재판소가 사기를 이유로 선거무효판결을 할 수 있음(선거법 제118-1조).
  - 선거결과 공표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로 선거운동을 했거나 선거에 참여했던 선거구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가 헌법평의회에 하원의원 선거에 대해 당선무효 사유를 들어 청원한 경우 헌법평의회가 청원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제소된 선거소송을 무효로 하거나 투표조사위원회의 선언 및 그 후보자

가 정당하게 당선되었음을 공표한 사실을 취소할 수 있음(선거법 제186조).

- 당선무효
  - 선거담당판사가 선출된 후보자의 피선거권 무효를 결정한 경우 선거담당판사가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음(선거법 제118-3조제3항).
  - 헌법평의회의 예심에서 후보자가 정치자금 투명성을 위해 개인 소유의 모든 재산에 대한 신고서와 선거운동회계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당선이 공표된 후보자의 경우 그 당선을 무효로 함(선거법 제186-1조).

나. 소송의 제기

- 후보자로 선거운동을 했거나 선거에 참여했던 선거구의 선거인명부에 등록한 모든 자는 선거결과가 공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헌법평의회에 하원의원선거에 대해 제소할 수 있음(선거법 제180조).
- 선거에 관한 소송은 헌법평의회 사무총장 또는 도지사에게 문서로 청원을 통해서만 헌법평의회에 제기할 수 있음(선거법 제181조).
- 청원은 당선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며, 청원 시 모든 우송료와 등록비가 면제됨(선거법 제182조).
- 헌법평의회 사무총장은 제기된 청원에 대한 견해를 지체 없이 하원에 통보(선거법 제183조)

다. 소송의 결정

- 후보자의 선거운동계좌가 사기로 인해 폐쇄되거나 선거비용 관련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후보자가 투표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기만행위를 한 경우, 후보자의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하고, 당선자인 경우 그 당선을 무효로 함(선거법 제118-3, 118-4조).
- 헌법평의회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소된 선거를 무효로 하거나, 후보자의 당선을 취소할 수 있음(선거법 제186조).
- 헌법평의회는 당선자 또는 그 대리인의 피선거권이 없음이 밝혀질 경우를 요건으로 당선자와 그 대리인에 대하여 당선의 정당성 여부를 판결할 수 있음(선거법 제189조).

4. 독 일

- 선거의 효력에 관한 심사는 연방하원의 소관사항으로 선거심사는 선거심사절차에 따라야 하며, 연방하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는 선거인 100명 서명을 얻어 연방헌법재판소에 항고할 수 있음(기본법 제41조).
  - 선거의 효력에 관한 심사는 「선거심사법(Wahlprüfungsgesetz)」[2]의 규정에 의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 연방의회의장, 주선거위원장 및 연방선거위원장이 제기할 수 있으며, 주선거위원장 및 연방선거위원장은 선거법령의 규정에 의해 투표가 종료된 후 적법절차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되었음을 인증해야 함.
  - 연방의회의 결정은 선거심사위원회의 심리결과에 기초해야 하는 바, 선거심사위원회의 심리절차를 준용하며, 연방하원은 선거심사위원회가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결정
  - 선거심사절차에서는 선거의 모든 단계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음. 다만, 선거심사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되며 선거심사절차는 개인의 권리보호수단이 아니라 선거법의 적합성 즉 연방의원의 정당한 구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전부 또는 일부 무효가 됨.
  - 한편, 선거절차에 직접 관련되는 결정과 조치는 선거법령에 규정된 법률상의 항변과 선거심사절차에 의해서만 취소될 수 있음.
- 선거관련 심사사례
  - 2009년 9월 27일 실시되었던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회 선거의 유효성에 대해 주(州)헌법재판소가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의회 선거법상 의석배분규정이 주 헌법에 비추어 위헌이라고 판시(LVerfG SH 1/10, 2010.8.30.)하여, 2011년 5월 31일까지 의회는 주(州)헌법에 부합하는 새로운 선거법을 제정하고, 2012년 9월 30일까지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판시함.
  - 2007년 5월 13일 실시된 브레멘 의회 선거 당시 132/02 선거구에서 선거 실시와 관련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여 이 선거구의 선거를

2) 「선거심사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4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독일편, p.869 참조

무효로 선언하고 판결일(2008.5.22.)로부터 3개월 안에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판시함(StGH HB St 1/07, 2008.5.22.).

- 2004년 9월 19일에 실시된 작센 주의회 선거 당시 31번 선거구에서 당선된 후보자의 후보자 등록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해당 선거구의 선거를 무효로 선언하고 재선거 실시 및 해당 당선자의 주의회 의원직을 박탈함(VerfGH SN, Vf. 45_V_05, 2005.11.25.).

5. 일 본

가. 선거소송(공직선거법 제204조)

- 소송제기자: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
  -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또는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 해당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함.
  -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중앙선거관리회를 피고로 함.
- 제기기간 및 관할법원
  - 해당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고등재판소에 소를 제기

나. 당선소송(공직선거법 제208조)

- 소송제기자: 당선되지 아니한 자로 당선 효력에 관해 불복하는 자
  -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또는 참의원선거구선출의원선거: 해당 도도부현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함.
  -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 또는 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선거: 중앙선거관리회를 피고로 함.
- 제기기간 및 관할법원
  - 당선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등재판소에 소를 제기

다. 쟁송처리(공직선거법 제213,214조)

- 소송의 판결은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하도록 노력해야 함.
-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판소는 다른 소송 순서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처리해야 함.
- 소송의 제기가 있더라도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음.

6. 스페인

가. 대상 및 제기자(선거법 제109,110조)

- 선거위원회의 당선인 공고 및 이의 공표에 관한 결정은 선거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선거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된 선거소송의 피고
  - 당선으로 결정된 후보자 또는 결정되지 않은 후보자
  - 해당 선거구에 동시에 출마한 후보자의 대리인
  -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협회·연합 및 연정

나. 제기기간 및 관할 법원(선거법 제112조)

- 당선인 공고일 후 3일 이내 해당 선거위원회에 제기되어야 하며, 소장(訴狀)에는 사실을 적시하고 법적 근거 및 청구사항을 명시해야 함.
- 관할 법원: 대법원 행정소송 합의부

다. 소송절차(선거법 제112~116조)

- 소(訴)가 제기된 다음날 선거위원회위원장은 소장(訴狀), 선거기록 및 쟁송의 대상이 된 선거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 보고서 등을 관할 법원 합의부로 이첩해야 함.
- 선거위원회위원장은 이첩 결정 즉시 해당 선거구에 동시 출마한 후보자들의 대

리인에게 2일 이내 관할 법원 합의부에 출두할 수 있음을 통보해야 함.

- 이해관계자에게 주어진 출두기한이 만료된 다음날, 법원 합의부는 제출된 소장(訴狀)과 첨부서류 사본, 선거기록과 선거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검찰 및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들에게 송부하여 4일의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함.

  ※ 답변서에는 소장(訴狀) 내용을 지지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문서들을 첨부할 수 있고 입증절차 개시 요구 및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입증방법 및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음.

- 답변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다음 날, 법원 합의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요청에 따라 입증절차를 개시하여 필요한 입증을 하도록 할 수 있음.

  ※ 입증절차는 행정소송절차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진행하되 기간은 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입증 기한 만료 후, 필요에 따라, 법원 합의부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4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함.
- 판결은 다음 중의 하나로 결정해야 함.
  - 소송의 기각
  - 선거 및 당선인 결정의 효력(최다득표자가 명시된 명부 포함)
  - 1명 또는 다수의 당선인 결정의 무효선언 및 정당한 당선인 공고
  - 결격사유가 있는 투표관리위원회에서 실시된 선거의 무효선언 및 재선거 실시필요성 여부

    ※ 이 경우 단지 투표만 실시하게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장의 경우 재선거를 실시함. 이 모든 것은 판결이 내려진 뒤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1개 또는 다수의 투표관리위원회에서의 투표에 대한 무효선언의 결과가 선거구의 의석수 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투표관리위원회에서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음.

- 판결문은 늦어도 선거일후 37일 이내에 이해관계자들에게 송달되어야 함.
- 석명(釋明)요구 소송 및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헌법소원 이외에는 이 판결에 대하여 어떠한 항소도 허용되지 않음. 헌법소원은 3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15일 이내에 판결하여야 함.
- 판결문은 형식을 갖추어 해당 선거위원회에 통보되며 엄격히 이행해야 함.
- 선거쟁송은 긴급절차 성격을 띠며 관할행정소송 담당 합의부에서의 절차 및 판결에 있어 절대적으로 우선결정의 대상이 됨.

  ※ 선거쟁송과 관련하여 이 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재판관할법을 준용함.

라. 소송비용(선거법 제117조)

- 이 법률에 명시된 소송비용은 무료
- 근거 없는 주장을 한 당사자에게는 소송비용 부담 판결을 내릴 수 있음.

※ 예외적인 경우 판결문에 이러한 비용부담이 적절치 않다는 결정을 할 수 있되 근거를 명시해야 함.

7. 스웨덴

- 선거감독위원회(Election Review Board)가 선거법에 따른 결정이나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함(헌법 제3절 제12조, 선거법 제15절제1조).
  - 의회에서 구성하는 선거감독위원회는 현직 판사거나 판사였던 위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매 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되며 다음 선거까지를 임기로 함.
  - 선거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음.

가. 이의제기 대상(제15절 제3조)

- 지방선거청이나 중앙선거청의 선거인명부 정정에 관한 결정
- 중앙선거청이나 필요한 경우 지방선거청이 결정한 사항
  - 선거구당 의석수(선거법 제4절 제3조)에 관한 결정
  - 정당명칭의 등록(선거법 제2절)에 관한 결정
  - 후보자 등록 또는 정당별 투표용지(선거법 제2절)에 관한 결정
  - 선거참여 등록(선거법 제2절)에 관한 결정
- 중앙선거청의 선거결과 확정 또는 새로운 의원이나 대리의원의 임명(선거법 제14절 제18~24조)에 관한 결정

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자(선거법 제15절 제4조)

- 선거인명부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자
- 선거에 참여한 정당

-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의원, 의원승계자 또는 대리의원으로 지명하는 문제와 관련되었을 경우 그 후보자 당사자도 이의제기 가능

다. 이의제기 방법

- 이의제기 대상 결정을 통보한 기관(중앙선거청 또는 지방선거청)이나 선거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함(선거법 제15절 제5,7조).
- 이의제기 기한
  - 선거인명부 정정에 관한 사항: 선거일 전 마지막 수요일 이전
  - 후보자 등록 및 투표용지에 관한 사항: 이의제기자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늦어도 1주 이내
  - 선거참여 등록에 관한 사항: 이의제기 대상이 되는 결정이 공시된 날부터 늦어도 1주 이내(해당 결정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제기자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주 이내)
  - 선거결과 확정 및 당선자에 관한 사항: 선거일 다음날 이후 또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 10일 이내
- 기한 내 선거감독위원회에 이의제기한 경우에는 이의제기 관련 문서를 결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의제기를 처리해야 함.

라. 이의제기 검토(선거법 제15절 제8조)

- 결정기관은 이의제기 기한이 지난 후 지체 없이 모든 이의제기 관련 문서를 관보에 게재하고 선거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관보에는 선거감독위원회에 제출할 이의제기에 관한 의견 제시기한을 특정해 기재해야 함.
- 결정기관은 선거감독위원회에 이의제기에 관한 의견을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함(선거법 제15절 제9조).

마. 선거감독위원회의 심사(선거법 제15절 제10조)

- 선거감독위원회의 모든 위원이 참석해야 함.

- 이의제기가 선거결과를 확정하는 결정에 관한 것인 경우 선거감독위원회는 해당 선거 때처럼 구성되어야 함.
- 선거에 협력한 기관 등은 선거감독위원회가 요청하는 정보와 자료들을 제출해야 함(선거법 제15절 제12조).
  - 선거감독위원회는 어떤 자가 법원에서 증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증인의 증언을 지방법원에서 하도록 조치할 수 있음.
    ※ 이 경우 증거 확보는 재판법 제35절 제10,11조를 적용하며, 증인에 대한 보상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함.

바. 선거감독위원회의 결정(선거법 제15절 제13조)

- 선거감독위원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선거무효를 선언하고 관련 선거구에 다음과 같은 경우 재선거를 명함.
  - 관련 기관이 선거 준비 및 실시에서 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경우
  - 누군가가 투표를 방해했거나 제출한 투표를 위조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최종 집계를 새로 하거나 경미한 조치를 통해 정정할 수 있는 경우 선거감독위원회는 결정기관에 정정에 대한 조치를 위임할 수 있음.
- 선거무효선언 및 재선거 명령과 정정 조치는 발견된 사실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함.
- 재선거는 무효화된 선거와 관련된 선거구의 고정의석과 조정의석수에만 관련됨.
- 선거결과의 최종집계(선거법 제14절 제18~24조) 과정에 절차의 위반이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위반이 최종 집계에 영향을 주었다고 간주되는 경우 선거감독위원회는 최종 집계를 무효화하고 결정기관에 필요한 정정조치를 하게 할 임무를 부여할 수 있음(선거법 제15절 제14조).

8. 스위스

가. 이의제기(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77,78조)

- 투표권 관련 규정과 국민투표 및 하원선거의 준비와 실시에 있어서의 주정부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제기 가능함.
- 이의제기는 등기우편으로 3일 이내, 늦어도 주 관보에 선거결과가 공표된 후 3일 이내 제기해야 함.

나. 결정과 처분(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79조)

- 주정부는 이의제기 후 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림.
- 주정부가 위법행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가능하다면 선거 혹은 국민투표가 마감되기 전에 시정조치 함.
- 주정부는 제기된 위법행위가 투표 및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근본적이거나 중요하지 않다면 세부조사 없이 기각함.

다. 연방최고법원에 소제기(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80조)

- 이의제기와 관련한 주 정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연방최고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정당등록거부 또는 국민투표 및 국민발안에 대한 요구의 불이행에 대한 연방내각국의 결정과 관련한 소제기도 가능함.

9. 캐나다

가. 선거소송 제기(선거법 제524조)

- 선거구에서 투표권이 있는 선거인과 후보자는 관할 법원에 해당 선거구의 선거

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당선된 후보자가 후보자의 자격이 없을 경우(선거법 제65조)
-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 사기 또는 부정부패 행위가 존재했을 경우

- 다만, 선거법 제301조제2항에 따라 요청된 재개표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선거소송 절차

- 각 주의 최고법원 또는 대법원은 소 제기에 대해 지체 없이 약식으로 처리해야 함. 하지만 특정상황의 경우 소 제기 내용을 심리하기 위해 구두증거를 허용할 수 있음(선거법 제525조).
- 소 제기 시 보증금 1,000캐나다달러를 납부하여야 하고(법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상할 수 있음), 캐나다의 법무장관, 선거관리청장,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관 그리고 해당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소 제기사실이 송달되어야 함(선거법 제526조).
-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 사기 또는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소는 아래 사항 중 가장 늦은 시점 후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선거법 제527조).
  - 관보에 소가 제기된 선거의 결과가 발표되는 날
  - 일관성 없는 불법행위, 사기, 부정부패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소 제기자가 처음으로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 법원의 허가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없음(선거법 제528조).

다. 판결 등

- 법원은 해당 선거가 무효임을 선언할 수 있고, 소제기가 소송을 남용하는 것이거나 소송의 중요성이 적거나 신의성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기각할 수 있음(선거법 제531조).
- 1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해당 판결이 내려진 후 8일 이내에 캐나다 연방대법원에 제기해야 하고, 대법원은 지체 없이 약식으로 심리해야 함(선거법 제532조).

10. 호 주

가. 소제기(연방선거법 제353조)

- 후보자, 선거인, 호주선거위원회는 선거 혹은 선거결과에 대한 효력에 대해 고등법원에서 다툴 수 있음.
- 소는 선거소집령이 반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2개 이상의 선거가 같은 날에 실시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선거소집령이 반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함(연방선거법 제355조제1항제e호).[3)]
- 선거 또는 선거결과의 효력은 관할 법원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 다툴 수 없음.
- 헌법 제15조에 따라 주 또는 준주의회에 의한 상원의원 선출 또는 임명은 연방선거법 제353조상 선거로 간주되어 선거와 동일한 효과를 가짐.

나. 관할 법원(연방선거법 제354조)

- 고등법원(High Court)은 사건을 직접 조정하거나 호주연방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에 회부할 수 있음.
- 사건이 연방법원에 회부되는 경우 연방법원은 그 사건과 관련한 관할 법원의 모든 권한과 기능을 행사함.
- 관할 법원은 신속하게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함(연방선거법 제363A조).
- 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항소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연방선거법 제368조).

다. 소송비용의 예납(연방선거법 제356조)

-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고등법원의 최고행정관 겸 주 등록관, 상급등록관 또는 부등록관에게 비용에 관한 보증금으로 500호주달러를 예납해야 함.

---

3) 호주선거위원회. ‘Electoral Pocketbook(2016년 연방 선거 결과 포함).’ p.59 참고 https://www.aec.gov.au/About_AEC/Publications/electoral_pocketbook/2016/2016-electoral-pocketbook.pdf. (검색일 2019.6.27.)

라.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선거무효(연방선거법 제362조)

- 관할 법원이 당선된 후보자가 뇌물수수(bribery) 또는 부당한 영향력(undue influence)을 행사했거나 행사하고자 시도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결정함.
- 관할 법원의 판결은 불법행위에 대한 기소를 저지 또는 방해하지 않음.
- 관할 법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었고 후보자가 적절하게 당선되지 못했음을 선언하거나 선거를 무효로 선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후보자 외의 사람에 의한 불법행위, 혹은 뇌물수수와 비리를 제외한 다른 불법행위를 이유로 당선된 후보자의 당선무효나 선거무효를 결정해서는 안 됨.

마. 결정의 효과(연방선거법 제374조)

- 당선된 자가 적절하게 당선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직을 상실함.
- 낙선한 자가 적절하게 당선됐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그 직을 취득함.
- 선거가 완전하게 무효라고 선언된 경우 새로운 선거가 실시되어야 함.

<표 15-1> OECD국가의 선거에 관한 쟁송 제기방법

국가명	소송/이의제기	관할기관	관련규정
영 국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송	선거법원(항소법원에 항소 가능)	1983년 국민대표법 제121~123조
미 국 (캘리포니아 주)	당선, 뇌물관련범죄 투·개표 문제	고등법원(항소법원에 항소 가능)	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16100,16400조
프랑스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송	헌법위원회	선거법 제118-1,118-3,180조
독 일	선거효력에 관한 심사	연방헌법재판소	기본법 제41조
일 본	선거효력에 관한 이의신청	해당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	공직선거법 제204,208조
	선거·당선 소송	고등재판소에서 판결	
스페인	당선인 공표 등 선거쟁송 대상	선거관리기관에 제기 후 대법원 행정소송 합의부에서 판결	선거법 제109~112조
스웨덴	선거결과·투표결과	선거감독위원회	선거법 제15절
스위스	선거준비·선거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주정부 결정 후 연방최고법원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제77~80조
캐나다	당선,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	주 대법원 또는 최고법원 (연방대법원에 항소 가능)	선거법 제524,525조
호 주	선거의 효력	고등법원(연방법원에 항소 가능)	연방선거법 제353,354조
오스트리아	개표에 관한 이의신청	연방선거위원회	하원선거법 제110조
	선거절차·당선무효 소송	헌법재판소	헌법 제10,141조 헌법재판소법 제67조
벨기에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제기	지방자치단체(항소법원에 항소가능)	선거법 제19,20,27조
	후보자등록에 관한 이의제기	선거관리위원회 (항소법원에 항소가능)	선거법 제125조, 125조의1~4
	언론 관련 이의제기[4]	언론규제기관(행정법원에 항소가능)	-
	선거비용 관련 이의제기	재정감사기관(행정법원에 항소가능)	-
체 코	선거의 효력, 결과·당선에 관한 이의제기, 투·개표문제	최고행정법원	선거법 제87,88조
칠 레	선거법 위반행위,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투·개표문제	지방선거법원	선거법 제105,106조
덴마크	선거관련 이의제기	의회	선거법 제87,88,89조

국가명	소송/이의제기	관할기관	관련규정
에스토니아	선거과정의 위법, 절차 하자에 대한 의의신청, 투표결과의 무효	선거위원회(대법원에 항소 가능)	헌법재판소 절차법 제37조 선거법 제68~73조
핀란드	선거결과에 관한 소송 (대통령선거는 불가)	관할 행정 법원 최고행정재판소에 항소 가능	선거법 제100,102,105조
그리스	당선인의 피선거권 결격, 선거절차 및 법규의 위반, 개표오류 관련 문제	대법원	헌법 제58,100조 선거법 제125,126조
헝가리	선거 절차 및 법규의 위법에 대한 이의제기	선거구 선거위원회, 지역구 선거위원회	선거법 제208조
	선거위원회 결정에 대한 소제기	최고법원 및 항소법원	제221,222,229조
아이슬란드	당선인에 관한 이의제기 후보자명부에 대한 이의제기 선거의 효력에 관한 이의제기	법무부에 제기 후 법무부는 후보자명부 작성주체와 의회에 송부, 의회에서 결정	선거법 제118,120조
	선거법 위반행위	경찰에 제기하여 범죄처리 절차에 따름.	선거법 제119조
아일랜드	입후보자격, 선거법 위반행위,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투·개표문제	고등법원	선거법 제132조제1,5항
이스라엘	의석배분 문제,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투·개표문제	행정법원	선거법 제86조제A,B항
이탈리아	선거관련 이의제기	의회	헌법 제66조
라트비아	선거위원회의 후보자명부 등록 거부	지방행정법원	선거법 제13,351,51, 521,54조
	개표문제,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선거범죄 판결에 따른 의석 배분 문제	대법원	
리투아니아	선거결과에 관한 이의제기	선거위원회 (불복할 경우 의회의원, 대통령에게 이의제기 후, 의회의원과 대통령은 48시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항소)	선거법 제86조
	선거과정에 관한 이의제기	헌법재판소에 제기 후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근거하여 의회에서 최종결정	선거법 제95조
룩셈부르크	선거인명부 오류,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투·개표문제	행정법원	선거법 제21,22조, 제276조~279조
멕시코	선거관련 이의제기	선거법원	헌법 제99조
노르웨이	투표권 및 투표권 행사	의회	선거법 제13-1조
	이외 선거관련 이의제기	중앙선거위원회	
네덜란드	선거인명부와 후보자 등록에 관한 의의제기	관할법원, 국왕최고자문위원회	선거법 제I4,I8조

국가명	소송/이의제기	관할기관	관련규정
뉴질랜드	선거와 결과에 관한 소송	고등법원	선거법 제229,230,258조
	의석 배분 관련 소송	항소법원	
폴란드	선거인명부등록에 대한 이의제기	지방법원	선거법 제20조제4항
	선거효력, 당선효력	대법원	선거법 제241조
포르투갈	후보자 등록 절차, 선거과정, 투표결과	헌법재판소	선거법 제32,34,117,118조
슬로바키아	선거효력에 대한 이의신청[5]	헌법재판소	헌법 제129조제1,2항
	선거인명부 오류	지방법원	선거법 제10,250z조
	후보자명부 오류	대법원	선거법 제250za조
슬로베니아	후보자에 관한 이의제기	선거위원회(행정법원에 항소 가능)	선거법 제105조
터 키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6], 투·개표문제, 선거인명부 오류, 후보자명부 오류	최고선거위원회	헌법 제79조 선거기본법 제110조~115조

4)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belgium/416432?download=true (검색일 2019.7.29.)

5) 슬로바키아 선거법은 선거쟁송에 관한 항목을 제공하지 않음. 선거법 상 선거쟁송에 관한 절차가 없으며 선거운동과 관련된 분쟁은 법원이 아닌 내무부에서 관할함. 선거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은 대통령, 정부, 1/5 이상의 의원 또는 검찰총장 등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제기될 수 있음.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slovakia/235591?download=true (검색일 2019.7.24.)

6) https://www.ifes.org/sites/default/files/2019_ifes_turkey_local_elections_faqs_final.pdf (검색일 2019.7.23.)
http://www.ysk.gov.tr/doc/dosyalar/Kurumumuz/YuksekSecimKuruluTanitimKitapcigi/YSK-Book.pdf (검색일 2019.7.23.)

제16장

벌칙

제16장
벌칙

❍ 각국은 여러 유형의 선거와 관련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독일과 스위스는 형법에 선거범죄를 규정하고 있음.

1. 영 국

가. 선거범죄

- 부패행위(corrupt practice): 매수·향응·부당한 영향력 행사, 투표에 관한 이름 사칭행위, 선거비용보고서에 관한 선서서의 허위 기재 등(1983년 국민대표법 제60조)
- 위법행위(illegal practice): 선거집회에서 질서문란행위, 허위사실 공표행위, 해외 무선국 사용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위반행위, 선거운동용 문서의 게시에 관한 위반행위, 선거비용제한 위반행위 등(1983년 국민대표법 제61조)
- 위법지불(illegal payments): 입후보 취소의 권유 또는 알선행위, 위법한 목적으로 금전 제공금지 위반행위 등
- 위법임대차(illegal employments): 선거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의 제한 위반행위 등

나. 벌 칙

1) 형사책임

- 부패행위에 대해 기소에 의한 유죄판결 또는 약식재판에 의한 유죄판결에 따라 처리(1983년 국민대표법 제168조)
  - 기소에 의한 유죄판결의 경우 투표에 관한 이름 사칭, 우편투표나 대리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 이를 병과
- 그 밖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이를 병과
- 약식재판에 의한 유죄판결의 경우 6월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이를 병과

- 위법행위에 대해 약식재판에 의한 유죄판결에 따라 표준단위 5단위(level 5)[1]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함(1983년 국민대표법 제169조).
- 위법지불 및 임대차 등에 대해 약식재판에 의한 유죄판결에 따라 표준단위 5단위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함(1983년 국민대표법 제175조).
  -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이 위법지불 및 임대차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법행위로 처벌 받음.

2) 참정권 및 공무담임권 제한(1983년 국민대표법 제160조)

- 선거법원이 후보자가 부패행위 또는 위법행위를 범하였다고 통보한 경우 부패행위의 경우 5년간, 위법행위의 경우 3년간 다음 사항이 금지
  - 어떤 선거구에서도 선거인으로 등록될 수 없어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음.
  - 하원의원에 선출될 수 없음.
  - 선출직에 취임할 수 없음.
- 이미 하원의원으로 선출되었거나 공직을 보유한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그 직을 사임해야 함.

3) 득표수의 소멸(1983년 국민대표법 제166조)

- 후보자가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선거인을 매수하거나 향응, 기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해당 후보자의 득표총수에서 이러한 영향력을 받은 투표자의 수에 해당하는 수만큼 표를 삭감
- 부패행위, 위법행위, 위법한 지불·고용·임대차를 범한 자 또는 부패행위 또는 위법행위에 관한 규정에 의해 투표 자격을 상실한 자가 투표한 경우 그 투표는 무효로 함.

---

1) 벌금 단위(fines level) – 1단위: 200파운드, 2단위: 500파운드, 3단위: 1,000파운드, 4단위: 2,500파운드, 5단위: 5,000파운드
http://www.defence-barrister.co.UK/fines (검색일 2019.10.31.)

2. 미 국

가. 연방법의 벌칙[2)]

1) 매수 및 이해유도죄

- 매수죄 등(연방선거운동법 제18편 제597조)
  -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투표를 얻게 하거나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자 및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승낙하거나 수령하는 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
  - 위반이 의도적인 경우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과함.
- 실업 구제 사업비의 이용에 의한 강제(연방선거운동법 제18편 제598조)
  -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때에 이를 간섭 또는 강요할 목적으로 실업구제 사업 또는 공공사업에 관한 정부 특별지출금을 이용하거나 그 권한을 행사하는 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함.
- 후보자에 의한 취직의 약속(연방선거운동법 제18편 제599조)
  - 후보자가 지지를 얻을 목적으로 공사의 직에 임용할 것을 약속하거나 보증하는 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
  - 이러한 행위가 의도적인 경우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병과함.
- 정치적 활동을 위한 고용 기타 이익의 약속(연방선거운동법 제18편 제600조)
  - 선거 또는 예비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활동으로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대가로 고용, 지위, 보수, 계약, 임명, 기타의 이익 또는 그런 이익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의 특별배려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약속하는 자는 10,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함.

---

2) Legal Information Institute. 18 U.S. Code. Chapter 29. Electins and Political Activities.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8/part-I/chapter-29 (검색일 2019.7.16.)

2) 선거방해죄

- 투표자의 위협(연방선거운동법 제18편 제594조)
  - 대통령·부통령후보자, 대통령선거인, 연방의회의원 등의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을 위협, 협박, 위압하거나 이를 꾀하는 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함.
- 공무원에 의한 선거간섭(연방선거운동법 제18편 제595조)
  - 공무원이 정·부통령, 대통령선거인, 연방의회의원 등의 후보자지명선거 또는 선거에 간섭하거나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합중국의 차관 또는 보조금이 융자되는 활동에 관하여 직무상의 권한을 이용한 때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함.

3) 선거운동규제 위반죄

- 실업구제사업대상자의 성명공표(연방선거운동법 제18편 제605조)
  - 정치적 목적으로 실업구제사업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부를 후보자, 정치위원회 또는 선거운동지배인 등에게 양도하거나 제공 또는 공표한 자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그러한 이름 또는 명부를 수령한 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함.
- 비영리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연방선거운동법 제26편 제501조(c)(3)]
  - 비영리 단체(교회, 교육기관, 자선단체 등)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면세등 혜택을 박탈함.[3]

4) 공무원의 선거범죄(공무원법 제1505조)[4]

- 실적제도보호위원회는 청문 후에 직원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정치적 운동에 참가하는 것 이외의 금지사항에 위반하는지 여부, 해당 위반에 대해 파면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파면 기타 신분상의 제재를 가함.

---

3) The Restriction of Political Campaign Intervention by Section 501(c)(3) Tax-Exempt Organizations https://www.irs.gov/charities-non-profits/charitable-organizations/the-restriction-of-political-campaign-intervention-by-section-501c3-tax-exempt-organizations (검색일 2019.10.8.)

4) USLEGAL. Hatch Act. Penalties. 5 U.S.C.S. § 1505 https://hatchact.uslegal.com/penalties/ (검색일 2019.6.26.)

- 정치적 기부의 금지

  비영리 단체(교회, 교육기관, 자선단체 등)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면행정기관의 직원(의회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는 제외)으로 다른 직원, 연방의회의원 또는 군 장교에게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물품을 요구 또는 수령하거나 증여하는 자는 파면됨.

  비영리 단체(교회, 교육기관, 자선단체 등)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면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정치적 운동에 참가하는 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그 직위가 해제됨.

5)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범죄[연방선거운동법 제52편 제30109조(d)(1)(ii)]

- 고의로 연방선거운동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중 총액 2,000달러 이상을 기부 및 지출하는 위반행위, 수령 및 보고에 관한 위반행위를 범한 자는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함.

6) 기부행위 범죄

- 정치적 기부의 요구(연방선거운동법 제18편 제602조)
  - 연방의회의 후보자, 상원의원, 하원의원, 준주대표 또는 주재변무관에 선출된 개인 혹은 그 직에 있는 개인, 연방 공무원 또는 연방 기관의 직원, 합중국의 국고를 재원으로 역무에 대한 보수 등을 수령하는 자 등이 사정을 알고 제3자에게 기부를 요청하는 것은 위법행위임.
  - 본 조에 위반되는 자는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함.
- 정치적 기부행위(연방선거운동법 제18편 제603조)
  - 연방 공무원이나 연방 기관의 직원 또는 연방 국고를 재원으로 보수 등을 수령하는 자가 그 고용주 또는 고용권자인 다른 직원, 연방의회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준주대표 또는 주재변무관에 기부를 행하는 것은 위법임. 이를 위반하는 자는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함.
- 실업구제사업대상자에 대한 기부요청(연방선거운동법 제18편 제604조)
  - 실업구제사업대상자임을 알면서 이들에게 정치적 목적을 위한 할부금, 회비, 기부금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함.

- 정치적 기부를 획득하기 위한 협박(연방선거운동법 제18편 제606조)
  - 특정 직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기부하거나 하지 않는데 대하여 다른 직원을 파면·승진·좌천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계급, 급료 등을 변화시키거나 협박하는 자는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함.
  - 기부 요구 장소(연방선거운동법 제18편 제607조)
  - 특정한 자가 공무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사무실 또는 건물에서 기부를 요구하거나 수령하는 자는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함.

나. 주법의 벌칙(일리노이 주의 경우)[5]

1) 매수죄 관계

- 투표 또는 선거인등록을 하도록 하거나 후보자 또는 공적 현안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하도록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4급 중죄의 죄가 있음(선거법 제29-1조).
  - 사정을 알면서 금전 또는 기타의 가치 있는 보수를 기부·증여하거나 대여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 사정을 알면서 공직에 임용 또는 임명을 하게 하거나 지지하는 행위, 직무상의 행위를 하거나 그것을 보류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선거법 제29-2조)
- 이러한 행위로 후보자 또는 공적현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투표를 한 자는 4급 중죄의 죄(class 4 felony)가 있음(선거법 제29-3조).
  - 사정을 알면서 고의로 선거인등록 또는 투표를 위한 금전을 요구하거나 받은 자는 배상을 위한 소송 또는 소송절차에서 손해를 받은 정당 또는 영향을 받은 개인에 대하여 책임을 짐.
  - 그리고 이러한 위반행위를 한 후보자는 법원에 의해 당선무효 됨.

---

5) Illiois Compiled Statutes. Chapter 10. Elections. Article 29. Prohibitions and Penalties. https://law.justia.com/codes/illinois/2018/chapter-10/act-10-ilcs-5/article-29/ (검색일 2019.6.26.)

2) 선거방해 및 투표에 관한 죄

- 투표 또는 후보자 지지의 방해(선거법 제29-4조)
  - 사정을 알면서 폭력, 위협, 협박, 사기 또는 위조로 다른 자를 등록시키거나 후보자 또는 공적 현안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는 4급 중죄가 있음.
- 이중투표(선거법 제29-5조)
  - 이미 투표를 마친 자가 고의로 동일한 선거에서 동일한 후보자 및 투표에 부쳐질 공적현안에 대하여 이중투표를 하기 위해 같은 투표소나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투표용지를 수령 또는 투표기 속에 넣는 자는 3급 중죄의 죄가 있음.
  - 다만, 부재자투표자가 사정의 변화에 따라 투표용지를 선거기관에 반납하고 선거당일 자기가 거주하는 투표구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는 본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음.
- 선거자료를 불완전하게 하는 행위(선거법 제29-6조)
  - 고의로 등록 또는 선거에 사용되거나 사용을 위해 보관되는 공적기록, 선거인명부, 선서공술서, 투표록, 증명서, 투표수 기입지, 투표용지 기타 서류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파괴, 위조, 은닉하거나 훼손시키는 자는 4급 중죄의 죄가 있음. 판결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음.
- 투표기의 불법조작(선거법 제29-7조)
  - 투표 또는 투표수의 계산에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기 위해, 기계 또는 장치에 기록되거나 기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변경시키기 위해, 비합법적으로 투표된 투표를 기계에 입력하기 위해 해당 기계 또는 장치를 조작하는 자 또는 이를 알면서 다른 자가 해당 기계 또는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를 인정하는 자는 4급 중죄의 죄가 있음.
- 부정투표의 투입(선거법 제29-8조)
  - 투표지의 계산 또는 투표수의 최종증명을 전후하여 투표함에 투표용지 이외의 것을 넣거나 다른 투표지에 위조투표지를 투입해서 뒤섞이게 하거나 다른 투표신청서에 위조투표신청서를 추가해서 뒤섞는 자는 4급 중죄가 있음.
- 투표의 불법관찰 등(선거법 제29-9조)

- 다른 자에게 보이도록 고의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투표용지 또는 투표장치에 표시하거나 이를 관찰하는 자 4급 중죄의 죄가 있음.

- 헌법상의 권리박탈(선거법 제29-17조)
  - 선거인등록, 선거관리, 투표, 후보자의 지명 또는 선거에 관해 합중국 또는 일리노이 주의 헌법 및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권리, 특권 또는 면제를 일리노이 주 시민 또는 그 관할구역의 기타의 자로부터 박탈하거나 박탈시키는 자는 배상을 위한 소송 또는 소송절차에서 손해를 받은 정당 또는 영향을 받은 개인에 대하여 책임을 짐.
- 투표방해를 위한 모의(선거법 제29-18조)
  - 폭력, 위협, 협박, 사기, 위조 또는 수뢰로 다른 자가 등록하거나 투표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후보자의 지명 및 선거 또는 투표에 부쳐질 공적현안을 합법적 수단으로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다른 자에게 그의 재산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공모하는 자, 다른 자 또는 그의 재산을 해하거나 선거관리, 투표, 후보자의 추천 또는 선거에 관한 합중국 또는 일리노이 주의 헌법 및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권리, 특권, 면제를 보유하거나 행사하는 것을 박탈하는 모의를 하거나 그 모의의 목적을 촉진하는 행위 또는 그 모의의 목적을 추진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꾀하거나 이루어지게 하는 자는 배상을 위한 소송 및 소송절차에서 손해를 받은 정당 및 영향을 받은 개인에 대해 책임을 짐.
- 허위정보(선거법 제29-19조)
  - 고의로 선거인등록 자격을 얻을 목적으로 자기의 이름·주소·선거구 내에서의 거주기간에 관해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등록 또는 위법투표를 조장할 목적으로 다른 개인과 모의하는 자는 배상을 위한 소송 및 소송절차에서 손해를 입은 정당 또는 영향을 받은 개인에 대해 책임을 짐.

3) 선거법령의 준수에 관한 죄

- 선거기관명령의 불복종(선거법 제29-11조)
  - 선거기관의 임무수행 상 실시되는 합법적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절하는 자는 A급 경죄의 죄가 있음.
- 선거법 무시(선거법 제29-12조)

- 고의로 선거법에 의해 금지 또는 위법이라고 선언된 행위를 하거나 선거법에 의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자는 각각의 벌칙이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A급 경죄의 죄가 있음.

4) 기타 죄

- 위증죄(선거법 제29-10조)
  - 본법의 규정에 의해 필요로 하는 선서서, 증명서 및 선언된 구술 투표결과공표에서 그 자가 진실하다고 믿지 않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는 자는 3급 중죄의 죄가 있음. 본 조의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자는 판결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음.
- 법정 모욕죄(선거법 제29-16조)
  - 본조의 규정에 따른 직원으로 본법의 규정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본법의 규정이 필요로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자는 약식절차로 법정에 의해 법정 모욕죄로 처벌 받고 공직으로부터 해직됨.

참조 16-1 미국 선거범죄 유형[6)]

- 선거사기(Election Fraud): 투표지를 불법으로 획득하거나 표시, 선거결과나 선거등록정보를 위조
- 특혜범죄(Patronage Crimes): 당파적인 이유로 고용인을 불법으로 해고한 경우
- 시민권 범죄(Civil Rights Crimes): 투표권법(Voting Right Act, 1965)에 명시된 소수의 선거권 침해에 대한 범죄로 선거인의 인종, 언어 등으로 선거권의 침해를 받으면 안 됨.
- 선거자금범죄(Campaign Financing Crimes): 연방선거운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선거자금범죄 즉, 불법선거자금의 액수가 일정액을 초과했을 때, 명확한 범죄의도가 있는 경우 연방선거운동법 위반으로 취급
  - 과도한 기부, 기업과 조합의 기부 및 지출, 정부계약자(contractors)들로부터의 기부, 외국으로부터의 기부, 출처가 불분명한 기부, 현금기부, 사기로 조성된 기부, 연방선거운동법을 준수하지 않은 정당으로부터의 기부, 선거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
  - 위의 조건하에 위반과 관련된 액수가 최소 $2,000를 넘는 경우나 위반이 의도적으로(knowing and willful) 자행되었을 경우 선거범죄로 인정

6)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Prosecution of Election Offenses.' 8th Edition. December 2017. https://www.justice.gov/criminal/pin (검색일 2019.10.8.)

3. 프랑스

선거범죄의 형량은 비교적 가볍고 종류도 많지 않으며, 규제는 주로 선거운동에 관한 것보다는 투표의 원활한 관리·운영에 관한 것임.

가. 선거인명부의 등록에 관한 죄

- 허위의 성명이나 자격으로 선거인명부에 등록하게 하거나, 피선거권이 없는 자임을 은폐하고 등록하게 하거나,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등록을 신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86조).
- 허위의 신고서 또는 증명서를 이용하여 선거인명부에 타인을 부당하게 등록하게 하거나, 등록하게 하려고 시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88조).

나. 투표에 관한 죄

- 선거권을 상실한 자가 투표를 한 때에는 3월의 징역과 7,500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91조).
- 중복투표 및 부정한 등록에 의하여 투표를 한 자는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과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92,93조).
- 대리투표에 있어서 대리인이 지정받은 내용과 다른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한 행위는 5년의 징역과 22,500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95조).

다. 투표소 무기휴대죄

- 투표소에 무기를 휴대하고 들어가는 행위를 한 자는 3개월의 징역과 7,500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96조).

라. 선거방해죄

- 소란 또는 위협적인 시위행위로 선거인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선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자는 2년의 징역과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98조).

-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선거인단에 폭력을 사용했거나 폭력을 사용할 행위를 한 자는 5년의 징역과 22,500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99조).
- 무기를 가지고 투표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10년의 징역(선거법 제100조), 그 범죄가 공모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행해진 경우는 20년의 징역에 처함(선거법 제101조).
- 폭력, 모욕, 협박의 방법으로 선거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한 자는 1년의 징역과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함. 만약 투표가 방해된 경우 5년의 징역과 22,500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102조).

마. 투표함 탈취죄

- 개표되지 않은 투표함을 탈취한 경우 5년의 징역과 22,500유로의 벌금에 처하되, 집단적이고 폭력적으로 탈취한 경우 10년의 징역에 처함(선거법 제103조).
- 투표소 관리인에 의해 또는 투표용지 경비책임을 맡은 자가 투표함을 탈취한 경우 10년의 징역에 처함(선거법 제104조).

바. 매수죄

- 기부금이나 선물을 금전이나 현물로 받거나 선물의 약속, 특혜, 기타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선거인의 표를 얻거나 얻으려고 시도한 자,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선거인이 투표에서 기권하도록 하거나 그를 시도한 자는 2년의 징역과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106조).
- 선거인단이나 선거인단의 일원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조직·단체에 기부금 또는 선물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행정기구에 의한 특혜를 부여한 자는 2년의 징역 및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108조).

  ※ 위반자가 공무원인 경우 그 형벌은 2배로 가중함(선거법 제109조).

사. 선거의 자유방해죄

- 선거인에 대해 폭행, 협박이나 공포심을 일으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의 징역과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함(선거법 제107조).

아. 투표의 비밀침해죄

- 투표 전이나, 진행 중, 종료 후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고 한 행위, 투표결과를 변경하거나 변경하려는 행위를 한 자는 15,000유로 또는 1년의 징역에 처하거나 양자를 병과함(선거법 제113,116조).
  ※ 위반자가 공무원이거나 정부 또는 공공행정기관의 대리인 및 투표관리관의 경우 그 형벌은 2배로 가중함.

4. 독 일

- 선거법에서는 명예직 거부행위와 투표 종료전 출구조사결과 공표행위만을 질서위반행위로 규제하고 있고, 대부분의 선거와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해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음.
- 「형법」 각칙에서 '선거와 국민투표 관련 범죄'라는 제목 하에 실질범만을 대상으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가. 연방선거법상 질서위반행위

- 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과 투표위원회위원은 명예직으로 이러한 명예직은 연방정부 공무원이나 연방의회 의원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빈곤자, 질병·장애를 가진 자 등과 같은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한하여 그 수락을 거부할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11조).
-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투표 종료 이전에 공개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질서위반행위로 처벌함(연방선거법 제32조제2항).
- 명예직의 직무거부 또는 직무회피는 최고 500유로의 벌금을, 선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위반은 최고 50,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연방선거법 제49조의a).

나. 형법상 선거범죄

- 선거방해죄(형법 제107조)
  - 폭력 또는 협박으로 선거 또는 선거결과의 확정을 방해하거나 교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함.
- 선거의 위조죄(형법 제107조의a)
  - 권한 없이 투표한 자 또는 기타 부당한 선거결과를 초래하거나 선거결과를 조작한 자 또는 조작된 결과를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함.
- 선거자료의 위조죄(형법 제107조의b)
  - 허위신고로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 등록 자격이 없는 자인 것을 알면서 그 자를 선거인으로 등록시킨 자, 선거권이 있는 자임을 알고도 그 등록을 방해한 자, 피선거권이 없으면서도 그 자신 스스로 입후보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180일분의 일수벌금형에 처함.
- 투표비밀의 침해죄(형법 제107조의c)
  - 투표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에 처함.
- 선거인에 대한 강요죄(형법 제108조)
  - 폭력을 사용하여 위해를 가하고 협박하거나, 직업상 또는 경제상 종속관계를 남용하거나, 기타의 경제상 압력을 가하여 투표를 강요 또는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특히 중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함.
- 선거인에 대한 기만죄(형법 제108조의a)
  - 타인을 기망하여 투표 시 그 자의 의사표시의 내용에 대해 착오를 발생하게 하는 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함.
- 선거인 매수죄(형법 제108조의b)
  - 타인이 투표하지 아니하거나 투표하도록 금품이나 기타의 이익을 제안·약속 또는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함. 투표하지 아니하거나 제한된 의미로 투표하는 대가로 금품 기타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제공받은 자도 동일하게 처벌함.

다. 기타 규정

- 부수적 효과(형법 제108조의c)
  - 선거방해죄(형법 제107조), 선거부정죄(형법 제107a조), 선거인에 대한 강요죄(형법 제108조), 매수죄(형법 제108b조)를 범하여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부가하여 법원은 공공선거를 위한 권리취득 자격 및 공직에 관한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박탈(형법 제45조제2,5항)할 수 있음.
- 적용범위(형법 제108조의d)
  - 상기 형법규정은 국민대표기관의 선거, 유럽의회의원선거 및 연방·주·지방자치단체 및 그 조합에서 실시되는 주민의 기타의 선거와 투표 또는 사회보험에 있어서의 제1차(예비) 선거에도 적용됨. 선거발의의 서명 또는 국민청원을 위한 서명에서도 함께 적용됨.
- 의원직의 매수(형법 제108조의e)
  - 유럽의회 또는 연방, 각 주,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연합의 국민대표나 투표를 위하여 그 지지표를 매수 또는 매도한 자는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법원은 이 범죄로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에 부가하여 공공선거를 위한 권리취득 자격 및 공직에 관한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음.
- 공소시효
  - 선거범죄와 관련한 별도의 공소시효는 없으므로 공소시효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되며, 대부분 3년의 공소시효기간이 적용

5. 일 본

가.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공직선거법 제221~224조)
  - 보통매수죄 및 사후보수공여죄, 이해유도죄, 직무공여죄, 매수목적교부죄, 매수알선권유죄, 다수인매수 및 다수인이해유도죄, 후보자 및 당선인에 대한 매

수 및 이해유도죄

- 선거방해죄 등(공직선거법 제225,226,230,235조, 제235조의3)
- 명의등재자의 선정에 관한 죄(공직선거법 제224조의3)
  - 선거의 자유방해죄,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다중의 선거방해죄, 허위사실공표죄, 정견방송 또는 선거공보의 불법이용죄
  -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 후보자의 선정·중의원명부등재자의 선정 또는 참의원명부등재자의 선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의 행사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 처벌조항을 두고 있음.
- 투표에 관한 죄 등(공직선거법 제227,228조, 제235조의5, 제236,237조, 제237조의2)
  - 투표의 비밀침해죄, 투표의 간섭죄,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사위등록죄, 선거인의 허위선언죄, 허위투표 및 투표위조·증감죄, 대리투표에서의 기재의무위반죄
- 선거의 평온을 해친 죄 등(공직선거법 제229조, 제231~234조)
  - 선거사무관계자·시설 등에 대한 폭행죄·소요죄, 무기휴대죄, 선거범죄선동죄
- 선거에 관한 보도 및 평론에 관한 죄 등(공직선거법 제235조의2, 제235조의4)
  - 신문·잡지의 선거공정을 해하는 죄, 선거방송 등의 제한위반죄
- 공무원 등의 선거범죄 등(공직선거법 제239조의2)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 행정집행법인이나 특정지방독립행정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및 공고의 임직원으로서 중의원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에게 인사하거나 지위 및 이름을 표시한 문서·도화를 게시 또는 배부하거나 특별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약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선거운동기간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로 보아 처벌

나. 벌 칙

-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징역·금고·벌금형 등의 형벌이 과해지며, 기타 이와 관련 당선인의 당선무효,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일정기간 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짐.
-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공직선거법 제251조)

- 당선인이 선거에 관하여 죄를 범하고 형에 처해진 경우는 그 확정과 동시에 그 당선이 무효로 됨.

- 총괄주재자·출납책임자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공직선거법 제251조의2)
  - 총괄주재자·출납책임자의 선거범죄에 의한 당선무효, 총괄주재자·출납책임자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다수인매수 및 다수인이해유도죄, 공직후보자 및 당선인에 대한 매수죄, 신문 및 잡지의 불법이용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로 됨.
- 조직적 선거운동관리자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공직선거법 제251조의3)
  - 조직적 선거운동관리자 등(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의사를 통하여 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에 있어서 해당 선거운동 기획의 입안·조정 또는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자의 지휘·감독, 기타 해당 선거운동의 관리를 행하는 자를 말함)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다수인매수 및 다수인이해유도죄, 후보자 및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신문·잡지의 불법이용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로 됨.
- 공무원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선거법 제251조의4)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특정독립행정법인·특정지방독립행정법인 임원 또는 직원 및 공사 임직원이었던 자가 공무원 등의 사직일 이후 최초로 공직후보자가 된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된 경우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당선인을 위한 선거운동 또는 행위에 관하여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죄를 범하여 형에 처해진 때에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로 됨.
-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정지(선거법 제252조)
  - 벌금형의 경우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재판확정일로부터 5년간
    - ·벌금형에 처해지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재판확정일로부터 집행유예기간 중
  - 금고이상의 형의 경우
    - ·그 재판확정일로부터 형의 집행종료일까지의 기간 및 그 후 5년간
    - ·형의 집행면제를 받은 경우 그 면제를 받을 때까지의 기간 및 그 후 5년간

- 누범자의 경우: 위의 5년간의 기간이 10년간으로 연장

다. 절차적 특징

- 공소시효제도
  -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1962년 공직선거법 개정 시 단기 공소시효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일반 공소시효가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 선거재판기간(공직선거법 제253조의2)
  - 대부분의 선거사범에 대한 소송의 판결은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100일 이내에 하도록 노력해야 함.
  - 재판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소송의 순서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그 재판을 진행해야 함.

6. 스페인

가. 총칙(선거법 제135~138조)

- 선거법 및 형법에 동시적으로 저촉되는 행위의 경우 해당 중범죄 또는 경범죄에 대하여 더 중한 벌을 적용하는 규정을 우선으로 함.
- 모든 중범죄의 경우 법 제8장(선거중범죄 및 경범죄)에서 명시하는 벌칙 이외에 피선거권 정지의 벌칙에 처함.
- 선거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는 형법을 적용함. 모든 경우에 있어 이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 중범죄는 형법 제1장제1절 규정의 적용 또한 받음.

나. 개별 중범죄(선거법 제139~150조)

1) 직권 남용에 의한 선거방해죄

- 다음에 명시되는 행위를 하는 공무원[7]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및 6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선거법 제139조).

- 선거인명부의 작성, 보관, 열람, 선거위원회 및 투표소관리위원회, 그리고 이 위원회가 행하는 투표, 합의 및 개표를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회의록, 확인서, 통지문 및 기타 선거관련 문서를 법률이 정하는 형식과 시간에 맞추어 교부하지 않는 행위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의 신분 혹은 특정기관의 권리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 정당한 사유 없이 어떠한 선거행위라도 이를 중단하는 행위
-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가 제기한 항의 또는 이의에 대하여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그 권한 행사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에게 명백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
- 우편투표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 공직이나 직책을 고의적으로 남용하여 아래와 같은 기망 행위를 하는 공무원은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및 18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선거법 제140조).
  - 선거일 및 투표장소 등을 허위로 공고하는 등 조작된 선거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
  - 선거인명부에서 특정 선거인의 이름을 고의로 제외하는 행위
  - 기표된 투표지 및 투표지가 동봉된 투표봉투를 은닉하거나 바꿔치는 행위
  - 선거인명부 작성 및 투·개표업무를 수행에 있어 그 수를 부정확하게 계산하는 행위
  - 특정인의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선거업무 중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발설하는 행위
  - 특정인의 이중투표, 선거권이 없는 자의 투표행위 등을 방조한 행위
  - 규정을 위반하여 투표용지 및 봉투를 인쇄·제작하여 사용한 행위
  - 선거비용 관련 보조금에 있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

7) 공무원이라 함은 형법에 따라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하며 선거와 관련하여 공공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특히 선거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투표관리관, 투표관리위원 및 참관인, 그리고 해당 대리위원을 포함함(선거법 제135조제1항).

- 형법 제302조에 명시된 방법으로 상기 내용과 유사한 기타 선거 기망 및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 만약 이 조에 해당하는 기망행위가 중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면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2) 우표투표 절차 위반에 의한 범죄(선거법 제141조)

- 누구든지 우편투표 절차를 위반한 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6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기망행위에 고의적으로 참여하는 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함.

3) 중복투표 또는 무자격자 투표 의한 범죄(선거법 제142조)

- 동일선거에서 2회 또는 그 이상 투표를 행사하거나 선거권이 없는 자가 투표를 행사한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벌금형 및 1년 이상 3년 이하의 공직 관련 특별자격정지에 처함.

4) 투표소 내 임무 불이행에 의한 범죄(선거법 제143조)

- 투표관리관 및 관리위원, 또한 그 대리위원들이 임무수행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무를 포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이 정하는 사전 양해나 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6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5) 선거홍보물 관련 범죄(선거법 제144조)

- 아래의 행위를 한 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6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선거운동기간 종료 후 선거운동을 하는 자
- 선거벽보 및 그 부착장소 관련 법률규정을 위반하거나 집회 및 기타 선거운동을 위한 대중집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타 선거행위를 하는 현역 국군 및 경찰, 자치주 및 자치단체 경찰, 판사, 법관 및 검사, 그리고 선거위원회 직원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및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6)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선거법 제145조)

-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현행법규를 위반한 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 및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직업, 직무, 산업 또는 상업 관련 특별자격정지형에 처함.

7) 매수죄, 선거자유방해죄(선거법 제146조)

- 다음의 행위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보상, 선물, 임금 또는 이러한 것에 대한 약속을 통해 어느 특정 선거인의 표를 직·간접적으로 호소하거나 기권을 유도하는 자
  - 선거인에게 폭력이나 위협을 행사하여 선거권 행사를 못하게 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행사하게 하거나 투표내용의 비밀을 공개토록 하는 자
- 선거절차가 진행되는 곳에서 선거인, 후보자, 대리인, 참관인 및 공증인의 출입 또는 그곳에 머무르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자
- 법 제146조에서 명시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사용하는 공무원은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하고, 추가로 공직 관련 특별자격정지형에 처함.

8) 투표소 무기휴대죄(선거법 제147조)

- 무기 또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의 소지를 통해 각종 투표행위 또는 투표장소의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방해하는 자는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6개월 이상 24개월 이하 벌금형에 처함.

9) 후보자비방죄(선거법 제148조)

- 선거운동기간과 선거직전 및 직후에 후보자비방죄를 범할 경우 형법에 명시된 해당 구금형 중 가장 장기형에 처함.

10) 선거비용 위반죄

- 회계항목의 증감 또는 감소를 위해 수입·지출을 부당한 방법으로 반영 또는 누락시키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계를 위조하는 정당, 연합, 연정 또는 선거인 단

체의 일반관리인 및 후보자 관리인은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및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법원은 사건의 심각성과 정상을 고려해 위에 명시된 형벌보다 한 단계 낮은 형벌을 부과할 수 있음(선거법 제149조).

- 선거법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선거기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일반관리인 및 후보자 관리인과 선거계좌의 임의처분권에 대한 수권자는 해당 선거기금이 50,000유로 이하인 경우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그 반대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및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선거법 제150조).
  - 법원은 사건의 심각성과 정상, 책임자의 자격 및 추구한 목적을 참작하여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및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다. 사법절차(선거법 제151,152조)

- 범죄 처벌을 위한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따름. 이 규정을 적용하는 사법적 절차는 우선적 성격을 띠며 최대한 신속히 처리함. 범죄에서 파생되는 소송은 비친고죄 성격을 띠며 공탁금이나 보증금 없이 소송이 가능
- 범죄와 관련된 소송에서 선고된 확정판결의 집행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판사는 이 확정판결을 “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이 사실을 중앙선거위원회에 알림.

라. 개별 경범죄(선거법 제153조)

- 선거법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써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선거위원회에 의해 처벌을 받음. 당국 또는 공무원인 경우 300유로 이상 3,000유로 이하의 벌금, 개인인 경우 100유로 이상 1,000유로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0유로 이상 30,000유로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7. 스웨덴

가. 투표관련 범죄(형법 제17장 제8절)

- 투표방해·투표결과 조작·부정투표죄
  - 공직선거에 출마하거나 다른 공적인 영역에서의 참정권 행사와 관련 있는 자가 투표방해, 투표결과 조작 또는 투표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려는 자는 선거부정죄로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 범죄의 정도가 중한 경우 4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음. 범죄의 경중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폭력 또는 위협에 의한 것인지 또는 공적인 지위의 남용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공직선거에서 특정 방식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부적절한 대가를 받거나 또는 그 약속을 수락하는 자는 뇌물수수죄가 아닌 한, 투표에 관한 부적절한 보상 수수죄로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나. 투표의 비밀보장의무 위반죄(형법 제17장 제9절)

  - 권한 없는 자가 선거권 행사와 같은 비밀에 부쳐져야 할 사안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투표권 사생활 위반죄로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8. 스위스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에는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일반법인 「형법」[8]을 통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 선거의 자유방해죄(형법 제279,280조)

  선거나 투표 방해행위(폭력이나 실질적인 불이익을 행사하겠다고 협박해 선거나

8) https://www.admin.ch/opc/de/classified-compilation/19370083/index.html#id-2-14 (검색일 2019.8.8.)

투표, 국민발안을 위한 서명모집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함.

- 매수죄(형법 제281조)

  특정인에게 투표하거나 국민투표, 국민발안을 하는 대가로 금품이나 선물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함.

- 사위등재·사위투표죄(형법 제282조)
  - 선거인명부를 조작·훼손하거나,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선거결과를 조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함.
  - 이러한 행위를 한 자가 기관에 종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일 이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함. 이 경우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음.

- 투표용지 조작죄(형법 제282조의bis)

  투표용지를 계획적으로 수집, 기표 또는 변경하거나 혹은 이러한 투표용지를 배부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

- 투표의 비밀침해죄(형법 제283조)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타인의 투표 비밀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함.

9. 캐나다

가. 위법행위 총칙(Offences General Provisions)

- 누구든지 선거과정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선거소집령이 발행된 때부터 선거일 다음날까지 선거를 위한 공공 집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저지하려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동을 공모하는 자는 위법행위의 책임이 있음(선거법 제480조).
- 누구든지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선거관리청장, 선거사무원, 선거관리청 관계자, 선거사무에 관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 후보자 등으로 사칭하거나 오도하는

사람은 유죄임. 단 풍자나 패러디와 같이 사칭의 목적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함(선거법 제480조의1).

- 모든 개인이나 단체는 선거기간 동안 형식에 관계없이 선거관리청장, 선거관리관, 정당, 후보자, 예비후보자가 승인하지 않은 자료를 대중을 오도할 목적으로 배포, 전송, 공표하는 경우 유죄임(선거법 제481조)
- 모든 개인이나 단체가 불법적인 컴퓨터 사용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유죄로 인정(선거법 제482조)
  - 부정하게 그리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전자, 음향, 기계 또는 기타장치를 이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의 기능을 가로채는 행위
  - 컴퓨터 데이터 삭제 또는 변경하거나 무용지물이 되게 하는 행위
  - 컴퓨터 데이터의 합법적 사용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행위 그리고 접근권을 거부하는 행위
- 누구든지 캐나다 선거관리청 위원 또는 그의 지시를 받는 선거관계자가 선거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 의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허위 또는 오도된 진술이나 서면을 통해 고의로 방해 또는 저지하는 경우 유죄임(선거법 제482조의1).

나. 개별 위법행위

1) 선거사무원의 위법행위(선거법 제484조)

- 모든 전직 선거사무원이 선거문서와 선거용품을 반납하지 않은 행위
- 선거관리관이 고의로 필요한 선거절차를 즉각 이행하지 않은 행위
- 선거사무원이 선거관리청장의 지시에 따라 선거관리관이 부여된 권한과 의무를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행위
- 무단으로 개인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 현장 담당공무원과 선거관리관이 정치적으로 당파적 행위에 관여하는 행위
- 선거관리관이나 부선거관리관이 의도적으로 또 다른 지위로 행동하는 행위
- 선거사무원을 사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고의로 선거문서나 자료를 반환하지 않은 행위

2) 선거인등록 위법행위(선거법 제485조)

-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기타 선거인등록 관련 금지행위 위반

3) 후보자 관련 위법행위(선거법 제486조)

-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아파트 건물, 무료개방 공중장소 등의 사용을 거부하는 행위
- 결격자가 추천서에 서명하는 행위
-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짓 진술이나 발표를 하는 행위
- 의도적으로 허위 후보사퇴 성명 발표

4) 선거인명부 수정 관련 위법행위(선거법 제487조)

- 부적절한 선거인명부 등재 신청
- 권한 없이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개인정보 사용
- 기타 선거인명부 관련 금지행위

5) 투표 준비 관련 위법행위(선거법 제488조)

- 투표용지의 무단 인쇄 행위
- 허가받은 투표용지 인쇄업자가 투표용지 또는 사용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고의적으로 반납하지 않은 행위
- 투표용지의 위조, 고의적으로 투표용지 추가 인쇄 및 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행위
- 비밀 칸막이가 있는 투표함을 제작하는 행위 등

6) 투표(사전투표 및 특별투표 포함) 관련 위법행위(선거법 제489~491조)

- 고용주의 투표 시간 허가 불이행 또는 투표시간 제공에 대해 급여 삭감
- 금지된 방식으로 확성기를 사용하는 행위
- 투표소 내에서 상징물 등을 착용하는 행위 및 선거자료 전시 행위
- 투표 당일 선거인등록을 금지하는 행위
- 사전투표 재등록을 금지하는 행위
- 선거사무원이 고의적으로 사전투표를 막는 행위와 사전투표 기록을 하지 않은 행위

- 선거사무원이 사전투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사전투표 한 선거인을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지 않는 행위
- 선거관리관이 재투표 용지와 특별투표 용지 관련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 특별투표에 있어 투표하지 말아야 할 투표를 접수하거나 투표해야 할 투표를 접수하지 않을 의도로 투표 접수의 임무를 위반한 경우
- 특별투표의 집계 임무를 위반한 경우
- 기표된 투표지의 사진 또는 영상 촬영 금지 등 특별투표관련 금지 조항(선거법 제281,282조)을 위반한 행위(선거법 제491.1, 491.2조)

7) 개표 관련 위법행위(선거법 제492조)
- 선거관리관이 투표함 보관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선거사무원이 개표절차와 관련한 의무(선거법 제283~288조)를 위반한 경우
- 사전투표에서 고의로 개표시간 이전에 개표를 한 행위

8) 선거관리관 선거결과 확인 관련 위법행위
- 선거결과 검증을 위한 선거관리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행위(선거법 제493조)
- 선거관리관이 당선자 선언 및 선거문서 제출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선거법 제494조)

9) 통지 및 보도 관련 위법행위(선거법 제495조)
- 선거광고 허가 표시 불이행
- 온라인 플랫폼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요구되는 기간 동안 당파적 광고 메시지와 선거 광고 메시지의 등록 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 또는 정보를 보관하지 않는 행위
- 등록 정당, 단체, 지명된 후보자 및 잠재적 후보자 등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 불이행, 선거여론조사 결과 전송일을 통지받은 여론조사에 대한 후원 불이행, 선거여론조사 결과 보고 불이행, 승인된 통계 방식에 근거하지 않은 조사임을 표시하지 않는 행위
- 금지기간 중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고의로 전달하는 행위
- 선거벽보 첩부 방해 행위 및 선거광고 철거 규정 위반 행위

- 고의로 해외방송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
- 방송시간 이용 배정 규정을 위반하거나 선거 방송비용 또는 광고지면 최저가격 책정 불이행 행위
- 금지기간 중 고의로 선거광고를 실시하는 행위 등

10) 선거기간 중 정당 활동, 선거 광고,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선거법 제496조)
-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부담, 선거광고에 자신을 밝히지 않는 경우, 회계책임자 선임 불이행, 무기명 기부금 사용 행위, 외국인의 기부금 사용행위, 요청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미제출 등

11) 기타 회계 및 재정 위법행위(선거법 제497조), 선거구 정당의 위법행위(선거법 제497조의2), 당내경선 후보자의 위법행위(선거법 제497조의3)등

다. 처벌(선거법 제500조)

- 위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해 위법의 경중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하고, 양자는 병과할 수 있음.
- 선거비용제한액의 초과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해서는 위의 처벌에 추가적으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분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함.

1) 추가 벌칙(선거법 제501조제1항)
- 위법행위에 대해 유죄선고가 내려지는 경우 법원은 해당 위법행위의 성격과 위법행위의 발생과 관련된 제반 상황 및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될 수 있는 다른 처벌을 고려하여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 다음 중 하나를 직접 명령할 수 있음.
  - 명령에 규정된 사회봉사
  -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상
  - 위법행위로 재정적 혜택을 얻는 경우 그 재정적 혜택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징수관에게 지불
  - 의무를 불이행 인한 위법행위의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
  - 법의 판단 하에 합리적인 조치 등

2) 부가적 벌칙(선거법 제501조제2항)

- 등록된 정당 및 그 정당의 대표, 회계책임자, 또는 간부 중 한 사람이 위법행위로 유죄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은 위법행위의 성격과 제반 상황 및 동 법에 의해 부과된 다른 처벌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직접 명령할 수 있음.
  - 선거관리청장에게 그 정당의 등록말소를 지시
  - 정당 등록말소를 지시한 경우, 정당 대표 또는 법원이 지명한 다른 사람에게 자산을 청산하도록 함.
  - 청산을 명한 경우, 각 정당의 회계책임자 또는 법원이 지명한 다른 사람에게 등록된 정당의 자산의 청산을 명함.

라. 위법 및 부패 행위(선거법 제502조)

1) 위법행위

- 후보자 또는 그의 선거사무관계자의 후보 사퇴 허위성명서 공표 행위
- 후보자 또는 그의 선거사무관계자의 해외방송금지규정 위반 행위
-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자 등이 의도적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는 행위
- 후보자 또는 그의 선거사무관계자의 선거과정 방해나 풍기 문란행위 도모 또는 선동 행위
- 후보자의 허위선언 또는 허위선언을 강요하거나 설득하는 행위
- 후보자가 의회에서의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협정에 서명하는 행위

2) 부패행위

- 후보자 또는 그의 선거사무관계자가 2회 투표하는 행위
- 후보자 또는 그의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후보자 또는 그의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인등록부에서 명단을 삭제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
- 후보자 또는 그의 선거사무관계자의 선거인등록과 관련한 위반행위
- 부적격 상태에서 후보자추천서 서명을 하는 행위
- 허위 성명으로 투표를 하는 행위

- 후보자 또는 그의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와 관련하여 뇌물 또는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

  ※ 이 법에 의해 위법 또는 부패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선거법에 규정된 다른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는 자는, 위법행위의 경우에는 그 유죄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부패행위의 경우에는 7년 동안 하원의원으로 당선되거나, 국왕이나 총리가 임명하는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됨.

10. 호 주

가. 투표의 비밀침해죄(연방선거법 제323조)

- 공무원 또는 참관인이 그 권한 행사 중 취득한 선거인의 투표에 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누설하거나 전달해서는 안 됨.
  - 위반 시 6개월의 징역이나 10 페널티 유닛[9]의 벌금 또는 함께 처벌 가능

나. 선거의 자유방해죄

- 공무원이 타인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연방선거법 제325조).
  -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 또는 함께 처벌 가능
- 병원 또는 요양소의 장 또는 그 직원(병원 또는 요양소의 소유주인 법인의 이사 또는 직원 포함)은 그 병원 또는 요양소 환자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됨(연방선거법 제325A조).
  - 위반 시 6개월의 징역이나 1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 또는 함께 처벌 가능

---

9) 페널티 유닛(penalty unit: PU)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3년마다 다시 책정하는 벌금 기준단위이며, 연방법에 따른 벌금은 연방 PU가 적용되며, 주법에 따른 PU는 주마다 다르게 책정됨.
형법 제4AA조(section 4AA of the Crimes Act 1914)에 따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1 페널티 유닛은 210호주달러이며 2017.7.1.부터 2020.7.1.까지 적용됨.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9C00048 (검색일 2019.5.15.)

다. 정치적 자유 등 방해죄(연방선거법 제327조)

-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되는 다른 사람의 정치적 권리 또는 의무의 자유로운 행사 또는 수행을 방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됨.
  - 위반 시 6개월의 징역이나 1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 또는 함께 처벌 가능
- 누구든지 정당, 정당의 주 지부, 선거의 후보자 등에게 기부한 자에게 다음과 같은 차별을 해서는 안 됨.
  - 조합이나 모임 등에 가입거부
  - 업무를 못하게 하거나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협박이나 압력을 가하는 행위
  - 손실이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
  - 위반 시 일반인의 경우 2년의 징역형이나 5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 또는 함께 처벌 가능, 법인의 경우 20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 부과
- 정치적 자유방해죄로 처벌받는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되며(연방선거법 제362조), 유죄의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됨(연방선거법 제386조).

라. 뇌물수수(연방선거법 제326조)

- 누구든지 다음의 행위에 대해 물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요구할 것을 동의하거나 요구하고 받아서는 안 되며, 그 행위에 영향을 주거나 미쳐서도 안 됨.
  - 투표 및 입후보
  - 후보자, 후보자 그룹 또는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 투표에 나타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거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위반 시 2년의 징역형이나 50 페널티 유닛의 벌금, 또는 함께 처벌 가능
- 뇌물수수로 처벌받는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되며(연방선거법 제362조), 유죄의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됨(연방선거법 제386조).

마. 현혹 또는 기만적 공표(연방선거법 제329조)

- 누구든지 선거기간[10] 동안 투표와 관련하여 선거인을 현혹 또는 기만할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물품을 인쇄, 공표 또는 배포하여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를 허용하거나 권한을 부여해서도 안 됨.

- "공표"라 함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에 의한 공표를 포함.
  - 위반 시 일반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 또는 함께 처벌 가능, 법인은 5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바. 부정 선거인등록(연방선거법 제330조)

- 선거일 선거인등록에 관하여 허위 또는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됨.
  -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 또는 함께 처벌 가능

사. 부정투표

- 합법적으로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거인 이외의 자가 다른 선거인의 투표용지에 기표 또는 기타 표시를 하는 행위(연방선거법 제338조)
  - 위반 시 6개월의 징역이나 10 페널티 유닛의 벌금 또는 함께 처벌 가능
- 투표용지 등 관련 위반 죄(연방선거법 제339조제1항)
  - 투표용지 확보 또는 투표할 목적으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 후보자 등록서류 또는 투표용지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 투표함에 투표지 부정 투입, 불법적으로 투표함 또는 투표용지 파손·취득·개봉하는 행위
  - 권한 없이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행위
  - 위반 시 징역 6개월
- 동일한 선거에서 두 번 이상 투표하는 행위(연방선거법 제339조제1A항)
  - 위반 시 10 페널티 유닛
  - 고의로 이중투표하면, 60 페널티 유닛의 벌금이나 12개월의 징역형 또는 함께 처벌 가능(연방선거법 제339조제1C항)

---

10) 이 법에서 선거기간(relevant period)이란 선거소집령의 발부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간을 의미함(연방선거법 제322조).

<표 16-1> OECD국가의 주요 선거범죄 비교

1. 매수죄

국가명	주요 내용	벌칙	근거규정
영 국	• 부패행위, 금전에 의한 입후보 취소, 권유, 알선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양자의 병과	국민대표법 제60조
미 국 (연방)	• 투표를 하거나 못하도록 금품을 지출하거나 지출을 제의하는 행위,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연방선거운동법 제597조
	• 누구든지 투표를 하거나 못하도록 정부의 특별지출금을 사용하거나 그 권한을 행사한 행위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제598조
	• 후보자가 그 지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공직의 임명 또는 취업을 약속하는 행위		제599조
	• 선거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고용, 지위, 보수, 계약, 임명, 기타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제600조
캘리포니아 주	• 투표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기 위해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16개월 또는 2년 또는 3년의 징역	선거법 제18310조
	•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행위와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행위		선거법 제18311조
	• 투표를 하거나 못하도록 공직, 고용을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알선하겠다는 행위		선거법 제18520조
프랑스	•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품을 선물로 약속하는 행위 • 동의하거나 교사한자도 동일한 형벌에 처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0의 벌금	선거법 제106조
	•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구시군이나 특정조직체에 선물을 약속하는 행위	2년의 징역 또는 €15,000의 벌금	제108조
독 일	• 투표를 하거나 못하도록 금품이나 이익을 제안·약속 또는 공여한 행위 •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게 하며 수령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형법 제108조의b
일 본	•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무를 주거나 주겠다고 약속하는 행위 또는 특수한 직접 이해관계를 이용해 유도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221조1항
	• 수수 또는 교부받은 이익을 몰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		제224조
캐나다	• 부패행위, 후보자, 공식 대표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7년 간 하원 피선거권 제한, 공무담임권 제한	선거법 502조
스페인	• 보상, 선물, 금품에 대한 약속을 통해 어느 특정 선거인의 표를 직·간접적으로 호소하거나 기권을 유도하는 자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 공직과련 특별자격정지	선거법 제146조1항1호
스위스	• 특정인에게 투표하거나 국민투표, 국민발안의 대가로 금품·선물제공 수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형법 제281조

국가명	주요 내용	벌칙	근거규정
스웨덴	•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않을 목적으로 부적절한 대가를 받거나 약속을 수락하는 행위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형법 제17장 제9절
호 주	• 투표에 영향을 미치거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수령 또는 제공 또는 약속하는 행위	2년의 징역 또는 50 페널티 유닛의 벌금 양자의 병과	연방선거법 제326조
오스트리아	• 투표에 영향을 미치거나 투표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 공여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20일수입이하의 벌금[11]	형법 제265조
벨기에	• 누구든 선거권자에게 여행, 숙박비용 등 재산상 가치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경우 • 누구든 선거와 관련하여 음식, 음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경우 •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을 받은 사람도 함께 처벌 • 어떤 상인도 선거와 관련한 비용 지급을 주장할 수 없음.	€26 이상 €200 이하의 벌금	선거법 제184조
	• 누구든 직간접적으로 투표, 기권, 투표안내문, 선거결과에 따른 이득에 대하여 금전 등 재산상 이익, 거래상의 우위나 안전을 제공, 제안, 약속하는 행위 •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을 받은 사람도 함께 처벌 • 누구든 공사의 직을 제공, 제안, 약속, 수락하는 행위	8일 이상 1개월 이하의 구금 또는 €50 이상 €500 이하의 벌금 양자의 병과	제181,182조
	• 위 두 가지 매수죄와 관련한 금원을 제공한 경우		제185조
	• 공무원이 매수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2배 가중처벌	제186조
체 코	• 금품, 이익을 대가로 선거권자로 하여금 자신의 자유의지와 다르게 투표하도록 하는 행위	6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징역	형법 제351조
칠 레	• 선거에서 금품을 대가로 특정인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징역 또는 10~50개월의TU[12]에 해당하는 벌금, 공무담임권 영구박탈	선거법 제150조
	• 선거에서 금품을 받고 특정인에게 투표하는 행위	징역 또는 1~3월의TU에 해당하는 벌금	
덴마크	• 투표 또는 기권하도록 선거권자에게 금품이나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 투표 또는 기권하도록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17조제4,5항
에스토니아	• 투표에 영향을 미치거나 투표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금품이나 혜택을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62조
핀란드	• 투표에 영향을 미치거나 투표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상 또는 혜택을 약속, 제안하는 행위 • 투표를 대가로 보상이나 혜택을 요구하는 행위	벌금 또는 최고 1년 이하 징역	형법 제14장제2조
그리스	• 선거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 금품을 제공받아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	벌금 또는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선거법 제114조
헝가리	• 후보자 추천을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최고 3년 이하 징역	형법

국가명	주요 내용	벌칙	근거규정
	•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제350조제1항
아이슬란드	• 투표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돈이나 기타 이익을 지불하거나 지불할 것을 약속, 요구, 수용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형법 제103조
	• 투표하거나 하지 않도록 재산상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투표하거나 하지 않거나, 특정 방법으로 투표하는데 대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행위	벌금	선거법 제127조
아일랜드	• 금품을 대가로 선거권자로 하여금 특정인에 대한 투표를 유도, 알선, 기권 또는 입후보 포기를 요구하는 행위	약식 재판: £1,000 미만의 벌금 또는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정식 재판: £2,500 미만의 벌금 또는 2년 미만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선거법(1992) 제135,157조
이스라엘	• 선거권자로 하여금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 또는 기권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20,000NIS의 벌금과 5년의 징역	선거법 제122,123조
이탈리아	•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유리하게 입후보 추천을 위한 서명을 받거나 투표 또는 기권하도록 현금, 유가증권 또는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및 3,000ITL 20,000ITL 이하의 벌금	하원선거법 제96조
라트비아	• 고의로 폭력, 뇌물, 매수, 기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선거권자가 총선, 국민투표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	최대 3년의 구금 또는 금고 또는 사회봉사 또는 벌금	형법 제90조 제1,2항
리투아니아	• 투표를 하거나 못하도록 선물이나 그 밖의 보상을 제공하는 행위	사회봉사, 벌금, 자유의 제한, 체포 또는 4년 이하의 징역 ※ 선거무효로 귀결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72조 의회선거법 제5조제1항
룩셈부르크	• 투표 또는 기권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금품, 보조금, 이익 또는 식음료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500~5,000의 벌금	선거법 제95,96조
멕시코	• 투표, 기권, 특정 후보자나 정당 및 연합에 투표하는 것을 대가로 폭력을 사용 또는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50일 이상 100일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과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선거범죄에 관한 일반법 제7조제7항
노르웨이	• 투표 또는 기권하도록 선거권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동의하는 행위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51조제b항
	• 투표 또는 기권을 대가로 혜택을 제공받거나 동의하는 행위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형법 제152조
네덜란드	• 투표를 대리하기 위해 뇌물이나 약속을 주고받는 행위 • 후보자명부 추천서명서를 위해 뇌물이나 약속을 주고받는 행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4,100 이상 €8,200 이하의 벌금	선거법 제Z4조제1항

국가명	주요 내용	벌칙	근거규정
	• 투표에 영향을 미치거나 투표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뇌물이나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		형법 제126조
뉴질랜드	•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전, 선물, 장소, 고용,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한 행위 • 투표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거나 동의한 선거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N$40,000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선거법 제216조
폴란드	• 투표를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전적 이익이나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50a조제1,2항
포르투갈	• 투표에 영향을 미치거나 투표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표를 매수하거나 시도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0일수의 벌금[13]	형법 제341조
	• 특정 투표를 설득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용 등의 혜택을 제안, 약속, 제공하거나 여행, 숙식경비, 선거운동 비용 등을 위장하여 보상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이상 $50,000 이하의 벌금 (escudo $1,000=€5)	선거법 제155조
슬로바키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주거나 약속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선거법 제41조에 따라 선거법 명시내용 외에는 형법으로 규제(*형법, IDEA[14])	최대 3년의 징역, 정도에 따라 가중처벌	형법 제332조
슬로베니아	• 투표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물 또는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요구, 수용하는 행위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57조
터 키	• 1명 이상의 선거권자에게 이익, 금품, 공직의 임명 또는 취업, 서비스를 대가로 투표를 요구하는 행위 • 수령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 • 폭력, 강요, 위협 등의 수단을 사용했을 경우 2배 가중처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선거기본법 제152조

11) Tagessatz(오스트리아 형법상 일일 벌금기준 단위: 월별 또는 연간 수입을 통해 계산된 일평균 수입)×법정일수

12) Tax Unit: 49,033.000CLP, 한화 약 84,000원 Jul 2019 기준(검색일 2019.7.29.)
https://www.ceicdata.com/en/chile/monthly-tax-unit/monthly-tax-unit (월별 TU단위)

13) Dias-multa(포르투갈 일일 벌금기준 단위: €1 이상 €500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법원이 사안에 따라 결정)×법정일수

14) https://www.idea.int/data-tools/country-view/266/60 (검색일 2019.7.26.)

2. 선거의 자유방해죄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미 국 (연방)	•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협박하거나 협박을 시도한 행위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양자의 병과	연방선거 운동법 제594조
캘리포니아주	• 협박 또는 폭력으로 선거인이 정치모임에 나가는 것을 막거나 방해한 행위	경범죄로 $1,000(한화 119만 원) 미만의 벌금	선거법 제18340조
	• 투표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폭력 또는 위협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16개월 또는 2년 또는 3년 징역	제18540조
프랑스	• 소란 또는 위협적인 시위행위로 선거인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선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행위	2년의 징역과 €15,000의 벌금	선거법 제98조
	•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선거인단에 폭력을 사용했거나 폭력을 사용할 행위	5년의 징역과 €22,500 (한화 3,600만 원)의 벌금	제99조
	• 무기를 가지고 있거나 투표를 침해한 행위	10년의 징역	제100조
	• 그 범죄가 공모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1개 또는 수개의 도 또는 구 규모로 행해진 경우	20년의 징역	제101조
	• 선거인에 대해 폭행, 협박이나 공포심을 일으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년의 징역과 €15,000의 벌금	제107조
독 일	•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 기타의 경제상 압력을 가하여 투표를 강요 또는 방해한 행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특히 중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미수범도 벌함.	형법 제108조
일 본	• 선거인, 공직후보자, 선거운동원에게 폭행이나 위력을 가하거나 유인한 행위 • 교통, 집회, 연설을 방해하거나 문서. 그림 등을 훼손한 행위 • 특수이해관계를 이용해 협박한 행위	4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225조
	• 다중이 집합하여 죄를 범할 때 - 주모자: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타인을 지휘하거나 앞장서서 행동한 자: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단순참가자: ￥20만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제230조
	• 공무원, 선거관계사무원이 고의로 공직후보자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행위	4년 이하의 금고	제226조
스페인	• 선거인에게 폭력·위협을 행사하여 선거권 행사를 못하게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하게 하는 행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	선거법 제146조 제1항제2호
스위스	• 폭력이나 협박으로 선거나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형법 제279,280조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캐나다	• 투표소 또는 투표가 실시되는 모든 곳에서 선거인이 투표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약식 유죄판결 시 - C$20,0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양자의 병과 • 기소에 대한 유죄판결 시 - C$50,000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양자의 병과	선거법 제166조1항3호 제489조3항4호
	• 선거과정(electoral process)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 • 방해를 하게끔 공모하는 행위		제480조
	• 협박·강요, 허위·왜곡을 통해 선거인에게 투표를 하거나 못하게 하는 행위		제482조
호 주	• 공무원이 타인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한 행위 또는 사건을 행할 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 양자의 병과	연방선거법 제325조
	• 병원 또는 요양소의 장 또는 그 직원인 자(병원 또는 요양소의 소유주인 법인의 이사 또는 직원 포함)가 그 병원 또는 요양소 환자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6개월의 징역이나 10 페널티 유닛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제325A조
	•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된 타인의 정치적 권리 또는 의무 행사를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행위		제327조
	• 정당, 정당의 주 지부, 선거의 후보자 등에게 기부한 자에게 차별을 가하는 행위	일반인의 경우 2년의 징역 또는 50 페널티 유닛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법인의 경우 200 페널티 유닛의 벌금	
오스트리아	• 위협 또는 강요로 투표를 방해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20일수입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2조
	• 강요 이외의 방법으로 투표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60일수입 이하의 벌금	
벨기에	• 폭력 또는 협박을 통해 선거권자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권하게 하려는 행위 • 의도를 알면서 금전을 제공한 행위 • 공무원이 관여된 경우 두 배 가중처벌	8일 이상 1개월 이하의 구금 또는 €50 이상 €500 이하의 벌금 양자의 병과	선거법 제183,185, 186조
	• 복지기관, 자선단체 직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빈곤층에게 투표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지원을 약속, 제공 또는 지원을 중단하는 행위	8일 이상 1개월 이하의 구금 또는 €50 이상 €500 이하의 벌금	제187조
	•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건으로 복지기관 등에 대해 지원을 요구하는 행위	8일 이상 3개월 이하의 징역	제189조
	• 선거인을 위협하거나 소란을 피우기 위해 개인 혹은 집단을 고용하거나 배치하는 행위(무기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해당)	15일 이상 1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6 이상 €500 이하의 벌금	제188조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 의도적으로 위의 폭력조직 등에 참여한 경우	8일 이상 15일 이하 구금 또는 €26 이상 €200 이하의 벌금	
	• 폭력적인 집회, 협박, 폭력 등으로 선거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15일 이상 1년 이하의 구금 또는 €26 이상 €1,000 이하의 벌금	제189조
	제188조 관련 범죄: 고용, 연합(united), 배치한 사람 ※ 폭력조직, 범죄조직 등을 고용한 경우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구금 또는 €100~1,000의 벌금	제191조
체 코	• 사기를 통해 타인을 기망하거나 폭력을 동원하여 선거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	6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징역	형법 제351조
칠 레	-	-	-
덴마크	•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선거권자로 하여금 특정인에게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선거권자로 하여금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투표를 방해하거나 투표를 무효로 만드는 행위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17조제2,3항
에스토니아	• 공적지위, 폭력, 기만 또는 가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62조
핀란드	• 협박·강요 등을 행사하여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4장제1조
그리스	• 폭력 또는 위협 수단을 동원하여 선거권자로 하여금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자	3개월 이상의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선거법 제112조제1항
헝가리	• 폭력, 위협, 기만 등으로 투표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50조제1항제e호
아이슬란드	• 불법적인 수단으로 강요, 정치적 자유의 제한, 지휘권의 남용 등으로 투표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형법 제103조
	• 투표권을 침해하기 위해 강압적인 조치나 폭력, 위협을 가하여 투표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4년 이하의 징역	선거법 제128조
	• 투표하거나 하지 않도록 재산상 손해나 일자리의 상실에 대한 협박을 하는 행위	벌금	선거법 제127조
아일랜드	• 위협, 폭력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직간접적으로 투표를 방해하거나 특정인이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입후보를 방해하는 행위, 선거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약식 재판: £1,000 미만의 벌금 또는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정식 재판: £2,500 미만의 벌금 또는 2년 미만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선거법(1992) 제136,157조
이스라엘	• 선거권자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자	2년의 징역 또는 10,000NIS의 벌금	선거법 제119조제3항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이탈리아	• 위협, 폭력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선거절차,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투표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자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벌금 및 3,000ITL 이상 20,000ITL 이하의 벌금	하원선거법 제100조제1항
라트비아	• 고의로 폭력, 뇌물, 매수, 기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선거권자가 총선, 국민투표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	최대 3년의 구금 또는 금고 또는 사회봉사 또는 벌금	형법 제90조 제1,2항
리투아니아	• 정신적 강요나 속임수를 써서 투표와 관련된 타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사회봉사, 벌금, 자유의 제한, 체포 또는 4년 이하의 징역 ※ 선거무효로 귀결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72조
룩셈부르크	•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 직업 상실 위협, 개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위협이나 기타 경제적 압력을 가하여 기권 또는 무효투표를 강요 또는 방해하는 행위	최대 €2,000의 벌금 또는 8일 이상 1개월 이하의 금고	선거법 제97조
멕시코	• 폭력 또는 위협 수단을 동원하여 선거권자로 하여금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50일 이상 100일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과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선거범죄에 관한 일반법 제7조제16항
노르웨이	• 위협 또는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선거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 • 선거권자로 하여금 본인의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투표하거나 기권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51조제a,c항
네덜란드	• 폭력이나 위협으로 자유로운 투표권의 행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100 이상 €8,200 이하의 벌금	형법 제125조
	• 대리투표를 하기위해 개인적인 접근과 설득을 하는 행위	1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4,100 이상 €8,200 이하의 벌금	선거법 제Z8조
뉴질랜드	• 협박, 강요, 폭력, 구속을 행사하거나 또는 정신적, 신체적인 상해, 피해, 손실을 가하여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 • 납치, 협박, 기만 등을 통해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N$40,000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선거법 제218조
폴란드	• 위협과 폭력 등을 행사하여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49,250조
포르투갈	• 폭력, 위협 또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의해 투표를 방해 또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시도	5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40조
	• 해고나 취업방해 혹은 다른 위협을 통해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이상 $20,000 이하의 벌금 (escudo $1,000=€5)	선거법 제154조
슬로바키아	• 폭력이나 위협 또는 사기 등을 통해 타인이 자신의 헌법상의 권리인 선거 및 국민투표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최대 3년의 징역	형법 제351조제1,3항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하는 자 ※ 그 정도가 심각하거나, 공무원이 가담한 경우, 특정 동기 유무 또는 공개적으로 행했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처벌		
슬로베니아	• 공무원이 선거인명부에 선거인의 이름을 등재하지 않거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름을 삭제하는 행위 • 폭력, 위협, 뇌물, 속임수 등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투표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공무원 등 선거 관련 직무를 남용한 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 제공한 뇌물은 몰수	형법 제150,151조
터 키	• 타인의 선거인등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 -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자가 했을 경우 가중처벌	- 적격 자격을 갖춘 선거권자가 해당 행위로 인해 선거권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 해당 행위에 폭력, 강요, 위협 등의 수단을 사용했을 경우 가중처벌	선거기본법 제145조
	• 선거권자가 투표소에 가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감금하거나 지역 간 이동을 막는 행위 - 공무원 또는 권한이 있는 자가 연루된 경우 가중처벌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3. 투표소 무기휴대죄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프랑스	• 투표소에 무기를 휴대하고 들어가는 행위	3개월의 구금과 €7,500의 벌금	선거법 제96조
일 본	• 총포, 도검, 곤봉, 기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고 투표소, 개표소, 선거회장에 들어간 행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만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231조
스페인	• 무기 또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의 소지를 통해 각종 투표행위 또는 투표 장소의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방해하는 자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6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	선거법 제147조
오스트리아	• 지역선거관리기관이 정한 투표소 반경 제한구역 내에서는 총기류 소지가 금지	2주 이하의 구금 또는 €218의 벌금	선거법 제58조
벨기에	• 무기를 소지한 채로 투표소에서 선거인, 참관인 등에 대하여 모욕, 폭력, 협박을 행사하거나 선거절차를 지연시키는 행위 • 투표가 침해된 경우 최대 2배 가중 처벌	15일 이상 1년 이하의 지역 또는 €100~1,000의 벌금	선거법 제193조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 무기소지 시 가중처벌	※ 무기소지 시 - 초범: 3개월~2년 징역 또는 €200~2,000의 벌금 - 재범: 5년~10년 징역 €3,000~5,000의 벌금	
이탈리아	• 선거절차, 선거권자의 투표권 행사 방해 등 본 법에서 규정한 위반행위를 집단이 무기를 동원해 저지른 경우 ※ 5명 이상의 군중이 무기를 이용하거나 그 일부만 이용한 경우, 또는 10명 이상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행위를 했을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및 최대 20,000ITL의 벌금	하원의원선거법 제101조
룩셈부르크	• 개인 또는 다중이 집합하여 무기를 소지하고 선거권자들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개인: 초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5,000 벌금, 재범 5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5,000 벌금, 투표용지 훼손 시 2배 가중처벌 단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5,000 벌금	선거법 제101,102조
멕시코	• 폭력 또는 위협 수단을 동원하여 선거권자로 하여금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다수의 무기를 소지한 집단이 행했을 경우	50일 이상 100일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과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및 1/2에 해당하는 가중처벌	선거범죄에 관한 일반법 제7조제16항
폴란드	• 무기를 소지한 자는 투표소에 출입할 수 없음.	-	선거법 제46조
터 키	• 선거일 무기소지 금지 ※ '무기'는 형법 제6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름.	총포도검류 등에 관한 법률[15]에 따른 가중처벌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25일에 해당하는 벌금	선거기본법 제79,133조

※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호주, 칠레,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는 투표소 무기휴대죄 별도 규정 없음.

15) Law No. 6136 For the Firearms and Knives and Other Tools

4. 선거방해죄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미 국 캘리포니아 주	• 투표물품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경범죄로 $1,000 미만의 벌금 선거법 제18001조	선거법 제18380조
	• 선거나 개표를 방해하는 행위	16개월 또는 2년 또는 3년의 징역	제18502조
프랑스	• 투표소에서 폭력 또는 협박으로 선거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1년의 징역과 €15,000의 벌금	선거법 제102조
	• 실제투표가 방해된 경우	5년의 징역과 €22,500의 벌금	
독 일	• 폭력 또는 협박으로 선거 또는 선거결과의 확정을 방해하거나 교란한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형법 제107조
일 본	• 투개표 관리자, 선거사무원을 폭행, 협박해 소란스럽게 하거나 선거물품을 훼손, 탈취한 행위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공직선거법 제229조
	• 다중이 집합하여 죄를 범할 때 - 주모자: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타인을 지휘하거나 앞장서서 행동한 자: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단순참가자: ￥20만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제230조
스페인	• 선거절차가 진행되는 곳에서 선거인, 후보자, 대리인, 참관인 및 공증인의 출입 또는 그곳에 머무르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자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	선거법 제146조 제1항제3호
스웨덴	• 투표를 방해, 투표결과를 조작하는 등 투표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중할 경우 4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7장 제8절
스위스	• 선거인명부를 조작·훼손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투표사거나, 선거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형법 제282조
	• 투표용지를 계획적으로 수집, 기표 또는 변경하거나 이러한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행위	과태료	형법 제282조의 bis
캐나다	• 고의적으로 임무수행 중에 있는 선거공무원을 방해하는 행위	• 약식 유죄판결 시 - C$20,0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양자의 병과 • 기소에 대한 유죄판결 시 - C$50,000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양자의 병과	선거법 제43조 제484조제3항
호 주	• 누구든지 선거기간 동안 선거인을 현혹 또는 기만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인쇄, 공표 또는 배포하는 행위	일반인: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 페널티	연방선거법 제329조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유닛 이하의 벌금 양자의 병과 법인: 5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	
	• 선거일 선거인등록에 관해 허위 또는 거짓 진술을 하는 행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 양자의 병과	제330조
	• 제3자가 투표용지에 기표 또는 기타 표시를 하는 행위		제338조
	• 투표할 목적으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 후보자 등록서류 또는 투표용지를 파손·훼손하는 행위 • 권한 없이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행위	6개월 이하의 징역	제339조제1항
	• 같은 선거에서 두 번 이상 투표하는 행위	1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 고의로 이중투표하면 60 페널티 유닛 이하의 벌금 또는 12개월의 징역 양자의 병과	제339조 제1A, 1C항
오스트리아	• 강제 또는 위협에 의해 투표나 선거 결과의 확정, 공표를 방해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67조
벨기에	•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 선거인단 구성 방해, 폭력으로 선거절차를 지연시키는 행위 • 투표가 침해된 경우 최대 2배 가중 처벌 • 무기소지 시 가중 처벌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 이상 €2,000 이하의 벌금 ※ 무기소지 시 - 초범: 1년~3년 징역 또는 €500~3,000의 벌금 - 재범: 5년~10년 징역 또는 €3,000~5,000의 벌금	선거법 제190조
	• 투표소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50 이상 €500 이하의 벌금	제111조
	• 선거인명부 등재를 위해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	€26 이상 €200 이하의 벌금	제195조
	• 선거인명부에서 선거인을 삭제, 대체, 추가 등 조작하는 경우	26€ 이상 200€ 이하의 벌금 그리고 8일 이상 15일 이하 구금	제196조
	• 선거권자 확보를 위해 선거인명부를 조작하는 경우	8일 이상 1개월 이하의 구금 또는 €50 이상 €500 이하 벌금	
	• 참심원,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도적으로 선거인명부 등재를 거부하거나, 선거인명부에서 선거인을 등재, 삭제, 대체, 조작하는 경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구금	제197조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 투개표 중 투표용지를 오용, 변경, 추가하거나 투표지 개수를 실제 개표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6 이상 €1,000 이하의 벌금	제200조
	※ 선거위원회 직원 또는 참관인의 경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 이상 €3,000 이하의 벌금	
	• 다른 선거권자의 이름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는 행위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6 이상 €1,000 이하의 벌금	제201조
	• 투표용지를 분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26 이상 €1,000 이하의 벌금	
체 코	• 정당, 선거 관련 수치, 선거 관련 청원과 관련된 문서 및 정보를 조작하는 행위 • 의회, 지자체 구성, 국민투표를 위한 선거절차를 방해하는 자	6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징역	형법 제351조
칠 레	• 선거위원회 또는 투표소 관계자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	중간등급(medium grade) 이하의 징역형[16]	선거법 제143조
덴마크	• 선거절차를 방해하거나 결과를 조작, 또는 개표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자	6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16조제1항
	• 불법적으로 권한을 취득하여 투표에 관여하는 행위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17조제1항
에스토니아	• 선거나 선거결과의 확정, 공표를 방해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형법 제161조
	• 폭력을 사용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투표용지나 관련 장부의 손상, 파기, 탈취, 위조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제163조
핀란드	• 선거권이 없는 자가 투표하거나, 두 번 이상 투표를 하거나 시도한 자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4장제3조
	• 투표용지를 파괴, 손상, 추가하거나 잘못된 개표를 하여 선거결과를 왜곡하려는 행위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4장제4조
그리스	• 고의로 선거를 방해하거나 소음, 무질서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선거를 방해하는 자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선거법 제115조
헝가리	• 승인 없는 투표 또는 서명을 하거나 투표의 결과를 위조하는 행위나 시도를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50조 제c,d,f,g호
아이슬란드	• 선거를 방해하거나 선거의 결과를 조작하고 무효화하려는 행위	4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02조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 고의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 자신이 배달 또는 발송하도록 위임된 투표지의 배달·발송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자가 등재되거나, 적격자가 누락되거나, 선거구가 바뀌도록 하는 행위 • 잘못된 선거지침을 발행하는 행위 • (사전)투표 투표지 등의 회송을 지연시키는 행위 • 투표소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 다른 장소에서 투표하는 행위	벌금	선거법 제125,126조
	• 투표지를 위조하거나 누락 또는 손상시켜 개표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4년 이하의 징역	선거법 제128조
아일랜드	• 총선에서 후보자추천이나 투표소에서 폭력을 사용하여 절차를 방해하는 자	약식 재판: £1,000 미만의 벌금 또는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정식 재판: £2,500 미만의 벌금 또는 2년 미만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선거법 제145,157조
이스라엘	• 선거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투표용지를 배포하는 자,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꺼내어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	10,000NIS의 벌금 또는 2년의 징역	선거법 제119조 제1,2,6항
이탈리아	• 수단의 여하를 불문하고 공·사적 선거운동집회를 방해하는 자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ITL 이상 15,000ITL 이하의 벌금	하원선거법 제99조
	• 선거 실시를 위한 문서를 위·변조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조작, 파괴하는 자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하원선거법 제100조제2항
라트비아	규정 없음.	-	-
리투아니아	•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개표록, 투표용지 등을 위조하는 행위	사회봉사, 벌금, 자유의 제한, 체포 또는 4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73조
	•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표를 잘못 세어 기록하거나 개표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체포,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74조
룩셈부르크	• 투표소에서 개인 또는 다중이 집합하여 선거권자들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개인: 15일 이상 1개월 미만의 징역과 최대 €5,000의 벌금 단체: 8일 이상 15일 미만의 금고와 최대 €5,000의 벌금	선거법 제98조
	• 투표지를 교체하여 실제 개표수보다 더 많거나 낮은 투표수가 집계되도록 하는 행위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5,000의 벌금	제109조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 출마선언서, 후보자동의서, 증인임명서 등의 서명을 위조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대리 투표하여 더 많은 투표수가 집계되도록 하는 행위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과 최대 €10,000의 벌금	제110조
멕시코	• 투표절차 또는 연방선거기관 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문서를 위·변조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대치, 파괴하는 자	50일 이상 100일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과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선거범죄에 관한 일반법 제7조제4,11항
노르웨이	• 투표권 없이 투표하는 자, 타인의 명의로 투표하거나 한번 이상 투표하는 자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53조
	• 투표지를 조작, 제거, 부정투표지 투입 등으로 개표결과를 방해하는 자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54조
네덜란드	• 선거가 진행 될 때 의도적으로 투표를 방해하거나 투표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8,200 이상 €20,500 이하의 벌금	형법 제129조
	• 투표용지나 선거권자카드 등의 모방, 위조 등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8,200 이상 €20,500 이하의 벌금	선거법 제Z1조
뉴질랜드	• 선거인과 후보자명부 등 선거정보를 승인된 목적 외 사용을 위해 수신, 제공하는 행위	상업적 목적: N$50,000 이하의 벌금 그 외의 경우 N$10,000 이하의 벌금	선거법 제116,117조
	• 선거시행 시 필요한 신청서나 증명서 등의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N$2,000 이하 벌금	제118조
	• 후보자명부나 선거인명부작성 시 고의로 가명이나 사망한 자의 이름을 기입하는 행위	N$2,000 이하 벌금	제119조
	• 선거인 본인확인을 위한 질문에 대해 선거관리관에게 대답하지 않거나 거짓을 말하는 경우	최대 N$1,000 벌금	제166조
	• 투표용지의 위조, 훼손, 파기, 유출, 승인된 투표용지가 아닌 용지의 투표함 투입	6개월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선거관리관)	제201조제1,2항 제a~d호
폴란드	• 후보자명부나 선거인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선거 문서를 파손, 은폐, 위조, 개표 및 집계를 방해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48조
포르투갈	• 폭력, 위협, 무질서의 방법으로 결과 발표 등을 방해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형법 제338조제1항
	•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이상 $10,000 이하의 벌금 (escudo $1,000=€5)	선거법 제161조
	• 투표용지 투입 시 부정을 저지른 행위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제157조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20,000 이상 $200,000 이하의 벌금 (escudo $1,000=€5)	
슬로바키아	• 고의로 개표 오류를 범하는 자 ※ 그 정도가 심각하거나 공무원이 가담한 경우 특정 동기 유무 또는 공개적으로 행했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처벌	최대 3년의 징역	형법 제351조 제2항제a호 제351조제3항
슬로베니아	• 다른 사람을 대신해 투표하거나 한 번 이상 투표하는 행위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52조
	• 공적 지위를 이용하여 실제 투표결과와 다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제155조
터 키	• 투표소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자	250TRY의 과태료	선거기본법 제158조
	• 투표를 한 이후에도 투표함 근처에 남아 있으려 하거나 다른 선거권자들을 방해하는 자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선거기본법 제159조
	• 공정하고 질서정연한 투표절차 진행, 선거위원회의 기능 수행, 개표과정 지연 등의 목적을 갖고 고의로 이의를 제기하는 자	1,000~5,000TRY의 벌금	선거기본법 제166,167조
	• 본 법률에 언급된 최고선거위원회 및 유관 기관의 정당한 업무 진행을 폭력, 강요, 위협 등의 수단을 통해 방해하는 자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선거기본법 제171조

5. 투표함 탈취죄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프랑스	• 개표되지 않은 투표함을 탈취한 행위	5년의 징역과 €22,500의 벌금	선거법 제103조
	• 집단적이고 폭력적으로 탈취한 경우	10년의 징역	
	• 투표소 관리인에 의해 또는 투표용지 경비책임을 맡은 자가 투표함을 탈취한 경우	10년의 징역	선거법 제104조
캐나다	• 투표함이나 장부 또는 투표용지 묶음을 파기하거나 탈취·개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간섭하는 행위	• 약식 유죄판결 시 - C$20,0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양자의 병과 • 기소에 대한 유죄판결 시	선거법 제167조1항4호 제489조3항5호

16) Prison, temporary imprisonment and confinement are either long-term or short-term and consist of minimum, medium or maximum degrees.
https://www.oecd.org/daf/anti-bribery/anti-briberyconvention/33742154.pdf (검색일 2019.9.3.)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 C$50,000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양자의 병과	
호 주	• 투표함에 투표지 부정투입, 불법적으로 투표함 또는 투표용지를 파손·취득·개봉하는 행위	6개월 이하의 징역	연방선거법 제339조제1항
그리스	• 투표함을 훼손하거나 은닉하는 자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선거법 제116조
아일랜드	• 의도적으로 적법한 권한 없이 투표함이나 투표용지, 총선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문서를 파괴, 은닉, 개봉 또는 훼손하는 행위, 공식 인장이 찍힌 투표용지를 위조하는 행위, 적법한 권한 없이 투표용지를 유포하는 행위, 투표함에 투표지가 아닌 종이를 투입하는 행위	약식 재판: £1,000 미만의 벌금 또는 6개월 미만의 징역 양자의 병과 정식 재판: £2,500 미만의 벌금 또는 2년 미만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선거법 제138,157조
이스라엘	• 담당관의 인허가 없이 투표함을 다루거나 투표용지를 꺼내거나 개표하는 행위, 개표에 포함되기 이전에 투표함에서 투표 봉투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10,000NIS의 벌금 또는 2년의 징역	선거법 제119조 제4,5,8항
리투아니아	• 선거인명부, 투표지, 개표록 등을 훼손, 분실, 획득, 은폐하여 선거무효 등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사회봉사, 벌금, 자유제한, 체포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75조
멕시코	•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장소, 시간에 투표함을 설치 또는 개봉하거나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	50일 이상 200일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과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선거범죄에 관한 일반법 제8조제7항
뉴질랜드	• 투표함을 파손 또는 탈취하거나 개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훼손한 행위	6개월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선거관리관)	선거법 제201조제1,2항 제e호
슬로베니아	• 투표지를 훼손, 은폐하거나 투표결과의 증거로 사용되는 문서, 증거 등을 위조, 훼손, 은폐하는 행위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공무원 등 선거 관련 직무를 남용한 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54조
터 키	• 적법한 절차 또는 권한 없이 투표함을 옮기거나 이동 또는 개봉하는 자, 투표함을 탈취 또는 파괴하는 자, 투표함에서 투표용지를 꺼내거나 꺼낸 후 탈취 또는 파괴하거나 다른 투표용지로 교체하는 자 • 폭력, 강요, 위협 등의 수단을 사용했을 경우 2배 가중처벌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선거기본법 제161조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칠레,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는 투표함 탈취죄 별도의 규정이 없음.

6. 투표의 비밀침해죄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미 국 캘리포니아 주	• 투표지 위의 이름을 알아내려고 하는 행위	경범죄로 $1,000 미만의 벌금	선거법 제18001, 18562조
프랑스	• 투표 전이나 진행 중, 종료 후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고 한 행위, 투표결과를 변경하거나 변경하려는 행위	€15,000와 1년 징역을 함께 또는 별도로 과함	선거법 제113조
독 일	•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반한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형법 제107조의c
일 본	• 선거관리공무원 또는 선거사무원이 선거인이 투표한 사항을 표시한 행위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만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227조
스페인	• 선거인에게 폭력·위협을 행사해 투표내용의 비밀을 공개하도록 하는 행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벌금형	선거법 제146조1항2호
스웨덴	•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반한 행위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	형법 제17장 제9절
스위스	•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타인의 투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형법 제283조
캐나다	•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반하는 행위	C$5,000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 양자의 병과	선거법 제163조 제489조2항2호
호 주	• 공무원 또는 참관인이 그 권한 행사 중 취득한 선거인 투표에 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폭로 또는 전달하는 행위	6개월의 징역이나 10 페널티 유닛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연방선거법 제323조
오스트리아	• 투표에 내용을 알기 위해 비밀투표 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60일수입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8조
벨기에	• 투표의 비밀을 폭로하는 행위	€500 이상 €3,000 이하의 벌금	선거법 제199조
체 코	• 고의로 개표오류를 범하거나 투표의 비밀 보장을 침해하는 행위	6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징역	형법 제351조
칠 레	• 투표소 관계자가 투표용지에 선거인이 투표한 사항을 표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고의로 무효표를 만드는 행위	중간등급(medium grade) 이하의 징역형	선거법 제144조제5항
에스토니아	•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300 이하의 단위 벌금[17] 또는 구금 법인의 경우 최대 €2,400의 벌금	형법 제166조
그리스	•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선거권자의 투표 내용을 확인하거나 시도하는 자	2년 이하의 징역	선거법 제113조
헝가리	•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반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50조제1항 제f호

국가명	주요내용	벌칙	근거규정
아이슬란드	• 선거 혹은 투표와 관련해 권한 없는 자의 공표 또는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공표를 하는 행위	벌금 또는 징역 6개월	형법 제115조
	• 고의로 자신 또는 타인의 투표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타인의 투표내용을 염탐하는 행위 • 의도적으로 장애를 가장하여 투표보조를 동반하는 행위	벌금	선거법 제125조
아일랜드	• 우편투표, 특별선거인명부 등록자 투표함 개봉 시 투표마감 전 외부와 연락을 취하는 행위, 투표용지에 적힌 숫자에 대한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선거인 투표 내용에 관한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투표내용을 볼 목적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를 보이도록 유도하는 행위	약식 재판: £1,000 미만의 벌금 또는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정식 재판: £2,500 미만의 벌금 또는 2년 미만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선거법 제137,157조
라트비아	• 고의로 비밀투표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	최대 4년의 구금 또는 금고 또는 사회봉사 또는 벌금 또는 최대 5년 동안 특정 직위에 취임할 권리 박탈	형법 제92조
룩셈부르크	• 투표사무관계자, 참관인 등 가운데 1표 이상의 투표내용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5,000~15,000 이상의 벌금	선거법 제108조
멕시코	• 투표 내용을 요구하여 비밀투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0일 이상 100일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과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선거범죄에 관한 일반법 제7조제8항
뉴질랜드	• 투표소내의 선거권자의 투표 정보를 확인하려는 시도나 대화, 기표된 투표지를 보여 달라고 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N$40,000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	선거법 제203,204,224조
폴란드	•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51조
포르투갈	• 비밀 투표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투표 내용을 알게 되거나 알리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0일수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2조
슬로바키아	•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자 ※ 그 정도가 심각하거나 공무원이 가담한 경우 특정 동기 유무 또는 공개적으로 행했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처벌	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51조 제2항제a호 제351조제3항
슬로베니아	• 선거인에게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또는 투표하거나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53조
	•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반하는 행위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 공무원 등 선거 관련 직무를 남용한 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56조

※ 덴마크, 핀란드,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터키는 투표의 비밀침해죄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

17) trahviühikut: 에스토니아의 벌금 기준 단위, 2019 현재 4유로

참고문헌

참고문헌

OECD국가의 선거관련 주요 법규

▸▸ 영국

- 1983년 국민대표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83/2 (검색일 2019.5.18.)
- 2000년 국민대표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0/2/contents (검색일 2019.9.18.)
-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 2000)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0/41/contents (검색일 2019.9.18.)
- 정당·선거법(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s Act, 2009)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9/12/contents (검색일 2019.9.18.)
-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s Act, 2003)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3/21/contents (검색일 2019.9.18.)
- 헌법개혁 및 거버넌스 법(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0/25/contents (검색일 2019.9.17.)
- 공무원복무규정(Civil service code)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ivil-service-code/the-civil-service-code (검색일 2019.9.17.)
- 선거행정법(Electoral Administration Act, 2006)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6/22/contents (검색일 2019.9.17.)
- 상원법(The House of Lords Act, 1999)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9/34/contents (검색일 2019.9.17.)
- 하원법(The House of Commons, 200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1/13/contents (검색일 2019.9.17.)
- 하원부자격법(House of Commons Disqualification Act, 1975)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75/24/contents (검색일 2019.9.17.)
- 선거구획정법(Parliamentary Constituencies Act, 1986)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86/56/contents (검색일 2019.9.16.)
- 선거구획정위원회법(Boundary Commissions Act, 1992)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2/55/contents (검색일 2019.9.16.)
- 투표제도와 선거구법(Parliamentary Voting System and Constituencies Act, 201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1/1/contents (검색일 2019.9.16.)

- 선거권자 등록 및 관리법(Electoral Registration and Administration Act, 2013)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3/6/contents (검색일 2019.9.16.)
- 소음법(Noise Act, 1996)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6/37/contents (검색일 2019.9.16.)

▸▸ 미국

- 연방헌법(U.S. Constitution)
  https://www.law.cornell.edu/constitution/index.html (검색일 2019.9.19.)
- 연방선거운동법(52USC Ch. 301: Federal Election Campaign Finance Act, 197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path=/prelim@title52/subtitle3/chapter301&edition=prelim (검색일 2019.9.19.)
- 연방법(42USC Ch.20)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08-title42/html/USCODE-2008-title42-chap20-subchapI-A-sec1973i.htm, (검색일 2019.6.21.)
- 선거인등록법(52USC Ch.103: Voting Rights Act, 1965)
  https://uscode.house.gov/view.xhtml?path=/prelim@title52/subtitle1/chapter103&edition=prelim (검색일 2019.9.19.)
- 신체장애자 및 노년층에 대한 투표관리법(52USC Ch.201: Voting Accessibility for the Elderly and Handicapped Act, 198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path=/prelim@title52/subtitle2/chapter201&edition=prelim (검색일 2019.9.19.)
- 대통령선거운동기금법(26USC. Ch. 95: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Act, 1996)
  https://uscode.house.gov/view.xhtml?path=/prelim@title26/subtitleH/chapter95&edition=prelim (검색일 2019.9.20.)
- 투표지원법(42 USC. Ch146. Election Administration Improvement: Help America Vote Act, 2002: HAVA)
  https://www.justice.gov/crt/chapter-146-election-administration-improvement (검색일 2019.9.20.)
- 연방통신법(Communication Act, 1934)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47/315 (검색일 2019.6.21.)
- 해치법(Hatch Political Activities Act)
  https://www.govtrack.us/congress/bills/112/s2170/text (검색일 2019.6.21.)
- 연방형법—선거 및 정치활동(18 USC Ch. 29: Elections and Political Activities)
  https://uscode.house.gov/view.xhtml?path=/prelim@title18/part1/chapter29&edition=prelim (검색일 2019.9.20.)

▸▸ 프랑스

- 헌법(La Constitution)
  https://www.legifrance.gouv.fr/Droit-francais/Constitution (검색일 2019.6.20.)

• 선거법(Code électoral)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do?cidTexte=LEGITEXT000006070239
• 1986년 9월 30일 n°86-1067 방송의 자유에 관한 법률[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Loi Léotard)]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LEGITEXT000006068930 (검색일 2019.6.7.)
• 여론조사 공표 및 전파에 관한 1977년 7월 12일 n° 77-808 법률(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http://www.commission-des-sondages.fr/pdf/Loi77.pdf (검색일 2019.5.23.)
• 1983년 7월 13일 n.83-634 공무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법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LEGITEXT000006068812&dateTexte=20190610 (검색일 2019.6.7.)
• 정치생활의 재정투명화 법률 88-227(loi n°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la transparence financièe de la vie politique)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LEGITEXT000006069061 (검색일 2019.5.30.)
• 의원선거와 선출직에 남녀의 평등한 진출을 위한 법(남녀동수법, 빠리테법(loi n°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favoriser l'éal accè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ectoraux et fonctions éectives)
• 1881년 6월 30일 집회의 자유에 관한 법률(loi du 30 juin 1881 sur la liberté de réunion)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25148185 (검색일 2019.6.5.)
• 1907년 3월 28일 공공집회에 관한 법률(la loi du 28 mars 1907 relative aux réunions publiques)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314861 (검색일 2019.6.5.)
• 2013년 5월 27일 투명정치자금관련 n°2013-430법 시행령(JORF n°0121 du 28 mai 2013page 8741 texte n° 12)
http://www.legifrance.gouv.fr/eli/decret/2013/5/27/INTA1313482D/jo/texte (검색일 2019.7.29.)
• 선거비용 제한 및 정치자금 투명성에 관한 법률(la loi n° 90-55 du 15 janvier 1990 relative à la limitation des dépenses électorales et à la clarification du financement des activités politiques)』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341734 (검색일 2019.10.2.)
• 선거운동자금조달법(Loi organique n° 90-383 du 10 mai 1990 relative au financement de la campagne en vue de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t de celle des députés)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342316&dateTexte=20190606 (검색일 2019.6.6.)
•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no 86-1067 법률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LEGITEXT000006068930&dateTexte=20110921 (검색일 2019.6.6.)

▸▸ 독일

• 연방선거법(Bundeswahlgesetz)
https://www.gesetze-im-internet.de/bwahlg/BJNR003830956.html (검색일 2019.9.29.)
• 정당법(Political Parties Act, Parteiengesetz, ParteienG)

https://germanlawarchive.iuscomp.org/?p=235 (검색일 2019.9.29.)
•연방공무원법(Bundesbeamtengesetz: BBG)
https://www.gesetze-im-internet.de/bbg_2009/BJNR016010009.html (검색일 2019.9.29.)
• 연방의회의원법(Abgeordnetengesetz: AbgG)
https://www.gesetze-im-internet.de/abgg/BJNR102970977.html (검색일 2019.9.29.)
• 연방장관법(Bundesministergesetz)
http://www.gesetze-im-internet.de/bming (검색일 2019.8.12.)
• 집회법[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Versammlungsgesetz)]
https://www.gesetze-im-internet.de/versammlg/BJNR006840953.html(검색일 2019.8.16.)
• 소셜 네트워크 규제법(Act to Improve Enforcement of the Law in Social Networks, Network Enforcement Act,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Netzwerkdurchsetzungsgesetz: NetzDG)
www.gesetze-im-internet.de/netzdg/intex.html (검색일 2019.8.16.)
• 형법
https://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stgb/englisch_stgb.html (검색일 2019.9.29.)

▸▸ 일본

• 헌법(日本国憲法)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1CONSTITUTION (검색일 2019.8.12.)
•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5AC1000000100
• 방송법(放送法)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5AC0000000132#46 (검색일 2019.8.12.)
• 국가공무원법(国家公務員法)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2AC0000000120_20190914_501AC0000000037&openerCode=1
• 인사원규칙(人事院規則)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4RJNJ14007000#1 (검색일 2019.8.12.)
• 중의원의원선거구획정심의회설치법(衆議院議員選挙区画定審議会設置法)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06AC0000000003 (검색일 2019.8.12.)
• 정치 분야 남녀 공동 참여 추진에 관한 법률(政治分野における男女共同参画の推進に関する法律)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30AC1000000028 (검색일 2019.8.12.)

▸▸ 스페인

• 헌법(Constitution, Constitución Española)
http://www.juntaelectoralcentral.es/cs/jec/electoralLaw (검색일 2019.6.1.)
• 선거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Institutional Act, Ley Orgánica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LOREG)
http://www.juntaelectoralcentral.es/cs/jec/electoralLaw (검색일 2019.6.1.)
• 공무원기본법(del Estatuto Básico del Empleado Público(The Civil Service Basic Statute)
http://europam.eu/?module=country-profile&country=Spain#info_COI (검색일 2019.6.14.)
• 연방의회에 관한 법(Loi sur l'Assemblée fédérale, 171.10)
https://www.admin.ch › opc › 171.10.pdf (검색일 2019.10.31.)

▸▸ 스웨덴

• 헌법(The Constitution of Sweden)
https://www.riksdagen.se/en/how-the-riksdag-works/democracy/the-constitution/ (검색일 2019.8.16.)
• 선거법[The Elections Act(2005:837)]
https://www.government.se/government-policy/democracy-and-human-rights/the-elections-act-2005837/ (검색일 2019.8.16.)
• 언론의 자유법(Freedom of the Press Act)
https://riksdagen.se/globalassets/07.-dokument--lagar/the-freedom-of-the-press-act-2015.pdf (검색일 2019.10.15.)
•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법(Fundamental Law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ttps://riksdagen.se/globalassets/07.-dokument--lagar/the-fundamental-law-on-freedom-of-expression-2015.pdf (검색일 2019.10.15.)

▸▸ 스위스

• 헌법(Federal Constitution of the Swiss Confederation)
https://www.admin.ch/opc/en/classified-compilation/19995395/index.html (검색일 2019.8.16.)
•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Federal Act on Political Rights)
https://www.admin.ch/opc/en/classified-compilation/19760323/index.html (검색일 2019.8.16.)
•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관한 연방법[Bundegesetz über Radio und Fernsehen, Loi fédérale sur la radio et la télévision(LRTV)]
https://www.admin.ch/opc/de/classified-compilation/20001794/index.html (검색일 2019.8.23.)
• 연방인사법(Bundespersonalgesetz)
https://www.admin.ch/opc/de/classified-compilation/20000738/index.html (검색일 2019.8.9.)
•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https://www.admin.ch/opc/de/classified-compilation/20172203/index.html (검색일 2019.8.23.)

- 형법(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https://www.admin.ch/opc/de/classified-compilation/19370083/index.html#id-2-14 (검색일 2019.8.8.)

▸▸ 캐나다

- 헌법(The Canadian Constitution)
  https://www.justice.gc.ca/eng/csj-sjc/just/05.html (검색일 2019.7.16.)
- 선거법(Canada Elections Act)
  https://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res&dir=loi/fel/cea&document=index&lang=e (검색일 2019.7.16.)
- 방송법(Broadcasting act)
  https://laws.justice.gc.ca/eng/acts/B-9.01/index.html (검색일 2019.7.16.)
- 라디오 규정(Radio Regulations)
  https://laws.justice.gc.ca/eng/regulations/SOR-86-982/ (검색일 2019.9.25.)
- 텔레비전 규정(Television Broadcasting Regulations)
  https://laws.justice.gc.ca/eng/regulations/SOR-87-49/ (검색일 2019.9.25.)
- 공무원법(Canada Public Service Employment Act)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p-33.01/ (검색일 2019.9.25.)
- 선거구획정조정법(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1964)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E-3/ (검색일 2019.9.25.)

▸▸ 호주

- 헌법(The Constitution)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05Q00193 (검색일 2019.8.9.)
- 연방선거법(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9C00103 (검색일 2019.8.9.)
- 방송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8C00375 (검색일 2019.8.9.)
- 호주공영방송법(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Act, 1983)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8C00079 (검색일 2019.8.9.)
- 공무원법(Public Service Act, 1999)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9C00057 (검색일 2019.8.9.)
- 형법(Crimes Act, 1914)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9C00048 (검색일 2019.5.15.)

▸▸ 오스트리아

- 헌법(The Constitution, Bundes-Verfassungsgesetz)

http://dl.nanet.go.kr/law/ForeignSearchDetailView.do (검색일 2019.7.8.)
- 의회선거법(Federal Law on National Council Elections, Nationalrats-Wahlordnung, NRWO, 1992)
https://www.ris.bka.gv.at/Dokumente/Erv/ERV_1992_471/ERV_1992_471.html (검색일 2019.7.8.)
- 연방형법(Federal Act on the actions punishable by legal punishment , Strafgesetzbuch: StGB, 1974)
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normen&Gesetzesnummer=10002296 (검색일 2019.8.6.)
- 상원절차규정(Rules of Procedure of the Federal Council, undmachung des Bundeskanzlers betreffend die Geschäftsordnung des Bundesrates, 1988)
https://www.ris.bka.gv.at/Dokumente/Erv/ERV_1988_361/ERV_1988_361.html (검색일 2019.8.6.)
- 하원절차규정에 관한 법(Federal Law on the Rules of Procedure of the National Council, Geschäftsordnungsgesetz, 1975)
https://www.ris.bka.gv.at/Dokumente/Erv/ERV_1975_410/ERV_1975_410.html (검색일 2019.8.6.)
- 정당자금법(Federal Law on the Financing of Political Parties, Parteiengesetz: PartG, 2012)
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normen&Gesetzesnummer=20007889 (검색일 2019.8.9.)
- 공직자청렴법(Federal Act on transparency and incompatibilities for the persons in the highest offices and other public officials, Unv-Transparenz-G)
https://www.ris.bka.gv.at/Dokumente/Erv/ERV_1983_330/ERV_1983_330.htm (검색일 2019.8.20.)

▸▸ 벨기에

- 헌법(constitution, 2019) <원문>
http://world.moleg.go.kr/cms/commonDown.do?DLD_CFM_NO=CW74OQ5WXIWDGLVRGMYS&FL_SEQ=55247 (검색일 2019.9.16.)
- 헌법(constitution, 2014) <영문>
https://www.legislationline.org/documents/action/popup/id/20655 (검색일 2019.9.16.)
- 선거법(Election code of belgium, 2014)
https://www.legislationline.org/documents/id/19597 (검색일 2019.9.16.)
- 선거비용제한에 관한 법률(Law related to the restriction and control of election expenses, 2012)
https://www.legislationline.org/documents/id/19687 (검색일 2019.9.16.)

▸▸ 체코

- 헌법(Ústava České republiky)
http://public.psp.cz/en/docs/laws/constitution.html (검색일 2019.10.29.)
- 선거법(o volbách do Parlamentu České republiky a o změně a doplnění některých dalších zákonů)
https://www.legislationline.org/legislation/section/legislation/topic/6/country/35 (검색일 2019.10.29.)
- 지방선거법(Zákon o volbách do zastupitelstev obcí a o změně některých zákonů)
https://www.zakonyprolidi.cz/cs/2001-491 (검색일 2019.10.29.)

• 형법(Criminal Code of The Czech Republic)
http://www.ejtn.eu/PageFiles/6533/Criminal%20Code%20of%20the%20Czech%20Republic.pdf (검색일 2019.10.29.)
• 정당법(Zákon o sdružování v politických stranách a v politických hnutích)
https://www.zakonyprolidi.cz/cs/1991-424 (검색일 2019.10.29.)

▸▸ 칠레

• 헌법(FIJA EL TEXTO REFUNDIDO, COORDINADO Y SISTEMATIZADO DE LA CONSTITUCION POLITICA DE LA REPUBLICA DE CHILE)
https://www.constituteproject.org/constitution/Chile_2015.pdf?lang=en (검색일 2019.10.29.)
• 선거법(LEY ORGÁNICA CONSTITUCIONAL SOBRE VOTACIONES POPULARES Y ESCRUTINIOS)
https://www.servel.cl/votaciones-y-escrutinios/ (검색일 2019.10.29.)
• 선거비용관리법(LEY ORGÁNICA CONSTITUCIONAL SOBRE TRANSPARENCIA,LÍMITE Y CONTROL DEL GASTO ELECTORAL)
https://www.servel.cl/gasto-electoral/ (검색일 2019.10.29.)
• 선거인등록법(ORGÁNICA CONSTITUCIONAL SOBRE SISTEMA DE INSCRIPCIONES ELECTORALES Y SERVICIO ELECTORAL)
https://www.servel.cl/inscripciones-electorales-y-servicio-electoral/ (검색일 2019.10.29.)

▸▸ 덴마크

• 헌법(The Constitutional Act of Denmark)
https://www.thedanishparliament.dk/en/democracy/the-constitutional-act-of-denmark (검색일 2019.10.29.)
• 선거법[(Folketing (Parliamentary) Elections Act)]
https://elections.oim.dk/media/21968/folketing-parliamentary-elections-act-2019.pdf (검색일 2019.10.29.)
• 정당지원법(Grants to Political Parties (Consolidation) Act)
https://elections.sim.dk/media/10590/grants-to-political-parties-consolidation-act.pdf (검색일 2019.10.29.)
• 형법(The Criminal Code)
https://www.legislationline.org/download/id/6372/file/Denmark_Criminal_Code_am2005_en.pdf (검색일 2019.10.29.)

▸▸ 에스토니아

• 헌법(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Estonia, Eesti Vabariigi põhiseadus, 2015)

https://www.riigiteataja.ee/akt/115052015002 (검색일 2019.7.8.)
• 선거법(Riigikogu Election Act, 2016)
https://www.riigiteataja.ee/en/eli/ee/506052016002/consolide (검색일 2019.7.8.)
• 정당법(Political Parties Act, Erakonnaseadus,1994)
https://www.riigiteataja.ee/en/eli/ee/Riigikogu/act/513042015011/consolide (검색일 2019.7.23.)
• 형법(Penal Code, 2015)
https://www.riigiteataja.ee/en/eli/522012015002/consolide (검색일 2019.8.25.)
• 지방세법(Local Taxes Act, Kohalike maksude seadus, 1994)
https://www.riigiteataja.ee/akt/13248286?leiaKehtiv (검색일 2019.8.22.)
• 탈린시 공공질서 규칙(Rules of Public Order of the City of Tallinn and Requirements for Organisation of Public Assemblies)
https://www.tallinn.ee/eng/g561s26528 (검색일 2019.8.5.)

▸▸ 핀란드

• 헌법(Constitution)
https://oikeusministerio.fi/en/constitution-of-finland (검색일 2019.8.9.)
• 선거법(Election Act, Vaalilaki, 1998)
https://www.finlex.fi/fi/laki/ajantasa/1998/19980714?search%5Btype%5D=pika&search%5Bpika%5D=puolue (검색일 2019.9.16.)
• 정당법(Act on Political Parties, Puoluelaki, 1969)
https://www.finlex.fi/fi/laki/ajantasa/1969/19690010 (검색일 2019.9.2.)
• 형법(Criminal law, Strafflag, 1889)
https://www.finlex.fi/sv/laki/ajantasa/1889/18890039001#L11 (검색일 2019.7.18.)
• 집회법(The assembly Act, Kokoontumislaki, 1999)
https://www.finlex.fi/fi/laki/ajantasa/1999/19990530 (검색일 2019.9.2.)
• 선거자금법(Act on a Candidate's Election Funding, Laki ehdokkaan vaalirahoituksesta, 2009)
https://www.finlex.fi/fi/laki/ajantasa/2009/20090273 (검색일 2019.9.2.)
• 언론자유법(The law on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mass media, Laki sananvapauden käyttämisestä joukkoviestinnässä, 2003)
https://www.finlex.fi/fi/laki/ajantasa/2003/20030460 (검색일 2019.9.3.)
• 도로교통법(Law on the Transport System and Roads, Laki liikennejärjestelmästä ja maanteistä, 2005)
https://www.finlex.fi/fi/laki/ajantasa/2005/20050503 (검색일 2019.9.4.)
• 국가감사원법(Law on the State Audit Office, Laki valtiontalouden tarkastusvirastosta, 2000)
https://www.finlex.fi/fi/laki/ajantasa/2000/20000676?search%5Btype%5D=pika&search%5Bpika%5D=Valtiontalouden%20tarkastusvirasto (검색일 2019.9.6.)
• 국가지원법(Valtionavustuslaki, 2001)
https://www.finlex.fi/fi/laki/ajantasa/2001/20010688 (검색일 2019.9.11.)

▸▸ 그리스

• 헌법(The Constitution of Greece)
https://www.hellenicparliament.gr/UserFiles/f3c70a23-7696-49db-9148-f24dce6a27c8/001-156%20aggliko.pdf (검색일 2019.10.29.)
• 선거법(PRESIDENTIAL DECREE 96/2007 Codification in a single text of the legislation for the election of Members of Parliament)
https://www.legislationline.org/download/id/7827/file/Greece_Law_election_parliament_as_of_2007_en.pdf (검색일 2019.10.29.)
• 정치자금법(Law 3023/2002 – Government Gazette 146/A/25-6-2002(Codified))
https://www.e-nomothesia.gr/kat-bouli-bouleutes/ekloges/n-3023-2002.html?q=30232002 (검색일 2019.10.29.)

▸▸ 헝가리

• 헌법(THE FUNDAMENTAL LAW OF HUNGARY, 2011)
https://hunconcourt.hu/uploads/sites/3/2018/11/thefundamentallawofhungary_20181015_fin.pdf (검색일 2019.8.9.)
• 선거법(XXXVI, Electoral Procedure, 2013)
http://njt.hu/cgi_bin/njt_doc.cgi?docid=159995.329468 (검색일 2019.8.9.)
• 의회선거법(Act on the Elections of Members of Parliament, 2011)
https://www.venice.coe.int/webforms/documents/default.aspx?pdffile=CDL-REF(2014)037-e (검색일 2019.7.18.)
• 선거자금법(Act on Transparency of Campaign Costs related to the Election of the Members of the Parliament, 2013)
https://www.valasztas.hu/web/national-election-office/act-lxxxvii-of-2013-on-the-transparency-of-campaign-costs-related-to-the-election-of-the-members-of-the-parliament (검색일 2019.9.9.)
• 정당운영법(XXXIII. törvény a pártok működéséről és gazdálkodásáró, 1989)
https://net.jogtar.hu/jogszabaly?docid=98900033.TV (검색일 2019.9.9.)
• 의회법(XXXVI. law on the Parliament, törvény az Országgyűlésről, 2012)
http://www.njt.hu/cgi_bin/njt_doc.cgi?docid=148174 (검색일 2019.9.10.)
• 형법(Criminal Code, törvény a Büntető Törvénykönyvről, 2012)
https://net.jogtar.hu/jogszabaly?docid=A1200100.TV (검색일 2019.9.25.)

▸▸ 아이슬란드

• 헌법(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iceland, 2013)
https://www.legislationline.org/documents/id/8824 (검색일 2019.9.16.)
• 선거법(Act concerning paliamentary elections ot the althing, 2000)
https://www.legislationline.org/documents/id/17015 (검색일 2019.9.16.)

• 정치자금법(Rules on the financial accounts of political parties, 2006)
https://www.legislationline.org/documents/id/18315 (검색일 2019.9.16.)
• 형법(General penal code, 2015)
https://www.legislationline.org/documents/id/17022 (검색일 2019.9.16.)

▸▸ 아일랜드

• 헌법(CONSTITUTION OF IRELAND)
http://www.irishstatutebook.ie/eli/cons/en/html (검색일 2019.10.29.)
• 선거법(Electoral Act, 1992)
https://www.legislationline.org/topics/country/23/topic/6 (검색일 2019.10.29.)
• 선거법(Electoral Act, 1997)
https://www.legislationline.org/topics/country/23/topic/6 (검색일 2019.10.29.)
• 아일랜드 공영방송 규정(BAI Code of Fairness, Objectivity & Impartiality in News and Current Affairs)
https://www.clare.fm/CodeFairnObjImpNewsCurAff[2017].pdf (검색일 2019.10.29.)
• 아일랜드 공영방송 규정 가이드라인
https://www.bai.ie/en/media/sites/2/dlm_uploads/2018/09/Rule27_ElectionGuide_vFinal_English.pdf (검색일 2019.10.29.)
• 쓰레기처리에 관한 법(Litter Pollution Act, 1997)
http://www.irishstatutebook.ie/eli/1997/act/12/enacted/en/html (검색일 2019.10.29.)

▸▸ 이스라엘

• 기본법(의회, לארשי תנידמ לש דוסיה-יקוח)
https://www.knesset.gov.il/laws/special/eng/basic2_eng.htm (검색일 2019.10.29.)
• 선거법(בלושמ חסונ] תסנכל תוריחבה קוח, כשת"ט-1969)
https://www.nevo.co.il/law_html/law01/190_026.htm#Seif142 (검색일 2019.10.29.)
• 선거운동법(Election Law; Propaganda, 1959)
https://www.nevo.co.il/law_html/Law01/190_003.htm (검색일 2019.10.29.)
• 형법(Penal Law, 5737-1977)
https://www.icj.org/soginationallegislat/israel-penal-law-5737-1977/ (검색일 2019.10.29.)
• 정당법(תוגלפמה קוח, נשת"ב-1992)
https://www.nevo.co.il/law_html/Law01/282_001.htm (검색일 2019.10.29.)
• 정치자금법(Political Parties Financing Law 5733-1973)
https://mfa.gov.il/MFA/AboutIsrael/State/Law/Pages/Party%20Financing%20Law.aspx (검색일 2019.10.29.)

▸▸ 이탈리아

- 헌법(Constitution of the Italian Republic)
  https://www.senato.it/documenti/repository/istituzione/costituzione_inglese.pdf (검색일 2019.10.29.)
- 하원선거법(DECRETO DEL PRESIDENTE DELLA REPUBBLICA 30 marzo 1957, n. 361, Approvazione del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a 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www.normattiva.it/uri-res/N2Ls?urn:nir:stato:decreto.del.presidente.della.repubblica:1957-03-30;361!vig= (검색일 2019.10.29.)
- 상원선거법(DECRETO LEGISLATIVO 20 dicembre 1993, n. 533,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 Senato della Repubblica)
  www.normattiva.it/uri-res/N2Ls?urn:nir:stato:decreto.legislativo:1993-12-20;533!vig= (검색일 2019.10.29.)
-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관한 법[LEGGE 27 dicembre 2001, n. 459 Norme per l'esercizio del diritto di voto dei cittadini italiani residenti all'estero. (GU n.4 del 5-1-2002)]
  https://www.normattiva.it/atto/caricaDettaglioAtto?atto.dataPubblicazioneGazzetta=2002-01-05&atto.codiceRedazionale=002G0004 (검색일 2019.10.29.)
- 상하원 선거운동법 515호[LEGGE 10 dicembre 1993, n. 515 Disciplina delle campagne elettorali per l'elezione alla Camera dei deputati e al Senato della Repubblica. (GU n.292 del 14-12-1993 - Suppl. Ordinario n. 112)]
  https://www.normattiva.it/atto/caricaDettaglioAtto?atto.dataPubblicazioneGazzetta=1993-12-14&atto.codiceRedazionale=093G0598 (검색일 2019.10.29.)
- 선거선전법 212호[LEGGE 4 aprile 1956, n. 212 Norme per la disciplina della propaganda elettorale. (GU n.87 del 11-4-1956)]
  https://www.normattiva.it/atto/caricaDettaglioAtto?atto.dataPubblicazioneGazzetta=1956-04-11&atto.codiceRedazionale=056U0212 (검색일 2019.10.29.)
- 선거선전법 130호[Modifiche alla disciplina della propaganda elettorale ed alle norme per la presentazione delle candidature e delle liste dei candidati nonche' dei contrassegni nelle elezioni politiche, regionali, provinciali e comunali. (GU n.113 del 30-4-1975)]
  https://www.normattiva.it/atto/caricaDettaglioAtto?atto.dataPubblicazioneGazzetta=1975-04-30&atto.codiceRedazionale=075U0130 (검색일 2019.10.29.)
- 미디어접근법[LEGGE 22 febbraio 2000, n. 28 Disposizioni per la parita' di accesso ai mezzi di informazione durante le campagne elettorali e referendarie e per la comunicazione politica.(GU n.43 del 22-2-2000)]
  https://www.normattiva.it/atto/caricaDettaglioAtto?atto.dataPubblicazioneGazzetta=2000-02-22&atto.codiceRedazionale=000G0066 (검색일 2019.10.29.)
- 직접지원금 폐지 등에 관한 법[LEGGE 21 febbraio 2014, n. 13 Conversione in legge, con modificazioni, del decreto-legge 28 dicembre 2013, n. 149, recante abolizione del finanziamento pubblico diretto, disposizioni per la trasparenza e la democraticita' dei partiti e disciplina della contribuzione volontaria e della contribuzione indiretta in loro favore. (14G00024) (GU n.47 del 26-2-2014)]
  https://www.normattiva.it/atto/caricaDettaglioAtto?atto.dataPubblicazioneGazzetta=2014-02-26&atto.

codiceRedazionale=14G00024 (검색일 2019.10.29.)

▸▸ 라트비아

• 헌법(Latvijas Republikas Satversme)
https://www.cvk.lv/upload_file/anglu/Constitution_2016.pdf (검색일 2019.10.29.)
• 선거법(Saeimas vēlēšanu likums)
https://www.cvk.lv/upload_file/Saeima_Election_Law_2018_ENG.pdf (검색일 2019.10.29.)
• 형법
https://www.legislationline.org/documents/section/criminal-codes/country/19/Latvia/show (검색일 2019.10.29.)
• 정치자금법(Law On Financing of Political Organizations(Parties))
https://www.legislationline.org/legislation/section/legislation/country/19/topic/16 (검색일 2019.10.29.)
• 사전선거운동법(Pre-election Campaign Law)
https://www.cvk.lv/upload_file/anglu/Pre_election_Campaign_Law.pdf (검색일 2019.10.29.)
• 사전선거운동법(의회·유럽의회)(On Pre-election Campaign Before the Saeima Elections and Elections to the European Parliament)
http://europam.eu/data/mechanisms/PF/PF%20Laws/Latvia/Latvia_Pre-election%20campaign%20Saeima_2004_amended2009.pdf (검색일 2019.10.29.)

▸▸ 리투아니아

• 헌법(Constitution of Republic of Lithuania)
https://www.legislationline.org/documents/id/8811 (검색일 2019.10.29.)
• 선거법(Republic of lithuania law on elections to the seimas)
https://www.legislationline.org/documents/id/19908 (검색일 2019.9.24.)
• 선거운동비용 제한에 관한 법률(Law on funding of and control over funding of political campaigns)
https://www.legislationline.org/documents/id/21788 (검색일 2019.9.24.)
• 형법(criminal code of lithuania)
https://www.legislationline.org/documents/id/17832 (검색일 2019.9.24.)

▸▸ 룩셈부르크

• 헌법(TEXTE DE LA CONSTITUTION DU GRAND-DUCHE DE LUXEMBOURG du 17 octobre 1868)
http://data.legilux.public.lu/file/eli-etat-leg-recueil-constitution-20161020-fr-pdf.pdf
https://www.constituteproject.org/constitution/Luxembourg_2009.pdf?lang=en (검색일 2019.10.29.)
• 선거법(LOI ELECTORALE)
http://www.legislationline.org/documents/action/popup/id/4857 (검색일 2019.10.29.)

▸▸ 멕시코

- 헌법(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index.htm 1번 (검색일 2019.10.29.)
- 선거법(LEY General de Instituciones y Procedimientos Electorales)
  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index.htm 189번 (검색일 2019.10.29.)
- 선거범죄법(LEY General en Materia de Delitos Electorales)
  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index.htm 213번 (검색일 2019.10.29.)
- 정당법(LEY General de Partidos Políticos)
  http://www.diputados.gob.mx/LeyesBiblio/index.htm 193번 (검색일 2019.10.29.)

▸▸ 노르웨이

- 헌법(The Constitution, as laid down on 17 May 1814 by the Constituent Assembly at Eidsvoll and subsequently amended, most recently in May 2014)
  http://europam.eu/data/mechanisms/FOI/FOI%20Laws/Norway/Norway_Constitution_1814.pdf (검색일 2019.10.29.)
- 선거법(Lov om valg til Stortinget, fylkesting og kommunestyrer (valgloven))
  https://lovdata.no/dokument/NLE/lov/2002-06-28-57/KAPITTEL_14#%C2%A7section14-1 (검색일 2019.10.29.)
- 선거규제규정(Regulations relating to parliamentary and local government elections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Regulations)
  https://www.legislationline.org/download/id/5182/file/Norway_Election%20Act%20Nor%2024.6.2013_en.pdf (검색일 2019.10.29)
- 선거메뉴얼(VALG/Election Manual – Overview of Election Rules)
  https://www.regjeringen.no/contentassets/328b3cb156974d358f63319277a52837/election-manual-2019.pdf (검색일 2019.10.29.)
- 정당법(Lov om visse forhold vedrørende de politiske partiene (partiloven)
  https://lovdata.no/dokument/LTI/lov/2005-06-17-102 (검색일 2019.10.29.)
- 정당규제법(Forskrift om visse forhold vedrørende de politiske partiene (partilovforskriften)
  https://lovdata.no/dokument/LTI/forskrift/2014-02-05-107 (검색일 2019.10.29.)
- 선거 세부규정(Forskrift om valg til fylkesting og kommunestyrer (valgforskriften))
  https://lovdata.no/dokument/LTI/forskrift/2003-01-02-5 (검색일 2019.10.29.)
- 형법(Lov om straff (straffeloven))
  https://lovdata.no/dokument/NL/lov/2005-05-20-28 (검색일 2019.10.29.)

▸▸ 네덜란드

- 헌법(The Constitution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Grondwe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2008)

https://www.rijksoverheid.nl/documenten/rapporten/2007/06/26/de-nederlandse-grondwet-2006 (검색일 2019.8.25.)
- 선거법(Election Act, Kieswet)
https://wetten.overheid.nl/BWBR0004627/2019-02-22/#AfdelingI_HoofdstukA_Paragraaf2 (검색일 2019.8.5.)
- 하원절차규정(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Netherlands- Rules of Procedure)
https://www.houseofrepresentatives.nl/services-public/rules-procedure (검색일 2019.8.5.)
- 정당자금법(Political parties financing act, Wet financiering politieke partijen)
https://wetten.overheid.nl/BWBR0033004/ (검색일 2019.8.23.)
- 형법(criminal law, Wetboek van Strafrecht)
https://wetten.overheid.nl/BWBR0001854/2019-08-01/#BoekEerste_TiteldeelII_Artikel28(검색일 2019.8.23.)
- 일반지방규칙(General Local Regulation, Algemene Plaatselijke Verordening, 2016)
http://decentrale.regelgeving.overheid.nl/cvdr/XHTMLoutput/Historie/Steenbergen/384382/384382_1.html (검색일 2019.7.29.)
- 미디어법(Media act, Staatsblad van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1987)
https://www.lexadin.nl/wlg/legis/nofr/eur/arch/ned/mediaact.pdf (검색일 2019.7.29)
- 소득세법(Income Tax Act, Wet inkomstenbelasting, 2001)
https://wetten.overheid.nl/BWBR0011353/2019-01-01 (검색일 2019.8.24.)

▸▸ 뉴질랜드

- 헌법(Constitution Act, 1986)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1986/0114/latest/DLM94204.html (검색일 2019.9.19.)
- 선거법(Electoral Act, 1993)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1993/0087/latest/DLM307519.html (검색일 2019.8.5.)
- 선거규칙(Electoral Regulations, 1996)
http://www.legislation.govt.nz/regulation/public/1996/0093/latest/whole.html#DLM209678 (검색일 2019.9.17.)
- 의회절차규정(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2017)
https://www.parliament.nz/en/pb/parliamentary-rules/standing-orders/ (검색일 2019.9.11.)
- 선거자금법(Electoral Finance Act, 2007)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2007/0111/latest/whole.html#DLM1093247 (검색일 2019.9.4.)
- 선거운동자금규정(Regulation of Campaign Finance and Free Advertising: New Zealand)
https://www.loc.gov/law/help/campaign-finance-regulation/newzealand.php#_ftn44 (검색일 2019.9.4.)
- 방송법(Broadcasting Act, 1989)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1989/0025/latest/whole.html?search=sw_096be8ed81525a7c (검색일 2019.9.4.)

▸▸ 폴란드

• 헌법(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Poland, 1997)
https://www.sejm.gov.pl/prawo/konst/angielski/kon1.htm (검색일 2019.7.8.)
• 선거법(Election Code, Kodeks wyborczy, 2011)
https://www.prawo.pl/akty/dz-u-2019-684-t-j,17679859.html (검색일 2019.8.23.)
• 정당법(Act of Political Parties. Ustawa O Partiach polityvznych, 1997)
http://www.sejm.gov.pl/prawo/partiepol/kon12.htm (검색일 2019.8.28.)
• 형법(The Penal Code, Kodeks karny, 2007)
https://www.prawo.pl/akty/dz-u-1969-13-94,16787601.html (검색일 2019.7.18.)

▸▸ 포르투갈

• 헌법(Constitution of the Portuguise Republic Seventh Revision, 2005)
http://www.tribunalconstitucional.pt/tc/conteudo/files/constituicaoingles.pdf (검색일 2019.7.3.)
• 선거법(Electoral Law for the Assembly of the Republic, Law No. 14/79, Lei Eleitoral para a Assembleia da República)
http://www.tribunalconstitucional.pt/tc/legislacao030102.html (검색일 2019.8.5.)
• 후보자등록법(Estabelece o novo regime jurídico do recenseamento eleitoral, 1999)
https://dre.pt/web/guest/legislacao-consolidada/-/lc/116042175/201910220243/diploma?p_p_state=maximized&did=34432975&rp=indice (검색일 2019.8.5.)
• 정당과 선거운동 자금에 관한 법(Financing of 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 campaigns, 2003)
http://www.tribunalconstitucional.pt/tc/legislacao030402.html#art10 (검색일 2019.7.29.)
• 여론조사법(Law for the publication or dissemination of opinion polls and surveys, 2000)
https://dre.pt/web/guest/legislacao-consolidada/-/lc/116042175/201910220243/diploma?p_p_state=maximized&did=34432975&rp=indice (검색일 2019.7.30.)
• 형법(CÓDIGO PENAL Lei 59/2007, de 4 de Setembro)
https://www.ieb-eib.org/ancien-site/pdf/loi-portugal-euthanasie.pdf (검색일 2019.8.7.)

▸▸ 슬로바키아

• 헌법(ÚSTAVA SLOVENSKEJ REPUBLIKY)
https://www.ustavnysud.sk/ustava-slovenskej-republiky (검색일 2019.10.29.)
• 선거법(Zákon o podmienkach výkonu volebného práva a o zmene a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
https://www.zakonypreludi.sk/zz/2014-180 (검색일 2019.10.29.)
• 정당법(The Law on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movements)
https://www.slov-lex.sk/pravne-predpisy/SK/ZZ/2005/85/ (검색일 2019.10.29.)
• 형법(Criminal Code)
https://www.legislationline.org/documents/section/criminal-codes/country/4/Slovakia/show (검색일 2019.10.29.)

• 선거운동법(on Election Campaign and on amendment of Act no. 85/2005 on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movements, as amended)
https://www.noveaspi.sk/products/lawText/1/82252/1/2 (검색일 2019.10.29.)
• 의회선거법(Act on Elections to the National Council)
https://www.legislationline.org/topics/country/4/topic/6 (검색일 2019.10.29.)

▸▸ 슬로베니아

• 헌법(constitution of the republci of slovenia, 2013)
https://www.legislationline.org/documents/id/8850 (검색일 2019.9.25.)
• 선거법(National assembly election act, 2006)
https://www.legislationline.org/documents/id/19602 (검색일 2019.9.25.)
• 선거운동법(election and referendum campaign act, 2007)
https://www.legislationline.org/documents/id/21852 (검색일 2019.9.25.)
• 형법(criminal code of the republic of slovenia, 2008)
https://www.legislationline.org/documents/id/16905(검색일 2019.9.25.)
• 선거인등록법(Ukaz o razglasitvi Zakona o evidenci volilne pravice, 2013)
https://www.uradni-list.si/glasilo-uradni-list-rs/vsebina/115140#!/Zakon-o-evidenci-volilne-pravice-(ZEVP-2) (검색일 2019.10.25.)

▸▸ 터키

• 헌법(TÜRKİYE CUMHURİYETİ ANAYASASI)
https://www.tbmm.gov.tr/anayasa/anayasa_2018.pdf (검색일 2019.10.29.)
• 선거법(SEÇİMLERİN TEMEL HÜKÜMLERİ VE SEÇMEN KÜTÜKLERİ HAKKINDA KANUN)
www.mevzuat.gov.tr/MevzuatMetin/1.4.298.pdf (검색일 2019.10.29.)
• 의회선거법(PARLIAMENTARY ELECTIONS LAW)
https://www.legislationline.org/documents/id/6991 (검색일 2019.10.29.)
• 정당법(LAW ON POLITICAL PARTIES)
https://www.legislationline.org/documents/id/21949 (검색일 2019.10.29.)
• 형법(PENAL CODE OF TURKEY)
https://www.legislationline.org/documents/id/20076 (검색일 2019.10.29.)
• 선거인등록기본법(The Law on Basic Provisions on Elections and Voter Registers)
https://venice.coe.int/webforms/documents/?pdf=CDL-REF(2019)009-e (검색일 2019.10.29.)

단행본

로드 헤이그, 마틴 해롭, 김계동 외 역. 2011.『비교정부와 정치』. 명인문화사.
김영래·정형욱 편. 2008.『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 논형.
레오나르드 프리드만 저. 2002. 장원석 역.『영국정치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마넹 버나드, 곽준혁 역. 2004.『선거는 민주적인가: 현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 후마니타스.
미국정치연구회 편. 2008.『미국 정부와 정치』. 명인문화사.
미네르바정치연구회 편. 2007.『지구촌의 선거와 정당』.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박찬욱 편. 2000.『비례대표선거제도』. 박영사.
신명순·진영재. 2017.『비교정치』. 박영사.
정종섭. 2018.『헌법학원론. 박영사
카나이 타츠키 저. 이홍천·김재용 역. 2006.『매니페스토의 탄생』. 다산초당.
UFJ 총합연구소 국토·지역정책부 저. 차성수·제진수 역. 2006.『매니페스토, 전략과 실제』. 삼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88.『영국 국민대표법 1983』.
_____. 1999.『국가기구로서의 선거관리기관』.
_____. 2001.『각 국의 선거제도』.
_____. 2003.『각 국의 선거관리기관』.
_____. 2004.『각 국의 선거관계 언론법제』.
_____. 2004.『브라질 선거법』.
_____. 2004.『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_____. 2010.『멕시코 연방선거기관 및 선거절차법』.
_____. 2010.『이탈리아 선거법』.
_____. 2018.『독일 연방선거법』.
_____. 2018.『미국 연방선거운동법』.
_____. 2018.『스웨덴 선거법』.
_____. 2018.『스위스 연방선거법』.
_____. 2018.『영국 국민대표법 2000』.
_____. 2018.『영국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_____. 2018.『일본 공직선거법령집』.
_____. 2018.『캐나다 연방선거법』.
_____. 2019.『프랑스 선거법』.
_____. 2019.『스페인 선거법』.

Benenson, Bob. 2008.『Election A to Z』. 3rd ed. CQ Press.
Caporusso, Letizia, Carlo Buzzi, Giolo Fele, Pierangelo Peri, and Francesca Sartori. 2012.『Transition to electronic voting and citizen participation』.
IDEA. 2002. Handbook of Electoral System Design.

IDEA. 2004. Voter Turnout in Western Europe since 1945.
IDEA. 2014. Funding of 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 Campaigns.
IDEA. 2014. Funding of 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 Campaigns.
IDEA. 2015. Electoral Justice: The International IDEA Handbook.
Jones, B. et al. 2006.『Politics UK』. 6th ed. Longman.
Jesper Strömbäck, Lynda Lee Kaid. 2009.『The Handbook of Election News Coverage Around the World』. Routledge.
Kingdom, J. 2003.『Government and Politics in Britain: An Introduction』. 3rd ed. Polity Press.
Leonard, Dick and Roger Mortimore. 2005.『Election in Britain - A Voter's Guide』. 5th ed. Palgrave macmillan.
Massicotte, Louis, Blais André, and Yoshinaka Antoine. 2004.『Establishing The Rules of The Game: Election Laws in Democracies』. University of Toronto Press.
McLean, I. and McMillan. A. 2003.『The Concise Oxford Dictionary of Politics』. 2nd Rev ed. Oxford University Press.
Nohlen, Dieter. 1996.『Elections and Electoral Systems』. Macmillan India Limited.
_____. 2005.『Election in the Americas A Data Handbook』. OXFORD university press.
Pippa, Norris. 2004.『Electoral Engineering - Voting Rules and Political Behavior』. Cambridge University Press.
Swanson, David L. and Paolo Mancini. 1996.『Politics, Media, and Modern Democracy: An International Study of Innovations in Electoral Campaigning and Their Consequences』. Praeger; First Edition.
Sarah Birch. 2009. Full participation: A Comparative Study of Compulsory Voting. Manchester University Press.
The Oxford English Reference Dictionary. 1996.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논 문·보고서

강홍진. 2009 '프랑스 공무원의 준수의무와 제재규정.' 맞춤형 법제정보. 법제처
고선규. 2010. '일본의 투표자 인센티브제도와 투표참여.' 한국정당학회보. 9(1).
김종갑. 2019.1.22. '영국 하원 선거구제 및 선거구획정 관련 최근 동향.' 국회입법조사처.
박성철, 박호경, 장품, 구나영. 2013.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조항의 위헌성-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12(2).
신옥주. 2018. '실질적 성평등실현 관점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연구.' 서울法學. 26(2).
이종훈. 2002. '공무원의 선거 중립문제.' 입법정보.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제48호.
전 영. 2012. '선거관련 방송에서의 정치적 다원주의.' 법학연구. 33. 53(2), p.27-51.
최영돈·이종희. 2014. '2013 독일 총리후보자 TV토론 진행방식 및 내용 연구.' 한국언론학보. 58(2). p.447-477.

노동당 당헌. 2019.(영국)
http://labour.org.uk/wp-content/uploads/2019/04/Rule-Book-2019.pdf
노동당 당헌.(호주)
https://www.alp.org.au/media/1539/2018_alp_national_platform_constitution.pdf (검색일 2019.9.30.)
노동당의 정당 규약(ALP National Constitution). 2018.(호주)
https://www.alp.org.au/media/1574/alp_national_constitution.pdf (검색일 2019.9.30.)
녹색당(Greens): 2019 선거정책(2019 Election Policies)
https://greens.org.au/policies (검색일 2019.9.30.)
베니스위원회 보고서 – 선거구 획정
https://www.venice.coe.int/webforms/documents/default.aspx?pdffile=CDL-AD(2017)034-e (검색일 2019.8.9.)
빅토리아주 국회도서관(Victoria Parliamentary library). 2011. 여론조사(Public Opinion Polls).
https://apo.org.au/sites/default/files/resource-files/2011/09/apo-nid26371-1106391.pdf (검색일 2019.9.30.)
선거여론조사 공포에 관한 법과 규제에 관한 비교연구(Laws and regulations restriction the publication of electoral opinion polls). 2003.
https://www.article19.org/data/files/pdfs/publications/opinion-polls-paper.pdf (검색일 2019.9.30.)
아일랜드 방송위원회(BAI; Boradcasting Authority of Ireland; BAI) Rule 27 of the BAI Code of Fairness, Objectivity and Impartiality in News and Current Affairs p.8 ‘opinion polls’
https://www.bai.ie/en/media/sites/2/dlm_uploads/2018/09/Rule27_ElectionGuide_vFinal_English.pdf (검색일 2019.8.27.)
여론조사 공표에 관한 법률 제6조. Modifié par LOI n° 2017-55 du 20 janvier 2017 - art.24.
https://www.die-medienanstalten.de/fileadmin/user_upload/Rechtsgrundlagen/Gesetze_Staatsvertrage/Rundfunkstaatsvertrag_RStV.pdf (검색일 2019.9.29.)
연방법 개정 이유서. Message relatif à la modification de la loi fédérale sur la radio et la télévision(LRTV). FF 2013 4425. 2013.5.29.
https://www.admin.ch/opc/fr/federal-gazette/2013/4425.pdf (검색일 2019.9.26.)
영국의회. ‘General Election 2017: full results and analysis’ https://researchbriefings.parliament.uk/ResearchBriefing/Summary/CBP-7979#fullreport (검색일 2019.10.7.)
인민당 홈페이지. 2019년 총선 공약집.
http://www.pp.es/sites/default/files/documentos/programa-electoral-elecciones-generales-2019.pdf (검색일 2019.9.15.)
시우다다노스 홈페이지. 2019년 총선 공약집.
https://www.ciudadanos-cs.org/var/public/sections/page-programa-electoral-elecciones-2019-generales-28a/programa-electoral-lectura-facil.pdf?_v=3 (검색일 2019.9.15.)
스위스의회(Ständerat). ‘위원회 보고서 2018(17.484 é Iv. pa. Comte. Pour une représentation équitable des genres dans les autorités fédérales)’
https://www.parlament.ch/centers/kb/Documents/2017/Rapport_de_la_commission_CIP-E_17.484_2018-01-18.pdf (검색일 2019.10.15.)
자유당(Liberal): 정책계획(Our Plan)

https://www.liberal.org.au/our-plan (검색일 2019.9.30.)
체코 입법 절차
http://www.psp.cz/files/okv/en_Legislative_process_bill.pdf (검색일 2019.5.17.)
포데모스 홈페이지. 2019년 총선 공약집.
https://podemos.info/wp-content/uploads/2019/04/Podemos_programa_generales_28A.pdf (검색일 2019.9.15.)
플로리다 주: Title IX. Chapter 106. 106.32 Election Campaign Financing Trust Fund.
http://flsenate.gov/Laws/Statutes/2019/0106.32 (검색일 2019.6.25.)
호주선거위원회. 'Electoral Pocketbook(2016년 연방 선거 결과 포함).' p.11,40,59.
https://www.aec.gov.au/About_AEC/Publications/electoral_pocketbook/2016/2016-electoral-pocketbook.pdf. (검색일 2019.6.27.)
호주공영방송. 선거보도검토위원회의 2016 연방선거 리포트(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2016 Federal Election report).
http://about.abc.net.au/wp-content/uploads/2016/11/2016FederalElectionECRCRPT.pdf (검색일 2019.9.30.)

Allan Lyle. 1989. 'Candidate Pre-Selection in Australian Politics. Journal for Students of Year 12 Politics.' Melbourne. Social Education Victoria. 16/4. p.18-24.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71211157_CANDIDATE_PRESELECTION_IN_AUSTRALIAN_POLITICS (검색일 2019.8.26.)
A New Plan for a Strong Middle Class. Liberal Party of Canada.
https://www.poltext.org/sites/poltext.org/files/plateformesV2/Canada/CAN_PL_2015_LIB_en.pdf, (검색일 2019.9.25.)
ARTICLE 19 Global Campaign for free Expression. 2003. *'Comparative Study of Laws an Regulations Restricting the Publication of Electoral Opinion Polls.'*
https://www.article19.org › pdfs › opinion-polls-paper (검색일 2019.8.29.)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Compulsory Voting in Australia. 2006.1.
http://www.aec.gov.au/pdf/voting/compulsory_voting.pdf (검색일 2019.4.17.)
BAI(Boradcasting Authority of Ireland; BAI 아일랜드 방송위원회). Rule 27 of the BAI Code of Fairness, Objectivity and Impartiality in News and Current Affairs Guideline section 10 'Moratorium' p.10
Brooks Boliek. 2011.8.22. 'FCC Finally Kills Off Fairness Doctrine.' Politico.
https://www.politico.com/story/2011/08/fcc-finally-kills-off-fairness-doctrine-061851 (검색일 2019.9.10.)
Brennan Center For Justice. 'Political Shifts in Political Power After The 2020 Census.'
https://www.brennancenter.org/potential-shifts-political-power-after-2020-census, (검색일 2019.7.18.)
Brennan Center For justice. 'A Citizen's Guide To Redistricting - III. When Are The Lines Redrawn?'
https://www.brennancenter.org/sites/default/files/legacy/CGR%20Reprint%20Single%20Page.pdf
Broadcasting Authority of Ireland(BAI;). 'Rule 27 Guidelines.'
Burden, Barry C. Ono, Yoshikuni. Yamada, Masahiro. 2017.5.4. 'Reassessing Public Support for a

Female President.' The Journal of Politics. 79 (3) p.1073-1078.
https://www.journals.uchicago.edu/doi/10.1086/691799 (검색일 2019.7.26.)
Cabinet Office(내무부). 'General Election Guidance 2017(2017년 총선거 지침).' p.14
file:///C:/Users/user/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O389T9RE/general-election-guidance-2017.pdf (검색일 2019.9.17.)
Cabinet Office and the Electoral Commission. *Individual Electoral Registration Guidance: Part 4 — Maintaining the register throughout the year* (published September 2018; Revised June 2018). p.161.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i-am-a/electoral-administrator/running-electoral-registration (검색일 2019.9.19.)
Constitution. Liberal Party of Canada.
https://www.liberal.ca/wp-content/uploads/2016/07/constitution-en.pdf (검색일 2019.10.14.).
Conservative Party of Canada Constitution.
https://cpcassets.conservative.ca/wp-content/uploads/2019/04/03155337/KXBCNkWf-X3IDtR.pdf (검색일 2019.10.14.)
CTV/Globe and Mail/Nanos Research. Conservatives 34, Liberals 33, NDP 14, Greens 13, BQ 4, PPC 1.
https://secureservercdn.net/198.71.233.47/823.910.myftpupload.com/wp-content/uploads/2019/09/2019-1445-CTV-Globe-ELXN-2019-09-27.pdf (검색일 2019.9.25.)
Directive pour la réalisation de sondages portant sur des élections et votations et destinés à être publiés avant les scrutins
https://www.vsms-asms.ch/files/7013/6758/9761/3_Annexe_II_Elections_et_votations_octobre_2009.pdf (검색일 2019.9.26.)
Ethical standards for journalism. 2017.
https://www.presserat.de/pressekodex.html/ (검색일 2019.8.12.)
Esomar. Wapor. 2017. 'Freedom to Conduct Opinion Polls'
https://www.esomar.org/uploads/public/library/news/ESOMAR-WAPOR_Freedom-to-Conduct-Opinion-Polls.pdf (검색일 2019.10.1.)
FEC. 'Instruction for Statement of Candidacy.'
https://www.fec.gov/resources/cms-content/documents/fecfrm2i.pdf (검색일 2019.7.26.)
FEC. 'Instrictions for Statement of Organization.'
https://www.fec.gov/resources/cms-content/documents/fecfrm1i.pdf (검색일 2019.7.26.)
Greco. Evaluation Report on Hungary Transparency of Party Funding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6c6b30 (검색일 2019.9.10.)
Guardian.co.uk. 2005.7.4 'Compulsory voting around the world.'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05/jul/04/voterapathy.uk (검색일 2019.4.17.)
IDEA. 2006. Electoral Management Design: The International IDEA Handbook. p.5).
https://www.idea.int/publications/catalogue/electoral-management-design-international-idea-handbook-2006?lang=en

_____. 2004. Svenska dagbladet. 29 July 1999, 9 August 1999 and Boras tidning 18 August 1999: "*Compulsry Voting in Western Europe*," *Voter Turnout in Western Europe since 1945*. (검색일 2019.4.17.)

Institute for Government. Robyn Munro & Akash Paun. 2013. 호주의 선거전 정책비용평가 매카니즘 연구(Pre-election policy costing mechanisms in Australia).
https://www.instituteforgovernment.org.uk/sites/default/files/publications/final%20-%20Australia_0.pdf (검색일 2019.9.30.)

L. Hill. 2002. 'Democratic assistance: A compulsory voting template.' paper presented to the Jubilee conference of the Austrailasian Political Studies Association. Canberra.

Labor's National Platform(노동당 정당강령).
https://cdn.australianlabor.com.au/documents/ALP_National_Platform.pdf (검색일 2019.6.5.)

Lea Sgier. 2004.4 'Gender quota debates as discourses on the public sphere'
file:///C:/Users/user/Desktop/63b14e81-b7c4-49fc-baae-8cb2212ad736.pdf (검색일 2019.10.15.)

Loi no 97-1027 du 10 novembre 1997 relative à l'inscription d'office des personnes âgées de dix-huit ans sur les listes électorales.
http://www.marlyleroi.fr/Download/Etat-civil/Inscription_electorale.pdf (검색일 2019.6.5.)

Liberal Party of Australia Federal Constitution(자유당 당헌).
https://cdn.liberal.org.au/pdf/2010%20Liberal%20Party%20of%20Australia%20Federal%20Constitution.pdf (검색일 2019.6.5.)

Règlement sur l'utilisation de la marque collective asms swiss interview institutue®
vsms-asms.ch/files/8815/5971/9684/1_Marque_collective_asms_reglement_mai_2019.pdf (검색일 2019.9.26.)

Richtlinie für die Veröffentlichung von Ergebnissen der Wahlforschung
http://rat-marktforschung.de/fileadmin/user_upload/pdf/R06_RDMS.pdf (검색일 2019.9.29.)

Republic of Lithuania Page: 6 Parliamentary Elections. 9 October 2016 OSCE/ODIHR Election Assessment Mission Final Report.
https://vistalegre2.podemos.info/wp-content/uploads/2017/01/DesBorda_sistema-Echenique_d (검색일 2019.7.29.)

New York State Board of Election. '2019 Political Calendar.'
https://www.elections.ny.gov/NYSBOE/law/2019PoliticalCalendar.pdf, (검색일 2019.7.26.)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Redistricting Law 2010 - Appendix C. Redistricting Commissions: Legislative Plans.'
http://www.ncsl.org/Portals/1/Documents/Redistricting/Redistricting_2010.pdf (검색일 2019.6.23.)

OECD 보고서
http://www.oecd.org/gov/ethics/financing-democracy-framework-document.pdf (검색일 2019.10.1.)

OECD. 2007. 'Study on the Political Involvement in Senior Staffing and on the Delineation of Responsibilities Between Ministers and Senior Civil Servants.'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sweden (검색일 2019.10.15.)

OSCE 2019 그리스 총선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greece/420839?download=true (검색일 2019.9.26.)

OSCE 2019 덴마크 총선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denmark/419231?download=true (검색일 2019.9.26.)
OSCE 2018이탈리아 총선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italy/369086?download=true (검색일 2019.9.20.)
OSCE. 리투아니아 총선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lithuania/296446?download=true (검색일 2019.8.2.)
OSCE 2018 룩셈부르크 총선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389582?download=true (검색일 2019.6.19.)
OSCE 노르웨이 총선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103545?download=true (검색일 2019.9.23.)
OSCE. 2013 노르웨이 총선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103545?download=true (검색일 2019.9.24.)
OSCE 2016 슬로바키아 총선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slovakia/235591?download=true (검색일 2019.6.25.)
OSCE. 2010 스웨덴 총선보고서. p.7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70947?download=true (검색일 2019.8.9.)
OSCE. 2018 스웨덴 총선보고서. p.8,9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383934?download=true (검색일 2019.8.9.)
OSCE 2018 터키 총선 보고서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turkey/381448 (검색일 2019.8.23.)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2018. 'Odihr Needs Assessment Mission Report 15-17 May 2018.'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383934?download=true (검색일 2019.10.15.)
Our Conservative Plan to Protect the Economy. Conservative Party of Canada.
https://www.poltext.org/sites/poltext.org/files/plateformesV2/Canada/CAN_PL_2015_LIB_en.pdf, (검색일 2019.9.25.)
NOR/INT/A/04/00065/C호. 전자투표기에 관한 내무부 장관의 지침(NOR/INT/A/04/00065/C, INSTRUCTION PERMANENTE RELATIVE AUX MACHINES A VOTER DU MINISTRE DE L'INTERIEUR) 2004.5.26.
https://www.conseil-constitutionnel.fr/sites/default/files/as/root/bank_mm/dossiers_thematiques/presidentielle_2007/INTA0400065C.pdf (검색일 2019.5.27.)
Règlement sur l'utilisation de la marque collective asms swiss interview institutue®
vsms-asms.ch/files/8815/5971/9684/1_Marque_collective_asms_reglement_mai_2019.pdf (검색일 2019.9.26.)
T. Bale. 2002. 'Restricting the Broadcast and Publication of Pre-Election and Exit Polls: Some Selected Examples.' in Representation. Vol. 39, No.1, P.19.
https://www.academia.edu/2686299/Restricting_the_broadcast_and_publication_of_pre_election_and_exit_polls_some_selected_examples (검색일 2019.8.29.)
The Cost of Democracy P.16.
https://www.idea.int/sites/default/files/publications/the-cost-of-democracy-EN.pdf (검색일 2019.9.9.)

The Democratic Party of Oregon. 2019.4.1. 'DRAFT Delegate Selection Plan for the 2020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248.380. Electors' mileage expenses. p.37
https://dpo.org/sites/dpo.org/files/images/2020_draft_delegate_selection_plan_4-1-2019.pdf (검색일 2019.6.25.)
The Electoral Commission. 2006. *'Compulsory voting around the world.'* UK.
The Electoral Commission. 2014. 'Speaker's Commission on Digital Democracy — Inquiry into Electronic Voting: Electoral Commission Response.'
The Electoral Reform Society. *Turning out or turning off -An analysis of political disengagement and what can be done about it 2004.*
Vetenskap & Allmänhet. 2018. 'undersökning av riksdagspartiernas valmanifest 2018.'
https://v-a.se/downloads/va-valmanifest-2018.pdf (검색일 2019.9.20.)
Wahl zum 19. Deutschen Bundestag am 24. September 2017:Heft 3 Endgültige Ergebnisse nach Wahlkreisen. Der Bundeswahlleite.
WAPOR. 'The freedom to publish opinion poll results(A worldwide update of 2012).' p.7 Table.2
https://wapor.org/wp-content/uploads/WAPOR_FTP_2012.pdf (검색일 2019.7.29.)
堤英教. 2012. '候補者選定過程の開放と政党組織' 選挙研究. 28(1) p.5-20.
金東煥. 2014. '候補者指名方法における開放と自民党地方組織.' 政策科学. 21(2) p.81-98.
国立国会図書館. 2014. 選挙権年齢を巡る議論及び諸外國の選挙権年齢.

https://www.bundeswahlleiter.de/dam/jcr/80de99a3-1186-494b-8b2f-277f25f146d5/fdp.pdf (검색일 2019.9.29.)
https://idw-online.de/de/attachmentdata58344.pdf (검색일 2019.9.29.)
http://www.jaycee.or.jp/2019/kinki/osaka/wp-content/uploads/2019/03/manual_koukaitouronnkai_lom.pdf (검색일2019.9.20.)
https://www.psoe.es/media-content/2019/04/PSOE-programa-electoral-elecciones-generales-28-de-abril-de-2019.pdf (검색일 2019.9.15.)
https://www.presserat.de/fileadmin/user_upload/Downloads_Dateien/Pressekodex2017_web.pdf (검색일 2019.9.21.)
https://www.nhk.or.jp/pr/keiei/bc-guideline/pdf/guideline2015.pdf (검색일 2019.10.2.)
https://riksdagen.se/globalassets/07.-dokument—lagar/the-freedom-of-the-press-act-2015.pdf (검색일 2019.10.15.)
https://riksdagen.se/globalassets/07.-dokument--lagar/the-fundamental-law-on-freedom-of-expression-2015.pdf
https://www.esomar.org/uploads/public/knowledge-and-standards/codes-and-guidelines/ICCESOMAR_Code_German_.pdf (검색일 2019.9.29.)
http://rat-marktforschung.de/fileadmin/user_upload/pdf/R06_RDMS.pdf (검색일 2019.9.29.)
http://europam.eu/data/mechanisms/COI/COI%20Laws/Spain/Spain_Basic%20Statute%20on%20the%20Civil%20Service_2007_amended%202015.pdf (검색일 2019.6.14.)
https://storage.googleapis.com/en-marche-fr/COMMUNICATION/Programme-Emmanuel-Macron.pdf

(검색일 2019.9.30.)
https://www.bk.admin.ch/dam/bk/fr/dokumente/komm-ue/Buku2019/der_bund_kurz_erklaert_2019.pdf.download.pdf/BUKU_2019_FR_Internet.pdf (검색일 2019.9.27.)
https://www.svp.ch/wp-content/uploads/Parteiprogramm_FR_19_23_190409.pdf (검색일 2019.9.28.)
https://www.sp-ps.ch/sites/default/files/documents/sp-statuten_a5_franz.pdf (검색일 2019.9.28.)
https://www.sp-ps.ch/sites/default/files/documents/ps-objectifs-legislature_2019-2023_f_web_0.pdf (검색일 2019.9.28.)
https://www.plr.ch/fileadmin/documents/fdp.ch/pdf/DE/Partei/Zukunftsstrategie/20180929_FDP_Vision_DV_f.pdf (검색일 2019.9.28.)
https://about.abc.net.au/wp-content/uploads/2016/11/2016FederalElectionECRCRPT.pdf (검색일 2019.7.31.)
https://ifes.org/sites/default/files/brijuni18countryreport_finaledited1_0.pdf (검색일 2019.8.1.)
https://www.oecd.org/daf/anti-bribery/anti-briberyconvention/33742154.pdf
http://www.brazoria.tx.us.landata.com/Forms/General/PCT1.pdf
https://ifes.org/sites/default/files/brijuni18countryreport_finaledited1_0.pdf (검색일 2019.8.1.)
https://merrionstreet.ie/MerrionStreet/en/News-Room/Releases/Discussion_Paper_%E2%80%93_Regulation_of_Online_Political_Advertising_in_Ireland.pdf (검색일 2019.8.14.)
https://www.ifes.org/sites/default/files/2019_ifes_turkey_local_elections_faqs_final.pdf (검색일 2019.7.23.)
http://www.ysk.gov.tr/doc/dosyalar/Kurumumuz/YuksekSecimKuruluTanitimKitapcigi/YSK-Book.pdf (검색일 2019.7.23.)
https://www.servel.cl/limites-del-gasto-electoral/ 칠레 선거위원회 (검색일 2019.6.21.)
https://www.servel.cl/servel-determina-limites-de-gasto-de-partidos-en-campanas-2017/ (검색일 2019.6.24.)

웹사이트

가디언(The Guardian). 2018. Bill Shorten reveals Labor's election policies as Morrison hits back.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18/oct/07/bill-shorten-reveals-labors-election-policies-as-morrison-hits-back (검색일 2019.9.30.)
국경없는 기자회 2019. 4. 발표
https://rsf.org/en/ranking (검색일 2019.8.6.)
그리스 내무부 홈페이지 – 후보자등록
https://www.ypes.gr/en/elections/national-elections/parliamentary-elections/information-for-the-candidates (검색일 2019.9.18.)
노르웨이. 지방정부현대화부(The Ministry of Local Government and Modernization)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norway/360336?download=true (검색일 2019.9.16.)
노르웨이 선거사무국 홈페이지(The Norwegian Directorate of Elections)

https://www.valg.no/en/polling-stations/polling-stations/polling-places/?cpid=42 (검색일 2019.10.10.)
노르웨이 선거사무국 홈페이지(The Norwegian Directorate of Elections). '재외투표(Voting Abroad)'
https://www.valg.no/en/municipal-and-county-council-elections-2019/voting-in-advance/voting-abroad/ (검색일 2019.10.11.)
노르웨이. 지방정부현대화부 '의회, 지방의회, 시의회 선거 규칙' 총리령[Regulations on elections to the Storting, county councils and municipal councils(election regulations)]
https://lovdata.no/LTI/forskrift/2003-01-02-5 (검색일 2019.10.10.)
덴마크 사회내무부 홈페이지.
https://elections.sim.dk/advance-voting/advance-voting-for-voters-living-in-denmark/ (검색일 2019.10.15.)
덴마크 의회: 총리, 6월 5일 선거 소집
https://www.ft.dk/da/aktuelt/nyheder/2019/05/udskrivelse-af-valg (검색일 2019.9.24.)
독일 연방선거위원회(Der Bundeswahlleiter). 'Bundestag election 2017'
https://www.bundeswahlleiter.de/en/bundestagswahlen/2017/ergebnisse/bund-99.html#erststimmen-prozente7 (검색일 2019.10.7.)
독일 연방선거위원회.
http://www.bundeswahlleiter.de/de/bundestagswahlen/BTW_BUND_13/auslandsdeutsche/ (검색일 2019.8.12.)
독일 연방선거위원회.
https://www.bundeswahlleiter.de/service/glossar/w/wahlgeraete.html (검색일 2019.8.12.)
독일 의회홈페이지. 독일 연방의회 의원 구성현황
https://www.bundestag.de/en/members (검색일 2019.2.20.)
독일 정당 여성당원 비율 2017년 기준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192247/umfrage/frauenanteil-in-den-politischen-parteien/ (검색일 2019.2.20.)
독일 여성할당제 관련
https://www.diw.de/documents/.../diw_econ_bull_2017-37.pdf (검색일 2019.2.20.)
독일 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경우
https://recht.nrw.de/lmi/owa/br_text_anzeigen?v_id=5720040121111740677 (검색일 2019.8.8.)
2009/2010 독일 주요정당 재정보고서
http://dip21.bundestag.de/dip21/btd/17/006/1700630.pdf (검색일 2019.7.31.)
2011/2012 독일 주요정당 재정보고서
http://dip21.bundestag.de/dip21/btd/17/123/1712340.pdf (검색일 2019.7.31.)
2013 독일 주요정당 재정보고서
http://dipbt.bundestag.de/doc/btd/18/043/1804300.pdf (검색일 2019.7.31.)
2017 독일 주요정당 재정보고서
https://dip21.bundestag.de/dip21/btd/19/070/1907000.pdf (검색일 2019.7.31.)
독일 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선거 옥외광고 설치 실무지침서(Lautsprecher- und Plakatwerbung aus Anlass von Wahlen, Volksbegehren und Volksentscheiden in Nordrhein-Westfalen Gem. RdErl. d. Ministeriums für Verkehr, Energie und Landesplanung – III B 2 - 22-33 - u. d. Innenministeriums -11/20-10.10 – v. 8.8.2003))'에 근거함.

https://recht.nrw.de/lmi/owa/br_text_anzeigen?v_id=5720040121111740677 (검색일 2019.8.8.)
독일 도로표지시행령(Signalisationsverordnug, SSV 제95조)
https://www.admin.ch/opc/de/classified-compilation/19790235/index.html#id-13 (검색일 2019.8.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2009.9.24. 사건번호 2 BvR 2179/09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SharedDocs/Entscheidungen/DE/2009/09/rk20090924_2bvr217909.html (검색일 2019.9.25.)
독일 판결 원문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SharedDocs/Entscheidungen/DE/2009/03/cs20090303_2bvc000307.html (검색일 2019.6.2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12.7.25. 결정. 사건번호 - 2 BvF 3/11, - 2 BvR 2670/11, - 2 BvE 9/11 병합심리
http://www.bverfg.de/entscheidungen/fs20120725_2bvf000311.html (검색일 2019.8.1.)
동경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senkyo.metro.tokyo.jp/qa/qa-katudou/ (검색일 2019.6.24.)
https://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vot&dir=faq&document=faqelec&lang=e (검색일 2019.5.17.)
라방과르디아 신문사 홈페이지. 까딸루냐 전자투표제 도입
https://www.lavanguardia.com/politica/20181118/452993714295/govern-voto-electronico-exterior-2020-todos-electores-aplicar-forma-gradual-ismael-pena-lopez-participacion-ciudadana.html (검색일 2019.4.20.)
라트로브 대학교(La Trobe University) 도서관. 2019. ‘TV토론은 사라질 것인가?(Are TV debates dead?)’
https://www.latrobe.edu.au/news/articles/2018/opinion/are-tv-debates-dead (검색일 2019.9.30.)
로이터(Reuters). 2019. 호주 정당의 정책정리(Factbox: Policies of Australia’s political parties at a glace).
https://www.reuters.com/article/us-australia-election-policies-factbox/factbox-policies-of-australias-political-parties-at-a-glance-idUSKCN1RN024 (검색일 2019.9.30.)
룩셈부르크 행정부.
https://elections.public.lu/en/support/faq/faq-legislatives.html (검색일 2019.6.7.)
룩셈부르크 행정부.
https://jepeuxvoter.public.lu/en/faq.html (검색일 2019.7.9.)
멕시코 통계청 인구조사
https://en.www.inegi.org.mx/temas/estructura/ (검색일 2019.9.17.)
미국 법령센터(CONGRESS.GOV). ‘State Legislature Websites.’
https://www.congress.gov/state-legislature-websites (검색일 2019.6.18.)
미국 연방법령센터(OLRC). U.S Code. Title 2. Chapter 1.(연방법 제2편 의회 제1장 상·하원의원 선거)
http://uscode.house.gov/browse/prelim@title2/chapter1&edition=prelim (검색일 2019.5.20.)
미국 하원 도서관: Constitution Day and Election Day in Denmark
https://blogs.loc.gov/law/2019/06/constitution-day-and-election-day-in-denmark/ (검색일 2019.9.24.)
미국 연방규정집 제11편 제1장(연방선거위원회) 제100.94조(CFR Title 11. Chapter I. FEDERAL ELECTION COMMISSION

https://www.govinfo.gov/content/pkg/CFR-2019-title11-vol1/pdf/CFR-2019-title11-vol1.pdf (검색일 2019.7.25.)
미시간 주정부 홈페이지. ‘History and Duties.’
https://www.michigan.gov/sos/0,4670,7-127-1633_41221-141451--,00.html (검색일 2019.7.8.)
미시건 선거법[MICHIGAN ELECTION LAW Act sec.168.141(Representative in congress; certificate of determination by board of state canvassers)]
http://www.bverfg.de/entscheidungen/cs20080703_2bvc000107.html (검색일 2019.8.1.)
바스크 공보. 바스크 선거법
https://www.euskadi.eus/y22-bopv/es/bopv2/datos/1998/07/9803142a.shtml?BOPV_HIDE_CALENDAR (검색일 2019.4.20.)
바스크 정부 뉴스 홈페이지. 국가별 전자투표제 도입 상황
http://www.euskadi.eus/web01-a2haukon/es/contenidos/informacion/w_be_ve_mundo/es_def/index.shtml (검색일 2019.4.20.)
발-오-마트의 시행 연혁
http://www.bpb.de/politik/wahlen/wahl-o-mat/294712/die-geschichte-des-wahl-o-mat 참조 (검색일 2019.9.29.)
북아일랜드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eoni.org.uk/Register-To-Vote/Registration-FAQs#q18. (검색일 2019.4.23.)
세계법령정보센터 연구보고서 – 프랑스 입법절차 3.3-3.7
http://world.moleg.go.kr/web/wli/rsrchReprt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CTS_SEQ=39404&AST_SEQ=107&ETC=3 (검색일 2019.6.13.)
스웨덴 선거위원회.
https://data.val.se/val/val2018/prelresultat/R/rike/index.html (검색일 2019.10.8.)
스위스통계청.
http://www.politik-stat.ch/nrw2015CH_de.html (검색일 2019.10.8.)
스위스연방.
https://www.bfs.admin.ch/bfs/fr/home/statistiques/culture-medias-societe-information-sport/medias/juridiques/conseil-suisse-presse.html (검색일 2019.9.26.)
스위스 프랑스어권 방송.
https://www.rts.ch/info/suisse/10689464-egalite-environnement-ou-sante-les-debats-de-forum-avant-les-federales.html (검색일 2019.9.26.)
스위스 연방법원 판결 ATF 108 Ia 172
https://www.bger.ch/ext/eurospider/live/de/php/aza/http/index.php?highlight_docid=atf%3A%2F%2F108-IA-172%3Afr%3Aregeste&lang=de&type=show_document&zoom=YES& (검색일 2019.9.26.)
스위스 연방법원 판결 ATF 120 Ia 203
https://www.bger.ch/ext/eurospider/live/it/php/aza/http/index.php?lang=it&type=highlight_simple_query&page=1&from_date=&to_date=&sort=date_desc&insertion_date=&top_subcollection_aza=all&query_words=divorce&rank=0&highlight_docid=atf%3A%2F%2F120-IA-203%3Afr%3Aregeste&number_of_ranks=0&azaclir=clir&zoom=YES& (검색일 2019.9.27.)

스위스 연방법원. 8C_146/2014 공보불게재 판결
http://www.servat.unibe.ch/dfr/bger/140626_8C_146-2014.html (검색일 2019.9.27.)
스코틀랜드 정부 홈페이지
https://www.mygov.scot/register-to-vote-scotland/ (검색일 2019.4.23.)
스페인. 2019년 4월 28일 하원의원선거결과
https://www.resultados.eleccionesgenerales19.es/Congreso/Total-nacional/0/es (검색일 2019.6.7.)
스페인 2019년 총선 정당별 정책공약 관련 기사
https://www.forbes.com/sites/anagarciavaldivia/2019/04/28/elections-in-spain-the-main-economic-proposals-reflect-the-political-fragmentation/#1dd4dcce1b66 (검색일 2019.6.20.)
스위스 의회.
https://www.parlament.ch/en/organe/national-council/members-national-council-by-canton (검색일 2019.8.23.)
스위스 연방 홈페이지.
https://www.bk.admin.ch/bk/fr/home/droits-politiques/groupe-experts-vote-electronique.html (검색일 2019.6.8.)
스웨덴 선거청 홈페이지
https://www.val.se/servicelankar/other-languages/english-engelska/voting-in-advance.html (검색일 2019.9.3.)
스웨덴 의회 홈페이지
https://www.riksdagen.se/en/how-the-riksdag-works/the-work-of-the-riksdag/the-parties/ (검색일 2019.9.10.)
아일랜드 외무부 홈페이지
https://www.dfa.ie/global-irish/support-overseas/voting-in-referendums/ (검색일 2019.8.9.)
아일랜드 의회.
https://www.citizensinformation.ie/en/government_in_ireland/national_government/houses_of_the_oireachtas/dail_eireann.html (검색일 2019.7.30.)
아일랜드 시민정보포털. '선거권자 등록.'
https://www.citizensinformation.ie/en/government_in_ireland/elections_and_referenda/voting/registering_to_vote.html#l82302 (검색일 2019.10.24.)
아일랜드 시민정보포털.
https://www.citizensinformation.ie/en/government_in_ireland/elections_and_referenda/voting/registering_to_vote.html#leb892 (검색일 2019.7.8.)
아일랜드 공직기준위원회(Standards in Public Office Commission; SIPO). '2018 정당 국고보조금 보고서(Exchequer Funding).'
https://www.sipo.ie/en/Reports/State-Financing/Expenditure-of-State-Funding/2017-Exchequer-Funding-by-Political-Parties/Exchequer-Funding-Report-2017.pdf (검색일 2019.6.25.)
아사히신문 디지털. 2018.5.16. '候補者男女均等法が成立 女性議員増加 政党に努力促す.'
https://www.asahi.com/articles/ASL5H7K1QL5HUOOB019.html (검색일 2019.5.30.)
엘문도 신문사 홈페이지. '1000명이 전자투표에 참여.'
https://www.elmundo.es/navegante/2004/03/16/esociedad/1079436995.html (검색일 2019.4.20.)

영국 독립언론기준협회 홈페이지.
https://www.ipso.co.uk/IPSO/makeacomplaint.htmlwhat-we-do/ (검색일 2019.5.30.)
영국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Splitting Spending 2013 Expert paper(선거비용 지출에 보고서).’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media/2916 (검색일 2019.6.28.)
영국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Part C -Administering the poll UK Parliamentary elections in Great Britain: guidance for (Acting) Returning Officers(선거관리관 가이드).’ November 2018.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media/2327 (검색일 2019.6.28.)
영국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Part C: Administering the poll UK Parliamentary elections in Great Britain: guidance for (Acting) Returning Officers(선거관리관을 위한 총선 가이드).’ November 2018. p.31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media/2327 (검색일 2019.8.16.)
영국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Voting by post(우편투표).’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i-am-a/voter/how-cast-your-vote/voting-post (검색일 2019.6.28.)
영국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Register to vote and update your details(선거인명부 등록 및 갱신).’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i-am-a/voter/register-vote-and-update-your-details (검색일 2019.9.23.)
영국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Voting by proxy(대리투표).’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i-am-a/voter/how-cast-your-vote/voting-proxy (검색일 2019.6.28.)
영국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Overseas voters(재외선거).’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i-am-a/voter/overseas-voters (검색일 2019.9.23.)
영국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Splitting Spending 2013 Expert paper(선거비용 지출에 보고서).’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media/2916
영국 선거위원회 홈페이지.‘Response to Scottish Government’s Consultation on Electoral Reform(선거개선에 관한 스코틀랜드 정부 검토에 대한 응답.’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media/944 (검색일 2019.5.11.)
영국 선거위원회. 2014.10.1. ‘Speaker’s Commission on digital democracy - Inquiry into electoral voting: Electoral Commission response.’
https://www.parliament.uk/documents/speaker/digital-democracy/electoralcommission.pdf (검색일 2019.5.17.)
영국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2007.8. ‘Electoral pilot scheme evaluation: Shrewsbury & Atcham Borough Council.’ p.5
file:///C:/Users/user/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NN9M9D7S/Shrewsbury statutoryevaluationreport_27212-20106__E__N__S__W__.pdf (검색일 2019.5.17.)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__data/assets/pdf_file/0009/175365/UKPE-Part-A-Returning-Officer-role-and-responsibilities.pdf (검색일 2019.5.30.)
영국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__data/assets/pdf_file/0003/164109/intro-candidate.pdf (검색일 2019.5.30.)

영국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Guidance for Electoral Registration Officers, Part 2-The registration framework(선거인등록 지침).’ July 2018.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media/584 (검색일 2019.9.19.)
영국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Timetable for a UK Parliamentary general election.’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media/2184 (검색일 2019.9.18.)
영국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Voting by proxy(대리투표).’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i-am-a/voter/how-cast-your-vote/voting-proxy (검색일 2019.5.3.)
영국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Candidate guide-UK Parliamentary general election part2b/6(총선용 후보자 가이드).’ p.11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media/4262 (검색일 2019.5.11.)
영국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Candidate guide-UK Parliamentary general election part2b/6(총선용 후보자 가이드).’ p.6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media/4262 (검색일 2019.5.11.)
영국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Election timetable for UK Parliamentary by elections-generic(보궐선거 일정).’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media/5012 (검색일 2019.9.21.)
영국 선거위원회. ‘Transparent digital campaigning(투명한 디지털 선거운동).’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who-we-are-and-what-we-do/changing-electoral-law/transparent-digital-campaigning (검색일 2019.9.20.)
영국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Candidate guide-UK Parliamentary general election(총선 후보자 가이드).’
https://www.electoralcommission.org.uk/media/1214 (검색일 2019.9.18.)
영국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Cabinet Office and the Electoral Commission, Part A-(Acting) Returning Officer role and Responsibilities published September 2018; Revised November 2018.’ p.11
영국 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ofcom.org.uk/about-ofcom/what-is-ofcom (검색일 2019.5.30.)
https://www.ofcom.org.uk/about-ofcom/how-ofcom-is-run/committees/election-committee (검색일 2019.5.30.)
영국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 ‘Objects And Rules.’
http://www.britishpollingcouncil.org/objects-and-rules/ (검색일 2019.9.18.)
영국 법령센터 홈페이지.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0/25/contents (검색일 2019.9.17.)
영국 내무부 홈페이지. ‘Election guidance for civil servants(공무원 선거지침).’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lection-guidance-for-civil-servants (검색일 2019.9.18.)
영국 내무부 홈페이지. ‘Civil service code(공무원복무규정).’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ivil-service-code/the-civil-service-code (검색일 2019.9.17.)
영국 내무부 홈페이지. 공무원운영규정(Civil Service Management Code). ‘4.4 Conduct: Political Activities(정치활동).’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ivil-servants-terms-and-conditions (검색일 2019.9.17.)
영국 내무부 홈페이지. ‘Voting when you’re abroad(해외에서 투표하기).’

https://www.gov.uk/voting-when-abroad (검색일 2019.9.23.)
영국 내무부 홈페이지. 2015.8.12. ‘Individual Electoral Registration(개별선거인등록제).’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individual-electoral-registration (검색일 2019.9.19.)
영국 의회 홈페이지. House of Common Library. ‘Voting age(투표연령).’ April 2, 2019.
https://researchbriefings.parliament.uk/ResearchBriefing/Summary/SN01747 (검색일 2019.5.1.)
https://www.yourvotematters.co.uk/faq (검색일 2019.4.22.)
영국 의회 홈페이지. ‘How do I Register to vote?(어떻게 선거인등록을 하나요?)’
http://www.parliament.uk/get-involved/elections/register/ (검색일 2019.9.19.)
영국 내무부 홈페이지. ‘The electoral register and the ‘open register’.’
https://www.gov.uk/electoral-register/overview (검색일 2019.9.19.)
https://www.coventry.gov.uk/info/8/elections_and_voting/765/registering_to_vote (검색일 2019.9.19.)
영국 의회 홈페이지. Appellate Jurisdiction Act 1876., Life Peerages Act 1958.
http://www.parliament.uk/mps-lords-and-offices/lords/composition-of-the-lords/ (검색일 2019.9.18.)
영국 의회홈페이지. 2016.2.25. ‘Constituency boundary reviews and the number of MPs(선거구획정 검토 및 의원정수).’
https://researchbriefings.parliament.uk/ResearchBriefing/Summary/SN05929 (검색일 2019.9.18.)
영국 의회 홈페이지. ‘Proposals to improve voter turnout(투표율 향상하기 위한 제안).’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1415/cmselect/cmpolcon/232/23209.htm#a46 (검색일 2019.5.17)
영국 의회 홈페이지. ‘Overseas voters(재외선거).’
https://researchbriefings.parliament.uk/ResearchBriefing/Summary/SN05923 (검색일 2019.9.23.)
영국 의회홈페이지. House of Commons Library report. Richard Kelly. “Short Money.” October 4. 2018.
https://researchbriefings.parliament.uk/ResearchBriefing/Summary/SN01663 (검색일 2019.6.28.)
영국 의회홈페이지. ‘Financial assistance for Opposition parties.’
https://www.parliament.uk/mps-lords-and-offices/members-allowances/house-of-lords/financial-assistance-for-opposition-parties/ (검색일 2019.6.28.)
영국 의회 홈페이지. ‘By-elections(보궐선거).’
https://www.parliament.uk/about/how/elections-and-voting/by-elections/ (검색일 2019.7.4.)
영국 하원 선거구획정보고서. ‘The Boundary Commissions: Boundary Review 2018.’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boundary-commissions-boundary-review-2018 (검색일 2019.8.27.)
우웨스트-프랑스 일간지. 2019.5.24.‘10개의 전자투표기.’
https://www.ouest-france.fr/bretagne/ploermel-56800/ploermel-vote-electronique-aussi-pour-monterrein-6366733 (검색일 2019.5.27.)
우웨스트-프랑스 일간지. 2019.5.26.‘2019년 유럽의회선거.’
https://www.ouest-france.fr/elections/europeennes/elections-europeennes-forte-poussee-des-ecologistes-ploermel-6369143 (검색일 2019.5.27.)
유럽의회. 1997.3. ‘DIFFERENTIAL IMPACT OF ELECTORAL SYSTEMS ON FEMALE POLITICAL REPRESENTATION’

https://www.europarl.europa.eu/workingpapers/femm/w10/4_en.htm (검색일 2019.9.19.)
위스콘신 선거법
http://elections.state.wi.us/docview.asp?docid=2474&locid=47 (검색일 2019.5.16.)
입헌민주당 홈페이지
https://cdp-japan.jp/information/koubo_20190301 (검색일 2019.5.30.)
이스라엘 사법부. 'National: The entire country constitutes a single electoral constituency.'
https://knesset.gov.il/constitution/ConstMGovt.htm (검색일 2019.5.17.)
이스라엘 외무부 홈페이지.
https://mfa.gov.il/MFA/AboutIsrael/State/Democracy/Pages/FAQ_Elections_Israel.aspx (검색일 2019.7.8.)
이탈리아 외무부 홈페이지. '재외거주 이탈리아 국민의 우편투표(POSTAL VOTING FOR ITALIAN CITIZENS RESIDENT ABROAD)'
https://www.esteri.it/mae/en/sala_stampa/archivionotizie/retediplomatica/elettori-temporaneamente-all-estero.html (검색일 2019.10.11.)
일본 이신노카이 홈페이지
https://o-ishin.jp/about/agreement/ (검색일 2019.5.30.)
https://ko.wikipedia.org/wiki/선호투표제#보르다_투표제와의_차이 (검색일 2019.4.20.)
일본 전국선거할인실시위원회 홈페이지
http://senkyowari.com/ (검색일 2019.6.19.)
일본 국회법률도서관. 중의원의원선거구획정심의회설치법.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06AC0000000003 (검색일 2019.8.12.)
자유민주당 홈페이지
https://www.jimin.jp/aboutus/organization/ (검색일 2019.5.30.)
정치적 권리 행사에 관한 제네바 법(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LEDP)
https://www.ge.ch/legislation/rsg/f/rsg_a5_05.html (검색일 2019.8.23.)
제네바 주정부.
https://www.ge.ch/elections/20191020/information/ (검색일 2019.10.29.)
주간조선. 2010.5.24. '현수막·선거벽보·거리유세 NO! 영국은 가가호호 방문해 선거운동 선거권자 성향 파악 후 맞춤 홍보물.'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106100014 (검색일 2019.6.19.)
체코 재무부 홈페이지
https://www.mfcr.cz/cs/verejny-sektor/podpora-z-narodnich-zdroju/politicke-strany-a-hnuti/prispevek-na-cinnost-vyplaceny-politicky-27233 (검색일 2019.6.10.)
총무성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491964.pdf (검색일 2019.6.14.)
총무성 홈페이지. 1.期日前投票制度(기일전투표제도).
http://www.soumu.go.jp/senkyo/senkyo_s/naruhodo/naruhodo05.html (검색일 2019.6.18.)
총무성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senkyo/senkyo_s/news/touhyou/youjou/index.html (검색일 2019.6.14.)

총무성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547414.pdf (검색일 2019.6.18.)
총무성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senkyo/senkyo_s/news/touhyou/denjiteki/pdf/houritsu.pdf (검색일 2019.6.18.)
총무성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senkyo/senkyo_s/news/touhyou/denjiteki/index.html (검색일 2019.6.18.)
총무성 홈페이지.
www.soumu.go.jp/main_content/000547414.pdf (검색일 2019.6.18.)
총무성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senkyo/senkyo_s/naruhodo/naruhodo06.html#chapter1 (검색일 2019.6.19.)
총무성 홈페이지(2018.1. 기준)
http://www.soumu.go.jp/senkyo/senkyo_s/news/touhyou/denjiteki/denjiteki03.html (검색일 2019.8.26.)
취리히 주정부.
https://wahlen-abstimmungen.zh.ch/internet/justiz_inneres/wahlen-abstimmungen/de/abstimmungen.html (검색일 2019.10.29.)
칠레 선거위원회.
https://www.servel.cl/votaciones-y-escrutinios/ (검색일 2019.8.12.)
캐나다 선거관리청 홈페이지 'House of Commons Seat Allocation by Province.'
https://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res&dir=cir/red/allo&document=index&lang=e (검색일 2019.7.18.)
캐나다 선거관리청 홈페이지.
https://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res&dir=ces&document=part5&lang=e (검색일 2019.5.31.)
캐나다 선거관리청 홈페이지. 2010.2. 'A Comparative Assessment of Electronic Voting.'
https://www.elections.ca/res/rec/tech/ivote/comp/ivote_e.pdf (검색일 2019.5.24.)
캐나다 선거관리청 홈페이지.
https://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res&dir=ces&document=part5&lang=e#p56 (검색일 2019.7.2.)
https://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vot&dir=bkg&document=ec90700&lang=e (검색일 2019.7.2.)
캐나다 행정부 홈페이지.
https://www.canada.ca/en/democratic-institutions/news/2018/12/government-of-canada-passes-elections-modernization-act.html (검색일 2019.7.1.)
캐나다 선거관리청 홈페이지.
https://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pol&document=index&dir=can/bck&lang=e (검색일 2019.6.25.)
캐나다 자유당 홈페이지. 'Team Trudeau 2019 Nominations Process.'
https://www.liberal.ca/nominations/ (검색일 2019.5.20.)
캐나다 보수당 홈페이지. 'Constitution §14. CANDIDATES FOR PARLIAMENT.'
https://www.conservative.ca/about-us/governing-documents/ (검색일 2019.7.18.)

캐나다 선거관리청 홈페이지.
https://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res&dir=cir/red/bck&document=index&lang=e (검색일 2019.6.24.)
캐나다 선거관리청 홈페이지.
https://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abo&lang=e&document=index (검색일 2019.6.24.)
캐나다 선거관리청. 'Political Financing Handbook for Nomination Contestants and Financial Agents(2016.06).'
https://www.elections.ca/pol/nom/man/EC20182_Orig/ec20182_e.pdf (검색일 2019.5.20.)
캐나다 자유당 홈페이지. "National Rules for the Selection of Candidates."
https://www.liberal.ca/wp-content/uploads/2018/01/LPC_National-Rules-for-Candidate-Selection.pdf (검색일 2019.5.20.)
케피탈. 2016.11.23. '엠마뉴엘 마크롱의 공약집 혁명의 7가지 요점'(LES 7 POINTS-CLÉS DE "RÉVOLUTION." LE LIVRE-PROGRAMME D'EMMANUEL MACRON)
https://www.capital.fr/economie-politique/les-7-points-cles-de-revolution-le-livre-programme-d-emmanuel-macron-1187760 (검색일 2019.9.30.)
퀸즐랜드주 도서관. 2008. '퀸즐랜드 노동당 매니페스토 유네스코에 등재(Manifesto of the Queensland Labour party recognised nationally).'
http://blogs.slq.qld.gov.au/jol/2008/06/24/manifesto-of-the-queensland-labour-party-recognised-nationally/ (검색일 2019.9.25.)
https://www.jstage.jst.go.jp/article/jbhmk1974/23/1/23_1_20/_pdf (검색일 2019.6.25.)
프랑스 2017년 1월 20일 여론조사위원회관련개정법 제24조 (LOI n°2017-55 du 20 janvier 2017 – art. 24)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 Article 6, Modifié par LOI n°2017-55 du 20 janvier 2017 – art. 24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Article.do;jsessionid=6D75202477A8355FDA44DCE602B1A560.tplgfr44s_1?cidTexte=JORFTEXT000000522846&idArticle=LEGIARTI000033911741&dateTexte=20170121&categorieLien=id#LEGIARTI000033911741 (검색일 2019.9.30.)
프랑스 법령정보센터. 정보조작 대응에 관한 법(Diffusion de fausse nouvelle)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jsessionid=F0A0BCF9FDE3936D7C27902BF3059387.tplgfr21s_1?cidTexte=JORFTEXT000037847559&categorieLien=id (검색일 2019.6.13.)
프랑스 전자행정창구: Guichet d'administration électronique
https://pastel.diplomatie.gouv.fr/index.html?espace=francaisEtranger (검색일 2019.6.5.)
프랑스 내무부.
http://www.vie-publique.fr/actualite/alaune/redecoupage-electoral-projet-gouvernemental.html (검색일 2019.6.7.)
프랑스 내무부. '2017 총선 결과'
https://www.interieur.gouv.fr/Elections/Les-resultats/Legislatives/elecresult__legislatives-2017/(path)/legislatives-2017//FE.html (검색일 2019.10.7.)
프랑스 정부 법률 사이트. 선거운동 감독 국가위원회 보고서.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26194366 (검색일 2019.6.6.)

프랑스 선거운동 회계보고 및 정치자금 국가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s comptes de campagne et des financements politiques’
http://www.cnccfp.fr/index.php?art=1 (검색일 2019.6.6.)
프랑스 시청각최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sa.fr/Le-CSA/Presentation-du-Conseil/Le-College (검색일 2019.6.6.)
프랑스 의회선거- 중간토론 Élections Législatives 2017 – Débats d’entre-deux-tours
http://angers-tele.fr/5835-2/ (검색일 2019.7.18.)
프랑스 1차 투표 전 TV토론 : 1차 2017.3.20. 2차 2017.4.4. 3차 2017.4.20.(취소됨) Francebleu 2017.2.21.
https://www.francebleu.fr/infos/politique/presidentielle-debat-televise-entre-cinq-candidats-le-20-mars-sur-tf1-1487690831 (검색일 2019.6.7.)
프랑스 총리실 공보부. 대통령선거 1981-2012: (예선·결선) TV토론(Présidentielles 1981-2012: les débats télévisés entre les deux tours).
https://www.vie-publique.fr/discours/selection-discours/presidentielles-debats-televises.html (검색일 2019.9.30.)
프랑스 방송사별 하원선거구별 선거방송토론 일정
https://france3-regions.francetvinfo.fr/grand-est/elections-legislatives-debat-votre-region-1262907.html (검색일.2019.7.18.)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https://www.admin.ch/opc/de/classified-compilation/20172203/index.html (검색일 2019.8.23.)
호주 자유당. 뉴사우스웨일즈 주 홍보물.
https://nsw.liberal.org.au/LPNSW/media/General/Document/pdf/New-Members-Brochure-2019.pdf (검색일 2019.6.5.)
호주선거관리시스템.
https://results.aec.gov.au/ (검색일 2019.8.6.)
호주선거위원회 홈페이지. p.13.
https://www.aec.gov.au/Parties_and_Representatives/financial_disclosure/guides/political-parties/files/political-parties-2017-18.pdf (검색일 2019.8.7.)
호주 의회홈페이지. ‘The electoral and party system(선거시스템과 정당시스템).’
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Senate/Powers_practice_n_procedures/platparl/c03 (검색일 2019.6.5.)
호주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aec.gov.au/About-AEC/structure.htm (검색일 2019.5.13.)
호주선거위원회 홈페이지. ‘하원의원선거의 투표용지 관련 정보’ 부분 참고
http://www.aec.gov.au/Voting/How_to_vote/Voting_HOR.htm (검색일 2019.6.21.)
호주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aec.gov.au/Enrolling_to_vote/overseas/index.htm (검색일 2019.7.31.)
호주선거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와 관련된 정보’ 부분 참조.
http://www.aec.gov.au/voting/polling.htm (검색일 2019.6.21.)

https://www.aec.gov.au/faqs/Voting_Australia.htm#vote-saving (검색일 2019.7.30.)
호주 선거위원회 홈페이지(AEC). ‘Candidate information.’
https://www.aec.gov.au/Elections/candidates/overview.htm (검색일 2019.8.9.)
호주 선거위원회 홈페이지. p.13.
https://www.aec.gov.au/Parties_and_Representatives/financial_disclosure/guides/political-parties/files/political-parties-2017-18.pdf (검색일 2019.8.7.)
호주 민주주의박물관(Museum of Australian Democracy at old parliament house). Campnell Phodes. 2018. 여론조사의 역사(A brief history of opinon polls).
https://www.moadoph.gov.au/blog/a-brief-history-of-opinion-polls/ (검색일 2019.9.30.)
호주 공영방송사 뉴스(ABC News). 2019 선거: 여론조사결과가 노동당의 승리로 잘못 예측했던 이유(Election 2019: How the polls got it so wring in prediction a labor victory).
https://www.abc.net.au/news/2019-05-19/federal-election-results-how-the-polls-got-it-so-wrong/11128176 (검색일 2019.9.30.)
호주 선거위원회 홈페이지(AEC). ‘Enrol to vote.’
https://www.aec.gov.au/enrol/ (검색일 2019.9.2.)
호주 공공서비스위원회(Australian Public Service Commission) 홈페이지. ‘시민으로서 공무원(APS employees as citizens)’
https://www.apsc.gov.au/sect-415-aps-employees-citizens (검색일 2019.10.15.)
호주 선거위원회(Aue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호주선거위원회 직무정보(Information about working in the AEC).’
https://www.aec.gov.au/Employment/AEC.htm (검색일 2019.10.15.)
호주 공공서비스위원회(Australian Public Service Commission) 홈페이지. ‘시민으로서 공무원(APS employees as citizens)’
https://www.apsc.gov.au/sect-415-aps-employees-citizens (검색일 2019.10.15.)
호주 선거위원회 홈페이지(AEC).
https://www.aec.gov.au/Electorates/Redistributions/steps.htm (검색일 2019.5.30.)
호주선거위원회(AEC). ‘연방선거일정표’
http://www.aec.gov.au/Elections/australian-electoral-system/Electoral-Procedures/Federal-Election-Timetable.htm (검색일 2019.5.14.)
호주 의회홈페이지. 2012. ‘e-voting; the promise and the practice(전자투표의 전망과 운영현황).
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pubs/BN/2012-2013/EVoting (검색일 2019.6.4.)
호주 의회홈페이지. 2001. ‘Inventing the Nation Through the Ballot box(투표권에 대한 연구).’
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Senate/Powers_practice_n_procedures/pops/~/link.aspx?_id=8414562538CC4736839D51E69A159EB0&_z=z (검색일 2019.6.4.)
호주 의회홈페이지. 2019. ‘Trends in early voting in federal election(연방선거에서 사전투표 경향)’.
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FlagPost/2019/May/Trends_in_early_voting_in_federal_elections (검색일 2019.6.4.)
호주공영방송 뉴스(ABC News). 2013. 매니페스토를 하기 위한 분명한 이유(Manifest reasons for manifesto).

https://www.abc.net.au/news/2013-09-11/lelliot-reasons-for-manifestos/4951246 (검색일 2019.9.30.)
호주 빅토리아 주 총무처 홈페이지, 빅토리아 주선거위원회(Victorian Electoral Commission),
https://www.audit.vic.gov.au/report/victorian-electoral-commission?section=31780--1-background (검색일 2019.8.27.)
호주 퀸즈랜드 주. 브리즈번 시의 옥외광고 설치 허가 규정 및 절차
http://www.brisbane.qld.gov.au/laws-permits/laws-permits-businesses/advertising-signs (검색일 2019.8.27.)
毎日新聞 『選択の現場: 2016参院選 盛り上がらぬTV 党首討論、公示後は1回 気を使う割に底視聴率』 2016년 6월 28일
https://dbs.g-search.or.jp/aps/WMSK/main.jsp?ssid=20190920182738361gsh-ap04 (검색일 2019.9.20.)

2018 worldpopulation by country
http://worldpopulationreview.com/countries/ (검색일 2019.5.1.)
AAPOR. 'Code of Ethics.'
https://www.aapor.org/Standards-Ethics/AAPOR-Code-of-Ethics.aspx (검색일 2019.6.21.)
AAPOR. 'Sampling Methods for Political Polling.'
https://www.aapor.org/Education-Resources/Election-Polling-Resources/Sampling-Methods-for-Political-Polling.aspx (검색일 2019.7.18.)
Abgabenordnung(조세기본법).
http://www.gesetze-im-internet.de/ao_1977/ (검색일 2019.9.25.)
Abacus Data. Election Poll: A Better Week for Trudeau's Liberals.
https://abacusdata.ca/a-better-week-for-trudeau-liberals/ (검색일 2019.9.25.)
About Revlaim Democracy!. 'The Citizens' Presidential Debate Commission.'
http://reclaimdemocracy.org/political_reform_citizens_debate_commission_proposal/ (검색일 2019.6.21.)
ACT electoral commission office(호주수도준주 선거위원회). 'Electronic voting and counting(전자투표와 개표)'
https://www.elections.act.gov.au/elections_and_voting/electronic_voting_and_counting (검색일 2019.6.4.)
ACE Electoral Knowledge Network. Comparative Data.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ES001 (검색일 2019.3.8.)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ES003 (검색일 2019.3.11.)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ES004 (검색일 2019.3.11.)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ES005 (검색일 2019.3.29.)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question=ES005&view=country (검색일 2019.4.3.)
http://aceproject.org/epic-en/CDTable?view=country&question=VR002 (검색일 2019.4.23.)
Alex Hern. 2015.2.26.'Should Britain introduce electronic voting?'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5/feb/26/should-britain-introduce-electronic-voting (검색일 2019.5.17.)

Alexander J Martin. 2018.1.30. ‘Welsh Assembly announces plans to introduce e-voting.’ Sky News. https://news.sky.com/story/welsh-assembly-announces-plans-to-introduce-e-voting-11229714 (검색일 2019.5.17.)
Arizona Law. Title 16. Elections and Electors. Chapter 1. Article 1. 16-101. https://www.azleg.gov/viewdocument/?docName=https://www.azleg.gov/ars/16/00101.htm (검색일 2019. 6.18.)
Arizona Revised Statutes. Title 38. Article 6. Vacancy in Office. https://www.azleg.gov/arsDetail/?title=38 (검색일 2019.10.2.)
Atlas of Electoral Gender Quotas. 2014. https://www.idea.int/sites/default/files/publications/atlas-of-electoral-gender-quotas.pdf (검색일 2019. 5.7.)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http://aec.gov.au/Elections/australian_electoral_system/electoral_procedures/Electoral_Offences.htm (검색일 2019.5.15.)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www.aec.gov.au/_content/What/voting/compulsory_voting.htm. (검색일 2019.4.18.)
Ballotpedia. ‘State Poll Opening and Closing Times(2018).’ https://www.ballotpedia.org/State_Poll_Opening_and_Closing_Times_(2018) (검색일 2019.6.3.)
Ballotpedia. ‘Ballot access for major and minor party candidates.’ https://ballotpedia.org/Ballot_access_for_major_and_minor_party_candidates (검색일 2019.7.15.)
Ballotpedia. ‘State by State Provisional Ballot Laws.’ https://ballotpedia.org/State_by_State_Provisional_Ballot_Laws (검색일 2019.7.15.)
Ballotpedia. ‘Absentee voting.’ https://ballotpedia.org/Absentee_voting (검색일 2019.6.22.)
Ballotpedia. Absentee voting by state-Excuse required.’ https://ballotpedia.org/Absentee_voting#Excuse_required (검색일 2019.6.22.)
Ballotpedia. ‘Election administration costs-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report, 2018.’ https://ballotpedia.org/Voting_in_North_Dakota (검색일 2019.7.23.)
Ballotpedia. ‘Election administration costs-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report, 2018.’ https://ballotpedia.org/Voting_in_North_Dakota (검색일 2019.7.23.)
Ballotpedia. ‘Article V. Colorado Constitution.’ Section 46-48. https://ballotpedia.org/Article_V,_Colorado_Constitution (검색일 2019.10.2.)
BBC. 2017.5.9. https://www.bbc.com/news/magazine-39794795 (검색일 2019.4.19.)
BBC. 2007.7.5. E-voters‘not boosting turnout’ http://news.bbc.co.uk/1/hi/uk_politics/6268734.stm (검색일 2019.5.17.)
BBC. 2007.8.2. ‘Halt e-voting, says election body. http://news.bbc.co.uk/2/hi/uk_news/politics/6926625.stm (검색일 2019.5.17.)
BBC. Editorial Guidelines. 2019.6. https://www.bbc.com/editorialguidelines/guidelines (검색일 2019.9.18.)

BBC. Prime Ministerial Debate: Programme Format
https://www.bbc.co.uk/blogs/theeditors/pm_debates_programme_format.pdf (검색일 2019.9.18.)
BBC. 'Guidance: Opinion polls, surveys, questionnaires, votes and Straw polls.'
https://www.bbc.com/editorialguidelines/guidance/surveys (검색일 2019.9.20.)
https://www.bbc.com/editorialguidelines/guidelines/politics/guidelines (검색일 2019.10.15.)
Benton institute for Broadband & Society. 'Appendix C: Statement of Principles of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ing.'
https://www.benton.org/initiatives/obligations/charting_the_digital_broadcasting_future/appc (검색일 2019.9.10.)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내무부). 'Bundesbeamtengesetz 2009'
http://www.gesetze-im-internet.de/bbg_2009/index.html (검색일 2019.8.12.)
https://www.gesetze-im-internet.de/bbg_2009/BJNR016010009.html (검색일 2019.09.29.)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내무부).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http://www.gesetze-im-internet.de/abgg/ (검색일 2019.8.12.)
https://www.gesetze-im-internet.de/abgg/BJNR102970977.html (검색일 2019.9.29.)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내무부).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http://www.gesetze-im-internet.de/bming (검색일 2019.8.12.)
https://www.gesetze-im-internet.de/bming/BMinG.pdf (검색일 2019.9.29.)
California Law. Division 2. Voters. Chapter 1. Chapter 2. Registration.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Text.xhtml?lawCode=ELEC&division=2.&title=&part=&chapter=2.&article=1 (검색일 2019.6.19.)
California Elections Code. Division 16. Elections Contests.(16000-16940)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Text.xhtml?lawCode=ELEC&division=16.&title=&part=&chapter=2.&article (검색일 2019.7.10.)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Precinct Boards and Elections Officers.'
https://www.sos.ca.gov/elections/publications-and-resources/elections-officers-digest-2018/precinct/ (검색일 2019.7.16.)
California Elections Code. Division 15. Chapter 3. Semifinal Official Canvass. Article 2. 15202.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Text.xhtml?lawCode=ELEC&division=15.&title=&part=&chapter=3.&article=2. (검색일 2019.10.8.)
California Elections Code. Division 15. Chapter 3. Semifinal Official Canvass. Article 2. 15204.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Text.xhtml?lawCode=ELEC&division=15.&title=&part=&chapter=3.&article=2. (검색일 2019.10.8.)
CBC. 2018.5.9. 'Ontario to use electronic voting machines for first time in spring election.'
https://www.cbc.ca/news/canada/toronto/ontario-election-electronic-voting-machines-1.4655427 (검색일 2019.7.1.)
CBC News. Canada Poll Tracker.
https://newsinteractives.cbc.ca/elections/poll-tracker/canada/ (검색일 2019.9.25.)

CIA. World Fact book. 2019.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resources/the-world-factbook/geos/xx.html (검색일 2019.3.25.)
ch.ch Elections 2019. 'How to vote in the National Council Elections in cantons with more than one seat.'
https://www.ch.ch/en/elections2019/how-to-vote-in-the-national-council-elections/how-do-i-fill-in-my-ballot-paper-in-the-cantons-of-zh-be-lu (검색일 2019.10.29.)
Colorado Revised Statutes. Title 1. Election. Article 7. 1-7-601 Judge's Certification and Statement.
https://www.sos.state.co.us/pubs/info_center/laws/Title1/Title1Article7.html (검색일 2019.10.8.)
Commission externe d'évaluation des politiaues publique de Genève
http://www.cdc-ge.ch/fr/Publications/Archives-CEPP.html (검색일 2019.9.28.)
Commission nationale des comptes de campagne et des financements politiques
http://www.cnccfp.fr/index.phpart=1 (검색일 2019.6.6.) Cook County Clerk's Office. 'Electoral Board.'
https://www.cookcountyclerk.com/service/electoral-board (검색일 2019.7.3.)
Constitutional Rights Foundation. 'Political Parties Platforms'
https://www.crf-usa.org/election-central/political-parties-platforms.html (검색일 2019.6.27.)
Construire une majorité de projet.
https://en-marche.fr/articles/actualites/construire-majorite-de-projet (검색일 2019.9.30.)
CPD. 2015.10.29. 'Commission on Presidential Debates Announces 20166 NOnpartisan Candidate Selection Ctiteria; Forms Working Group on Format.'
https://www.debates.org/2015/10/29/commission-on-presidential-debates-announces-2016-nonpartisan-candidate-selection-criteria-forms-working-group-on-format/ (검색일 2019.7.25.)
CPD. News. 2019.4.3. 'CPD Announces 2020 Debate Host Applicants.'
https://www.debates.org/news/ (검색일 2019.7.18.)
CBC News. 'Bernier's in – and the federal election debates just got less predictable.'
https://www.cbc.ca/news/politics/maxime-bernier-peoples-party-federal-election-debate-2019-1.5285871 (검색일 2019.9.25.)
California Law. Division 2. Voters. Chapter 1. Voter Qualifications., Chapter 2. Registration.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expandedbranch.xhtml?tocCode=ELEC&division=2.&title=&part=&chapter=&article (검색일 2019.6.18.)
CBC. 2015.8.30.
https://www.cbc.ca/news/politics/harperman-case-can-public-servants-be-political-activists-1.3207194 (검색일 2019.8.7.)
Center for Deliberative Democracy. 'What is Deliberative Polling?'
https://cdd.stanford.edu/what-is-deliberative-polling/ (검색일 2019.7.6.) Childs. Sarah,
California Election Code. Division 1. Chapter 2. Election day.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Text.xhtml?lawCode=ELEC&division=1.&title=&part=&chapter=2.&article= (검색일 2019.6.18.)
Decisions, Notices and Orders.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https://crtc.gc.ca/eng/dno.htm (검색일 2019.9.25.)

Delaware County Pennsulvania. ‘Election Board.’
http://www.delcopa.gov/electionsbureau/delcoboardelections.html (검색일 2019.7.16.)
Department of Justice. ‘Federal Prosecution of Election Offenses.’ 8th Edition. December 2017.
https://www.justice.gov/criminal/pin (검색일 2019.10.8.)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Archive:Public_employment_-_Spain&oldid=265831 (검색일 2019.6.14.)
Dan Bloom.‘This is how Labour is selecting its candidates for the 2017 general election.’ 2017.4.21. Mirror.
https://www.mirror.co.uk/news/politics/how-labour-selecting-candidates-2017-10265227 (검색일 2019.5.11.)
Denis Dragovic. 2016. We’d get better candidates if we changed the rules(정당후보자 추천과정에 대한 조언). Election Watch Australia 2016. The University of Melbourne.
https://electionwatch.unimelb.edu.au/australia-2016/articles/wed-get-better-candidates-if-we-changed-the-rules (검색일 2019.6.5.)
Deutschlandfunk. 2018.6.13.
https://www.deutschlandfunk.de/bundespersonalgesetz-die-schweiz-fast-ohne-beamtentum.1773.de.html?dram:article_id=420207 (검색일 2019.8.9.)
Der Bundesrat(스위스정부포탈). ‘Bundespersonalgesetz 2018.’
https://www.admin.ch/opc/de/classified-compilation/20000738/index.html (검색일 2019.8.9.)
Demokratie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규칙’(Vorschriften für Wahlkämpfe und Abstimmungen)
https://www.ch.ch/de/demokratie/die-politischen-parteien/vorschriften-fur-die-werbung-von-politischen-parteien-in-der/ (검색일 2019.8.9.)
Die medienanstalten. ‘Rundfunkstaatsvertrag’
https://www.die-medienanstalten.de/Rundfunkstaatsvertrag (검색일 2019.8.12.)
Digital Democracy Commission. 2015.1.26. ‘Open up! digital democracy.’ Report of the Speaker’s Commission
https://www.parliament.uk/business/commons/the-speaker/speakers-commission-on-digital-democracy/ddc-news/digital-democracy-commission-report-publication/ (검색일 2019.5.17.)
Der Rat der Deutschen Markt- und Sozialforschung e.V
https://www.rat-marktforschung.de (검색일 2019.8.12.)
https://www.rat-marktforschung.de/index.php?id=startseite (검색일 2019.9.29.)
Demokratie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규칙(Vorschriften für Wahlkämpfe und Abstimmungen)
https://www.ch.ch/de/demokratie/die-politischen-parteien/vorschriften-fur-die-werbung-von-politischen-parteien-in-der/ (검색일 2019.8.9.)
Dossiers thématiques: 2007 Élection présidentielle» dans le site du Conseil Constitutionel
http://www.conseil-constitutionnel.fr/conseil-constitutionnel/francais/documentation-publications/dossiers-thematiques/2007-election-presidentielle/les-machines-a-voter-objectifs-et-garanties.17550.html (검색일 2019.6.5.)
EAC. ‘The Help America Vote Act of 2002. Title III. UNIFORM AND NONDISCRIMINATORY ELECTION TECHNOLOGY AND ADMINISTRATION REQUIREMENTS. Subtitle

A-Requirements.'
https://www.eac.gov/about/help-america-vote-act/ (검색일 2019.7.30.)
Élection au Conseil national: Listes déposées par parti, Office fédéral de la statistique. 2015.10.16.
https://www.bfs.admin.ch/bfs/fr/home/statistiques/politique/elections/conseil-national.html#21_1461223447965__content_bfs_fr_home_statistiken_politik_wahlen_nationalratswahlen_jcr_content_par_tabs_1077743566 (검색일 2019.6.5.)
ElectWomen. 'Your Home for Women's Political News.'
https://electwomen.com/, (검색일 2019.7.20.)
Erik Falk. 2017 '스웨덴 총선 인터넷 투표의 현황(En nulägesanalys av internetröstning I svenska allmänna val)'
https://www.diva-portal.org/smash/get/diva2:1113125/FULLTEXT01.pdf (검색일 2019.10.14.)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검색일 2019.8.8.)
https://fra.europa.eu/en/publication/2014/indicators-right-political-participation-people-disab
Elections and voting.
https://www.politics.co.uk/reference/elections-and-voting (검색일 2019.9.18.)
Élection du Conseil national du 20 octobre 2019, Guide à l'usage des groupes voulant lancer des candidatures(2019년 연방하원의원선거 안내문). Chancellerie fédérale, Section des droits politiques.
https://www.bk.admin.ch/dam/bk/fr/dokumente/pore/Guide%20%C3%A0%20l_usage%20des%20groupes%20voulant%20lancer%20des%20candidatures.pdf.download.pdf/Guide%20%C3%A0%20l_usage%20des%20groupes%20voulant%20lancer%20des%20candidatures.pdf (검색일 2019.6.5.)
El Español 신문 '페드로 산체스 2015년 후보자로서 요구하던 토론방송 잊었나'
https://www.elespanol.com/espana/20190418/presidente-sanchez-olvida-regulacion-debates-candidato-propuso/391711411_0.html (검색일 2019.9.15.)
El Confidencial Digital, 의무 토론회를 입법화 할 것인가
https://www.elconfidencialdigital.com/articulo/te_lo_aclaro/incluir-electoral-obligacion-celebrar-debates/20151211123509079561.html (검색일 2019.9.15.)
European Parliament.
http://www.europarl.europa.eu/workingpapers/poli/w13/theme_en.htm (검색일 2019.4.3.)
Elections Yukon.
http://www.electionsyk.ca/en/election-offices (검색일 2019.6.24.)
Election Guide.
http://www.electionguide.org/countries/id/200/ (검색일 2019.10.7.)
Elections Canada.
https://www.elections.ca/res/rep/off/ovr2015app/home.html#1 (검색일 2019.10.8.)
From a privilege to a right, 1867-1919. Elections Canada.
https://www.elections.ca/content.aspx?section=res&dir=his&document=chap2&lang=e (검색일 2019.10.14.)
Federal Election Commission. FEC Regulation. Title 11. Federal Election. §110.13 Candidate debates.

https://www.fec.gov/regulations/110-13/2019-annual-110#110-13 (검색일 2019.9.20.)
FEC. ‘Registering as a candidate.’
https://www.fec.gov/help-candidates-and-committees/registering-candidate/ (검색일 2019.6.25.)
https://en.wikipedia.org/wiki/Resign-to-run_laws, (검색일 2019.6.25.)
FEC. ‘Contribution limits.’
https://www.fec.gov/help-candidates-and-committees/candidate-taking-receipts/contribution-limits/ (검색일 2019.6.25.)
FEC. ‘Coordinated party expenditure limits adjusted(2016).’
https://www.fec.gov/updates/coordinated-party-expenditure-limits-adjusted-3/ (검색일 2019.7.22.)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Out Advertising Control.’
http://www.fhwa.dot.gov/real_estate (검색일 2019.10.7.)
https://www.fhwa.dot.gov/real_estate/oac/index.cfm (검색일 2019.10.7.)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2018. Public Service Act 1999.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9C00057 (검색일 2019.8.9.)
Federal Voting Assistance Act Passed
https://www.annenbergclassroom.org/timeline_event/federal-voting-assistance-act-passed/ (검색일 2019.7.22.)
Florida Law. Title IX. Electors and Election. Chapter 97. Part II. Section. 97041.
http://www.leg.state.fl.us/Statutes/index.cfm?App_mode=Display_Statute&URL=0000-0099/0097/0097PartIIContentsIndex.html&StatuteYear=2018&Title=%2D%3E2018%2D%3EChapter%2097%2D%3EPart%20II (검색일 2019.6.19.)
Florida. Statutes. Title IX. Chapter 106. 106.32 Election Campaign Financing Trust Fund.
http://flsenate.gov/Laws/Statutes/2019/0106.32 (검색일 2019.6.25.)
Florida Statutes. Title IX. Electors and Elections. Chapter 101. Voting Methods and Procedure. 101.015. Standards for voting ststems.
http://www.leg.state.fl.us/Statutes/index.cfm?App_mode=Display_Statute&Search_String=&URL=0100-0199/0101/Sections/0101.015.html (검색일 2019.7.31.)
Florida Statutes. Title IX. Chapter 99. Candidates.
http://www.leg.state.fl.us/Statutes/index.cfm?App_mode=Display_Statute&URL=0000-0099/0099/0099ContentsIndex.html&StatuteYear=2019&Title=%2D%3E2019%2D%3EChapter%2099 (검색일 2019.10.2.)
Florida Statutes. Title IX. Chapter 100.
http://www.leg.state.fl.us/Statutes/index.cfm?App_mode=Display_Statute&Search_String=&URL=0100-0199/0100/Sections/0100.031.html (검색일 2019.6.18.)
Florida Statutes. Title IX. Chapter 99. Candidates.
http://www.leg.state.fl.us/Statutes/index.cfm?App_mode=Display_Statute&URL=0000-0099/0099/0099ContentsIndex.html (검색일 2019.10.2.)
FindLaw. ‘Illinois Statutes Chapter 10. Elections. Act 5. Election Code. Article 19A. Early Voting by Personal Appearance.
https://codes.findlaw.com/il/chapter-10-elections/#!tid=NFF954A9BA2D8449DB8BB22624491595B

(검색일 2019.10.8.)
Forskning & Framsteg. ‘Vågar vi rösta på internet?’ 2018.2.8. 기사
https://fof.se/tidning/2018/2/artikel/vagar-vi-rosta-pa-internet (검색일 2019.10.15.)
FVAP.GOV. ‘The Federal Post Card Application: FPCA form.’
https://www.fvap.gov>FVAP>Forms>fpca2013 (검색일 2019.6.27.)
FVOP.GOV. ‘Absentee Voting Overview.’
https://www.fvap.gov/citizen-voter/overview (검색일 2019.6.27.)
FVAP.GOV.『The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 Absentee Voting Act of 1986: UOCAVA』
https://www.fvap.gov/info/laws/uocava (검색일 2019.6.27.)
FVAP.GOV. ‘The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Overview.’
https://www.fvap.gov/info/laws/uocava (검색일 2019.10.8.)
FVAP.GOV. ‘Federal Voting Assistance Program.’
http://www.fvap.gov/ (검색일 2019.6.27.)
Geneva shelves e-voting platform on cost grounds(2018.11.28.기사)
https://www.swissinfo.ch/eng/politics/digital-voting_geneva-shelves-e-voting-platform-on-cost-grounds/44577490 (검색일 2019.6.8.)
Government of Canada. ‘Political activities not related to candidacy.’
https://www.canada.ca/en/public-service-commission/services/political-activities/political-activities-not-related-candidacy.html (검색일 2019.8.7.)
Greco. Evaluation Report on Hungary Transparency of Party Funding
https://rm.coe.int/CoERMPublicCommonSearchServices/DisplayDCTMContent?documentId=09000016806c6b30 (검색일 2019.9.10.)
Groupe romand d’évaluation
www.greval.ch (검색일 2019.9.28.)
Guidelines for TV and Radio Broadcasters and TV service providers during an election,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https://crtc.gc.ca/eng/industr/tvradio/guidelec.htm (검색일 2019.9.25.)
Haarets ‘Israel Election 2019: Netanyahu Ties With Gantz, but Has Clear Path to Form Next Government.’
https://edition.cnn.com/middleeast/live-news/israel-election-results-2019-dle-intl/index.html (검색일 2019.8.16.)
https://www.haaretz.com/israel-news/elections/netanyahu-elections-gantz-vote-updates-results-1.7105719 (검색일 2019.8.16.)
Huffpost. 2012.10.15. ‘Presidential Debate Contrac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Released.’
https://www.huffpost.com/entry/presidential-debate-memo-released_n_1968323 (검색일 2019.9.20.)
IFES. Election Guide.
http://www.electionguide.org/elections/ (검색일 2019.3.29)
LAtimes. 2015.4.21.
https://www.latimes.com/opinion/editorials/la-ed-voteria-vote-to-win-cash-lottery-20150421-story.html (검색일 2019.4.19.)

Leaders' Debates Commission.
https://debates-debats.ca/en/ (검색일 2019.7.16.)
Loyola Law School. 'All About Redistricting.'
http://redistricting.lls.edu/states-CO.php (검색일 2019.6.23.)
loi n°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la transparence financièe de la vie politique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LEGITEXT000006069061 (검색일 2019.5.30.)
IDEA. 2006. 'Engaging the Electorate: Initiatives to Promote Voter Turnout From Around the World.'
http://aceproject.org/ero-en/topics/electoral-participation/turnout/Idea_voter_low.pdf/view (검색일 2019.4.19.)
IDEA. 'Voter Turnout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data/voter-turnout (검색일 2019.3.27.)
IDEA 'Electoral System Family.'
https://www.idea.int/data-tools/question-view/130357 (검색일 2019.4.3.)
IDEA. 'Model of Electoral Management.'
https://www.idea.int/data-tools/question-view/130365 (검색일 2019.4.4.)
IDEA. Compulsory Voting. 'Voting Turnout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data/voter-turnout/compulsory-voting (검색일 2019.4.3.)
IDEA. Compulsory Voting International.
https://www.idea.int/data-tools/data/voter-turnout/compulsory-voting (검색일 2019.4.3.)
IDEA. Voter Turnout Database International.
https://www.idea.int/data-tools/data/voter-turnout (검색일 2019.4.16.)
IDEA. Political Finance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data/political-finance-database (검색일 2019.5.20.)
https://www.idea.int/data-tools/question-view/548 (검색일 2019.5.30.)
https://www.idea.int/data-tools/question-view/552 (검색일 2019.6.5.)
https://www.idea.int/data-tools/question-view/555 (검색일 2019.6.5.)
IDEA. ICTS IN ELECTIONS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data/icts-elections (검색일 2019.6.25.)
IDEA. ICTs IN ELECTIONS DATABASE
https://www.idea.int/advanced-search?th=ICTs%20in%20Elections%20Database&region=&question= (검색일 2019.6.26.)
IDEA. 'GENDER QUOTAS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data/gender-quotas/country-view/261/35 (검색일 2019.10.15.)
IDEA. 'Voting from abroad'
http://en.wikipedia.org/wiki/Overseas_constituency (검색일 2019.10.16.)
http://www.ipu.org/parline-e/parlinesearch.asp (검색일 2019.10.16.)
Illiois Compiled Statutes. Chapter 10. Elections. Article 29. Prohibitions and Penalties.
https://law.justia.com/codes/illinois/2018/chapter-10/act-10-ilcs-5/article-29/ (검색일 2019.6.26.)
Independent candidates are considered as forming their own list.
https://guichet.public.lu/en/citoyens/citoyennete/elections/elections-legislatives/candidat-election-le

gislatives.html (검색일 2019.9.15.)
Indiana Election Code. Title 3. Article 9. Campaigns. CHAPTER 5.
https://law.justia.com/codes/indiana/2017/title-3/article-9/chapter-5/section-3-9-5-16/ (검색일 2019.6.27.)
Indiana. 'Election Division'
http://www.in.gov/sos/elections/ (검색일 2019.7.11.)
Indiana Election Code. Title 3. Article 8. Candidates.
https://codes.findlaw.com/in/title-3-elections/#!tid=N45FDED407FE111DB8132CD13D2280436 (검색일 2019.10.2.)
InfoLibre 홈페이지. '후보자 의무 토론회 제도가 시급하다.
https://www.infolibre.es/noticias/opinion/columnas/2019/04/17/lo_del_debate_tiene_arreglo_94108_1023.html (검색일 2019.9.15.)
Internet Stiftelsen. 2014.9.2. 'Svenskarna positiva till internetröstning i riksdagsval'
https://internetstiftelsen.se/press/pressmeddelanden/svenskarna-positiva-till-internetrostning-i-riksdagsval/
Isobel White. *Parliamentary Constituency Boundaries: the Fifth Periodical Review*. House of Commons Library: SN/PC/03222 (28 July 2010). p.11
https://researchbriefings.parliament.uk/ResearchBriefing/Summary/SN03222 (검색일 2018.9.19.)
Israel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AQ: Elections in Israel 17
https://mfa.gov.il/MFA/AboutIsrael/State/Democracy/Pages/FAQ_Elections_Israel.aspx (검색일 2019.8.27.)
IPU PARLINE DATABASE
https://data.ipu.org/ (검색일 2019.3.27.)
IPU PARLINE New Parline: the IPU's Open Data Platform (beta)
https://data.ipu.org/homes (검색일 2019.10.8.)
Jane Wakefield. 2019.5.2.'E-voting by touch-screen trialled in local elections.' BBC.
https://www.bbc.co.uk/news/technology-48132591 (검색일 2019.5.11.)
Joachim Åström. 2004 'Electonic Voting in Sweden: Hare or Tortoise?'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99469120_Electonic_Voting_in_Sweden_Hare_or_Tortoise (검색일 2019.10.14.)
John Curtis and Ian Simpson. 2018.3.'Why turnout increased in the 2017 general election and the increase did not help Labour.'NatCen Social Research.
https://www.bl.uk/collection-items/why-turnout-increased-in-the-2017-general-election (검색일 2019.5.17.)
JUSTIA US Law. '2017 Delaware Code. Title 15. Chapter 2. §211. County directors, deputy county directors; powers, duties, qualifications, compensation.'
https://law.justia.com/codes/delaware/2017/title-15/chapter-2/section-211/ (검색일 2019.7.16.)
Kentucky State Board of Elections. 'Qualifications & Filing Fees.'
https://elect.ky.gov/Candidates/Pages/Qualifications-and-Filing-Fees.aspx, (검색일 2019.6.24.)
La commission des sondages

http://www.commission-des-sondages.fr/presentation/presentation.htm (검색일 2019.5.23.)
La Fédération Nationale des Sourds de France
https://www.fnsf.org/communique-du-21-mars-2017-reaction-debat-televise-des-candidats-aux-elections-presidentielles-sur-tf1/ (검색일 2019.6.7.)
Legal Information Institute. U.S. Code. TITLE 2, The Congress. CHAPTER 1. Election of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Section 8. Vacancies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8 (검색일 2019.10.8.)
Legal Information Institute. U.S. Code. TITLE 2, The Congress. CHAPTER 1. Election of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Section 8. Vacancies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8 (검색일 2019.10.8.)
L'express Débats politiques à la télé: "Sourde, je réclame des sous-titres de qualité" 2017.1.26
https://www.lexpress.fr/actualite/medias/debats-politiques-a-la-tele-sourde-je-reclame-des-sous-titres-de-qualite_1873087.html (검색일 2019.6.7.)
Le nouvel observateur. 2012.1.4.: des programmes sous surveillance.
https://www.nouvelobs.com/election-presidentielle-2012/l-addition-s-il-vous-plait/20111130.OBS5707/2012-des-programmes-sous-surveillance.html (검색일 2019.9.30.)
Ley 2/2007. de 12 de abril. del Estatuto Básico del Empleado Público(The Civil Service Basic Statute)
http://europam.eu/?module=country-profile&country=Spain#info_COI (검색일 2019.6.14.)
Loi organique n°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http://legifrance.gouv.fr/affichTexte.do;jsessionid=39D1459414F99DBBDF2718D62DA86506.tpdjo02v_1?cidTexte=JORFTEXT000000510005&dateTexte=20080806 (검색일 2019.6.5.)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6904 (검색일 2019.6.5.)
Loi organique n°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510005&dateTexte=20081111&fastPos=1&fastReqId=1648762822&oldAction=rechTexte (검색일 2019.6.5.)
Lovenduski. Joni, Campbell. Rosie (November 2005). 'Women at the top 2005: changing numbers, changing politics.' London: Hansard Society.'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2 September 2009.
https://www.iknowpolitics.org/en/2007/05/women-top-2005-changing-numbers-changing-politics (검색일 2019.5.11.)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http://www.commission-des-sondages.fr/pdf/Loi77.pdf (검색일 2019.5.23.)
Loi n°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LEGITEXT000006068812&dateTexte=20190610 (검색일 2019.6.7.)
Loyola Law School. 'All About Redistricting - Who draws the lines.'
http://redistricting.lls.edu/who-fed10.php (검색일 2019.6.23.)
Madison County. Alabama. 'Board of Register.'

https://www.madisoncountyvotes.com/your-elections-team/board-of-registrars/ (검색일 2019.7.16.)
Mark Pack. 2011.1.25. 'E-voting: Why it was abandoned in the UK. Liberal Democrat Voice.'
https://www.libdemvoice.org/evoting-why-it-was-abandoned-in-the-uk-22488.html (검색일 2019.5.17.)
Martland Election laws. Title 8. Subtitle 2. Primary Elections.
https://codes.findlaw.com/md/election-law/#!tid=NC00277209B6911DB9BCF9DAC28345A2A (검색일 2019.10.2.)
Maryland General Assembly Department of Legislative Services. 'Proposed Regulations Board of Elections.'
http://mgaleg.maryland.gov/pubs/committee/aelr/18-387P-Analysis.pdf (검색일 2019.7.31.)
Midium. 'This Week in Political Wonkery-June 5, 2018, Edition.'
https://medium.com/@michaelbaharaeen/this-week-in-political-wonkery-june-5-2018-edition-fed559bacb0a (검색일 2019.7.18.)
Missouri Law. Title IX. Suffrage and Election. Chapter 115. Section 115.133.
http://revisor.mo.gov/main/OneSection.aspx?section=115.133&bid=5986&hl= (검색일 2019.6.18.)
Missouri Law. Title IX. Suffrage and Election. Chapter 115. Section 115.133.
http://revisor.mo.gov/main/OneSection.aspx?section=115.133&bid=5986&hl (검색일 2019.6.18.)
Miranda Olivier-Wright, Isobel White. Parliament and Constitution Centre. 2008.3.4.'Electoral Pilot Schemes.' House of Commons Library.
https://researchbriefings.parliament.uk/ResearchBriefing/Summary/SN04397 (검색일 2019.5.17.)
Montana State. 'Montana Voter Information Pamphlet.'
https://sosmt.gov/Portals/142/Elections/archives/2010s/2016/2016-General-VIP.pdf?dt=1523477333219 (검색일 2019.6.25.)
NASS. 'State Laws on Electioneering Boundaries.'
https://www.nass.org/resources/2018-election-information/electioneering-boundaries (검색일 2019.6.24.)
NCPP. 'Principle of Disclosure.'
http://ncpp.org/?q=node/19 (검색일 2019.6.21.)
NCSL. 'ALL-Mail Elections.'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all-mail-elections.aspx (검색일 2019.6.13.)
NCSL. 'Election Costs: What States Pay.'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election-costs.aspx (검색일 2019.7.11.)
NCSL. 2019.4.23. 'Redistricting Criteria.'
http://www.ncsl.org/research/redistricting/redistricting-criteria.aspx (검색일 2019.6.24.)
NCSL. 'Public Financing of Campaigns: Overview.'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public-financing-of-campaigns-overview.aspx, (검색일 2019.6.25.)
NCSL. 'Public Financing of Campaigns: Overview.'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public-financing-of-campaigns-overview.aspx (검색일 2019.6.25.)
NCSL. 'Filling Vacancies in the Office of United States Senator.'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vacancies-in-the-united-states-senate.aspx#Foot1 (검색일 2019.6.26.)
NCSL(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Election Administration at State and Local Levels.’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election-administration-at-state-and-local-levels.aspx (검색일 2019.7.8.)
NCSL. Election Administration at the State Level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election-administration-at-state-and-local-levels.aspx (검색일 2019.7.16.)
NCSL. ‘Election Administration at the Local Level.’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election-administration-at-state-and-ocal-levels.aspx (검색일 2019.7.16.)
NCSL. ‘Absentee and Early Voting.’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absentee-and-early-voting.aspx#overview (검색일 2019.7.20.)
NCSL. ‘State Laws Governing Early Voting.’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early-voting-in-state-elections.aspx (검색일 2019.7.27.)
NCSL. ‘Absentee and Early Voting.’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absentee-and-early-voting.aspx#Footnote (검색일 2019.7.27.)
NCSL. ‘Voting System Standards, Testing and Certification.’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voting-system-standards-testing-and-certification.aspx (검색일 2019.7.30.)
NCSL. ‘The Canvass: States and Election Reform-What Should States Do About Voting Equipment..’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what-should-states-do-about-voting-equipment.aspx (검색일 2019.7.30.)
NCSL. ‘Electronic Transmission of Ballots.’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internet-voting.aspx (검색일 2019.10.9.)
NCSL. “State Primary Election types.” http://www.ncsl.org/research/elections-and-campaigns/primary-types.aspx (검색일 2018.10.2.) http://www.ncsl.org/documents/Elections/Primary_Types_Table_2017.pdf (검색일 2018.10.2.)
New Hampshire Law. Title LXIII. Elections. Chapter 654. Voters and Checklists. Section 654:7. http://www.gencourt.state.nh.us/rsa/html/LXIII/654/654-7.htm (검색일 2019.6.18.)
New Democracy Foundation & Melbourne School of Government. 2019. 민주주의 개혁: 호주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방안(Reforming our Democracy; Options for Renewing Democracy in Australia). https://about.unimelb.edu.au/__data/assets/pdf_file/0036/88488/Reforming-our-Democracy-2019.pdf (검색일 2019.9.30.)
New Parline: IPU’s open data platform. https://data.ipu.org/compare?field=chamber%3A%3Afield_min_age_member_parl&structure=any__lower_chamber#map (검색일 2019.4.30.)

New Parline: IPU's open data platform. 'Electoral quota for women'
https://data.ipu.org/compare?field=chamber%3A%3Afield_is_electoral_quota_women&structure=any__lower_chamber#map (검색일 2019.5.17.)
New Your State. 'NYS Sign Program - Introduction.'
https://www.dot.ny.gov/programs/nys-signs (검색일 2019.10.7.)
New York State Election Law and Rules. Chapter 17. Article 9. Section 9-102.
https://www.elections.ny.gov/ElectionLaw.html (검색일 2019.10.8.)
NHK 2016.
https://www.nhk.or.jp/touron/backnumber/2016.html (검색일 2019.6.20.)
OpenSecrets.org. 'Election Overview.'
https://www.opensecrets.org/overview/index.php?cycle=2016&type=A&display=A, (검색일 2019.6.25.)
OpenSecrets.org. 'Top 20 PAC Contributors to Candidates, 2019-2020.'
https://www.opensecrets.org/pacs/toppacs.php (검색일 2019.6.27.)
OpenSecrets.org. 'Cost of Election.'
http://www.opensecrets.org/overview/cost.php (검색일 2019.7.12.)
Orders in Council 2018-1322, Government of Canada.
https://orders-in-council.canada.ca/attachment.php?attach=37002&lang=en (검색일 2019.9.25.)
OSC(특별조사국). "Federal Employee Hatch Act Information."
https://osc.gov/Pages/SearchResults.aspx?k=hatch%20act (검색일 2019.6.21.)
OSCE/ODIHR needs assessment mission report_early parliamentary elections 28 October 2017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iceland/348621?download=true (검색일 2019.7.29.)
OSCE/ODIHR Election Assessment Mission Final Report. REPUBLIC OF AUSTRIA EARLY PARLIAMENTARY ELECTIONS 2017
https://www.osce.org/odihr/ elections/austria/370866?download=true (검색일 2019.8.12.)
OSRC. Title 52. Voting and Elections. §20101. Congressional declaration of purpose.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52-section20101&num=0&edition=prelim (검색일 2019.7.30.)
Oregon Election Division. 'Election Law Summary.'
https://sos.oregon.gov/elections/Documents/elec_law_summary.pdf (검색일 2019.6.25.)
Oregon Election laws. Chapter 249. Candidates.
https://sos.oregon.gov/elections/Pages/laws-rules.aspx (검색일 2019.10.2.)
Poynter. 세계 허위정보 대응현황
https://www.poynter.org/ifcn/anti-misinformation-actions (검색일 2019.6.13.)
Politifact.
https://www.politifact.com/truth-o-meter/ (검색일 2019.9.20.)
PROCON.ORG. 'Voting Systems & Use.'
https://votingmachines.procon.org/view.resource.php?resourceID=000274 (검색일 2019.7.31.)
Public Service Alliance of Canada. Political rights of public service workers.
http://psac-ncr.com/political-rights-public-service-workers, (검색일 2019.9.25.)
Swissinfo. 2014.4.4.

https://www.swissinfo.ch/fre/democratiedirecte/schaffhouse_le-dernier-canton-o%C3%B9-le-vote-est-obligatoire/38284104 (검색일 2019.6.14.)
Radio Sweden. 2016.3.10. 'Minister says no to voting online in next election'
https://sverigesradio.se/sida/artikel.aspx?programid=2054&artikel=6387118 (검색일 2019.10.14.)
Radio Sweden. 2014.9.8. 'Pirate Party: voting system unfair for smaller parties'
https://sverigesradio.se/sida/artikel.aspx?programid=2054&artikel=5956690 (검색일 2019.10.14.)
Rasmussen Reports. 'Daily Presidential Tracking Poll.'
http://www.rasmussenreports.com/public_content/politics/trump_administration/prez_track_may10 (검색일 2019.7.22.)
Research Co. Liberals and Conservatives Gain in Canadian Federal Campaign.
Reporters Committee. '2018 Election Legal Guide - Exit Polling.'
https://www.rcfp.org/election_legal_guide (검색일 2019.10.7.)
Rhys Williams and Akash Paun. 'Party People: How do – and how should - British political parties select their parliamentary candidates?'2011.11. p.15-17
https://www.instituteforgovernment.org.uk/events/party-people-how-should-political-parties-select-their-parliamentary-candidates (검색일 2019.5.11.)
RTE News 'Full details of RTÉ Exit Poll published.'
https://www.rte.ie/news/election-2016/2016/0304/772641-rte-exit-poll-election-2016/ (검색일 2019.8.16.)
RTVE 홈페이지. 2019년 총선 정당별 공약 비교.
http://www.rtve.es/noticias/elecciones/generales/comparador-programas-electorales (검색일 2019.9.15.)
Senate Standing Orders/
www.senado.es (검색일 2019.6.10.)
Société suisse d'évaluation, Schzweiwerishce Evaluationsgesesellschatf
www.seval.ch (검색일 2019.9.28.)
Standing Orders Of The Congress Of Deputies/
www. congeso.es (검색일 2019.6.10.)
State of Delaware. 'Candidate filing Fees.'
https://electionsncc.delaware.gov/candidates/2016/2016_file_fees.shtml (검색일 2019.6.24.)
study.com. 'Media's Influence on the Public's Political Attitudes.'
https://study.com/academy/lesson/medias-influence-on-the-publics-political-attitudes.html (검색일 2019.7.25.)
Superior Council of Audiovisual (Le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
https://www.csa.fr/Mes-services/FAQ/Proteger/L-accessibilite-des-programmes-aux-personnes-souffrant-de-deficience-auditive-ou-visuelle#Pourquoi-tous-les-programmes-ne-sont-ils-pas-sous-titrés-à-la-télévision-? (검색일 2019.6.7.)
(일명: 레오타 장관법)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Loi Léotard)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LEGITEXT000006068930 (검색일 2019.6.7.)
swissinfo.ch. 'Parliamentary Elections A voter guide for electing the Swiss parliament.'

https://www.swissinfo.ch/eng/parliamentary-elections-_a-voters--instruction-manual-for-electing-swiss-parliamentarians-/45160226 (검색일 2019.10.29.)
TBS. 2016
http://www.tbs.co.jp/senkyo2016/preelection/saninsen/20160624_01.html (검색일 2019.6.20.)
The Atlantic. 2016.11.12. 'Why It's So Hard for a Woman to Becom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ttps://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16/11/clinton-woman-leader-world/506945/ (검색일 2019.7.26.)
The first direct Presidential Elections in Czech Republic took place in 2013, and external voting was allowed. Data has been updated in 2017. https://www.idea.int/data-tools/country-view/91/52 (검색일 2019.7.17.)
The Fulfillment of Parties' Election Pledges: A Comparative Study on the Impact of Power Sharing.
https://strathprints.strath.ac.uk/59403/1/Thomson_etal_AJPS_2016_The_fulfillment_of_parties_election_pledges.pdf. (검색일 2019.10.14.).
The Hill Times. 'Trio of party leaders to face off in Toronto for first leaders debate on Sept. 12, Trudeau sits it out.'
https://www.hilltimes.com/2019/09/11/trio-of-party-leaders-to-face-off-in-toronto-for-first-leaders-debate-on-sept-12-trudeau-sits-it-out/213784. (검색일 2019.10.14.).
The Hill Times. 'Federal party leaders, minus May, face off in TVA election debate Oct. 2'
https://www.hiltimes.com/2019/10/02/federal-party-leaders-minus-may-face-off-in-tva-election-debate-oct-2/216706 (검색일 2019.10.14.).
THE LOCAL(dk) 'Danish election: New government for Denmark as left tops poll.'
https://www.thelocal.dk/20190606/live-denmark-awaits-results-of-general-election (검색일 2019.9.25.)
The Process of Policy Consultation and Development. Liberal Party of Canada.
https://www.liberal.ca/wp-content/uploads/2018/01/By-law_3-Policy.pdf (검색일 2019.10.14.)
The Press Council. 'The procedure.'
https://presserat.ch/en/beschwerde/ablauf-beschwerde/ (검색일 2019.8.9.)
The New York Times. 2018.11.6. 'An 'I Voted' Sticker Can Get You Free Stuff.(But Is It Legal? Well...).'
https://www.nytimes.com/2018/11/06/us/voting-free-stuff.html (검색일 2019.6.21.)
The Restriction of Political Campaign Intervention by Section 501(c)(3) Tax-Exempt Organizations
https://www.irs.gov/charities-non-profits/charitable-organizations/the-restriction-of-political-campaign-intervention-by-section-501c3-tax-exempt-organizations (검색일 2019.10.8.)
The United States Elections Project. '2018 November General Election Turnout Rates'
http://www.electproject.org/2018g (검색일 2019.10.7.)
timeanddate.com
https://www.timeanddate.com/holidays/us/election-day (검색일 2019.5.30.)
TVO. 2018.10.4. 'How E-voting is taking over Ontario municipal elections.'
https://www.tvo.org/article/how-e-voting-is-taking-over-ontario-municipal-elections (검색일 2019.5.24.)
VAALITVAL Election advertising.
https://vaalit.fi/vaalimainonta (검색일 2019.7.12.)

Verified Voting. ‘The Verifier - Polling Place Equipment - Current.’
https://www.verifiedvoting.org/verifier/ (검색일 2019.6.13.)
Wahlprüfungsgesetz
https://www.bundestag.de/parlament/aufgaben/rechtsgrundlagen/wpg/wpg-196334 (2019.10.15.)
Wikipedia. ‘Compulsory voting’
https://en.wikipedia.org/wiki/Compulsory_voting (검색일 2019.4.17.)
Wikipedia. ‘Universal suffrage’
https://en.wikipedia.org/wiki/Universal_suffrage#Dates_by_country(검색일 2019.4.29.)
Wikipedia. Women in government.
https://en.wikipedia.org/wiki/Women_in_government (검색일 2019.5.17.)
Wikipedia. “Election day”
https://en.wikipedia.org/wiki/Election_day (검색일 2019.5.28.)
Wikipedia. 프랑스 1차 대선 TV토론(Débats télévisés du premier tour de l’élection présidentielle française)
https://fr.wikipedia.org/wiki/D%C3%A9bats_t%C3%A9l%C3%A9vis%C3%A9s_du_premier_tour_de_l%27%C3%A9lection_pr%C3%A9sidentielle_fran%C3%A7aise (검색일 2019.6.7.)
Wikipedia. ‘List of polling organizations’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polling_organizations#United_States (검색일 2019.6.21.)
Wikipedia. ‘Primaries in the United States’
https://en.wikipedia.org/wiki/Primary_election#Primaries_in_the_United_States (검색일 2019.6.23.)
Wikipedia. Leaders’ Debates Commission.
https://en.wikipedia.org/wiki/Leaders%27_Debates_Commission (검색일 2019.7.16.)
Wikipedia. Political action committee.
https://en.wikipedia.org/wiki/Political_action_committee (검색일 2019.7.16.)
Wikipedia. 프랑스 대통령선거 TV토론(Débat télévisé du second tour de l’élection présidentielle française)https://fr.wikipedia.org/wiki/D%C3%A9bat_t%C3%A9l%C3%A9vis%C3%A9_du_second_tour_de_l%27%C3%A9lection_pr%C3%A9sidentielle_fran%C3%A7aise#Bibliographie (검색일 2019.7.17.)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Electoral_College (검색일 2019.7.23.)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Public_Service_Commission_of_Canada (검색일 2019.8.7.)
Wikipedia2010 United Kingdom general election debates.
https://en.wikipedia.org/wiki/2010_United_Kingdom_general_election_debates (검색일 2019.9.18.)
Wikipedia. 2015. United Kingdom general election debates.
https://en.wikipedia.org/wiki/2015_United_Kingdom_general_election_debates (검색일 2019.9.18.)
Wikipedia. Federal Election Commission. https://en.wikipedia.org/wiki/Federal_Election_Commission (검색일 2019.7.24.)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National_appointment_of MP_seats_in_the_Riksdag (검색일 2019.9.19.)

Wikipedia. ‘April 2019 Spanish general election’
https://en.wikipedia.org/wiki/April_2019_Spanish_general_election (검색일 2019.10.7.)
Wikipedia. ‘2017 United Kingdom general election’
https://en.wikipedia.org/wiki/2017_United_Kingdom_general_election (검색일 2019.10.7.)
Wikipedia. ‘2018 United States elections’ https://en.wikipedia.org/wiki/2018_United_States_elections (검색일 2019.10.7.)
Wikipedia. ‘2017 German federal election’
https://en.wikipedia.org/wiki/2017_German_federal_election (검색일 2019.10.7.)
Wikipedia. ‘2017 Japanese House of Councillors election’
https://en.wikipedia.org/wiki/2019_Japanese_House_of_Councillors_election (검색일 2019.10.7.)
Wikipedia. ‘2017 Japanese general election’
https://en.wikipedia.org/wiki/2017_Japanese_general_election (검색일 2019.10.7.)
Wikipedia.‘Women in Iceland’
https://en.wikipedia.org/wiki/Women_in_Iceland (검색일 2019.10.17.)
Wikipedia. ‘Women’s suffrage in Slovenia’
https://sl.wikipedia.org/wiki/%C5%BDenska_volilna_pravica (검색일 2019.10.17.)
Wisconsin Law. Chapter 6. The Electors. section 6.10
https://docs.legis.wisconsin.gov/statutes/statutes/6/II/28/1 (검색일 2019.6.14.)
wiseGEEK. ‘What is a Political Platform?’
https://www.wisegeek.com/what-is-a-political-platform.htm (검색일 2019.6.27.)
Wyoming Election Code. Title 22. Election. Chapte 2. General Provision. 22-2-111. Employees time off to vote.
https://soswy.state.wy.us › Forms › Publications › ElectionCode (검색일 2019.6.3.)
Youtube. ‘Swedish Election : Will Sweden turn to the right this weekend?’
https://www.youtube.com/watch?v=J9joGbk42Qg (검색일 2019.9.19.)
unidades de fomento : an amount fixed in UF –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받지 않는 칠레 회계단위
usagov. ‘Absentee and Early Voting.’
https://www.usa.gov/absentee-voting (검색일 2019.7.20.)
unidades de fomento : an amount fixed in UF –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받지 않는 칠레 회계단위
https://data.moneypoliticstransparency.org/countries/CL/?expand=true#indicator_17 (검색일 2019.6.21.)
U.S. Department of Justice. ‘A Guide to Disability Rights Laws.’
https://www.ada.gov/cguide.htm#anchor64292 (검색일 2019.7.30.)
US Elections.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primary, a caucus and a convention?’
https://uselections.com/QandA/primary-caucus-convention.shtml, (검색일 2019.6.23.)
US ELECTION IN BRIEF p.14,39
https://kr.usembassy.gov/wp-content/uploads/sites/75/2016/12/%E1%84%86%E1%85%B5%E1%84%80%E1%85%AE%E1%86%A8-%E1%84%89%E1%85%A5%E1%86%AB%E1%84%80%E1%85%A5-%E1%84%80%E1%85%A2%E1%84%8B%E1%85%AD.pdf (검색일 2019.7.16.)

https://www.tv-tokyo.co.jp/main/yoriyoi/rinri.html (검색일 2019.10.28.)
https://www.mprt.se/en/broadcasting-radio-and-tv/requirements-and-regulations/ (검색일 2019.9.3.)
https://www.mprt.se/sv/nyhetsrum/pressmeddelanden/2019/svt-falls-for-partiskt-agerande-i-slutdebatten-infor-valet-/ (검색일 2019.9.6.)
https://presserat.ch/fr/code-de-deontologie-des-journalistes/richtlinien/ (검색일 2019.9.26.)
https://en.wikipedia.org/wiki/Media_regulation (검색일 2019.6.21.)
https://po.se/ (검색일 2019.10.15.)
https://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presidential_debates (검색일 2019.7.18.)
https://www.vie-publique.fr/discours/selection-discours/presidentielles-debats-televises.html (검색일 2019.7.17.)
https://de.wikipedia.org/wiki/Fernsehduell (검색일 2019.9.21.)
https://en.wikipedia.org/wiki/2019_Spanish_general_election#cite_note-123 (검색일 2019.9.15.)
https://www.elmundo.es/espana/2019/04/16/5cb6158021efa01a5d8b4593.html (검색일 2019.9.15.)
https://en.wikipedia.org/wiki/Sound_bite (검색일 2019.7.26.)
https://de.wikipedia.org/wiki/Sonntagsfrage (검색일 2019.9.21.)
https://www.wahlrecht.de/umfragen/ (검색일 2019.9.29.)
https://www.rat-marktforschung.de/index.php?id=beschwerdeordnung (검색일 2019.9.29.)
https://en.wikipedia.org/wiki/Opinion_polling_for_the_next_Japanese_general_election (검색일 2019.6.19.)
https://www.tv-tokyo.co.jp/main/yoriyoi/rinri.html (검색일 2019.10.28.)
Wikipedia. ‘Opinion polling for the 2018 Swedish general election.’ https://en.wikipedia.org/wiki/Opinion_polling_for_the_2018_Swedish_general_election (검색일 2019.10.29.)
https://www.academia.edu/2686299/Restricting_the_broadcast_and_publication_of_pre_election_and_exit_polls_some_selected_examples (검색일 2019.8.29.)
https://www.parlament.ch/fr/ratsbetrieb/suche-curia-vista/geschaeft?AffairId=20043280 (검색일 2019.9.26.)
https://www.parlament.ch/fr/ratsbetrieb/suche-curia-vista/geschaeft?AffairId=20073805 (검색일 2019.9.26.)
https://www.parlament.ch/fr/ratsbetrieb/suche-curia-vista/geschaeft?AffairId=20094057 (검색일 2019.9.26.)
https://en.wikipedia.org/wiki/House_of_Representatives_(Australia) (검색일 2019.8.23.)
https://www.aec.gov.au/Electorates/Redistributions/calculating-entitlements.htm (검색일 2019.5.30.)
https://en.wikipedia.org/wiki/Boundary_commissions_(United_Kingdom) (검색일 2018.8.27.)
https://en.wikipedia.org/wiki/Redistricting (검색일 2019.7.26.)
https://www.cairn.info/revue-pouvoirs-2013-3-page-117.htm# (검색일 2019.6.7.)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Article.do;jsessionid=709E05F8813FBF8705B27CF5ABEC2E7D.tplgfr33s_1?idArticle=LEGIARTI000020105569&cidTexte=LEGITEXT000006070239&dateTexte=20190607 (검색일 2019.6.7.)
https://openparliament.ca/bills/42-1/C-237/ (검색일 2019.8.9.)

https://en.wikipedia.org/wiki/Women_in_Canadian_politics (검색일 2019.8.8.)
https://www.cbc.ca/news2/interactives/women-politics/ (검색일 2019.8.9.)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finland/411758 (검색일 2019.8.9.)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iceland/348621?download=true (검색일 2019.7.29.)
http://www.irishstatutebook.ie/eli/2009/act/9/section/9/enacted/en/html#sec9 (검색일 2019.8.13.)
https://www.dccae.gov.ie/en-ie/environment/topics/waste/litter/Pages/Election-Posters0331-3567.aspx (검색일 2019.8.14.)
www.gesetze-im-internet.de/Versammlg/index.html (검색일 2019.8.16.)
http://slownews.kr/71699 (검색일 2019.6.4.)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6973&AST_SEQ=108&ETC= (검색일 2019.6.4.)
www.gesetze-im-internet.de/netzdg/intex.html (검색일 2019.8.16.)
https://privacyinternational.org/long-read/2821/spanish-elections-under-new-data-protection-law-use-personal-data-political-parties (검색일 2019.6.20.)
https://www.conservatives.com/manifesto (검색일 2019.5.15)
https://labour.org.uk/manifesto/ (검색일 2019.5.16.)
https://www.politicalpartydb.org/wp-content/uploads/2017/02/UK_CONSERVATIVE_PARTY_CONSTITUTION_2009.pdf (검색일 2019.9.30.)
https://en.m.wikipedia.org/wiki/Contract_with_America (검색일 2019.6.27.).
https://rassemblementnational.fr/pdf/144-engagements.pdf (검색일 2019.9.30.)
https://de.wikipedia.org/wiki/Wahlprogramm (검색일 2019.9.29.)
https://www.cdu.de/system/tdf/media/dokumente/160530_bfao.pdf?file=1&type=field_collection_item&id=5603 (검색일 2019.9.29.)
https://www.bundeswahlleiter.de/dam/jcr/d2c68367-3bec-452a-98f4-114d5e51e79b/gruene.pdf (검색일 2019.9.29.)
http://www.bpb.de/politik/wahlen/wahl-o-mat/45378/wahlen-waehler-wahl-o-mat (검색일 2019.9.29.)
https://www.lehrerfreund.de/schule/1s/wahl-o-mat-2005/2397 (검색일 2019.8.8.)
https://www.diw.de/sixcms/detail.php?id=43526 (검색일 2019.9.29.)
http://regierungsforschung.de/wp-content/uploads/2014/06/130910-regierungsforschung.de__bundestagswahl_2009_korte.pdf (검색일 2019.9.29.)
https://regierungsforschung.de/wp-content/uploads/2014/05/110913regierungsforschung.de_dwi_btw2013.pdf (검색일 2019.9.29.)
https://www.minshin.or.jp/article/109163/全国会議員を対象に参院選マニフェストの内容を議論 (검색일 2019.10.15.)
https://www.minshin.or.jp/article/108987/全議員政策懇談会を開き、参院選マニフェストについて討議 (검색일 2019.10.15.)
http://www.nga.gr.jp/ (검색일 2019.8.23.)
http://www.genron-npo.net/politics/archives/7307.html (검색 2019.9.20.)
http://www.waseda-manifesto.jp (검색일 2019.9.20.)
http://www.manifestojapan.com/sangiinsenkyo2019 (검색일 2019.9.20.)

https://www.nhk.or.jp/senkyo/database/kouyaku/2019/seitou/ (검색일 2019.9.20.)
http://www.genron-npo.net/politics/archives/7307.html (검색일 2019.10.15.)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711-00010000-senkyocom-pol (검색일 2019.10.15.)
https://poteto.media/political/manifest-comparison/ (검색일 2019.10.15.)
https://www.euronews.com/2019/04/12/spanish-general-election-2019-who-are-the-candidates-and-what-are-their-manifestos (검색일 2019.6.20.)
https://snd.gu.se (검색일 2019.9.15.)
https://www.socialdemokraterna.se/aktuellt/2018/socialdemokraternas-valmanifest-2018/ (검색일 2019.9.7.)
https://www.mp.se/politik/valmanifest2018 (검색일 2019.9.18.)
https://www.mp.se/politik/valmanifest2018 (검색일 2019.9.18.)
https://www.liberalerna.se/wp-content/uploads/valmanifest.pdf (검색일 2019.9.7.)
https://www.dn.se/ (검색일 2019.9.20.)
https://www.thelocal.se/20060420/3602 (검색일 2019.9.20.)
https://www.bk.admin.ch/ch/f/pore/pa/par_2_2_2_3.html (검색일 2019.9.27.)
https://www.udc.ch/actualites/mediencenter/a-notre-sujet/ (검색일 2019.9.28.)
http://www.plr-international.com/elections-federales-2019/manifeste-du-plr-international/ (검색일 2019.9.28.)
https://www.cvp.ch/fr/elections (검색일 2019.9.28.)
https://verts.ch/plateforme-electorale-2019 (검색일 2019.9.28.)
https://www.domainepublic.ch/articles/30264 (검색일 2019.9.28.)
https://www.sbs.com.au/news/what-political-parties-can-and-can-t-get-away-with-during-the-election-campaign (검색일 2019.7.31.)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austria/370866?download=true
https://elections.nz/guidance-and-rules/for-candidates/campaign-rules-for-candidates/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poland/426566?download=true
https://www.osce.org/odihr/389582?download=true (검색일 2019.8.26.)
https://www.admin.ch/opc/de/classified-compilation/19790235/index.html#id-13 (검색일 2019.8.9.)
http://www.brisbanetimes.com.au/queensland/election-crackdown-a-sign-of-the-times-20130806-2rbiy.html (검색일 2019.8.27.)
www.ch.ch/de/demokratie/die-politischen-parteien/vorschriften-fur-die-werbung-von-politischen-parteien-in-der/ (검색일 2019.8.9.)
https:/www.ch.ch/de/demokratie/die-politischen-parteien/vorschriften-fur-die-werbung-von-politischen-parteien-in-der/ (검색일 2019.8.9.)
https://ja.wikipedia.org/wiki/%E5%87%BA%E5%8F%A3%E8%AA%BF%E6%9F%BB (검색일 2019.6.25.)
https://www.admin.ch/opc/de/classified-compilation/19370083/index.html#id-2-149 (검색일 2019.8.9.)
https://www.euronews.com/2018/11/22/france-passes-controversial-fake-news-law (검색일 2019.6.13.)
https://www.bundestag.de/parlament/aufgaben/rechtsgrundlagen/go_btg/anlage1-245178 (검색일 2019.8.8.)

https://www.admin.ch/opc/de/classified-compilation/19370083/index.html#id-2-149 (검색일 2019.8.9.)
https://en.wikipedia.org/wiki/Buckley_v._Valeo (검색일 2019.6.27.)
https://data.moneypoliticstransparency.org/countries/CL/?expand=true#indicator_17 (검색일 2019.6.21.)
https://www.servel.cl/limites-del-gasto-electoral/ 칠레 선거위원회 (검색일 2019.6.21.)
https://www.servel.cl/servel-determina-limites-de-gasto-de-partidos-en-campanas-2017/ (검색일 2019.6.24.)
https://www.sipo.ie/en/ 공직기준위원회(SIPO; Standards in Public Office Commission) (검색일 2019.6.21.)
https://www.loc.gov/law/help/campaign-finance-regulation/israel.php#_ftnref18 (검색일 2019.6.19.)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lithuania/296446?download=true (검색일 2019.8.2.)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iceland/374101?download=true (검색일 2019.8.1.)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lithuania/296446?download=true (검색일 2019.8.2.)
https://www.europapress.es/nacional/noticia-financian-partidos-politicos-otras-respuestas-cuentas-20190206162340.html (검색일 2019.6.12.)
https://www.media.bk.admin.ch/wahlen/fr/ (검색일 2019.6.5.)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3307 (검색일 2019.6.5.)
http://www.conseil-constitutionnel.fr/dossier/presidentielles/2002/documents/c10202.pdf (검색일 2019.6.5.)
https://www.auswaertiges-amt.de/de/ReiseUndSicherheit/reise-und-sicherheitshinweise/konsularinfo
http://www.soumu.go.jp/senkyo/hoho.html (검색일 2019.6.18.)
http://www.mofa.go.jp/mofaj/toko/senkyo/kaisei_0611.html (검색일 2019.6.18.)
https://ja.wikipedia.org/wiki/%E5%9C%A8%E5%A4%96%E9%81%B8%E6%8C%99 (검색일 2019.6.18.)
http://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52338 (검색일 2019.6.18.)
https://www.mofa.go.jp/mofaj/toko/senkyo/flow.html (검색일 2019.6.18.)
Postal voting for Spanish voters who are temporarily residing abroad(E.R.T.A)
https://www.correos.es/ss/Satellite/site/pagina-1363186877391/sidioma=en_GB (검색일 2019.6.5.)
https://www.admin.ch/opc/en/classified-compilation/20133127/index.html (검색일 2019.6.15.)
https://www.admin.ch/opc/en/classified-compilation/20152081/index.html (검색일 2019.6.15.)
https://www.aec.gov.au/Voting/Ways_to_vote/overseas.htm (검색일 2019.8.28.)
https://www.yourvotematters.co.uk/can-i-vote/with-no-fixed-address#merchantseaman (검색일 2019.5.15).
http://www.jsu.or.jp/member/support/youjou.html (검색일 2019.6.14.)
https://en.wikipedia.org/wiki/Campaign_finance_in_the_United_States (검색일 2019.7.22.)
https://en.wikipedia.org/wiki/Buckley_v._Valeo (검색일 2019.6.27.)
https://www.sipo.ie/en/ 공직기준위원회(SIPO; Standards in Public Office Commission) (검색일 2019.6.21.)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lithuania/296446?download=true (검색일 2019.8.2.)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iceland/374101?download=true (검색일 2019.8.1.)
https://www.eldiario.es/politica/PSOE-PP-subvenciones-Ciudadanos-aportaciones_0_892061514.html (검색일 2019.6.12.)

https://www.europapress.es/nacional/noticia-financian-partidos-politicos-otras-respuestas-cuentas-20190206162340.html (검색일 2019.6.12.)
https://www.riksdagen.se/en/how-the-riksdag-works/the-work-of-the-riksdag/the-parties/ (검색일 2019.9.10.)
https://www.normattiva.it/atto/caricaDettaglioAtto?atto.dataPubblicazioneGazzetta=2014-02-26&atto.codiceRedazionale=14G00024 (검색일 2019.10.2.)
http://votingmachines.procon.org/view.resource.php?resourceID=000274 (검색일 2019.7.30.)
http://www.senat.fr/notice-rapport/2018/r18-073-notice.html (검색일 2019.5.27.)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321643&dateTexte=20190531 (검색일 2019.5.27.)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612617&categorieLien=id (검색일 2019.5.27.)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LEGITEXT000005767679&dateTexte=20190301 (검색일 2019.5.27.)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612617&categorieLien=id (검색일 2019.5.27.)
http://www.senat.fr/questions/base/2012/qSEQ120700003.html (검색일 2019.6.5.)
https://www.ouest-france.fr/pays-de-la-loire/la-machine-voter-comment-ca-marche-2037604 (검색일 2019.6.5.)
http://www.lecolombesquejaime.fr/2019/05/1-seul-tour-pour-les-elections-europeennes-du-26-mai-2019.html (검색일 2019.5.27.)
https://www.bfmtv.com/mediaplayer/video/europeennes-edouard-philippe-a-vote-au-havre-1163890.html (검색일 2019.5.27)
http://www.wahlrecht.de/lexikon/wahlcomputer.html (검색일 2019.6.28.)
https://www.admin.ch/opc/de/classified-compilation/20132343/index.html (검색일 2019.8.23.)
http://en.wikipedia.org/wiki/Electronic_voting_in_Canada (검색일 2019.5.24.)
https://en.wikipedia.org/wiki/UK_Parliamentary_by-elections (검색일 2019.9.25.)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belgium/416432?download=true (검색일 2019.7.29.)
https://www.osce.org/odihr/elections/slovakia/235591?download=true (검색일 2019.7.24.)
https://www.admin.ch/opc/de/classified-compilation/19370083/index.html#id-2-14 (검색일 2019.8.8.)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9C00048 (검색일 2019.5.15.)
https://www.ceicdata.com/en/chile/monthly-tax-unit/monthly-tax-unit(월별 TU단위)
https://www.idea.int/data-tools/country-view/266/60 (검색일 2019.7.26.)
https://en.wikipedia.org/wiki/2019_Australian_federal_election (검색일 2019.10.8.)
http://aceproject.org/ero-en/topics/voting-operations/uk-ballot-paper-design-rule-14-principal-area-rules.doc/view (검색일 2019.10.8.)
http://news.bbc.co.uk/nol/shared/vote2005/voters_guide/img/ballot_paper/ballot_paper_416.gif (검색일 2019.10.8.)
http://www.idea.int/elections/images/japanese-ballot-papers.jpg (검색일 2019.10.8.)
http://www.elections.ca/yth/images/sample_ballot.gif (검색일 2019.10.8.)

부록

부록 1
최근 선거실시상황[1)]

1. 영 국 (하원의원)[2)3)]

- 선 거 일: 2017. 6. 8.
- 선거인수: 46,843,896명
- 투 표 율: 68.8%
- 정당별 의석분포

정당명	의석수	득표율
보수당(Conservative Party)	317	42.3%
노동당(Labour Party)	262	40.0%
스코틀랜드국민당(SNP)	35	3.0%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	12	7.4%
민주연합당(Democratic Unionist Party)	10	0.9%
신 페인(Sinn Féin)	7	0.7%
녹색당(Green Party)	1	1.6%
무소속	1	0.1%
기타	5	0.55%
합계	650	96.55%

1) IPU PARLINE New Parline: the IPU's Open Data Platform (beta) https://data.ipu.org/homes (검색일 2019.10.8.)

2) 영국의회. 'General Election 2017: full results and analysis' https://researchbriefings.parliament.uk/ResearchBriefing/Summary/CBP-7979#fullreport (검색일 2019.10.7.)

3) Wikipedia. '2017 United Kingdom general election' https://en.wikipedia.org/wiki/2017_United_Kingdom_general_election (검색일 2019.10.7.)

2. 미 국 4)5)

- 선 거 일: 2018. 11. 6.
- 선거인수: 235,714,420명
- 유효투표수: 118,583,892(50.3%)
- 상원의원 의석분포

정당명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의석수	의석수	의석수	의석수	득표수	득표율(%)
민주당(Democratic)	53	44	48	45	52,260,651	58.4
공화당(Republican)	45	54	52	53	50,816,262	38.8
무소속	2	2	0	2	892,988	1.0

- 하원의원 의석분포

정당명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의석수	의석수	의석수	의석수	득표수	득표율(%)
민주당(Democratic)	201	188	194	235	60,727,598	53.4
공화당(Republican)	234	247	241	199	50,983,895	44.8

4) The United States Elections Project. ‘2018 November General Election Turnout Rates’ http://www.electproject.org/2018g (검색일 2019.10.7.)

5) Wikipedia. ‘2018 United States elections’ https://en.wikipedia.org/wiki/2018_United_States_elections (검색일 2019.10.7.)

3. 프랑스 [6]

가. 상원의원

- 선 거 일: 2017. 9. 24.
- 정당별 의석분포

정당명	의석수
공화당(The Republicans: LR)	146
사회주의공화당(Socialist and Republican: SOC)	78
중앙연합(Centrist Union: UC)	49
레퓌블리크 앙 마르슈(La République en marche!: REM)	21
유럽민주와사회집회당(European Democratic and Social Rally: RDSE)	21
공산,공화,시민,환경연합(Communist, Republican, Citizen and Ecologist: CRCE)	15
무소속상원연합(RASNAG)	11
기타	5
합계	346

나. 하원의원

- 선 거 일: 2017. 6. 11.(1차 투표) 및 6. 18.(2차 투표)

구분	1차 투표	2차 투표
등록선거인수	47,570,988	47,293,103
투표인수	23,167,508(48.7%)	20,164,615(42.64%)
무효투표수	513,344	1,988,549
유효투표수	22,654,164	18,176,066

6) 프랑스 내무부. ‘2017 총선 결과’ https://www.interieur.gouv.fr/Elections/Les-resultats/Legislatives/elecresult__legislatives-2017/(path)/legislatives-2017//FE.html (검색일 2019.10.7.)

- 정당별 의석분포

- 1차 투표

정 당 명	득표수	득표율(%)	의석수
레퓌블리크 앙 마르슈(La République en marche!: REM)	6,391,269	28.21	2
민주당 무소속 연합(Union of Democrats and Independents: UDI)	687,225	3.03	1
개별 좌파(Other left wing parties: DVG)	362,281	1.60	1
합계		32.84	4

- 2차 투표

정당명	득표수	득표율(%)	의석수
레퓌블리크 앙 마르슈(La République en marche!: REM)	7,826,245	43.06	306
공화당(The Republicans: LR)	4,040,203	22.23	112
민주운동(Democratic Movement: MoDem)	1,100,656	6.06	42
사회당(Socialist Party: PS)	1,032,842	5.68	30
민주무소속연합(Union of Democrats and Independents: UDI)	551,784	3.04	17
불복하는프랑스(Debout la France:DLF)	883,573	4.86	17
개별 좌파(Other left wing parties: DVG)	263,488	1.45	11
프랑스 공산당(French Communist Party: PCF)	217,833	1.20	10
국민전선(National Front: FN)	1,590,869	8.75	8
개별 우파(Other parties of the right: DVG)	306,074	1.68	6
지역주의 정당(Regionalist: REG)	137,490	0.76	5
좌파급진당(Left Radical: PRG)	64,860	0.36	3
기타	160,149	0.87	6
합계	18,176,066	100	573

4. 독 일 (하원의원)[7][8]

- 선 거 일: 2017. 9. 24.
- 선거인수: 61,688,485
- 투표인수: 46,976,341(76.15%)
- 무효투표수: 1차(지역구) – 586,726, 2차(비례) – 460,849
- 유효투표수: 1차(지역구) – 46,389,615, 2차(비례) – 46,515,492
- 정당별 의석분표

정당명	득표율(%)		의석수			
	지역구의원	비례대표의원	지역구의원	비례대표의원	합계	득/실
기독민주연합(CDU)	30.2	26.8	185	15	200	−55
사회민주당(SDP)	24.6	20.5	59	94	153	−40
독일을 위한 대안(AfD)	11.5	12.6	3	91	94	+94
자유민주당(FDP)	7.0	10.7	0	80	80	+80
좌파당(Die Linke)	8.6	9.2	5	64	69	+5
녹색당(Grüne)	8.0	8.9	1	66	67	+4
기독사회연합(CSU)	7.0	6.2	46	0	46	−10
합계	81.9	79.8	299	410	709	+78

7) 연방선거위원회(Der Bundeswahlleiter). ‘Bundestag election 2017’ https://www.bundeswahlleiter.de/en/bundestagswahlen/2017/ergebnisse/bund-99.html#erststimmen-prozente7 (검색일 2019.10.7.)

8) Wikipedia. ‘2017 German federal election’ https://en.wikipedia.org/wiki/2017_German_federal_election (검색일 2019.10.7.)

5. 일 본

가. 참의원선거[9)]

- 선 거 일: 2019. 7. 21.

구분	선거구	비례대표
선거권자수	105,886,064	105,886,064
투표자수	51,671,922	51,666,697
투표율	48.80%	48.79%
무효투표수	1,308,151	1,394,498
유효투표수	50,363,771	50,072,199

- 정당별 의석분포

정당명	선거결과			총의석수
	지역구의원	비례대표의원	획득의석합계	
자유민주당	38	19	57	113
입헌민주당	9	8	17	32
공명당	7	7	14	28
일본유신회	5	5	10	16
무소속	9	0	9	17
일본공산당	3	4	7	13
국민민주당	3	3	6	21
레이와 신센구미	0	2	2	2
사회민주당	0	1	1	2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0	1	1	1
합계	74	48	123	244

9) Wikipedia. ‘2017 Japanese House of Councillors election’ https://en.wikipedia.org/wiki/2019_Japanese_House_of_Councillors_election (검색일 2019.10.7.)

나. 중의원선거[10)]

- 선 거 일: 2017. 10. 22.
- 선거인수: 106,091,229
- 투표인수: 56,947,831(53.68%)
- 정당별 의석분포

정당명	지역구의원	비례대표의원	총의석수
자유민주당	218	66	284
입헌민주당	18	37	55
희망의 당	18	32	50
공명당	8	21	29
무소속	22	0	22
일본공산당	1	11	12
일본유신회	3	8	11
사회민주당	1	1	2
합계	289	176	465

10) Wikipedia. ‘2017 Japanese general election’ https://en.wikipedia.org/wiki/2017_Japanese_general_election (검색일 2019.10.7.)

6. 스페인 [11]

가. 상원의원선거[12]

- 선 거 일: 2019. 4. 28.
- 선거인수: 34,551,765
- 투표인수: 26,055,457(75.41%)
- 정당별 의석분포

정당명	의석수
사회당(PSOE)	139
국민당(PP)	73
카탈루냐 공화좌파당(ERC-Sobiranistes)	13
시우다다노스(Cs)	10
바스크민족당(Basque Nationalist Party: EAJ-PNV)	10
Unidas Podemos	6
카탈루냐 위해 함께(JxCat-Junts)1	4
통합 나바르(NA+)	3
바스크 지역연합(EH Bildu)	2
Compromís	1
고메라 사회주의자 그룹(ASG)	1
VOX(Vox)	1
카나리아 연합당(CCa-PNC)	1
합계	266

11) Wikipedia. ‘April 2019 Spanish general election’
https://en.wikipedia.org/wiki/April_2019_Spanish_general_election (검색일 2019.10.7.)

12) Election Guide.
http://www.electionguide.org/countries/id/200/ (검색일 2019.10.7.)

나. 하원의원선거

- 선 거 일: 2019. 4. 28.
- 선거인수: 36,893,976
- 투표인수: 26,361,051(75.75%)
- 무효투표수: 275,410
- 유효투표수: 26,085,641
- 정당별 의석분포

정당명	의석수
사회당(PSOE)	123
국민당(PP)	66
시우다다노스(Ciudadanos)	57
포데모스-IU-eQuo	35
Vox	24
카탈루냐 공화좌파당(ERC-Sobiranistes)	15
카탈루냐 위해 함께(JxCat-Junts)5	7
우리가 할 수있는 공통의 변화(ECP)	7
바스크민족당(Basque Nationalist Party: EAJ-PNV)	6
바스크 지역연합(EH Bildu)	4
카나리아 연합당(CCa-PNC)	2
통합 나바르(NA+)6	2
Compromís 2019	1
칸타브리아 지역주의당(PRC)	1
합계	350

7. 스웨덴 [13]

- 선 거 일: 2018. 9. 9.
- 선거인수: 7,495,936
- 투표인수: 6,535,271(87.18%)
- 무효투표수: 83,646
- 유효투표수: 6,448,417
- 정당별 의석분포

정당명	득표수	득표율(%)	의석수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s: S)	1,822,691	31.01	100
온건당(Moderate Party: M)	1,279,192	23.33	70
스웨덴민주당(Sweden Democrats: SD)	1,130,832	12.86	62
중앙당(Centre Party: C)	555,567	6.89	31
좌파당(Left Party: V)	516,119	6.11	28
기독민주당(Christian Democrats: KD)	408,061	5.72	22
자유당(Liberal Party: FP)	354,562	5.42	20
녹색당(Green Party: MP)	284,931	4.57	16
합계	6,351,955	95.91	349

13) 스웨덴 선거위원회.
https://data.val.se/val/val2018/prelresultat/R/rike/index.html (검색일 2019.10.8.)

8. 스위스 (하원의원선거)[14]

- 선 거 일: 2015. 10. 18.
- 선거인수: 5,283,556
- 투표인수: 2,563,052(48.51%)
- 정당별 의석분포

정당명	득표수	득표율(%)	의석수
스위스인민당 (Swiss People's Party: SVP/UDC)	740,967	29.4	65
사회주의당(Socialist Party: SP/PS)	475,071	18.8	43
개혁민주당(Radical-Democratic Party: FDP/PRD)	413,444	16.4	33
기독민주인민당(Christian-Democratic People's Party: CVP/PDC)	293,653	11.6	27
녹색당(Green Party: GPS/PES)	177,944	7.1	11
자유녹색당(Liberal Green Party: GLP/PVL)	116,641	4.6	7
보수민주당(Conservative Dmocratic Party: BDP/PBD)	103,476	4.1	7
기타	103,476	1.9	5
합계	2,424,672	93.9	198

14) 스위스통계청.
http://www.politik-stat.ch/nrw2015CH_de.html (검색일 2019.10.8.)

9. 캐나다 (하원의원선거)[15]

- 선 거 일: 2015. 10. 19.
- 선거인수: 25,939,742
- 투표인수: 17,711,983(68.3%)
- 무효투표수: 120,515
- 유효투표수: 17,591,468
- 정당별 의석분포

정당명	득표수	득표율(%)	의석수
자유당(Liberal Party of Canada)	6,942,937	39.5	184
보수당(Conservative Party of Canada)	5,613,633	31.9	99
신민주당(New Democratic Party)	3,469,368	19.7	44
퀘벡블록(Bloc Québécois)	821,144	4.7	10
녹색당(Green Party of Canada)	602,933	3.4	1
합계	17,450,015	99.2	338

15) Elections Canada.
https://www.elections.ca/res/rep/off/ovr2015app/home.html#1 (검색일 2019.10.8.)

10. 호 주 [16]

가. 상원의원선거

- 선 거 일: 2019. 5. 18.
- 선거인수: 16,419,543
- 투표인수: 15,184,085(92.48%)
- 무효투표수: 579,160
- 유효투표수: 14,604,925
- 정당별 의석분포

정당	의석수
호주노동당(Australian Labor Party: ALP)	26
자유당(Liberal Party of Australia)	16
자유당/국민당 연합(Liberal/Nationals)	12
호주녹색당(Australian Greens)	9
자유국민당(Laberal National Party: QLD)	6
원네이션(One Nations)	2
중앙 연합(Centre Alliance)	2
보수당(Conservatives)	1
림비네트워크(Lambie Network)	1
국가자유당(Country Liberal: NT)	1
합계	76

16) Wikipedia. '2019 Australian federal election' https://en.wikipedia.org/wiki/2019_Australian_federal_election (검색일 2019.10.8.)

나. 하원의원선거

- 선 거 일: 2019. 5. 18.
- 선거인수: 16,419,543
- 투표인수: 15,088,523(91.89%)
- 무효투표수: 835,223
- 유효투표수: 14,253,393
- 정당별 의석분포

정당명	의석수
호주노동당(Australian Labour Party: ALP)	68
자유당(Liberal Party of Australia)	44
자유국민당(Liberal National Party of Queensland)	23
국민당 연합(National Party of Australia)	10
무소속	3
호주녹색당(Australian Greens)	1
캐터당(Katter's Australian Party)	1
중앙 연합(Centre Alliance)	1
합계	151

부록 2
각국의 투표용지

1. 영 국 [17]

Election of the Member of Parliament for the *[insert name of constituency]* **constituency**

Vote for **only one candidate** by putting a cross ☒ in the box next to your choice

BASWRA, Paresh
2 The Cottages, Anytown XY8 9JG
Liberal Democrat ☐

CRANLEY, Alana
4 The Walk, Anytown XY9 5JJ
Green Party ☐

EDGBASTON, Richard
(address in the Birmingham Northfield Constituency)
The Common Good Party ☐

GUNNIL-WALKER, Roger
33 The Lane, Anytown XY6 3GD
The Labour Party Candidate ☐

SMITH, Catherine Angelina
21 The Grove, Anytown XY2 5JP
Independent ☐

SMITH, Keith James
3 The Road, Anytown XY3 4JN
The Conservative Party Candidate ☐

ZANUCK, George Henry
17 The Parade Anytown XY9 5KP
The United Kingdom Independence Party Candidate ☐

17) The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Ballot Paper) Regulations. 2015. http://www.legislation.gov.uk/ukdsi/2015/9780111126998/contents (검색일 2019.10.11.)

2. 미 국 18)

SAMPLE BALLOT

OFFICIAL BALLOT
GENERAL ELECTION
November 06, 2018
TULSA COUNTY, OKLAHOMA

PRECINCT 720085-REGNP

Page 1 / 2

TO VOTE:
FILL IN THE BOX NEXT TO YOUR CHOICE(S) LIKE THIS:
Correct Incorrect

STRAIGHT PARTY
A straight party vote is a vote for all candidates of that party in partisan races.

STRAIGHT PARTY VOTING
(Vote for One)
LIBERTARIAN
REPUBLICAN
DEMOCRATIC

STATE OFFICERS

FOR GOVERNOR
(Vote for One)
CHRIS POWELL LIBERTARIAN
KEVIN STITT REPUBLICAN
DREW EDMONDSON DEMOCRAT

FOR LIEUTENANT GOVERNOR
(Vote for One)
MATT PINNELL REPUBLICAN
ANASTASIA A. PITTMAN DEMOCRAT
IVAN HOLMES INDEPENDENT

FOR STATE AUDITOR AND INSPECTOR
(Vote for One)
JOHN YEUTTER LIBERTARIAN
CINDY BYRD REPUBLICAN

FOR ATTORNEY GENERAL
(Vote for One)
MIKE HUNTER REPUBLICAN
MARK MYLES DEMOCRAT

FOR STATE TREASURER
(Vote for One)
RANDY McDANIEL REPUBLICAN
CHARLES de COUNE INDEPENDENT

FOR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Vote for One)
JOY HOFMEISTER REPUBLICAN
JOHN COX DEMOCRAT
LARRY HUFF INDEPENDENT

FOR COMMISSIONER OF LABOR
(Vote for One)
LESLIE OSBORN REPUBLICAN
FRED DORRELL DEMOCRAT
BRANDT DISMUKES INDEPENDENT

FOR INSURANCE COMMISSIONER
(Vote for One)
GLEN MULREADY REPUBLICAN
KIMBERLY FOBBS DEMOCRAT

FOR CORPORATION COMMISSIONER
(Vote for One)
BOB ANTHONY REPUBLICAN
ASHLEY NICOLE McCRAY DEMOCRAT
JACKIE SHORT INDEPENDENT

CONGRESSIONAL OFFICERS

FOR UNITED STATES REPRESENTATIVE DISTRICT 01
(Vote for One)
KEVIN HERN REPUBLICAN
TIM GILPIN DEMOCRAT

LEGISLATIVE, DISTRICT, AND COUNTY OFFICERS

FOR STATE REPRESENTATIVE DISTRICT 70
(Vote for One)
CAROL M. BUSH REPUBLICAN
JJ BURNAM DEMOCRAT

FOR DISTRICT ATTORNEY DISTRICT 14
(Vote for One)
STEVE KUNZWEILER REPUBLICAN
JENNY PROEHL-DAY DEMOCRAT

JUDICIAL OFFICERS

FOR DISTRICT JUDGE DISTRICT 14, OFFICE 1
(Vote for One)
CAROLINE WALL
TOM SAWYER

FOR DISTRICT JUDGE DISTRICT 14, OFFICE 3
(Vote for One)
TRACY PRIDDY
JIM CAPUTO

FOR DISTRICT JUDGE DISTRICT 14, OFFICE 9
(Vote for One)
CHRIS BRECHT
LINDA G. MORRISSEY

FOR DISTRICT JUDGE DISTRICT 14, OFFICE 12
(Vote for One)
MARTHA RUPP CARTER
RICK D. WESTCOTT

FOR ASSOCIATE DISTRICT JUDGE TULSA COUNTY
(Vote for One)
CLIFF SMITH
BRIAN A. CRAIN

JUDICIAL RETENTION
Vote separately on each justice or judge; they are not running against each other.

JUSTICES OF THE OKLAHOMA SUPREME COURT

DISTRICT 2
Shall PATRICK WYRICK of the OKLAHOMA SUPREME COURT be retained in office?
YES
NO

DISTRICT 3
Shall NOMA D. GURICH of the OKLAHOMA SUPREME COURT be retained in office?
YES
NO

DISTRICT 4
Shall YVONNE KAUGER of the OKLAHOMA SUPREME COURT be retained in office?
YES
NO

DISTRICT 7
Shall JAMES E. EDMONDSON of the OKLAHOMA SUPREME COURT be retained in office?
YES
NO

JUDGES OF THE OKLAHOMA COURT OF CRIMINAL APPEALS

DISTRICT 1
Shall DANA KUEHN of the OKLAHOMA COURT OF CRIMINAL APPEALS be retained in office?
YES
NO

DISTRICT 4
Shall SCOTT ROWLAND of the OKLAHOMA COURT OF CRIMINAL APPEALS be retained in office?
YES
NO

DISTRICT 5
Shall DAVID B. LEWIS of the OKLAHOMA COURT OF CRIMINAL APPEALS be retained in office?
YES
NO

JUDGES OF THE OKLAHOMA COURT OF CIVIL APPEALS

DISTRICT 4 - OFFICE 1
Shall BARBARA GREEN SWINTON of the OKLAHOMA COURT OF CIVIL APPEALS be retained in office?
YES
NO

SAMPLE

SAMPLE BALLOT

OFFICIAL BALLOT
GENERAL ELECTION
November 06, 2018
TULSA COUNTY, OKLAHOMA

PRECINCT 720085-REGNP

Page 2 / 2

DISTRICT 5 - OFFICE 1
Shall KENNETH L. BUETTNER of the OKLAHOMA COURT OF CIVIL APPEALS be retained in office?
YES
NO

DISTRICT 5 - OFFICE 2
Shall ROBERT BOBBY BELL of the OKLAHOMA COURT OF CIVIL APPEALS be retained in office?
YES
NO

DISTRICT 6 - OFFICE 1
Shall E. BAY MITCHELL, III of the OKLAHOMA COURT OF CIVIL APPEALS be retained in office?
YES
NO

DISTRICT 6 - OFFICE 2
Shall BRIAN JACK GOREE of the OKLAHOMA COURT OF CIVIL APPEALS be retained in office?
YES
NO

STATE QUESTIONS

STATE QUESTION NO. 793 INITIATIVE PETITION NO. 415
This measure adds a new Section 3 to Article 20 of the Oklahoma Constitution. Under the new Section, no law shall infringe on optometrists' or opticians' ability to practice within a retail mercantile establishment, discriminate against optometrists or opticians based on the location of their practice, or require external entrances for optometric offices within retail mercantile establishments. No law shall infringe on retail mercantile establishments' ability to sell prescription optical goods and services. The Section allows the Legislature to restrict optometrists from performing surgeries within retail mercantile establishments, limit number of locations at which an optometrist may practice, maintain optometric licensing requirements, require optometric offices to be in a separate room of a retail mercantile establishment, and impose health and safety standards. It does not prohibit optometrists and opticians from agreeing with retail mercantile establishments to limit their practice. Laws conflicting with this Section are void. The Section defines 'laws,' 'optometrist,' 'optician,' 'optical goods and services,' and 'retail mercantile establishment.'
FOR THE PROPOSAL - YES
AGAINST THE PROPOSAL - NO

STATE QUESTION NO. 794 LEGISLATIVE REFERENDUM NO. 371
This measure amends the provision of the Oklahoma Constitution that guarantees certain rights for crime victims. These rights would now be protected in a manner equal to the defendant's rights. The measure would also make changes to victims' rights, including:
(1) expanding the court proceedings at which a victim has the right to be heard;
(2) adding a right to reasonable protection;
(3) adding a right to proceedings free from unreasonable delay;
(4) adding a right to talk with the prosecutor; and
(5) allowing victims to refuse interview requests from the defendant's attorney without a subpoena.
The Oklahoma Constitution currently grants victims' rights to crime victims and their family members. This measure would instead grant these rights to crime victims and those directly harmed by the crime. Victims would no longer have a constitutional right to know the defendant's location following arrest, during prosecution, and while sentenced to confinement or probation, but would have the right to be notified of the defendant's release or escape from custody.
Under this measure, victims would have these rights in both adult and juvenile proceedings. Victims would be able to assert these rights in court and the court would be required to act promptly.
FOR THE PROPOSAL - YES
AGAINST THE PROPOSAL - NO

STATE QUESTION NO. 798 LEGISLATIVE REFERENDUM NO. 372
This measure will add a provision to the Oklahoma Constitution to change the manner in which the Governor and Lieutenant Governor are elected. Currently, voters cast one vote for their preferred candidate for Governor and a separate vote for their preferred candidate for Lieutenant Governor. Under this measure, if approved, candidates for Governor and Lieutenant Governor from the same party will run together on a single ticket and voters will cast one vote for their preferred ticket.
The measure requires the Legislature to establish procedures for the joint nomination and election of candidates for Governor and Lieutenant Governor. If passed, this new election format will be used beginning in the 2026 general election cycle.
FOR THE PROPOSAL - YES
AGAINST THE PROPOSAL - NO

STATE QUESTION NO. 800 LEGISLATIVE REFERENDUM NO. 373
This measure would add a provision to the Oklahoma Constitution creating a new trust fund. This fund would consist of (i) legislative appropriations, (ii) deposits from other sources, and (iii) investment income.
Beginning July 1, 2020, 5% of revenues from the gross production tax on oil and gas will be deposited into the fund as well. The percentage of gross production tax revenues deposited into the fund will then increase by 0.2% per year.
Monies in the fund will be invested by the State Treasurer. The fund is exempt from constitutional restrictions on the State owning stock. The State Treasurer is required to make prudent investment decisions and diversify the fund's investments to minimize risk.
After July 1, 2020, 4% of the fund's principal will be deposited each year into the State's General Revenue Fund. Principal will be calculated by using an average of the fund's annual principal for the five years before the deposit. No more than 5% of the Fund may be used to pay interest on bonds issu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The fund will be called the Oklahoma Vision Fund.
FOR THE PROPOSAL - YES
AGAINST THE PROPOSAL - NO

STATE QUESTION NO. 801 LEGISLATIVE REFERENDUM NO. 374
This measure would provide a means for voters to allow school districts to expand the permissible uses of ad valorem tax revenues to include school operations.
The Oklahoma Constitution limits the rate of ad valorem taxation. However, it permits voters in a school district to approve an increase of up to five mills ($5.00 per $1,000.00 of the assessed value of taxable property) over this limit for the purpose of raising money for a school district building fund.
Currently, monies from this building fund may only be used to build, repair, or remodel school buildings and purchase furniture. This measure would amend the Constitution to permit voters to approve such a tax to be used for school operations deemed necessary by the school district, in addition to the purposes listed above.
FOR THE PROPOSAL - YES
AGAINST THE PROPOSAL - NO

SAMPLE

18) WAGONER COUNTY. AMERICAN-TRIBUNE. https://www.tulsaworld.com/communities/wagoner/news/get-your-sample-ballot-for-tuesday-s-general-election/article_f8bb6fcb-3680-51f7-9577-3e2da2638deb.html (검색일 2019.10.11.)

3. 프랑스 19)

Élections législatives - 25 mai / 1er juin 1997 - 1e circonscription de Paris

Les Verts

Yves CONTASSOT
Maire adjoint du 3e, responsable marketing

suppléant : **Sylvie LAURENT-BÉGIN**
Chargée de mission, militante associative

République Française
Département des Yvelines - 9e circonscription
Elections législatives des 25 mai et 1er juin 1997

Henri CUQ
DÉPUTÉ SORTANT
VICE-PRÉSIDENT DU CONSEIL GÉNÉRAL

Candidat d'union RPR - UDF

Suppléant :
Pierre AMOUROUX
VICE-PRÉSIDENT DU CONSEIL GÉNÉRAL - MAIRE D'ÉPÔNE

19) Soir Américain
https://transatlantiques.wordpress.com/2013/05/18/ce-que-contient-lenveloppe-electorale/ (검색일 2019.10.11.)

4. 독 일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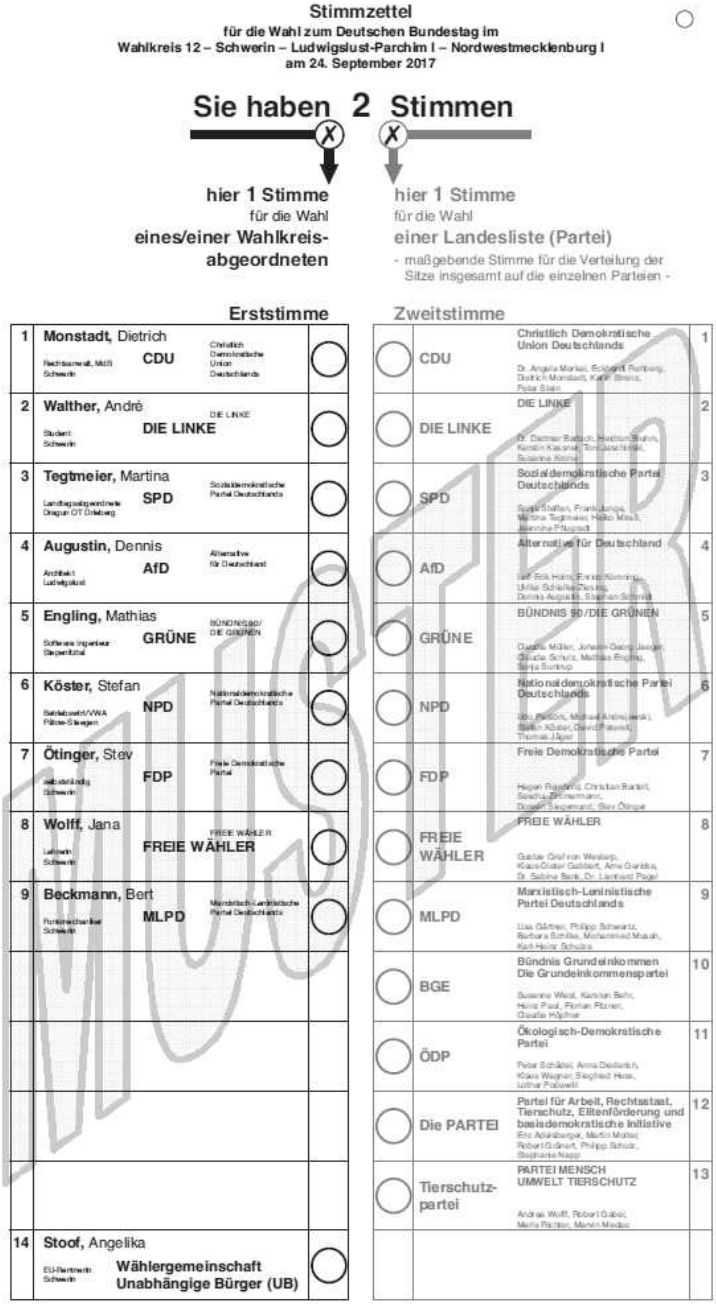

Stimmzettel
für die Wahl zum Deutschen Bundestag im
Wahlkreis 12 – Schwerin – Ludwigslust-Parchim I – Nordwestmecklenburg I
am 24. September 2017

Sie haben 2 Stimmen

hier 1 Stimme für die Wahl **eines/einer Wahlkreis-abgeordneten**

hier 1 Stimme für die Wahl **einer Landesliste (Partei)**
- maßgebende Stimme für die Verteilung der Sitze insgesamt auf die einzelnen Parteien -

	Erststimme			Zweitstimme		
1	**Monstadt,** Dietrich Rechtsanwalt, MdB Schwerin	**CDU**	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CDU	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Dr. Angela Merkel, Eckhardt Rehberg, Dietrich Monstadt, Karin Strenz, Peter Stein	1
2	**Walther,** André Student Schwerin	**DIE LINKE**	DIE LINKE	DIE LINKE	DIE LINKE Dr. Dietmar Bartsch, Heidrun Bluhm, Kerstin Kassner, Tom Jantschek, Susanne Konrad	2
3	**Tegtmeier,** Martina Landtagsabgeordnete Dragun OT Drieberg	**SPD**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igrid Steffen, Frank Junge, Martina Tegtmeier, Heiko Maas, Jeannine Pflugradt	3
4	**Augustin,** Dennis Architekt Ludwigslust	**AfD**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AfD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Leif-Erik Holm, Enrico Komning, Ulrike Schielke-Ziesing, Dennis Augustin, Stephan Schmidt	4
5	**Engling,** Mathias Software Ingenieur Sagenitzbal	**GRÜNE**	BÜNDNIS 90/ DIE GRÜNEN	GRÜNE	BÜNDNIS 90/DIE GRÜNEN Claudia Müller, Johann-Georg Jaeger, Claudia Schulz, Mathias Engling, Sonja Suntrup	5
6	**Köster,** Stefan Betriebswirt/VWA Pätow-Steegen	**NPD**	Nation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NPD	Nation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Udo Pastörs, Michael Andrejewski, Stefan Köster, David Petersen, Thomas Jäger	6
7	**Ötinger,** Stev selbstständig Schwerin	**FDP**	Freie Demokratische Partei	FDP	Freie Demokratische Partei Hagen Reinhold, Christian Burkert, Sascha Zimmermann, Dominik Bergemann, Stev Ötinger	7
8	**Wolff,** Jana Lehrerin Schwerin	**FREIE WÄHLER**	FREIE WÄHLER	FREIE WÄHLER	FREIE WÄHLER Gustav Graf von Westarp, Klaus-Dieter Gabbert, Anke Gardeike, Dr. Sabine Berk, Dr. Lienhard Pagel	8
9	**Beckmann,** Bert Funktionsträger Schwerin	**MLPD**	Marxistisch-Leninistische Partei Deutschlands	MLPD	Marxistisch-Leninistische Partei Deutschlands Lisa Gärtner, Philipp Schwartz, Barbara Schöne, Mohammed Musah, Karl-Heinz Schöne	9
				BGE	Bündnis Grundeinkommen Die Grundeinkommenspartei Susanne Wiest, Karsten Behr, Heinz Paul, Florian Pörner, Claudia Höpfner	10
				ÖDP	Ökologisch-Demokratische Partei Peter Schäber, Anna Diederich, Klaus Wagner, Siegfried Hess, Lothar Podowill	11
				Die PARTEI	Partei für Arbeit, Rechtsstaat, Tierschutz, Elitenförderung und basisdemokratische Initiative Eric Adelsberger, Martin Moller, Robert Gubner, Philipp Schulz, Stephanie Napp	12
				Tierschutz-partei	PARTEI MENSCH UMWELT TIERSCHUTZ Andrea Wolff, Robert Gabel, Maria Richter, Marvin Medac	13
14	**Stoof,** Angelika EU-Rentnerin Schwerin	**Wählergemeinschaft Unabhängige Bürger (UB)**				

20) RFI. http://en.rfi.fr/europe/20170917-what-s-stake-next-week-s-crucial-german-elections (검색일 2019.10.11.)

5. 일 본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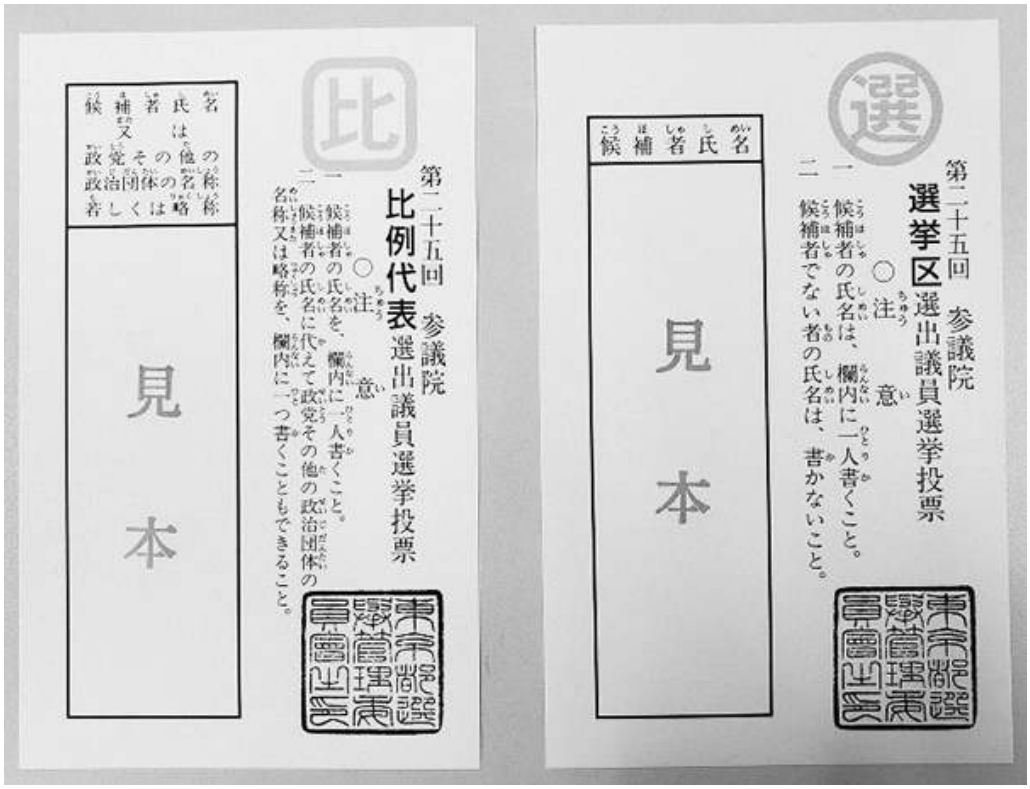

21) 마이니치. 2019.7.
https://mainichi.jp/senkyo/articles/20190717/k00/00m/010/166000 (검색일 2019.10.22.)

6. 스페인

- 상원의원[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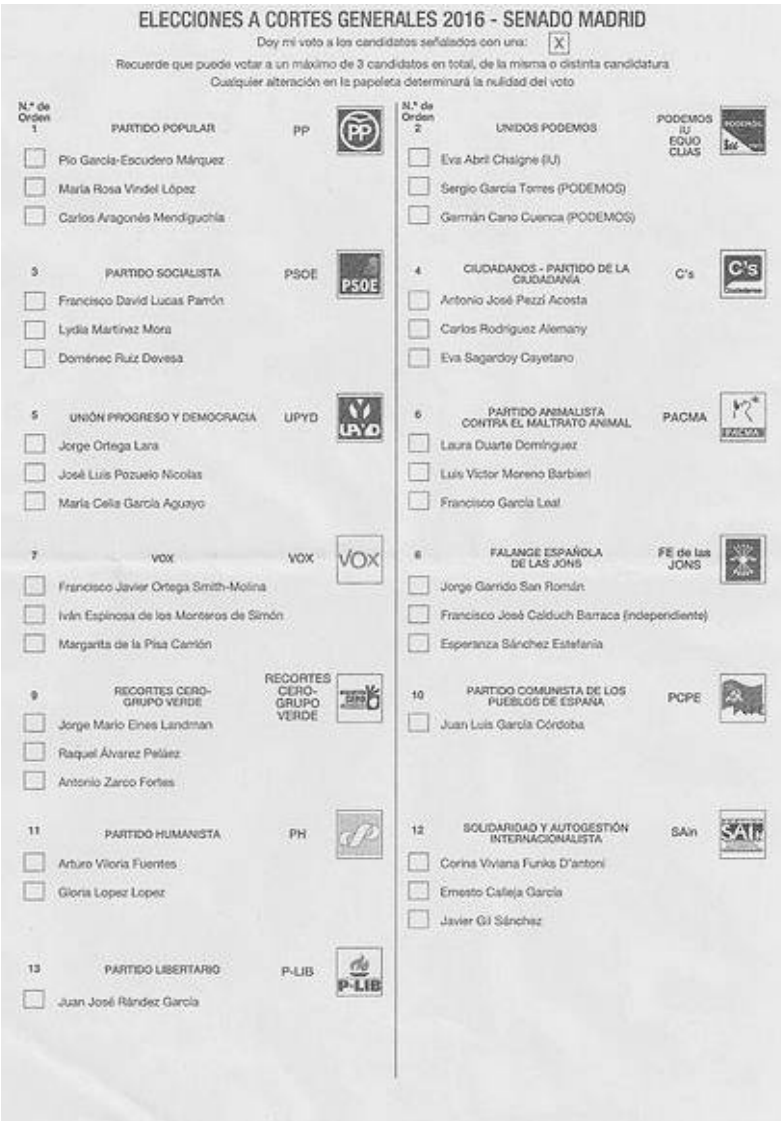

ELECCIONES A CORTES GENERALES 2016 - SENADO MADRID

Doy mi voto a los candidatos señalados con una: X

Recuerde que puede votar a un máximo de 3 candidatos en total, de la misma o distinta candidatura

Cualquier alteración en la papeleta determinará la nulidad del voto

N.º de Orden 1 — PARTIDO POPULAR — PP
- Pío García-Escudero Márquez
- María Rosa Vindel López
- Carlos Aragonés Mendiguchía

N.º de Orden 2 — UNIDOS PODEMOS — PODEMOS IU EQUO CUAS
- Eva Abril Chaigne (IU)
- Sergio García Torres (PODEMOS)
- Germán Cano Cuenca (PODEMOS)

3 — PARTIDO SOCIALISTA — PSOE
- Francisco David Lucas Parrón
- Lydia Martínez Mora
- Doménec Ruiz Devesa

4 — CIUDADANOS - PARTIDO DE LA CIUDADANÍA — C's
- Antonio José Pezzi Acosta
- Carlos Rodríguez Alemany
- Eva Sagardoy Cayetano

5 — UNIÓN PROGRESO Y DEMOCRACIA — UPYD
- Jorge Ortega Lara
- José Luis Pozuelo Nicolás
- María Celia García Aguayo

6 — PARTIDO ANIMALISTA CONTRA EL MALTRATO ANIMAL — PACMA
- Laura Duarte Domínguez
- Luis Víctor Moreno Barbieri
- Francisco García Leal

7 — VOX — VOX
- Francisco Javier Ortega Smith-Molina
- Iván Espinosa de los Monteros de Simón
- Margarita de la Pisa Carrión

8 — FALANGE ESPAÑOLA DE LAS JONS — FE de las JONS
- Jorge Garrido San Román
- Francisco José Calduch Barraca (independiente)
- Esperanza Sánchez Estefanía

9 — RECORTES CERO-GRUPO VERDE — RECORTES CERO-GRUPO VERDE
- Jorge Mario Eines Landman
- Raquel Álvarez Peláez
- Antonio Zarco Fortes

10 — PARTIDO COMUNISTA DE LOS PUEBLOS DE ESPAÑA — PCPE
- Juan Luis García Córdoba

11 — PARTIDO HUMANISTA — PH
- Arturo Viloria Fuentes
- Gloria López López

12 — SOLIDARIDAD Y AUTOGESTIÓN INTERNACIONALISTA — SAIn
- Corina Viviana Funks D'antoni
- Ernesto Calleja García
- Javier Gil Sánchez

13 — PARTIDO LIBERTARIO — P-LIB
- Juan José Rández García

22) el pais. 2019.
https://elpais.com/politica/2019/10/02/actualidad/1570014693_446597.html (검색일 2019.10.11.)

- 하원의원23)

23) Wikipedia. 2015년 총선.
https://es.wikipedia.org/wiki/Elecciones_en_Espa%C3%B1a#/media/Archivo:Papeletas_electorales_Cortes_Generales_2015_C%C3%A1diz.jpg (검색일 2019.10.11.)

7. 스웨덴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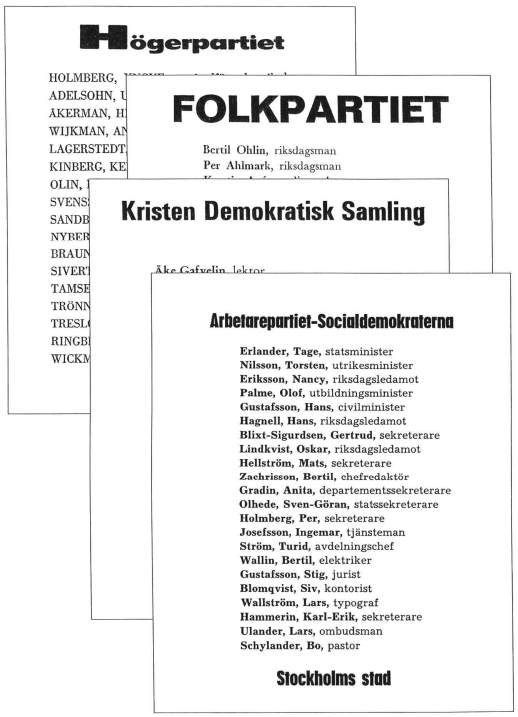

24) Wikipedia. ‘Elections in Sweden’
https://en.wikipedia.org/wiki/Elections_in_Sweden (검색일 2019.10.11.)

8. 스위스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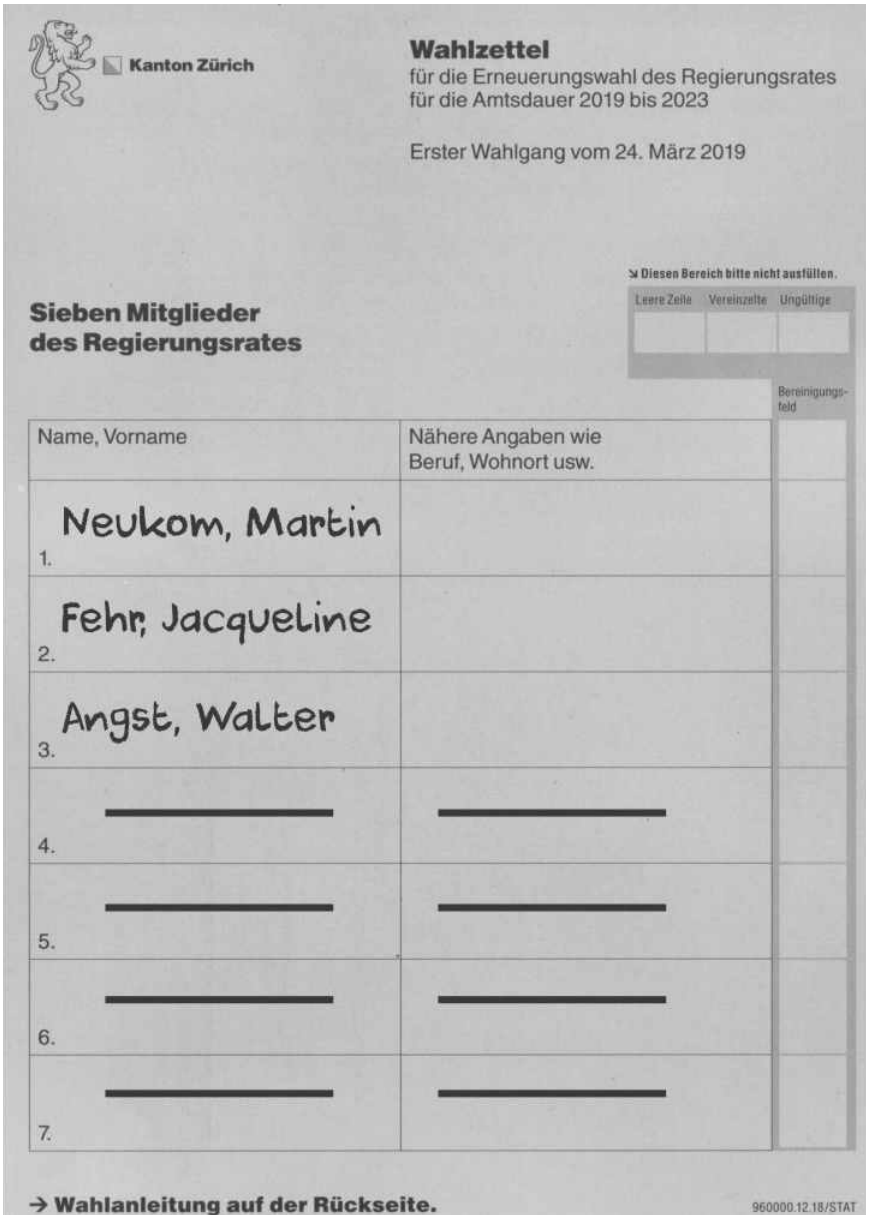

Kanton Zürich

Wahlzettel
für die Erneuerungswahl des Regierungsrates
für die Amtsdauer 2019 bis 2023

Erster Wahlgang vom 24. März 2019

Diesen Bereich bitte nicht ausfüllen.

Leere Zeile	Vereinzelte	Ungültige

Sieben Mitglieder des Regierungsrates

Name, Vorname	Nähere Angaben wie Beruf, Wohnort usw.	Bereinigungsfeld
1. Neukom, Martin		
2. Fehr, Jacqueline		
3. Angst, Walter		
4.		
5.		
6.		
7.		

→ **Wahlanleitung auf der Rückseite.**

960000.12.18/STAT

25) CANTON ZURICH.
https://gruene-zh.ch/wahlanleitung-wie-waehle-ich-richtig (검색일 2019.10.11)

9. 캐나다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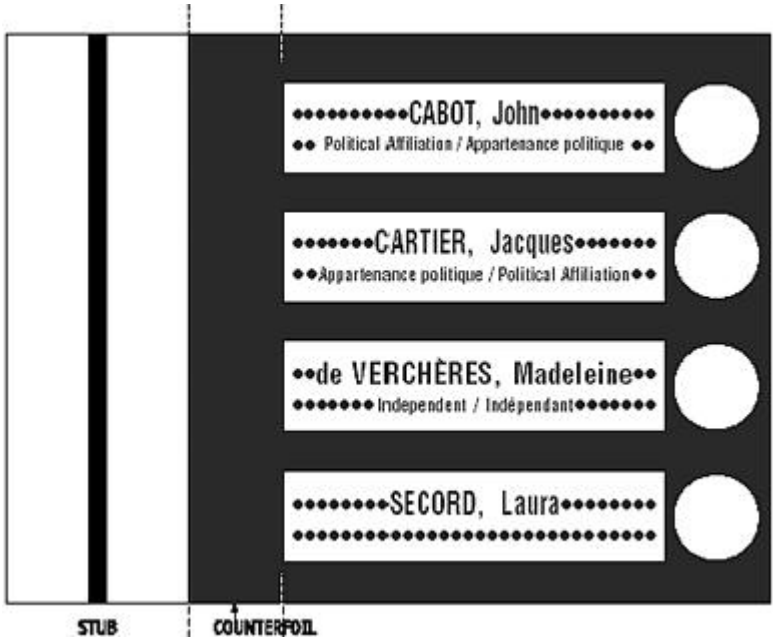

26) 캐나다 선거위원회.
http://www.elections.ca/yth/images/sample_ballot.gif (검색일 2019.6.11.)

10. 호 주

- 상원의원[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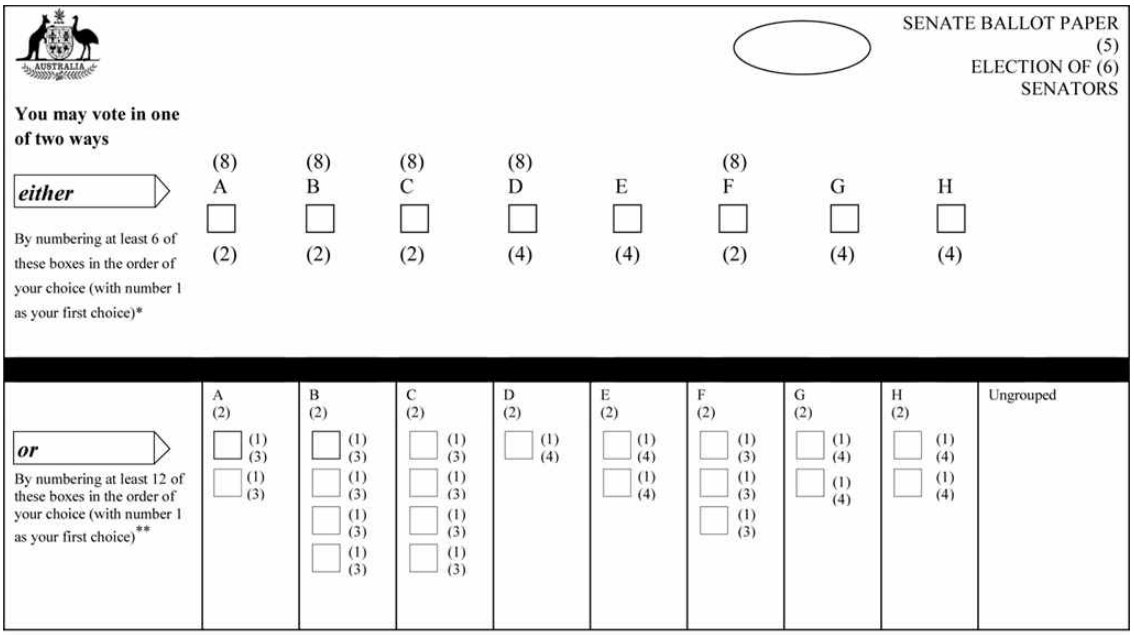

SENATE BALLOT PAPER
(5)
ELECTION OF (6)
SENATORS

You may vote in one of two ways

either

By numbering at least 6 of these boxes in the order of your choice (with number 1 as your first choice)*

A	B	C	D	E	F	G	H
(8)	(8)	(8)	(8)		(8)		
☐	☐	☐	☐	☐	☐	☐	☐
(2)	(2)	(2)	(4)	(4)	(2)	(4)	(4)

or

By numbering at least 12 of these boxes in the order of your choice (with number 1 as your first choice)**

A (2)	B (2)	C (2)	D (2)	E (2)	F (2)	G (2)	H (2)	Ungrouped
☐ (1) (3)	☐ (1) (3)	☐ (1) (3)	☐ (1) (4)	☐ (1) (4)	☐ (1) (3)	☐ (1) (4)	☐ (1) (4)	
☐ (1) (3)	☐ (1) (3)	☐ (1) (3)		☐ (1) (4)	☐ (1) (3)	☐ (1) (4)	☐ (1) (4)	
	☐ (1) (3)	☐ (1) (3)			☐ (1) (3)			
	☐ (1) (3)	☐ (1) (3)						

(1) Here insert name of a candidate.
(2) Here insert name of a registered political party or composite name of registered political parties if to be printed.
(3) Here insert the name of a registered political party if to be printed.
(4) Here insert name of a registered political party or word 'Independent' if to be printed.
(5) Here insert name of State or Territory and year of election.
(6) Here insert number of vacancies.
(8) Here insert the logo of a registered political party if to be printed.
* If the ballot paper has 6 or fewer squares above the line, replace the instruction with "By numbering these boxes in the order of your choice (with number 1 as your first choice)".
** If the ballot paper has 12 or fewer squares below the line, replace the instruction with "By numbering these boxes in the order of your choice (with number 1 as your first choice)".

27) 호주의회. https://www.aph.gov.au/About_Parliament/Senate/Powers_practice_n_procedures/Odgers_Australian_Senate_Practice/Chapter_04 (검색일 2019.10.11.)

- 하원의원[28)]

South Australia

Issuing Officer Initials

Ballot Paper

Election of one Member for the House of Assembly

DISTRICT

Number the squares from 1 to 5 in the order of your choice.

You are not legally obliged to mark the ballot paper.

☐	CANDIDATE Name	Political Party or Independent
☐	CANDIDATE Name	Political Party or Independent
☐	CANDIDATE Name	Political Party or Independent
☐	CANDIDATE Name	Political Party or Independent
☐	CANDIDATE Name	Political Party or Independent

After voting, fold the ballot paper and place it in the ballot box or declaration envelope.

28) 호주선거위원회.
https://www.ecsa.sa.gov.au/voting/how-to-complete-your-ballot-papers (검색일 2019.10.11.)

11. 오스트리아 29)

Amtlicher Stimmzettel
für die
Nationalratswahl am 15. Oktober 2017
Regionalwahlkreis 7A - Innsbruck

Liste Nr.	1	2	3	4	5 leer	6	7	8	9	10	11
Partei-bezeichnung	Sozialdemokratische Partei Österreichs	Liste Sebastian Kurz – die neue Volkspartei	Freiheitliche Partei Österreichs	Die Grünen – Die Grüne Alternative		NEOS – Das Neue Österreich gemeinsam mit Irmgard Griss, Bürgerinnen und Bürger für Freiheit und Verantwortung	Freie Liste Österreich & FPS Liste Dr. Karl Schnell	Liste Roland Düringer – Meine Stimme GILT	Kommunistische Partei Österreichs und Plattform Plus – offene Liste	Liste Peter Pilz	Die Weissen – Das Recht geht vom Volk aus. Wir alle entscheiden in Österreich. Die Volksbewegung.
Kurz-bezeichnung	**SPÖ**	**ÖVP**	**FPÖ**	**GRÜNE**		**NEOS**	**FLÖ**	**GILT**	**KPÖ**	**PILZ**	**WEIßE**
Für die gewählte Partei im Kreis ein X einsetzen	○	○	○	○		○	○	○	○	○	○
VORZUGSSTIMME – BUNDESWAHLVORSCHLAG Für die Vergabe einer Vorzugsstimme an einen Bewerber oder eine Bewerberin der Bundesparteiliste der gewählten Partei die Bezeichnung des Bewerbers oder der Bewerberin und/oder Reihungsnummer der zweiten Bundesparteiliste in die entsprechende Spalte einsetzen.											
VORZUGSSTIMME – LANDESWAHLKREIS Für die Vergabe einer Vorzugsstimme an einen Bewerber oder eine Bewerberin der Landesparteiliste der gewählten Partei die Bezeichnung des Bewerbers oder der Bewerberin (Name und/oder Reihungsnummer der zweiten Landesparteiliste) in die entsprechende Spalte einsetzen.											
VORZUGSSTIMME – REGIONALWAHLKREIS Für die Vergabe einer Vorzugsstimme an einen Bewerber oder eine Bewerberin der Regionalparteiliste der gewählten Partei im Kreis links vom Namen ein X einsetzen.	1 **MAG. YILDIRIM** ○ Selma, 1969	1 **THALER** ○ Barbara, 1982	1 **HAAGER** ○ Christian, 1946	1 **DR. INSAM** ○ Herbert, 1957		1 **MAG. SEIDL** ○ Julia, 1991	1 **ING. PIRCHER** ○ Jörg, 1954	1 **DORNER** ○ Wolfgang, 1975	1 **MMAG. STEIXNER** ○ Roland, 1979	1 **CHELUCCI** ○ Maria, 1970	1 **MAG. GABER** ○ Andreas, 1977
	2 **MIMM** ○ Dennis Christian, 1983	2 **MAG. FALCH** ○ Reinhold, 1948	2 **DENGG** ○ Andrea, 1968	2 **MAG. SCHWARZL** ○ Ursula Maria, 1960		2 **DR. KITTINGER** ○ Christine, 1968	2 **MARX** ○ Harald, 1966	2 **WELSCH** ○ Monika Momo Sophia, 1996	2 **PASTYRIK** ○ Gerda, 1965	2 **KINDLER** ○ Brigitte, 1969	
	3 **SCHIFFER** ○ Gabriele, 1966	3 **MADLMAYR** ○ Verena, 1982	3 **KURZ** ○ Maximilian, 1995	3 **DR. KRAMMER-STARK** ○ Renate, 1971		3 **MAG. KLINGLER-NEWESELY** ○ Dagmar Margit, 1968	3 **KOS** ○ Rainer, 1949		3 **SINZ** ○ Wolfgang, 1986	3 **DR. BENZER** ○ Arnulf, 1954	
	4 **GASSER** ○ Stefan Erwin Rudolf, 1983	4 **HÖCK** ○ Christian, 1965	4 **GREGOIRE** ○ Deborah, 1988	4 **LECHLEITNER** ○ Thomas, 1985		4 **LIEBHART** ○ Roland, 1969	4 **PILINGER** ○ Edgar, 1968		4 **OBERAUER** ○ Christine, 1974	4 **KUTTNER** ○ Astrid, 1958	
	5 **HÖTZL** ○ Jennifer, 1985	5 **GRUBISIC** ○ Marina, 1983	5 **KUNST** ○ Andreas, 1963	5 **NEßLER** ○ Barbara, 1991		5 **MAG. PALLHUBER** ○ Patrick, 1985	5 **PRANTL** ○ Elisa, 1991		5 **FRITZ** ○ Martin, 1982	5 **DR. GÜRTLER** ○ Werner, 1961	
	6 **BRENNSTEINER** ○ Rudolf, 1959	6 **RENK** ○ Markus, 1969	6 **HOLAUS** ○ Heidemarie, 1978	6 **DAXNER** ○ Sebastian, 1989		6 **RALSER** ○ Emanuel, 1983	6 **ERHART** ○ Walter, 1960				
	7 **ALLNEIDER** ○ Andrea Cindy, 1965	7 **STAFLER** ○ Veronika, 1984	7 **REICHHALTER** ○ Peter, 1983	7 **HÖRMANN** ○ Angelika, 1953		7 **DR. ALGE** ○ Wieland, 1970	7 **GSTREINTHALER** ○ Andrea, 1956				
	8 **BUCHACHER** ○ Helmut Josef, 1957	8 **BERLOFFA** ○ Dominik, 1992	8 **DENZ** ○ Astrid, 1957	8 **MAG. SCHMID** ○ Julia Monika, 1983		8 **NIEDERMOSER** ○ Jakob, 1995					
	9 **MMAG. DR. YILDIZ** ○ Bedha, 1967	9 **MAG. DR. MOLLING** ○ Herlinde, 1935	9 **MAG. DENZ** ○ Elmar, 1939	9 **MAG. FRITZ** ○ Gerhard, 1949		9 **MAG. WINDBICHLER** ○ Bernhard, 1972					
	10 **KUEN** ○ Heinrich, 1949	10 **APPLER** ○ Christoph, 1985	10 **DIPL. ING. ACHHORNER** ○ Evelyn, 1965	10 **MAG. HEIS** ○ Katrin, 1985		10 **STEMBERGER** ○ Anton, 1973					
	11 **FAUSTER** ○ Sabine Erika Anna, 1969	11 **KOBLINGER** ○ Madlen, 1993	11 **MAG. ABWERZGER** ○ Markus, 1975	11 **WILLI** ○ Annika Carina, 1993		11 **KOLB** ○ Simon, 1983					
	12 **PEER** ○ Franz Josef, 1948	12 **POCK** ○ Peter, 1969	12 **FEDERSPIEL** ○ Rudolf, 1949	12 **ONAY** ○ Mesut, 1977		12 **SCHUMACHER** ○ Lukas, 1992					

29) 오스트리아 내무부.
https://www.bmi.gv.at/412/Nationalratswahlen/ (검색일 2019.10.11.)

12. 벨기에 30)

30) 벨기에 내무부(Service public fédéral Intérieur, Direction des Elections).
https://elections.fgov.be/sites/default/files/inline-files/BW_Chambre-2019_Mise-en-page-1.pdf (검색일 2019.10.21.)

13. 체 코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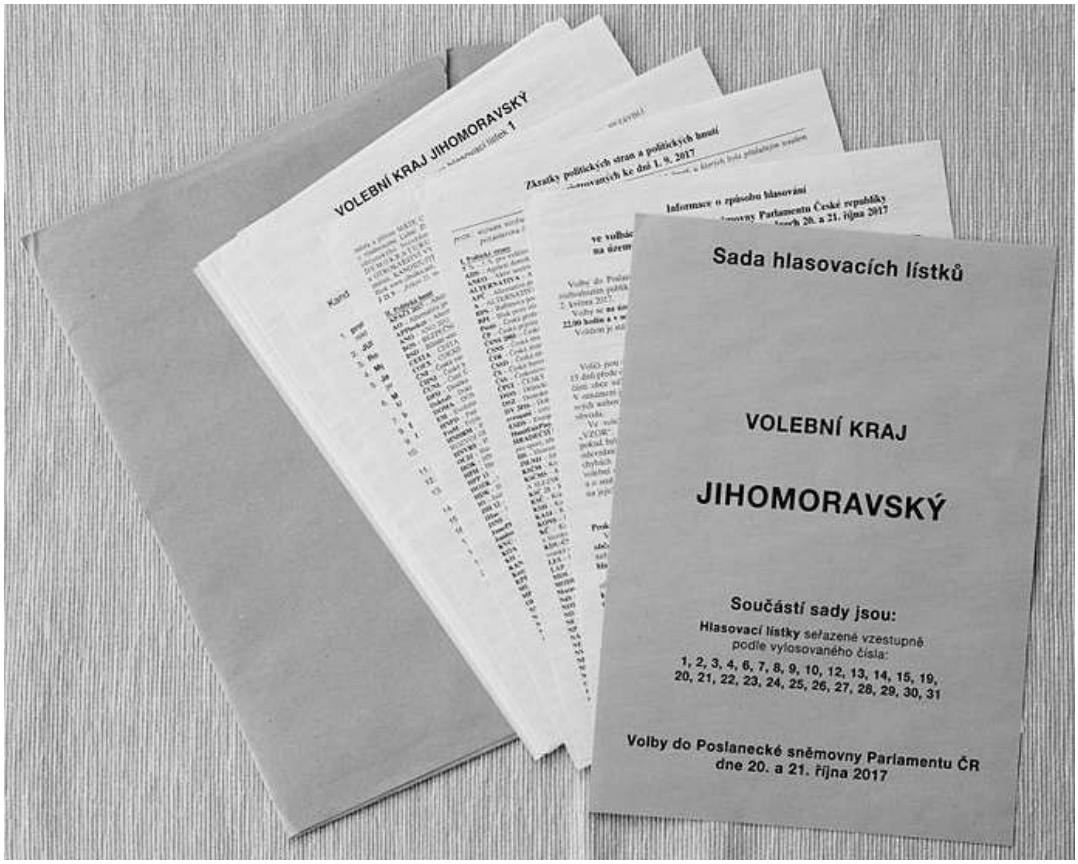

31) Wikipedia. https://cs.wikipedia.org/wiki/Soubor:Volby_2017_-_sada_hlasovac%C3%ADch_l%C3%ADstk%C5%AF_JMK_(3568).jpg (검색일 2019.10.22.)

14. 칠 레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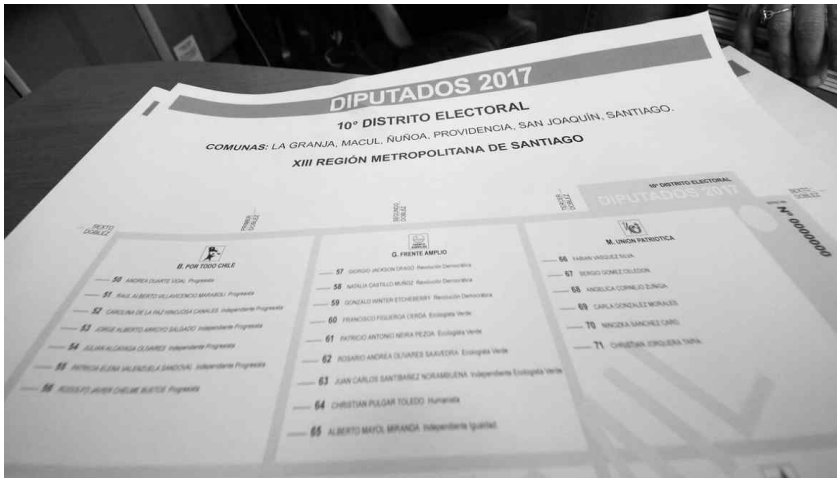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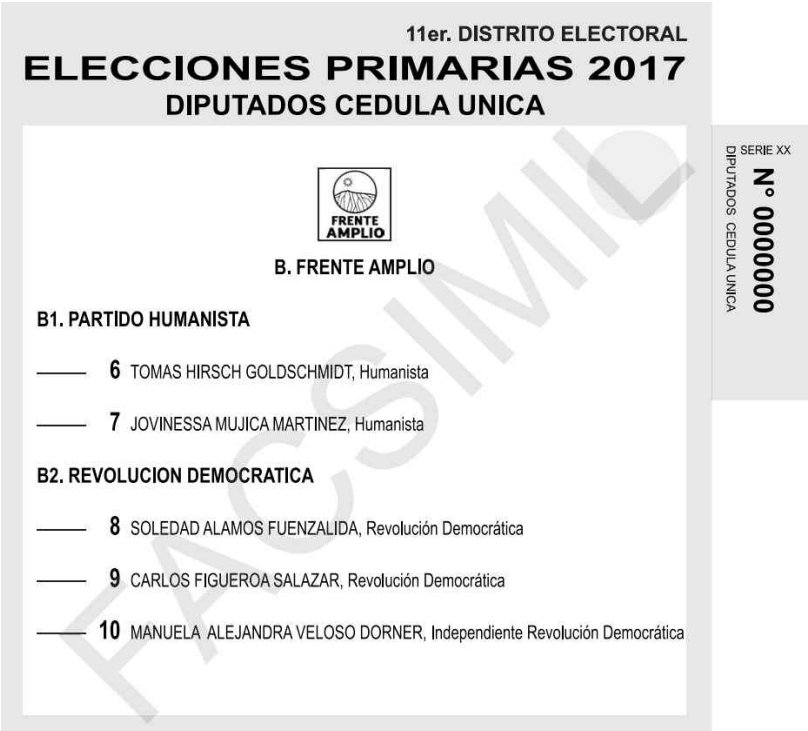

11er. DISTRITO ELECTORAL

ELECCIONES PRIMARIAS 2017

DIPUTADOS CEDULA UNICA

FRENTE AMPLIO

B. FRENTE AMPLIO

B1. PARTIDO HUMANISTA

—— 6 TOMAS HIRSCH GOLDSCHMIDT, Humanista

—— 7 JOVINESSA MUJICA MARTINEZ, Humanista

B2. REVOLUCION DEMOCRATICA

—— 8 SOLEDAD ALAMOS FUENZALIDA, Revolución Democrática

—— 9 CARLOS FIGUEROA SALAZAR, Revolución Democrática

—— 10 MANUELA ALEJANDRA VELOSO DORNER, Independiente Revolución Democrática

SERIE XX

N° 0000000

DIPUTADOS CEDULA UNICA

FACSIMIL

32) Wikemedia commons. '2017 chilean parliamentary electi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Category:Chilean_parliamentary_elections,_2017#/media/File:Cedula_Unica_Primarias_Diputados_2017.png (검색일 2019.10.22.)

15. 덴마크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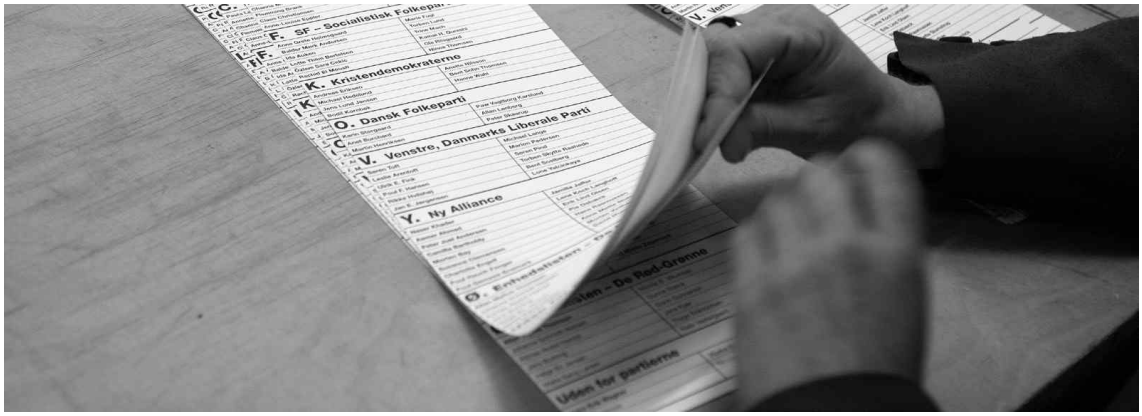

33) 덴마크내무부. 2011. ‘덴마크의 의회선거제도’ p.28.
http://elections.oim.dk/media/10505/parliamentary-system-dk.pdf (검색일 2019.10.11.)

16. 에스토니아 34)

34) 에스토니아선거위원회. 2019. 'Riigikogu election training for members of division committee' https://www.tallinn.ee/valimised/Koolitus-jaoskonnakomisjonidele-RK-2019 (검색일 2019.10.11.)

17. 핀란드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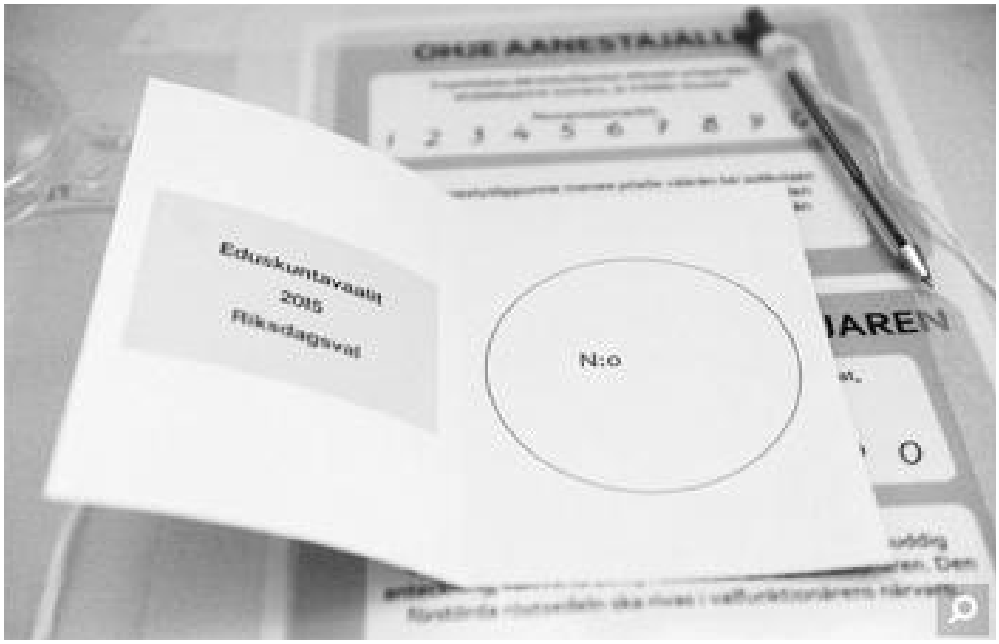

35) yle news.
https://yle.fi/uutiset/osasto/news/yle_news_explains_voting_in_finlands_parliamentary_election/10662472 (검색일 2019.10.22.)

18. 그리스 36)

36) Dreamstime.
https://es.dreamstime.com/imagen-de-archivo-editorial-grecia-de-septiembre-de-papeletas-electorales-del-pa-pol%C3%ADtico-griego-image59682844 (검색일 2019.10.22.)

19. 헝가리 37)

37) About Hungary.
http://abouthungary.hu/blog/heres-how-hungarys-electoral-system-works-and-why-it-was-changed-in-2011/ (검색일 2019.9.16.)

20. 아이슬란드 38)

38) Voanews. 2017.10.28. ‘Iceland Holds Parliamentary Elections as Nation Tries to Overcome Scandal’ https://www.voanews.com/europe/iceland-holds-parliamentary-elections-nation-tries-overcome-scandal (검색일 2019. 10.21.)

21. 아일랜드 39)

TREORACHA

1. Scríobh an figiúr 1 sa bhosca le hais an chéad iarthóra is rogha leat, scríobh an figiúr 2 sa bhosca le hais an iarthóra do dhara rogha, agus mar sin de.
2. Fill an páipéar ionas nach bhfeicfear do vóta. Taispeáin cúl an pháipéir don oifigeach ceannais, agus cuir sa bhosca ballóide é.

INSTRUCTIONS

1. Write 1 in the box beside the candidate of your first choice, write 2 in the box beside the candidate of your second choice, and so on.
2. Fold the paper to conceal your vote. Show the back of the paper to the presiding officer and put it in the ballot box.

DOYLE – LIBERAL SOCIALISTS
MARY DOYLE, of 10 High Street, Knockmore, Nurse.

LYNCH – URBAN PARTY
JANE ELLEN LYNCH, of 12 Main Street, Ardinson, Shopkeeper.

MURPHY
PATRICK MURPHY, of 12 Main Street, Ballydull, Carpenter.

Ó BRIAIN — CUMANN NA SAORANACH
SÉAMUS Ó BRIAIN, as 10 An tSráid Ard, Carn Mór, Óide Senile.

O'BRIEN — NON-PARTY
EAMON O'BRIEN, of 22 Wellstone Place, Knockbeg, Barrister.

O'BRIEN – THE INDEPENDENT PARTY
ORLA O'BRIEN, of 103 Eaton Brae, Cabermore, Solicitor.

O'CONNOR — NATIONAL LEAGUE
CAROLINE O'CONNOR, of 7 Green Street, Carnmore, Engineer.

THOMPSON — RURAL PARTY
WILLIAM H. THOMPSON, of Doreen, Ballyglass, Farmer.

39) the journal.
https://www.thejournal.ie/election-ballot-papers-2371657-Oct2015/ (검색일 2019.10.22.)

22. 이스라엘 40)

40) Wikemedia commons. ‘Israeli legislative election 2019 ballot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Israeli_legislative_election_2019_ballots_(2).jpg (검색일 2019.10.22.)

23. 이탈리아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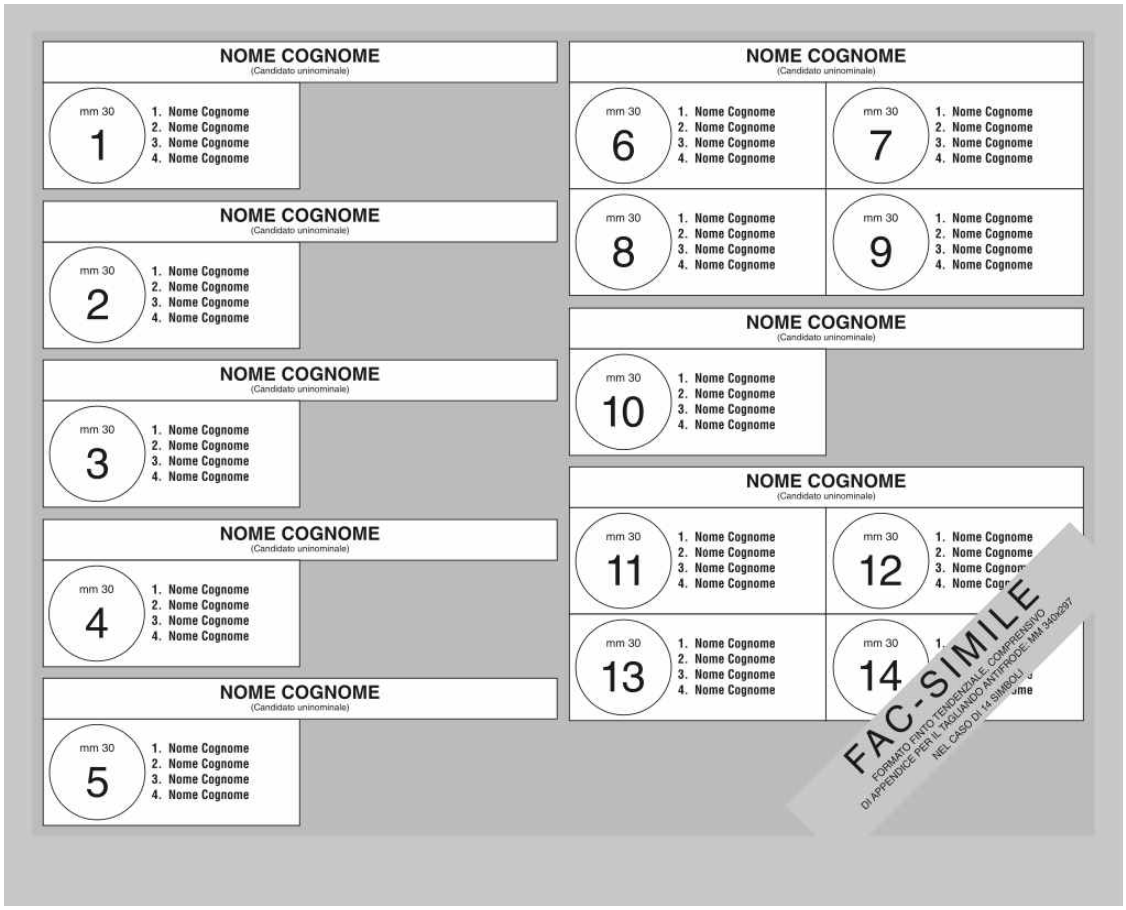

41) Wikipedia. 'Italian electoral law of 2017' https://en.wikipedia.org/wiki/Italian_electoral_law_of_2017#/media/File:Rosatellum%27s_voting_paper.svg (검색일 2019.10.11.)

24. 라트비아 [42]

42) Apollo. 2017.8.
https://www.apollo.lv/6000778/dp-pasvaldibu-velesanu-balsu-pirksanas-lieta-nopratinajusi-50-lieciniekus (검색일 2019.10.22.)
Aumytests. 2019.3.
http://www.aumytests.net/tautas-varas-fronte-aicina-boikotet-velesanas-tikai-ta-varot-kaut-kas-mainities/ (검색일 2019.10.22.)

25. 리투아니아 [43]

2016 m. spalio 9 d.
LIETUVOS RESPUBLIKOS SEIMO RINKIMAI
DAUGIAMANDATĖS RINKIMŲ APYGARDOS
RINKIMŲ BIULETENIS

Apylinkės rinkimų komisijos, apygardos rinkimų komisijos ar Vyriausiosios rinkimų komisijos antspaudo vieta

PAŽYMĖKITE TIK **VIENĄ SĄRAŠĄ**, UŽ KURĮ BALSUOJATE

ŽYMĖJIMO PAVYZDYS

1 MIŠKO PARTIJA (Pirmininkas Vardas PAVARDENIS)

2 BERŽO PARTIJA (Pirmininkas Vardas PAVARDENIS)

3 KLEVO PARTIJA (Pirmininkas Vardas PAVARDENIS)

4 PARTIJŲ KOALICIJA „JŪRATĖ IR KASTYTIS" (Partijų pavadinimai, Partijų pavadinimai, Partijų pavadinimai, Partijų pavadinimai, Partijų pavadinimai, Partijų pavadinimai)

5 DREBULĖS PARTIJA (Pirmininkas Vardas PAVARDENIS)

6 PARTIJŲ KOALICIJA (Partijų pavadinimai, Partijų pavadinimai, Partijų pavadinimai, Partijų pavadinimai, Partijų pavadinimai, Partijų pavadinimai)

7 UOSIO PARTIJA (Pirmininkas Vardas PAVARDENIS)

8 PAPARČIO PARTIJA (Pirmininkas Vardas PAVARDENIS)

9 GILĖS PARTIJA (Pirmininkas Vardas PAVARDENIS)

10 GRIAUSTINIO PARTIJA (Pirmininkas Vardas PAVARDENIS)

11 PERKŪNO PARTIJA (Pirmininkas Vardas PAVARDENIS)

12 ŽIOGO PARTIJA (Pirmininkas Vardas PAVARDENIS)

13 SVIRPLIO PARTIJA (Pirmininkas Vardas PAVARDENIS)

14 ERELIŲ PARTIJA (Pirmininkas Vardas PAVARDENIS)

PIRMUMO BALSAI
Šiuos langelius aiškiai įrašykite penkių kandidatų numerius iš to sąrašo, už kurį balsavote. Kandidatų pavardžių neįrašykite.

PAVYZDYS

43) Santaka.
http://www.santaka.info/?sidx=41420 (검색일 2019.10.22.)

26. 룩셈부르크 44)

Élections législatives du 14 octobre 2018

Élection de 7 députés / **circonscription électorale est**

- Spécimen d'un bulletin de vote -

1 PIRATEN	2 déi gréng	3 LSAP	4 CSV - Chrëschtlech-Sozial Volkspartei
FRÈRES Daniel	DIESCHBOURG Carole	SCHMIT Nicolas	HETTO-GAASCH Françoise
HOUDREMONT Claire	KOX Henri	BECHTOLD Lucien	DUBLIN Christian
BÖRGER Nancy	GARY Chantal	BURTON Tess	GLODEN Léon
BELLEVILLE Tatjana	KLARES-GOERGEN Fernande	FRISCH Colette	HENGEL Max
CONTRERAS Gerald	KMIOTEK Christian	RÖSSLER Aurore	MODERT Octavie
MARTINS DOS SANTOS Catarina	SCHLECK Steve	SCHEUER Ben	WENGLER Yves
CLEMENT Jill	SEHOVIC Meris	WIRTZ Jean-François	WEYDERT Stéphanie

5 KPL d'Kommunisten	6 DP - Demokratesch Partei	7 A.D.R. - ALTERNATIV DEMOKRATESCH REFORMPARTEI	8 déi Lénk
ANTONY Joëlle	DELLES Lex	MEHLEN Robert	AREND Anne
ARENDT Huguette	BAUM Gilles	SCHOOS Jean	BIERMANN Gaby
DI BERNARDO Sylvia	HARTMANN Carole	AGNES Tom	BOLLIG Francine
HAAS Wilhelm	JEITZ Edith	BREYER Nathalie	FUENTES Adela
LIČINA Dževa	SCHOMMER Claude	BRISBOIS Tessy	KRIER Jean
MAHNEN David	SEMEDO Monica	KIRCHEN Ernest	SCHROEDER Sylvie
PIZZAFERRI-MANENTE Christiane	SITZ Jacques	SOLNY Colette	ZEBROWSKY Daniel

Kammerwahlen vom 14. Oktober 2018

Wahl von 7 Abgeordneten / **Wahlbezirk Osten**

- Muster eines Wahlzettels -

44) Wikiwand.
https://www.wikiwand.com/en/2013_Luxembourg_general_election (검색일 2019.10.21.)

27. 멕시코 45)

45) SECRETARIA DE GOBERNACION. 2017.11.10. ‘Official Journal of the Federation.’ http://dof.gob.mx/nota_detalle.php?codigo=5504276&fecha=10/11/2017 (검색일 2019.1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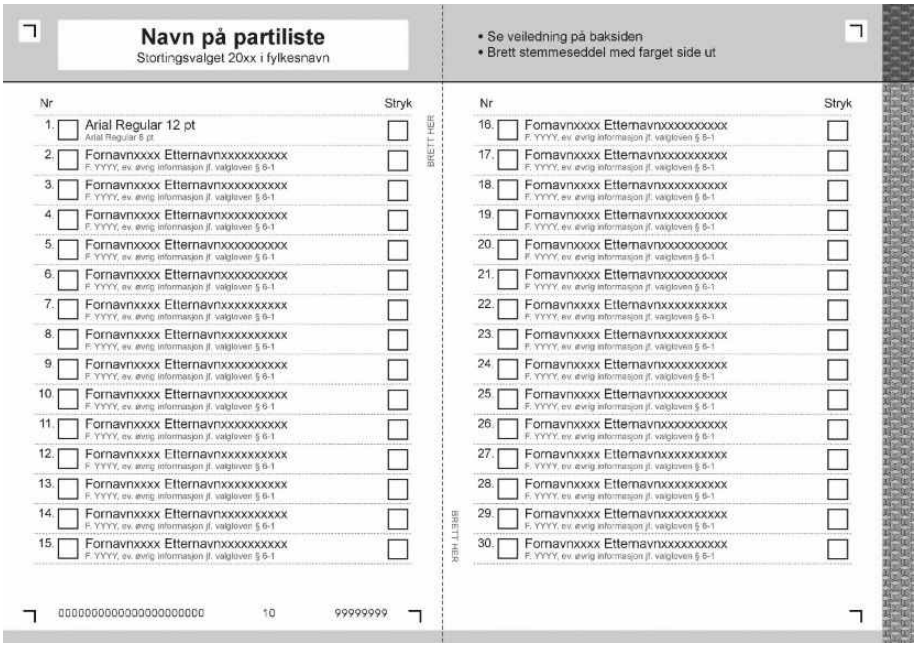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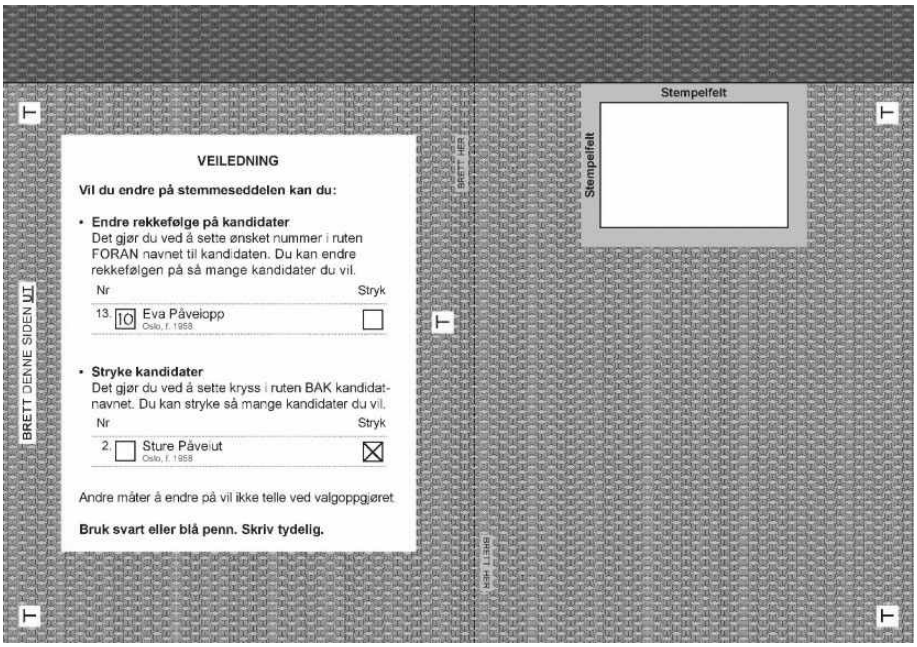

46) ‘Regulations relating to parliamentary and local government elections’ 2017. https://www.legislationline.org/download/id/5182/file/Norway_Election%20Act%20Nor%2024.6.2013_en.pdf (검색일 2019.10.15)

29. 네덜란드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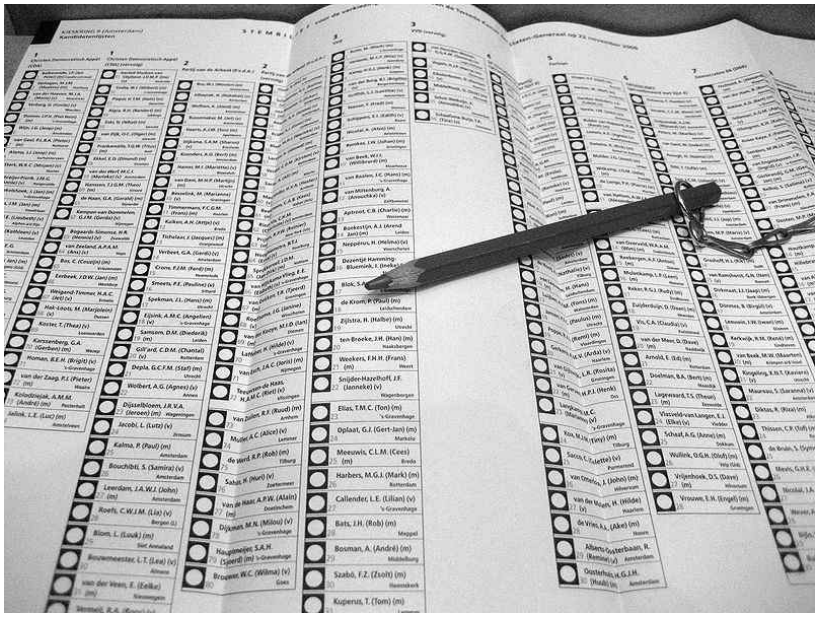

47) DutchNews. https://www.dutchnews.nl/features/2017/01/who-can-vote-and-for-whom-how-the-dutch-electoral-system-works/ (검색일 2019.9.11.)
Joop. 2017.7 https://joop.bnnvara.nl/nieuws/stembiljet-groot-ondemocratisch-vrouwen (검색일 2019.9.11)

30. 뉴질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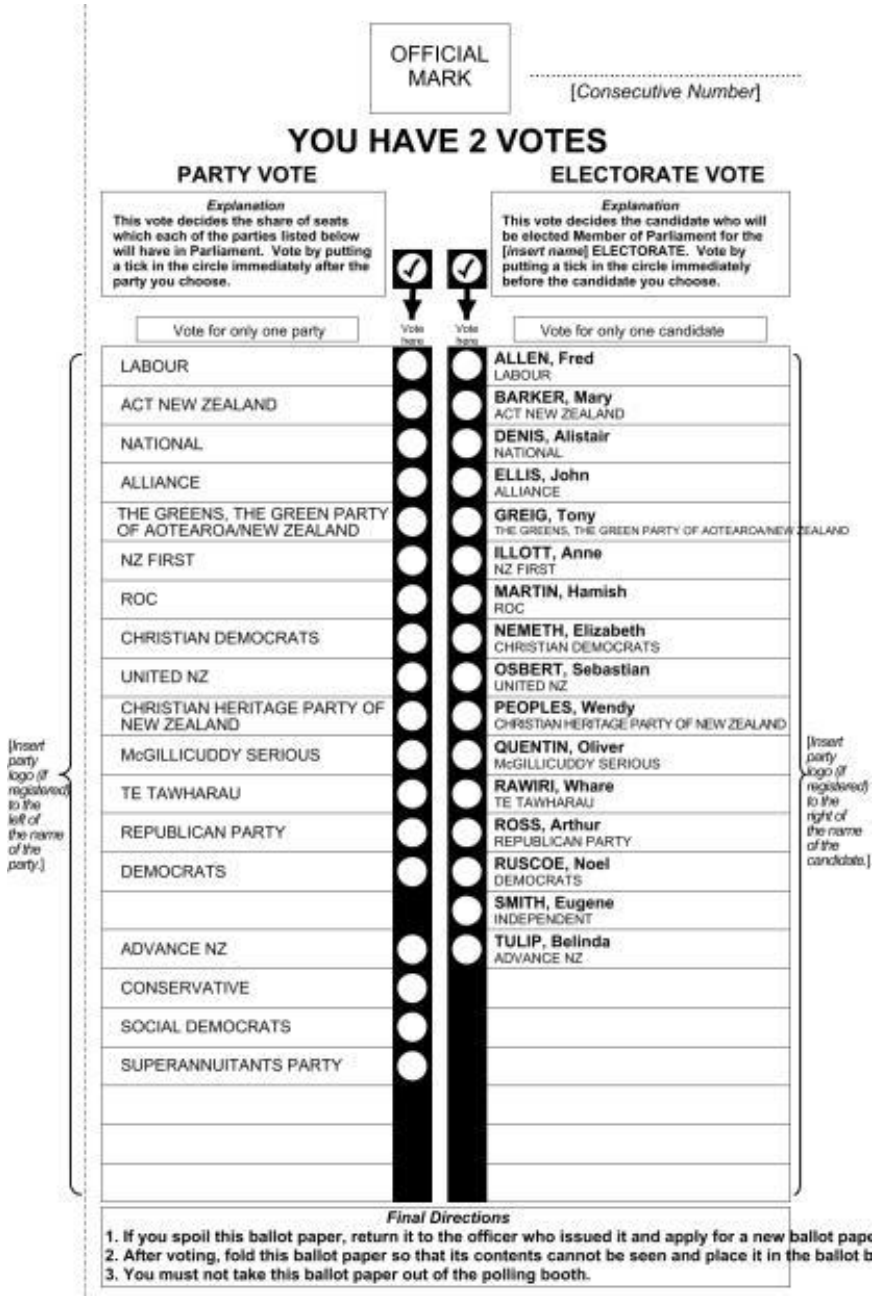

OFFICIAL MARK

[Consecutive Number]

YOU HAVE 2 VOTES

PARTY VOTE

Explanation
This vote decides the share of seats which each of the parties listed below will have in Parliament. Vote by putting a tick in the circle immediately after the party you choose.

Vote for only one party

	Vote here
LABOUR	○
ACT NEW ZEALAND	○
NATIONAL	○
ALLIANCE	○
THE GREENS, THE GREEN PARTY OF AOTEAROA/NEW ZEALAND	○
NZ FIRST	○
ROC	○
CHRISTIAN DEMOCRATS	○
UNITED NZ	○
CHRISTIAN HERITAGE PARTY OF NEW ZEALAND	○
McGILLICUDDY SERIOUS	○
TE TAWHARAU	○
REPUBLICAN PARTY	○
DEMOCRATS	○
ADVANCE NZ	○
CONSERVATIVE	○
SOCIAL DEMOCRATS	○
SUPERANNUITANTS PARTY	○

[Insert party logo (if registered) to the left of the name of the party.]

ELECTORATE VOTE

Explanation
This vote decides the candidate who will be elected Member of Parliament for the [*insert name*] ELECTORATE. Vote by putting a tick in the circle immediately before the candidate you choose.

Vote for only one candidate

	Vote here
ALLEN, Fred LABOUR	○
BARKER, Mary ACT NEW ZEALAND	○
DENIS, Alistair NATIONAL	○
ELLIS, John ALLIANCE	○
GREIG, Tony THE GREENS, THE GREEN PARTY OF AOTEAROA/NEW ZEALAND	○
ILLOTT, Anne NZ FIRST	○
MARTIN, Hamish ROC	○
NEMETH, Elizabeth CHRISTIAN DEMOCRATS	○
OSBERT, Sebastian UNITED NZ	○
PEOPLES, Wendy CHRISTIAN HERITAGE PARTY OF NEW ZEALAND	○
QUENTIN, Oliver McGILLICUDDY SERIOUS	○
RAWIRI, Whare TE TAWHARAU	○
ROSS, Arthur REPUBLICAN PARTY	○
RUSCOE, Noel DEMOCRATS	○
SMITH, Eugene INDEPENDENT	○
TULIP, Belinda ADVANCE NZ	○

[Insert party logo (if registered) to the right of the name of the candidate.]

Final Directions
1. If you spoil this ballot paper, return it to the officer who issued it and apply for a new ballot pape
2. After voting, fold this ballot paper so that its contents cannot be seen and place it in the ballot b
3. You must not take this ballot paper out of the polling booth.

31. 폴란드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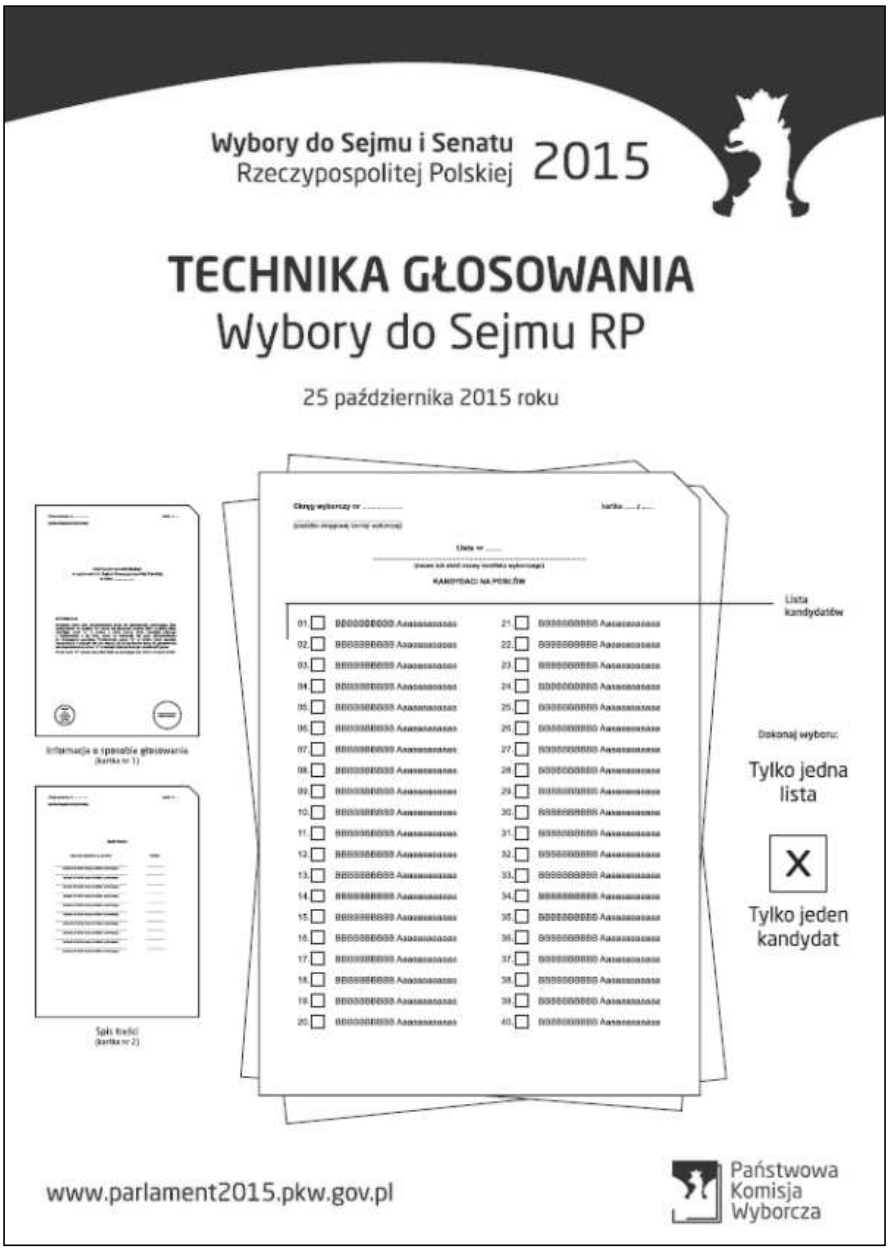

48) 폴란드관보(Gazeta.PL.)
http://wiadomosci.gazeta.pl/wiadomosci/1,143907,18912095,jak-glosowac-wybory-parlamentarne-2015.html (검색일 2019.9.16.)

32. 포르투갈

ELEIÇÃO DA ASSEMBLEIA DA REPÚBLICA
Círculo eleitoral de Faro

Partido Comunista dos Trabalhadores Portugueses	PCTP/MRPP	☐
Partido Nacional Renovador	P.N.R.	☐
Movimento Esperança Portugal	MEP	☐
Movimento Mérito e Sociedade	MMS	☐
Partido Social Democrata	PPD/PSD	☐
Partido Operário de Unidade Socialista	POUS	☐
Bloco de Esquerda PARA DIVULGAÇÃO PÚBLICA	B.E.	☐
Nova Democracia	PND	☐
CDS - Partido Popular	CDS-PP	☐
Partido Socialista	PS	☐
FEH - Frente Ecologia e Humanismo	MPT-P.H.	☐
Portugal pro Vida PARA DIVULGAÇÃO PÚBLICA	PPV	☐
CDU - Coligação Democrática Unitária	PCP-PEV	☐
Partido Popular Monárquico	PPM	☐

33. 슬로바키아 [49]

49) 24hod.sk.
https://www.24hod.sk/volici-sa-mozu-s-otazkami-o-volbach-obratit-na-infolinku-cl419917.html (검색일 2019.10.22.)

34. 슬로베니아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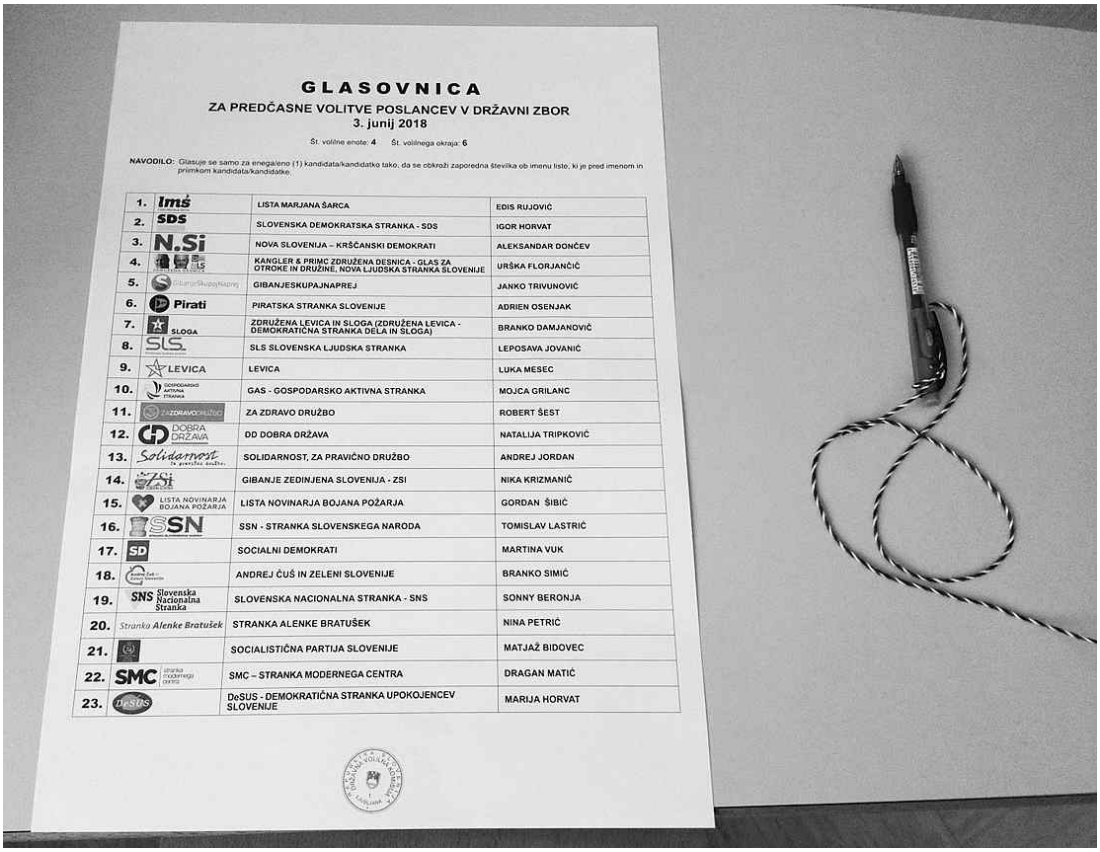

GLASOVNICA

ZA PREDČASNE VOLITVE POSLANCEV V DRŽAVNI ZBOR
3. junij 2018

Št. volilne enote: 4 Št. volilnega okraja: 6

NAVODILO: Glasuje se samo za enega/eno (1) kandidata/kandidatko tako, da se obkroži zaporedna številka ob imenu liste, ki je pred imenom in priimkom kandidata/kandidatke.

1.	Imš	LISTA MARJANA ŠARCA	EDIS RUJOVIĆ
2.	SDS	SLOVENSKA DEMOKRATSKA STRANKA - SDS	IGOR HORVAT
3.	N.Si	NOVA SLOVENIJA – KRŠČANSKI DEMOKRATI	ALEKSANDAR DONČEV
4.	NLS	KANGLER & PRIMC ZDRUŽENA DESNICA - GLAS ZA OTROKE IN DRUŽINE, NOVA LJUDSKA STRANKA SLOVENIJE	URŠKA FLORJANČIĆ
5.	GibanjeSkupajNaprej	GIBANJESKUPAJNAPREJ	JANKO TRIVUNOVIĆ
6.	Pirati	PIRATSKA STRANKA SLOVENIJE	ADRIEN OSENJAK
7.	SLOGA	ZDRUŽENA LEVICA IN SLOGA (ZDRUŽENA LEVICA - DEMOKRATIČNA STRANKA DELA IN SLOGA)	BRANKO DAMJANOVIĆ
8.	SLS	SLS SLOVENSKA LJUDSKA STRANKA	LEPOSAVA JOVANIĆ
9.	LEVICA	LEVICA	LUKA MESEC
10.	GOSPODARSKO AKTIVNA STRANKA	GAS - GOSPODARSKO AKTIVNA STRANKA	MOJCA GRILANC
11.	ZAZDRAVOHRUŽBO	ZA ZDRAVO DRUŽBO	ROBERT ŠEST
12.	DOBRA DRŽAVA	DD DOBRA DRŽAVA	NATALIJA TRIPKOVIĆ
13.	Solidarnost za pravično družbo	SOLIDARNOST, ZA PRAVIČNO DRUŽBO	ANDREJ JORDAN
14.	ZSI	GIBANJE ZEDINJENA SLOVENIJA - ZSI	NIKA KRIZMANIĆ
15.	LISTA NOVINARJA BOJANA POŽARJA	LISTA NOVINARJA BOJANA POŽARJA	GORDAN ŠIBIĆ
16.	SSN	SSN - STRANKA SLOVENSKEGA NARODA	TOMISLAV LASTRIĆ
17.	SD	SOCIALNI DEMOKRATI	MARTINA VUK
18.	Andrej Čuš in zeleni	ANDREJ ČUŠ IN ZELENI SLOVENIJE	BRANKO SIMIĆ
19.	SNS Slovenska Nacionalna Stranka	SLOVENSKA NACIONALNA STRANKA - SNS	SONNY BERONJA
20.	Stranka Alenke Bratušek	STRANKA ALENKE BRATUŠEK	NINA PETRIĆ
21.		SOCIALISTIČNA PARTIJA SLOVENIJE	MATJAŽ BIDOVEC
22.	SMC stranka modernega centra	SMC – STRANKA MODERNEGA CENTRA	DRAGAN MATIĆ
23.	DeSUS	DeSUS - DEMOKRATIČNA STRANKA UPOKOJENCEV SLOVENIJE	MARIJA HORVAT

50)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2018_Slovenian_parliamentary_election#/media/File:Slovenian_parliamentary_election,_2018.jpg (검색일 2019.10.21.)

35. 터 키 51)

51) Dreamstime.
https://www.dreamstime.com/stock-photo-general-elections-turkey-november-ballot-vote-envelope-seal-yes-image61805773 (검색일 2019.10.22.)
https://images.app.goo.gl/ceba5dBJ8xB72zSm7 (검색일 2019.10.22.)

< 집 필 진 >

■ 총괄: 김태식 (선거연수원 제도연구부장)

■ 국가별 집필

국가	담당교수	직원연구관	
프랑스	유성수	임주현 (5급) / 행정국제과	서윤경 (7급) / (전)구리시
일 본	최희영 (현, 정보운영과장)	김은희 (7급) / 의왕시	주정란 (7급) / 영월군
스웨덴	백승준	최연호 (7급) / 경기도지도2과	강진선 (8급) / 김포시
미 국	조원용	정창현 (6급) / 광주북구	김정선 (7급) / 남양주시
영 국		장연주 (6급) / 안양시만안구	안수정 (8급) / 종로구
독 일	이종희	김정희 (6급) / 부천시	이미경 (8급) / 남양주시
스위스		김현성 (7급) / 관악구	이성하 (8급) / 천안시서북구
캐나다	장성훈	정영주 (6급) / 평창군	김혜원 (8급) / 안양시동안구
호 주		조은정 (6급) / 의왕시	김지은 (8급) / 서울시지도과
스페인	문은영	편청아 (7급) / 영등포구	정유진 (9급) / 서울중구

■ 비교연구표 작성 등

분야	담당교수	직원연구관
OECD 국가별 비교표 작성 및 내용검토	문은영	이범진 (5급) / 정책보좌관실 장민지 (8급) / 파주시 장해봄 (9급) / 동두천시

■ 내용 감수

분야	감수자	
선거제도	김명희 (5급) / 마포구	고경숙 (5급) / 성남시분당구
선거운동·벌칙 등	이은철 (5급) / 세종시지도과	김웅선 (5급) / 보은군
전체	김광주 (4급) / 제도연구부 이승환 (5급) / 제도연구부 문은영 (전임교수) / 제도연구부	

■ 자료 정리 및 교정: 임지은

2019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인 쇄 | 2019년 12월
발 행 | 2019년 12월
발행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전 화 | (031) 296-8755
디자인 및 인쇄 | 도서출판 오름 (oruem9123@naver.com)

(비매품)